

晉州柳氏人物資料集



晉州柳氏大宗會



발 간 사(發刊辭)

정사(正史)인 왕조실록에서 진주류씨 가문의 선대 기록은 고려사 공민왕 대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고려는 오랜 무신 집정이 끝난 후 왕정 복고는 되었지만 원종(元宗) 이후부터 원(元) 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되었으며 후기로 올수록 잦은 국왕의 교체와 흥건적과 왜구의 빈번한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었다. 고려사 자체가 간단 명료한 소략의 기록이고 열전(列傳)은 과거 급제자 위주로 편찬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민왕 대 이전에 활동하였으리라고 사료되는 선대의 기록을 추출할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 공민왕 10년(1361) 이후 도관정랑(都官正郎) 정평공 류구(靖平公 柳珣) 선조께서 발호하는 흥건적 격퇴에 힘써 개성수복 2등공신에 녹공된 기록이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 개국을 한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년 월 일 순차에 따라서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총 1893권 888책으로 가장 오랜 기간동안 방대한 기록물을 저술한 역사서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清歷朝實錄)이 296년 동안의 기록 뿐이고 황명실록(皇明實錄)은 2,964권으로 엮어졌으나 권수의 양만 많을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총 6,400만 자에 비해 황명실록은 총 1,600만 자에 불과하다.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풍속 외교 군사 법률 교통 통신 예술 종교 철학 등 모든 분야의 사실을 총망라하고 있어 귀중한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높고 역사 기술에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을 포함하여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사관(史官)은 관직으로서 독립성과 기록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집권한 군주라 하더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보장함으로써 진실성을 확보하여 왔다.

역사 인식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고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가문(家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의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이다. 혈통과 종족의 긴 역사를 지켜온 선조들께서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영위하며 역사의 흐름속에서 고비마다 성공과 실패의 영욕을 거듭하고 창업(創業)과 수성(守成)을 이어오며 오늘이 시대까지 왔는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은 지난 역사의 편린(片鱗)들을 재조명하고 귀감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속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터전과 발판을 마련하여 한단계 승화된 더욱

4 晉州柳氏人物資料集

발전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찍이 주자(朱子)도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春不耕種秋後悔) 했습니다.

공민왕대의 흥건적난을 힘써 막아 개성수복 공신에 올랐으며 불사이군의 여말 충신이 있으며 만인이 추앙하는 숙덕(宿德) 대제학에 오르고 안빈낙도의 청빈한 재상으로 청백리에 녹선되고 패도와 불의에 의연히 목숨걸고 맞서 반정(反政)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상신에 오른 공신이 있으며 지치주의(至治主義) 도학을 주장하며 절의를 지켜 목숨을 잃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이 있으며 조선시대 양명학(陽明學)의 창시자인 시보 남언경(時甫 南彦經)의 어머니 류씨(柳氏)가 퇴계선생이 극찬한 일양소(一陽疏)와 묵죽(墨竹)과 함께 송례문(崇禮門) 현판 글씨를 썼다는 진동(辰叟)의 누이 동생이며 삼포왜란 을묘왜변 임진 정유왜란 병자호란 이괄(李适)의 난 홍경래의 난 등의 국난(國難) 있을 때마다 충성을 다하여[盡忠] 나라를 지켜 보답(報國)하는 충신과 공신이 나오고 문무겸전한 장수가 계속 입신양명하고 등단록(登壇錄)에 오른 장신(將臣)이 네분 배출되는 등 조선왕조 후기로 올수록 무반 가문연구에 중요한 가문으로 자리 매김됐다.

조선조 3대 묵죽 화가에 오르며 또는 문장과 시문으로 중국에서 이름을 떨쳤으며 어려서는 신동(神童)으로 세인을 감탄케 하고 벼슬길을 마다하고 초야에 칩거하며 평생 학문 연구와 저술에만 전념하여 후대에 대학자로 인정되어 갈수록 빛이 더하는 분도 있다.

비록 왕조실록에 그 행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음지에서 열심히 살아가신 많은 선조들의 노력과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선조의 기록이 있게 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진산군(晉山君) 12세(대승공 21세)까지 왕조실록에 수록된 기록을 발췌 수집한 것이 무려 2,600면에 가깝다. 왕조실록을 기준으로는 광해군·인조 시대까지 이다.

우선 제1차로 선조 56분의 기록인 1,000여 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1권을 간행하고 후에 교정 끝나는 대로 계속 발행할 예정이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10여년 이상을 왕조실록 기록 발췌 수집에 매달려 온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 방대한 진주류씨인물자료집을 꾸민 류조호(朝浩) 류중섭(重燮) 류재중(載中)에 깊은 격려와 고마움을 표하며 방대한 자료를 정리 활자화 해준 에프윈프린팅 대표님과 염경희 실장에게도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晉州柳氏大宗會 會長 柳 根 昌

목 차

발간사(發刊辭)	3
사 진(寫 眞)	5
목 차(目 次)	13
진주류씨의 연원(晉州柳氏의 淵源)	17
中始祖 晉山君 1世(大丞公 10世) 류인비(柳仁庇)	18
晉山君 3世(大丞公 12世)	
류혜방(柳惠芳) 익 양 공(翊 襄 公)	18
류혜손(柳惠孫) 안 간 공(安 簡 公)	23
晉山君 4世(大丞公 13世)	
류 구(柳 珣) 정 평 공(靖 平 公)	30
류 호(柳 瑚) 부 사 공(府 使 公)	68
류의호(柳義湖) 승 통 공(僧 統 公)	68
류 염(柳 琰) 문 간 공(文 簡 公)	69
류 찬(柳 瓚) 군사소감공(軍資少監公)	73
류 향(柳 珣) 수 재 공(守 齋 公)	76
류 진(柳 瑱) 현 감 공(縣 監 公)	79
晉山君 5世(大丞公 14世)	
류 겸(柳 謙) 청백리공(清白吏公)	80
류지함(柳之涵) 정 랑 공(正 郎 公)	91
류지운(柳之潤) 호 군 공(護 軍 公)	97
류 해(柳 諧) 상호군공(上護軍公)	98
류 성(柳 誠) 영동현감공(永同縣監公)	99
晉山君 6世(大丞公 15世)	
류 이(柳 怡) 이 판 공(吏 判 公)	100

14 晉州柳氏人物資料集

류 열(柳悅)	북부령공(北部令公)	102
류 척(柳揚)	시윤공(寺尹公)	104
류 전(柳攄)	판사공(判事公)	109
류 주(柳疇)	사직공(司直公)	110
류 은(柳垠)	사직공(司直公)	112
류종형(柳宗炯)	별좌공(別坐公)	113

晉山君 7世(大丞公 16世)

류자해(柳子偕)	진천군(晉川君)	114
류자충(柳子忠)	거창공(居昌公)	117
류자문(柳子文)	사예공(司藝公)	120
류예지(柳羿智)	사직공(司直公)	152
류세침(柳世琛)	대사헌공(大司憲公)	155
류돈(柳墩)	사인공(舍人公)	249

晉山君 8世(大丞公 17世)

류균(柳均)	증참판공(贈參判公)	292
류양(柳壤)	상의원정공(尙衣院正公)	308
류숙(柳塾)	첨지공(僉知公)	315
류오(柳塢)	선공감정공(繕工監正公)	318
류한장(柳漢長)	생원공(生員公)	322
류한평(柳漢平)	증좌참찬공(贈左參贊公)	324
류장손(柳長孫)	참봉공(參奉公)	327
류중손(柳仲孫)	좌통례공(左通禮公)	328
류정(柳貞)	전적공(典籍公)	330
류장(柳漳)	감찰공(監察公)	350

晉山君 9世(大丞公 18世)

류의습(柳義濕)	무장공(茂長公)	353
류인습(柳仁濕)	증찬성공(贈贊成公)	353
류첨정(柳添汀)	부사공(府使公)	355
류효정(柳孝汀)	서윤공(庶尹公)	356
류의신(柳義臣)	사성공(司成公)	360

류예신(柳禮臣)	정 랑 공(正 郎 公)	383
류진동(柳辰仝)	정 민 공(貞 敏 公)	388
류 여(柳 璵)	승 지 공(承 旨 公)	483
류경선(柳敬善)	현 감 공(縣 監 公)	485
류순선(柳順善)	소 재 공(素 齋 公)	487
류종선(柳從善)	겸 재 공(謙 齋 公)	527
류승선(柳承善)	목 사 공(牧 使 公)	546
류승손(柳承孫)	첨 사 공(僉 使 公)	565
晉山君 10世(大丞公 19世)			
류 빈(柳 濱)	충 정 공(忠 定 公)	570
류 침(柳 沉)	선 교 랑 공(宣 教 郎 公)	699
류 린(柳 潏)	부 정 공(副 正 公)	702
류 영(柳 滢)	진 양 군(晉 陽 君)	705
류 부(柳 溥)	효 성 공(孝 成 公)	714
부 록(附 錄)		1077
발간후기(發刊後記)		1083
진주류씨세계분파도(晉州柳氏世系分派圖)		1085



진주류씨(晉州柳氏) 인물자료집(人物資料集)

진주류씨의 연원(晉州柳氏의 淵源)

송(宋)나라에서 고려 사인(士人)에 족망상고(族望相高)로 류(柳) 최(崔) 김(金) 이(李)의 사성씨(四姓氏)가 귀종(貴種)이라 하여 고려 사대명족(四大名族) 중에 류씨를 으뜸으로 꼽았다.

류씨(柳氏)의 성(姓)을 처음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료(史料)와 문헌 고려 묘지명 등에 의하면 후삼국 시대 말엽을 거쳐가는 기간과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 시대로 밝혀진다.

서기 918년 궁예에 귀순한 염주(연안)의 호족이며 세력가인 류공순(柳矜順)이 고려사에 보이며 목종 때의 평장사 류방헌(柳邦憲 944~1009 全州人)의 고려초 묘지명 기록에 의하면 그의 증조부 류기휴(柳其休)가 신라말의 각간(角干) 벼슬이며 조부 류법반(柳法攀)은 백제 우장군(右將軍)의 기록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제일왕비(第一王妃) 신의왕후 류씨(柳氏)는 정주(貞州) 지역의 호족인 장자(長者) 류천궁(柳天弓 貞州人)의 딸이다.

명종(明宗) 때의 명재상인 정당문학 류공권(柳公權 1132~1196 始寧人=文化人)의 육대조(六代祖)인 대승(大丞) 류차달(柳車達)이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조달하므로써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삼한공신(三韓功臣)에 오른 기록이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에 보인다.

류공권의 아들이 류언침(柳彦沉¹⁾)으로 그 아들인 9세손(九世孫) 한림학사 류순(柳淳)의 계자(季子) 막내) 류인비(柳仁庇)가 분적 이봉(分籍移封)하여 진주류씨의 득관조(得貫祖)가 되셨다는 병자보(丙子譜 1756刊)의 기록이다.²⁾

1) 류언침(柳彦沉) : 1167~1228. 문간공 류공권의 아들로 희종 7년(1211)에 안렴사를 역임했으며, 강종 원년(1212) 통령(統領), 고종 3년(1216) 관북도 찰방사, 8년에 상장(上將), 9년 형부상서, 판합문사(判閣門事), 12년 좌산기 상시, 14년 추밀원사 예부상서, 군공(軍功)으로 감문위 섭 상장군(監門衛攝上將軍)에 특별히 제수되었으며 사양하는 소를 올렸으나 왕이 이규보(李奎報)를 시켜 비답(批答)을 내렸다. 평장사 이규보는 문간공 류공권(文簡公 柳公權)의 문하생이기도 하다.

2) 인제 홍섬(忍齋 洪暹)이 찬(撰)한 정민공 류진동의 신도비명과 좌의정공 류부(柳溥)가 지은 아버지 상의원정공 류양(柳壤) 묘갈문(墓碣文)에 류언침이 군공을 세워 진주로 관적(貫籍)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나 설왕설래 혼란이 가중되고 뚜렷한 문헌상의 고증이 어렵고 문화류씨 장파(長派)와 토봉 진주와의 문제가 복잡하여 수보를 하지 못하고 전하게 되자 안간공 10세손 류필복(柳必復)이 류인비를 득관조로 하여 진주류씨의 최초 대동보인 병자보에 보계변증록의 저술을 담아 발간하였다. 이후 기축보(1829) 을사보(1905) 정미보(1967) 병진보(1986)의 진주류씨 대

중시조(中始祖) 진산군 1세(大丞公 10세) 류인비(柳仁庇)

벼슬이 고려시대에 판사(判寺事) 제학(提學)을 거쳐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였다. 일부의 기록은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진산군(晉山君)에 오르셨다는 기록이다. 부인은 시중(侍中) 설영보(薛永保)의 따님인 순창설씨이다. 고려 충렬왕대에 찬성사를 지낸 설영임(薛永任)³⁾과 가까운 인척관계로 사료되나 기록을 추출할 수가 없다. 아들은 류유(柳洵)로 명종 17년(1562)에 류희잠(柳希潛)이 그 아들과 양대에 걸쳐 만든 만성보 성격의 가정보(嘉靖譜)의 기록에 류순(柳淳)의 아들 류인비(柳仁庇)이며 그 아들에 류유가 기록되어 있다.

丙子譜 사고려관판사(仕高麗官判寺事) 제학치사상호군(提學致仕上護軍) 일운정당문학(一云政堂文學) 진산군(晉山君) 일운봉익대부(一云奉翊大夫) 예문관제학동지춘추관사(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 《朝鮮科宦譜記錄, 丙子譜 金卷 1面(天)》

진산군 3세(大丞公 12세) 익양공(翊襄公) 류혜방(柳惠芳)

공의 자는 여우(與宇)이며 시호는 익양(翊襄)이다. 생졸년대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색의 목은집(牧隱集) 이송인의 도은집(陶隱集) 등 기록과 교유한 인물들의 연대를 보아 고려 충숙왕 초기로부터 공민왕 또는 우왕 대까지 살았으리라 추정된다.

시조 대승공(大丞公) 차달(車達)의 12세 손으로 진주류씨의 중시조인 판사공 진산군(晉山君) 인비(仁庇)의 장손으로 류유(柳洵)의 큰 아들이다. 판후덕부사,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낸 안간공 혜손(安簡公 惠孫)이 아우이다. 공민왕 9년(1360)에 국자감시(國子監試)⁴⁾에 올랐는데 좌주(座主)는 어사대부(御史大夫) 이교(李嶠)였다. 조청랑(朝請郎)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를 역임하였다. 공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동서인 이색의 목은집에 나와 있다.

공은 화원군(花原君) 권중달(權仲達 : 父 文坦公 漢功)⁵⁾의 따님인 안동권씨와

동보에서는 한결같이 류인비를 득관 중시조로 하여 족보를 계속 발간하여 왔다.

3) 설영임(薛永任) : 고려 충렬왕 25년(1300) 판삼사(判三司事)를 역임하고, 충렬왕 31년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가 되었다. 뒤에 아들과 함께 방출되었다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기용되어 1312년에 찬성사를 거쳐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었다.

4) 국자감시(國子監試) : 감시(監試)는 초학의 무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려에서는 십운시(十韻詩)로 시험하였고 그 동당(東堂)에서 일경(一經)에 통달한 자에게 부시(赴試)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혼인하여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장남 구(珣)는 문과에 올라 예문관 대제학 정당문학을 지냈으며 손자 겸(謙) 역시 문과에 올라 부자 양대에 걸쳐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차남 호(瑚)는 강릉부사를 지냈고 삼남 의호(義湖)는 출가하여 승통(僧統)이 되었다. 사위는 판관 영월인(寧越人) 신운길(辛云吉) 판사를 지낸 과평인(坡平人) 윤인걸(尹仁傑) 삼사부사(三司副使) 삼사좌윤(三司左尹) 이백승(李伯升) 죽산인(竹山人) 안득수(安得壽 : 父 璫)이다.

공의 처숙부는 조선 태종 때의 영의정 권중화(權仲和) 처 외조부는 전서에 오른 칠원군 윤길손(漆原君 尹吉孫)⁶⁾이다. 손위 동서로는 전분(全賁)⁷⁾이며 아래 동서로는 여성군 민근(閔瑾)⁸⁾ 대학자로 목은집⁹⁾을 남긴 목은 이색(牧隱 李穡) 전서 김윤철(金允轍)이다. 이색은 공의 아우인 안간공 혜손(惠孫)의 둘째 따님을 며느리로 맞아 동서이면서 사돈간이 되었다.

태조 7년 1월 16일(갑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 류구(柳珣)가 졸(卒)하였다. 구(珣)는 진양(晉陽) 사람인데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혜방(惠芳)의 아들이다.

○甲子. ○藝文春秋館太學士柳珣卒.珣晉陽人.知靈光郡事惠芳子. 《太祖實錄 卷第13, 2面》

- 5) 권중달(權仲達) : 원나라에서 벼슬이 만호(萬戶)였으며 고려에서 중대광 화원군(重大匡 花原君)에 올랐다. 고려 충선왕 때의 문신인 일재(一齋) 권한공(權漢功)의 아들이다. 권한공은 충선왕 원년(1309) 밀직부사를 거쳐 도첨의 정승이 되었고 예천부원군에 봉하여졌다. 저서에 일재집이 있는 문신이다.
- 6) 윤길손(尹吉孫) : 칠원윤씨(漆原尹氏)로 윤수(尹秀)의 아들이다. 처에 광주김씨 김주정(金周鼎)으로 기재되고 사위에 안동인 화원군 권중달(權仲達)이라 씨족원류에 확인된다. 윤언손(尹言孫)은 윤길손(尹吉孫)의 착오로 보아진다. 윤길손은 찬성사 윤길보(尹吉甫) 문하시중 윤환(尹桓)의 아버지의 형이 되며 고려사 충렬왕 23년에 장군 윤길손(尹吉孫)으로 나온다.
- 7) 전분(全賁) : 정선전씨(旌善全氏)로 안렴사 재신(宰臣)을 역임하였다. 큰 사위 윤보(尹輔 : 父 安籥)는 사수록사 류이(柳怡)의 장인 윤승례(尹承禮 : 父 陟)의 당숙질 관계로 혼맥이 연결되며, 아들 전오륜(全五倫)이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랐으며 처가 원 진주류씨로서 류번(柳藩 : 父 之澤)의 딸이다. 류씨의 외조부가 고성인(固城人) 이교(李嶠)로서 류혜방의 국자감시 때의 시험관이다.
- 8) 민근(閔瑾) : 여흥인(驪興人)으로 찬성사 민상정(閔祥正 : 1281~1352)의 아들이며, 원종 대에 문과 장원 급제하여 집현전 대학사 첨의정승에 올라 여흥군에 오른 민지(閔漬 : 1248~1326)의 손자이다. 씨족원류(氏族源流)에 순성보리공신 삼중대광(純誠輔理功臣 三重大匡) 여산부원군(驪山府院君)의 기록이다. 사위에 상주인 김관도(金觀道)인데 그는 북부령공 류열(柳悅)의 장인 김기(金淇)의 아버지이며 김기 또한 아들인 민중리(閔仲理)의 사위가 되므로서 중첩 혼인함이 밝혀지고 있다.
- 9) 목은집(牧隱集) : 고려말기 성리학자 이색(李穡)의 시문집. 1328(충숙왕 15)~1396(태조 5). 호는 목은.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한산(韓山). 찬성사(贊成事) 이곡(李穀)의 아들. 1353년(공민왕 2년)에 과거에 들었으며 1367년(공민왕 16년)에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에 올랐고 1373년(공민왕 22년)에 한산군에 봉했다. 정몽주가 피살된 후로는 각지로 유배되었고, 태조가 한산백(韓山伯)으로 봉하여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부임하는 이모지(李慕之)를 전송(傳送)한 시서(詩序)

도촌 선생(桃村先生)이 경자년 감시(監試)를 맡아 보았는데 선비를 많이 얻었다고 세상에서 칭송하였다. 정사로써 공이 현저한 자는 충주 김통헌(金通憲), 전주 황통헌(全州黃通憲), 영광 류조봉(靈光柳朝奉) 및 우리 청주 이봉순(淸州李奉順) 모지(慕之) 씨가 동시에 선발되어 원으로 나가게 되니 어찌 그리 장하랴. 모지 씨가 가는데 교유한 친구들이 시를 지어 한 권이나 되었다. 다들 내가 동방급제라 해서 책머리에 서문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 모지 씨가 감시에 합격한 뒤에 글을 읽고 문장을 저술하여 예부(禮部)에 올렸으나 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학문에 더욱 전진했다. 재상이 그 위인을 알고 호걸선비는 반드시 진사급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곧 조정에 추천하여 재간 있는 어사가 되었다가 여흥 군수 전라 안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혁혁하였고, 이번 걸음이 배운 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니 구구하게 주워 모아 일개 이름 얻은 나 같은 자에게 비한다면 천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찌 내 말을 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의 목사는 옛 제후(諸侯)의 제도로 한 고을 안에 정치를 전담하는 것이어서 책임이 너무나 중하지 않은가. 선비로서 벼슬이 여기에 이르면 역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옛사람은 벼슬이 이루어지면 일이 게을러진다는 훈계가 있으니 내가 모지 씨에게 말이 없을 수 없다. 청주는 고을 됴이 사실로 동남쪽이 모여드는 곳이라 지방이 넓고 백성이 많으며 잔 일이 많아서 번거롭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그 고을 원을 뽑는 데 어렵게 생각한다. 더구나 방금 바다 도적의 난리를 겪고 지방이 넓은 것이 여전하며 일이 자잘하게 많은 것도 여전한데 백성 중에 남아 있는 자를 전에 비하면 열에 두셋밖에 안되니 다스리기 어려움은 어찌 이루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모지 씨는 일에 게을러진다는 훈계를 명심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한결같이 여흥 군수 전라 안찰사가 되었을 때와 같이 하면 조정에서 선발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친구들이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감스러운 것은 선생께서 불행하게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들이 정사로써 공이 현저한 것이 이와 같이 장한 것을 보시지 못한 것이다. 모지 씨는 어찌 더욱 힘쓰지 않겠는가.

送李慕之赴淸州牧詩序

桃村先生 掌庚子監試 世稱得士 其以政事 顯庸 若忠州金通憲 全州黃通憲 靈光柳朝奉及吾淸州李奉順慕之氏 同時被廟選 出宰百里 何其盛哉 交遊歌詩慕之氏之行將成卷矣 咸以予側同年之列 俾序其卷端 予曰慕之氏自捷監試 讀書著文 連

進於禮部不中 然無纖芥有動於中者而其學一益進焉 宰相 知其爲人 以爲豪傑士 不必皆由進士出 送薦之朝 爲才御史 旣而 守驪興 按全羅所至 聲績 烜赫 今茲之行 尤有以展布所學矣 其視區區掇拾一得之名 如予者不啻霄壤矣 奚以予言爲 雖然今之州牧 古諸侯之遺制也 一境之政令 而得專之 其爲任 不旣重矣乎 士之仕宦 至此 亦可謂宦成矣 古人 有宦成功怠之戒 則予之於慕之氏 不可以無言也 清爲州實東南之走集也 其地廣 其民夥 其事冗一以繁 國家故一難其吏焉 矧今經海寇之亂 地之廣 猶昔也 事之冗以繁 猶昔也 獨民之存者 比之昔 不能十之二三焉 其爲吏之難 曷勝道哉 慕之氏其念功怠之戒而不自足也 一似守驪興一按全羅 則爲不負廟堂之選矣 爲不負交遊之望矣 雖然 予所感焉者 不幸先生早下世 不及見吾同年之以政事顯庸 若此之盛也 慕之氏 盍益勉之哉 《陶隱先生文集 卷之4, 449面》

목은시고 권십사(牧隱詩藁 卷十四)

장인 화원군 제삿날 아침에 류영광 부인의 재를 베풀었는데 마침 큰 바람이 불고 또 추위가 심하여 갈 수 없었다.

外舅花原君 忌日 柳靈光夫人 設齋 適大風作 且寒甚 不能赴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151 D》《晉州柳氏文集 2面》

목은시고 권십구(牧隱詩藁 卷十九)

안 좌랑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득수이다.

安佐郎生子得壽¹⁰⁾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50 D》《晉州柳氏文集 3面》

목은시고 권이십일(牧隱詩藁 卷二十一)

십이월 초여드렛날 나의 외고의 어머니는 판서 윤공 언손의 부인이고 김학사 주정의 딸인데 이날이 바로 그 부인의 제삿날이다. 나는 처음 화원군의 집에 장가들었는데 김씨는 이 때에 아무 병이 없었는데 일년이 지나자 세상을 떴다. 그 장사날에 나는 여러 자제들의 뒤를 따르며 모든 일을 도왔는데 이 때는 원나라 지정년이 시작된 병술년이다. 이 날을 당해 걸식하는 승려들을 불러 들여 천복재에서 약

10) 안득수(安得壽) : 좌랑, 전공판서(典工判書) 안경(安瓚: 父 安漢周)의 아들로 죽산안씨(竹山安氏)이다. 류혜방의 사위로 삼사부사(三司副使)를 역임했다. <조종운(趙從耘: 1607~1683)이 지은 씨족원류(氏族源流) 죽산안씨보 참조>

간의 식사를 준비하고 한 편 시를 적어 자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였다.
十二月初八日 外姑之母 判書尹公諱言孫之室 金學士諱周鼎之女之忌日也 穡始贅
花原之門 金氏猶無恙 一年而歿 其葬也 穡從衆子弟後 亦執事焉 實至正丙戌歲
也 當是日 邀乞食僧 略設薦福齋 錄成一首 俾子孫無忘焉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71 B》《晉州柳氏文集 4面》

목은시고 권이십일(牧隱詩藁 卷二十一)

큰 이모부 민판사에게 붙여드리
奉寄大姨夫閔判事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87 B》《晉州柳氏文集 5面》

목은시고 권이십칠(牧隱詩藁 卷二十七)

장인 화원군의 내외 자손들은 모두 경조와 영송시에 서로 모이는 자리를 사촌회라
하고 해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맡아 보는데 그 명칭은 유사라 했다. 유사는 연말에
사촌회를 소집하여 그 다음 유사에게 그 일을 넘겨 주도록 하니 이는 그 가문의 법
도였다. 반드시 부형의 향렬에서 한 두분 초청하여 그 자리의 어른으로 모신다.

경신년 동짓달 스무나흘날에 민중립과 나의 자식 종학이 그 모임을 주선하였는
데 나는 민판사 권판서와 함께 그 좌석에 참석했다가 크게 취해 돌아와 정오가 되
어 깨어났는데 한편 시를 읊었다.

外舅花原君之內外孫 凡於慶吊迎餞 相聚曰四寸會 二人掌其事 名曰有司 有司於
歲終作會 以授其事於來世之有司 盖家法也 必邀父行一二人押座 庚申年仲冬二十
又四日 閔中立及吾豚犬種學辦其會 僕與閔判事權判書在座 大醉而歸 日午始起吟
一首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380 A》《晉州柳氏文集 6面》

목은시고 권이십팔(牧隱詩藁 卷二十八)

장인 기제 날 재 올리는데 민판사¹¹⁾가 모든 일을 준비했는데도 나는 돌아와 매
우 피곤했다.

外舅忌齋 閔判事設行 歸而困甚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392 D》《晉州柳氏文集 6面》

11) 민근(閔瑾: 父 閔祥伯): 여흥민씨로 여성군(驪城君)이며, 화원군(花原君) 권중달(權仲達)의 사
위로서 전분(全賁) 류혜방(柳惠芳) 목은 이색(李穡) 김윤철(金允轍)과 동서임이 안동권씨 성화
보(成化譜: 성종 7년(1476) 간행) 천책우면(天冊宇面)에 기록되어 있다.

목은시고 권삼십(牧隱詩藁 卷三十)

사공벼슬을 하다가 죽은 류공의 아들과 사위가 찾아와 조상 묘소의 비명 지어 줄 것을 청하고 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왔기에 그 다음 날 이 시 한 편을 지어 읊었다.

故司空柳公子婿 來請先壠之銘 且以酒饌來 明日吟成一首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37 C》《晉州柳氏文集 6面》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

류문하에게 올림
上柳門下

《韓國文集叢刊 6卷, 惕若齋學吟集 22 A》《晉州柳氏文集 7面》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

정판서와 류판서가 도원수 막하를 수행할 때 시를 지어 작별했다.
鄭判書 柳判書 從都元帥幕 詩以爲贈

《韓國文集叢刊 6卷, 惕若齋學吟集 36 A》《晉州柳氏文集 7面》

진산군 3세(大丞公 12세) 안간공(安簡公) 류혜손(柳惠孫)

공의 호는 파은(坡隱)이며 시호는 안간(安簡)이다. 생졸년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살펴 볼 때 고려 충숙왕 초에 태어나 조선조 개국 초기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입증된다. 공은 진주 류씨의 증시조인 판시사공(判寺事公) 인비(仁庇)의 손자이며 진주백(晉州伯) 유(洵)의 2남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배위(配位)는 현복군(玄福君) 권렴(權廉)의 따님인 안동권씨(安東權氏), 순인대군(順仁大君) 왕상(王瑞)의 따님인 개성왕씨(開城王氏) 화평군(化平君) 김광철(金光轍)의 따님인 광산김씨(光山金氏)이다. 익양공 혜방(翊襄公 惠芳)과는 형제간이다. 4남 3녀를 두었는데 염(琰)은 보문각 대제학 이조판서 찬(瓚)은 군자소감 향(珦)은 개성소윤 진(瑱)은 신녕현감을 지냈으며, 첫째 사위 낙안인 김귀련(金龜聯)¹²⁾은 전서를 둘째 사위 이종덕(李鍾德)은 밀직, 셋째 사위 홍

12) 김귀련(金龜聯) : 낙안인(樂安人)으로 판전교(判典校) 김인관(金仁琯)의 아들이다. 매제가 화산군

기(洪璣)는 전서를 지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임인(壬寅) 11년(1362)

완백(完伯) 전라도 안렴사(全羅道安廉使) 관찰사(觀察使)

《藏書閣貴重本總書 清選考 中 卷8, 581面》

전라도 관찰사(全羅道 觀察使)

류혜손(柳惠孫)은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추동번(秋冬番)으로 전라도 안렴사에 임명되어 다음 해 춘하번(春夏番)까지 연임하였다. 1년을 역임한 셈이다. 그러나 그 역시 안렴사(安廉使)의 임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라도도선생안]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全羅北道 觀察使 篇 62面》

공양왕 1년 11월(병술)

병술일에 공신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고 태조와 심덕부에게 각각 말 1필씩을 주었다. 김저(金佇)¹³⁾가 옥중에서 돌연히 죽었으므로 시가에서 그 시체를 베었다. 그때 김저가 죽기 전에 순군(巡軍)의 관원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

(花山君) 안동인 권균(權鈞: 父 權廉)으로 류혜손과 처남 남매가 된다. 권균의 아들 권홍(權弘)의 처가 김인관의 동서인 이몽정(李蒙正: 星州人)의 사위인 경주인 이덕림의 동생 이학림(李學林: 父 李達尊, 祖 李齊賢)의 딸이며 사위가 이종선(李種善)으로 류혜손의 사위 이종덕(李種德)의 동생이며 이몽정의 아들 이복시(李復始)의 사위가 류향(柳珣: 父 柳惠孫)으로 연결된다. 김인관과 연결된 혼맥이 직 간접으로 연결되며 여말 선초의 혼맥을 엮을 수 있게 된다. 김인관의 장인은 문화류씨 류돈(柳墩: 父 柳陞, 祖 柳璣)으로 큰 처남 류총(柳總)의 처가 권한공(權漢功)의 딸로서 류혜방의 장인 권중달과는 남매간이 되며 처 외조부 채모(蔡謨)는 그의 묘지명에 류혜방의 장인 권중달의 아버지 권한공의 장인이 된다. 둘째 처남 류진(柳鎭)의 처부는 춘천인 박거실(朴居實)로서 이제현(李齊賢)과는 동서지간이 된다. 김인관의 손위 동서인 설봉(薛鳳: 淳昌人)의 가계를 보면 그 아들 설안통(薛安統)의 부인이 전의이씨 이광기(李光起)의 딸이다. 이광기의 또 다른 사위가 윤척(尹陟)으로서 사수록사 류이(柳怡: 父 柳謙, 祖 柳珣)의 장인 윤승례(尹承禮)의 아버지이다. 설봉의 사위가 오준량(吳俊良)으로 오찬(吳讚)의 아들이며 오준량의 사위가 류균(柳均)의 장인 한혜(韓惠)의 아버지 한상경(韓尙敬)으로 연결된다. 바로 아래 동서인 밀산군(密山君) 박린(朴隣)의 아버지 박윤문(朴允文)의 처가 류혜손의 장인 김광철의 아버지 김태현(金台鉉)의 딸이며 그 사위가 권집중(權執中: 父 嗣宗)으로 권중달의 손자이다.

- 13) 김저(金佇): ?~공양왕 1. 고려 무신. 시중(侍中) 최영(崔瑩)의 조카. 우왕 때의 대호군(大護軍)으로 최영을 따라 오랫동안 군에 종사하였다. 1389년(창왕 1)에 최영의 죽당 전부령(前副令) 정득후(鄭得厚)와 함께 여흥(驪興)에 가서 폐왕 우(禑)를 만났다. 이성계(李成桂)를 죽이려는 부탁을 받고 돌아와서 예의판서 곽충보(郭忠輔)와 모의하여 팔관(八關)의 날에 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충보는 겉으로 쾌히 승낙하고는 그 사실을 이성계(李成桂)에게 밀고하여 소위 김저의 옥사가 일어났다. 득후는 잡혀 자결하였고, 저는 하옥되었으며 변안렬(邊安烈), 이림(李琳), 우현보(禹玄寶), 이색(李穡), 우인열(禹仁烈), 왕안덕(王安德), 우홍수(禹洪壽) 등이 연좌로 유배되고, 우(禑)는 강릉(江陵)으로 이치(移置), 창왕(昌王)은 폐하여 강화(江華)로 추방되었다. [문헌] 高麗史.

이 모두 그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이에 문하평리 정지(鄭地), 이거인(李居仁), 전 판후덕부사(前判厚德府事) 류혜손(柳惠孫)과 이을진(李乙珍)¹⁴⁾, 전 밀직 이유인(李惟仁)과 류번(柳蕃), 조호(趙瑚) 및 안주(安柱)¹⁵⁾ 등 27명을 귀양 보내었다. 이는 김저와 공모하였기 때문이다.

丙戌宴功臣賜我

太祖及沈德符馬各一匹.

金佇暴死獄中斬尸于市.時佇辭多連巡軍官故人皆疑之.於是流門下評理鄭地李居仁前判厚德府事柳惠孫李乙珍前密直李惟仁柳蕃趙瑚安柱等二十七人以與佇謀也.

《高麗史 通卷45, 世45卷, 5A葉~4行》

공양왕 4년 7월(계사)

○또 전밀직(前密直) 류혜손(柳惠孫) 군자윤(軍資尹) 강회중(姜淮仲) 개성소윤(開城少尹) 류향(柳珣) 선공부령(繕工副令) 김윤수(金允壽) 호군(護軍) 강여(姜餘)를 외방(外方)에 유배(流配)하였다.

癸巳又流前密直柳惠孫軍資尹姜淮仲開城少尹柳珣繕工副令金允壽護軍姜餘于外

《高麗史 通卷46, 世46卷, 46B葉~6行》

공양왕 원년(대명(大明) 홍무 22년) 11월 갑술

○김저(金佇)가 옥 안에서 갑자기 죽으니 저자(市)에서 송장을 베었다. 김저의 공사(供辭)는 많이 순군부(巡軍府)의 관원에 관련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의심하였다. 이에 문하평리(門下評理) 정지(鄭地) · 이거인(李居仁)¹⁶⁾ · 전 판

14) 이을진(李乙珍) : ?~?. 고려 우왕 때의 장군. 일찍이 통산군(通山君)에 피봉되었다. 1387년(우왕 13) 라오동 정벌의 군사를 보낼 때 팔도 도원수 조전원수(八道都元帥助戰元帥)로 우군도통사 이성계(李成桂)에 예속되어 나갔다가 돌아왔다. 창왕 때 대호군 김저(金佇)의 옥사에 관련한 혐의를 받고 줄곧 이성계 일당의 탄핵을 받아 류혜손(柳惠孫) 등 26명과 같이 유배되었다. [문헌] 高麗史.

15) 안주(安柱) : ?~?. 고려의 무신. 1364년(공민왕 13) 최유(崔濡)가 덕흥군(德興君)을 받들어 군사 1만을 이끌고 의주(義州)를 포위하자 병마사(兵馬使)로서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이를 격파, 1385년(우왕 11) 홍원(洪原)에 왜구(倭寇)가 침입하자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출전했다가 패하였으며, 이해 교주·삭방·강릉도 조전원수(交州朔方江陵道助戰元帥)가 되었다. 1388년의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후 동지밀직(同知密直)으로서 봉주(鳳州)에 귀양, 1389년(공양왕 1) 밀직사(密直使)가 되었으나 김저(金佇)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장류(杖流)되었다. 1392년 조선이 개국(開國)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16) 이거인(李居仁) : ?~1402. 여말 선초의 문신. 호는 난파(蘭坡) 시호는 공절(恭節) 본관은 청주(淸州). 우왕 8년(1382)에 밀직부사, 경상도 도순문사를 지냈고, 공양왕 원년(1389)에 김저의 옥사에 연루 유배, 공양왕 3년 경상도 도관찰사 역임. 조선 개국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使) 등을 지내고 청천백(淸川伯)에 봉하여졌다.

후덕부사(判厚德府事) 류혜손(柳惠孫) · 이을진(李乙珍), 전 밀직(密直) 이유인(李惟仁) · 류번(柳蕃) · 조호(趙瑚)¹⁷⁾ · 안주(安柱) 등 27명을 귀양보냈으니, 김저의 모의에 참여한 까닭이었다. 또 조방흥(趙方興)을 목베었다.

○金佇暴死獄中斬尸于市時佇辭多連巡軍官故人皆疑之於是流門下評理鄭地李居仁前判厚德府事柳惠孫李乙珍前密直李惟仁柳蕃趙瑚安柱等二十七人以與佇謀也又斬趙方興

《高麗史節要 第4卷 328面〈卷34, 22面〉》

태조 원년 7월 28일(정미)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 · 이색(李穡) · 설장수(偁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없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 · 이색 · 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 · 강희백(姜淮伯) · 이승인(李崇仁) · 조호(趙瑚) · 김진양(金震陽) · 이확(李擴) · 이종학(李種學) · 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 · 박흥택(朴興澤) · 김이(金履) · 이내(李來) · 김묘(金畝) · 이종선(李種善) · 우홍강(禹洪康) · 서견(徐甄) · 우홍명(禹洪命) · 김첨(金瞻) · 허응(許膺) · 류향(柳珣) · 이작(李作) · 이신(李申) · 안노생(安魯生) · 권홍(權弘) · 최함(崔咸) · 이감(李敢) · 최관(崔關) · 이사영(李士穎) · 류기(柳沂) · 이첨(李詹) · 우홍부(禹洪富) · 강여(康餘) · 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 · 강시(姜蓍) · 이을진(李乙珍) · 류정현(柳廷顯)¹⁸⁾ · 정우(鄭寓) · 정과(鄭過) · 정도(鄭蹈) · 강인보(姜仁甫) · 안준(安俊) · 이당(李堂) · 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

17) 조호(趙瑚) : ?~1410. 여말 선초의 문신. 우왕 때 판사로서 전토(田土) 문제로 환자(宦者)와 싸우다가 수안군에 장류되고 공양왕 원년에 다시 김저 옥사에 유배되었다. 태조 원년(1392) 예문관 태학사(太學士)가 되고 태종 원년(1401) 검교 참찬의정부사로 있을 때는 지금주사(知錦州事) 안숙(安東)과 노비소유권 문제로 싸우다가 유배되었으며 다시 사취(私取) 문제로 평주(平州)에 유배되었다가 옥사하였다.

18) 류정현(柳廷顯) : 1355~1426. 여말 선초의 문신. 자는 여명(汝明) 호는 월정(月亭) 시호는 정숙(貞肅) 본관은 문화(文化)로 류진(柳鎭 : 父 柳墩)의 아들이다. 음보로 등용되어 사헌규정, 전라도 안렴사, 우대언, 공양왕 때에 좌대언으로 정몽주의 일파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조선 개국후 풀려났다. 태조 3년(1394)에 상주목사, 전서를 지냈고 태종 10년(1410)에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삼군도통사(三軍都統使)로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고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가 병으로 치사(致仕)하였다.

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¹⁹·이윤굉(李允紘)·류혜손(柳惠孫)·안원(安瑗)²⁰·강희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瑑)·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鄉)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포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의 뜻에 맞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획 말절(條畫末節)이라 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이씨)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丁未有司上言禹玄寶李穡僕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結黨謀亂首生厲階宜置於法以戒後來予尚憫之俾保首領其禹玄寶李穡僕長壽等收其職貼廢爲庶人徙諸海上終身不齒禹洪壽姜淮伯李崇仁趙瑚金震陽李擴李種學禹洪得等收其職貼決杖一百流于遐方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珣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成李敢崔關李士穎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收其職貼決杖七十流于遐方金南得姜著李乙珍柳廷顯鄭寓鄭過鄭蹈姜仁甫安俊李堂李室等收其職貼放置遐方成石璘李允紘柳惠孫安

19) 성석린(成石璘) : 1338~1423. 여말 선초의 문신.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 시호는 문경(文景) 본관은 창녕(昌寧) 문과에 급제. 공민왕 때에 전리총랑, 성균사성, 지신사(知申事) 역임. 우왕 10년(1384) 밀직제학 때에 조전원수로 승천부(昇天府)의 왜구 격퇴. 후에 이성계 등과 함께 창왕(昌王)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움. 조선개국 후에 좌정승, 영의정을 지냈으며 창녕부 원군에 봉하여졌다. 시사(詩詞)에 뛰어났고 초서(草書)를 잘 썼다. 저서에 독곡집(獨谷集)이 있다. 성여완(成汝完)의 큰 아들로 석용(石瑑) 석연(石琰)은 아우이다.

20) 안원(安瑗) : 1346~1411. 여말 선초의 문신. 처음 이름은 정(定) 시호는 경질(景質) 본관은 순흥(順興). 안향(安珦)의 5대손이며 류이(柳怡)의 장인 윤승례의 아버지 윤척(尹陟)의 사위이다. 문과에 급제 공민왕 때에 공조전서, 공양왕 2년(1390)에 형조판서 후 지신사(知申事)로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 조선개국 초에 우군 동지총제로 사은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태종 때에 경상도 도관찰사 대사헌 등을 거쳐 판 한성부사(判漢城府事) 개성우후를 역임하였다.

瑗姜淮中申允弼成石瑑金五倫鄭熙等各於本鄉安置其餘凡有犯罪者除一罪常宥不原外二罪已下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已發覺未發覺咸宥除之教書鄭道傳所製道傳與禹玄寶有宿怨凡可以陷禹氏一門者無所不圖未稱其情至是以十餘人爲援例謀置極刑以爲條畫末節以進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驚駭曰此輩何至極刑宜皆勿論道傳等請減等科罪上曰若韓山君禹玄寶僕長壽雖減等亦不可加刑慎勿再言道傳等再請餘人杖決上謂受杖者不至於死不強止之

《太祖實錄 卷第1, 45面》

목은시고 권이십일(牧隱詩藁 卷二十一)

어제 류판서의 연석에 갔는데, 대개 그 자제와 사위들이 잔치를 연 것은 그가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것을 나중에 위로하기 위함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 수를 읊어서 얻다. 혜손이다.

昨赴柳判書席上蓋其子壻輩設燕追慰其見謫而歸也曉起吟得一首 惠孫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74 B》 《晉州柳氏文集 6面》

목은시고 권이십팔(牧隱詩藁 卷二十八)

삼월 십이일에 류후덕이 그의 막내 아들 찬을 보내어 남경 박씨 집안에 장가 들도록 했다. 내가 천수사까지 나가 전별하고 집에 돌아오니 피곤이 심하여 이 한편을 읊었다.

三月 十二日 柳厚德送季子瓚(瓚)入贅南京朴氏家 僕出餞天水寺 歸而困甚 吟成一首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05 B》 《晉州柳氏文集 10面》

목은시고 권삼십이(牧隱詩藁 卷三十二)

강남에서 돌아오는 사신 김사재를 찾아 가다가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정침서는 만나 보았고 김추상은 만나지 못하고 이추상은 만나 보았다. 마정까지 가서 이상과 삼재를 만나보고 돌아오는 길에 종덕의 새로 지은 정자에서 한참 쉬었는데 그의 장인 류공이 왔기에 종일토록 담소하다가 돌아왔다.

歷訪江南廻還使臣金四宰 路阻不果 鄭僉書面謁 金樞相不遇 李樞相面謁 因至馬井謁二相三宰 歸憩于種德新亭之上 其外舅柳公又來 談笑終日而歸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63 A》 《晉州柳氏文集 11面》

목은시고 권삼십오(牧隱詩藁 卷三十五)

임진마을 김귀련 판사의 별장에서 하룻밤 잤다.
宿臨津金龜聯判事野庄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511 B》《晉州柳氏文集 11面》

목은시고 권삼십사(牧隱詩藁 卷三十四)

어제 김판사 귀련 댁에서 매화를 구경하고 그 다음 날 세편의 시를 써 부쳤는데 이는 모두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昨賞梅金判事龜聯宅 明日寄呈三首 皆實錄也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95 C》《晉州柳氏文集 11面》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학문(學問)과 학파(學派)

2. 牧隱家學의 成立

(1) 종덕(種德)(1350, 충정왕 2~1388, 우왕 14)

종덕은 목은(牧隱)의 장자(長子)로, 자(字)는 득성(得性) 또는 치구(致久)이며, 호(號)는 현암(玄巖) 또는 삼당(三堂)이라 하기도 하고, 현당(玄堂)이라 하기도 하였다. 공민왕 18년(136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어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우왕 초에 승선(承宣)을 제수받았다. 이때 그의 동년들이 모여 이를 축하하고 있는데 이색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기쁨을 같이하고 있다.

나의 아들이 승선을 배수받으니	我家豚犬拜承宣
상사(上舍)의 동년들이 축하연을 베풀었네	上舍同年設賀筵
풍성한 안주 가득한 상에는 술잔이 쌓여 있고	雋味滿盤堆錯落
늙은 나도 벽에 격하여 맛있는 생선을 포식하네	老生隔壁飽芳鮮
장막을 걷고 나가려다 염치없이 다시 앉았네	褰帷將出羞還止
술잔을 들어 처음 맛보니 기쁨을 가눌 수 없구나	舉酒初嘗喜欲顛
원하노니 제공들은 효우(孝友)를 돈독히 하고	但願諸公敦孝友
이 마음 충(忠)으로 옮겨 그 지극함이 하늘에 이르도록 하라	移忠贊化格皇天

그는 효행(孝行)이 두터워 목은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그의 부인은 류씨(柳氏) 또한 효행이 빼어났다. 목은은 이들의 효행을 기려
아름다운 아들과 며느리, 화락함이 거문고와 같구나
佳兒佳婦翁如琴

아침 저녁으로 봉양하길 잠시도 쉬지 않네	春場晨昏惜寸陰
아름다운 술, 보고(寶庫)에서 빌어 오고	美酒乞來從寶庫
맛좋은 안주 구하고자 운림(雲林)으로 향하네	嘉肴求得向雲林
얼음 속의 물고기와 겨울의 죽순은 하늘의 배품을 입은 것이며	永魚冬筍天機好
언덕에 앉은 봉황과 아름다운 곡식은 임금의 덕이 깊음이로다	岡鳳嘉火帝德深
천기(天機)와 제덕(帝德)의 감응이 분명하니 많고 적고가 있을손가	感應分明無小大
술이 얼큰하니 다시 내 마음을 살피노라	半酣時復檢吾心

라는 시를 지어 그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아들은 4명인데 맹유(孟雋)·맹균(孟詢)·맹준(孟峻)·맹진(孟珍)이고, 딸은 2명인데 장녀는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낸 서녕군(瑞寧君) 류후(柳厚)의 아들인 기(沂)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목은의 문생(門生)인 하륜(河崧)의 아들 구(久)에게 출가하였다.

《第3節 牧隱家의 學派 51面》《著者 申千湜：1998年 4月 30日 發行》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정평공(靖平公) 류 구(柳 珣)

충숙왕 복위 4년(1335)~태조 7년(1398)

시호는 정평(靖平)이며 봉호는 진천군(晉川君)으로 고려 충숙왕 후 복위 4년(1335)에 익양공 류혜방(柳惠芳)의 맏 아들로 태어났다.

공민왕 9년(1335)에 정몽주와 함께 문과에 합격하였다. 홍건적의 난으로 개경(開京)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파천하는 국가 위기와 혼란 와중에 임박과 함께 흩어지고 방치된 전적 등 국가기록 문서를 수집, 보존하고 홍왕사의 난 평정에 공헌을 하고 공민왕 12년에 최영(崔瑩) 윤척(尹陟)²¹⁾ 변안렬(邊安烈) 이인임(李仁任) 등과 함께 도관정랑(都官正郎)으로 개경수복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공민왕 23년(1373)과 24년에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와 좌사의대부 역임. 우왕 6년(1380) 한양병마사겸 한양윤 공양왕 1년(1389) 정몽주 후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2년에 양광도 도관찰사 태조 3년 정당문학 태학사(太學士) 태조 4년 정조 진표사(正朝進表使)로 표전문(表箋文) 사건으로 1년 이상 억류, 병약한 몸으로 돌아와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를 끝으로 태조 7년 1월 15일 하세하였다.

21) 윤척(尹陟) : ?~1384. 본관은 파평(坡平). 충정왕 2년(1350)에 우부대언. 공민왕 12년(1363) 군부판서로서 개경수복 2등공신. 우왕 때에 영평군(鈴平君)에 봉하여졌다. 공의 아들 판도판서 윤승례(尹承禮)의 딸이 류구(柳珣)의 장손자 류이(柳怡)와 혼인하므로서 사돈관계가 된다.

졸기(卒記)에 부지런하고 검약하며 겉치레에 힘쓰지 않았다(勤儉不務外飾) 하였으며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공의 배위는 해주인(海州人) 오찬(吳瓚: 父 吳漢卿)의 외손녀인 이씨(李氏)로 슬하에 역시 세종조에 청백리에 녹선된 형조참의 류겸(柳謙)이 있다.

공민왕 9년 10월

政堂文學金得培 樞密院直學士韓方信 取進士 賜乙科三人 丙科七人 同進士二十三人及第

乙科 三人

國子進士 鄭夢周(延日人), 國子進士 林樸(吉安人), 國子進士 白君瑛(平山人)

丙科 七人

服膺齋生 申仁甫(鵝州人), 國進修職郎樞密院堂后官 金輅(樂安人), 太學進士 金質(慶州人), 慶德齋生 文益漸(江城人), 新進士前保勝散員 朴啓陽(密陽人), 國子進士 李遵(慶州人), 國進宣德郎義盈庫副使 金君鼎(善州人), 國子進士都評議知印 宋允卿(延安人)

同進士 二十三人

國子進士宣德郎尚衣奉御 李仁敏(京山人), 四門進士內侍直長同正 李子庸(永州人), 國子進士肅雍府行首別將 金潁(清道人), 國子進士 鄭天驕(瑞山人), 國子進士前倉庫都監判官 許璉(陽川人), 嘉陽直 金禧(清道人), 國子進士 李存吾(慶州人), 新進士 徐均衡(大丘人), 新進士 柳源(晉州人), 國進宣德郎監察御史 李仁範(德水人), 國子進士 郭樞(清州人), 國子進士 尹德麟(咸安人), 鄉貢進士 金承遠(定州人), 新進士 李士渭(龍駒人), 大學進士 金慶生(尙州人), 令同正 金石諧(咸昌人), 明經進士 黃元哲, 太史監候 李乙, 太史監候 柳珣(晉州人)²²⁾

공민왕 12년(1363) 3월(임인)

또 경성(京城)을 수복(收復)한 공(功)을 녹적(錄籍)하여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 황상(黃裳) 정당문학(政堂文學) 한방신(韓方信) 지도첨의(知都僉議) 안우경(安遇慶)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이순(李珣) 밀직사(密直使) 최영(崔瑩)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이귀수(李龜壽) 밀직부사(密直副使) 우제(禹禪) 류연(柳淵) 한휘(韓暉) 전밀직부사(前密直副使) 허유(許猷) 개성윤(開城尹) 양백익(梁伯益) 첨의평리(僉議評理) 이인임(李仁任) 전리판서(典理判書) 오인택(吳仁澤) 김귀(金貴) 예의판서(禮儀判書) 홍선(洪瑄) 전공판서(典工判書) 조희고(趙希古) 판도판서(版圖判書) 김한진(金漢眞) 전판도판서(前版圖判書) 김원명(金元命) 전전공판서(前典

22) 「海東榜目」과 「登科錄」에만 수록되어 있다.

工判書) 김한귀(金漢貴) 전판각문사(前判閣門事) 김득제(金得齊) 좌상시(左常侍)
 김횡(金鉉)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권장수(權長壽)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변안
 렬(邊安烈)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이태조(李太祖) 휘(諱) 좌대언(左代言) 류계조
 (柳繼祖)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박춘(朴椿) 전응양군상호군(前鷹揚軍上護
 軍) 홍사우(洪師禹)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지용수(池龍壽) 판사복시사(判司僕寺
 事) 박원택(朴元澤) 전상호군(前上護軍) 경보(慶補)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김지
 서(金之瑞) 대호군(大護軍) 임견미(林堅味) 나광만(羅光滿) 조사민(趙思敏) 목충
 (睦忠) 전대호군(前大護軍) 이원림(李元琳) 김양검(金良劔) 김아적(金阿赤) 정윤
 (正尹) 노철(魯哲) 전객령(典客令) 전보(全甫) 호군(護軍) 김세견(金世堅) 강영
 (康永) 장용(張龍) 오육화(吳六和) 전호군(前護軍) 유부(劉富) 조금강(曹金剛) 친
 종(親從) 호군(護軍) 김세덕(金世德) 판도총랑(版圖摠郎) 박양길(朴良吉) 전공정
 랑(典工正郎) 하을지(河乙祉) 전지문주사(前知文州事) 박인계(朴仁桂) 중랑장(中
 郎將) 박윤청(朴允淸) 환자(宦者)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김현(金玄) 온양부원군
 (溫陽府院君) 방절(方節)로 일등공신(一等功臣)을 삼고 연안군(延安君) 송경(宋
 卿) 전밀직부사(前密直副使) 김광조(金光祚) 군부판서(軍簿判書) 윤척(尹陟) 판서
 운관사(判書雲觀事) 우길생(禹吉生)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장백안(張伯顔) 위위
 윤(衛尉尹) 염흥방(廉興邦) 광주목사(廣州牧使) 송양우(宋良遇) 한양윤(漢陽尹)
 최안소(崔安沼) 안변부사(安邊府使) 이방(李昉) 전판내부시사(前判內府寺事) 민후
 (閔翊) 전판전농시사(前判典農寺事) 전이도(全以道) 상호군(上護軍) 김유(金庾)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이선(李善) 전안주목사(前安州牧使) 정문우(鄭文祐) 전판
 선공시사(前判繕工寺事) 임완(林完) 전판전의시사(前判典醫寺事) 석말(石抹) 천영
 (天英) 대호군(大護軍) 신렴(辛廉) 이용장(李用藏) 이득림(李得霖) 전대호군(前大
 護軍) 이화(李華) 마천린(馬天麟) 김광부(金光富) 허서(許瑞) 변광수(邊光秀) 전
 전의령(前典儀令) 김광우(金光雨) 해주목사(海州牧使) 김계생(金桂生) 소부윤(小
 府尹) 이광대(李廣大) 안변부사(安邊府使) 김언룡(金彦龍) 판전의시사(判典醫寺
 事) 최영기(崔英氣) 내부령(內府令) 이원계(李元桂) 전군기감(前軍器監) 한방언
 (韓邦彦) 소부윤(小府尹) 김장주(金長柱) 호군(護軍) 조인벽(趙仁璧) 김윤정(金允
 精) 전종부부령(前宗簿副令) 강원보(康元甫) 도관정랑(都官正郎) 류구(柳珣) 상주
 관관(尙州判官) 최중청(崔仲淸) 중랑장(中郎將) 신지혁(辛之奕) 윤선(尹善) 전의
 주부(典儀注簿) 장하(張夏) 지함주사(知咸州事) 박인천(朴仁葳) 전호군(前護軍)
 한중명(韓仲明) 조군옥(趙君玉) 김사혁(金斯革) 군기소감(軍器少監) 이방년(李芳
 年) 호군(護軍) 홍구좌(洪久佐) 전리총랑(典理摠郎) 하원(河源) 전성균사예(前成
 均司藝) 김수(金銖) 서운부정(書雲副正) 정거길(鄭居吉) 침원령(寢園令) 이자수

(李子修) 중랑장(中郎將) 조평(趙平) 이자분(李子芬) 전봉차령(前奉車令) 도천우(都千遇)로 이등공신(二等功臣)을 삼았다. 일등(一等)은 벽상(壁上)에 도형(圖形)하고 부(父) 모(母) 처(妻)는 삼등(三等)을 뛰어 작(爵)을 봉(封)하며 그 아들 1인에 七品을 베풀주되 만약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생질(甥姪) 여서(女婿)의 1인에게 八品을 제수·배(除授·拜)하고 구사(驅史) 5인 진배과령(眞拜把領) 7인에게 초입사(初入仕)를 허(許)하고 자손은 음직(蔭職)에 서용(敍用)하며 전(田) 100結 노비(奴婢) 10口를 사(賜)하고 二等은 부 모 처에게 三等을 뛰어 봉작(封爵)하고 그 아들 1인에게 七品을 베풀주고 만약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생질 여서(女婿)의 1인에게 八品을 제수하고 구사(驅史) 3인 진배과령(眞拜把領) 5인에게 초입사(初入仕)를 허(許)하며 자손은 음직에 서용하고 田 50結 노비 5口를 사(賜)하였다.

又錄收復京城功以贊成事商議黃裳政堂文學韓方信知都僉議安遇慶判密直司事李珣密直使崔瑩知密直司事李龜壽密直副使禹磾柳淵韓暉前密直副使許猷開城尹梁伯益僉議評理李仁任典理判書吳仁澤金貴禮儀判書洪瑄典工判書趙希古版圖判書金漢眞前版圖判書金元命前典工判書金漢貴前判閣門事金得齊左常侍金鉉判司宰寺事權長壽判內府寺事邊安烈判宗簿寺事

李太祖諱左代言柳繼祖鷹揚軍上護軍朴椿前鷹揚軍上護軍洪師禹判宗簿寺事池龍壽判司僕寺事朴元澤前上護軍慶補判司宰寺事金之瑞大護軍林堅味羅光滿趙思敏睦忠前大護軍李元琳金良劔金阿赤正尹魯哲典客令全甫護軍金世堅康永張龍吳六和前護軍劉富曹金剛親從護軍金世德版圖摠郎朴良吉典工正郎河乙沚前知文州事朴仁桂中郎將朴允清宦者延城府院君金玄溫陽府院君方節爲一等功臣延安君宋卿前密直副使金光祚軍簿判書尹陟判書雲觀事禹吉生判典客寺事張伯顏衛尉尹廉興邦廣州牧使宋良遇漢陽尹崔安沼安邊府使李昉前判內府寺事閔珣前判典農寺事全以道上護軍金庾判內府寺事李善前安州牧使鄭文祐前判繕工寺事林完前判典醫寺事石抹天英大護軍辛廉李用藏李得霖前大護軍李華馬天麟金光富許瑞邊光秀前典儀令金光雨海州牧使金桂生小府尹李廣大安邊府使金彦龍判典醫寺事崔英氣內府令李元桂前軍器監韓邦彥小府尹金長柱護軍趙仁璧金允精前宗簿副令康元甫都官正郎柳珣尙州判官崔仲清中郎將辛之奕尹善典儀注簿張夏知咸州事朴仁藏前護軍韓仲明趙君玉金斯革軍器少監李芳年護軍洪久佐典理摠郎河源前成均司藝金銖書雲副正鄭居吉寢園令李子修中郎將趙平李子芬前奉車令都千遇爲二等功臣一等圖形壁上父母妻超三等封爵官其子一人七品若無子則甥姪女婿一人拜八品驅史五人眞拜把領七人許初入仕子孫蔭職敍用賜田一百結奴婢一十口二等父母妻超三等封爵官其子一人七品若無子則甥姪女婿一人拜八品驅史三人眞拜把領五人許初入仕子孫蔭職敍用賜田五十結奴婢五口

공양왕 원년(1389) 12월(무신)

무신(戊申)에 사재부령(司宰副令) 윤희종(尹會宗)이 상소하여 우 창을 죽이기를 청하거늘 왕이 여러 재상(宰相)에게 역문(歷問)하니 모두 묵연(默然)하였는데 我太祖(李成桂)가 홀로 말하기를 「이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강릉에 안치(安置)하고 조정(明)에 알렸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신 등이 있으며 우가 설사 난을 일으키고자 한들 무슨 근심이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우는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마땅히 그 자급(自及)할 것이라」하고 지신사(知申事) 이행(李行)에게 명하여 교지를 내리고 정당문학(政堂文學) 서균형(徐鈞衡)을 강릉에 보내어 우를 베고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류구(柳珣)를 강화에 보내어 창을 베게 하였다.

戊申司宰副令尹會宗上疏請誅禍昌王歷問諸宰相皆默然我太祖獨曰此事不易既以安置江陵聞于朝廷不可中變且臣等在禍雖欲爲亂何憂哉王曰禍多殺無辜宜其自及命知申事李行下旨遣政堂文學徐鈞衡于江陵誅禍藝文館大提學柳珣于江華誅昌

《高麗史 通卷45, 世45卷, 6B葉~9行》

공양왕 2년(1390) 2월(임술)

임술(壬戌)에 류구(柳珣)로 양광도 도관찰사(楊廣道都觀察使)를 삼고 조운홀(趙云仵)로 계림윤(鷄林尹)을 삼고 최단(崔鄴)으로 한양윤(漢陽尹)을 삼고 황보림(皇甫琳)으로 평양윤(平壤尹)을 삼았다.

壬戌以柳珣爲楊廣道都觀察使趙云仵爲鷄林尹崔鄴爲漢陽尹皇甫琳爲平壤尹

《高麗史 通卷45, 世45卷, 16B葉~2行》

고려 공양왕 2년(1390) 9월(경술)

경술(庚戌)에 어가(御駕)가 한양(漢陽)에 이르니 양광도 도관찰사(楊廣道都觀察使) 류구(柳珣)가 채붕(彩棚)을 맺고 백희(百戲)를 진(陳)하여 맞이하려 하거늘 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만 두게 하고 이에 입어(入御)하였다.

庚戌駕至漢陽楊廣道都觀察使柳珣結彩棚陳百戲以迎王先遣人罷之乃入

《高麗史 通卷45, 世45卷, 33A葉~7行》

고려 공양왕 2년(1390) 10월(정묘)

정묘(丁卯)에 간관(諫官)이 류구(柳珣)가 백성에게 후렴(厚斂)하여 힘써 미열(媚悅: 아첨하여 환심(歡心)을 사는 것)을 구한다고 탄핵하니 이를 파면하고 서균형(徐鈞衡)으로써 가름(代)하였다.

丁卯諫官劾柳珣厚斂於民務求媚悅罷之以徐鈞衡代之 《高麗史 通卷45, 世45卷, 33B葉~7行》

고려 공양왕 3년(1391) 9월(정유)

정유(丁酉)에 我太祖(李成桂)가 사직하기를 빌매 제(弟) 우(瑀)로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삼고 아태조(我太祖)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고 심덕부(沈德符)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삼고 정지(鄭地)로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를 삼고 류구(柳珣)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삼고 정도전(鄭道傳)으로 평양부윤(平壤府尹)을 삼고 이거인(李居仁)으로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를 삼고 이지(李至)로 강릉교주도 도관찰사(江陵交州道都觀察使)를 삼고 하륜(河崙)으로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를 삼고 변옥란(卞玉蘭)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삼고 우홍득(禹洪得)으로 전교령(典校令)을 삼고 정희(鄭熙)로 사헌집의(司憲執義)를 삼았다.

丁酉我

太祖乞辭以弟瑀領三司事我

太祖判門下府事沈德符爲門下侍中鄭地判開城府事柳珣爲藝文館大提學鄭道傳爲平壤府尹李居仁爲慶尙道都觀察使李至爲江陵交州道都觀察使河崙爲全羅道都觀察使卞玉蘭爲吏曹判書禹洪得爲典校令鄭熙爲司憲執義 《高麗史 通卷46, 世46卷, 24B葉~4行》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안축(安軸)²³⁾

[안종원(安宗源)²⁴⁾, 안보(安輔)의 기사 첨부]

23) 안축(安軸) : 1287~1348.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문신.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순흥(順興). 사헌 규정(司憲糾正). 단양부주부(丹陽府注簿) 등을 지내고, 충숙왕(忠肅王) 11년(1324)에 원(元)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하였다. 충목왕 때 관정치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어 양전(量田)에 참여하였고,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개찬(改撰)하였다. 충렬·충선·충숙왕의 실록(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관동별곡(關東別曲), 죽계별곡(竹溪別曲)을 지었고, 문명(文名)이 높았다. 뒤에 흥녕군(興寧君)에 봉하여졌고, 순흥(順興)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봉향(奉享)되었다. 저서에 근재집(謹齋集)이 있다. 《高麗史 109, 安軸傳》 《稼亭文集》

24) 안종원(安宗源) : 1324~1394. 여말 선초의 문신. 자는 사청(嗣淸). 호는 쌍청당(雙淸堂).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순흥(順興). 축(軸)의 아들. 문과에 급제. 공민왕(恭愍王) 때 시어사(侍御史). 전법 총랑(典法摠郎) 등을 역임하고, 우왕(禑王) 때에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 대사헌 등을 거쳐 판승경부사(判崇敬府事)가 되어 흥녕군(興寧君)에 봉하여졌고, 순성보조공신(純誠輔祚功臣)과 순성익대보리공신(純誠翼戴輔理功臣)이 되었다. 공양왕(恭讓王) 때에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고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으며, 조선개국 후에 영삼사사(領三司事)를 거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지냈다. 《高麗史 109》〈朝鮮太祖實錄〉〈陽村集〉〈國朝人物考 11〉〈新增東國輿地勝覽〉.

안축(安軸)의 자는 당지(當之)이니 복주 흥녕현(福州興寧縣) 사람이다. 아버지 안석(安碩)은 현(縣)의 아전으로서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였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다.

안축(安軸)은 나서부터 총명(聰明)하였으며 학업에 노력하여 금주 사록(金州司錄)이 되고 사한(史翰)으로 조동되었다가 사헌 규정(司憲糾正)을 지냈다. 충숙왕(忠肅王) 11년에 원나라 제과(制科)에 합격하여 요양로 개주 판관(遼陽路蓋州判官) 벼슬을 받았다.[중략]

신우 왕(辛禡王)이 즉위한 후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류구(柳珣), 문하사인 김도(門下舍人金濤), 기거사인 박상진(起居舍人朴尙眞), 헌납 임효선(獻納林孝先), 정언 노숭(正言盧嵩), 민유훤(閔由諄) 등과 더불어 도당(都堂)에 상서하기를,

“환자(宦者)가 국가의 화근으로 되는 것은 진나라 조고(趙高)²⁵⁾로부터 내려오면서 역력히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충선왕(忠宣王)이 서장(西藏)으로 귀양가고 충혜왕(忠惠王)이 악양(岳陽)으로 갔던 것이 모두 백안독고사(伯顏禿古思)와 고룡보(龍普)의 소위였고 전날에 있는 최만생(崔萬生)의 대역(大逆)²⁶⁾ 사건은 그 극도에 달한 것이었다.

이제 임금이 나이 미성하니만큼 경험이 많고 사리를 잘 아는 노련한 사람을 친근히 하여 좋은 품성을 배양해야 하며 환자(宦者)가 조석으로 붙어 있어 잘못 인도하여 나라 일을 그르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현재 혼전(魂殿)에는 이미 도감(都監)이 있어서 제때에 조석 공양(供養)을 하고 있으니 환자(宦者)들이 어지럽게 모여들어 세력 다툼질을 하는 자리로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리하여 궁내에는 충직한 자 10여 사람을 선택하여 소지를 시키는 정도에 그치게 하면 적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 재상의 심심한 고려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상금을 주며 또 2중으로 봉급을 줌으로써 나라 경비를 허비하는 현상이 없게 하며 모든 쓸데없는 인원을 정리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우환이 반복됨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때 우왕(禡王)의 나이 미성하므로 일체 나라 일이 재상(宰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안종원(安宗源) 등이 이와 같은 제의를 하여 응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바랐으나 재상(宰相)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을 거쳐 우상시(右常侍)로 되었다가 대사헌(大司憲)으로

25) 조고(趙高) : 진(秦)나라 때의 환자(宦者). 시황(始皇)이 사구(沙丘)에서 붕거(崩去)하자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조(詔)를 고쳐서 장자(長子) 부소(扶蘇)에게 죽음을 내리고 二世 호해(胡亥)를 세움. 이사(李斯)를 죽이고 승상(丞相)이 됨. 일의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모두 고(高)가 결정함. 드디어 二世를 죽이고 자영(子嬰)을 세움. 자영(子嬰)이 즉위하여 고(高)를 죽주(族誅)함.

26) 최만생(崔萬生)의 대역(大逆) : 공민왕(恭愍王)은 자제위(子弟衛)의 홍륜(洪倫)이 익비(益妃)를 범하여 임신(妊娠)시킨 사실을 은폐시키고자 이를 밀고(密告)한 최만생(崔萬生)을 죽이려다 오히려 그에게 암살(暗殺)당한(1374) 사실을 말함.

진급하였다. 이때 집의 김승득(金承得) 등이 지윤(池胤)의 뜻에 영합하여 임박(林樸)을 처단할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안종원(安宗源)은 그 세력을 두려워 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판승경 부사(判崇敬府事)로 옮겼다가 얼마 안가서 흥녕군(興寧君)의 봉호(封號)를 받고 곧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다시 대사헌(大司憲)을 겸임하고 순성 보조 공신(純誠輔祚功臣) 칭호를 받았다.

동료들과 더불어 상서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환시(宦寺)들이 함부로 정권을 좌우하면 반드시 나라를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선대의 임금들은 신하를 선택하여 덕행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고 환관(宦官)은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게 하여 다만 궁궐을 청소시키는 데 그쳤으며 그들에게 문무관의 벼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왕(先王)이 즉위한 초기까지 역시 예전의 제도는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환시(宦寺)들이 기회를 타서 권세를 잡고 많은 당파를 만들어 마침내 최만생(崔萬生)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 때에 와서 이득분(李得芬)은 선대의 미미한 공로로 인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고 권세를 희롱하여 뇌물을 받으며 함부로 신하들을 참소중상하므로 전체 관리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모두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하의 영명한 판단으로 그를 먼곳으로 귀양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당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벼슬자리를 함부로 차지하고 국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화가 우려됩니다. 선대의 제도를 본받아 환관은 증명하고 영리한 자를 10명이 넘지 않는 정도를 선택하여 궁중에서 심부름을 시키게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 내보내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安軸 宗源 輔

安軸字當之福州興寧縣人父碩以縣吏登第隱不仕軸生而穎悟力學工文中第調金州司錄選補史翰除司憲糾正忠肅十一年中元朝制科授遼陽路蓋州判官[中略]

辛禍卽位與左司議柳珣門下舍人金濤起居舍人朴尙眞獻納林孝先正言盧嵩閔由誼上書都堂曰宦者爲患趙高而下班班可見我忠宣王吐蕃之辱忠惠王岳陽之禍皆由伯顏禿古思龍普之所爲也至於前日萬生大逆極矣今主上幼冲當親老成以養德性不可復令宦者朝夕狎昵壅蔽聰明以至誤國至於魂殿既有都監敬供朝夕不可復令宦者紛然聚會以基固寵之地伏惟諸相國爲國深慮擇其忠謹者十餘人以備宮內掃除之役其別賜及祿俸毋得疊受以費國用其餘徒黨各令從便毋使復爲國家之患時禍年幼政出宰相故宗源等獻書異其處置宰相不以爲慮歷成均大司成右常侍進大司憲時執義金承得等希池胤意請誅林樸宗源畏其勢莫敢言改判崇敬府事未幾封興寧君尋以門下評理復兼大司憲賜純誠補祚功臣號與同僚上疏言自古宦寺擅權必至誤國故我祖宗擇臣僚有德行者給事左右宦官不過數人以備宮闈洒掃未嘗授以

文武官爵先王即位之初亦遵古制其後宦寺夤緣乘閒用事廣樹朋黨卒有萬生之禍可勝嘆哉逮至殿下李得芬但以先代微勞位至贊成招權納賄讒毀朝臣中外臣庶莫不切齒幸賴睿斷遠竄于外然其徒黨尚多濫受官爵虛費祿俸無補國家將來之禍實爲可慮請依祖宗舊制擇聰敏者不過十人以備宮內使令餘悉罷黜

《高麗史 通卷109, 傳22卷, 23B葉~9行》

임박(林樸)

임박(林樸)의 자(字)는 원질(元質)이요 안동부(安東府)의 길안현인(吉安縣人)이니 공민왕(恭愍王) 9년에 등제(登第)하여 개성(開城) 참군(參軍)에 뽑혔다. 이듬해에 홍적(紅賊)이 경성(京城)을 함락(陷落)하매 원수(元帥) 김득배(金得培)가 박이 병법(兵法)에 정호(精曉)하므로 막하(幕下)에 두고 그와 더불어 주화(籌畫)하였고 남천시(南遷時)에는 춘추사적(春秋史籍) 진교제향(典校祭享)의 의범(儀範)을 땅을 파고 묻었다가 적(賊)이 평정됨에 미처 발굴(發掘)하였는데 군졸(軍卒)이 많이 만기(慢棄)하고 거두지 아니하거늘 박이 류구(柳珣)와 이구(李玖)로 더불어 말하기를 「국전(國典)은 가히 연멸(煙滅)케 할 수 없다」하고 감검수괄(監檢收括)하니 얻은 것이 열에 둘뿐이었다. 12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이공수(李公遂)를 따라 원(元)에 갔는데 그때 덕흥군(德興君)이 제(帝)에게 무주(誣奏)하기를 「고려왕(高麗王)이 홍적에게 죽었다」 하므로 제가 덕흥(德興)으로 왕을 삼거늘 박이 공수와 더불어 주(奏)하기를 「우리 임금이 홍적을 파(破)하였으며 지금도 오히려 무恙(無恙)하시다」고 하였으나 제가 박 등으로 하여금 덕흥을 받들어 나라로 가게 하거늘 박 등이 다시 주하기를 「신 등이 만일 승왕(僧王: 德興君)을 따르면 부인(婦人)이 그 지아비를 배반(背叛)하는 것과 닮이 없습니다」하니 제가 말하기를 「너희의 뜻에 맡긴다」고 하였다. 덕흥이 박에게 이르기를 「네가 만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죽어도 또한 무익(無益)하리라」하고 진리총랑(典理摠郎)을 제수(除授)하여서 유인(誘引)하였으나 본조(本朝)의 기노(耆老)와 백관(百官)이 성(省)에 아뢰어 변명하려 하는데 박이 가만히 다른 뜻을 품고 홀로 서명(署名)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주참(誅斬)하여 써 전형(典刑)을 바루소서 하니 윤승(允升)이 궁중(宮中)으로부터 그 서(書)를 내리고 체복(體覆) 손경생(孫慶生)을 보내어 수갑을 채워 전법(典法)에 송치(送致)하매 곤장 100을 쳐서 무안(務安)에 유배시켰는데 중로(中路)에서 밟아(蹋) 죽었다. 아들은 가(稼)이다.

林樸

林樸字元質安東府吉安縣人恭愍九年登第調開城參軍明年紅賊陷京元帥金得培以樸精曉兵法置幕下與之籌畫南遷時春秋史籍典校祭享儀軌掘地以藏及賊平發之軍卒多慢棄不收樸與柳珣李玖以爲國典不可使湮滅監檢收括得十之二十二年以書狀官從李公遂如元時德

興君誣奏帝曰高麗王薨於紅賊帝以德興爲王樸與公遂奏曰吾王破紅賊今尙無恙帝令樸等奉德興之國樸等復奏曰臣等若從僧王無異於婦人之背其夫也帝曰任從汝志德興謂樸曰爾若不從我死且無益除典理摠郎以誘之本朝耆老百官呈省辨明樸陰懷異志獨不署名請誅之以正典刑允升從中下其書遣體覆孫慶生鎖致典法杖百流務安中路蹋殺之子稼

《高麗史 通卷111, 傳24卷, 42A葉~3行》

이수산(李壽山) 엽(恬)

이수산(李壽山)은 수안군인(遂安郡人)이다. 충혜왕(忠惠王) 시(時)에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제배(除拜)하고 추성익대좌명공신호(推誠翊戴佐命功臣號)를 사(賜)하고 춘성군(春城君)을 봉(封)하였다. 공민왕(恭愍王) 원년(元年)에 조일신(趙日新)이 난리를 꾸미려 할새 수산을 꺼려서 그 당류(黨類)를 보내 살해하려하거늘 수산이 숨어서 면하였다. 뒤에 채하중(蔡河中)과 더불어 함께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고 이어 승진(陞進)하여 찬성사(贊成事)가 되었으며 또 행정랑중(行省郎中)이 되었다. 기씨(奇氏)들이 패(敗)하매 당(黨)으로써 외방(外方)에 유배되었거늘 불러 수춘군(壽春君)을 봉하였고 나아가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되어 여진(女眞)과의 강역(疆域)을 정하였다. 재천(再遷)하여 삼사우사(三司右使)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고 추충보절익대좌리공신호(推忠保節翊戴佐理功臣號)를 가(加)하였다. 몽고(蒙古)의 영인(伶人) 양제(梁濟)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당(都堂)에 나와서 낙(樂)을 주(奏)할 새 수산이 말하기를 「낙이 있으니 가히 노래가 없을 수 없다」하고 이에 한녀(漢女)를 불러 노래 부르고 모든 재상과 더불어 한껏 즐겼다. 판사(判事) 허전(許佺)이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 황상(黃裳)의 사랑하는 첩(妾)을 몰래 사통(私通)해서 그에게 현혹(眩惑)되어 행위가 음란하거늘 수산이 제재상(諸宰相)과 더불어 전정(殿庭)에 모여 그 형상을 말하고 서로 웃고 지꺼려 소리가 어좌(御座)에까지 들린지라 왕이 듣고 말하기를 「이삼사(李三司)는 늙었으니 여색(女色)을 평론(評論)함은 이제 그만 둬야 가하다」 하였다. 도원수(都元帥) 경천흥(慶千興)이 덕흥병(德興兵)을 물리치고 개선(凱旋)하매 재추(宰樞)들이 술을 베풀어 위로하는데 수산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단판(檀板)을 치고 판(板)으로써 여러 재상(宰相)을 치면서 희롱하다가 우시중(右侍中) 류탁(柳濯)을 치니 탁이 정색(正色)을 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 경솔하고 예의가 없음이 이와 같았다. 신돈(辛旽)의 참소한 바가 되어 과직되었다가 이어 복직하였다. 조정(朝廷)의 사신 임밀(林密) 채빈(蔡斌)이 문묘(文廟)에 배알(拜謁)할 새 모든 생도가 읍(揖)하니 임밀은 답하였으나 채빈(蔡斌)은 답하지 않고 다시 읍하기를 기다리는데 제생(諸生)이 모두 집에 들어가니 빈이 노(怒)하거늘 수산이 곧 거짓으로 말하

기를 「우리 나라의 존장(尊長)에 대한 예(禮)에는 감히 한 때에 함께 읍하지 않습니다」하니 빈이 기뻐하므로 수산이 비밀히 사람을 시켜 제생을 재촉하여 다시 읍하게 하였다. 왕이 시역(弒逆)을 당하매 태후(太后) 및 경복흥(慶復興)은 종친(宗親)을 세우고자 하고 이인임(李仁任)은 신우(辛禱)를 세우고자 하므로 유예(猶豫)하여 결단하지 못하매 도당(都堂)이 서로 보고 감히 말을 발하지 못하는데 수산이 말하기를 「오늘의 계획(計劃)은 마땅히 종실(宗室)에 있다」하였으나 인임이 끝내 우를 세웠다. 우왕(禎王) 2년에 졸하니 공량(恭良)이라 시(諡)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이 즉위하매 좌상시(左常侍) 윤소종(尹紹宗)이 상소(上疏)하기를 「공(功)이 있으면 반드시 상(賞)주고 죄(罪)가 있으면 반드시 벌(罰)주는 것은 요순(堯舜)이 다스림을 이룩한 바이라 현릉(玄陵)이 아들이 없이 돌아가매 이인임(李仁任)이 신우(辛禱)를 세우고자 하거늘 대신(大臣)이 감히 이의가 없는데 고판삼사(故判三司) 수산이 홀로 종실(宗室) 세우기를 청하였으니 몸은 비록 이미 죽었으나 충의(忠義)는 사람을 감동(感動)케 하였으니 청컨대 포시(褒謚)를 주고 그 묘(墓)에 조제(弔祭)하고 그 자손을 등용하여 써 충혼(忠魂)을 위로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청종(聽從)하였다. 아들은 염(恬)이다.[중략]

왕이 노(怒)하여 천호(千戶) 김귀련(金龜聯) 제공(提控) 정지탁(鄭之度)을 가두고 극렴(克廉)과 만수(曼殊) 등의 만호(萬戶) 벼슬을 파(罷)하고 조준(趙浚) 안익(安翊) 류구(柳珣) 김사형(金士衡)으로써 대신하고 산기(散騎) 김진양(金震陽) 집의(執義) 정희(鄭熙)를 불러 말하기를 「염은 내가 잠저(潛邸) 시(時)에 교유(交遊)하여 스스로 주운(朱雲)과 자릉(子陵)에 비교하나 진실로 염의 완악하고 경솔함과 같은 같지 않다」 하고 진양과 희를 명하여 순군(巡軍)과 같이 국문케 하니 염이 말하기를 「밀직(密直) 13인이 글을 올려 중방(重房)을 죄하기로 청하여도 좌우가 모두 중방이기 때문에 듣지 않았고 어린 아이들을 믿고 대신(大臣)을 경홀케 하니 나라가 장차 나라되지 못한다 함이 이를 이름이다」 하는지라 진양 등이 말하기를 「이염이 발광(發狂)할 때에 부축하여 호위하던 사람이 능히 막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유사(有司)를 시켜 밝게 그 죄를 처단하옵소서」 하거늘 왕이 상호군(上護軍) 권유(權維) 노필(盧弼) 대호군(大護軍) 홍서(洪恕) 홍원성(洪原誠) 등을 순군(巡軍)에 내리니 간관(諫官)이 또 상소(上疏)하여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는지라 우리 태조(太祖)가 왕께 아뢰기를 「염이 실로 죄가 있으나 그 말은 광직(狂直)에서 나왔으니 청컨대 그 죽임을 용서하옵소서」 하니 왕이 염에게는 一百을 매쳐 합포(合浦)에 귀양보내고 유(維) 등 9인에게는 태(笞)하였다. 이어 염으로써 경상도 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를 삼았고 이 이후로부터는 본조(本朝)에 들어왔다.

李壽山 恬

李壽山遂安郡人忠惠時拜密直副使賜推誠翊戴佐命功臣號封春城君恭愍元年趙日新將作亂忌壽山遣其黨欲害之壽山匿免後與蔡河中比拜僉議評理尋陞贊成事又爲行省郎中諸奇敗以黨流于外召封壽春君出爲東北面都巡問使定女真疆域再遷三司右使判三司事加推忠保節翊戴佐理功臣號蒙古伶人梁濟率其徒詣都堂奏樂壽山曰有樂不可無歌乃呼漢女唱歌與諸相極歡判事許佺竊檜山府院君黃裳嬖妾惑之所爲錯亂壽山與諸宰相會殿庭言其狀相與笑噓聲徹御座王聞之曰李三司老矣評論女色今可休矣都元帥慶千興却德興兵凱還宰樞置酒慰之壽山被酒自擊檀板以板拍諸相以爲戲拍右侍中柳濯濯正色不言其輕率無儀類此爲辛旽所譖罷尋復職朝廷使臣林密蔡斌謁文廟諸生揖林密答禮蔡斌不答旽更揖諸生皆入舍斌怒壽山卽詭曰我國之禮於尊長不敢一時並揖斌悅壽山密令人促諸生更揖王見斌太后及慶復興欲立宗親李仁任欲立辛禡猶豫未決都堂相視莫敢發言壽山曰今日之計當在宗室仁任竟立禡禡二年卒諡恭良恭讓立左常侍尹紹宗等上疏曰有功必賞有罪必罰堯舜所以致治也玄陵無嗣晏駕李仁任欲立辛禡大臣無敢有異議故判三司事壽山獨請立宗室身雖已沒忠義感人乞追加褒諡弔祭其墓錄其子孫以慰忠魂從之子恬[中略]

王怒囚千戶金龜聯提控鄭之度罷克廉曼殊等萬戶以趙浚安翊柳珣金士衡代之召散騎金震陽執義鄭熙曰恬予之潛邸交遊也雖自擬於朱雲子陵固不如恬之頑率也命震陽熙同巡軍鞠之恬曰密直十三人上章請罪重房而左右皆重房故不聽信豎兒輕大臣國將不國謂此也震陽等言李恬之發狂也備身扶策之人不能捍禦請令有司明斷其罪王下上護軍權維盧弼大護軍洪恕洪原誠等于巡軍諫官又上疏請置於法我

太祖白王曰恬實有罪然其言出於狂直請貸其死王杖恬一百流合浦答維等九人尋以恬爲慶尙道都節制使自此以後入

本朝

《高麗史 通卷114, 傳27卷, 6B葉~5行》

이색(李穡)

이색(李穡) 이림(李琳) 우인렬(禹仁烈) 이인민(李仁敏) 정지(鄭地) 이숭인(李崇仁) 권근(權近) 이종학(李種學) 이귀생(李貴生) 등을 청주옥(淸州獄)에 잡아 가두고 문하평리(門下評理) 윤호(尹虎) 밀직부사(密直副使) 박경(朴經) 우사의(右司議) 이확(李擴) 형조좌랑(刑曹佐郎) 신희창(申孝昌) 전시(田時)를 보내어 양광도 도관찰사(楊廣道都觀察使) 류구(柳珣)로 더불어 그들을 국문(鞫問)케 하니 윤호(尹虎) 등이 청주(淸州)에서 모든 죄수(罪囚)를 국문(鞫問)하였으나 모두 불복(不服)하는데 별안간 뇌우(雷雨)가 크게 일어나 앞 내가 돌연 창일(漲溢)하여 성(城)의 남문(南門)을 무너뜨리고 바로 북문(北門)을 뚫으니 성중(城中)의 수심(水深)이 한길이 넘어 관사(官舍)가 표몰(漂沒)되고 민가(民家)가 거의 없어지니 옥관(獄官)이 너무 급하여 수목(樹木)을 붙잡고 씨 먼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이르기를 「주(州)가

생긴 이후로 아직 수재(水災)가 이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왕이 수재로 말미암아 교(敎)를 내려 그들을 석방(釋放)하고 인하여 함창(咸昌)에 안치하였다가 이윽고 색(穢)을 용서하여 편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3년(恭讓王)에 헌부(憲府)가 다시 색과 종학의 치죄(治罪)를 청하였으나 청종(聽從)치 아니하니 헌부가 다시 색의 죄를 논하거늘 왕이 마지못해 이를 청종하여 함창에 유배하니 간관이 또 종학을 논죄(論罪)하여 원지(遠地)에 유배하였다가 이윽고 서울 밖에 편의를 따르도록 허락하니 색이 글을 올려 사(謝)하기를 「신이 불재(不才)로서 다행히 전하께서 들어가 정통 계승함을 만나 초정(初政)한 즉시부터 외람되히 판문하사(判門下事)를 받고 차면 넘친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더욱 근신(謹慎)을 더해오더니 10일이 지나지 못하여 문득 탄핵(彈劾)을 입어 소장(疏章)이 연(連)하고 간독(簡牘)이 쌓여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한지 3년이 지나도록 더욱 준렬(峻烈)하여 약세(弱勢)를 보이지 아니하매 신의 생명이 조석(朝夕)에 있나이다. 진실로 전하 호생(好生)의 덕이 하늘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던들 공신이 어찌 능히 금일(今日)에 이르름을 얻어서 성상(聖上) 작해(作解)의 은택(恩澤)을 입을 수 있었겠나이까 신이 사명(救命)을 듣던날 사은(謝恩)하기에 급하여 곧 폄소(貶所: 貶所된 곳)를 떠나 재를 넘어 북으로 향할제 풍설(風雪)을 만나 충주(忠州)와 여주(驪州) 사이에서 숙질(宿疾)이 발동(發動)하여 발섭(跋涉)하기 어려워 엄류(淹留: 오래 두류(逗留)하는 일)하기에 이르러 바로 궐정(闕庭)에 나아감을 얻지 못하였아오니 옆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쇠비(衰憊)함을 불쌍히 여기사 길이 호생의 덕을 보이옵소서」라고 하였거늘 왕이 글을 보고 곧 역전(驛傳)에 명하여 색 및 승인 종학을 불렀다. 색이 서울에 돌아와서 우리 태조를 사제(私第)에서 알현(謁見)하니 태조가 놀라 그를 반가히 상좌(上座)에 맞이하여 꿇어앉아 술을 올리면서 색은 서서 마실 것을 청하매 색이 사양치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비난하였다. 흠뻑 즐기다가 파(罷)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이 두 공은 옛날에 정이 좋았도다」고 하였다. 왕이 일찍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대성(臺省)과 헌부(憲府)가 자주 소장(疏章)을 올려 이색 죽이기를 청하였으나 나의 생각에는 색이 일찍이 현릉(玄陵)을 섬겨 일을 말하다가 뜻을 거슬러서 비록 현릉이 노(怒)가 심(甚)하였으나 오히려 예(禮)로써 대우(待遇)하였고 또 위조(僞朝: 우왕(禡王) 창왕(昌王)의 조(朝)를 가리킴)를 위해 대명(大明)에 봉사(奉使)하였을 때 제(帝)가 총대(寵待)하기를 우후(優厚)히 하여 편전(便殿)에 불러 대우하며 자주 잔치를 베풀어 위안하매 천하가 사모하였도다. 그 사람됨이 현릉의 예감(睿鑑: 明鑑)과 황제(皇帝)의 위령(威靈)으로도 예의 모습이 저와 같거던 하물며 과인(寡人) 같은 것이 그 감히 해(害)하라」고 하였다. 수일(數日)을 지나 색이 승인과 종학으로 더불어 궐(闕)에 나아가 군은(君恩)을 사(謝)하니 불러 내전

(內殿)에 들어 주(酒)를 사(賜)하여 그를 위로(慰勞)하고 명하여 고신(告身：辭令)을 돌리고 다시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을 봉하여 예문춘추관사(藝文春秋館事)를 영도(領導)케 하였다. 4년에 군신(群臣)을 수창궁(壽昌宮)에서 향연할새 색이 취해서 소리를 내어 크게 웃거늘 가까이 시위(侍衛)하던 대호군(大護軍) 김정경(金鼎卿)이 이를 그치게 하니 색이 황공(惶恐)하여 추출(趨出)하였다. 정몽주(鄭夢周) 류만수(柳曼殊) 등이 취하면 문득 환호(喧呼)하더니 이날에는 조금 잠잠하였으니 대개 이염(李恬)이 술로 인해 죄를 얻어 징계되었기 때문이다. 몽주를 주(誅)하고 간관(諫官) 김진양(金震陽) 등을 국문하니 공사(供辭)가 색 종학 종선에 관련되거늘 종학 종선을 외방에 유배하고 왕(王)의 사자(使者)가 색에게 이르기를 「경(卿)의 두 아들이 조정에 죄를 얻었으니 경도 같지어다 양강(兩江)의 밖은 오직 경의 갈 곳이니라」고 하니 색이 무연(撫然：落膽 失望의 모습)히 말하기를 「신은 돌아 보건대 전택(田宅)이 없으니 과연 어디로 돌아가리까」하거늘 드디어 금천(衿川)에 폼유(貶流)하였다가 이어 여흥(驪興)에 옮겨졌다. 본조(本朝：李朝)에 들어와 한산백(韓山伯)에 봉하였고 졸하니 나이 69이다. 제사부의(祭祀賻儀)를 사(賜)하여 예(禮)로 장사하고 시(諡)를 문정(文靖)이라 하였다. 색은 천품이 명민하여 많은 글을 널리 보아 시문을 지으매 붓을 잡으면 곧 써서 조금도 막힘이 없었으며 힘껏 후학을 밀어 사문(斯文：儒學의 學을 뜻한 것임)을 일으킴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삼으니 학자들이 모두 우러러 사모하였다. 국가의 문翰(文翰)을 맡은지 수십년에 자주 중국의 칭송을 받았으며 평생에 질언(疾言：빠른 말) 거색(遽色：당황한 낯빛)²⁷⁾이 없으며 규각(圭角)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생산을 돌보지 아니하여 비록 여러 차례 궁핍에 이르렀으나 뜻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조와 절개가 굳세지 못하여 크게 건백(建白)함이 없었고 학문이 순수치 못하고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하므로 세상의 기롱(譏弄)하는 바 되었다. 목은집(牧隱集) 55권이 있어서 세상에 행해지며 아들은 종덕 종학 종선이니 종덕은 벼슬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이르렀고 종학은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이르렀다.

李穡

穡琳仁烈仁敏地崇仁近種學貴生等于清州獄遣門下評理尹虎密直副使朴經右司議李擴刑曹佐郎申孝昌田時與楊廣道都觀察使柳珣鞠之虎等在清州鞠諸囚皆不服忽雷雨大作前川暴漲毀城南門直衝北門城中水深丈餘漂沒官舍民居殆盡獄官蒼黃攀樹木以免故老謂自有州以來未有水災如此其甚者王以水災下教釋之仍安置咸昌尋宥穡許從便三年憲府請復治穡種學不從憲府復論穡罪王勉從之流于咸昌諫官又論種學流遠地俄許京外從便穡上書謝曰臣以不才幸遇殿下入繼正統卽於初政叨受判門下事滿溢是懼愈增兢惕未浹旬日遽被彈

27) 수재창졸(雖在倉卒)：미상 질언거색(未嘗 疾言遽色) 後漢書에 나오는 글.

劾連章累牘請置極刑閱歲三改益峻不衰臣之性命在於朝夕苟非殿下好生之德與天同功臣豈能得至今日以沐聖上作解之澤哉臣聞命之日急於謝恩卽離貶所踰嶺而北蒙犯風雪忠驪之間宿疾發動難於跋涉致此淹留未得逕造闕庭伏望憐臣衰憊永示好生之德王覽書卽命驛召穡及崇仁種學穡還京謁我

太祖于私第

太祖驚喜迎之上座跪進酒請穡立飲穡不讓人皆非之極歡而罷王聞之曰此二公疇背之情好也王嘗謂左右曰向者省憲數上疏請誅穡予以爲穡嘗事玄陵言事忤旨雖怒甚猶待以禮又爲僞朝奉使 大明

帝寵待優渥召待便殿屢賜宴慰天下想望其爲人以玄陵之睿鑑

皇帝之威靈禮貌如彼況如寡人其敢害之居數日穡與崇仁種學詣闕謝恩召入內殿賜酒慰之命還告身復封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四年宴群臣于壽昌宮穡醉發聲大笑侍近大護軍金鼎卿止之穡惶恐趨出鄭夢周柳曼殊等醉輒喧呼是日稍戢蓋懲於李恬使酒得罪也誅夢周鞠諫官金震陽等辭連穡種學種善流種學種善于外王使謂穡曰卿之二子得罪於朝卿其去矣兩江之外惟卿所適穡憮然曰臣顧無田宅果安歸乎遂貶衿川尋徙驪興入

本朝封韓山伯卒年六十九賜祭賻禮葬之諡文靖穡天資明敏博覽群書爲詩文操筆卽書略無凝滯勉進後學以興起斯文爲己任學者皆仰慕掌國文翰數十年屢見稱中國平生無疾言遽色不露圭角不治生產雖至屢空不以爲意然志節不固無大建白學問不純崇信佛法爲世所譏有牧隱集五十五卷行于世子種德種學種善種德官至同知密直司事種學簽書密直司事

《高麗史 通卷115, 傳28卷, 25B葉~4行》

김형(金鉉)

김형(金鉉)은 의성현인(義城縣人)이다. 처음에 충혜왕(忠惠王)을 섬기다가 면관(免官)하여 나주에 살았는데 호우(豪右)로서 전민(田民)을 탈점(奪占)하여 자산이 요부(饒富)하였다. 공민왕(恭愍王) 시(時)에 왜(倭)가 나주에 침구(侵寇)하매 형이 목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쳐서 이를 쫓은 공으로 복직하였는데 재물을 권문(權門)에 드리어 여러번 전라도 포왜사(捕倭使)가 되매 자못 전공(戰功)이 있었고 홍적(紅賊)이 서울을 함락하매 형이 제장(諸將)을 좇아 수복하니 공을 녹하여 一等을 삼았고 나가 전라도 도순어사(都巡禦使)가 되었다. 때에 전라도에 기근이 들었고 병혁(兵革)까지 겹쳐 백성들이 편안히 살지를 못하였는데 형이 할박(割剝: 奪取)하여 이르지 않은 바가 없고 군량(軍糧)을 감하여 그 반을 쓰며 제주(諸州)의 조선(漕船)에 과세하여 다 집에 보내니 일방이 오오(嗷嗷: 근심)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송분(宋芬)이 죽고 그 처(妻)가 복(服)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형이 일로써 끌고와서 백주(白晝)에 강간(強奸)하고 인해 씨 첩(妾)을 삼았고 조선을 거느리고

내포(內浦)에 이르렀다가 왜와 더불어 만나 싸워 패하매 사졸로 죽은 자가 반을 지났는데도 폐행(嬖幸)들이 횡의 뇌물을 받고 도리어 그를 칭찬하니 왕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궁온(宮醞)을 사(賜)하고 맞이하여 위로하니 국인(國人)들이 분한(憤恨)하였다. 뒤에 신돈(辛旽)의 당(黨)으로써 유배되었다가 다시 기용하여 동지밀직(同知密直)을 삼았고 나가 전라도를 지켰는데 헌사(憲司)가 능히 막지 못하였음을 들어 탄핵하였다. 횡이 또 행신(幸臣) 김흥경(金興慶) 총환(寵宦) 김사행(金師幸)에 아부하여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로 옮기고 합포(合浦)를 지키는 탐잔(貪殘)함이 전라 때와 같은지라 안렴(按廉) 류구(柳珣)가 횡의 불법함을 탄핵하니 횡도 역시 구의 허물을 찾아서 조정(朝廷)에 보고하였다. 왜가 합포에 침구하여 군영을 불태우매 사졸로 죽은 자가 5,000여인이라 왕이 조림(趙琳)을 보내어 이를 베고 사지(四肢)를 찢어서 씨 제도(諸道)에 조리돌렸다. 그 아들 승전(承湏)이 분상(奔喪)하는데 왕이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의 죄는 대역(大逆)이 아니니 상(喪)을 마치면 직에 나아가라」고 하였다.

金鉉

金鉉義城縣人初事忠惠免居羅州以豪右奪占田民資產饒富恭愍時倭寇羅州鉉率木浦人擊走之以功復職輸貨權門屢爲全羅道捕倭使頗有戰功紅賊陷京鉉從諸將收復錄功爲一等出爲全羅道都巡禦使時全羅饑重以兵革民不聊生鉉割剝無所不至減軍糧用其半稅諸州漕船皆輸于家一方嗷嗷大護軍宋芬死其妻服未闋鉉以事鉤致白晝強淫因以爲妾領漕船至內浦與倭遇戰敗士卒死者過半嬖幸受鉉賂反譽之王遣中使賜宮醞迎勞國人憤恨後以辛旽黨流復起爲同知密直出鎮全羅憲司劾不能沮鉉又附幸臣金興慶寵宦金師幸移慶尙道都巡問使鎮合浦貪殘如全羅時按廉柳珣劾鉉不法鉉亦摺摭珣過報于朝倭寇合浦燒軍營士卒死者五千餘人王遣趙琳誅之支解以徇諸道其子承湏奔喪王曰汝父之罪非大逆也喪畢就職

《高麗史 通卷125, 傳38卷, 40B葉~7行》

신우 6년(1380) 4월

류구(柳珣)로 한양도(漢陽道) 도병마사(都兵馬使) 겸 한양윤(漢陽尹)을 삼고 최영(崔瑩)으로 겸해도도통사(兼海道都統使) 삼사좌사(三司左使)를 조인벽(趙仁璧)으로 강릉도(江陵道) 상원수(上元帥)를 삼았다.

柳珣爲漢陽道都兵馬使兼漢陽尹崔瑩兼海道都統使三司左使趙仁璧爲江陵道上元帥

《高麗史 通卷134, 傳47卷, 15B葉~9行》

우왕 14년(1388) 12월

공양왕(恭讓王)이 정당문학(政堂文學) 서균형(徐鈞衡)을 보내어 우(禍)를 베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류구(柳珣)로 창(昌)을 베니 영비(寧妃) 최씨(崔氏)가 대곡(大哭)하여 말하기를 「첩(妾)의 이에 이른 곁은 오부(吾父)의 허물이라」하고 10여일이나 먹지 아니하고 일야(日夜)로 곡읍(哭泣)하며 밤이면 반드시 우의 시체(屍體)를 안고 자고 곡립(穀粒)을 얻으면 문득 정(精)하게 씹어서 공전(供奠)하니 시인(時人)이 이것을 불쌍히 여겼다.

恭讓王遣政堂文學徐鈞衡誅禍藝文館大提學柳珣誅昌寧妃崔氏大哭曰妾之至此吾父之過也十餘日不食日夜哭泣夜必抱禍屍而宿得粒輒精舂供奠時人憐之

《高麗史 通卷137, 傳50卷, 45A葉~8行》

공민왕 23년(1374) 11월

○간관(諫官) 류구(柳珣)와 안종원(安宗源) 등이 도당(都堂)에 글을 올리기를, “환자(宦者)가 국가의 환(患)이 되는 것은 조고(趙高) 이후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선왕(忠宣王)이 토번(土蕃)에서 곤욕을 당하고, 충혜왕(忠惠王)이 악양(岳陽)에서 화(禍)를 당한 것은, 모두 백안독고사(伯顏禿古思)와 용보(龍普)의 한 짓에 말미암았고, 전일 최만생의 대역(大逆)에 이르러서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주상(主上)께서 나이 어리시니, 마땅히 노성(老成)한 이를 친하여 덕성(德性)을 함양하여야 될 것이며, 다시 환자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가까이하게 함으로써 임금의 충명을 가리어 나라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전(魂殿)에는 이미 도감(都監)의 원리(員吏)가 있어 조석의 전(奠)을 공경히 받들고 있사오니, 다시 환자들로 하여금 부산하게 그 곳에 모여서 충애를 굳게 하는 터전을 마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여러 재상(宰相)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여, 충성스럽고 근실한 사람 10여 명만을 가려서 궁내(宮內)를 소제(掃除)하는 임무에 대비하게 하고, 그 별사(別賜)와 녹봉(祿俸)을 중첩으로 받아 국용(國用)을 허비하지 못하게 하며, 나머지 도당(徒黨)은 각기 편의한 대로 하게 하여 다시는 국가의 환난이 되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때 우의나이가 어려 정사(政事)를 재상(宰相)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간관(諫官)이 글을 올려 그들의 처치(處置)를 바랐던 것인데, 재상들은 이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諫官柳珣安宗源等上書都堂曰宦者爲患趙高而下班班可見我忠宣王吐蕃之辱忠惠王岳陽之禍皆由伯顏禿古思與龍普之所爲也至於前日萬生大逆極矣今主上幼冲當親老成以養德性不可復令宦者朝夕狎昵壅蔽聰明以至誤國至於魂殿既有都監員吏敬供朝夕之奠亦不可復令宦者紛然聚會以基固寵之地伏惟諸相爲國深慮擇其忠謹者十餘人以備宮內掃除之役其別賜與祿俸毋得疊受以費國用其餘徒黨各令從便毋使復爲國家之患時禍年幼政出宰相故諫官獻書奠其處置宰相不以爲慮

《高麗史節要 第4卷 卷29, 34面》

공양왕 원년(1389) 12월(임인)

○사재부령(司宰副令) 윤회중(尹會宗)이 소를 올려 우와 창을 베기를 청하였다. 왕이 여러 재상에게 차례로 물으니 모두 잠잠히 말이 없었는데, 홀로 우리 태조가 아뢰기를, “이 일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미 강릉(江陵)에 안치시켰다고 중국 조정에 알렸으니 중간에 와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臣) 등이 있사오니 우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한들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우가 죄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스스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이행(李行)에게 명하여 교서(敎書)를 내리게 하고, 정당문학 서균형(徐鈞衡)을 강릉(江陵)으로 보내어 우를 베게 하며,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류구(柳珣)를 강화(江華)로 보내어 창을 베게 하였다. 우의 아내 최씨(崔氏)가 크게 울면서 말하기를, “첩(妾)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최영의 허물이다” 하였다. 10여 일 동안 먹지 않고 밤낮으로 울며 밤에는 반드시 시체(屍體)를 안고 자며, 쌀을 조금 얻으면 문득 정하게 찢어서 전(奠)을 드리니, 그때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겼다.

○司宰副令尹會宗上疏請誅禍昌王歷問諸宰相皆默然我
 太祖獨曰此事不易旣以安置江陵聞于朝廷不可中變且臣等在禍雖欲爲亂何憂哉王曰禍多
 殺無辜宜其自及命知申事李行降敎書遣政堂文學徐鈞衡于江陵誅禍藝文館大提學柳珣于
 江華誅昌禍妻崔氏大哭曰妾之至此吾父之過也十餘日不食日夜哭泣夜必抱尸而宿得粒輒
 精春供奠時人憐之
 《高麗史節要 第4卷 卷34, 28面》

공양왕 2년(1390) 5월(을사)

문하평리(門下評理) 윤호(尹虎), 밀직부사 박경(朴經), 우사의(右司議) 이확(李擴), 형조좌랑(刑曹佐郎) 신호창(申孝昌), 사헌규정(司憲糾正) 전시(田時) 등을 보내어 양광도 도관찰사(楊廣道都觀察使) 류구(柳珣)와 함께 이색(李穡) 등을 청주(淸州)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바야흐로 여러 죄수를 국문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큰 비가 와서 앞 냇물이 갑자기 범람하여 성(城)의 남문(南門)을 부수고 바로 북문(北門)에 부딪쳤다. 성 안의 물 깊이가 한 길이 넘었으므로 관사(官舍)와 민가를 거의 모두 떠내려 보냈다. 매우 급하게 되자 옥관(獄官)은 나무를 휘어잡고 올라가서 죽음을 면하였다. 고로(故老)들이, “고을이 생긴 이후로 수재(水災)가 이같이 심한 적은 없었다” 하였다.

乙巳遣門下評理尹虎密直副使朴經右司議李擴刑曹佐郎申孝昌司憲糾正田時等同楊廣道
 都觀察使柳珣鞠李穡等于淸州方鞠諸囚忽雷雨大作前川暴漲毀城南門直衝北門城中水深
 丈餘漂沒官舍民居殆盡獄官蒼黃攀樹木以免故老謂自有州以來未有水災如此其甚者

공양왕 3년(1391) 9월

○우(瑀)를 영삼사사(嶺三司事)로, 우리 태조를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심덕부(沈德符)²⁸를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정지(鄭地)를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 류구(柳珣)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정도전(鄭道傳)을 평양부윤(平壤府尹)으로 삼았다.

○以瑀領三司事我

太祖判門下府事沈德符爲門下侍中鄭地判開城府事柳珣爲藝文館大提學鄭道傳爲平壤府尹

《高麗史節要 第4卷 卷35, 40面》

공양왕 4년(1392) 1월

봄 정월에 조사(詔使)에게 수창궁(壽昌宮)에서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였는데, 밀직사 이염(李恬)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보다 앞서 팔관회(八關會)에서 중방(重房)에서 밀직사(密直司)에 예를 하지 않으니, 드디어 틈이 생겨 서로 글을 올려 다투었으나, 왕이 그 글을 모두 궁중에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니 이염(李恬)이 깊이 원한을 품었다. 이 때에 와서 왕이 연회를 파하고 내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염이 술에 취한 김에 왕의 앞에 꿇어 앉아 왕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정창군(定昌君)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 일이 장차 날로 그릇되어 가는데 어찌하여 아이들의 말만 믿고 대신의 글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하며, 드디어 모자를 벗어 땅에 던지면서, “원하건대 왕에게 이 모자를 돌려 드립니다” 하니, 왕이 더욱 노하여 모자를 발로 차서 부수고 목소리를 높혀 이르기를, “이염이 주정(酒醕)을 부리기를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드디어 옥에 가두었다. 이염이 순군만호 류만수(柳曼殊)에게 이르기를, “네가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면서 효도(孝道)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았다는 평판을 받았으므로 대성에서 두 번이나 너를 논핵하였는데, 어찌 나를 죄줄 수 있겠느냐 내가 거리낌 없이 간한 것은 죄가 아니며, 또한 주정(酒醕)을 부린 것도 아니다” 하니, 만수(曼殊)가 부끄러워하면서 머리를 숙였다. 조금 후에 만호 배극렴(裒克廉)이 오니 이염이 그를 맞아 말하기를, “만수가 거의 나를 죽일 뻔 하였는데, 지금 공(公)들을 보니 내가 살게 되

28) 심덕부(沈德符) : 1328~1401. 여말 선초의 문신. 자는 득지(得之) 호는 노당(蘆堂) 허강(虛江) 시호는 공정(恭靖) 본관은 청송(靑松). 공민왕 말년 판위위사, 우왕 4년(1378) 밀직부사 지문하부사, 서경 도원수로 요동정벌에 참여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 공양왕 3년에 문하시중,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다. 아들 심온(沈溫)의 딸이 세종대왕비로 소헌왕후인데 동생이 류구(柳珣)의 증손자 류자해(柳子偕)와 혼인하여 사돈관계가 되었다.

었다” 하였다. 드디어 국문하니 이염이 여전히 말하기를, “왕에게 간하는 예는 마땅히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극렴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염이 실상 주정(酒酖)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니, 왕이 노하여 천호 김귀련(金龜聯)과 제공(提控) 정지탁(鄭之度)을 가두고, 극렴·만수 등의 만호(萬戶)직을 파면하고, 이어서 찬성사 조준(趙浚)·판개성부사 안익(安翊),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류구(柳珣), 지문하(知門下) 김사형(金士衡)을 이에 대신하게 하고 성헌(省憲)에 명하여 순군부와 함께 같이 국문하게 하였다.

春正月宴詔使于壽昌宮下密直使李恬于巡軍先是八關會重房不禮於密直司遂搆隙交章相訟王皆留中不下恬深嘆之至是王宴罷將入內恬因醉跪王前引王裾曰殿下不念定昌君時歟國事將日非矣何信豎兒之言而輕大臣之書乎遂脫帽投地曰願還王此帽王益怒蹴破之厲聲曰恬使酒乃爾耶遂下獄恬謂巡軍萬戶柳曼殊曰爾位至宰相負不孝不友之名臺省再論汝矣何罪我歟我敢諫非罪亦非使酒曼殊慚赧俯首既而萬戶裴克廉等至恬迎謂曰曼殊幾殺我今見公背吾得生矣遂加鞫問恬尚以爲諫君之禮當如是耳克廉等啓王曰恬實使酒王怒囚千戶金龜聯提控鄭之度罷克廉曼殊等萬戶以贊成事趙浚判開城安翊藝文館大提學柳珣知門下金士衡代之命省憲與巡軍同鞫

《高麗史節要 第4卷 卷35, 52面》

태조 원년(1392) 8월 7일(병진)

○전주(全州)를 승격시켜 완산부(完山府)로 삼고, 류구(柳珣)를 부윤(府尹)으로 삼았다.
○陞全州爲完山府以柳珣爲府尹

《太祖實錄 卷第1, 51面》

태조 4년(1395) 8월 28일(기축)

○태학사(太學士) 류구(柳珣)를 회암사에 보내어 소재 법석(消災法席)을 베풀게 하였다.
○遣太學士柳珣於檜巖等設消災法席

《太祖實錄 卷第8, 5面》

태조 4년(1395) 10월 10일(경자)

태학사 류구(柳珣)와 한성윤 정신의(鄭臣義)를 경사(京師)로 보내어 명년 정조(正朝)를 하례하게 하였다.
遣太學士柳珣漢城尹鄭臣義如京師賀明年正

《太祖實錄 卷第8, 11面》

태조 5년(1396) 4월 8일(을미)

하정사 류구(柳珣)의 일행 박광춘(朴光春)이 경사(京師)에서 예부(禮部)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 왔는데, 그 자문에 이러하였다.

“본부 상서(本部尙書) 문극신(門克新) 등관이 삼가 성지(聖旨)를 받드오니, ‘조선 국왕은 의심을 잘 내고 거듭 혼단(鬱端)을 내는데다, 또한 천자에 정조(正朝)를 축하하는 표·전문 안에 옳지 못한 문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표문²⁹⁾을 가져온 관원을 서울에 억류하였으니, 너의 예부(禮部)는 문서를 이모(李某)에게 주어 각 아내와 시녀 몇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우리의 마을 여러 아문 속에 거처하게 하라. 이모(李某)는 성의가 없이 반복으로 내왕하여 우리의 소식을 탐지하려 하니 부당하다. 만약에 노소 관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온 각 관원은 모두 금치(金齒)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乙未賀正使柳珣一行朴光春回自京師賫禮部咨以來其咨曰本部尙書門克新等官欽奉聖旨朝鮮國 王好生疑心重生鬱端又多前者進正朝表箋內不停當的字樣多有因此將進表官員留在京城恁禮部與文書教 李某將各妻小分房幾口來就京城住我這里將各官諸衙門裏用著 李某兩頭來往討消息那的不便當若不將老小來這各官都送金齒去

《太祖實錄 卷第9, 5面》

표전문제와 요동정벌계획

표전(表箋)문제란 조선이 명에 보낸 표전 속에 「기모(譏侮)」 또는 「희모(戲侮)」의 뜻이 있는 글자가 섞여 있다고 하여, 명 태조가 조선 사신을 억류시키는 동시에 표전을 지은 책임자를 압송해 오도록 요구한 사건이다. 표전문제가 양국간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명 태조는 이미 여러 차례 조선의 표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다. 처음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결정해준 데 대한 조선의 사은표전 속에 ‘침모지사(侵侮之辭)’가 있다고 태조 2년(1393) 12월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태조 3년 정안군 이방원이 명에 사신으로 갔을 때도, 명 태조는 조선에서 보낸 표문의 문구가 매우 괴상하므로 앞으로는 조공을 하며 진하(進賀)할 때 표문을 올리지 말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내연하던 문제가 드디어 분규로 발전하여 3차에 걸친 표전문제가 일어났다.

제1차 표전문제는 태조 4년 10월에 태학사(太學士) 류구(柳珣)와 한성부윤(漢

29) 표문(表文) : 신하가 군주에게 어떤 사실을 명백히 고하는 문체(文體)의 칭호이다. 『文選』卷37 주에는 “(李)善曰 表者 明也 標也 如物之標表 言標著事序 使之明白以曉主上得盡其忠曰表”라고 했다. 고대에는 군주에게 헌언(獻言)하는 것은 모두 상서라고 했으나, 한대(漢代)에 와서 주소(奏疏)를 장(章)·주(奏)·표(表)·박의(駁議)로 四分(이를 四品이라고도 한다) 하였다. 표는 그 중의 한 문체였다. 처음에는 진정하는데만 표를 이용했으나, 북주(北周) 때는 군주에의 상서를 모두 표라고 하고, 황태자(皇太子) 이하에는 계(啓 : 뒤에는 태자(太子)와 제왕(諸王)에게 올리는 것을 전(箋)이라 했다)라고 했다. 여하간 뒤에는 논간(論諫)·공헌(貢獻)·추천(推薦)·경하(慶賀)·위안(慰安)·사사(辭謝)·탄핵문(彈劾文)을 표라고 했다. 군주가 신하에 내리는 것은 칙(勅)·조(詔)·유(諭)라고 했고, 대등한 입장에서 왕래하는 공문서를 자문(咨文)이라 했고, 이문(移文)이라고도 했다. 이 경우는 경하를 위한 표문이었다.

城府尹) 정신의(鄭臣儀)가 하정사로서 가지고 간 하정표문이 문제가 되었다. 명은 표문 속에 「경박희모(輕薄戲侮)」의 문구가 있다고 하여 류구(柳珣) 등을 억류시키고, 류구(柳珣)의 공술에 따라 찬문자(撰文者)인 정도전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은 조선의 성음(聲音)과 언어가 중국과 다르고 학문이 천박하여 표전양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인사가 경박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희모(戲侮)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하정표문은 정탁(鄭擢)이 쓰고 하동궁전문(賀東宮箋文)은 김약항(金若恒)이 썼는데 정탁은 마침 풍질을 앓아 움직일 수 없으니 김약항만 보낸다고 하며 정도전의 관송(管送)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하여 버렸다.

제2차 표전문제는 같은 해 11월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대학사 정충(鄭摠)을 보내 국왕의 고명과 인신을 요청한 주청문(奏請文)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명은 주청문 속에 「인용주사(引用紂事)」한 일, 즉 은주(殷紂)의 일을 인용한 점이 특히 무례하다고 하며 정충을 억류시키고 찬문자 및 교정자의 압송을 요구해 왔다. 이렇게 표전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명이 정도전의 관송을 다시 재촉하여 오자, 조선은 하륜을 계품사로 삼아 표전작성에 관여한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과 우승지 정탁 및 교정자인 경흥부(敬興府) 사인(舍人) 노인도(盧仁度)를 명에 보내며 여전히 개국원훈인 정도전은 제외시켰다. 결국 명에 보낸 사람 중에 정충·김약항·노인도의 3인만 오랫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로 귀환하였다.

제3차 표전문제는 조선이 태조 6년 8월 전광주목사(前光州牧使) 류호(柳灝)를 천추사로 명에 파견하였는데, 그 천추계본(千秋啓本)이 또 문제가 되어 찬문자를 보내올 때까지 사신을 억류하겠다고 통고하여 온 것이다. 조선은 통사 곽해룡(郭海龍)으로 하여금 찬문자인 예조전서(禮曹典書) 조서(曹庶)를 관송하여 보냈다. 명은 곽해룡과 조서를 구류시키는 한편, 조서의 공술에 의해 계본(啓本)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성균관사성 공부(孔俯), 전 예조정랑 윤규(尹珪), 현 예조정랑 윤순(尹順) 등 3인을 추가로 관송해 오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은 결국 소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3인을 보냈는데 이들이 요동에 이르렀을 때 마침 명 태조가 승하하고 황태손이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바로 대사면을 얻어 도중에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명 태조의 사망에 따라 3차에 걸친 표전문제는 완전히 결말이 지어지고, 명이 조선의 표전에 대해 「기모(譏侮)」 또는 「희모(戲侮)」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전문제는 명초에 중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던 필화사건 즉 「문자옥(文字獄)」의 일환이었다. 명초의 문자옥은 다른 시대의 문자옥과는 달리 대부분 명 태조의 열등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명 태조 주원장은 원말에

호주(濠州) 종리현(鍾離縣)의 빈농가정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매우 궁핍하게 자라났다. 원말의 동란기를 맞아 청소년기를 탁발승으로 유리결식하는 생활로 보냈으며, 그 후 홍건적의 일파인 곽자흥(郭子興)에게 투신함으로써 입신의 길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주원장은 성장기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고 황각사(皇覺寺)에서 중노릇을 할 때 또는 홍건적의 대오 속에서도 배우고자 발분하였으나 기초가 부족하여 학식의 천박함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출신과 학문에 대한 주원장의 열등의식은 대명제국의 황제가 된 후에도 뿌리깊게 남아 있어, 이른바 명초 「문자옥」의 원인이 되었다.

명 태조는 지난날 자신의 궁핍했던 화상(和尚) 노릇과 홍건적 출신임을 누군가가 반드시 몰래 조롱하고 있을 것이라는 악몽에 늘 시달렸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암시할 수도 있는 문자를 표전에 사용한 문인을 무수히 처형하였다. 문자상의 금기는 상당히 광범하여 중의 두발없는 머리를 상징할 수 있는 「光」·「秃」은 물론, 「僧」 및 「僧」과 발음이 비슷한 「生」도 포함되었다. 홍건적을 암시할 수 있는 「賊」은 물론이고 이와 비슷한 발음인 「則」도 기피되어야 했다. 단순히 뜻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다른 글자를 연상하여 제멋대로 억측하고 풀이한 다음, 작성자를 가려내어 이유도 설명하여 주지 않고 처형시켜 버렸던 것이다.³⁰⁾

표전문제가 명초 문자옥의 일환이라는 점은 3차 표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명과 조선간에 왕래한 문서를 분석하여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명의 예부상서(禮部尙書) 정기(鄭沂)가 글자의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어구를 이루어 기모(譏侮)했다고 문책한데 대하여, 조선은 “또한 조정의 문자(文字) 양식과 회피해야 할 글자를 몰라 이런 착오를 일으켰으며…… 앞으로의 문서가 또 잘못될까 두려우니 마땅히 회피해야 할 글자들을 소방(小邦)에 내려주어 오래 준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³¹⁾라고 회답하였다. 우선 표전문장의 발음까지 문제삼는 명 태조의 비정상적인 해독법이 드러나 있고, 표전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까닭을 전혀 짐작도 못하던 조선도 명 태조에게 사용해서는 안될 「회피하여야 할 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던 것이다.³²⁾

표전문제로 말미암아 양국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갔다. 표전문제가 아무리 명 태조 개인의 열등의식에 의해 발생한 문자옥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명 태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에 대한 조선의 계속적인 「모만」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30) 趙翼, 《二十二史劄記》 권32, 明祖行事多仿漢高.

31) 《太祖實錄》 권12, 태조 6년 12월 병오.

32) 朴元燾, 〈明初 文字獄과 朝鮮表箋問題〉(《史學研究》 25, 1975).

더욱이 표전문제가 한창 야기되고 있던 태조 2년(1393)으로부터 7년까지의 약 5년간 요동정벌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조선의 움직임은 명 태조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선의 「생흔(生鬻)」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표전문제가 발생하자 명 태조는 이를 기회로 조선을 더욱 위압함으로써 조선이 감히 요동으로 진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명 태조는 조선이 요동정벌을 감행할지도 모르며 그 계획의 중심인물이 정도전이라는 사실을 태조 2년경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태조 원년에 정도전이 사은사로 명에 왔다가 귀국하는 길에 산해위(山海衛)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조선과 명 사이의 관계가 잘 풀리면 좋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군대를 끌고 와서 한바탕 약탈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보고받은 후부터 정도전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정도전이 사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태조 2년에 삼군총제부(三軍總制府)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혁하고 중방(重房)을 혁파하는 군제개편이 단행되었다. 또 정도전은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로부터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임명되고 곧 이어 판의흥삼군부사를 겸임함으로써 군부의 우두머리가 되어 군정개혁과 군비강화에 힘쓴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 태조는 1차 표전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약 3년 전부터 정도전을 지목하고 있다가, 마침 하정표문이 문제화되고 하정사 류구의 공술을 통해 정도전도 표문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밝혀지자 정도전의 관송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실제로 하정표문은 정탁이 짓고 권근이 수정하였으며 정도전은 형식적인 책임자로서 교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 태조는 계품사 하륜에게 정도전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힐문하는 등 정도전에게만 유별난 집착을 보이며 정탁과 권근은 쉽게 귀국시켜 주었다.

조선조정에서도 조준·하륜·이방과(李芳果) 등은 태조에게 정도전을 명에 보내도록 진언하였다. 통사 양첨식(楊添植)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몰라도 조선에 와 있던 명사 양목아(楊木兒)·우우(牛牛)에게 정도전을 꼭 데리고 가도록 적극적인 공작까지 벌임으로써 조정 내부의 암투를 노출시켰다. 고심하던 태조가 끝내 병을 이유로 정도전을 명에 보내지 않고 버티자 명 태조는 더 이상 관송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조선 사신을 접견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도전을 혐오하며 그를 감싸는 태조의 어리석음을 힐난하였다.

지금 조선국왕 이성계가 중용하고 있는 정도전이라는 자는 왕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는 말인가. 왕이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조선의 화근이 될 것이다. 이성계는 정도전이란 자를 잘 모른다. 그를 중용하여 무엇한다는 말인가. 네가 돌아가거든 왕에게 분규를 일으키지 말도록 일러라. 소인의 말을 듣

고 함부로 도발하다가 앞으로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이다(《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4월 기해).

동시에 명은 조선이 요동을 정벌할 것이라는 풍설에 계속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간첩을 보내 정탐을 시키기도 하였다. 표전문제가 야기되던 기간에 명 태조는 조선을 정벌하겠노라고 기획있을 때마다 위협을 가하였으나, 실제로 조선을 정벌하려는 의도나 준비는 전혀 없었다. 다만 조선이 요동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썩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였을 따름이었다. 명 태조는 태조 4년(1395) 11월 요왕(遼王)의 궁실공사를 중지시키며 무정후(武定侯) 곽영(郭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국도(國都)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의 요충지에 비축하는 군량이 역마다 1, 2만 석 또는 7, 8만 석, 10여만 석에 이르고, 사람을 보내 동녕부(東寧府)의 여진을 유인하여 넘어가고 있으니 반드시 깊은 음모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요동은 군량이 모자라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는 바, 즉시 사령창(沙嶺倉)의 식량을 내어 그들을 진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려로 하여금 유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것이니 좋은 계책이 못된다. 만일 고려가 20만 군을 내어 쳐들어 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明太祖實錄》 권238, 洪武 28년 4월 신미).

조선정벌은 커녕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는 데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 2년경부터 군정개혁·진도(陣圖)제작·군사훈련·훈련점검·병기제조 등 군비강화를 추진해오던 정도전은 태조 6년 6월경에 요동정벌계획을 표면화시키고 태조를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정도전의 정치적 적대세력이었던 태종과 하륜 등에 의해 후일 일부가 왜곡된 《太祖實錄》에서는, 몇 군데에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당시 표전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명에 관송되어 가지 않기 위함이라고 앞뒤를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무렵은 정도전에 대한 명의 관송요구가 끊어진 지 이미 만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³³⁾

요동정벌계획은 조준 등이 군량부족·군사훈련결핍·민심불안을 내세워 완강하게 반대하여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잠시 보류되었던 요동정벌계획은 1년이 지난 태조 7년 윤 5월경부터 다시 대두하여 태조의 영도하에 확고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해 8월에 대사헌 성석용(成石瑢)이 진도(陣圖)를 강습하지 않는 절제사 이하 대소원장(大小員將) 292인을 대량으로 탄핵함에 따라 태조가 이들을 책벌한 일이 있었다. 진도의 강습을 그렇게 서두르게 된 까닭에 대해 《태조실록》에서는 “처음에 정도전과 남은(南閔)이 왕을 날마다 뵈옵고 요동을 공격하기

33) 朴元燾, 〈明初朝鮮의 遼東攻伐計劃과 表箋問題〉(《白山學報》 19, 1975).

를 권고한 까닭으로 진도를 익히게 한 것이 이같이 급하게 하였다”³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도강습을 비롯하여 이 무렵에 맹렬하게 전개된 군사훈련이 요동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보류되었던 요동정벌계획이 1년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는 정도전 일파의 지속적인 설득과 공작의 탓도 있겠지만, 당시 표전문제로 인한 양국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명의 가중되는 위압이 오히려 조선을 더욱 반발하게 만들어 준 데도 있었다.³⁵⁾

태조 5년(1396) 4월 13일(경자)

○경사(京師)에 나아가 구류된 사신의 집에 쌀과 콩을 차등 있게 하사했는데, 류구(柳珣)의 모친에게는 80곡(斛)을, 정신의(鄭臣義) 집에는 50곡을, 정총(鄭摠)의 모친에게는 60곡을, 김약항(金若恒)의 모친에게는 50곡을, 그리고 일행들의 집에도 각각 차등 있게 하였다.

○賜赴京拘留使臣家米豆有差柳珣母八十斛鄭臣義家五十斛鄭摠母六十斛金若恒母五十斛又 賜一行各家有差

《太祖實錄 卷第9, 9面》

태조 5년(1396) 6월 1일(정해)

○중국에서 구류당하고 있는 류구(柳珣)로 진천군(晉川君)을 봉하고, 정총(鄭摠)으로 서원군(西原君)을 봉하고, 정신의(鄭臣義)로 오천군(烏川君)을 봉하고, 김약항(金若恒)으로 광산군(光山君)을 봉하였다. 우도 도관찰사 홍길민(洪吉旼)이 부친상을 당하여, 박경(朴經)을 대신으로 임명하였다.

○以被留柳珣爲晉川君鄭摠爲西原君鄭臣義爲烏川君金若恒爲光山君右道都觀察使洪吉旼喪父以朴經代之

《太祖實錄 卷第9, 9面》

태조 5년(1396) 6월 11일(정유)

중국 사신 상보사승(尙寶司丞) 우우(牛牛)와 환자 왕예(王禮)·송패라(宋字羅)·양 첩목아(楊帖木兒) 등이 왔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반송정(蟠松亭)까지 나가서 맞았다. 사신들이 경복궁 근정전에 이르러 선유(宣諭)한 성지(聖旨)를 전했다. 말하기를,

“너희가 보내 온 환자[火者]가 여기 내원(內園 : 궁궐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친가(親家)처럼 여기고 있으니, 내일부터는 친해질 것이다.”

하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34)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8월 임자.

35) 한국사 22권 조선초기의 대외관계(명과의 관계) 310~315 P 朴元燾.

“본부 상서 문극신(門克新) 등 관이 삼가 성지(聖旨)를 받자오니, ‘전자에 조선 국에서 바친 정조(正朝)의 표문과 전문 속에 경박하고 모멸하는 귀절이 있어 이 [李모(某)]에게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게 하였더니, 단지 전문(箋文)을 지은 자만 보내 오고, 그 표문(表文)을 지은 정도전·정탁은 여태껏 보내 오지 않아서, 지금 다시 상보사승(尙寶司丞) 우우(牛牛)의 내사(內使) 양 첩목아(楊帖木兒)·송패라(宋孛羅)·왕예(王禮) 등 일동과 원래 보냈던 통사(通事) 양첨식(楊添植)과 종인(從人) 김장(金長)으로 본국에 가서 표문을 지은 정도전 등과 원래에 데리고 오라던 본국 사신(使臣) 류구(柳珣) 등의 가솔을 데리고 와서 완취(完聚)하게 하라.’ 하시기에, 이제 이 뜻을 받들어 성지(聖旨)를 갖추어서 자문으로 전한다.”

○朝廷使臣尙寶司丞牛牛宦者王禮宋孛羅楊帖木兒至 上率百官出迎于蟠松亭使臣至景福宮勤政殿先傳 宣諭聖旨曰恁那裏來的火者俺這內園裏到處裏行走都看來俺這裏去的到那 王的內園裏到處行走看一看明日好做親家又傳禮部咨曰本部尙書門克新等官欽奉聖旨前者朝鮮國進正朝表箋文內輕薄戲侮著 李某將撰文者發來止送撰箋者至其撰表人鄭道傳鄭擢至今不見送到今再差尙寶司丞牛牛內使楊帖木兒宋孛羅王禮一同原差來通事楊添植從人金長前去本國催取撰表人鄭道傳等及催原撤取本國使臣柳珣等家小前來完聚欽此今將 聖旨事意備云移咨

《太祖實錄 卷第9, 9面》

태조 5년(1396) 7월 8일(계해)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남은(南閔)이 상서(上書)하여 찬문자(撰文者)와 류구(柳珣) 등의 가족(家屬)을 보내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하였다.

○參贊門下府事南閔上書請止發遣撰文者及柳珣等家小

《太祖實錄 卷第10, 1面》

태조 5년(1396) 7월 19일(갑술)

사신 송패라(宋孛羅)가 먼저 남경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백관을 인솔하고, 반송정(盤松亭)에 나가 전별하였으며, 사신 우우(牛牛)는 유후사(留後司)까지 가서 전별하고 돌아왔다. 관사역원사(判司譯院事) 이을수(李乙修)로 관압사(管押使)를 삼아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지은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權近)과 우승지 정탁(鄭擢)과 그것을 계품(啓稟) 교정(校正)한 사람 경흥부 사인(敬興府舍人) 노인도(盧仁度)를 남경으로 보내고, 한성 윤(漢城尹) 하운(河崙)으로 계품사(啓稟使)를 삼아서 황제에게 시말을 주달하였다.

“홍무(洪武) 29년 6월 11일에 황제께서 보내신 상보사 승(尙寶司丞) 牛牛(우우) 등이 이르매,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황제 폐하의 분부를 받자왔는데,

그에 이르기를, 지난번 정단(正旦)에 올린 표문(表文)과 전문(箋文) 속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으므로,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 오라 했더니, 전문을 지은 자만 보내 왔고 표문을 지은 정도전·정탁은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우 등을 본국으로 보내어 표문을 지은 사람을 보내기를 재촉하고, 와 있는 사신 류구 등의 가솔(家率)을 보내어 와서 완취(完聚)하도록 하기를 재촉한다.’ 하였습니다. 근일에 받자온 이전의 예부 자문에, ‘폐하의 분부를 받자온 내용에, 이번에 올린 정단(正旦)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 안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었으나, 만일 언사가 모멸하고 거만스럽다고 군사를 일으켜 문죄(問罪)하는 것은 아직 불가하고, 글을 지은 사람이 와야 사신이 바야흐로 돌아가리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아본즉 홍무 29년 정단을 하례한 표문은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정탁(鄭擢)이 지었고, 전문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김약항(金若恒)이 지은 것이오나, 그때에 정탁은 병이 있었으므로 전문을 지은 김약항만을 홍무 29년 2월 15일에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사오며, 이제 온 사유를 받들어 표문을 지은 인원을 분부대로 보내옵는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정도전의 장고(狀告)에 의하면, 나이는 55세이고 판삼사사(判三司事)의 직(職)에 있사온데, 현재 복창(腹脹 : 배가 더 부룩한 병)과 각기병증(脚氣病證)이 있다 합니다. 도전은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의 하정표(賀正表)를 기초한 것을 고치거나 교정한 일이 없사온데, 이제 거기에 관련되었다 하여 자세하게 살펴 주기를 빌므로, 그 당시의 예문관에 당직(當直)한 자에게 허실(虛實)을 물어서 시행하기로 하여, 노인도(盧仁度)의 장계(狀啓)로 한 공초(供招)에 의하면 나이 30세에 무병(無病)하고, 예문관 직관(藝文館直館)의 직(職)을 맡았는데, 홍무 28년 윤9월 14일에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 정단에 하례하는 표문의 초고를 제조관(提調官) 판삼사사(判三司使) 정도전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였더니, 본관(本官 : 정도전의 자칭)이 종묘(宗廟)의 이안(移安)하는 제향(祭享) 등의 일로 인하여 고치거나 교정하지 못하였고, 표문의 초고를 차제조관(次提調官)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정충(鄭摠)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권근(權近)에게 교정했다 하였는데, 공초가 사실이므로 이것을 삼가 기록하여 아뢰다고 하였나이다. 이에 의거하여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신이 경사(經史)에 밝지 못하옵고, 글을 지은 자가 모두 해외(海外)의 사람이므로 어음(語音)이 다르고, 학문이 정미하고 해박하지 못해서 표문과 전문의 체제를 알지 못하여, 문자가 어긋나고 틀리게 된 것이요, 어찌 감히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했겠습니까? 삼가 분부하신 대로 표문을 지은 정탁과 교정한 권근이며, 교정을 계품한 노인도는 판사역원사 이을수를 시켜서 경사(京師)로 압송

하와 폐하의 결재를 청하는 외에, 정도전은 정탁이 지은 표문에 일찍이 지우거나 고치지 않았으므로 일에 관계없으며, 또 본인은 복창(腹脹)과 각기병(脚氣病)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류구(柳珣) 등 각항 사신의 가솔들을 보내라는 일절(一節)은 그욕이 생각하옵기를, 소방(小邦)이 성조(聖朝)를 섬긴 이래로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사온데, 이제 하정사(賀正使) 류구(柳珣) 등이 방환(放還)되지 못하였고, 또 가솔들을 들여보내라 하는 것을 보고는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며, 그 각 고을의 가솔들도 역시 고국을 떠나게 되어 슬프게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오니, 진실로 불쌍하옵습니다. 지금 글을 지은 사람 정탁·김약항 등은 이미 분부하신대로 경사(京師)에 보내어 다시 밝으신 처분을 기다리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와 나라 사람들의 소망을 위안해 주소서.”

○甲戌使臣宋李羅先還京師 上率百官送于盤松亭使臣牛牛送至留後司而還判司譯院事李乙修爲管押使管送撰表箋人藝文春秋館學士權近右承旨鄭擢當該啓稟校正人敬興府舍人盧仁度於京師以漢城尹河崙爲啓稟使具奏于 帝曰洪武二十九年六月十一日欽差尚寶司丞牛牛等官至准禮部咨欽奉 聖旨節該前者進正旦表箋文內輕薄戲 侮著將撰文者發來止送撰箋者至其撰表人鄭道傳鄭擢至今不見送到今再差牛牛等前去.本國催取撰表人及催原撤取本國使臣柳珣等家小.前來完聚欽此比奉以前.准禮部咨欽奉 聖旨節該今進正旦表箋文字內輕薄戲侮若以言辭侮慢.興師問罪.尚未可也撰文者至使者方歸.欽此照得進賀洪武二十九年正旦表文.係成均大司成鄭擢修撰箋文係判典校寺事金若恒修撰.其時爲因鄭擢患病止將撰箋人金若恒已於洪武二十九年二月十五日發送赴京今奉來因合將撰表人員欽依起送間行據都評議使司狀啓據鄭道傳狀告年五十五歲受判三司事職事見患鼓脹脚氣病證道傳於大司成鄭擢所撰洪武二十九年賀正表草並不曾改抹校正今負干連事因告乞詳狀將其時藝文館當該直館究問虛實以憑施行得此就責得盧仁度狀供年三十歲無病受藝文館直館職事仁度委於洪武二十八年閏九月十四日將大司成鄭擢所撰進賀洪武二十九年正旦表草到於提調官判三司事鄭道傳處稟請校正間爲緣本官掌宗廟遷移祭享等事不曾改抹校正却將表草於次提調官知門下府事鄭摠藝文館提學權近處校正所供是實得此謹錄狀啓據此竊念臣不諳經史而撰文者皆是海外之人語音別異學不精博未識表箋體制以致字樣差謬豈敢故爲戲侮除已欽依將撰表人鄭擢及校正表人權近當該啓稟校正人盧仁度責差判司譯院事李乙修管送赴京伏取 聖裁外其鄭道傳既於鄭擢所撰表文不曾改抹校正事無干連又緣本人患鼓脹脚氣病證不能起送所據柳珣等各項使臣家小一節竊謂小邦臣事聖朝以來不敢少怠今見賀正使柳珣等未蒙放還又奉撤取家小舉國臣民無不驚恐其各官家小等亦因違離鄉土哀號切至誠可憐憫見今撰文人鄭擢金若恒等既已欽依赴京更候明降伏望 聖慈寬宥以慰國人之望

태조 5년(1396) 11월 4일(무오)

계품사(啓稟使) 하륜(河崙)과 표문(表文)을 지은 정탁(鄭擢)이 예부 자문(禮部咨文)을 가지고 남경에서 돌아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本部) 좌시랑(左侍郎) 장병(張炳)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온즉, ‘지난번의 조선국 표문 속에 표문을 지은 자가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자를 썼으므로, 특히 사신(使臣) 류구(柳珣) 등 6명을 경사(京師)에 머물러 두고 그 표문을 지은 정도전(鄭道傳)을 찾아내어 경사로 보내라 했더니, 지금 사신이 돌아왔는데, 조선 국왕이, 「정도전은 병이 침중(沈重)해서 조리를 하지 못하고 올 수 없다.」 하고, 단지 표문을 함께 지은 정탁 등 3명만이 경사에 왔기에, 그 연유를 신문하였는데, 각 관원이 수재(秀才)가 표문을 지은 것이 확실하다 하고, 지난번에 보내 온 류구 등은 모두 수재가 아니므로, 이번 사신이 오지도 않아서 벌써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온 수재는 지난번에 온 수재와 함께 곧 돌려 보내려 한다. 대개 이들은 깊이 고금(古今)을 통(通)하고 널리 전고(典故)를 알아서, 표문과 전문 속에다 참작(參酌)해 의논하여 희롱하고 모멸한 문자를 넣었으니, 만약에 조선 국왕으로 말하면, 모두 두어 사람의 유생(儒生)이 한 바라 하지 않겠는가? 짐(朕)은 옛사람으로 두어 사람의 유생을 비교할 때에 모두 우리 중국의 한 천(賤)한 사람만도 못한 것이다. 옛날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칠 때에 군사가 적어서 패하여, 영인[伶人: 악공(樂工)] 운공 종의(郟公鍾儀)를 정나라가 포로하여 진(晉)나라에 바치니, 진공(晉公)이 군부(軍府)에서 보고 「남관(南冠)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유사(有司)가, 「정나라 사람이 바친 초나라 포로라.」 하니, 진공이 불러서 물으매, 종의는 본래 악공(樂工)으로 천인(賤人)이되, 그 응답(應答)하는 말이 모두 중평(中平)한 이치로서 편벽되고 구차한 말이 없어서, 비록 악공으로 있으나 그 뜻은 군자이었다. 공(公)이 범문자(范文子)에게 말하니, 문자가 종의가 군자인 줄 알고 「어찌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그치지 않아서, 생명(生命)을 상해(傷害)한 것이 천지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 일이 비록 컸으나, 이 사람이 이미 돌아간 뒤엔 진나라와 초나라와의 군사를 파(罷)하는 것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진공이 그 말대로 후대(厚待)해서 돌려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초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종의의 돌아온 것을 진나라의 덕이라고 하여, 이 까닭에 군사가 풀리고 전쟁이 그쳐져서 수십 년 동안 전쟁하는 괴로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천인(賤人)이 군자(君子)의 덕을 품고 있어 능히 난리를 풀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조선의 두어 사람의 선비는 초나라의 한 악공만도 못하므로, 이제 경사에 억류시켜서 왕을 모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의 말에, 「도(道)로써 임금을 도와주고, 군사로써 천하에 강한 체하지 말라.」 했으니, 이 두어 사람의 선비는 왕을 위해서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작은 적(敵)으로써 반항하는 행동을 하여, 희롱하고 경멸하는 문자로 틈이 생기게 하여 백성들에게 양화(殃禍)가 미치게 하였다. 너 예부(禮府)는 조선 국왕에게 글월을 보내[移文]되, 이들 선비를 중국에 머물러 둘 필요도 없으니 낮은 벼슬이나 주게 하라.’ 하였습니다.”

○戊午計稟使河崙.撰表人鄭擢.賫禮部咨文.回自京師.其咨曰.本部左侍郎張炳等官.欽奉聖旨.前者朝鮮國表內撰表者.故下戲侮字樣.特將使臣柳珣等六名.留在京師.索取同撰表人鄭道傳.赴京今使者歸朝鮮國 王已將鄭道傳作患病沈重.破調不來.只將同撰表人鄭擢等參名赴京訊其所以各官委實秀才曾經撰表定擬前文前者差來柳珣等皆不係秀才比今使者未至已自發還本國今來秀才與舊來秀才欲便發還蓋因此等深通古今博知典故所以表箋內斟酌定議安頓戲侮字樣若以朝鮮國 王言之無乃皆數生爲之朕以古人比較數生者皆不如我中國一賤人爾昔楚伐鄭軍小北陷及伶人鄭公鍾儀鄭既得之獻之於晉晉公於軍府見問南冠者誰有司答鄭人所獻楚囚也晉公召問之鍾儀本伶人賤人也其所應答言辭語意皆中平之理無偏循苟且之言雖在伶人其志君子哉公語范文子文子乃知鍾儀君子者盍歸之晉楚構兵連歲不已傷生害命有乖天地之氣事雖大此人既歸晉楚罷兵必成公允其說厚待而歸之既歸未久楚遣人報鍾儀之歸晉之德也由是兵解禍消數十年無征戰之勞此一賤人懷君子之道能排難解紛以安黎庶朝鮮數儒不如古楚之一伶人也今留京師無使隨侍於 王故人有云以道助人主不以兵强天下此數儒不爲 王量力敢作小敵之堅敢作戲侮生隙以構民殃爾禮部移文朝鮮國 王無用是生留於中國別授微職

《太祖實錄 卷第10, 7面》

중국정사조선열국전

27년에 단(旦)이 아들을 보내 들어와 조공하였다.

28년에 사신 류순(柳珣)³⁶⁾을 보내 다음해의 첫시작을 하례하였다. 제계서 표문

36) 柳珣(珣) : 원문의 '柳珣'은 '柳珣'의 잘못이다. 류순으로서 이름이 남을 만한 사람은 조선 세종~중종년간의 문희공(字 希明, 號 老圃)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여말·선초의 관계기사가 '柳珣'이기 때문이다.

류구는 여말·선초의 문신으로 공양왕때 예문관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창왕을 강화에서 죽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한 때 유형(流刑)되었으나, 바로 해배(解配)되어 참찬문하부사를 지냈다. 태조 4년 하정사(賀正使)로 명(明)에 견사(遣使)되었다가 표전문이 불성실하고 모만하다는 이유로 억류당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진천군(晉川君)을 봉하여 그 고생을 위로했다. 태조 5년 귀국하여 예문춘추관대학사가 되었다.

203) 二十八年……詰責之

태조 4년 10월 庚子에 조선에서 하정사로 대학사 류구·한성윤 정신의(鄭臣義) 등을 명(明)에 보내어 하정하고 그 표전을 올리게 했는데, 이 표전의 언사(言詞)가 모만(侮慢)하다고 하여 힐책하고 류구 등을 억류시켰다. 명은 고려 이래 올리는 표전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그릇됨이 많다는 것을 견책하여 왔다. 태조 3년 2월 己丑에 명사(明使)인 김인보(金仁甫)·장부개(張夫

(表文)의 말이 오만하다 하여 이를 힐책하였다. 류순(柳珣)이 표문은 문하평리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이라 말하니, 마침내 명을 내려 정도전을 잡아들이게 하고 류순은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였다.

29년에 표문을 지은 정총(鄭總) 등 세 명을 압송하여 도착해서 이르기를, 표문은 실지 정총 등이 지은 것이며, 정도전은 병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제게서 정총 등이 아랫나라를 어지럽히고 틈이 지게 하였다 하여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았다.

30년 겨울에 다시 표 때문에 책망을 하고 그 사신을 구류시켰다.

건문(建文：1399~1402) 초에 단(旦)이 표를 올려 자신은 연로하기에 아들 방원(芳遠)으로 왕위를 답습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허락하였다.

二十七年,旦遣子入貢.二十八年遣使柳珣賀明年正旦.帝以表文語慢,詰責之.珣言表文乃門下評理鄭道傳所撰,遂命逮道傳,釋珣歸³⁷⁾.二十九年送撰表人鄭總等三人至,云表實總

介)가 귀환하는 편에 취부(就付)시킨 상주문(上奏文) 중에
 更國號謝恩表箋內 雜以侵侮之辭 以小事大之誠 果如是乎……小邦僻處荒遠 言語不通 見聞不博 粗習文字 僅達事情 其於製作 未暗體格 以致錯誤 非敢故爲侮慢(『太祖實錄』太祖 3年 2月 己丑條)

라고 했고, 또 태조 5년 6월 庚子에 하성절차(賀聖節次) 경사(京師)에 견사(遣使)된 참찬문하부사 조반(趙胖)이 휴대한 예부에 보낸 자문(咨文)에도
 你那裏進來的表內下的字樣 好生兜塔 今後休教進表來 欽此 參詳 以小事大之禮 必因進表得達微誠云云(『太祖實錄』太祖 5年 6月 庚子條)

라고 되어 있어, 그 사정은 알 수 있거니와 저간(這間)의 이런 시비가 홍무 28년에 노골화된 것이다.

명(明)에서의 표문모만(表文侮慢)의 힐책은 『太祖實錄』太祖 5年 2月 丁酉에 하정사 류구의 타각부(打角夫)로서 수반했던 김을진(金乙珍)과 압물관(押物官) 고인백(高仁伯)이 귀환하여 전달한 예부자문(禮部咨文)에 상론되어 있다. 즉, '洪武二十九正朝表箋文內 輕薄戲侮……言辭侮慢云云'이 그것이다. 원문에서의 '賀明年正旦'은 곧 홍무 29년의 정조(正朝)를 말한다.

《中國正史朝鮮傳 譯註(四) 122~123 P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1990년 12월 26일》

37) 釋珣(珣)歸：하정표문(賀正表文)이 모만(侮慢)스럽다고 해서 류구(柳珣)를 심문하자, 류구는 표문을 찬문한 책임자가 정도전(鄭道傳)이라고 했다. 이에 명(明)에서는 정도전을 즉각 체포 압송하도록 조선에 명했다(『明實錄』洪武 28年 12月 己酉條). 그리고 '將撰文者至 使者方歸'라고 했다(同上). 이에 조선에서는 예부의 견책자문(譴責咨文)을 받은 일주일 후인 2월 癸卯에 통사 郭海隆에게 표문 찬문자인 판전교시사인 김약항(金若恒)을 압송시키면서, 예부에 이문(移文)하기를

小邦僻居海外 聲音言語不類中華 必憑通譯僅習文意 所學粗淺 措辭鄙陋 不能盡悉表箋體制……進賀洪武二十九年正朝表文 係成均大司成 鄭擢修撰 賀東宮箋文 係判典校寺事 金若恒修撰 爲緣鄭擢見患風疾病證 不能動履 難以起遣 除已欽依 差通事 郭海隆 管送撰文人 金若恒赴京 伏取聖裁(『太祖實錄』太祖 5年 2月 癸卯條)

라고 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전개(前揭)한 예부에 보낸 자문에서 본 바와 같이 정도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명에서는 상보사승(尙寶司丞) 우우(牛牛)와 환자(宦者)와 왕례(王禮)·송발라(宋孛羅)·양침목아(楊帖木兒)를 보내어(동년 6월 丁酉 도착) 정도전과 정탁의 인도(引渡)를 요구했다. 명에서는 註 □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찬문자를 포송받고, 약속대로 이 홍무 29년 하정표문관계(賀正表箋關係)의 정탁과 정신의(鄭臣義)만 석방 귀국시켰다. 이들은 태조 5년 11월 庚申에 돌아왔다(謝恩進表使 權仲和·進箋使 具成老는 被留).

《中國正史朝鮮傳 譯註(四) 124 P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1990년 12월 26일》

等所撰,道傳病不能行.帝以總等亂邦構釁,留不遣.三十年冬,復以表涉譏訕,拘其使.建文初,旦表陳年老,以子芳遠襲位.許之.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朝鮮》

태조 5년(1396) 11월 6일(경신)

사은 진표사(謝恩進表使) 권중화(權仲和)와 진전사(進箋使) 구성로(具成老)는 남경에 억류당하고, 사신(使臣) 류구(柳珣)와 정신의(鄭臣義)는 남경에서 돌아왔는데, 신의가 좌군 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을 전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本府) 좌도독(左都督) 양문(楊文)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왔는데, ‘지난해 5월에 조선국 진마사신(進馬使臣) 양침식(楊添植) 등이 본국에 돌아갈 때에, 요동 도사(遼東都使)에서 백호(百戶) 하질(夏質)과 군인(軍人) 유완자(劉頑子) 등 10명을 시켜 양침식 등을 호송하여 압록강까지 이르게 하니, 그곳에 이른 진마사신(進馬使臣)이 좋은 말로써 백호(百戶)와 기군(旗軍)들에게 설유(說諭)해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의주 만호부(義州萬戶府)의 관역(館驛) 안에 머물러 놓고 변변하지 못한 예(禮)로 서로 접대하면서 말이 많았으나, 백호 하질은 그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압록강을 떠나서 배가 중류(中流)에 이르자, 그중의 선부(船夫) 1명이 백호 하질의 목 밑에 있는 옷깃 단추를 거머쥐어 한꺼번에 강물로 던져서 백호가 강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이것이 과연 조선 국왕의 계책이었는가? 혹은 의주 만호(義州萬戶)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경박하고 간사한 것들이 함부로 혼단(釁端)을 일으켰으므로, 좌군 도독부를 시켜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의주 만호로 하여금 와서 회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庚申謝恩進表使權仲和進箋使具成老被留使臣柳珣鄭臣義回自京師臣義來傳左軍都督府咨其咨曰本府左都督楊文等官欽奉 聖旨去年五月朝鮮國進馬使臣楊添植等回還本國遼東都司差百戶夏質軍人劉頑子等一十名護送楊添植等抵鴨綠江至彼進馬使臣以好意諭說百戶弁旗軍等到鴨綠江左至義州萬戶府處館驛內安下以微禮相待間其中諭說辭多百戶夏質不然其說然後發到鴨綠舟至中流內船夫一名將百戶夏質頂下衣領鎖紐住一同投江以致百戶沉江滄死此果朝鮮國 王之謀歟抑義州萬戶之不仁歟以此輕薄奸詐擅生釁端恣左軍都督府移文朝鮮國 王令義州萬戶前來回話

《太祖實錄 卷第10, 7面》

태조 5년(1396) 11월 23일(정축)

○판삼사사 설장수와 중추원부사 신유현(辛有賢)을 남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였다. 그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하륜(河崙) 등이 남경에서 돌아와 삼가 성지(聖旨)를 전해 받자왔사운데, ‘나는 실심(實心)으로 친(親)하려고 한다. 내 자손이 사내아이는 많고

여아는 적다. 그곳에서는 겨우 8세에서 16세에 이르면 성정(成丁)이 된다. 그곳은 실사(實事)는 적고 허사(虛事)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너와 친하는 데 너는 반드시 지성을 요하고 일이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삼가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보내 온 사신(使臣) 류구(柳珣) 등이 모두 수재(秀才)가 아니므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하였사오니, 신이 성은(聖恩)에 감사하옵고, 온 국민이 기꺼워하는 경사입니다. 삼가 배신(陪臣) 설장수(偲長壽) 등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鞍馬)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옵니다.”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배신 권중화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삼가 황제의 분부를 전해 받자온즉, 중화 등 네 패의 사신(使臣) 정사(正使)와 종사관(從事官) 26명에게 각각 말 1필씩 주어서, 말을 타고 돌아오게 하였다 하오니, 이것을 듣고 당직(當職)은 감사하옵기가 실로 깊습니다.”

○賜鄉判三司事偲長壽中樞院副使辛有賢如京師謝恩奏曰陪臣河崙等回自京師欽傳 宣諭聖旨節該我實要做親我的子孫廝兒多女兒小恁那里纔八歲到十六歲便是成丁恁那里實事小虛事多是實呵我和你做親恁只要至誠不要生事欽此又准禮部咨欽奉 聖旨節該差來使臣柳珣等皆不係秀才發還本國欽此臣欽感 聖恩舉國忻慶謹遣陪臣偲長壽等欽賚鞍馬禮物赴京謝恩又咨禮部曰陪臣權仲和等回自京師欽傳 旨意仲和等四起使臣正從共二十六名欽蒙 聖恩各賜馬一匹騎坐還國聽此當職欽感實深 《太祖實錄 卷第10, 8面》

태조 6년(1397) 1월 28일(신사)

○류구(柳珣)로 삼사 우복야(三司右僕射)를 정신의(鄭臣義)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이직(李稷)으로 대사헌을, 함부림(咸傅霖)으로 좌산기(左散騎)를, 조서(曹庶)로 우산기(右散騎)를, 정구(鄭矩)로 좌간의(左諫議)를, 허주(許周)로 사헌중승(司憲中丞)을 삼았다.

○柳珣爲三司右僕射鄭臣義知中樞事李稷爲大司憲咸傅霖爲左散騎曹庶右散騎鄭矩左諫議許周司憲中丞 《太祖實錄 卷第11, 2面》

태조 6년(1397) 4월 25일(정미)

판삼사사(判三司事) 이거인(李居仁)을 회암사(檜岩寺)에 보내고, 우복야(右僕射) 류구(柳珣)를 광암사(光岩寺)에 보내어 성변(星變)에 대하여 기도하여 재앙을 없애는 법석(法席)을 베풀고, 검교참찬 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 최융(崔融)을 소격전(昭格殿)에 보내어 화성독초(火星獨醮)를 베풀게 하였다.

○丁未遣判三司事李居仁于檜巖寺三司右僕射柳珣于光巖寺設星變祈禳消災法席檢校參贊門下府事崔融于昭格殿設火星獨醮爲

《太祖實錄 卷第11, 12面》

태조 7년(1398) 1월 16일(갑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 류구(柳珣)가 졸(卒)하였다. 구(珣)는 진양(晉陽) 사람인데,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혜방(惠芳)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제수 받았다. 신축년(辛丑年) 겨울에 홍건적(紅巾賊)이 왕경(王京)을 함락시키니, 왕이 남쪽으로 행(行)하여 이천(利川)에 이르렀다. 구(珣)가 먼저 농장(農庄)에 이르러 통술(罇酒)과 들노루(野獐)를 거가(車駕) 앞에 드리니, 현릉(玄陵 : 공민왕)이 류숙(柳淑)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구(珣)의 오늘의 뜻을 잊지 말라.”

이때로부터 알아줌을 입어 벼슬을 거쳐 우사의 대부(右司議大夫)에 이르렀다. 계축년(癸丑年)에 나가서 경상도(慶尙道)를 안찰(按察)하고, 들어와서 우상시(右常侍)가 되었으며, 경신년(庚申年)에 밀직 부사(密直副使)를 제수 받고, 경오년(庚午年) 봄에 나가서 양광도(楊廣道)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었다. 본조(本朝) 을 해년(乙亥年)에 미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옮기어 드디어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이르렀고, 임금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을 삼았다. 정조 진표사(正朝進表使)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억류를 당하여 병자년(丙子年) 겨울에야 돌아와서 병들어 죽었으니, 나이 64세였다. 아들은 겸(謙)인데,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경계하였다.

“내가 재주가 없는데 분에 넘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만나, 항상 성상의 덕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한(恨)을 삼았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고 벼슬이 2품에 이르렀으니 또한 무슨 유한이 있겠는가? 다만 늙은 어머니가 당(堂)에 계신데 효도를 마치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다. 네가 너의 자식을 거느리고 조모(祖母)를 봉양하기를 내가 있던 날과 같이 하라.”

구(珣)의 사람 됨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외식(外飾)을 힘쓰지 않았다. 시호(諡號)는 정평(靖平)이라 하였다.

○藝文春秋館太學士柳珣卒.珣晉陽人.知靈光郡事惠芳子.登第拜監察御史.歲辛丑冬紅賊陷王京.王南行至利川.珣先至農庄以罇酒野獐.獻于駕前.玄陵顧謂柳淑曰.毋忘珣今日之意.自是遇知歷官至右司議大夫.歲癸丑.出按慶尙.入爲右常侍.庚申拜密直副使.庚午春出爲楊廣道都觀察使.及本朝乙亥.遷政堂文學遂至參贊門下府事.上以爲原從功臣.以正朝進表使.赴京被留.至丙子冬乃還病卒.年六十四.子謙將終戒之曰.予以不才.叨遇上知.常以未報.上德爲恨然予年過六旬.位至二品.亦何憾哉但以老母在堂.未得終孝痛心.爾率

爾子奉養祖母.如予在日珣爲人勤儉不務外飾諡靖平

《太祖實錄 卷第13, 2面》

清白吏錄 故事

廉吏之選所以勵世道而振清操也准秩而褒之錄后而勸之列朝之崇獎至矣第其抄選之規多有不可曉者清白之錄廉謹之選或有同時並舉則似不無差殊今案中所記初不標而別之亦有或錄或否者及至于肅廟甲戌南溪朴文純白上曰吏曹廉吏之錄惟以子孫之有力於銓曹懸註錄用者始爲入錄故堂錄不錄者甚多請令曝灑翰林考出於實錄以作成案事蒙允未知厥後果然釐正而試之而本曹案錄之畧加添補云英祖丁巳命抄清白吏二品以上各薦三人合五十餘人會園丁卯右相趙顯命以尹容等五人別薦正祖丙辰又命抄備堂各薦二人而尹著東時右相請以故相所薦五人先爲磨勘上從之

太祖朝

安 省 廣州人日三叅贊以一目差少故太祖命名 禹玄寶 丹陽人壬申以圃隱黨流拜官不起養浩堂(柳 珣 晉州人靖平藝文大提學) 吉 再 治隱麗朝注書太祖卽位棄官歸金烏山 徐 甄 利川人麗朝掌令陟

《典故大方 卷2 清白吏錄 太祖朝》

목은시고 권이십일(牧隱詩藁 卷二十一)

류밀직이 고당에 헌수하는데 나는 초대받았지만 병으로 가지 못하다.
柳密直獻壽高堂僕承招以病不赴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86 C》 《晉州柳氏文集 14面》

목은시고 권십삼(牧隱詩藁 卷十三)

류개성 구가 우엉·파·무와 김치·간장을 보내다.
柳開城珣送牛蒡蔥蘿蔔并沈菜醬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128 A》 《晉州柳氏文集 15面》

목은시고 권십사(牧隱詩藁 卷十四)

류개성이 이천의 별서로 돌아가는데, 늦게 들어 의논하지 못하였기에 읊어 단편을 이루다.
柳開城歸利川別墅聞之晚不及有所諮訪吟成短篇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144 D》 《晉州柳氏文集 15面》

목은시고 권십육(牧隱詩藁 卷十六)

류개성과 안좌랑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용부 정당이 문안하러 들렀기에 술잔을 주고받고 나서 한 수를 읊다.

柳開城安佐郎來饋適庸夫政堂過問獻酬 既畢哦成一首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193 B》《晉州柳氏文集 16面》

목은시고 권이십일(牧隱詩藁 卷二十一)

류개성이 밀직에 제배된 것을 축하하다.

賀柳開城拜密直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77 D》《晉州柳氏文集 16面》

목은시고 권삼십삼(牧隱詩藁 卷三十三)

서울로 부임하는 류밀직을 송별하는 시

送柳密直赴京詩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75 D》《晉州柳氏文集 16面》

목은시고 권이십이(牧隱詩藁 卷二十二)

류남경 순이 찾아 왔다.

柳南京來訪 珣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296 A》《晉州柳氏文集 17面》

목은시고 권삼십오(牧隱詩藁 卷三十五)

류진천군에게 붙임.

寄柳晉川君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508 A》《晉州柳氏文集 17面》

목은시고 권이십이(牧隱詩藁 卷二十二)

한양부윤으로 부임하는 류밀직을 전송한다.

送柳密直出尹漢陽府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302 A》《晉州柳氏文集 18面》

목은시고 권삼십오(牧隱詩藁 卷三十五)

보름 날에 행주 류영공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十五日 宿幸州柳令公野庄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511 C》《晉州柳氏文集 18面》

목은시고 권삼십사(牧隱詩藁 卷三十四)

완산 류 부윤에게 답함.
答完山柳府尹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97 B》《晉州柳氏文集 19面》

목은시고 권삼십(牧隱詩藁 卷三十)

어제 류밀직을 찾아 갔다가 술 취해 돌아왔다.
昨訪柳密直 醉歸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36 C》《晉州柳氏文集 19面》

양촌집 권십삼(陽村集 卷十三)

오관산 성등암을 중수한 기문
五冠山 聖燈庵 重創記 《韓國文集叢刊 7卷, 陽村集 145 B》《晉州柳氏文集 30面》

양촌집 권이십칠(陽村集 卷二十七)

사신 류순 정충 정신의 등의 재액을 막고 속히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올린 상소인데 왕의 전교를 받고 지음.
使臣柳珣 鄭摠 鄭臣義等 災厄消除 速還本國之願 奉教撰
《韓國文集叢刊 7卷, 陽村集 258 D》《晉州柳氏文集 31面》

양촌집 권이십팔(陽村集 卷二十八)

사신 류순과 정충 정신의 등을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 사신을 보냅니다.
使臣柳珣 鄭摠 鄭臣義等 速還本國之願 使司行
《韓國文集叢刊 7卷, 陽村集 260 C》《晉州柳氏文集 32面》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부사공(府使公) 류 호(柳 瑚)

고려(高麗) ?~?

지 영광군사 류혜방의 둘째 아들이며 생졸년대는 알 수 없다.

강릉부사(江陵府使)와 판 중추부사(判中樞府事)³⁸⁾를 역임한 고려말 문신이다.

공의 배위는 평산신씨(平山申氏 父 判書 諱, 祖 代言 仲明, 外祖 佐郎 茂松 庚蓀) 아들
은 없으며 사위가 부사(府使)를 지낸 하음인(河陰人) 봉원량(奉元良) 父 개성부윤(開城
府尹) 한성판윤(漢城判尹) 봉유인(奉由仁) 외손(外孫) 군사(郡事) 봉규(奉珪) 기록됨.

목은시고 권삼십일(牧隱詩藁 卷三十一)

강릉부사 류호가 부임할 때 떠난다고 하기에
江陵府使柳瑚 赴任告行

강릉 고을은 바다를 바라보고 산천을 등지고 있는데
수 많은 경관을 양 옆에 끼고 있다네
가령 백성들에게 오고를 노래하도록 한다던
다시 어느 지방에 가서 신선을 찾겠느냐?

江陵控海負山川
無數奇觀夾兩邊
僮使居民歌五袴³⁹⁾
更從何地覓神仙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53 C》《晉州柳氏文集 38面》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승통공(僧統⁴⁰⁾公) 류의호(柳義湖)

고려(高麗) ?~?

지 영광군사 류혜방의 셋째 아들이며 생졸년대는 알 수 없다.

38)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벼슬 이름.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2품이다. 조선 초기 중추원(中樞院)의 으뜸 벼슬. 품계는 2품. 세조(世祖) 12년(1466)에 중추원을 중추부(中樞府)로 고치고, 이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고쳤다.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

39) 오고(五袴) : 지방관이 선전을 베풀었을 때 백성들이 기리는 노래, 한(漢)나라 엄범(廉范)이 태수로 나갔을 때 백성들이 송덕(頌德)한 노래에서 유래함.

40) 승통(僧統) : 고려·조선시대 승려에게 보이던 국가 시험. 선과(禪科)라고도 이른다. 고려 광종(光宗) 때에 과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조선 중종(中宗) 때에 폐하였다가 명종(明宗) 초기에 다시 회복하였다. 과거의 대과(大科)에 해당하는 교종선(教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이 있었고, 소과(小科)에 해당하는 참학(參學)이 있었는데, 대과에 합격하면 대선(大選)이라는 초급 법계(法階)를 주었다. 대선 위에 여러 등급의 법계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僧選 고려(高麗) - 교종선(教宗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晉州柳氏 己丑譜 卷之1, 5面》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문간공(文簡公) 류 염(柳 琰)

공민왕 16년(1367)~?

공은 안간공(安簡公) 류혜손(柳惠孫)의 아들로 배위는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림(李琳)의 따님인 고성(固城) 이씨(李氏)이다. 자(字)는 여헌(汝獻), 호는 묵재(默齋),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아들 분(芬)을 두었는데 상호군을 지냈다.

우왕(禡王) 9년 4월

乙科 三人

前密直堂後官 金漢老(光州人), 前密直堂後官 沈孝生(富有人), 生員 金愔

丙科 七人

前郎將 李來(慶州人), 判官 柳琰(晉州人), 別將 尹珪(坡平人), 署令 成溥(昌寧人), 前郎將 權文毅, 郎將 李籛(仁川人), 成均進士 李芳遠

同進士 二十三人

進士 張子秀, 直長 朴簿(高靈人), 新進士 鄭安道(光州人), 內侍 尹宗文(茂松人), 參軍 李蟠(慶州人), 前中郎將 金若時(光州人), 寺丞 鄭易(大寧 海州人), 糾正 李孟潘, 判官 辛鳳生, 進士 尹湏(坡平人), 進士 吳陞(同福人), 生員 申包翹(高靈人), 主簿 李云老(固城人), 前直長 權堧(安東人), 前別將 王廉(開城人), 進士 李次點(星州人), 進士 玄孟仁, 中郎將 安東(忠州人), 進士 朴習(咸陽人), 進士 安希德, 進士 孫九成, 進士 尹思修(海平人), 進士 洪尙溥(南陽人)⁴¹⁾

신우 무진 14년(1388) 8월

8월에 이색을 문하시중으로 태조를 수시중(守侍中)으로 임명하였으며 서연(書

41) 동방급제한 인물 중에 간접 혼인 관계등 인척으로 연결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정이(鄭易) 해주정씨로 김현진 대제학으로 부인은 안동권씨(父 權嗣宗, 祖 權仲達)로 백부(伯父) 류혜방의 처가와 관계가 된다.

성부(成溥 : 父 대제학 成士達) 아들 성효원(成孝源)의 처가. 류겸의 손자인 류자해(柳子偕)의 딸이다.

오승(吳陞)은 동북오씨로 벼슬이 참찬이며 판밀직(判密直) 오중화(吳仲和)의 아들이며 류향(柳珣)의 아들인 류지관(柳之灌)의 장인이 된다. 오중화는 권렴(權廉)의 사위로 류혜손(柳惠孫)과는 동서간이 된다.

이운노(李云老) 철성이씨(鐵城李氏=固城李氏)로 이림(李琳)의 손자로서 류염의 처남되는 이귀생(李貴生)의 아들이다.

홍상부(洪尙溥) 남양인(南陽人)으로 홍징(洪徵)의 아들로 그 형 홍상빈(洪尙賓)은 최렴(崔濂)의 사위로 류겸과는 동서간이며 류염은 최렴과 동서간으로서 인척이 되기도 한다. 동생 홍상검(洪尙儉)의 사위가 류지관(柳之灌 : 父 柳珣)의 아들로 류안(柳岸)이다.

筵)을 열고 이색을 영 서연사(書筵事)로, 문하평리 정몽주를 지 서연사로, 좌 대언 권근(權近), 좌 부대언 류염(柳琰), 성균대사성 정도전(鄭道傳) 등을 모두 서연 시독(書筵侍讀)으로 임명하였고 또 사헌부(司憲府), 중방(重房), 사관(史官)들을 각각 1명씩 교대로 하여 매일 입시(入侍)케 하였다.

八月 以李穡爲門下侍中我太祖守侍中開書筵以李穡領書筵事門下評理鄭夢周知書筵事左代言權近左副代言柳琰成均大司成鄭道傳並充書筵侍讀又令司憲府重房史官各一人更日入侍
《高麗史 通卷137, 傳50卷, 27B葉~5行》

공양왕 기사 원년(1389) 11월

왕이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하였다. 우(禍) 창(昌)을 강하(降下)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이림(李琳) 및 자(子) 귀생(貴生) 여서(女壻) 류염(柳琰) 최렴(崔濂) 외손여서(外孫女壻) 노귀산(盧龜山) 질(姪) 이근(李懃)을 원지(遠地)에 유배하고 정양군(定陽君) 우(瑀)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장단(長湍)에 진(鎭)하여 써 비상사태에 대비케 하였다. 왕이 우구(憂懼)하여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좌우에게 말하기를 「여(余)의 평생(平生)에 의식(衣食) 사령(使令)이 다 족(足)하거늘 이제 짐(負荷)이 이와같이 무거우니 할 바를 알지 못하겠노라」하며 드디어 체읍(涕泣)하였다.

己巳元年十一月己卯

王卽位于壽昌宮降禍昌爲庶人流李琳及子貴生女壻柳琰崔濂外孫女壻盧龜山姪李懃于遠地遣定陽君瑀帥師鎮長湍以備非常王憂懼方夜不眠謂左右曰余平生衣食使令皆足乃今負荷如此其重不知所爲遂泣
《高麗史 通卷45, 世45卷, 3B葉~2行》

공양왕 원년(1389) 11월(기묘)

이 날 요(瑤)가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라 우와 창을 낮추어 서인(庶人)으로 삼고, 이림(李琳)과 그 아들 귀생(貴生), 류염(柳琰)·최염(崔濂)·노귀산(盧龜山)·이근(李懃)을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고, 정양군(定陽君) 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장단(長湍)에 가서 비상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

是日瑤卽位于壽昌宮降禍昌爲庶人流李琳及子貴生柳琰崔濂盧龜山李懃于遠地遣定陽君瑀帥師鎮長湍以備非常
《高麗史節要 第4卷 328面〈卷34, 21面〉》

공양왕 신미 3년(1391) 1월

을사일에 국대비(國大妃)의 생일이라 하여 우인렬, 이인민(李仁敏), 정희계(鄭熙啓), 이승인(李崇仁), 하륜(河崙), 권근(權近), 윤사덕(尹師德), 류염(柳琰), 이빈

(李彬), 노빈(盧贇), 이행(李行), 원상(元庠) 등을 사하여 서울이나 지방에서 임의로 거주케 하였다.

乙巳 以國大妃生日宥禹仁烈李仁敏鄭熙啓李崇仁河崙權近尹師德柳琰李彬盧贇李行元庠等皆許京外從便 《高麗史 通卷46, 世46卷, 1B葉~1行》

공양왕 3년(1391) 1월

○우인렬(禹仁烈)·장하(張夏)·이인민(李仁敏)·정희계(鄭熙啓)·이숭인(李崇仁)·하륜(河崙)·권근(權近)·윤사덕(尹師德)·류염(柳琰)·이빈(李彬)·노빈(盧贇)·이행(李行)·원상(元庠) 등의 죄를 사면하고, 모두 서울 밖에서 편의한 대로 거주하게 하였다.

○宥禹仁烈張夏李仁敏鄭熙啓李崇仁河崙權近尹師德柳琰李彬盧贇李行元庠等皆許京外從便 《高麗史節要 第4卷 388面〈卷35, 1面〉》

태종 2년(1403) 1월 20일(계묘)

여러 도(道)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의 제도를 복구하였다. 이문화(李文和)를 경상도, 함부림(咸傅林)을 충청도, 박은(朴崐)을 강원도, 장자충(張子忠)을 풍해도(豐海道), 류염(柳琰)을 전라도, 이원(李原)을 경기 좌우도 도관찰출척사로 삼았다.

○癸卯復諸道都觀察黜陟使 李文和爲慶尙道 咸傅林忠淸道 朴崐江原道 張子忠豐海道 柳琰全羅道 李原京畿左右道 《太宗實錄 卷第3, 4面》

태종 17년(1417) 9월 7일(기미)

이원(李原)을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으로, 이종무(李從茂)를 관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로, 윤곤(尹坤)을 의정부 참찬(參贊)으로, 정진(鄭鎭)을 우군 도총제로, 류염(柳琰)을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신상(申商)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박습(朴習)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선(徐選)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우균(禹均)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조흠(曹洽)을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平安道兵馬都節制使)로 삼고, 다시李明덕(李明德)을 좌대언(左代言)으로 삼았다.

○己未以李原爲議政府贊成李從茂判右軍都摠制府事尹坤議政府參贊鄭鎭右軍都摠制柳琰判漢城府事申商工曹參判朴習司憲府大司憲徐選忠淸道都觀察使禹均慶尙道都觀察使曹洽平安道兵馬都節制使復以李明德爲左代言 《太宗實錄 卷第34, 19面》

태종 18년(1418) 3월 21일(신미)

○사헌부(司憲府)에서 판진주목사(判晉州牧事) 류염(柳琰)의 죄를 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류염이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강주진(江州鎭)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鎭撫)의 취라치[吹螺赤: 군중(軍中)에서 소리를 부는 사람]를 정(定)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군인(軍人)을 뽑고 또 진주(晉州)·합천(陝川)·함안(咸安) 등지의 취적인(吹笛人: 피리를 부는 사람)과 창기(倡妓)를 거느리고 두 번이나 사냥[田獵]을 갔습니다. 노야(爐冶: 대장간)를 세 곳에 설치하여 증여(贈與)하여 보낼 도자(刀子: 칼)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 화매(和賣: 백성들과 서로 사고 팔)하여 공공연히 허비하여 썼습니다. 사냥하는 날이 오래 되어 군인들의 양식이 떨어지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여서 이를 주었으니, 조금도 재상(宰相)으로서 정상께서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것을 몸받을 뜻이 없었습니다. 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양권(梁權)이 진주 판관(晉州判官)이 되어서 류염과 통하여 같이 백성들에게서 군량(軍糧)과 피물(皮物)·마제철(馬蹄鐵: 말발굽에 박은 철) 따위의 물건을 거두어서 공연히 폐단을 일으켰으나, 아울러 모두 부당합니다. 율(律)에 의하여 죄를 논하여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류염은 나의 동년(同年)인데, 어찌 사냥을 좋아하기가 이와 같겠느냐?”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류염이 더욱 좋아하는 것은 매[鷹]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능히 매를 받지도 못하면서 매를 좋아하는 자가 자못 많다. 옛날에 정희계(鄭熙啓)가 이와 같았는데, 류염도 또한 매를 좋아하는 자이다. 범한 죄가 비록 많지만 두고 논하지 말라.”

하고, 다만 양권만 파직시켰다.

○司憲府請判晉州牧事柳琰罪命勿論啓曰琰在晉州江州鎭旣革尙定鎭撫吹螺赤多作弊事濫抄軍人且率晉州陝川咸安等處吹笛人及倡妓再行田獵置爐冶三所做贈送刀子造鎌和賣公然費用田獵日久軍人絕糧收斂於民以給之殊無宰相體 上憂民之意校書校理梁權爲晉州判官通同柳琰斂民軍糧及皮物馬蹄鐵等物公然作弊並皆不當依律論罪以懲貪污 上曰琰予之同年也何好田獵之如此乎趙末生對曰琰之尤好者鷹也 上曰不能臂鷹而好鷹者頗多昔鄭熙啓如是琰亦好鷹者也所犯雖多置而勿論只罷權職 《太宗實錄 卷第35, 25面》

清白吏錄 故事

廉吏之選所以勵世道而振清操也淮秩而褒之錄后而勸之列朝之崇獎至矣第其抄選之規多有不可曉者清白之錄廉謹之選或有同時並舉則似不無差殊今案中所記初不標而別之亦有或錄或否者及至于肅廟甲戌南溪朴文純白上曰吏曹廉吏之錄惟以子孫之有力於銓曹懸註錄用者始爲入錄故堂錄不錄者甚多請令曝灑翰林考出於實錄以作成案事蒙允未知厥後果然釐正而試之而本曹案錄之畧加添補云英祖丁巳命抄清白吏二品以上各薦三人合五十餘人會圈丁卯右相趙顯命以尹容等五人別薦正祖丙辰又命抄備堂各薦二人而尹著東時右相請以故相所薦五人先爲磨勘上從之

世宗朝

鄭 陟 晉州人判尹整庵恭戴公 崔萬理 海州人副學 黃 喜 見相 柳 寬 見相 孟思誠 見相 柳 謙 晉州人文刑曹左叅議 李石根 益安大君芳毅子 閔不貪 驪興人主簿 洪桂芳 南陽人叅議 朴彭年 六 臣 李廷備 慶州人監司 李 知 廣州人判官 黃孝源 尙州人左贊成襄平公 柳 琰 晉州人吏判文簡公 金 廡

《典故大方 卷2 清白吏錄 世宗朝》

목은시고 권구(牧隱詩藁 卷九)

류 판서(柳判書)가 이천(利川)에 있는 전사(田畝)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면서 다만 게[蟹]가 없을 뿐이라고 하였다.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74 D》 《晉州柳氏文集 34面》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군자소감공(軍資少監公) 류 찬(柳 瓚)

공의 자 호, 생졸년대는 전하는 기록이 없다.

다방(茶房) 도목(都目)을 거쳐 군자소감에 올랐다.

공의 부친 안간공 류혜손(柳惠孫)의 배위는 안동권씨(父 玄福君 權廉)와 개성왕씨(父 順仁大君 王瑞) 광산김씨(父 化平君 金光轍) 등 세 분이다.

공은 지신사(知申事) 박전(朴典 父 朴忠佐⁴²), 祖 朴莊)의 따님인 함양박씨(咸陽

42) 박충좌(朴忠佐) : 1287~1349. 고려 충목왕 때의 문신. 자는 자화(子華) 호는 치암(耻菴) 시호는 문계(文齊) 본관은 함양(咸陽) 문과에 급제 충숙왕 복위 1년(1332) 전라도 안렴사로 나갔다가 박연(朴連)의 참소로 해도에 유배되었고 뒤에 풀려나와서 여러 벼슬을 거쳐 충목왕 때 찬성사가 되어 왕에게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시강하였다. 판삼사사로 함양부원군에 봉해졌다. 박충좌의 어머니 철성이씨(鐵城: 固城)의 아버지 이준비(李尊庇)는 고려 원종 때에 문과 급제하여

朴氏)와 혼인하여 아들 문식(文植)과 4녀를 두었다. 문식의 배위는 본관 성씨의 기록이 전하지 않으나 3남 2녀를 두었다. 큰 아들 천(阡)으로 안동권씨 성화보 기록에 사정(司正)이며 둘째는 계(隄)이며 셋째는 습(隰)이다. 큰 사위는 호군(護軍) 김혜(金愷)며 둘째 사위는 첨지(僉知)에 오른 밀양인(密陽人) 손계공(孫繼恭 父 謙, 祖 元嗣)이다.

큰 따님의 남편은 김해인 서흥부사 김효분(金孝芬)이다. 아들 김진손(震孫 古名 淵)은 세종 20년(1438)에 문과 급제 후 승문원 교리(校理)를 지냈으며 경주이씨인 이종인(李種仁)의 딸과 혼인하였다. 처 이씨의 외조가 노한(盧閑)으로 진천군 류자해(柳子偕 父 怡, 祖 謙)의 동서인 노물재(盧物載)의 아버지가 된다.

둘째 사위는 진주정씨로 정효안(鄭孝安)이다. 그의 사위가 좌의정으로써 황보인과 함께 단종을 보필하다가 두 아들과 함께 격살당한 김종서(金宗瑞)이다.

셋째 사위는 최유원(崔有源)으로 소감(少監) 벼슬을 지내고 아들이 최진(崔溱) 사위로 이장손(李長孫)과 호군(護軍)을 지낸 강자주(姜自周)가 있다.

넷째 사위는 용궁인(龍宮人)으로 군사(郡事)를 지낸 전중권(全仲權)으로 세종조 문과에 오른 문신이다.

장남이 진사 영부(永孚) 차남이 부장(部長) 영창(永昌) 셋째 아들이 영령(永齡)으로 세조 8년(1462)에 문과 급제하여 장령, 좌랑(佐郎) 내자시 첨정을 역임한 문신이다.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 1476)에 이어 모든 진주류씨 족보 병자보(1756) 기축보(1829) 을사보(1905) 정미보(1968) 병인보(1986) 등의 대동보에 모두 류찬을 둘째 아들⁴³⁾에 기록하고 있다.

중서우상시(中書右常侍)에 올랐으며 손자 이림(李琳 父 李嶠)의 사위가 류찬의 형인 류엄(柳琰)이고 또한 사위가 우왕의 조비 아버지되는 최렴(崔濂 忠州人)으로 류찬의 조카되는 류겸(柳謙 父 柳珣 祖 柳惠芳)의 장인이 되며 류충좌의 셋째 아들 좌대인 박경(朴瓊)의 처가 안동권씨 권한공의 딸로 류혜방의 장인 권중달과 남매간으로서 혼맥이 중형으로 연결된다.

43) 둘째 아들 : 삼월 십이일에 류후덕(柳厚德 : 惠孫)이 그의 막내 아들 찬을 보내어 남경박씨 집안에 장가 들도록 했다.(三月十二日 柳厚德送季子攢入贅南京朴氏家)

이색의 목은집 4권(목은고시고 권28, 진주류씨문집 10P. 2003년)에 나오는 기록이다.(伯·仲·叔·季)의 막내로 기록한 것이다.

남경(南京)을 중국으로 간주해 丁未譜에는 麗末 父兄弟 掛朝服冠帶蔽陽笠不朝避入南京朴氏家. - 불사이군의 충절로 남경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했으며 후대 글 쓰는 사람들이 이를 인용했다.

남경(南京)은 고려 문종 때에 양주(楊州)를 승격시킨 이름이다. 문종 21년(1067)에 양주를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한양부(漢陽府)로 고쳤고 조선 태조 3년(1394)에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다.

태종 10년 1월 28일(을미)

○군자 소감(軍資少監)⁴⁴ 류찬(柳瓚)을 파직(罷職)시켰다. 류찬은 다방(茶房)을 경유하여 도목(都目)에서 벼슬을 얻었는데 이성 삼촌숙(異姓三寸叔)의 아내가 죽으니, 류찬이 그 복(服)으로 고(告)하였다. 사헌부(司憲府)가 논핵(論劾)하여 아뢰기를,

“오복(五服)의 도식(圖式)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류찬이 그것도 알지 못하니, 전곡(錢穀)의 출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파출(罷黜)을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乙未.○罷軍資少監柳瓚職.瓚.由茶房都目得官.其異姓三寸叔妻死.瓚乃告其服.司憲府劾啓曰.五服圖式.載在六典.瓚尚不知.錢穀出納.豈其所堪.乞行罷黜. 從之.

《太宗實錄 卷第19, 7面》

목은시고 권이십팔(牧隱詩藁 卷二十八)

3월 22일에 류후덕(柳厚德)이 막내아들 찬(瓚 분瓚)을 남경(南京)의 박씨 집에 데릴사위로 떠나보낼 적에 내가 천수사(天水寺)에서 전송을 하고 돌아와서는 매우 피곤하기에 시 한 수를 지어 읊다.

三月二十二日.柳厚德送季子瓚.入贅南京朴氏家.僕出餞天水寺.歸而困甚.吟成一首.

해마다 늦은 봄 삼월이 되면
낙양 사람들 맞고 보내는데
막내아들 장가 보내는 이곳
복사꽃이 또 새로이 피었도다
하늘은 흐려 비가 올 듯도 한데
먼지 없어 기쁘도다 조용한 길이
오래 쉬었건만 이다지도 피곤하니
병이 몸에 있는 것을 새삼 알겠도다

年年三月暮
迎送洛陽人
之子于歸處
桃花今又新
天陰疑欲雨
路靜喜無塵
久歇猶疲甚
方知病在身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05 B》

44) 군자 소감(軍資少監) : 군수품의 저장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 소감(少監)은 종4품의 벼슬 태조 원년에 두었다가 태종 14년(1414)에 부정(副正)으로 고쳤다.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수재공(守齋公) 류 향(柳 珣)

공(公)의 호는 수재(守齋)이며 안간공(安簡公) 류혜손(柳惠孫)의 아들로 관동안렴사, 장령, 개성소윤 벼슬을 하고 태종 원년에 경기우도 안렴사를 제수하였으나 출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배위(配位)는 전서(典書) 이복시(李復始)의 따님인 성주이씨(星州李氏)로 6남 3녀를 두었다. 지함(之涵)은 군사(郡事) 지연(之演)은 직장(直長) 지점(之漸)은 사직(司直) 지관(之灌)은 영유현령(永柔縣令) 지윤(之潤)은 음죽현감(陰竹縣監) 지옥(之沃)이며 사위는 신천인 강생민(康生敏 : 父 得和) 부정(副正) 안동인 권상공(安東人 權尙恭 : 父 權總, 祖 權季容, 曾祖 權仲達) 변계량(卞季良)과 처남 남매이며 류혜방의 장인 권중달의 증손자다. 권상공의 손녀 사위가 한산인 이우(李堦)인데, 그 사위가 류한장(柳漢長 父 柳子文)으로 혼맥이 연결된다. 사정(司正) 청주인(淸州人) 이중부(李仲扶)이다.

공양왕 4년(1392) 4월 정사

배극렴(裴克廉)으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삼고 조준(趙浚) 류만수(柳曼殊)로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삼고 설장수(偁長壽)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고 이원굉(李元紘) 김사형(金士衡)으로 삼사좌우사(三司左右使)를 삼고 이두란(李豆蘭)으로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를 삼고 우리 공정왕(恭靖王 李芳果)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삼고 조규(趙珪)로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삼고 윤사덕(尹師德)으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삼고 민개(閔開)로 겸대사헌(兼大司憲)을 삼고 이정견(李廷堅) 김자수(金子粹)로 좌우상시(左右常侍)를 삼고 최운사(崔云嗣) 이문화(李文和)로 좌우사의(左右司議)를 삼고 권총(權總)으로 사헌집의(司憲執義)를 삼고 박관(朴貫) 류향(柳珣)으로 장령(掌令)을 삼고 송인(宋因) 전순(全順)으로 좌우헌납(左右獻納)을 삼고 정탁(鄭擢) 김승(金陞)으로 지평(持平)을 삼고 최굉(崔宏)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삼았다.

丁巳以裴克廉守門下侍中趙浚柳曼殊爲門下贊成事偁長壽判三司事李元紘金士衡爲三司左右使李豆蘭知門下府事我

恭靖王判密直司事趙珪爲密直副使尹師德知密直司事閔開兼大司憲李廷堅金子粹爲左右常侍崔云嗣李文和爲左右司議權總爲司憲執義朴貫柳珣爲掌令宋因全順爲左右獻納鄭擢金陞爲持平崔宏爲右正言

《高麗史 通卷46, 世46卷, 38A葉~7行》

공양왕 4년(1392) 7월 계사

또 전밀직(前密直) 류혜손(柳惠孫) 군자윤(軍資尹) 강회중(姜淮仲) 개성소윤(開

城少尹) 류향(柳珣) 선공부령(繕工副令) 김윤수(金允壽) 호군(護軍) 강여(姜餘)를
외방(外方)에 유배하였다.

癸巳又流前密直柳惠孫軍資尹姜淮仲開城少尹柳珣繕工副令金允壽護軍姜餘于外

《高麗史 通卷46, 世46卷, 46B葉~6行》

태조 원년 7월 28일(정미)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偃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없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희백(姜淮伯)·이승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⁴⁵⁾·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침(金瞻)·허응(許膺)·류향(柳珣)·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穎)·류기(柳沂)·이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류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광(李允紘)·류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희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瑑)·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鄉)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45) 이종학(李種學) : 1361~1392. 고려 우왕 때의 문신, 학자. 자는 중문(仲文) 호는 인재(麟齋) 본관은 한산. 이색의 아들 문과급제, 우왕 때에 첨서밀직사사와 동지공거(同知貢舉), 공양왕 즉위 후 파직, 이초의 옥에 관련되어 투옥, 조선이 개국되자 장류후 장사현으로 이배되던 중에 살해되었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사실(史實)에 밝았다. 그형 이종덕(李種德)도 문과급제 후 지밀직(知密直)에 이르렀으나 공양왕 2년에 유배되었다가 조선개국과 함께 유배된 문신이다. 이종덕의 처가 진주류씨 류혜손의 딸로서 류향과는 남매간이 된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포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의 뜻에 맞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획 말절(條畫末節)이라 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 이색)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丁未 有司上言禹玄寶李穡僕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以戒後來 予尚憫之俾保首領 其禹玄寶李穡僕長壽等收其職貼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姜淮伯李崇仁趙瑚金震陽李擴李種學禹洪得等 收其職貼 決杖一百 流于遐方 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珣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咸李敢崔關李士穎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 收其職貼 決杖七十 流于遐方 金南得姜著李乙珍柳廷顯鄭寓鄭過鄭蹈姜仁甫安俊李堂李室等 收其職貼 放置遐方 成石璘李允紘柳惠孫安瑗姜淮中申允弼成石瑤金五倫鄭熙等 各於本鄉安置 其餘凡有犯罪者 除一罪常宥不原外 二罪已下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宥除之 敎書 鄭道傳所製 道傳與禹玄寶有宿怨 凡可以陷禹氏一門者 無所不圖 未稱其情 至是以十餘人爲援例 謀置極刑 以爲條畫末節以進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此輩何至極刑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科罪 上曰 若韓山君禹玄寶僕長壽 雖減等 亦不可加刑 慎勿再言 道傳等再請餘人杖決 上謂受杖者不至於死 不强止之

《太祖實錄 卷第1, 42面》

태종 원년 1월 24일(갑신)

○각도(各道)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고쳐 안렴사(按廉使)로 하고, 안노생(安魯生)⁴⁶⁾은 경상도(慶尙道), 조휴(趙休)는 전라도(全羅道), 이은(李垠)은 충청도(忠淸道), 이지직(李之直)은 강원도(江原道), 정혼(鄭渾)⁴⁷⁾은 경기 좌도(京畿

46) 안노생(安魯生) : 호는 춘곡(春谷). 본관은 죽산(竹山). 안면(安勉)의 아들로 공민왕 때에 군사 소윤, 병조총랑 등을 지냈고, 태조 원년에 장류되었으나 조선 태종 때에 경상도 안렴사, 이조참의, 충청도 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47) 정혼(鄭渾) : 여말 선초의 문신. 본관은 하동(河東). 지상(之祥)의 아들. 전리좌랑으로 있을 때

左道), 류향(柳珣)은 경기 우도(京畿右道), 이양(李揚)⁴⁸⁾은 풍해도(豐海道)의 안렴사로 삼았다.

○甲申改各道都觀察黜陟使爲按廉使安魯生慶尙道趙休全羅道李垠忠淸道李之直江原道鄭渾京畿左道柳珣京畿右道李揚豐海道 《太宗實錄 卷第1, 10面》

포은집 권이(圃隱集 卷二)

류안렴사 향을 전송한 두절구
送柳按廉使 珣 二絶 《韓國文集叢刊 5卷, 圃隱集 589 D》 《晉州柳氏文集 35面》

척약재 학음집 권하(惕若齋學吟集 卷下)

류염사를 전송하여
送柳廉使 《韓國文集叢刊 6卷, 惕若齋學吟集 41 A》 《晉州柳氏文集 36面》

목은시고 권삼십삼(牧隱詩藁 卷三十三)

류 염사가 술과 종이와 자리를 보냈다.
柳廉使惠酒紙席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81 B》 《晉州柳氏文集 37面》

진산군 4세(大丞公 13세) 현감공(縣監公) 류 진(柳 璡)

공은 안간공 류혜손(安簡公 柳惠孫)의 아들로 태어났다.

안간공 류혜손(安簡公 柳惠孫)은 현복군(玄福君) 권렴(權廉)의 따님인 안동권씨(安東權氏) 순인대군(順仁大君) 왕상(王瑤)의 따님인 개성왕씨(開城王氏) 화평군(化平君) 김광철(金光轍)의 따님인 광산김씨(光山金氏)와 혼인하여 염(琰), 찬(瓚), 향(珣), 진(璡)의 아들을 두었다.

자, 호를 비롯한 생졸년대가 전해오지 않는다. 조부는 진주백 유(晉州伯 洧), 증

모친이 왜구에게 살해되자 출전을 자청하여 소모별장이 되었고 창왕 원년(1389)에 박위를 따라 대마도 정벌에 공을 세웠다. 조선 건국 후에 전리좌랑, 태종 원년에 경기좌도 안렴사를 지냈다.

48) 이양(李揚) : 뒤에 나오는 류자해(柳子偕)의 세종 5년(1423) 11월 29일 기록 참조. 공조참의로서 사절로 북경에 다녀왔음이 확인된다.

조는 진주 류씨의 증시조인 판시사공 인비(判寺事公 仁庇)이다. 신녕현감(新寧縣監)49)을 지냈다.

공의 배위는 의정부 참찬 허시(許時)의 따님인 양천 허씨(陽川許氏)이다. 두분 사이에서 6남 3녀를 두었는데, 첫째 담(譚)은 군사(郡事), 둘째 해(諧)는 상호군(上護軍), 셋째 우(訐)는 군수(郡守), 넷째 의(誼)는 신녕현감을 지냈다. 다섯째 심(諶)과 여섯째 성(誠)은 현감 벼슬을 하였다. 세 딸은 각각 현령 강릉인 김박(江陵人 金博), 직장 여흥인 민석(直長 驪興人 閔釋), 감찰 문화인 류자미(文化人 柳自湄)에게 출가했다.

공의 후손 가운데 우뚝한 인물로 충청감사와 대사헌을 지낸 세침(世琛), 예조참의를 지낸 사규(思規),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희규(希規), 병조참판을 지냈으며 인조반정의 공신인 청천군 순익(靑川君 舜翼) 등이 있다. 이밖에도 현달한 인물도 대를 이어 많이 나왔다.

진산군 5세(大丞公 14세) 청백리공(清白吏公) 류 겸(柳 謙)

공의 자 호는 전하지 않으며 정평공(靖平公) 류구(柳珣)의 아들로 태어났다.

우왕 6년(1380)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다음해에 당후(堂後)로 출사하였다.

태종 7년(1407) 광주목사(廣州牧使) 이듬해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태종 9년 좌사간대부에 이어서 태종 10년에 형조참의로 경사(京師)에 다녀왔다.

죽보에는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의 벼슬 기록도 보이고 있다. 시와 문장에 능하여 양봉, 축산 등의 저술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으며, 세종조에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도은 이승인과 남매간인 안동인 김제(金澗)·강희중(姜淮中)·박관(朴貫)·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용헌(容軒) 이원(李原)·형재(亨齋) 이직(李稷) 등과 교유가 깊었다. 배위는 참찬 최렴(崔濂)의 따님인 충주최씨로 슬하에 이(怡) 열(悅) 척(惕) 전(愴)의 아들과 사위는 연안인 이돈(李敦: 父 좌상 이귀령(李貴齡))과 우참찬 성주인(星州人) 이건기(李堅基: 父 李穗, 祖 대제학 李仁敏) 영산인(靈山人) 신맹화(辛孟和)가 있다.

49) 신녕현감(新寧縣監): 경상좌도(慶尙左道) 신녕현(新寧縣)입니다. 현(縣)은 하위행정단위(下位行政單位)로 현(縣)의 뜻으로 군(郡)에 영속(領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縣)은 동반(東班) 정(正)·종육품(從六品)의 관직명(官職名). 태조(太祖) 13년 10월에 종래의 현무(縣務)를 현감(縣監)으로 고치게 하였다. 세종(世宗) 13년 1월에 외관(外官)의 품질(品秩)을 정(定)할 때에 현감(縣監)은 종육품직(從六品職)으로 정하였다. 《丙子譜 金卷 7面(洪)》

우왕(禡王) 6년 5월

乙科 三人

郎將李文和(仁川人), 典廐署丞李之直(廣州人), 佐郎韓尙質(清州人)

丙科 七人

典法佐郎成守恒(昌寧人), 別將崔寧(全州人), 進士李隲(延安人), 進禮門判官辛靖(靈山人), 典農寺丞金益偉(安東人), 生員吳蒙乙(寶城人), 部將權執經(安東人)

同進士 二十三人

進士朴堅基(密陽人), 散員宋子郊(礪山人), 進士李汝良(京山人), 別將李作(全義人), 慶順主簿高安勝(濟州人), 郎將鄭恂 鄭作郭(西京 一作 清州人), 進士閔汝翼(驪興人) 糾正權湛(安東人), 進士金常, 別將崔潏, 生員尹相(咸安 坡平人), 生員朴希賢, 進士柳謙(晉州人), 進士張至和, 郎將崔云嗣, 郎將徐坐(達成人), 生員安省(廣州人), 進士李陽實(永川人), 郎將金子孟, 糾正洪寶, 生員金雅, 前散員金郢(廣州人), 生員王章⁵⁰⁾

우왕 7년 4월

제사(祭事)를 제능(諸陵)에 섭해(攝行)하는데 헌관(獻官)이 꺾(闕)하였다. 이는 당후(堂後) 류겸(柳謙)과 녹사(錄事) 정수(鄭修)가 잊어버리고 도당(都堂)에 고(告)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四月攝事于諸陵獻官闕以堂後柳謙錄事鄭修遺忘不告都堂也

《高麗史 通卷134, 傳47卷, 28A葉~7行》

태조 7년 1월 16일(갑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 류구(柳珣)가 졸(卒)하였다. 구(珣)는 진양(晉陽) 사람인데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혜방(惠方)의 아들이다.

본조(本朝) 을해년(乙亥年)에 미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옮기어 드디어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이르렀고, 임금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을 삼았다. 정조 진표사(正朝進表使)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억류를 당하여 병자년(丙子年) 겨울에야 돌아와서 병들어 죽었으니, 나이 64세였다. 아들은 겸(謙)인데,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경계하였다.

50) 문과 급제자의 인맥 형성은 다음과 같다. 이문화(李文和)의 조부 이익세의 부인이 박종(朴琮)의 딸 함양박씨인데 박종의 처남 윤길손(尹吉孫)의 사위가 권중달로 류혜방의 장인이 된다. 이문화는 최렴(崔濂: 忠州人)의 사위로 류겸과는 동서간이 된다. 최렴은 이림(李琳: 固城人)의 사위로 당숙인 문간공 류염(柳琰)과 동서간이다. 이문화의 사위 윤번(尹璠: 父 尹承禮)은 류겸의 아들 류이(柳怡)와 처남된다. 권집경(權執經)은 류혜방의 처남 권사종(權嗣宗: 父 權仲達)의 둘째 아들이다.

“내가 재주가 없는데 분에 넘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만나, 항상 성상의 덕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한(恨)을 삼았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고 벼슬이 2품에 이르렀으니 또한 무슨 유한이 있겠는가? 다만 늙은 어머니가 당(堂)에 계신데 효도를 마치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다. 네가 너의 자식을 거느리고 조모(祖母)를 봉양하기를 내가 있던 날과 같이 하라.”

○藝文春秋館太學士柳珣卒珣晉陽人知靈光郡事惠芳子

本朝乙亥遷政堂文學遂至叅贊門下府事 上以爲原從功臣以正朝進表使赴京被留至丙子冬乃還病卒年六十四子謙將終戒之曰予以不才叨遇 上知常以未報 上德爲恨然予年過六旬位至二品亦何憾哉但以老母在堂未得終孝痛心爾率爾子奉養祖母如予在日

《太祖實錄 卷第13, 2面》

태종 7년 7월 19일(경오)

○광주 목사(廣州牧使) 류겸(柳謙)의 직첩을 거두고 진주(晉州)로 귀양보냈다. 류겸이 좌우도(左右道) 관리 30여 인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였다.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전백영(全伯英)은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되는 일을 제거하여 한 도(道)가 사모하는데, 불러 쓰임을 받지 못하고, 지금의 감사(監司) 류정현(柳廷顯)이 탁용(擢用)을 받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청컨대, 위에 전하여 아뢰어서 전백영을 불러 쓰도록 하소서.”

정부(政府)에서 계문(啓聞)하니, 임금(君)이 노하여,

“이것은 나더러 사람 쓰는 것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모조리 체포하여 국문(鞫問)하고자 하니, 정부(政府)에서 아뢰었다.

“만일 모두 체포하여 국문을 행하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다만 수령(守令)·교수(教授)·역승(驛丞) 가운데 수창(首唱)한 세 사람만을 국문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 이에 류겸(柳謙)과 양주 유학 교수관(楊州儒學教授官). 김종(金從)·금령도 역승(金嶺道驛丞) 이송덕(李崇德)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옥관(獄官)을 시켜 류겸 등에게 물었다.

“외관(外官)으로서 감사(監司)를 포폄(褒貶)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느냐? 전백영(全伯英)의 훌륭한 점과 류정현(柳廷顯)의 용렬한 점을 숨김 없이 다 말하라.” 또 주모자(首謀者)를 물으니, 류겸이,

“신(臣)이 주모하였습니다.”

하고, 또,

“류정현이 감사로 있을 때에, 일찍이 강무(講武) 행행(行幸)의 지응(支應)을 틈

타 몰래 나머지 물건 10여 바리를 제 집으로 실어왔습니다.”
 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실상이 없었으므로, 명하여 류겸(柳謙)만 죄주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이때에 류정현을 불러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제수하였다.

○收廣州牧使柳謙職牒流之晉州謙與左右道官吏三十餘人報于議政府曰前都觀察使全伯英愛民如子興利除害一道慕之而未蒙召用今監司柳廷顯乃蒙擢用民庶鈇望請轉聞召用伯英政府以聞 上怒曰是謂我用人不明也欲悉逮問政府啓若盡行逮鞠恐貽民弊請只鞠守令教授驛丞之爲首者三人 從之乃下謙及楊州儒學教授官金從金嶺道驛丞李崇德于巡禁司令獄官問謙等曰以外官而褒貶監司古有是乎伯英之優廷顯之劣其悉陳之無隱且問首謀者謙曰臣實爲之又言廷顯爲監司時嘗因講武行幸支應潛輸餘物十餘駄于其家按驗無狀命獨罪謙餘釋之時廷顯召拜中軍摠制

《太宗實錄 卷第14, 8面》

태종 7년 10월 11일(신묘)

○여칭(呂稱)·신유정(辛有定)·류겸(柳謙) 등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京外從便)시키고, 중[僧] 윤제(允齊)는 외방 종편(外方從便)시키고, 또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순금사(巡禁司)에서 올린 도류(徒流)의 계본(啓本)을 보고, 이죄(二罪)이하는 모두 방면하였다.

○辛卯○宥呂稱辛有定柳謙等京外從便僧允齊外方從便又覽刑曹司憲府巡禁司所上徒流啓本二罪以下皆放之

《太宗實錄 卷第14, 34面》

태종 8년 1월 20일(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갔으니, 태상왕(太上王)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상왕(上王)이 또한 덕수궁에 나아가서 병환을 물었으나 들어가 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돌아갔다. 명하여 이죄[二罪：교죄(絞罪)·참죄(斬罪)]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였는데, 장지(張祉)·염유치(廉有恥)도 또한 방면(放免)되었다. 류겸(柳謙)의 직첩(職牒)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己巳 上詣德壽宮以 太上王疾篤也 上王亦詣問疾未得入見涕泣而還 命放二罪以下見囚張祉廉有恥亦免命還給柳謙職牒

《太宗實錄 卷第15, 3面》

태종 8년 12월 15일(무자)

○이천우(李天祐)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남재(南在)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류양(柳亮)으로 참찬 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귀령(李貴齡)51)으로

51) 이귀령(李貴齡) : 1345~1439. 여말 선조의 문신. 자는 수지(修之). 시호는 강호(康胡). 본관은 연안(延安). 전공판서 이원발(李元發)의 아들이다. 고려말기에 판선공시사, 관군만호(管軍萬

로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성석인(成石因)으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박은(朴崐)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황거정(黃居正)·민여익(閔汝翼)으로 참지 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류겸(柳謙)으로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를, 현맹인(玄孟仁)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탁신(卓愼)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김맹성(金孟誠)으로 장령(掌令)을 허규(許揆)·노인구(盧仁矩)로 헌납(獻納)을, 이소축(李小畜)·이사관(李士寬)으로 지평(持平)을, 오선경(吳先敬)·류맹문(柳孟聞)으로 정언(正言)을 삼았다.

○戊子○以李天祐爲議政府贊成事南在吏曹判書柳亮參贊議政府事李貴齡兵曹判書成石因戶曹判書朴崐刑曹判書黃居正閔汝翼參知議政府事柳謙右司諫大夫玄孟仁知司諫院事卓愼司憲執義金孟誠掌令許揆盧仁矩獻納李小畜李士寬持平吳先敬柳孟聞正言

《太宗實錄 卷第16, 50面》

태종 8년 12월 25일(무술)

사헌 집의(司憲執義) 탁신(卓愼)⁵²⁾ 등이 상소하여 조대림(趙大臨)⁵³⁾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에 이르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송공(宋公)이 노공(魯公)에게 군사를 청하니, 노공이 사양하였고, 공자(公子) 휘(翬)가 군사를 청하여 모으려 하니 허락하지 않으므로, 군이 청하여 행하였는데, 설자(說者)가 말하기를, ‘공(公)이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의리이고, 휘(翬)가 불의(不義)로 군이 청하여 행한 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無君之心]의 조짐(兆朕)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이 역적 목인해(睦仁海)의 난모(亂謀)를 믿고, 도적이 있다고 고하여 감히 스스로 잡기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는데도 군이 청하여 군사를 발하였으니, 임금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인신(人臣)의 의리는 이루[成]는 것

戶) 등을 역임. 조선이 개국되자 잠저 때의 공으로 개국원종공신이 되었고, 태조 때에 형조·예조의 전서(典書)를 지냈다. 태종 3년(1403)에 병조판서, 15년에 검교, 좌·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치사하였다. 큰 아들 이책(李策)의 부인이 류혜방(柳惠芳)의 외손녀이고, 둘째 아들 이돈(李敦 혹은 李孝敦)이 류겸의 사위가 되며, 동생 이귀산(李貴山)의 증손 인행(仁行)의 사위가 류겸의 5대손인 청백리 충정공 류빈(柳濱)으로서 혼맥이 이어져 왔다.

52) 탁신(卓愼) : 1367~1426. 여말 선초의 문신. 자는 자기(子畿) 겸부(謙夫) 계위(溪危). 호는 죽정(竹亭).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광주(光州). 문과에 급제 경학(經學)에 밝았으며, 무예 음률에도 능하였다. 강직한 문신으로 때에 조대림 사건으로 모략 왕실이라는 태조의 분노에 맹사성 등이 능지처사 일본전에 장류되는 등 서슬 시퍼런 때에 다시 상소를 하였다.

53) 조대림(趙大臨) : 1387~1430. 조선 태종 때의 문신. 자는 겸지(謙之). 시호는 강안(康安). 본관 평양(平壤). 조준의 아들로 태종 2년(1402) 문과에 급제 호군(護軍)이 되어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慶貞公主)와 결혼하고 평녕군에 이어 동왕 6년 평양군에 개봉되었고 동왕 10년 윤사수(尹思修)와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원년(1419)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동왕 24년 평양부원군에 진봉되었다.

은 없고 마치[終]는 것은 있습니다. 비록 도적이 있어 마땅히 토벌할 것이라도, 마땅히 임금께 고하여 임금의 명령을 기다려서 나라에서 쳐야 합니다. 어찌 범염(犯染)하였다고 속여 말하고, 명령을 어겨 굳이 청하여 도성(都城) 안에서 간과(干戈)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리석은 것이요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혜의 꾀에 빠져서 장차 죽을 지경에 처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군사를 발하여 요란하게 한 죄는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가합니다. 다만 명령을 어기고 굳이 청한 죄는 어찌 내버려두고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허세자(許世子) 지(止)가 약(藥)을 맛보지 않았는데도 춘추(春秋)에서 대악(大惡)으로 가하였으니, 참으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부(君父)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부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은 곧 대악(大惡)의 시초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계[履霜之戒]를 보여 천하(天下) 만세(萬世)의 훈계(訓戒)를 삼아, 인군이 된 자로 하여금 악한 것을 은미(隱微)한 데서 제거하는 뜻을 알게 하고, 신하 된 자로 하여금 감히 군상(君上)을 소홀히 하는 마음이 없게 한 것입니다. 또 군사(軍士)라는 것은 불[火]과 같아서 사직(社稷)의 안위(安危)에 관계됨이 지극히 중(重)하니, 초기(早期)에 금지하여 엄하게 삼가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은 대림(大臨)의 명령을 어기고 굳이 청한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께서는 대훈(大訓)으로 결단(決斷)하여 만세(萬世) 인신(人臣)의 의리(義理)를 바꾸소서.”

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크게 노하여 곧 집의 탁신(卓愼)·장령 김맹성(金孟誠)·지평 이소축(李小畜)을 순금사에 가두고, 이조 판서 남재(南在)·형조 판서 박은(朴崧)·면성군(沔城君) 한규(韓珪)·총제(摠制) 성발도(成發道)를 명하여 탁신(卓愼) 등을 지도(指導)한 사람과 의논한 곳, 그리고 상소 가운데 노휘(魯翬)와 허지(許止)를 인용하여 비교한 뜻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또 좌대언(左代言) 이조(李槩)·승전색(承傳色) 노희봉(盧希鳳)을 명하여 옥(獄)을 감시하게 하였다. 탁신이 말하기를,

“신이 직책을 받던 처음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허조(許稠)가 신의 집에 왔기에, 신이 대림(大臨)의 일에 언급(言及)하여 말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허조가 말하기를, ‘평양군(平壤君)의 일은 진실로 부당하나 아직은 두어 두라.’ 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상관(上官)한 뒤에 손수 상소(上疏)를 초(草)한 것이요, 맹성(孟誠)과 소축(小畜)은 나이 젊고 또 문장(文章)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급히 허조를 옥에 가두라고 명하고, 종친(宗親)을 모해(謀害)하였다는 뜻으로 두 사람을 신문(訊問)하니, 허조도 또한 모진 매를 이기지 못하

여 드디어 승복(承服)하였다.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류겸(柳謙)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국가에서 대간원(臺諫員)을 설치한 것은 언직(言職)으로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지금 대신(臺臣)이 상소하였다 하여 옥(獄)에 가두고, 명하여 모진 매를 가하게 하시니, 신등은 이 뒤로 언로(言路)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 없는 왕친(王親)을 억지로 죄가 있다고 논(論)하는 것이 또한 언로이냐? 너희들도 또한 대림을 죄주자고 하는 것이냐? 내가 만일 힐문(詰問)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마침 조금 병(病)이 있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니 물러가라.”

하니, 류겸(柳謙) 등이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였다.

“내가 조금 병(病)이 있어 대원(臺員)의 죄를 친히 결단(決斷)하지 못하니, 경등이 의논하여 처치(處置)하라.”

○戊戌. 司憲執義卓愼等上疏請趙大臨之罪. 疏曰. 臣等. 聞宋公. 乞師於魯公. 公辭之. 公子翬請師會之. 不許. 固請而行. 說者以謂公辭而不許義也. 翬以不義. 固請而行. 無君之心. 兆矣. 今平壤君趙大臨. 信逆賊仁海亂謀. 告以有賊而敢請自捕. 上不允固請而發兵. 似乎無君矣. 人臣之義. 無成有終. 雖有賊當討. 當告于上. 以待君命國討. 安有誣稱犯染. 方命固請. 動干戈於城內乎. 惟其蠢愚. 非有二心. 墮仁海術中. 將陷之死地. 猶不覺悟. 其發兵擾亂之罪. 置而勿論. 其亦可矣. 獨其方命固請之罪. 豈可置而不問乎. 許世子止. 飲藥不當. 春秋. 加以大惡. 非謂真有是心也. 特以其有忽君父之心也. 忽其君父之心. 乃大惡之所由起. 所以示履霜之戒. 爲天下萬世之訓. 使爲人君者. 知除惡於微之意. 爲人臣者. 不敢有忽其君上之心也. 且夫兵. 猶火也. 社稷安危. 關係至重. 不可不戰之於早. 而致其嚴且謹也. 臣等. 願聞大臨方命固請之故. 斷以大訓. 以正萬世人臣之義. 上覽疏大怒. 卽下執義卓愼. 掌令金孟誠. 持平李小畜. 于巡禁司. 命吏曹判書南在. 刑曹判書朴訥. 沔城君韓珪. 摠制成發道. 鞫問愼等. 以指導之人. 論議之處. 及疏中引用魯翬許止. 以比方之意. 且命左代言李慥. 承傳色盧希鳳. 監其獄. 愼乃曰. 臣受職之初. 判典農寺事. 許稠. 至臣家. 言及大臨之事曰. 不可不問. 稠曰. 平壤之事. 固不當. 然姑捨是. 及臣上官. 手自草疏. 孟誠小畜. 年少. 且不能文. 所不知也. 上聞之. 亟命下稠于獄. 訊二人. 以謀害宗親之意. 稠亦不勝痛楚. 遂自承服. ○左司諫大夫柳謙等詣闕啓曰. 國家設臺諫員. 責以言職. 今臺臣上疏. 乃下于獄. 命加痛掠. 臣等. 恐自此以後. 言路之塞也. 上曰. 無罪王親. 強議其罪. 是亦言路乎. 汝等. 亦欲罪大臨乎. 予若詰問. 汝等. 必無辭以對. 適有微恙. 不欲多言. 可以退矣. 謙等不敢復請. 上命議政府曰. 予有微疾. 不親決臺員之罪. 卿等. 可擬議處置.

《太宗實錄 卷第16, 52面》

태종 9년 2월 25일(무술)

집의(執義) 정귀진(鄭龜晉)과 지평(持平) 이방(李倣)을 파직시켰다.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류겸(柳謙)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헌부(憲府)는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의 관원이므로, 사람의 옳고 그름과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일에 전하가 형조에서 판결한 수미(須彌)라는 계집의 간통 사건을 사헌부에 내려 그 시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집의 정귀진과 이방 등은 오결(誤決)한 관원의 죄를 청할 때에, 죄상(罪狀)에 관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복지친(無服之親)인 최금강(崔金剛)에게 애매하게 죄(罪)를 청하였습니다. 그 증좌인(證佐人)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거짓 증거를 행하여, 율(律)이 마땅히 장죄(杖罪)에 해당되는 자인데도, 아울러 죄주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놓아주어 죄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별하는 뜻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법을 맡은 관리로서 사람의 죄를 매기는데 그 경중(輕重)을 잃었으니, 그 죄가 작지 아니합니다. 두 사람의 직임을 파면시키도록 명하소서”

전날 저녁에 장무 헌납(掌務獻納)이 이미 탄핵을 당하였는데, 류겸 등이 짐짓 모르는 체하고 도리어 정귀진 등을 탄핵하였으나, 임금이 알지 못하였다.

○이빈(李彬)을 형조 판서로, 성석인(成石因)을 호조 판서로, 박은(朴崧)을 반성군(潘城君)으로, 류겸(柳謙)과 이종선(李鍾善)을 좌·우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로, 한상덕(韓尙德)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현맹인(玄孟仁)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았다.

○戊戌罷執義鄭龜晉持平李倣職右司諫大夫柳謙等上言憲府人主耳目之官人之是非罪之輕重不可不察也前日 殿下下刑曹所決須彌女奸事于憲府辨其是非今執義鄭龜晉持平李倣等將誤決官員請罪之際以不干罪狀無服之親崔金剛矇朧請罪其證佐之人不言情實故行誣證律應杖罪者不弁請罪故令放出以免其罪於 殿下明辨是非之意何如以執法之官出入人罪失其輕重厥罪不小命罷二人職前夕掌務獻納已被劾謙等伴爲不知者反劾龜晉等 上未之知也○以李彬爲刑曹判書成石因戶曹判書朴崧潘城君柳謙李種善左右司諫大夫韓尙德知司諫院事玄孟仁司憲執義

《太宗實錄 卷第17, 12面》

태종 9년 3월 19일(임술)

○사헌부 장령(掌令) 김이남(金以南) 등이 집의(執義) 현맹인(玄孟仁)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집의 현맹인 지사간(知司諫)을 맡고 있을 때에, 사간(司諫) 류겸(柳謙)과 더불어 최함(崔咸)을 그 죄가 아닌 것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장무 헌납(掌務獻納)을 탄핵함에 미쳐 그 까닭을 물으니,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본부

(本府)에서 이미 행한 공사(公事)를 채택(採擇)하여 애매하게 계문(啓聞)하였으니, 그 죄를 다스리도록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류겸(柳謙) 등이 죄함을 탄핵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가지고 대간(臺諫)을 파면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다.”

○司憲掌令金以南等請執義玄孟仁罪疏曰執義玄孟仁任知司諫時與司諫柳謙劾崔咸以非其罪及本府劾掌務獻納以問其故則佯爲不知者摺撫本府已行公事矇矓啓聞請治其罪 上曰謙等之劾咸誤矣然以小事罷臺諫非予心也 《太宗實錄 卷第17, 16面》

태종 10년 3월 7일(계유)

○형조 참의(刑曹參議) 류겸(柳謙)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다. 주본(奏本)은 이러 하였다.

“영락(永樂) 7년 10월 21일에 칙서(勅書)를 흠봉(欽奉)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왕의 곳에 말이 있다니, 형편에 따라 다소간 바치어 국용(國用)에 도움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값을 쳐서 갚겠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신이 본국의 종친(宗親)과 문무(文武) 대소 관료(大小官僚) 및 백성에 이르기까지 말이 있는 집이면 힘을 다해 관출(辦出)하여, 잡색마(雜色馬) 1만 필을 나누어 19운(運)을 만들어서 사람을 시켜 압령(押領)해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보내어, 교부(交付) 인계(引繼)하여 끝냈습니다.”

○遣刑曹參議柳謙如京師奏本曰永樂七年十月二十一日欽奉勅書節該 王處有馬隨進多少以資國用當酬以直欽此臣於本國宗親及文武大小官僚弁百姓有馬之家儘力措辦雜色馬一萬匹分作十九運差人管押送赴遼東都司交割了訖 《太宗實錄 卷第19, 19面》

태종 10년 5월 29일(을미)

주문사(奏聞使) 이현(李玄)과 류겸(柳謙)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이때에 황제가 북정(北征)으로 인하여 깊숙이 오랑캐 땅에 들어가고, 황손(皇孫)으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대신하게 하였는데, 도성에 머물러 있는 관원[留都官]이 행재소(行在所)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돌아왔다.

○乙未奏聞使李玄柳謙回自北京時 帝北征深入虜地皇孫監國留都官不許赴行在乃還 《太宗實錄 卷第19, 57面》

태종 10년 7월 12일(정축)

○이조 정랑(吏曹正郎) 박희중(朴熙中)을 순천부(順天府)에, 예조 정랑(禮曹正郎)

최진성(崔進誠)을 영암군(靈巖郡)에 귀양보내고, 모두 직첩을 거두었다. 사역원 부사(司譯院副使) 최운(崔雲)은 외방 부처(外方付處)하였다. 류겸(柳謙)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와 말하였다.

“박희중·최진성이 점마 별감(點馬別監)으로 의주(義州)에 이르러 역환(易換)마필(馬匹)을 점고(點考)하여 보내는데, 의주 등처의 군민(軍民)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진헌할 좋은 말과 군민(軍民)의 나쁜 말을 바꾸어 해송(解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운은 압송관(押送官)으로 요동(遼東)에 가서 또 말 1필을 의주 백호(義州百戶)에게 바꾸어 주었는데,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이르러 일기군(一旗軍)에게 발각되어 뇌물을 주고 면하였습니다.”

이 일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사실을 조사하게 하니, 박희중이 바꾼 말은 24필이고, 최진성이 바꾼 말은 22필이었는데, 장물(贓物)로 계산하면 참형(斬刑)에 해당되었다. 최운은 장물을 계산하면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해당되었는데, 임금이 모두 경한 율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流吏曹正郎朴熙中于順天府禮曹正郎崔進誠于靈巖郡皆收職牒司譯院副使崔雲外方付處柳謙回自北京言熙中進誠以點馬別監到義州點送易換馬匹循義州等處軍民之欲擅以進獻馬之良者易換軍民之駑馬而解送雲以押送官赴遼東亦以一匹換給義州百戶至都司爲一旗軍所覺賂而得免事下巡禁司覈實熙中所換二十四匹進誠所換二十二匹計贓當斬雲計贓杖八十徒二年 上皆命從輕施行 《太宗實錄 卷第20, 3面》

清白吏錄 故事

廉吏之選所以勵世道而振清操也淮秩而褒之錄后而勸之列朝之崇獎至矣第其抄選之規多有不可曉者清白之錄廉謹之選或有同時並舉則似不無差殊今案中所記初不標而別之亦有或錄或否者及至于肅廟甲戌南溪朴文純白上曰吏曹廉吏之錄惟以子孫之有力於銓曹懸註錄用者始爲入錄故堂錄不錄者甚多請令曝灑翰林考出於實錄以作成案事蒙允未知厥後果然釐正而試之而本曹案錄之畧加添補云英祖丁巳命抄清白吏二品以上各薦三人合五十餘人會園丁卯右相趙顯命以尹容等五人別薦正祖丙辰又命抄備堂各薦二人而尹著東時右相請以故相所薦五人先爲磨勘上從之

世宗朝

鄭陟 晉州人判尹整庵恭戴公 崔萬理 海州人副學 黃喜 見相 柳寬 見相 孟思誠 見相 柳謙 晉州人文刑曹左叅議 李石根 益安大君芳毅子 閔不貪 驪興人主簿 洪桂芳 南陽人叅議 朴彭年 六臣 李廷備 慶州人監司 李知 廣州人判官 黃孝源 尙州人左贊成襄平公 柳琰 晉州人吏判文簡公 金廡

《典故大方 卷2 清白吏錄 世宗朝》

고령현(高靈縣)

주진 풍속금유재(朱陳風俗今猶在) 류겸(柳謙)의 시

절옥편다즉(截玉偏多鯽) 유시역유량(流匙亦有梁) “떨어 놓은 옥에는 봉어가 많고, 놀리는 술갈에는 또한 기장이 있다.” 하였다. <객사(客舍)에 걸려 있는 시문>

《신동국여지승람 경남 고성군 편》, 《晉州柳氏文集 43面》

목은시고 권삼십이(牧隱詩藁 卷三十二)

류항과 함께 광양군을 초청하여 여름동안 공부하는 유생들을 살펴 보았다.

이 때에 비가 내려 밖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바로 귀산사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시를 지었는데 교관이 술자리를 배풀어서 조금 취해 돌아왔다. 이 때에 류항의 둘째 아들 상경과 나의 아들 중학 종선과 문하생 송문중이 따라 왔는데 마침 한 자리에 만난 자는 김제 강희중 신각 박관 류겸(柳謙)이었다.

同柳巷 邀光陽君 觀夏諸生 有雨不宜露坐 乃於龜山寺 刻燭賦詩 教官設酌 微醉而歸 從者柳巷次子尚敬 吾豚犬種學種善 門下生宋文中 而適值者 金澗 姜淮中 辛權 朴貫 柳謙也

《韓國文集叢刊 4卷, 牧隱藁 463 C》, 《晉州柳氏文集 40面》

춘정집 권사(春亭集 卷四)

류겸 어머니에게 드리는 만사

柳謙母氏輓章

《韓國文集叢刊 8卷, 春亭集 60 A》, 《晉州柳氏文集 40面》

용헌집 권일(容軒集 卷一)

광릉 류목사에게 부침

寄廣陵 柳牧使

《韓國文集叢刊 7, 容軒集 577 C》, 《晉州柳氏文集 40面》

용헌집 권이(容軒集 卷二)

허경차관 해에게 부쳐드리고 아울러 광주 류목사 겸에게 올림.

寄呈許敬差官該 兼呈廣州柳牧使謙 《韓國文集叢刊 7卷, 容軒集 589 A》 《晉州柳氏文集 41面》

용헌집 권일(容軒集 卷一)

류판서 겸의 시를 차운함.
次 柳判書 謙詩 《韓國文集叢刊 7卷, 容軒集 575 C》 《晉州柳氏文集 42面》

형재시집 권이(亨齋詩集 卷二)

사명을 받들고 연경으로 떠나는 류삼재를 전송하며 공자 운으로 지었다.
送柳三宰 奉使燕京 得公字 《韓國文集叢刊 7卷, 亨齋詩集 540 A》, 《晉州柳氏文集 43面》

진산군 5세(大丞公 14세) 정랑공(正郎公) 류지함(柳之涵)

자 호 및 생졸년대는 전하지 않고 있다.
공은 안렴사를 지낸 류향(柳珣)과 전서(典書) 이복시(李復始)의 따님인 성산이씨(星山李氏) 사이에서 맞아들여 태어났다.
세종 8년(1426)에 의금부 도사(都事) 9년에 형조좌랑 세종 11년에 사헌부지평 12년에 도관정랑(都官正郎)을 역임했다.
병자보(丙子譜)에는 군사(郡事)의 기록이다.
공의 배위는 기록이 전하지 않고 호군(護軍)의 휴(畦) 사직(司直) 주(疇)와 호군 치(時) 사직인 준(峻)의 네 아들을 두었으나 모두 아들 또는 손자 대에서 계대를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

세종 8년 12월 14일(계유)

○지기장현사(知機長縣事) 임길양(林吉陽)이 해청(海靑) 3연(連)을 사로잡았는데, 감사(監司) 신개(申槩)가 진짜 해청(海靑)이 아니라 하여 놓아 보내니,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류지함(柳之涵)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다.

○知機長縣事林吉陽捕海靑三連監司申槩以爲非眞海靑放之遣義禁府都事柳之涵劾之
《世宗實錄 卷第34, 17面》

세종 8년 12월 27일(병술)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류지함(柳之涵)이 경상도 도사(都事) 나유수(羅有綬)를 잡아 가지고 오니, 즉시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이윽고 석방하다.

○義禁府都事柳之涵拿慶尙道都事羅有綬而來卽命囚于義禁府尋放之

《世宗實錄 卷第34, 19面》

세종 9년 10월 16일(경오)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서로 송사하는 노비의 결안(決案)은, 양쪽 쟁송자(爭訟者)를 다 나오게 하여 공초를 받은 후에 주고 받게 하는 것은 일찍부터 법으로 세워져 있는데, 형조 좌랑(刑曹佐郎) 류지함(柳之涵)은 받을 자 혼자만 나오게 하여 수결하고 입안(立案)하였사온즉,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世宗)이 말하기를, “이 법을 형조에서 이미 거행하였는데 지함 혼자만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니 판서 노환(盧閑)이 대답하기를, “이 법이 이미 정해졌으나 본조(本曹)에서 아직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홀로 지함을 죄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논란하지 말라.

○庚午受朝視事司憲府啓相訟奴婢決案俱進兩爭者取招而後授得者曾有立法刑曹佐郎柳之涵獨進得者授決立案請罪之上曰此法刑曹已舉行而之涵獨不然乎判書盧閑對曰此法雖立本曹時未舉行上曰然則獨罪之涵無乃不可乎其勿論

《世宗實錄 卷第38, 4面》

세종 11년 12월 6일(무인)

○이교(李皎)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삼고, 권도(權蹈)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삼고, 심도원(沈道源)으로 인순부윤(仁順府尹)을 삼고, 이승직(李繩直)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송인산(宋仁山)으로 형조 참의(刑曹參議)를 삼고, 박곤(朴坤)·윤중부(尹重富)로 첨총제(僉摠制)를 삼고, 류지함(柳之涵)으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삼다. 본국에서 상주(上奏)하여 세공(歲貢)의 금·은을 면제 받는 데에 있어 윤봉(尹鳳)의 힘이 자못 있었기 때문에, 중부를 발탁하여 쓰고 아울러 전답 80결을 하사하다.

○以李皎同知敦寧府使權蹈漢城府尹沈道源仁順府尹李繩直大司憲宋仁山刑曹參議朴坤尹重富僉摠制柳之涵司憲持平本國奏免歲貢金銀鳳頗有力故擢用重富並賜田八十結

《世宗實錄 卷第46, 16面》

세종 12년 2월 23일(갑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류지함(柳之涵)이 아뢰기를, “처치사(處置使)의 직임(職任)은 사람들이 모두 이를 꺼리는 바이온데, 이제 이숙묘(李叔畝)가 전라도 처치사(全羅道處置使)로서 사면(辭免)하고 곧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임명되었사오니, 청컨대, 숙묘(叔畝)를 머물러 두고 그 사면하는 이유를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묘는 아내가 병들고, 처모(妻母)가 늙고 병이 있음을 이유로 사면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들어주지 않았더니, 그 처모가 또 말을 올려 이를 청하므로, 내가 늙은 숙모(叔母)의 말을 못이겨 허락한 것이지, 숙묘(叔畝)의 청을 들은 것이 아니다. 좌천(左遷)시켰으면 족할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다. 지함(之涵)이 또 다시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다. 이 앞서 숙묘(叔畝)가 대언(代言)이사후(李師厚)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광주(廣州)가 비록 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기(六期)를 치러야 하는 외직(外職)에 임명되는 것은 내게는 괴롭고 또 묵은 병이 있으니, 원컨대, 잘 아뢰어서 체임(遞任)되도록 하여 달라.” 하므로, 사후(師厚)가 비밀히 아뢰니, 임금이 노하여 책망하기를, “숙묘가 어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며, 너도 어찌 아뢰느냐. 네가 근신(近臣)이 되어 어찌 외인(外人)의 청을 듣고 나에게 번거롭게 하느냐.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다.

○司憲持平柳之涵啓處置使之任人皆憚之今李叔畝辭免全羅道處置使即拜廣州牧使請留叔畝問其辭免之由 上曰叔畝以妻病及妻母老疾請免予不聽妻母又上言請之故予勉從老叔母之言非聽叔畝之請也左遷足矣勿復言之涵再啓不允前此叔畝潛語代言李師厚曰廣州雖近然六期外任吾甚苦之且有宿疾願善啓遞差師厚密啓 上怒責之曰叔畝何以發如此言汝亦何以啓乎汝爲近臣何聽外人之請煩瀆於我耶勿復如是 《世宗實錄 卷第47, 23面》

세종 12년 8월 10일

○호조에서 중외(中外)의 공법(貢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기를, “서울의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안수산(安壽山)·총제 이천(李薦)·동지총제(同知摠制) 박규(朴葵)·전 총제 이순몽(李順蒙)·전 동지총제 이희귀(李希貴)·전 도관찰사 이정간(李貞幹)·전 판목사(判牧事) 김사청(金士淸)·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남실(南實)·전 동지총제 최건(崔鑄)과, 3품 이하 현재 재직 중에 있는 2백 59명과, 전함(前銜) 4백 43명 등은 가(可)하다고 하고, 전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전 판목사(判牧事) 황자후(黃子厚) 등은 아뢰기를, ‘신등이 옛 사람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 양민(養民)에 있었고, 양민(養民)의 정사란 백성으로부터 취(取)함에 있어 법도(法度)가 있었으니, 삼대(三代)에서 공(貢)·조(助)·철(徹)의 법을 시행한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중략]

도관 정랑(都官正郎) 류지함(柳之涵)·좌랑(佐郎) 윤처공(尹處恭)·권준(權蹲) 등은 아뢰기를, ‘다만 척박한 산전(山田)은 반드시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서로 번갈아 묵히고 하는데, 평야 지대의 전답의 예와 같이 논한다면 실로 큰 폐단이 될 것

이오니, 의당 수령에게 먼저 전답주의 신고를 받고 친히 경작 여부를 답사한 연후에 조세(租稅)를 거두도록 하소서.’ 하고, 도관서 영(導官署令) 김달성(金達成)·승(丞) 원내인(元乃仁) 등은 아뢰기를, ‘공법은 공사(公私)간에 모두 편리하여 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리하오니, 강원·황해도는 땅들이 자갈이 많고 토품도 다른도와 같지 않사오니, 평안·함길도의 예에 의하여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둔다면, 백성들에게도 편리하고 국가에서 새로 법을 세우는 본래의 미의(美意)에도 거의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조 좌랑 조수량(趙遂良)·좌랑 남간(南簡) 등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전토는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서로 달라서, 상전(上田)은 1결에 조세로 10두를 징수하여도 받는 것이 너무 적은 편이나, 하전(下田) 1결에 조세를 역시 10두를 징수한다면 이는 받는 것이 너무 많으므로, 백성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크게 다르오니, 전토의 등급을 나누어 9등으로 하고 조세도 역시 9등으로 정하여 민생의 편익을 주소서.’ 하고, 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판돈녕부사 한장수(韓長壽)·동지부사 이교(李皎)·조후(趙侯)·대사헌 이승직(李繩直)·병조 판서 조계생·참판 이중지(李中至)·도총제 원민생(元閔生)·총제 신장(申樞)·조치(趙菑)·이춘생(李春生)·동지총제 김을신(金乙辛)·홍이(洪理)·이수(李穗)·류한(柳漢)·인수부윤(仁壽府尹) 민의생(閔義生)·영돈녕으로 치사(致仕)한 권홍(權弘)·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이귀령(李龜齡)·전도총제 권희달(權希達)·전 판목사 문계종(文繼宗)·전 총제 노원식(盧原湜)·전 호조 참판 한상덕(韓尙德)·전 동지총제 권천(權踐)·전 부윤(府尹) 이흥(李興)·이육(李陸)·전 절제사 김소(金沼)·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권손(權遜)·유귀수(兪龜壽) 및 3품 이하 현직자 3백 93명과 전직자 1백 17명은 불가하다고 하고, 의정부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찬성 허조(許稠)·참찬 오승(吳陞)·이맹균(李孟畇) 등은 아뢰기를,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전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助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래 조세(租稅)를 거둘 적에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을 제정(制定)하니, 이는 실로 고금을 참작한 만대라도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인지라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지를 계정(計定)할 때에 모든 창고(倉庫)와 공수(公須)·아록(衙祿)·참역(站驛) 등의 전토를 참작해 헤아려서 숫자를 정한 것이운데, 이제 만약 조세를 감한다면 반드시 그 2배를 더 주어야만 원액(元額)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자전(軍資田)이 아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비옥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부강(富强)한 사람들이며, 척박한 전토를 점거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모두 빈한한 사람들이운데, 만약 호

조(戶曹)에서 신청한 공법에 의해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幸)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우기 함길·평안도의 전지의 조세는 다른 도의 수량보다 이미 감한 것인데, 이에서 또 감한다면, 만약 군병의 동원이나 큰 흉년이 있을 경우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조종조(祖宗朝)에 이루어 놓으신 법에 의하여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오며, 그 폐단을 구제 방지하는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나이다.

○戶曹具中外貢法可否之議以啓京中知敦寧府事安壽山摠制李葳同知摠制朴葵前摠制李順蒙前同知摠制李希貴前都觀察使李貞幹前判牧事金士清前中樞院副使南實前同知摠制崔蠲三品以下時行二百五十九人前銜四百四十三人等以爲可前兵曹判書趙末生前判牧事黃子厚等以爲臣等歷觀古人爲國之道在乎養民養民之政在乎取於民有制三代之所以貢助徹良[中略]

都官正郎柳之涵佐郎尹處恭權躡等以爲唯墾薄山田必不得每年而耕互相陳荒而與平田例論則實爲巨弊宜令守令先取田主告狀親審起陳而役收租讓官署令金達成丞元乃仁等以爲貢法便於公私實爲良法然江原黃海道地皆磽确而土品不如他道依平安咸吉道例差等收租則庶可便於民而不戾於國家立法之美意矣禮曹佐郎趙遂良佐郎南簡等以爲本朝土田膏墾不同上田一結收租十斗其取之也過少下田一結收租亦十斗則其取之也過多故民之好惡大不同願分田品爲九等租稅亦定爲九等以便民生礪山府院君宋居信谷山府院君延嗣宗驪川府院君閔汝翼判敦寧府事韓長壽同知府事李皎趙侯大司憲李繩直兵曹判書趙啓生叅判李中至都摠制元閔生摠制申樞趙菑李春生同知摠制金乙辛洪理李穗柳漢仁壽府尹閔義生領敦寧仍令致仕權弘右議政致仕李龜齡前都摠制權希達前判牧事文繼宗前摠制盧原湜前戶曹叅判韓尚德前同知摠制權踐前府尹李興李稷前節制使金沼檢校漢城尹權遜俞龜壽三品以下時行三百九十三人前銜一百七十七人等以爲不可議政府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叅贊吳陞李孟昉等以爲傳曰治地莫善於助莫不善於貢國朝制爲收租之際收損給損之法此實叅酌古今萬世可行之良法不可輕改且田地計定之時諸倉庫及公須衙祿站驛等田酌量定數今若減租必須加給二倍乃充元額然則軍資之田恐無遺矣大抵占膏腴田者率多富強之人占墾薄田者類皆貧乏之人若依戶曹所申貢法則富者之幸貧者之不幸況咸吉平安道田租旣減於他道之數而又減之則如有軍旅凶荒無以支當臣等切謂似難舉行乞依成憲仍舊施行庶爲便益今并錄救弊條件以聞

《世宗實錄 卷第49, 15面》

세종 12년 11월 12일(기유)

○지형조사(知刑曹事) 이숙치(李叔時)·정랑 류지함(柳之涵)을 의금부에 가두었으니, 성개(成槩)의 노비 사건을 잘못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숙치(叔時)는 성격이 지

나칠 정도로 자상하여 모든 처리하는 일에 대하여 앞뒤를 너무 재면서 겁을 내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므로, 형부의 일을 맡은 지 수 개월 동안 소송 사건이 연체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囚知刑曹事李叔時正郎柳之涵于義禁府以誤決成槩奴婢也叔時性多三思凡所施爲畏首畏尾知部數月訴訟多滯

《世宗實錄 卷第50, 17面》

세종 13년 1월 26일(신묘)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 봉례(奉禮) 송중선(宋衆善)이 동료 이신유(李愼猷)·정지례(鄭之禮)에게 부탁하여 최안우(崔安雨)를 추천하오나, 신유·지례 등이 중선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천거하였사오니, 율문에 의하여 모두 장(杖) 1백에 처하옵소서. 소윤(少尹) 권맹경(權孟慶)은 최안우를 잘못 승진시켰으며, 산관(散官)으로서 불법 천거하였사오니 장 80에 처해야 합니다. 또 최안우는 일찍이 경차관(敬差官)으로서 전최(殿最)에 하고(下考)에 처한 바 있고, 또 수령(守令)이 되어서도 정적(政績)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랑(正郎) 류지함(柳之涵)·서령(署令) 안계인(安季仁)·전 주부(注簿) 최맹하(崔孟河)·봉례(奉禮) 조욱생(趙旭生) 등도 불합한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역시 장 80에 처하게 하옵시고, 그 전형(銓衡)을 맡아 그릇 선발한 좌랑(佐郎) 민효환(閔孝權)과, 잘못 천거한 감찰(監察) 신자경(申自敬)·노물재(盧物載)도 아울러 율에 의하여 처벌하옵시기를 청하옵습니다.” 하니, 명하여 송중선은 장 1백을 속(贖)바치게 하고, 이신유·정지례는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파직(罷職)만 할 것이며, 권맹경은 그 직첩은 거두지 말고 장 60을 속(贖)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단하지 말게 하다. 안우의 아들 유(洵)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아버지가 본시 죄가 없사온데, 이제 형조(刑曹)와 감사(監司)가 죄명을 조작하여 전정(前程)을 막으니, 신등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刑曹啓前奉禮宋衆善囑同僚李愼猷鄭之禮使薦崔安雨愼猷之禮聽衆善所囑舉之按律並杖一百少尹權孟慶謬陞安雨散官而薦杖八十又安雨嘗爲敬差官殿最居下又爲守令政績未著正郎柳之涵署令安季仁前注簿崔孟河奉禮趙旭生等舉非其人亦杖八十其掌選謬舉佐郎閔孝權及謬舉監察申自敬盧物載請并照律命衆善贖杖一百愼猷之禮功臣之後只罷職孟慶勿收職牒贖杖六十餘皆勿論安雨子洵等上言臣父無罪今刑曹監司羅織罪名以廢前程臣等痛悶 上曰

《世宗實錄 卷第51, 12面》

진산군 5세(大丞公 14세) 호군공(護軍公) 류지윤(柳之潤)

수재공 류향(柳珣)과 전서 이복시(李復始)의 따님인 성산이씨(星山李氏) 사이에 태어났다. 족보에는 벼슬이 음죽현감(陰竹縣監)의 기록이다.

생 줄년 및 자 호는 전하지 않으며 배위는 권계(權繼: 父 權祥, 祖 權儼)의 따님인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권엄은 양촌 권근(權近)의 아버지 권희(權僖)의 백형(伯兄)이 된다.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躋)·전의위(全義尉) 이관(李椀)·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사직 임원준(任元濬)·훈련 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상호군 박불동(朴佛同)·사약(司鑰) 문금중(文金鍾)·사직 임어울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중략]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류자해(柳子偕)·참판(參判) 류의손(柳義孫)·처치사(處置使) 류강(柳江)·관찰사(觀察使) 류규(柳規)·판관(判官) 류균(柳均)·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행부사정(行副司正) 류종화(柳從華)·행사용(行司勇) 류포(柳哺)·행부정자(行副正字) 권제(權悌)·좌랑(佐郎) 윤필상(尹弼商)·부사직(副司直) 류숙(柳塾)·류양(柳壤)·행사용(行司勇) 류인습(柳仁濕)·교수관(教授官) 류자문(柳子文)·권지 정자(權知正字) 류천(柳阡)·주부(注簿) 류오(柳塢)·현감(縣監) 류효지(柳孝池)·진의 부위 류귀(柳龜)·부사정(副司正) 류순손(柳順孫)·류춘기(柳春寄),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錄)한다.[중략]

주서(注書) 류계분(柳桂芬)·사정(司正) 류정문(柳正文)·녹사(錄事) 류하식(柳河植)·만호(萬戶) 류조(柳條)·호군 류효용(柳孝庸)·부사정 류효손(柳孝孫)·판관 류침(柳瞻)·주부 류전(柳詮)·사정(司正) 류영간(柳榮澗)·행사정 류훈(柳訓)·주부 류효반(柳孝班)·부사 이진(李稹)·판관 류간(柳諫)·감찰 류쟁(柳諍)·부사정(副司正) 류간생(柳澗生)·부정(副正) 류담(柳潭)·좌랑(佐郎) 류곡(柳穀)·군사(郡事) 류효담(柳孝潭)·사용 류택(柳澤)·감찰(監察) 류자미(柳自湄)·봉상 윤(奉常尹) 류척(柳惕)·행사직(行司直) 류맹돈(柳孟敦)·부사(府使) 류양식(柳陽植)·호군(護軍) 류해(柳諧)·류지윤(柳之潤)·류영손(柳英孫)·류종식(柳宗植)·소윤(少尹) 류한생(柳漢生)·내금위(內禁衛) 류기(柳嗜)·

진용 교위(進勇校尉) 류수(柳睟) · 도사(都事) 류유(柳綏) · 행주부(行注簿) 류효순(柳孝順) · 수의 교위(修義校尉) 류사의(柳思義)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延昌尉安孟聃星原尉李正寧左贊成權躔全義尉李椀知敦寧成奉祖縣監鄭永通司直任元濬訓鍊錄事金嶠司正金大來上護軍朴佛同司鑰文金鍾司直林於乙云伊學生黃良錄原從功臣一等[中略]

同副知敦寧柳子偕叅判柳義孫處置使柳江觀察使柳規判官柳均應教徐居正行副司正柳從華行司勇柳晡行副正字權悌佐郎尹弼商副司直柳塾柳壤行司勇柳仁濕教授官柳子文權知正字柳阡注簿柳塢縣監柳孝池進義副尉柳龜副司正柳順孫柳春寄錄原從功臣二等[中略]

注書柳桂芬司正柳正文錄事柳河植萬戶柳條護軍柳孝庸副司正柳孝孫判官柳瞻注簿柳恠司正柳榮澗行司正柳訓注簿柳孝班府使李稹判官柳諫監察柳諍副司正柳澗生副正柳潭佐郎柳穀郡事柳孝潭司勇柳澤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行司直柳孟敦府使柳陽植護軍柳諧柳之潤柳英孫柳宗植少尹柳漢生內禁衛柳嗜進勇校尉柳睟都事柳綏行注簿柳孝順修義校尉柳思義錄原從功臣三登

《世祖實錄 卷第2, 64面》

진산군 5세(大丞公 14세) 상호군공(上護軍公) 류 해(柳 諧)

신녕현감공(新寧縣監公) 류진(柳瑱)의 아들로 생졸년 기록과 자 호는 전하지 않으며 부인은 보성오씨(寶城吳氏)와 청백리 이백지(李伯持: 父 李士渭, 祖 李仲仁)의 따님인 용인이씨(龍仁李氏)이다.

손자 류세침(柳世琛)이 문과에 합격하고 대사간과 대사헌을 거쳐 충청관찰사 재임 순시중 순직하였으며 후손 류사규(柳思規)는 명종 때에 정철 방하에 문과 합격 후 예조참의를 역임했으며 그 아들 충정공(忠靖公) 류순익(柳舜翼)은 을곡 이이(李珥)의 문인으로 역시 문과 합격후 병조참판에 올라 정사(靖社)의 공훈(功勳)으로 청천군(靑川君)에 봉하여졌으며 후손 류순무(柳舜懋)는 제주목사를 역임했다.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중략]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류자해(柳子偕) · 관찰사(觀察使) 류규(柳規) · 판관(判官) 류균(柳均) · 부사직(副司直) 류숙(柳塾) · 류양(柳壤), 교수관(教授官) 류자문(柳子文)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錄)한다. [중략]

주부 류진(柳恠) · 감찰(監察) 류자미(柳自湄) · 봉상 윤(奉常尹) 류척(柳惕) ·

행사직(行司直) 류맹돈(柳孟敦)·부사(府使) 류양식(柳陽植)·호군(護軍) 류해(柳諧)·류지윤(柳之潤), 내금위(內禁衛) 류기(柳嗜)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中略]

同副知敦寧柳子偕觀察使柳規判官柳均副司直柳塾柳壤教授官柳子文原從功臣二等錄[中略]

注簿柳恠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行司直柳孟敦府使柳陽植護軍柳諧柳之潤內禁衛柳嗜原從功臣三等錄
《世祖實錄 卷第2, 57面》

진산군 5세(大丞公 14세) 영동현감공(永同縣監公) 류 성(柳 誠)

신녕현감공 류진(柳瑱)의 아들로 배위와 생 줄년이 전해오지 않고 있다.

아들 맹연(孟演)과 중연(仲演)이 있으며 중연(仲演)의 아들 류돈(柳墩)이 중종(中宗) 5년(1510) 식년시 문과(式年試文科)에 급제하였으며 의정부 사인(舍人) 벼슬을 하였으나 이후 후손이 전하지 않고 있다.

세조 14년 8월 28일(을묘)

임금이 불예(不豫)하여 여러 종친(宗親)과 채추(宰樞)가 문안(問安)하였다. 세자(世子)가 영의정(領議政) 준(浚)과 더불어 서사(庶事)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순(韓繼純)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 바를 가지고, 선공감 정(繕工監正) 이운손(李尹孫)·봉사(奉事) 류성(柳誠) 등을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세자(世子)께서 어제를 지난 일은 용서하여 이를 사유(赦宥)하였으나, 준(浚)과 한계희(韓繼禧) 등이 다시 선공감 관리의 죄를 청하니, 비록 사유(赦宥)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파면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乙卯 上不豫諸宗宰問 安世子與領議政浚議定庶事同副承旨韓繼純持義禁府所啓繕工監正李尹孫奉事柳誠等照律以啓世子以經昨日肆赦宥之浚繼禧等更請繕工官吏之罪雖蒙赦宥猶當罷免世子從之
《世祖實錄 卷第47, 19面》

성종 9년 1월 11일(갑술)

○병조(兵曹)에서 하삼도 순찰사(下三道巡察使) 이극배(李克培)의 계본에 의거하

여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충주 목사(忠州牧使) 박계성(朴繼姓)· 태안 군수(泰安郡守) 김조양(金調陽)· 한산 군수(韓山郡守) 최지(崔漬)· 충주 판관(忠州判官) 이봉손(李奉孫)· 직산 현감(稷山縣監) 조충로(趙忠老)· 덕산 현감(德山縣監) 신자계(愼自齊)· 연풍 현감(延豐縣監) 전석동(全石童)· 청안 현감(淸安縣監) 김신손(金愼孫)· 제천 현감(堤川縣監) 신숙서(申叔胥)· 영동 현감(永同縣監) 류성(柳誠)· 이산 현감(尼山縣監) 최연명(崔延命)은 군기를 연마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계본에 의하여 파직하여 내치고, 본도의 절도사(節度使)도 검거(檢擧)하지 못하였으니, 유사(攸司)를 시켜 추국(推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下三道巡察使李克培啓本忠淸道忠州牧使朴繼姓泰安郡守金調陽韓山郡守崔漬忠州判官李奉孫稷山縣監趙忠老德山縣監愼自齊延豐縣監全石童淸安縣監金愼孫堤川縣監申叔胥永同縣監柳誠尼山縣監崔延命軍器不鍊請依啓本罷黜本道節度使亦不能檢擧令攸司推鞠從之 《成宗實錄 卷第88, 4面》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이판공(吏判公) 류 이(柳 怡)

공은 청백리공 류겸(柳謙)과 최렴(崔濂)의 따님인 충주최씨 사이에서 맏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졸년대와 자 아호는 전하지 않는다.

여말 선조 격변의 왕조(王朝) 교체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공은 벼슬도 말직인 사수시 녹사(司水寺錄事)의 족보 기록만 있을 뿐이며 사후에 자손들의 헌달로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아들 자해(子楷)가 영의정 심온(沈溫：父 沈德符)의 사위가 되어 세종대왕의 손 아래 동서로써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이며 손자 균(均)이 첨지중추부사 양(壤)이 광주목사 상의원정 숙(塾)이 첨지중추부사 오(塢)가 선공감정(繕工監正) 증손 첨정(添汀)이 남원부사 순정(順汀)이 중종반정의 주역으로 영의정에 올랐으며 고손인 빈(濱)은 청백리로 이조판서 부(溥)는 좌의정이며 영(滢)은 형조판서이며 빈의 아들 용근(庸謹)은 우승지 병마절도사로서 기묘사화에 피화(被禍)되어 기묘명현(己卯名賢)에 올랐다.

류극(柳誼)은 임진왜란 때에 선조 호성 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고 홍주목사를 역임했으며 영조의 신임으로 탕평책(蕩平策)을 적극 주도하고 6차례나 형조판서에 제수된 류엄(柳儼) 후기의 실학자로서 시문(詩文) 언문지(諺文志) 물명고(物名攷) 관상지(觀象志)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집주보설(集註補說) 유증(類

證) 훈고(訓詁) 송의(訟疑) 등 6개 분야를 그밖에 다른 문통(文通) 100권을 남긴 대학자 류희(柳僖) 을사망국(乙巳亡國) 경술국치(庚戌國恥) 시대에 김구(金龜)의 이름까지 개명(改名)하여 주는 등 독립자금 모금을 하고 강화 화도면의 전 재산을 털어 북간도로 건너가 전학(典學) 학교를 지으며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던중 밀정에 의해 암살된 류완무(柳完茂 : 初名 寅茂)⁵⁴⁾가 있다.

공의 배위는 고려조에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윤승례(尹承禮 : 父 尹陟⁵⁵⁾)의 따님인 파평윤씨(坡平尹氏)이다. 윤승례의 손녀가 세조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로 처남인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번(尹璠)의 딸이다. 이 가문의 파평윤씨와 진주류씨의 혼맥은 이봉 진주류씨와 토봉 진주류씨의 상계연구와 계보 분석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제공한다고 본다.

윤번의 부인 인천이씨는 이문화(李文和 父 李深)의 딸이다. 이문화는 최렴(崔濂 忠州人)의 사위로서 류겸과 동서간이나 류이와는 이종간의 인척이며 처남택이 되기도 한다. 최렴은 철성군 이림(李琳)의 사위로서 류염(柳琰 父 惠孫)과도 동서간이 된다. 윤번의 사위 한계미(韓繼美)는 류이의 아들 류균(柳均)의 장인 한혜(韓惠 父 韓尙敬)의 아들이다. 류이의 종손자(從孫子)되는 류중손(柳仲孫 父 子行, 祖 惕)의 처 거창신씨(居昌愼氏 父 光庚, 祖 幾)의 외조부가 한혜로 연결된다.

윤승례의 아버지 윤척은 류구와 공민왕 12년에 홍건적난 때에 개성수복 2등공신에 함께 녹공되었으며 부인이 전의이씨로 이광기(李光起)의 딸인데 이광기의 동서가 순창설씨 설안통(薛安統)으로 아버지 설봉(薛鳳)의 딸이 해주인 오준량(吳俊良) 처인데 오준량의 사위가 한상경(韓尙敬)으로 한계미의 할아버지이다. 오준량은 류구(柳珣)의 처 외조부 오찬(吳瓚)의 아들로 연결된다.

윤척의 큰 아들 윤승휴(尹承休)의 사위가 류흥(柳興 父 台壽, 祖 之浣)으로 토봉 진주류씨이다.

셋째 아들 윤승순(尹承順)의 큰 사위가 한상환(韓尙桓)으로 한상경의 큰 형이

54) 류완무(柳完茂 : 初名 寅茂) : 철종 12년(1861~1907). 자는 중일(仲日). 강화 화도면 장화리(長花里)에 한학을 하며 후학을 가르치던 류보형(柳補衡 : 1825~1884)의 아들이다. 진주류씨 세보(1986刊, 4권 46 P)에 光武乙巳後 携家族 渡 豆滿江 典學設校 丁未(1907) 4월 14일 爲 日人所 被害의 기록이다. 다음은 백범일지의 기록이다. 경자년(1900) 2월 김창수(金昌洙 : 김구(金九)의 개명전 이름)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무진 애를 썼다. 류완무의 동서 박태병(朴台秉)의 집 대담에서 “뱀의 꼬리를 붙잡고 올라가면 용의 머리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성태영과 류완무는 창수(昌洙)라는 나의 이름이 불편하다 하여 김구(金龜)로 고치고 호는 연하(蓮下) 자는 연상(蓮上)이라 정하여 주었다. 류완무 제자 주윤호(朱潤鎬)를 찾아갔다. 주인사는 백동 4,000냥을 류완무에 보냈는데 나는 그것을 온몸에 감고서 경성으로 돌아왔다. 1904년 2월 김구가 평양사범 강습을 마치고 장련으로 돌아왔다. 사직동에 거주할 때 류완무 주윤호 진사와 함께 방문했다.

55) 윤척(尹陟) : ?~1384. 고려 공민왕 때의 무신 충정왕(忠定王) 2년에 우부대언이 되었고 공민왕 12년(1363) 군부판서로서 홍건적의 난 때에 경성을 수복한 공으로 2등공신에 올랐으며 우왕 때에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다.

되며 아들 윤곤(尹坤)의 처가 한상환의 동생으로 이문화와 동방급제한 한상질(韓相質)의 딸이며 윤곤의 아들 윤삼산(尹三山)의 사위가 서림정 저(西林正 低)로 효령대군의 손자로 그 사위가 사직 참봉 류우(柳瑀 父 長孫, 祖 子行)인데 조카 윤훈(尹堦 父 希齊, 祖 坤)의 아들 윤사묵(尹師默)이 류우의 동생인 송화현감 류여(柳璵)의 장인으로 연혼관계인데 이들은 류이의 동생 시윤공(寺尹公) 류척(柳惕)의 증손자들이다. 윤삼산의 아들 윤해(尹垓)의 사위가 류이의 고손인 충정공 류빈(柳濱)이다.

윤승례의 숙부가 윤리(尹蒞)인데 큰 사위가 일직손씨(一直孫氏) 좌대언 손득수(孫得壽 父 시중, 孫 洪亮)로 토봉 진주 류의(柳依 父 光甫, 祖 槩, 曾祖 仁茂)의 장인이 된다.

류광보, 류개, 류인무의 행적이나 기록을 사료나 문헌에서는 도저히 추출해 볼 수 없으며 처족의 가계 내지 인척관계도 다른 가문 족보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계(家系)이다. 다만 류인무 만이 칠원윤씨 족보에서 군부판서 윤수(尹秀)의 사위로 등재됐다. 이문화의 조부 이익세(李益歲)가 윤수의 사위로 같이 기록되어 상계의 혼맥을 짐작 할 수 있다.

윤리의 둘째 사위가 오중륙(吳仲陸)인데 류구의 처 외조부인 오찬의 형인 오수(吳璿)의 아들로 혼맥이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북부령공(北部令公) 류 열(柳悅)

공의 생졸년대 및 자 호는 전해오지 않고 있다.

청백리공 류겸(柳謙)과 참찬 양정공(良靖公) 최렴(崔濂)의 따님인 충주최씨(忠州崔氏)의 아들이다. 음사(蔭仕)로 출사 북부령을 역임했으며 자손들의 영달로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배위는 판사(判事) 김기(金淇 : 祖 監事 金觀道, 外祖 閔仲理)의 따님으로 상주 김씨(尙州金氏)이다. 아들은 자충(子忠) 자효(子孝) 자문(子文) 자신 자형이며 사위로 연안인 김정과 정은(鄭垠)⁵⁶⁾이 있다.

56) 정은(鄭垠) : 진주류씨 족보에는 강혼(姜渾)이 지은 아들 정인학(鄭仁學)의 묘지명에 진주정씨로 류열의 사위가 확인된다. 晉州鄭氏로 씨족원류에는 예천(體泉)으로 기록되어 있다. 묘지명에는 황해도 관찰사 씨족원류에는 참의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정은의 사위는 黃謹昌으로 류열과는 동서간인 황치신(黃致身 : 父 黃喜)의 셋째 동생인 황수신(黃守身)의 손자로 그 아버지는 장원군 黃脊인데 그 부인 진주姜氏가 류열의 장조카인 류자해와 동서간인 강석덕(姜碩德)의 따님이며 황근장의 아들 황순(黃純)의 처가 진주류씨로 류종수(柳宗秀 : 父 柳譚, 祖 柳塤)로서 혼맥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예공 자문(子文) 이후 후대에 공조판서 정민공 진동(辰仝) 승지 도(濤) 경원 부사 용(溶) 삼도 수군 통제사 충경공 류형(柳珩) 충융사(摠戎使) 충장공 류림(柳琳) 인조반정의 진무공신 진양군(晉陽君) 효걸(孝傑) 조선조 서화(書畵)에 이름을 떨친 형조판서 야당공(野堂公) 류혁연(柳赫然) 수운공(岫雲公) 류덕장(柳德章)이 있으며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무숙공 류효원(柳孝源)과 형조판서를 지낸 류하원(柳河源)이 있다.

등단록(登壇錄)에 오른 훈련(訓練) 어영대장에 오른 류상량(柳相亮) 삼영대장(訓, 御, 禁衛)에 오른 류상필(柳相弼) 등이 있으며 병사(兵使), 수군절도사, 목민 관에 오른 부사, 목사, 현감 등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조선조 무반 벌열 가문에서 빠지지 않는 삼도통제사 10명 사대장신(四大將臣)을 배출한 가문이 이 북부령공과 후손 가문이다.

세종 14년 4월 23일(신해)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임금이 전염병에 걸린 자를 구호하지 못하고, 혹 생명을 상하게 하는 데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사람을 시켜서 거리를 돌아보게 하였더니, 소격전(昭格殿)의 종인 눈먼 여자 복덕(福德)이 아이를 안은 채 식량이 끊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다 하므로 임금이 놀라서 즉시 소격전의 전지기[殿直] 선승렬(宣崇烈)과 북부령(北部令) 류열(柳悅)을 형조에 내려 추국(推鞠)하게 하고, 복덕(福德)에게는 쌀과 콩 각 1 석(石)을 주게 하다.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하사한 쌀을 다 먹은 뒤에는 또 다시 굶주릴 것이니 어떻게 구제하겠는가.”고 하며, 안승선이 아뢰기를, “여러 곳을 방문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1, 2명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행히 성상께 알려져서 특히 쌀과 콩을 하사 받았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의 족친(族親)에게 맡기거나, 또 당해 관사(官司)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한성부(漢城府)에 전지하기를, “다만 전염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유리(流離)하여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도 죄다 찾아서 아뢰라.” 하다.

○辛亥輪對經筵○上慮疾疫者無救護或至傷生使人巡視閭閻有昭格殿婢盲女福德抱兒絕糧幾死上驚駭卽下殿直宣崇烈北部令柳悅于刑曹鞠之命給福德米豆各一石謂代言等曰盡食賜米之後亦復饑餓則何以救之安崇善啓訪問諸處則如此者非一此人幸聞 天聰特賜米豆自今以後何可繼乎宜付族親又令其司救護爲便 從之仍傳旨漢城府曰非獨疾疫者流離絕糧之人悉訪以啓

세조 3년 8월 12일(계묘)

○의정부(議政府)에 하교(下教)하기를,

부령(部令) 류열(柳悅)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3등으로 녹훈(錄勳)하라.

癸卯○教議政府曰部令柳悅錄三等

《世祖實錄 卷第8, 28面》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시윤공(寺尹公) 류 척(柳 惕)

공은 청백리공 류겸(柳謙)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졸년대와 자 호는 전하지 않고 있다.

세종조에 의금부도사 형조정랑, 세조 즉위년(1455)에 좌익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봉상시윤(奉常寺尹)을 역임했다.

공의 배위는 충주최씨(忠州崔氏)로 한성윤(漢城尹)을 지낸 성주이씨 이은(李闇)의 외손녀이다. 아들 자행(子行)은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지냈으며 그 배위는 송준(宋僑)의 따님인 진천송씨(鎭川宋氏)로 태종비 원경왕후의 동생인 민무휼(閔無恤)의 외손녀이다.

증손자 완(琬)의 배위가 전주이씨로 의성군(誼城君) 채(宋:父 효령대군 神)의 따님이며 그 아들 광조(光祖)의 배위가 공산군(公山君) 우(祐:父 가림군 秋, 祖 경령군 禔)의 따님으로 증실과 연혼 관계이다.

현달한 후손으로는 송화현감 여(松和縣監 璵) 제용감정 광훈(濟用監正 光勳) 평택현감 광후(光厚) 진평군 기(晉平君 淇) 우승지 공진(拱辰) 정민공 간(貞愍公 澗) 응교 여항(汝恒) 동래부사 여각(汝恪) 참의 사흙(思欽) 호은집(壺隱集)을 남긴 당시에 신동(神童)으로 불렸던 동량(棟梁) 등이 있다.

세종 15년 9월 13일(임진)

함길도 도순무사 심도원(沈道源)이 아뢰기를, “정평(定平)·영흥(永興)·예원(預源)·북청(北靑) 등 각 고을 군인들이 경원의 성을 쌓는데, 한밤중에 소리치기를 ‘적병이 왔다.’고 하니, 떼를 지어서 도망해 흩어짐으로, 경원 절제사가 사람을 시켜서 뒤쫓아가 붙잡게 하였더니, 거절하고 구타함으로 다만 수십 인만을 붙들어서 가두었사온바, 각기 그 고을 수령을 시켜서 압송해 데려다가 역사를 마치도록 하는 한편, 감사가 길주(吉州)나 경성(鏡城) 등지에 와 머물다가 그 도망하는 군사를 막고, 만약 양식 떨어진 자가 있으면 길주(吉州)나 경성(鏡城)의 환자쌀[糴米]을 요량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성과

우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한 권진과 판원사(判院事) 하경복(河敬復)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이제 경원의 성 쌓던 군인이 뜬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이 때문에 도망해 흩어지게 하였으니 불가불 징계하여야 하겠으나, 군인의 수효가 수천 명이나 되니 어떻게 일일이 죄줄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영솔하였던 자를 죄주되, 거역했던 자들도 극형에 처하여 장래를 징계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매, 모두 아뢰기를, “의금부 관리를 보내어서 영솔하였던 자를 맡은바 역사를 도피한 죄로 즉시 논죄하되, 거역했던 무리와 도망하기를 먼저 주창한 자는 큰 칼을 썬단단히 가두어 놓고,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옵소서.” 하다. 또, 의논하기를, “경원의 성은 이제 다 쌓아 놓지 아니하면 저쪽 사람들이 오고가며 보는 데 위엄이 없어 보이고, 만약 쌓는 일을 마치려면 금년이 흉년이 되어서 백성을 부역시키지는 차마 못하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매, 모두 아뢰기를, “민생의 곤란함은 진실로 가련하오나,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아니하면 뒷사람이 무엇을 본보겠습니까. 모두 징집하여 일터에 되돌려보내게 하여 올라올에 다 쌓도록 할 것이오며, 만일 일기가 추워져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면 사리상 마땅히 역사를 정지해야 할 것이오니, 감사로 하여금 그때의 형편을 보아서 적당하도록 요량하여 처리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일의 조목을 써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류척(柳暢)에게 주어서 보내도록 명하니, 그 하나는, “도망한 군사는 그 소속한 고을의 수령이 깡그리 잡아다가 일터에 압송하여서 장래를 경계하게 하고, 감사도 일이 끝날 때까지 길주(吉州)·경성(鏡城)에 가 있으면서 도망하는 군인을 금지해 막고, 그 뜬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한 자나 처음 주창한 자나 체포를 거역한 자는 큰 칼을 썬단단히 가두고, 그 10명이나 혹 50명이나 혹 1백 명을 영솔하였던 자는 맡은바 역사를 도피한 죄로 논하라.” 하고, 그 하나는, “감사와 도순무사한테 말하기를, ‘군인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까 염려되니, 우비와 추위를 막을 물건들을 준비하게 하고, 만약 일기가 추워서 눈비가 내리거든 모두 놓아 보내라.’고 하라.” 하다.

○壬辰咸吉道都巡撫使沈道源啓定平永興預源北青等各官軍人築慶源城乘夜號曰賊來成群逃散慶源節制使使人追捕拒而毆之但拿數十人以囚令各其官守令押到畢役監司來住吉州鏡城等處遇其逃軍若有之糧者量給吉州鏡城糴米何如召領議政黃喜左議政孟思誠右議政仍令致仕權軫判院事河敬復等議曰今慶源築城之軍浮言惑衆因以逃散不可不懲然軍人之數不下數千焉得人人而罪之乎只罪領率者其拒逆之入置之極刑以懲後來何如僉曰遣義禁府官吏率領之人卽論逃避差役之罪拒逆之徒及首唱逃散者加械牢囚上來後更議區處又議曰慶源之城今不畢築則彼人往來瞻視不嚴若欲畢築則今當凶歉不忍役民處之如何僉曰民生艱苦誠爲可恤然釋此不懲則後人何鑑並懲還役須於今秋畢築如或天寒雨雪則理宜停

役令監司觀其時勢量宜布置上從之命書事目授義禁府都事柳惕以送其一曰逃軍則所在官守令並皆押率赴役以懲後來監司亦限事畢往往吉州鏡城禁遏逃軍其浮言惑衆者首唱者拒捕者加械牢囚其領十名或五十名或一百名者論逃避差役之罪一與監司都巡撫使言軍人冒寒致死可慮令備雨具禦寒之物若值天寒雨雪並令還放

《世宗實錄 卷第61, 55面》

세종 25년 1월 초 5일(신유)

○임금이 지평(持平)李宗謙(李宗謙)을 불러 이르기를, “대부(隊副) 윤덕생(尹德生)의 처(妻)는 본시 사삿집 종이였었는데, 경자년(庚子年) 전에 이미 속량(贖良)하여서 양민이 되었고, 덕생은 류척(柳惕)이 외방으로 보직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서울에 있어서 편지하기를, ‘덕생을 속량(贖良)하여 양민이 되게 하려 한다.’ 하므로, 척(惕)이 그대로 따랐는데, 그 어머니가 덕생의 한쪽 말만을 듣고 덕생의 두 아들로 아울러 양민이 되게 하고자 하였으나, 두 아들이 다 신축년(辛丑年) 이후에 출생하였으므로, 거짓 경자년(庚子年)에 속량한 것처럼 날짜를 거슬러 올려서 문권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자년(壬子年)에 이르러 척(惕)은 덕생의 속량한 것이 계묘년(癸卯年)이 적실하다 하여 도관(都官)에게 고소하였으므로, 도관이 척(惕)의 어머니에게 물어서 마침내 사실에 따라 덕생의 두 자식을 척(惕)에게 주기로 판결하였다. 내 생각에는, 덕생의 속량한 것이 비록 척(惕)의 어머니가 날짜를 거슬러 써서 한 것일지라도, 자식으로서 고소를 한 것은 진실로 도리에 거슬린 것이요, 도관이 수리한 것도 역시 잘못이다. 척(惕)의 고소한 것이 비록 잘못일지라도 덕생의 속량한 해가 경자년(庚子年)이 아닌 것이 적실하므로, 척(惕)에게 결급(決級)한 것이 당연하다면 그만이었지마는, 만일 척(惕)이 관에 고소한 것이 모자간이 서로 송사하는 것 같으므로, 도의상 주는 것이 부당하다면 덕생의 자식은 속공(屬公 : 관청에 소속시키는 일)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정부(政府)에 의논하라고 하였더니, 정부에서도 역시 모자간의 일로서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여 자세하게 의논하여 아뢰지 아니하니, 이것이 비록 천인(賤人)의 일이라 할지라도 실로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처리함이 불가하니, 자세하게 가리어 아뢰라.” 하다.

○辛酉○召持平李宗謙謂曰隊副尹德生之妻本是私婢而於庚子年前已贖身爲良德生是柳惕之奴而歲在癸卯惕出補外寄其母在京通書曰欲以德生贖身爲良惕從之其母偏聽德生之說欲并德生二子爲良而二子皆辛丑年以後所生故妄以庚子年贖身退填日月成契券至壬子年惕以德生贖身的在癸卯訟於都官都官問惕母竟從實以德生二子決給於惕予謂德生之贖身母雖退填日月子之告狀實悖於理而都官之受理亦非也惕之告狀雖非而德生贖身之年的非庚子當決給於惕則已矢若惕之告官似乎母子相訟義不當給則德生之子屬公何如予將此

事議諸政府政府亦以母子之事綱常所係亦不詳議以啓此雖賤人之事實有關於綱常不可輕易處之其詳辨以啓
 《世宗實錄 卷第99, 3面》

세종 25년 10월 초 7일(무자)

○처음에 조자렴(趙自廉)의 종이 밤에 형조 정랑(刑曹正郎) 류척(柳惕)의 집에 들어갔다. 척(惕)이 잡아서 형조에 고하여 장(杖) 80을 때렸는데, 10여 일 만에 죽었다. 조자렴이 고소하기를, “척(惕)이 먼저 집에서 때리고, 형조에 고하여 또 때리게 해서 이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금부 제조 박종우(朴從愚)·권맹손(權孟孫)·류수강(柳守剛)이 아뢰기를, “지금 척(惕)의 이웃 마을 사람을 국문하여 보았는데, 모두가 ‘먼저 때리지 않았다.’고 하며, 또 옥졸(獄卒)에게 물으니, 역시 말하기를, ‘본래 장형(杖刑)을 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검시(檢屍)한 문서를 상고한 후에야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 검시한 문서가 없고 또 증인은 모두 두 집 종인데, 만일 그 종들을 국문하게 되면 용은(容隱)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지극히 중하니 어떻게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복 힐문하여 그 실정을 알아내도록 힘쓰라.” 하다.

○戊子○初有趙自廉之奴夜入刑曹正郎柳惕家惕捕之以告刑曹決杖八十至十餘日死自廉訴曰惕先杖於家乃告刑曹又杖之因此致死下義禁府鞫之至是義禁府提調朴從愚權孟孫柳守剛啓今鞫惕之隣里皆曰不先杖之且問獄卒亦曰本無杖痕如此之事必考檢屍文契然後乃得覈實今無檢屍文契且證左皆兩家奴也若鞫其奴有違容隱之法處決爲難 上曰人命至重豈可置而勿論乎反覆詰問務得其情
 《世宗實錄 卷第102, 5面》

세종 25년 10월 23일(갑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류척(柳惕)을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오니 마땅히 다시 불기를 더 쳐야 하겠는데, 만일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거짓 승복한다면 어찌 사정에 합하겠습니까. 이웃 마을과 옥졸도 모두 말하기를, ‘본래 먼저 불기를 치지 않았다.’ 하옵는데, 다만 척(惕)이 처음에 조자렴(趙自廉)에게 말하기를, ‘나 때문에 너의 종이 죽었으니, 청하건대, 관(官)에 고소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의단(疑端)을 삼아 고문을 가하였으나, 실정을 아직도 얻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척(惕)이 먼저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고문한 것인데, 이제도 승복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이로써 결단하라.” 하고, 인하여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

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형조에서 자렴(自廉)의 종을 결장(決杖)할 때에, 종이 척(楊)에게 매를 맞았다고 고하지 않았고, 또 척(楊)의 장적(杖迹)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마땅히 이것으로 결정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며, 그대로 따르고, 다만 척(楊)을 과직시키다.

○甲辰義禁府啓拷訊柳惕不承當更加榜掠若不忍其苦誣服則豈合事情乎其隣里及獄卒皆曰本不先杖但惕初與趙自廉言曰以予之故汝奴死矣請勿訴於官以此爲疑端乃加拷訊猶未得情處之何如上曰初非以惕爲先杖但有疑端故拷訊之耳今既不承當以此決之仍命議于政府僉議啓曰初刑曹決杖自廉之奴奴不告被杖於惕令又惕之杖迹未著宜當以此決遣從之只罷惕職

《世宗實錄 卷第102, 12面》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봉상 윤(奉常尹) 류척(柳惕)은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奉常尹柳惕原從功臣三等錄

《世祖實錄 卷第2, 63面》

세조 2년 1월 19일(기축)

처음에 사헌부의 직간리(摘姦吏 : 부정(不正)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아전) 김사명(金思明)이 봉상 윤(奉常尹) 류척(柳惕) · 직장(直長) 이병규(李丙奎)가 출사하지 아니함을 고하니, 헌부(憲府)에서 봉상 리(奉常吏) 강득민(康得民)을 불러 ‘연고 없이 출사하지 아니한 것[無故不仕]’에 의율(擬律)하여 취초(取招)하였다. 강득민이 말하기를,

“류척(柳惕)과 이병규는 모두 벼슬에 나아간 뒤에 이병(移病 : 병으로 관직을 그만둠)한다는 글[狀]을 김사명에게 보였는데, 김사명이 취(醉)하여 살펴 보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연고없이 출사하지 않았다고 고하였습니다.”

하고, 드디어 승복(承服)하지 아니하니, 헌부에서 항거(抗拒)한 것으로 논(論)하여 형조(刑曹)에 이첩(移牒)하고, 죄주려 하므로 강득민이 상언(上言)하여 호소하니, 형조에 명하여 핵실(覈實)하게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김사명은 남의 죄를 무고(誣告)하였고, 헌부의 관리는 편벽되게 그 말만을 믿고 분변(分辨)을 가(加)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핵실하게 하소서.”

하니, 집의(執義) 이에(李芮) 등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써 헌사(憲司)를 남점(濫玷 : 외람되게 더럽힘)하고, 단결(斷決)도 불명(不明)하게 하여 형조에서 논핵(論劾)하는 데에 이르르니 부끄럽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직사를 그만 두게 하여 주시기를 빌던바,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를 내리시어 다시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셨는데, 헌사는 인

주(人主)의 이목(耳目)이며 조정의 기강(紀綱)을 제시하고 백관(百官)을 규찰하는 것이니, 임무가 실로 가볍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면 빨리 출퇴(黜退)함이 마땅한데, 근일에 봉상 관리(奉常官吏)가 거사 조과(擧司 早罷 : 온 아문이 일찍 파함)하였다는 적간리(摘姦吏)의 고발 때문에 구차하게 구례(舊例)를 따라 잘못 구처(區處)하였습니다. 형조에서 신 등을 가리켜 편벽되게 아전의 말만을 믿고 억지로 취초(取招)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신 등이 어리석어 여의(輿議)에 부응하지 못한 소치(所致)입니다. 뻔뻔스러운 낮으로 직사에 나아가 조정을 욕되게 함은 옳지 않으니, 었드려 바라건대, 현능(賢能)한 이를 간선(揀選)하여 신 등의 직임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己丑初司憲府摘姦吏金思明告奉常尹柳惕直長李丙奎不仕憲府招奉常吏康得民擬以無故不仕取招得民曰傷與丙奎皆就仕後移病以狀示思明思明醉不省視妄告無故不仕遂不承服憲府論以抗拒移牒刑曹將罪之得民上言自訴 命刑曹覈實刑曹啓思明誣入人罪憲府官吏偏信其言不加分辨請弃覈之執義李丙等上書辭職曰臣等俱以庸劣濫玷憲司斷決不明以致刑曹論劾不勝慚懼乞避職事 特賜優容復令就職憲司作人主耳目提朝廷紀綱糾察百官任實非輕小不稱職宜亟黜退近日奉常官吏擧司早罷因摘姦吏所告苟循舊例失於區處刑曹指臣等爲偏信吏言勒令取招是臣等暗昧未孚輿議所致也不宜強顏就職以辱朝廷伏望揀選賢能以代臣等之職 不允

〈世祖實錄 卷第3, 4面〉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판사공(判事公) 류 전(柳 恠)

공은 청백리 류겸(柳謙)의 막내 아들(季子)로 태어났으며 생졸년대와 자 호는 전하지 않는다.

공의 배위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인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아들인 양정공(良靖公) 이징(李澄 : 1375~1435)⁵⁷⁾의 따님으로 노은(盧崑)의 외손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자온(子溫) 자양(子良) 두 아들은 당대에 무후되었고 성균진사 자공(子恭)은 사위 여주인 이사필(李師弼 : 父 군수 曾碩)도 무후되고 사정(司正)인 자검(子儉)은 평양조씨 조효종(趙孝宗 : 父 趙哲, 祖 趙瑚)의 따님 사이에 봉사(奉事) 계형(繼

57) 이징(李澄) : 1375~1435. 시호는 양정(良靖) 우왕 13년(1387)에 산원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낭장, 장군 등을 거쳐 태종 2년(1402) 원운 이어 도총제 절제사, 세종 11년(1429)에 판좌군 부사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오고 판중추부사를 역임한 무신이다.

후) 계복(繼福)을 낳았으나 아들 대에 무후되었으며 계한(繼漢) 계말(繼末)은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문종 즉위년 12월 25일(을미)

휘덕전(輝德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신계 현령(新溪縣令) 류진(柳愴)과 고창 현감(高敞縣監) 박예송(朴禮崇) 등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류진에게 이르기를,

“황해도의 백성은 근래에 실농(失農)하였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고 궁핍하다. 또 지금 북방의 성식(聲息)으로 더욱 소요스러우니, 잘 무휼(撫恤)하라.”

하고, 박예송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하삼도(下三道)는 제언(堤堰)을 쌓을 만한 곳이 자못 많다고 한다. 천방(川防)과 제언(堤堰)은 농사를 짓는 데 근본이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乙未詣輝德殿上息○新溪縣令柳愴高敞縣監朴禮崇等辭 上引見謂愴曰黃海之民近因失農生理艱窘且今以北方聲息尤爲騷擾其克撫恤謂禮崇曰予聞下三道堤堰可築處頗多川防堤堰耕農之本盡心措置 《文宗實錄 卷第5, 21面》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중략]

주부 류진(柳愴)은 3등에 녹(錄)한다.

○戊辰○議政府傳旨 [中略]

○注簿柳愴錄三等遂

《世祖實錄 卷第2, 64面》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사직공(司直公) 류 주(柳 疇)

공은 수재공 류향의 장손자로 군사공 류지함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졸년대와 자 호 및 배위의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다만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에 사위로 서 진사 김당(金塘)의 기록이다.

세조 3년 4월 13일(병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홍중손(洪重孫) · 최사기(崔賜起) · 우수로(禹守老) · 황효공(黃孝恭) · 류주(柳

疇) · 황윤성(黃允誠) · 곽안방(郭安邦) · 이처의(李處義) · 조경규(趙慶珪) · 이삼로(李三老) · 봉충효(奉忠孝) · 이종양(李宗讓) · 신윤저(申允底) · 하소의(河紹義) · 이승명(李承命) · 홍계강(洪係江) · 홍우명(洪禹明) · 박소(朴素) · 조계문(曹繼門) · 박자영(朴子暎) · 박여광(朴如旼) · 이세량(李世樑) · 설성림(薛成林) 등은 군대를 관장(管掌)하는 진무(鎭撫)로서 사신(使臣)을 영접하고 전송하고 치하(致賀)한다고 핑계하고서 서로 모였으며, 또 최사기(崔賜起)와 홍중손(洪重孫) 등은 여기(女妓) 패강매(溟江梅) 집에서 밤에 모였으며, 전 호군(護軍) 김치신(金致身) · 노정지(盧定之)와 전 사정(司正) 장화(張和)와 행사용(行司勇) 최천령(崔千齡) · 성대생(成大生) · 이석공(李石公)과 행사정(行司正) 이양재(李樑材) · 중추(中樞) 이수(李守義) 등은 군대를 관장(管掌)하는 진무(鎭撫)와 더불어 여러 번 모였으니, 그 죄는 속전(續典)에 이르기를, ‘상시로 병조(兵曹)의 명문(明文)이 없는데도 사사로이 군사를 모은 자는 모두 모역(謀逆)으로 논죄(論罪)한다.’고 하였으며, 대명률(大明律)에는, ‘무릇 모반(謀反) 및 대역(大逆)을 한 자는 주범(主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케 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수(絞首)하고, 15세 이하와 어머니 · 딸 · 아내 · 첩(妾) · 조부(祖父) · 손자 · 형제(兄弟) · 자매(姊妹)든지, 아들의 처첩(妻妾)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奴婢)로 삼게 하며, 아울러 재산은 관청에 들인다.’ 하였습니다. 최사기(崔賜起)는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가리켜 이르기를, ‘세간(世間)의 번복(翻覆)은 알기가 어렵다.’고 했으니, 그 죄는 제사(制使 : 칙사(勅使))와 본관(本管 : 병조(兵曹))의 장관(長官)을 욕설한 것에 비교되므로 형률(刑律)로는 장 1백 대를 때려야 합니다. 여기(女妓) 패강매(溟江梅) · 함소화(含笑花) · 봉래선(蓬萊仙) · 강봉래(降蓬萊) · 대로화(帶露花) · 취서시(醉西施) · 옥지련(玉池蓮) · 대호성(待好星) · 영도요(詠桃夭) 등은 홍중손(洪重孫) 등과 모였으니, 그 죄는 영(令)을 어겼으므로 태(笞) 50대를 때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치신(金致身) · 노정지(盧定之) · 성대생(成大生)은 다만 고신(告身 : 직첩(職牒))만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발배(發配 : 죄인을 배소(配所)로 보냄)하도록 하고, 이석공(李石公) · 이양재(李樑材) · 최천령(崔千齡) · 장화(張和) · 이삼로(李三老) · 봉충효(奉忠孝) · 이승명(李承命) · 하소의(河紹義)는 다만 고신(告身)만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충군(充軍)하도록 하고, 이수(李守義)는 고신(告身)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도록 하며, 홍중손(洪重孫)과 최사기(崔賜起)는 아울러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먼 지방의 관노(官奴)에 영속(永屬)하도록 하고, 최사기의 가산(家產)을 적몰(籍沒 : 관가에서 죄인의 재산을 몰수(沒收)하는 것)하도록 하며, 이종양(李宗讓) · 신윤저(申允底) · 박소(朴素) · 황효공(黃孝恭) ·

우수로(禹守老)· 황윤성(黃允誠)· 홍계강(洪係江)· 홍우명(洪禹明)· 설성림(薛成林)· 박여광(朴如旼)· 조계문(曹繼門)· 조경규(趙慶珪)· 이처의(李處義)· 류주(柳疇)· 곽안방(郭安邦)· 이세량(李世樑)· 박자영(朴子暎) 및 여기(女妓) 등은 아울러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丙午○義禁府啓洪重孫崔賜起禹守老黃孝恭柳疇黃允誠郭安邦李處義趙慶珪李三老奉忠孝李宗讓申允底河紹義李承命洪係江洪禹明朴素曹繼門朴子暎朴如旼李世樑薛成林等以掌兵鎮撫稱迎餞致賀聚會又賜起重孫等夜會女妓涓江梅家前護軍金致身盧定之前司正張和行司勇崔千齡成大生李石公行司正李樑材中樞李守義等與掌兵鎮撫屢會罪續典云常時無兵曹明文而私娶軍士者皆以謀逆論大明律凡謀反及大逆者不分首從皆凌遲處死父子年十六以上皆絞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給付功臣之家爲奴財產弁入官賜起指謂兵曹判書云世間翻覆難知罪比罵制使及本管長官律杖一百女妓涓江梅含笑花蓬萊仙降蓬萊帶露花醉西施玉池蓮待好星詠桃夭等與重孫等聚會罪違令笞五十 命致身定之大生只收告身發配外方石公樑材千齡和三老忠孝承命紹義只收告身外方充軍守義收告身外方安置重孫賜起弁杖一百永屬遠方官奴籍沒賜起家產宗讓允底素孝恭守老允誠係江禹明成林如旼繼門慶珪處義疇安邦世樑子暎及女妓等並勿論 《世祖實錄 卷第7, 27面》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사직공(司直公) 류 은(柳 垠)

생졸년대와 자 호는 전하지 않는다.

영유현령 류지관(柳之灌)과 판중추(判中樞) 오승(吳陞：父 吳中和)의 따님인 동복오씨(同福吳氏) 사이에 태어났다.

공의 배위는 호군을 지낸 김종준(金宗俊：父 金陞，祖 金士衡)의 따님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⁵⁸⁾ 아들은 상장(上將) 원정(遠楨)과 원근(遠根) 사직(司直) 원지(遠枝)이며 사위는 이소종(李紹宗)이다.

세조 원년 8월 14일(정사)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노홍(盧弘)· 김남호(金南浩)· 안수약(安守約)· 이수(李秀)· 송명생(宋明生)· 최운경(崔雲卿)· 류중창(柳仲昌)· 김용덕(金用德)· 이민생(李閔生)· 한말생(韓

58) 역대 진주류씨 족보에는 김종준의 따님인 안동김씨 기록이 누락되었으나 씨족원류(氏族源流) 충주최씨 최립의 사위로 김종준의 기록이 있으며 안동김씨보에 김종준의 사위에 사정(司正) 진주인(晉州人)의 기록이 있다. 김종준은 홍상빈(洪尙賓)과 함께 류겸과 동서가 된다. 홍상빈은 동생 류안(柳岸)의 장인 홍상검(洪尙儉)의 형이 된다.

末生) · 이원부(李原富) · 박근생(朴根生) · 차득상(車得祥) · 강을생(姜乙生) · 이양권(李陽權) · 김간손(金侃孫) · 손흥도(孫興道) · 박경(朴敬) · 김중손(金仲孫) · 황수산(黃壽山) · 이순로(李順老) · 김인경(金仁敬) · 김적(金迪) · 이정생(李挺生) · 윤신부(尹莘富) · 김양귀(金良貴) · 김황(金黃) · 이연(李連) · 장식(張湜) · 한호산(韓瑚山) · 김용추(金用錘) · 김중원(金仲原) · 차보례(車寶禮) · 김흥도(金興道) · 류은(柳垠) · 박수량(朴秀良) · 유이동(兪二童) · 김경敦(金敬敦) · 차자인(車自仁) · 정윤각(鄭允恪) · 윤자례(尹自禮) · 김치(金致) · 류연(柳衍) · 김승로(金升老) · 정주(鄭胄) · 배유(裵裕) · 도이신(陶以臣) · 이귀룡(李龜龍) · 이공손(李恭孫) · 김지로(金智老) · 이득(李得) · 이희(李希) · 김경신(金敬信) · 오간(吳幹) · 정춘우(鄭春祐) 등은 그 고신(告身)을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丁巳 傳旨吏兵曹還給盧弘金南浩安守約李秀宋明生崔雲卿柳仲昌金用德李閔生韓末生李原富朴根生車得祥姜乙生李陽權金侃孫孫興道朴敬金仲孫黃壽山李順老金仁敬金迪李挺生尹莘富金良貴金黃李連張湜韓瑚山金用錘金仲原車寶禮金興道柳垠朴秀良兪二童金敬敦車自仁鄭允恪尹自禮金致柳衍金升老鄭胄裵裕陶以臣李龜龍李恭孫金智老李得李希金敬信吳幹鄭春祐等告身

《世祖實錄 卷第2, 8面》

진산군 6세(大丞公 15세) 별좌공(別坐公) 류종형(柳宗炯)

공은 군수공 류우(柳訥)와 감사 남금(南琴)의 따님인 고성남씨(固城南氏) 사이에 맏 아들로 태어났다. 생졸년대와 자 호는 전하지 않는다.

배위는 용인이씨의 족보 기록이 있으나 용인이씨 족보에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따님 한 분만을 두어 전주이씨 무림수(茂林守)와 혼인했다.

성종 6년 3월 1일(경술)

○예조(禮曹)에서 한학 습독관(漢學習讀官) 류종형(柳宗炯) 등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아뢰기를,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로서 습독관(習讀官)이 된 자는 습독관이 된 날로부터 성균관(成均館)에 있었던 원점(圓點)을 계산하여 응시(應試)하도록 한 것은 이미 전교(傳敎)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지금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의학 습독관(醫學習讀官)만 기재(記載)되었고, 한학 습독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 받은 전교(傳敎)에 의하여 《대전속록》에 아울러 첨가하여 넣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戌○禮曹據漢學習讀官柳宗炯等上言啓生員進士之爲習讀官者以習讀仕日准計居館圓點許赴試已有受 教令大典續錄只載醫學習讀官而漢學習讀官則不錄請依前受 教並添入續錄從之

《成宗實錄 卷第53, 1面》

진산군 7세(大丞公 16세) 진천군(晉川君) 류자해(柳子偕)

태조 연간~세조 연간

자는 전하지 않으며 호는 청풍정(淸風亭)이다.

공은 증 이판공 류이(柳怡：父 柳謙)와 고려조에 판도판서(版圖判書)⁵⁹를 지낸 윤승례(尹承禮：父 尹陟)의 따님인 과평윤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를 역임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정비 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5)의 동생으로 심온(沈溫)⁶⁰의 넷째 딸인 청송심씨(靑松沈氏：?~1455)와 혼인하여 4남 6녀를 두었다.

균(均)은 위장(衛將), 첨지중추부사에 오르고 양(壤)은 상의원정(尙衣院正) 숙(塾)은 첨지중추부사 넷째 아들 오(塢)는 선공감정(繕工監正)을 지냈으며 사위는 창녕인(昌寧人) 성효원(成孝源：父 成溥) 안동인 권감(權城：父 權克和) 풍산인(豊山人) 류수창(柳壽昌) 전주인 최희(崔犧)⁶¹ 진주인 하주(河澍) 연일인(延日

59) 판도판서(版圖判書)：판도사(版圖司)의 으뜸 직위로 조선조 호조판서를 말함. 원래 호부상서(戶部尙書)였으나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명칭의 격을 낮추기 위해 충렬왕 때 호부를 판도사로 호부상서를 판도판서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호조전서로 바뀌었다가 조선조 태종 때에 호조판서로 바뀌었다.

60) 심온(沈溫)：?~1418. 여말 선조의 문신. 자는 중옥(仲玉) 시호는 안효(安孝) 본관 청송(靑松) 덕부(德符)의 아들로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선 개국후 병조·공조 의랑(議郎) 정종 때에 대호군 태종 때에 호조판서 세종이 즉위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아우 정(誼)이 병조판서 박습(朴習)과 같이 상왕(上王)인 태종의 병권 장악을 비난한 일로 인하여 체포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사위에 강석덕(姜碩德)은 강희맹(姜希孟)의 아버지며 노물재(盧物載)는 영의정 노사신(盧思愼)의 아버지 다음이 세종대왕이며 다음이 영의정 류순정(柳順汀：父 柳壤)의 할아버지 류자해 다음이 이승지(李崇之) 그리고 영의정 박원종(朴元宗：父 仲善)의 조부 박거소(朴去疎)이다. 류자해의 사위 성효원의 손녀 사위가 박원종이며 또한 동서의 아들이 된다. 류자해의 손자가 류순정이다. 성효원의 동생 성효연(成孝淵)의 손자가 성희안이다. 손자 대에 가서 이들이 중종반정의 주역으로 정국공신으로 활동했다.

61) 최희(崔犧)：진주류씨 세보의 류자해 사위로 기록된 최희(崔犧)는 오기로 짐작된다. 형제들의 이름이 전주최씨 족보에 민(旻) 흘(昫) 혼(昕) 희(曦)로 기록되어 있으며 희(曦)의 부인이 류자해의 딸로 올라 있다. 최희 아버지 최후(崔厚)의 부인이 류자해의 동서인 좌의정 노물재와 남매간이 되며 조부 최사의(崔士儀：父 崔有慶)의 부인이 순천인(順天人) 박가흥(朴可興：父 朴

人) 정제(鄭濟)이다.

세종 즉위년 11월 23일(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의금부에서 상인의 말한 바를 상세히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과연 내가 전일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진상(眞狀)이 오늘날에야 나타났구나.[중략]

또 아뢰기를, “심온의 사위 류자해(柳子偕)가 경복궁에서 시립(侍立)할 때에 신을 보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땅히 물러가서 집에 엎드려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의기 양양(意氣揚揚)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고 하였는데, 신의 죽인(族人) 이계주(李季疇)⁶²가 그 곁에 섰다가 이 말을 듣고 상세히 말하였습니다.”하다. 또 아뢰기를, “전에 신이 신의 관직으로써 심온에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희(允許)를 얻지 못하였는데, 변계량이 이 말을 듣고 은근히 신에게 이르기를, ‘신하가 사직(辭職)하는 것은 의리(義理)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청한 것은 임금의 마음에 어떻다고 여기시겠느냐.’하며, 또 신으로 하여금 다시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사운데, 그 말은 ‘……’하였사오며, 이와 같이 하면, 전일에 자기의 관직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임금의 마음에 비록 그르게 여기셨지마는, 지금 이 아뢰를 들으시면 반드시 의심이 시원스럽게 풀릴 것이다.”고 하다. 박은이 나간 후, 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좌의정의 한 말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으나, 대개 류자해(柳子偕)가 한 말은 오로지 박은의 한 몸에 관한 것이고 공사(公事)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인데, 하필 오늘의 옥사(獄事)를 위하여 이를 말하였을까.”고 하다.[중략]

중궁(中宮)의 백부(伯父)·숙부(叔父)와 강석덕(姜碩德)⁶³이 모두 관직이 승진되니, 박은이 류자해까지 아울러 승진시키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갑자기 은총(恩寵)이 지나치니 아직 후일을 기다리라.”고 하다. 박은이 다시 청하기를, “이 사람의 관직이 너무 낮습니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그 말을 듣지 아

天祥)의 딸로 류자해의 동서인 박거소(朴去疎:父 朴錫命)의 고모로 연결된다.

62) 이계주(李季疇): 한산이씨로 양경공(良景公) 이종선(李種善)의 아들로 정랑 벼슬을 역임했다. 조부 목은 이색(李穡: 1328~1396)과 박은(朴崑)의 아버지 박상충(朴尙衷)과는 처남 매부관계로 이계주와 박은과는 외종질(外從姪) 관계로 죽인이라 한 것이다. 참고로 이색과 류자해(柳子偕)의 고조부 류혜방(柳惠芳)과는 동서지간이다.

63) 강석덕(姜碩德): 1395~1459. 조선 세조 때의 문신. 자는 자명(子明) 호는 완역재(玩易齋) 시호는 대민(戴敏) 본관은 진주로 강희백(姜淮伯: 1357~1402)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올라 지돈녕부사를 역임했으며 저서에 완역재집이 있다. 심온(沈溫)의 사위로 류자해와는 동서간이 되며 중부(仲父) 강희중(姜淮中: 1360~1421)과 류자해의 조부 류겸(柳謙)과 교유관계임이 목은집(한국문집총간 3권, 牧隱藁 463 P)에서 확인된다.

니하다. 이 때에 이르러서 박은이 또 들어와서 관직을 임명하는데, 임금이 류자해의 관직을 승진시키고자 하여 박은에게 묻다. 박은은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으니, 대개 이제주의 말을 듣고 류자해에게 불쾌하게 여긴 때문이다.

○己巳視事御經筵○義禁府以尙仁所言具啓 上王曰果如吾前日所言其情乃見於今日當去 [中略]

又啓溫婿柳子偕於景福宮侍立之時見臣譏笑曰此人當退伏于家今乃揚揚如是乎臣族人李季疇立於其側聞之爲具言之又啓前臣請以臣職授沈溫未蒙兪允卞季良聞之潛謂臣曰人臣之辭職義也請授他人 上心以爲如何又教臣更啓之辭曰云云如此則前日以己職請授他人上心誰非之今聞此啓則必釋然矣豈出 上王謂 上曰左議政所言不知其意味蓋謂子該所言專在豈之一身不干於公事何必爲今日之獄事而言之耶 [中略]

中宮伯叔父及姜碩德皆升職豈請並升柳子該職 上止之曰一時恩寵過姑待後日豈再請曰此人之職大卑 上不從至是豈又入除授 上欲升子該職問於豈豈俛首不對蓋聞季疇之言有不快於子偕也

《世宗實錄 卷第2, 22面》

세종 5년 11월 29일(병자)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공조 참의 이양(李揚)이 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으로서 명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의당히 경계하고 조심하여 위임(委任)한 뜻에 보답해야 할 것이거늘, 이에 한정된 숫자 이외의 포(布)·피(皮) 등 물품을 가지고 가서 매매하고 왔으니, 모리(謀利)하는 마음씨가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과 같아서, 염치(廉恥)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풍(士風)을 더럽게 물들였으니, 그의 직첩(職牒)을 거두고서 그 이익을 본 사람들과 더불어 일체로 신문하여 죄를 결정할 것이요, 이 름을 사칭하고 들어가 이익을 본 손석(孫錫)·박독대(朴獨大)와 금하는 물품을 은닉하고 강을 건너간 진대난(陳大難)·권법(權法) 등은 전교에 의하여 크게 징계하여 뒤에 감계(鑑戒)가 되도록 할 것이오며, 그 잡물(雜物)을 청탁한 대소(大小)의 인원과 능히 고찰하지 못한 평안도 감사 정진(鄭津)과 수령관(首領官) 김간(金艮)·의주목사(義州牧使) 김을신(金乙辛)·판관(判官) 최윤복(崔潤福)·감찰(監察) 최사용(崔士庸) 등을, 비읍건대, 다 같이 울에 비추어 치죄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이 양은 그 직첩을 거두고 잡아다가 취조 핵실할 것이며, 손석·박독대·진대난·권법 등의 무역한 물품은 관에 몰수(沒收)하고 울에 비추어 계주할 것이며, 잡물을 청촉(請囑)한 경녕군(敬寧君) 비(裨)와 송거신(宋居信)·이귀산(李貴山)·안수산(安壽山)·김맹성(金孟誠)·김척(金陟)·강석덕(姜碩德)·류자해(柳子偕)·장효생(張孝生)·송개석(宋介石)·蔡君卿(채군경)·이명신(李明晨)·박취신

(朴就新)·구종주(具宗周)·최효생(崔孝生) 등은 논하지 말고, 그 무역한 물건은 관에 몰수할 것이며, 정진·김간·김을신·최윤복·최사용 등도 또한 논하지 말라.” 하다.

○丙子視事經筵○司憲府啓工曹叅議李揚以六曹堂上官承 命赴京宜當戒懼以副委任之意乃挾數外布皮等物買賣而來謀利之心有同興利之人廉恥道褻汚染士風收其職牒與興利人一處推考論罪冒名入歸興利人孫錫朴獨大及禁物隱匿越江陳大難權法等依 教大懲鑑後其雜物請托大小人員及不能考察平安道監司鄭津首領官金良義州牧使金乙辛判官崔閔福監察崔士庸乞俱照律科罪 命李揚收其職牒拿來推劾孫錫朴獨大陳大難權法等貿易之物沒官照律以啓雜物請囑敬寧君裨宋居信李貴山安壽山金孟誠金陟姜碩德柳子偕張孝生宋介石蔡君卿李明晨朴就新具宗周崔孝生等勿論其貿易物件沒官鄭津金良金乙辛崔閔福崔士庸等亦勿論

《世宗實錄 卷第22, 9面》

단종 3년 1월 26일(임신)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부지돈녕부사(副知敦寧府事) 류자해(柳子偕)의 아내 심씨(沈氏)가 죽으니, 관곽(棺槨)과 쌀·콩 아울러 40석, 종이 1백 권을 주었다.

○壬申宗親府○副知敦寧府事柳子偕妻沈氏死賜棺槨及米豆并四十石紙一百卷

《魯山君日記 卷第13, 23面》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류자해(柳子偕)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等)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同副知敦寧柳子偕錄原從功臣二等

《世祖實錄 卷第2, 55面》

진산군 7세(大丞公 16세) 거창공(居昌公) 류자충(柳子忠)

공은 북부령공 류열(柳悅)의 큰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졸년대와 자 호 및 배위 관계는 전해오지 않으며 다만 병자보(丙子譜：1756刊)에 사위로 양성인 이돈인(李敦仁：父 李偁, 祖 李思任)의 기록 뿐이다. 동생 자효(子孝) 역시 아들 대에 무후되어 셋째인 자문(子文)의 후손이 종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직의 점필재집에 시문(詩文)이 어깨를 겨룰만 하다고 거창현감 시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덕과 시문이 높은 문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 3년 1월 24일(신유)

○형조(刑曹)에서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김춘경(金春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우도 수군 첨절제사(右道水軍僉節制使) 허희(許熙)는 능히 아래를 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읍(旁邑)의 유이인(流移人) 13명으로 하여금 소관(所管)한 왜호(倭戶)와 종대선(宗大膳)에게 몰래 투입케 하여, 왜구(倭口)를 쇄환(刷還)하고서, 쇄출(刷出)을 얻었다고 도리어 공(功)이 된 것으로서 거짓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고, 진주 목사(晉州牧使) 권양(權良)·판관(判官) 최영(崔榮), 창원 부사(昌原府使) 김활(金活)·양산 군수(梁山郡守) 정난손(鄭蘭孫), 거창 현감(居昌縣監) 류자충(柳子忠)은 백성을 무휼하고 자애함을 근실하게 못하여, 부민(部民)으로 하여금 이류(異類)와 투접(投接)하게 하였으며, 통사(通事) 이귀춘(李貴春), 감고(監考) 이돈원(李敦元)·문치공(文致恭)은 우리 백성이 은밀히 왜호(倭戶)를 접(接)한 것을 보고도 스스로 서로 용보[容保: 용인(容認)]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모두 중합니다. 이제 사유(赦宥)가 지났다 하여 묻지 않는다면 피역(避役)하는 무리[徒]들이 두려워하고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그러한 행위를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다시 더 궁국(窮鞫)하여 아뢰게 하고, 또 삼포(三浦)의 왜호(倭戶)에 인민(人民)이 투접(投接)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며, 쇄환(刷還)한 뒤에 다시 투접(投接)한 자도 또한 있을 것이니, 청컨대, 편의를 따라 추문(推問)하되 소요(騷擾)하게 하거나 혼단(釁端)이 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사유(赦宥)가 지났으니, 아울러 논(論)하지 말고, 다만 감고(監考)만 멀리 격리(隔離)한 다른 포구(他浦)로 바꾸어 충군하라. 몰래 왜호(倭戶)에 투접한 자는 소재지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 하여금 폐단이 없이 탐문(探問)하여 쇄출(刷出)하게 하라.”

하였다.

○辛酉○刑曹據慶尙道敬差官金春卿啓本啓右道水軍僉節制使許熙不能檢下使旁邑流移人十三名投隱所管倭戶及宗大膳刷還倭口而得刷出反以爲功詐報監司晉州牧使權良判官崔榮昌原府使金活梁山郡守鄭蘭孫居昌縣監柳子忠不謹撫字致令部民投接異類通事李貴春監考李敦元文致恭見我民隱接戶倭自相容保其罪皆重今以經赦而不問則避役之徒無所畏忌漸不可長請令觀察使更加窮鞫啓聞且三浦倭戶人民投接者必多刷還之後還投者亦有之請因便推問勿令騷擾生釁 傳曰已經赦宥勿論但監考換充隔遠他浦潛投倭戶者令所在守令萬戶無弊探問刷出

《成宗實錄 卷第14, 13面》

점필재집 시집 권칠(佔畢齋集 詩集 卷七)64)

홍수가 진 후에 배안음 계후와 류거창 자충이 함께 합천에 가서 교서⁶⁵⁾를 받아
가지고 밤에 가조천을 건너 권빈역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유월 초 사일이었다.

大水後 與裴安陰季厚 柳居昌子忠 同詣陝川 迎教書 夜渡加祚川 宿勸賓驛 六月初四日

사령첩⁶⁶⁾을 끼고 강양고을로 향해 가는데
하늘과 땅은 갠 날씨가 아니었다
떨렁이는 세사람 지방관이
빨리가는 행차가 혹 막힐까 두려운데
도랑과 계곡에는 미친듯한 파도소리가 울리니
하인들이 물 건너기를 걱정하네
밤은 깊고 길은 험하여
가벼운 짐을 지고도 앞서지고 또 자빠지네
굶은 범은 내 앞에서 휘파람 불고
번쩍이는 번개는 내 뒤에서 위협하네
어찌 또 두려워 할것이 있겠으나
문장만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오
서로 뽑내며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니
하룻밤 지내기에는 서로 겨룰만 하다네
때에 따라서는 나귀등에 앉아 시 읊으면서
퇴고⁶⁷⁾하는 법을 많이 배웠지
역말 아전이 멀리와 마중하는데
광술 불빛이 밝게 비치네
오막살이 집은 뽕나무와 삼밭으로 가려 있는데
연기 낀 사립문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네

沿牒向江陽
乾坤未清霽
翩翩三鳧鳥
行邁唯恐泥
澗谷有狂濤
僕夫愁揭厲
深夜路嶮巖
輕齎亦顛蹶
飢虎我前嘯
閃電我後掣
焉能更畏懼
文字恣狼戾
澁角互應答
堪備一夕衛
時於驢背吟
學作推敲勢
郵吏遠來迎
松明光喇喇
矛屋隔桑麻
烟扉人語細

64) 점필재집(佔畢齋集) : 이조 초기 때 학자 김종직(金宗直)의 시문집. 1431(세종 13년)~1492(성종 23년) 자는 계운(季暹), 호는 점필재,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선산(善山) 성균관 사예(司藝) 숙자(叔滋)의 아들. 1459(세조 5년) 문과에 급제 성종 때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문장과 경술(經術)에 뛰어났고 야은(治隱)의 학통을 이어받아 수백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사후 연산군의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형을 당했다.

65) 교서(敎書) : 군주가 국가기관에 내리는 글.

66) 첩(牒) : 사령첩 임명장.

67) 퇴고(推敲) : 시문을 지을 때 자구를 여러번 생각하여 고침.

허리를 굽히고 침상에 앉은 모습	偃僂坐方牀
농삿일에 시달려서 너무나 피로한 듯 하네	形神逾困廢
저녁 밥 먹는 것도 잊고 베개를 함께 베로 누웠으니	忘餐共枕藉
졸음 속에서 잠꼬대만 하네	睡中成唵嚙
또 다시 새벽에 우는 닭을 기다리는데	且復候晨鷄
앞으로 갈 길은 먼 구름 속으로 가야겠네	前途入雲際
역 남두리 고개는 아주 험준하다	驛南頭里峴甚峻
대장부로서는 옛부터 행역하는 일 있으니	丈夫自有役
이런 노고는 힘들어도 마땅히 해야하네	斯勞宜徇忤

《韓國文集叢刊 12卷, 估畢齋集 268 A》《晉州柳氏文集 45面》

진산군 7세(大丞公 16세) 사예공(司藝公) 류자문(柳子文)

공은 북부령공 류열(柳悅)과 판사 김기(金淇 : 父 충청관찰사 金觀道)의 따님인 상주김씨(尙州金氏)의 5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생졸년대와 자 호는 전하지 않는다.

세종 29년(1447)에 사마시에 입격하고 같은 해 4월 식년시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로 출사하여 훈련 주부(主簿), 기사관(記事官)으로 문종실록 및 고려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영의정 정인지 하에서 이후 상주 교수관, 세조 1년(1455) 좌익원종 2등공신(佐翼原從 二等功臣), 성종 대에 숙천부사(肅川府使)에 제수되고 말년에 사예(司藝)를 역임하였다.

배위는 경력을 지낸 이인숙(李仁淑 : 父 李蔓)의 따님인 우계이씨(羽溪李氏)로 2남 2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 한장(漢長)은 생원 둘째 한평(漢平)은 진사를 지냈으며, 사위는 삼양정 전주인 이석동(三陽正 全州人 李石童)과 생원 경주인 이승정(李承靖)이다.

世宗 丁卯 二十九年 榜

乙科 三人

進士 李承召(陽城人), 新榜 生員 金瓚(靈光人), 生員 姜老(晉州人)

丙科 七人

生員 金煒, 進士 裴孝崇(興海人), 生員 李季專(碧珍人), 新榜 生員 姜眉壽(晉州人),

新榜 生員 河孝文, 前陵直 成任(昌寧人), 幼學 鄭從詔(延日人)

丁科 二十三人

新榜 生員 康福, 新榜 生員 李繼孫(驪興人), 新榜 生員 徐崗(利川人), 進士 崔善復(和順人), 新榜 生員 李克培(廣州人), 殿直 尹慈(坡平人), 進士 洪宇, 教導 金自鉉(江陵人), 宮直 李文炯(慶州人), 司勇 李孝長(全義人), 進士 芮承錫(岳溪人), 生員 李尹仁(慶州人), 陵直 韓瑞鳳(清州人), 教導 權安世(安東人), 新榜 生員 高德稱, 生員 金克行, 新榜 生員 金港(義城人), 新榜 生員 柳子文(晉州人), 新榜 生員 金永濡(慶州人), 進士 韓繼禧(清州人), 進士 安寬厚(順興人), 教導 孔頎(昌原人), 生員 丁明應

단종 2년 3월

기사관(記事官) : 승의랑 행훈련주부(承議郎行訓鍊注簿) 신(臣) 류자문(柳子文)

記事官承議郎行訓鍊注簿臣柳子文 《實錄 6卷 214面》

세조 원년 11월

기사관(記事官) : 봉직랑 행훈련주부(奉直郎行訓鍊注簿) 신(臣) 류자문(柳子文)

記事官奉直郎行訓鍊注簿臣柳子文 《文宗實錄 卷第13, 35面》

단종 즉위년 6월 26일(정해)

○진하사(進賀使)의 검찰관(檢察官) 류자문(柳子文)이 경천참(敬天站)에 가서 이르러 병이 나니, 사선 주부(司膳注簿) 김영유(金永濡)로 대신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무릇 새로 감찰(監察)에 제수된 자는 본부(本府) 및 사간원(司諫院)에서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취사(就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지금 김영유가 감찰도 제수되지 않았고, 비록 제수되었다 하더라도 고신이 서경될 지를 또한 알 수 없으니, 본부(本府) 서리(書吏)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전 예에 다른 관원으로서 검찰관(檢察官)에 선차(選差)된 자는 서리(書吏)를 대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 중에서 만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관원을 써서 차견(差遣)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다. 김영유가 감찰의 직사를 행하니 서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불가할 것이 있느냐?”

하였다.

○丁亥○進賀使檢察官柳子文行至敬天站病以司膳注簿金永濡代之司憲府啓曰凡新授監

察者本府及司諫院署經告身然後方許就仕今永濡未拜監察縱使除拜告身署經亦未可知不宜帶行本府書吏舊例以他官選差檢察官者不許率書吏請依此例傳曰監察內若無可遣者則用他官差遣已有成法永濡行監察職事書吏帶行何不可之有 《魯山君日記 卷第1, 31面》

단종 2년 4월 2일(계미)

친히 살곳이 목장[箭串牧場]에서 열병(閱兵)하였는데, 정부·육조의 당상(堂上)·낭청(郎廳) 각각 1원(員), 제사(諸司)에서 각각 1원, 대간·시신(侍臣)이 모두 호종(扈從)하였다. 좌상(左廂)·우상(右廂) 군사가 3천 5백 41명, 훈도(訓導)가 1백 89명, 시위 군사(侍衛軍士)가 8백 50명이었다. 열병이 끝나자 시위한 사람 및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고, 세조(世祖)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1필, 환도 10자루, 각궁(角弓: 소와 양의 뿔로 장식한 활) 30장을, 좌상 대장(左廂大將) 파평위(坡平尉) 윤암(尹巖)·우상 대장(右廂大將) 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에게는 각각 말 1필을 주고, 훈도(訓導) 및 훈련관(訓練觀)·병조 낭청(兵曹郎廳)에게 아울러 1자급(資級)씩을 더하여 주었다.

처음에 문종(文宗)이 세조(世祖)에게 명하여 진법(陣法)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 세조가 도통사(都統使)로서 이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되었다. 훈련주부(注簿) 류자문(柳子文)은 문과 출신으로서 춘추관(春秋館)의 직을 겸하였는데, 요행으로 가자(加資)되니, 자청하여 훈도가 되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군대 행렬에 말타고 달리었다. 비록 한 자급은 얻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癸未親閱兵于箭串牧場政府六書堂上朗廳各一員諸司各一員臺諫侍臣皆扈從左右廂軍士三千五百四十一訓導一百八十九侍衛軍士八百五十閱訖賜侍衛人及軍士酒賜 世祖鞍具馬一匹環刀十柄角弓三十張左廂大將坡平尉尹巖右廂大將花川尉權恭各馬一匹訓導及訓練觀兵曹郎廳並加一資初 文宗命 世祖撰陣法至是 世祖以都統使摠治之訓練注簿柳子文以文科出身職兼春秋僥倖加資請爲訓導穿着甲冑馳騁部伍雖得一級人皆鄙之

《魯山君日記 卷第11, 1面》

단종 2년 7월 7일(병진)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飲)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상의원 제거(尙衣院提舉) 김중렴(金仲廉)·진무(鎭撫) 이행검(李行儉)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1백 대에 처하여야 하고, 상의원 제거(尙衣院提舉) 정흥손(鄭興孫)·안치강(安致康)·매우(梅佑), 별좌(別坐) 박대손(朴大孫)·김숙(金瀟)과 호조 좌랑(戶曹佐郎) 권온(權溫)과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 최윤중(崔允中)·김영전(金永漣)·임숙(任淑)·노삼(魯參), 진무(鎭撫) 노호(盧皓)·박훤(朴萱)·

권승지(權崇智) · 류맹돈(柳孟敦) · 권윤인(權允仁) · 류혜(柳蕙) · 박공신(朴恭信) · 이항전(李恒全) · 지혼(池渾) · 나치정(羅致貞) · 정윤신(鄭允信) · 이계중(李繼重) · 정인충(鄭仁忠) · 민순(閔諄) · 조수무(趙秀武)는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관습도감 부사(慣習都監副使) 김자안(金自安) · 예조 좌랑(禮曹佐郎) 정문형(鄭文炯) · 주서(注書) 권윤(權綸)은 장(杖) 80대에 처하여야 하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 · 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 · 이석형(李石亨) · 이개(李塏), 직전(直殿) 류성원(柳誠源) · 양성지(梁誠之), 응교(應敎) 이에(李芮), 교리(校理) 이극감(李克堪), 수찬(修撰) 이파(李坡) · 최선복(崔善復) · 박기년(朴耆年) · 김수령(金壽寧) · 심신(沈愼), 박사(博士) 노사신(盧思愼) · 성간(成侃), 춘추관 겸관(春秋館兼官) 이조 정랑(吏曹正郎) 조근(趙瑾)과 성균 직강(成均直講) 이함장(李誠長) · 주부(注簿) 김명중(金命中) · 교서 교리(校書校理) 성희(成熺) ·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이유의(李由義) · 훈련 주부(訓鍊注簿) 류자문(柳子文) ·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강미수(姜眉壽) · 공조 좌랑(工曹佐郎) 이익(李翊) · 성균 주부(成均注簿) 박찬조(朴纘祖) · 봉교(奉敎) 윤자영(尹子滢), 대교(待敎) 이제림(李悌林) · 최한보(崔漢輔), 검열(檢閱) · 권이경(權以經) · 김겸광(金謙光), 감찰(監察) 안중후(安重厚) · 민규(閔奎) 등은,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은 성상께서 재탁(裁度)하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
 “김자안(金自安) · 정문형(鄭文炯) · 민순(閔諄) · 노삼(魯參) · 김영전(金永湍) · 정인충(鄭仁忠) · 이계중(李繼重) · 나치정(羅致貞) · 지혼(池渾) · 이항전(李恒全) · 박공신(朴恭信) · 권윤인(權允仁) · 류맹돈(柳孟敦) · 권승지(權崇智) · 매우(梅佑) · 김숙(金瀟) · 안치강(安致康) · 정흥손(鄭興孫) · 권온(權溫) 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최윤중(崔允中) · 김중렴(金仲廉) 등은 각각 태(笞) 4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며, 권윤(權綸) · 임숙(任淑) · 조수무(趙秀武) · 정윤신(鄭允信) · 노호(盧皓) · 류혜(柳蕙) · 박대손(朴大孫) · 이행검(李行儉) · 박훤(朴萱) 등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니,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집현전(集賢殿) · 춘추관(春秋館)의 관원과 이계전(李季甸)도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丙辰司憲府劾闕內諸司招妓會飲之罪照律以啓尙衣院提舉金仲廉鎮撫李行儉律應杖一百尙衣院提舉鄭興孫安致康梅佑別坐朴大孫金瀟戶曹佐郎權溫鑄字所別坐崔允中金永湍任淑魯參鎮撫盧皓朴萱權崇智柳孟敦權允仁柳總朴恭信李恒全池渾羅致貞鄭允信李繼重鄭仁忠閔諄趙秀武杖九十慣習都監副使金自安禮曹佐郎鄭文炯注書權綸杖八十集賢殿副

提學河緯地直提學姜希顏李石亨李塏直殿柳誠源梁誠之應教李芮校理李克堪修撰李坡崔善復朴耆年金壽寧沈慎博士盧思慎成侃春秋館兼官吏曹正郎趙瑾成均直講李誠長注簿金命中校書校理成燾承文院校理李由義訓鍊注簿柳子文承文院校理姜眉壽工曹佐郎李翊成均注簿朴纘祖奉教尹子滌待教李悌林崔漢輔檢閱權以經金謙光監察安重厚閔奎等請照律施行兵曹叅判李季向上裁施行下政府議之政府議啓曰自安文炯諄參承湍仁忠繼重致貞渾恒全恭信允仁孟敦崇智佑瀟致康興孫溫等各答三十收贖允中仲廉等各答四十收贖綸淑秀武允慎皓總大孫行儉萱等功臣之後並勿論集賢殿春秋館官員及季向亦勿論從之

《魯山君日記 卷第11, 25面》

단종 2년 8월 5일(갑신)

○조혜(趙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삼고,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호조 판서로, 정척(鄭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심희(沈澮)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이보정(李補丁)을 예조 참판으로, 박팽년(朴彭年)을 형조 참판으로, 안승직(安崇直)·한서룡(韓瑞龍)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事)로, 우효강(禹孝剛)을 인수부윤(仁壽府尹)으로, 이명겸(李鳴謙)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사증(李師曾)을 병조 참의로, 박원형(朴元亨)을 좌승지(左承旨)로, 권자신(權自慎)을 우승지(右承旨)로, 권남(權孳)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행검(李行儉)·류사지(柳士枝)·구문신(具文信)·임효인(任孝仁)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어(趙晤)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윤사윤(尹士昀)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에손(李禮孫)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안승효(安崇孝)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로, 황수신(黃守身)⁶⁸⁾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숙동(盧叔叄)을 전라도 관찰사로, 나홍서(羅洪緒)를 황해도 관찰사로, 김순(金淳)을 강원도 관찰사로, 마승(馬勝)을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오정(吳靖)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변효문(卞孝文)을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삼았다. 류자문(柳子文)은 간특한 일[奸事]에 관계되어 상주교수관(尙州教授官)으로 삼아 내보내고, 김질(金磧)·정수충(鄭守忠)·김명중(金命

68) 황수신(黃守身) : 1407~1467. 세조 때의 문신. 호는 첩부(耄夫) 시호는 열성(烈成) 본관은 장수(長水). 황희(黃喜)의 아들로 지평 장령 좌승지, 세종 28년 도승지가 되었다. 문종 즉위년 첨지중추부사, 단종 즉위년 형조참판, 경상도 관찰사 등을 거쳐 세조 원년(1455) 우참찬 좌익공신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하여졌다. 세조 8년 좌찬성으로 경국대전 제2차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다. 형 황치신(黃致身 : 1397~1484) 역시 성종 때의 문신으로 호조판서와 판중추원사를 역임했다. 황치신은 류자문의 아버지 류열(柳悅)과 동서지간이 된다.

中)은 모두 6품(六品)에서 4품(四品)의 직사(職事)로 뛰어 제수하였다.

○甲申○以趙惠判中樞院事姜孟卿議政府右叅贊李仁孫戶曹判書鄭陟判漢城府事沈澮同知敦寧府事李補丁禮曹叅判朴彭年刑曹叅判安崇直韓瑞龍中樞院副事禹孝剛仁壽府尹李鳴謙漢府尹成三問禮曹叅議李師曾兵曹叅議朴元亨左承旨權自慎右承旨權擘左副承旨具致寬右副承旨韓明澮同副承旨李行儉柳士枝具文信任孝仁僉知中樞院事趙崐集賢殿副提學尹士昫司諫院左司諫大夫李禮孫司諫院右司諫大夫洪逸童左獻納徐岡右獻納安崇孝京畿觀察使閔騫忠淸道觀察使黃守身慶尙道觀察使盧叔全全羅道觀察使羅洪緒黃海道觀察使金淳江原道觀察使馬勝慶州府尹吳靖安東大都護府使卞孝文全州府尹柳子文以奸事出爲尙州教授官金碩鄭守忠金命申俱以六品超授四品職事 《魯山君日記 卷第12, 2面》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중략]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류자해(柳子偕)·관찰사(觀察使) 류규(柳規)·판관(判官) 류균(柳均)·부사직(副司直) 류숙(柳塾)·류양(柳壤), 교수관(教授官) 류자문(柳子文)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錄)한다.

주부 류전(柳愜)·감찰(監察) 류자미(柳自湄)·봉상 윤(奉常尹) 류척(柳惕)·행사직(行司直) 류맹돈(柳孟敦)·부사(府使) 류양식(柳陽植)·호군(護軍) 류해(柳諧)·류지윤(柳之潤), 내금위(內禁衛) 류기(柳嗜)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中略]

同副知敦寧柳子偕觀察使柳規判官柳均副司直柳塾柳壤教授官柳子文原從功臣二等錄注簿柳愜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行司直柳孟敦府使柳陽植護軍柳諧柳之潤內禁衛柳嗜原從功臣三等錄 《世祖實錄 卷第2, 57面》

세조 8년 9월 18일(기유)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류자문(柳子文)·김승(金昇)·김유선(金有善)·이우평(李牛平) 등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다.

○己酉○傳旨吏曹給還柳子文金昇金有善李牛平等告身 《世祖實錄 卷第29, 12面》

성종 3년 12월 18일(경진)

○원상(院相) 정창손(鄭昌孫)·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숙천 부사(肅川府使) 류자문(柳子文)은 진상(進上)을 빙자하여 민간에서 숙천(熟蕪) 2석(碩)을 취렴(聚斂)하여 사용(私用)하였고, 증산 현령(甌山縣令) 김맹

규(金孟規)는 관고미(官庫米) 3석(碩)을 사용(私用)하여 모두 죄가 용서할 수 없는데도 금부(禁府)에서는 사유(赦宥) 전으로 논죄하여 내버려 두었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수령(守令)으로 소민(小民)을 몹시 침탈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무리는 종신(終身)토록 폐기(廢棄)함이 옳습니다. 이제 류자문(柳子文) 등은 행패가 드러났으니 만약에 법으로써 통렬히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하고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다시 조율(照律: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기던 일)하여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庚辰○院相鄭昌孫曹錫文啓曰肅川府使柳子文依憑進上聚斂民間私用熟繭二碩甑山縣令金孟規私用官庫米三碩皆罪在不赦而禁府論以赦前棄之甚不可守令侵刻小民者多有之如此輩終身廢棄可也今子文等幸敗露若不痛繩以法則人無所畏忌矣請更照律懲戒 傳曰可
《成宗實錄 卷第25, 5面》

성종 4년 1월 12일(계묘)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류자문(柳子文)·김맹규(金孟規)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라.”

○癸卯○傳旨義禁府柳子文金孟規收告身永不敍用
《成宗實錄 卷第26, 7面》

성종 4년 1월 17일(무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중거(辛仲瑠)가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은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 서용(敍用)하지 않는 벌을 내렸으나, 신 등은 류자문의 범장(犯贓)한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율문(律文)에 의하여 법대로 조치하소서. 김맹규(金孟規)도 자자(刺字)하고, 모두 자손을 금고(禁錮)⁶⁹⁾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大赦)를 겪은 일이며, 또 헤아려서 과죄(科罪)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신중거가 다시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戊申○司憲府持平辛仲瑠來啓曰柳子文只收職牒不叙臣等以爲子文犯贓大多請依律置

69) 금고(禁錮) :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

法金孟規亦刺字並禁錮子孫 傳曰事經大赦且已商量科罪勿復言仲琚更啓 不聽

《成宗實錄 卷第26, 7面》

성종 4년 1월 23일(갑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笥子)를 올리기를,
 “숙천 부사(肅川府使) 류자문(柳子文)과 증산 현감(甌山縣監) 김맹규(金孟規)는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였으니,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전형(典刑)을 명백히 바
 루어야 합니다. 신 등이 들건대, 전일 의금부(義禁府)에서 다만 고신(告身)을 수
 탈(收奪)하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을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합니다. 신
 등이 상고하건대, <대명률(大明律)>에는, ‘감수(監守)하는 자가 훔친 장물(贓物)
 이 40관(貫) 이상이 되는 자는 참(斬)하고, 나머지도 모두 자자(刺字)한다.’ 하
 였고,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에는, ‘범장(犯贓)한 자는 녹안(錄案)
 하여 이조(吏曹)·병조(兵曹)·대간(臺諫)에 이첩(移牒)하고, 자손에게 정부(政
 府)·육조(六曹)·대간·수령(守令)을 제수(除授)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근일 여러 번 사유(赦宥)를 내렸으나 장리(贓吏)가 범한 죄는 다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류자문·김맹규는 정률(正律)로 처벌하지 않고 다만 고신을 수탈
 하고 서용(敍用)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하였으니, 탐오(貪汚)한 자에게 징계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류자문·김맹규는 율문에 의하여 자자하고, 대전에 의하
 여 장안(贓案)에 기록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여, 국법(國法)을 바꾸어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인은 죄가 중하므로 사유를 지났어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죄를 더 준
 다면 사유를 베풀 뜻에 어그러질 것이다.” 하였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준(成俊) 등이 차자(笥子)를 올리기를,
 “류자문(柳子文)은 범장(犯贓)한 것이 지극히 많으므로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었으니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습니다. 앞드려 바라
 건대, 중벌에 처하도록 명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甲寅○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笥子曰肅川府使柳子文甌山縣監金孟規罪犯贓汚宜據
 律明正典刑臣等伏聞前日義禁府啓請只收告身永不敍用臣等謹按大明律監守自盜贓滿四
 十貫者斬餘並刺字大典犯贓者錄案移吏兵曹臺諫子孫勿授政府六曹臺諫守令職且近日累
 降赦贓吏所犯皆所不原今子文孟規不坐正律只收告身不叙貪汚者無所懲艾矣請將子文孟
 規依律文刺字依大典錄贓案禁錮子孫以正邦憲幸甚 傳曰二人罪重故雖經赦不原若又加

之則有乖施赦之意○司諫院大司諫成俊等上劄子曰柳子文犯贓至多不宜容恕今只收告身罪重罰輕伏望 命置重典以懲後來不聽

《成宗實錄 卷第26, 9面》

성종 4년 1월 24일(을묘)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근년에 여러 번 내린 사령(赦令)을 두루 상고하니, 오직 경인년(庚寅年 : 1470년, 성종 원년) 12월 16일의 대사(大赦) 외에는 간도(奸盜 : 재물을 부정하게 가로채거나 훔침)를 모두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류자문(柳子文)·김맹규(金孟規) 등은 감수(監守)하는 자로서 스스로 훔쳐서 장오(贓汚)를 범한 것이니, 그 죄는 으레 사유(赦宥)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의금부(義禁府)에서 당초에 정조(正條)를 적용하지 않고 불왕법장(不枉法贓)⁷⁰으로 조율(照律)하여, 사유가 내리기 전의 일로 논하였으므로 매우 안율(按律)의 의의(意義)에 어그러졌습니다. 그 뒤에 고쳐서 감림자도(監臨自盜)⁷¹의 율(律)에 해당시켜 아뢰었으나, 마침내 먼저 아뢰었던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리(官吏)의 범장(犯贓)은 정률(正律)을 적용해야 마땅하고, 감해서 가벼운 법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빌건대, 성찰(聖察)을 내리어, 자자(刺字)하여 조종(祖宗)의 성법(成法)을 준수하고 장안(贓案)에 기록하여 국법을 바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감수자도(監守自盜)의 예(例)는 아니나, 그러나 여러 번 청하니 마땅히 다시 상량(商量)하겠다.” 하였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진지(陳趾)가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은 감수(監守)하는 자로서 스스로 훔쳐서 공공연히 하여 꺼림이 없었으니, 범장(犯贓)한 것이 비록 적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범장한 것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무거운 법이 누락되어 뒷사람을 징계함이 없는 것이니, 빌건대, 결단하여 그 죄를 바꾸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감수자도(監守自盜)의 예는 아니나, 너희들이 말하니, 마땅히 전례를 상고하게 하겠다.” 하였다.

○乙卯○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劄子曰臣等歷考近年累降赦令唯庚寅十二月十六日大赦外奸盜并不原宥子文孟規等監守自盜罪犯贓汚例不蒙宥義禁府當初按律不用正條以不枉法贓照得論以赦前殊失按律之意後改照監臨自盜之律以啓竟用前律官吏犯贓宜用正律

70) 불왕법장(不枉法贓) : 소송인으로부터 재물은 받았으나,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지는 않은 것.

71) 감림자도(監臨自盜) : 전곡(錢穀)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한 죄.

不宜減從輕典乞賜 聖察刺字遵 祖宗成典錄贓以正那憲 傳曰此非監守自盜例也然累請之當更商量○司諫院正言陳趾來啓曰柳子文監守自盜公然無忌贓雖少猶不可恕況其多乎此而得漏重典無以懲後乞快斷以正其罪 傳曰此非監守自盜例也然爾等言之當令考例
《成宗實錄 卷第26, 9面》

성종 4년 2월 21일(임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류자문(柳子文)은 사람됨이 탐탁(貪濁)하고 가혹하며 팍흔(復狠 : 마음이 비뚤어남을 잘 거스름)하고 사흉(邪譎 : 간사하고 속임)하니,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임소(任所)에 5, 6년 있는 동안에 가혹하게 수세(收稅)하여 원망을 사고 제 마음대로 불법(不法)을 행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드러나 추핵(推劾)한 것만도 마흔 가지가 넘으나, 낱알이 두루 아될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그 대략만을 거론합니다. 평양(平壤)·벽동(碧潼) 두 고을의 관비(官婢)를 간음하고 모두 아소(衙所)에 두어 관곡(官穀)을 앉아서 축내게 하고 관물(官物)을 훔쳐서 주었으며, 사전(寺田) 수십 결(結)을 차지하고 관민(官民)과 우력(牛力)을 마음대로 징발하여 경작하고 수확해서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해마다 거둬들여 사사로이 팔았으며, 관비 7, 8명을 함부로 부려 길쌈을 시켜서 처첩(妻妾)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남이 준 면포(綿布) 50필을 몰래 받아 면주(綿紬) 10필과 쌀 20석으로 바꿔서 자기 소유로 하였는데, 일이 이미 드러나게 되어 계책이 궁하고 형세가 급하니까 사돈인 이우(李瑀)의 물건이라 핑계대었으나, 그 아들 류한장(柳漢長)이 그때 이우의 집에 있었으니 그 훔쳐 쓴 정적(情跡)을 숨기려 한 것이 분명하며, 또 부상(富商) 김장수(金長壽) 등 3인에게서 면포 1백 50필을 받고 한 필에 쌀 20두(斗)씩 값을 주었는데,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는 관용(官用)이라 핑계대었으니, 그 거짓으로 꾸며 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관인(官人)을 마음대로 다른 도에 보내어 어물(魚物)을 팔게 하고, 또 가동(家僮)을 시켜 촌락(村落)을 횡행하며 백성에게서 피물(皮物)을 빼앗아 오게 하였으며, 또 기관(記官) 오광문(吳廣文)이 자기에 대한 원망을 호소하니 형장(刑杖)을 치거나 속(贖)을 받아 법을 어겨서 침탈하여, 오광문으로 하여금 재산을 탕진하게 한데다가 이어서 집을 부수어 몹시 참혹하게 하였으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짝이 없습니다. 명백히 자기 소유로 한 것으로 말하면, 생견(生繭) 10석(碩)과 생사(生絲) 5근(斤)과 유기(鑪器) 4부(部)와 사기(沙器) 3백 20여 개와 쌀·소금·벼 각각 1석씩이며, 훔쳐 쓴 관물은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김맹규(金孟規)는 탐욕스럽고 음사(陰邪)하며 잔학하고 가혹하여, 백성의 물건을 노략

질하고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관미(官米) 3석을 훔쳐서 몰래 서울 집으로 날라 왔는데 나타난 장물(贓物)이 명백합니다. 이 2인은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죄가 남을 것이고 천주(天誅)를 받지 않은 것만도 충분한데, 또 정률(正律)로 처리하지 않고, 다만 고신(告身)을 거두고 서용(叙用)만을 앉았으니, 이것은 죄는 무겁고 율(律)은 가벼운 것이어서 장오(贓汚)를 징계하고 탐묵(貪墨)을 막는 것이 못됩니다. 신 등은 류자문과 김맹규를 율문(律文 : <대명률(大明律)>)과 대전(大典)에 의하여 자자(刺字)⁷²⁾·녹안(錄案)할 것을 청하였더니, 상량(商量)하시겠다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기쁨을 금치 못하며 부복(俯伏)하여 기다렸으나,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명(成命)을 받들지 못하니, 다시 번거로이 아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수령(守令)이 또 있을 것이니, 동시에 과죄(科罪)해야 하겠다.” 하였다.

○壬午○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劄子曰柳子文爲人貪濁苛酷愎狠邪譎小人之尤者也其在任所五六年之間掊克歛怨淫緞不法等事不可勝言其敗露推劾者亦不下四十條然不暇一一歷陳姑舉其略奸淫平壤碧潼兩官婢並畜衙所坐耗公廩盜給官物占私田數十結擅發官民牛力耕獲歲收花利販鬻自私濫使官婢七八名紡績織絁以肥妻妾暗受他人贈給綿布五十匹轉換綿絢十匹米二十碩入己事已發露計窮勢迫托稱姻家李瑀布物然其子漢長見在李瑀之家則其盜用情跡欲蓋彌彰又陰受富商金長壽等三人綿布一百五十匹每匹給價米二十斗及事露則托稱官用其飾詐類如此擅發官人于他道與販魚物又緞家僮橫行村落奪民皮物又怒記官吳廣文訖已或杖或贖枉法侵責使廣文蕩盡財產繼之以破家苛刻慘酷毒民無比其明白入己者則生繭十碩生絲五斤鑰器四部沙器三百二十餘箇米塩稻各一碩盜用官物其數甚夥金孟規貪饕陰譎殘暴苛刻漁牟民物多行不義盜官米三碩潛輸京家見贓明白惟此二人雖置之極刑尚有餘辜其得這天誅足矣又不坐以正律只收告身不叙罪重律輕非所以懲贓汚杜貪墨也臣等曾請子文孟規依律文大典刺字錄案施行伏蒙 聖教商量不勝欣忭俯伏以待已踰旬日未奉成命敢再瀆以聞 傳曰如此守令又有之矣當同時科罪 《成宗實錄 卷第27, 6面》

성종 4년 3월 15일(을사)

○의금부(義禁府)에 전교하기를,

“류자문(柳子文)·김맹규(金孟規)는 장리안(贓吏案)에 기록하라.”

○乙巳○傳于義禁府曰柳子文金孟規錄贓吏案憲

《成宗實錄 卷第28, 4面》

72) 자자(刺字) : 중국 고대부터 있던 형벌의 한가지.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흙을 내어 먹물로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일.

성종 6년 2월 29일(무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과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윤현손(尹顯孫) 등이 상소하기를,

근년에 숙천 부사(肅川府使) 류자문(柳子文)과 증산 현령(甑山縣令) 김맹규(金孟規)가 장죄(贓罪)를 범하여 추책을 마치지 못하고서 사유(赦宥)를 만났는데, 비록 죄는 다스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역시 장안(贓案)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이미 처단한 일입니다. 허선과 김이정의 죄는 류자문·김맹규와 같은데, 전하의 논단(論斷)은 차이가 있으니, 이는 신 등이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戊申○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司諫院獻納尹顯孫等上疏曰近年肅川府使柳子文甑山縣令金孟規犯贓推劾未畢而會赦雖不治罪亦錄贓案此 殿下已斷之事也譎與利貞之罪同於子文孟規而 殿下論斷有異此臣等所未解也 不聽 《成宗實錄 卷第52, 32面》

성종 6년 3월 15일(갑자)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평석숭(平石崇)·정대희(鄭大禧)·유계근(劉季根)·윤유덕(尹由德)·우창신(禹昌臣)·견석명(甄碩明)·박유(朴有)·고운수(高雲秀)·장보인(張寶仁)·류자문(柳子文)·김맹규(金孟規)·이승번(李承蕃)·이희철(李希哲)·고신교(高愼喬)·심담(沈淡)·김장수(金長壽)·민중(閔悰)·김계손(金繼孫)·장은(張隱)·임지(林智)·강이례(姜以禮)·전효근(全孝根)·신근(愼謹)·주흥서(朱興序)·최순(崔順)·강호생(康好生)·박시맹(朴時萌)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다.

○甲子○傳旨吏曹還給平石崇鄭大禧劉季根尹由德禹昌臣甄碩明朴有高雲秀張寶仁柳子文金孟規李承蕃李希哲高愼喬沈淡金長壽閔悰金繼孫張隱林智姜以禮全孝根愼謹朱興序崔順康好生朴時萌告身 《成宗實錄 卷第53, 8面》

성종 13년 7월 22일(기축)

○류자문(柳子文)이 장죄를 범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심회·윤필상·홍응·윤호·강희맹·이극증이 의논하기를,

“류자문이 범한 바는 유기(鑰器) 등의 물건을 무역(貿易)한 것과 숙건(熟繭: 익힌 고치) 두 섬을 관아(官衙)에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일이 장오(贓汚)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유(赦宥)가 지나서 죄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장안(贓案)에 기록되었으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윤사흔·노사신·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그 아들 류한평(柳漢平)이 상언(上言)한 가운데, ‘벼[租]를 주고 고치[繭]를 무역한 문기(文記)를 당초 추고(推考)할 때에 마침 잃어버리고 바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 글을 보니 뒤에 만든 글은 아닌 듯합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한명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

○己丑○議柳子文犯贓事昌孫沈澮弼商洪應尹壕希孟克增議子文所犯如鎡器等物貿易及熟繭二碩納衙事干贓汙雖以經赦免罪而已錄贓案不可輕赦明澮士旣思慎克培議其子漢平上言內給租貿繭文記當初推考時適失之不納今觀此文似非追述之書令該司更覈何如 從明澮等議

《成宗實錄 卷第143, 30面》

성종 16년 6월 4일(계미)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서 장리(贓吏)의 아들과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을 자 등 모든 금고(禁錮)하였던 사람을 허통(許通)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慎)·윤호(尹壕)·이파(李坡)·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장리(贓吏) 김맹규(金孟規)·류자문(柳子文)·홍강(洪剛)·김계종(金繼宗)·조성벽(趙成璧)·하민(河泯)·이종산(李宗山)·조형손(曹亨孫)·이달손(李達孫)·조숙연(曹叔淵)과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신정(申澥)은 그 아들을 모두 허통(許通)하게 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않을 자인 우한생(禹漢生)·최빈(崔濱)·최승종(崔承宗)·유효전(兪孝全)·권호(權瑚)는 그 자신을 허통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다만 권호(權瑚)는 다시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癸未 命召議政府領敦寧以上議贓吏之子及永不敍用者一應禁錮人許通便否鄭昌孫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慎尹壕李坡金謙光議贓吏金孟規柳子文洪剛金繼宗趙成璧河泯李宗山曹亨孫李達孫曹叔淵印信僞造申澥並許通其子永不敍用人禹漢生崔濱崔承宗兪孝全權瑚當身許通何如 傳曰可但權瑚更問以啓

《成宗實錄 卷第180, 3面》

성종 16년 6월 7일(병술)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한언(韓堰) 등이 차자(笥子)를 올려 말하기를,

“신 등은 생각하건대, 하늘이란 이치[理]입니다. 상벌(賞罰)을 이치에 맞게 한 연후에야 천심(天心)과 화합하며 천휴(天休 : 하늘의 좋은 명령)를 이르게 할 것이

나, 혹 상벌이 맞지 아니하면 천리(天理)를 어기어 재해(災害)가 아울러 이를 짓습니다. 김맹규(金孟規)·류자문(柳子文)·홍강(洪剛)·김계종(金繼宗)·조성벽(趙成璧)·하민(河泯)·이종산(李宗山)·조형손(曹亨孫)·이달손(李達孫)·조숙연(曹淑淵)은 장죄(贓罪)를 범하여 장리안(贓吏案)에 기록되었고, 신정(申澣)은 인신(印信)을 위조하여 형(刑)을 받았으며, 우한생(禹漢生)·최빈(崔濱)·최승종(崔承宗)·유효전(兪孝全)은 혹은 탐오(貪汚)를 범하고 혹은 간사(奸詐)를 범하여 모두 금고(禁錮)하도록 하였던 것이니, 이는 국가에서 법전을 씬에 있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가뭄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한 죄를 갑자기 풀어 벼슬길을 열어 주시니, 그것을 천심(天心)에 따르고 천재(天災)를 그치게 했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또 인신(印信)을 위조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는 노비(奴婢)로 삼는 것인데, 신정의 처자는 노비가 되지 않았으니, 성은(聖恩)이 지극히 중하여 이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벼풀어 서는 안될 곳에 은혜를 베풀어 훌륭한 법전을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丙戌○司諫院大司諫韓堰等上劄子曰臣等惟天者理而已賞罰當於理然後可以協天心致天休苟或賞罰不中則違天逆理災害並至矣金孟規柳子文洪剛金繼宗趙成璧河泯李宗山曹亨孫李達孫曹淑淵犯贓錄案申澣造印受刑禹漢生崔濱崔承宗兪孝全或犯貪汚或犯奸詐並令禁錮此國家用典之至當者也今以天旱遽釋不赦之罪許開仕路其可謂順天心而弭天災乎且印信僞造者處斬妻子爲奴則澣之妻子不爲奴隸 聖恩至重無以加矣何必施恩於所不當施而壞令典乎 不允

《成宗實錄 卷第180, 6面》

성종 16년 10월 25일(임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이 숙천(肅川)을 맡았을 때에 누에고치를 무역한 일이 탄로되어 죄에 연좌되어 장안(贓案)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상서(上書)한 것으로 경솔히 장안(贓案)을 고침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누에고치를 무역한 쌀은 바로 아중(衙中)에 저축하였으니, 관물(官物)을 도적질한 것이 아닌데, 자손까지 금고(禁錮)함은 정상이 매우 애매한 까닭에, 명하여 장안(贓案)에서 덜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壬寅 御經筵講訖大司憲李瓊全啓曰柳子文任肅川時貿繭事露坐罪錄贓案今以其子上書輕改贓案甚不可 上曰貿繭之米乃衙中所儲非盜官物也而至子孫禁錮情甚曖昧故命減

성종 16년 10월 26일(계묘)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이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었을 때에 장죄(臧罪)를 범함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 장안(臧案)에서 삭제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장죄(臧罪)는 중대한 일이므로 그 때에 국문(鞫問)을 맡았던 자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바르게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집의 문서로써 믿을 만하다 하여 이를 번복함은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어제 대사헌(大司憲)도 말하였다. 그러나 우의정(右議政)이 이르기를, ‘이 문서가 비록 자기 집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추술(追述)한 글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대저 옥사(獄事)를 다스림에 일이 이미 매듭지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되는 것이 많다. 내가 듣건대, 류자문의 일은 애매하며 평안도(平安道)의 백성이 그의 죄없음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니, 내 생각으로는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그 때에 임사홍(任士洪)이 가서 그 일을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죄를 그 당시에는 스스로 밝힐 수가 없어서 죄를 자복한 지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 집안의 문서만을 신뢰해서 완전히 풀어준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는데,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좇으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일은 놔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송질(宋軼)은 이르기를,

“장오(臧汚)의 죄는 풍속과 교화에 관계가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부터 우리 조정에서 장안(臧案)에 기록된 자는 단지 20여 명뿐입니다.[중략]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오(臧汚)의 일은 대절(大節)에 관계된다. 옛사람은 예의 염치(禮義廉恥)를 중대한 일로 삼았으니,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비록 재능이 있더라도 취할 것이 없다. 그러나 애매한 일을 가지고 무거운 법망(法網)으로 엮는 것은 아마도 국정(國政)에 누(累)가 될 듯하다.”

하였다.

○癸卯 御經筵講訖持平宋軼啓曰柳子文爲肅川府使時犯贓甚多今削贓案未便贓罪重事其時掌鞫者必審結正矣今乃以自家文書爲信而反之甚未便上曰爾之所言是矣昨日大司憲亦言之矣然右議政云此文書雖自家而出非追述之書也凡治獄事已成而終有反之者多矣予聞子文之事曖昧平安之民有言其無罪者予意謂舍之可也大司諫韓堰啓曰其時任士洪往問其事矣如此重罪當其時不能自明而服罪於今十年之後信自家文書而全釋未便 上謂左右曰何如李克增啓曰古云罪疑惟輕如此可疑之事舍之可也軼曰贓汚之罪有關風化自開國以來我朝錄贓案者只二十餘人[中略]

上曰贓汚之事關係大節古人以禮義廉恥爲重人無廉恥雖有才能無足取也然以曖昧之事掛於重網恐爲國政之累 《成宗實錄 卷第184, 19面》

성종 16년 10월 27일(갑진) 忠孝 清白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將令) 김질(金耆)이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이 장오(贓汚)를 범한 죄는 장안(贓案)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甲辰○御經筵講訖掌令金耆啓柳子文罪犯贓汚不可削案 不聽 《成宗實錄 卷第184, 20面》

성종 16년 11월 1일(무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이 죄를 입은 것은 이미 14년이 되었습니다. 류자문이 관곡(官穀)으로 실[絲] 5근(斤)을 교환하였으며, 생견(生繭) 10석(碩)을 사사로이 썼습니다. 대저 감림자도(監臨自盜)한 것은 비록 물건이 적더라도 모두 장안(贓案 : 범죄 사실을 기록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장(犯贓)한 것이 중하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아무리 햇수가 오래 되었더라도 만약 애매(曖昧)한 정상(情狀)이 있으면 당연히 그로 하여금 원통한 것을 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지서(趙之瑞)도 평안도(平安道)의 사람들이 모두 ‘류자문의 사건은 애매하다.’ 한다고 말하였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미 다시 분변하여 장안(贓案)에서 이름을 삭제(削除)하였으니, 다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戊申 御經筵講訖大司憲李瓊全啓曰柳子文被罪今已十四年矣子文以官穀換絲五斤生繭十碩私用大抵監臨自盜則雖小物皆錄贓案此則贓重不可輕論上曰雖年久若有曖昧之狀當使之解冤也趙之瑞亦言平安之人皆云子文之事曖昧仍問左右領事盧思慎對曰今已更辨削名贓案不可更論

《成宗實錄 卷第185, 1面》

성종 16년 11월 1일(무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
 “장리(贓吏)는 국가의 두적(蠹賊 : 좀먹는 것처럼 해하는 사람)으로서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키고 선비의 풍습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자(王者)가 미련없이 버리고 후사까지 금고(禁錮)시켜서 선비의 기품을 면려(勉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류자문(柳子文)은 자신이 장오(贓汚)를 범하여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고 성명(姓名)이 장안(贓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10년 뒤에 기용되기를 희망하여 뻔뻔스럽게 다시 변명하면서 옛날에 승복(承服)했던 인리(人吏)도 지금에 와서 변경시켜서 옛날에 들여놓지 않았던 문권(文券)을 지금 와서 들여 놓으니, 그 당시의 인리는 어찌하여 사실대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으며, 문권은 어찌하여 즉시 들여놓지 않고서 뒷날을 기다린 것입니까? 그 진실과 속이는 것을 알만한데도 전하(殿下)께서 애매(曖昧)하다고 여기시어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장안(贓案)에서 이름을 삭제하게 하셨습니다. 신 등은 모르긴 합니다만 류자문의 애매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무릇 장리(贓吏)로서 도망중에 있는 자도 오히려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는데, 더구나 류자문은 그를 처음 추문(推問)할 적에 변명을 하지 못하고 말없이 자복한 것이겠습니까? 법은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사람마다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인주(人主)의 법은 마땅히 튼튼하기가 금석(金石)과 같고 신실(信實)하기가 사시(四時)와 같아서 한 번 결정하면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류자문(柳子文)을 용서한다면 류자문과 같은 자가 반드시 별떼처럼 일어나서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니, 전하(殿下)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시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모두 따라 준다면 탐람(貪婪)하고 청렴한 것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가 없어서 선비의 풍습이 점점 비오(鄙汚)해지고 염치(廉恥)의 도(道)가 장차 흔적도 없이 되어 나라가 나라꼴이 안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 등이 고집하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까닭입니다.

○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笏子曰贓吏者國之蠹賊傷風教壞士習莫此爲甚故王者棄之不惜禁錮至於後嗣以礪士風今柳子文身犯贓汚既服其罪姓名錄在贓案然猶希用於十年之後

乃復覩然發明昔之承服人吏今則改之昔之未納文券今則納之當其時人吏何不以實證之文券何不卽納而以待後日耶其情其詐可知而 殿下以爲曖昧特原其罪削名贓案臣等未知子文曖昧者何事歟凡贓吏在逃者猶據證定罪況子文其在初推未能辨明無肆自服乎法不可以一人而搖一人而搖則人人得而搖之人主之法當堅如金石信如四時一定而不可易赦一子文則如子文者必蜂起而訴寃 殿下不從之則用法不均盡從之則貪廉無所勸懲士習漸以鄙汚廉恥之道將恐掃地而國非其國此臣等所以固執而不能自己者也 《成宗實錄 卷第185, 2面》

성종 16년 11월 2일(기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류자문(柳子文)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강거효(姜居孝) 등이 차자(筴子)를 올리기를,
 “류자문(柳子文)은 문과(文科) 출신으로 사리(事理)를 조금 아는데, 한 번 수령에 임명되자 탐욕스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만 살찌려 하였으며 공사(公事)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경영하였으니, 참으로 정사(政事)를 좀먹는 두적(蠹賊)입니다. 이름을 장안(贓案)에 기록하여 종신토록 금고(禁錮)시키는 것이 법에 당연합니다. 지금 장안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셨는데, 신 등은 그 까닭을 모르겠으나 죄안(罪案)을 열거하여 낱낱이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쌀 4석(碩)으로 면포(綿布) 15필(匹)과 바꾸고 그것을 유기(鍮器)와 바꾸어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贓物)의 첫번째이고, 중사(中絲) 5근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의 두번째이고, 생견(生繭) 10석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의 세번째입니다. 무릇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범한 것이 비록 작더라도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징계로 1백 사람을 경계시켜 선비의 기풍을 가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자문(柳子文)의 장물은 바로 그 죄 중에서도 중하고 큰 것입니다. 그 밖에 흥리인(興利人 : 장사꾼)에게 면포(綿布)를 받고 관곡(官穀)을 지급한 등의 일은 낱낱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처음 추문(推問)할 때에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과 류자문을 일일이 직접 문초하였는데, 이제 거짓을 꾸며 근거없는 문권(文券)을 바쳤으니, 이것은 류자문의 속이는 것을 알 만합니다. 그 때를 당해서 과연 이 문권이 있었다면 두 차례의 형신(刑訊)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바쳤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가만히 그 일에 관계된 사람에게 요청하여 감히 이것으로 질정(質正)하여 전하(殿下)를 속이려 하니, 이것은 매우 간사한 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예(禮)로써 나라를 다스리시고 선비의 기풍을 진작(振作)시키고 풍속을 권려(勸礪)하는데도 오히려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장오(贓汚)에 빠진 자가 28명이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장물죄를 범하고 도망중에 있는 자가 두 사람이며 가두어 놓고 국문(鞫問)하는 자가 한 사람이니, 장리(贓吏)가 성상(聖上)의 교화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그것을 바로 잡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만일 혹시라도 용서한다면 폐단을 장차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류자문을 용서하는 것은 비록 해로움이 없는 것 같으나,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는 조짐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己酉 御經筵講訖執義姜居孝啓柳子文事 不聽

○司憲府執義姜居孝等上劄子曰柳子文出身文科稍識事理一任守令貪心忽生損民肥己欺公營私誠蠹政之蠹賊錄名贓案禁錮終身於法當矣今 命除贓案臣等未知其由請舉罪案而歷陳之以米四碩質綿布十五匹易鎗器入己其贓一也中絲五斤入己其贓二也生繭十碩入己其贓三也凡犯贓之人所犯所小猶且錄案欲其懲一而警百以礪士風也子文之贓乃其罪之重且大者也其他如受興利人綿布給官穀等事則難以枚舉也初推時事千人及子文一一直招今而飾詐納其無據之文券此則子文之詐可知矣當其時果有此文券則不待二次刑訊自當納之矣十年之後暗請事干敢以此質之以欺 殿下此則奸回之尤者也 殿下自卽位以來以禮爲國振士風礪風俗猶有不畏邦憲以陷贓污者二十有八人不但此也卽今犯贓在逃者二人囚禁而鞫者一人贓吏之有累聖化如此其多也據法而繩之猶恐不勝如或寬之弊將何救赦一子文雖若無害傷風敗俗漸不可長也 不聽

《成宗實錄 卷第185, 3面》

성종 16년 11월 3일(경술)

장령(掌令) 이의(李誼)가 또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이 장물죄를 범하여 죄를 이루게 된 물건은 고치[繭] 10석(碩), 실[絲] 5근(斤), 쌀 4곡(斛)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안(推案: 죄인의 심문 조서)을 보니, 류자문이 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인(賈人: 장사를 하는 사람) 김장수(金長壽)에게서 면포(綿布) 50필(匹)을 받았으며, 또 평양(平壤)과 강계(江界)의 관비(官婢)를 기르면서 공름(公廩)을 허비하여 썼으며, 또 안주(安州)에다 전지(田地)를 일구어 고을의 아전들로 하여금 손질하게 하고 명목은 인척(姻戚) 집안의 전지라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자신의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질구레하고 모람(冒濫)된 일은 날날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근자에 탐람(貪婪)하는 기풍이 날로 불어나 금구 현령(金溝縣令) 조계손(趙繼孫)·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이 함께 장물죄에 연좌되었으며, 조계손은 도망하여 숨었으니, 비록 법으로 통렬하게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더구나 너그럽게 그들을 놓아주어 징계되는 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에 귀후서 별좌(歸厚署別坐) 조성벽(趙成璧)이 송판(松板) 4개를 훔쳤는데도 오히려 장안(贓案)에 기재되었으니, 더구나 류자문의 장물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다만 그 당시 승복(承服)한 것뿐이다. 전날 경연(經筵)에서 조지서(趙之瑞)가 ‘숙천(肅川)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류자문의 죄는 애매하다.』고 한다’ 하기에, 경(卿) 등이 여러 번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 전후의 추안(推案)을 베껴서 아뢰라.” 하였다.

諠又啓曰柳子文犯贓致罪之物則繭十碩絲五斤米四斛而已今更閱推案子文之犯非特此也受賈人金長壽綿布五十匹又畜平壤及江界官婢費用公廩且於安州作田使邑吏治之名爲姻家之田而實潛輸其家其他瑣瑣冒濫之事難以枚舉近者貪風日滋金溝縣令趙繼孫陽智縣監李仲善俱坐贓繼孫則逃匿雖痛繩以法猶不知懼況寬縱之使無所懲艾向者歸厚署別坐趙成璧盜松板四箇猶載贓案況子文之贓乎 上曰予之所知但其時承服耳前日經筵趙之瑞云肅川人皆曰子文之罪曖昧故卿等屢請而不允其前後推案抄書以啓 《成宗實錄 卷第185, 4面》

성종 16년 11월 9일(병진)

○전교(傳敎)하기를,

“류자문(柳子文)의 장물죄를 범한 것이 비록 많으나 그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자기에게 거둬들인 물건으로 조율(照律)하여 장안(贓案)에 기록하였는데, 이제 다시 국문(鞫問)하니 모두 발명(發明)하였기 때문에 장안에서 이름을 삭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옳지 않다고 여겨 도로 장안에 기록하기를 청하니, 그것을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丙辰○傳曰柳子文所犯雖多然事在赦前其時義禁府以入己之物照律錄案今更鞫之皆已發明故削名贓案司憲府以爲不可請還錄案其議于議政府及領敦寧以上

《成宗實錄 卷第185, 9面》

성종 16년 11월 17일(갑자)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의금부(義禁府)에 전교하기를,

○류자문(柳子文)의 일을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류자문의 장물(贓物)은 관고(官庫)의 미면(米糲)이 아니고, 이것은 아중(衙中 : 관아의 안)에서 지출하여 사용하는 급료(給料)이니, 장물로 논하는 것은 정실에 지나칠 것 같습니다. 그 고치(繭)를 바꾼 일도 이미 변명하였으니,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류자문이 이미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오히려 악명(惡名)을 덮어쓰고 씻을 수 없으니,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개과 천선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괄(鄭括)은 의논하기를,

“관리의 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탐하는 것)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류자문이 아중(衙中)의 쌀로 유기(鑰器)를 샀는데, 비록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중에 썼다면 그만이었으나, 이것을 사용하여 물건을 산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실과 고치(絲繭)는 그 처음에 추국(推鞠)할 때 해당 관리인 오광문(吳廣文) 등이 모두 아중(衙中)에 납입하였다는 것으로 자복하였으며, 류자문도 자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뒤에 이르러 오광문에게 부동(符同)해서 조사(招辭)를 변경시키고 승복하지 않는다 하여, 여기에 의거해서 가볍게 장안(贓案)에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광문 등을 신문하여 정실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해진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관아(官衙)의 쌀로 유기(鑰器)와 바꾸었으니 그것은 매우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의 전량(錢糧)을 훔쳐서 쓴 예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과 고치를 관아에 들였다는 일은 류자문과 오광문 등이 그전에 이미 공초(供招)에서 자복한 것이니 녹안(錄案)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광문이 여섯 차례 형신(刑訊)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을 하니,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난중(鄭蘭宗)은 의논하기를,

“류자문이 죄를 받은 장물(贓物)은 다만 면포(綿布) · 유기(鑰器) · 고치 · 실인데, 면포와 유기는 관아(官衙)에 딸린 사람의 아료(衙料)로써 산 것이라고 증거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오광문은 여러 번 형장(刑杖)을 가했는데도 관에서 썼다고 말을 하니, 지금 장리(贓吏)로 논하는 것은 원민(冤悶 : 원통하고 답답함)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말하기를, ‘류자문의 일은 애매하다.’ 하니, 대간(臺諫)을 불러서 이 여러 의논을 보이고 장안(贓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甲子 受常叅 視事○御經筵○議柳子文事于議政府尹弼商李克培議子文之贓非官庫米糶只是衙中支用之料以贓論似過情其質繭之事亦已發明 上裁洪應議子文已明非入己之實而猶被惡名不能澡雪恐有寃抑開其自新之路爲便鄭佶議官吏贓污不可輕論子文以衙中米買鎗器雖曰自己應受之物若用之於衙中則已矣用此買物甚爲不可絲繭則其初推鞠時該吏吳廣文等皆以入衙服之子文亦服至十餘年之後以符同廣文變辭不服不可據此輕削贓案更訊廣文等情現事白然後更議何如金謙光議以衙米易鎗器其無廉恥甚矣然非倉庫錢糧盜用之例絲繭納衙事子文及廣文等曾已服招錄案更改爲難然今廣文六次刑訊終始發明上裁施行鄭蘭宗議柳子文所生之贓只綿布鎗器繭絲而綿布鎗器以衙屬人衙料所買證辨之廣文屢加刑杖而亦言官用今論贓吏似涉寃悶 傳曰今觀羣議皆云子文之事曖昧其召臺諫示此羣議論以可削之意

《成宗實錄 卷第185, 16面》

성종 16년 11월 19일(병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송질(宋軼)·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류자문(柳子文)을 장안(贓案)에서 삭제하지 말도록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이미 변명하였으니, 다시 논할 수 없다.”

하였는데, 송질(宋軼)이 말하기를,

“근래에 탐람(貪婪)하는 풍습이 날로 늘어나고 염치(廉恥)의 도리가 상실되어 가는데, 범장(犯贓)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염치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는가? 류자문(柳子文)이 만약 정말 관물(官物)을 도둑질했다면 국가에서 어찌 한 사람의 류자문을 아끼겠는가? 이제 이미 다시 추문하였는데도 그가 모두 변명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송질(宋軼)·이승건(李承健)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丙寅 御經筵講訖持平宋軼獻納李承健請勿削柳子文贓案 上曰彼已發明不可更論軼曰爾來貪風日滋廉恥道喪犯贓之罪不宜容賞 上曰人之所以爲人以其有廉恥也苟無廉恥何以爲人子文若眞盜官物則國家何惜一子文乎今旣更推而彼皆發明何罪之有軼承健再請不聽

《成宗實錄 卷第185, 17面》

성종 16년 11월 21일(무진)

조참(朝參)을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한언과 장령(掌令)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을 장안(贓案)에서 삭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류자문이 이미 변명하였으니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이 말하기를,

“류자문이 안주(安州)에서 논을 개간하여 고을의 이전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였고 평양(平壤)·벽동(碧潼)의 관비(官婢)를 관아 안에서 데리고 살았으며, 또 삼밭〔麻田〕을 다스려서 이랑을 따져 삼을 거뒀으며, 상인들의 면포(綿布)를 많이 받았으니, 이러한 일들은 모두 관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이의(李誼)는 말하기를,

“예의염치(禮義廉恥)는 나라의 사유(四維)입니다.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신 등이 여러 번 류자문의 일을 청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실망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戊辰 受朝參○御經筵講訖韓堰掌令李誼啓柳子文不宜削贓案 上曰子文已發明錄贓未穩仍問左右克增曰子文於安州開水田使邑吏治之畜平壤碧潼官婢于衙中又治麻田計畝收麻多受賈人綿布此等事皆非官吏所可爲也請從臺諫之言誼曰禮義廉恥國之四維廉恥道喪何以爲國臣等屢請子文事未得蒙允不勝缺望 《成宗實錄 卷第185, 18面》

성종 16년 12월 13일(경인)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질(金耆)이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에 대해서 고쳐 추고(推考)할 일은 그전에 이미 윤허를 받았던 것인데, 오래도록 개추(改推)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사실이 밝혀졌고 또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던 것인데, 무슨 일을 묻고자 하느냐?”

하자, 김질이 말하기를,

“류자문은 비록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지만, 일이 15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행문 이첩(行文移牒 : 관사와 관사끼리 공문서(公文書)를 서로 주고 받음)하여 추국(推鞠)했기 때문에 아마도 혹 부실(不實)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서입니다.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죄줄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안(贓案 : 장물 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에서 삭제(削除)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를 고쳐서 국문하라.” 하였다.

○庚寅○司憲府掌令金耄來啓曰柳子文改推事前已蒙允而久無改推之 命未便 傳曰予更思之既已發明且事在赦前欲問何事耶耄曰柳子文雖曰發明事在十五年之前而行移惟鞠恐或不實事在赦前雖不可罪贓案不可削也 傳曰其改鞠之 《成宗實錄 卷第186, 8面》

성종 17년 7월 18일(신유)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 등이 차자(筓子)를 올려 아뢰기를,

“신(臣)들이 삼가 상고하건대, 《대전(大典)》 제과(諸科)의 조문에 ‘장리(贓吏)의 아들과 재가(再嫁)하거나 행실을 잃은 부녀(婦女)의 아들 및 손자는 문과(文科)·무과(武科)와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전》은 만세에 없어지지 않을 법인데, 김맹규(金孟規)·류자문(柳子文)·홍강(洪剛)·김계종(金繼宗)·조성벽(趙成璧)·하민(河泯)·이종산(李宗山)·조형손(曹亨孫)·이달손(李達孫)·조숙연(曹淑淵)은 죄를 범하여 이름이 장안(贓案)에 있어도, 《대전》의 법을 쓰지 않고 자손(子孫)이 현직(顯職)에 통할 길을 터 준다면, 악한 짓을 한 자가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또 《대전》에 ‘인신(印信)을 위조한 자는 인문(印文)을 완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참형(斬刑)에 처하고 처자는 여러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한다.’ 하였으니, 신정(申靜)의 아들은 법에 따라 천인(賤人)이 되어야 마땅한데, 어찌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教)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하였다.

○辛酉○司憲府掌令奉元孝等上筓子曰臣等謹按大典諸科條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勿許赴文武科生員進士試大典乃萬世不刊之法也而金孟規柳子文洪剛金繼宗趙成璧河泯李宗山曹亨孫李達孫曹淑淵犯罪名在贓案若不用大典之法以開子孫通顯之路則爲惡者何所懲乎且大典偽造印信者印文雖未成處斬妻子永屬諸邑奴婢申靜之子法當從賤豈可令赴試哉 傳曰已與大臣議而處之矣 《成宗實錄 卷第193, 4面》

성종 17년 7월 20일(계해)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집(李諶)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부열(傳說)이 고종(高宗)에게 경계하기를, ‘선왕(先王)의 이론법을 보아 길이 허물이 없게 하소서.’ 하고,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선왕의 법

을 지켜서 잘못되는 자는 없다.’ 하였으니, 대개 선왕이 이룬 법은 자손이 지켜야 할 것이고 한때의 사사로운 뜻으로 어지러이 고쳐서는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국가는 열성(列聖)께서 서로 이어받아 경기(經紀 :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를 세우고 베풀어, 장리(贓吏)의 아들이 응시하지 못하고 인신(印信)을 위조한 자의 자손이 여러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되게 하셨으니, 그 만세에 모범을 끼쳐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신 것이 지극한데, 이제 이름이 장안(贓案)에 오른 김맹규(金孟規)·류자문(柳子文)·홍강(洪剛)·김계종(金繼宗)·조성벽(趙成璧)·하민(河泯)·이종산(李宗山)·조형손(曹亨孫)·이달손(李達孫)·조숙연(曹淑淵) 같은 자와 자신이 인신을 위조한 신정(申澍) 같은 자의 아들을, 전하께서 특별히 대신과 의논하여 길을 터 주셨으니, 신들은 의혹됩니다. 죄인의 아들은 진실로 용서할 만하고, 선왕이 이룬 법은 법받을 만하지 못합니까? 대신의 의논은 진실로 채용할 만하고, 부열·맹자의 격언(格言)은 믿을 수 없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성현(聖賢)의 격언을 믿지 않고 한두 대신의 망령된 의논에 현혹되십니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이미 터 주었으므로 사람에게 신용을 잃을 수 없다.’ 하였습시다. 대저 신용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할 수 있으나 저기에서 신용할 수 없는 것은 큰 신용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신용할 수 있으나 만인에게 신용할 수 없는 것은 큰 신용이 아니며, 한때에는 신용할 수 있으나 천만세에 신용할 수 없는 것은 큰 신용이 아닙니다. 대저 《대전(大典)》은 선왕께서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신용을 보이신 것이며, 전하께서 만인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제 선왕께서 이루신 법을 돌보지 않고 감히 이런 일을 하셨으니, 만인과 그 이루어진 법을 함께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아마도 전하께서는 만인에게 신용을 잃으실 뿐 아니라 천만세 뒤에 신용을 잃으시는 것이 클 것입니다. 지금의 대신들은 다 작은 신용에 얽매어서, 전하께서 큰 신용을 잃으시게 하였으니, 대신이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도록 하는 의리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고 길이 선왕의 법을 지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상소하여, 장리(贓吏)의 자손은 부시(赴試)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癸亥○司諫院大司諫李諱等上疏曰臣等聞傳說戒高宗曰監于先王成憲其永無愆孟子曰遵先王之法而過者未之有也蓋先王成憲子孫所當遵守而不可以一時私意紛更之也我國家列聖相承立經陳紀使贓吏之子不得赴試偽造印信者之子孫永屬諸邑奴婢其所以垂範萬世而懲惡勸善者至矣今者名登贓錄如金孟規柳子文洪剛金繼宗趙成璧河泯李宗山曹亨孫李

達孫曹淑淵身造偽印如申澥之子 殿下特與大臣議而許通臣等竊惑焉罪人之子固可恕也 先王成憲不足法耶大臣之議固可採也傳說孟子之格言不可信耶 殿下何不信聖賢之格言而惑於一二大臣之妄議乎 殿下教曰業已許通不可失信於人夫信有大小能信於此而不能信於彼者非大信也能信於數人而不能信於萬人者非大信也能信於一時而不能信於千萬世者非大信也夫大典 先王成憲而示民信者也 殿下所與萬人共之者也今不顧 先王成憲而敢爲此舉其於與萬人共成憲之意安在臣等竊恐 殿下非徒失信於萬人將失信於千萬世之下者大矣今之大臣皆況於小信而使 殿下失其大信甚非大臣引君當道之義伏願亟收成命永遵 先王之憲不聽

○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疏論賊吏子孫不宜許赴試 不聽 《成宗實錄 卷第193, 5面》

성종 20년 2월 15일(계묘)

○처음에 류한평(柳漢平)이 상서(上書)하여 그 아버지 류자문(柳子文)이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었을 때에 범장(犯贓)하여 녹안(錄案)된 억울함을 호소하니, 명하여 관리를 보내어 다시 허실(虛實)을 핵실하여 오게 하였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류자문이 범장(犯贓)한 숙건(熟繭)과 인중사(引中絲)는 일에 관련된 각 사람을 여섯 차례 형신(刑訊)하니, 모두 말하기를 자신에게 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유행기(鑰行器)와 유우자(鑰孟子) 각 2부(部)는 시집가지 아니한 딸의 유모(乳母)가 사사로이 모은 지공 미면(支供米糶)도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官) 안의 미면을 자식의 양식이라고 칭탁하고서 함부로 장사하는 사람[興利人]에게 주어서 유기(鑰器)와 바꾸었으니 이는 바로 관물(官物)을 남용(濫用)한 것인데, 류자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녹안(錄案)해야 합니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송영(宋瑛)·한언(韓堰)·김극검(金克儉)이 의논하기를,

“현재 수령(守令)의 용렬한 무리가 아중(衙中)의 노비에게 지공(支供)하는 쌀을 지나치게 주므로 노비가 그 먹는 것을 줄여서 남는 것으로써 사사로이 의복(衣服)을 사는 자가 있으니, 그 지나치게 주는 것은 바로 수령의 죄이니, 노비가 사사로이 의복을 사는 것은 수령이 혹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지나치게 준 죄를 논하면 비록 장죄(贓罪)로 좌죄(坐罪)할지라도 과하지는 아니하나, 만약 사사로이 산 것을 알지 못한 일을 정장(正贓)으로 단정하는 것은 애매할 듯합니다. 류자문의 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안(贓案)에서 삭제(削除)하라.” 하였다.

○癸卯○初柳漢平上書訴其父子文爲肅川府使時犯贓錄案之寃 命遣官更覈虛實以來義禁府啓子文犯贓熟蕪及引中絲事干各人六次刑訊皆云不入已而鑰行器鑰孟子各二部則未嫁子息乳母私蓄支供米糶所買也然官中米糶托以子息糧料濫授興利人貿換鑰器卽是濫用官物不宜以子文爲不知錄案仍舊 命承政院議之宋瑛韓堰金克儉議見今守令庸劣之徒濫給衙中奴婢支供之米奴婢省其食以所餘私貨衣服者有之其濫給乃守令之罪而奴婢之私貨衣服守令或未之知焉論其濫給之罪雖坐以贓未爲過也而若不知私貨之事則斷以正贓似乎曖昧子文之事正類於是 傳曰削贓案

《成宗實錄 卷第225, 10面》

성종 20년 2월 27일(을묘)

시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박삼길(朴三吉)이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은 전에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어 누에고치를 백성에게 팔아서 사사로이 활용하였고, 또 자식[兒息]의 요미(料米)로써 유기(鑰器)를 바꾼 일이 발각되어 장안(贓案)에 기록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류한평(柳漢平)이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을 인하여 다시 분간(分揀)하도록 명하였는데, 그가 바꾼 누에고치는 사사로이 활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록 혹시 스스로 변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를 바꾼 일은 오직 면할 수 없는데 장안에 삭제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악함을 징계하겠습니까? 또 의금부(義禁府)는 조옥(詔獄)인데 이창신(李昌臣)이 이극균(李克均)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그 뒤에 또 이철건(李鐵堅)과 이승원(李崇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를 믿으시고 여러 번 바꾸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창신의 번독(煩瀆)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조정의 체모(體貌)에 어떠합니까? 그 공경하고 조심하는 뜻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덕천 부인(德川夫人)이 어찌 의금부의 일을 알겠습니까? 이는 이창신이 가르친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류자문(柳子文)이 누에고치를 바꾼 일은 이미 밝혀졌고, 유기(鑰器)의 일은 류자문이 어찌 하나하나 알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미 짐작하여 한 것이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덕천 부인의 상언(上言)은 이창신이 가르쳤다고 갑자기 말할 수 없다. 비록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고한 일이 반드시 잘못은 아닌데, 어찌 국문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乙卯司諫院獻納朴三吉來啓曰柳子文前爲肅川府使貿蕪於民而私用又以兒息料米換鑰器事覺錄贓案今已十五年乃因其子漢平訴寃 命改分揀其貿蕪不私用雖或自明換鑰器事尚不得免而令削贓案何以懲惡乎且義禁府詔獄也而李昌臣以李克均爲不公其後又以李鐵

堅李崇元爲不公 殿下信之屢命改之昌臣煩瀆至此於朝廷體貌何其無敬謹之意可見矣且德川夫人安知禁府之事是昌臣教之也請鞠之 傳曰子文貿蘭事已發明鑰器事子文安得一知之予已斟酌爲之其勿言德川夫人上言不可遽謂昌臣教之也雖曰教之所告之事未必非也何可鞠問

《成宗實錄 卷第225, 20面》

성종 20년 2월 28일(병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박삼길(朴三吉)이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을 장안(贓案)에 기록한 지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누에고치를 바꾼 일은 전하께서 이미 밝혀 냈다고 하시니 이는 그만두더라도 유기(鑰器)는 처녀가 관아(官衙)에 있으면서 유모(乳母)가 관아의 곡식 남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누가 류자문이 알지 못하였다고 이르겠습니까? 이제 만약 장안에서 지워버린다면 신은 아마도 탐묵(貪墨)하는 무리들을 장차 징계할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丙辰○司諫院獻納朴三吉來啓曰柳子文錄贓案已經十五年貿蘭之事則 殿下以爲已發明此則已矣鑰器則處女在衙而乳母以衙廩羨餘貿易之孰謂子文不知乎今若削贓案則臣恐貪墨之徒將無所懲艾矣不聽

《成宗實錄 卷第225, 21面》

성종 20년 3월 4일(임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조구(趙球)가 아뢰기를,
“장리(贓吏)를 녹안(錄案)하는 법은 뒷사람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자문(柳子文)의 일은 15년 전에 있었으니, 이제 비록 분변하더라도 오히려 밝히지 못할 것인데, 이제 장안(贓案)에서 삭제하기를 명하였으니, 장차 무엇으로 뒷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심희(沈澮)와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대답하기를,

“류자문의 일은 이제 이미 해가 오래 되었으므로, 분변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장령(掌令) 이종윤(李從允)은 아뢰기를,

“이제 류자문이 발명(發明)한 것이 또한 명백하지 아니한데, 만약 장안에 삭제하면 사람들이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두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壬戌 御經筵講訖正言趙球啓曰贓吏錄案之法所以戒後人也柳子文之事在十五年前今雖更辨而猶未盡明命削贓案何以懲後人乎上顧問左右領事沈澮同知事李世佐對曰子文之

事今已年久辨明爲難掌令李從允啓曰今子文發明亦不明白若削贓案人無知戒請依舊存之不聽

《成宗實錄 卷第226, 2面》

성종 20년 3월 7일(을축)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권자후(權子厚)가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을 장안(贓案)에서 삭제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乙丑司憲府持平權子厚來啓柳子文不宜削贓案 不聽

《成宗實錄 卷第226, 4面》

성종 20년 3월 8일(병인)

상참(常參)을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박삼길(朴三吉)이 아뢰기를,

“요즈음 물론(物論)을 듣건대, 조사(朝士)가 청렴 정직한 기풍(紀風)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류자문(柳子文)의 일은 10여 년 전의 일인데, 하루아침에 스스로 호소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신원(伸冤)해 준다면 장오(贓汚)한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만약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애매한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오(贓汚)의 죄는 과연 중하다. 그렇지만 류자문은 이미 밝혀졌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조정 관리가 청렴 정직한 기풍이 없다는 것은 대간(臺諫)이 들은 바가 있어서 말하는가? 조정에 있는 관리가 어찌 모두 이와 같겠는가? 비록 흑시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로써 모두 탐묵(貪墨)이라고 이르겠는가? 탐묵한 행위가 있는 자는 법사(法司)에서 마땅히 추핵(推劾)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승원(李崇元)이 아뢰기를,

“류자문이 누에고치를 팔아서 유기(鋤器)를 산 일을 처음에는 어찌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이제야 호소하는 것입니까?”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류자문이 이르기를, ‘견사분부분기(繭絲分付文記)를 그 처음에는 잃었으므로 스스로 밝힐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옛 문서 사이에서 찾았다’고 하였으니, 처음에 능히 밝히지 못한 것은 이 문기(文記)를 잃은 까닭입니다.”

하였다. 박삼길이 말하기를,

“처음 류자문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사람이 어찌 고의로 사람을 죄에 빠뜨렸겠습니까? 역시 그 이민(吏民)의 말을 인한 것뿐입니다. 이제 만약 류자문이 무고고 더러운 이름을 받았다고 하면 마땅히 그 사람을 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추죄(追罪 : 지나간 잘못을 미루어 죄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丙寅 受常叅○御經筵講訖獻納朴三吉啓曰近聞物 朝士無廉正之風今柳子文事在十餘年而一朝聽其自訴而遽伸之贓汚者何所懲艾乎 上問左右領事盧思慎曰若以已往之事而不聽其訴則恐有曖昧者矣上曰贓汚之罪果重然子文今已發明不可不伸其寃且朝士無廉正之風臺諫有所聞而言耶在朝之士豈皆如此哉雖或有之豈可以此舉謂貪墨哉有貪墨之行者法司自當劾之知事李崇元曰子文質繭買鋤器事初何不發明而今乃訴之乎盧思慎曰子文以謂繭絲分付文記厥初失之不能自明今於舊文書間得之初之不能明者以失此記也三吉曰初理子文之獄者夫豈故欲陷人於罪乎亦因其吏民之言耳今若以子文爲誣受汚名則當罪其人矣 上曰豈可追罪乎

《成宗實錄 卷第226, 4面》

성종 21년 10월 12일(경신)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민사건(閔師騫)이 와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의 죄는 장오(贓汚)를 범하여 이미 녹안(錄案 : 장안(贓案)에 기록됨)되었으므로, 비록 한때 애매하게 여기면서 삭직(削職)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서용(敍用)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신(李昌臣)의 죄는 성상(聖上)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이니, 또한 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중략]

그런데 이창신(李昌臣)은 탐도(貪饕 : 재물을 탐냄)한 것으로써 파직(罷職)된 지 지금 1년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창신(李昌臣)은 다른 사람이 파직된 예(例)가 아니고, 내신(內臣)으로서 화리(貨利)를 탐한 것인데, 추국(推鞠)을 당하기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금부(禁府)에 허물을 돌렸었으니, 이것은 조정(朝廷)을 기망(欺罔)한 것이었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류자문(柳子文)과 이창신(李昌臣)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庚申○司憲府掌令閔師騫來啓曰柳子文罪犯贓汚已錄案雖一時以爲曖昧而削之今不可敍用李昌臣之罪 上所悉知亦不宜敍用[中略]

李昌臣以貪饕罷職今未經年 命敍用昌臣非他罷職人例以內臣貪於貨利及其見鞠也反歸

答禁府是欺罔朝廷也請收成命 傳曰子文昌臣其議于領敦寧以上 《成宗實錄 卷第246, 6面》

성종 21년 10월 14일(임술)

상참(常參)을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계동(李季叟)이 아뢰기를,

“신 등이 누차 김이정(金利貞)·류자문(柳子文)·이창신(李昌臣)을 서용(敍用)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아직 유윤(兪允)을 받지 못했으므로, 신 등은 결망(缺望)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일이 오래 되어 신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김이정(金利貞)은 그 때를 당하여 제대로 분별(分辨)하지 못하였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류자문(柳子文)은 이미 장안(贓案)에서 삭제(削除)하였으니, 임용(任用)한다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중략]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개정(改正)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壬戌 受常參○御經筵講訖大司憲李季叟啓曰臣等屢啓金利貞柳子文李昌臣敍用未便迄未蒙允臣等不勝缺望 上顧問左右領事洪應對曰事久臣今忘之但疑利貞當其時未得快辨也子文則旣削贓案用之何妨[中略]

上曰改正可也

《成宗實錄 卷第246, 7面》

성종 21년 10월 15일(계해)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수문(金秀文)·지평(持平) 이자건(李自健)이 민영견(閔永肩)의 참찬(參判)에 합당하지 못함과 류자문(柳子文)·김이정(金利貞)·이창신(李昌臣)의 서용(敍用)이 미편(未便)함을 논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癸亥 御經筵講訖獻納金秀文持平李自健論閔永肩不合參判柳子文金利貞李昌臣敍用未便皆不聽

《成宗實錄 卷第246, 8面》

성종 21년 10월 16일(갑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계동(李季叟)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종호(李宗顥)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중략]

○류자문(柳子文)과 이창신(李昌臣)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희(沈澮)는 의

논하기를,

“류자문(柳子文)은 죄가 장오(贓汚)를 범하여 녹안(錄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비록 성상(聖上)의 은혜(恩惠)를 입어 명하여 장안(贓案)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죄명(罪名)이 크니, 서용(敍用)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창신(李昌臣)은 명백한 허물이 없으니, 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⁷³ · 노사신(盧思愼)⁷⁴ ·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류자문(柳子文)은 이미 장안(贓案)에서 삭제하였고, 또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서용(敍用)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창신(李昌臣)은 소행(所爲)이 비록 옳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중범(重犯)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문원(承文院)에 교훈(敎訓)할 자가 없으니, 명하여 본원(本院)에 근무하도록 해서 한훈(漢訓 : 중국 말의 뜻과 해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洪應)⁷⁵은 의논하기를,

“류자문(柳子文)이 잘못 장죄(贓罪)를 받았으나, 추핵(推劾)해서 개정(改正)하였는데, 어찌 서용(敍用)하는 데 혐의스럽겠습니까? 이창신(李昌臣)의 과실은 상상에서도 밝게 아시는 바이나, 지금 승문원(承文院)에서 맡고 있는 이문(吏文) · 한어(漢語)는 장차 쇠퇴하여 단절되는 데 이를 것이니, 이창신(李昌臣)을 서용(敍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3) 윤필상(尹弼商) : 1427~1504.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자는 양좌(陽佐). 문종 즉위년 추장문과(秋場文科) 급제. 세조 9년(1463) 동부승지, 이시에 난의 평정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책록, 성종이 즉위하자 좌리공신(佐理功臣), 성종 10년(1479) 좌의정으로 도원수로 출정, 뒤에 영의정에 오르고 부원군에 진봉(進封)되고 이어서 기로소에 들어갔다. 연산군 때에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피살되었다. 윤필상의 손녀(판결사尹淑의 딸)와 동방급제인 류자문의 손자 류인동(柳寅叟 : 父 漢平)과 혼인하여 인척관계가 되는등 세교가 깊었다. 윤필상의 아버지 윤경(尹垆)과 충정공(忠定公) 류빈(柳濱 : 父 柳仁濕)의 장인 윤해(尹垓 : 父 尹三山)와는 종형제간으로 사촌처남 남매간이 된다.

74) 노사신(盧思愼) : 1427~1498. 조선 성종 때의 문신 학자. 자는 자반(子胖) 호는 보진재(葆眞齋) 천은당(天隱堂) 시호는 문광(文匡) 본관은 교하(交河). 단종 원년(1453) 문과급제 후 집현전 학사, 세조의 총애로 도승지 직제학 호조판서 대제학을 역임하고, 예종 즉위년(1468) 익대공신 3등 좌찬성에 올라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성종 2년(1471) 좌리공신 3등 좌찬성 이조판서 겸임하고, 동왕 2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학문에 조예가 깊어 삼국사절요, 경국대전(戶典) 여지승람의 편찬 등에 참여하였다. 아버지 동지돈녕부사 노물재(盧物載)는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의 사위로 류자문의 종형인 류자해(柳子偕)와 동서간이 된다.

75) 홍응(洪應) : 1428~1492. 조선의 정치가. 자는 응지(應之). 호는 휴휴당(休休堂). 시호는 충정(忠貞). 본관 남양(南陽). 한성부윤(漢城府尹) 심(深)의 아들. 1451년(문종 1) 증광시(增廣試)에 장원 급제, 정난(靖難) · 좌리(佐理) 공신(功臣) 책록되고 좌의정(左議政)에 까지 이르렀으며 성종(成宗)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되었다. 문명(文名)이 있고 글씨를 잘 썼으며 현상(賢相)으로 전해진다. 필적으로는 모간(摸刊)한 것이 해동명적(海東名跡)에 전해진다. 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해동명적(海東名跡).

하고, 이극배(李克培)⁷⁶⁾는 의논하기를,

“류자문이 장오(贓汚)를 범한 것은 이미 변명(辨明)하여 녹안(錄案)에서 없었으니, 서용(敍用)해도 무방(無妨)합니다. 이창신이 범한 바는 관리(官吏)가 장오(贓汚)를 범한 예(例)는 아니지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서용(敍用)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니, 정원(政院)에 두도록 명하였다.

○甲子○司憲府大司憲李季全司諫院大司諫李宗穎等上疏曰[中略]

○議柳子文李昌臣事沈澮議子文罪犯贓汚以至錄案其後雖蒙 上恩命削贓案罪名大矣不宜叙用昌臣無顯顯之過宜叙用尹弼商盧思慎尹壕議子文已削贓案且歲月已久叙用何妨昌臣所爲雖曰不可非關係重犯承文院無教訓者 命仕本院使誨漢訓實爲便益洪應議子文誤蒙贓罪推劾改正奚疑於叙用昌臣所失 上所洞照今承文院所任吏文漢語將至廢絕昌臣不可不用李克培議子文犯贓已辨明削案叙用無妨昌臣所犯非官吏犯贓例然未經年叙用有違大典 命置政院

《成宗實錄 卷第246, 10面》

진산군 7세(大丞公 16세) 사직공(司直公) 류예지(柳羿智)

공의 자 호 및 생졸년대는 전하지 않고 있다.

군사공 지함(之涵)의 손자로 류치(柳峙)의 둘째 아들이다. 병자보(丙子譜 : 1756년 刊)에 벼슬이 사직으로 나왔으며 큰 아들 한(澣)은 감찰인 정응기(鄭應期 : 父 鄭錙)의 따님인 동래정씨에 장가들어 딸 하나를 두어 이맹(李孟)에 출가하여 무후되었고 둘째 아들 신(信)은 아들 영춘(榮春)을 두었으나 후대 족보에 계대를 잇지 못했다. 사직공 류예지의 사위는 조세량(趙世良)이다.

성종 8년 2월 12일(신사)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와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 ·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磧) ·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 · 병조 판서 이극배(李克培) · 예조 판서 이승소(李承召) · 병조 참판 류권(柳睞) · 예조 참의 김자정(金自貞) · 병조 참지(兵曹參知) 성귀달(成貴達)이 의논하기를,

76) 이극배(李克培) : 1422~1495.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자는 겸부(謙甫) 호는 우봉(牛峯) 매월당(梅月堂) 시호는 익평(翼平) 본관은 광주(廣州). 인손(仁孫)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 세종 29년(1447)에 정언, 정랑 역임.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 3등에 광릉군(廣陵君)에 봉하여졌고 판서 관찰사 병마절도사 역임. 성종 2년(1471) 좌리공신 3등에 좌참찬 병조판서 우의정 겸직 후 영의정에 올라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중국인[唐人] 김보궤(金寶軌)가 도망하여 부령(富寧)에 이르렀는데도, 여의보(呂義輔)는 즉시 계문(啓聞)하지 아니하고 영중(營中)에 불러서 머물러 두었고, 또 성(城) 밑의 야인(野人)을 시켜서 구음부(仇音夫)를 불러 송환(送還)하게 하였으니, 장수의 체통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뜻이 주무(綱繆: 미리미리 꼼꼼하고 자세하게 준비함)하지 못한 데 관계되고, 또 부령부(富寧府)의 옥련보(玉連堡)와 어유간(魚游澗) 등의 진(鎭)에서 후망(候望: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며 경계함)을 삼가지 않았으며, 여의보도 역시 이를 검찰(檢察)하지 않았고, 이조양(李朝陽)과 박수창(朴壽昌)·류예지(柳羿智)는 변장(邊將)으로서 일찍이 후망(候望)을 하지 않았으니, 이 무리들은 비록 사유(赦宥)를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죄범(罪犯)이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중론(重論)토록 하시고, 김보궤는 남방(南方)에 두어서 그 삶을 편안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만약에 해송(解送)하지 않는다면 사대(事大)의 예(禮)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어찌 아랫사람을 다스리겠는가? 여의보(呂義輔)는 비록 절도사(節度使)라 하지만, 다만 방어(防禦)를 지휘(指揮)할 뿐이고, 이조양 등은 각기 그 지방을 지키면서도 능히 망을 보아 살피지 못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죄괴(罪魁: 범죄자의 괴수)이다. 여의보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이조양 등은 충군(充軍)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辛巳○上黨府院君韓明澮昌寧府院君曹錫文上洛府院君金碩光山府院君金國光兵曹判書李克培禮曹判書李承召兵曹參判柳暎禮曹參議金自貞兵曹參知成貴達議唐人金寶軌逃至富寧呂義輔不卽啓聞招留營中又使城底野人召仇音夫送還非徒失將帥體情涉綱繆且富寧府玉連堡魚游澗等鎭不謹候望而義輔亦不檢察李朝陽朴壽昌柳羿智以邊將不曾候望此輩雖經赦宥罪犯非輕請重論金寶軌處之南方以安其生何如 傳曰如不解送事大之禮安在予所爲如是則何以御下呂義輔雖爲節度使但指揮防禦而已李朝陽等各守其地不能候察予以爲罪魁也義輔收告身朝陽等充軍可也

《成宗實錄 卷第76, 6面》

성종 8년 2월 23일(임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영유(金永濡) 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

“하숙부 등은 변방의 비어(備禦)를 소우(疎虞)하게 하여 사람과 가축을 많이 죽게 하고 노략질 당하게 하고도 이를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여, 함부로 작록(爵祿)을 받았으니, 임금을 속이고 불충(不忠)하기가 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상을 추구(推究)해서 사유(赦宥)의 경과를 논하지 말고 율(律)대로 처단함이

가합니다. 지금 모두 가벼운 법에 좇으셨으니, 간사한 무리들을 어찌 징계하는 바입니까? 지난번에 이조양(李朝陽)과 박수창(朴壽昌)·류예지(柳羿智)가 척후(斥候)를 삼가지 않은 데 좌죄(坐罪)되어 변원 충군(邊遠充軍)하였는데, 하숙부 등의 정범(情犯)은 이조양 등에게 견주면 진실로 함께 과죄(科罪)할 수 없는데, 그 좌죄된 바가 도리어 이조양 보다도 가벼우니, 신 등은 그옥이 의심스럽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추후로 고치어서 무거운 법[重典]으로 처단하시어 변수(邊守)를 엄격히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壬辰司憲府大司憲金永濡等上劄子曰河叔溥等備邊疎虞使人畜多被搶擄匿不以聞冒受爵祿欺君罔上不忠之尤者原其情勿論經赦斷之以律可矣今乃悉從輕典徂詐之徒何所懲艾頃者李朝陽朴壽昌柳羿智坐斥候不謹邊遠充軍叔溥等情犯視諸朝陽等固非同科而其所坐反輕於朝陽臣等竊惑焉伏望追改 成命斷以重典以嚴邊守 不聽 《成宗實錄 卷第76, 8面》

성종 10년 1월 26일(계미)

상참(常參)을 받았다.

○경筵(經筵)에 나아갔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장연조(張連祖)·문상련(文尙連)·손중례(孫仲禮)·김니(金泥)·김종려(金從麗)·변극준(邊克濬)·김석희(金碩熙)·이저(李著)·오집(吳緝)·김예정(金禮貞)·강득부(姜得富)·서부송(徐富崇)·최윤호(崔允湖)·오계종(吳戒從)·이석헌(李石獻)·이만년(李萬年)·이성달(李成達)·장효손(張孝孫)·벽극곤(邊克坤)·최강(崔崗)·이욱성(李郁成)·성순손(成順孫)·김계신(金繼信)·조계림(趙季林)·조계손(趙繼孫)·김수정(金粹正)·이형손(李亨孫)·김겸손(金謙孫)·나형손(羅亨孫)·김숭의(金崇義)·김수산(金守山)·김한정(金漢鼎)·박월중(朴月重)·이조양(李朝陽)·류예지(柳羿智)·박수창(朴壽昌)·장희선(張希善)·이말손(李末孫)·이복중(李福中)·장처인(蔣處仁)·최덕백(崔德伯)·한숙후(韓叔厚)·조지(趙祉)·이계종(李繼終)·황상지(黃尙智)·배순(裒順)·김득의(金得義)·김지형(金祉亨)·박근손(朴根孫)·김계생(金繼生)·류택(柳澤)·안맹손(安孟孫)·황보진(黃甫珍)·안우(安祐)·장신정(張愼庭)·전효문(全孝文)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다.

○癸未 受常參○御經筵○傳旨兵曹還給張連祖文尙連孫仲禮金泥金從麗邊克濬金碩熙李著吳緝金禮貞姜得富徐富崇崔允湖吳戒從李石獻李萬年李成達張孝孫邊克坤崔崗李郁成成順孫金繼信趙季林趙繼孫金粹正李亨孫金謙孫羅亨孫金崇義金守山金漢鼎朴月重李朝陽柳羿智朴壽昌張希善李末孫李福中蔣處仁崔德伯韓叔厚趙祉李繼終黃尙智裒順金得

義金社亨朴根孫金繼生柳澤安孟孫黃甫珍安祐張慎庭全孝文告身 《成宗實錄 卷第100, 12面》

진산군 7세(大丞公 16세) 대사헌공(大司憲公) 류세침(柳世琛)

세종 28년(1446)~중종 6년(1511)

자는 자헌(子獻)으로 세종 28년(1446) 4월에 증 이조참판 별제(別提) 류종윤(柳宗潤 父 諧)과 이조참판 상호군(上護軍) 민해(閔解 父 好問)의 따님인 여흥민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종 17년(1486) 생원시 입격, 성종 21년 11월에 별시문과 급제 후 연산군 1년(1495) 사간원 정언, 5년(1499) 사헌부 지평, 7년(1501) 사헌부 장령, 9년(1503) 사간원 대사간, 10년(1504) 전라도 해남에 유배, 중종반정(1506)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중종 3년(1508) 대사간에 복직, 중종 4년(1509) 예방승지, 중종 5년 장례원 판결사, 8월에 대사헌, 11월에 형조참판, 중종 6년(1511) 1월 21일에 충청도 관찰사로서 관내를 순시하던 중 3월 14일에 청주에서 순직한 문신이다.

공의 배위는 첨지중추부사 유기창(兪起昌 父 兪解)77의 따님인 기계유씨(杞溪俞氏)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다. 큰 아들 홍경(弘慶)은 상서원 부직장(尙瑞院副直長)이고, 둘째 아들 상경(祥慶)은 진사, 셋째 아들 충경(忠慶)은 사역원 직장(司譯院直長)을 역임했다. 첫째 딸은 영의정 김전(金詮)78의 아들인 참봉 연안인 김안우(金安遇)에게 둘째 딸은 고성인 이봉(李鵬)에 출가했다.

정부인 기계유씨는 대사헌공이 순직하자 3일후 소복으로 갈아입고 정루(亭樓)에서 투신 자결함으로써 열부(烈婦)의 정려가 내려다. 김안국(金安國)의 모재집(慕

77) 유기창(兪起昌) : 1437~1514. 조선 연산군 때의 무신. 자는 자성(子盛). 호는 서호 산인(西湖山人). 본관은 기계(杞溪). 진사 유해(兪解)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 만포진 첨 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한 무신이다. 연산군 10년(1504) 좌의정 성준(成俊)이 왕의 난정을 극간하다가 교살될 때 그 일당으로 유배되었고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비인에 은거하였다. 아들 유여림(兪汝霖) 손자 유강(兪絳) 증손 유흥(兪泓)이 잇달아 대과에 급제한 후에 각각 예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을 지내며 가문을 빛냈다.

78) 김전(金詮) : 1458~1523.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중륜(仲倫). 호는 나헌(懶軒)·능인(能人). 시호는 충정(忠貞). 본관은 연안(延安). 성종(成宗) 20년(1489) 문과에 장원.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생사당(生祠堂)이 세워졌으며, 연산군(燕山君) 원년(1495) 수찬(修撰)을 지내고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다. 동왕 4년 무오사화(戊午士禍)로 파직되었다가 동왕 10년 대사성에 이르러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좌천되었다. 중종 9년(1514) 대사헌이 되었고, 동왕 13년 찬집청 당상(撰集廳堂上)으로서 신용개(申用溉) 등과 속동문선(續東文選)을 찬진(撰進)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고, 이어 우의정·좌의정을 지냈다.

齋集)에 만시(挽詩)가 전해오고 있다.⁷⁹⁾

예조참의를 역임한 사규(思規), 성균대사성 희규(希規) 병조참판을 지낸 공신 순익(舜翼)이 문과출신으로 현달하여 집안을 빛냈다.

成宗庚戌二十一年別試榜以誕生 太子慶十二月行

甲科 一人

生員 宋軾(礪山人)

乙科 二人

生員 奇褚(幸州人), 別提 鄭洙(延日人)

丙科 七人

生員 安萬哲, 司評 姜訥(晉州人), 生員 柳世琛(晉州人), 進士 郭宗藩(玄風人), 進士 李寬(全義人), 司果 沈光輔(豐山人), 叅奉 鄭汝昌(河東人)

연산군 원년 12월 9일(무오)

○윤석보(尹碩輔)를 사간원 사간으로, 이의손(李懿孫)을 헌납으로, 남궁 찬(南宮 璨)을 홍문관 교리로, 류세침(柳世琛)을 정언으로 삼았다.

○戊午○以尹碩輔爲司諫院司諫李懿孫獻納南宮璨弘文館校理柳世琛正言

《燕山君日記 11, 5面》

연산군 원년 12월 20일(기사)

○대사헌 이집(李諶)⁸⁰⁾·대사간 이인형(李仁亨)·사간 윤석보(尹碩輔)·집의 최한원(崔漢源)·장령 강형(姜訥)과 서산보(徐山甫)·지평 이자견(李自堅)과 이세인(李世仁)⁸¹⁾·헌납 이의손(李懿孫)·정언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신들이 재를 지내는 일과 윤탕로(尹湯老)·윤채(尹琛)·정진(鄭溱)등의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지금까지 윤희를 입지 못하니, 실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79) 한국문집총간 20권 모재집(慕齋集) 55 P. 진주류씨문집 47 P(2003년 간행). 류관찰사 세침 부인에게 드리는 만사(柳觀察使 世琛 夫人 挽).

80) 이집(李諶) : 1438~1509.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화숙(禾叔) 시호는 공숙(恭肅) 본관은 성주(星州). 정령(正寧)의 아들. 문과에 급제 집의, 관찰사, 판서 등을 지냈고, 갑자사화로 파직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우찬성에 이르렀다.

81) 이세인(李世仁) : 1452~1516. 조선 중종 때의 문인. 자는 원지(元之) 본관은 성주(星州). 성종 17년(1486) 식년 문과에 급제. 정자,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연산군 4년 장령으로 류자광을 탄핵하였다가 유배되었고 대동도찰방이 되었으나 갑자사화로 금산에 유배되었다.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사간, 영중추부사 등을 지냈고 이조참의가 되어 병사하였다.

“일이 들어 줄 만한 것이 있고 또한 들어 주지 못할 만한 것도 있다. 무릇 사람이 한 번 죄를 입고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한다면 쓸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탕로(湯老)가 전일에 죄가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옛말에, ‘한 여자의 원한으로도 6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였는데, 윤채 등의 죄상은 실로 현저하지 않은데, 누(累)가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은 어찌 애매하지 않으랴? 대저 죄를 주고 안 주는 것은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짐작하기에 달렸다. 또 국가의 대사에 관하여는 서로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 삼공(三公)인데, 전일에 대간의 말을 듣고서 경솔히 삼공을 갈았으니, 지금까지 후회가 막심하다. 경들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논집(論執)하면 어린 임금의 마침내는 반드시 들을 것이다’ 하지만 들어 줄 수 없다.”

○己巳○大司憲李諱大司諫李仁亨司諫尹碩輔執義崔漢源掌令姜訥徐山甫持平李自堅李世仁獻納李懿孫正言柳世琛啓臣等論設齋及尹湯老尹塚鄭溱等事迄未蒙允不勝缺望傳曰事有可聽者亦有不可聽者凡人一被罪而終身不叙則豈有可用之人乎湯老前雖有罪今則可以改過自新矣且古云一女之怨六月飛霜尹塚等罪實未顯著而累反子孫則豈不曖昧乎大抵罪與不罪惟在上之人斟酌何如耳且國之大事所與議者三公也而前日聽臺諫之言輕適三公至今追恨不已卿等必自謂執論若此則幼君終必聽也然不可聽諱

《燕山君日記 11, 7面》

연산군 2년 1월 12일(신묘)

○지평 이자견(李自堅) · 정언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유점사(楡岾寺) · 낙산사(洛山寺)에 소금을 공급하는 일에 대하여 김효강(金孝江)이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아뢰는 것은 심히 불가하므로, 본부(本府)가 방금 함문(緘問)⁸²⁾하는 중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간일지라도 어찌하여 말없이 함부로 근시(近侍)하는 사람을 국문하는가? 그렇다면 대간이 임의로 할 일이지 어찌 반드시 아뢰는가?”

하니, 자견(自堅)이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는 토질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소금 고는 공력이 과중하운데, 이 군수(軍需) · 구황(救荒)의 물자를 놓고 먹는 무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오며, 효강으로 말하면 장차 물어보려는 것이웁고 이미 국문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금 공급하는 일과 효강을 추국(推鞠)하는 일은 다 들어 줄 수 없다.”

82) 함문(緘問) : 혐의에 대하여 함서(緘書)로 사문(查問)하는 것.

하였다. 자견이 아뢰기를,

“선릉(宣陵)을 수호하는 절의 불사(佛事)와 소상(小祥)에 재(齋)를 지내는 일로 누차 아뢰었사온데,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지금 또 소금 공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아뢰는데 굳이 거부하시니, 외간에서 들으면 전하께서 불(佛)을 좋아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김효강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자견·세침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세조께서 해마다 유점사(楡岾寺)에 백미 50석을 내려 주셨는데, 정희왕후(貞熹王后)께서 성종과 함께 청정(聽政)하실 적에 특명으로 제거하셨으니, 이것은 오래도록 지켜 갈 일이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종께서 속록(續錄)을 산정(刪定)하실 적에 무릇 시행할 만한 조건에 있어서는 강구하지 않으신 것이 없사온데, 소금 공급하는 한 가지 일을 어찌 유독 잊고 신지 않으셨겠습니까? 김효강이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아뢰는 것도 바로 내시가 권세를 부리려는 징조이오니, 즉위하신 처음에 일이 미세할 적에 막아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지금 만약 징치하지 않으시면 장차 폐단을 제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시가 권세 부릴 염려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지금의 형세로 보아서는 내시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대간이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세침이 아뢰기를,

“한만손(韓萬孫)이 동래현령(東萊縣令)이었을 적에 민폐(民弊)를 끼쳤으니, 해조(該曹)가 심문하기를 청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승지들이 심문하지 말 것을 계청(啓請)하였고, 사헌부(司憲府)가 다시 심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승지들이 또 아뢰었으니, 이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오니, 승지들을 심문하소서.”

하니, 듣지 않으며, 세침이 또 승지들이 한만손을 비호한 죄는 징치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논하였으나, 역시 듣지 않았다.

○辛卯○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啓楡岾洛山等寺給塩事金孝江不由政院擅啓甚不可故本府今方緘問矣傳曰雖臺諫何以不言而擅鞫近侍人乎然則臺諫任自爲之何必啓之自堅啓江原道土瘠民貧煮塩功重不可以軍需救荒之資移給游食之徒也孝江則將欲問之非已鞫之也傳曰給塩事及孝江推鞫事皆不可聽也自堅啓 宣陵寺佛事小祥齋事累啓不納今啓給塩不可而固拒外間聞之則無乃以 殿下爲好佛乎且請鞫金孝江不聽自堅世琛更啓臣等聞 世祖歲給楡岾寺米五十碩而 貞熹王后여 成宗同聽政之時特命除之以其非經遠持久之事耳 成宗於續錄刪定時凡可行條件無不講究給塩一事豈獨遺忘而不載乎金孝江不由政院

擅啓是宦寺弄權之漸也卽位之初防之於微猶懼不及今若不懲則弊將難救傳曰宦寺弄權之悉予豈不知觀今之勢宦寺非弄權也臺諫弄權也世琛啓韓萬孫爲東萊縣令時貽弊於民該曹請問當矣而承旨等啓請不問憲府更請問之承旨等又啓之是必有情請問承旨等不聽世琛又論承旨等庇護萬孫之罪不可不懲不聽

《燕山君日記 12, 10面》

연산군 2년 1월 16일(을미)

○장령(掌令) 서산보(徐山甫)·정언(正言)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신들에게 취직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물러나와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점(楡岾)·낙산(洛山)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것과 김효강(金孝江)의 함부로 아뢴 죄는 큰 일이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乙未○掌令徐山甫正言柳世琛啓命臣等就職故退而治事然楡岾洛山給鹽金孝江擅啓之罪事之大者不得不啓不聽

《燕山君日記 12, 11面》

연산군 2년 1월 17일(병신)

왕이 주장에 나왔다.
 ○지평 이자견(李自堅)⁸³·정언 류세침(柳世琛)이 또 논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丙申御晝講○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又論之不聽

《燕山君日記 12, 11面》

연산군 2년 1월 18일(정유)

왕이 주장에 나왔다.
 ○지평 이자견·정언 류세침이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일과 김효강이 함부로 아뢴 일을 논계(論啓)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丁酉御晝講○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論啓兩寺給鹽金孝江擅啓等事不聽

《燕山君日記 12, 11面》

연산군 2년 1월 19일(무술)

왕이 경연에 나왔다.
 ○지평 이자견·정언 류세침이 아뢰기를,
 “유점·낙산 두 절에 소금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효강(孝江)은 국문하지 않을

83) 이자견(李自堅) : 1454~1529.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자고(子固) 본관은 성산(星山). 문과에 급제 연산군 때 전한, 대사간을 거쳐 9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갑자사화로 유배되었고 중종반정으로 풀려 나와 부제학을 거쳐 중조 16년(1521) 판서 등을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동생 이자건도 문과 급제하여 판서, 좌참찬에 오른 문신으로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戊戌御經筵○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啓兩寺給鹽不可孝江不可不鞠不聽

《燕山君日記 12, 11面》

연산군 2년 2월 18일(병인)

○대사헌 이집(李諱)·대사간 이인형(李仁亨)·지평 이자견(李自堅)과 이세인(李世仁)·헌납 이의손(李懿孫)·정언 한훈(韓訓)과 류세침(柳世琛) 등이 서계하기를,

“삼대(三代) 이후로는 정치가 한·당(漢唐) 두 나라보다 더 성한 나라는 없사운데, 그 다스려진 나라를 보면, 대개 어진 정승을 얻어서 내시를 억제하고 간쟁(諫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근본을 삼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지러워진 나라를 보면, 역시 마땅하지 못한 사람을 정승으로 앉혀서 내시가 전횡하고 언로(言路)가 막힌 데서부터 발단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기어이 지극한 정치를 달성하여 삼대의 융성(隆盛)을 따르기로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은 도리어 당우(唐虞)의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은 웬일이십니까? 속히 효강의 죄를 다스리고 문형의 정승 자리를 파하고 직언하는 길을 널리 개방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서계하기를,

“효강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사운데, 전하께서만 모르시니, 이 때문에 신들이 애가 타서 아뢰기를 마지 않는 것입니다. 대저 죄를 짓되 임금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는 것은 그 술수가 얇은 자요, 죄를 짓고도 임금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간교함이 노련한 자이니, 진실로 노간(老奸)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렇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홍공(弘恭)·석현(石顯)의 죄상은 천하가 다 아는데, 원제(元帝)만이 알지 못하더니 마침내 사직이 기울어지고 위태롭게 되어 천하 만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임금들이 크게 거울삼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형의 사람됨이 용렬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이운데 전하께서만 모르시는 것은 윤호(尹壕)가 들어서 매개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저 어진 자와 못난 자는 각각 끼리끼리 상종하는 것이므로, 천거한 자가 어질면 그에게 천거된 자도 어질고, 천거한 자가 어질지 못하면 그 천거된 자도 어질지 못한 법입니다. 옛날에 위문후(魏文侯)가 위성(魏成)을 정승으로 삼은 것은 이극(李克)에게 물어서 한 것이며, 한고조(漢高祖)가 조참(曹參)을 정승으로 삼은 것은 소하(蕭何)에게 물어서 한 것이니, 정승을 내면서 물을 만하지 못한 자에게 물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정승

을 내시면서 윤호 등에게 물으셨으니 그가 천거한 사람은 의당 이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효강의 죄상을 통렬히 다스리고 문형의 정승자리를 빨리 고치시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丙寅○大司憲李諱大司諫李仁亨持平李自堅李世仁獻納李懿孫正言韓訓柳世琛等書啓曰三代以下治莫盛於漢唐而其治也莫不以得賢相抑宦侍納諍爲本其亂也亦莫不以置相非人宦官專橫言路閉塞爲階也 殿下思臻至治以追三代之盛而今其所爲反出唐虞之下何也請速治孝江之罪罷文炯之相開直言之路不聽更書啓曰孝江有罪國人皆知而 殿下獨不知之此臣等所以執奏而不已也夫有罪而使人主易知者其術淺有罪而使人主不知者其奸熟苟非老奸何能至此昔弘恭石顯之罪天下皆知之而元帝不知卒使社稷傾危爲天下萬世笑豈非人主之殷鑑乎文炯才劣無能國人皆知而 殿下獨不知者得非尹壕爲媒也夫賢不肖各以類相從故舉者賢則其所舉亦賢舉者非賢則其所舉亦非賢昔魏文侯相魏成問於李克漢高祖相曹參問於蕭何未聞置相而問非其人也 殿下置相而問於尹壕等宜其所舉如此也請痛治孝江之罪速改文炯之相以快公論不聽

《燕山君日記 12, 30面》

연산군 2년 2월 27일(을해)

대사헌 이집(李諱)·대사간 이인형(李仁亨)·사간 윤석보(尹碩輔)·집의 최한원(崔漢源)·장령 강형(姜誦)·서산보(徐山甫)·지평 이자견(李自堅)·이세인(李世仁)·헌납(獻納) 이의손(李懿孫)·정언(正言) 한훈(韓訓)·류세침(柳世琛)이 서계(書啓)하기를, “신들이 내시가 용사(用事)하는 것과 정승을 잘못 낸 것을 들어 한 달이 걸리도록 함문(閤門)에 엮드렸사오나, 윤희를 얻지 못하옵고, 한갓 이두(螭頭: 대궐 뜰에 있는 이석(螭石)을 말함)에서 붓대를 권 자로 하여금 날마다 군신(君臣)간의 입다툼하는 일만을 기록하게 하여, 오늘은 사면(辭免)을 요청하고 내일은 직에 돌아가곤 하니, 역시 조정의 대체에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첫 정사에 있어 사망에서는 눈을 씻고 귀를 기울여 치화(治化)를 바라보고 소문을 듣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한 가지 정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 가지 일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니, 이는 치란(治亂)과 존망(存亡)의 기틀[機]이오라, 불가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시들이 용권하는 것과 정승을 잘못 가린 것은 바로 첫 정사의 큰 실책이므로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굳이 거절하시고 윤희하지 않으니, 신들이 이 언관(言官)의 직에 있어, 임금으로 하여금 실정(失政)하게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기대에 어긋나게 하고서, 오래 그 직에 있기란 마음에 실로 미안하오니, 파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드디어 사직하고 물러갔다.

○乙亥大司憲李諱大司諫李仁亨司諫尹碩輔執義崔漢源掌令姜訥徐山甫持平李自堅李世仁獻納李懿孫正言韓訓柳世琛書啓臣等以宦寺用事置相非人連月伏閣未獲蒙允徒執筆螭頭者日記君臣口舌之事而今日乞免明日還職不亦傷朝廷大體乎 殿下初政四方莫不拭目傾耳觀化聽風一政之善人皆悅服一事之失人皆缺望此治亂存亡之機也不可不慎宦寺之用權置相之非人乃初政大失反覆論啓固拒不允臣等職忝言官使人主失政下民缺望而久尸其職心實未安請罷不聽遂辭職退

《燕山君日記 12, 34面》

연산군 2년 4월 22일(기해)

○지평 이자견(李自堅)·정언 류세침(柳世琛)이 윤탕로(尹湯老)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己亥○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論啓尹湯老事不聽

《燕山君日記 14, 26面》

연산군 2년 4월 23일(경자)

경연에 나왔다. 장령 강형(姜訥)·정언 류세침(柳世琛)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또 원각사(圓覺寺)의 조라치(照刺赤)에 관한 일을 논하니, 왕이 이르기를,

“뒤에 만일 모자라거든 내수사(內需司)의 종으로써 채워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지사(知事)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그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허급하지 않는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고, 세침(世琛)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양종(兩宗)에도 역시 노비(奴婢)가 있어서 죽히 소제할 수 있다 합니다.”〔중략〕

하였다. 세침(世琛)이 아뢰기를,
“근자에 살펴보옵건대, 여종이 손을 잡고 때를 지어 궁중에 출입하니, 이것이 어찌 다 대내(大內)에 문안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폐단이 적지 않으니, 뒤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원각사(圓覺寺) 조라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10명을 감하고,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로 하여금 채워 주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 이자견(李自堅)·정언 류세침(柳世琛)이 윤탕로(尹湯老)의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왕이 대방부인(帶方夫人) 송씨(宋氏)의 상

언(上言)을 이자견(李自堅)에게 내려 주며 묻기를,

“그대들이 이 일을 국문하는데 과연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그 상언(上言)이 역시 다 적확(的確)한가?”

하매, 자견이 아뢰기를,

“본부(本府)가, 대방부인 송씨가 안신사(安神寺)에서 성안의 사족(士族)집 과부와 승니(僧尼)를 많이 모아 크게 법회(法會)를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부리(府吏) 5명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부리(府吏)가 뇌물을 받고 절 문 앞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왔으므로, 바야흐로 가두고 국문하는 중입니다. 그 상언(上言) 중에 ‘나장(羅將) 8명·6명을 발동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부리(府吏)가 무엇 때문에 송씨를 애석히 여겨 장신(杖訊)까지 받겠는가? 버려 두고 국문하지 말라.”

하매, 자견(自堅)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옵건대, 학조(學祖)가 주창하고, 송씨는 시주(施主)가 되어 법회를 크게 베풀고서 못사람을 선동하였다 하니, 크게 치화(治化)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부리(府吏)를 보내어 적발토록 했으나, 부리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서 정상을 숨기고 불복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을 두둔해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이 아니다. 강제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적발하기 위하여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어찌 정사를 하는 체통이겠는가? 두 번이나 버려 두라고 명하였으되 그대들이 들어 주지 않으니, 비록 대간이라 할지라도 어찌 임금의 명령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버려 두라.”

하매, 자견이 아뢰기를,

“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어찌 죄 없는 사람에게 그릇 죄를 가하려 하겠습니까? 자세히 국문하여 실정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풍문에 의하여 탄핵하는 것은 본부(本府)의 직책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부리(府吏)와 중을 국문하고 일이 송씨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도리어 무릅쓰고 상언(上言)하였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씨가 비록 실지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죄를 가해서는 불가한데, 하물며 사실이 없음에랴? 내가 두 번이나 버려 두라고 명령하였는데도 그대들이 이와 같이 듣지 않으니 임금이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庚子御經筵掌令姜訥正言柳世琛論尹湯老事不聽又論圓覺寺照刺赤事王曰後如有缺以內需司奴充給何如知事洪貴達曰知其有弊而勿給則當盡除之世琛曰臣聞兩宗亦有奴婢足以酒掃矣[中略]

世琛曰近觀女奴携手成群出入宮禁是豈大內問安之人此弊不小後勿如是 王曰然○傳曰圓覺寺照刺赤特減十名令內需司奴婢充給○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論啓尹湯老事不聽下帶方夫人宋氏上言問自堅曰爾等鞫問此事果有摘發之實乎其上言亦皆的然乎自堅曰本府風聞帶方夫人宋氏於安神寺廣集城中士族寡婦及僧尼大張法會府中遣吏五人擲奸府吏受賂不及寺門而返故時方囚鞫其上言中發羅將八人六人之言非矣傳曰若實則其吏何惜宋氏而至受杖訊乎其棄勿鞫自堅曰臣等聞學祖唱之而宋氏爲施主大設法會鼓惑衆聽大累治化臣等遣吏發摘吏受其賂隱情不服其可不鞫乎不可輕棄傳曰予非庇僧而有是教也強摘所無而濫用刑杖豈爲政之體乎再命棄之而爾等不聽雖臺諫豈可逆君命乎其棄之自堅曰臣等以執法之官豈欲枉罪無辜之人歟當詳鞫得情而後已也風聞舉劾本府之任今方鞫問府吏及僧而事不及於宋氏反冒上言不可不治傳曰宋氏雖實有此事不可加罪況未實乎予再命棄之而爾等不從如是則君上可無也

《燕山君日記 14, 26面》

연산군 2년 4월 24일(신축)

지평 이자견(李自堅)·정언 류세침(柳世琛)이 윤탕로(尹湯老)의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자견이 또 아뢰기를,

“대방부인(帶方夫人)이 과부와 승니(僧尼)를 많이 모아 놓고 절간에서 유숙하였으니, 이는 풍속에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전일에 월산대군의 부인이 흥복사(興福寺)에서 불사(佛事)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때에 대간이 미처 검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니, 신들이 지금 이 일을 듣고서 어찌 감히 끝까지 국문하지 않으리까? 풍문에 의하면, 중 학조(學祖) 및 선종판사(禪宗判事) 보문(普文)과 원각사 주지 연희(衍熙)가 다 송씨의 불사(佛事)에 참여하였다 하므로, 신들이 연희에게 물으니, 연희의 대답이, ‘나는 가지 않았고, 학조와 보문만이 가서 참여하였다’ 하므로, 또 보문에게 물으니, 숨기고 불복합니다. 그 언사가 같지 않으니, 돌아가서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學祖) 등은 중으로서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송씨의 일에 대하여는 비록 진실로 말한 바와 같이 할지라도, 내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대들이 듣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辛丑持平李自堅正言柳世琛論啓尹湯老事不聽自堅又啓帶方夫人大會寡婦尼僧留宿寺社此有關風俗前日月山大君夫人大設佛事於興福寺其時臺諫未及檢舉以招物議臣等今聞此事安敢不窮鞫乎風聞僧學祖及禪宗判事普文圓覺寺住持衍熙皆叅宋氏佛事臣等問衍熙對曰我則不往學祖普文往叅耳又問普文則諱而不服其言辭不同當歸 鞫之傳曰學祖等以僧而叅佛事何罪之有宋氏事雖信如所言予再言之而爾等不聽如此則國非其國矣

《燕山君日記 14, 28面》

연산군 5년 11월 23일(기묘)

○김응기(金應箕)를 공조 참판으로, 김심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안호(安瑚)를 병조 참지로, 김선(金瑄)을 사헌부 집의로, 박열(朴說)·정수강(丁壽崗)⁸⁴을 장령(掌令)으로, 류세침(柳世琛)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己卯○以金應箕爲工曹叅判金謙司憲府大司憲安瑚兵曹叅知金瑄司憲府執義朴說丁壽崗掌令柳世琛持平

《燕山君日記 35, 21面》

연산군 5년 11월 28일(갑신)

대사간 이균(李均)·장령 정수강(丁壽崗)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상소한 지 벌써 3일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하명을 듣지 못하였기, 복합(伏閣)하여 명을 기다립니다.”

하였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지평(持平) 류세침(柳世琛)이 역시, 성준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새 대관이 새 말을 가지고 아뢰니 가위 생소하다. 준은 사실 그 죄가 없는데, 대간이 억지로 죄를 더하려 함은 어떤 일이나? 삼공의 인원이 이미 부족한데 또 준을 죄준다면 누구를 삼공으로 삼을 것이냐?”

하였다. 집의(執義) 김선(金瑄)이 전라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듣사온즉, 준이, 대간이 자기 논박하는 것을 성내어서 간혹(奸譎) 두 글자로 대간을 어전에서 욕하였다 하오니, 보고 듣는 자로 그 누가 깜짝 놀라지 않으리까? 그렇다면 언관(言官)이 대신에 대하여 논집(論執)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죄를 주옵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甲申大司諫李均掌令丁壽崗等啓臣等上疏已三日而迄未聞命伏閣待命不報持平柳世琛

84) 정수강(丁壽崗) : 1454~1527.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불봉(不崩) 호는 월헌(月軒) 본관은 나주. 성종 때에 문과에 급제 연산군 때에 장령을 거쳐 부제학이 되었으나 갑자사화에 파직되었다. 중종 반정으로 등용되어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고 한문소설 포절군절(抱節君節)을 지었다. 저서에 월헌집이 있다.

亦請鞠成俊傳曰新臺官將新語以啓可謂生疎矣俊實無其罪而臺諫強欲加罪何也三公已不備員而又罪俊則以何人爲三公耶執義金瑄自全羅道而還啓臣聞俊怒臺諫駁已以奸譎二字辱臺諫於冕旒之下其於見聞孰不駭愕若爾則言官不得論執大臣矣請須罪之不聽

《燕山君日記 35, 24面》

연산군 5년 12월 15일(기해)

○경연(經筵)에 납시니, 사간(司諫) 장순손(張順孫)과 지평(持平) 류세침(柳世琛)이 성준을 파직하기를 청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己亥○御經筵司諫張順孫持平柳世琛請罷成俊不聽

《燕山君日記 35, 31面》

연산군 6년 1월 19일(갑술)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니, 지평 류세침(柳世琛)·정언 홍윤덕(洪潤德)이 홍백경(洪伯慶)에 대하여 논계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甲戌受常參御經筵持平柳世琛正言洪潤德論啓洪伯慶不聽

《燕山君日記 36, 7面》

연산군 6년 1월 28일(계미)

○지평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운대(輪對)는 조종조 이래로 있어 온 일입니다. 말할 만한 국가의 일은 대간과 시종(侍從)이 아뢴 것이나, 그 외의 신료(臣僚)들은 소회가 있더라도 능히 상달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일 다시 운대의 법을 세운다면, 하정(下情)이 상통하고 민폐 역시 제거될 것입니다.”

하였다. 지사(知事)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과연 세침이 아뢴 것과 같습니다. 청하옵건대, 운대를 거행하여 하정을 통하게 하소서.”

하였다.

○癸未持平柳世琛曰輪對 祖宗朝故事國家可言之事臺諫侍從則可以陳啓自餘臣僚雖有所懷莫能上達今若復立輪對之法下情可通民弊亦除同知事洪貴達曰果如世琛所啓請行輪對以通下情

《燕山君日記 36, 13面》

연산군 6년 2월 13일(정유)

○지평(持平)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선전관(宣傳官) 탁세경(卓世瓊)이 옥구현감(沃溝縣監)이 되었는데 그는 원래 내력이 없고 또 과거로 출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옥구는 내지(內地)로서

다스릴 일이 많으며 또 진관(鎭管)이 되니, 그 책임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개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좃았다.

○丁酉○持平柳世琛啓宣傳官卓世瓊爲沃溝縣監旣無來歷又非出身科第而沃溝內地治事浩繁且爲鎭管不可任非其人請改正從之

《燕山君日記 36, 17面》

연산군 7년 8월 22일(정묘)

왕이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승지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어제 삼로 오경(三老五更)⁸⁵의 예(例)에 대하여 하문하였는데,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종(成宗) 때에 이 예(禮)를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정인지(鄭麟趾)·김수온(金守溫)이 모두 삼로 오경의 반열에 참여해야 되는데, 혹은 불교를 숭상하고 혹은 축재(蓄財)한 일로써 논박을 받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성종이 거행하려다가 수행하지 않고서, 다만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양로례(養老禮)⁸⁶를 거행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헌납 성한(成翰)은 아뢰기를,

“지금 나이 젊은 부마(駙馬)를 제조(提調)로 삼았는데, 제조의 소임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어찌 나이 젊고 사리에 밝지 못한 사람이 마땅히 할 것이겠습니까?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김숙연(金叔演)이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으나 명망이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다. 들어주지 않았다.

○丁卯受常參御經筵承旨張順孫啓昨日下問三老五更之例前無此例但 成宗朝欲行此禮鄭麟趾金守溫皆參三老五更之列而或以崇佛或以貨殖被駁而不與 成宗欲行而未果但幸學行養老禮獻納成翰曰今以年少駙馬爲提調提調所任非輕豈年少不曉事者所當爲哉請改正掌令柳世琛曰金叔演爲光州牧使無物望請改正不聽

《燕山君日記 41, 6面》

연산군 7년 11월 16일(신묘)

○대사헌 한사문(韓斯文), 집의 황인(黃璘), 장령 류세침(柳世琛), 지평 이효돈(李孝敦)이 아뢰기를,

85) 삼로 오경(三老五更) : 중국 고대(古代)에 연로하여 치사(致仕)한 자 중 도학이 높은 자를 천자(天子)가 부형(父兄)의 예로써 우대하며 삼로(三老)와 오경(五更)이라 했는데, 각각 한 사람임. 혹은 삼로는 3인, 오경은 5인이라는 이설도 있음.

86) 양로례(養老禮) : 옛날에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주식(酒食)으로 대접하고 경례(敬禮)하던 일임.

“정인인(鄭麟仁)을 국문하라고 하오나, 신등이 홍문관을 국문하라고 명한 전지(傳旨)를 살펴보니, 모두가 신등이 일찍이 논계(論啓)한 바이어서 진실로 홍문관을 국문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인이 전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다만 홍문관을 국문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비록 이를 혼자 아뢰었다 하더라도 그 뜻인즉 한 사(司)의 뜻이므로 만약 정인인을 국문한다면 신등도 장차 모두 국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듣자옵건대, 홍문관의 상소에 이르기를, ‘만약 류자광을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으면 대간(臺諫)은 결단코 편안하게 직무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 아뢰기를, ‘복합(伏閣)한 지가 달포가 넘었사오나 마침내 옳다 그르다 분변이 없었으므로 중외(中外)의 듣고 보는 사람들이 크게 서로 의아(疑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등이 류자광을 말과 상소로써 논란한 지 거의 2개월이 지났으나 마침내 윤허를 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사직을 했는데도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신등이 억지로 직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공의(公議)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신등을 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대사간 최관(崔灌)·사간 윤희손(尹喜孫)·정언 윤순(尹珣)과 이숭로(李崇老) 등도 또한 피험하니, 전교하기를,

“정인인(鄭麟仁)이 전지를 받고 아뢰기를, ‘홍문관을 국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홍문관을 두려워한 것이니, 그를 국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한사문(韓斯文)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비록 용렬하지만 어찌 홍문관을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자신들이 일찍이 아뢰던 일로써 도리어 홍문관을 국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홍문관의 상소 가운데 신등을 아울러 탄핵했고, 그 말이 진실로 타당하오니, 신등을 체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辛卯○大司憲韓斯文執義黃璘掌令柳世琛持平李孝敦啓命鞫麟仁臣等觀命鞫弘文館傳旨皆臣等所嘗論啓固不可鞫麟仁非逆傳旨只論不可鞫之意以啓雖獨啓之其意則一司之意若鞫麟仁則臣等皆將被鞫矣且聞弘文館疏云若不置子光於法則臺諫決不可安然就職又云伏閣逾月竟無曲直之辨中外觀聽大相疑訝臣等論子光以言以疏幾經二朔竟不蒙允累次辭職亦不許焉臣等黽勉就職固知公議之至此請違臣等之職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正言尹珣李崇老亦避嫌傳曰麟仁承傳而啓云不可鞫也是畏弘文館也鞫之則可知斯文等更啓臺諫雖庸劣豈可畏弘文館乎不可以已所嘗啓之事反鞫弘文館也且弘文館疏內并彈臣等其言固當請遞臣等之職不聽

《燕山君日記 41, 18面》

연산군 8년 1월 20일(계사)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최관(崔灌)·집의 정인인(鄭麟仁)·장령 김진석

(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헌납 성한(成翰)·지평 류응룡(柳應龍)과 이효돈(李孝敦)·정언 조옥곤(趙玉崐)과 이승로(李崇老)가 아뢰기를,

“근일에 관직의 임명이 외람된 일로써, 여러날 동안을 와서 아뢰었으나 천의(天意)가 오히려 어렵게 여겨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윤택하지 않으신다 하여 이를 중지할 수 없는 까닭에 논집(論執)하여 굳이 청하오니, 황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홍백경(洪伯慶)은 대비(大妃)의 지친(至親)인 까닭으로 당상(堂上)에 승진시켜 2품에 이르게 하였으니, 상의 은혜가 진실로 이미 중하운데, 또 육경(六卿)의 다음가는 자리(참판의 이름)에 두셨습니다. 백경(伯慶)은 허물이 없는 정처(正妻)를 버리고 방출한 궁녀(宮女)를 간음했으니, 더욱 중임에는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또 공조(工曹)는 공장(工匠)에 관한 모든 일을, 만약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판이 모두 재결(裁決)하는데, 백경은 이미 죄루(罪累)가 있을 뿐더러 또 상시 술에 빠져 있으므로 결단코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건(慎自建)은 전일 전라도사(全羅都事)로 있을 적에 죄를 범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지금 비록 주부(主簿)의 6품 직을 임명하더라도 오히려 외람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갑자기 5품직에 승진시키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는 송사를 판결하는 자리이니, 더우기 신자건(慎自建)의 있을 곳은 아닙니다. 또 승정원은 권한이 무거운 자리인데, 신수영(慎守英)과 한위(韓偉)는 모두가 외척(外戚)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들의 권한이 더욱 무겁게 되었습니다. 외척의 권한이 무거운 것은 예로부터 공통된 걱정입니다. 승지는 본디 6원인데, 외척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또 들건대, 입거체찰사(入居體察使) 이세좌(李世佐)는 대사례(大射禮: 임금이 성군관에 남시어 선성(先聖)을 뵈우고 활을 쏘던 예)를 거행한 후에 출발하도록 명하였다 하는데, 만약 대사례를 거행한 후에는 반드시 농사철이 될 것이며, 또 입거인(入居人)은 수령들이 모두 벌써 뽑아 결정하였으며, 종사관(從事官)도 또한 벌써 마감(磨勘)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고을의 수령이 뽑아 결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정한 수효가 없으므로 반드시 수효를 가산(加算)하여 뽑아 놓고 체찰사(體察使)의 취사(取捨)를 기다릴 것이니, 체찰사의 출발이 만약 시일이 늦게 된다면, 무릇 뽑힌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동이 되어 직업에 안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사례는 비록 판서가 없더라도 참판이나 참의가 있으면 그 사무를 주관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 하다면 마땅히 다른 재상을 가려서 판서의 임무를 대신으로 행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오니, 세좌(世佐)를 이달 안으로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백경·신수영·한위·신수겸의 일은 들어줄 수가 없으며, 세좌(世佐)의 일은 대신 맡아볼 판서(判書)를 선출하여 함께 의주(儀注)를 찬술하여 의식을 익힌 후에 보내라.”

하였다. 영정(永貞)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백경(洪伯慶)은 방출한 궁녀를 간통했으니, 범죄에 의거해서 논단(論斷)한다면 마땅히 전의 관직까지 추탈(追奪)하고 폐기하여 임용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상의 은혜가 또한 중한데 지금 또 중한 품계(品階)에 승진시키시니 악(惡)을 징벌(懲罰)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또 비록 공조 참판이 아니더라도 어찌 임명할 만한 자리가 없겠습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신자건(愼自建)·신수영(愼守英)·한위(韓偉)도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정(永貞) 등이 다시 논계(論啓)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癸巳○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獻納成翰持平柳應龍李孝敦正言趙玉崐李崇老啓近以除拜猥濫累日來啓天意猶留難不允臣等不勝缺望然不可以殿下之不允而止之故猶論執強請不勝惶恐伯慶以大妃至親陞堂上至於二品上恩固已重矣而又置諸六卿之亞伯慶棄無咎正妻奸放出宮女尤不合重任且工曹凡工匠諸事若判書有故叅判皆得裁決伯慶既有罪累又常沉醉決不可任自建前任全羅都事罪犯永不叙用今雖授主簿六品之職猶云濫矣况驟陞五品乎漢城府決事之地尤非自建所宜處且政院權重之地守英韓偉俱以外戚而居其權益重外戚權重自古通患承旨本六員外戚居二至爲未便請並改正且聞入居體察使李世佐命大射禮後發行若大射禮後則必至農時且入居人守令皆已抄定從事官亦已磨勘但各官守令抄定非有定數必加數抄擇以待體察使取捨體察使之行若稽緩凡在抄中者皆爲騷動不能安業矣大射禮則雖無判書有叅判叅議足以主其事若不得已則當擇他宰相攝行判書之任亦可也世佐請於今月內遣之傳曰伯慶守英偉守謙事不聽世佐事其出攝判書共撰儀註習儀後遣之永貞等更啓伯慶通放出宮女據罪論之則當追奪前職廢棄不用至今不失其祿上恩亦重今又陞授重秩非懲惡之義且雖非工曹叅判豈無可任之地乎請改正自建守英偉請並改正不聽永貞等更論啓如初不聽

《燕山君日記 42, 11面》

연산군 8년 1월 21일(갑오)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최관(崔灌)·사간 윤희손(尹喜孫)·집의 정인인(鄭麟仁)·장령 김진석(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지평 류응룡(柳應龍)과 이효돈(李孝敦)·헌납(獻納) 성한(成翰)·정언 조옥곤(趙玉崐)과 이승로(李崇老) 등이 홍백경(洪

伯慶)·신수영(慎守英)·한위(韓偉)·신자건(慎自建)을 논계(論啓)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세 번이나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甲午○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李孝敦獻納成翰正言趙玉崐李崇老等論伯慶守英韓偉自建如初不聽三啓皆不聽

《燕山君日記 42, 11面》

연산군 8년 1월 22일(을미)

○사헌부 대사헌 김영정·대사간 최관·사간 윤희손·집의 정인인·장령 김진석과 류세침·헌납 성한·지평 류응룡과 이효돈·정언 조옥곤과 이승로가 아뢰기를,

“홍백경(洪伯慶)은 죄를 범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말도록 했는데, 특별히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면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또 정처(正妻)를 버리고, 본부(本府：사헌부)에서 그가 간통한 궁녀 복비(福非)를 돌려보내기를 독촉할 때에도 또 그 집에 숨겨두고서 내보내지 않았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이미 그 죄를 다스리지도 않고 도리어 작명(爵命)을 가하여 육경(六卿)의 다음 자리에 두었으니, 백경(伯慶)이 이미 앞에서 징벌함이 없었으므로 종말에도 반드시 큰 죄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가 죄에 빠지고 난 후에는 전하께서 비록 구원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중략〕

신자건(慎自建)은 탐오(貪汚)하다는 명칭을 지니고서 외람히 송사를 판결하는 직책에 있는데, 대간의 말을 물리치고 좇지 않으시니 후일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신등의 논계(論啓)로 인하여 개정(改正)한 것이 있는데 유독 외척만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실망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자건(慎自建)은 강등시켜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乙未○司憲府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獻納成翰持平柳應龍李孝敦正言趙玉崐李崇老啓伯慶之罪犯永不叙用而特蒙國恩得贖其罪當改心易慮自不爲惡猶不懲艾又棄正妻當本府督推所奸宮女福非時伯慶又匿諸其家而不出若小有畏忌邦憲之心不應如是恣行 殿下旣不治罪反加爵命置之六卿之亞伯慶旣無所懲於前終必陷於大罪及其陷罪 殿下雖欲救之得乎〔中略〕

自建負貪汚之名而冒處決訟之任斥臺諫而不從後來爲惡者將何所懲哉因臣等之啓而改正者有之獨於外戚邈然不納不勝缺望傳曰自建其降授餘皆不聽 《燕山君日記 42, 12面》

연산군 8년 1월 23일(병신)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최관(崔灌)·사간 윤희손(尹喜孫)·집의 정인인(鄭麟仁)·장령 김진석(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지평 류응룡(柳應龍)과 이효돈(李孝敦)·헌납 성한(成翰)·정언 조옥곤(趙玉崐)과 이승로(李崇老)가 와서 아뢰기를,

“홍백경(洪伯慶)은 그 자신이 바르지 못하니 어찌 아랫 사람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신수영(愼守英)과 한위(韓偉)는 본디부터 물망(物望)이 없으므로 중요한 직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군주가 사람을 쓸 적에는 공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조정에서 사람을 베풀시킬 때에는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다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좌우가 모두 어질다고 말하여도 가하다 하지 않으며, 여러 대부(大夫)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여도 가하다 하지 않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후에야 이를 살펴본다.’고 하였으니, 어찌 베풀주고 상주는 권한이 모두 나에게 있다고 하여 다만 내 뜻대로 하고 아무런 꺼리는 바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근일에 녹용(錄用)된 사람들이 모두 내지(內旨)로 인연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현명함과 우매한 것은 일찍이 살피지 않았으니, 그 공정하지 못함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백경(伯慶)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추구해서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영정(永貞)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른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난번에는 비록 과실이 있었다더라도 뉘우쳐서 고쳤으면 추구해서 추론(追論)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백경은 처음에 향비(香非)를 간통했으므로 법사에서 장(杖) 1백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특별히 상의 은혜를 입어서 다만 그 죄를 속(贖)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과실을 고쳐야 할 시기인데도 오히려 조금도 징계하지 않고서 또 복비(福非)를 간통했습니다. 마음씀이 이와 같은데도 전하께서는 도리어 사랑하여 관작을 올려주어 육경(六卿)에 두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쁜 짓을 조장시키는 것이옵지, 백경(伯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수영(愼守英)과 한위(韓偉)는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모두 권한이 무거운 자리에 있으니, 외척(外戚)의 폐단이 될 조짐을 미리 방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丙申○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

李孝敦獻納成翰正言趙玉崐李崇老來啓曰伯慶其身不正何以率下守英韓偉素無物望不合重任人主用人不可不公爵人於朝當與人共之古語云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察之豈可以爵賞之權皆在於我惟吾所意而無所忌乎近日錄用者皆因內旨而其人之賢否曾不察焉則其不公孰大乎請改正不聽[中略]

傳曰伯慶事已往不可追論永貞等更啓曰所謂已往者其人曩雖有過後悔而改則不可追論矣伯慶初奸香非法司論以杖一百告身盡行追奪而特蒙上恩只贖其罪此其改過之時猶不小懲又通福非用心如此 殿下反加寵秩置諸六卿是長惡非所以寵伯慶也守英韓偉不厭人望並處權重之地外戚之漸不可不預防請並改正不聽

《燕山君日記 42, 14面》

연산군 8년 1월 24일(정유)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최관(崔灌)·사간 윤희손(尹喜孫)·집의 정인인(鄭麟仁)·장령 김진석(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지평 류응룡(柳應龍)과 이효돈(李孝敦)·헌납 성한(成翰)·정언 조옥곤(趙玉崐)과 이승로(李崇老)가 와서 아뢰기를,

“흠비가 내린 변고는 지난날에도 혹시 들은 적이 있지만, 흠눈이 내린 변고는 전고(前古)에도 없었던 바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근일의 정사는 외척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인재를 임용함이 적의(適宜)함을 잃은 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초 장왕(楚莊王 : 춘추시대 초의 임금) 때에 재앙이 없었는데도 왕은 산천에 기도하고 제사지내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버리는가? 무슨 까닭으로 재앙이 없는고?’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가뭄이 계속되기도 하고, 물이 창일하기도 하고, 겨울에 천둥이 일어나고 우박이 오고, 성상(星象)의 변괴(變怪) 등의 재앙이 서로 잇달아 끊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천심(天心)이 전하를 사랑하여 깨우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심상(尋常)히 보시고 사사로 친근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녹용(錄用)하였으므로 하늘이 괴이한 현상을 크게 보여서 전하를 깨우쳐 깨닫게 한 것이오니, 백경(伯慶) 등의 관직을 갈아서 하늘의 견책(譴責)에 보답하소서.”

하였으니, 들어주지 않았다. 영정(永貞) 등이 다시 아뢰기를,

“백경(伯慶)의 하는 짓은 광망(狂妄)하니, 어찌 한 사람의 백경(伯慶)을 위하여 육조(六曹)를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판서(判書) 박송질(朴崇質)이 또한 체찰사(體察使)로써 출발한다면 한 조(曹)의 일이 백경(伯慶)에게 집중(集中)될 것이니, 백경이 그것을 어찌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수영(愼守英)과 한위(韓偉)는 모두 척리(戚里)로서 승정원에 함께 있으니, 외척의 조짐이 관계가 작지 않습니다.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중략]

○丁酉○大司憲金水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李孝敦獻納成翰正言趙玉崐李崇老來啓曰土雨之變曩或有聞土雪之變前古所無意者近日之政外戚居多用人失宜而然耶昔楚莊王時無災王禱祠山川云天棄我耶何故無災邇來旱乾水溢冬雷雨電星變之災相繼不絕此必天心仁愛 殿下以警懼之而 殿下視爲尋常私昵之人一時錄用故天乃大示恠異以警悟 殿下耳請遞伯慶等職以答天譴不聽永貞等更啓曰伯慶所行狂妄豈宜爲一伯慶以累六曹乎判書朴崇質亦以體察使出去則一曹之事萃於伯慶伯慶其何以堪之哉守英韓偉俱以戚里同處政院外戚之漸所關非細請改正不聽[中略]

《燕山君日記 42, 16面》

연산군 8년 1월 25일(무술)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최관(崔灌)·사간 윤희손(尹喜孫)·장령 김진석(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지평 류응룡(柳應龍)과 이효돈(李孝敦)·정언 조옥곤(趙玉崐)과 이승로(李崇老)가 다시 홍백경(洪伯慶)·신수영(愼守英)·한위(韓偉)를 논계(論啓)하기를,

“하늘이 견고(譴告)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인재(人材)를 잘못 등용하는 데서 기인되지 않음이 없으니,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정(永貞) 등이 다시 아뢰기를,

“백경의 일은 의정부·홍문관·대간(臺諫)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고, 하늘이 또한 괴이(怪異)를 나타내어 견고(譴告)하였는데도 전하께서 홀로 공의(公議)를 배척하고 개정하기를 허가하지 않으시며, 신수영(愼守英)과 한위(韓偉)는 또한 물망(物望)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사사로 척리(戚里)라 하여 외람히 승정원에 있게 하였으니, 신은 승정원과 육조(六曹)가 날로 더욱 비하(卑下)해질까 두렵습니다. 옛날의 군주는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하여, 수양하고 반성하여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으면서, ‘내 몸에 결점이 있는가? 정사에 실수가 있는가? 사람을 임용함이 적당함을 잃었는가?’ 하였습시다. 신등이 천재(天災)를 끌어내고 공의(公議)를 가지고서 아뢰었는데도 지금까지 머물러 두고 어렵게 여기시니, 신등의 말을 심상하고 오활(迂濶)하다 하여 살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는 것이나 아니옵니까? 근래에 재변이 여러번 일어났고, 흉년의 변고도 지금 또 잇달아 일어난 것은 모두가 이 무리들이 재앙을 초래한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정(永貞) 등이 또 차자를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신등이 홍백경(洪伯慶)·신수영(愼守英)·한위(韓偉)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날 동안 대궐에 엎드려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윤희를 받지 못하였으니, 실망됨을 견

딜 수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듣자옵건대, ‘관직은 사닐(私昵 : 사적으로 친근함)에 주지 아니하고, 관작은 악덕에 주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군주가 사람을 임용할 적엔 다만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을 쓸 것이고 사닐(私昵)과 악덕(惡德)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중략]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두 왕명을 출납하는 직무에 있으니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고 기염이 날로 성하게 되면, 신등은 외척이 강성해지는 조짐이 장차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천심(天心)이 군주를 사랑하는 까닭으로 국가에서 장차 도리에 어긋남이 있게 되면 하늘이 먼저 재이를 나타내어 견고를 하는데, 군주가 스스로 반성할 줄을 모르면 또 괴이를 나타내어 깨우치고 두려워하게 한다.’ 하였으니, 지난 겨울에 천둥이 일어나고 우박이 오고 큰 물이 있었으며, 지금 또 흠눈이 내리었으니, 어찌 감응이 없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사람을 임용하는데 그릇된 점과 정무를 시행하는 데 실수된 점이 이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여 실지로써 대응하고, 아래로는 공론(公論)을 채택하여 빨리 명하여 개정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戊戌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李孝敦正言趙玉崐李崇老更論伯慶守英韓偉天之示譴未必不由於用人之失請並改正不聽永貞等更啓曰伯慶事政府弘文館臺諫皆曰不可天又出恠異以譴告之 殿下獨排公議不許改正守英韓偉又無物望 殿下私以戚里而冒處政院臣恐政院六曹日益卑下古之人君遇灾而懼其修省弭灾之道無所不至曰朕躬有闕歟政事有失歟用人失當歟臣等引天灾持公議以啓而至今留難無乃以臣等之言爲尋常迂濶而不足省耶近來灾變屢作而土雪之變今又繼作未必非此輩召之也不聽永貞等又上筭子其辭曰臣等將伯慶守英韓偉等事累日伏閣迄未蒙允不勝缺望臣等伏聞官不及私昵爵罔及惡德人主用人惟其賢能而私昵惡德所當去之[中略]

今此二人並處喉舌之任而聲勢相倚氣焰日熾則臣等恐外戚强盛之漸將自此興矣先儒有言曰天心仁愛人君故國家將有失道則天乃先出灾異以譴告之不知自省又出怪異以警懼之去冬雷雹大水今又土雪豈無所感而然耶臣等竊謂 殿下用人之非行政之失有以致之也伏望殿下上謹天戒應之以實下採公論亟命改正不勝幸甚不聽

《燕山君日記 42, 16面》

연산군 8년 1월 26일(기해)

○대사헌 김영정 · 대사간 최관 · 사간 윤희손 · 집의 정인인 · 장령 김진석과 류세침 · 지평 류응룡과 이효돈 · 정언 조옥곤과 이승로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탄핵한 3인을 상께서는 모두 현량(賢良)한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신등

이 망령되게 아뢰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등의 말이 믿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옵니까? 의정부와 시종(侍從)의 신하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니 조정의 공의(公議)를 알 수 있는데, 막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언로(言路)가 이로부터 막힐까 두렵습니다. 옛날 사람이 군주의 좋은 점을 칭찬할 적에는 반드시 간언(諫言)을 받아들여 어기지 않는다는니, 간언을 받아들이기를 마치 물 흐르는 것같이 한다느니, 간언을 받아들이면 성인(聖人)이라느니 하였으니, 군주의 덕은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간언을 거절하기를 매우 굳게 하시니, 신등은 뒷 세상에 전하의 미덕을 칭찬할 것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경(伯慶) 등의 일은 모두 특별한 은전에서 나왔으니, 은전으로써 임용한 사람이 어찌 모두 어질겠는가? 또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가지의 실수로써 능히 온갖 일을 모두 가리울 수야 있겠는가? 말이 들을 만하면 비록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뢰지 않더라도 진실로 따를 것이다. 경등이 대궐 뜰에 오랫동안 서 있어서 공사(公事)가 반드시 지체된 것이 많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정부에서 일을 폐한다는 것으로 말을 할 것이다. 경등의 의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일만은 결단코 들어 줄 수가 없으니, 경등은 모두 물러가고 성상소(城上所) 관원만 남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영정(永貞)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하교에, ‘특별한 은전으로 임용한 사람이 어찌 모두 어질겠는가?’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육조(六曹)의 참판(參判)이란 육경(六卿)의 다음 자리여서, 직무가 각 관사(官司)를 통솔하고 있으므로 은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백경(伯慶)을 돈녕부(敦寧府)나 중추부(中樞府)에 있게 했다면 신등이 어찌 꼭 논계(論啓)하겠습니까?〔중략〕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영정(永貞) 등이 또 차자(笱子)를 올렸다.

○己亥○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李孝敦正言趙玉崐李崇老來啓曰臣等所彈三人上意皆以謂賢良而臣等爲妄啓耶抑以臣等之言爲不足信耶政府待從俱曰不可朝廷公議可知而邈然不納恐言路自此而塞古人稱君之美必曰從諫弗拂從諫如流從諫則聖人君之德無大於從諫今 殿下拒之甚固臣等恐後世無以稱 殿下之美德也傳曰伯慶等事皆出特恩以恩用之者豈盡賢良乎且不從諫一失其能盡掩萬事乎言可聽則雖不合司來啓固當從之卿等久立闕庭公事必多遲滯若是則政府必以廢事爲言卿等之意亦欲其如此然此事斷不可聽卿等皆退只留城上所以啓永貞等更啓曰教云特恩用人豈盡賢良臣等以謂六曹參判位亞六卿務摠各司非假恩之處若以伯慶或處敦寧中

樞則臣等豈必論啓[中略]

永貞等又上劄

《燕山君日記 42, 17面》

연산군 8년 1월 30일(계묘)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최관(崔灌)·사관 윤희손(尹喜孫)·집의 정인인(鄭麟仁)·장령 김진석(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지평 류응룡(柳應龍)·정언 이승로(李崇老)가 아뢰기를,

“백경(伯慶)을 개정(改政)할 일은 이미 명을 들었습니다만, 신수영(愼守英)과 한위(韓偉)만은 유독 개정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교에는, ‘동부승지에서 좌승지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지금 도승지로 삼는다고 해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셨습니다만, 다른 승지는 각기 한 방(房)의 일만 주관하고 있는데 도승지는 육방(六房)을 모두 통솔하고 있으며, 중외의 모든 관사의 일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영(守英)은 본디 학식이 없으며 또 물망도 없으니, 어찌 능히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한위(韓偉)도 또한 학식이 없으니,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승정원에는 다만 6명의 관원이 있을 뿐인데, 외척 2인이 한때에 함께 들어왔으니, 그 강성할 조짐을 어찌 조장할 수 있습니까? 이에 흠늬가 내려 경고를 보이고,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에 경천(經天)하여 한 달 동안에 재이와 괴변이 겹쳐 나타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외척의 강성한 조짐이 초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외척으로서 도승지가 된 사람이 어찌 모두가 수영(守英)보다 낫겠으며, 수영(守英)의 현명함이 어찌 반드시 그전 사람들보다 못하겠는가? 경등의 말한 바는 왕망(王莽)이 그 권력을 제 마음대로 시행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찌 그러한가? 선정전(宣政殿)을 멀리서 보면 비록 기울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성종(成宗) 26년부터 지금까지는 7~8년이 되어 흐른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을 뿐더러, 지금 재목이 이미 준비되었는데 수리하지 않으면 후일에 다시 수리하게 되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癸卯○大司憲金永貞大司諫崔灌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正言李崇老啓伯慶改正事已聞命矣守英韓偉獨不改正臣等不勝缺望雖教云自同副至左承旨今爲都承旨何妨然他承旨各主一房之事都承旨則兼摠六房而中外百司之事無不管攝守英本無學識又無物望何能堪之偉亦無學識不合其任政院只有六員而外戚二人一時俱入其強盛之漸豈可長乎茲者土雪示警太白經天一月之間災恠疊見臣等以謂外戚強盛之漸有以

召之也[中略]

傳曰前者以外戚爲都承旨者豈皆賢於守英守英之賢豈必下於前人哉卿等所言由王莽專擅其權而然也今豈然乎宣政殿遠而視之雖若不至傾仄然 成宗二十六年及今七八年其來已久今材木已備而不修則後日更修其弊不貲不聽

《燕山君日記 42, 23面》

연산군 8년 2월 6일(기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장령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근래에 천변(天變)이 자주 나타나서, 지난해 가을에는 천둥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비가 왔으며, 금년 정월에는 흙눈이 내리고 태백성(太白星)이 대낮에 나타났습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실수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한다.’ 하였으니, 비록 확실하게 어떤 일의 반응이라고 가리킬 수는 없지만, 재앙이 그치게 하는 도리를 진실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은(殷) 나라 탕왕(湯王)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한 것이나, 주(周) 나라 선왕(宣王)의 운한시(雲漢詩 : 시경(詩經)의 편명) 팔장(八章)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수성(修省)하는 실상이니, 제왕이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태종(太宗) 때에 수창궁(壽昌宮)에서 화재(火災)가 나니, 하교하시기를, ‘근래에 비가 실로 많이 오고 별이 변동을 보이며 재이가 자주 나타나니, 사알(私謁)이 행해져서 그런 것이냐? 인재를 임면함이 적당함을 잃어서 그런 것이냐? 중외에 영하여 민간의 고통스러운 일과 정사의 잘못된 점을 실지대로 진술하고 숨기지 말라. 말이 만약 채택할 만하면 포장할 것이요 만약 적합하지 않더라도 또한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그 수성(修省)하는 뜻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세종(世宗)께서 또한 한재(旱災)로 인하여 여러 도(道)의 물선(物膳) 진상을 명하여 정지시키시니, 어떤 사람이 정지시키지 말기를 청하자, 세종(世宗)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변이 이와 같은데 어찌 백성들을 괴롭혀서 물선을 진상하도록 하겠는가?’ 하셨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멀리는 은(殷) 나라 탕왕(湯王)과 주(周) 나라 선왕(宣王)을 모범하고, 가까이서 조종(祖宗)을 모범하여 천변(天變)을 삼가서 군자를 진용시키고 소인을 물리치며, 공역(工役)을 그만두고 낭비를 덜게 하소서. 이것이 모두 하늘에 응하는 실상입니다. 전일에 선정전(宣政殿)을 수리하도록 명하셨다가 조금 후에 이를 정지하게 하자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으니, 그 외의 급하지 않는 역사도 또한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만약 마지못할 사정이 있으면 보리와 밀이 익기를 기다려 이를 시작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중외의 죄수가 판결이 지체된 것이 많아서 사형에 이르지 않는 사람도 옥

에 같이 감혀 옥고로 원한을 머금고 있으니, 어찌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언(求言)하는 길을 넓히지 않을 수 없는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오려 그 지위에 있지 않다 하여 감히 할 말을 다 못하는 실정이니, 더구나 초야(草野)의 선비야 비록 할 말이 있더라도 상달할 길이 있으리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언로(言路)를 크게 열어 초야에 있는 미천한 선비들로 하여금 모두 품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만약 그 말이 옳으면 채용하여 포상(褒賞)하고 만약 채용할 수가 없더라도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또 각 고을의 진상(進上)에 대해서도 토산(土産)을 논하지 않아, 혹은 그 지방에서 생산하면서도 공납(貢納)하지 않으며, 혹은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공납을 합니다. 다만 공안(貢案)에 빙고(憑考)하여 공납하게 하므로 수령들이 부득이 백성들에게 징수하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상정청(詳定廳)으로 하여금, 그 토산인지를 상고하여 나누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장령(掌令 : 류세침(柳世琛))이 아뢴 바가 모두 옳습니다. 다만, 토산이 아닌 공물(貢物)은 세종(世宗)께서도 또한 상정(詳定)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공물은 각기 그 전결(田結)로 인하여 나누어 정해져 있으니, 비록 생산되는 곳이라도 또한 어찌 많이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공물(貢物)의 수량을 헤아려서 경비가 지나치지 않아야만 또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하였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수입을 헤아려 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또 대간(臺諫)이 아뢴 바,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하늘에 응하기를 실상으로써 해야 한다.’는 말은 아주 사리에 꼭 맞습니다. 만약 어떤 일의 실수로써 ‘어떤 징조가 응하게 된다.’고 말한다면, 교체(膠滯)되어 융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이미 여러 가지의 징조를 인사(人事)와 배합(配合)해 놓았으니,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공물(貢物)은 그 토산대로 바치게 하더라도 또한 어찌 국용(國用)에 모자라리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며, 백성이 부족하게 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는가?’ 하였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덜어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휴식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공물을 상정(詳定)하여 백성의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다.”〔중략〕
 하였다.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기전(畿甸：기내(畿內))의 백성들은 나뭇갓[柴場]으로써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 군(君)들의 분묘(墳墓)와 각 관사의 나뭇갓 이외에 남은 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왕이 법을 제정할 적에 사유(私有)의 나뭇갓은 금지하여 백성들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대군(大君)에게 나뭇갓을 하사하시니, 부근의 주민들이 땀나무를 할 수가 없어 본부(本府：사헌부(司憲府))에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다. 이극균도 또한 이렇게 말하니, 왕이 이르기를,

“여러 군(君)들에게 나뭇갓을 하사한 것은 유독 지금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성종(成宗) 때에도 또한 일찍이 나누어 주었던 것이요.”〔중략〕
 하고, 정언(正言) 이승로(李崇老)는 아뢰기를,

“장령(掌令：류세침(柳世琛))의 아뢰는 바,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한다는 한 마디 말은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己酉○御經筵掌令柳世琛曰近來天變屢是前年秋雷冬又雨水今年正月雨土雪太白書見古云人事失於下則天變應於上雖不可的指爲某事之應然弭災之道固不可忽也成湯之桑林六責周宣之雲漢八章皆恐懼修省之實帝王之所當鑑 太宗朝壽昌宮災下教曰近來雨水實多星文示變災異疊現私謁行而然邪用舍失宜而然耶其令中外民間疾苦政事闕失實陳無隱言若可採則固當褒獎如其不中亦不加罪其修省之意如此 世宗亦因旱災命停諸道進膳或請勿停 世宗曰災變若此豈可煩民進膳願 殿下遠法成湯周宣近法 祖宗以謹天變如進君子退小人罷工役省浮費此皆應天之實也前日命修宣政殿旣已停之民心胥悅其他不急之役亦請停罷如不得已則待兩麥成熟而舉之可也且中外獄囚多滯不至於死者同滯牢獄困囚舍寃豈不有累於好生之德乎且求言不可不廣在朝之臣尙且以不在其位不敢盡言况草茅之士雖欲有言無緣得達願 殿下大開言路使草茅下士皆得盡陳所懷如其可則採用而褒賞之如不可用亦不加罪則其於謹天戒之道亦得矣且各官進上不論土產或有產而不貢或不產而貢但憑貢案而責納之守令不得已收斂于民其弊不貲請令詳定廳考其產不產分定何如李克均曰掌令所啓皆是但不產貢物 世宗亦欲詳定而未果貢物各因其田結而分定雖所產處亦豈可多取但量其貢數而經費不濫則亦可無弊古云節用而愛民愛民之道在量入爲用耳且臺諫所啓謹天戒應天以實之語至爲切當若曰某事失某徵應則膠固不通矣然聖人旣以庶徵配於人事不可忽也世琛曰貢物隨其土產亦豈不足於用古云百姓足君誰與不足百姓不足君誰與足請蠲各官不產之貢使民休息 王曰今方詳定欲除民弊然聽一人之言而紛更固不可也〔中略〕
 世琛曰畿甸之民以柴場資生諸君墳墓及各司柴場之外餘地無幾 先王立法禁私占柴場欲其與民共之今賜大君柴場傍近居民不得樵採陳訴本府者多矣克均亦以爲言 王曰賜諸君

柴場非獨今時然也在 成宗朝亦嘗折給[中略]

正言李崇老曰掌令所啓謹天戒一語不可不留神 王不答

《燕山君日記 42, 26面》

연산군 8년 3월 27일(기해)

상참(常參)과 조계(朝啓)를 받았다.

○대사헌 김영정(金永貞)·대사간 안윤손(安潤孫)·사간 윤희손(尹喜孫)·집의 정인인(鄭麟仁)·장령 김진석(金晉錫)과 류세침(柳世琛)·지평 류응룡(柳應龍)과 최숙생(崔淑生)·헌납 신징(申澄)·정언 조옥곤(趙玉崐)과 이승로(李崇老) 등이 구수영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으므로 다시 아뢴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己亥○受常參朝啓○大司憲金永貞大司諫安潤孫司諫尹喜孫執義鄭麟仁掌令金晉錫柳世琛持平柳應龍崔淑生獻納申澄正言趙玉崐李崇老論啓具壽永事不聽更啓不聽

《燕山君日記 43, 18面》

연산군 8년 5월 1일(임신)

조하(朝賀)를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장령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학(四學)의 관원이 날마다 가르치는 것으로써 일을 삼아 일찍이 사진(仕進)하고 늦게 사퇴(仕退)하였으며, 예조(禮曹)에서도 월강(月講)을 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방법이 모두 구비하였었는데, 근일에 듣건대, 사학의 근원이 그 직무에 근심하지 아니하여 늦게 출사했다가 일찍이 파하여 학과(學課)의 권면이 해이해졌다 하니, 청컨대, 해조(該曹)에서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워 엄중히 규찰하도록 하소서.”

하고, 영사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요사이 유생(儒生)들이 학문은 연구하지 않고 이득과 녹(祿)부터 먼저 도모하여 의서(醫書)를 강습하는 습독관(習讀官) 등의 관직에 소속되기를 다투니, 이것이 비록 집이 가난하므로 봉록(俸祿)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만, 선비의 기풍(氣風)이 좋지 못합니다.”[중략]

하니, 왕이 이르기를,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울 필요는 없고, 다만 해조(該曹)에서 거듭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류세침은 아뢰기를,

“지난해부터 천변(天變)이 자주 나타나고 지금 또 가뭄 징조가 이미 나타나, 밀보리가 패지 못하고 농민의 식량이 또한 떨어져 가니, 어찌 추수(秋收)하기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경연(經筵)에 부지런히 납시고 유익한 말을

받아들이며 급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소서.”

하고, 이극균은 아뢰기를,

“평안도의 개천(价川)·영변(寧邊) 등 고을에 지진(地震)이 있었으며, 근일에는 한재(旱災)가 또한 심하므로 밀보리가 패지 못하여 백성들이 식량에 곤란받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류세침은 아뢰기를,

“지진의 변을 어찌 작은 재앙이라 하여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壬申受朔賀御經筵掌令柳世琛曰國家設學校爲儲養人才也往者四學官員日以訓誨爲事早仕晚罷禮曹月講勸學之方無不備具近聞四學官員不謹其職晚仕早罷勸課陵夷請令該曹別設科條嚴加糾察領事李克均曰近間儒生不究學問先謀利祿爭屬醫書講肄習讀等官此雖家貧爲祿而然士風不美[中略]

王曰不須別立科條但令該曹申明耳世琛曰自去年天變屢現今又早徵已形兩麥不穗農食亦匱豈可保其西成乎請勤御經筵延訪嘉言減省不急之費克均曰平安道价川寧邊等邑地震近日旱災亦甚兩麥不穗民尚艱食世琛曰地震之變豈以爲小災而忽之乎請謹天戒王不答

《燕山君日記 44, 1面》

연산군 8년 5월 15일(병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요사이 한재로 인하여 영선(營繕)을 정지시키고, 또 진성대군(晉城大君)과 휘순공주(徽順公主)의 집짓는 군사를 줄였는데, 지금 모두 도로 하게 하니, 토목(土木) 일은 하루 동안에 마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년은 한재로 인하여 밀·보리가 이삭이 패지 않으므로, 시가(市價)가 매우 험하고, 군량(軍糧)을 잇대기가 어려우므로 굶주리고 피곤하여 쓰러져 가는데도, 감역관(監役官)은 매질하며 징발 독촉하게 됩니다. 신등은 이 역사를 영구히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울곡식이 익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헌납(獻納) 신징(申澄)은 아뢰기를,

“근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니, 전하께서 심상(尋常)히 여겨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토목 역사보다 무거운 것이 없으니 아직 정지하여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丙戌御經筵掌令柳世琛曰近因旱災停營繕又減晉城大君徽順公主造家軍而今皆還舉土

木之役非一日可畢今年因早兩麥不穗市價甚賤軍糧難繼飢因顯頓而監役官鞭扑徵督臣等非謂永停此役姑待早穀成熟耳獻納申澄曰近年早氣太甚 殿下不當以尋常而忽之大抵勞民莫重於土木之役請姑停以答天戒王不答
《燕山君日記 44, 6面》

연산군 8년 7월 3일(계유)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 · 정언 윤경(尹耕)이 아뢰기를,

“정현조는 대신의 신분으로서 사특(邪惡)한 일을 행하였으니, 법사(法司)에서 추문(推問)한다면 마땅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도 즉시 죄를 자복(自服)하지도 않으니, 만약 조정과 대간을 조금이라도 기탄(忌憚)한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현조 때문에 따라서 한 사람도 모두 버려 둔다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비록 작불(作佛)의 일이라도 만약 정현조만 따라 한다면 반드시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장차 못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전하(殿下)께서 불교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은 마땅히 지위가 높고 임금에게 친근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니, 청하옵건대, 정현조와 따라 한 사람을 다 국문(鞫問)하여 죄를 과하소서. 불교를 금지하는 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으니, 지금 만약 이 일을 쾌히 다스린다면 비록 절목을 새로 세우지 않더라도 그 뿌리가 저절로 끊어질 것이니, 청하옵건대 엄히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류세침(柳世琛) 등이 또 아뢰기를,

“조계상(曹繼商)이 감찰(監察)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교리(校理)로 승진되었으며, 김준(金俊)과 신윤무(辛允武)는 모두 선전관(宣傳官)으로서 내력(來歷)이 없는데도, 김준은 단성현감(丹城縣監)이 되고, 신윤무는 의주판관(義州判官)이 되었습니다. 단성은 사송(詞訟 : 소송)이 번거로운 고을인데 김준은 일찍이 일을 다스려보지 않았으니, 어찌 능히 감당하겠습니까? 신윤무를 제수하여 올린 것도 또한 지나칩니다. 청하옵건대,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정미수의 일은 이미 일정한 법이 있으니, 청하옵건대 이를 국문하고 그 관계(官階)를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癸酉掌令柳世琛正言尹耕啓鄭顯祖以大臣行邪惡之事法司推問則固當羞恥而不卽承服若少忌朝廷與臺諫則何敢如是若因顯祖而並棄隨從人則人皆曰雖作佛之事若從顯祖則必無患將無所不爲矣如是則 殿下不崇佛教之意安在法當自貴近始請畢鞫顯祖及隨從人科罪禁佛之法載在大典今若快治此事則雖不新立節目根株自絕請痛治不聽世琛等又啓曹繼商爲監察未幾遽陞校理金俊辛允武俱以宣傳官無來歷而俊爲丹城縣監允武爲義州判官丹城詞訟煩劇俊未嘗治事何以能堪允武陞授亦爲濫矣請並改正鄭眉壽事既有定法請鞫之而

改正其資不聽

《燕山君日記 45, 1面》

연산군 8년 7월 20일(경인)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이 익위사의 관원과 홍석필(洪碩弼) 등의 일에 대하여 논제하니, 전교하기를,

“홍석필은 그 사람의 재간에 알맞은 곳에 옮겨 체차(遞差)하라.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좌우와 전후에 단정한 사람 아닌 이가 없다.’ 고 하였으나, 익위사의 관원은 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가운데는 반드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정승들에게 물어서 고쳐 제수하라.” 하였다.

○庚寅○掌令柳世琛論啓翊衛司官員及洪碩弼等事傳曰碩弼人器相當處移差古云左右前後無非正人翊衛司員非一其中必有不合者問于政丞改授

《燕山君日記 45, 5面》

연산군 8년 7월 22일(임진)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남걸(南傑)·박수영(朴守纓)·김윤옥(金允沃)·이덕부(李德溥)·최세충(崔世忠)·이광(李堯) 등은 모두 용렬한 무리들로서 비록 실직이 있었다고 하지마는 특별히 사진(仕進)한 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들의 녹봉을 올리고 또 내렸으니 어찌 이것을 실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행상호군(行上護軍)인 사람을 훈련원 정으로 삼을 수 있으며, 행대호군(行大護軍)인 사람을 부정(副正)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송자강은 직장(直長)으로써 상사를 당했으니 전례에 따라 당연히 관직을 제수해야 하지마는 그러나 마땅히 본래의 품계를 제수해야 하는데, 어찌 갑자기 정6품으로 승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윤형령(尹亨齡)은 다만 음직(蔭職)으로 가자하여 제수했을 뿐이고, 평소에 일을 겪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즘음을 당하여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제수해야 하고 구차스럽게 그 수효만을 채울 수는 없으니, 빨리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단정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려고 아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덕(輔德: 세자시강원의 종3품 벼슬)·필선(弼善: 세자시강원의 정4품 벼슬)과는 같지 않고 다만 시위할 뿐이다. 나를 시위하는 군사도 또한 어찌 모두 군자이겠느냐? 대신(大臣)들에게 의논을 하였으나 모두 쓸 만하다고 말하므로 들어주지 않겠다.”

하매,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壬辰○掌令柳世琛啓南傑朴守纓金允沃李德溥崔世忠李堯率皆庸流雖云有實職特以仕之多少上下其祿耳豈可以此爲實職而行上護軍者爲正行大護軍者爲副正乎宋自剛以直長

遭喪例宜授職然當授本品豈可遽陞正六品乎尹亨齡只授蔭加素不更事今當新設之際宜擇人以授不可苟充其數請速改正傳曰爾等啓以擇授正人則宜矣然非如輔德弼善只侍衛而已予之侍衛之士亦豈盡君子乎議于大臣而皆云可用故不聽更啓不聽 《燕山君日記 45, 7面》

연산군 8년 7월 27일(정유)

전교하기를,

“군기시(軍器寺)의 시우쇠〔正鐵〕 15근과 강철(剛鐵) 5근을 내전으로 들이라.”

하였다.

○장령 류세침(柳世琛)이 남걸(南傑) 등의 일을 아뢰고, 정언 조옥곤이 우수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丁酉傳曰軍器寺正鐵十五斤剛鐵五斤入內○掌令柳世琛啓南傑等事正言趙玉崐論禹樹事不聽 《燕山君日記 45, 9面》

연산군 8년 8월 25일(갑자)

조참(朝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헌납(獻納) 신징(申澄)이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는 수재가 심해서 완전히 농토를 잃은 곳도 간혹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외직(外職)에 있을 때 받든 사자(使者)를 보니 비록 한 명이라도 각 고을과 각 역(驛)에 폐를 끼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입거청(入居廳：변방의 이주민을 관장하던 관청)의 종사관(從事官)의 무리들은 빨리 돌아오도록 명을 내리소서.”

하고, 영사(領事)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은 것 같으니 입거청의 종사관을 보내지 마소서. 안접 종사관(安接從事官：백성들을 안접시키는 임무를 맡은 벼슬)은 파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하삼도의 실농(失農)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되므로 기근을 구제하는 계책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감사(監司)에게 하서(下書)하여 힘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하소서.

또 조관(朝官)은 비록 왕명(王命)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도 모두 폐단이 있으니, 목욕하고 성묘(省墓)하는 등속의 일은 모두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목욕하고 성묘하는 등속의 일은 과연 시급한 일이 아니지마는 그러나 병이 급해서 목욕하기를 청하는 사람은 금지할 수 없다.” 하였다.[중략]

○전교하기를,

“대간이 경연에서, 내가 오랫동안 주장(晝講)과 석강(夕講)을 폐지했다고 말하

고는 성종(成宗)께서 부지런히 경연에 납신 아름다움을 일컬으나,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이 같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도 어찌 사고가 없이 오랫동안 경연을 폐지했겠느냐? 대간은 나의 분부를 듣지 못하였느냐?”

하니, 류세침(柳世琛)과 신징(申澄)이 아뢰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병을 참으면서 경연에 납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평상시에 부지런히 납시기를 청한 것뿐입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나아가 아뢰는 적에는 반드시 옛일을 인용하는 것이니, 멀리는 당·우(唐虞)와 삼대(三代: 하(夏)·은(殷)·주(周))를 본받게 하고 가까이 조종(祖宗)을 본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종께서 학문을 부지런히 하였기 때문에 전하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한 것이옵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상(上)의 분부를 들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甲子受朝叅御經筵獻納申澄曰下三道水災爲甚或有全失農處臣嘗在外觀奉使者雖一人各官各驛貽弊不貲入居從事官之類請命速還領事李克均曰臺諫之言似是請勿遣入居從事官安接從事官則不可不遣掌令柳世琛曰下三道失農倍於他道救荒之策不可忽也請下書監司使盡心措置且朝官雖非奉命者皆有弊如沐浴掃墳請並勿許王曰如沐浴掃墳果非時急事然疾急請沐者不可禁[中略]

○傳曰臺諫於經筵言予久廢晝夕講因稱 成宗勤御之美人之賢愚不同故也然予豈無事而久廢乎臺諫未聞予教耶柳世琛申澄啓臣等非欲 殿下力疾御之但請平時勤御耳人臣進言於君必引古昔遠則欲法唐虞三代近則欲法 祖宗成宗勤學故欲使 殿下取法豈有他意今聞上教不勝惶恐

《燕山君日記 45, 17面》

연산군 8년 10월 15일(갑인)

왕이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류세침(柳世琛)과 정언 조옥곤(趙玉峴)이, 신승복·김계종의 일과 술 금지하는 일을 논계하였다. 류세침이 또 아뢰기를, “근일에 국가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물품을 내려주는 일이 너무 많으니, 용도를 절약하여 저축(貯蓄)을 늘이게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甲寅受常叅御經筵掌令柳世琛正言趙玉峴論啓慎承福金繼宗禁酒事世琛又曰近日國家賜宴賜與頗多請節用以廣儲積不答

《燕山君日記 46, 17面》

연산군 8년 10월 23일(임술)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사간 이의손이 아뢰기를,

“신승선의 시호(諡號)에 대하여 전교에 이르시기를, ‘마땅히 전례를 상고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대체로 시호라는 것은 실제 행적의 선악(善惡)에 따르는 것이니 끝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태상(太常 : 봉상시(奉常寺)의 별칭. 국가의 제사와 시호에 대한 일을 맡은 관아)에서 의정(議定)한 것은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하는 것을 골라서 내리는 것이니, 반드시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한번 그 일의 꼬투리를 열어 놓으면 후세에 다투어 임금이나 아비를 위하여 고치고자 할 것이므로, 그 후세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할 것입니다.”

하고,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시호를 의정함에는 마땅히 그 평생의 선악을 살피게 되니, 명칭을 유려(幽厲)⁸⁷⁾라고 한다면 비록 효자(孝子) 자손(慈孫)일지라도 백대(百代)가 되어도 능히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태상에서 의정한 것을 짐작해서 실행하기를 청합니다.”[중략]

하니, 왕이 이르기를,

“신승선은 큰 과실이 없는데 장(章)자가 부족한 것 같으므로 충(忠)자로 고친 것 뿐이다.” 하였다.

○경연관에게 전교하기를,

“신승선은 왕비의 부친인데 지금 이미 원자(元子)를 책봉하였으니 공로가 우리나라에 드러났다. 충자(忠)로써 시호를 짓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세좌(李世佐)와 특진관(特進官) 김응기(金應箕)·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승선은 비록 과실이 없지마는 유사(有司)가 의정한 시호는 옛날부터 이것을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주 나라 유왕과 여왕 같은 이는 나쁜 시호이지마는, 후세의 현인(賢人)과 제왕이 마침내 고치지 못했습니다.”[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장(章)과 충(忠) 두 글자는 진실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신승선은 국가에 공이 있으므로 처음에 충자(忠)로써 시호를 주고자 하였지마는,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니 시호를 짓는 법은 특별한 은혜의 예와 같지 않아서 이를 고치는 것이 불가하므로 해사(該司)의 의논에 따라 장성공(章成公)으로 하라.” 하였다.

○壬戌受常叅御經筵司諫李懿孫曰慎承善諡號教云當考前例爲之夫諡者實迹善惡之間終莫能改今太常所議擇其名實相合者而贈之不必改也今若一開其端則後世爭爲君父而欲改之其流弊莫甚掌令柳世琛曰議諡當觀其平生善惡名之曰幽厲雖孝子慈孫百歲不能改今太

87) 유려(幽厲) : 옛날의 나쁜 시호[惡諡號]로서 혼암(昏闇)한 것을 유(幽)라 하고, 잔학(殘虐)한 것을 여(厲)라고 하였음.

常所議請斟酌行之[中略]

王曰承善無大過失章字似不足故改之以忠耳○傳于經筵官曰承善 王妃之父今已冊封元子功在三韓諡以忠可也知事李世佐特進官金應箕蔡壽啓承善雖無過失有司所議之諡自古未有改之者如周之幽厲惡諡也而後賢後王終莫能改[中略]

傳曰章忠二字固有間矣承善功在國家故初欲贈諡以忠反覆思之諡法非如特恩之例改之不可故從該司所議章成公云

《燕山君日記 46, 21面》

연산군 8년 11월 4일(계유)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사간(司諫) 이의손(李懿孫)이 아뢰기를, “옛날에 고요(皐陶 : 순(帝)임금때 명신)는 요(堯) 임금의 덕행을 칭송하기를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의 착한 말을 따랐다.’고 말했으며, 또 이르기를 ‘좋은 말은 숨겨 두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덕행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근자에 윤대(輪對)를 설치한 것은 조종(祖宗) 때의 옛일을 본받은 것으로, 사람마다 모두 말할 수 있게 하여, 백성의 뜻을 임금에게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 법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일찍이 대간(臺諫)이나 서연관(書筵官)을 지낸 사람은 모두 입참(入參)시키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널리 받아들이는 뜻이 아닙니다. 일찍이 대간이나 서연관을 지낸 사람들을 아울러 입참시켜서 각각 생각한 바를 진술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대간은 각각 그 듣고 본 바를 모두 말할 수 있지만, 그밖의 관원들은 비록 서연관이나 대간을 지냈더라도 모두 마음속에 품은 것을 펼 수 없으니,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서연관과 대간(臺諫)을 지냈다면 그 생각한 바를 모두 진술했을 것이고, 또 그 언어와 거동을 살펴보면 현명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꼭 입참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윤대(輪對)를 10일에 한 차례씩 하는 것은 기한이 너무 머니, 5일에 한 차례씩 하기를 청합니다.”[중략]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수합(收合)해야 할 것이다.”

○癸酉受常參御經筵司諫李懿孫曰昔皐陶贊堯之德曰捨己從人曰嘉言罔攸伏人君之德莫

大於廣取衆論也近者設輪對所以法 祖宗故事人皆得以言之使下情上通其法可謂至矣教云曾經臺諫及書筵官皆勿令入叅此非廣取衆論之意也請令曾經臺諫及書筵官并入叅各陳所懷掌令柳世琛曰臺諫各以聞見皆得言之其他官雖經書筵臺諫皆不得展布所蘊此甚未便王曰已經書筵臺諫則其所懷皆已陳之且觀其言語舉動賢否可知不須入叅世琛曰輪對十日一次期限過遠請五日一次[中略]

王曰當更收衆議

《燕山君日記 47, 3面》

연산군 8년 11월 10일(기묘)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이, 술 금지하는 일을 논계(論啓)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류세침이 아뢰기를,

“위징(魏徵 : 당나라 태종 때의 명신)이 태종(太宗 : 당나라 태종)에게 간(諫)하기를, ‘정관(貞觀 : 당 태종 때의 연호)의 초기에는 천하가 굶주려서 쌀 한 말의 값이 비단 한 필에 해당해도 백성들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었던 것은, 폐하(陛下)께서 근심과 염려를 놓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요, 정관(貞觀)의 후기에는 쌀 한 말에 3전(錢)이 가고 바깥 문을 닫지 않을 정도인데도 백성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은, 폐하(陛下)께서 다시 염려함이 없이 급하지 않은 일을 많이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고 하였으니, 위징이 말한 것은 군주가 마땅히 깊이 생각할 바입니다. 금년의 흉년은 전고(前古)에 드물었던 바로서, 백성들이 모두 곤궁해서 장차 이산(離散)하기에 이를 것이니, 팔도(八道)에 효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거둬 염려하심을 알게 하시면, 백성들도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전하께서 몸소 절약하고 검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衣食)이 풍족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나라의 근본이 저절로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것을 팔도에 효유하라.”

하였다. 정언 오익념(吳益念)은 아뢰기를,

“풍저창(豐儲倉 : 궁중과 관청에 소요되는 곡식·종이 등을 관리하던 곳)과 군자감(軍資監 : 군수품의 저장 출납을 맡아 보던 관청)은 조정의 경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요, 내수사(內需司)는 궁중의 사사로운 용도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옛날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에 경림고(瓊林庫)와 대영고(大盈庫)란 것이 있었지만, 군주가 사사로운 창고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사사로운 용도가 있으면 내수사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옳은 일인데, 어찌 조정의 경비로써 사사로운 용도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보옵건대, 간혹 풍저창의 곡식을 옮겨서 내수사로 보내기도 하고 또 간혹 군자감의 쌀로써 포도나 배(梨)

등의 물품을 사서 대대로 들여보내기도 하니,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산미(酸味)가 있는 물품을 들고자 하시면 장원서(掌苑署)나 개성부(開城府)에서 바치는 것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어찌 반드시 군자감의 쌀로써 이것을 사들이옵니까? 어물(魚物)도 또한 사재감(司宰監)으로 하여금 대대로 들여보내게 하니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말하였다.

“이 말은 매우 타당하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

○己卯御經筵掌令柳世琛論啓禁酒事不聽世琛曰魏徵諫太宗曰貞觀之初天下飢饉斗米直匹絹民無愁嘆之聲者知陛下憂念不弛也貞觀之後斗米三錢外戶不閉而民愁嘆者知陛下不復念之多營不急之務也魏徵所言人主所當體念今年之凶前古所罕民皆貧窮將至離散請諭八道使民知 殿下重念之意則民自安矣請 殿下躬行節儉使民衣食足則邦本自固 王曰其諭八道正言吳益念曰豐儲倉軍資監則爲朝廷經費而設內需司則爲宮中私用而置昔唐德宗時有瓊林大盈庫人君有私藏甚非美事然若有私用取之於內需司可也豈宜用朝廷經費以供私用乎臣嘗見或移豐儲倉之穀輸於內需司或令軍資監米貿葡萄生梨等物入內此甚未便若欲進酸物則掌苑署開城府等處所供非不足何必以軍資監米貿之魚物亦令司宰監入內尤爲未便 王曰此言甚當今後勿爲

《燕山君日記 46, 17面》

연산군 8년 12월 4일(임인)

이보다 앞서 사헌부가, 사대부(士大夫) 집이 혼인할 때에 의복과 장식물이 너무 지나치다고 억제하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장령 김천령(金千齡)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서는 이 법이 행해진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폐기되어 행해지지 않았으니, 심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공문을 보내어 두루 효유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계하(啓下)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 지금 비로소 아뢰니 그 지체됨이 심하다. 그때의 대간(臺諫)이 그대로 재직중인 사람은 누구이며, 오랫동안 지체된 일을 지금 다시 아뢰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물어라.”

하였다. 대사헌 김영정(金永貞)·집의(執義) 김율(金律)·장령 김천령(金千齡)과 류세침(柳世琛)·지평(持平) 권주(權輅)와 방유령(方有寧) 등이 아뢰기를,

“그때의 대간이 그대로 재직중인 자는 신(臣) 영정과 세침 뿐이옵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새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일은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해서 아뢰)하는 공사(公事)의 예(例)와 같지 않으므로, 서울에서는 거행된 지가 벌써 오래이고 지방에서는 거행되지 않아, 김율(金律)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

기 때문에 신등이 비로소 깨닫고 이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체로 승전(承傳 : 임금의 뜻을 전함)하는 공사는, 만약 그날로 아뢰지 않으면 마땅히 2~3일 안으로는 아뢰어야 하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와서 아뢰니, 지체됨이 너무 심하다. 대간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평론하는 직책인데, 먼저 자신들이 착오를 저지르면 무엇으로써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 죄상을 국문하고 개차하라.”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회계하는 공사의 예가 아니며, 미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아뢰는 것이니, 이것은 사정(私情)이 없는 일이므로 개차하는 것까지는 무엇하지 않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언사(言事)로써 개차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지만, 공사(公事)를 그르쳐도 사정(私情)이 없었다고 용서한다면, 대간은 경계할 줄을 알 때가 없다. 김울(金崑)은 건의(建議)하기를 와서 아뢰었으니 과연 죄가 없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죄가 없다고 아뢰는 것이 아니요, 전원을 개차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하지 말도록 전교하라.”

하였다. 김영정(金永貞)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대간으로써 착오가 이와 같았으니, 직무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용서했으므로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壬寅前此司憲府以士大夫家婚嫁時服飾太濫請令裁抑命從之至是掌令金千齡啓京中則此法行之已久外方則廢閣不行甚未便請文移通諭傳曰此事啓下已久今始啓之其緩甚矣其時臺諫仍在者誰耶久滯之事今更建白者誰耶其問之大司憲金永貞執義金碑掌令金千齡柳世琛持平權輅方有寧啓其時臺諫仍在者臣永貞世琛餘皆新任但此事非如回啓公事例京中則舉行已久外方則不行碑以爲未便故臣等始悟而啓之耳傳曰凡承傳公事若不得卽日啓之當及二三日啓之今已踰七箇月始來啓之稽緩莫甚臺諫論人是非先自錯謬何以正人其推鞠改差政院啓非回啓公事例也有未盡條件故更來啓之此無情之事其如改差何如傳曰臺諫以言事改差則未便公事錯謬則無情然則臺諫無時知戒矣碑建議來啓碑則果無罪矣政院啓臣等非謂無罪全數改差非輕故敢啓傳曰勿改差教之永員等啓臣等以臺諫錯謬乃爾就職未安

傳曰已宥之不從

《燕山君日記 47, 15面》

연산군 8년 12월 10일(무신)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전교하기를,

“전에 ‘몸이 편안하지 못하여 다만 조강(朝講)만 받았으니, 만약 대간(臺諫)이 와서 청하거든 이 뜻으로 알리라.’ 했는데, 오늘 장령 류세침(柳世琛)이 삼시(三時 :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에 나아가기를 청하니 어찌된 일인가? 군주의 학문은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경연(經筵)이 비록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몸이 만약 편안하지 못하면 어찌 반드시 억지로 나아가겠는가? 이미 조강에 나아갔으니 겸하여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에 나아가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로써 류세침에게 전하라.”

하니, 승정원이 모두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입계(入啓)하려 했으면 신등이 진실로 응당 상의 전교를 전했을 것이오나 오늘 경연에 납시었을 때 직계(直啓 : 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뢰는 것)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戊申受常叅御經筵○傳曰前以氣候不平故但朝講若臺諫來請則令諭此意今日掌令柳世琛請御三時何哉人君之學不須汲汲也經筵雖云重事身若未寧豈必強御乎既御朝講兼御晝夕甚非難事以此傳于世琛承政院僉啓曰臺諫將欲入啓則臣等固當以上教傳之今日御經筵直啓故臣等未及傳之

《燕山君日記 47, 17面》

연산군 8년 12월 20일(무오)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간 민휘(閔暉)가 아뢰기를,

“도둑을 방지하는 방도가 성중(城中)에는 조치가 지극합니다만, 전일에 왕십리(往心里 : 왕십리(往十里)) 근처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둑이 죽이고 소를 빼앗아 갔으니, 이와 같은데도 금하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성문 밖에도 다시 도둑을 잡는 방도를 설치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掌令)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옛말에, ‘바깥 문을 닫지 않고 길에서는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도둑 막는 방도를 잘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의 사람이 없는 곳에 복병(伏兵)해 놓았다가 잡기를 청합니다. 내년 봄에는 백성의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 도둑이 반드시 갑절로 일어날 것이니, 도둑 막는 방도를 미리 도

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더 설치하는 법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그러나 법을 만들면 폐단이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하였다.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전자에 폐단이 있어서 좌경(坐更: 야경(夜警))하는 법을 고친 것은, 가난한 백성으로 장정이 없는 사람을 통기(統紀)에 적어 놓고 적간해서 속전(贖錢)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坊: 동리) 안에서 장정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로 하여금 좌경을 하게 하면 가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도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물어보라.”
 하였다.

○戊午御經筵大司諫閔暉曰弭盜之方於城中則措置至矣向者徃心里近處有牽牛而行者盜殺而奪之如此而不之禁可乎請於門外更設捕盜之方掌令柳世琛曰古云外戶不閉道不拾遺此皆善措置弭盜之方故耳請於門外無人處設伏以捕明春則民間尤艱盜必倍起至所以弭之方不可不預爲之圖 王曰加設之法令該司磨鍊然法立而弊隨以生世琛曰前者以有弊革坐更之法者以其貧民無丁者付統紀摘奸徵贖故耳若抄坊內有丁者使之坐更則可矣 王曰是亦有弊然且問之 《燕山君日記 47, 22面》

연산군 9년 3월 20일(정해)

경연에 납시었다. 변방에 옮겨진 백성[徙民]으로 도망해 온 김석(金石)이 난언(亂言)한 것을 보덕(輔德) 류세침(柳世琛)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였는데, 서원(書員) 박생(朴生)이 먼저 발언하고 향리(鄉吏) 유한(劉漢)이 뒤따라 말한 사실의 증거가 명백해져 모두 초사(招辭)에 자복하였다.

○丁亥御經筵徙民逃亡金石告亂言者命輔德柳世琛往鞫之書員朴生先發言鄉吏劉漢繼言之事證明白皆已服招 《燕山君日記 49, 9面》

연산군 9년 7월 6일(경오)

○노공필(盧公弼)을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左贊成兼判義禁府事), 이집(李諶)을 겸지춘추관사(兼知春秋館事), 류세침(柳世琛)을 수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 류송조(柳崇祖)를 사헌부 장령(掌令)에 임명하였다.

○庚午○以盧公弼爲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李諶兼知春秋館事柳世琛守司憲府執義柳崇祖司憲府掌令 《燕山君日記 50, 11面》

연산군 9년 9월 20일(계미)

○전교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영(李世英) · 집의(執義) 김효간(金效侃) · 장령(掌令) 류승조(柳崇祖)와 류희철(柳希轍) · 지평(持平) 강혼(姜渾)과 김극휼(金克幅) ·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류세침(柳世琛) · 사간 곽종원(郭宗元) · 헌납(獻納) 정사걸(鄭士傑) · 정언(正言) 서후(徐厚)를 서반(西班)으로 보내어 직위를 낮추어 서용(敘用)하라.”

○癸未○傳曰司憲府大司憲李世英執義金效侃掌令柳崇祖柳希轍持平姜渾金克幅司諫院大司諫柳世琛司諫郭宗元獻納鄭士傑正言徐厚送西降職叙用 《燕山君日記 50, 23面》

연산군 10년 3월 18일(기묘)

○전 대간 이세영(李世英) · 김효간(金效侃) · 류승조(柳崇祖) · 류희철(柳希轍) · 강혼(姜渾) · 김극휼(金克幅) · 류세침(柳世琛) · 정사걸(鄭士傑) · 서후(徐厚)를 의금부 옥에 가두고, 승지 박열(朴說) · 이계맹(李繼孟)을 시켜 가서 감독하여 태(笞) 40대 씩을 때리게 하였다.

○이세영을 전의(全義), 류세침을 남포(藍浦) · 정사걸을 김제(金堤), 서후를 음성(陰城), 류희철을 의성(義城), 윤원(尹源)을 금산(錦山), 강형(姜訶)을 비인(庇仁), 조유형을 결성(結城)에 부처(付處)하였다.

○己卯○下前臺諫李世英金效侃柳崇祖柳希轍姜渾金克幅柳世琛鄭士傑徐厚于義禁府獄命承旨朴說李繼孟往監決笞各四十○付處世英全義世琛藍浦士傑金堤厚陰城希渚義城源錦山訶庇仁有亨結城 《燕山君日記 52, 19面》

연산군 10년 6월 19일(무인)

○승지 박열(朴說) · 권균(權鈞) 등이, 최해 · 이세인 · 김숙정 · 이자견 · 이의손 · 강형 · 류세침(柳世琛) · 윤석보 · 성중엄 · 이적 · 이영원 등에게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고, 또 허원필(許元弼) · 이봉(李鵬) · 정홍우(丁洪祐) · 한우창(韓遇昌) · 한규(韓逵) 등에게 결장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戊寅○承旨朴說權鈞等監杖崔滄李世仁金淑貞李自堅李懿孫姜訶柳世琛尹碩輔成重淹李勳李永源等又監杖許元弼李鵬丁洪祐韓遇昌韓逵等 《燕山君日記 54, 16面》

연산군 11년 1월 6일(임진)

○전교하기를,

“전 대간(臺諫) 김영정(金永貞) · 김계행(金係行) · 류승조(柳崇祖) · 박권(朴權) ·

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류희철(柳希轍)·손중돈(孫仲墩)·류세침(柳世琛)·김숙정(金叔貞)·장순손(張順孫)에게 또 형신(刑訊)을 가하라.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명예를 닦는 것일 뿐, 진정이 아니다.”

하였다.

○壬辰○傳曰前臺諫金永貞金係行柳崇祖朴權成希哲洪脩柳希轍孫仲墩柳世琛金叔貞張順孫又加刑訊其所言皆釣名非其情也

《燕山君日記 57, 4面》

연산군 11년 1월 8일(갑오)

○전교하기를,

“어제 형신(刑訊)한 대간(臺諫)을 율(律)에 비추어 아뢰라.”

하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류세침(柳世琛)·류송조(柳崇祖)·류희철(柳希轍)은 예행(禮行)에 경로(經路)로 말미암을 것을 논계(論啓)하고, 김영정(金永貞)·김숙정(金淑貞)은 사천(私賤)을 내수시(內需寺)에 붙이는 것을 논계하고, 김영정·손중돈(孫仲墩)·박권(朴權)은 체아직(遞兒職)을 내시부(內侍府)에 옮기는 것을 논계하였으므로, 다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해당하니, 장(杖) 1백으로 결죄하고, 장순손(張順孫)·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는 신감채(辛甘菜 : 승검초)를 진배(進排)하는 것을 논계하였으므로, 오훼제서율(誤毀制書律)에 해당하니, 장 90, 도(徒) 2년 반으로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좃았다.

○甲午○傳曰昨日刑訊臺諫照律以啓義禁府啓柳世琛柳崇祖柳希轍啓禮行由經路金永貞金淑貞啓私賤屬內需寺金永貞孫仲墩朴權啓遞兒職移內侍府皆制書有違律決杖一百張順孫成希哲洪脩啓辛甘菜進排誤毀制書律決杖九十徒二年半從之

《燕山君日記 57, 5面》

연산군 11년 1월 9일(을미)

○밤에 내관(內官) 및 승지(承旨) 김준손(金俊孫)에게 명하여 금부(禁府)에 가서 박권(朴權) 등 장형(杖刑)을 받는 것을 감심(監審)케 하였는데, 준손이 돌아와 아뢰기를,

“장형을 받은 사람들은 불기가 부어오르되 터지지 않기도 하고, 잠시 터져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조금 붉어지되 터지지 않기도 하였으며, 류세침은 이미 문밖으로 나갔으므로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장(刑杖)을 잡은 나장(羅將)은 빠짐없이 수금(囚禁)하고, 금부의 형장을 감독한 당상(堂上)·낭청(郎廳)은 모두 추문(推問)하여 아뢰라. 세침이 이미 문밖으

로 나갔더라도 명을 받은 관원은 나가서 살펴야 할 터인데도 그리 하지 않았으니 준손도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乙未○夜命內官及承旨金俊孫詣禁府監審朴權等受杖處俊孫還啓受杖人或殿□上浮動不析或暫破流血或微赤不析柳世琛已出門外故未審傳曰執杖羅匠無遺囚禁禁府監杖堂上郎廳並推啓世琛雖已出門外承命官可以出審而不爾俊孫亦鞫之 《燕山君日記 57, 5面》

연산군 11년 1월 10일(병신)

전교하기를,

“무릇 죄로 다스리는 사람은 모름지기 매우 아프고서야 징계될 수 있다. 조금 붉어졌으며 터지지 않은 자는 가장 경(輕)하니 장(杖) 90을 더하고, 부어오르며 터지지 않은 자는 그 다음 가니 장 80을 더하고, 한두 군데 터진 자는 또 그 다음이니 장 60을 더하며, 류세침은 그 경중(輕重)을 상고하여 벌(罰)을 논하라.”

하였다.

○丙申傳曰凡治罪之人必須深痛可以懲戒微赤不析者最輕加杖九十浮動不析次之加杖八十一二處析破者又次之加杖六十柳世琛則考其輕重論罰 《燕山君日記 57, 5面》

연산군 11년 2월 8일(갑자)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류순(柳洵)·허침(許琛)·박송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김수동(金壽童)에게 명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상고하여 전 대간(臺諫)들이 논계(論啓)한 일을 입계(入啓)하게 하였다.

입계한 그 첫째는, 경신년(연산군 6, 1500) 10월 21일, 상(上)이 경회루(慶會樓)에 임어(臨御)하여 시사(試射)할 때에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 ‘북풍이 매우 찬데 오래도록 추운 곳에 계시니 마음에 참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아뢰는 일인데, 전교하기를,

“필상 등이 제가 풍한(風寒)이 싫어서 이처럼 말하였으니, 진실로 통렬히 징계해야 하겠다. 그 자손으로서 아직 죄받지 않은 자를 더 찾아내어 결장(決杖)하여 출송(出送)하라.”

하였다.

그 둘째는, 계해년(연산군 9, 1503) 11월 20일, 내한매(耐寒梅)를 글제로 하여 시를 짓도록 명하였으나, 대사헌(大司憲) 이자건(李自健)·집의(執義) 이계맹(李繼孟)·장령(掌令) 이맥(李陌)·지평(持平) 류희저(柳希渚)가 짓지 않은 일인데, 전교하기를,

“짓지 않을 뿐더러 창아(娼兒)로 글제를 삼아 짓도록 명함은 온편치 못하다고 말한 자가 있었으니, 아랫 사람은 임금의 명을 한결같이 좇아 어김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감히 이러한가? 그때에 내가 대비전(大妃殿)을 위하여 향연(饗宴)을 베풀어 술에 취해 희롱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였으니, 먼저 발언한 자를 자건(自健)에게 묻고, 시를 짓지 않은 자를 잡아 와서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그 셋째는, 임술년(연산군 8, 1502) 10월 28일, 경연(經筵)에서 기사관(記事官) 이현보(李賢輔)가 ‘정청(政廳)에 사관(史官)이 들어와 참석하게 하소서.’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국문하라.”

하였다.

그 넷째는, 정사년(연산군 3, 1497) 7월 6일, 경연에서 대간(臺諫)이 어사(御史)를 보내어 적간(摘奸)하기를 청하니, 지사(知事) 이세좌(李世佐)가, ‘그 간사(奸邪)를 적발하고서 어서를 보내어 추국(推鞠)함이 옳으며, 때없이 보내서 한 도(道)가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세좌는 뼈를 부수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그 다섯째는, 계해년 2월 15일, 경연에서 대사헌 최한원(崔漢源)이 ‘한어(漢語)는 경연에서 진강(進講)하기에 마땅하지 못하니,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경연 뒤에 보시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정언(正言) 정침(鄭沈)이 ‘임금의 일은 본디 많으므로 전문(專業)하기는 못하실 듯합니다.’라고 말한 일인데, 전교하기를,

“정침 등을 잡아와서 국문하라.”

하였으나, 순(詢) 등이 아뢰기를,

“그때에 굳이 간쟁한 자를 「시정기」(時政記)에 상고하여도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굳이 간쟁한 자를 나는 류세침(柳世琛)인 듯이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쓰지 않았는가? 임금의 일은 자잘하더라도 다 쓰면서, 이와 같이 변변치 않은 무리의 말은 쓰지 않았으니, 그때의 사관(史官)을 국문하여 치죄(治罪)하라.”

하여, 기사관 양계벽(梁季璧)·조계형(曹繼衡)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그 여섯째는, 정사년(연산군 3, 1497) 7월 29일, 경연에서 기사관 이유녕(李幼寧)이, ‘정청(政廳)에서는 전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며 정조(政曹)가 인물을 논계(論啓)한 말도 써야 하므로, 앞으로는 정청에 승전색(承傳色)이 드나들 때에 오가면서 참청할 것’을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유녕의 뼈를 부셨는지 상고하라.”
하였다.

그 일곱째는, 기미년(연산군 5, 1499) 1월 13일, 사간원 정언 윤은보(尹殷輔)가 ‘요사이 류자광(柳子光)이 석화(石花: 굴)·생복(生鰓: 날 전복) 따위 물건을 사사로이 바쳐서 임금의 은총을 굳히기를 바라니, 그 간사함이 아주 심합니다. 먼저 자광의 아첨한 죄를 다스려서 간신이 충애를 굳히려는 생각을 징계하소서.’라고 아뢰고, 사헌부 지평 권세형(權世衡)이 ‘자광이 함경도(咸鏡道)에 봉사(奉使)함은 해착(海錯: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을 위한 봉사가 아니거늘, 역로(驛路)의 피폐(凋弊)를 돌보지 않고서, 주군(州郡)에서 거두어 모으고 역마(駟騎)를 마음대로 징발하여, 3타(駄)토록이나 많은 것을 사사로이 바쳐서 아첨하였으니, 어찌 유식한 자가 차마 할 바이겠습니까?’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이처럼 말한 데에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니, 실정을 고할 때까지 형신(刑訊)하라.”
하였다.

그 여덟째는, 무오년(연산군 4, 1498) 9월 14일, 한치형(韓致亨)이, ‘어젯밤에 창경궁(昌慶宮) 자순 왕대비전(慈順王大妃殿)의 실화(失火)로 대비께서 반드시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사람이 삼가지 못한 데에 말미암았으나 재변(災變)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명일의 열무(閱武)를 멈추소서.’라고 아뢰고, 이극균(李克均)이 ‘신이 연경(燕京)에 갔을 때에 궁중에 밤에 화재가 있었는데, 황제가 조회를 보지 않으며, 신하들이 시사(視事)하기를 청한 지 4일 만에 따랐습니다. 요즈음 재이(災異)가 이러한데도 문득 이런 거조(舉措)가 계시니, 신은 바깥 사람의 소문에 온편치 못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뢰니, ‘화재는 사람의 소치로 말미암고 대비께서도 강녕하시며, 무사(武事)는 늦출 수 없으므로, 나는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교하며, 치형 등이 ‘어젯밤에 이와 같은 재변이 있었으니, 바깥 사람이 어찌 대비께서 안녕하신줄 아오리까?’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치형이 비록 한때는 재상이었으나 어찌 사리를 알겠으며, 극균이 중국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나 이런 일이 있고 없음도 알 수 없는데, 이처럼 말한 것은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있는 까닭이다. 그 자손에게 죄를 가하라.”
하였다.

그 아홉째는, 계해년 9월 2일, 대사간 류헌(柳軒)·사간 곽종원(郭宗元)·집의 류세침(柳世琛)·장령 류승조(柳崇祖)와 류희철(柳希轍)·헌납(獻納) 정사걸(鄭士傑)·정언 김언평(金彦平)과 서후(徐厚)가 ‘이점(李沾)이 백치(白雉)를 바쳤으니, 이는 아첨하는 것이므로 체직(遞職)하여 국문(鞫問)하소서.’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니, 실정을 고하기까지 형신(刑訊)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류세침·류승조가 ‘예행(禮行)을 경로(經路)로 감은 온편치 못하다.’고 논계(論啓)한 죄와 김영정(金永貞)·김숙정(金淑貞)이 ‘사천(私賤)이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됨이 온편치 못하다.’고 논계한 죄와 손중돈(孫仲墩)·박권(朴權)이 ‘체아직(遞兒職)이 내시부(內侍府)에 옮겨짐이 옳지 않다.’고 논계한 죄는 모두 장(杖) 1백이요, 장순손(張順孫)·성희철(成希哲)·홍수(洪脩)가 ‘신감채(辛甘菜)의 진상(進上)에 폐해가 있다.’고 논계한 죄는 모두 장 90·도(徒) 2년입니다.”

하니, 그대로 좃았다.

○甲子○命春秋館堂上柳洵許琛朴崇質姜龜孫金壽童考時政記前臺諫等論啓事入啓其一庚申十月二十一日上御慶會樓下試射時尹弼商韓致亨成俊啓北風甚冷久御寒處心實未安事傳曰弼商等自厭風寒如此言之固當痛懲加刷其子孫未受罪者決杖出送其二癸亥十一月二十日命製耐寒梅詩大司憲李自健執義李繼孟掌令李陌持平柳希渚不製事傳曰非徒不製以娼兒爲題命製未便事言者有之在下之人君上之命一從無違安敢如是其時予爲 大妃殿設宴酒酣戲事如此言之其先發言者問諸自健其不作詩者拿來鞠之其三壬戌十月二十八日經筵記事官李賢輔啓政廳請令史官入叅事傳曰鞠之其四丁巳七月初六日經筵臺諫請遣御史摘奸知事李世佐啓摘發其奸而遣御史推鞠可也不可以無時遣之使一道騷擾事傳曰世佐碎骨乎考啓其五癸亥二月十五日經筵大司憲崔漢源曰漢語於經筵不宜進講若不可廢則經筵後固當留覽正言鄭沉曰人君之事固多恐不能專業事傳曰鄭沉等拿來鞠之洵等啓其時固諫者考時政記無之傳曰固諫者予疑柳世琛何以不書乎君上事雖瑣屑皆書之如此不肖等輩之言則不書并鞠其時史官治罪記事官梁季璧曹季衡下義禁府其六丁巳七月二十九日經筵記事官李幼寧啓政廳非徒傳教而已政曹人物論啓之言亦當書之今後於政廳承傳色出入時往來叅聽事傳曰幼寧其碎骨乎考之其七己未正月十三日司諫院正言尹殷輔啓近柳子光私獻石花生鰻等物要結君恩其奸已甚請先正子光獻諛之罪以懲奸臣固寵之計司憲府持平權世衡啓子光之使於咸鏡道非爲海錯使也不顧驛路凋弊徵採州郡擅發駟騎多至三駄私自奉獻取諛豈有識者所忍爲事傳曰如此云云者必有情限輸情刑訊其八戊午九月十四日韓致亨啓昨夜昌慶宮 慈順王大妃殿失火大妃必警懼此雖由人不謹不可謂之非災也願停明日閱武李克均啓臣赴京時宮中夜有火災 皇帝不視朝群臣請視事四日後從之今者災異如是遽爲此舉臣恐外人所聞有未穩也傳曰火災由人所致 大妃亦康寧且武事不可稽緩予意以謂在所當爲致亨等啓昨夜有如此災變外人何以知 大妃之安寧事傳曰致亨雖一時爲相豈知事理克均據中原故事言之此事之有無亦未可知也而如此云云者其心有異故也其子孫加罪其九癸亥九月初二日大司諫柳軒司諫郭宗元執義柳世琛掌令柳崇祖柳希轍獻納鄭士傑正

言金彦平徐厚啓李坫獻白雉此容悅獻諛請遞而鞫之事傳曰此必有情限輸情刑訊○義禁府啓柳世琛柳崇祖以禮行由經路未便事論啓罪金永貞金淑貞以私賤屬內需司未便事論啓罪孫仲暉朴權以遞兒職移內侍府不可事論啓罪並杖一百張順孫成希哲洪脩以辛甘菜進上有弊事論啓罪並杖九十徒二年半從之
《燕山君日記 57, 14面》

연산군 11년 3월 2일(정해)

○도승지 권균(權鈞)을 명하여 영의정 류순(柳洵)·우의정 박송질(朴崇質)·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과 함께 밀위청(密威廳)에 가서 이자건(李自健)·이계맹(李繼孟)·류희저(柳希渚)·이맥(李陌)·윤은보(尹殷輔)·권세형(權世衡)·류세침(柳世琛)·류희철(柳希轍)·정사걸(鄭士傑)·김언평(金彦平)·서후(徐厚)·류세조(柳崇祖) 등을 추국(推鞫)케 하였는데, 돌아와서 공사(供辭)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자건이 참으로 술에 취했었다면, 그 시비를 분간하지 못하여 내한매(耐寒梅)라는 명제(命題)가 희롱에 가깝다는 말도, 반드시 말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다시 형신(刑訊)하라. 류희저·이계맹·이맥은 설사 술에 취해 짓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모두 장(杖) 80으로 처결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 류자광(柳子光)은 이미 만년(晩年)이 되었으니 석화(石花)·생복(生鰯)을 바침에 반드시 은총을 바라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어늘, 그때의 대간(臺諫)이 이와 같이 논간(論諫)한 것은 반드시 자신은 우족(右族: 지체가 높은 겨레)의 자제이고, 자광은 천예(賤隸)에서 기신(起身)하였다 하여 업신여긴 것이다. 윤은보·권세형이 본사(本司)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그때의 대간을 모두 상고하여 아뢰라. 광종원(郭宗元)이 백치(白雉)의 일을 먼저 발설하였으니, 종원은 비록 죽었으나 그 자손을 장 70에 처하여 해외(海外)로 출송(黜送)하라. 류세침·류희철·정사걸·김언평·서후는 수종(隨從)한 죄로 장 70에 처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

하였다.

○丁亥○命都承旨權鈞同領議政柳洵右議政朴崇質義禁府堂上往密威廳鞫李自健李繼孟柳希渚李陌尹殷輔權世衡柳世琛柳希轍鄭士傑金彦平徐厚柳崇祖等還啓供辭傳曰李自健若眞醉酒則其是其非懵然不知耐寒梅命題近戲之言必不能言也其更刑訊柳希渚李繼孟李陌借言醉酒未製可並決杖八十還發配所柳子光桑榆已晩其獻石花生鰯必無希恩市寵之計而其時臺諫如此論諫者必自以謂右族子弟而以子光起於賤隸而陵侮之也尹殷輔權世衡將本司意來啓則其時臺諫並考以啓郭宗元先發白雉之事宗元雖死其子孫決杖八十海外黜送柳世琛柳希轍鄭士傑金彦平徐厚以隨從決杖七十還發配所
《燕山君日記 57, 18面》

중종 3년 11월 10일(갑진)

○신용개(申用溉)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고, 정광필(鄭光弼)을 예조 판서로, 이점(李坵)을 한성부 판윤으로, 황맹헌(黃孟獻)을 호조 참판으로, 김전(金銓)을 예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이집(李諶)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류세침(柳世琛)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甲辰○以申用溉爲議政府左叅贊鄭光弼爲禮曹判書李坵爲漢城府判尹黃孟獻爲戶曹叅判金銓爲禮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李諶爲司憲府大司憲柳世琛爲司諫院大司諫

《中宗實錄 卷7, 18面》

중종 3년 11월 16일(경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과 집의 박광영(朴光榮)이, 기신재(忌晨齋)와 양종(兩宗) 및 내수사의 장리(長利)·혜명(惠明)·이승원(李承元)·이계복(李繼福) 등의 일을 논하였다. 시독관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장령 서지가 언사(言事)를 잘못했다 해서 체임되매, 사람들이 납간(納諫)하는 도량이 넓지 못함을 엿보는 듯합니다.”

하고, 세침(世琛)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혹 실중(失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용(優容)을 하여야 합니다. 우용한다는 것은 언로(言路)를 중히 여김이요, 언로를 중히 여김은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로의 통색(通塞: 통함과 막힘)은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니, 서지에게 복직을 명하지 아니하면 장차 막혀 버릴 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도 늦게 아뢴 것은 잘못이라 하고, 서지도 또한 고사(固辭)하기 때문에 체임한 것이다.”

하였다. 전경(典經) 민수천(閔壽千)이 아뢰기를,

“서지로서는 마땅히 피험(避嫌)해야 하오나, 상께서는 이를 우용하셔야 합니다. 서지가 말씀드린 바가 모두 평소에 품었던 바이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언사를 모두 계교(計較)하여 말하는 것은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하였다. 세침이 아뢰기를,

“류미(柳湄)를 지금 승지로 삼으시니, 정원은 능불능(能不能)을 시험해 보고서 취사(取捨)하는 곳이 아니므로, 학식이 없는 자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점(李坵)은 물망이 없고 또 번거로운 사무를 처결할 재주가 없는데, 그 직급을 초천하여 탁용(擢用)하심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庚戌 御朝講大司諫柳世琛執義朴光榮論忌晨齋兩宗內需司長利惠明李承元李繼福等事侍讀官李自華曰掌令徐祉言事失當而見遠恐人窺納諫之量不廣也世琛曰臺諫之言雖或失中固當優容優容者重言路重言路所以重 宗廟社稷也言路通塞所關大矣徐祉不命復職則恐將有壅隔之弊 上曰大臣亦以晚啓爲非祉亦固辭故遠之耳典經閔壽千曰爲徐祉者當避嫌 上則當優容也徐祉所言皆平昔所懷非有他也凡言事皆計較而發非國之福也世琛曰柳湄今爲承旨政院非試可乃已之地不可使無學識者處之李坫無物望且無剽煩之才不宜擢

《中宗實錄 卷7, 21面》

중종 3년 11월 22일(병진)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지난번, 국운이 중간에 비색(否塞)하여 대통을 이은 이가 무도하여 사류(士類)를 여지없이 멸망시키고, 그 해독이 생령(生靈)에게까지 흘렀습니다. 성종(成宗)께서 20여년 배양한 선비[正士]들이 잇달아 저자에서 주륙(誅戮)을 당하여 하루에도 10명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림(士林)이 기가 빠져 말하기를 싫어하였으므로, 수십 년 동안에는 반드시 바른 말하는 선비가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우용(優容)과 존중(尊寵)으로써 말하는 자를 인도하기를, 전대의 임금보다 10배로 하지 아니하시면, 위언(危言 : 바른 말)과 당론(讜論 : 바른 논의)이 마침내 전하의 좌우의 이르지 아니할 터이온데, 어찌하여 역명(逆命)의 하교와 무승(務勝)·망상(罔上)한다는 말씀을 계속 내리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입을 막고 혀를 묶는 것이므로 화패(禍敗)가 다가옴을 장차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명·무승·망상이라는 말을 전하께서는 필시 ‘우연히 한 말이니 어찌 해가 되겠는가?’ 하시겠으나, 그러나 한 생각의 잘못에도 오히려 화를 일으킨다 하는데, 세 가지씩 되는 실언에 어찌 그 결과가 없겠습니까?

근자에 천재(天災)가 자주 나타나고 연사(年事)가 계속 풍년들지 아니하며, 태백(太白)이 나타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르며, 사망이 굶주리되 서·북이 더욱 심하여 하늘의 꾸지람과 백성들의 곤고함이 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조금도 가의(加意)를 하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적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혜명(惠明)같은 자는 하나의 요사한 여승[尼]일 뿐인데, 멀리 내쫓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승원(李承元)은 침탈(侵奪)한 여독이 지금까지 백성에게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석방하시니, 용법(用法)이 이와 같아서야 어떻게 권징(勸懲 : 권선징악)을 하겠습니까?

양종(兩宗)은 비록 도성(都城)에서는 없어졌다 해도 장인(掌印)의 권한은 여전히

하니, 그 근본을 아주 끊어 버려야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리어 시행치 아니하십니까? 이점(李玷)은 나약하여 지조가 없고, 그 그릇이 지위에 알맞지 아니하며, 류미(柳湄)는 재상을 잘 섬겨서 조정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크게 정치에 방해되는 것이라, 논집(論執)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천청(天聽)이 막연하시니, 신등은 실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丙辰○大司諫柳世琛等上疏略曰頃者國運中否繼體不君穢夷士類毒流生靈 成廟二十餘年培養正士相率而伏礪於市肆者日以十數士林奪氣以言爲諱以爲數十年間必無直言之士 殿下所以優容尊寵導之使言者不十倍於前代之君則危言讜論終不至於 殿下之左右奈何逆命之教務勝罔上之 命相繼而下是足以杜人之口結人之舌禍敗之來將有不可勝言者矣夫逆命務勝罔上之語 殿下必以爲偶一言之豈足爲害然而一念之誤猶足致禍三言之失豈無其終近者天災數見歲比不登太白之見自秋踰冬四方飢荒西北爲甚天譴民困又至於此 殿下略不加意臣等竊危之如惠明一妖尼耳難於遠黜豈無所自乎李承元侵漁遺毒至今在民反且釋之用法如此何以勸懲兩宗雖絕於都城掌印之權自若痛斷根株 殿下何憚而不爲乎李玷懦弱無守器不稱位柳湄善事宰相干譽朝廷凡此五者皆妨政害治之大者而論執逾月 天聽邈然臣等不勝缺望

《中宗實錄 卷7, 22面》

중종 3년 11월 26일(경신)

조강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대사간 류세침(柳世琛)과 장령 이장곤(李長坤)이 전의 일을 논계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폐조(廢朝) 때에 죄를 입은 문사(文士)에게 특별히 자급을 가하였으니 이것이 상의(上意)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하물며 아랫 사람의 말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토록 하소서.”

하였다. 세침(世琛)이 아뢰기를,

“듣건대, 삼포왜변(三浦倭變)은 폐조 때 실어(失御 : 잘 통어하지 못함)한 소치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평한 세월이 오래 되었으므로 변장(邊將)된 자가 편안한 데 젓어 있으니, 남방의 화를 장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연변의 첨사(僉使)·만호(萬戶)는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골라서 차견(差遣)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자(加資)에 관한 일은 비록 아랫 사람의 말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 또한 나의 뜻이며, 또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졌으니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庚申 御朝講講訖大司諫柳世琛掌令李長坤論啓前事長坤啓曰廢朝時被罪文士別加資級此出於上意猶爲不可况因下人之言乎請改正世琛曰聞三浦倭變此廢朝時失御所致也今昇平日久爲邊將者狃以爲安南方之禍將不可勝言沿邊僉使萬戶請擇有武才者差遣 上曰加資事雖因下人之言亦是予意且成命已下不可改正
《中宗實錄 卷7, 23面》

중종 3년 12월 5일(무진)

대사헌 이집(李誥)과 대사간 류세침(柳世琛)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근일 역당(逆黨)을 배어 버렸으니 이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옥사(獄辭)에 대신(大臣)을 핍박하는 말이 있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 청컨대 그 추안(推案)을 보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그를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추안을 보고 아뢰기를,
“순정(順汀)이 아는 일은 아닌 듯하오나, 대신이 간당(奸黨)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신등의 뜻으로는 마땅히 조정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정이 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문(推問)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었으니 윤휴하지 않았다. 류순정이 아뢰기를,
“신의 정상을 성상(聖上)께서 통촉하여 주시니 상은(上恩)이 지중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를 입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사오니, 청컨대 신의 죄를 다스려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을 이미 말하였으니, 경은 안심하라.”
하였다. 네 번이나 아뢰었으나, 또한 윤휴하지 않았다.

○戊辰大司憲李誥大司諫柳世琛等合司啓曰近日剪除逆黨此國家大事臣等聞於獄辭有逼大臣之語未知何事請見推案傳于政院曰其示之臺諫見推案啓曰似非順汀所知然大臣爲奸細之徒籍口臣等意當與朝廷議而處之傳曰非順汀所知之事是以不推耳臺諫復啓不允柳順汀啓曰臣之情狀 聖明洞照 上恩至重罔知攸措然今不被罪未能安心請治臣罪傳曰予意已言之卿其安心四啓亦不允
《中宗實錄 卷7, 32面》

중종 3년 12월 7일(경오)

대사헌 이집(李誥)과 대사간 류세침(柳世琛) 등이 합사하여 류순정의 일을 여섯 번 아뢰었으나 윤휴하지 않았다.

○庚午大司憲李諱大司諫柳世琛等合司以柳順汀事六啓不允 《中宗實錄 卷7, 33面》

중종 3년 12월 18일(신사)

○대사헌 이집(李諱)과 대사간 류세침(柳世琛) 등이 합사하여 이졸·완천정(完川正)·이승윤(李承允)·우윤공(禹允功) 및 문관의 가자에 관한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졸(李茁)은 화국(禍國)의 죄로써 논할 수는 없고, 다만 언어의 실수만 있을 뿐이다. 문관의 가자와 우윤공(禹允功) 등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수의하리라. 나머지는 들어 줄 수 없다.”

하였다.

○辛巳○大司憲李諱大司諫柳世琛等合司啓李茁完川正李承允禹允功文官加資事傳曰李茁不可論禍國之罪但有言語之失耳文官加資及禹允功等事當議于大臣餘不允

《中宗實錄 卷7, 40面》

중종 4년 1월 8일(신축)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류세침(柳世琛) 등이 상소하기를,

“천도(天道)는 지성하여 변함이 없으므로 능히 극추(極樞)를 알선(斡旋)하여 만물을 성취하게 하고, 왕자(王者)는 정성을 한결같이 하여 거짓이 없으므로 능히 기무(機務)를 통섭(統攝)하여 모든 정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인군으로서 누가 선치(善治)를 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었던 것은, 병통이 ‘이름만 따르고 실속이 없는 데’ 있으므로, 허위가 날로 불어나고 상하가 서로 속이기만 하다가 마침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비기(丕基: 제왕의 큰 기업)를 재조(再造)하시어 개연히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니, 위대한 일이라 하겠습니까마는, 그 구치(救治)하는 정성이 이르지 못하는 바 있으실까 염려되므로, 감히 일곱 가지 일로써 조진(條陳)하여 정성에 귀착시킵니다.

1. 간쟁(諫諍)을 청납(聽納)하는 일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치세(治世)와 난세(亂世)의 시초에는 반드시 맹아(萌芽)와 상징(象徵)이 있다 합니다. 직언(直言)하는 길을 열어 시청(視聽)을 넓히는 것은 치세의 맹아이고, 첩유(諂諛)를 달갑게 여기다가 근습(近習)에 가리게 됨은 난세의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인군의 즉위 초에는 반드시 감언(敢言)하는 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인주(人主)가 진실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간하는 말을 청납한다면, 선비들이 모두 그 도를 행하기를 즐기어 다투어 충직(忠直)하게 되고, 상하의 뜻이 통하여 유원(幽遠)

의 정이 창달하게 되는 것이니, 다스려지지 아니하고자 한들 되는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직간(直諫)을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선비들이 모두 그 뜻에 영합(迎合)하여 그 지위만을 도둑질하고 십보(十步)의 일도 모두 속이게 되는 것이니, 어지러워지지 아니하고자 한들 되는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오래지 아니하여 언관(言官)들이 계속 복합(伏閣)을 해도 천청(天聽)이 오히려 막연하시다가 마침내 온 조정이 다투게 된 연 후에야 마지못해 따르시니, 신등은 회록보신(懷祿保身)하는 자가 전하의 성색(聲色)만을 엿보고 말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데도 전하께서는 납간(納諫)하는 성의가 있다 하시겠습니까?

1. 명기(名器 : 관작)를 아끼는 일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명기란 것은 조정의 공기(公器)로서 제왕(帝王)이 세상을 격려하고 재질을 연마하여 어진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므로, 진실로 나의 사유(私有)라 하여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기를 중히 여기면 조정이 높아지고, 명기를 천히 여기면 조정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등이 보건대, 폐조(廢朝)에 구로(舊老)들이 쟁하여 보필 하다 살육(殺戮)되어 거의 다 없어지고, 총애하는 사람만을 이끌어들이 잡되게 뒤쫓아서 베풀다가 마침내 난망(亂亡)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징험인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그 한 관작(官爵)을 한 사람에게 임명함에 있어서도, 진실로 마땅히 난신(難慎 : 어려워하여 신중히 함)하여야 할 것인데, 명망이 가벼운 사람을 갑자기 승급시켜 경재(卿宰)에 참열하게 하시고, 용열 무능한 자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시매, 명기의 천함이 이와 같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어진 이를 존중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신 듯 여겨집니다.

1. 자목(字牧 :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한선제(漢宣帝)가 말하기를, '서민(庶民)이 전리(田里)에서 편안하여 근심과 한탄이 없는 것은 정사가 평온하고 송사가 다스려진 때문이다. 나와 더불어 함께 다스릴 자는 오직 선량한 2천석(二千石 : 수령을 가리키는 말)인저!'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항상 이 임무를 중하게 여기시고 인대(引對)하여 자목의 방도를 묻기에 이르시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본다면, 전조(銓曹)에서 사람의 현우(賢愚)를 묻지 않고서 만약 참직(參職 : 참상의 직위)에 오르면 으레 모두 주의(注擬)하고, 전최(殿最)⁸⁸에 이르러서는 감사(監司)된 자도 또한 '어느 수령은 누구의 인아(姻婭)이며 어느 재신(宰臣)은

88) 전최(殿最) : 각도 감사가 관하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우열(優劣)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상을 최(最), 하를 전(殿)이라고 한다.

누구의 교칠(膠漆 : 친한 친구)이다.’라고 합니다. 정사는 맹호(猛虎)보다 가혹한데도 예언(譽言)은 날마다 들어오고, 난봉(鸞鳳) 같은 명예는 얻었으나 백성은 실상 원망하고 있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애민(愛民)하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1. 장오(贓汚)를 엄중히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혁명(革命)을 흉내 낸 자는 죽인다.’⁸⁹⁾[竊鉤者誅] 하였으니, 이는 염치(廉恥)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뢰(無賴)한 소민이 기한(飢寒)에 절박하여 남의 재물을 훔쳤다면 반드시 나무와 밧줄에 얽혀 태추(苔筯)를 받다가 죽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탐리(貪吏)의 범장(犯贓)이 어찌 다만 절구(竊鉤) 뿐이겠습니까?

지난번 폐조(廢朝) 때부터 염치의 도가 없어져서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관의 물건을 도취(盜取)하는 탐오(貪汚)가 풍습을 이루었으니, 검거되어 추문을 받은 자는 겨우 백 명 중 1~2명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전하께서 간곡하게 은대(恩貸)를 가하셨습니다. 승원(承元)의 죄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나도록 논청(論請) 하였으나 아직 천청(天聽)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법이 간장(奸贓)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소민(小民)에게만 행하게 되는 것이라, 신등은 전하께서 염치를 기르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신 바가 있는 듯합니다.

1. 분경(奔競 : 엽관 운동)을 억제하는 일입니다. 옛날 선비는 지조와 절개를 숭상하여 요행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유(韓維)가 도를 지키며 문언박(文彦博)이 이를 천거하였으며, 유기(劉器)가 고요히 물러가매 온공(溫公)은 그를 인진(引進)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습(士習)이 바르지 못하고 분경이 풍습을 이루어, 선비된 자가 거의 부형의 세를 빙자하고 고구(故舊)의 친분에 의탁하여 찾아다니며, 아침으로 구하고 어두운 밤에 애걸을 하여, 제배(除拜)하는 날에는 쪽지가 공공연하게 행하니, 그 탐비무치(貪鄙無恥)함이 확금(攫金)⁹⁰⁾보다도 심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태학(太學)에 들어가 봉액(縫掖)⁹¹⁾을 입은 자도 또한 경의(經義)의 궁구를 일삼지 아니하고 오직 매진(媒進)만을 힘써 방계곡경(旁谿曲逕)⁹²⁾을 다투어 모방하고 있으니, 사습의 훼손됨

89) 혁명(革命)을 흉내 낸 자는 죽인다 : 「장자」(莊子) 거협(胥篋)에 나오는 ‘혁명(革命)을 흉내 낸 자는 형벌을 받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는 제후가 된다」[竊鉤者誅 竊國者爲諸侯]에서 인용된 듯하나, 본문에 ‘이는 염치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해석은 잘 알 수가 없음. 「장자」의 이 대목은 대체로 ‘작은 도둑은 벌을 받지만 큰 도둑은 부귀를 누린다는 것을 풍자한 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임.

90) 확금(攫金) : ‘확금자 불견인(攫金者不見人)’의 준말로써, 돈에 환장한 자는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말. 또는 물욕에 가리우면 의리·염치를 모른다는 말.

91) 봉액(縫掖) : 선비들이 입는 겹옷으로 옆이 넓게 터진 도포. 봉액지의(縫掖之衣).

92) 방계곡경(旁谿曲逕) : 바른 길을 밟지 않고 굽은 길을 간다는 뜻인데, 남에게 기대어 출세하기를 도모함을 가리키는 말.

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선비를 격려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신 바 있는 듯합니다.

1.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대저 이단의 설(說)은 거짓을 팔아 참을 가장하여, 옳은 것 같으면서 실은 그른 것입니다. 깊이 배척하고 통절히 거절해도 오히려 제거되지 못할 듯한데, 지금 요사스러운 여승(女僧) 혜명(惠明)이 좌도(左道)를 가지고 백성을 미혹시키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즉위 초에 마땅히 천주(天誅)를 일으켜 민청(民聽)을 엄숙히 했어야 할 일인데, 그 난육(卵育)함이 지금에 이르고 있으니, 이는 전하께서 크게 실형(失刑 : 형벌의 적용이 마땅함을 잃음)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요망한 여승은 지극히 비천한 것이라, 태학생(太學生)의 봉장(封章 : 봉함하여 올리는 상소)과 대간·시종·경악(經幄)의 대신이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하였는데도 전하께서 홀로 제거하지 않으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난번에 전하께서 양종(兩宗)을 회복하고자 이미 치곤(緇髡 : 치의, 삭발한 중)의 규점(窺覘)을 열어 주시고, 지금 혜명(惠明)을 제거하지 아니하심은 더욱 그 근저(根柢)를 북돋운 것이니 신등은 절통하옵니다. 신등은 전하의 위도(衛道 : 정도를 호위함)하시는 마음이 과연 정성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1. 시종(始終)을 근신하는 일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종말을 처음부터 근신하라.'〔謹終于始〕하였습니다. 시작을 근신하지 아니하고 좋은 종말이 있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위로 조종 부탁(祖宗付托)의 중대함을 이으시고, 아래로는 신민 식목(臣民拭目 : 신민이 눈을 씻고 바라보면서 기대함)의 촉망을 지고 계시므로, 마땅히 그 시작부터 근신을 하여 그 종말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失政)이 위에 진달한 바와 같으니 어찌 그 시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당 태종(唐太宗)은 바른 말 듣기를 즐겨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쳤다고 하니 납간(納諫)하는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갓 헛된 이름만 일삼고 성실을 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는 것이 문득 위징(魏徵)의 상소에 나타나 있었으니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성(誠) 한 자로써 7조의 강령을 삼았습니다. 전하께서 성(誠)으로써 납간(納諫)하시면 충직한 말이 날마다 진달(進達)되어 아래로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성(誠)으로써 관직을 임명하시면 현량하고 지혜 있는 사람만이 등용되어 명기(名器)가 저절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守令)의 인선을 중하게 하시면 민생(民生)이 두터워질 것이며, 장리(贓吏)의 법을 엄하게 하시면 탐풍(貪風)이 거두어질 것이니, 사습(士習)을 바로잡고, 이단(異端)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정사의 시행과 한 호령의 발표(發布)가 모두 전하의 지성에 있는 것이니,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강(李絳)이 헌종(憲宗)에게 말하기를, ‘폐하(陛下)께서 신을 이목(耳目)의 지위(어사대부(御史大夫))에 두시었는데, 신이 만약 좌우를 외피(畏避 : 두려워 피함)하여, 몸을 아끼고 말씀드리지 아니하면, 이는 신이 폐하를 저버리는 것이며, 말씀을 드려도 폐하께서 듣기를 싫어하시면 이는 폐하께서 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의 관직은 이름이 간관(諫官)이온데, 어찌 숨기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말씀을 다 드리지 아니하여 전하의 이목(耳目)의 책임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소로써 전달한 7조를 보니, 모두가 선(善)한 말이다. 그 중에도 ‘시종을 근신해야 한다, 지성스러워야 한다.’는 등의 말은 더욱 아름답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시작은 좋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靡不有初 鮮克有終)하였으니, 나의 불곡(不穀)으로서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할지언정 이 말을 감히 잊기야 하겠는가? 너희들은 이 강의 말을 본받아 그 임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자 하니, 만약 실로 이러한 정성이 있다면 이는 국가의 복이다. 말하는 바가 만약 받아들일 만하다면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너희들은 이 뜻을 잊지 말고 마땅히 다 말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辛丑○司諫院大司諫柳世琛等上疏曰天道至誠不貳故能斡旋樞極而萬物得以遂王者誠一無偽故能統攝機務而庶政得以理古之人君孰不欲善治然而不能者患在於循名而無實故虛偽日滋上下相欺而終於不可救伏惟 殿下再造丕基慨然圖治可謂盛矣然其求治之誠慮有所未至故敢以七事條陳而歸之於誠曰納諫諍臣等聞理亂之始必有萌象開直言廣視聽理之萌也甘諂諛蔽近習亂之象也自古人君卽位之初必有敢言之士人主苟能虛懷納諫則士皆樂行其道競爲忠讜而上下之志通幽遠之情達欲無理得乎苟拒而不納則士皆阿意迎合以竊其位而十步之事皆可欺也欲無亂得乎 殿下臨御未久而言官相繼伏閣 天聽猶邈終於於舉朝爭之然後勉而從之臣等竊恐懷祿保身者有以窺 殿下聲色而不盡言也如此而謂 殿下有納諫之誠乎曰惜名器臣等聞名器者朝廷公器帝王所以礪世磨鈍以待賢者固不可謂我私有而授之非人是以名器重則朝廷尊名器賤則朝廷卑臣等觀廢朝舊老諫輔殺戮殆盡引進嬖倖雜糅混施而終底亂亡此其驗也今 殿下其命一官爵一人固當難慎而驟陞望輕者備諸列卿庸鄙無能者典守方面名器之賤一至於此臣等恐 殿下尊賢之誠有所未至也曰重字牧臣等聞漢宣帝有言曰庶民安於田里而無愁嘆者政平訟理也與我共理者其惟良二千石乎今殿下常重是任至引對問以字收之方其恤民之意至矣然以今觀之銓曹不問賢愚若陞叅職則例皆注擬而至於殿最爲監司者亦曰某守某之姻婭也某宰某之膠漆也政苛猛虎而譽言日至

沽名鸞鳳而民實怨咨臣等恐 殿下愛民之誠有所未盡也曰嚴賊汚古者竊鉤者誅所以養廉也今無賴小民迫於飢寒竊人財物則必嬰木索受笞箠死而不恤况貪吏犯賊豈但竊鉤哉頃自廢朝廉恥道喪攘奪人財盜取官物貪汚成風其舉劾見推者僅百中一二而 殿下曲加恩貸至於承元之罪論請逾年而未回 天聽是 殿下之法不行於奸賊而獨行於小民臣等恐 殿下養廉之誠有所未至也曰抑奔競古者士尚操節不求僥倖故韓維守道而彥博薦之劉器之靜退而溫公進之今士習不正奔競成風爲士者率皆籍父兄勢托故舊親諂求媚謁乞哀昏夜至於除拜之日片牘公行其貪鄙無耻甚於攫金而恬不知愧入大學衣縫掖者亦不事窮經唯務媒進旁谿曲逕爭相倣效士習之毀孰甚於此臣等恐 殿下礪士之誠有所未至也曰關異端夫異端之說售僞而假真似是而實非深排痛舐惟恐不去今妖尼惠明執左道惑民罪不可賞 殿下卽位之初當致天誅以肅民聽而卵育至今此 殿下失刑之大者也一公魔尼至賤也而大學生上封章臺諫侍從經幄大臣皆曰可去而 殿下猶不去之獨何耶曩者 殿下欲復兩宗已開縉髡之窺覘而今不去惠明益培其根抵臣等竊痛焉臣等未知 殿下衛道之心果在於誠乎曰謹終始書曰謹終于始始之不謹而能有終者未之有也 殿下上承 祖宗付托之重下負臣民拭目之望當謹其始以圖其終然當今失政如上所陳則豈可謂有其始乎唐太宗喜聞直言聞過必改可謂納諫之主矣然徒事虛名而不主於誠故罔終之漸遽形於魏徵之疏甚可懼也故臣等以一誠爲七條之綱 殿下以誠而納諫則讜言日進而下無壅塞以誠而命官則賢智登用而名器自尊至於重守令之選而民生厚嚴賊吏之法而貪風戰士習可正也異端可排也一政之施一號之發皆在於 殿下之至誠 殿下可不深念之乎昔李絳言於憲宗曰陛下置臣於耳目之地若臣畏避左右愛身不言是臣負陛下言之而陛下惡聞是陛下負臣臣等官以諫爲名寧有隱而不言言而不盡以負 殿下耳目之任乎傳曰觀䟽陳七條皆善其曰謹終始曰至誠等語尤嘉詩云靡不有初鮮克有終予以不穀猶恐不及敢忘斯言爾等效李絳之言欲不負其任若實有是誠則國家之福也所言如其可納予安敢違拂爾等不忘此意當盡言無諱

《中宗實錄 卷7, 45面》

중종 4년 1월 10일(계묘)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장령 이자화(李自華)가 완천정(完川正)·윤순(尹珣)의 일을 아뢰고, 영사 류순(柳洵)이 또 아뢰기를,

“신이 추관(推官)이 되어 보건대, 완천정은 과연 아버의 병 때문에 소경에게 문복(問卜)을 하였습시다. 그러나 그가 오지 아니할 것을 염려해서 한형윤(韓亨允)의 말로써 청하였은즉 그가 맹인(盲人)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부도(父道)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맹인에게 경솔히 물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류순은 체임(遞任)하도록 하라. 완천정의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침(世琛)이 아뢰기를,

“관직을 줄이고자 함은 오로지 비용을 줄이려 함인데, 다만 조종조(祖宗朝)에서 관사를 두어 직무를 나누고, 각각 그 책임을 맡고 있으니 지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균관(成均館)과 승문원(承文院)에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원을 하였습니다. 성균관은 풍화(風化)의 근원이요, 승문원은 사대(事大)를 맡은 곳입니다. 그런데 감원을 하면 학교를 중하게 한다 할 수 없고, 사대도 중하게 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김응기(金應箕)는 아뢰기를,

“각 관사의 인원이 비록 많다고는 하나,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나 군적낭관(軍籍郎官)은 모두 다른 관원이 겸직을 해야 되므로 감할 수 없으며, 또 인원이 많은 곳을 감원하게 됨으로써 성균관과 승문원에서 또한 모두 감원을 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불가한 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관직과 직전(職田)을 감소하는 일은, 명일 재상들과 수의하고자 한다. 오늘 경연에서 좌우의 대신과 대간이 말한 바는 심히 나의 뜻에 합하니 더 의논하지 말라. 위에서 남비(濫費)함이 없고 아래로 수령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절용을 한다면 재정이 족할 터이니, 관직을 감소시킬 것은 아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씬에 있어서 신중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윤순(尹珣)을 채용한 것은 과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경력이 오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수하였다가 또 개정을 하니 일이 너무 불가하다. 당초에 주의(注擬)할 때에 더욱 신중히 선발하도록 전조(銓曹)에 하유하라.” 하였다.

○癸卯 御朝講大司諫柳世琛掌令李自華以完川正尹珣事啓之領事柳洵曰臣爲推官見之完川正果以父病問卜於盲者慮其不來以韓亨允之言請之則其與盲不相知明矣豈以不道之事輕問於不相識之盲乎事涉疑似 上曰尹珣則遶之完川正事不允世琛曰欲省官者專以省費也但 祖宗朝設官分職各司其任今不可改也成均館承文院亦以員多減之成均風化之源承文事大之地省員則不可謂重學校亦不可謂重事大也知事金應箕曰百司之員雖多或災傷敬差官或軍籍郎官皆以他官兼之不可減也且以員多者減之故成均館承文院亦皆減省臣非不知不可出於不得已也○傳于政院曰省官減職田事明日欲收議于宰樞今日於經筵左右大臣臺諫所言甚合予意其勿議之上無濫費下至守令亦皆節用則財自足矣不須省官○傳于政院曰用人不可不慎擇尹珣之遶非有過失以其踐歷未久也然旣除之又改之事甚不可當初注

擬時尤當慎簡其諭銓曹

《中宗實錄 卷7, 47面》

중종 4년 1월 15일(무신)

조하를 받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수령은 한 읍(邑)의 휴척(休戚)이 달린 것이며, 자목(字牧)의 책임을 맡은 것이니, 그 책무가 큼니다. 그런데 지금 전조(銓曹)에서는 인물의 현부(賢否)를 묻지 않고 으레 직질(職秩)이 상당하면 주의(注擬)하므로 수령이 대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니, 청컨대 전조로 하여금 직질에 구애되지 말고 신중히 선발하여 차제(差除)토록 하소서. 수령뿐만 아니라, 첨사(僉使)·만호(萬戶)도 또한 마땅히 택차(擇差)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연로재쇠(年老才衰)한 자를 차견(差遣)하니, 만약 불우(不虞)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지난번 웅천(熊川)에 왜변(倭變)이 있었으니 이 또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 천거하는 것은 마땅한 사람을 쓰려는 것인데, 전조에서 거의 거용(擧用)치 아니하니, 한갓 문구(文具)가 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마땅하다. 무릇 백성의 고락(苦樂)은 수령에게 달린 것이니, 사람을 골라서 주의(注擬)하도록 이미 하유(下諭)하였는데, 전조에서 잘 봉행하지 아니함은 매우 잘못이다.” 하였다.

○戊申 受朝賀○御朝講大司諫柳世琛曰守令係一邑之休戚任字牧之寄其責大矣今銓曹不問人物賢否例以職秩相當注擬以是守令舉非其人請令銓曹勿拘職秩慎簡差除非特守令僉使萬戶亦當擇差而今率皆以年老才衰者差遣脫有不虞之變則將何以禦之頃者熊川有倭變此亦可虞且薦舉者欲用其人也而銓曹略不擧用徒爲文具耳 上曰此言當矣大凡民之苦樂在於守令擇人注擬事已諭銓曹不能奉行甚非也

《中宗實錄 卷7, 49面》

중종 4년 1월 18일(신해)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송일(宋軼)이 가는 것이 바로 농시(農時)를 당하게 되니, 중신(重臣)의 행차가 아무리 간단하게 된다 해도 어찌 폐가 없겠습니까?”

하고, 집의 박광영(朴光榮)은 아뢰기를,

“풍산(豐山)·무산(茂山) 등 군보(軍堡)를 옮기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일이므로, 대신을 보내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으로서 고형산(高荊山)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지금 형산이 절도사(節度使)로 더불어

의논하여 조치한다면, 대신이 가 본다 해도 더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을 순찰하는 일은 나의 뜻으로서도 또한 폐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오늘 대신에게 수의하니 온편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정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특진관 신윤무(辛允武)가 아뢰기를,
 “경성(鏡城)은 북도의 거진(巨鎭)이오나, 국고가 고갈되어 피폐(疲弊)가 더욱 심한데, 왕래하는 군관(軍官)에 침책(侵責)하는 자가 많은 것은 판관(判官)이 그들과 같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만약 문신(文臣)으로서 제수하면 우후 군관(虞侯軍官)이 경중(敬重)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히 징구(徵求)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세침(世琛)과 광영이 또 아뢰기를,
 “불법 수령이 사헌부의 탄박(彈駁)으로 체임은 되었으나, 모두 서반에 붙이는 것은 자못 권징(勸懲)의 뜻이 없는 것이니, 모두 파면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된 대로 파면하라. 경성 판관은 문관을 가려서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辛亥 御朝講大司諫柳世琛曰宋軼之行正當農時重臣之行雖曰太簡豈得無弊執義朴光榮曰豐山茂山等堡移設是固重事可遣大臣看審然知邊事無逾於高荊山今荊山與節度使同議措置則雖大臣就觀尚不得措一辭矣 上曰巡邊之行予意亦恐有弊然今日收議于大臣有言未便者可停行矣特進官辛允武曰鏡城北道巨鎭而國庫虛竭疲弊尤甚而往來軍官多有侵責者以其判官其儕輩故也鏡城判官若以文臣除授則虞侯軍官莫不敬重不敢徵求矣世琛光榮曰不法守令憲府彈駁遞職而并付西班牙殊無勸懲之意皆當罷之 上曰依啓罷之鏡城判官以文官擇差可也

《中宗實錄 卷7, 51面》

중종 4년 2월 4일(병인)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이 제조에 관한 일을 아뢰고, 장령 이자화(李自華)도 또한 아뢰었으나, 다만 소격서(昭格署) 제조만을 갈도록 명하였다.

○丙寅 御朝講大司諫柳世琛啓提調事掌令李自華亦啓之只 命改昭格署提調

《中宗實錄 卷7, 60面》

중종 4년 2월 7일(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안당(安瑒)과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제조는 스스로 「대전」(大典)의 법이 있으므로 모름지기 수의할 것이 아니며, 권도(權道)로써 하고자 한다면 폐가 또한 클 것입니다.”

하고, 영사 박원종(朴元宗)은 아뢰기를,

“도제조의 아문은 적고, 정1품의 사람은 전일에 비하여 많습니다. 대저 재상은 모든 공사(公私)의 출입에 견여(肩輿)도 타고 초헌(輶軒)도 타며, 또는 앞에서 가금(呵禁)도 하고 뒤에서 옹위(擁衛)하기도 하니, 구사(丘史)가 없으면 다닐 수 없습니다. 중국 재상 같으면 견여를 메는 사람이 4인이니, 비록 구사가 없어도 관계 없으나,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고 구사를 많이 거느려야 합니다. 만약 나이 젊은 조사(朝士)라면 혹 서로가 빌어서 거느릴 수도 있겠으나, 대신(大臣)은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의원(尙衣院)은 비록 소소한 물색(物色)이라도 모두 어용(御用)에 관계되는 것인데, 전자에 심회(沈澮)·이극배(李克培)는 모두 1품으로서 제조가 되었으므로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니, 지금 또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또 정1품은 인신의 극위(極位)이니, 포핍(褒貶)할 때에 참의(參議)가 그 집에 와서 의논하게 한들 또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만약 취재(取才)하는 아문(衙門)이면 서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사(丘史)의 수는 「대전」(大典)에 기록되어 있으니, 만약 이 예를 따른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원종(元宗)이 아뢰기를,

“지난번 치효(治效)가 있었던 수령으로 이우(李瑀) 같은 사람은 이미 가선(嘉善)이 되었으니 더할 것이 없으나, 상주목사(尙州牧使) 손중돈(孫仲暉)은 전일 수령이 되어 또한 정적(政績)이 있었고, 부령부사(富寧府使) 소기파(蘇起坡)는, 그 백성들이 근자에 이장곤(李長坤)이 갔을 때에 길을 막고 더 머물게 해주기를 빌었으며, 또 성종조(成宗朝)에서 북정(北征)에 종군할 때 매우 공로가 있었으니, 포상(褒賞)의 은전을 한갓 표리(表裏)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려서 돌아올 때에는 다만 부호군(副護軍)을 제수하였을 뿐이니, 마땅히 첨지(僉知)에 임명하여 포상의 뜻을 보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잘 다스린 수령은, 전일에 이미 표리(表裏)로써 시상을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뛰어난 자는 따로 상전(賞典)을 의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己巳 御朝講大司憲安瑒大司諫柳世琛曰提調自有大典之去不須收議欲以權宜爲之則

弊亦大矣領事朴元宗曰都提調衙門少而正一品人比前爲多大抵宰相凡公私出入肩輿乘軒又前呵後擁無丘史則不得行矣如中原宰相則肩輿者四人雖無丘史未爲不可我國不然多率丘史若年少朝士則或相借率大臣則不可借也尚衣院雖小小物色皆關於 御用前者沈澹李克培皆以一品爲提調已有前例今亦何妨且正一品人臣之極位褒貶時以叅議來議于家亦何妨乎若取才衙門則相換爲當 上曰丘史之數載在大典若循此例則何不可之有元宗曰頃者有治效守令如李瑀則已爲嘉善不可加焉如尙州牧使孫仲暉則前爲守令亦有政績富寧府使蘇起坡則其民近因李長坤之行遮道乞留又於 成宗朝從軍北征甚有功勞褒賞之典不可徒以表裡其遞還也只授副護軍當差僉知以示褒賞之意 上曰善治守令前已賞表裡然其中卓異者可別議賞典

《中宗實錄 卷7, 61面》

중종 4년 2월 11일(계유)

조참(朝參)을 받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과 장령 윤희인(尹希仁)이 정一品 제조에 대한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癸酉 受朝參○御朝講大司諫柳世琛掌令尹希仁論正一品提調事不允 《中宗實錄 卷7, 64面》

중종 4년 2월 22일(갑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회령부사 최한홍(崔漢洪)을 체임한 일은, 신으로서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부사를 절도사에 승진시키면 야인(野人)들이 보는 데에 광채가 더하며, 국위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저, 인정으로서 누가 장기간 변방에 있고자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체차(遞差)하면 한홍이 스스로 편안하려는 생각에 맞추어 주는 것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홍은 절도사에 적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체임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나 북도 절도사는 아직 결원이 없는데 먼저 한홍을 체임시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사체에 또 또한 합당한 일이 아니니, 체임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甲申 御朝講大司諫柳世琛曰崔漢洪適會寧事臣未知其意也以府使陞爲節度使於野人瞻親有增光彩非損國威也大抵人情誰欲長在邊方今若遞差則正中漢洪自安之計 上曰漢洪可當節度使故命適之然北道節度使時未闕也而先適漢洪以待於事體亦未合勿適可也

《中宗實錄 卷7, 66面》

중종 4년 2월 26일(무자)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 등이 상차(上劄)하기를,

“신하의 죄로서는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임금을 속이는 것에는 그 정상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권리를 잡고 은밀히 농락하여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를 편들고 보호함이고, 둘째는 공론을 가탁하여 비밀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잘못을 수식하고 과오를 꾸며서 상청(上廳)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신하가 되어서는 이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죄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웁건대, 경주는 국가의 후은(厚恩)을 입어 갑자기 숭품(崇品)에 올랐으며, 직위가 전장(銓長 : 이조판서)이 되었는데, 이에 감히 마음대로 행하여 정권을 조롱하고, 공의(公議)를 빙자하여, 아래로는 사정(私情)을 부리고 자기의 과오를 수식하며, 위로는 성청(聖聽)을 현혹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심한 기망(欺罔)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대죄(大罪)를 지고 있는데도, 전하께서는 간곡하게 사은(私恩)을 베푸시고, 고식구차(姑息苟且)하게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 하시니 신등은 저욕이 미혹됩니다. 대저 경성(鏡城)과 회령(會寧)은 변지로서 가장 먼 곳이라 이 직임(職任)에 가는 자는 처자를 이별하고 향토를 버리게 되니, 그 고생이 많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홍(漢洪)은 그 처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이미 전일 외방에 있을 때의 고난을 역력히 진달하게 하였고, 윤문(胤文)은 눈물을 흘리면서 경주(景舟)에게 애걸을 하였으니, 모두가 이를 모면하고자 한 일입니다. 경주는 한갓 한홍의 노고가 민망하고, 흘리는 눈물이 불쌍한 줄만 알고, 성청(聖聽)을 속일 수 없고 정권을 조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돌보지 아니하며, 이미 이조와 더불어 의논하여 의망(擬望)할 때에는 매우 적합하다 해 놓고서는 도리어 간곡하게 사정에 따라 신용개(申用溉)에게 서간을 내어 윤문을 모면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용개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경주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마땅히 부끄러워하여 그만 둘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심(私心)이 속에 막혀서 오히려 스스로 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홍과 윤문은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되고 부임할 시기가 임박하여, 경연에서 천안(天顔)을 가까이 모시고 버젓이 모계(冒啓)하여 본직의 체임을 청하였으니, 이는 경주가 권한을 잡고 은밀히 조롱하여 아부하는 자를 두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 체임을 청할 적에, ‘한홍은 후일에 마땅히 북도(北道)의 절도사(節度使)를 시켜야 하므로 회령부사로 임명함은 부당하다.’ 하고, 또 ‘윤문은 순실하고 곧기만 한 선비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 경성 판관에는 합당치 않다.’하여,

밖으로는 나라를 근심하는 말을 하여 공론에 기대고, 안으로는 음흉 교사한 마음을 품어 그 사정(私情)을 이루려 하였으니, 그 꾀가 간사합니다. 경주의 뜻이 과연 공정합니까?

당초에 같이 의논하여 의망(擬望)할 때에, 마땅히 한홍을 회령에 주의(注擬)하지 아니했어야 하고, 또 마땅히 운문은 적합하지 않다고 공언을 한 이상 경성(鏡城)에는 주의하지 아니했어야 하거늘, 어찌 사사로이 청간(請簡 : 청탁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만히 면하기를 도모하였으며, 또 어찌 같이 의논할 즈음에 능히 그 불가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야 비로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는 경주가 공론을 가탁(假托)하여 음사(陰私)를 이루려 한 것입니다.

경주의 기망(欺罔)한 죄는 조저(朝著 : 조청)에 전파되어 물의가 비등하였으며, 신등이 이미 그 정상을 모두 전달하였으니, 전하께서도 이미 통조(洞照)하시었을 것입니다. 소문(召問)하는 날에는 마땅히 바른 말로 고백하고 그 죄과에 승복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그릇된 증거를 끌어 대어 여러 가지로 사실을 엄폐하여 임금을 속여서 자기가 사사롭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으니, 이는 경주가 잘못을 수식하고 과오를 꾸며 대어 상청(上聽)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기망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는 다시 우용(優容)하시니, 신등은 성의(聖意)를 알 수 없습니다.

후일에 세월이 오래 되고 방비가 점차 게을러지면 경주의 기망이 더욱 깊어져서 전하께서는 더욱 크게 속으실 것이며, 조종하는 대권(大權)이 모두 그 손으로 돌아가 더욱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전하께서는 한갓 공기(空器)만을 가지시고 마침내는 반드시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궤히 공론을 좇고 속히 판단을 내리시어, 경주의 병조의 소임을 체임하시고 기망한 죄를 밝게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차자(筭子)를 보니 지극히 놀랍다. 신하의 죄로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다. 그러나 한홍의 회령부사에 불가함과 운문의 경성판관에 불합함은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대신들도 많이 말하였으니, 지금 만약 경주를 추문한다면 다른 대신이 또한 어찌 안심을 하겠는가? 경주는 원훈(元勳)이요, 공의로써 계달한 것이니, 기망이라 하여 죄를 줄 수는 없다.”

하였다.

○戊子○大司諫柳世琛等上筭曰人臣之罪莫大於欺罔所以欺罔者其狀有三一曰操權竊弄阿護附己二曰假托公論以濟陰私三曰飾非文過迷誤上聽凡爲人臣有一於此其罪難赦伏見景舟受國厚恩驟陞崇品職長銓衡而乃敢任行胸臆操弄政權假公議下以售其私飾已過上以

眩 聖聽其欺罔莫甚於此負此三大罪而 殿下曲施私恩姑息苟且不治其罪臣等竊惑焉夫鏡城會寧邊地之絕遠者也赴是任者離妻子去鄉土其酸苦倍萬是以漢洪令其妻上言歷叙已前日在外之苦胤文涕泣哀乞於景舟皆欲規免景舟徒知漢洪之勞苦爲可憫胤文之涕泣爲可哀而不顧 聖聽之爲不可欺政權之不可弄旣與吏曹同議擬望以爲甚合旋又曲循私情通簡于申用漑請免胤文用漑不聽景舟少有知識宜愧而知止矣其私心鬱於中而猶不能自己漢洪胤文除拜已久赴任臨期而乃於經筵咫尺 天顏靦然冒啓請違本職此景舟操權竊弄阿護附己者也其請違乃曰漢洪後日當拜北道節度使不當爲會寧府使胤文醇謹拙直儒者無幹事之能不合爲鏡城判官外爲憂國之語以依憑公論內包陰巧之心以求成其私其計謫矣景舟之意果公歟當初同議擬望之時固當不擬漢洪於會寧又當公言胤文之不合不擬於鏡城豈有私通請簡潛圖其免又豈有同議之際不能料其不可而今始能料之者乎此景舟假托公論以濟陰私者也景舟欺罔之罪傳播朝著騰揚物議臣等旣已悉陳其情狀在 聖鑑已洞照矣當召問之日固宜直辭輸情以伏其咎乃反旁引曲証多端掩覆蒙天蔽日以明已非私此景舟飾非文過迷誤上聽者也爲人臣而欺罔至此 殿下乃復優容之臣等未審 聖意正恐後日歲月浸久防備浸怠景舟之所以欺罔者愈深 殿下之所以受欺者愈大操縱大權悉歸其手無復忌憚而 殿下徒持空器終必至於不可救矣伏願 殿下快從公論辨之於早亟違景舟兵部之任明治欺罔之罪傳曰今觀荀子至爲驚愕人臣之罪就大於此然漢洪之不可爲會寧胤文之不合於鏡城非獨景舟他大臣亦多言之今若推景舟則他大臣亦豈安心乎景舟元勳而以公議啓達不可謂欺罔而罪之也

《中宗實錄 卷7, 68面》

중종 4년 2월 27일(기축)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과 장령 윤희인(尹希仁)이 홍경주의 죄를 논하여, 체직하고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己丑 御朝講大司諫柳世琛掌令尹希仁論洪景舟之罪而請遞職鞫之不允

《中宗實錄 卷7, 68面》

중종 4년 3월 2일(갑오)

대간이 홍경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대사간 류세침(柳世琛) 등이 상차(上劄)하기를,

“신등이 경주(景舟)가 조롱 기망(操弄欺罔 : 주권을 잡아 농락하고 임금을 속임)한 죄상을 모두 아뢰었는데, 명하여 추국(推鞫)⁹³⁾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에는 정률(定律)이 있어 마땅히 그 죄에 복죄될 것이운데, 홀로 병부(兵部)의 소임은

93) 추국(推鞫) : 왕의 특지(特旨)로 의금부에서 중죄인을 신문(訊問)하는 것.

신등이 여러 날 체직할 것을 청하였어도 천청(天聽: 제왕의 청문(聽聞))이 막연하오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주서(周書: 『서경』의 편명)에 이르기를, ‘사마(司馬)는 나라의 정벌을 맡으니 육사(六師: 천자의 군사)를 거느려 나라를 공평하게 한다.’〔司馬掌邦政統六師平邦國〕하였으니, 지금의 병부는 곧 주 나라의 사마입니다. 안으로는 전형(銓衡: 인사 행정)을 맡고, 밖으로는 군무를 총괄하여 그 소임이 지극히 중요하니, 사사로운 은혜로써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주는 본디 천력(踐歷: 경력)이 없고 또 물망도 없는데, 다행히 큰 공에 참여하여 갑자기 이 소임에 올랐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숙야(夙夜)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공직(供職: 직책을 수행하는 것)하여야 할 것인데, 감히 공을 믿고 교만방자하게 주권을 잡고 사사로이 농락하며, 협사(挾私: 사정을 꺾) 망상(罔上: 임금을 속임)하여 마음대로 일을 하니, 그 죄가 이미 지극하여 하루라도 그대로 재직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또 공신인 때문에 너그럽게 용납하여 굳게 공론(公論)을 거절하고 본직을 갈지 않으시니, 대저 병부의 중임(重任)은 조정의 공기(公器)라, 어찌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물며, 경주는 초방(椒房: 후비(后妃))의 지친(至親)으로서, 그의 딸이 지금 숙의(淑儀: 내명부 종2품 품계)로 있으니, 그가 감히 농락 기망하여 두려워하거나 거리낌이 없는 것은 오직 공만을 믿어서가 아니라 또한 달리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진실로 마땅히 과감하게 편사(偏私)를 버리시고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도리를 보이실 일이요, 결코 고식적이며 구차스럽게 신하에게 사사로움을 보여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경주의 병정(兵政)의 권한을 빼앗아 농락 기망하는 길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차자를 보니, 인신의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크랴? 그러나 실정에 가깝지 않은 일〔情外之事〕로 추구하여서는 안 되며, 또 위임한 대신을 경이하게 진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원훈(元勳)임에랴?” 하였다.

○甲午臺諫啓洪景舟事不允大司諫柳世琛等上劄曰臣等將景舟操弄欺罔之狀悉達 聖聰命許推鞠罪有定律當伏其辜獨惟兵部之任臣等累日請達 天聽邈然不勝缺望周書曰司馬掌邦政統六師平邦國今之兵部卽周之司馬也內掌銓衡外摠軍務其任至重不可以私恩授非其人今景舟素無踐歷又乏物望幸忝大功驟居是任固宜夙夜寅畏以供其職而乃敢恃功驕恣操權竊弄挾私罔上任行胸臆其罪已極不可使一日冒處也 殿下乃復以功臣優容之固拒公論不遞本職夫兵部重任朝廷公器豈 殿下曲施私恩之地况景舟椒房至親其女時爲淑儀其敢爲操弄欺罔無所畏忌者非唯挾功亦有所挾而然也 殿上固當去偏私以示大公至正之

道不宜姑息苟且示臣下以私也伏願 殿下亟解景舟兵政之權以杜操弄欺罔之路傳曰今觀
筭字人臣之罪就大於此然不可以情外事推鞠也委任大臣不可輕易進退况元勳乎

《中宗實錄 卷8, 1面》

중종 4년 3월 12일(갑진)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과 지평 박이관이 홍경주·한순 등의 일
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甲辰 御朝講大司諫柳世琛持平朴以寬啓洪景舟韓恂等事不允 《中宗實錄 卷8, 2面》

중종 4년 3월 15일(정미)

○대사헌 안당과 대사간(大司諫) 류세침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홍경주의 일은 공론으로 하지 않고 사의(私意)로써 하시니, 장차 공을 믿고 전
자하여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추고를 마치어 치죄하소서. 한순은
폐조에 있어서 조관을 잡아 끌고, 또 흥청(興淸)을 간통하여 불법을 많이 행하
였으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과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경주는 조정의 공의로 아뢴 것이니, 협사로써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한순은 공
의(功議)로 각각 감죄⁹⁴되므로, 태(笞) 50으로 수속(收贖)한 것이니 죄주지 않
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재삼 논계(論啓)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丁未○大司憲安瑯大司諫柳世琛合司啓曰洪景舟事不用公論而用私意將恃功專恣無所
不爲請畢推治罪韓恂在廢朝提曳朝官且奸興淸多行不法請依律科罪傳曰洪景舟以朝廷公
議啓達不可以挾私罪之韓恂功議各減故以笞五十收贖不爲不罪再三論啓皆不允

《中宗實錄 卷8, 4面》

중종 4년 3월 16일(무신)

○대사헌 안당과 대사간(大司諫) 류세침이 합사하여 이르기를,
“홍경주의 일은 전지를 내려 추고하였으되, 경주가 곧 승복하지 않는 것은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한 것입니다. 이제 명하여 추고하지 못하게 하시면 전자함이 더

94) 공의각감(功議各減) : 공(功)과 의(議)에 따라 각각 죄를 감함. 즉 공감(功減)과 의감(議減). 공
감은 죄인 자신이 공신이거나 부조(父祖) 이상에 공신이 있으면 규정된 형량에서 1등을 감하는 제
도. 의감은 여덟가지 재판상의 은전(恩典)인 팔의(八議)에 해당될 경우 역시 죄를 감하는 제
도. 한순(韓恂)은 자신이 정국 3등 공신이요, 아버지 백륜(伯倫)이 성종 때의 좌리공신(佐理功臣)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으로서 예종(睿宗)의 국구(國舅)이므로, 공과 의에 따라 각각 감등하였
다는 것.

욱 심할 것이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주소서. 한순도 아울러 형률에 의하여 과죄하소서.

이제 듣건대, 성희안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삼공이 아뢴 바는 마땅히 곧 채납(採納)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한 이가 만족치 못하고, 또 말한 바가 극진하지 못한 바 있는가 의심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이 말은 크게 사체에 방해됩니다.

비록 대신이 아뢴 것이라도 말을 쓸 만하면 쓰고, 쓸 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쓰지 않는 것이며, 마땅히 위로부터 재단하셔야 하고, 대신의 말이라 하여 일일이 청중(聽從)하여서는 안 됩니다. 희안도 또한 원훈 대신으로, 그 뜻이 위로 하여금 자기가 건백한 바를 문득 좇아 어감이 없게 하고자 함이며, 겸하여 경주 구원하기를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신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니, 청컨대 추고 하소서.” 하였다.[중략]

○대사헌 안당과 대사간(大司諫) 류세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흥경주의 농권(弄權)한 일을 가지고 거듭 논계(論啓)하였으나, 천청(天聽)이 더욱 아득하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대신의 진언(進言)은 공정한 것에 한결같은 뿐입니다. 만약 공정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 사사로운 것입니다. 하물며, 권병(權柄)을 잡은 자가 제 멋대로 방자해서 공사를 가탁하여 사사로운 일을 자행하고, 감히 그 사이에 마음먹은 일을 행하고자 하면, 다른 날 천룡(擅弄)하는 근심을 장차 구제하지 못할 것이온즉,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주는 운문(胤文)을 비호하고자, 음으로는 사사로운 뜻을 품고 양으로는 공론을 빙자해서 흑백을 몽롱하게 하여 성청(聖聽)을 범하니, 그 속셈이 바로 드러나 가리우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판관(判官)을 의망(擬望)할 때는 운문을 불가하다고 하지 않다가, 운문이 애처로운 사언으로 모면하기를 구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곧 이조에 서간을 통하여 전의 의논을 배반하니, 그 험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중략]

전하께서는 경주를 파면하는 것만 중히 여기시고, 홀로 권신이 절롱하는 화환은 생각지 않으시니, 이는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순은 부박비야(浮薄鄙野)하고 또 학식이 없이 다만 편영교사(便佞巧詐)로써 폐조(廢朝: 연산군)에 쫓겨 외람되게도 숭품(崇品)을 얻었습니다. 그 때 순의 집을 철거하게 되어 그 값을 의준(議准: 심사하여 그대로 인준하는 것)함에 그 텃값까지 아울러 계산하는데, 순이 비싼 값을 치도록 몰래 사주하여 값을 너무 중하게 받았으니, 그 탐욕이 극심합니다.

장계수(長溪守) 섬(暹)이 이미 그 땅을 받았는데, 순이 교묘히 거짓말을 엮어,

그때는 다만 재목과 기와만을 허가하였다고 감히 백일 하에 호소하니, 그 제멋대로 탐중(貪縱)하여 부끄러움이 없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의 무상(無狀: 무례함)함은 드러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그 죄악도 죄주어 일호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공의(功議)라 하여 억지로 말감(末減)하고자 하시나, 이도 또한 신등이 이해하지 못할 바입니다. 경주가 협사하여 상을 기망하고, 순이 종욕(縱欲)하여 법을 범한 것은 모두 공론이 용납하지 않는 바인데, 전하께서 공론을 배제하고 법을 굽혀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시니, 이는 전하께서 간하는 것을 거절하는 싹이 이미 조짐을 보인 것이요, 혼신 척리의 종자(縱恣)하는 조짐이 날로 자라는 것이라, 신등은 마음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경주를 파면하고, 형률을 좇아 순을 죄주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戊申○大司憲安瑯大司諫柳世琛合司啓曰洪景舟事下傳旨推考而景舟不卽承服者恃功驕恣也今 命不推則專恣尤甚請依律罪之韓恂並依律科罪今聞成希顏於經筵啓曰三公所啓當卽採納不爾言者未滿且疑所言有所未盡云此言大妨事體雖大臣所啓言可用則用之不可用則不必用也當自 上裁斷不可以大臣之言而一一聽從也希顏亦元勳大臣也其意欲使上已所建白輒從無違兼救景舟若無罪然是大臣專權之弊請推考[中略]

○大司憲安瑯大司諫柳世琛等上劄曰臣等將洪景舟弄權事反覆論啓 天聽愈邈不勝缺望大抵大臣進言一於公而已若不出於公則皆私也況操權秉柄者任情自恣假公逞私敢欲行胸臆於其間則他日擅弄之患將不可救豈不懼哉頃者景舟欲庇胤文陰挾私意陽籍公論矇矓黑白以干 聖聽其情立見有不可掩耳當初擬判官時不以胤文爲不可而及聽胤文哀辭求免則卽通書東于吏曹反背前議其挾私之情已露矣[中略]

殿下以罷景舟爲重而獨不念權臣竊弄之禍此臣等之所未解也且韓恂浮薄鄙野又無學識但以便佞巧詐得幸於廢朝濫占崇品其時恂家當撤議准其價並其基代而折之恂陰嗾優准受價濫重其欲極矣長溪守暹已受其地而恂謀欲占奪巧構詐語以爲其時只准材瓦敢訴於白日之下其恣情不忌貪縱無恥可勝道哉恂之無狀敗露至此當以其罪罪之不可一毫容賞之也 殿下以爲功議而強欲末減此亦臣等所未解也景舟挾私罔上恂縱欲干憲此皆公論所不容而殿下排公撓法曲施私恩是 殿下拒諫之萌已兆而勳臣戚里縱恣之漸日長矣臣等不勝痛心伏願 殿下亟罷景舟從律罪恂以快公論不允

《中宗實錄 卷8, 5面》

중종 4년 3월 17일(기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안당과 대사간(大司諫) 류세침이 홍경주·한순·성희안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대간이 합사(合辭)하여 차자를 올려 경주·한순을 극론(極論)하고, 또 성희안을 추고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己酉御朝講大司憲安瑯大司諫柳世琛論洪景舟韓恂成希顏事不允○臺諫合辭上劄極論景舟韓恂且請推成希顏不允
《中宗實錄 卷8, 9面》

중종 4년 3월 20일(임자)

○홍경주(洪敬周)로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삼고, 김응기(金應箕)로 병조 판서, 김전(金銓)으로 형조 판서, 권홍(權弘)으로 예조 참판, 성윤조(成允祖)로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류세침(柳世琛)으로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최숙생(崔淑生)으로 사간원 대사간, 신상(申鎰)으로 홍문관 응교를 삼았다.

○壬子○洪景舟爲判中樞府事金應箕爲兵曹判書金銓爲刑曹判書權弘爲禮曹叅判成允祖爲漢城府右尹柳世琛爲承政院同副承旨崔淑生爲司諫院大司諫申鎰爲弘文館應教
《中宗實錄 卷8, 10面》

중종 4년 8월 16일(병자)

○예방 승지(禮房承旨)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우찬성(右贊成) 이집(李諱)이 병으로 고생하니 의원을 보내어 병을 간호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말미를 주고 의원을 보내어 병을 구휼하라.”
하였다.

○丙子○禮房承旨柳世琛啓曰左贊成李諱病苦請遣醫看病傳曰給由遣醫救病
《中宗實錄 卷9, 11面》

중종 5년 2월 7일(계사)

○김봉(金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류세침(柳世琛)을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로, 민원(閔愼)을 집의로, 류운(柳雲)·이항(李沆)을 장령으로, 김우서(金禹瑞)·김협(金協)을 지평으로 삼았다.

○癸巳○以金封爲司憲府大司憲柳世琛爲掌隸院判決事閔愼爲執義柳雲李沆爲掌令金禹瑞金協爲持平
《中宗實錄 卷10, 46面》

중종 5년 3월 1일(병진)

○류세침(柳世琛)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사균(李師均)을 사헌부 집의

(司憲府執義)로, 최명창⁹⁶⁾을 헌납(獻納)으로, 소세량(蘇世良)⁹⁷⁾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丙辰朔○以柳世琛爲司諫院大司諫李思鈞爲司憲府執義崔命昌爲獻納蘇世良爲正言

《中宗實錄 卷10, 55面》

중종 5년 3월 27일(임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한금의 관련자를 심문하지 말고 바로 한금을 심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당초 장례원(掌隸院)의 관직을 설치할 때에 판결사(判決事) 1원(員)만 두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비(奴婢)를 쟁송(爭訟)하는 데 당사관으로서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두어 명 더 두어서 함께 송사를 의논하여 결정함이 어떨까 합니다. 또 낭관(郎官)에는 한 사람도 문관이 없고, 모두 용잡(冗雜)한 자로 임명하니, 송사하는 자들이 떨시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문관을 택하여 교대로 임명하면,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고, 송사하는 자도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입니다.”[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행은, 전일에 대간이 상피의 법을 들어 논계하므로 개차(改差)한 것이다. 이 사람이 쓸 만한 것은 공론(公論)으로 아는 바이니, 서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壬午 御朝講臺諫請勿推韓汲事干直推韓汲不允大司諫柳世琛曰當初設官判決事獨設一員未知何由爭訟奴婢堂上一人判斷難矣臣意又差數員同議決訟何如郎官無一人文官皆以冗雜者差之訟者輕之無所畏忌臣以謂擇文臣交差則能斷爭訟而訟者亦有所畏服也[中略]

上曰李苻前日臺諫舉相避之法論啓故改差耳此人之可用公論所知則叙用不妨

《中宗實錄 卷10, 61面》

95) 이사균(李思鈞) : 1471~1536.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중경(重卿) 호는 눌헌(訥軒) 시호는 문강(文剛) 본관은 경주. 연산군 4년(1498) 문과에 급제, 연산군 10년(1504) 부수찬으로 폐비 윤씨 복위에 대한 부당성을 주창하다가 보은에 유배됨. 1507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교리가 되었고 부제학, 판서 등을 지내고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저서에 눌헌집(訥軒集)이 있다.

96) 최명창(崔命昌) : 1466~1536.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여신(汝愼) 호는 송석(松石) 송음(松陰) 본관은 개성(開城) 연산군 10년(1504) 문과급제. 예조참판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후 병으로 사임하였다. 뒤에 원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으나 관찰사와 충돌하여 사임하고 만년에 쌍계동(雙溪洞)에 은거하였다. 뒤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97) 소세량(蘇世良) : 1476~1528.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원우(元佑) 호는 곤암(困菴) 병암(屏巖) 본관은 진주(晉州). 퇴휴당(退休堂) 세양(世讓)의 형이며 문과에 급제. 중종 5년 정언(正言) 중종 19년 대사간이 되었다가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남원부사로 자원하여 내려가서 병사하였다. 저서에 병암집(屏巖集)이 있다.

중종 5년 4월 13일(무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원수가 비록 내려간다 하더라도 백성은 풍문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니,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다 한들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태평한 지가 오래인데 졸지에 변이 생기니, 누가 삶을 가볍게 여기고 적에게 대들겠습니까? 청컨대 경관(京官)을 내려 보내어 조정의 뜻을 널리 알려서 무너져 달아나는 자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고,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곡산군수(谷山郡守) 왕찬(王璨)·인천부사(仁川府使) 류수동(柳壽童) 등은 무신 중에서도 용맹과 방략이 있는 자이니 남방에 보낼 만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유생(儒生)은 이미 형신(刑訊)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결장(決杖)하고자 하십니까?”

하고, 류세침이 아뢰기를,

“육조(六曹)·정부(政府)·대간(臺諫)·시종(侍從)이 유생에게 장신(杖訊)함을 불가하다고 아뢰었는데, 상께서 끝내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류순정이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연변(沿邊) 각읍 중 무신을 차견(差遣)하지 않은 곳에, 교체하여 차견하고자 하다가 하지 못한 것은 일이 급하고 폐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장수로서 적합한 사람을 얻는다면, 사졸은 더욱 힘쓸 것입니다.”[중략]

하고, 내문이 아뢰기를,

“류순정을 도체찰사로 삼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놀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를 둔 것은 내려 보내고자 한 것이 아니다.”

○戊戌 御朝講大司憲鄭光弼曰元帥雖往百姓望風奔竄雖有善將其將奈何昇平日久卒然變生孰肯輕生而赴敵請遣京官廣諭朝廷之意以堅奔潰者之心大司諫柳世琛曰如谷山郡守王璨仁川府使柳壽童等武臣之有勇略者可送南方鄭光弼曰儒生旣用刑訊何必決杖乎世琛曰六曹政府臺諫侍從啓以儒生不可用杖訊而上終不允臣等不能安心柳順汀曰慶尙道沿邊各邑不差武臣處欲換差而未得者以其事急而有弊也將帥若得其人則士卒益礪矣[中略]

乃文曰柳順汀改都體察使人必皆驚 上曰所以置體察使非欲下送 《中宗實錄 卷11, 13面》

중종 5년 4월 15일(경자)

○대사간 류세침(柳世琛)·집의 윤세호(尹世豪)⁹⁸·지평 조방언(趙邦彦)⁹⁹ 등이

아뢰기를,

“삼포의 왜인이 조종조부터 화친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장졸을 살해하고 거진(巨鎭)을 함락하였으니, 이것은 조종조에 없던 일로, 이것이 화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큰 일을 거행하면서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어 사졸이 기운이 저상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마땅히 대군을 들어 나라의 위엄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서계를 보니, 말이 패만(悖慢)하여 화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화의에 참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고, 대사헌 조계상(曹繼商)·사간 이철균(李鐵鈞)은 아뢰기를,

“화친과 정도 두 가지 일을 수의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조종께서 무육(撫育)하신 은혜가 큰데,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변장을 살해하였으니, 그 죄가 큼니다. 정도하는 일을 이렇게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홍문관 및 대간들에게 전교하기를,

“도원수가 하나로 결정된 의논을 듣고자 하므로 의논한 것뿐이다. 여러 의논을 들으니 알겠다.”

하였다.

○庚子○大司諫柳世琛執義尹世豪持平趙邦彥等啓曰三浦倭人自 祖宗朝非不和親而無故舉兵殺害將卒摧陷巨鎭乃 祖宗朝所無之事此不可和親也今舉大事優游度日士卒氣沮甚爲不可當舉大兵以示國威今觀書契辭語悖慢不可和親故臣等不叅和議耳大司憲曹繼商司諫李鐵鈞啓曰和親征討兩事收議甚爲不可 祖宗撫育之恩大而無故起兵殺害邊將其罪大矣征討之事不可如此緩也傳于弘文館及臺諫等曰都元帥欲聞一定之議故議之耳聞衆論則可知矣
《中宗實錄 卷11, 19面》

중종 5년 4월 25일(경술)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왜인 10명 중에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육조 판서·한성

98) 윤세호(尹世豪) : 1470~?.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사영(士英) 시호는 공간(恭簡) 본관은 파평. 연산군 9년(1503) 별시문과에 급제. 검열, 집의가 되었고, 중종 15년(1520) 전라도 관찰사로 김식(金湜)의 사건에 연루되어 조광조 일파로 몰려 파직되었다. 뒤에 고용되어 공조판서가 되었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99) 조방언(趙邦彦) : 1469~1532.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빈지(贇之) 본관은 한양. 중종 원년(1506) 문과에 급제. 정언, 헌납, 전한 등을 역임. 중종 15년 대사간에 승진되었으며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부제학, 좌승지가 되고 대사헌 예조참판이 되었다. 김안로에게 아부하였다는 죄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예조참판에 등용되었으나 동왕 27년 심정(沈貞)의 일당이라 하여 사사(賜死)되었다.

관운 이상으로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중략]

하고, 박열(朴說)·조계상(曹繼商)·류세침(柳世琛)·윤세호(尹世豪)·이철균(李鐵鈞)·류사경(柳思敬)·박거린(朴巨鱗)·김굉(金磁)·이언호(李彦浩) 등은 의논 드리기를,

“일본국과 대마도 왜인을 모두 놓아 보내어 왕자(王者)의 큰 도량을 보이소서.”

[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피차의 정을 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왕자(王者)는 마땅히 포황(包荒)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마도 왜는 단연코 살려 보낼 수 없다. 일본 왜라고 칭하는 자는 전과 같이 후대하여 보내서 우리 나라의 위엄과 무력을 알게 하라.”

하매, 간원이 아뢰기를,

“대마도 왜는 이미 전형(典刑)을 명하시었습니다. 신등은 생각컨대, 일본 왜라고 칭하는 자가 어찌 진짜 일본 왜인 것을 알며, 대마도 왜라고 칭하는 자도 스스로 말하기를 ‘작적(作賊)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 하니, 어느 것은 죽이고 어느 것은 죽이지 않으리까! 비록 5~6인을 죽이더라도 저들에게 손익이 없고 국체에 누가 있을 것이니, 잠시 구수(拘囚)하게 하여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널리 정의(廷議)를 거두니 ‘죽여야 한다’는 자와 ‘죽일 수 없다’는 자가 각각 반을 차지하였다. 이것으로 헤아린다면 놓아 보내도 일에 이익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전형을 명하였던 것이다.”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수왜를 처치하는 일은 도원수와 의논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남정한 장수 가운데 일을 의논할 만한 자 또한 많으니, 남방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도원수와 여러 장수가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庚戌○義禁府囚倭十人五人則自稱日本國人五人則稱對馬島人其供招以爲皆不與知作賊之由 上命示諸宰相仍命政府六曹判書漢城判尹以上議啓[中略]

朴說曹繼商柳世琛尹世豪李鐵鈞柳思敬朴巨鱗金磁李彦浩等議日本國對馬島倭並許放還示王者大度[中略]

上曰聊欲通彼此之情耳雖曰王者當示包荒之置對馬賊倭斷不可生還也稱日本倭依舊厚待而送俾知我國威武諫院啓曰對馬島倭已命典刑臣等以爲稱日本倭者安知其眞日本倭稱馬島倭者亦自云不知作賊之由何者可殺何者不可殺雖殺五六人無損益於彼而有累國體姑令

拘囚待南方平定然後更議處置何如 上曰當初廣收廷議則可殺不可殺者各居其半以此料之雖放還於事無益故曾命典刑矣因傳于政院曰處置囚倭事既不與都元帥議之且南征諸將中可與議事者亦多待南方平定元帥及諸將上來後可更議處置 《中宗實錄 卷11, 31面》

중종 5년 4월 28일(계축)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방어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간에 안운덕(安潤德)의 서장을 보니, 매우 부과(浮誇)하였습니다. 군관의 말을 전해 들으니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고 위임한 일은 대강 완성하였다는 것으로 아뢰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변방에 신칙하여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할 즈음인데도 도리어 교만한 말을 하여 치계하니, 장사의 마음과 힘이 이에 따라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또 이미 도원수·부원수를 보내었고 방어사도 있으며 왜적은 지금 예봉이 꺾이고 기운을 잃었는데, 재상·종사관·군관배가 번거롭게 오가며 치계하므로 한 도가 소연하여 지공(支供)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윤덕은 그 도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방의 일은 장사가 어찌 한 번 이긴 것으로 방비를 잊으라! 반드시 다시 조치를 더할 것이다. 윤덕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첩보를 듣고 기쁨이 극하게 되어 그 뜻을 써서 아뢰었을 뿐이다.”

하매, 지평 박거린(朴巨鱗)이 아뢰기를,

“전자에는 승평(昇平)에 젖어서 첩사·만호의 현부(賢否)를 가리지 않고 보내어 만호된 자는 거의 모두 염치없는 무리들로, 값을 받고 수졸(水卒)을 놓아 주어 수졸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또 그 군관도 시정의 무리가 많았으므로, 이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만호·첩사 및 군관을 가려 보내소서.”

하였다.

○癸丑 御朝講大司諫柳世琛曰防禦之事不可少有懈緩之心近見安潤德書狀甚爲浮誇傳聞軍官之言至以不勝喜賀委事粗完啓之當申飭邊鄙益嚴備禦之際反爲驕語馳啓恐將士心力從此而解弛也且已遣都元帥副元帥而防禦使□在賊倭今旣摧鋒喪氣而宰相及從事官軍官輩旁午交馳一道騷然想不堪支供潤德不宜留在其道 上曰南方之事將士豈以一捷忘備禦乎必更加措置矣潤德非有他意亦聞捷報喜極之至書其意以啓耳持平朴巨鱗曰前者狃於昇平僉使萬戶不擇賢否而遣之爲萬戶者率皆無恥之輩收價而放水卒水卒名存實無且其軍官多市井之徒是以致此敗衄請自今擇遣萬戶僉使及軍官 《中宗實錄 卷11, 33面》

중종 5년 5월 20일(갑술)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류세침(柳世琛) 등이 십조소(十條疏)를 올려,

1. 심술(心術)을 바를 것.
2. 간쟁(諫諍)을 받아들일 것.
3. 명기(名器)를 아낄 것. 근래에 명기를 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적합치 않은 사람에게 베푸니, 이를테면 몸가짐이 간정(簡靜)하지 못하고 말이 많아 실지가 없는데 폐조(廢朝)에 은총을 바라서 왕자(王子)를 보양하여 높은 반열에 올라 이공(貳公)의 자리에 있는 자와, 고급의 사변을 알지 못하고 본래 물망(物望)이 없는데 참찬(參贊)의 열(列)에 있는 자와, 폐조에 아첨하여 섬기고 공교하게 문사(文辭)를 꾸며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총애를 받아서 공부(工部)의 장관이 된 자와, 일찍 외척에서 발신하였으나 용렬하고 비루하여 행검이 없어 청의(淸議)에 용납되지 않는데 부당하게 판조(版曹 : 호조)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4. 소인을 멀리할 것. 이줄(李茁)은 효경(梟獍)의 마음을 가지고 귀역(鬼域)의 행위를 하여 죄가 크고 악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하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너그러이 용납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간인을 비호하니, 조정에서 통섭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5. 장오(贓汚)를 엄하게 할 것. 한급(韓汲)은 본래 간사하고 탐비(貪鄙)한 사람인데, 탐욕을 자행하여 먼 지방에서 물화를 날라오고 사들이어 백방으로 이익을 꾀하여 장탐(贓貪)이 차고 죄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청컨대 중전(重典)에 처하여 탐관 오리의 길을 막으소서.
6. 포상(褒賞)을 중하게 할 것. 근래 포상에 관한 장정(章程)이 없어 이종인(李宗仁)이 왜인을 벤 공이 큰 상에 이르지 않는데 특별히 우장(優獎)을 가하였고, 이우증(李友曾)은 무마하고 어거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마땅히 견책을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은전을 가하였습니다.
7. 형벌과 죄를 삼갈 것. 지난번에 불우(佛宇)가 실화한 까닭으로 유생을 형신(刑訊)하고 대간·시종·조정 대신의 말을 일체 굳이 거절하였으니, 전하의 형벌 쓰는 것이 또한 중도를 잃은 것이 있습니다.
8. 부비(浮費)를 생략할 것.
9. 민은(民隱)을 구휼할 것.
10. 변장(邊將)을 선택할 것. 김석철(金錫哲)은 한 방면의 주수(主帥)로서 지경에서 배회하며 머뭇거리고 구원하지 않아서, 한 성의 인민으로 하여금 간뇌(肝腦)가 땅에 맥질되게 하였고, 구전(具詮)은 서쪽 변방의 진장(鎭將)으로서 포악하고 혹독한 짓을 자행하여 인명을 살해하였으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역시 국가에서 평소에 양성하지 못하고 선택하기를 정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등을 아뢰니,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소(疏)가 이미 계하(啓下)되고 나서 상이 도로 안으로 들이라고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상소의 뜻을 보니 군신 상하가 마땅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서로 닦아야 하겠다. 정부와 육조 당상에게 보이라. 수령(守令)을 출척하는 것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잔학(殘虐)하고 탐오(貪汚)한 자는 이미 감사(監司)에게 글을 내

리어 전최(殿最)를 엄하게 밝히게 하였지만, 지금 마땅히 다시 감사에게 유시하여 구차히 섹책만 하지 말게 하라.

대저 변장(邊將)은 마땅히 섹택해야 하는데, 근일에 처치하는 것이 적당함을 잃어서 변방 근심을 불렀으니, 그 급무는 정하게 훈련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수전(水戰)은, 조종조의 고사(故事)에 반드시 외방에서 들어오는 조선(漕船)이 강(江)에 도착하는 때를 기다려서 행하였지만, 지금은 바야흐로 정전(正殿)을 피하고 있으니 하지 못할 것 같다. 의논하여 아뢰라.”

하매, 김수동(金壽童)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재변을 만나면 마땅히 경구(警懼)하고 수성(修省)하여 더욱 정치를 부지런히 하여 실상으로 응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삼면(三面)으로 적을 받으니 무(武)를 써야 할 땅이라, 수전을 연습하고 무비(武備)를 사열하는 등의 일은 피전(避殿)하시는 때라 해도 친히 행하시거나 관원을 명하여 행해야 할 것이요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성희안(成希顔)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김응기(金應箕)·홍숙(洪淑)·경세창(慶世昌) 등이 의논드리기를,

“조선이 올라올 때에 수전을 연습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나, 다만 지금은 피전(避殿)하시는 때이니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수동 등의 의논을 따랐다.

○甲戌○司諫院大司諫柳世琛等上十條疏其一曰正心術其二曰納諫諍其三曰惜名器近來不重名器濫施匪人有如持身不簡多言無實而希恩廢朝保養王子得至崇班者在貳公之位不識古今事變素乏物望居叅贊之列滔事廢朝巧飾文辭容悅取寵者位長工部早拔戚畹庸鄙無行不容清議者冒入版曹其四曰遠小人李茁挾梟獍之心爲鬼域之行罪大惡極宜置重典反加優容曲庇誤國之奸朝廷莫不痛心其五曰嚴贓污韓汲本一押邪貪鄙人也恣行貪欲輸貨遐方規利百端贓盈罪極請置重典以杜貪污之路其六曰重褒賞近來褒賞無章如李宗仁斬倭之功不至大賞而特加優獎李友曾撫御失宜在所當譴而反加恩典其七曰慎刑罪頃者以佛宇失火之故刑訊儒生臺諫侍從朝廷大臣之言一切固拒殿下用刑亦有所失中矣其八曰省浮費其九曰恤民隱其十曰擇邊將金錫哲爲一方主帥徘徊境上遲留不援使一城之人肝腦塗地其誣以西鄙鎮將恣行暴酷戕害人命其罪在所不赦亦國家養之不素擇之不精也 上嘉納之疏既下 上命還入內仍傳曰予觀疏意君臣上下當交修不逮其示于政府六曹堂上黜陟守令不可不嚴殘虐貪污者已下書監司使之嚴明殿最今宜更諭監司勿令苟且塞責大抵邊將在所當擇近日處置失宜以致邊患其務在於精鍊耳水戰祖宗朝故事必待外方漕船上江時爲之但今方避正殿似不得爲也其議啓金壽童議凡遇災變當驚懼修省益勤政治應之以實我國三面受敵用武之地如習水戰閱武等事雖當避殿或親行或 命官不可廢也成希顔議類此金應箕洪淑慶世昌等議漕船上來時水戰有例但今方避殿之時舉行爲難 上從壽童等議

《中宗實錄 卷11, 39面》

중종 5년 5월 28일(임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이줄·이맥·안운덕·변수양·이공우·김석철·김현손 등의 일을 아뢰고, 네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중략]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 등이 차자(筭子)를 올렸다.

“이줄이 성품이 본래 사곡하고 마음이 또 부정〔傾險〕하며 음흉한 꾀와 간사한 계교를 잘하여 항상 착한 선비를 함해(陷害)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전에 무진년(중종 3, 1508)에 있어 사류(士類)를 제함(擠陷 : 모함하여 곤경에 빠뜨리다)하고 조정을 괴란(壞亂)하려 하였으니, 그 옥석구분(玉石俱焚)이란 말이 지금까지 한심합니다. 마땅히 중전(重典)으로 처단하여야 하였는데, 특히 상은(上恩)을 입어서 다만 가까운 땅에 귀양보냈으니 조정이 실망하였습니다. 적중(謫中)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에 일이 있기를 바라는 진용(進用)을 도모하였는데, 마침 변방의 급함을 만나 곧 면방과 복직을 명하셨으니 줄의 간사한 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에 종군(從軍)을 명할 때에 신등이 지극히 놀랐으나 곧 논계하지 않은 것은, 적세가 가야흐로 치성하고 성려(聖慮)가 가야흐로 근심하시니 싸움터에서는 한 병사도 대단하므로 꼭 참고 발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추한 오랑캐가 이미 평정되고 줄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가덕도(加德島)로 핑계하시지마는, 변방에 있는 장졸이 스스로 정벌할 것이니 줄이 있고 없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으리까? 원컨대, 급히 그 직을 거두고 도로 배소(配所)로 보내어 여망(興望)을 쾌하게 하소서. 한급(韓汲) 역시 보잘 것 없는 비루한 사람입니다. 비록 정과(正科)로 말미암아 출신(出身)은 하였으나, 마음 쓰는 것이 탐하고 더러워, 지난날에 형관(刑官)이 되어서는 욕심을 자행하였고, 강릉(江陵)에 있을 때는 관물(官物)을 훔쳤으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監司)는 변방의 중함을 맡고 헌부(憲府)는 국가의 기강을 잡아, 사간(事干)을 국문하여 터럭만 큼도 그릇됨이 없는데, 전하께서 감사와 헌부를 믿지 않고 한급의 교사한 호소만을 믿으시어 논하여 다시 추문하라고 명하시었으니, 전하의 명령과 대신의 의논이 모두 그릅니다. 대저 의심스러워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대신과 의논하여 밝게 분별하는 것이 가하지마는, 한급의 일 같은 것은 서울과 외방의 사간이 같은 말로 진정을 진술하였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한급이 본래 사람 섬기기를 잘하므로 대신이 의심이 없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한급을 비호하기 위해 억지로 다시 추문할 것을 의논하였고, 사간은 또 사곡하게 꾀임에 혹하여 여러 차례 형벌을 받으면서도 승복하지 않으니, 이것은 뇌물을 중히 여겨 그 몸을 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생명을 잃게 되면 전하의 형벌을 근심하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에 어찌 측연하지 않으리까! 하물며 농사철을 당하여 오래 옥에 갇히어 여러 번 형신(刑訊)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 심할 수 없음에리까! 원컨대, 급히 무죄한 백성을 석방하고 장오(贓汚)의 죄를 바로 잡아서 징계함이 있게 하소서. 대저 임금은 명(明)과 단(斷)으로 덕을 삼으니, 명으로 그 간단한 것을 살피고 단으로 사곡한 것을 버리어, 명과 단이 아울러 행한 연후에 능히 군자 소인을 변별하여 쓰고 버리는 방도가 얻어질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특히 명단을 내리시어, 이줄의 나라 그르친 죄를 물리치고 한급의 장오를 범한 죄를 정하시면 국가가 다행하겠습니다.”

○壬午 御朝講○臺諫啓李茁李陌安潤德邊壽楊李公遇及金錫哲金賢孫等事四啓不允[中略]
○大司諫柳世琛等上劄曰李茁性本回邪心又傾險善爲陰謀詭計常以陷害良士爲事前在戊辰欲擠陷士類壞亂朝廷其玉石俱焚之言至今可爲寒心固當斷以重典而特蒙 上恩只配近地朝廷之望缺矣其在謫中常希國家有事以圖進用適值邊鄙告急卽 命免放還職茁之邪計遂矣當初命從軍之持臣等至爲駭愕而不卽論啓者賊勢方熾 聖慮方軫矢石之間一士爲多故容忍不發今則醜虜已平茁無所爲 殿下雖諉以加德島然在邊將卒自可征之何關於茁之有無伏願亟收其職還置配所以快輿望韓汲亦瑣瑣庸鄙人也雖由正科出身其用心貪污曩爲刑官恣行其愆其在江陵盜竊官物無足恠也監司任方面之重憲府持國家之綱訊鞫事干一毫無髮之誤而 殿下不信監司憲府而偏信韓汲巧詐之訴命議更推 殿下之命大臣之議皆非也夫疑似難處事則與大臣議而明辨之可也如韓汲之事京外事干同辭輸情更無所問也汲素善事人故大臣知事之無疑而欲庇韓汲強議更推事干惑於曲誘累次受刑而不服是重賂而忘其身也如此而至於殞命則在 殿下恤刑好生之心寧不惻然况當農月久滯牢獄累度刑訊冤抑莫甚伏願亟放無辜之民明正贓汚之罪使有懲艾大抵人君以明斷爲德明以察其奸斷以去其邪明斷並行然後能辨別君子小人而用舍之方得矣伏願 殿下特垂明斷斥李茁誤國之奸定韓汲犯贓之罪則國家幸甚

《中宗實錄 卷11, 44面》

중종 5년 5월 29일(계미)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세침(柳世琛)·집의(執義) 윤세호(尹世豪)가, 이줄·한급·이맥·안윤덕·이공우·변수양·김석철·김현손 등의 일을 아뢰고, 동지사 신용개(申用漑)100·특진관 이점(李楨)101·김선(金瑄)·참찬관 손중돈(孫

100) 신용개(申用漑) : 1463~1519.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개지(漑之) 호는 이락정(二樂亭) 송계, 수옹, 시호는 문경(文景) 본관은 고령. 신숙주의 손자, 김종직의 문인, 성종 19년(1488) 문과에 급제. 권지승문원 부정자에 이어 수찬이 되고 교리를 역임하였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투옥되었다가 곧 풀려나 도승지에 올랐고, 동왕 10년 갑자사화로 영광에 유배되었다. 중종 반정으로 등용되어 형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저서에 이락정집이 있고 편서에 속 동문선, 속 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가 있다.

101) 이점(李楨) : 1446~1522.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승보(崇甫) 시호는 문호(文胡) 본관은

仲墩)102) · 시독관 이자(李耜) · 검토관(檢討官) 이여(李膺)가 또한 이줄(李茁)의 일을 논하였다. 영사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이줄은 심술이 간사하여, 그가 허굉(許磁)의 집에 가서 말한 것과 주상 앞에서 밀계(密啓)한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죄명을 정하여 나누어 방수하러 보내거나 적소로 돌려 보내소서. 줄이 공을 요구하여 뜻을 얻고자 하는데, 만일 공이 있으면 국가에서 갚지 않을 수 없으며, 틈을 타서 진용(進用)되면 그 해가 클 것입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어렵게 여기실 것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癸未 御朝講大司諫柳世琛執義尹世豪啓李茁韓汲李陌安潤德李公遇邊壽楊金錫哲等事金賢孫等事同知事申用漑特進官李玷金瑄叅贊官孫仲墩侍讀官李耜檢討官李膺亦論李茁事領事成希顔曰李茁心術回詐其往許磁家所言及 上前密啓之事不可赦也請定罪名分防不然則還其謫所茁欲要功而得志若使有功則國家不得已報之乘間進用則其害大矣公論如此不必留難 上皆不答 《中宗實錄 卷11, 45面》

중종 5년 6월 29일(계축)

○안당(安塘)103) · 이계맹(李繼孟) · 이우(李塢)104) · 최관(崔灌) · 최인(崔潏)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受職)하였고, 본조(本朝)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浦)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恒居)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智略)이 있으나 어찌 후일 간계 꾸밀 일을 미리 염려하여 홀로 머물러 둘 수 있으리까! 충주에 가둔 왜인은 우리 군사 기밀의 허

광주(廣州). 문과에 급제 연산군 7년(1501) 도승지, 참판 등을 지냈고 동왕 9년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한성부 좌윤으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중종 반정으로 풀려나 중종 12년(1517) 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02) 손중돈(孫仲墩) : 1463~1529.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대발(大發) 호는 우재(愚齋) 시호는 경절(景節) 본관은 경주. 문과에 급제 연산군 때에 사복시정으로 파직되었고 중종반정 뒤에 목사(牧使), 판서, 관찰사 등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103) 안당(安塘) : 1460~1521.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 시호는 정민(貞愍) 본관은 順興. 성종 때 문과에 급제. 사관(史官)을 거쳐 연산군 때 성균사성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중종 2년(1507) 이과의 옥사를 다스려 정난공신 3등이 되었고 이조 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뒤에 좌의정이 되어 기묘사화 때 관직을 삭탈 당하였고 신사무옥에 사사되었다.

104) 이우(李塢) : 1469~1517. 중종 때의 문신.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재(松齋) 본관은 진보(眞寶). 이황(李滉)의 숙부, 문과에 급제. 검열, 정랑,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으로 청해군(靑海君)에 봉하여졌고 진주목사, 참판, 관찰사 등을 지냈다. 시문에 뛰어났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실을 알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면, 관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오래 삼포에 산 자는 우리 나라의 일을 훤히 알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이 여섯 왜인을 기다려서 비로소 허실을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왜선이 많이 와서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려워 경솔히 돌려보낼 수 없으니, 잠시 모두 유치해 두었다가 천천히 오랑캐 정세의 향배(向背)를 보아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중략]

하고, 조계상(曹繼商)·류세침(柳世琛)·윤세호(尹世豪)·이철균(李鐵鈞)·류사경(柳思敬)·이성언(李誠彦)·박거린(朴巨鱗)·이언호(李彦浩)·소세량(蘇世良)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일본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일행 또한 확실히 일본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 쉽게 돌려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과 충주에 있는 자를 유치하거나 방송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충주의 왜인이 도중에 있을 때에 자못 우리 군사 기밀을 알았으니 끝내 놓아 보내서는 안 되고, 서북 궁벽한 고을에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지금 변보가 날마다 이르는 때를 당하여 사기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라다라 및 여러 왜인은 모두 잠시 머물러 두었다가 변방 일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소서.”[중략]

하고, 정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왜놈들이 대대로 국은을 입고 칭신하면서 번리(藩籬)가 된 유래가 이미 오랜데, 이번에 까닭 없이 온 섬이 반란을 일으켜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였으니, 성조(聖朝)를 저버린 것이 이미 심합니다. 마땅히 오랑캐 사자를 잡아 두어 무례를 책해야 하는데 어찌 놓아 보내어 적의 형세를 돕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라다라는 지모와 계략이 넉넉하며 원래 일본 왜가 아니고 오래 삼포(三浦)에 살아 해마다 와서 조회하고 우리 나라 말을 잘 알아서, 무릇 도로의 굽고 곧은 것과 군기의 허실을 본래 모르는 것이 없음에리까! 만일 그 술책에 빠져 본토로 돌아가게 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본 왜인이라 칭하는 자와 충주에 가둔 왜인과 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 등은 모두 변사 무상하니, 그 중에 어찌 흉포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자가 없겠습니까? 우리[柙]속의 호랑이로 하여금 다시 원야(原野)에서 포학을 부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일에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조종조의 구례에 의하여 모두 궁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적의 기세가 한창 성한 때를 당하여 돌려 보낼 수는 없고, 또 여러 의논이

아직 일이 정하여지는 것을 기다려 처치하자 하니, 이 단자(單字 : 주기(奏記)의 이름)를 정원에 머물러 두고 후일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

○癸丑○安瑯李繼孟李瑀崔灌崔潏等議而羅多羅本居妻島受職本朝來往時娶妻留浦而已則不可槩諸恒居者雖少有智略豈可逆爲後日之計而獨留之乎忠州囚倭知我軍機之虛實不可遣還則留館者豈獨不知况久居三浦我國之事無不洞知則豈待此六倭而始知虛實乎但今倭船多來其情難測固不可輕易遣還姑須並留徐觀虜情向背更議施行[中略]

曹繼商柳世琛尹世毫李鐵鈞柳思敬李誠彥朴巨鱗李彥浩蘇世良議而羅多羅其非日本人明矣其一行人亦不可的指爲日本人似不容易遣還且留館倭與在忠州者其留置放送不宜異論也若以爲忠州倭在途時頗知我軍機終不可放送宜置西北僻邑則恐不可也今當邊報日至事機難測而羅多羅及諸倭姑并留之以待邊事稍定更議處置[中略]

政院議啓曰倭奴世受國恩稱臣作藩其來已久今者無故舉島叛亂陷城殺將其辜負 聖朝已甚固當羈留虜使責以無禮豈可使之縱還以助賊勢乎况而羅多羅智計有餘元非日本之倭久居三浦歲歲來朝能解我國言語凡道路迂直軍機虛實無不素諳若陷於其術聽使還土則必有噬臍之悔其餘稱日本倭人及忠州囚倭館中留倭等皆變詐無常其中豈無桀驁難制者乎不可使押中之號復縱暴於原野臣等前日欲不送還者以此也依 祖宗舊例皆分處僻邑傳曰今當賊勢方張固不可遣還且諸議皆以姑待事定處置云其留此單字奏記之名于政院俟後日更啓

《中宗實錄 卷11, 58面》

중종 5년 8월 10일(계사)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류세침(柳世琛)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는 기강(紀綱)을 유지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糾察)하는 곳인데, 근간에 기강이 해이하여졌습니다. 형조의 낭관들이 회음(會飲)한 일과 같은 것은 일에 간련(干連)된 자가 다 공비(公費)로 연회를 마련하였다고 공사(供辭)하였는데, 또 서리(書吏)를 추문한 것은 그들의 죄를 벗겨 주고자 한 것입니다. 조정이 공비로 연회를 마련하는 폐해가 백성에게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세워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상(聖上)의 밝으신 거울이 밝게 비추지 않았더라면 거의 속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 회음이 공비로 마련한 것이 명백한데도 모르는 체 숨겨 조율(照律)하고 법을 굽혀서 사정(私情)을 써서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하였으니, 청컨대 이것으로 사연을 삼아 추고(推考)하소서. 또 한성부의 공사(公事)가 정원(政院)에 도착한 것을 정원이 입계(入啓)하지 않아서, 승지 이세인(李世仁)은 성세정(成世貞)과 서로 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헌부가 이러한 일을 알면서 다시 죄를 계청(啓請)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이것도 아울러 추고의 사연에 넣으소서. 성세정이 순서를 뛰어 넘어 논의한 것은 스스로

해당하는 율(律)이 있을 것이며, 이세인 또한 재직(在職)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다 그대로 좃고, 또 한성부의 관원을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간원(諫院)이 또 류담년·강중진의 일과, 품계 높은 무신(武臣)으로 방어사(防禦使)를 삼는 등의 일과, 승지 성세정이 아랫 지위에 있는 관원으로서 타방(他房)의 공사에 간여한 일은 마땅히 분석(分析)하여 추고해야 한다는 것을 네 번 아뢰었으나, 다 유히하지 않았다.

○류세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사균(李思鈞)을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최숙생(崔淑生)¹⁰⁵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관(金寬)을 집의(執義)로, 류운(柳雲)·류인귀(柳仁貴)¹⁰⁶를 장령(掌令)으로, 김우서(金禹瑞)·김굉(金磁)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癸巳○司諫院大司諫柳世琛等啓曰憲府維持紀綱糾察百僚近者紀綱解弛如刑曹郎官會飲事事干皆以公辦納招而又推書吏是欲脫其罪也朝廷以公辦弊及於民故立法而禁若非睿鑑洞照則幾乎見欺其會飲公備明白而隱然照律屈法用情欺罔天聰請以此爲辭而推考且漢城府公事到政院政院不入啓承旨李世仁與成世貞互相推調憲府知其如此而不更啓請罪請以此並入推考辭緣成世貞越次論議自有其律李世仁亦不可在職 上皆從之又 命推漢城府官員諫院又啓柳聃年康仲珍秩高武臣爲防禦使等事承旨成世貞以在下之官干與他房公事宜分析推考至於四啓皆不允○以柳世琛爲司憲府大司憲李思鈞爲承政院同副承旨崔淑生爲司諫院大司諫金寬爲執義柳雲柳仁貴爲掌令金禹瑞金磁爲持平 《中宗實錄 卷12, 5面》

중종 5년 8월 11일(갑오)

조참(朝參)을 받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이어서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유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류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경주 근처에 방어사를 두는 일은 대간의 아뢴 말이 매우 마땅하니, 신도 또한 감히 항법(恒法)으로 하자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조방장(助防將)을 보내지 않으면 방어가 소홀하고, 보내면 또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계(兩界)의 잔약하

105) 최숙생(崔淑生) : 1457~1520. 조선 중종 때 문신. 자는 자진(子眞) 호는 충재(忠齋)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경주. 성종 23년(1492) 문과에 급제 연산군 2년 사가독서하고 수찬, 지평, 헌납 등을 지냈으며 응교로 있을 때 갑자사화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 다시 응교로 복직되고 중종 3년(1508)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 이어 대사간, 헌납, 우찬성을 지내고 판 중추부사로 있을 때 기묘사화로 파직되었다. 저서에 충재집(忠齋集)이 있다.

106) 류인귀(柳仁貴) : 1463~1531. 조선 중종 때 문신. 자는 자영(子榮) 호는 수재(睡齋) 본관은晉州(토진주) 문과에 급제 연산군 9년(1503)에 수찬이 되었고 정언으로 폐비 윤씨(尹氏)의 추숭을 반대하다가 회덕에 장류되었다. 중종 반정으로 풀려나 교리, 사간 등을 거쳐 대사성에 올랐다. 저서에 수재집이 있다. 사간(司諫) 문통(文通)의 아들이다.

고 피폐함은 남쪽 지방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부터 얼음이 얼면 조방장 4인이 유방(留防)하고 얼음이 풀리면 돌아오곤 하여, 비록 적변(賊變)이 없더라도 상례(常例)의 일로 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무신(武臣)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문신(文臣)의 가함한 자를 임명해 보내서, 평상시에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변고가 있으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치민(治民)과 방어 두 가지에 다 편리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그것이 폐단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 항법(恒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합당한 인물이 없다면 반드시 보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황주(黃州)는 평안도에 가까운 까닭에 황주목사(黃州牧使)는 조방장을 겸하게 하고 장차 일이 있으면 무신으로 차송(差送)하소서. 전주부윤(全州府尹) 신주(辛鑄)·경주부윤(慶州府尹) 예충년(芮忠年)과 같은 이는 다 무신인데 차견(差遣)하였으니, 문신은 치민(治民)을 잘하고 무신은 유독 치민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잘못 다스린다면 관찰사가 스스로 출척(黜陟)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따로 조방장을 설치하면 폐해를 입음이 많을 것이라고 하여 대신이 헤아려서 말한 것이니, 이것은 다만 한 때의 권의(權宜)의 계책일 뿐이다. 전조(銓曹)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며 장재(將才)가 있는 자를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대사헌(大司憲) 류세침이 아뢰기를,

“왜변(倭變)이 거듭 닥치면 부윤(府尹) 한 사람이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법을 세움이 이미 오래 되면 누가 그것을 권의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아뢰는 것을 신이 감히 그르다고 하지는 못하나, 비록 입법(立法)하지 않더라도 전조가 마땅히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甲午 受朝叅○御朝講臺諫仍啓前事不允領事柳順汀曰慶州近處置防禦使事臺諫所啓甚當臣亦不敢爲一定之法不送助防將則防禦虛疎送之則又有弊事兩界殘弊非如南方從前合冰則助防將四人留防冰解則還來雖無賊變以爲常事今亦以爲武臣不合則差遣又臣可當者常時則治民若有變故則調兵救援如是則於治民防禦兩便臣意欲其無弊非欲爲恒法若人物不合則不必遣也黃州近平安道故黃州牧使兼助防將有事則以武臣差送如全州府尹辛鑄慶州府尹芮忠年皆以武臣差遣不可謂文臣能治民而武臣獨不能也果不能治則觀察使自可黜陟矣 上曰以謂別設助防將則多受其弊故大臣計而言之此特一時權宜之策銓曹擇能治民有將才者任之可也大司憲柳世琛曰倭變疊至則一府尹何能爲且立法既久則誰得知權宜而設乎大臣所啓臣不敢以爲非雖不立法銓曹宜當擇人而送也 《中宗實錄 卷12, 6面》

중종 5년 8월 15일(무술)

조하(朝賀)를 받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성균관의 관원과 유생(儒生) 등을 강(講)하게 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류순정(柳順汀)·우의정 성희안(成希顔)·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여평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형조 판서 권균(權鈞)·좌찬성 이손(李蓀)·우찬성 김응기(金應箕)·좌참찬 홍경주(洪景舟)·판윤(判尹) 윤순(尹珣)·병조 판서 정광필(鄭光弼)·지사(知事) 이점(李坵)·창녕군(昌寧君) 조계상(曹繼商)·병조 참판(兵曹參判) 홍숙(洪淑)·형조 참판 이우(李堉)·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 등이 입시하였다. 강을 마치고 노공필에게 주문(主問)을 행하게 하고, 김응기·이점에게 변대(辨對)를 명하였다. 노공필이 말하기를,

“관원(館員)이 「대학」(大學)을 강하였으나 「대학」의 뜻을 다 강명(講明)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대학」 첫 장(章)에서부터 종편(終篇)까지를 중횡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중략]

성희안이 아뢰기를,

“사유(師儒)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종조(成宗朝)에 있어서 강경서(姜景叙)가 은율현감(殷栗縣監)이 되었는데, 사위로 삼기에 합당하다고 하여 불러들여 관원(館員)으로 보직(補職)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육시·칠감(六寺七監)의 관원으로서 사유로 삼을 만한 자가 있으면 선택하여 충용(充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유는 전에도 또한 골라서 임명하였다. 그러나 홍문관이나 대간에는 사람마다 임명할 수 없어서 사유(師儒)로 있는 자라도 부득이 옮겨다 임명하지만, 그 밖의 다른 직임(職任)에는 사유를 옮겨다가 임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중략]

하고, 지사(知事) 이점(李坵)이 아뢰기를,

“신이 성균관을 겸대(兼帶)하고 있는데, 대사헌이 아뢴 것이 과연 우의정이 아뢴 것과 같습니다. 김안국은 상피(相避)할 처지이나 만약 관직의 차례에 상당하다면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강(直講) 이하라면 육사 칠감(六司七監)에 또한 가합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다. 순정(順汀) 등이 빈청(賓廳)에 물러나와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류담년의 서장(書狀)을 보니 비록 중진(仲珍)이 이 계책을 먼저 세우기는 하였지만 1등으로 논공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내려서 2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유희철은 비록 비천(卑賤)하나, 상례에 의해 가자(加資)하면 신분(身分)의 한계(限界)를 넘을 수 없지만 이것은 특히 군공(軍功)으로 주는 것이니 해로

을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 아뢴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이어 류담년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진실로 경의 죄를 꾸짖어야 마땅하겠으나, 특히 전의 공로가 있기에 죄책하지 않는다. 이제 경이 논공(論功)을 균평하게 하지 않아서 아랫사람의 원망을 가져왔으니,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김안국은 법을 어겨가면서 직임을 옮길 수는 없다. 어찌 다른 사람이 없으랴! 외직에 있으면서 사유(師儒)로 합당한 자가 있으면 관원(館員)으로 승보(陞補)하도록 하라.”
 하였다.

○戊戌 受朝賀 御思政殿講成均館官員及儒生等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顏交城君盧公弼驪平府院君閔孝曾刑曹判書權鈞左贊成李蓀右贊成金應箕左叅贊洪景舟判尹尹珣兵曹判書鄭光弼知事李坵昌寧君曹繼商兵曹叅判洪淑刑曹叅判李瑀大司憲柳世琛等入侍講訖 命盧公弼主問金應箕李坵辨對盧公弼曰館員所講大學未盡講明請以大學首章至終篇縱橫論難可乎[中略]

成希顏曰師儒未易多得在 成宗朝姜景叙爲殷栗縣監以師儒可當入補館員今六寺七監官員有可當者審擇充差可也上曰師儒前亦擇差然弘文館臺諫不可人人而任之雖在師儒不得已移任他餘職任則不須以師儒任之也[中略]

知事李坵曰臣兼帶成均館大司憲所啓果然如右議政所啓金安國有相避若於職次相當則差之可也直講以下則於六司七監亦多可當也順汀等退于賓廳議啓曰今見柳聃年書狀雖曰仲珍首建是策不可論以一等請降錄二等何如兪懷哲雖卑賤若例加則不可踰越分限此則特以軍功授之不妨傳曰皆依所啓仍下書柳聃年曰固當罪責於卿特以有前勞故不爲耳今卿論功不均以致下人之怨咨後勿如是可也又傳曰金安國則不可毀法遷叙豈無他人乎在外任而師儒可當者陞補館員可也

《中宗實錄 卷12, 8面》

중종 5년 8월 21일(갑진)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 · 대사간 최숙생이 류담년 · 유희철 · 강중진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甲辰 御朝講大司憲柳世琛大司諫崔淑生論柳聃年兪懷哲康仲珍等事不允

《中宗實錄 卷12, 11面》

중종 5년 9월 3일(병진)

상참(常參)을 받고, 이어 계복(啓覆)을 들었다.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성희안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무인(武人)이 활쏘기를 즐겨하지 않는데, 그 중에도 동반(東班)에 서직(敍職)된 자는 전연 활을 잡지 않으니, 그들이 궁마(弓馬)로 발신(發身)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청컨대, 동·서반의 무신을 뽑아서 상·중·하 3등으로 나누고, 혹은 50순(巡), 혹은 30~40순씩 활을 쏘게 하여, 비록 친히 시험할 수는 없더라도 관원을 명하여 시험하게 하고, 점수를 통산해서 상벌(賞罰)하게 하소서. 1년 안에 이와 같이 하기를 3~4번 하면, 사람들이 다 격려되어서 급한 때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과 정언 이여(李膺)가 강중진·유희철 등의 일을 아뢰고, 여(膺)가 또 아뢰기를,

“희철은 스스로 한직(限職)이 있으니, 명기(名器: 관직)를 과람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당덕종(唐德宗)이 주체(朱泚)의 난(亂)¹⁰⁷을 당하여 멸망이 조석간에 있게 되었는데도, 육지(陸贄)가 명기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파천(播遷)하고 있는 사이에도 이와 같았거늘, 더구나 당당한 성조(盛朝)에서 어찌 조종(祖宗)의 법을 깨뜨리면서 과람하게 명기를 천한 서얼(庶孽)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리까!”

하고, 류세침(柳世琛)도 거듭 논계(論啓)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丙辰 受常參仍聽啓覆○御朝講領事成希顔曰近年以來武人不喜習射其叙於東班者全不執弓以弓馬發身之意安在臣請抄東西班武臣分爲上中下三等或五十巡或三四十巡雖不得親試命官試之通計畫數以爲賞罰一年之內如是者三四度則人皆激勵可爲緩急之用大司憲柳世琛正言李膺啓康仲珍俞懷哲等事膺又曰懷哲自有限職名器不可濫試唐德宗值朱泚之亂亡在朝夕而陸贄眷眷以愛惜名器爲言播遷之除尚且如此況堂堂盛朝豈可毀 祖宗法濫施名器於賤孽乎柳世琛反覆論啓皆不允

《中宗實錄 卷12, 14面》

중종 5년 9월 15일(무진)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정언 민수천(閔壽千)이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戊辰 御朝講大司憲柳世琛正言閔壽千論前事不允

《中宗實錄 卷12, 19面》

107) 주체(朱泚)의 난(亂): 당 대종(唐代宗) 때 요 영언(姚令言)이 절도사로서 군변을 일으키니, 천자가 봉천으로 달아났다. 영언이 주체를 추대하여 황제라 일컫고, 국호를 대진(大秦)이라 하였다가 뒤에 한(漢)이라 하였다. 이것을 주체의 난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성(李晟)에게 패하고 자기의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唐書 卷二百二十五》

중종 5년 9월 28일(신사)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안윤덕(安潤德)은 부경(浮輕)하고 자과(自誇)하여 기세를 부리며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므로 공의(公議)에 용납되지 않음이 오래 되었습니다. 한성은 곧 옛날의 경조(京兆)이며 판윤(判尹)은 또 장관(長官)이 되어 기무(機務)를 총재하는 자로서 그 임무가 지극히 중대하니, 윤덕은 결코 함부로 이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속히 윤덕의 관직을 체임하시어 여망(興望)에 부응하소서.

우리 나라에서는 명분(名分)이 본래 엄중하며, 더욱 적서(嫡庶)의 분수를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품(限品)의 법이 법령에 뚜렷하여 만세의 큰 방금(防禁)이 되었으니, 막대한 공훈이 있는 자가 아니면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유희철이 군공(軍功)이 1등이라고 하나, 공이 사직에 있는 자에게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노고를 갚고자 한다면 풍부한 상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 반드시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급(資級)을 외람되게 주어서 선왕의 법을 어지럽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명기(名器)가 천하게 되고 분한(分限)이 깨뜨려지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급히 회철의 가자를 회수하여 명분을 바꾸소서.

성왕이 구족(九族)에 돈목(敦睦)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함이 자세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從良)의 한계 정한 것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마땅히 따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원(疏遠)한 외성(外姓)의 친척들이 외람되게 진소(陳訴)한 것을 의(義)로서 끊지 않으시고 일체를 그들의 소원대로 좇으셨으니, 어찌 선왕의 성헌(成憲)을 준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성종조의 전례(前例)라고 하나, 그것은 한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은전(恩典)일 뿐입니다. 어찌 오늘과 같이 외람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마땅히 조종의 옛법을 지켜야 할 것이요, 한때의 특은(特恩)은 마땅히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유모(乳母)의 족친은 옛날에는 종량한 전례가 없음에리까! 만약 한번 단서를 열어 놓으면 뒷날에는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는 공평정대함이 천지와 같아야 하는데, 어찌 한 터럭만한 사의(私意)인들 그 사이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일식이나 월식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약 전하께서 족친에게 사를 두고 유모에게 사를 둔다고 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급히 환천(還賤)을 명하여 공도(公道)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辛巳○大司憲柳世琛等上疏其略曰安潤德浮誇使氣秉心不正不容於公議久矣漢城卽古之京兆判尹又爲長官摠裁機務其任至重潤德決不可冒居此 地伏願 殿下速遶潤德之職以副輿望我國家名分素嚴而尤謹於嫡庶之分故限品之法著在令甲立爲萬世大防非有莫大之勳不得踰分今俞懷哲雖曰軍功一等其視功在 社稷者不啻霄壤欲報其勞則豐賞厚賜可也何必濫授非分之資以亂 先王之典乎名器之賤分限之毀自今始矣伏願亟收懷哲之資以正名分 先王敦睦九族非不至也立法定制非不詳也而從良定限載在大典此 殿下所當遵守也今疎遠外姓之親濫冒陳訴而 殿下又不以義斷之一切從願可謂遵 先王成憲乎雖曰成宗朝舊例然不過一二特恩耳豈至如今日之猥濫乎且 殿下當守 祖宗舊章不當效一時特恩也況乳媪族親古無從良之例若一開端後將難禁 殿下公平正大與天地無間寧有一毫私意於其間哉然小有過差如日月之食人皆見之小民如曰 殿下私於族親私於乳媪則豈不爲 聖德之累伏願 殿下亟命還賤以示公道不納

《中宗實錄 卷12, 25面》

중종 5년 10월 14일(정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근래에 감사는 반드시 2품(品) 이상의 사람으로 임명해 보내는데, 무릇 사람이 어질다면 벼슬의 품질이 낮더라도 사람들이 다 존중하게 여길 것이나, 만약 어질지 못하다면 벼슬의 품질이 높더라도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을 것이니, 강원·황해 등의 도에는 품계가 통정(通政)인 자일지라도 또한 아울러 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박열(朴說)이 아뢰기를,

“성종조에서는 경상도 관찰사도 또한 통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사람이 있다면 비록 통정인들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성희안이 아뢰기를,

“지금의 2품관들은 공이 있음을 인하여 승진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덕망이 있는 자가 적으니, 통정으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지금 육조의 참의는 아는 것이 한 관사(官司)의 일 뿐인데 승지는 온 나라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를 어찌 반드시 2품으로만 임명해야 하겠는가마는, 선왕조에서 통정으로 임명해 보낸 것은 또한 권의(權宜)의 처사인 것이다. 지금은 2품인 수령이 매우 많으니, 통정으로 관찰사를 임명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丁酉 御朝講大司憲柳世琛曰近來監司必以二品以上差遣凡人若賢則職秩雖卑人皆倚

重若不賢則職秩雖高人不以爲重如江原黃海等道階雖通政者亦可並用知事朴說曰 成宗朝慶尙道觀察使亦以通政差之今若有能堪其任者則雖通政何妨領事成希顏曰今之二品因有功而陞授者多以是有德望者寡矣以通政差之甚當今六曹叅議則所知者一司而已承旨則盡知一國之事 上曰監司何必以二品差之 先王朝以通政差遣者亦權宜之舉今則二品守令甚多以通政爲觀察使似不穩當

《中宗實錄 卷12, 31面》

중종 5년 10월 17일(경자)

○류순(柳洵)¹⁰⁸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 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浦所)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恒居倭)들과 통정(通情)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간인(奸人)이 적(敵)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이(利)가 아니라고 하여, 다만 이 한 사람만을 유치(留置)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청하였더니, 그 뒤에 정광필의 아뢰 바에 따라 유치한 것이 이제 이미 두어 달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가 비록 수금(囚禁) 중에 있으나, 경군관(京軍官)을 연속하여 보내서 방어하는 등의 일과 같은 것을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이제 만약 놓아 보낸다면 우리의 국사를 저희 나라 안에 전과할 것은 과연 정원(政院)의 논의와 같습니다. 더구나 평 시라(平時羅) 등은 처음에는 보변(報變)한다고 하다가 말을 변경하여 청화(請和)한다고 하여, 말이 한결 같지 않고 간교함도 심하니, 실로 우리의 허실을 엿보러 왔을 뿐입니다. 적인의 간첩으로 온 자를 놓아 보내어 적국으로 하여금 국가의 경중(輕重)을 알게 하여, 경모(輕侮)하는 마음을 더욱 조장시키는 것은 가장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류순정(柳順汀) · 권균(權鈞) · 성세정(成世貞) · 민효증(閔孝曾) · 강혼(姜渾) · 이계남(李季男) · 남곤(南袞) · 한숙창(韓淑昌) · 정광필(鄭光弼) · 홍숙(洪淑) · 경세창(慶世昌) · 박열(朴說) · 한세환(韓世桓) · 민상안(閔祥安) · 이병정(李秉正) · 황명헌(黃孟獻) · 류인호(柳仁濠) · 이양(李良) · 류세침(柳世琛) · 김관(金寬) · 류인귀(柳仁貴) · 김굉(金磁) · 송호의(宋好義) · 어득강(漁得江) · 최숙생(崔淑生) · 이철균(李鐵鈞) · 성세창(成世昌) · 이어(李膺) · 권벌(權撥) · 김세필(金世弼) · 김극희(金克愾) · 허광(許磁) · 신엄(申儼) · 서후(徐厚) · 홍언필(洪彦弼) · 김희수(金希壽) · 황

108) 류순(柳洵) : 1441~1517. 연산군 때의 문신. 자는 희명(希明) 호는 노포(老圃) 시호는 문희(文僖) 본관은 문화(文化). 문과에 급제 우부승지 등을 거쳐 형조참판이 되었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때 파직되었다가 곧 등용되어 호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고 중종 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2등으로 문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중종 4년 면직되었다가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어 노령으로 사직하였다. 시부에 뛰어나 왕명으로 연주시격(聯珠詩格)을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의약, 지리에도 밝았다.

여헌(黃汝獻)·정사룡(鄭士龍)·김응벽(金應璧)·류돈(柳墩)·반석평(潘碩枰)·유중익(兪仲翼)·이수영(李守英)·류윤덕(柳潤德)·정전(鄭荃)·이효언(李孝彦)·채침(蔡忱) 등의 의논도 같았고, 성희안(成希顔)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평 시라 등 전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왜인은 모두 37인입니다. 앞서 온 왜인은 처음부터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죄한 자들이며, 뒤에 온 왜인들은 뜻이 우리의 내정을 엿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변(報變)한다고 칭탁하였으니 실로 교사(狡詐)하고 반복(反覆)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많이 책망할 것은 없습니다. 저 섬의 왜인들이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죄를 스스로 알고, 이 전후해 온 왜인들이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필시 모두 이미 죽임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니, 그 부모·처자의 애통하는 정상은 눈으로 보는 듯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다만 섬 안의 왜인들이 다 우리의 천지 같이 포용하는 덕택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형제·처자들은 우리의 덕(德)을 우리름이 반드시 갚을 것이니, 다른 날 얼굴을 고치고 마음을 돌려서 관(關) 문을 두드리며 화친을 비는 마음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로 하여금 우리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회앙(懷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저들의 내구(來寇)를 우리가 제지함이 매우 엄하면 저들은 비겁하게 되고 우리는 용감할 것이며, 우리는 이기고 저들은 패할 것이요, 우리에게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사졸이 있어서 수어(守禦)하기를 견고하게 한다면 저들이 마침내 강화를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중략]

하니, 상이 희안의 의논을 좇았다.

○庚子○柳洵議濟浦人皆言而羅多羅奸狡頻數往來或久居浦所與恒居倭通情者也不宜還送觀察使據此以聞臣意以謂奸人在敵非我之利請但留此一人餘皆還送其後因鄭光弼所啓留置至今已數朔矣此輩雖在囚中如京軍官連續發遣防禦等事豈無所聞今若縱遣則將國事傳播國中果如政院之議况平時羅等初言報變變言請和言端不一奸狡亦甚其實不過窺覘我虛實而已敵人來謀者縱遣之使敵國知國家輕重益長輕侮之心尤爲不可柳順汀權鈞成世貞閔孝曾姜渾李季男南袞韓淑昌鄭光弼洪淑慶世昌朴說韓世桓閔祥安李秉正黃孟獻柳仁濠李良柳世琛金寬柳仁貴金砮宋好義魚得江崔淑生李鐵鈞成世昌李膺權權金世弼金克愐許砮申嚴徐厚洪彥弼金希壽黃汝獻鄭士龍金應璧柳墩潘碩枰兪仲翼李守英柳潤德鄭荃李孝彦蔡忱等議同成希顔議而羅多羅平時羅等前後來倭總三十七人前來倭初不與叛亂無罪者也後來倭意在窺覘而托言報變實狡詐反覆者也是輩人面獸心不足多責彼島背恩忘德自知其罪謂此前後倭久不回還必皆已置大戮其父母妻子哀慟之狀森然可想今若許還則不唯島中咸服我天地包容之德其父母兄弟妻子德我必深他日革面回心叩關乞和之念未必不由

此而生也使倭畏威懷德正在今日彼之來寇我制之甚嚴彼恟我勇我勝彼破我有良將猛卒守禦之固彼終有不得已講和之請觀[中略]

上從希顏議

《中宗實錄 卷12, 32面》

중종 5년 11월 13일(을축)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대사간 최숙생 등이, 여악을 폐지할 것과 범법 수령·만호의 파직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윤상로(尹商老)는 폐조의 족친 가자(族親加資)를 받았는데, 반정 뒤에 일체 개정하였으나, 상로는 과람한 가자를 받은 채로 남들이 살피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있으니,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아서 선비 축에 들지 못하므로 법사(法司)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추고를 마친 뒤에 파직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시므로 신등이 추고를 마치고 율문(律文)에 비춰서 계사(啓辭)하였는데, 위에서 죄를 감등하여 다만 장(杖) 60에 그치게 하시니, 도무지 징계의 뜻이 없습니다. 한정부 참군(參軍) 양문선(楊聞善)은 청송관리(聽訟官吏)로서 수인(囚人)을 침학하였으므로 법사가 추고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내버려 두고 추고하지 말라 하시니, 무엇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리까? 율(律)에 따라 정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연(內宴)에 여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수령 등의 범죄는 추고를 마친 뒤에 체임하겠다. 나머지도 율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乙丑 御朝講大司憲柳世琛大司諫崔淑生等請罷女樂犯法守令萬戶又曰尹商老受廢朝族親加資反正後一切改正而商老因受濫加翼人不察以爲己物用心不正不齒士類法司請先罷後推而上教畢推罷職未晚故臣等畢推照律以啓自上減等只杖六十殊無懲戒之意漢城府參軍楊聞善以聽訟官吏侵虐囚人故法司推考請罪命棄勿治何以勸懲請依律定罪上曰內宴不得不用女樂守令等畢推後當違餘亦不允

《中宗實錄 卷12, 43面》

중종 5년 11월 21일(계유)

조강에 나아갔다. 「중용」 구경장(九經章) 109)을 강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109) 구경장(九經章) : 천하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아홉 가지 강령(綱領), 즉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하는 것)·존현(尊賢 : 어진이를 존중하는 것)·친친(親親 : 친척과 친하는 것)·경대신(敬大臣 : 대신을 존경하는 것)·체군신(體群臣 : 신하의 처지가 되어 그 마음을 살피는 것)·자서민(子庶民 :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내백공(來百工 : 모든 공인(工人)을 나오게 하는 것)·유원인(柔遠人 :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여 오게 하는 것)·회제후(懷諸侯 : 제후를 편안케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중용」의 구경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옛날부터 능히 구경을 실행하여 잘 다스린 자와 구경을 실행하지 못하여 잘 다스리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 좌우로 하여금 논란(論難)하게 하고 경연관이 대답하게 하라.”

하매, 시강관 김극휼(金克幅)이 아뢰기를,

“요·순·우·탕·문·무(堯舜禹湯文武)는 능히 구경을 실행하였습니다. 만약 공자가 위(位)를 얻었다면, 요·순·우·탕의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류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요·순은 능히 구경을 실행하였고, 한·당·송(漢唐宋)은 구경(九經)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실(實)이 없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실이란 것은 성(誠)입니다. 근자에 해의 변고와 별의 변고와 가을 장마 등 재이(災異)가 겹쳐 나타나는 것은 그 징응(徵應)을 분명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 대응하는 것은 실로써 하고 꾸밈으로써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구언(求言)의 분부를 내리시나 실로써 하지 않고 한갓 문구(文具)만 갖추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간언(諫言)에 따르는 일을 다 성의로 하신다면 구경을 실행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까?”〔중략〕

하고, 세침(世琛)은 아뢰기를,

“여악의 일은 처음에 아주 혁파(革罷)하고자 하였으나, 상의 뜻이 내전(內殿)을 위하시므로 신등이 다만 그 수를 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중(京中)에는 많기가 70인에 이르고 외방의 작은 고을에도 감해야 할 곳이 많이 있으니, 속히 참량하여 감하게 하소서.”

하고, 숙생이 아뢰기를,

“외방 잔읍으로서 여악을 폐지해야 할 곳이 매우 많은데 8도 내에 다만 14고을에만 폐지하였을 뿐이니 혁폐해야 할 곳이 어찌 다만 14고을 뿐이리까? 내전에는 남악(男樂)을 쓸 수 없고 부득이 여악을 써야 하므로 아주 혁폐하지 않았으나, 내연(內宴)에 쓸 여악이 어찌 70명에 이르러야 하리까? 지금 대간이 감하고자 하지만 대신이 감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어찌 옳은 일이리까? 이제 여악을 감하여서 방해됨이 있다면 대신의 말이 옳지만, 방해되는 것이 없는데 대신이 공론을 막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癸酉 御朝講講中庸九經章 上曰治天下國家莫過中庸九經自古能行九經而治者與不能行九經而不治者誰耶令左右論難經筵官對之侍講官金克幅曰堯舜禹湯文武能行九經若

안무하는 것)을 말한 「중용」(中庸)의 한 대목.

使孔子得其位則堯舜禹湯之治可復矣大司憲柳世琛曰堯舜能行九經漢唐宋不能行九經其不能行者無實而已實者誠也頃者日變星變秋霖災異疊見其應難以明言此必人事失於下而然也古人云應天以實不以文今者雖下求言若不以實徒爲文具則臣未見其可也如今從諫之事皆以誠爲之則其於行九經何難[中略]

世琛曰女樂事初欲痛革而以 上意爲 內殿故臣等只欲減其數而京中多至七十外方殘邑亦多有可減者請速量減淑生曰外方殘邑可革女樂者甚多而八道之內但革十四邑而已可革者何但十四邑而已乎 內殿不可用男樂不得已用女樂故不痛革然內宴之用何至七十今臺諫欲減而大臣以爲不可減此豈是耶今減女樂若有妨害則大臣之言是也無所妨害而大臣沮抑公論甚未便 上不答

《中宗實錄 卷12, 46面》

중종 5년 11월 28일(경진)

○류세침(柳世琛)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안당(安瑯)을 대사헌으로, 이위(李偉)를 집의로, 김협(金協)·안처성(安處誠)을 장령으로, 이빈(李蘋)·윤탕(尹宕)을 지평으로, 성세창(成世昌)을 헌납으로 삼았다.

○庚辰○以柳世琛爲刑曹參判安瑯爲大司憲李偉爲執義金協安處誠爲掌令李蘋尹宕爲持平成世昌爲獻納

《中宗實錄 卷12, 52面》

중종 5년 12월 30일(임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협(金協)이, 윤상로를 파직할 것과 또 전 대간(臺諫)의 승진과 화직(華職)을 개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간 허굉(許磁)이 아뢰기를,

“간원이, 상의(上意)에 영합(迎合)한다고 하여 전 대관을 논박하여 체임시켰습니다. 대저 근래에 대간은 새말[新語]하기를 힘써서, 전일에 류세침(柳世琛)이 대사간이 되매 안당(安瑯)이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한다고 논계하여 파직시켰습니다. 안당 등이 만약 참으로 기망하였다면 마땅히 다시 서용(敍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버릇을 조장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壬午 御朝講掌令金協請罷尹商老又改正前臺諫陞遷華職 上不答司諫許磁曰諫院以承迎 上意駁逆前臺官大抵近來臺諫務爲新語前日柳世琛爲大司諫以安瑯爲欺罔天聰論啓罷之安瑯等若眞欺罔則不當復叙矣此漸不可長也

《中宗實錄 卷12, 53面》

중종 6년 1월 21일(임신)

○이계맹(李繼孟)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류세침(柳世琛)을 충청도 관찰사

(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壬申○以李繼孟爲刑曹叅判柳世琛爲忠淸道觀察使

《中宗實錄 卷13, 9面》

중종 6년 3월 17일(정묘)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류세침(柳世琛)이 졸하였는데, 그 아내 유씨(兪氏)가 부음(訃音)을 듣고 애통하여 미음을 입에 넣지 않은 지 7일 만에 죽었다. 사실이 보고 되매 정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丁卯忠淸道觀察使柳世琛卒其妻兪氏聞訃哀毀水漿不入口者七日而死事聞旌閭

《中宗實錄 卷13, 34面》

중종 27년 3월 18일(정묘)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람들이 악질(惡疾)을 얻은 자가 산 사람의 간담(肝膽)과 손가락을 먹으면 곧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倣作人: 시체 검시관)과 걸인에게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고(故) 관찰사 류세침(柳世琛) 집의 10여 세된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찢어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의 관원과 각 방(坊)의 관령(管領)을 추문한 뒤에 범인을 은밀히 염탐, 체포하여서 추문한 다음 그 죄를 크게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작인과 걸인 등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매우 놀랍다. 형조의 당상관 및 좌우 포도장(左右捕盜將)을 패초(牌招)하여 포착절목(捕捉節目)을 비밀히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정백봉(鄭百朋)이 형조 참판(刑曹參判) 황침(黃琛)과 포도장 윤희평(尹希平)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런 일은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류세침의 자제로서 생원(生員)이 된 자가 있어서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불러다가 비밀히 그 일의 정상(情狀)을 물었고, 또 상처를 입은 아이도 어리석지 않다기에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무리들이 새문(新門) 밖 근처에 산다고 하니, 또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丁卯憲府啓曰近來人有得惡疾者以爲食生人肝膽手指則卽愈多給價倣作人丐乞人而買

之故此風大作盤松坊居卒觀察使柳世琛家十餘歲僮有人誘致山間斫取兩手指欲滅其逆滿身刺傷幾死而幸生安有如此之風乎請推漢城府官員及各坊管領後密伺其人執捉推問大懲其罪傳曰忤作人巧乞人等殺人事至爲駭愕刑曹堂上及左右捕盜將牌招捕捉節目秘密同議以啓可也同副承旨鄭百朋以刑曹叅判黃琛捕盜將尹希平之意啓曰如此事不可急遽爲之柳世琛子弟有爲生員者令從事官招來密問其事狀且被傷兒亦不愚癡云亦問其人形標大抵其類在新門外近處云亦可聞見傳曰知道

《中宗實錄 卷72, 60面》

모재집 권삼(慕齋集 卷三)

류관찰사 세침 부인에게 드리는 만사
 柳觀察使世琛夫人挽 《韓國文集叢刊 20卷, 慕齋集 55 D》 《晉州柳氏文集 47面》

진산군 7세(大丞公 16세) 사인공(舍人公) 류 돈(柳墩)

자는 사평(士平)으로 생졸년은 전하지 않고 있다.

류중연(柳仲演: 父 柳誠)과 현령 김성보(金成寶: 父 金模)의 따님인 연안김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중종 2년(1507) 2월 18일에 사마시에 장원으로 입격 하였으며 중종 5년(1510) 식년시에 급제한 후 기사관(記事官)으로 경연에 참여했으며 학문이 높아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영예를 누렸다. 중종 6년 설경(說經) 이듬해 저작(著作) 중조 8년 사경(司經) 검토관 정언 부수찬, 중종 9년 수찬(修撰) 부교리, 중종 10년 홍문관교리 사간원헌납, 중종 12년(1517) 평안도 문폐어사(問弊御史) 지평 병조좌랑 검상(檢詳), 13년 의정부사인, 14년 장령을 역임한 문신이다.

정랑(正郎)을 역임한 조영석(趙永錫: 父 趙繼宗)의 따님인 한양조씨와 혼인했으나 무후되었다. 격변기의 사회에 연루되었는지 후손이 계대를 잇지를 못했는지 진주류씨 세보에는 이후 기록이 전무하다.

中宗丁卯二年增廣榜以 登極 慶設行

甲科 三人

生員 金淨(慶州人), 都事 申永洪(高靈人), 生員 魚泳濬(咸從人)

乙科 七人

承仕 洪彦弼(南陽人), 進士 文瓘(甘泉人), 安邊府使 權輳(安東人), 生員 曹尙賢, 刑

曹正郎 李世弘(廣州人), 江陵判官 柳軾(全州人), 生員 朴龜元

丙科 二十六人

司果 延九齡(谷山人), 進士 權檉(安東人), 進士 尹宥(坡平人), 進士 柳後昌(白川人), 進士 辛弼周, 進士 李溜(陽城人), 縣令 李嗣宗(廣州人), 司議 李偉(固城人), 新榜生員 柳灌(文化人), 啓功 安漢英(廣州人), 生員 李謙(丹陽人), 司勇 金世俊(慶州人), 生員 金麟明(安東人), 洗馬 尹止衡(南原人), 叅奉 李簡(德水人), 別提 閔樑(驪興人), 叅奉 成世昌(昌寧人), 生員 權希孟(安東人), 縣令 李石峰(全州人), 進士 李彥浩(韓山人), 生員 金自修(彥陽人), 別提 張籍, 叅奉 金希壽(安東人), 進士 李貴宗(延安人), 進士 沈義(豐山人), 幼學 李元和, 武壯 生壯 幼學 柳墩(晉州人), 進壯 幼學 朴祐(忠州人)

中宗庚午五年式年榜三月二十三日行

甲科 三人

生員 李膺(固城人), 生員 蔡世傑(平康人), 進士 金磧

乙科 七人

生員 鄭謹元, 教官 李孝彥(龍仁人), 進士 蔡忱(平康人), 生員 金以衡, 進士 許渭(陽川人), 叅奉 南世準(宜寧人), 生員 申光漢(高靈人)

丙科 二十三人

生員 曹允文(昌寧人), 司僕副正 洪景霖(南陽人), 生員 李佑(固城人), 生員 羅昶(羅州人), 進士 鄭球(東萊人), 幼學 鄭應麟(清州人), 生員 柳禮臣(晉州人), 幼學 金振祖(善山人), 幼學 孫洙, 生員 姜瑄(晉州人), 教官 金可遠, 進士 金事結(延安人), 生員 柳墩(晉州人), 秉節 南世瓌(宜寧人), 幼學 金希貞, 進士 朴祐(忠州人), 郡守 鄭洵(延日人), 生員 柳仁淑(晉州人), 幼學 金宗弼(尙州人), 生員 曹漢弼(昌寧人), 別提 南孝純(宜寧人), 生員 李迨(驪興人), 進士 金紘, 武壯 金鈞(高靈人), 生壯幼學 金就精(善山人), 進壯幼學 趙光祖(漢陽人)

중종 2년 2월 18일(임진)

생원(生員) 류돈(柳墩) 등 1백 인과 진사 박우(朴佑) 등 1백 인을 뽑았다.

○壬辰取生員柳墩等百人進士朴佑等百人

《中宗實錄 卷2, 36面》

중종 5년 8월 9일(임진)

조강에 나아갔다. 「시경」(詩經)을 강하여 가락편(假樂篇)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며 선왕(先王)의 법을 따르네” 하였는데, 임금된 자

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하도 이것을 본받아 따라 행해야 할 것이다.”[중략]

기사관 류돈(柳墩)이 유일(遺逸)의 선비와 천거된 사람을 등용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안골포(安骨浦)의 군공(軍功)은 논상(論賞)한 지가 이미 오래니, 속히 정사(政事)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壬辰 御朝講講詩至假樂篇 上曰不愆不忘率由舊章人君當如是也然臣下亦宜體此遵行[中略]

記事官柳墩請用遺逸之士及薦舉人且曰安骨浦軍功論之已久當速爲政 《中宗實錄 卷12, 4面》

중종 5년 9월 16일(신미)

조강에 나아갔다. 「시경」(詩經) 신공(臣工)을 진강하면서 전경(典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이 편은 오로지 농사를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훈계하여 일찍이 농사에 대하여 힘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경」(書經) 무일편(無逸篇)에서는 먼저 농사의 어려움을 알라고 첫머리에 말하였고, 「시경」 빈풍(邠風) 칠월편(七月篇)에서는 생민(生民)의 사시(四時)의 근로(勤勞)를 서술하여 곤충·초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풀어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왕(成王)이 주 나라[周室] 수성(守成)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 환과고독(鰥寡孤獨)이 농상(農桑)에 힘을 다하건만, 벼가 아직 마당에 들어오기 전에, 짜는 베가 아직 베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부잣집으로 들어가며, 조세를 바칠 때가 되면 부잣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市井)의 일정한 직업도 없는 무리가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쌀밥과 고기를 먹으며 비단 옷을 입으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중궁궐(九重宮闕) 안에 단정하게 앉아서 높이 팔짱끼고 있으시니 어찌 옷과 밥이 우리 백성의 고흥(膏血)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성상께서는 좋은 옷과 흰 쌀밥을 진어하실 때에 백성의 근고(勤苦)함을 잊지 말소서.”

하였다. 장령 류인귀(柳仁貴)·헌납 성제창이 안윤덕·유회철의 일과 왕후 죽친의 종량(從良)한 일과 상궁(尙宮) 박씨의 죽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辛未 御朝講講詩臣工篇典經柳墩曰此篇專爲農事而言周公戒成王未嘗不惓惓於農事

故於無逸首言先知稼穡之艱難幽風七月叙生民四時之勤勞以至於昆蟲草木莫不備陳故成王爲周家守成之主今夫鰥寡孤獨竭力於農桑而禾未登場織未下機已輸入於富家及其納稅與富家無異故富益富貧益貧非徒此也市井無賴之徒遊手而食梁肉衣紈袴尚不知小民之艱難况乎九重之內端居高拱安知衣食之自吾民膏血中來乎伏願 聖上御珍衣玉食之時毋忘民事之勤苦焉掌令柳仁貴獻納成世昌啓安潤德俞懷哲及王后族親從良事尚宮朴氏族親等事並不允

《中宗實錄 卷12, 20面》

중종 5년 9월 27일(경진)

조강에 나아갔다. 「시경」(詩經)을 강하여 양사(良耜)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주공(周公)이 풍(風)·아(雅)·송(頌)에서 다 농사를 중히 여길 것을 성왕(成王)에게 풍유(諷諭)하였으니, 옛사람이 농사에 뜻을 다하여 항상 군주(君主)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유의하소서.”

하고, 류순정(柳順汀)은 아뢰기를,

“금년은 매우 흉년이 들었는데 경기(京畿)가 가장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농사에 힘쓰는 정치를 완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게 하여 묵는 땅이 없게 하고, 또 바닷가에 독을 쌓아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백성에게 권하여 독을 쌓아서 농사를 힘쓰는 바탕이 되게 하소서. 백성이 혹 해낼 능력이 없으면 관에서 또한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각도 관찰사에게 유지(諭示)하소서.” 하고, [중략]

순정이 아뢰기를,

“물소(水牛)를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각 고을에 나누어 사양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사양하기를 꺼려 그것이 밭가는 데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칭탁하면서, 섬에 방목(放牧)하기를 청합니다. 물소는 그 성질이 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 섬에 방목한다면 반드시 사상(死傷)이 많을 것이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이 일찍이 물소를 하사 받아 인천(仁川)의 농장에서 밭을 갈게 하였더니, 하루에 일한 것이 보통 소의 두어 날의 일보다 배나 되었습니다. 이손(李蓀)이 김해부사(金海府使)가 되었을 때에 또한 물소를 부려서 밭을 갈았더니 그 성과가 과연 보통 소보다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방목하지 말고 돌보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득강·세창이, 안윤덕(安潤德)·유회철(俞懷哲)의 일과 왕후·상공의 죽친을 종량(從良)하지 말 것을 아뢰고, 전경(典經) 류돈(柳墩)도 대간의 말에 좃기

를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庚辰 御朝講講詩至良耜篇侍讀官金希壽曰周公於風雅頌皆以農事爲重而諷諭於成王想見古人致意於農事常欲使人主知稼穡之艱難伏願 聖上潛心領事柳順汀曰今年甚荒而京畿尤甚民生可慮務農之政不可緩也令民力於農事使無閑曠之地且於海邊若有築堰爲田之地勸民築之以爲務農之資民或不能官亦助之爲便如此等事請諭各道觀察使[中略]

順汀曰水牛自 祖宗朝分養於各官各官憚於養飼托其不宜於耕田請放於島以牧之此牛其性畏寒若放於島則必多死傷甚未便臣嘗受賜水牛耕田於仁川農庄一日之役倍於常牛數日之役李蓀爲金海府使時亦用水牛耕田其功果倍於常牛云請勿放看養得江世昌啓安潤德俞懷哲及王后尚宮族親不宜從良事典經柳墩亦請從臺諫之言 上皆不答 《中宗實錄 卷12, 24面》

중종 5년 10월 17일(경자)

이조 참판 변수(邊脩)로 하여금 북경에 가서 정조(正朝)를 하례하게 하였다. 변수는 무인(武人)인데 차함(借銜: 임시직함을 붙이다)하여 보낸 것이다.

○류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濟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 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浦所)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恒居倭)들과 통정(通情)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하였습시다.[중략] 하였다.

류순정(柳順汀) · 권균(權鈞) · 성세정(成世貞) · 민효증(閔孝曾) · 강혼(姜渾) · 이계남(李季男) · 남곤(南袞) · 한숙창(韓淑昌) · 정광필(鄭光弼) · 홍숙(洪淑) · 경세창(慶世昌) · 박열(朴說) · 한세환(韓世桓) · 민상안(閔祥安) · 이병정(李秉正) · 황맹헌(黃孟獻) · 류인호(柳仁濠) · 이양(李良) · 류세침(柳世琛) · 김관(金寬) · 류인귀(柳仁貴) · 김굉(金磁) · 송호의(宋好義) · 어득강(魚得江) · 최숙생(崔淑生) · 이철균(李鐵鈞) · 성세창(成世昌) · 이어(李齊) · 권벌(權撥) · 김세필(金世弼) · 김극픽(金克曄) · 허굉(許磁) · 신엄(申儼) · 서후(徐厚) · 홍언필(洪彦弼) · 김희수(金希壽) · 황여헌(黃汝獻) · 정사룡(鄭士龍) · 김응벽(金應璧) · 류돈(柳墩) · 반석평(潘碩枰) · 유중익(兪仲翼) · 이수영(李守英) · 류윤덕(柳潤德) · 정진(鄭荃) · 이효언(李孝彦) · 채침(蔡枕) 등의 의논도 같았고, 성희안(成希顔)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 · 평시라 등 전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왜인은 모두 37인입니다. 앞서 온 왜인은 처음부터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죄한 자들이며, 뒤에 온 왜인들은 뜻이 우리의 내정을 엿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변(報變)한다고 칭탁하였으니 실로 교사(狡詐)하고 반복(反覆)하는 자들입니다.

○庚子遣吏曹參判邊脩如京師賀正脩武人借銜以遣○柳洵議濟浦人皆言而羅多羅奸狡頻數

往來或久居浦所與恒居倭通情者也不宜還送觀察使據此以聞[中略]

柳順汀權鈞成世貞閔孝曾姜渾李季男南袞韓淑昌鄭光弼洪淑慶世昌朴說韓世桓閔祥安李秉正黃孟獻柳仁濠李良柳世琛金寬柳仁貴金砮宋好義魚得江崔淑生李鐵鈞成世昌李膺權撥金世弼金克愐許砮申嚴徐厚洪彥弼金希壽黃汝獻鄭士龍金應璧柳墩潘碩杵兪仲翼李守英柳潤德鄭荃李孝彥蔡忱等議同成希顏議而羅多羅平時羅等前後來倭總三十七人前來倭初不與叛亂無罪者也後來倭意在窺覘而托言報變實狡詐反覆者也 《中宗實錄 卷12, 32面》

중종 5년 11월 16일(무진)

경연관(經筵官)들을 근정전(勤政殿) 뜰에 사연(賜宴)하고 「시경」·「논어」·「맹자」·「대학」의 강을 마쳤기 때문이다. 주악(酒樂) 각 1등을 하사하였다. 영사 김수동·류순정·성희안·노공필, 지사 김응기(金應箕), 동지사 신용개·박열(朴說), 참찬관(參贊官) 송천희(宋千喜)·김당(金鎰)·이사균(李思鈞)·이자견(李自堅)·김세필(金世弼), 시강관(侍講官) 김극픽(金克愐)·허굉(許砮)·안처선(安處善), 시독관 서후(徐厚)·이빈(李蘋)·홍언필(洪彦弼)·김희수(金希壽), 검토관(檢討官) 허지(許遲)·윤지형(尹止衡), 사경(司經) 황여헌(黃汝獻), 전경(典經) 김응벽(金應璧)·류돈(柳墩), 기사관(記事官) 소세양(蘇世讓)·정사룡(鄭士龍)·유중익(兪仲翼)·류윤덕(柳潤德)·정전(鄭荃)·이효언(李孝彥)·채침(蔡忱)·남세준(南世準) 등이 연회에 참여하였다. 이어 영사(領事)에게는 표피인(豹皮茵) 속명을 아다개(阿多介)라고 한다. 각 한 벌씩, 지사(知事)와 동지사(同知事)에게는 적삼 녹피(赤衫鹿皮) 각 한 벌씩, 참찬관에게는 마장(馬裝) 각 한 벌씩, 시강관 이하와 사관(史官) 등에게는 각각 별조궁(別造弓) 1정(丁)씩 하사하고,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도 또 예에 따라 주었다. 이어 전교하였다.

“이것이 박한 물건이나 나의 스승을 높이고 도(道)를 존중하는 뜻이니, 사은(謝恩)하지 말라.”

○戊辰宴經筵官于勤政殿庭以畢講詩論語孟子大學故也賜酒樂各一等領事金壽童柳順汀成希顏盧公弼知事金應箕同知事申用漑朴說參贊官宋千喜金瑞李思鈞李自堅金世弼侍講官金克愐許砮安處善侍讀官徐厚李蘋洪彥弼金希壽檢討官許遲尹止衡司經黃汝獻典經金應璧柳墩記事官蘇世讓鄭士龍兪仲翼柳潤德鄭荃李孝彥蔡忱南世準等與宴因賜領事豹皮茵俗名阿多介各一坐知事同知事赤衫鹿皮各一領參贊官馬裝各一部侍講官以下及史官等各賜別造弓一丁未參者亦依例以給仍傳曰此雖薄物乃予尊師重道之意其勿謝恩

《中宗實錄 卷12, 44面》

중종 5년 12월 12일(갑오)

○주강에 나아갔다.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근래에 수령이 정사(呈辭)한 것을 감사가 수리하면 감사를 아울러 치죄하니, 왕자(王者)의 법으로서 규모가 좁은 것 같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류돈이 아뢰는 일을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전일에 승전(承傳)한 것을 써야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전』(大典)의 법을 다만 거듭 밝힐 뿐이니, 감사를 치죄하는 법은 삭제하라.” 하였다.

○甲午○御晝講說經柳墩曰近來守令呈辭而監司受之則並治監司於王者之法規模似挾傳于政院曰柳墩所啓事予不詳知其考以啓政院以前日承傳書啓傳曰大典之法只可申明監司治罪之法其令刪去 《中宗實錄 卷12, 58面》

중종 6년 1월 13일(갑자)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윤희인(尹希仁)·정언(正言) 최중연(崔重演)이, 구수영 및 어전에 대하여 아뢰고, 시독관(侍讀官) 김굉(金磁)이 대간의 말 따르기를 청하였다.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근일 대간이 아뢰는 정사 관계의 일은 이미 받아들여졌지만, 이 같은 큰 일은 아직도 유난하십니다. 대저 대간이 아뢰는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종(侍從)이 말하고, 시종이 말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와 육조(六曹)가 또 논하니, 이것은 쇠세(衰世)의 일이고, 성명께 있을 일이 아닙니다. 대간은 그 말하는 책임을 다하고, 시종은 임금의 덕을 보양(輔養)하고, 정부와 육조는 각각 그 관장하는 일을 다 할 뿐입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甲子 御朝講執義尹希仁正言崔重演啓具壽永及魚箭事侍讀官金磁請從臺諫之言說經柳墩曰近日臺諫所啓如政事間事雖已聽納而如此大事則尚留難大抵臺諫所啓拒而不納則侍從言之侍從言之不納則政府六曹亦論之是衰世之事非 聖明之所當有也臺諫盡其言責侍從輔養君德政府六曹各盡所掌之事而已不允 《中宗實錄 卷13, 5面》

중종 6년 2월 2일(계미)

○김수동·류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권균(權鈞)·강혼(姜渾)·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신용개·정광필(鄭光弼)·이집(李坫)·박열(朴說)·안윤덕(安潤德)·고형산(高荊山)·안당(安瑒)·홍숙(洪淑)·성몽정(成夢井)·이계맹(李繼孟) 등이 의논드리기를,

“본조(本朝)의 「시학의」(視學儀)에는, 강담(講榻)을 어좌의 서쪽에 설치하여 남

향하는데, 이것은 강할 때 이어(移御)하는 좌석인 것 같습니다만, 예문에는 승강(陞降)하는 절차가 없고, 또 「문헌통고」(文獻通考) 황태자시학의(皇太子視學儀)에는 ‘황태자의 좌석을 동벽(東壁)에 설치하여 서향하고, 강담은 북벽에 설치하여 남향하며, 태부(太傅)·소부(少傅)의 좌석은 서북쪽에 설치하여 남향한다.’ 했습니다. 태자 시학(視學)에는 황제는 참여하지 않는데, 태부·소부의 좌석과 강담이 모두 북벽에 있으니, 강담이 어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만일 강담으로 경전(經典)을 두는 기구를 삼는다면, 안(案)이라 할 것이요. 탑이라 할 수 없고, 또 예문에도 경전을 두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일, 강관이 강서(講書)할 때 강하는 서적을 두는 서안(書案)이라 한다면 그 서안을 남향하여서는 안 됩니다. 강담의 설치는 신등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담 설치에 관한 글은 「개원례제」(開元禮制)에 보이는데, 본조의 「오례의」(五禮儀)는 모두 「개원례」에 의거하여 찬정(撰定)하였습니다. 송조(宋朝)나 대명 황제의 「시학의」에는, 모두 강담 설치에 관한 글이 없으니, 이제 이 시학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아직 설치하지 말고, 명 나라 서울에 가는 인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오게 함이 온편하겠습니다. 다만 본조 「시학의」에는, 서안(書案)만 있고 경전 두는 안(案)은 없으니, 대명 「시학의」에 의하여 경안(經案)을 어좌 왼쪽에 설치하고 경전을 두었다가 강서관(講書官)에게 나누어 주게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중략]

황필(黃瑋)·이철균(李鐵鈞)·허굉(許礪)·김안국(金安國)·안처성(安處誠)·윤탁(尹倬)·성세창(成世昌)·송호의(宋好義)·홍언필(洪彦弼)·허지(許遲)·김희수(金希壽)·소세량(蘇世良)·윤지형(尹止衡)·류돈(柳墩)·채침(蔡忱)은 의논드리기를, “아조의 「시학의」(視學儀)는, 「개원례」(開元禮)에 근본하였는데, 강담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관이 그 소용을 알지 못하여, 혹은 강할 때 임금이 내려가 앉아서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이라 하고, 혹은 이것을 설치함은 대개 경서를 그 위에 놓아 두기 위함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수동 등의 의논을 따랐다.

○癸未○金壽童柳順汀成希顏盧公弼權鈞姜渾李蓀金應箕洪景舟申用漑鄭光弼李玷朴說安潤德高荊山安塘洪淑成夢井李繼孟等議本朝視學儀設講榻於御座之西南向似是臨講時移御之座禮文無陞降節次且文獻通考皇太子視學儀設皇太子座於東壁南向設講榻於北壁南向設太傅少傅座於西北南面云太子視學皇帝不與焉而太傅少傅之座與講榻皆在北壁則講榻非御座明矣若以講榻爲置經之具則當云案不可云榻且於禮文無置經節次若曰講官講書時置所講書之案則其案不宜南向講榻之設臣等未解其義設講榻之文見於開元禮制而本朝五禮儀全據開元禮撰定宋朝及大明皇帝視學儀則並無設講榻之文今此視學姑闕疑勿設令赴京人員備細質問而來爲便但本朝視學儀只有書案無置經之案依大明視學儀設經

案于 御座之左置經分授講書官似當[中略]

黃瑋李鐵鈞許砮金安國安處誠尹倬成世昌宋好義洪彥弼許遲金希壽蘇世良尹止衡柳墩蔡
 忱議我朝視學儀本開元禮而講榻之設禮官未究所用或謂當講之時人主下坐以示隆儒重道
 之意或謂設此蓋所以置經書於其上者上從壽童等議 《中宗實錄 卷13, 14面》

중종 6년 3월 2일(임자)

조강에 나아갔다. 「주역」(周易) 비괘(比卦)의 원영정(元永貞)¹¹⁰⁾이라는 말에 이르러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상하가 서로 믿는다는 것은 천지(天地)가 서로 화합하는 뜻입니다. 인사로 말
 하면 임금은 하늘과 같고 신하는 땅과 같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가까이 하
 여야 교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건도(乾道 : 임
 금의 도)가 비록 바르더라도 반드시 혼자서 이루어질 이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이에 혹 소인이 들어가 틈을 내어서 소려(疎戾 : 벌어지고 어긋남)하게 하면 원
 영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순(虞舜 : 순임금)이 신하와 주고 받으며 노래할 때
 에 원수(元首 : 머리)와 고굉(股肱)으로 비유하였으며, 고종(高宗 : 은(殷) 나라 임
 금 무정(武丁))이 정승을 두는 날에 또한 이르기를 ‘네 마음을 열어서 짐의 마음
 에 대어 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가까이할 만한 사람을 알고 또 원영정의
 뜻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한 무제(漢武帝)가 급암(汲黯)을 칭찬하여 ‘사
 직(社稷)의 신하라’ 하였지만, 끝내 등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가까
 이할 만한 사람을 알았다고는 할 것이지만, 원영정 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된 이는 상하가 서로 믿고 가부를 서로 도와서[可否相濟] 원영정
 을 가져와야 하는데, 역시 그 가까이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정으로 말하면, 재상과 대간이 모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 뒤라야 원영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壬子 御朝講至周易比卦元永貞之語說經柳墩曰上下交孚者天地相和而意以人事言之
 君如天臣如地君臣相比乃可致化若不相比乾道雖正必無獨成之理又於其間或有小人投間
 抵隙使疎戾則不可謂元永貞矣虞舜廣歌之際至以元首股肱爲喻高宗置相之日亦曰啓乃心
 沃朕心此則知其爲可比之人而亦得元永貞之意厥後漢武帝稱汲黯社稷臣卒不能用此則雖
 曰知可比之人而不可謂元永貞矣故爲人君者上下交孚可否相濟以致元永貞而亦不可不擇
 其可比之人也且以朝廷言之宰相臺諫皆相和濟然後得元永貞矣 《中宗實錄 卷13, 24面》

110) 원영정(元永貞) : 「주역」 비괘의 괘사(卦辭)에 나오는 말. ‘원’은 임금의 도가 있음을 말함이고,
 ‘영’은 항구(恒久), ‘정’은 정도(政道)를 얻음을 말함이다.

중종 6년 3월 15일(을축)

○명하여, 다시 효자 홍계산(洪戒山)의 정문(旌門)을 세워, 후세 사람들을 권장하게 하였다. 정문이 연대가 오래어 파훼(破毀)되었는데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어 이 명이 있었다.

○乙丑○命復建孝子洪戒山旌門以礪後人旌門年久破毀說經柳墩啓之有是命

《中宗實錄 卷13, 34面》

중종 6년 4월 16일(을미)

○석강에 나아갔다.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근래에 천거된 유생 등이 나이 40이 넘고 쓸 만한 재주가 있다면, 참봉(參奉)에서 봉사(奉事)·주부(主簿)로 승진하는 데 굳이 10년 만에 승진시킬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과연 그가 어진 것을 알았으면, 초탁(超擢)하여 쓸 것이요, 자격에 구애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시강관 송호의(宋好義)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번 천거하라는 전교를 내리셨으나, 아직도 누가 천거로 서용(叙用)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요행히 관직에 보임된 자가 있어도 모두가 미관으로부터 올라가므로 품은 뜻을 펴지 못합니다. 과연 큰 어진이라면 어찌 반드시 그 자격(資格)에만 따르리까!”

하고,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만일 어질고 재주 있는 이가 아닌데 초탁한다면 이것은 범람하게 작질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 40이 넘고 또 재주와 행실이 있으니, 탁용하여 그가 평소에 품은 뜻을 펴게 해야 합니다.”

하고, 송호의가 아뢰기를,

“사람의 현부(賢否)를 위에서 어찌 자세히 아시리까! 전조(銓曹)로 하여금 천거하게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행이 탁월한 자라면 어찌 반드시 자급에 따라 승진하는 법을 쓰랴! 지금 천거한 자는 내가 어떤 사람임을 모르니, 전조가 인물의 우열을 가려 주의(注擬)하라.” 하였다.

○乙未○御夕講說經柳墩曰近來薦舉儒生等若年踰四十而有可用之才則自叅奉陞奉事主簿固非十年之所能陞也若果審其賢則當招擢而用之不拘資格也侍講官宋好義曰近來雖舉累降薦舉之教未聞有人以薦舉而得叙也且幸有得補官職者亦皆自微官陞之使未得展其所蘊若果大賢豈必循其資格乎柳墩曰如非賢才而超擢則幾於濫施爵秩若年踰四十而又有才行則擢用而使之展布素蘊甚可宋好義曰人之賢否 上安能詳知乎使銓曹擬之似當 上曰

才行卓越者則豈必用循資法乎今之薦舉者則予不知爲何如人也銓曹當擇人物之優劣而注擬也
《中宗實錄 卷13, 44面》

중종 6년 4월 21일(경자)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김극휼(金克愾)·설경(說經) 류돈(柳墩) 등이 형조 판서(刑曹判書) 고흥산이 출사하지 않아 정체(停滯)되는 폐단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아침에 정승의 계주(啓奏)로 비로소 들었다. 가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庚子○御夕講侍講官金克愾說經柳墩等啓刑曹判書高荊山不仕滯之弊 上曰朝因政丞啓始聞之遞之可也
《中宗實錄 卷13, 46面》

중종 6년 5월 15일(갑자)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황제가 곡부(曲阜)에 나아가 공자(孔子) 사당에 참배하였다’는 데 이르러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진종(眞宗)이 선성(先聖)을 높임이 이같으나, 학술이 밝지 못하므로 천서(天書)의 허탄한 일을 숭상하여 도관(道觀)이 천하에 편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격서 역시 천신(天神)을 제사드리니 지극히 허탄합니다. 기신재(忌晨齋) 같은 일 또한 탄망(誕妄)합니다. 임금이 혈기 방강(方剛)할 때에는 이단(異端)에 미혹되지 않지만, 지기(志氣)가 좀 쇠하면 숭봉(崇奉)하지 않는 자 드뭅니다. 모름지기 이 말을 체념(體念)하시어 속히 소격서를 혁파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甲子○御夕講講宋鑑至帝詣曲阜謁孔子說經柳墩曰眞宗之尊尚先聖雖如此然學術不明故崇奉天書虛誕之事至使道觀遍天下我國昭格署亦祀天神至爲虛誕如忌晨齋等事亦爲誕妄人君當血氣方剛時則不爲異端所感矣志氣少衰則其不崇奉者鮮矣須體念此語速革昭格署爲當 上不答
《中宗實錄 卷13, 60面》

중종 6년 5월 20일(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봉중(弼中)이 올라와서 자진한 왜인의 거처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수의(收議)해서 아뢰라.”[중략]

하고, 류순정(柳順汀)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김수동(金壽童)은 의논드리기를,

“봉중은 오로지 화친을 청원하러 온 것이니, 더욱 신의로써 대우하여야 합니다.
[중략]

이세인(李世仁)·조순(趙舜)·이항(李沆)·안처성(安處城)·김안로(金安老)·김굉(金磁)·권벌(權撥)·김영(金瑛)·공서린(孔瑞麟)·황여헌(黃汝獻)·류돈(柳墩)·채침(蔡忱) 등이 의논드리기를,

“왜인 등이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하였으니, 법에 의하여 죄를 주더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포용하는 도량으로 너그러이 용서하여 다 살려 주었는데, 유관하여 대우한 지 한 해가 넘어 불의에 자진하였으니, 국가에서 그들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붕중이 물으면 곧 실지로 대답함이 사체에 마땅하겠습니다. 저들이 자진하였다는 말을 믿지 않더라도, 마도(馬島)가 무고히 난을 일으켜 제 스스로 그 죄를 아니, 반드시 놀라 괴이히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권도의 말로 대답한다면, 그 사실을 끝내 덮어 두기는 어렵고, 대단치도 않은 일로 실신(失信)만 될 것이니, 바른대로 말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수동 등의 의논을 따랐다.

○己巳傳于政院曰弼中上來若問自盡倭人去處則將何以答之其收議以啓[中略]

柳順汀議類此金壽童議弼中專爲請和而來尤當待之以信[中略]

李世仁趙舜李沆安處誠金安老金磁權撥金瑛孔瑞麟黃汝獻柳墩蔡忱等議倭人等孤恩叛亂按法致罪不爲無辭特以國家包容之量寬貸全活館待踰年不意自盡非國家有負於此弼中之問直以實對事體爲當彼雖不信自盡之語馬島無故首亂自知其罪必不驚恠今若權辭以答其實終難掩覆無係輕重而徒爲失信莫若直說之爲便 上用壽童等議 《中宗實錄 卷13, 62面》

중종 6년 6월 9일(정해)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영사 성희안·참찬관 이세인(李世仁)·설경(說經) 류돈(柳墩)이 또한 ‘소격서를 혁파해야 한다’고 극론하니, 상이,

“조종조(祖宗朝)가 세운 것을 지금 혁파할 수 없다.”

하매, 희안이 아뢰기를,

“지금 유도를 존중하는 까닭에, 선비들이 운집하여 성균관의 동재(東齋)·서재(西齋)가 다 차고 재문(齋門) 옆과 향관청(享官廳)까지 다 찼습니다. 서재 북쪽에 빈터가 있으니, 따로 집 한 채를 지어서 선비들을 거처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해당 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다.”

하매, 희안이 또 아뢰기를,

“지금 무사가 재상이 되니, 스스로 존대(尊大)하게 여겨 활쏘기를 익히는 것을 즐기지 아니합니다. 신이 도시(都試: 춘추로 보이는 무과 시험)를 본즉 무인의 활쏘

기가 아주 전만 못합니다. 옛적에 성종(成宗)께서는 무사(武事)에 뜻을 기울이셨습니다. 지금 날씨는 덥지만 대신들에게 명하여 훈련원에서 시사(試射)토록 하심이 매우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무신 권장법(武臣勸獎法)은 이미 펴서 밝혔으나, 요즈음 천재(天災)로 인한 근신(謹身) 때문에 활쏘기를 볼 수 없었다. 날씨가 매우 더워 활쏘기를 볼 수는 없으나, 관에 명하여 시사(試射)를 권장함이 가하다.” 하였다.

○丁亥 御朝講臺諫啓前事不允領事成希顏叅贊官李世仁說經柳墩亦極論昭格署可革 上曰 祖宗朝所建今不可革也希顏曰今者崇重儒道故儒士雲集成均館東西齋皆盈亦溢於齋門之傍及享官廳西齋之北有空地可別作一齋令儒士居之 上曰當令該司措置希顏曰今者武士爲宰相則自尊大其身而不樂習射臣於都試觀之武人之射大不如前昔 成宗注意於武事今雖日暖 命大臣試射于訓練院甚當 上曰武臣勸獎之法已申明之近因謹天災未得觀射日候甚熱雖不可觀射可命官試射以爲勸獎 《中宗實錄 卷14, 4面》

중종 6년 12월 2일(무인)

○석강에 나아갔다. 설경(說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대신은 책임이 중하므로, 용렬하여 그 직임에 맞지 않다면 아무리 공이 있더라도 상은 줄지언정 책임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 한때의 조그만 과실이라면 죄로 다스릴 수 없어, 옛적에 대신이 청렴하지 못한 탓으로 죄를 주게 될 때는 ‘청렴하지 못하다’ 하지 않고 ‘보케가 정돈되지 못했다’[簠簋不修]111) 하였는데, 근래엔 대신에게 죄가 있으면 속바칠 것을 명합니다. 대저 속바치기란, 서리(胥吏)나 미관(微官)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서리나 미관에게 베푸는 것으로써 대신을 대우함은, 대신을 높여 예우(禮遇)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였다.

○戊寅○御夕講說經柳墩曰大臣責任重大若庸劣不協其任則雖有功可賞而不可任也幸有一時小過則不可治罪古者大臣以不廉而罪之則不曰不廉而曰簠簋不修近來大臣有罪者命贖之夫贖者當施於胥吏微官以施於胥吏微官待大臣殊無尊禮大臣之意

《中宗實錄 卷14, 49面》

중종 6년 12월 30일(병오)

류순정(柳順汀) · 정미수(鄭眉壽) · 민효증(閔孝曾) · 송일(宋軼) · 이손(李蓀) · 김응

111) 보케가……못했다[簠簋不修] : 대신의 탐오(貪汚)를 완곡하게 견책하는 말. 보케는 제기(祭器)의 이름 원전은 ‘보케불식’(簠簋不飾)으로 되어 있다. 《史記 卷八十四》

기(金應箕)·장순손(張順孫)·임유겸(任由謙)·이계남(李季男)·성세순(成世純)·이자건(李自健)·안윤손(安潤孫)·신용개(申用漑)·김봉(金封)·이굉(李宏)·윤희손(尹喜孫)·박열(朴說)·최한홍(崔漢洪) 등도 조종조의 구례에 따르기를 청하고, 성희안(成希顔)·정광필(鄭光弼)·홍숙(洪淑)은 의논드리기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옛 제도를 상고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경세창(慶世昌)·이자화(李自華)·한효원(韓效元)·김정(金淨)·권벌(權撥)·박상(朴祥)·정사룡(鄭士龍)·류돈(柳墩)·채침(蔡忱)·이청(李清)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제사는 친행해야 하며, 만약 연고가 있으면 섭행하나, 섭행에도 성경(誠敬)하는 마음은 진실로 항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섭행의 재계(齋戒)는 친제와 차이가 있는 까닭에 「오례의」(五禮儀)에 ‘섭행에는 재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망궐례와 수하(受賀)의 일 등은 예(禮) 가운데에서 큰 것이며, 조종조로부터 행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구나 춘향(春享)은 정월 상순에 있고 정조(正朝)는 항상 서계(誓戒) 후에 있게 되는데, 만약 서계에 구애된다면 대례(大禮)는 영원히 폐하게 되어 국체(國體)에 온당하지 못할 듯하오니, 조종조의 구례에 따라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좇았다.

○丙午柳順汀鄭眉壽閔孝曾宋軼李蓀金應箕張順孫任由謙李季男成世純李自健安潤孫申用漑金封李宏尹喜孫朴說崔漢洪亦請依 祖宗朝舊例成希顔鄭光弼洪淑議令弘文館博考古制更議施行慶世昌李自華韓效元金淨權撥朴祥鄭士龍柳墩蔡忱李清議凡祭祀所當親行若有故則亦當攝之雖攝誠敬之心固當常存然其齋戒與親祭有間故五禮儀攝行無齋儀如望闕禮受賀等事禮之大者自 祖宗朝行之已久况春享在正月上旬則正朝常在誓戒後若拘誓戒則大禮永廢於國體似乎未便宜遵 祖宗古禮施行 上從之 《中宗實錄 卷14, 63面》

중종 7년 윤 5월 1일(갑술)

일본국왕(日本國王)이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신칙하여 경오년(중종5, 1510) 반란 때의 왜적(倭賊)을 베어, 붕중(弮中)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和親)을 청하게 하였다. 처음에 홍문관(弘文館)이 상소하기를,

“웅천(熊川) 제포(薺浦)의 치욕을 아직 통쾌하게 씻지 못하였는데, 지금 다시 수호(修好)한다면, 이는 도리어 나라의 약점을 보여서 한없는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드디어 그 말을 받아들여, 삼공(三公) 및 육조(六曹)의 참관 이상에게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승정원·홍문관·사간원·예문관도 참여하였다.〔중략〕 부제학 권민수(權敏手)·직제학 이자화(李自華)·전한(典翰) 신상(申鎰)·응교(應

교) 성운(成雲)·부응교 박상(朴祥)·교리 홍언필(洪彦弼)과 김영(金瑛)·부교리 권벌(權撥)·부수찬(副修撰) 소세양(蘇世讓)·저작(著作) 류돈(柳墩)·정자(正字) 이청(李清)은 의논드리기를,

“세종(世宗) 원년에 왜적이 비인현(庇仁縣)에 침범하여 성을 포위하고 노략질하므로 태종(太宗)·세종께서 영의정 류정현(柳廷顯) 등을 보내어 정벌하게 하여 크게 군사의 위엄을 보이고, 그들이 사세가 궁하여 항복을 애걸한 뒤에야 비로소 화호(和好)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키워 준 은덕을 망각하고, 성읍(城邑)을 함락시키고 장사(壯士)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가옥을 소각하고 시체가 들판을 덮게 하였으니, 죄악이 지난날 보다도 심한데,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지는 못할망정, 어찌 경솔하게 화친을 허락하여 나라의 위신을 손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를 능멸한 것이 일조일석이 아닌데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惡)에 버릇이 들어 감히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그 저의는 국가를 공동(恐動)하여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閏五月甲戌朔日本國王勅對馬島主斬庚午叛亂賊使弼中丞首來獻乞和親初弘文館上疏曰熊川薺浦之辱猶未快雪今復修好是反示國家之弱而開溪壑之欲也 上遂納其言命三公及六曹叅判以上議可否承政院弘文館司諫院藝文館亦與焉[中略]

副提學權敏手直提學李自華典翰申錡應教成雲副應教朴祥校理洪彦弼金瑛副校理權撥副修撰蘇世讓著作柳墩正字李清議 世宗元年賊倭犯庇仁縣圍城剽掠 太宗世宗遣領議政柳廷顯等問罪大示兵威至於勢窮乞降然後始許和好今則忘國家卵育之恩屠陷城邑殺虜將士焚蕩室廬伏屍蔽野罪惡貫盈甚於前日縱不能舉師致討豈可輕許通和以挫國威乎况陵轍國家非一朝夕而皆舍容不較故至於稔惡敢爲叛亂其意不過恐動國家以濟其欲耳

《中宗實錄 卷16, 1面》

중종 7년 6월 1일(계묘)

봉중(弼中)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권민수(權敏手)·한효원(韓效元)·성운(成雲)·박상(朴祥)·홍언필(洪彦弼)·권벌(權撥)·소세양(蘇世讓)·이효언(李孝彦)·류돈(柳墩)·채침(蔡忱)·이청(李清)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의 의견은 전일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六月癸卯朔 命議弼中許和當否

權敏手韓效元成雲朴祥洪彦弼權撥蘇世讓李孝彦柳墩蔡忱李清議臣等之意前議已悉

《中宗實錄 卷16, 15面》

중종 7년 8월 24일(을축)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도주(島主)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 전일에 조의(朝議)가 이미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사기(事機)가 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왕 ‘성친(盛親)이 오면 화친하겠다’ 하였고, 봉중(弼中)도 ‘성친을 타일러 오게 한 뒤에 화친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성친이 오지 아니하였으니, 봉중의 간사한 술책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화친을 허락하면 저들이 조정의 경중(輕重)을 알아 더욱 간교(奸巧)를 부릴 것이니, 지금 성친이 오지 아니한 것을 핑계해서 답서(答書)하면 사리가 순편할 것입니다.[중략]

이자화(李自華)·이항(李沆)·윤은필(尹殷弼)·김내문(金乃文)·김정국(金正國)·권벌(權機)·소세양(蘇世讓)·류돈(柳墩)·이청(李清) 등은 의논드리기를,

“봉중이 화친을 청하면서, 대마도가 죄를 자복하여 실정대로 말해 바치겠다고 말하였고, 국가의 본 뜻도 역시 대마도가 죄를 자복하여 성의를 바친 다음에 화친을 허락하려 한 것인데, 당초부터 함에 담아다 바친 머리가 과연 참다운 것인지 믿을 수 없어 국가에서 화친 허락하기를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봉중이 성친으로 하여금 직접 스스로 정성을 바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친이 핑계하고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죄를 자복하지 않음을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디에 근거하여 화친을 허락할 것입니까?

화친을 허락하되 근거가 없이 하면, 저들이 반드시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면 화친 허락하기를 급하게 한들, 능히 영구히 굳기를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쉽사리 그들 소청대로 따른다면,明年에는 반드시 삼포(三浦)에 와서 다시 살기를 청할 것이니, 국가에서 또한 장차 따를 것입니까? 삼포에 다시 사는 것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면 오늘의 화친하자는 의논을 가볍게 허락하여서 되겠습니까? 성친이 기왕 오지 아니하니 화친하는 의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은, 봉중이 또한 어찌 스스로 요량하지 않으리까? 지금 비록 화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원망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니, 그들이 다시 청하기를 기다려서 화친을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乙丑○臺諫合司啓曰島主許和事前雖朝議已定今則事機與前異矣我國旣云盛親來則可和弼中亦曰諭致盛親而後可和而今盛親不來弼中奸術未可知也今若許和彼知朝廷輕重益長奸巧今以盛親不來爲辭而答書則理順矣[中略]

李自華李沆尹殷弼金乃文金正國權機蘇世讓柳墩李清等議弼中請和以馬島服罪輸情爲辭國家本意亦欲馬島服罪輸誠後許和當初函首來獻國家猶未信其實難於許和故弼中欲使盛

親親自納款盛親托辭不來其不服罪於此可知然則國家何所據而許和乎許和無據則彼必生輕侮之心輕侮之心生則雖急於許和其能保其永固乎今若易從其請則三浦復居明年必更來請國家亦將從之耶三浦復居決不可許則今日之和議其可輕許乎盛親旣不來和議不成彌中亦豈不自料耶今雖不許必不生怨俟其更請而議和未晚也 《中宗實錄 卷16, 59面》

중종 7년 10월 3일(계묘)

○이자건(李自健)·성운(成雲)·이언호(李彦浩)·김굉(金磁)·윤탕(尹宕)이 의논드리기를,

“음란한 풍습은, 크게 풍속과 교화(教化)에 방해되며, 국가가 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는 일이 없으니, 통절(痛切)하게 없애야 할 것입니다.[중략] 경세창(慶世昌)·이장생(李長生)·권민수(權敏手)·방유령(方有寧)·김근사(金謹思)·김말문(金末文)·이손(李蓀)·류인숙(柳仁淑)·조한필(曹漢弼)·한운창(韓胤昌)·박우(朴祐)·정구(鄭球)·나창(羅昶)·조원기(趙元紀)·홍경림(洪景霖)·유중익(兪仲翼)·이원화(李元和) 등의 의논도 모두 같았고, 이자화(李自華)·이항(李沆)·윤은필(尹殷弼)·김내문(金乃文)·홍언필(洪彦弼)·김정국(金正國)·김안세(金安世)·류돈(柳墩)·이청(李清)·신광한(申光漢)은 의논드리기를,

“사족의 부녀가 음행을 하여 풍속을 더럽히므로 사람들이 통탄하며 미워하니, 중법에 처하여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법 하나를 세우려면 반드시 인정과 사리에 맞게 하기를 힘써야 하며, 사형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 한때의 통탄과 미움만으로 경솔하게 큰 법을 의논할 수 있으리까! 절의(節義)를 세우고 정욕(情欲)을 금하는 것은, 스스로 그 방법이 있는 것이요, 엄중한 형벌에 있지 않습니다.

○癸卯○李自健成雲李彦浩金磁尹宕議淫亂之習大妨風化家國喪敗未必不由於此在所痛祛其在[中略]

慶世昌李長生權敏手方有寧金謹思金末文李蓀柳仁淑曹漢弼韓胤昌朴祐鄭球羅昶趙元紀洪景霖兪仲翼李元和等議皆同李自華李沆尹殷弼金乃文洪彦弼金正國金安世柳墩李清申光漢議士族婦女淫行污穢風俗人所憤疾雖置重典固不足惜然王者立一法必務求情理至於死刑尤加重慎豈可以一時憤疾輕議大法乎扶植節義禁絕情欲自有其道不在嚴刑况

《中宗實錄 卷17, 2面》

중종 7년 10월 18일(무오)

○실행(失行)한 부녀를 정죄(定罪)하는 법에 대하여 류순정·송일(宋軼)·이손이 의논드리기를,

“실행한 부녀는 간부(奸夫)까지 아울러 교수형에 처함이 합당하다는 일은, 전일 의논 때 이미 다 말하였으니, 지금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윤무·신용개·장순손·김전·강징·조계상·류담년·손주·성세순·임유겸·심정(沈貞)·최숙생(崔淑生)·이자건(李自健)·조원기(趙元紀)·홍경림(洪景霖)·성운(成雲)·이언호(李彦浩)·김굉(金磁)·윤탕(尹宕)·김희수(金希壽)·유중익(兪仲翼)·이원화(李元和)의 의논도 모두 같았으며, 성희안·김응기는 의논드리기를,

“실행한 부녀를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것은, 신등이 전일 의논 때 및 경연(經筵)에서 이미 아뢰었습니다. 비록 다시 생각해 보아도, 지금 만약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형법을 준엄하게 한다면, 한갓 임금의 큰 덕만 이지러지게 할 뿐 아니라, 후세에 사체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하고, 홍경주·류인호(柳仁濠)·이세인(李世仁)·이전(李埏)·이자화(李自華)·윤은필(尹殷弼)·김내문(金乃文)·홍연필(洪彦弼)·김정국(金正國)·소세양(蘇世讓)·류돈(柳墩)·이청(李清)·신광한(申光漢) 등의 의논도 같았는데, 순정의 의논을 따랐다.

○戊午○失行婦女定罪之法柳順汀宋軼李蓀議失行婦女并奸夫處絞爲當事前議已盡今不敢更議辛允武申用漑張順孫金詮姜徵曹繼商柳聘年孫澍成世純任由謙沈貞崔淑生李自健趙元紀洪景霖成雲李彦浩金磁尹宕金希壽兪仲翼李元和議皆同成希顏金應箕議失行婦女不可置死刑之事臣等於前議及經筵已啓雖更思之今若欲正風俗以峻刑章則非徒虧人主大德後之識事體者必笑之洪景舟柳仁濠李世仁李埏李自華尹殷弼金乃文洪彦弼金正國蘇世讓柳墩李清申光漢等議同從順汀議

《中宗實錄 卷17, 7面》

중종 8년 1월 17일(정해)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운(柳雲)이 소릉의 추복(追復)을 청하고,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집의(執義)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소릉¹¹²⁾은 추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종 때에 남효온(南孝溫)이 상소하여 복위하기를 청하니, 성종께서 복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만 임사홍(任士洪)에게 저지되었고, 또 정창손(鄭昌孫)에게 하문(下問)하셨으나, 창손이 당초 폐출(廢黜)할 때 함께 의논했던 대신이었으므로, 복위해야 하는 뜻을 힘써 진달(陳達)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만약 선왕(先王) 때 복위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복위하지 않는다면, 만고(萬古)의 강상(綱常)이 소멸되어 땅에 떨어질 것이니,

112) 소릉(昭陵) : 조선 단종(端宗)의 모후(母后)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본래 경기도 안산에 있었는데 중종 9년(1514)에 현릉(顯陵 : 文宗의 陵)으로 이장하였다.

뒷날 오늘 일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답하지 않았다. 사경(司經)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소릉 일이, 법으로 보더라도 당초에 추폐(追廢)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예(禮)로 볼 때 지금 추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와 법에 잘 못되었다면 한때 고르친 일이더라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丁亥 御朝講司諫柳雲請追復昭陵仍啓前事執義成雲曰昭陵不可不追復 成宗朝南孝溫上疏請復而 成宗非不欲復之見沮於任士洪又下問于鄭昌孫昌孫以其初廢時與議大臣不克力陳其可復之意今若以爲 先王所未復而不復則萬古綱常泯滅墮地矣後之視今日爲何如也又啓前事皆不答司經柳墩曰昭陵事以法觀之初不可追廢也以禮觀之今不可不追復也若於禮法有失則雖一時失誤之事不可不改也 《中宗實錄 卷17, 44面》

중종 8년 3월 21일(경인)

○삼도감(三都監 : 소릉(昭陵)을 천장(遷葬)할 때의 부묘(祔廟)·영악(靈幄)·의장(儀仗) 세 도감이 천장할 때의 복색 단자(服色單子)를 가지고 입계(入啓)하였는데, 그 단자에,

“예문(禮文)을 상고하면, 부모의 개장(改葬)에는 시마(緦麻)로 되었고, 우리나라 「오례의」(五禮儀)의 복제(服制)에는 사왕(嗣王)의 졸곡(卒哭) 후 시사복(視事服 : 정사를 볼 때 입는 옷)에 백포(白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 상제(喪祭)에 참포(黻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 담제(禫祭)에 현포(玄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로서 고금의 제도가 다릅니다.[중략]

남곤(南袞)·홍경림(洪景霖)·류운(柳雲)·이언호(李彦浩)·허지(許遲)·류관(柳灌)·김희수(金希壽)·김선(金璇)·이원화(李元和)가 의논드리기를,

“도감이 아뢴 천릉(遷陵)에 대한 복제(服制)가 대개 타당한 듯하오나, 지금 소릉의 천례(遷禮)에 대해서는 신주가 이미 부묘(祔廟)된 것을 개장하는 예와 달라서, 반드시 신주를 세우고 우제하며 우제한 뒤에 부묘하여, 초상(初喪)과 대략 같으니, 우제를 마치지 않고 본조(本朝) 시마일수(緦麻日數)에 구애되어 즉시 길복을 좇아 칠우 사이에 어지러이 변복한다면 정례에 실로 미안합니다.[중략]

박소영(朴召榮)·윤은보(尹殷輔)·홍언필(洪彦弼)·김정국(金正國)·권벌(權撥)·소세양(蘇世讓)·김안세(金安世)·류돈(柳墩)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의례」(儀禮) 개장시주(改葬總註)에 ‘아들은 아버를 위하고 신하는 임금을 위한다’ 하였고, 「곡량전」(穀梁傳) 소(疏)에는 ‘신(神)을 접하는 도에 순흥(純凶)으로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제 소릉을 천장할 때 복시(服緦)의 제도에 의거하여 길(吉)과 흉(凶)의 중간을 참작하면, 도감의 아뢴 바와 같이 하여야

정례에 합당할 것 같으나, 중외가 일체로 함에 있어, 경성에 있는 관원이 이미 변복하였은즉, 각 고을만 유독 평시와 같이 길복을 하는 것은 부당하겠습니다.”

하니, 남곤 등의 의논을 받아들였다.

○庚寅○三都監昭陵遷葬時祔廟靈輿儀仗三監以遷陵時服色單子入啓其單子云按禮文父母改葬總我朝五禮儀服制嗣王卒哭後視事服白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祥祭黻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禫祭玄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古今異制[中略]

南袞洪景霖柳雲李彥浩許遲柳灌金希壽金璇李元和議都監所啓遷陵服制大槩似當但今昭陵之遷非如主已祔廟而改葬之例必立主而虞既虞而祔與初喪略同虞祭未畢而拘於本朝總麻日數遽即從吉七虞之間紛紜變服揆之情禮實所未安[中略]

朴召榮尹殷輔洪彥弼金正國權撥蘇世讓金安世柳墩議謹按儀禮改葬總註云子爲父臣爲君穀梁傳疏云接神之道不可以純凶今昭陵遷葬時據服總之制酌吉凶之間如都監所啓似合情禮但中外一體在京官既變服則各官獨吉服如常固爲不可也用南袞等議《中宗實錄 卷18, 12面》

중종 8년 4월 11일(기유)

시독관(侍讀官) 김정국(金正國)·검토관(檢討官) 류돈(柳墩)이 구수영(具壽永)의 일을 극론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영이 공신의 반열에 있으므로, 중삭연(仲朔宴) 뒤에 명하여 전에 제수한 가자를 주었다.”

○己酉侍讀官金正國檢討官柳墩極論壽永事 上曰壽永在功臣之列仲朔宴後命給前授之加耳 《中宗實錄 卷18, 17面》

중종 8년 5월 8일(을해)

○주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홍언필(洪彦弼)과 검토관(檢討官) 류돈(柳墩)이 ‘구수영은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이니 공론을 궤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비답하지 않았다.

○乙亥○御晝講侍讀官洪彦弼及檢討官柳墩論具壽永小人之尤者公議不可不快從不答 《中宗實錄 卷18, 25面》

중종 8년 5월 18일(을유)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지평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대간은 수영의 가자를 빼앗으려는 것뿐 아니라, 실은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열(餘孽)을 남겨두면 다시 숨은 화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이를 염려하여 부득이 합사하여 논계합니다.”

하고, 시독관 이자(李耜)와 검토관(檢討官) 류돈(柳墩)은 대간의 아뢰기를 따르기를 간청하였다.

상이 답하지 않았다.

○乙酉 御朝講臺諫啓前事持平金希壽曰臺諫不但欲奪壽永之資實欲除去如此餘孽猶存無乃復有隱禍乎臣等以此爲懼不得已合司論啓侍讀官李耜檢討官柳墩請從臺諫之啓

上不答

《中宗實錄 卷18, 29面》

중종 8년 5월 30일(정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홍경림이 정광좌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 대관을 추고하라 하신 전지(傳旨)에 ‘반드시 사정을 두었다’[중략]

검토관(檢討官) 류돈(柳墩) 역시 극론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어찌 다 믿지 않겠는가! 추안(推案)으로 본다면 무죄한 사간을 곤장 아래에 죽게 하였으니, 흘형(恤刑)의 본의가 아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닌데 어찌 몰라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전지 중에 ‘반드시 사정을 두었다.’는 말은 이미 고치라 하였다.”

하매, 돈이 아뢰기를,

“전지를 고치는 것은 말단의 일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천지로 도량을 삼아서, 마치 현기(玄機 : 현묘한 이치)가 소리 없이 운행함에 따라 사시 오행(四時五行 : 네 계절과 금·목·수·화·토를 말한다)이 자연 화하듯이, 그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지성으로 한다면 아랫사람 된 자도 자연 성심으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丁酉 御朝講大司諫洪景霖啓鄭光佐等事又啓前臺官推考傳旨必有其情之[中略]

檢討官柳墩亦極論之 上曰豈盡不信乎若以推案觀之則無罪事干枉杖致死非恤刑之意也且非一人爲之豈不知之而然耶傳旨中必有其情之語已令改之矣墩曰改傳旨末也人君當以天地爲量如玄機之默運而四時五行自然承化其於待下之際一以至誠焉則爲下者自然以誠應之也

《中宗實錄 卷18, 36面》

중종 8년 9월 14일(기묘)

○홍언필(洪彦弼)을 지평으로, 류돈(柳墩)을 정언으로 삼았다.

○己卯○以洪彦弼爲持平柳墩爲正言

《中宗實錄 卷18, 59面》

중종 8년 10월 21일(을묘)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바른 사람은 송백(松柏)같이 우뚝하게 서서 굴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등덩굴(藤蘿)과 같아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러나 분별해 내기는 어려운데 군자와 소인은 없는 세상이 없어 당·우(唐虞: 요순(堯舜)) 때에도 있었다. 어제 번개의 번은 전보다도 심했는데,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매, [중략]

부수찬(副修撰)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지금 교화(教化)가 위축(萎縮)되어 인심이 야박하고 충후(忠厚)한 마음이 부족하므로, 수령들이 탐심을 부려 형옥(刑獄)이 억울하고 지체되니, 원기(元氣)를 보호하는 것을 앞세우고 절목(節目)을 시행하는 것을 다음으로 삼아야 장구(長久)하게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공효(功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폐단이 생겨서 큰 교화는 보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본말(本末)이 있는 말이다. 반드시 인심이 충후해진 뒤에야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乙卯 御朝講 上曰正人如松柏特立不屈小人如藤蘿非附他物不能自起然能辨之爲難君子小人無世無之唐虞之世亦有之昨日雷變甚於前無乃不辨君子小人而然耶 [中略]

副修撰柳墩曰今者風化委靡人心澆薄忠厚不足守令貪婪刑獄冤滯先護元氣而次其節目然後可以成長治久安之功欲見速效則弊必生而大化不得見矣 上曰此言有本末必人心忠厚然後可以正風俗矣 《中宗實錄 卷19, 7面》

중종 8년 10월 22일(병진)

○집의(執義) 김협(金協)·사간(司諫) 신상(申鎰)·장령(掌令) 윤은필(尹殷弼)과 이번(李蕃)·지평(持平) 홍언필(洪彦弼)과 임추(任樞), 정언(正言)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근래에 벼락치는 변괴가 잦으므로 연방(延訪)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또 건·현릉(健顯陵)에 벼락쳤고, 지난 봄에는 태묘(太廟)에 벼락치는 변이 있었으니, 이 모두 지난날에 없던 일입니다. 선왕(先王)의 영(靈)이 어찌 편안하실 수 있으리까! 청재(淸齋)하실 것 없이 곧 위안해야 하니, 오늘은 정사를 듣지 마시고 속히 위안하셔야 합니다. 재상(宰相)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나 이는 모두 지엽(枝葉)의 일이니, 서서히 하여도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자에 벼락치는 변이 있어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 없는데, 또 이와 같이 놀라

운 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것을 대신에게 말하였다. 성종(成宗) 때에 공릉(恭陵)¹¹³의 정자각(丁字閣)에 벼락이 쳤는데, 성종께서 친히 거둥하려다가 마침 연고가 있어 정지하고, 우참찬 이숭원(李崇元)을 보내어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번에도 친제(親祭)하여야 하나, 마침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대신을 보내어 위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매, 대간들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

○丙辰○執義金協司諫申鐸掌令尹殷弼李藩持平洪彥弼任樞正言柳墩啓曰近多雷變以至延訪而今又健顯陵雷震去春亦於太廟有雷震之變此皆前古所無也先王之靈豈能安寧乎不計清齋當慰安今日不當聽政宜速慰安宰相會議於賓廳是皆枝葉之事徐當爲之傳曰近者有雷變不勝恐懼之至又聞如此駭愕之變故予以此已言于大臣矣成宗朝震恭陵丁字閣成宗欲親幸而適有故停之命遣右叅贊李崇元行祭今宜親祭而適有大事遣大臣慰安耳臺諫等聞命而退

《中宗實錄 卷19, 11面》

중종 8년 10월 25일(기미)

○대간(臺諫)을 패소(牌召)하여 ‘우중형(禹仲亨)은 파직하지 말아야 하고 이창운(李昌胤)은 갈지 말아야 한다’고 분부하매, 장령(掌令) 윤은필(尹殷弼)·정언(正言) 류돈(柳墩)이 그들의 아뢰 바를 윤택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己未○牌召臺諫教以禹仲亨不當罷李昌胤不當遞掌令尹殷弼正言柳墩請允其啓皆不允

《中宗實錄 卷19, 28面》

중종 8년 10월 29일(계해)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박열(朴說)·장령 윤은필(尹殷弼)·정언(正言) 류돈(柳墩)이, 이손(李蓀)·이계금·이질·이영화·우중형 등의 일을 아뢰고, 참찬관 김극픽(金克幅)이 아뢰기를,

“장한공(張漢公)과 정호(鄭灝)는 모두 인천(仁川)의 도독을 잡을 때 군기(軍期)를 놓쳤기 때문에 정원(政院)에서 죄를 청하였는데, 한공은 아직도 방면되지 못했고, 정호는 죄가 같은데도 직첩(職牒)¹¹⁴을 도로 주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부자 형제가 있으면 상언(上言)을 해서 풀리기도 하지만, 자체가 없으면 상언(上言)을 입지 못하니, 이런 일은 해사(該司)에 물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113) 공릉(恭陵) : 조선 예종(睿宗)의 비(妃)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韓氏)의 능.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에 있다. <신 동국여지승람 11>

114) 직첩(職牒) : 조정으로부터 받은 벼슬아치와 그 아내의 사령장(辭令狀). 고신(告身)이라고도 한다.

“이게금과 이질이 아직 개만되지 않았다면, 개만된 뒤에 서용(敍用)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물론(物論)에 맞지 않는데도 이와 같이 차서를 뛰어넘어 발탁하기 때문에 사기(士氣)가 꺾이는 것이니, 물론을 따라야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아뢴 바 장한공과 정호는 모두 친공신(親功臣)¹¹⁵⁾이고 그 죄도 같으니, 충훈부(忠勳府)로 하여금 친공신 중에서 분배(分配)되어 있는 자를 뽑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癸亥 御朝講同知事朴說掌令尹殷弼正言柳墩啓李蓀李繼金李秩李榮華禹仲亨等事參贊官金克愾曰張漢公鄭灝皆以仁川賊捕捉時失軍期政院請罪而漢公迨未蒙放鄭灝以其罪同而令還給職牒大抵有父子兄弟則或以上言免放無子弟則未蒙 上恩如此之事當問該司以處之 上曰李繼金李秩若未箇滿則箇滿後叙用可也餘不允柳墩曰以物論不合超擢如是故士氣摧沮當從物論而已 上曰今所啓張漢公鄭灝是皆親功臣而其罪亦同其令忠勳府親功臣分配者抄啓 《中宗實錄 卷19, 32面》

중종 8년 11월 11일(을해)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이번(李蕃)·정언(正言) 류돈(柳墩)이 전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인의 자제를 정죄(定罪)할 때에 이미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했다. 이탁은 추고를 끝낸 뒤라야 갈 수 있다. 나머지도 윤택하지 않는다.”[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에 참배하는 일은 농사 형편을 보아서 할 것이니, 유사(有司)가 다시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상이 사위스러운 말에 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뢴 것이다.

○乙亥 御朝講掌令李蕃正言柳墩論前事 上曰罪人子弟定罪時已與大臣議處李琢畢推後可遞餘亦不允[中略]

上曰拜陵事當觀農事爲之有司當申啓史臣曰 上牽於拘忌之說故有是啓

《中宗實錄 卷19, 37面》

115) 친공신(親功臣) : 조선(祖先) 등 다른 사람이 공신호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자손이 이를 승습(承襲)하여 공신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공을 세워 공신호를 받은 사람.

중종 8년 12월 10일(갑진)

대사헌 박열(朴說)·대사간 홍경림(洪景霖)·집의(執義) 김협(金協)·사간(司諫) 이현보(李賢輔)·장령(掌令) 윤은필(尹殷弼)과 이번(李蕃)·지평(持平) 최명창(崔命昌)·헌납(獻納) 윤인범(尹仁範)·정언(正言)·어영준(魚泳濬)과 류돈(柳墩) 등이 아뢰기를,

“대간은 타인의 논박을 조금만 입어도 재직(在職)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동료의 논박을 입었음에리까! 신등은 재직할 수 없으며, 상께서도 신등을 취직하게 하여서는 안 되니, 같으소서.”

하니, 상이 어렵게 여기매, 또 아뢰니, 전교하기를,

“나는 한 사람이 논하는 것으로 죄다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게 물으라.”

하매, 대신이 회계(回啓)하기를,

“일에 잘못은 없으나 맞서서는 안 되니 같아야 합니다.”

하였다.

○甲辰大司憲朴說大司諫洪景霖執義金協司諫李賢輔掌令尹殷弼李蕃持平崔命昌獻納尹仁鏡正言魚泳濬柳墩等啓曰臺諫小被他人之論猶不可在職況被論於同僚則臣等不可在職上亦不可使臣等就職請遞之上難之又啓之傳曰予意以爲不可以一人所論盡遞問諸大臣大臣回啓曰事雖無失不可角立當遞之

《中宗實錄 卷19, 43面》

중종 9년 1월 5일(기사)

○경세창(慶世昌)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최명창(崔命昌)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로, 홍언필(洪彦弼)을 교리(校理)로, 류돈(柳墩)·어영준(魚泳濬)을 수찬(修撰)으로, 신광한(申光漢)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己巳○以慶世昌爲黃海道觀察使崔命昌爲弘文館應教洪彦弼爲校理柳墩魚泳濬爲修撰申光漢爲副修撰

《中宗實錄 卷19, 52面》

중종 9년 2월 6일(경자)

조강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북방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사가 적고 식량이 없어서, 군민(軍民)이 모두 지쳤는데, 근자에 듣건대 첨사(僉使)·만호(萬戶)가 양민을 억압하여 자기의 노(奴)로 만들어 다수를 거느리고 오는데, 양민들 또한 본도(本道)의 역사(役使)에 시달려 나오기를 즐겨하여 자칭 ‘도노’(逃奴)라 하므로 북방이 지극히 허소(虛疎)하다 합니다. 실로 사노가 되었다 할지라도 남방의 공천(公賤)과 바꾸어

주고서 토병(土兵：토착민(土着民)으로 뽑아서 만든 군대)으로 정한다면 방어에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평(昇平)이 오래 되면 소홀한 데서 변고가 생기는 것이니 예방함이 가하다.”

하매, 지평(持平) 류관(柳灌)이 아뢰기를,

“북도의 군액(軍額)이 유명무실한 것은, 모두 저들[彼人：여진족(女眞族)을 가리킨다]의 땅으로 도망하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사천(私賤：개인에 의하여 사역(使役) 또는 매매되었던 종)으로 군사를 삼는다 할지라도 수령이 이를 침해한다면 또 전일과 같이 도망하여 들어갈 것이니, 모름지기 수령을 골라 써서 이들을 잘 무어(撫禦)하게 하면, 변경의 방비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邊將)의 선택을 정하게 하지 않으면 과연 무익할 것이니, 변장에는 간혹 유신(儒臣)을 쓰는 것도 무방하리라.”

하였다. 헌납 정충량(鄭忠樑)이 류관(柳灌)으로 더불어 전의 일을 논계(論啓)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중략]

검토관(檢討官) 류돈(柳墩)은 아뢰기를,

“학문을 하는 데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장(詞章)을 버릴 수는 없으나,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世宗)께서는 홍문관(弘文館)에 친림하여 선비들과 논란(論難)을 하셨다 합니다. 문학하는 선비를 애중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당시의 사림(士林)과 문학의 번성함을 후세에서는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저 군신(君臣)의 분수는 하늘과 땅 같으나 뜻이 서로 통한 뒤라야 치도(治道)에 보탬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庚子 御朝講檢討官柳墩曰北方連年凶歉兵少糧乏軍民皆困近聞僉使萬戶之類壓良民爲己奴多數率來良民亦苦本道之役樂於出來自稱逃奴故北方至爲虛疎雖實爲私奴換給南方公賤而定爲土兵則於防禦有益矣 上曰昇平日久則變生所忽預防甚可持平柳灌曰北道軍額有名無實者皆逃入彼土故也今雖以私賤爲兵守令侵之則亦如前日之逃入矣須擇任守令撫禦有道則邊備固矣 上曰擇將不精則果爲無益邊將間用儒臣無妨獻納鄭忠樑與柳灌論啓前事不允[中略]

檢討官柳墩曰爲學有異詞章雖不可棄而治心之學尤重臣聞之 世宗親臨弘文館與之論難其愛重文學之士至於如此故當時士林文學之盛後世莫及大抵君臣之分雖如天地然情意相通然後有補於治道矣

《中宗實錄 卷20, 4面》

중종 9년 2월 10일(갑진)

○이자(李耜)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허지(許遲)를 홍문관 교리로, 김정(金淨)·류돈(柳墩)을 부교리(副教理)로, 신광한(申光漢)을 정언(正言)으로, 이정호(李挺豪)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甲辰○以李耜爲司諫院司諫許遲爲弘文館校理金淨柳墩爲副校理申光漢爲正言李挺豪爲修撰
《中宗實錄 卷20, 6面》

중종 9년 2월 18일(임자)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류돈(柳墩)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용관(冗官)을 사태(沙汰)할 때에는 마땅히 그 교활한 자제(子弟)와 국사에 근설치 아니한 자를 사태해야 하는데, 지금 사태된 자는 인의(引儀) 등의 무리가 아니면 반드시 지체가 낮고 권세가 없는 자에게만 미치니, 이로서는 사람을 권징(勸懲)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성균관(成均館)은 권과(勸課)하는 방도가 극진합니다. 글을 짓고 읽는 것만이 학문의 도가 아니며 그 근본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수양하는 데 있는 것이니, 이로써 힘쓰도록 하면 도학(道學)이 스스로 밝아질 것입니다. 근래의 학자들이 근본을 힘쓰는 도리를 알지 못하여, 사장(師長)도 교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반드시 지성으로써 권장한 뒤라야 사장과 제자 된 자가 반드시 흥기(興起)할 것입니다. 또 근래에 선조(先朝)의 기구(耆舊 : 원로)는 다만 두어 사람 뿐인데, 모두 노병(老病)으로 사직하매 상께서는 너무 쉽사리 받아들여시니 신의 뜻으로는 불가한 듯합니다. 선조의 구인(舊人)을 수시로 경연(經筵)에 입참(入參)케 하여 선왕(先王)의 정치의 득실(得失)을 말하게 하면 어찌 이익되는 바가 없으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용관을 사태할 때에, 해조(該曹)에서 치사(治事)의 여부(與否)는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만 연로(年老)하였다 하여 사태한 것은, 자못 뜻이 없는 일이다. 또 인재는 학교로부터 배출되는 것이니 생원·진사 들 중에서 연로하고 덕업(德業)이 있는 자는 또한 쓰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壬子○御夕講侍讀官柳墩臨文曰汰冗官之時當汰其無賴子弟及不勤國事者而今之所汰者若非引儀等類則必及於寒微無賴者以是人無勸懲矣且我朝成均館勸課之道至矣詞華口讀非爲學之道而其本在於治心養性以此爲務則道學自明近來學者未知務本之道而師長亦未得教道之方 上必以至誠勸獎然後爲師長弟子者必有興起矣且近來先朝耆舊只數人而皆以老病辭職 上之聽納甚易臣意以謂不可先朝舊人時時入叅經筵言 先王政治之得失則豈無所益哉 上曰近來汰冗官之時該曹不計治事與否但以年老汰之殊無意矣且人材自

學校出生員進士中有年老德業者亦可用之

《中宗實錄 卷20, 7面》

중종 9년 5월 25일(정해)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손중돈(孫仲墩)과 집의 김양진(金楊震)이 전의 일을 논계하고, 시독관 류돈(柳墩)과 검토관 류인숙(柳仁淑)도 논계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丁亥 御朝講大司諫孫仲墩執義金楊震論啓前事侍讀官柳敦檢討官柳仁淑亦論之不允

《中宗實錄 卷20, 30面》

중종 9년 12월 9일(정유)

○고형산(高荊山)을 공조 판서로, 경숙(慶叔)을 사헌부 장령으로, 류돈(柳墩)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류옥(柳沃)을 수찬(修撰)으로, 윤자임(尹自任)을 저작(著作)으로 삼았다.

○丁酉○以高荊山爲工曹判書慶叔爲司憲府掌令柳墩爲弘文館校理柳沃爲修撰尹自任爲著作

《中宗實錄 卷21, 31面》

중종 10년 1월 9일(정묘)

○석강에 나아갔다. 「고려사(高麗史)」를 강하다가 '문하시중(門下侍中) 최충(崔冲)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았다.'는 구절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이것은 비록 정사(政事)에 관계된 일이나, 책임자를 얻은 것을 중하게 여겨서 여기에 쓴 것입니다. 근일에 상께서 친히 정사를 하여 인재(人材)를 임용하는데 마음을 쓰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큰 정사가 있어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의 결원이 있으면 친히 정사를 하셔야겠지만, 육시(六寺)·칠감(七監)과 같은 작은 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께서 친히 나가서 낙점(落點)을 하신다면 이는 한갓 번쇄할 뿐입니다. 근래에는 삼공의 결원이 있으면 이조로 하여금 비망(備望)하게 하는데, 재상을 임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어찌 이조로 하여금 주의(注擬)하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비록 상께서 몸소 정사를 하시더라도 여론을 널리 들어서 발탁 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丁卯○御夕講講高麗史至以門下侍中崔冲爲開府儀同三司侍讀官柳墩曰此雖政事問事以得人爲重而書之近日 上親自爲政致意於用人之道可謂盛事然國有大政如三公六卿之闕則可親爲政至如六寺七監小小官員皆親臨落點徒爲細瑣而已近來有三公之闕則吏曹備

望卜相至重豈可使吏曹注擬乎如此之事雖親政廣取物議而擢用之可也 上不應

《中宗實錄 卷21, 39面》

중종 10년 2월 6일(갑오)

○좌의정 정광필·좌참찬 장순손 등이 아뢰기를,

“망합(莽哈)의 일을 다시 들은즉, 우리 나라를 능멸함이 이번만이 아니라 합니다. 전일 이빈이 아뢰던 것이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그랬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빈 및 여진 통사(女眞通事)를 불러 자세히 물은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또 오랑캐의 사정을 잘 알고 변방의 일도 아는 강윤희(姜允禧: 서얼(庶孽)로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어 가선(嘉善)에 승진하였다.) 같은 자도 모두 와서 계책을 말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중략]

광필이 여럿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다시 통사와 이빈에게 물은즉, 망합이 사납고 거만하여 성을 내는 일이 매우 많다 하며, 윤은보·이빈 및 다른 재상들은 모두 치죄(治罪)함이 마땅하다 합니다.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인 허굉(許礪)·류부(柳溥)·류돈(柳墩)·임권(任權) 등은 모두 말하기를 ‘가볍고 쉽게 여길 것이 아니다.’ 하며, 심정의 말 또한 전의 의논 그대로입니다. 소신이 중론을 듣고 자세히 생각하여 보았는데, 북방의 병력이 매우 허약합니다. 망합이 이번에 가서 난을 일으킬지의 여부는 반드시 그러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만일 망합의 죄를 다스린다면 그가 난을 일으킬 것은 분명합니다.”

하였다.

○甲午○左議政鄭光弼左叅贊張順孫等啓曰莽哈事更聞之其陵蔑我國非特今時也前日李蘋所啓必有所聞而然也請卽召李蘋及女眞通事詳問之然後更議之且諳虜情知邊事如姜允禧以庶孽爲靖國功臣陞嘉善者皆使來陳其策何如 [中略]

光弼持衆議啓之曰更問于通事及李蘋則其桀驁發怒之事甚多尹殷輔李蘋及他宰相則皆以爲治罪爲當弘文館官員許礪柳溥柳墩任權等則皆曰不宜輕易爲之沈貞之之言亦不過前議小臣聽衆論更詳思之北方兵力甚虛弱莽哈今去而作亂與否不可必也今若治莽哈之罪則其致亂必也

《中宗實錄 卷21, 47面》

중종 10년 2월 22일(경술)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형조 판서 강흔·병조 판서 신용개·우찬성 장순손(張順孫)·이조 판서 박열(朴說)·우참찬 이계맹·지중추부사 안윤덕 류담

년·호조 판서 고흥산·공조 판서 안당·한성부 판윤 지자건·병조 참판 이장생·형조 참판 류미·풍창군(豐昌君) 심형(沈亨)·계림군(鷄林君) 최한홍(崔漢洪)·청양군(菁陽君) 류계종(柳繼宗)·병조 참의 김극성·판결사 윤은보(尹殷輔)·예조 정랑 반석평(潘碩枿) 등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의견으로서는 망합이 오면 금부에 가두고, 이빈(李蘋)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으로 그 죄를 설명하고 추문한 후에 남방 외딴 섬에 거처하게 하고, 황형(黃衡)이 북도에 가서 오랑캐의 실정을 보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문관 직제학 김안로·응교 류부·교리 홍언필·부교리(副校理) 류돈(柳墩) 민수천(閔壽千)·수찬 류옥 류인숙·부수찬 김구(金綵)·저작 윤자임(尹自任)·정자 임권(任權) 등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은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오랑캐의 실정도 모르니, 이 일을 처리하는데 타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형에 처할 수도 없으며 또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庚戌○左議政鄭光弼右議政金應箕刑曹判書姜渾兵曹判書申用漑右贊成張順孫吏曹判書朴說右叅贊李繼孟知中樞府事安潤德柳聃年戶曹判書高荊山工曹判書安瑯漢城府判尹李自健兵曹叅判李長生刑曹叅判柳湄豐昌君沈亨雞林君崔漢洪菁陽君柳繼宗兵曹叅議金克成判決事尹殷輔禮曹正郎潘碩枿等議臣之意以爲莽哈來則囚于禁府以李蘋持去事目數其罪推問後處于南方絕島黃衡往北道見虜情然後更議處之爲當弘文館直提學金安老應教柳溥校理洪彦弼副校理柳墩閔壽千修撰柳沃柳仁淑副修撰金綵著作尹自任正字任權等議臣等未知邊事又未諳虜情故處此事不得其當否耳然不可置於極刑又不可還送

《中宗實錄 卷21, 58面》

중종 10년 3월 17일(갑술)

○류담년을 공조 판서로, 김석철(金錫哲)을 한성부 좌윤으로, 조순을 좌부승지로, 홍언필(洪彦弼)을 홍문관 응교로, 이언호(李彦浩)를 부응교로, 류돈(柳墩)을 교리(校理)로, 김안정(金安鼎)을 사간원 정언으로, 윤자임(尹自任)을 홍문관 박사로 삼았다.

○甲戌○以柳聃年爲工曹判書金錫哲爲漢城府左尹趙舜爲左副承旨洪彦弼爲弘文館應教李彦浩爲副應教柳墩爲校理金安鼎爲司諫院正言尹自任爲弘文館博士 《中宗實錄 卷21, 69面》

중종 10년 4월 20일(정미)

○류돈(柳墩)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신광한(申光漢)을 정언으로, 채침(蔡忱)을 홍문관 수찬으로, 임권(任權)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丁未○以柳墩爲司諫院獻納申光漢爲正言蔡忱爲弘文館修撰任權爲弘文館著作

《中宗實錄 卷21, 77面》

중종 10년 5월 2일(무자)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권민수(權敏手)·헌납(獻納) 류돈(柳墩)이 한승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류돈이 아뢰기를,

“황개·김세기 등의 작폐한 일은, 그때의 수령이 검거(檢擧)하지 못하였다 하여 아울러 추문하는 것은 사리에 마땅하지 않을 것 같으며, 임금의 용법(用法)에 있어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에 방해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전(大典)』의 수령철사 조의 하나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없앤다.’ 하였다. 지금 황개 등이 시골에서 위세를 부리면서 작폐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수령이 직분을 다하지 못한 소치다. 만약 현명한 수령이라면 스스로 능히 이 폐풍을 방지하였을 것이다.”

하매,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이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니 추론(追論)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 뒤로부터 이러한 일이 탄로나는 자가 있으면 추문하는 것이 가합니다. 또 경상도의 원우(院宇)에 송호의(宋好義)의 과실(過失)을 써 놓은 자를 헌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이것은 광망(狂妄)한 자의 소위이며, 또 익명서(匿名書)의 유(類)이니, 추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서울에서도 또한 많이 본받을 것이니, 지금 그 꼬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성명(成命)이 이미 내렸더라도 마땅히 오늘 입시(入侍)한 대신들에게 즉시 하문하시어, 추문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짓인지 모른다면 익명서라고 할 수 있거니와, 이는 성주(星州) 사는 생원(生員)의 소위로서 지금 도망중에 있다고 하니, 이 일은 사간(事干)을 추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추문하는 것이므로 추문하게 한 것이다.”

하매,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성주 사는 생원의 소위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비록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일일지라도 뜬 소문을 실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이는 성주 사는 생원이 쓴 것이라고 의심될 뿐임에리까? 추문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한 일로서, 장차 뒷폐단이 있을 것이니, 결코 그 실마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戊子 御朝講大司憲權敏手獻納柳墩啓韓承亨事不允柳墩曰黃愷金世基等作弊事其時守令以不能檢舉並推似不當理恐妨人君用法之意不宜追論也 上曰大典守令七事條內一云奸猾息今黃愷等武幽鄉曲而作弊如此此守令不能職之所致也若賢守令則自能防此弊風柳墩曰此非一二年之事不可追論也自今以後既有現露者則推之可也且慶尚道院宇書宋好義過失者令憲府推之臣意以爲此乃狂妄者之所爲且匿名書類也不可推矣若取實於此則京中亦多效焉今不可開端也雖曰成命已下宜卽下問于今日入侍大臣勿令推之可也 上曰若不知某人所爲則可謂之匿名書此則星州居生員所爲而今在逃云此非推事干之事當直推其身故使之推耳柳墩曰星州居生員所爲云者乃無根之言也雖係國家之事固不可以浮言取實也况此則只疑星州生員之所書而推之至爲未穩將有後莽決不可開端 上曰可

《中宗實錄 卷22, 13面》

중종 10년 5월 27일(계축)

○김극희(金克愾)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영(金瑛)을 사헌부 장령으로, 홍언필(洪彦弼)을 홍문관 응교로, 류돈(柳墩)을 사간원 헌납으로, 표빙(表憑)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구(金綬)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癸丑○以金克愾爲忠清道觀察使金瑛爲司憲府掌令洪彦弼爲弘文館應教柳墩爲司諫院獻納表憑爲弘文館修撰金綬爲副修撰

《中宗實錄 卷22, 24面》

중종 10년 7월 25일(경술)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영·헌납 류돈(柳墩)이, 겸춘추·부장·역승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역승과 찰방(察訪)의 편부(便否)는 마땅히 제도(諸道)에 하문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庚戌 御朝講掌令金瑛獻納柳墩啓兼春秋部將驛丞等事 上曰驛丞察訪便否當下問于諸道餘不允

《中宗實錄 卷22, 49面》

중종 10년 8월 11일(을축)

○대사헌 권민수(權敏手)·대사간 이행(李荇)¹¹⁶·집의 허지(許遲)·사간 김내문

116) 이행(李荇) : 1478~1534.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容齋) 청학도인 창택어수(滄澤漁叟). 본관은 덕수 사간 이의무(李宜茂)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 갑자사화 때 응교로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 유배됨.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사성(司成)에 올랐다. 중종의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반대하고 대사간으로 승진하였으나 신진사류의 배척을 받았으며 우의정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찬진하였으며 좌의정이 되어 김안로를 논박하다가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문장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하였다. 중종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용재집이 있다. 시

(金乃文)·장령 김영(金瑛)·지평 채침(蔡忱) 문관(文瓘)·헌납 류돈(柳墩)·정언 표빙(表憑)이 아뢰기를,

“담양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순창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이 상소하여 감히 사특한 의논을 발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잡아다 조옥(詔獄 : 의금부)에 내려 그 소이를 추고하소서. 이 두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문자를 아는데 이와 같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근일 시관(試官)으로 들어갔다가, 금일에야 비로소 들었기 때문에 아웁니다. 그 소장(疏章)은 궁중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되니, 속히 대신에게 보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행이 먼저 발언하기를 ‘박상 등이 이 사특한 의논을 내었으니, 추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람에 쓸리듯 좃았다. 행의 뜻은, 대개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이미 원자(元子)를 낳고 승하(昇遐)하였으므로, 곤위(坤位 : 왕비자리)는 비록 비었으나 나라의 근본은 이미 정하여졌으니, 만약 신씨(愼氏)를 복위하여 선후의 의리를 논하면, 신씨는 먼저이고 장경왕후는 뒤이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이 혹 동요될까 염려하여서였다. 헌납(獻納) 류돈(柳墩)이 홀로 그렇지 않다고 논하였는데, 그 뜻은 대개 상소하였다고 잡아다 추고하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도 능히 강제하지는 못하였다.

또 논한다.

삼훈(三勳 : 세 훈신, 즉 박원종(朴元宗)·류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의 세 원훈)은 추대한 공이 비록 크나, 왕비를 위협하여 폐한 죄는 만세에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삼훈을 저승에서 일으켜 이 상소를 보이고 물으면, 또한 반드시 목을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다. 대간이 모두 무식한 사람이라서 민수와 행의 말만을 믿고 바람에 쓸리듯 좃았으니, 애석하다.

또 논한다.

이행이 생각하기를 ‘장경왕후가 흥(薨)하자 박상·김정이 신씨를 세워 왕후 삼기를 청할 때, 신씨는 수근의 소출이라 만약 뜻을 얻으면 아버이를 위하여 보복할 것이니, 이런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반드시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尹氏)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거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거늘, 더구나 우리 임금의 거룩하심으로써 뒷날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윤공(寺尹公) 류척(柳惕)의 5대손 류자(柳滋 : 父 柳光植)의 처 덕수이씨의 아버지가 된다.

이에 상·정을 죄주어 뒷날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청한 것이다. 사림(士林)들은 이런 깊은 생각을 모르고 죄를 청한 것을 허물로까지 여겼다.

전교하기를,

“나도 처음 상소를 보고 국가의 큰 일을 경솔히 의논한다고 생각하였다. 내 의사도 그 이유를 추문(推問)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구언(求言)으로 인하여 상진(上陳)하였기 때문에 버려두고 쓰지 않으면 될 것이니, 반드시 추문하여 치죄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 이로써 명하여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지적하여 허물한 뜻을 보건대, 오로지 삼대신(三大臣)에게 죄를 돌렸다. 상등은 신진(新進)이 아니요 대간·시종의 반열에 오래 처하였었는데, 삼훈(三勳)이 이미 죽은 뒤를 틈타서 발론하였으니, 그 심술도 또한 알 만하다. 지금 대간이 아뢰 바를 들으니, 과연 옳다. 아뢰 대로 추문하라.”

하고, 또 곧 정부 당상(政府堂上)을 불러 상소를 보였다.

○乙丑○大司憲權敏手大司諫李荇執義許遲司諫金乃文掌令金瑛持平蔡忱文權獻納柳墩正言表憑啓曰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上疏敢發邪議至爲駭愕請拿致詔獄推其所以此二人非無識者稍識文字而如此必有其意臣等近入試官今日始得聞之故啓之其疏章不可留中速示大臣使下人洞知上意可也史臣曰李荇先發曰朴祥等出此邪議不可不推餘皆靡然從之荇之意蓋章敬旣誕元子而升遐坤位雖缺國本已定若復慎氏以先後之義論之則慎氏先也章敬後也然則國本或搖也獻納柳墩獨不然而難之其意蓋上疏而拿推恐妨言路然墩亦不能強焉史臣曰三勳推戴之功雖大脅廢中闇之罪萬世難逃若起三勳於九原示此疏而問之則亦必縮頸慚慙之不暇臺諫皆無識者只信敏手荇之言靡然從之惜哉史臣曰李荇謂章敬之薨朴祥金淨請立慎氏爲后慎氏守勤之出也若得志爲親報復未可保其必無也然則朝廷必受其禍燕山爲尹氏報怨幾危社稷不宜復蹈其轍況以吾君之聖而不爲後日之慮乎於是請罪祥淨以杜他日之禍士林有不識深慮至以請罪爲咎傳曰予亦初見上疏以爲國家大事輕率議之也予意亦欲推問其由但因求言而上陳故置之不用而已不必推治茲以命留政院耳觀其指咎之意專以歸罪於三大臣祥等非新進之人久處臺諫侍從之列而三勳旣死之後乘間而發其心術亦可知矣今聞臺諫所啓果是矣依所啓推之又卽召政府堂上而示之 《中宗實錄 卷22, 58面》

중종 11년 6월 4일(갑인)

○간원(諫院)이 오랫동안 일을 아뢰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간이 날마다 예궐(詣闕)하여 사람의 과실을 아뢰되 숨은 허물까지도 들추어서 작은 잘못도 버려두지 않아, 조정에 온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눈앞의 허물을 잘 가리느라고 외적인 체모만을 꾸미니, 현우(賢愚)가 더욱 혼동되고 사정(邪正)이 가려지지 않았다.

모든 논박(論駁)에 있어서 사람을 마치 깊은 못[淵]에 떨어뜨릴 듯이 하므로 상이 굳게 거절하여 듣지 않으면 또 혹 잠시 그쳤다가는 다시 다른 사람을 논박하였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마치 일과처럼 되니, 그때 사람들이 '모(某) 대신 모가 논박당한다.'고 기롱하였다. 대간의 말을 그때 사람들이 이처럼信服(信服)하지 않으므로, 상도 예사로 보아 넘겨서 시비가 관련한 일일지라도 으레 유난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간원이 소관(小官)의 작은 잘못과 조정의 작은 허물을 논계하지 않아서, 이미 대여섯 달이 지나도록 일을 아뢰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옳게 여겼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이행(李荇)이 대사간이 되고 김내문(金乃文)이 사간이 되고 류돈(柳墩)이 헌납이 된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행 등은 자못 정체(政體)를 알아서 간원의 임무는 헌부가 규거(糾擧)하는 책무를 맡은 것과는 달라서, 다만 곤직(袞職: 임금의 직무)의 꺾실(闕失)을 간쟁하고 대신의 과실을 논박하는 일을 맡을 뿐이고, 온갖 집사(執事)의 작은 과실을 번거롭게 아뢰는 것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매우 심한 자만을 가려서 논하니, 그 뒤의 간관들도 행 등의 의논을 따랐다.

○甲寅○諫院久不啓事先是臺諫日日詣闕啓人過失吹毛覓疵不舍小過朝無全人人皆救過目前修飾邊幅賢愚益混邪正莫辨凡論駁人如墜諸深淵 上牢拒不聽則亦或遽止而更駁他人相繼不絕有如日課時人譏之曰某人之代某人被駁臺諫之言不爲時人信服如此故 上亦視爲尋常雖是非判然之事例爲留難至是諫不論啓小官細過朝廷小疵已過五六朔不啓事人皆是之蓋自李荇爲大司諫金乃文爲司諫柳墩爲獻納時始之也荇等頗識政體以諫院之任非如憲府任糾擧之責只掌諫諍袞職之闕論駁大臣之失而已百執事小失不須煩啓於是擇論其太甚者此後諫官亦遵荇等議

《中宗實錄 卷25, 46面》

중종 11년 6월 19일(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의정부·이조·예조·성균관이 함께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합당한 인원으로 정수강(丁壽崗)·방유령(方有寧)·최숙생(崔淑生)·김세필(金世弼)·이행(李荇)·김안국(金安國)·김안로(金安老)·김굉(金磁)·신공제(申公濟)·윤탁(尹倬)·이위(李偉)·조방언(趙邦彦)·김양진(金楊震)·류부(柳溥)·허지(許遲)·문근(文瑾)·송흠(宋欽)·한효원(韓效元)·이언호(李彦浩)·공서린(孔瑞麟)·신봉전(申奉全)·정순봉(鄭順朋)·홍언필(洪彦弼)·소세양(蘇世讓)·이원화(李元和)·권수익(權受益)·이수(李壽)·이겸(李謙)·민수천(閔壽千)·한충(韓忠)·최호(崔灝)·황사우(黃士佑)·문서귀(文瑞龜)·표빙(表憑)·조광조(趙光祖)·이득전(李得全)·김진조(金振

祖)·박우(朴祐)·김환(金紉)·김구(金絀)·황효헌(黃孝獻)·안중손(安仲孫)·조유형(趙有亨)·배익신(裒益臣)·김유(金鏐)·서후(徐厚)·진식(陳植)·류돈(柳墩)·이순(李純)·이자(李籽)·박상(朴祥)·김정(金淨)을 간택(揀擇)하여 아뢰었다.¹¹⁷⁾ 사신(史臣)은 논한다.

권수익·이수·이겸·조유형·김환은 다 학식에 어두운데도 사유의 간택에 끼었으므로, 시의(時議)가 비방하였다.

○己巳臺諫啓前事不允○議政府吏曹禮曹成均館同議揀擇師儒可當人員丁壽崗方有寧崔淑生金世弼李荇金安國金安老金砮申公濟尹倬李偉趙邦彦金楊震柳溥許遲文瑾宋欽韓效元李彦浩孔瑞麟申奉全鄭順朋洪彦弼蘇世讓李元和權受益李壽李謙閔壽千韓忠崔灝黃士佑文瑞龜表憑趙光祖李得全金振祖朴祐金紉金絀黃孝獻安中孫趙有亨裒益臣金鏐徐厚陳植柳墩李純李籽朴祥金淨以啓史臣曰權受益李壽李謙趙有亨金紉皆暗於學識而亦與於師儒之選時議譏之
 《中宗實錄 卷25, 54面》

중종 11년 11월 7일(갑신)

○이조와 예조가 같이 의논하여, 홍언필·성세창·이언호(李彦浩)·소세량(蘇世良)·임추(任樞)·정사룡(鄭士龍)·류돈(柳墩)·신광한(申光漢)·박세희(朴世熹)·조광조·장옥(張玉)·황효헌(黃孝獻)·기준·정응(鄭膺)·이충건(李忠楗)으로 천문(天文)이습관(肄習官)을 삼았다.

○甲申○吏曹禮曹同議以洪彦弼成世昌李彦浩蘇世良任樞鄭士龍柳墩申光漢朴世熹趙光祖張玉黃孝獻奇遵鄭膺李忠楗爲天文肄習官
 《中宗實錄 卷26, 61面》

중종 12년 1월 20일(병신)

○한형운(韓亨允)을 형조 참판으로, 류부(柳溥)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이자(李籽)를 홍문관 전한으로, 최명창(崔命昌)을 응교(應教)로, 김정(金淨)을 부응교겸예문관응교로, 류돈(柳墩)을 부교리로, 장옥(張玉)을 사간원 정언으로, 허흡(許洽)을 수찬(修撰)으로, 정응(鄭膺)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丙申○以韓亨允爲刑曹叅判柳溥爲司憲府執義李籽爲弘文館典翰崔命昌爲應教金淨爲副應教兼藝文館應教柳墩爲副校理張玉爲司諫院正言許洽爲修撰鄭膺爲弘文館著作
 《中宗實錄 卷27, 30面》

117) 이행(李荇)은 류자(柳滋 : 父 柳光植)의 처부가 되고, 류부(柳溥)는 류순정(柳順汀)의 형인 류첨정(柳添汀)의 아들로 후에 좌의정이다. 한효원(韓孝元)은 후에 영의정에 오르며 류순정의 손자인 류사필(柳師弼 : 父 柳泓)의 처부이며 홍언필(洪彦弼)은 류홍(柳泓)의 사위인 홍섬(洪暹)의 아버지이며 류돈(柳墩)과 동방급제한 조광조는 홍섬의 스승으로 인맥이 이어진다.

중종 12년 1월 24일(경자)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류운(柳雲)·지평(持平) 채침(蔡忱)이 전의 일을 논계하고, 또 권희맹(權希孟)의 일을 아뢰니, 권희맹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시독관(侍讀官) 류돈(柳墩)이 아뢰기를,

“학유(學諭) 남추(南趨)는 부민(部民)이 고소한 것 때문에 죄가 장일백(杖一百)도일년(徒一年)에 이르렀는데, 추는 벼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는 어찌 짐짓 고소한 것이겠습니까? 특히 사리를 알지 못하여 망령되어 서계(書契)로 그들의 노여움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별 사실이 없는 일이니, 신의 생각에는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남추는 이미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 소위가 이리하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庚子○御朝講大司諫柳雲持平蔡忱論啓前事又權希孟如啓餘不允侍讀官柳墩曰學諭南趨以部民告訴罪至杖百徒年趨立朝未久不更事人也此豈故爲告訴特不知東西妄以書契冒犯其怒正是無實之事臣意當議於大臣而處之上曰予意不然南趨已登科第而所爲如此則不可不罪也

《中宗實錄 卷27, 32面》

중종 12년 3월 28일(갑술)

○교리(校理) 류돈(柳墩)을 평안도에, 조광조를 황해도에 보내어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였다.

○甲戌○遣校理柳墩于平安道趙光祖于黃海道問民疾苦

《中宗實錄 卷27, 42面》

중종 12년 4월 13일(무오)

○평안도 문폐어사(問弊御史) 류돈(柳墩)이 복명하고 아뢰기를,

“정주목사(定州牧使) 김우증(金友曾)·판관(判官) 이석손(李碩孫)은 구황(救荒)하는 데 힘쓰지 않아 백성의 원민(冤憫)이 많고, 또한 매를 인가에서 키우다가 죽게 되자 농우(農牛)를 내라 하여 빼앗았고, 다른 곳에서도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를 또한 꺼림없이 하였으며, 태천현감(泰川縣監) 이당(李瑒)은 전연 백성을 돌보지 않아 창고에 저장된 곡식을 굳게 닫고 구제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바랄 데가 없었습니다. 또 무오년(戊午年)에 야인(野人)들이 삭주(朔州)에 침범했을 때, 고을 사람 임자신(任自信)의 아내 불상(佛尙)이 적에게 사로잡히자 꾸짖기

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여 말이 매우 격렬하여, 적들이 굴복시킬 수 없으므로 드디어 죽었으니, 그 절의가 가상합니다.”

하였다.

○戊午○平安道問弊御史柳墩復命啓曰定州牧使金友曾判官李碩孫不勤救荒民多冤憫且養鷹於民而致死徵奪農牛而他所誅求亦無厭焉泰川縣監李瑯專不恤民倉儲之穀牢閉不賑民無所仰賴且戊午年野人寇朔州州人任自信妻佛尙被擄罵賊曰寧死不可從汝而去語甚激烈賊不能屈遂殺之其節義可嘉

《中宗實錄 卷27, 59面》

중종 12년 5월 15일(기축)

○윤희평(尹熙平)을 한성부 우윤으로, 이자화(李自華)를 대사헌으로, 이언호(李彦浩)를 대사간으로, 이행(李荇)을 부제학으로, 최세절(崔世節)을 집의로, 최명창(崔命昌)을 사간으로, 정순봉(鄭順朋)·소세양(蘇世讓)을 장령으로, 이우(李佑)·류돈(柳墩)을 지평(持平)으로, 표빙(表憑)을 헌납으로, 윤자임(尹自任)을 홍문관 부교리로, 허위(許渭)·김섬(金銛)을 정언으로 삼았다.

○己丑○以尹熙平爲漢城府右尹李自華爲大司憲李彦浩爲大司諫李荇爲副提學崔世節爲執義崔命昌爲司諫鄭順朋蘇世讓爲掌令李佑柳墩爲持平表憑爲獻納尹自任爲弘文館副校理許渭金銛爲正言

《中宗實錄 卷28, 5面》

중종 12년 6월 1일(을사)

○집의(執義) 류관(柳灌)·사간(司諫) 최명창(崔命昌)·장령 정순봉(鄭順朋) 소세양(蘇世讓)·지평(持平) 류돈(柳墩)·헌납 민수원(閔壽元)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오늘 일식을 친구하려 하시다가 구름이 끼어서 대신에게 수의하게 하시었다 하니, 이는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식은 천변(天變) 가운데 큰 것이라 임금이 친구하여야 하거니와, 다만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뿐 날씨가 어떤가 하는 것은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뢴 것이 마땅하니, 내 생각에도 일식은 천변 가운데 큰 것이라 친구하고자 한다.” 하였다.

六月乙巳朔日○執義柳灌司諫崔命昌掌令鄭順朋蘇世讓持平柳墩獻納閔壽元等啓曰臣等聞今日將親救日食而以陰雲收議于大臣此不當議也日食天變之大者人君所當親救但存敬畏之心而已專不關於陰晴也傳曰臺諫所啓當矣予意亦慮日食天變之大者故欲親救耳

《中宗實錄 卷28, 10面》

중종 12년 6월 24일(무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류돈(柳墩)은, 지난날 경기도사(京畿都事)로 있을 때에 김세필(金世弼)의 정적(政績)을 사실과 다르게 계문(啓問)한 일 때문에 본부의 추문(推問)을 받고 있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戊辰臺諫啓前事憲府啓曰持平柳墩以前日京畿都事時金世弼政績失實啓聞事被本府之推請適依允餘皆不允 《中宗實錄 卷28, 20面》

중종 12년 7월 22일(병신)

○이날 밤에 육조(六曹)의 낭관(郎官)들이 일제히 가서 그 당상(堂上) 등에게 말하기를,

“형세가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당상 가운데에는 혹 그렇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조 판서 남곤(南袞)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사람의 계교(計較)는 더디 할 일이 있고 속히 할 일이 있는 것이요. 대간(臺諫)은 그것이 곧 직임(職任)이기 때문에 논한 것이요, 홍문관(弘文館) 역시 시종(侍從)이기 때문에 논한 것이며, 예문관(藝文館)도 시종이라 하여 논한 것이요, 대신은 상의 하문(下問)을 받들어 아뢴 것이요. 그러나 우리도 또한 아뢰어야 할 것인가는 나는 모르겠소.”

하니, 다른 당상은 이를 모두 옳게 여기었고, 심지어는,

“낭관이 어찌 당상을 가르칠 수가 있는 자인가.”

하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것은 이조 좌랑 박세희(朴世熹)·병조 좌랑 류용근(柳庸謹)·호조 좌랑 김식(金湜)·공조 좌랑 박훈(朴薰) 등이 발론(發論)을 하였는데, 병조 좌랑 류돈(柳墩)은 이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丙申○是夜六曹郎官齊行語其堂上等曰勢已至此豈可安坐堂上或有肯許之色者吏曹判書南袞忽作聲曰人之計較有遲有速臺諫以其任故論之弘文館亦以侍從而論之藝文館亦以爲侍從而論之大臣則承 上問以啓之吾儕亦可啓之吾未知也他堂上皆以爲是至有言郎官豈可教堂上者又多有怒之者此吏曹佐郎朴世熹丁玉亨兵曹佐郎柳庸謹戶曹佐郎金湜工曹佐郎朴薰等主此議兵曹佐郎柳墩則有不平之心 《中宗實錄 卷28, 42面》

중종 12년 9월 23일(병신)

검상(檢詳) 류돈(柳墩)이, 무격의 세포(稅布)와 신당의 퇴미(退米)를 거두지 말고

동서 활인서에 붙이지 말게 하는 등의 일을 수의(收議)하여 아뢰었다. 정광필(鄭光弼)·최숙생(崔淑生) 등의 의논은,

“이는 양법(良法)이 아니기는 하나, 조종(祖宗)께서 세를 거두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역시 금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인데, 이제 만약에 그 음사(淫祀)를 금단하지 못하고 그 세만을 거두지 말게 한다면, 음사가 자약(自若)하고 그 자생(資生)은 점점 더 넉넉해질 것이니 조종의 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수령(守令)은 과연 본의를 모르고 반드시 그 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참 무격이 아니라도 거짓으로 무안(巫案)에 붙여서 그 세를 거두니, 이런 것은 그치게 해야 합니다. 음사를 매우 금단하여 근본을 아주 끊어 버린 뒤에 세를 거둘 무격이 없어진다면 세를 거두는 법을 비로소 폐지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에 미리 폐지한다면 그 생업을 돕는 것이 될 따름입니다.”

하였고, 신용개(申用漑)·김전(金詮)·이계맹(李繼孟) 등의 의논은,

“동서 활인서에 붙이지 말고, 세포와 신당의 퇴미를 거두지 말게 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하였다.

○丙申檢詳柳墩以勿收巫覡稅布神堂退米及勿屬東西活人署等事收議以啓鄭光弼崔淑生等議此雖非良法然 祖宗非爲徵稅也亦是禁抑之一法也今若不能禁斷其淫祀而只勿收其稅則淫祀自若而其資生則漸益饒矣因 祖宗之法似當矣且守令則果不知本意以爲必征其稅雖非眞巫而亦冒屬巫案以收其稅如此者可已也若痛斷淫祀永絕根本之後無巫可稅則收稅之法始可罷也若先罷之則是助其生業而已也申用漑金詮李繼孟等議勿屬東西活人署勿收稅布及神堂退米皆可也 《中宗實錄 卷29, 61面》

중종 12년 12월 15일(병진)

검상(檢詳) 류돈(柳墩)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고형산 등이 관비를 사첩으로 삼은 일은 전에 이미 소방(疏放)하였으니,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헌부에 말하라.”

하였다.

○경연관(經筵官)·예문관(藝文館)·대간(臺諫)·주서(注書) 등에게 이엄(耳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검상 류돈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밀양 사람이 아버를 죽인 일은 천지간에 있어 강상의 큰 변입니다. 신등이 일찍

이 그 일을 들으니, 향당과 형제가 그것을 알고도 그 재뢰(財賂)를 탐하여 관에
고하려다가 중지했다고 하니, 이들도 역시 궁흉 극악(窮兇極惡)의 무리입니다.
그 중에도 형제가 더욱 심하니, 국법으로 처리함이 지당합니다.

또 평안도는 관찰사와 절도사를 이미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을 뽑아서 각별
히 방수(防戍)하게 했으니, 조방장(助防將)을 보내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 도
는 흉황(凶荒)이 매우 심하니 완급을 참작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달자(獐子) 등
이 고산리(高山里)에 나오면 탕참에서 흰 옷을 입고 싸움을 도운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은근히 타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사(兵事)는 일찍이 도모해야 하니,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丙申檢詳柳墩以三公意啓曰高荊山等官物率畜事前既疏放當棄之傳曰其言于憲府○命
賜經筵官藝文館臺諫注書等耳掩○檢詳柳墩以三公意啓曰密陽人弑父事此天地間綱常大
變臣等曾聞其事則鄉黨與兄弟知之貪其財賂欲告官而中止是亦窮兇極惡之徒其中兄弟尤
甚以示國典至當且平安道觀察使節度使已抄有武才守令各別防戍則今雖不遣助防將可也
此道凶荒太甚當斟酌緩急而措置也獐子等出來高山里則以湯站白衣助戰之人非我國之意
隱然開諭使彼人洞知其由可也兵事當早圖令兵曹磨鍊爲當傳曰知道《中宗實錄 卷31, 5面》

중종 13년 2월 7일(병자)

검상(檢詳) 류돈(柳墩)이 정승의 뜻으로 아뢰기를,

“공조 정랑 성희중은 그 인물이 육조(六曹)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 체
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대간이 그를 논란하였고 오늘 또 대신이 말하니 속히 체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丙子檢詳柳墩以政丞意啓曰工曹正郎成希仲人物不堪六曹之職任者請適之 傳曰昨日
臺諫論之今又大臣言之可速遞也 《中宗實錄 卷32, 4面》

중종 13년 3월 20일(기미)

검상(檢詳) 류돈(柳墩)이 정부(政府)의 뜻으로 아뢰기를,

“포폄(褒貶)에 중(中)을 받은 인원을 옮기는 일에 대한 것으로 말하면 다른 벼슬
은 다음 포폄 전에는 보다 나은 벼슬에 서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전(大
典)』에 이르기를 ‘사관(四館)의 관원으로 중을 차지한 자는 그 도목(都目)에 서용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도목에서는 승서(陞叙)하여 옮길 수 없으나 좌천이나 파면의 정사(政事)는 할 수 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류담년(柳聃年)은 변방 일에 환한 사람이니, 유악(帷幄)에 머물러 두고 사방을 관할하게 해야 합니다. 북방의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이 더욱 중하니 체직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己未檢詳柳墩將政府意啓曰褒貶居中人員遷轉事他官則後褒貶前勿叙右職法也大典又云四館官員居中者其都目勿叙雖於都目未得陞叙轉動政則可爲也咸鏡觀察使柳聃年洞知邊事當留帷幄而決勝四方也北方雖重在內尤重請達其職傳曰可 《中宗實錄 卷32, 35面》

중종 13년 3월 23일(임술)

쓸모없는 인원을 도태시키자는 헌부(憲府)의 논의에 대하여 검상(檢詳) 류돈(柳墩)이 두 정승의 뜻으로 아뢰기를,

“직질(職秩)이 낮은 사람들은 그 인물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또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진퇴(進退)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한꺼번에 도태시키기에 대신할 적합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저 백집사(百執事)를 고과하여 진퇴시키는 것은 이조(吏曹)이니, 본조가 서서히 그들의 근태(勤怠)를 살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내보내고 그 대신을 얻게 되면, 자연 인물도 얻을 수 있고 일도 모두 잘 될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壬戌以憲府所論冗員汰去事檢詳柳墩將兩相意啓曰職卑之人不可的知其人物之何如又不可以人言而進退之且一時沙汰則其代又不可盡得其人大抵考功百執事而進退之者吏曹也本曹當徐考其勤慢而有不堪其任者去之而得其代則自然人物得而事無不舉矣傳曰知道 《中宗實錄 卷32, 36面》

중종 13년 11월 6일(임인)

정원(政院)이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할 만한 사람 26인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그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다.

“강독(講讀)하는 사람은 하루에 2~3장을 보되, 만약 쉽게 이해되는 곳은 장수에 구애되지 않으며 순말(旬末)에 이르러 홍문관에 모여서 서로 질문하여 변정(辨正)하고, 월말에 이르러 홍문관의 장무관(掌務官)이 그달에 질정한 장수를 써서 아뢰고 또 사철 끝달에 강독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입계(入啓)해서 4~5인을 지정하여 읽은 곳을 강론하게 하되, 강론하는 날은 임시에 취품(就稟)한다. 또 홍문관의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 및 김안국·이자·김정·조광조 등이

질문하고 변정하는 날에 매양 와서 논란하며, 또 이 선발에 끼지 못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홍문관에 들어가는 자는 또한 강독에 참여한다.”

그 선발에 참여한 사람은 공서린(孔瑞麟)·김정국(金正國)·신광한(申光漢)·김구(金絀)·민수원(閔壽元)·기준(奇遵)·정응(鄭鷹)·권운(權雲)·구수복(具壽福)·윤형(尹衡)·이인(李認)·정순봉(鄭順朋)·민수천(閔壽千)·류돈(柳墩)·한충(韓忠)·윤자임(尹自任)·최산두(崔山斗)·정옥형(丁玉亨)·박세희(朴世熹)·황효헌(黃孝獻)·이약빙(李若氷)·장옥(張玉)·이충건(李忠健)·이희민(李希閔)·조언경(曹彦卿)·김식(金湜)이었다.

○壬寅政院選啓可講性理大全二十六員其節目則講讀人每一日覽二三張若易解處則不拘張限至旬末會于弘文館質問辨正至月季弘文館掌務官本朔三旬所質正張數書啓且每於季月書講讀人員之名而入啓四五人受點所讀處講論講論之日則臨時取稟且弘文館大提學提學及金安國李紆金淨趙光祖等於質辨之日每來論難且雖不與於此選者今後入弘文館者亦叅於講讀其與選者孔瑞麟金正國申光漢金絀閔壽元奇遵鄭鷹權雲具壽福尹衡李認鄭順朋閔壽千柳墩韓忠尹自任崔山斗丁玉亨朴世熹黃孝獻李若氷張玉李忠健李希閔曹彦卿金湜也
《中宗實錄 卷34, 64面》

중종 13년 11월 19일(을묘)

○류인숙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정국을 황해도 관찰사로, 박영(朴英)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최명창을 동부승지로, 김세준(金世準)을 집의로, 민수원을 홍문관 전한으로, 류돈(柳墩)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특명으로 올려 제수하였다. 박세희(朴世熹)·문관(文瓘)을 장령으로, 이청을 응교로, 송호지(宋好智)를 지평으로, 한윤창(韓允昌)을 사간원 헌납으로, 정응(鄭鷹)을 교리로, 손수(孫洙)를 정언으로, 윤은보(尹殷輔)·김정(金淨)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김희수(金希壽)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乙卯○以柳仁淑爲司憲府大司憲金正國爲黃海道觀察使朴英爲承政院右副承旨崔命昌爲同副承旨金世準爲執義閔壽元爲弘文館典翰柳墩爲議政府舍人特加授之朴世熹文瓘爲掌令李清爲應教宋好智爲持平韓允昌爲司諫院獻納鄭鷹爲校理孫洙爲正言尹殷輔金淨同知中樞府事金希壽僉知中樞府事
《中宗實錄 卷34, 71面》

중종 14년 3월 5일(무술)

○민수천(閔壽千)을 사헌부 집의로, 김유(金鏐)를 사간원 사간으로, 김인손(金麟孫)·류돈(柳墩)을 장령(掌令)으로, 임권(任權)·최산두(崔山斗)를 지평으로, 정응린(鄭應麟)을 헌납으로, 이인(李認)·유형(兪炯)을 정언으로 삼았다.

○戊戌○以閔壽千爲司憲府執義金鏐爲司諫院司諫金麟孫柳墩爲掌令任權崔山斗爲持平鄭應麟爲獻納李認兪炯爲正言 《中宗實錄 卷35, 46面》

중종 14년 3월 22일(을묘)

○김세필(金世弼)로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겸하게 하고, 류돈(柳墩)을 사헌부 장령으로, 양팽손(梁彭孫)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乙卯○以金世弼兼掌隸院判決事柳墩爲司憲府掌令梁彭孫爲持平 《中宗實錄 卷35, 52面》

중종 14년 4월 5일(무진)

○대간이 여악 혁파하기를 청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신윤형을 초배(超拜)한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 장령(掌令) 류돈(柳墩)이 아침 경연에서 윤형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매우 대간의 체통을 잃었습니다. 체직하소서. 안서황(安瑞鳳)은 전에 화량 첨사(花梁僉使)가 되었을 적에 탐오(貪汚)한 짓을 하였는데 지금 첨지(僉知)가 되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류돈과 윤형은 체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戊辰○臺諫請罷女樂諫院啓申允衡不宜超拜掌令柳墩朝於經筵以允衡爲可人殊失臺諫之體請遶安瑞鳳前爲花梁僉使貪汚今爲僉知請罷 命遶柳墩及允衡餘皆不允

《中宗實錄 卷35, 57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증참판공(贈參判公) 류 균(柳 均)

세종 초~예종 년간

호는 백암(白巖)이며 진천군 류자해(柳子偕)와 청천부원군 심온(沈溫)의 따님인 청송심씨(靑松沈氏) 사이에 4남 6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문종 즉위년(1450) 무과장원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단종 3년(1455) 좌익원종 2등공신 세조 7년(1461) 정주목사(定州牧使) 행 호군(行護軍) 위장(衛將) 세조 13년(1467) 행 상호군(行上護軍)으로 이시애(李施愛)난 진압에 참여했다.

감사 한혜(韓惠：父 韓尙敬)¹¹⁸의 따님인 청주한씨 사이에 선전관 인습(仁濕)과

118) 한혜(韓惠：父 韓尙敬, 祖 韓脩)：가문과의 혼맥. 아버지 영의정 한상경의 처부 오준량(吳俊良) 아버지 오찬(吳瓚：海州人)은 류구(柳均：류균의 고조부)의 처 李氏의 외조부이며 할아버지 한수(韓脩)는 류구의 아버지 류혜방의 동서되는 목은 이색과 교유가 깊었으며 류혜방의 동생 류혜손(柳惠孫)과 이색은 사돈관계이다. 류혜방의 장인 권중달(權仲達：父 權漢功)의 장조카인 권방위(權邦緯：父 權仲和)가 한수의 사위이며 한상경과 이색의 아들 이종학, 이종선과

무장현감 의습(義濕)을 두었으며 두 사위는 고성이씨(固城李氏)로 군사(郡事) 이준(李準 : 父 李埏, 祖 李原)과 행주인 진사 기자환(奇自煥 : 父 奇賁, 祖 奇仲修)이다.

문종 즉위년 10월 12일(임오)

사은사(謝恩使) 이견기(李堅基) · 조관(趙貫)이 중국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문과(文科) · 무과(武科)를 방방(放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하여, 문과(文科)에 권남(權擘) 등 33인에게, 무과(武科)에 류균(柳均) 등 28인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고, 권남을 사헌 감찰(司憲監察)로 임명하고, 류균을 사복 판관(司僕判官)으로 삼았다.

○壬午謝恩使李堅基趙貫回自京師○放文武科榜賜文科權擘等三十三人武科柳均等二十八人及第拜擘爲司憲監察均爲司僕判官 《文宗實錄 卷第4, 24面》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판관(判官) 류균(柳均)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等)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判官柳均錄原從功臣二等 《世祖實錄 卷第2, 55面》

세조 7년 11월 21일(정사)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 김질(金質) 119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18일에 야인(野人) 7백여 명의 군사가 창성진(昌城鎭)에 왔으므로 신이 즉

함께 류겸(柳謙 : 父 柳珣)과 교유관계가 깊었음이 목은집(한국문집총간 3권 목은고 463P)에 보이며 한수의 아들로 한혜의 증부인 한상질(韓尙質)과 또 그 처남매제 관계인 이작(李作)은 류겸과 우왕 6년(1380) 동방급제한 관계이다. 한혜는 태종 정유년(1417) 문과에 장원 급제 후 예조참판을 역임한 문신이다. 처부 이수(李穗 : 父 李仁敏)의 증부(仲父)인 성주이씨 이인임(李仁任)의 사위가 권집경(權執經 : 父 權嗣宗, 祖 權仲達)인데 류혜방의 생질로서 류규와는 외사촌 관계가 된다. 이수의 큰 아들 이견기(李堅基)의 처부가 류겸(柳謙 : 父 柳珣)이며 둘째 아들 이계기(李啓基)의 사위가 한혜의 계자(季子) 한계순(韓繼純)이며 한계순의 동서 신승명(愼承命 : 父 愼詮)은 류균의 동서인 신선유(愼先兪 : 父 愼幾)와 중형제간이며, 한계미(韓繼美)의 처는 세조의 정희왕후 윤씨의 언니로서 류균의 할아버지 류이(柳怡 : 父 柳謙)의 처남 윤번(尹璠)의 딸로서 류균의 아버지 류자해와는 외사촌간이 된다. 고려 공민왕 대 이후 조선 왕조 개국 이후 세조 때까지 청주한씨와 진주류씨 가문의 혼맥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왔으며 여말 선 초의 사회상과 정치사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119) 김질(金質) : 1422(세종 4)~1478(성종 9). 조선의 공신. 자는 가안(可安). 호는 쌍곡(雙谷).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안동(安東). 1450년(세종 32)에 문과 급제.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로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문종(文宗)의 총애를 받았으며 후사를 부탁받았으나 세조가 찬위하자 1456년(세조 2)에 사육신(死六臣)의 모반을 고발하여 공신이 되었으며 우의정을 역임하였고, 성종 즉위 후에는 순성명량경제 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에 피봉되었다. [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시 발병부(發兵符)를 나누어 보냈는데, 중화 군사(中和郡事) 김혁(金革)·개천 군사(价川郡事) 윤복흥(尹復興)·희천 군사(熙川郡事) 장서(張瑞)·덕천 군사(德川郡事) 우원로(禹元老) 등은 경내(境內) 및 가까운 여러 고을의 날랜 기병(騎兵)을 급히 불러 적유령(狄踰嶺)을 넘어서 강계진(江界鎭)에 이르러 추과(楸坡)·만포(滿浦)·상토(上土) 등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영변 판관(寧邊判官) 우효신(禹孝新)·정주 목사(定州牧使) 류균(柳均)·자산 군사(慈山郡事) 박자영(朴子暎)·순천 군사(順川郡事) 이척약(李惕若)·삼화 현령(三和縣令) 박탄(朴坦)·용강 현령(龍江縣令) 이승연(李承衍) 등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장령(牛場嶺)을 넘어서 군사를 이산군(理山郡)에 모이게 하여 위원(渭源)·아이(阿耳)·벽동(碧潼)·벽단(碧團) 등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으며, 영유 현령(永柔縣令) 권종손(權宗孫)·숙천 부사(肅川府使) 김일용(金日容)·곽산 군사(郭山郡事) 민효간(閔孝幹) 등은 각각 경내(境內) 및 가까운 여러 고을의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신 등과 함께 모여, 바로 창성진(昌城鎭)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저 적들이 성을 포위한 지가 지금 3일이 되었는데, 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위를 풀었으므로 당연히 즉시 쫓아가야 하겠으나, 지금 비와 눈이 와서 적이 우리 군대의 종적(蹤迹)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듯하므로, 고군(孤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도절제사(都節制使)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형세를 보아서 추포(追捕)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丁巳○平安道都觀察使金碩馳啓本月十八日野人七百餘兵來昌城鎭臣卽分送發兵符以中和郡事金革价川郡事尹復興熙川郡事張瑞德川郡事禹元老等急招境內及旁近諸邑驍勇騎兵踰狄踰嶺到江界鎭分守楸坡滿浦上土等處以寧邊判官禹孝新定州牧使柳均慈山郡事朴子暎順川郡事李惕若三和縣令朴坦龍江縣令李承衍等領兵踰牛場嶺會兵理山郡分守渭源阿耳碧潼碧團等處以永柔縣令權宗孫肅川府使金日容郭山郡事閔孝幹等各領境內及旁近諸邑騎兵與臣等會直抵昌城鎭但彼賊圍城于今三日及臣之到應已解圍當卽窮追然今雨雪恐賊易尋我軍蹤迹不得孤軍深入欲與都節制使同議觀勢追捕 《世祖實錄 卷第26, 18面》

세조 10년 10월 2일(임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풍양(豐壤)의 강무(講武)에 거둥하니, 왕세자(王世子)가 임영 대군(臨瀛大君) 구(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염(琰)·아중(兒宗)·진종(陣宗)·사중(射宗)·원종(願宗 : 원종(願宗)은 자원하여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는 자이다.)·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質)·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중추원사(中樞院使) 윤사흔(尹士昕)·연산군(延山君) 김처의(金處義)·행상호군(行上護軍) 김한(金澣)·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국광(金國光)·신

천군(信川君) 강곤(康袞) · 행상호군(行上護軍) 구문신(具文信) · 한성부윤(漢城府尹) 선형(宣炯) · 행호군(行護軍) 김처례(金處禮) · 복성군(福城君) 권언(權軀)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설정신(薛丁新) · 행호군(行護軍) 조방림(趙邦霖) · 병조참판(兵曹參判) 송문림(宋文琳) · 예조 참판(禮曹參判) 임원제(任元濟) · 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 ·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 · 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 행호군(行護軍) 이갑충(李甲忠) · 이백상(李伯常) · 전동생(田桐生) · 류균(柳均) · 최사로(崔士老),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수령(金壽寧) · 호조 참의(戶曹參議) 김필(金瑋),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신후갑(愼後甲) · 김진지(金震智)와 승지(承旨) 등이 어가(御駕)를 따르니,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병조 참의(兵曹參議) 박중선(朴仲善)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진례정(進禮正) 형(衡) · 금산정(金山正) 연(衍) · 춘양정(春陽正) 내(徠), 행호군(行護軍) 정승중(鄭承重) · 어유소(魚有沼) · 이의견(李義堅) · 이중영(李仲英), 사복 주부(司僕主簿) 조간(曹幹) · 승문 부교리(承文副校理) 양진손(梁震孫) · 사직(司直) 박자곤(朴自峴) 등을 위장(衛將)으로 삼아 2상(廂)에 나누어 붙이고, 평성정(淸城正) 위(偉)를 사자위장(獅子衛將)으로 삼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양성지(梁誠之)를 사대장(射隊將)으로 삼고, 거평정(居平正) 복(復)을 공현위장(控弦衛將)으로 삼고, 수성정(壽城正) 창(昌)을 만강대장(彎強隊將)으로 삼고, 선전관(宣傳官) 이평(李枏)을 장용대장(壯勇隊將)으로 삼고, 사복 소윤(司僕少尹) 이덕량(李德良)을 파적위장(破敵衛將)으로 삼고, 거제정(巨濟正) 철(徹)을 잡류장(雜類將) 겸(兼) 대장(大將)으로 삼고, 겸사복(兼司僕) 최적(崔適)을 착호위장(捉虎衛將)으로 삼고, 겸사복(兼司僕) 이철정(李鐵丁)을 재백정장(才白丁將)으로 삼고, 행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민발(閔發)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삼았다. 어가(御駕)가 청량동(淸涼洞) 냇가에 이르니,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강효문(康孝文)이 치서(馳書)하여 이르기를,

“송골매[松鵑]를 잡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내시부사(內侍府事) 정존(鄭存)을 보내어 송골매를 가지고 바로 평안도(平安道)로 가서 정조사(正朝使)에게 부쳐서 진헌(進獻)하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풍양궁(豐壤宮)에 이르러, 좌상(左廂) · 우상(右廂)이 성산(城山)과 백수현(白水峴)을 몰이하였다. 궁전 북쪽의 사장(射場)에 이르러, 임금이 궁전 북쪽의 높은 언덕에 나아가니, 위내(圍內)에 호랑이가 있어서 사람 2명을 상(傷)하였으므로,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藥)을 쓰게 하고 관(官)에서 쌀과 술을 주게 하였다. 일모(日暮)에 진(陣)을 파(罷)하고 재추(宰樞)에게 주육(酒肉)을 내려 주었다.

○壬午 上與中宮幸豐壤講武王世子與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兒宗陣宗射宗願宗願宗自願

隨駕者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仁山君洪允成刑曹判書金碩兵曹判書尹子雲中樞院使尹士昕延山君金處義行上護軍金澣戶曹判書金國光信川君康哀行上護軍具文信漢城府尹宣炯行護軍金處禮福城君權軀同知中樞院事薛丁新行護軍趙邦霖兵曹參判宋文琳禮曹參判任元濟永嘉君權擎巴山君趙得琳唐城君洪純老行護軍李甲忠李伯常田桐生柳均崔士老禮曹參議金壽寧戶曹參議金璋僉知中樞院事慎後甲金震智及承旨等隨 駕以青城尉沈安義爲左廂大將兵曹參議朴仲善爲右廂大將進禮正衡金山正衍春陽正徠行護軍鄭承重魚有沼李義堅李仲英司僕主簿曹幹承文副校理梁震孫司直朴自崐等爲衛將分屬二廂以枰城正律爲獅子衛將吏曹判書梁誠之爲射隊將居平正復爲控弦衛將壽城正昌爲彎強隊將宣傳官李枰爲壯勇隊將司僕少尹李德良爲破敵衛將巨濟正徹爲雜類將兼大將兼司僕崔適爲捉虎衛將兼司僕李鐵丁爲才白丁將行僉知中樞院事閔發爲司僕將 駕至清涼洞川邊咸吉道觀察使康孝文馳書啓捕得松鶻 上卽遣內侍府事鄭存賫松鶻直向平安道付正朝使進獻 駕至豐壤宮左右廂驅城山及白永峴至宮北射場 御宮北高丘圍內有虎傷二人遣內醫救藥官給米酒日暮罷陣 賜宰樞酒肉

《世祖實錄 卷第34, 30面》

세조 12년 11월 28일(병신)

○임금이 한계미(韓繼美)·황치신(黃致身)·허형손(許亨孫)·임득정(林得楨)·이형손(李亨孫)·류균(柳均)·한종손(韓終孫)·홍순로(洪純老)·한서귀(韓瑞龜)·이윤인(李尹仁)·장진충(張進忠)·배맹달(裴孟達)·이맹손(李孟孫)·류흥무(柳興茂)·정인운(鄭仁耘)·권종손(權從孫)·설성림(薛成林)·왕종신(王宗信)·권기(權期)와 여러 군사들을 불러서 친히 지휘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원(內苑)에서 습진(習陣)하도록 하였다. 위장(衛將) 류균(柳均)과 이형손(李亨孫) 등이 진(陣)을 치다가 군율(軍律)을 여기므로 파진(罷陣)하도록 명하고 사후(射侯)하도록 하니, 최적(崔適)이 맞힌 것이 가장 많았으므로 즉시 말 1필을 하사(下賜)하였다. 해가 저물자 술자리를 베풀어 종친(宗親)과 재상(宰相)과 더불어 한껏 즐겼다.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게 하고, 또 한명회에게 말 1필을 하사(下賜)하였다.

○丙辰○上召韓繼美黃致身許亨孫林得楨李亨孫柳均韓終孫洪純老韓瑞龜李尹仁張進忠裴孟達李孟孫柳興茂鄭仁耘權從孫薛成林王宗信權期及諸軍士等親授節度令習陣於內苑衛將均亨孫等結陣失律命罷陣使射侯崔適最中多卽賜馬一匹日暮設酌與宗宰極歡命世子行酒又賜明澮馬一匹

《世祖實錄 卷第40, 21面》

세조 12년 12월 26일(계해)

임금이 화위당(華韞堂)에 나아가니,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좌의정 심희(沈澮)¹²⁰·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

수신(黃守身)·우찬성 조석문(曹錫文)과 상정소(詳定所)의 당상관(堂上官)·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위장(衛將) 허형손(許亨孫)·권경(權擎)·어득해(魚得海)·임득정(林得楨)·오자경(吳子慶)·이윤인(李尹仁)·강곤(康袞), 제천 부윤(堤川副尹) 온(溫)·류균(柳均), 평성 도정(淸城都正) 위(律)·수성 도정(壽城都正) 창(昌)·금산 도정(金山都正) 연(衍)을 부르고, 또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 각 10명씩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사후(射侯)하도록 하였다.

○癸亥 御華韡堂高靈君申叔舟領議政韓明澮左議政沈澮綾城君具致寬右議政黃守身右贊成曹錫文及詳定所堂上承旨等入侍 召衛將許亨孫權擎魚得海林得楨吳子慶李尹仁康袞堤川副尹溫柳均淸城都正律壽城都正昌金山都正衍又 召內禁衛兼司僕別侍衛甲士能射者各十人令射侯 《世祖實錄 卷第40, 26面》

세조 13년 4월 1일(병신)

임금이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보(補)·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심희(沈澮)·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좌찬성(左贊成) 최항(崔恒)·좌참찬(左參贊) 윤자운(尹子雲)·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김수온(金守溫)·병조 판서(兵曹判書)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禮曹判書) 강희맹(姜希孟)과 승지(承旨)·종친(宗親)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송현정(松峴正) 견신(堅信)·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숙창(朴叔暢)·위장(衛將) 류균(柳均)에게 <병장설(兵將說)>을 강(講)하게 하고, 또 성균 사성(成均司成) 임수겸(林守謙)에게 유생(儒生)과 의학(醫學)·역학(譯學)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모아서 강(講)하게 하였다.

夏四月丙子朔 上御交泰殿召孝寧大君補蓬原君鄭昌孫左議政沈澮延城君朴元亨左贊成

120) 심희(沈澮) : 1418(태조 18)~1493(성종 24). 조선의 정치가. 자는 청보(淸甫), 시호는 공숙(恭肅). 본관은 청송(靑松). 온(溫)의 아들. 세종 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동생. 아버지 온이 태종에게 사사(賜死)되자 등용되지 못하다가 문종이 즉위한 후 돈녕부 주부(敦寧府主簿)에 등용. 부지돈녕 부사(副知敦寧府事)를 거쳐 1454년(단종 2) 첨지중추 원사(僉知中樞院事), 동지돈녕 부사(同知敦寧府事)를 역임. 1457년(세조 3) 지중추 원사(知中樞院事), 공조 판서를 지냈다. 1461년 영중추 원사(領中樞院事), 형조 판서. 1463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1466년 좌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영의정이 되고 1468년(예종 즉위) 남이(南怡)의 모반 사건이 처리된 후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으로 청송군(靑松君)에 봉해졌으며,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으로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진봉된 후 사직했다. 1476년 좌의정에 복직. 1486년 나이가 많아 사퇴하려 했으나 불윤(不允), 1491년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앞서 윤비의 폐출(廢黜)에 동조했다는 죄로 연산군에 의해 관직이 추탈(追奪)되고 부관참시(剖棺斬屍) 후에 신원(伸冤)되었다. [문헌]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崔恒左叅贊尹子雲仁山君洪允成中樞府判事金守溫兵曹判書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慎禮曹判書姜希孟及承旨宗親等設酌松峴正堅信承文院正字朴叔暢衛將柳均兵將說又講成均司成林守謙儒生醫譯學人所業會

《世祖實錄 卷第42, 1面》

세조 13년 5월 22일(병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구치관(具致寬)과 우의정 홍윤성(洪允成)·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강순(康純)·행상호군(行上護軍) 어유소(魚有沼)·행첨지사(行僉知事) 허형손(許亨孫)·행호군(行護軍) 이형손(李亨孫)·행상호군(行上護軍) 류균(柳均)·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 등을 불러 밤새도록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시애가 반란을 꾀한 것이 어찌 감히 군사를 들어 서울로 향하겠습니까? 정녕 코 함길도를 몰래 점거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도는 요새[關塞]가 많아서, 반적(反賊)이 만약 먼저 점거하게 되면, 대병(大兵)이 들어가기 어려우니, 5진(鎭)에 은밀히 유지하여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를 알게 하면, 이시애는 쉽게 제어될 것입니다.” 하였다.

○丙戌 御思政殿 召具致寬及右議政洪允成中樞府知事康純行上護軍魚有沼行僉知事許亨孫行護軍李亨孫行上護軍柳均巴山君趙得琳等竟夜議之僉曰施愛謀亂豈敢稱兵向京正欲竊據咸吉道耳此道多關塞賊若先據則大兵難入密諭五鎭使知逆順施愛易制矣

《世祖實錄 卷第42, 19面》

세조 13년 7월 11일(갑술)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이보다 앞서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한계미(韓繼美)¹²¹에게 유지(諭示)하여 군사 5백 명을 보내어 진응사(進鷹使) 성윤문(成允文)을 맞이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한계미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군사가 함길도(咸吉道)에 나가고, 머물러 있는 병사의 숫자가 적으니, 청컨대, 그 숫자를 줄여서 보내게 하소서.”

121) 한계미(韓繼美) : 1421(세종 3)~1471(성종 2). 조선의 문신. 자는 공보(公甫). 시호는 문양(文襄). 본관은 청주(淸州). 계획(繼禧), 계순(繼純)의 형. 부인은 정희왕후(貞熹王后 : 世祖妃)의 언니. 문벌(門閥)로서 벼슬에 나아가 내외직을 거쳤고, 1452년(문종 2) 사은사(謝恩使) 수양 대군(首陽大君)을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등 여러 내직을 역임하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진 뒤 이조판서를 지냈다. 1467년(세조 13) 평안도 병마사(兵馬使)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웠다. 그후 좌찬성(左贊成), 이조 판서를 지내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세조의 동서로서 좌익(佐翼)·적개(敵愾)·좌리(佐理)의 3공신을 겸하였다. [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하므로, 임금이 여러 장수들에게 널리 물으니, 위장(衛將) 류균(柳均)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용병(用兵)할 때 군사를 보내어 맞아 올 수는 없으며, 또 성윤문은 일개 사신(使臣)인데, 비록 혹시 사망(死亡)하더라도 무슨 손상(損傷)이 있겠습니까? 단신(單身)으로 몰래 오더라도 또한 가(可)한 것입니다.”

하니, 수성 도정(壽城都正) 창(昌)이 말하기를,

“평안도에 머물러 있는 군사가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때가 변방의 혼란(變端)이 없는데, 하물며 요동(遼東)의 왕래에 여러 날 걸리지 않습니다. 고군(孤軍)으로 맞아오는 것은 적변(賊變)이 두려울 만하니, 류균(柳均)의 이러한 말은 진실로 맹랑(孟浪)한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류균(柳均)과 창(昌)으로 하여금 서로 힐난(詰難)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시비(是非)를 다투기를 오랫동안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명하여 전의 숫자대로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甲戌 御思政殿○先是諭平安道節度使韓繼美遣兵五百迎進鷹使成允文至是繼美馳啓曰本道兵赴咸吉道留兵數少請減數以送 上廣問諸將等衛將柳均曰如此用兵之時不可遣兵迎來且允文一介臣雖或死亡何傷單身潛來亦可也壽城都正昌曰平安留兵雖少時無邊釁況遼東往還不多日乎孤軍迎來賊變可畏柳均此言誠孟浪也 上令均昌相詰二人厲聲爭是非良久不已 上哂之 命依前數往迎 《世祖實錄 卷第43, 9面》

세조 13년 7월 27일(경인)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았다.

○장수(將帥)의 재질(才質)이 있는 자를 뽑으니, 옥산군(玉山君) 제(躋)·은천군(銀川君) 찬(攢)·춘양 부윤(春陽副尹) 내(徠)와 금산 도정(金山都正) 연(衍)·제천 부윤(堤川副尹) 온(溫)·평성 도정(枰城都正) 위(偉)·원산령(園山令) 행(行)·영인령(寧仁令) 순(楯)과 심안의(沈安義)·허형손(許亨孫)·안빈세(安貧世)·한치의(韓致義)·류균(柳均)·민혼(閔渾)·이철건(李鐵堅)·김견수(金堅壽)·한치례(韓致禮)·박서창(朴徐昌)·심한(沈澣)·경임(慶紘)·김이정(金利貞)·민영모(閔永慕)·어세겸(魚世謙)·이의형(李義亨)·성준(成俊)·조간(曹幹)·이평(李評)·이길보(李吉甫)·민신달(閔信達)·이인충(李仁忠) 등 30인이었다. <손자(孫子)>를 읽도록 하였다.

○庚寅 御思政殿受常參○選有將才者玉山君躋銀川君攢春陽副尹徠金山都正衍堤川副尹溫枰城都正偉園山令寧仁令楯及沈安義許亨孫安貧世韓致義柳均閔渾李鐵堅金堅壽韓致禮朴徐昌沈澣慶紘金利貞閔永慕魚世謙李義亨成俊曹幹李評李吉甫閔信達李仁忠等三十人令讀孫子 《世祖實錄 卷第43, 21面》

세조 13년 8월 13일(병오)

모화관(慕華館)의 앞산 꼭대기에 거둥하여, 군사를 18위(衛)로 나누어 좌상(左廂)·우상(右廂) 두 상(相)에 소속시키고, 심안의(沈安義)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허형손(許亨孫)을 중위장(中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34명을 거느리게 하고, 수성 도정(壽城都正) 창(昌)을 좌위장(左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69명을 거느리게 하고, 제천 부윤(堤川副尹) 온(崙)을 우위장(右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45명을 거느리게 하고, 금산 도정(金山都正) 연(衍)을 전위장(前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83명을 거느리게 하고, 류균(柳均)을 후위장(後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38명을 거느리게 하고, 윤사흔(尹士昕)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권경(權擎)을 중위장(中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80명을 거느리게 하고, 호산 도정(湖山都正) 현(鉉)을 좌위장(左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43명을 거느리게 하고, 안빈세(安貧世)를 우위장(右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44명을 거느리게 하고, 김을손(金乙孫)을 전위장(前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27명을 거느리게 하고, 김견수(金堅壽)를 후위장(後衛將)으로 삼아 군사 6백 46명을 거느리게 하고, 부윤 부수(副閔副守) 효숙(孝叔)을 사자위장(獅子衛將)으로 삼아 군사 3백 70명을 거느리게 하고, 이철견(李鐵堅)을 사대장(射隊將)으로 삼아 군사 7백 28명을 거느리게 하고, 운수 부수(雲水副守) 효성(孝誠)을 공현위장(控弦衛將)으로 삼아 군사 3백 55명을 거느리게 하고, 이거인(李居仁)을 장용 대장(壯勇隊將)으로 삼아 군사 1백 12명을 거느리게 하고, 이의형(李義亨)을 만강 대장(彎強隊將)으로 삼아 군사 3백 49명을 거느리게 하고, 신종윤(新宗尹) 효백(孝伯)을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삼아 군사 1백 12명을 거느리게 하고, 임자번(林自蕃)을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삼아 군사 3백 69명을 거느리게 하고, 곡성 부수(鵲城副守) 금손(金孫)을 총통장(銃筒將)으로 삼아 군사 8백 99명을 거느리게 하고, 박거겸(朴居謙)을 여력위장(膂力衛將)으로 삼아 군사 1천 5백 90명을 거느리게 하니, 모두 1만 1천 3백 96인이었다. 임금이 장(杖)을 짚고 산보(散步)하면서 군사의 위용을 사열하고, 인하여 여러 장수를 불러서 각각 거느린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하여, 장실(壯實)한 자를 골라서 여러 위(衛)에 채우도록 하였다. 그때 영순군(永順君) 부(溥)·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도승지(都承旨) 윤필상(尹弼商)·헌납(獻納) 조간(曹幹)이 겸선전관(兼宣傳官)으로 모시었다. 임금이 조간에게 명하여 김견수(金堅壽)를 불러서 거느린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하였으나, 조간이 이 왕명을 듣고 미처 끝마치지도 아니하였는데, 김국광이 곁에서 그를 부르니, 조간이 갑자기 그를 돌아보았다. 임금

이 노하여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내가 홀로 지휘하는데, 네가 나의 명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돌아 보면서 대신(大臣)의 말을 듣고자 하는가?”

하고, 윤필상에게 명하여 끌어내어 항쇄(項鎖)하고, 의금부(義禁府)에 하옥시켰다. 군사들에게 주육(酒肉)을 먹이도록 하고, 환가(還駕)하여, 돈의문(敦義門)에 이르니, 최유지(崔有池)가 함길도(咸吉道)에서 도총사(都摠使) 준(浚)의 첩서(捷書)를 가지고 왔다. 인하여 싸움에 이긴 일의 상황을 아뢰니, 임금의 크게 기뻐하였다.

○丙午 幸慕華館前山頂分軍爲十八衛屬於左右二廂以沈安義爲左廂大將許亨孫爲中衛將領軍六百三十四壽城都正昌左衛將領軍六百六十九堤川副尹蓋右衛將領軍六百四十五金山都正衍前衛將領軍六百八十三柳均後衛將領軍六百三十八尹士昕爲右廂大將權擎爲中衛將領軍六百八十湖山都正鉉左衛將領軍六百四十三安貧世右衛將領軍六百四十四金乙孫前衛將領軍六百二十七金堅壽後衛將領軍六百四十六富閏副守孝叔獅子衛將領軍三百七十李鐵堅射隊將領軍七百二十八雲水副守孝誠控弦衛將領軍三百五十五李居仁壯勇隊將領軍一百十二李義亨彎強隊將領軍三百四十九新宗尹孝伯兼司僕將領軍一百十二林自蕃內禁衛將領軍三百六十九鵠城副守金孫銃筒將領軍八百九十九朴居謙膂力衛將領軍一千五百九十凡一萬一千三百九十六人 上柱杖散步閱軍容因召諸將令各帥所領軍士來擇壯實者以充諸衛時永順君溥高靈君申叔舟綾城君具致寬右議政洪允成戶曹判書盧思慎右叅贊金國光都承旨尹弼商獻納曹幹以兼宣傳官侍 命幹召堅壽領所領兵來幹聽命未訖國光從旁呼之幹遽爾顧見 上怒曰今日之事予獨節制汝不審聽予命顧欲聽大臣之言乎弼商曳出鎖項下義禁府令饋軍士酒肉 還駕至敦義門崔有池自咸吉道賫都摠使浚捷書來因啓戰勝事狀 上大悅 《世祖實錄 卷第43, 34面》

세조 14년 1월 27일(무자)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세자(世子)를 거느리고 온양(溫陽)으로 거둥하였다. 보성군(寶城君) 함(容)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우공(禹貢)·배맹달(裒孟達)·류균(柳均)·김효조(金孝祖)를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며, 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를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오자경(吳子慶)·황사장(黃事長)·이의견(李義堅)·이소(李昭)를 위장(衛將)으로 삼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을 전상 대장(前廂大將)으로 삼고, 권경(權擎)·제천군(堤川君) 온(溫)·류흥무(柳興茂)·이중미(李仲美)를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며, 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를 후상 대장(後廂大將)으로 삼고, 운수군(雲水君) 효성(孝誠)·한치의(韓致義)·경유공(慶由恭)·이근효(李近孝)를 위장(衛將)으로 삼았다. 부윤 부수(富潤副守) 효숙(孝叔)을 사자위장(獅子衛將)으로 삼고, 임자번

(林子蕃)을 공현위장(控弦衛將)으로, 이숙기(李叔琦)를 좌사대상(左射隊將)으로, 강곤(康袞)을 우사대장(右射隊將)으로, 이훈(李塤)을 좌용대장(左勇隊將)으로, 신종군(新宗君) 효백(孝伯)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안빈(安貧)을 치중장(輜重將)으로, 맹석흠(孟碩歆)을 잡류장(雜類將)으로, 평성도정(淸城都正) 위(偉)를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이맹손(李孟孫)을 착호장(捉虎將)으로, 류자광(柳子光)을 총통장(銃筒將)으로, 양진손(梁震孫)을 팽대장(彭隊將)으로, 김이정(金利貞)을 창대장(槍隊將)으로,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을 지응사(支應使)로 삼았는데, 내종(內宗)·사종(射宗)·임종(任宗)과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좌참찬(左參贊) 류수(柳洙)·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병조 참판(兵曹參判) 윤흠(尹欽)·공산군(公山君) 안경손(安慶孫)·문원군(文原君) 류사(柳泗), 행대호군(行大護軍) 안철손(安哲孫)·이주(李珠)·황생(黃生)·윤말손(尹末孫)·이철견(李鐵堅), 행첨지사(行僉知事) 허유례(許惟禮)·이운로(李雲露), 행호군(行護軍) 정승로(鄭崇魯)·조신손(趙信孫), 행부호군(行副護軍) 이번(李蕃)·신말주(申末舟)·구치홍(具致洪)·권각(權恪)이 호종(扈從)하였다. 거가(車駕)가 살곶이[箭串]에 이르니,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절도사(節度使) 정문형(鄭文炯)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어가(御駕)를 맞이하고, 유도 백관(留都百官)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삼전도(三田渡)에서 지송(祗送)하였다. 명하여 군사(軍士)와 호종관(扈從官)에게 운(運)을 나누어 강(江)을 건너게 하고, 거가(車駕)가 문현산(門懸山)에 이르러서는 사냥[打圍]을 하여 사슴과 노루를 잡았는데, 한 마리 놓인 사슴이 들레 밖[圍外]에 뛰어 나오다 갑사(甲士) 조구(趙球)를 받아 가슴과 눈 곁을 상(傷)하게 하였으므로, 임금이 듣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득수(李得守)를 보내어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성균 직강(成均直講) 유원로(兪元老)에게 약(藥)을 가지고 가서 구호하게 하고, 또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음식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2인이 호망(虎網)을 등에 지고 병(病)을 일컬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도총부 경력(都總府經歷) 나치정(羅致貞)·경기 찰방(京畿察訪) 류정손(柳正孫)·의원(醫員) 1인 등으로 하여금 서울에 거느리고 돌아가 유도 대장(留都大將)에게 주어 구호(救護)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돌아갈 때 길 사이에 만약 혹 보거든, 아울러 거느려서 가도록 하라.”

하고, 저녁에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서 머물렀다. 임금이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윤문(成允文)을 불러 말하기를,

“뒤에 떨어진 군사(軍士)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빨리 경기 도사(京畿都事)를 보내어 구호하여 오게 하라.”

하니, 도사(都事) 민혜(閔愷)가 명을 받들어, 주식(酒食)을 가지고 가서 5, 6인을 얻어 음식을 먹이었다.

○戊子○上與中宮率世子幸溫陽以寶城君容爲左廂大將禹貢裴孟達柳均金孝祖爲衛將右贊成韓繼美爲右廂大將吳子慶黃事長李義堅李昭爲衛將兵曹判書朴仲善爲前廂大將權擊堤川君蓋柳興茂李仲美爲衛將工曹判書南怡爲後廂大將雲水君孝誠韓致義慶由恭李近孝爲衛將富潤副守孝叔爲獅子衛將林子蕃控弦衛將李叔琦左射隊將康袞右射隊將李塤左勇隊將新宗君孝伯司僕將安貧輜重將孟碩欽雜類將杵城都正律內禁衛將季孟孫捉虎將柳子光統筒將梁震孫彭隊將金利貞槍隊將左贊成金國光支應使內宗射宗任宗及高靈君申叔舟綾城君具致寬寧城君崔恒仁山君洪允成戶曹判書盧思慎左叅贊柳洙吏曹判書成任兵曹叅判尹欽公山君安慶孫文原君柳泗行大護軍安哲孫李珠黃生尹末孫李鐵堅行僉知事許惟禮李雲露行護軍鄭崇魯趙信孫行副護軍李蕃申末舟具致洪權恪扈從 駕至箭串京畿觀察使李季專節度使鄭文炯具朝服迎 駕留都百官以時服祇送于三田渡 命軍士及扈從官分運渡江 駕至門懸山打關獲鹿獐有一逸鹿跳出圍外觸甲士趙球傷胸眩側 上聞之遣承傳宦官李得守左承旨李克增右承旨魚世謙成均直講俞元老賫藥往救又令觀察使給與食物 上見二人負虎網稱病臥於路傍令都摠府經歷羅致貞京畿察訪柳正孫醫員一人等率還于京授留都大將救護仍傳曰如此之人必不止此歸時路間若或見之弁率以去夕 次于樂生驛前平召右副承旨成允文曰落後軍士必多速遣京畿都事救護以來都事閔愷承 命持酒食以往得五六人飲食之

《世祖實錄 卷第45, 8面》

예종 즉위년 10월 4일(경인)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은 조부모(祖父母)·부모 및 동생의 무덤을 옮기고, 행호군(行護軍) 류균(柳均)은 부모·처자의 무덤을 옮기니, 정창손에게는 관·곽(棺槨) 각각 8, 유둔(油菴) 8부(部), 종이 1백 권, 쌀·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주고, 류균(柳均)은 관·곽 각각 6, 유둔 6부, 쌀·콩 아울러 40석, 종이 50권을 내려주라.”

하고,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여 묘(墓)를 만드는 군인(軍人)을 정창손에게는 50명, 류균(柳均)에게는 30명을 뽑아서 주게 하였다.

○庚寅○傳旨戶曹曰蓬原君鄭昌孫遷祖父母父母及同生墳行護軍柳均遷父母妻子墳其賜昌孫棺槨各八油菴八部紙一百卷米豆并一百石均棺槨各六油菴六部米豆并四十石紙五十

卷又令承政院馳書于京畿觀察使抄給造墓軍人昌孫五十名均三十名 《睿宗實錄 卷第1, 25面》

예종 원년 6월 22일(갑술)

○고(故) 단양 군사(丹陽郡事) 남의(南儀)의 아내 이씨(李氏)가 졸(卒)하였다. 영양군(永陽君) 응(膺)의 손녀인데, 10여 명의 아들을 낳고 갑자기 죽었다. 남의의 용모가 드러나지 못하여, 이씨는 아내의 도리로써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남의가 죽자 이씨는 과부로 살았는데, 중(僧)의 권선(勸善 : 불가에서 선심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청함)하는 자가 그 문(門)에 운집하였다. 그의 노복(奴僕)이 선언(宣言)하여 말하기를,

“주인은 부처[佛]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중[僧]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다. 한 향사(鄉士)가 인근의 늙은 할미의 집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중이 와서 늙은 할미와 더불어 귀엣말을 하고 갔다. 늙은 할미가 향사에서 이르기를,

“오늘 어떤 여자 손님이 오실 테니, 그대는 마땅히 피해 주시오.”

하므로, 향사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나서 거짓으로 말을 하고, 나가서 문병(門屏)에 엮으려 살펴보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그 중이 와서 말을 마룻간에 매어 놓고, 장삼을 벗고 드러누워 쉬다가 늙은 할미에게 이르기를,

“어째서 늦는가?”

하니, 늙은 할미가 말하기를,

“의심하지 말라.”

하고, 곧 등불을 밝히고 술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었다. 밤 초고(初鼓)에 한 여자가 자색 옷저고리에 머리를 감싸고 한 여종을 데리고 와서, 중과 늙은 할미와 더불어 술발처럼 벌러 앉아 술을 마셨는데, 조금 있다가 늙은 할미가 나가고, 중이 여자와 더불어 바깥 다다라서 바야흐로 못내 그리운 정을 베풀고자 하였다. 향사가 옆에서 뛰어나가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는 어떤 여자이고, 이는 어떤 중인가? 내가 이 여자를 보니 반드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내 장차 순관(巡官)에게 잡도록 고하겠다.”

하니, 늙은 할미와 중이 놀라고 당황하여 빌면서 애원하였다. 향사가 듣지 아니하고 장차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 같자, 그 여자가 여종에게 은밀히 이야기하여 면포(綿布) 수십 필을 가지고 왔다. 늙은 할미가 향사의 옷을 잡아 당기며 반복하여 달래며 타이르기를,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마땅히 면포와 중이 타고 온 말을 주겠다.”

하니, 향사가 말하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므로 밝히지 않을 수 없으나, 주인 할미의 청이 간절하여 좃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중과 여자는 곧 함께 도망하고, 향사는 그 베[布]를 말에 싣고 갔다. 사람들이 그 여자 손님이 누구인지 의심하였는데, 이가 곧 이씨였다. 그후 수년이 되어 이씨가 다시 시집가고 싶었으나, 스스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어미에게 말하기를,

“노비가 매우 사나우니, 어찌하면 이를 제어하겠습니까?”

하니, 그 어미가 그 뜻을 알고, 스스로 그 배우자를 택하도록 하였다. 이씨가 남의 신주(神主)를 그 형(兄) 남윤(南倫)의 집으로 보내고, 중신(媒)을 맞아들여 구혼(求婚)하였는데, 첨지(僉知) 류균(柳均)이 남자의 도[陽道]가 있고 장위(壯偉)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허락하였으나, 그 용모를 보고자 하여 인근에 사는 족형(族兄) 이중석(李仲石)을 청해다가 술과 성찬(盛饌)을 베풀어 보내어 류균(柳均) 등 수인을 데려다가 사음(射飲 : 활을 쏘며 먹고 마심)을 하도록 하였다. 이씨가 이를 바라보고 여종에게 이르기를,

“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말하기를,

“류 첨지(柳僉知)입니다.”

하니, 이씨가 기뻐하여 마침내 정약(定約)하였다. 이 뒤로부터 날마다 거울에 비추어 보고 분을 발랐는데, 마침 남의 유모[乳媪]가 내알(來謁)하였다. 이씨가 거울을 던지고 맞이하여 말하기를,

“어머니는 내 뜻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늙은 노비 약간 명이 뜰에서 늙어서서 이씨를 보고 말하기를,

“주인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합니까? 노비가 부족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새로 시집을 가려 하십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도 있었으나, 이씨는 창문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가 류균(柳均)에게 시집을 가자, 남의 노비로서 이씨 집에 살던 자가 하루에 모두 떠나 가며, 곡성(哭聲)이 길에 가득하였으나, 이씨는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속히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는가?”

하였다. 이씨가 류균을 사랑하여 매양 남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른은 정말 남자이다.”

하였다. 이때 류균(柳均)이 위장(衛將)이 되었는데, 동료 가운데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가 ‘류씨와 이씨가 동뢰(同牢 : 부부가 서로 음식을 같이 먹는 일)하는 상황’을

관청의 벽에 그려서 기롱하였으나, 류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 뒤 수년이 못되어 류균이 또한 죽으니, 이씨는 또 다시 시집갈 뜻이 있었다. 이 앞서 이씨가 맹인(盲人)을 불러서 그 평생(平生)을 점치게 하니, 맹인이 말하기를,

“마땅히 세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뒤에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백년 해로할 것이다.”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씨가 류균의 시체 곁에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神)이여! 맹인의 말대로 저이가 또 죽었으니, 뒤에 만나는 자는 과연 백년 해로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성복(成服)하는 날에도 손님을 대하여 술자리를 베풀며 전혀 슬픈 빛이 없었다. 이씨가 류균을 위하여 중들을 그 집에 모으고 불사(佛事)를 행하며 창가에 임(臨)하여 보고 있는데, 한 중이 계송(偈頌: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을 창(唱)하며 빙빙 돌다가 창 앞에 가서는 반드시 옷소매로 창을 스치니, 이씨가 거짓으로 성내어 말하기를,

“괴이하구나! 저 화상(和尚).”

하고도, 역시 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 중을 의심하였는데, 이미 이씨와 사통(私通)한 것이었다. 이씨가 한쪽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한화(閑話)하는 자는 반드시 ‘애꾸눈 부인’이라 칭하여 말하였다.

○甲戌○故丹陽郡事南儀妻李氏卒永陽君膺之孫女也生十餘子輒死儀貌不揚李不肯以妻道事之及儀死李孀居僧之勸善者雲集其門奴僕宣言曰主非好佛蓋好僧也有一鄉士僑居隣近老嫗家一日有僧來與老嫗耳言而去老嫗謂鄉士曰今日有女賓至君宜避之士心疑焉陽辭而出伏門屏候之日暮其僧來繫馬于廐脫衫偃息謂老嫗曰何遲老嫗曰勿疑乃挑燈置酒以待夜初鼓有一女紫襖蒙頭率一女奴而來與僧老嫗鼎坐酣飲有頃老嫗出僧與女促坐方叙纏繞鄉士從旁突出厲聲曰是何女也是何僧也吾觀是女必非凡人何爲來此我將捕告巡官老嫗與僧驚惶丐哀鄉士不聽若將拘繫然其女密語女奴取綿布數十匹以來老嫗牽鄉士衣反覆曉譬曰君若聽我當以絲布與僧所乘馬奉贈鄉士曰此非小事不可不發然主媪請之勤不得不從僧與女即俱亡鄉士載布於馬而去人疑女賓即李也居數年李欲更適人而難於自發乃謂母曰奴婢豪悍何以制之母知其意令自擇其配李將儀神主送儀兄倫家迎媒求婚聞僉知柳均陽道壯偉心已許之欲觀其容請隣居族兄李仲石置酒盛饌以送令引所圖均等數人射飲李望見之謂女奴曰彼長而壯者誰也曰柳僉知也李悅遂定約自後日照鏡傅粉適儀乳媪來謁李投鏡迎謂曰母奪吾志不得不爾又老奴婢若干人列見于庭曰主之資財不敷歟臧獲不足歟何故圖新或有流涕者李掩窓不答既適均儀之奴婢居李家者一日盡去哭聲載路李殊無慘色罵之曰何不速去而反哭爲李愛均每語人口我公眞男子也時均爲衛將同僚之好事者畫柳李同牢之狀于廳壁以譏之均亦不以爲愧不數年均亦死李又有更適之志先是李呼盲卜其平生盲曰當適三

夫其最後者必百年偕老至是卒臨均尸歎曰神矣哉盲之言也彼又死矣最後者果偕老矣成服之日對客設酌了無戚容李爲均會僧于其家作佛事臨窓以觀有一僧唱偈回旋行到窓前必以衫袖拂窓李陽噴曰異哉彼和尚亦不爲避人疑是僧已與李私焉李一目瞎時人閑話者必稱瞎目夫人云
《睿宗實錄 卷第6, 16面》

성종 18년 9월 5일(신축)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와서 아뢰기를,
“평양(平壤)의 창기(娼妓) 위군래(爲君來)는 미색과 기예가 있어서 어전(御前)에서 정재(呈才)하기에 합당한데, 류균(柳均)의 첩이 낳은 아들인 류용생(柳龍生)이 차지하여 제 첩으로 삼아 황해도(黃海道)의 농장(農莊)에서 데리고 살므로, 본원(本院)에서 여러 번 이문(移文)하여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돌려보내려 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인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감사(監司)에게 하서(下書)하여 죄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하서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해사(該司)를 시켜 논계(論啓)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자신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병(利病)으로 계도(啓導)하지 못하고 자질구레한 창기의 일로 와서 아뢰었으니, 어찌 사체(事體)를 아는 대신(大臣)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않는 것인데, 죽일 것으로 감히 아뢴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辛丑○掌樂院提調領議政尹弼商來啓曰平壤妓爲君來有色藝合於 御前呈才而柳均妾子龍生占爲己妾率居于黃海道農莊本院雖累次移文推捉而不肯送還甚不可如此者雖殺之何妨請下書監司罪之 傳曰下書不可令該司論啓史臣曰身居相位不以時政得失民間利病啓迪而顧以細瑣娼妓之事來啓其可謂識事體大臣乎況其罪不至於死而以殺敢啓乎

《成宗實錄 卷第207, 2面》

보한재집 권육(保閑齋集122) 卷六)

류첨지 균이 성남 산 기슭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청했을 때 병이 들어 참석치 못

122) 보한재집(保閑齋集) : 이조 초기 학자. 정치가. 신숙주(申叔舟)의 시문집. 1417년(태종 17년)~1475년(성종 6년). 자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희현당(希賢堂). 본관은 고령(高靈). 공조참판 장(樞)의 아들. 1439년(세종 21년) 문과에 급제하여 계유정란(癸酉靖難) 후 공신으로 고령군에 봉해졌으며 1462년(세조 7년) 영의정이 되었다. 경국대전과 세조실록등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했으나 전일 박밀산 중손이 여기에서 술 자리를 베풀었을 때는 나도 참석했다.
柳僉知均 設酌城南山麓見邀 以病未參 前此數日 朴密山仲孫 設酌於此 僕亦參

《韓國文集叢刊 10卷, 保閑齋集 52 D》《晉州柳氏文集 48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상의원정공(尙衣院正公) 류 양(柳 壤)

세종 7년(1425)~성종 22년(1491)

자는 지유(芝柔)이며 공은 세종 7년(1425) 동부지돈녕부사 진천군(晉川君) 류 자해(柳子偕)와 영의정 심온의 따님인 청송심씨(靑松沈氏)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세조 1년(1455) 좌익원종 2등 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세조 11년(1465) 서천군사(舒川郡事) 성종 2년(1471) 예빈시정(禮賓寺正) 성종 5년(1474) 담양(潭陽)부사, 밀양부사, 내직으로 사옹원첨정(司饗院僉正) 성종 18년(1487) 상의원정(尙衣院正)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역임했다. 황해도 서흥(瑞興) 지역에 악성 괴질이 돌아 누구도 부임하기를 꺼리고 기피하자 공이 운명은 재천이라 투철한 멸사봉공 정신으로 자원 부임하니 그 이듬해 역시 역병에 걸려 들것에 실려 돌아와 나흘만에 세상을 떠나 운명하였다.

공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¹²³ 이종간인 사숙재 강희맹(私淑齋 姜希孟)¹²⁴ 소요재 최숙정(逍遙齋 崔淑精)¹²⁵과 교류가 있었으며 시 몇 수가 그들 문

123) 김종직(金宗直) : 1431(세종 13)~1492(성종 23). 조선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자는 계온(季溫), 호는 점필재(佔畢齋).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선산(善山). 밀양(密陽) 출생. 1459년(세조 5) 문과에 급제. 성종 초에 경연관(經筵官), 함양 군수(咸陽郡守), 참교(參校), 선산 부사(善山府使)를 거쳐 응교(應教)가 되어 다시 경연에 나갔으며 도승지, 이조 참관,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한성부윤, 공조 참관, 형조 판서, 지중추 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영남학과(嶺南學派)에 종조(宗祖)가 되었고, 성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자기 문인(文人)들을 관직에 많이 등용시켰으며 기성 세력인 훈구파(勳舊派)와 심한 반목과 대립을 일으켰다. 일찍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은 바 있었는데, 죽은 후인 1498년(연산군 4) 제자 김일손(金駟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사초(史草)에 적어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고, 많은 문집이 소각되었으며 문인들이 모두 참화(慘禍)를 입었다. 길재(吉再) 및 아버지의 학통을 이어받아 학문 경향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주안으로 하는 실제적 방면에 치중한 것이었다. 총재관(總裁官)으로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5권을 증수(增修)했으며, 서화(書畫)에도 뛰어났다. [저서] 점필재집(佔畢齋集), 유두유록(遊頭流錄), 청구풍아(靑丘風雅), 당후일기(堂後日記), 편저 : 동문수(東文粹), 일선지(一善誌).

124) 강희맹(姜希孟) : 1424(세종 6)~1483(성종 14). 조선의 정치가.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 시호는 문량(文良). 본관은 진주(晉州). 1447년(세종 29) 문과에 급제. 세조 때 형조 판서, 예종 때 남이(南怡)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이 되고 성종 때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좌찬성(左贊成)을 지냈다. 경사(經史)에 밝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류 양과 이종사촌이 된다. [저서] 희맹박람강기(希孟博覽強記), 사숙재집(私淑齋集).

집에 실려 전해오고 있다.

배위는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 정즙(鄭楫：父 鄭拯)의 따님인 청주정씨(淸州鄭氏)로 큰 아들 첨정(添汀)은 남원부사, 둘째 안정(安汀)은 의금부도사, 셋째 아들 순정(順汀)은 중종반정 정국공신으로 영의정을 넷째 아들 효정(孝汀)은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지냈다. 넷 딸의 사위는 광주인 정순인(鄭純仁：父 鄭纘禹) 연안인 이익령(李益齡：父 李永肩) 영춘군(永春君) 이인(李仁：父 寧海君 李瑋, 祖 世宗大王) 첨지 변철산(卞哲山)이다.

순정이 귀하게 되어 중종 때 영의정에 추증되고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부사직(副司直) 류양(柳壤)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等)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副司直柳壤錄原從功臣二等 《世祖實錄 卷第2, 57面》

세조 11년 7월 24일(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성균 직강(成均直講) 김성원(金性源)은 숙부(叔父) 김신(金信)을 대신하여 가자(加資)를 입은 뒤에, 이조(吏曹)에서 특지(特旨)에 준례하여 김성원이 대신 가자한 전월수(前月數)를 통계하여, 통례문 봉례(通禮門奉禮)에 진계(進啓)하였고, 신지(申泚)는 외구(外舅：장인) 정자양(鄭自洋)이 판통례(判通禮)가 되었다 하여 상피(相避)의 준례를 따라, 곧 도승지(都承旨) 신면(申漣)의 종형(從兄)으로서 공조 좌랑(工曹佐郎)에 승수(陞授)하였으며, 서천 군사(舒川郡事) 류양(柳壤)은 무주 현령(茂朱縣令)이 되었을 때, 도적을 잘못 국문(鞫問)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갇혔다가 뒤에 비록 용서를 입었으나 죄책(罪責)이 오히려 중한데, 이조는 또한 갇혔던 전월수(前月數)를 계산해서 진계(進啓)하여 모두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핵실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성원(金性源)의 전월수(前月數)를 통계한 것은 무방(無妨)하나, 신지(申泚)·류양(柳壤)은 승정원(承政院)에서 그것을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125) 최숙정(崔淑精)：1433(세종 15)~1480(성종 11). 조선의 문신. 자는 국화(國華). 본관은 양천(陽川). 사정(司正) 중생(仲生)의 아들. 1462년(세조 8) 문과에 급제. 1466년에 중시(重試), 다시 발영시(拔英試)에 뽑혀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여주목사(驪州牧使)에서 파면되자 실망이 컸던 바 마침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되자 기쁨에 도취되어 하사 받은 술을 폭음한 데서 병을 얻어 사망했다. [저서] 소요재집(逍遙齋集). [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己巳司憲府啓曰成均直講金性源代叔父信蒙加資後吏曹例於 特旨通計性源代加前月數進階通禮門奉禮申沚以外舅鄭自洋爲判通禮例應相避乃以都承旨申澗從兄陞授工曹佐郎舒川郡事柳壤爲茂朱縣令時誤鞫盜賊被囚義禁府後雖蒙宥罪責尙重吏曹亦計被囚前月數進階俱爲未便請劾之 傳曰性源通計前月數不妨沚壤承政院其問之

《世祖實錄 卷第36, 23面》

성종 2년 11월 5일(계묘)

○예빈시 정(禮賓寺正) 류양(柳壤) 등 4인이 운대(輪對)하였다.

○癸卯○禮賓寺正柳壤等四人輪對

《成宗實錄 卷第13, 2面》

성종 4년 3월 27일(정사)

○예빈시 정(禮賓寺正) 류양(柳壤) 등 5인이 운대(輪對)하였다.

○丁巳○禮賓寺正柳壤等五人輪對

《成宗實錄 卷第28, 6面》

성종 5년 5월 13일(정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연정렬은 당초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서 중(中)에 있었으므로 낮추어 별제(別提)를 제수하였었는데, 지금 부사(府使)로 올렸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군수는 종4품이고 별제는 6품이고 부사는 종3품이니, 가령 연정렬이 군수로 있을 때에 10고(十考)에 모두 상(上)을 받고 경관(京官)의 실직(實職)으로 구임(久任)하고서 개만(箇滿)하였다면 그 승천(陞遷)된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2중(二中)이었으므로 견책하여 6품의 녹(祿)이 없는 관직에 제수하였는데, 겨우 20개월이 차자 3품의 관직에 뛰어올려 요행(僥倖)의 문이 크게 열렸으니, 권장하고 징계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연정렬의 자급(資級)이 적당하여 제수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신 등은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부사는 3품의 직질(職秩)이므로, 으레 3품의 벼슬을 지낸 자에게 제수하는 것입니다. 근일에 조민(趙岷)이 사도시 정(司導寺正)으로서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고, 류양(柳壤)은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서 담양 부사(潭陽府使)가 되었거니와, 별제로서 연정렬처럼 뛰어올려 제수된 자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연정렬은 별로 현능(賢能)함도 없이 공신의 후예로서 서반(西班)의 음직(蔭職)에 보임(補任)되어, 처음에 찰방(察訪)이 되었다가 두 번째 옮겨서 군수가 되고 세 번째 옮겨서 부사가 되었으니, 비록 특은(特恩)으로 초탁(超擢)된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일은 없었습니다. 연정렬은 이조 참판(吏曹參判) 윤계검(尹

繼謙)의 이성(異姓) 사촌 누이[堂妹]의 남편입니다. 윤계검으로 인연하여 차서를 넘어서 제수되었으므로 세론(世論)이 놀라와 하니, 빌건대,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丁酉○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劄子略曰延井冽初以沃川郡守居中降授別提而今陞府使臣等謂郡守從四品別提六品府使從三品也假使井冽爲郡守時十考皆上爲京官實職而久任箇滿其得陞遷宜矣今以二中責授六品無祿之官纔滿二十朔超陞三品職僥倖之門大開勸懲之意安在若以井冽資級相當而授之無妨則臣等尤知其不可也蓋府使三品秩也例以經三品職者授之近日趙岷以司導寺正爲南陽府使柳壤以禮賓寺正爲潭陽府使未聞以別提超授如井冽者也且井冽別無賢能以功臣之裔補西班蔭職初爲察訪再遷郡守三轉爲府使雖 特恩超擢者未有如此之亟井冽乃吏曹叅判尹繼謙異姓堂妹之夫也賚緣繼謙越次而授物論駭愕乞 命改正 不聽 《成宗實錄 卷第42, 2面》

성종 17년 11월 30일(신미)

○예빈시 정(禮賓寺正) 류양(柳壤) 등 다섯 사람이 윤대(輪對)하였다.

○辛未○禮賓寺正柳壤等五人輪對 《成宗實錄 卷第197, 19面》

성종 18년 11월 14일(기유)

전교하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류양(柳壤)을 개차(改差)하고, 아울러 추국(推鞠)하도록 하라.” 하였다.

○己酉 傳曰光州牧使柳壤改差并推鞠 《成宗實錄 卷第209, 9面》

성종 19년 윤 1월 9일(갑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성세명(成世明)¹²⁶이 와서 아뢰기를,

“이조(吏曹)·병조(兵曹)는 일체(一體)인데 하루의 정사(政事：벼슬아치의 임면(任免)·출척(黜陟)에 관한 사무)에 병조 낭관(郎官) 세 사람에게 모두 벼슬을 올렸으니, 반드시 사정과 연유가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김맹린(金孟麟)은 그 조모(祖母)가 세 번 그 지아비를 바꾸었으니, 행실이 매우 더러운데, 만약 《대전

126) 성세명(成世明) : 1447~1510. 조선 연산군 때의 문신. 자는 여회(如晦) 호는 일노당(佚老堂) 시호는 평안(平安) 본관은 창녕. 성임(成任)의 아들. 세조 14년(1468)에 사마시를 거쳐 성종 6년(1475) 알성 문과급제, 성종 14년 정언을 거쳐 공조좌랑 지평 전한 등을 역임. 연산군 때에 대사간, 도승지, 대사헌 역임. 중종반정후 겸 지춘추관사(兼知春秋館事)가 되어 연산군일기 수찬, 중종 3년(1508) 지돈녕부사가 되었다. 장인되는 강희맹(姜希孟：父 姜碩德)은 류양과 이종사촌이 된다.

(大典》에 의하면 김맹린 등은 동·서반(東西班)에 끼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종조(祖宗朝)에 서사(筮仕 : 처음으로 벼슬을 얻음)하였으므로 오히려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부)에 있는 것인데, 수령 같은 것은 제수할 수 없으니 바꾸기를 청합니다. 전 광주 목사(光州牧使) 류양(柳壤)은 별로 잘못된 단서가 없는데 한갓 사목(事目)에만 의거하여 형신(刑訊)하고 또 오래 가두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지금 이종호(李宗顥)가 올라 왔으니, 그 형추(刑推)한 것과 오래 가둔 이유를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맹린의 일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으나 마땅히 참작해 하겠으며, 류양의 일은 이종호가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물을 수 없다. 이조(吏曹) 관리도 국문할 수 없다.” 하였다.

○甲戌○司憲府持平成世明來啓曰吏兵曹一體也而一日之政兵曹郎官三人皆陞職必有情由請鞠之金孟鱗祖母三更其夫行甚醜矣若依大典則孟鱗等不得列於東西班但祖宗朝筮仕猶在仕版若守令則不宜除授請改之前光州牧使柳壤別無違端徒據事目而刑訊且久囚未便今李宗顥上來問其刑推久囚之由何如 傳曰孟鱗事在法前然當斟酌爲之柳壤事宗顥據事目施行不可問也吏曹官吏亦不可鞠也

《成宗實錄 卷第212, 7面》

성종 20년 10월 26일(경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정석견(鄭錫堅)¹²⁷이 아뢰기를, [중략]

정석견이 또 아뢰기를,

“권감(權臧)의 전처(前妻) 류씨(柳氏)가 남천군(南川君)의 아내 최씨(崔氏)를 수양(收養)한 일을, 전일에 전하(殿下)께서 류씨의 아우 류양(柳壤)의 말을 옳게 여기시고 최씨를 수양한 것 때문에 그의 노비(奴婢)를 주셨는데, 신이 그 문서를 고찰해 보건대, 최씨가 류씨의 복(服)도 입지 않았고 또한 권감의 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라고 하였으면서 그의 복을 입지 않아도 되겠으며, 그의 복을 입지 않았는데 수양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수양한 것이 아닌데 노비를

127) 정석견(鄭錫堅) : ?~1500(연산군 6). 조선의 문신. 자는 자건(子健). 호는 한벽재(寒碧齋). 본관은 해주(海州). 1474년(성종 5) 문과(文科)에 급제. 정언(正言), 지평(持平), 예안 현감(禮安縣監)을 거쳐 1485년 이조 좌랑(吏曹佐郎)이 되고 1489년에 이조 정랑(吏曹正郎)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산정(刪定)하였다. 이어 장령(掌令),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사인(舍人)을 거쳐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고, 1493년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올랐다. 1495년(연산군 1)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거쳐 다음 해 대사간, 1597년 이조 참판이 되었다. 이듬해 무오사화 때 앞서 김종직(金宗直)의 문집을 편찬했다 하여 투옥 당했으나 나이가 많아 파면에 그쳤다. [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소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간(分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류양(柳壤)·류숙(柳塾)이 이미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수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복을 입지 않은 죄를 다스리면 되지, 어찌 다시 분간해야 하는가?”
 하자, 정석견이 아뢰기를,
 “류양이 일찍이 그의 누이 류씨가 후손이 없으므로 고장(告狀)을 하여 송사 다툼을 하였고 또한 최씨를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류양의 말을 어떻게 취신(取信)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고찰할 만한 문안(文案)도 없는데 어찌 수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양한 것이 아닌데 그의 노비를 소득하게 됨은 매우 공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매, 정문형(鄭文炯)이 대답하기를,
 “신이 평소에 권감(權臧)과 더불어 교분(交分)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양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이는 곧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니 분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만 복을 입지 않은 죄를 다스릴 뿐이지 또한 어찌 분간할 것이 있겠는가? 복을 입지 않은 죄를 그 때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유사(有司)의 잘못이다.”
 하였다.

○庚戌 御經筵講訖掌令鄭錫堅啓曰[中略]

錫堅又啓曰權臧先妻柳氏收養南川君妻崔氏事前日 殿下以柳氏之弟柳壤之言爲是以崔氏爲收養給其奴婢臣按其文簿崔氏不服柳氏之喪又不服權臧之喪旣曰父母而不服其喪可乎不服其喪而謂之收養可乎非收養而得其奴婢可乎請改分揀 上曰柳壤柳塾旣以爲收養云爾則不可謂非收養也其不服喪之罪則可治之豈可改分揀乎錫堅曰柳壤曾以其妹柳氏無後告狀爭訟而又以崔氏爲收養則壤之言何足取信乎又無文案可考何以謂之收養乎非收養而得其奴婢甚未便 上顧問左右文炯對曰臣平日與權臧有交道未聞收養之事洪應曰此乃綱常所係不可不分揀 上曰但治不服喪之罪而已又何用分揀也不服喪之罪則其時不舉劾有司之過也

《成宗實錄 卷第233, 18面》

성종 20년 10월 27일(신해)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중략]

이세좌가 또 아뢰기를,

“남천군(南川君) 부인(夫人) 최씨(崔氏)를 권감(權臧)의 전처(前妻)가 수양(收

養)했다는 일은 모름지기 다시 분간(分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일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류양(柳壤)과 류숙(柳塾)이 이미 모두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수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무엇하러 다시 분간하겠는가?” 하였다.

○辛亥 御經筵講訖大司憲李世佐啓曰[中略]

世佐又啓曰南川君夫人崔氏權城先妻收養事請須改分揀 上曰其事施行已久而柳壤柳塾
既皆以謂收養則不可謂非收養矣何用改分揀乎 《成宗實錄 卷第233, 19面》

점필재집 시집 권십오(佔畢齋集 詩集 卷十五)

금산에 이르러 밀양 류부사 양에게 부쳐드렸다.
到金山 奉寄密陽柳府使 壤 《韓國文集叢刊 12卷, 佔畢齋集 325 D》《晉州柳氏文集 50面》

소요재집 권일(逍遙齋集 卷一)

류담양 양을 이별하며
別柳潭陽 壤 《韓國文集叢刊 13卷, 逍遙齋集 15 B》《晉州柳氏文集 52面》

소요재집 권일(逍遙齋集 卷一)

류담양 양을 전송하면서
送柳潭陽 壤 《韓國文集叢刊 13卷, 逍遙齋集 31 C》《晉州柳氏文集 52面》

소요재집 권일(逍遙齋集 卷一)

회포를 써서 류지유에게 주다.
述懷贈柳之柔 《韓國文集叢刊 13卷, 逍遙齋集 34 A》《晉州柳氏文集 52面》

소요재집 권일(逍遙齋集 卷一)

봄비 내리는 날 류지유와 함께 술 마시면서 두편 시를 썼다.

春雨日 與柳之柔飲 仍題二首 《韓國文集叢刊 13卷, 逍遙齋集 34 A》《晉州柳氏文集 52面》

소요재집 권일(逍遙齋集 卷一)

류지유의 운을 써서 답하다.
答柳之柔韻 《韓國文集叢刊 13卷, 逍遙齋集 34 B》《晉州柳氏文集 52面》

점필재집 시집 권이십이(佔畢齋集 詩集 卷二十二)

광주 류목사 양이 판관에게 화살을 쏘아 맞힌 일로써 재차 형신을 당해 남평현으로 옮겨 수감될 때에 이 시 두편을 지어 부쳤다.
光州牧使 壤 以判官中箭事 再被刑訊 今移繫南平縣 寄詩二首
《韓國文集叢刊 12卷, 佔畢齋集 375 B》《晉州柳氏文集 53面》

사숙재집 권사(私淑齋集 卷四)

춘순발칩도를 지어 그 왼쪽편에 화제를 써서 증제 류담양 양에게 주었다.
作春筍發蟄圖 題其左 贈從弟柳潭陽 壤
《韓國文集叢刊 12卷, 私淑齋集 46 D》《晉州柳氏文集 53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첨지공(僉知公) 류 숙(柳 塾)

세종 연간(1425년 이후)~성종 연간(?)
공의 자 호 및 생졸년은 전하지 않으나 바로 위에 형인 류양(柳壤)이 1425년 생이므로 이후로 기록했다. 부지돈녕부사 류자해(柳子偕)와 청천부원군 심온(沈溫)의 따님인 청송심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큰 형 균(均) 둘째 형 양(壤)과 함께 좌익원종 2등 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세조 6년(1460) 실시된 무과에 한치례, 박숙선(朴叔善) 등과 함께 합격하였다. 겸사복(兼司僕)을 거쳐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배위는 이조판서 어효침(魚孝瞻)¹²⁸⁾의

128) 어효침(魚孝瞻) : 1405~1475. 조선 세종 때의 문신. 학자. 자는 만종(萬從) 호는 귀천(龜川) 시호는 문효(文孝) 지사간원사 어변갑의 아들로 세종 11년(1429) 문과급제, 집현전 교리가 되어 예기일초(禮記日抄)를 찬하였으며 용비어천가를 짓도록 건의하였다. 세조 때에 이조판서,

따님으로 좌의정 박은(朴崧)의 외손녀인 함중어씨이다. 아들 의신(義臣)과 예신(禮臣)이 문과 급제하였으며 손자 섭(涉) 역시 문과 급제하였다.

사위는 함안인 조금호(趙金虎), 함양인 여승견(呂承肩), 안동인 김지(金墀), 강릉인 최원(崔瑗)이다.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부사직(副司直) 류숙(柳塾)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等)에 녹(錄)한다.

○戊辰副司直柳塾錄原從功臣二等

《世祖實錄 卷第2, 57面》

세조 6년 9월 19일(임진)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최경지(崔敬止)와 무과(武科)에 급제한 문맹손(文孟孫) 등이 사은(謝恩)하니, 후원(後苑)에 나아가서 인견하고, 문과(文科)·무과(武科)로 하여금 짝을 지어서 사후(射侯)하게 하고 맞힌 자에게는 활 1장(張)씩을 내려 주었는데, 임영 대군(臨瀛大君) 구(璆) 등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가 입시(入試)하였다. 또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승지(承旨)와 입직(入直)한 위장(衛將)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무과에 급제한 류숙(柳塾)·한치례(韓致禮)·박숙선(朴叔善) 등에게 각각 천동(天童) 10인, 청주(淸酒) 30병(瓶)을 내려주고, 봉계손(奉繼孫)·김계남(金繼南)에게 명하여 사복(司僕)을 겸(兼)하게 하였다.

○壬辰新及第文科崔敬止武舉文孟孫等謝恩御後苑引見令文武科作耦射侯中者賜弓一張臨瀛大君璆等諸宗親及宰樞入侍又御忠順堂觀射承旨及入直衛將等入侍賜武舉柳塾韓致禮朴叔善等各天童十人淸酒三十瓶命奉繼孫金繼南兼司僕 《世祖實錄 卷第21, 31面》

성종 10년 1월 26일(계미)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성완(成完)·한환(韓權)·박임경(朴臨卿)·신윤중(申允宗)·김보침(金甫添)·강치서(姜致恕)·변정(邊靖)·이조양(李朝陽)·임보형(任甫衡)·백인규(白仁珪)·조말생(曹末生)·류숙(柳塾)·김이함(金理咸)·동심원(童深源)·안극상(安克祥)·최한백(崔漢伯)·이득수(李得壽)·한숙후(韓叔厚)·조지(趙祉)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고, 김수명(金秀命)·홍귀호(洪貴湖)·성계성(成

지충추원사 성종 때에 판중추부사로 치사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아들 세겸(世謙: 1430~1500)이 문과급제 후 좌의정, 우의정을 지내고 둘째 아들 세공(世恭: 1432~1486) 역시 형과 함께 문과 급제하여 성종 때에 호조, 병조, 형조, 공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세겸의 아들 맹렴(孟濂)의 처가 류숙과는 이종사촌간인 강희안(姜希顔: 父 姜碩德)의 딸로 혼맥이 연결되고 있다.

繼姓) · 문손(文孫) · 류갱생(柳更生) · 이운창(李允昌) · 박임정(朴林楨) · 남정(南鼎) · 양정명(梁井明) · 신현(申璜) · 김신(金新) · 강백진(康伯珍) · 구달충(具達忠) · 윤징(尹懲) · 봉원효(奉元孝) · 최효원(崔孝源)을 서용(敍用)하게 하였다.

○癸未○傳旨吏曹還給成玩韓懼朴臨卿申允宗金甫添姜致恕邊靖李朝陽任甫衡白仁珪耨末生柳塾金理咸童深源安克祥崔漢伯李得壽韓叔厚趙祉告身金秀命洪貴湖成繼姓文孫柳更生李允昌朴林楨南鼎梁井明申璜金新康伯珍具達忠尹懲奉元孝崔孝源敍用

《成宗實錄 卷第100, 12面》

성종 20년 10월 26일(경술)

“권감(權臧)의 전처(前妻) 류씨(柳氏)가 남천군(南川君)의 아내 최씨(崔氏)를 수양(收養)한 일을, 전일에 전하(殿下)께서 류씨의 아우 류양(柳壤)의 말을 옮겨 여기시고 최씨를 수양한 것 때문에 그의 노비(奴婢)를 주셨는데, 신이 그 문서를 고찰해 보건대, 최씨가 류씨의 복(服)도 입지 않았고 또한 권감의 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라고 하였으면서 그의 복을 입지 않아도 되겠으며, 그의 복을 입지 않았는데 수양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수양한 것이 아닌데 노비를 소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간(分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류양(柳壤) · 류숙(柳塾)이 이미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수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복을 입지 않은 죄를 다스리면 되지, 어찌 다시 분간해야 하는가?”

하자, 정석견이 아뢰기를,

“류양(柳壤)이 일찍이 그의 누이 류씨가 후손이 없으므로 고장(告狀)을 하여 송사 다툼을 하였고 또한 최씨를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류양의 말을 어떻게 취신(取信)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고찰할 만한 문안(文案)도 없는데 어찌 수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양한 것이 아닌데 그의 노비를 소득하게 됨은 매우 공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매, 정문형(鄭文炯)이 대답하기를,

“신이 평소에 권감(權臧)과 더불어 교분(交分)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양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홍응이 아뢰기를,

“이는 곧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니 분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만 복을 입지 않은 죄를 다스릴 뿐이지 또한 어찌 분간할 것이 있겠는가? 복을 입지 않은 죄를 그 때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유사(有司)의 잘못이다.”

하였다.

○庚戌權臧先妻柳氏收養南川君妻崔氏事前日 殿下以柳氏之弟柳壤之言爲是以崔氏爲收養給其奴婢臣按其文簿崔氏不服柳氏之喪又不服權臧之喪旣曰父母而不服其喪可乎不服其喪而謂之收養可乎非收養而得其奴婢可乎請改分揀 上曰柳壤柳塾旣以爲收養云爾則不可謂非收養也其不服喪之罪則可治之豈可改分揀乎錫堅曰柳壤曾以其妹柳氏無後告狀爭訟而又以崔氏爲收養則壤之言何足取信乎又無文案可考何以謂之收養乎非收養而得其奴婢甚未便 上顧問左右文炯對曰臣平日與權臧有交道未聞收養之事洪應曰此乃綱常所係不可不分揀 上曰但治不服喪之罪而已又何用分揀也不服喪之罪則其時不舉劾有司之過也

《成宗實錄 卷第233, 18面》

성종 20년 10월 27일(신해)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중략]

이세좌가 또 아뢰기를,

“남천군(南川君) 부인(夫人) 최씨(崔氏)를 권감(權臧)의 전처(前妻)가 수양(收養)했다는 일은 모름지기 다시 분간(分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일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류양(柳壤)과 류숙(柳塾)이 이미 모두 수양했다고 했었으니 수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무엇하러 다시 분간하겠는가?” 하였다.

○辛亥 御經筵講訖大司憲李世佐啓曰[中略]

世佐又啓曰南川君夫人崔氏權臧先妻收養事請須改分揀 上曰其事施行已久而柳壤柳塾旣皆以謂收養則不可謂非收養矣何用改分揀乎

《成宗實錄 卷第233, 19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선공감정공(繕工監正公) 류 오(柳 塢)

자 호와 생졸년이 전하지 않고 있다.

부지돈녕부사 류자해와 영상 심온(沈溫)의 따님인 청송심씨 사이에 4남으로 태어났다. 성종 원년에 벼슬이 선전관으로 제수된 것으로 보아 무과출신 같으나 자세한 기록이 없다. 성종 4년(1473) 상례(相禮) 진주류씨 족보에는 선공감정(繕工監正)으로 기록이고 실록 기록은 중종 29년 부장(部將)으로 나온다.

배위는 밀산군 박중손(朴仲孫 : 父 朴切問)¹²⁹의 따님인 밀양박씨로 슬하에 따

님 한 분을 두었으며 사위는 과평인 윤린(尹璘)인데 조카인 류순정과 함께 중종반정을 주도한 영의정 박원종(朴元宗 : 父 仲善)이 사위가 된다.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주부(注簿) 류오(柳塢)는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等)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注簿柳塢錄原從功臣二等

《世祖實錄 卷第2, 58面》

성종 원년 5월 26일(계묘)

○전에 전라도의 관찰사·절도사가 장영기(張永奇)를 잡는 데에 군공(軍功)이 있는 자 모두 1백 25명을 기록해서 계달하였다.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절도사(節度使) 허종(許琮)에게는 표리(表裏)와 안마(鞍馬)를 하사하고, 장흥부사(長興府使) 김순신(金舜臣)은 능히 적괴(賊魁) 장영기의 간 곳을 찾아서 고하였고, 또 도적과 힘써 싸워서 몸에도 화살을 맞아 그 공이 특별하니, 마땅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리소서. 그 나머지 1등은 두 계급을 뛰어 올리되, 그 가운데 계급이 높아 두 계급을 뛰어 올릴 수 없는 자는 모두 실직(實職)을 주고, 계궁(階窮)¹³⁰된 자는 당상관(堂上官)에 올리고, 당상관은 안마(鞍馬)를 하사하고, 2등으로 계궁되지 아니한 자는 한 계급을 올리고, 계궁된 사람 가운데 전함(前銜)이 있는 사람은 서용(叙用)하고, 준직(准職)되지 아니한 자는 벼슬을 올리고, 당상관은 숙마(熟馬)¹³¹ 한 필을 주고, 향리(鄉吏)와 공천(公賤)은 자신에 한(限)하여 역(役)을 면제하고, 중[僧人]과 사천(私賤)은 면포(綿布) 30필

129) 박중손(朴仲孫) : 1412~1466. 조선 세조 때의 문신. 자는 경운(慶胤) 호는 묵재(默齋) 백당(栢堂) 시호는 공효(恭孝) 본관은 밀양 문과에 급제 집현전에서 지제교 등을 거쳐 도승지 역임. 단종 원년(1453) 계유정난의 공으로 정난공신 2등 응천군(凝川君)에 봉하여졌으며 병조참판에 오르고 각 曹의 판서를 거쳐 좌참찬을 지냈다. 조부 박강생(朴剛生)의 처는 윤승경(尹承慶)의 딸로 류오의 조부 류이(柳怡)의 장인 윤승례(尹承禮)의 바로 위의 형이며 박중손의 큰 아들 박진(朴楫)의 장인 윤삼산(尹三山)의 조부가 윤승례의 둘째 형이 되며 윤삼산의 손녀서가 충정공 류빈(柳濱)이며 윤삼산의 사위 서림정(西林正 祗 : 父 誼城君 案, 祖 孝寧大君 補)의 사위가 류오의 재종제 류장손의 아들 류우(柳瑀)이다. 박중손의 둘째 아들 박미(朴楣 예조참의) 처는 류오의 아버지 류자해와 동서인 강석덕(姜碩德)의 딸로 혼맥이 이어진다.

130) 계궁(階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됨.

131) 숙마(熟馬) : 벼슬아치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숙마 일필 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주면, 받은 사람이 어느 때든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역에 내밀어 숙마 한 필을 얻어서 타게 됨.

을 주고, 3등은 계급되지 아니한 자는 계급을 올리고, 당상관은 아마(兒馬) 한 필을 주고, 향리와 공천(公賤)은 5년을 한하여 면제하고, 중·백정(白丁) 및 사천은 면포 15필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선전관(宣傳官) 류오(柳塢)로 하여금 허중(許琮)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고,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

○癸卯○先是全羅道觀察使節度使錄啓捕張永奇軍功凡一百二十五人 命院相議之申叔舟韓明澮具致寬崔恒曹錫文尹子雲議節度使許琮賜表裏鞍馬長興府使金舜臣能尋探賊魁張永奇去處以告又與賊力戰身且中矢其功特異宜加嘉善其餘一等超二階其中階高未得准超二階者弁授實職階窮者陞堂上官賜鞍馬二等未階窮者超一階階窮人內前銜則叙用未准職者陞職堂上官賜熟馬一匹鄉吏及公賤限己身免役僧人及私賤給緜布三十匹三等未階窮者加階堂上官賜兒馬一匹鄉吏及公賤限五年免役僧人白丁及私賤給綿布十五匹從之又以宣傳官柳塢與許琮同議措置賜熟馬一匹 《成宗實錄 卷第5, 24面》

성종 4년 12월 12일(무진)

상참(常參)을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笥子)를 올려 아뢰기를, “이제 통례원(通禮院)의 도력(都歷)¹³²⁾을 상고하건대, 상례(相禮)¹³³⁾ 류오(柳塢)가 지난 6월 29일에 이 직에 임명되어 병을 청탁한 것과 수유(受由: 정식으로 휴가를 받는 것)한 날을 제외하고 실지로 사진(仕進)한 것은 다만 17일 뿐인데, 직위(職位)와 녹(祿)을 탐하여 스스로 사퇴(辭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무릇 조정(朝廷)의 대소(大小) 예도(禮度)는 본래부터 맡은 바가 있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그 직무를 폐(廢)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훈귀 대신(勳貴大臣)이 혹은 노병(老病)으로 인하여 한가로이 집에 있으면서 녹(祿)을 먹는 이가 있으나, 류오(柳塢)같은 자는 백료(百僚)의 아래 집사(執事: 사무원)로서 국가에 무슨 공로가 있어 그 직무를 폐하고, 이와 같이 녹(祿)을 먹는 것이겠습니까? 대전(大典)에는 문관(文官)·무관(武官)이 병(病)으로 만 30일 쉰다면 산관(散官)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류오(柳塢)는 몇백 수십 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바라건대 파직(罷職)을 명하여 광관(曠官: 관직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음)·시록(尸祿)¹³⁴⁾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132) 도력(都歷):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기 위하여 관리의 근무 성적을 기록한 장부.

133) 상례(相禮): 조선조 때 통례원(通禮院)에 속했던 중3품의 관직. 제사나 조하(朝賀) 등의 일을 맡아 보았음.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戊辰 受常叅○御經筵○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劄子曰今考通禮院都歷相禮柳塢去六月二十九日授當職除稱病受由實仕但十七日而已貪位冒祿不自辭避覲然在職凡朝廷大小禮度自有職掌不可偃然在家而廢其職也今勳貴大臣或有老病居閑食祿者若塢百僚下執事之人有何勞於國家而闕其職食其祿如是乎大典文武官病滿三十日則作散今塢不仕幾百數十日乞命罷以爲曠官尸祿者之戒 從之

《成宗實錄 卷第37, 3面》

중종 29년 10월 26일(기미)

헌부가 아뢰기를,

“강화(江華)의 경재소 별감(京在所別監) 유계남(劉繼男)이란 자는 항상, 부장(部將) 조언침(趙彦琛)·조희영(趙希英)·류오(柳塢) 등이 회좌(會坐)한 곳에서 강화 부사를 헐뜯고 욕하였다고 합니다. 그뒤 아차산(峨嵯山) 타위를 마치고 환궁할 적에 부장(部將)들이 보니 유계남이 유관(儒冠)을 쓰고 상언(上言)을 올렸으며 뒷날 계남을 보고, 무슨 일로 상언을 올렸느냐고 부장들이 물으니, 자기가 충순위(忠順衛)에 있을 적에 가자(加資)한 자금을 도로 바치는 일로 상언을 올렸던 것인데 상언에 대한 조치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생이 아니면서 외람되어 유관을 쓰고 상언을 올렸던 것이며, 게다가 조치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행적이 수상합니다. 전일에 계하(階下)한 강화 수군(水軍) 등의 상언도 필시 이 자의 소행일 것으로 여겨 본부에서 추문하려 하고 있으나 다만 그가 한 상언만은 조옥(詔獄)에 내려 지금 추고하고 있으니, 조옥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문신의 정시에 대한 일은 이미 여러날 동안 친시(親試)하였고 이미 시험한 제술(製述)도 권장될 만합니다. 또 시험을 명하셨다고 하는데 그리 급하지 않은 일을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날 동안 친시하심은 매우 미안스러운 일이니 상께서 참작하여 하소서.”

하니, 수군 등의 일은 아뢴 대로 윤택하였고, 문신들에게 정시를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윤택하지 않았다.

○己未憲府啓曰今聞江華京在所別監稱號劉繼男者常於部將趙彦琛趙希英柳塢等會坐處誣毀江華府使乃於峨嵯山打圍還官時部將等見劉繼男着儒冠呈上言後曰部將見繼男問以何事呈上言乎答曰吾以忠順衛時加資還授事呈上言而上言不下云此人本非儒生假着儒冠呈上言更以不下言之形迹網繆前日啓下江華水軍等上言必此人所爲府欲推之但其上言下

134) 시록(尸祿) :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받아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시위 소찬(尸位素餐).

詔獄方推之請令詔獄并推此人文臣庭試事曾已累日親試已試之製亦可勸獎令聞又命試之此非汲汲之事累日冒寒親試至爲未安請自上斟酌水軍等事依啓文臣庭試事不允

《中宗實錄 卷第78, 16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생원공(生員公) 류한장(柳漢長)

공의 자 호 생졸년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성균사에 류자문과 경력 이인숙(李仁淑 父 蓴, 祖 嶷)의 따님인 우계이씨(羽溪李氏) 사이에서 큰 아들로 태어났으나 자녀를 두지 못했다.

공의 배위는 첨지중추원사에 오른 이우(李堦¹³⁵) 父 文烈公 李季甸)의 따님인 한산이씨이다. 이우의 조부 이종선(李種善)의 큰 형 이종덕(李種德)의 처가 안간공 류혜손의 딸이 되며 증조부 이색(李穡)이 류한장의 5대조인 류혜방의 동서이며, 이우의 사촌 형제인 이균(李均 父 李季町)의 아들인 군수 이선장(李善長)이 류한장의 여동생의 남편인 삼양정(三陽正) 이석동(李石童)의 사위로서 혼맥이 연결되어 지고 있다.

성종 4년 2월 21일(임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筵子)를 올리기를,
 “류자문(柳子文)은 사람됨이 탐탁(貪濁)하고 가혹하며 팽흔(復狠 : 마음이 비틀어 남을 잘 거스름)하고 사흉(邪譎 : 간사하고 속임)하니,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임소(任所)에 5, 6년 있는 동안에 가혹하게 수세(收稅)하여 원망을 사고 제 마음대로 불법(不法)을 행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드러나 추핵(推劾)한 것만도 마흔 가지가 넘으나, 날날이 두루 아뢰려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그 대략만을 거론합니다. 평양(平壤)·벽동(碧潼) 두 고을의 관비(官婢)를 간음하고 모두 아소(衙所)에 두어 관곡(官穀)을 앗아서 축내게 하고 관물(官物)을 훔쳐서 주었으며, 사전(私田) 수십 결(結)을 차지하고 관민(官民)과 우력(牛力)을 마음대로 징발하여 경작하고 수확해서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해마다 거둬들여 사사로이 팔았으며, 관비 7, 8명을 함부로 부려 길쌈을 시켜서 처첩(妻妾)을

135) 이우(李堦) : 1402~?. 조선 세조 때의 문신. 자는 명중(明仲) 본관은 한산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 사관을 지냈다. 세조 원년(1455) 주부로 좌익원종공신이 되었고 동왕 3년에 사예로 문과중시에 급제하였다. 공조참판, 첨지중추원사에 올랐다.

만족하게 하였으며, 남이 준 면포(綿布) 50필을 몰래 받아 면주(綿紬) 10필과 쌀 20석으로 바꿔서 자기 소유로 하였는데, 일이 이미 드러나게 되어 계책이 궁하고 형세가 급하니까 사돈인 이우(李堦)의 물건이라 핑계대었으나, 그 아들 류한장(柳漢長)이 그때 이우의 집에 있었으니 그 흠쳐 쓴 정적(情跡)을 숨기려 한 것이 분명하며, 또 부상(富商) 김장수(金長壽) 등 3인에게서 면포 1백 50필을 받고 한 필에 쌀 20두(斗)씩 값을 주었는데,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는 관용(官用)이라 핑계대었으니, 그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관인(官人)을 마음대로 다른 도에 보내어 어물(魚物)을 팔게 하고, 또 가동(家僮)을 시켜 촌락(村落)을 횡행하며 백성에게서 피물(皮物)을 빼앗아 오게 하였으며, 또 기관(記官) 오광문(吳廣文)이 자기에 대한 원망을 호소하니 형장(刑杖)을 치거나 속(贖)을 받아 법을 어겨서 침탈하여, 오광문으로 하여금 재산을 탕진하게 한데다가 이어서 집을 부수어 몹시 참혹하게 하였으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짝이 없습니다. 명백히 자기 소유로 한 것으로 말하면, 생견(生繭) 10석(碩)과 생사(生絲) 5근(斤)과 유기(鑰器) 4부(部)와 사기(沙器) 3백 20여 개와 쌀·소금·벼 각각 1석씩이며, 흠쳐 쓴 관물은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김맹규(金孟規)는 탐욕스럽고 음사(陰邪)하며 잔학하고 가혹하여, 백성의 물건을 노략질하고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관미(官米) 3석을 흠쳐서 몰래 서울 집으로 날라 왔는데 나타난 장물(贓物)이 명백합니다. 이 2인은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죄가 남을 것이고 천주(天誅)를 받지 않은 것만도 충분한데, 또 정률(正律)로 처리하지 않고, 다만 고신(告身)을 거두고 서용(叙用)만을 앞섰으니, 이것은 죄는 무겁고 율(律)은 가벼운 것이어서 장오(贓汚)를 징계하고 탐묵(貪墨)을 막는 것이 못됩니다. 신 등은 류자문(柳子文)과 김맹규를 율문(律文 《대명률(大明律)》)과 대전(大典)에 의하여 자자(刺字)·녹안(錄案)할 것을 청하였더니, 상량(商量)하시겠다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기쁨을 금치 못하며 부복(俯伏)하여 기다렸으나,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명(成命)을 받들지 못하니, 다시 번거로이 아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수령(守令)이 또 있을 것이니, 동시에 과죄(科罪)해야 하겠다.” 하였다.

○壬午御經筵○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劄子曰柳子文爲人貪濁苛酷愎狠邪譎小人之尤者也其在任所五六年之間掊克歛怨淫縱不法等事不可勝言其敗露推劾者亦不下四十條然不暇一一歷陳姑舉其略奸淫平壤碧潼兩官婢並畜衙所坐耗公廩盜給官物占私田數十結擅發官民牛力耕獲歲收花利販鬻私自濫使官婢七八名紡績織維以肥妻妾暗受他人贈給綿布五十匹轉換綿紬十匹米二十碩入己事已發露計窮勢迫托稱姻家李堦布物然其子漢長見在

李瑀之家則其盜用情跡欲蓋彌彰又陰受富商金長壽等三人綿布一百五十匹每匹給價米二十斗及事露則托稱官用其飾詐類如此擅發官人于他道與販魚物又縱家僮橫行村落奪民皮物又怒記官吳廣文訶己或杖或贖枉法侵責使廣文蕩盡財產繼之以破家苛刻慘酷毒民無比其明白入己者則生繭十碩生絲五斤鑰器四部沙器三百二十餘箇米塩稻各一碩盜用官物其數甚夥金孟規貪饕陰譎殘暴苛刻漁牟民物多行不義盜官米三碩潛輸京家見贓明白惟此二人雖置之極刑尚有餘辜其得這天誅足矣又不坐以正律只收告身不敘罪重律輕非所以懲賊汚杜貪墨也臣等曾請子文孟規依律文大典刺字錄案施行伏蒙 聖教商量不勝欣忭俯伏以待已踰旬日未奉成命敢再瀆以聞 傳曰如此守令又有之矣當同時科罪 《成宗實錄 卷第27, 6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증좌참찬공(贈左叅贊公) 류한평(柳漢平)

세조 10년(1464)~연산군 4년(1498)

공은 세조 10년에 사예공 류자문(柳子文)과 경력(經歷) 이인숙(李仁淑)의 따님인 우계이씨(羽溪李氏)의 2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의 억울한 탄핵의 혐의를 벗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결과 혐의를 벗어난 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후 연산군 4년(1498) 8월 29일 타계하니 당시 35세였다.

배위는 수군절도사 홍귀해(洪貴海 : 父 洪益生)의 따님인 남양홍씨(南陽洪氏)로 2남 2녀를 두었으며 큰 아들 인동(寅叻)은 진사이며 둘째 아들 진동(辰叻)은 공조 판서를 지냈다.

첫째 딸은 참봉 화순인 최감(和順人 崔堪) 둘째 딸은 목사 의령인 남치욱(南致勗)에 출가했다. 그 아들 남언경(南彦經)¹³⁶이 선조 때의 학자이다.

성종 13년 7월 22일(기축)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 ·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에 한재가 날로 심하여 신 등이 자나 깨나 생각해 보니, 오늘날의 재앙은 진실로 신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면 비가 내리

136) 남언경(南彦經) : 字 시보(時甫) 호는 동강(東岡). 조선 선조 때의 학자. 본관은 의령. 남치욱(南致勗)과 류한평(柳漢平)의 따님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柳氏는 죽당 류진동의 누이 동생이 된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기용되어 사헌부집의, 공조참의를 지냈다. 조선 최초의 양명학(陽明學)을 시작한 학자로서 일생을 학문연구로 보냈다. 퇴계집에 서간문이 보이고 있다.

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재이(災異)로 인하여 삼공(三公)의 책임을 면(免)한 것은 한(漢)나라 이래로 모두 있었으니, 이른바 재이(災異)란 것이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감히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건원(乾元 : 천도(天道))을 본받는 것은 임금의 직분이고, 건원을 조섭(調攝)하는 것은 재상의 직책이다.’고 하였으니, 허물은 진실로 나에게 있고 경 등에게 있지 아니다. 만기(萬幾)의 정사가 어찌 잘못된 것이 없겠는가?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들이 마땅히 말하여,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같이하여 공구수성(恐懼修省)하면 하늘을 감격시킬 도리가 있을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중략]

○류자문(柳子文)이 장죄를 범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심회·윤필상·홍응·윤호·강희맹·이극증이 의논하기를,

“류자문이 범한 바는 유기(鑰器) 등의 물건을 무역(貿易)한 것과 숙귂(熟繭 : 익힌 고치) 두 섬을 관아(官衙)에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일이 장오(贓汚)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유(赦宥)가 지나서 죄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장안(贓案)에 기록되었으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윤사흔·노사신·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그 아들 류한평(柳漢平)이 상언(上言)한 가운데, ‘벼[租]를 주고 고치[繭]를 무역한 문기(文記)를 당초 추고(推考)할 때에 마침 잃어버리고 바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글을 보니 뒤에 만든 글은 아닌 듯합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한명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

○己丑領議政鄭昌孫左議政尹弼商右議政洪應來啓曰邇來早災日甚臣等寤寐思之今日之災實由臣等若代以他人庶幾致雨古以災異責免三公自漢以下皆有之所謂災異孰加於此敢請 傳曰古云體元者人主之職調元者宰相之職咎實在予不在卿等萬幾之政豈無闕失若有所失卿當言之君臣同心恐懼修省則庶有格天之理其勿辭職[中略]

○議柳子文犯贓事昌孫沈澮弼商洪應尹壕希孟克增議子文所犯如鑰器等物貿易及熟繭二碩納衙事干贓汙雖以經赦免罪而已錄贓案不可輕赦明澮士昕思慎克培議其子漢平上言內給租貿繭文記當初推考時適失之不納今觀此文似非追述之書令該司更覈何如 從明澮等議

《成宗實錄 卷第143, 30面》

성종 20년 2월 15일(계묘)

○처음에 류한평(柳漢平)이 상서(上書)하여 그 아버지 류자문(柳子文)이 숙천 부사

(肅川府使)가 되었을 때에 범장(犯贓)하여 녹안(錄案)된 억울함을 호소하니, 명하여 관리를 보내어 다시 허실(虛實)을 핵실하여 오게 하였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류자문(柳子文)이 범장(犯贓)한 숙견(熟繭)과 인중사(引中絲)는 일에 관련된 각 사람을 여섯 차례 형신(刑訊)하니, 모두 말하기를 자신에게 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유행기(鎗行器)와 유우자(鎗孟子) 각 2부(部)는 시집가지 아니한 딸의 유모(乳母)가 사사로이 모은 지공 미면(支供米糶)도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官) 안의 미면을 자식의 양식이라고 칭탁하고서 함부로 장사하는 사람〔興利人〕에게 주어서 유기(鎗器)와 바꾸었으니 이는 바로 관물(官物)을 남용(濫用)한 것인데, 류자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녹안(錄案)해야 합니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송영(宋瑛)·한언(韓堰)·김극검(金克儉)이 의논하기를,

“현재 수령(守令)의 용렬한 무리가 아중(衙中)의 노비에게 지공(支供)하는 쌀을 지나치게 주므로 노비가 그 먹는 것을 줄여서 남는 것으로써 사사로이 의복(衣服)을 사는 자가 있으니, 그 지나치게 주는 것은 바로 수령의 죄이나, 노비가 사사로이 의복을 사는 것은 수령이 혹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지나치게 준 죄를 논하면 비록 장죄(贓罪)로 좌죄(坐罪)할지라도 과하지는 아니하나, 만약 사사로이 산 것을 알지 못한 일을 정장(正贓)으로 단정하는 것은 애매할 듯합니다. 류자문(柳子文)의 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안(贓案)¹³⁷에서 삭제(削除)하라.” 하였다.

○癸卯○初柳漢平上書訴其父子文爲肅川府使時犯贓錄案之寃 命遣官更覈虛實以來義禁府啓子文犯贓熟繭及引中絲事干各人六次刑訊皆云不入已而鎗行器鎗孟子各二部則未嫁子息乳母私蓄支供米糶所買也然官中米糶托以子息糧料濫授興利人貿換鎗器卽是濫用官物不宜以子文爲不知錄案仍舊 命承政院議之宋瑛韓堰金克儉議見今守令庸劣之徒濫給衙中奴婢支供之米奴婢省其食以所餘私貨衣服者有之其濫給乃守令之罪而奴婢之私貨衣服守令或未之知焉論其濫給之罪雖坐以贓未爲過也而若不知私貨之事則斷以正贓似乎曖昧子文之事正類於是 傳曰削贓案

《成宗實錄 卷第225, 10面》

137) 장안(贓案) :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음. 장오인 녹안(贓汚人錄案).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참봉공(參奉公) 류장손(柳長孫)

공의 자 호는 전해오지 않으며 세종 20년(1438)에 홍문정자공(弘文正字公) 류자행(柳子行)과 참의(參議)를 지낸 송준(宋僑 父 宋寔, 祖 匡祐)의 딸인 진천송씨 사이에 맏 아들로 태어났다. 동생은 중손(仲孫)이다.

진천송씨의 외조부는 태종(太宗)의 비(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으로 민무구 민무질 옥(閔無咎獄)¹³⁸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민무홀(閔無恤)¹³⁹이다. 이 옥사는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으며 여흥민씨 가문 뿐 아니라 사위인 송준의 일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결국 류장손의 어머니 송씨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 부자 양대가 학문은 할지언정 권력을 멀리하고 벼슬길은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민무홀의 매부가 태종과는 동서지간인 노한(盧閑)으로 류자해(柳子偕)와 동서되는 노물재(盧物載)의 아버지이며 민무홀의 장인은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 父 仁敏)으로 동생 이수(李穗)의 아들 이건기(李堅基)가 청백리공 류겸(柳謙)의 사위로 연결되며 민무홀의 재취 부인은 우계이씨(羽溪李氏)로 이만(李蔓)의 따님인데 아들 이인숙(李仁淑)의 사위가 류자행의 종형제인 류자문(柳子文 父 柳悅)으로 혼맥이 연결된다.

민무홀의 형 민무질(閔無疾)¹⁴⁰의 처가 청주한씨로 한상환(韓相桓)의 딸인데 류이의 장인 윤승례의 형 윤승순(尹承順)의 사위다.

류자행의 장인 송준(宋僑)의 아버지 송진의 형이 송흥(宋興)으로 사위가 토봉

138) 민무구 옥(閔無咎獄) : 조선 태종(太宗) 때 민무구·무질(無疾)에 관한 옥사(獄事).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인 이들 두 형제가 종친(宗親)간의 이간을 꾀한 일로 이화(李和) 등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왕명(王命)에 의하여 사사(賜死)되었다. 《燃藜室記述2, 太宗朝故事本末, 閔無咎獄》丁亥秋, 三功臣會議閔無咎·無恤之罪, 判禮賓朴崙, 病未參. 臺諫論豈黨無咎兄弟, 稱疾不預, 請緘問. 守直吏卒, 一時具至, 被囚卽釋.

139) 민무홀(閔無恤) : ?~1416. 조선 태종(太宗) 때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제(霽)의 아들. 태종의 비(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 태종 3년(1403) 사은사(謝恩使)로 명(明)나라에 다녀 와서 여원군(驪原君)에 봉하여지고 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동왕 15년 무구(無咎)·무질(無疾) 두 형이 죄 없이 죽었다 하여 불충(不忠)한 말을 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해풍(海豐)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원주(原州)에 옮겨진 뒤 그 곳에서 자살하였다. 《朝鮮太宗實錄》

140) 민무질(閔無疾) : ?~1410. 조선 태종(太宗) 때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제(霽)의 아들. 태종의 비(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여성군(驪城君)에 봉하여졌다. 태종 3년(1403) 예문관 총제(藝文館總制)로 있을 때 송판(宋板) 시전(詩傳)을 자본(字本)으로 하여 동활자(銅活字 : 癸未字)를 만들었으며, 우군 도총제(右軍都總制) 등을 지내고 사은사(謝恩使)로 명(明)나라에 다녀 왔다. 형 무구(無咎) 및 신극례(辛克禮) 등과 함께 종친(宗親)간의 이간을 꾀하였다가 이화(李和) 등의 탄핵으로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진주류씨의 류종식(柳宗植 父 柳依)으로 토봉 진주류씨와 이봉 진주류씨와의 간접 통혼관계가 이 가문에서도 보이고 있다.

류장손은 비록 벼슬은 나가지 않았으나 학덕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공의 묘갈문(墓碣文)을 목계 강혼(姜渾)이 찬문한 것을 보아 덕망있는 선비와의 교류관계가 돈독했던 것 같다. 강혼은 공과 재종질 관계인 정국공신으로 영의정에 오른 류순정(柳順汀)과 동방급제로 점필재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한 동문으로 류순정의 신도비도 찬문하였다. 류장손의 배위는 우효정(禹孝精 父 良壽, 祖 좌정승 仁烈)의 따님인 단양우씨이며 단양우씨의 외조부는 거창신씨로 신언(愼言 父 이천군수 以衷)이다. 우효정의 증조부는 시중 우복생(禹福生)으로 처가 류지정(柳之涇)의 딸로 토봉 진주류씨로 상계의 혼맥을 엮을 수 있다 하겠다. 거창신씨 족보에 신언의 형 신기(愼幾)의 사위에 류균의 장인 한혜(韓惠)가 기록되고 셋째 아들 신선경(愼先庚)의 사위로 류중손(柳仲孫)이 기록되어 있다.

단양우씨 사이에 사직 참봉 우(瑀)와 증 이조참의 완(琬) 송화현감 여(璵)의 삼형제를 두었다. 민무홀의 생질이며 태종 둘째 왕자인 효령대군 계열의 전주이씨에서 큰 아들 우와 둘째 아들 완은 결혼을 하였다. 우의 장인은 서림정(西林正) 저(低)이며 완의 장인은 의성군(誼城君) 채(宋 父 孝寧大君 補)이며 아들 광조(光祖)의 처부(妻父)는 공산군(公山君) 우(祐 父 嘉林君 秋)로 태종의 또다른 왕자인 경령군 비(敬寧君 裊)의 손자이다.

성종 13년 7월 7일(갑술)

○형조(刑曹)에 전지하여, 조유(趙瑜)·이숙비(李叔菲)·류장손(柳長孫)·김복상(金卜尙)·김복지(金卜只)·이승종(李承宗)·주근(朱斤)·배석산(裴石山)·오율산(吳栗山)을 석방하게 하였다.

○甲戌○傳旨刑曹放趙瑜李叔菲柳長孫金卜尙金卜只李承宗朱斤裴石山吳栗山

《成宗實錄 卷第143, 7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좌통례공(左通禮公) 류중손(柳仲孫)

자와 호 및 생졸년은 전하지 않고 있다.

홍문정자(弘文正字) 류자행(柳子行)과 송준(宋僞: 父 宋寔)의 따님인 진천송씨(鎭川宋氏)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송씨의 외조부는 여원군(驪原君) 민무홀(閔無恤)인데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 된다.

공은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냈으나 후에 후손들의 현달로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에 추증되었다.

배위는 신선경(愼先庚：父 愼幾)의 따님인 거창신씨(居昌愼氏)로 수(璿)와 장(璋)의 두 아들과 사위로 전주이씨 보은수(報恩守) 이극창(李克昌)이다.

예종 원년 2월 11일(병신)

추천령(楸川令) 이승덕(李崇德)이 일찍이 이웃 사람인 류중손(柳仲孫)의 가비(家婢)와 간통을 하여, 그 부친상(父親喪)을 당하고도 오히려 상중(相從)을 하여 임신(妊娠)하기에 이르렀고, 세조(世祖)의 상(喪)에 미쳐서도 여전히 가까이 하였으므로, 종부시(宗簿寺)에서 핵실(覈實)하여 아뢰었다. 임금(李)이 승정원에 물으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상중(喪中)에 동학정(東鶴正) 이기(李頎)가 범간(犯奸)을 하여, 희천(熙川)에 유배(流配)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승덕은 부친의 상중에 있는데다가 국휼(國恤：국상(國喪))을 만났는데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동학정이 이기에게 비하겠는가? 마땅히 중죄에 처해야 할 것이나, 우선 고신(告身)을 거두고 원방(遠方)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丙申楸川令崇德嘗奸隣人柳仲孫家婢丁父憂猶相從乃至有娠及世祖之喪仍私焉宗簿寺覈啓 上問於承政院政院啓曰 昭憲王后之喪東鶴正頎以犯奸配熙川 傳曰崇德有父喪兼遭國恤宣淫不已豈頎之比也可置重罪姑收告身安置遠方 《睿宗實錄 卷第3, 25面》

연산군 2년 7월 25일(경오)

○이조에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한치례(韓致禮) ·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 · 좌참찬(左參贊) 류지(柳輕) · 청원군(淸原君) 한서귀(韓瑞龜) · 하남군(河南君) 정승조(鄭崇祖) · 낭성군(琅城君) 한보(韓堡) · 곤산군(昆山君) 배맹달(裵孟達) · 청천군(淸川君) 한환(韓權) · 제주목사 정인운(鄭仁耘) · 여양부정 자겸(呂陽副正子謙) · 보안부정 수남(保安副正壽男) · 좌통례(左通禮) 박임종(朴林宗) · 부정(副正) 류백손(柳伯孫) 등에게 각각 한 자급씩 올려 주고, 준직을 받지 못한 공신(功臣) 직장(嫡長)인 조종효(趙宗孝) · 박윤(朴綸) · 민함(閔涵) · 이치남(李治南) · 정성(鄭晟) · 윤성인(尹成仁) · 윤중손(尹宗孫) · 김효충(金孝忠) · 윤계선(尹繼先) · 이창윤(李昌胤) · 조희보(趙熙保) · 류중손(柳仲孫) · 김약균(金若均) · 윤반

(尹礪) · 양원(梁瑗) · 이월(李越) · 홍약충(洪若衷) · 정윤증(鄭胤曾) · 김화(金渾) · 설주(薛柱) · 송호(宋瑚) · 장자은(張子殷) · 조윤선(趙允瑄) · 정제(鄭濟) · 김문경(金文卿) · 황자중(黃自中) 등은 결원이 나는 대로 차례차례 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병조에 전교하기를,

“공신의 적장인 행부호군(行副護軍) 임사홍(任士洪) · 행사맹(行司猛) 황기필(黃耆弼)에게 각각 한 자급씩 올려 주라.” 하였다.

○庚午○傳于吏曹曰判敦寧府事韓致禮巴山君趙得琳左叅贊柳輕清原君韓瑞龜河南君鄭崇祖琅城君韓堡昆山君裴孟達清川君韓權濟州牧使鄭仁耘呂陽副正子謙保安副正壽男左通禮朴林宗副正柳伯孫等各加一資未受准職功臣嫡長趙宗孝朴輪閔涵李治南鄭晟尹成仁尹宗孫金孝忠尹繼先李昌胤趙熙保柳仲孫金若均尹礪梁瑗李越洪若衷鄭胤曾金渾薛柱宋瑚張子殷趙允瑄鄭濟金文卿黃自中等隨闕次次准職除授傳于兵曹曰功臣嫡長行副護軍任士洪行司猛黃耆弼各加一資
《燕山君日記 卷第16, 15面》

백곡집 권삼(栢谷集 卷三)

《韓國文集叢刊 48卷, 栢谷集 459 A》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전적공(典籍公) 류 정(柳 貞)

성종 22년(1491)~명종 4년(1549)

자는 복원(復元)이며 증 형조참의 류자공(柳自恭)과 판관(判官) 장전(張全)의 따님으로 단양장씨에서 태어났다.

중종 11년(1516) 생원 중종 14년(1519) 문과급제, 승문원 정자 제수, 기묘사화로 파직 충주 금천리로 낙향하여 일사(逸士)로 있던 중 서경덕(徐敬德) 남명(南冥) 조식(曹植) 성수침(成守琛)과 함께 천거되었으며 성균관 전적에 제수, 이홍윤의 사건에 연루되어 8차례의 모진 고문 끝에 권정에서 별세하였으나 공의 문하에서 수학한 아들 승선과 조카인 순선, 종선 등이 문과 급제를 이룩하는 결실을 보았다.

배위는 사축(司畜) 김세환(金世琬 父 郡守 金仲訥)의 따님인 진산김씨(善山金氏)로 승선(崇善) 승선(承善) 두 아들과 사위 이세인(李世仁)이 있다.

中宗己卯十四年賢良科榜

一等 一人

掌令 金湜(淸風人)

二等 一人

佐郎 趙佑(漢陽人)

三等 二十六人

佐郎 李延慶(廣州人), 生員 安處謹(順興人), 進士 金明胤(光州人), 生員 安珽(順興人), 進士 安處謙(順興人), 生員 權碩(安東人), 進士 申潛(高靈人), 正郎 鄭浣(延日人), 佐郎 閔懷賢(驪興人), 幼學 安處誠(順興人), 持平 朴薰(密陽人), 進士 金鈇(安東人), 幼學 申導美(平山人), 叅奉 金神童(光州人), 進士 姜隱(晉州人), 前叅奉 房貴溫(南陽人), 生員 柳貞(晉州人), 生員 朴公達(江陵人), 幼學 李阜(固城人), 前直長 金大有(金海人), 幼學 都衡(八莒人), 正郎 宋好智(礪山人), 縣監 閔世貞(驪興人), 直長 金顛(尙州人), 進士 慶世仁(淸州人), 進士 李翎(咸安人), 武壯前內禁 鄭璘

중종 35년 7월 16일(을사)

○상이, 동반(東班)은 정3품 이상, 서반(西班)은 2품 이상에게 각각 일사(逸士)를 천거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윤은보는 진사 김사근(金思謹)을 천거하고, 좌의정 홍언필은 생원 권습(權習)을 천거하고, 좌찬성 소세양은 생원 최계성(崔繼成)과 최언충(崔彦冲)을 천거하고, 우찬성 윤인경(尹仁鏡)은 진사 남세빈(南世贇)을 천거하고, 한성부 판윤 김안국(金安國)은 생원 서경덕(徐敬德) 성리학에 밝았고 또 부모의 상에 여막(廬幕)을 지어 3년을 지내면서 능히 성효(誠孝)를 다하여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과 유학(幼學) 류인선(柳仁善) 효도로 소문이 나서 정문(旌門)을 세웠다. 을 천거하고, 형조 판서 류인숙(柳仁淑)은 유학 성수침(成守琛) 과거에 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과 진사 조성(趙晟)을 천거하고, 형조 참판 김정국(金正國)은 전 별좌(別坐) 우성훈(禹成勳)과 유학 김취성(金就成)을 천거하고, 형조 참의 채세걸(蔡世傑)은 유학 신덕응(申德應)과 진사 윤내신(尹來莘)을 천거하고, 예조 참의 이찬(李滌)은 생원 권습과 유학 성수침을 천거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는 생원 정세구(鄭世球)와 유학 신덕응을 천거하고, 부제학 김만균(金萬鈞)은 생원 이세명(李世鳴)과 류정(柳貞) 기묘년에 천거과(薦舉科)로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가 사화가 일어난 후 다시 과거 볼 뜻이 없었고 벼슬을 구하지도 아니했다. 을 천거하고, 병조 참판 신광한(申光漢)은 유학 성수침과 생원 윤우형(尹友衡)을 천거하고, 공조 참판 홍경림(洪景霖)은 진사 권습과 이충남(李冲南)을 천거하고, 병조 판서 류관(柳灌)은 생원 신백령(辛百齡)과 전 찰방 이이건(李以乾)을 천거하고, 병조 참의 박우(朴祐)는 유학 성수침과

정심(鄭深)을 천거하고, 병조 참지(參知) 이임(李霖)은 유학 성수침과 조식(曹植)을 천거하고, 대사성 이언적(李彦迪)은 유학 김취성과 조식을 천거하고, 판결사(判決事) 김수성(金遂性)은 진사 정취(鄭聚)와 경수문(慶秀文)을 천거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벌(權撥)은 생원 금축(琴軸)과 유학 이희안(李希顔)을 천거하고, 공조 판서 윤임(尹任)은 진사 신주(申鑄)와 권지(權軹)를 천거하고, 한성부 우윤 한윤창(韓胤昌)은 충순위(忠順衛) 이공구(李公矩)를 천거하고, 좌참찬 이귀령(李龜齡)은 생원 안백증(安伯增)과 유학 성수침을 천거하고, 대사헌 남효의(南孝義)는 생원 정홍익(鄭弘翼)을 천거하고, 상호군(上護軍) 원팽조(元彭祖)는 여절교위(勵節校尉) 이문간(李文幹)과 유학 양운보(梁允補)를 천거하고, 예조 판서 정옥형(丁玉亨)은 유학 류인선(柳仁善)과 생원 김지손(金智孫)을 천거하고, 대사간 최보한(崔輔漢)은 생원 최여주(崔汝舟)와 진사 남세빈(南世贇)을 천거하고, 동지중추부사 남세웅(南世雄)은 진사 정기(鄭耆)를 천거하고, 상호군(上護軍) 이기(李芑)는 진사 이고(李皐)를 천거하고, 호조 판서 조계상(曹繼商)은 생원 안순(安珣)과 정기를 천거하고, 호조 참판 김섭(金銛)은 유학 남순손(南舜孫)과 윤세신(尹世愼)을 천거하고, 호조 참의 장적(張籍)은 전 직장(直長) 김대유(金大有)와 진사 양담(梁澹)을 천거하고, 상호군 방호의(方好義)는 유학 류인선과 홍덕윤(洪德潤)을 천거하고, 상호군 이현보(李賢輔)는 생원 박형(朴珩)을 천거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일사를 빠뜨리지 않고 향리에서 천거해 등용하는 것은 왕정의 중대한 일이다. 기묘년(중종 14, 1519)에 현량과(賢良科)를 두어서 많은 인재가 흥기하여 불만했었는데 사림의 화가 이로 말미암아 격렬하게 일어났으니, 이는 소인들에게 분노를 많이 샀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에 일사를 천거하라고 명하여 40여명에 이르렀으니 이 역시 매우 많다. 다만 천거를 받은 자들 모두가 참으로 자수(自守)하는 선비로서 국가에서 어진 이를 구하는 아름다운 뜻에 부응할 수 있을지? 천거에 든 자가 혹은 책임자가 아니어서 물고기 눈알이 구슬에 섞였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이는 곧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말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乙巳○上命東班正三品以上西班二品以上各舉遺逸之士領議政尹殷輔薦進士金思謹左議政洪彦弼薦生員權習左贊成蘇世讓薦生員崔繼成生員崔彦冲右贊成尹仁鏡薦進士南世贇漢城府判尹金安國薦生員徐敬德明於性理之學又善居喪廬墓三年克盡誠孝人咸服之幼學柳仁善以孝聞旌其門刑曹判書柳仁淑薦幼學成守琛不應舉有操守進士趙晟刑曹叅判金正國薦前別坐禹成勳幼學金就成刑曹叅議蔡世傑薦幼學申德應進士尹來莘禮曹叅議李潔薦生員權習幼學成守琛領中樞府事柳溥薦生員鄭世球幼學申德應副提學金萬鈞薦生員李世鳴生員柳貞

己卯年以薦舉科爲承文院丁字見敗之後更無應舉之志亦不求任兵曹叅判申光漢薦幼學成守琛生員尹友衡工曹叅判洪景霖薦進士權習進士李冲南兵曹判書柳灌薦生員辛百齡前察訪李以乾兵曹叅議朴祐薦幼學成守琛幼學鄭深兵曹叅知李霖薦幼學成守琛幼學曹植大司成李彦迪薦幼學金就成幼學曹植判決事金遂性薦進士鄭聚進士慶秀文知中樞府事權櫟薦生員琴軸幼學李希顏工曹判書尹任薦進士申鑄進士權軹漢城府右尹韓胤昌薦忠順衛李公矩左叅贊李龜齡薦生員安伯增幼學成守琛大司憲南孝義薦生員鄭弘翼上護軍元彭祖薦勵節校尉李文幹幼學梁允補禮曹判書丁玉亨薦幼學柳仁善生員金智孫大司諫崔輔漢薦生員崔汝舟進士南世贊同知中樞府事南世雄薦進士鄭耆上護軍李芑薦進士李阜戶曹判書曹繼商薦生員安珣生員鄭耆戶曹叅判金銛薦幼學南舜孫幼學尹世慎戶曹叅議張籍薦前直長金大有進士梁澹上護軍方好義薦幼學柳仁善幼學洪德潤上護軍李賢輔薦生員朴珩史臣曰不遐遺揚側陋王政之大務己卯之時有薦舉之科人才之盛蔚有可觀而士林之禍職此而烈慍于羣小爲崇大矣今者命舉遺逸薦至四十餘人亦至盛矣但所薦者皆眞自守之士而允副國家求賢之美意乎叅薦者或非其人魚目混珠之議則稱非其人亦云不任寧無愧乎 《中宗實錄 卷第93, 48面》

명종 즉위년 8월 1일(신묘)

영의정 윤인경(尹仁鏡)¹⁴¹, 좌의정 류관(柳灌)¹⁴²이 왕대비에게 아뢰기를,
 “어제 내시와 의녀(醫女)를 내보내라 명하셨는데 의녀가 없으면 내간(內間)의 안부를 들을 수가 없으니 때때로 출입하게 하소서. 또 죽을 간혹 드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 옥체를 보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간병(看病)하실 때부터 기력이 크게 상하셨으니 모름지기 대행대왕의 유교(遺敎)를 따르고 백성들을 유념하여 옥체를 보증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은 민망스럽고 염려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아뢰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내 기력이 안정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외부인을 드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편하거든 불러도 될 것이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죽을 먹을 뿐이다.” 하였다.[중략]

141) 윤인경(尹仁鏡) : 1476~1548.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경지(鏡之) 시호는 효성(孝成) 본관은 파평. 중종 1년(1506) 별시문과에 급제. 학록(學錄) 도승지, 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고 인종(仁宗) 때에 좌의정을 지내고 영의정이 되었다. 명종 때 위사공신(衛社功臣) 1등으로 파성부원군(坡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42) 류관(柳灌) : 1484~1545.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관지(灌之) 호는 송암(松庵) 시호는 충숙(忠肅) 본관은 문화. 문과에 급제. 중종 4년(1509)에 정언, 판서 등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경계를 엄히 하였다. 인종 때에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고 명종 때 을사사화로 인하여 귀양가던 도중 과천에서 사사되었다. 선조 때에 신원되어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송암집이 있다.

○윤인경과 류관이 아뢰기를,

“대행왕께서 임종하실 때에 천거과를 복구하라 하셨으니 지금 그들을 거두어 등용해야겠는데 그 관직이 참상(參上)으로 있던 자는 그대로 등용하고 6품이 되지 못한 자는 역시 분관(分館)¹⁴³함이 가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람들은 추방된 지 이미 27년이나 되어 나이가 매우 많은데 지금 분관한다면 국가에서 거두어 쓰는 본의가 없습니다. 진실로 어진이가 있다면 속히 등용함만 못하니 곧바로 6품직에 제수하소서. 그리고 이것은 신은(新恩: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예이니 정조(政曹)에 상피(相避)되는 자가 있더라도 논하지 말고 전원을 부록(付祿: 녹이 있는 관직에 배속시킴)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참상자라고 한 것은 조우(趙佑)·이연경(李延慶)·김익(金錫)·이부(李阜)·박공달(朴公達)·김대유(金大有)·도형(都衡)·김용(金顛)이고, 참하관은 안정(安珽)·신준(申遵)·김신동(金神童)·강은(姜灑)·류정(柳貞)이다.

사신은 논하다 : 대신이 이렇게 아뢴 것은 옳다. 바야흐로 임금은 어리고 국가는 위태로운 시기를 당하여 마땅히 어진이를 불러 첫 정사를 함께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자격에 구애되어 일찍 등용하지 않음으로써 선왕이 임종시에 내린 명과 온 나라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서용할 때에 버려두어 그 직임을 얻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여 그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린 임금의 처음 정사에 성실하지 못함을 보여 천리 밖으로 사람을 물리치니, 슬프다. 인묘(仁廟)가 임종할 때에 현량과를 회복하라고 명하여 상이 즉위하여 그 무리들을 모두 제수하기는 했으나 이미 시사(時事)가 변하였으니 현명한 자라면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분분하게 부름에 나아가서 흑시라도 미치지 못하면 어찌나 하였다. 거취를 결연하게 한 자는 이연경(李延慶)·김대유(金大有) 등 2~3명 뿐이었다.

대유는 청도군(淸道郡) 사람인데 기묘년의 화를 당한 이후부터 세상 일을 물리치고 운문산(雲門山) 아래서 한가하게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단정히 살아가니 의연하게 법도가 있었다. 때로 사냥을 나가더라도 하면 사냥꾼과 사냥을 함께 겨루고는 그 사냥감을 나누어서 이웃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소명을 받자 재촉하여 행장을 꾸려 종자 십여 인을 데리고 식량도 휴대하지 않은 채 길을 떠났다. 어떤 자가 길은 먼데 식량이 떨어지면 무엇으로 식사를 이을 것이냐고 묻

143) 분관(分館) : 조선 시대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속시켜 일정 기간 일을 익히게 하는 일.

자, 대우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국가에서 우리들을 오랫동안 폐하였다가 기용하여 이미 현관(顯官)에 제배(除拜)했으니 법으로 당연히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고 서울에 가면 많은 녹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식량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가?’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했다. 하루에 백 리를 달려 여사(旅舍)에서 묵으면서 종자들에게 말하기를 ‘한가한 생활에 익숙해진 지가 이미 오래였다가 갑자기 먼 길을 가게 되니 내가 병이 나서 갈 수가 없다.’ 하고, 드디어 가마를 타고 되돌아 와서는 문밖 출입도 하지 않고 죽었다.

辛卯朔領議政尹仁鏡左議政柳灌啓 王大妃曰昨日命出內侍醫女無醫女則內間安否不可得聞請令時時出入且粥飲雖或進之豈可以此支保非徒已踰一月自初侍病氣已大傷須從大行王遺教念其民事勉進軟飯自保何如臣等不勝悶慮敢啓 答曰今則予氣平矣何必使外人出入乎不平則可招矣食不易下故進粥矣[中略]

○仁鏡灌啓曰 大行王臨終命復薦舉科今當收用其職在叅上者固當仍用未出六品者亦可分館矣但此人等投散已二十七年年齒甚高今若分館則無國家收用之意苟有賢者不如速用請直叙六品職且是新恩之例勿論政曹相避盡數付祿何如答曰並如啓其云叅上者趙佑李延慶金鈇李阜朴公達金大有都衡金顥叅下安珽申遵美金神童姜聽柳貞也

史臣曰大臣此啓是也方主少國疑之時所當收召賢俊以共初政豈可拘於資格用之不早以負 先王憑几之命一國士林之望乎奈何叙用之際或有置之而未得其職遠之而未得其地乎幼冲初政示以不誠拒人於千里之外嗟乎 仁廟大漸之時命復賢良科 上之卽位盡叙其流而時事已變明者可觀而紛紛赴召如或不及決於去就者李延慶金大有等數三人而已大有清道郡人也自經己卯之禍屏去雲門山下囂然自得不求聞達閉戶端居毅然有法時或出獵與虞人並坐較獵既分而盡與隣人不食其肉及聞召命促糒率其趨從十數不齎其糧而行或者告以道遠絕糧何以繼之大有悠然而笑曰國家起我輩於久廢之中已爲除拜縣官法當繼食至於京師可受厚祿何憂絕糧人莫測其由一日馳往百里宿于旅亭語其從徒曰習閑已久遽作遠行我疾作不可以行矣遂乘輿而返仍不出門而卒 《明宗實錄 卷第1, 35面》

명종 즉위년 8월 2일(임진)

○윤여필(尹汝弼)을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으로, 심강(沈綱)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으로 삼았다. -강(綱)은 참판 심연원(沈連源)의 아들인데 처음에는 대군(大君 : 즉 지금 임금) 부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활인서 별좌(活人署別坐)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왕비의 아버지로서 관례에 따라 이 관직에 제수되었다. -원혼(元混)을 예조 참의로, 박광우(朴光佑)를 사간원 사간으로, 이수경(李首慶)을 홍문관 교리로, 민기(閔箕)를 부교리로, 이부(李阜)를 병조 좌랑으로, 김대유(金大有)·류정(柳貞)·김웅(金顥)·안정(安珽)을 성균관 전적으로, 김신동(金神童)을 종부시 주부로, 김익

(金鈇)을 전생서 주부(典牲署主簿)로, 김익수(金益壽)를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壬辰○以尹汝弼爲坡平府院君沈綱爲領敦寧府事青陵府院君綱叅判沈連源之子初以大君即今上夫人之父爲活人署別坐今以王妃之父例授是職元混爲禮曹叅議朴光佑爲司諫院司諫李首慶爲弘文館校理閔箕爲副校理李阜爲兵曹佐郎金大有柳貞金顛安珽爲成均館典籍金神童爲宗簿寺主簿金鈇爲典牲署主簿金益壽爲忠清道觀察使 《明宗實錄 卷第1, 36面》

명종 원년 1월 21일(기묘)

○이날 구전(口傳)하여 류정(柳貞)을 강음현감(江陰縣監)으로 삼았다. -류정은 바로 천거과(薦舉科)에 합격한 사람이었는데, 과거로 서용된 관직을 빼앗고 나서 음직(蔭職)의 규례로 다시 서용한 것이다.

己卯○是日口傳以柳貞爲江陰縣監貞卽薦舉科中人也旣奪其科以蔭職例復叙

《明宗實錄 卷第3, 14面》

명종 원년 8월 12일(갑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전옥서(典獄署)의 역도(役徒) 정흥종(鄭興宗)은 본시 서얼(庶孽) 신분으로 복서술(卜筮術)을 약간 터득하여, 그의 음양책(陰陽冊)에 사대부의 팔자(八字)를 열서(列書)하였고, 또 자전(慈殿)과 대전(大殿)의 오주(五柱)까지 아울러 기록해 놓고는 공공연히 추점(推占)하여 선분(先分)이니 후분(後分)이니 하는 설(說)으로써 심지어 부도(不道)한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으니, 해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추점하는 설(說)이 너무도 흉참합니다. 그가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사대부의 집에 왕래하면서 사설(邪說)을 선동하여 소문을 의혹시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삼성 교좌로 날날이 추국하게 하소서.

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별(權機)은 늘 류인숙(柳仁淑)을 호걸지사(豪傑之士)라 칭하면서 친분과 왕래가 탄 사람과 달랐으니, 역모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류인숙이 죄받을 즈음에는 구출하기 위하여 진달하였으므로 파직에 그쳤습니다. 물정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의 관작을 삭탈하소서.

강음현감(江陰縣監) 류정(柳貞)은 현량과(賢良科) 출신으로 파면된 뒤에 다시 진출하려는 생각으로 시세(時勢)를 공교히 엿보고 나식(羅湜)과 남몰래 결탁하여 역모를 함께 하다가, 나식이 죄받은 뒤에 도리어 그 정적을 엄폐하고 의적이 6품의 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심(用心)이나 행사가 너무 무상(無狀)하니, 관직을 파면시켜 영원히 서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甲午○憲府啓曰臣等聞典獄署徒役鄭興宗以庶孽之人粗解卜筮之術乃於陰陽冊中列書士大夫八字其間又并錄 慈殿大殿五柱公然推占以先分後分之說至發不道之言非徒駭愕且其推占之說至爲兇慘此雖微賤之人往來士大夫之家鼓動邪說疑惑人聽所關甚重請於三省交坐處窮極推鞠前知中樞府事權撥常稱柳仁淑爲豪傑之才交厚往來異於他人其聞逆語必屢矣及仁淑被罪之際上達申救而只罷其職物情未便請削官爵江陰縣監柳貞以賢良科被罷後欲得復進巧候時勢陰結罷湜共爲悖逆之謀及湜被罪之後反掩情逆偏得六品之職用心行事至爲無狀請罷不叙答曰皆如啓

《明宗實錄 卷第4, 26面》

명종 4년 4월 27일(병인)

역자(驛子) 이휘와 유학(幼學) 최대관(崔大觀)을 잡아다가 추국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아서 1차 형신을 가했다.

○이홍윤과 이휘를 대질시켰다. 홍윤이 휘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네가 광의(光義)를 아는가?’ 하니, 네가 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다시 ‘광의의 말이, 갑자년에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성명(聖明)한 세상이 되었다. 지금인들 어찌 오래 가겠느냐고 하였는데 이 말이 어떠냐?’고 하니, 네가 대답하기를 ‘광의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인데 어찌 모르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휘가 답하기를,

“그 말은 과연 다 옳다.”

하였다. 홍윤이 또 묻기를,

“‘광의의 말이, 갑자년에도 주관한 자가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장수만 있다면 어찌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네가 대답하기를 ‘병조 판서라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병조 판서가 이와 같은 일을 따르겠는가?’라고 하니, 너는 ‘필부(匹夫)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네가 하지 않았느냐?”

하니, 휘가 답하기를,

“주관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나도 들었다. 그러나 장수니, 병조 판서니, 필부도 할 수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은 다 내가 한 적이 없다.”

하였다. 홍윤이 또 묻기를,

“내가 ‘종실(宗室)을 얻어 추대한다면 쉽게 될 수 있다. 나의 점술로 찍면 종실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휘가 답하기를,

“그 말도 나는 한 적이 없다. 다만 네가 ‘우리는 이렇듯 외롭고 힘이 없으니 어

떻게 하면 다시 입신(立身)할 수 있는가?’ 하기에, 내가 ‘만약 훌륭한 딸을 낳아서 종실을 사위로 삼는다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겨우 「천자문(千字文)」과 「유합(類合)」을 익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종실을 펴 수 있겠느냐?”

하였다. 홍윤이 말하기를,

“홍현(洪峴)이 함께 그 말을 들었는데, 홍현이 와도 네가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하니, 휘가 말하기를,

“홍현이 온 다음 물어보면 된다.”

하였다.[중략]

○추관 등이 아뢰기를,

“이휘·최대관·배광의를 형신했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윤과 대질시켰더니 말꼬투리는 숨기지 않으면서도 실정(實情)대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그리고 김의순의 책은 모두 음양서(陰陽書)였는데 조종(祖宗)과 성상(聖上)의 팔자를 열기했다고 하니 역시 형신을 가해야 합니다.

홍윤은 대체적인 것은 승복했지만 흉모의 과정을 다 자백하지 않으니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홍현(洪峴)과 이수성(李守成)은 홍윤의 초사(招辭)에서 나왔으니 잡아다가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추관 등이 추안을 가지고 아뢰기를,

“홍윤은 형신했을 때 무송수 언성(茂松守 彦成)과 모산수 정량(毛山守 呈琅)이 그 초사에서 나왔으니 잡아다 추문하게 하소서. 또 모의책(謀議冊)이 충주 본가에 있다고 하여 먼저 간 도사(都事)로 하여금 가지고 오도록 하였으나 틀림없이 가지고 올지는 기필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홍윤으로 하여금 대체적인 것을 적게 하여 입계합니다.”

하였다.

모의책에 기록된 내용은 1백 조항인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1. 4월 20일경에 이휘(李輝)를 데리고 배를 타고 상경(上京), 곧바로 무송(茂松)의 집으로 가서 먼저 거병(擧兵)하도록 펴 것.

1. 대궐을 침범할 때 이휘를 선봉으로 삼아 군사 수십 명을 인솔하게 하고 그 중에 용건한 자를 골라 먼저 들어가게 할 것.

1. 최대관은 글을 잘 알고 구변도 있으니 행군종사(行軍從事)로 삼을 것.

1. 이무정(李戊丁)은 날쌔고 민첩하니 부종사(副從事)로 삼아 군령(軍令)을 통솔하게 할 것.

1. 이인정(李寅丁)은 지식은 없지만 과묵하고 몸가짐이 무겁게 있으니 상벌(賞罰)에 관한 모든 일은 이 사람에게 맡기어 거행하게 할 것.

1. 이후정(李後丁)은 연소하여 데리고 갈 수 없지만 군대(軍隊)의 소소한 일은 맡을 수 있으니 군관(軍官)으로 삼을 것.

1. 서울에 도착하면 친구 한익(韓翼)을 만난다. 그는 재지(才智)가 비상한데 이 일을 이야기하면 즐겨 따를 것이니 또한 놓칠 수 없다.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이니 군중의 소장(小將)으로 삼아 호령을 맡게 할 것.

1. 군중의 여러 가지 무기는 시골에서 구할 형편이 못된다. 서울에 올라가 정춘령(鄭春齡)을 만나 그에게 말하면 그의 종이 본시 야장(冶匠)의 일에 능하니 얼마간의 철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우선 장창 수십 개를 만들게 할 것.

1. 무송의 아들 이이(李彝)는 무송의 후속부대로 삼아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할 것.

1. 군사(軍事)의 기밀은 중대한 것이니 장수가 적격자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생원 강유선(康惟善)을 대장(大將)으로 삼을 것.[중략]

1. 최대관(崔大觀)·이무정(李戊丁)·인정(寅丁)·후정(後丁)은 함께 서명(署名)하고 이휘는 수서(手書)하여 거망의 집에 갈무리할 것.

1. 모산수(毛山守)는 종실(宗室) 중에서 장자(長者)이니 그를 무송수(茂松守)의 후속으로 삼고 그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후속으로 삼아 순차적으로 직입(直入)하게 할 것.

1. 전 현감(縣監) 류정(柳貞)은 기묘년 때의 이름 있는 사람인데 항상 곤궁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휘가 가서 이해(利害)를 따져 편 결과 이제 승낙을 얻었으니 함께 행하도록 권할 것. 기타 여러 사람은 이 사람만 못하니 혹시 잇을 염려가 있거든 즉시 와서 빙문(憑問)하게 할 것. [중략]

○이홍윤이 끌어들이 사람은 모두 그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류정(柳貞)과 무송수는 아버의 연배로 언젠가 홍윤을 꾸짖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강유선(康惟善)은 죽친간이지만 평생 홍윤과 상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중에 류관춘(柳冠春)이란 사람이 들어 있었는데 그가 중종(中宗)과 인종(仁宗)의 상을 입었으므로 고장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기(李芑)가 화를 내며 '이 사람은 궤격스런 행동을 하였으니 틀림없이 역모도 했을 것이다.' 하면서 더욱 엄히 다스리려 하였다. 마침 구수담(具壽聃)이 이때 현장(憲長)으로서 추국에 동참하였는데, 이 의논을 극력 말려서 유찬(流竄)에 그쳤다.

丙寅驛子李輝幼學崔大觀拿鞫不服刑訊一次○李洪胤及李輝面質洪胤問諱曰吾言於汝曰汝知光義乎汝曰知之吾曰光義言甲子年多殺無辜不久見聖明之世今時亦豈久乎此言何如汝曰光義善陰陽豈不知乎輝答曰此言則果然皆是洪胤又問曰光義言甲子年亦有人經營而爲之今若有如此將帥之人則豈不可爲乎此言何如汝答曰若兵曹判書則可以爲之吾曰兵曹判書豈從如此事乎汝曰匹夫亦可爲之此語汝不說乎輝答曰有人經營之說吾果聞之如將帥兵判及匹夫可爲等語皆吾所不語也洪胤又問曰汝言若得宗室而推戴則可以易爲以吾術誘之則宗室亦可動也輝答曰此亦非吾所言但汝言吾等如此孤單如何而可復立身耶吾言若生賢女而得宗室爲婿則可以起家云吾僅習千字類合有何術而能誘宗室乎洪胤曰洪峴叅聽其言洪峴來則汝何能終諱乎輝曰洪峴若來可以質問[中略]

○推官等啓曰李輝崔大觀裴光義刑訊皆不服與洪胤質問則言端不諱而實情則不服請加刑且見金義淳之書則皆陰陽之書至書 祖宗及 聖上八字云亦當刑訊洪胤則大槩承服而兇謀節次不盡輸情請加刑洪峴李守成出於洪胤招辭請拿鞫傳曰皆如啓推官等以推案啓曰洪胤刑訊時茂松守彥誠毛山守呈琅出於招辭請拿推且有謀議冊在忠州本家云已令先去都事取來而取來難必故又使洪胤書其大槩入啓謀議冊凡百條一四月二十日間率李輝乘船上京直到茂松

家先誘擧兵事一犯闕時以李輝爲先鋒率軍數十名擇其中勇壯者先入事一崔大觀能文有口辯以爲行軍從事事一李戍丁輕銳有捷敏才當爲副從事統率軍令事一李寅丁雖無知識寡黙持重凡干賞罰事付此人行之一李後丁年少不可率行然軍隊中小小之事可以當之當作軍官事一到京則友人韓翼才智非常若言如此事必樂從亦不可失當以此任大事可爲軍中之小將出號令事一軍中諸緣則鄉中無可得之勢上京見鄭春齡則其奴素能冶匠之事言之則鐵物多少問可圖先鑄長戈數十事一茂松之子李彝當爲茂松之後次次隨入事一軍機重事將非其人不可濟事當以生員康惟善爲大將事[中略]

崔大觀李茂丁寅丁後丁同署名李輝手書藏于巨網家事一毛山守宗室中長者以此人爲茂松之後其子亦爲其父之後次次直入事一前縣監柳貞自己卯時有名且常患其窮居李輝將利害之說往誘之今已見諾可以一時勸行事他餘頭頭人無過此人慮或忘却來則可以憑問事[中略]

○李洪胤所引悉皆其平時所不悅之人柳貞茂松守自以父執當責飭洪胤康惟善雖在族親平生不與洪胤相對者也其中有曰柳冠春服 中宗 仁宗喪卿黨皆敬之李芑怒曰此人能爲詭行亦必爲亂逆尤欲重治之具壽聃時以憲長同叅推鞠力止其議得以流竄 《明宗實錄 卷第9, 29面》

명종 4년 4월 28일(정묘)

○유학(幼學) 정춘령(鄭春齡), 내금위(內禁衛) 이규(李揆), 전 현감(縣監) 류정(柳貞)을 잡아다 추국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자, 1차 형신을 가하였다.

○추관 등이 아뢰기를,

“이홍윤이 모역(謀逆)한 과정을 어젯밤에 이미 다 승복하였는데, 그 중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있으므로, 그가 한 말 가운데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말은 감히 초사(招辭)에 실지 못하겠습니다. 이휘와 최대관이 어제 대질(對質)할 때 승복한 말은 다 극형에 해당되는데, 오늘 낙형(烙刑) 때 바른대로 승복하지 않은 것은 장하(杖下)에서 죽으려는 의도입니다.[중략]

배광의의 초사에 이홍남을 끌어들인 말이 나왔으나 홍남은 수고(首告)한 대열에 끼어 있으므로 추국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춘령(鄭春齡)·정랑(呈琅)·이규(李揆)·류정(柳貞)은 승복하지 않으니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이산립(李山立)과 한익(韓翼)은 이홍윤의 초사에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니 우선 형신하지 말고 사련인을 기다리소서. 김의순은 형추해도 승복하지 않으니 내일 가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된 뜻은 알았다. 홍윤 등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지만 모의책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아마도 사련인과 대질하여 귀일된 후에 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추관들이 아뢰기를,

“정춘령·정랑·이규·류정은 형신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니 법으로 보면 가형해야 마땅하지만 그들 중엔 늙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으므로 잇달아 형신을 가하

면 장하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또 홍윤과 정춘령의 사이가 친밀하다면 어찌 고친 이름은 모르고 아명(兒名)을 말하겠습니까? 정랑·이규·류정 등은 처음엔 적어 올리지 않다가 모의책의 1백 조항을 빨리 써 바치라고 독촉하자 이 세 사람을 추가하여 써서 바쳤는데 이규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홍윤과 노소(老少)가 현격하여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의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기타 관련자도 모두 잡아다가 고열(考閱)하여 대질한 뒤에 형신한다면, 아마도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기에 감히 여쭙니다.

정춘령 등은 우선 형신을 멈추었으니 김의순 한 사람만을 위하여 궐정(闕庭)에서 형신하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의순의 죄는 역모에 관계되지 않으니 그의 음양책(陰陽冊)을 가져온 뒤에 금부(禁府)에서 삼성교좌(三省交坐)¹⁴⁴로 형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丁卯○幼學鄭春齡內禁衛李揆前縣監柳貞並拿鞠不服刑訊一此○推官等啓曰李洪胤謀逆節次昨夕已盡輸情且有不忍言之言而其所發言耳不忍聞者不敢載於招辭李輝崔大觀昨日質問時所服之言皆是極罪而今日烙刑不直招者欲死杖下耳[中略]

裴光義招內引李洪男爲言而洪男在首告之列故不請推鄭春齡呈琅李揆柳貞不承服請刑訊李山立韓翼則李洪胤招時未及之姑不刑訊以待辭連金義淳刑推不服請於明日加刑答曰啓意知道洪胤等不可一日淹留但其謀議冊不來恐有辭連質問歸一然後按律可也○推官等啓曰鄭春齡呈琅李揆柳貞刑訊不服法當加刑而但右人等或老或病連次加刑則恐殞杖下且洪胤與鄭春齡交密則豈不知改名而舉兒名乎呈琅李揆柳貞等初不書呈而謀議百條迫令畢書然後追書此三人而進呈李揆之名則不得記也況與洪胤老少懸隔似可疑也謀議冊方取來而他餘干連人皆將拿來考閱質問然後刑訊則庶可得實敢稟鄭春齡等姑停刑訊則只爲金義淳一人闕庭刑訊似爲未安義淳之罪亦不涉於逆謀其陰陽冊取來後禁府三省交坐刑訊何如答曰皆如啓

《明宗實錄 卷第9, 29面》

명종 4년 4월 30일(기사)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상인(喪人) 이무정(李戊丁)을 잡아다가 국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므로 추관 등이 아뢰기를,

“이무정이 불복(不服)하니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무정에게 1차 형신을 가하였다.[중략]

144) 삼성교좌(三省交坐) : 사헌부, 사간원, 형조의 삼성의 관원이 합좌(合坐)하여 강상의 중죄를 범한 자를 국문하는 일 : 삼성추국(三省推鞠).

○이무정을 2차 형신하였다. 추관 등이 아뢰기를,
 “무정에게 형신을 가하였지만 죄가 극형(極刑)에 해당함을 스스로 알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복한 사연(辭緣)만으로도 오히려 부족한 것은 아니나 지금 형신을 가한다면 장하(杖下)에서 죽을는지 모르니 우선 형신을 멈추소서. 그리하여 이미 승복한 죄인과 함께 -이홍윤과 배광의 등이다.- 한꺼번에 율(律)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오늘은 더 형신하지 말고 모의책이 오거든 미진한 점을 다시 추문하라.”

하였다.

*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것은 전번 조사에 이미 다 승복하였습니다. 모의할 때 서로 ‘모든 모의는 반드시 굳게 지킨다.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는다. 죄 없이 죽은 자는 원수를 갚아준다. 군기(軍器)는 논밭을 팔아서 준비한다.’고 서약하였습니다. 신은 나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반간(反間)을 맡고, 김의순은 접술에 능하니 거사할 때 택일(擇日)을 맡고 정춘령(鄭春齡)은 친구간이니 말하면 반드시 따를 것이며, 류정(柳貞)은 장자(長者)니 모든 모의를 그에게 물어서 한다고 하였는데, 홍윤은 말하고 신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름을 책에 적고 사람을 시켜 서로 통하게 하고 스스로 직접 가서 물어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은 알지 못합니다.”

己巳 上御朝講○喪人李戊丁拿鞫不服推官等啓曰李戊丁不服請刑訊答曰如啓李戊丁刑訊一次[中略]

○李戊丁刑訊二次供曰他餘事則前招已盡矣謀議時相與約誓曰凡謀必須牢固反此則有罪云無罪而死者報怨云軍器則放賣田地以備云臣則殘弱無力故使爲反間之人金義淳則能於推卜舉事時可使擇日鄭春齡友人也言之則必從柳貞長者也凡謀所當稟問洪胤說道臣只聞之而已書名於冊使人相通親自往問則臣不得知矣推官等啓曰戊丁加刑則自知罪極不盡輸情已服辭緣猶非不足今若加刑恐須杖下姑停刑訊與已服罪人李洪胤裴光義等也一時按律何如答曰今日則勿爲加刑待其謀議冊來未盡條件更推之

《明宗實錄 卷第9, 31面》

명종 4년 5월 1일(경오)

○추관 등이 아뢰기를,

“지금 무정(戊丁)의 공사(供辭)를 보면, 김의순(金義淳)을 시켜 거사할 길일(吉日)을 가리라고 하였다 하니, 궐정(闕庭)에서 신국(訊鞫)하소서. 정춘령(鄭春齡)·정랑(呈琅)·이규(李揆)·류정(柳貞)에 대해서는, 모의책도 이미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달리 빙문(憑問)할 길도 없으니, 아울러 형신(刑訊)을 가하게 하소서. 이무정에게도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정랑·정춘령·이규·류정을 2차 형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중략]

○추관 등이 아뢰기를,

“강유선·이수성·최순학·이인정(李寅丁)·손수검 등은 추문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형신하게 하소서. 정춘령·정량·이규·류정도 모두 승복하지 않으니,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인정·강유선·손수검·이수성·최순학은 1차, 정춘령은 2차, 정량·이규·류정은 3차, 이언성·이이는 2차 형신을 각각 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추관 등이 아뢰기를,

“강유선·이수성·손수검·최순학·이인정은 형신해도 승복하지 않고, 정춘령·정량·이규·류정·이언성·이이는 가형(加刑)하여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진하(陳賀)한 뒤에 형신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庚午○推官等啓曰今見戊丁之供使金義淳推擇舉事吉日云請於闕庭訊鞠鄭春齡呈琅李揆柳貞則謀議冊旣不得他無憑問之事請並加刑李戊丁亦加刑答曰如啓○呈琅鄭春齡李揆柳貞刑訊二次不服[中略]

○推官等啓曰康惟善李守成崔筍鶴李寅丁孫守儉推問不服請刑訊鄭春齡呈琅李揆柳貞亦皆不服請加刑答曰如啓○寅丁康惟善孫守儉李守成崔筍鶴刑訊一次鄭春齡刑訊二次呈琅李揆柳貞刑訊三次彥成李彝刑訊二次皆不服○推官等啓曰康惟善李守成孫守儉崔筍鶴李寅丁刑訊不服鄭春齡呈琅李揆柳貞彥成李彝加刑不服今日夜深請於明日陳賀之後加刑答曰如啓

《明宗實錄 卷第9, 31面》

명종 4년 5월 2일(신미)

○정량·정춘령·이규·류정은 4차, 언성은 2차, 이이는 3차 형신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辛未○呈琅鄭春齡李揆柳貞刑訊四次彥成刑訊二次李彝刑訊三次皆不服

《明宗實錄 卷第9, 33面》

명종 4년 5월 3일(임신)

류정은 6차, 언성·강유선·손수검·이수성은 5차, 이규는 7차 형신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강유선·손수검·이수성은 6차, 류정은 8차, 이이는 7차 형신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았다.

壬申柳貞刑訊六次彥成康惟善孫守儉李守成刑訊五次李揆刑訊七次皆不服○康惟善孫守

儉李守成刑訊六次柳貞刑訊八次李彝刑訊七次皆不服

《明宗實錄 卷第9, 33面》

명종 4년 5월 4일(계유)

생원 강유선, 진사 이이, 무송수 언성, 학생 손수검은 모두 옥중에서 죽고 류정은 궐정(闕庭)에서 죽으니, -류정은 일찍이 현량과(賢良科)에 합격하여 벼슬이 정자(正字)에 이르렀다.-

癸酉生員康惟善進士李彝茂松守彥成學生孫守儉皆死於獄中柳貞死於闕庭柳貞曾中賢良科官至正字

《明宗實錄 卷第9, 33面》

명종 4년 5월 5일(갑술)

상인(喪人) 이후정(李後丁)을 잡아다 국문하였다.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6월 이홍윤이 배광의·최대관 등과 그의 집에 모여 의논하였고, 8월 25일에 또 최대관의 집에 모여 서로 모의한 다음 책을 만들어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달 그믐날 최대관의 집에서 신과 대관 4형제, 그리고 배광의·이홍윤·연애(延瑗)·손수검 등 9인이 상의하기를 10월 15일에 상경하여 마치 고변(告變)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사하기로 하자고 하였으나, 마침 약속한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리누름으로 기약하였습니다. 위 책속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은 최대관·이홍윤·배광의·차한지(車漢之)·최대립(崔大立)·최대수(崔大受)·최대림(崔大臨)·연애·강유선·이수성·최흠(崔洽)·손수검·손수양(孫守讓)·우수평(禹水平)·우연(禹鉛)·이휘·김의순(金義淳)·배몽석(裴夢錫)·안매(安邁)·안희우(安喜遇)·안희봉(安喜逢)·안희진(安喜進)·안관(安寬)·류제춘(柳堤春)·인정(寅丁)·무정(戊丁)·허변(許汴)·허초(許礎)·연백재(延百載)·무송수(茂松守)·모산수(毛山守)·홍현(洪峴)·홍윤(洪崙)·변복(邊復)·류정 등인데, 손수양·안매·연백재 등은 서명하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최대관이 이 책을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이홍윤의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빠뜨린 것을 차한지가 찾아서 돌려주었으니, 차한지를 추구하소서. 여타 절차는 신이 글을 모르는데다 나이 어리고 용렬하여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甲戌喪人李後丁拿鞠供曰前年六月李洪胤與裴光義崔大觀等會議於其家八月二十五日又會于崔大觀家相與謀議成冊書名其月晦日於崔大觀家臣及大觀四兄弟裴光義李洪胤延瑗孫守儉等九人相議以爲十月十五日上海若告變者然因以舉事云適約人不會故更以牟黃時爲期右冊內書名人則崔大觀李洪胤裴光義車漢之崔大立崔大受崔大臨延瑗康惟善李守成崔洽孫守儉孫守讓禹水平禹鉛李輝金義淳裴夢錫安邁安喜遇安喜逢安喜進安寬柳堤春寅丁戊丁許汴許礎延百載茂松守毛山守洪峴洪崙邊復柳貞等也孫守讓安邁延百載等不著署其餘人等皆爲着署矣崔大觀被此冊去李洪胤家路中闕失車漢之覓得還給車漢之當推他餘節次臣不識字年少迷劣不得細知

《明宗實錄 卷第9, 34面》

명종 4년 5월 18일(정해)

○습독관(習讀官) 배만기(裵萬期)의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지난해 10월 그믐쯤 자식의 혼사로 창녕(昌寧) 지방을 왕래할 적에 충주 본가에 들렀었습니다. 날씨는 기억되지 않으나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보러 나아갔다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집으

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많은 종인(從人)을 거느리고 지나갔습니다. 말춘(末春)의 집을 2리쯤 남겨두고 신이 우연히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탄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송말춘의 집에 최대관 형제가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비접와 있는데, 강유선·임오기가 와서 보고 가는 것이다.'고 답하였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두 사람은 동서로서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늘 작은 과녁에 활을 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강유선이 역모한 것을 임오기는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발각되고 나서 먼 곳에 살던 사람도 모두 동참한 죄를 입었으나 유독 오기만이 누락되었으니 신은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상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의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계사(啓辭)를 올리니, 빙열하소서.” 그 계사는 다음과 같다.

“신이 지난 정미년 9월에 조상의 성묘차 말미를 받아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튿날 들으니 역적 모산수(毛山守)·무송수(茂松守)·류정(柳貞)과 충의위(忠義衛) 이윤문(李允文), 충주 판관(忠州判官) 장세경(張世經), 괴산군수(槐山郡守) 성위(成偉) 등이, 이연경이 사위 노수신(盧守愼)이 유배(流配)되는 화를 당한 것과 같은 마을에 사는 육촌인 죄인 이약병이 사사(賜死)된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女妓) 15명과 공인(工人) 5명을 거느리고 각각 위로연(慰勞宴)을 열고 날마다 잔치하였다 합니다. 이는 반드시 연경이 모산수 등과 짐짓 위로연을 청탁하고 몰래 비밀스런 일을 의논하여 노수신과 이약병의 원수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더구나 신이 식물(食物)을 배에 싣는 일로 강변(江邊)에 갔을 적에 연경도 잔치를 참석하기 위해 그리로 가는 도중 강변에 이르렀는데 신에게 '이기와 윤원형이 없는 일을 꾸며 내어 정직한 신하를 모함하여 죽이고 재산과 노비를 독차지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없겠는가?' 하면서 이를 갈았고, 또 '공을 탐하는 무리들이 이·윤의 간혹한 술책에 빠져 현량(賢良)한 사람을 내쫓고 죄없는 사람을 섬멸하였다' 하면서 불칙한 말을 많이 발설하였습니다. 신이 그런 일을 보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가 몰래 탄마음을 품고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 할 계획을 꾀한다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신이 분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상달하고자 하였으나, 중대한 일에 경솔히 움직이는 것도 미안스러울 듯하여 우선 법을 자세히 살피고 있던 중 무신년 겨울에 연경이 죽음으로써 품은 뜻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사위인 역적 강유선과 같은 마을에 사는 칠촌 조카 이홍윤이 나쁜 일을 서로 도와 반역의 계책을 주창했으니 어찌 연경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컨대 신에게 한 말로 보면, 분노를 품고 역모를 계획한 것만은 아니었음이 더욱 분명합니다. 신이 듣고도 곧바로 상달하지 않았으니 신의 죄 또한 큼니다. 그리고 연경의 서사위인 임오기도 역적 강유선 등과 밤낮으로 같이 있었으니, 음모와 비계를 모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은 통분한 마음이 자나깨나 잊히지 않아 삼가 사연을 갖추어 아뢰입니다.”〔중략〕

○이후정의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6월에 이홍윤이 배광의(裴光義)·최대관(崔大觀) 등과 그의 집에서 회의하였고, 8월 25일에 또 최대관의 집에 모여서 의논하고 책을 만들어 이름을 썼으며, 같은 달 그믐에 최대관의 집에서 신과 최대관 4형제, 그리고 배광의·이홍윤·손수검과 함께 서명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약속하기를, 10월 15일 서울에 올라가 고변(告變)하는 체하고 이어 거사하기로 하였으나 마침 약속한 사람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누름 때를 기다려 다시 거사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책에 이름을 쓴 사람은 최대관·이홍윤·배광의·차한지(車漢之)·최대립(崔大立)·최대수(崔大受)·최대림(崔大臨)·강유선·이수성(李守成)·최흡(崔洽)·손수양·손수검·연애(延瑗)·우수평·우연(禹鉛)·이휘(李輝)·김의순(金義淳)·배몽석(裴夢錫)·안매(安邁)·안희우(安喜遇)·안희봉(安喜逢)·안관(安寬)·류제춘(柳堤春)·이인정·이무정·연백재(延百載)·무송수·모산수·홍현(洪峴)·홍윤(洪崙)·변복(邊復)·류정(柳貞) 등입니다. 최대관이 소매 속에 이 책을 넣고 이홍윤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잃어 버린 것을 차한지가 찾아 돌려 주었습니다.

대장(大將)은 최대관·연백재이고, 종사관(從事官) 다섯은 이홍윤·김의순·배광의·최대수·홍현 등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첩퇴 한자루와 세포 두 필씩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세포는 성을 넘을 적에 끌어당기는 데 쓸 밧줄로 입직(入直)할 충주 군사들을 내응시켜 끌어당겨 성에 오르게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충주 군사 2백 명, 음성 군사 1백 명, 음죽 군사 1백 50명에게는 벌써 통지하였습니다. 음죽 군수(軍帥)는 김춘정(金春貞), 충주 군수는 지칠동(池七同)·지역년(池億年)·서윤정(徐允丁)·서돌선(徐突先)·김필손(金弼孫), 음성 군수는 황개동(黃介同)·최세만(崔世萬)입니다. 음죽의 군사는 김의손이, 음성의 군사는 연백재가, 충주의 군사는 최대관이 각각 거느리고 금년 4월 25일 병조(兵曹)의 점고(點考)가 끝난 뒤 5월 25일 사경(四更)에 거사하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최대관은 5월 11일에 먼저 상경하고 책에 이름을 쓴 사람들은 5월 21일에 상경하기로 하였으며, 최대관은 병조의 인신(印信)과 관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첩퇴 2백여 자루를 여수(旅帥)들을 시켜 각기 그 고을에서 가져다 그의 집 동쪽과 여수들의 집에 묻어 두기로 하였습니다. 책은 연백재가 썼고 군사를 열기한 책은 이홍윤이 썼습니다. 당초에는 최대관을 임금으로 삼기로 계획하였으나 다시 의논하니 종실(宗室)로서 추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모산수를 임금으로 삼고 무송수를 세자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책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연애·손수양·류제춘입니다. 신과 이홍윤·최대관 등은 마음을 같이하여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習讀官裴萬期供云臣前年十月晦間以子息成婚事昌寧地往來時過忠州地本家日則不記以謁牧使判官事進去翌日初明還家望見二人乘馬多率從人過去距末春家二里許臣偶逢名不知一人問其乘馬者爲誰其人答云宋末春家崔大觀兄弟率其母避窟康惟善林五紀來見而出去臣聞常時二人以同生同婿一家內同處每射小的臣即今料之康惟善凶逆之謀林五紀想必知之而及今事覺之後遠處居人皆蒙同叅之罪而獨五紀脫漏臣不勝痛憤只上達而其人等謀議之事則臣不得知今呈啓辭憑閱其啓曰臣去丁未年九月以祖上拜掃事受由下歸于忠州到家翌日聞逆賊毛山守戍松守柳貞忠義衛李允文忠州判官張世經槐山郡守成偉等率女妓一十五名工人五名以李延慶遭女婿盧守慎竄謫之患又同里居六寸罪人子若水之賜死各設慰宴逐日爲之此必延慶欲與毛山守等人故托慰宴陰議密事以報盧守慎李若水之怨況臣以食物載船事往于江邊延慶亦以會飲事向于設宴處行到于江與臣言曰李芑尹元衡構成虛事陷戮正直之士專得家財奴婢專擅國家無所不爲豈無天殃乎仍爲切齒又曰貪功之輩陷于李尹奸譎之術擯斥賢良屠滅無辜不測之言多般發說臣見其事聞其言陰懷異心謀危宗社之計蓋可想矣臣不勝痛憤思欲上達而重大之事率意輕動亦似未安姑審詳悉法戊申年冬延慶身死故齋志未果而今者其牽婿逆賊康惟善同里居七寸姪李洪胤同惡相濟謀唱反逆之計則豈以延慶爲不知哉到今計之與臣所言非但含憤以發謀逆之計益爲章明矣臣有聞未即上達臣之罪亦已大矣且延慶孽姪林五紀亦與逆賊康惟善等日夜同處陰謀秘計無有不知而臣痛憤之心寤寐未忘謹具啓[中略]

○李後丁供前年六月李洪胤與裴光義崔大觀等會議於其家八月二十五日又會于崔大觀家相與議論成冊書名同月晦日崔大觀家臣及大觀四兄弟裴光義李弘胤孫守儉同着署相約曰十月十五日上京若告變者然而舉事適以約人不合故俟黃時更舉設討矣冊內書名人則崔大觀李弘胤裴光義車漢之崔大立崔大受崔大臨康惟善李守成崔洽孫守讓孫守儉延瓊禹水平禹鉛李輝金義淳裴夢錫安邁安喜邁安喜逢安寬柳堤春寅丁戊丁延百載茂松守毛山守洪峴洪崙邊復柳貞等也崔大觀袖此冊向去李洪胤家失諸路中車漢之覓得還給大將則崔大觀延百載從事官五則李洪胤金義淳裴光義崔大受洪峴等也一人各持鐵推一細布二匹細布則以爲越城時引入所用使入直忠州軍士內應牽引登城設計矣忠州軍士二百名陰城軍士一百名陰竹軍士一百五十名已曾通諭陰竹軍帥金春貞忠州軍帥池七同池億年徐允丁徐突先金弼孫陰城軍帥黃介同崔世萬矣陰竹軍士則金義淳陰城軍士則延百載忠州軍士則崔大觀率領今年四月二十五日兵曹點考後相與定約今五月二十五日四更舉事崔大觀則五月十一日先上京冊內書名人則五月二十一日上京矣崔大觀偽造兵曹印信偽着官員名署鐵推二百餘介使旅帥等各於其官取來崔大觀東邊及旅帥等家埋置矣冊則延百載所書軍士列錄冊則李洪胤所書當初以崔大觀爲

君設計更議則不可不以宗室推戴故以毛山守爲君以茂松守爲世子議定矣冊內不着署人則延瓊孫守讓柳堤春臣與李洪胤崔大觀等同心謀逆
《明宗實錄 卷第9, 41面》

연려실기술 제8권 332면

붙임 현량과(賢良科) 방목(榜目) 및 천목(薦目)

○이때 윤인경(尹仁鏡)·류관(柳灌)이 아뢰기를, “대행왕(大行王) 임종시에 현량과(賢良科)를 복과하라는 명이 계셨으니 마땅히 수용(收用)해야 할 것이니, 6품 이상에 있는 자는 그대로 쓸 것이요, 6품에 못 나간 자는 또한 분관(分館)을 해야 할 것이오나, 다만 이 사람들이 산반(散班)에 있는지 이미 27년이나 되고 나이가 많은 그들을 이제 다시 분관을 한다면 국가에서 수용하는 본의가 아닐줄 아옵니다. 재덕이 있는 자가 있다면 빨리 쓰는 도리밖에 없사오니 전원을 6품직에 서용(叙用)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그 6품이상이란 이는 조우(趙佑)·이연경(李延慶)·김익(金錫)·이부(李阜)·류정(柳貞)이다. 이때 이미 시사가 변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도 혹시나 미치지 못할까 겁내는 듯이 분분하게 소명(召命)에 응하였으나 그 거취를 결단한 자는 오직 이연경·김대유 등 수삼인 뿐이었다. 야언별집
○時尹仁鏡柳灌啓曰 大行王臨終令復薦舉科當收用在叅上者固當仍用未出六者亦可分館但此人等投散已二十七年年齒甚高若令分館則無國家收用之意苟有賢者不如速用請並叙六品職其云叅上者趙佑李延慶金錫李阜柳貞也時時事已變明者可觀而紛紛赴召如或不及其決於去就者惟李延慶金大有等數三人而已野言別集 《卷之8, 699面》

연려실기술 제10권 53면

을사사화(乙巳士禍)

○병오년 □월에 이림(李霖)·나식·나숙·정원·이약해(李若海)·김저(金礎)·이중열 등에게 죽음을 주고 한숙(韓淑)·이문건(李文楨)·이수경(李首慶)은 매를 때려 귀양보내고 권벌·이언적·신거완(愼居完)은 관직을 삭탈하고 구수담(具壽聃)·류정(柳貞)은 파직하였다.

○丙午 月賜李霖羅湜羅淑鄭源李若海金礎李中悅等死韓淑李文楨李首慶杖流權撥李彦迪愼居完削奪具壽聃柳貞罷
《卷之10, 547面》

연려실기술 제10권 71면

붙임 기유년 이홍윤(李洪胤)의 옥사(獄事)

○류정(柳貞)은, 자는 복원(復元)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중종 기묘년에 현량과에 추천 받아 등용되었다가 파과(罷科)되자 강음현감(江陰縣監)이 되었다. 얼

마 후 벼슬을 버리고 충주 금천리(金遷里)에 가서 살았는데, 대관(臺官)이, “나식(羅滉)과 비밀히 결탁하였다”고 아뢰어 파직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홍윤의 사건에 연루되어 곤장을 맞고 죽었다. 아들 승선(承善)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정(通政)에 이르렀다.유분록

○柳貞字復元晉州人 中宗己卯薦科罷科後除江陰縣監未幾棄官寓居忠州金遷里臺啓陰結羅滉請罷至是辭連洪胤獄杖殞子承善文科通政幽憤錄 《卷之10, 555面》

연려실기술 제11권 171면

명종조(明宗朝)의 상신(相臣)

○이연경(李延慶)이 일찍이 말하기를, “자네가 젊었을 때에 원명(原明 : 류인숙의 자)과 교유하며 항상 절의에 죽을 선비라 하더니, 어찌 죽이기까지 하였는가” 하니 순봉이 허튼 말로 대답하며, 얼굴빛이 변하여 가버렸다. 류정(柳貞)이 옆에 있다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호랑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사람이 모두 위태로워하는 것인데, 공은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이연경이 웃으며, “이령(耳齡)이 교활하게 원명 죽이는 것을 기화(奇貨)로 삼았던 것은 자손을 위함이니, 만약 나를 해하면 다만 친구를 죽였다는 이름만 남고,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 없을 것이므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더니, 과연 해치지 않았다.기묘록·유분록

○李延慶嘗語之曰君少時與原明交遊常謂伏節死義之士何至置之死也公遊辭答之色變而去柳貞在傍悚然曰虎前作舞人皆危之公何爲發此言也延慶笑曰耳齡狡黠殺原明視爲奇貨爲子孫計也若害吾則徒得殺友之名無利己之事吾無患矣果不害焉己卯錄·幽憤錄

《卷之11, 598面》

대동야승 제10권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생원 류정은 신사생이고 자는 복원(復元)인데 진주가 본관이고 서울에서 살았다. 병절(秉節) 자공(自恭)의 아들이다.

보유 : 병자년에 생원이 되었다. 천목에는 식도(識度)가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오른 뒤에 관직에는 제수되지 못하고 승문원(承文院)에 분차(分差)되었다. 을사년에 천과가 회복된 뒤에 전적(典籍)으로 보임되었고, 천과가 파방된 뒤에는 강음현감(江陰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충주(忠州) 금천리(金遷里)에 우거하였다. 기유년에 북촌 옥사(北村獄辭)에 연루되어서 형장을 맞다가 운명하였다. 아들 승선(承善)문과에 합격하여 통정까지 하였다. 손자 충신(忠信)·충각(忠愨)·충당(忠戇)이 있다.

生員柳貞辛巳生.字復元.晉州人.居于京.秉節自恭之子.

補.丙子生員.薦目.有識度.登科後未得授官.分差承文院.乙巳復科.補典籍.罷科後除江陰縣監.未幾棄官寓居忠州之金遷里.己酉連延北村獄辭.杖殞.子承善中文科至通政孫忠信忠慤忠慤.
《國譯本 151面, 原本 39面》

대동야승 제12권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류정의 자는 복원(復元)이며 본관은 진주다. 기묘년 천과(薦科)에 올랐다가 삭과(削科)되었고 뒤에 강음현감(江陰縣監)이 되었다. 병오년에 대간에서, 나식(羅湜)과 몰래 결탁하고 함께 패론(悖論)을 하였다는 이유로써 아뢰어 파직을 청하였다. 뒤에 이홍윤(李洪胤) 옥사(獄事)의 공사(供辭)에 연루되어 형장(刑杖)으로 죽었다.

柳貞字復元.晉州人.登己卯薦科.削科後爲江陰縣監.丙午臺諫啓.以陰結羅湜共爲悖論.請罷.後辭連李洪胤獄.殞于杖下.
《國譯本 407面, 原本 100面》

대동야승 제21권 해동잡록 3(海東雜錄三)

본관은 광주(廣州)로 자는 장길(長吉)이며 둔촌(遁村)의 후손으로 자호(自號)를 용탄수(龍灘叟)라 하였다. 학식이 뛰어났고 흉襟(胸襟)이 특 특(特)하였다. 중중(中廟) 무인년에 도(道)가 있다 천거되어, 뛰어 사지(司紙)를 배수하였다. 기묘년 봄 천과(薦科)에 올라, 지평(持平)·교리(校理)를 역임하였다. 화가 일어나자 전리(田里)로 돌아가 항상 이음애(李陰崖)와 더불어 산수간을 왕래하면서 우유(優遊)로 늙었다. 탄수(灘叟)는 퇴폐한 물결 속에서도 우뚝하게 독립할 수 있어서 시종 세파에 젖질 않아 기묘(己卯) 완인(完人: 힘 없이 완전했던 사람)이 되었다. 행장(行狀)

하루는 서울에 도착하니 정이령(鄭耳齡)이 와서 회포를 털어놓으면서, “어려서 류원명(柳原明)과 교류하며 언제나 절개로 의리에 죽을 선비라 하였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탄수(灘叟)가 답하기를, “그것이 죽음의 절개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겠오.” 하니, 정이령이 변색하고는 가버렸다. 사문(斯文)¹⁴⁵⁾ 류정(柳貞)이 옆에 있다가 두려워하며, “호랑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다 하는데 공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니, 탄수가 웃으며, “그런게 아니요, 정이령은 교활하여 원명(原明)을 죽인 것은 자손을 위한 계책이지만, 나같은 거야 공연히 친구를 죽였다는 말만 듣지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없을 것이요.” 하였는데, 과연 해를 입지 않았다. 기묘록(己卯錄) 이령(耳齡)은 정순봉(鄭順朋)의 자(字)요, 원명(原明)은 류인숙(柳仁淑)의 자(字).

廣州人.字長吉.遁村之後.自號龍灘叟.學識超詣.胸襟灑落.我 中廟戊寅舉有道.超拜司紙.

145) 사문(斯文): ① 유교의 도의나 또는 문화를 일컫는 말. ② 유학자(儒學者)를 달리 일컫는 말.

己卯春登薦科.歷持平校理.及禍作.放歸田里.常與李陰崖往來山水間.優遊終老焉. 灘叟能卓然自立於頽波之中.終始不渝.爲己卯完人焉.行狀 一日到京師.鄭耳齡來見叙懷曰.少與柳原明交遊.常謂伏節死義之士.今何以至此.灘叟答曰.此乃死節者也.不知其不是也.耳齡色變而去.柳斯文貞在旁悚然問曰.虎前作舞.人皆危之.公何爲發此言耶.灘叟笑曰不然.耳齡狡黠.殺原明者爲子孫計也.如余則徒得殺友之名.無利於己也.果不害焉.己卯錄耳齡順朋之字原明仁淑之字也

《國譯本 361面, 原本 71面》

진산군 8세(大丞公 17세) 감찰공(監察公) 류 장(柳 漳)

성종 11년(1480)~중종 32년(1537)

공의 자호는 전하지 않고 있으며 병자보(1756)에 감찰(監察)의 기록이 있어 이를 쫓았다. 후대 족보에 사간원 대사간 벼슬 기록은 오기인 듯하다.

공은 하양현감 양원(養源 父 岸, 祖 之灌)과 이유(李蕤 父 師純, 祖 領議政 稷)의 따님인 성산이씨(星山李氏) 사이에서 4남 중 큰 아들로 태어났다. 성산이씨 족보에는 이유가 이영유(李永蕤)로 기록되어 있으며 김세익(金世益) 한돈(韓惇) 정선우(鄭善佑) 이효동(李孝同)과 함께 공이 사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직(李稷 父 仁敏)의 조카 이견기(李堅基 父 李穗)의 처가 진주류씨로 청백리 류겸(柳謙)의 딸이며 조카 사위 한혜(韓惠 父 韓尙敬)는 류균(柳均 父 子偕)의 처부로 혼맥이 연결되고 있다.

공은 고령김씨(高靈金氏)와 土 晉州柳氏(父 淮, 祖 孟敷)와 혼인하여 아들 희인(希仁)을 두었다.

중종 3년 6월 23일(기축)

○헌부가 아뢰기를,

“지나친 가자를 개정하는 일을 여러 날 논계(論啓)하였으나, 천의(天意)를 돌리지 못하였으므로, 신등은 전하께서 누구를 개정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사(執事)·원종(願從)·족친(族親) 등의 가자(加資)가 친수(親授)된 자를 열서(列書)하여 바칩니다. 한순(韓恂)은 폐조(廢朝)의 초방(椒房: 왕비)의 족친으로 부당하게 사사로운 은총을 입어 갑자기 승지(承旨)에 올랐거니와, 그 사람됨이 변변치 못함은 전일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어찌 죄가 커서 귀양간 사람을 친공신(親功臣: 자기공으로 녹훈(錄勳)된 공신)에 하듯, 그 가자를 개정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김수경(金壽卿)·신은윤(辛殷尹)은 죄명도 크고

국가에 쓸 만한 점도 없습니다. 전지복(全之福)·김광후(金光厚)는 인물이 용렬합니다. 서관(徐瓘)은 차서를 넘어서 백관(百官)의 가자를 친수하였습니다. 송침(宋沈)은 이제 이미 녹안(錄案)하여 고신(告身)을 다 삭탈하였습니다. 박형무(朴衡武)는 인물이 취할 만한 점이 없는데도, 제포 첨사(薺浦僉使)가 되어 일찍이 대간의 논박을 받았고, 병사(兵使)가 되어서는 여론[物論]이 그르게 여겼고, 강릉부사(江陵府使)가 되어서는 사태(沙汰) 때문에 갈렸습니다. 하한문(河漢文)은 인물이 비침(卑諂 : 굽실거리고 알랑거림.)하여 재상(宰相)을 잘 섬기고, 폐조에 있어서는 궁액(宮掖)에 아부하였으니 또한 비루합니다. 이이(李暎)·정광보(鄭光輔)·김몽남(金夢南)·임맹영(任孟瑛)·황종신(黃從愼)·신영철(申永徹)·이윤중(李允中)·조금호(趙金虎)·박영번(朴永蕃)·지윤제(池允濟)·류장(柳漳)·김준(金浚) 등은 그 직품(職品)에는 비록 높고 낮음이 있으나, 다 차서를 넘어서 계자를 올렸으며, 또 인물이 당상관에 합당치 않습니다. 신복순(申復淳)·박승수(朴承燧)는 집사(執事)의 가자로 당상이 되었으면 족합니다. 어찌 원종공(原從功)으로 외람되게 2품을 제수할 수 있으리까? 이희보(李希輔)는 폐조에서 잘못된 것이 매우 많은데도 차서를 넘어서 관직을 제수하였으며, 성조(聖朝)에 이르러서 이미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조계형(曹繼衡)은 폐주(廢主)에게 인정받아서 갑자기 승지에 올랐으나, 그 행실이 더러우므로 역시 이미 죄로 다스렸습니다. 최해(崔灌)는 사간(司諫)을 특별히 판결사(判決事)에 제수하고 또 명목 없이 특별히 가선(嘉善)으로 가자하였으며, 또 신승복(愼承福)의 첩의 딸을 첩으로 삼아서 사사로이 폐주를 뵈었으니, 다른 외람된 가자의 유례가 아닙니다. 이담손(李聃孫)은 본디 천얼(賤孽)로 겸사복(兼司僕)이 되어서 갑자기 이전에 사냥으로 폐주를 인도하여 멀리는 강원·충청에서, 가까이는 경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바친 것이 다 이 사람이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최삼준(崔三俊)·김기(金錡)는 이제 막 지나친 가자를 개정하는 때에 혹 특별히 가자되어 부인하고, 혹 특별히 가자되어 유임하였으니, 이는 모두 불가합니다.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고, 간원(諫院)도 아뢰기를,

“지나친 가자 등의 일은 국가의 경중에 관계되는 자가 아니면 일체 개정함이 옳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순·신은운·김수경은 다 친공신이고, 김지복·김광후는 다 4품으로 계자가 올랐고, 서관은 특별히 가자한 것이 아니라 제 규례에 따라서 제수하였고, 송침은 이미 고신을 삭탈하였으니 집사의 가자는 개정할 것도 없고, 박형무·하한문은 일이 지난 지 이미 오래이고, 이이·정광보는 이미 4품이 되어 그 직위의 차

서에 따랐고, 김몽남·임맹영·황중신·신영철·이윤중·조금호·박영번·지운제·류장(柳漳)·김준은 다 원종의 공 때문이고, 신복순·박승수·이희보도 다 공 때문에 계자를 올렸고, 조계형의 일은 폐조의 특지(特旨)이니 다 개정할 수 없고, 최혜는 어전통사(御前通事)로 가선이 되었고, 이담손은 한 때의 특별한 은전(恩典)이니, 다 개정할 수 없다. 최삼준·김기 등의 일도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己丑○憲府啓曰濫加改正之事累日論啓而未回 天聽臣等意 殿下未知其某爲當改也故列書執事原從族親等加親授以進韓恂以廢朝椒房之親枉被私恩驟陞承旨其爲人物之無狀則前日已啓豈可以罪大竄逐之人例以親功臣不改其加乎金壽卿辛殷尹罪名亦大於國家無可用矣全之福金光厚人物庸劣徐瓘越次而親授百官之加宋忱今已錄案盡奪告身朴衡武人物無所可取而爲濟浦僉使曾被臺馭爲兵使物論非之爲江陵府使以沙汰見遼河漢文人物卑諂善事宰相而其在廢朝依附宮掖亦可鄙也李嶼鄭光輔金夢南任孟瑛黃從慎申永徹李允中趙金虎朴永蕃池允濟柳漳金浚等其職品雖有高下皆越次陞階且人物不合堂上申復淳朴承燧以執事加爲堂上足矣其可因原從功濫授二品乎李希輔在廢朝所失甚多而越次授職至于 聖朝已治其罪曹繼衡納見於廢主驟陞承旨其行甚污故亦已治罪崔濯以司諫特授判決事又以無名特加嘉善且以慎承福妾女爲妾而私謁廢主非他濫加例也李聃孫本以賤孽爲兼司僕而甲子以前以田獵引導廢主遠則江原忠清近則京畿圍取禽獸以進者皆此人啓之也崔三俊金錡今方改正濫加之時或特加赴任或特加仍任皆甚不可並令改正諫院亦啓曰濫加等事非係國家輕重者則一切改正可也傳曰韓恂辛殷尹金壽卿皆親功臣金之福金光厚皆以四品陞階徐瓘非特加也以其例授宋忱已奪告身執事加不須改也朴衡武河漢文歷事已久李嶼鄭光輔已爲四品以其職次金夢南任孟瑛黃從慎申永徹李允中趙金虎朴永蕃池允濟柳漳金浚皆以原從功也申復淳朴承燧李希輔亦皆以功陞階曹繼衡事廢朝特旨勢不可盡改崔濯以御前通事爲嘉善李聃孫一時特恩也皆不可改也崔三俊金錡等事不允 《中宗實錄 卷6, 24面》

중종 3년 8월 7일(임신)

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였으나, 또 정사(呈辭)하고서 물러가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경등이 아뢴 바는 좃을 수 없을 듯하다. 그 가운데에서 개정할 만한 자만 개정 하겠다. 김광후(金光厚)·김지복(金之福)·송침(宋沈)·류장(柳漳)·이희보(李希輔)·조계형(曹繼衡)·이담손(李聃孫)·김몽남(金夢南)의 가자를 개정하라. 이승원(李承元)·김극괴(金克愧) 등은, 추안(推案)을 보건대 장죄(贓罪)를 면하지 못할 듯하니,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다시 추고(推考)하지 말고 율문(律文)에 따라서 정죄(定罪)하라. 신극성(愼克成)은 남에게 장물(贓物)을 준 것은 이미 승

복하였으나 자기가 장물을 받은 것은 승복하지 않으니, 다시 추고하라. 정자지(鄭子芝)·임호(任浩)·채석견(蔡石堅)의 일은, 다시 추고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완(李琬)의 일은 헌부(憲府)로 하여금 추고케 하라.” 하였다.

○壬申 命召臺諫又呈辭而退傳于臺諫曰卿等所啓似不可從也其中可改者改之金光厚金之福宋沈柳漳李希輔曹季衡李聘孫金夢南等加改正李承元金克愧等以推案見之似未免臧勿更推事干其以律定罪慎克誠與人臧已服入己臧不服其命更推鄭子之任浩蔡石堅事更推亦可李琬事命憲府推之
《中宗實錄 卷6, 47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무장공(茂長公) 류의습(柳義濕)

공은 첨추공 류균(柳均)의 아들이며 부치돈녕부사 류자해(柳子偕)의 손자로서 자 호 및 생졸년은 전하지 않고 있다.

병자보(1756刊) 족보에 무장현감을 지내고 무과에 급제하였다 기록되었다.

배위는 사정(司正) 최숙신(崔淑信 : 父 崔安禮)의 따님인 전주최씨(全州崔氏)로 슬하 4남 6녀를 두었다. 큰 아들 현보(賢輔)는 무후(无后)이고 둘째 현연(賢連)은 선전관이며 셋째는 침(沉)이며 넷째 회(淮)는 무후(无后)이다.

사위는 파평윤씨로 참판 윤희인(尹希仁 : 父 俊丁) 이천인(利川人) 우후(虞侯) 서자적(徐自適)과 김수변(金秀汧) 민용손(閔龍孫 : 父 粹) 남원인(南原人) 사간 윤시영(尹時英) 전주인 이식(李植 沙川守) 등이 있다.

성종 4년 4월 7일(정묘)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서 열무(閱武)하고, 인하여 무신(武臣)의 재주를 시험하였다. 기사(騎射)에서 3차(次)에 다섯을 맞힌 류의습(柳義濕)과 김곤(金坤)에게 각각 활 1장(張) 씩을 주었다.

○丁卯 上幸慕華館閱武仍試武臣藝 賜騎射三次五中者柳義濕金坤各弓一張
《成宗實錄 卷第29, 2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증 찬성공(贈贊成公) 류인습(柳仁濕)

호는 송포(松浦)이며 생졸년도는 전하지 않는다.

공은 증 참판공 류균(柳均)과 한혜(韓惠 父 영의정 韓尙敬)의 따님인 청주한씨

사이에 태어났다.

단종 2년 내금위 군관에 제수됐으며 세조 1년(1455) 좌익원종 2등공신에 녹훈됐으며 세조 7년에 부방군관(赴防軍官)을 역임했으며 둘째 아들 충정공(忠定公) 빈(濱)의 현달로 좌찬성에 추증(追贈)되었다.

배위는 참봉 이효복(李孝福)의 따님인 합천이씨(陝川李氏)로 외조부는 이숙휴(李叔畦 父 種學)로 진주목사를 지냈으며 조부는 목은 이색(李穡)이다. 아들은 인(潁) 빈(濱) 진(溱)이며 손자 용근(庸謹)이 빈과 함께 부자 양대에 문과급제를 하였으며 기묘명현에 올랐다.

단종 2년 6월 19일(경자)

○이보다 앞서 내금위(內禁衛) 지계강(池繼江)·류인습(柳仁濕) 등 7인이 현릉(顯陵)에 호종(扈從)하였는데, 임금의 수레 앞으로 말을 달렸으므로, 형조(刑曹)에 내리어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율(律)에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정부(政府)에 내리어 의논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계강(池繼江)은 논하지 말고, 류인습(柳仁濕)은 도피하였으므로, 그 정상(情狀)이 미우니, 청컨대, 다시 추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子○前此內禁衛池繼江柳仁濕等七人扈從 顯陵馳馬於駕前下刑曹鞠之刑曹啓律應斬待時下政府議之政府啓曰繼江則勿論仁濕則逃避其情可憎請更推從之

《魯山君日記 卷第11, 17面》

세조 원년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행사용(行司勇) 류인습(柳仁濕)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等)에 녹(錄)한다.

○戊辰○傳旨議政府曰行司勇柳仁濕錄原從功臣二等

《世祖實錄 卷第2, 54面》

세조 7년 11월 13일(기유)

열무정(閱武亭)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 및 임영 대군(臨瀛大君) 구(璆)·계양군(桂陽君) 증(璿)·익현군(翼峴君) 관(璫)·오산군(烏山君) 주(澍)·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권남(權孳)·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양산군(楊山

君) 양정(楊汀) ·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 · 행상호군(行上護軍) 김개(金漑) · 호조 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 · 한성부윤(漢城府尹) 황효원(黃孝源) · 도승지(都承旨) 김종순(金從舜) 등이 입시(入侍)하여 평안도(平安道)의 방어(防禦)할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창손 등이 부방 군관(赴防軍官) 이수희(李守義) · 김유완(金有完) · 류인습(柳仁濕) · 신주(辛鑄) · 최명강(崔命剛) · 오연(吳衍) 등을 초계(抄啓 : 인재를 뽑아 상주(上奏)함)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己酉○御閱武亭王世子及臨瀛大君璆桂陽君增翼峴君璉烏山君澍鈴川府院君尹師路河城尉鄭顯祖廷昌尉安孟聃領議政鄭昌孫左議政申叔舟右議政權擘南陽府院君洪達孫楊山君楊汀戶曹判書曹錫文行上護軍金漑戶曹參判李克堪漢城府尹黃孝源都承旨金從舜等入侍議平安道防禦事昌孫等抄啓赴防軍官李守義金有完柳仁濕辛鑄崔命剛吳衍等 上允之仍設酌

《世祖實錄 卷第26, 16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부사공(府使公) 류첨정(柳添汀)

세조 즉위 전후? ~ 연산군 연간?

자와 생졸년은 전하지 않으며 호는 송호(松湖)이다. 상의원정 류양(柳壤)과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 정즙(鄭楫 : 父 鄭拯)의 따님인 청주정씨(淸州鄭氏)의 4남 4녀 중 큰 아들로 태어났으며 사마시에 입격하여 성균진사가 되었다.

중종 3년(1508) 통정(通政)에 올라 남원부사(南原府使)를 역임하였으며, 아들 영(潁)과 부(溥)가 현달하여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직장(直長) 홍종(洪琮)의 따님으로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연산군 10년 윤 4월 17일(정축)

류첨정(柳添汀) · 허수(許濂) · 조계우(曹繼虞) · 김윤관(金允灌)은 의논드리기를, “정성근 · 조지서 · 구성 · 최숙근 등의 죄는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성근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우나 속은 거짓이며, 지서는 음험하고 궤이하니, 두 사람의 심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이잠(李箴) · 손세옹(孫世雍) · 박상(朴祥) · 박곤(朴鯤)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 정성근은 궤이한 것을 좋아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구성 · 최숙근은 혐의를 품고서 친한 이를 모함하였으며,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중형에 처하는 것이 사실 중심(衆心)에 통쾌합니다. 지서는 재주를 믿고 제가 잘난 척하며, 궤환한 일하기를 좋아하고, 성근은 거짓으로 끝은 양하며, 감정을 억눌러 이름을 내

려 합니다.” 하였다.

○丁丑柳添汀許遂曹繼虞金允灌議鄭誠謹趙之瑞具誠崔叔謹等罪置諸重典甚爲允當誠謹外忠內詐之瑞陰險詭異二人心術正在於此李箴孫世雍朴祥朴鯤議趙之瑞鄭誠謹以異慢上具誠崔叔正懷嫌陷親罪大惡極置之重典實快輿情之瑞恃才自賢好爲詭譎誠謹挾詐賣直矯情干譽

《燕山君日記 卷第53, 11面》

중종 3년 1월 9일(정미)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음직으로 가자한 일은, 상교(上敎)에, ‘전일에 재상(宰相)과 의논하여 결정할 때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오나, 신등이 다시 생각해 보니, ‘재상이 이 일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류순(柳洵)의 아들 응룡(應龍)이 가선(嘉善)이 되고, 류순정(柳順汀)의 형 첨정(添汀)은 통정(通政)이 되고, 송일(宋軼)의 아버지 공손(恭孫)은 통정이 되고, 홍경주(洪景舟)의 아버지 임(任)은 가선이 되었으니, 대신들의 부형과 자제가 음가(蔭加)로써 품계를 얻은 사람이 자못 많기 때문에 혐의찍어서 의득(議得 : 의논하여 결정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와 같이 극론(極論)한 것이 다섯 번이 되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丁未臺諫合司啓曰蔭加事 上敎以爲前日宰相議得時不及之故不允云書臣等更思宰相不及此事有由然矣柳洵之子應龍爲嘉善柳順汀之兄添汀爲通政宋軼之父恭孫爲通政洪景舟之父任爲嘉善大臣父兄弟以蔭而得階者頗多故嫌不及於議得耳如是極論者五皆不允

《中宗實錄 卷第5, 6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서윤공(庶尹公) 류효정(柳孝汀)

자 호와 생졸년이 전하지 않으며 상의원정 류양(柳壤)과 집현전 부수찬 정즙(鄭楫 : 父 鄭拯)의 따님인 청주정씨 사이에 4남 4녀중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벼슬은 평양부 서윤과 한성부 서윤을 지냈다.

배위는 최급(崔伋 : 父 崔昕)의 따님으로 전주최씨로 밀양부사 연(淵)이 있으며, 손자에 풍천부사(豐川府使)를 지낸 문감(文減)이 있다.

중종 8년 4월 5일(계묘)

전교하였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류효정(柳孝汀)이 사의(司議)로서 개만(箇滿：임기가 만료되다)을 기다리지 않고 승격하여 훈련원 첨정(訓練院僉正)에 제수되었으니, 개정하소서. 안총(安聰)은 전에 형조 정랑(刑曹正郎)을 삼았다가 합당치 못하여 도태시켰으니, 어찌 김계(金堤)처럼 큰 고을에 처할 수 있으리까!”

하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정2품 이상 관찰사는 경직(京職)에 겸차(兼差)할 수 있으나 양계(兩界：평안도 함경도)는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근자에 정광필(鄭光弼)이 우찬성으로 함경도 관찰사를 겸임하는 것이 제도로 보아 맞지 않거니와, 정부(政府)는 임금을 도와 덕화를 펴는 곳이니 어찌 외임(外任)으로써 겸할 수 있으리까! 속히 개정하소서. 그리고 사의 김의종(金義從)은 경력이 없어 그 직임에 맞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癸卯傳曰○臺諫啓前事又啓柳孝汀以司議不待箇滿陞授訓練院僉正請改正安聰前爲刑曹正郎以不合沙汰豈可處金堤劇郡乎憲府啓大典續錄正二品以上觀察使兼差京職兩界則否近者鄭光弼以右贊成兼咸鏡道觀察使不合於典章且政府贊化之地安可以外任兼之乎請速改正司議金義從素無踐歷不合其任請違之皆不允

《中宗實錄 卷第18, 15面》

중종 8년 7월 27일(계사)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성세정(成世貞)·대사간(大司諫) 홍경림(洪景霖)이 변수(邊脩)·류효정(柳孝汀)·진식(陳植)·이계맹(李繼孟) 등의 일을 논하였다. 세정이 아뢰기를,

“류진(柳軫)은 2품 재상으로 어미를 내쫓기까지 하였으니 그 불효가 이보다 더 클 수 없거니와, 신이 전에 평안도에 있을 때 ‘진(軫)이 영원(寧遠)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상사를 듣고도 즉시 달려가지 않고 첩(妾)을 거느리고 천천히 가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도 또한 여러 날을 지체하였다’고 들었으며, 안극함(安克誠) 등에 대해서도 고발한 사실이 의심할 것 없습니다. 금부로 하여금 먼저 류진을 추문한 다음 극함 등을 추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癸巳 御朝講大司憲成世貞大司諫洪景霖論邊脩柳孝汀陳植李繼孟等事世貞曰柳軫以二品宰相至於黜母不孝莫大臣前在平安道聞軫在寧遠聞父死不卽奔喪率妾徐行到京亦留連多日安克誠等所告之事無疑矣請令禁府先推柳軫然後推克誠等不允

《中宗實錄 卷第18, 45面》

중종 8년 8월 3일(무술)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류효정(柳孝汀)·진식(陳植)을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戊戌臺諫啓前事 命遶柳孝汀陳植

《中宗實錄 卷第18, 47面》

중종 17년 8월 9일(임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평안도 관찰사 류담년(柳聃年)이 장계하기를,

“부(府)의 판관(判官) 이충(李叢)은 말 세 필을 소통사(小通事) 김옥명(金玉明)에게 주어서 중국 사람의 수말 한 필을 사오게 하였고, 서윤(庶尹) 류효정(柳孝汀)은 말 세 필로 의주(義州) 갑사(甲士) 김숙중(金叔中)의 수말 한 필을 사왔습니다. 류효정과 이충의 범죄는 가볍지 않으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충 등의 일에 대하여 만일 행대(行臺)를 파견한다면, 수재가 심한 이때 혹 폐단이 있을 것 같다. 또 그들을 잡아 온다면 연루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류효정(柳孝汀)의 경우는 말을 사온 그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다. 이충은 체직하는 것이 옳은가? 류효정(柳孝汀)과 이충은 죄가 같은가? 경관(京官)을 보내서 추고해야 할 것인가? 조옥(詔獄)에 잡아다가 추문해야 할 것인가? 이충은 중국 사람에게서 말을 사고 류효정(柳孝汀)은 의주(義州)에서 사왔으니 차이가 있는 듯하다. 삼공에게 의논하겠다.”

하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이충 등의 일은 듣기만 해도 놀랄 일입니다. 모두 잡아다 추고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좌의정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두 사람의 범법은 너무 큰 것이어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부득이 아뢴 것이니, 경중을 막론하고 속히 잡아오게 해서 실정을 알아내어 죄를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다 체포하기 어려우면 경관을 보내서 추고하되 결과적으로는 같은 죄과로 다스려지게 하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유청은 의논드리기를,

“판관과 서윤(庶尹)을 심문하면 필시 모두가 중국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이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조옥(詔獄)에 내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삼공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류효정(柳孝汀)과 이충의 일은 범죄가 너무도 큰 것이니 지금 속히 금부에 가두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사간(事干)은 비록 추고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만일

전원을 잡아온다면 도로에서 폐단이 생길 것이니, 그 중에서 긴요한 사람만 일시에 잡아오라. 그리고 중범인(重犯人)은 혹시 도망할 염려가 있으니, 감사는 그들을 먼저 가두고 아뢰는 것이 옳다.”

○壬午領議政金詮議○平安道觀察使柳聃年狀啓府判官李叢以馬三匹授小通事金玉明唐人雄馬一匹以來庶尹柳孝汀以馬三匹買義州甲士金叔中雄馬一匹以來孝汀李叢所犯輕請遣京官推考傳曰李叢等事若遣行臺則水災非常似或有弊拿來則辭連者必多柳孝汀則馬之取來根因未能的知李叢可帝乎孝汀與李叢同罪乎遣京官而推考乎拿致詔獄而問之乎李叢則買馬於唐人孝汀則買來于義州似有間隔議于三公領議政金詮議李叢等事聞之駭愕并拿推當矣左議政南袞議兩人所犯大濫不可掩故監司不得已啓之耳勿論輕重速令拿致得情定罪可也若辭連人衆多難於盡逮則遣京官推考歸一亦可右議政李惟清議判官庶尹推閱則必皆唐馬矣此事非輕令下詔獄推之何如下三公議于政院曰李叢柳孝汀等事至爲過甚今宜速下禁府可也且其事干雖有可推之人若盡數捉來道路有弊其中緊要大關人一時捉來但重犯之人或有逃亡之弊監司先囚而啓可也

《中宗實錄 卷第45, 57面》

중종 17년 8월 15일(무자)

“평양(平壤) 서윤(庶尹)과 판관(判官：류효정(柳孝汀)과 이충(李叢)이다.)의 외람한 일은 필시 의주목사(義州牧使)가 잘 단속하지 않은 데서 생겼을 것입니다. 무릇 연경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월강유서(越江諭書)를 가지고 마필을 점검하고 또한 화인(火印)을 상고하여 일일이 점검해서 출입시켜야 하는데, 목사(牧使：김양필(金良弼)이다.)는 소홀히 하여 규찰하지 않아서 외람한 일이 생기게 하였으니 추고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유원첨사(柔遠僉使) 김극달(金克達)은 본래 광패(狂悖)하고 주장장이므로 변진(邊鎭)의 중임을 맡길 수 없으니 속히 체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라도는 사무가 많은 곳인데, 감사 신상(申鎋)이 추고를 당하여 오랫동안 행공(行公)하지 못하고 있으니 체직하는 것이 옳겠고, 장례원(掌隸院)의 관원은 조율(照律)하는 것이 옳겠으며, 평양의 서윤과 판관의 범행을 근래 듣지 못한 일이니 매우 통탄하는 바이다. 의주목사를 과연 적격자로 시킨다면 연경에 가는 사람을 규찰하여 외람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일에 김극성(金克成)과 이기(李芑) 등은 문무가 겸전했기 때문에 보냈던 것이다. 김양필도 무재(武才)가 있어 쓸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찌 의주목사의 직임에 맞겠는가? 추고하면 규찰의 일을 삼갔는지 않았는지를 자연 알 것이다. 김극달의 일은 아뢴 바가 사실이라면 유원처럼 중요한 곳에는 보낼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戊子○臺諫啓前事憲府啓曰平壤庶尹判官柳孝汀李叢猥濫事必義州牧使不能檢擧而然也凡赴京物件以越江諭書點檢馬匹亦考火印當一點考而出入牧使金良弼慢不糾察使有猥濫之事請推考且柔遠僉使金克達本狂悖使酒不可付以邊鎮重任請速遞傳曰全羅道煩劇之地監司申錫被推久不行公可適也掌隸院官吏照律可也平壤庶尹判官所犯近來所未聞者予甚痛憎義州牧吏果得人則自當糾察赴京之人使不得猥濫也故前日金克成李芑等皆以文武兼全者遣之金良弼亦有武才可用之人然豈甚合於義州耶推考則自知檢察之謹不謹也金克達事若如所啓則柔遠重地不可遣也餘皆不允
《中宗實錄 卷第45, 62面》

중종 17년 10월 5일(정축)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재변이 있는데도, 금부가 추문(推問)하는 이충(李叢)·류효정(柳孝汀)·김유월(金六月)과 장도(獐島)에 왕래한 사람들 및 상산도정의 일을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하여 자못 시급히 처결하는 의의가 없으니 금부에 말하라.”
○丁丑○傳于政院曰今有災變禁府所推李叢柳孝汀金六月獐島往來人及常山都正事至今未決殊無速決之意其言于禁府
《中宗實錄 卷第46, 8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사성공(司成公) 류의신(柳義臣)

자는 개옹(介翁)이며 생졸년은 정확히 전하지 않으나 문과방목의 기록으로 보아 성종즉위(1470) 전후에 태어나 중종년간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지공 류숙(柳塾)과 문효공 어효침(魚孝瞻：父 魚變甲)의 따님인 함중어씨(咸從魚氏)의 2남 4녀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반정으로 정국공신에 영의정을 역임한 문성공 류순정(柳順汀)과 종형제간이며 충정공 빈(忠定公 濱)과 좌상공 부(左相公 溥)가 당질이다.

성종 23년(1492) 사마시에 합격 연산군 8년(1502) 별시문과에 급제 중종 2년 지평(持平) 중종 4년(1509) 체찰사 종사관(體察使從事官)을 역임했다. 배위는 진사 남희(南恢：父 南俊, 祖 대사헌 南簡¹⁴⁶)의 따님인 의령남씨(宜寧南氏)

146) 남간(南簡)：?~?. 조선 세종 때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 1419(세종 1) 진사시에 합격. 조상의 덕으로 형조 좌랑(刑曹佐郎)이 되고, 1427년(세종 9) 문과에 급제. 좌정언(左正言)을 거쳐 1430년 지평(持平). 2년 후 좌헌납(左獻納). 1436년 장령(掌令)을 지내고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에 올랐다. [문헌] 世宗實錄.

이다. 남희의 어머니는 진주강씨(晉州姜氏)로 류의신의 할아버지 류자혜의 동서인 강석덕(姜碩德)¹⁴⁷의 따님으로 혼맥이 이어지고 있다. 2남 5녀를 두었는데 첫째 한(澣)은 참봉이며 둘째 섭(涉)은 문과에 급제하고 목사를 역임했다. 다섯 딸의 사위는 죽산인 이조정랑 안세언(安世彦) 문화인 류희식(柳希湜) 광복수(廣福守) 전주인 이존영(李存英：父 加思君 份) 파평인 윤안방(尹安邦) 연안인 이공(李崐)이다.

燕山壬戌八年別試榜

一等 一人

進士 宋世琳(礪山人)

二等 四人

進士 李蘋(德水人), 生員 沈貞(豐山人), 生員 李長坤(碧珍人), 進士 朴壕(務安人)

三等 九人

進士 洪彦邦(岳溪人), 進士 姜洪(晉州人), 進士 金良輔(慶州人), 進士 辛世瑚(靈山人), 進士 李守義(廣州人), 生員 柳義臣(晉州人), 生員 金錫弼(扶安人), 生員 黃瑋, 進士 南褒(宜寧人)

연산군 10년 윤 4월 17일(정축)

이운거(李云柜) · 우윤공(禹允功) · 한순(韓珣) · 최해(崔滢) · 조원기(趙元紀) · 류응룡(柳應龍) · 신복순(申復淳) · 김수경(金壽卿) · 이창윤(李昌胤) · 윤순(尹珣) · 류방(柳房) · 최중홍(崔重洪) · 신영철(申永澈) · 손관(孫灌) · 박겸무(朴兼武) · 김곤(金琨) · 이창년(李昌年) · 최세준(崔世琰) · 신세호(辛世瑚) · 류의신(柳義臣) · 노종(盧種) · 송징(宋澂) · 이철명(李哲明)은 의논드리기를,

“조지서 · 정성근 · 구성 · 최숙근 등의 죄범이 지극히 중하니,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성근은 간흉하고 사특하며, 지서는 궤홀하고 오만하니, 그들의 심술이 대개 이러합니다.”

○丁丑 李云柜禹允功韓珣崔滢趙元紀柳應龍申復淳金壽卿李昌胤尹珣柳房崔重洪申永澈孫灌朴兼武金琨李昌年崔世琰辛世瑚柳義臣盧種宋澂李哲明議趙之瑞鄭誠謹具誠崔叔謹等罪犯至重置之極刑甚當且誠謹奸回邪僻之瑞詭譎傲慢其心術如《燕山君日記 53, 11面》

147) 강석덕(姜碩德) : 1395년(태조 4)~1459년(세조 5). 조선의 명신. 자는 자명(子明). 호는 완역재(玩易齋). 시호는 대민(戴民). 희안(希顔). 희맹(希孟)의 아버지. 세종 때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형조 참판(吏·刑曹參判). 지돈녕 부사(知敦寧府事) 등을 지냈다. 청렴 결백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시·서예에 능하였다. [문헌] 世宗實錄.

중종 2년 4월 6일(기묘)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持平) 류의신(柳義臣)이 아뢰기를,

“근래 사풍(士風)이 좋지 못하여 탐오(貪汚)한 것이 풍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백리(清白吏)의 자손을 등용하여 뒷사람들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조숙기(曹淑沂)는 나이 늙은 재상으로 거리낌 없이 탐욕을 내니 반드시 의논을 모을 것이 없이 파직하소서. 한위(韓偉)의 가자(加資) 역시 반드시 전례를 상고할 것이 없습니다.”

○己卯 御朝講持平柳義臣曰近來士習不美貪汚成風請錄用清白吏子孫以勸後人曹淑沂以年老宰相貪黷無忌不必收議而罷之韓偉之加亦不必考例 《中宗實錄 卷2, 47面》

중종 2년 4월 17일(경인)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동지사(同知事) 신용개(申用漑)¹⁴⁸ · 시독관(侍讀官) 김관(金寬) · 지평(持平) 류의신(柳義臣) · 정언(正言) 조방언(趙邦彦) · 검토관(檢討官) 김내문(金乃文) · 기사관(記事官) 이희증(李希曾)과 정웅(鄭熊) 등이 면대하여 자광(子光)의 죄를 진언하였으나 운허하지 않았다. 용개(用漑)가 이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장관은 물망 있는 자를 택차(擇差)하여야 하겠습니까. 또 사학(四學)에도 성균관의 윤차당상(輪次堂上)의 예에 따라, 따로 한 명을 선정하여 윤차로 나가 일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문관(弘文館) 관원은 또 한 달에 세 번씩 제술(製述)하고, 그 밖의 문신들 역시 이 예에 따라 시제(試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직강(直講) 이철균(李鐵鈞)은 인물이 출중하고 경학(經學)에 밝아 사표(師表)가 될 만한데, 직위가 낮으니, 자품(資品)을 올려 주소서.”

하고,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은 아뢰기를,

“철균의 사람됨은 진실하고 길치레가 없으며 행실이 고매한 자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좇아 자품을 뛰어 승서(陞叙)하게 하였다.

○庚寅 御朝講同知事申用漑侍讀官金寬持平柳義臣正言趙邦彦檢討官金乃文記事官李希曾鄭熊等面陳子光之罪 上不允用漑仍啓曰成均館長官當以有物望者擇差又於四學依

148) 신용개(申用漑) : 1463년(세조 9)~1519년(중종 14). 조선의 정치가. 자는 개지(漑之). 호는 이락정(二樂亭). 시호는 문경(文景). 본관은 고령(高靈). 신숙주의 손자. 어려서부터 기품이 높고 총명하여 어려서 사마시에 합격, 활쏘기에 출중하였고 1488년(성종 19) 문과(文科)에 급제, 승문원 권지(權知)가 되었다. 이어 홍문관 정자(正字)가 되고, 다시 수찬(修撰)으로 진임했다. 4년간 왕을 모셔 성종은 어의(御衣)를 벗어 입혀주기까지 하였다. 연산군 때 직제학, 도승지를 지내다가 강직한 성격이 연산군의 비위에 거슬려 영광(靈光)에 귀양을 갔고, 중종 반정 후 우의정을 거쳐 1518년 좌의정을 역임했다. 타고난 인품이 호협하고 깨끗하여 범치 못할 점이 있었으며 당대 선비들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문헌]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成均館輪次堂上例別定一員輪次往任何如弘文館員亦當一朔三次製述其餘文臣亦依此例試製何如直講李鐵鈞人物不卑經學精明合於師表而職位卑微請加其資領事成希顏曰鐵鈞之爲人悃悃無華而行高者也 上從之命超資陞叙

《中宗實錄 卷2, 57面》

중종 2년 5월 2일(갑진)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지평(持平) 류의신(柳義臣)이 강혼(姜渾)과 강옥건(姜玉堅) 등의 일을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남치원(南致元)은 나이가 젊고 경력이 없어서 금병(禁兵)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의과(醫科) 출신에게 벼슬길을 허통(許通)하는 단서를 열어놓을 수는 없는데, 하물며 조종(祖宗)의 옛법이 아님이겠습니까? 옛말에, ‘옛 법대로 따른다.’ 하였으니, 마땅히 조종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고 어지럽게 고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정언 조방언(趙邦彦)이 또 이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甲辰 御朝講持平柳義臣論姜渾姜玉堅等事且曰南致元年少不更事不宜典禁兵請速改正醫科出身許通仕路不可開端也況非 祖宗之舊法乎古云率由舊章當遵守 祖宗之成憲而不當紛更也正言趙邦彦亦以是論之不允

《中宗實錄 卷3, 3面》

중종 2년 7월 1일(임인)

대사헌 민상안(閔祥安) · 대사간 강경서(姜景叙)¹⁴⁹ · 사간 김당(金瑄) · 집의 윤은보(尹殷輔) · 장령 이원성(李元成)과 강중진(康仲珍) · 헌납 김승조(金崇祖) · 지평 류의신(柳義臣)과 이사균(李思鈞) · 정언 신봉전(申奉全)과 박거린(朴巨鱗)이 아뢰기를,

“사노(私奴) 양귀성(梁貴成)이 본부(本府)에 정장(呈狀)하기를, ‘내수사(內需司) 서제(書題) 이성손(李盛孫) · 상궁(尙宮) 임씨(林氏)와 집 일로 서로 다툰 때, 내수사에서 공공연하게 잡아다가 혹 상처나도록 때리고 혹 공갈하여 서로 다툰 지 못하도록 했다.’ 하므로, 본부에서 곧 이성손을 불러다 물어 보니, 성손이 답하기를, ‘귀성이 나와 서로 다투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추문하겠는가, 이는

149) 강경서(姜景叙) : 1443년(세종 25) ~ 1510년(중종 5). 조선의 문신. 자는 자문(子文). 호는 초당(草堂). 본관은 진주(晉州).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생. 1477년(성종 8)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 정자(正字)가 되고 1489년에 교리(校理)로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장령(掌令)으로서 1497년(연산군 3)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병과로 급제, 집의(執義)가 되고 이듬해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회령(會寧)에 유형되었다가 1501년 풀려 나왔고 1507년(중종 2) 문신 정시(文臣庭試)에 급제하고 승지(承旨), 대사간을 역임했다. [저서] 草堂集. [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冲齋集. 燃藜室記述.

반드시 형방(刑房) 별좌(別坐)의 소위이니, 부(府)에서 그를 불러 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본부에서 또 형방 양수동(梁壽同)을 추문한즉, ‘설맹손(薛孟孫)이 승전(承傳)을 받들어 추문한 것이라’ 하므로, 신등이 그 진위를 밝히려고 취품(품의하고 그 답을 기다림.)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과연 그런 명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송(詞訟)하는 자는 혹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관[該司]에 고하여 퇴장(退狀: 정장(呈狀)의 각하.)을 받은 연후에야 상언(上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정원을 거친 뒤에야 분간하게 되며, 따로 내수사로 하여금 그 다루는 송사를 추문하도록 한다는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구중(九重)의 깊은 궁궐에 계시니, 자질구레한 백성의 일을 어찌 아시리까? 바라건대, 계달한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한순은 전자에 이미 내보낸 궁녀 귀비석(貴非石)을 간음하고, 이제 또 천과(天科) 홍청 수생(水生)·양비(楊妃) 등을 간음하였습니다. 순은 폐주에게 꿈을 받던 신하로 소행이 이러하니 길가 사람들이 지목하기를, ‘행동이 금수와 같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죄를 다스려 사류(士類)에 끼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줄은 만약 그 때 고변하였다면 화가 헤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니, 바라건대 속히 공신(功臣)에게 삭제하여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사노 양귀성이란 자는 성종의 보모 장명(長命)이 버린 남편의 조카로서 전혀 장명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그 가재(家財)를 망녕되어 탐내어 서로 다루기 때문에, 폐조 때 이미 치죄(治罪)하였었는데, 이제 또 다룬다는 소리를 듣고 곧 내수사로 하여금 추문하게 한즉, 가재 때문이 아니요, 집 때문이라기에 그냥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대비께서 보모에게 고려하는 바가 계시어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한순·이줄의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七月壬寅朔大司憲閔祥安大司諫姜景叙司諫金璫執義尹殷輔掌令李元成康仲珍獻納金崇祖持平柳義臣李思鈞正言申奉全朴巨鱗啓曰私奴梁貴成呈狀于本府云與內需司書題李盛孫尚宮林氏家舍相爭之際內需司公然捉去或傷打或恐赫使不得相爭云故本府卽致李盛孫問之盛孫答曰貴成與吾相爭吾何以推其人乎是必刑房別坐所爲府若招問則可知矣本府又推刑房梁壽同則曰薛孟孫奉承傳推之云臣等欲覈其眞僞取稟傳曰果有是命云大抵凡詞訟者或有冤悶則必告該司受退狀然後上言又必由政院然後分揀未聞別令內需司推其爭訟也殿下深居九重細民之事何以得知請問所啓之人以治其罪韓尙前者旣奸放出宮女貴非石今

又奸天科興清水生楊妃等恂以廢王幸臣所行如此道路目之曰行同禽獸請速治罪不齒士類李茁若其時上變則禍將不測請速削功待之以不死傳曰 大妃教曰私奴梁貴成者 成宗保母長命棄夫之姪子也專不干於長命而其家財妄料相爭故廢朝既已治罪矣今又聞相訟故即令內需司推之則非家財也乃家舍故即置之 大妃於保母有所顧念故有是命也非因他人也韓恂李茁事不允

《中宗實錄 卷3, 26面》

중종 2년 7월 17일(무오)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류의신(柳義臣)·정언 신봉전(申奉全)이, 한순·이줄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비답하지 않았다.

○戊午 御朝講持平柳義臣正言申奉全論韓恂李茁事 上不答 《中宗實錄 卷3, 36面》

중종 2년 7월 21일(임술)

조참(朝參)을 받았다. 조강에 납시었다. 헌납 김승조(金崇祖)·지평 류의신(柳義臣)이, 이줄과 류자광·직숙 승지(直宿承旨)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壬戌 受朝參 御朝講獻納金崇祖持平柳義臣論李茁及柳子光直宿承旨等事不允 《中宗實錄 卷3, 39面》

중종 2년 7월 28일(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헌납 김승조(金崇祖)·지평 류의신(柳義臣)이, 이줄·류자광과 구수영·파방 등의 일로 아뢰었다. 박원종도 역시 '그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한 죄는 철저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다 윤택하지 않았다.

○己巳 御朝講獻納金崇祖持平柳義臣以李茁柳子光及具壽永罷榜等事啓之朴元宗亦言其史局漏洩之罪不可不痛治皆不允 《中宗實錄 卷3, 40面》

중종 2년 8월 3일(갑술)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류의신(柳義臣)·헌납 김승조(金崇祖) 등이 구수영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甲戌 御朝講持平柳義臣獻納金崇祖等論具壽永不允 《中宗實錄 卷3, 43面》

중종 2년 8월 12일(계미)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류의신(柳義臣)·정언 신봉전(申奉全)이 가례청(嘉禮廳)에 가자하는 것과 이세희·고안정·이안세 등의 일을 논의하였다. 영사(領事) 성희안

(成希顔)이 아뢰기를,

“이세회·고안정은 특은(特恩)을 쓴 것이 아니라, 곧 신등과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방환(放還)한 것입니다. 또 종친(宗親)은 임사(任事)한 조관(朝官)들의 예와는 다르니 방환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세회는 이미 윤구(尹邁)의 사위라고 해서 방축(放逐)하였는데, 그 때에 신수근(愼守勤)의 사위인 신공섭(申公涉)도 역시 방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에 의해서 방환할 것을 요청해서 한 것이며, 특은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안정은 비록 작폐했다 하지만 작폐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방축을 당한 지 지금 벌써 해가 지났다. 이세회는 윤구의 사위로서 혼자만 귀양보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방면한 것이다. 가례 낭관에게 가자한 것은 처음에 정승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였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니, 다 말하기를, ‘이미 사문에 기재하여 성명(成命)이 내려졌으니 경홀히 고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 또 그 숫자도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윤택할 수 없다. 이안세의 일은, 어제 제조(提調)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마적(馬籍)을 수정하기 때문에 체직(撤職)한 것이며,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과실이 없다면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癸未 御朝講持平柳義臣正言申奉全論嘉禮廳加資及李世蒼高安正李安世等事領事成希顔曰李世蒼高安正之事非用特 恩乃與臣等詳議而放之也且宗親非如任事朝士之例雖放還無妨李世蒼則旣曰尹邁之壻而逐之其時如愼守勤之壻申公涉亦不被逐故請依例許放非用特 恩也 上曰高安正則雖作弊作弊之實未著又見逐今已經年李世蒼則以尹邁之壻獨竄不可故免放耳嘉禮郎官加初與政丞議定而今更議之則皆曰已載赦文成命已下似不可輕變且厥數亦少云故不允耳李安世事昨提調等來啓曰時方修馬籍故適之耳非以有過也若無過則不可罷職也

《中宗實錄 卷3, 48面》

중종 2년 8월 23일(갑오)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류의신(柳義臣)이 아뢰기를,

“도감 낭관에게 가자한 일은 여러 날 논계(論啓)하였으나 아직도 윤택을 받지 못하오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이같은 일은 마땅히 전하의 의향에서 결단할 것이옵지, 대신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이 처음에 건의한 것을 끝에 가서 어찌 말을 바꾸겠습니까?” 하였다.[중략]

류의신(柳義臣)이 아뢰기를,

“매사를 대신에게 의논하시는 것은 곧 도유 우불(都兪吁拂)의 풍도이지만, 그러나 전하의 이 때의 마음은 물이 파도가 일지 않은 것 같고 거울에 먼지가 끼이지 않는 것 같으니, 대신의 의논에 구애됨이 없이 하셔야 마땅한데, 만약 일마다 반드시 대신의 의논만 따르게 된다면 말세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여러 번 의논을 모았고 또한 사문(赦文)에 실었으니, 지금 고칠 수가 없다.”

하매, 류의신이 아뢰기를,

“상교에는 비록 ‘사문에 실려 바깥에 반포(頒布)하였다.’ 하시나, 외방의 사람들도 각기 생각이 있으니,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제 만약 고치면 외방에서 다 정당함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다.

○甲午 御朝講持平柳義臣曰都監郎官加資事累日論啓迄未允兪臣等失望如此之事當斷自宸衷不必議於大臣大臣初自建白終豈變辭乎[증략]義臣曰每事議于大臣此乃都兪吁拂之風然 殿下此時之心如水未波如鑿未塵不宜拘於大臣議而爲之也若事事必從大臣議而爲之則未流之弊恐亦有之 上曰已累收議亦載赦文今不可改義臣曰雖教云已載赦文頒布於外然外方之人亦各有心豈不知是非乎今若改之則外方必皆服其當矣

《中宗實錄 卷3, 53面》

중종 2년 8월 29일(경자)

○대사헌 민상안(閔祥安)·대사간 강경서(姜景叙)·사간 김당(金瑄)·장령 이원성(李元成)·지평 류의신(柳義臣)·헌납 류운(柳雲)·정언 신봉전(申奉全)과 박거린(朴巨鱗)의 좌친을 명하였다.

○庚子○命左遷大司憲閔祥安大司諫姜景叙司諫金瑄掌令李元成持平柳義臣獻納柳雲正言申奉全朴巨鱗

《中宗實錄 卷3, 72面》

중종 2년 9월 18일(무오)

지평 류의신(柳義臣)이 아뢰기를,

“무릇 의논을 수합하는 일은 한두 대신으로 더불어 의논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만약 널리 하문하신다면 그것이 지당한지 않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戊午 持平柳義臣曰凡收議事不可與一二大臣獨議若廣問則可知其當否矣

《中宗實錄 卷4, 17面》

중종 2년 9월 20일(경신)

○대사간 이맥이 아뢰기를,

“직임이 너무 무거우니 신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임하지 말라.”

하매, 또 아뢰기를,

“동료의 논계가 있어 서로 용납되지 못하오니, 개정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임이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논계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사임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특은을 베푸는 일로 논계하는 것이니, 사임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또한 대간에게도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였
다.[중략]

사간 이성동(李成童)·장령 경세창(慶世昌)·지평 류의신(柳義臣)과 이사공(李思
恭)·헌납 박상(朴祥)·정언 권복(權福)과 김굉(金磁) 등이 별도로 아뢰기를,

“이맥(李陌)은 척리(戚里 : 임금의 외척(外戚).)의 사람으로 공론에 맞지 않는 까닭
으로 이와 같이 아뢰입니다. 그밖의 대사헌(大司憲) 이하는 아무도 잘 아는 사람
이 없는 까닭으로 서로 힐난하며 아뢰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품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나 또한 부덕한데 어찌 사람이 현명한지 않은지를
알라? 어제 있었던 정사에서 특별히 기용된 자 가운데 어느 사람이 합당치 않는
가? 이른바 척리란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아뢰라. 또한 복시
의 시관은 내가 명하였는데도 경등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 역명(逆命)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사(司)에서 각각 한 사람씩만 가서 참여하더라도, 그 나머지 사
람들이 오히려 언사(言事)할 수 있으니, 사헌부에서는 지평 류의신을, 사간원에
서는 헌납 박상을 가서 참여케 하라.”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지금 정사에서 임용된 사람은, 그 당치 않은 사람을 임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무릇 사람을 임용하려면 마땅히 전조에 하문해 보심이 공의(公議)에 지당해서입
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오직 요임금[帝]도 그것을 어렵게 여긴 까닭으로 감
히 아뢰었습니다. 복시의 시관으로 가서 참여하지 않는 일은, 역명이 아닙니다.
신등은 대간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가서 참여할 수 없는 것이며, 신등은 같
은 말로 사직했으니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명을 받들고 가서 참여
한다면 위의 뜻을 따르는 대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척리」라고 말씀드린 일
은, 이맥(李陌)과 윤호(尹壕)와는 사촌인데도 전하께서 특별히 임용하셨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사정을 따라 사람을 임용했다는 물의가 있을까 염려
한 까닭에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였다. 류의신과 박상이 별도로 아뢰기를,

“국가의 대사를 합사하여 입계(入啓)하고 나서 사직했으니, 신등은 의리에 홀로 대간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가서 참여하라고 명하시더라도 대체가 미편하오니, 신등은 뜻을 따르는 대간이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대사에 대하여 윤허를 받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가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척리의 사람일지라도 현명하면 임용해야 하고 현명하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며, 대간의 말도 들을 만하면 들어야 하고 들어 줄 수 없는 일이면 들어 주지 않는 것이니, 저들이 복시의 시관으로 가서 참여하더라도 뜻을 따르는 대간이라고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도 들어 줄 만한 일이면 들어 준다. 저 시관의 일은 다 대간의 소임인 까닭으로 가서 참여하도록 명하였는데도 오히려 가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름까지 쓰고 가서 참여하게 하였는데도 가서 참여하지 않으니, 임금과 신하의 분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역명이 아닌가? 류의신과 박상 등은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추문(推問)토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회계(回啓)하기를,

“대간의 아뢴 일이 심히 부당하면 진실로 추문해야 하지만, 그러나 언사(言事)할 즈음에 갑자기 이와 같이 추문한다면 사체(事體)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척리의 사람도 현명하다면 임용됨이 지당하지만, 만약 전조에 하문해 보지 않으면 사람 임용하는 길이 잘못될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감히 아뢰었습니다. 대저 인주의 잘못된 일은 숨김없이 다 말해야 하는데,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논쟁하는 사람은 대간입니다. 만약 대간이 한 말을 역명이라 하신다면, 언로(言路)가 막혀지고 총명이 날로 가리워질 것이니, 심히 불가합니다. 옛말에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린다.’ 하였고, 또, ‘말이 당신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로써 역명이라고 하신다면 신등은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합사하여 사직한 것인데, 류의신과 박상이 어찌 혼자서만 대간의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척리의 사람이라도 현명할 것 같으면 임용됨이 마땅하다. 깊이 그 사람의 현명함을 안다면 전조에 하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내가 한갓 그 사람의 이름을만 알고 그의 사람됨을 몰랐다면 하문해 보고 임용해야 마땅하다. 내가 귀에 거

슬리는 것을 꺼려서 말함이 아니다. 복시의 시관은 대간의 소임인 까닭으로 가서 참여하기를 명한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언사 때문에 죄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쓰고 가서 참여하게 하였는데도 가서 참여하지 않았으니, 역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庚申○大司諫李陌啓曰職任甚重非臣之所能堪也請辭傳曰勿辭又啓曰同僚論啓不可相容請改傳曰以所任不合啓之則固當辭之今以特恩啓之其勿辭遂命饋酒又命饋酒于臺諫[中略]司諫李成童掌令慶世昌持平柳義臣李思恭獻納朴祥正言權福金瑄別啓曰李陌戚里之人不協於公論故如此啓之其餘大司憲以下以不詳知故相詰不啓傳曰人品予何能知予亦不德安知人之賢否昨政特用者何人不當耶所謂戚里者何以云乎其詳啓之且覆試試官予命之而卿等不往云何異逆命一司雖各一員往參其餘猶可言事司憲府則持平柳義臣司諫院則獻納朴祥往參臺諫又啓曰今政所用之人非謂用非其人凡用人當問銓曹則於公議當矣知人惟帝其難之故敢啓覆試未參事非逆命也臣等不得其職未可往參臣等同辭辭職何參乎今若奉命而往則以順志臺諫也且戚里之事李陌與尹壕四寸而一殿下特用臣等之意恐物議以殿下爲徇私用人故敢啓柳義臣朴祥別啓曰國家大事合司入啓而辭職臣等義不可獨行臺諫之事雖命往參大體未便臣等不欲爲順志臺諫也大事不得蒙允決不可往參傳曰雖戚里之人賢則用之不賢則棄之臺諫之言可聽則聽之不可聽則不聽彼往參覆試非謂順志臺諫仍傳于政院曰臺諫之言可聽則聽之彼試官皆臺諫所任故命往參之而猶不往參題名往參而亦不往君臣之分安在此非逆命耶柳義臣朴祥等其下義禁府推之政院回啓曰臺諫所啓至爲不當固當問之然言事之際遽爾如此於事體何如臺諫啓曰戚里之人若賢當用之若不問銓曹則恐誤用人之道故敢啓大抵人主過誤盡言無諱與人主爭是非者臺諫也若以臺諫之言爲逆命則言路杜塞聰明日蔽甚不可也古云忠言逆耳又云有言逆于汝心今以此爲逆命則臣等不勝失望臣等合司辭職而柳義臣朴祥豈獨行臺諫之事乎傳曰戚里之人若賢則當用之深知其人之賢則何必問于銓曹若予徒知其名不知其人則當問而用之我非以逆耳爲憚而言之覆試之官乃臺諫之任故命往矣傳于政院曰予非以言事罪之題名往參而不往非逆命而何《中宗實錄 卷4, 18面》

중종 2년 9월 21일(신유)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대간을 가두라고 하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뢰는 말이 과연 큰 잘못이 있었습니까만, 언사한 끝에 갑자기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시니, 즉위하신 초인지라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류의신과 박상이 역명하였다 하여 의금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등은 회

천(回天 : 임금의 뜻을 돌이키게 함.)하기로 기약하였사운데 도리어 역명이라고 하고 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 언사할 때라면 시관에 참여할 수 있사오나,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니 대간의 소임을 행할 수 없는 까닭으로 가서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등이 함께 사직하기로 같이 의논하여 참여하지 않았는데, 유독 류의신과 박상 만이 갇히게 되었으니, 신등도 옥(獄)에 나가겠습니다.” 하였다.[중략] 홍문관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간언(諫言)을 따라 물흐르듯 따르시다가 전일에 이미 좌천시킨 일이 있고, 지금 또 옥에 가두시니, 그 조짐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끝을 조심하기를 시작할 때와 같이 하여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과실을 뉘우치시어 성덕을 더 쌓으소서.”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박상과 류의신은 비록 시관으로서 참여코자 하였으나, 신등과 함께 의론하고 가지 않았으니, 청컨대 옥에 나가서 함께 역명한 죄를 받게 하여 주소서. 지금 또 하교하시기를, ‘명일 시행하는 중시에도 또한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시었으나, 신등은 결단코 가서 참여치 않겠습니다.” 하였다.[중략]

○ 육조(六曹)의 당상(堂上)들이 아뢰기를,

“신등은 듣건대 대간이 하옥되었다 합니다. 그 사람의 죄상을 모르오나, 중외(中外)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자애하신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소서.”

하였다. 대간에 전교하기를,

“류의신과 박상이 공술(供述)하기를, ‘신등은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며, 대간의 소임을 행하다가, 생각이 우연히 어긋났을 뿐입니다.’ 한데, 내 생각에는 비록 사직했다라도 소임을 행할 수 있건만 가서 참여하지 않았으니, 명을 거역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미 형추(刑推)하기를 명하였는데, 지금은 또 소임을 행하지 않으니, 내가 능히 이겨낼 수가 없다. 중시의 시관으로도 참여하지 말라. 대간이 벼슬살이를 이와 같이 한다면, 백관을 규찰(糾察)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문·무과(文武科)의 시관으로는 참여하고, 잡과의 시관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찌 전후가 각각 다른가?” 하였다.

○辛酉政院曰昨日命囚臺諫其所啓之言果有大失然言事之餘遽命囚禁即位之初孰不駭愕

○臺諫合司啓曰昨日擢義臣朴祥以逆命被囚臣等以回天爲期而反以逆命教之臣等缺望言事之時則可叅試官至於辭職則不可行臺諫之任故未往耳臣等俱以辭職同議不叅而獨柳義臣朴祥被囚臣等請就獄[中略]

弘文館又啓曰 殿下即位之始從諫如流頃既左遷今又囚繫漸不可長伏願 殿下慎終如始

優容悔過以增 聖德臺諫啓曰朴祥柳義臣雖欲往叅與臣等同議不往請就獄同受逆命之罪
今又教曰明日重試亦不叅乎臣等決不往叅[中略]

○六曹堂上等啓曰臣等聞臺諫下獄未知其人罪狀中外駭愕伏願 聖慈優容傳于臺諫曰柳
義臣朴祥供曰臣等非逆命也行臺諫所任計料偶錯予意以爲雖辭職可行所任而不往叅逆命
明白故已命刑推今又不行所任予不能勝之重試試官其勿叅焉臺諫居職如此而糾察百官難
矣况文武科試官則叅之雜科試官則不叅何前後各異乎傳于 《中宗實錄 卷4, 19面》

중종 2년 9월 22일(임술)

○대간이 합사하여 상차(上筭)하기를,
“신등은 외람되어 녹공한 것을 가지고 10여 일을 계속하여 대궐에 엎드려 불가
함을 극론(極論)하였으나, 천청(天聽)을 돌리지 못하니, 이는 신등이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라, 마땅히 물러가야 할 일입니다만, 구구한 정성이 스스로 그칠
수 없어, 다시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를 무릅쓰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책훈(策勳 : 공훈을 기록하는 것.)은 공이 있는 자를 보답함인데, 함부로 공 없는 자
에게까지 베푸니, 그 실수의 첫째요, 김감(金勘)에게는 당연히 물어야 할 일인데
묻지 않고, 숙창(叔昌)은 당연히 체직해야 하는데 체직하지 않으니, 그 실수의
둘째이며, 작록(爵祿)은 덕 있는 사람에게 명해야 하는데 함부로 악덕한 사람에
게까지 미치니, 그 실수가 셋째요, 원종(原從 : 등 외의 공신)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추록(追錄)한 자가 많고, 전조(이조)에서 주의(注擬)¹⁵⁰⁾했는데도 간혹 특지(特
旨)가 있어 편사(便私)의 폐단을 열어 주니, 그 실수가 넷째입니다. 또한 공신
회맹(功臣會盟)이 시급한 일이 아닌데, 다시 근일로 날짜를 정하고 망궐례(望闕
禮)를 정지하면서까지 행하려고 하시니, 신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능소
(陵所)에 배알(拜謁)하는 것은 선조를 받드는 일이요, 성묘(聖廟)에 배알하는
것은 학문을 존중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초정(初政)의 급선무인데도 소홀히 여
기고, 다른 일에만 급급하여 경중(輕重)의 마땅함을 잃고 있으시니, 신등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피를 마시며 맹세하여 귀신에게 질정(質正)을
요구하는 것은 말세(衰世)인 춘추시대의 글이라, 성인(聖人)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가령 신(神)이 지각이 있다면 공 없는 자와 함께 더불어 질정을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수치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늘을 속이는 일이 되지 않겠
습니까? 이는 실수에 거듭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언관 자리에 있어 전
하의 이같은 실수를 보고 감히 묵과할 수 없어 반복하여 간청드렸으나 끝내 받

150) 주의(注擬) : 관원을 서임(叙任)할 때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각각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왕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라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에 점을 찍어 임명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

아들이지 않으시니, 이는 신등이 이미 언책(言責)을 잃은 것으로 사직을 결의한 것인데, 곧 명을 좇는 것은 의리상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류의신(柳義臣)·박상(朴祥)과 함께 의논하여, 잡과(雜科)에다가 고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을 거스리려는 것이 아니요, 바로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신등은 편안히 재직(在職)할 수 없사오니, 신등을 파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나의 실수를 지적하지만, 내가 어찌 요량하지 않고 하겠는가? 비록 파직을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는다.”

하매, 대간 등이 사직하고 물러났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대간의 사직서는 내일 돌려 주도록 하라. 또한 치재(致齋) 때에는 일반 공사(公事)는 입계(入啓)하지 않는 것인데, 이같이 번잡하게 아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다음날 대간에게 하교하기를,

“경등은 어찌 생각이 없는가? 무릇 제사의 치재 때에는 오직 향사(享事)만 아뢰는 뿐이다.”

하였다.

○정부(政府)가 아뢰기를,

“류의신(柳義臣)·박상(朴祥)은 대간으로서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특별한 전교가 있는데 가지 아니했다면 명을 거스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일을 말하고 사직할 때였으므로 대간은 직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아니한 것이옵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대간은 지나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일에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말을 다하는 것이요, 이 두 사람 또한 전하를 믿고 이같이 한 것 뿐입니다. 만일 역명(逆命)으로 죄를 다스리신다면, 신등은 할 말을 다하는 자가 없을까 염려합니다. 더구나 폐조에서 간관(諫官)을 억제하여 말을 못하게 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된 것은 전하께서 친히 목격하신 일입니다. 근자에 대간이 이미 좌천되고, 지금 또 수감당한 것은 몹시 불미한 일입니다. 성종(成宗) 때에 대간이 승전(承傳)을 봉행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 홍문관 관원이 윤필상(尹弼商)의 불윤비답(不允批答)을 갖지 않고 떠난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역명이라 할 수 있으되, 오히려 너그럽게 용납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즉위 초에 역명이라 하여 대간을 죄주고 사책(史策)에 기록해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언사(言事)가 아니고, 승전을 받들지 아니한 때문이라 할지라도 대간의 일은 일일이 너그럽게 용납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간을 억제한다면 위로 주상(主上)의 실수에서 아래로 백관(百官)의 과실에 이르기까지 누가 규찰하겠습니까? 대간을 맡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복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추문하지 마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대간을 위해 다 함께 와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말하기를, 역명이라 하여 크게 놀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어질지 못한 까닭으로 잘못 헤아려 역명(逆命)이라고 했겠는가? 내가 실지로 어질지 못하여 대간이 이같이 했다면, 대간(臺諫)을 부리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또한 성종 때 유호인(兪好仁)이 비답을 갖지 않고 떠났는데도 죄를 주지 아니한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과는 다른 것이다. 대간의 일이 경등의 생각에 옳다면 내가 마땅히 포기하겠다.”

하매, 다시 아뢰기를,

“이제 이 두 사람은 복시(覆試)에 가라고 명했는데 가지 않았으니, 실로 지나친 일이라, 마땅히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직사(職事)에 힘을 다한 것뿐이니, 만일 이것으로써 죄를 주신다면 이목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 몸을 아끼지 않는 자가 없는데, 누가 진언하려 하겠습니까? 언로(言路)가 막힐까 염려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지나친 것은, ‘이같이 매우 정직한 연후에야 상이 마음을 들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일로 허물을 따지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납하신다면 성덕에 더욱 빛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壬戌○臺諫合司上筭曰臣等將錄功猥濫等事連旬伏閣極論不可未回 天聽是臣等不能盡其職分在所當去然區區之誠不能自己更冒 天威伏以策勳所以報有功而混施於無功其失一也金勘當問而不問叔昌當適而不適其失二也爵祿所以命有德而濫及於惡德其失三也原從已定而追錄者多銓曹注擬而間有特旨以開偏私之漸其失四也且功臣會盟固非急事更卜近日至停望闕禮欲行之臣等所未解如拜 陵所以奉先謁聖所以尊學皆初政之當急尚未暇爲而反汲汲於彼以失輕重之宜臣等尤未解况敵血會盟要質鬼神春秋衰世之書非聖人所貴假令神其有知並與無功者要質神必羞之其不幾於欺天乎是所失之中又有失焉臣等備員言官見 殿下所失如此不敢容默反覆懇啓竟未見納是臣等已失言責決意辭職而旋即趨命義所不可故與柳義臣朴祥共議不往試雜科非所以逆命直欲盡其責耳臣等亦不可安然在職請罷臣等之職傳曰卿等雖數予之失予豈不計而爲之乎雖請罷職不允臺諫辭職而退○傳于政院曰臺諫辭狀明日還給且致齋時則凡公事不入啓如此煩啓何也明日教臺諫曰卿等何不思乎凡祭祀致齋唯啓享事○政府啓曰柳義臣朴祥以臺諫被囚此人若別有傳教而不往則以

爲逆命可也然方言事辭職之時不可行臺諫之事故不往豈有他意也臺諫雖有過當之事固當優容近日 殿下納諫故臺諫盡言此二人亦恃 殿下而如是耳若以逆命治罪則臣等恐無盡言者況在廢朝沮抑諫官使不得言以至誤國此 殿下目擊者也近者臺諫旣爲左遷今又見囚甚非美事也 成宗朝臺諫有不奉承傳者弘文館官員有不持尹弼商不允批答而去者是皆可謂逆命而猶且優容況今 卽位之初若以逆命罪臺諫書之史策則其可乎雖曰非以言事以其不奉承傳然臺諫之事必一一優容可也若挫抑臺諫則上自 主上之失下及百官之過誰能糾察乎使臺諫不言非國家之福請勿推傳曰卿等爲臺諫合言來言宜矣且曰以逆命爲駭愕亦宜然以予不良錯料以爲逆命耶予實不良而臺諫如此則其使臺諫者誰耶且 成宗朝俞好仁果不持批答而去其不之罪實是美事也然與今此之事殊異也臺諫之事卿等之心以爲是則予當棄之更啓曰今此二人命往覆試而不往實是過當宜可罪矣然是特盡力於職事耳若以此而罪之則駭於耳目凡人無不愛惜其身誰肯進言乎恐妨言路也今二人如此過當者其心以爲如此切直然後可以回天故也以如此之事不計其過失而優容則於 聖德尤有光矣

《中宗實錄 卷4, 22面》

중종 2년 9월 25일(을축)

축시(丑時)에 상이 모든 공신과 백관을 거느리고 북단(北壇)에서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고 드디어 삼혈(歃血)로 맹세하였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요사이 치재(致齋)로 인해 진언할 수 없었습니다. 류의신(柳義臣)·박상(朴祥)은 신등과 함께 의논하였는데도 그들만이 수감되었으니, 신등도 취옥(就獄)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홍문관은 아뢰기를,

“대간이, 바야흐로 사직하려 하는데 직임(職任)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 아니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말한 끝에 가두라고까지 분부하시니, 사신(史臣)이 책(策)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후세에서는 다만 전하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살피지 않을 것이니, 성덕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정원(政院)은 아뢰기를,

“대간의 일은 온 조정이 계청(啓請)하는 것이니, 좃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경등이 비록 함께 의논한 것이지만, 의신(義臣) 등은 제명(題名)하여 명하였는데 가지 않았으니, 이는 역명(逆命)한 것으로 경등과는 경중이 각각 다른 것이다.”

하고, 금부에 전교하기를,

“류의신·박상은 불복(不服)했기 때문에 형신(刑訊：형구로 고문하는 것.)을 명한 것이나, 대간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납해서 지금 다시 평문(平問：형구를 쓰지 않고 그냥 신문하는 것.)하는 것이니, 만일 다시 불복한다면 마땅히 형신해야 할 것이다. 신정(申滯)은 원훈(元勳：건국 또는 나라를 위해 큰 공로가 있는 것.)의 아들로서, 자신이 재상이 되어 처음에는 은휘하다가 형신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복하였다. 의신(義臣) 등이 역명한 사유를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고,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가라고 명했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니, 경등은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전하께서 ‘경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신등은 그들과 이미 함께 의논하였으니, 죄는 같을 것입니다. 어찌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예문관이 아뢰기를,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이니 잠시도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류의신·박상이 비록 지나친 일이 있더라도 전하께서 너그럽게 받아들여 대우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말씀 올리는 것이 곧 직분의 일이거늘, 수금을 명하고 또 형신을 명하시어, 중외(中外)를 놀라게 하며 조정이 해체되니, 신등은 사필(史筆)을 잡고 전하의 지나친 처사를 차마 쓸 수가 없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 특사(特赦)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부(政府)·육조(六曹)가 같은 사언으로 아뢰기를,

“류의신·박상을 형추(刑推)하는 일로 날마다 계청(啓請)하려 하였으나, 요사이 치재(致齋)로 인해 감히 계달(啓達)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말이 비록 지나쳤다고 할지라도 직임(職任)을 수행코자 한 것이오니, 지금 만일 이것으로 형신한다면 일을 말하는 자가 전혀 없어질 것이므로, 신등은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가라고 명했는데도 가지 않아 부득이 죄를 다스린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가라고 명했는데 가지 않은 것은 지나친 듯하나 직임을 행하려는 것이요 다른 뜻은 없는 것이니,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함께 의논하여 한 것일지라도 경중이 있기에 윤택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홍문관·예문관에 전교하기를,

“내가 언사(言事)로 죄를 준 것이 아니니,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홍문관·예문관이 다시 아뢰었다. 대간이 상차(上劄)하기를,
 “신등은 다같이 용렬한 자질로 분수에 넘는 언책(言責)을 맡고 있어,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를 범하면서 항론(抗論)하여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직책을 다하려는 것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겸허한 마음으로 간언을 받아들이시어 충명을 넓히시므로, 온 국민이 괄목(刮目)하여 서로 경하하였는데, 근래에는 점점 간쟁(諫爭)을 싫어하여 꾸지람을 더하십니다. 비록 주상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 할지라도 뇌정(雷霆) 아래에서 오히려 할 말을 다할 수 없는 것인데, 만일 즐겨 들어주지 않고 위엄으로 꺾으신다면 누가 감히 간하여 스스로 화를 취하려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명령대로 순종할 뿐이며, 구차하게 영합하여 목전의 안일만을 탐할 것이니, 위망(危亡)의 화가 반드시 여기서 비롯될 것입니다. 폐조의 사실을 거울 삼으시옵소서. 이제 공훈을 기록하고 노고에 보답함은 특별한 은전이온데, 공 없는 사람에게까지 함께 시행되어 산하(山河)에 맹세함이 일빈일소(一嘖一笑)보다 가볍게 되고, 두터운 은사(恩賜)가 한갓 공(公)을 고갈시키고 사(私)를 살찌게 하니, 다만 관작(官爵)이 참람할 뿐만 아니라 폐단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계형(繼衡)·은윤(殷尹)의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 숙창(叔昌)의 일에 경험이 적은 것, 김감(金勘)의 공론(公論)을 억제하는 것, 원종(原從)을 추록(追錄)하는 것, 특은(特恩)의 간출(間出 : 가끔 나옴)하는 것 등은 모두가 공론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등은 이를 차마 묵과할 수 없어 열흘 동안을 계속하여 간곡히 아뢰다 보니 누누이 성상의 뜻을 거슬렀는데, 이는 신등이 용렬하여 능히 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서입니다. 맹자는 이르기를, ‘언책(言責)을 가진 자가 그 말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물리간다.’[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을 결의한 것이며, 시관(試官)의 명은 의리상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상의 위엄이 두려워 명을 듣고 달려간다면 이는 구차히 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옛날 장강(張綱)이 수레를 묻고 떠나지 않은 것, 주운(朱雲)이 난간을 부러뜨리고 떠나지 않은 것, 양성(陽城)이 백마(白麻)를 찢어 버린 것, 이항(李沆)이 조서(詔書)를 따르지 아니한 것 등이 어찌 역명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 연후에 직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신등이 국사(國事)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게 하려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물리치시매, 신등이 정성을 다하여 극언하는 것은 군신(君臣)의 분수를 잃지 않으려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사체(事體)를 알지 못한다.’ 생각하여 죄를 더하시니, 어리석고 미련한 신등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이미 류의신·박상 등과 함께 의논하여 거취(去就)

를 결정한 것으로, 상(祥) 등의 죄는 곧 신등의 죄일 것이니, 어찌 경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함께 옥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중략]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류의신·박상을 석방하라.” 하였다.[중략]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말씀을 올렸는데도 따르지 않으시고, 사직했는데도 또한 윤택하지 않으시니 진퇴가 실로 어렵고, 취직하기도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신이 이미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했기 때문에 윤택하지 않으며, 나머지 역시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이맥은 마땅히 체직하겠다.”

했다.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났다. 류의신·박상이 아뢰기를,

“천은(天恩)이 지극하오나 다만 죄를 짓고 복직한다면 마음이 몹시 편치 못하오니, 개정해 주옵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추문을 당한 대간이 와서 아뢰니 어찌하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회계하기를,

“금부(禁府)는 조옥(詔獄)¹⁵¹이니, 비록 죄를 받았을지라도 파직하지 않았으면 취직하는 것은 전례입니다.”

하니, 류의신·박상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잘못이다. 조정에서는 언로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역시 언로를 중히 여겨 석방한 것이니, 취직하라.” 하였다.

○乙丑丑時 上率諸功臣及百官行會盟祭于北壇遂歃血以盟○臺諫合司啓曰近因致齋未得進言柳義臣朴祥與臣等同議而彼獨見囚臣等請就獄弘文館啓曰臺諫方辭職而往叅職任未便故不往耳別無他意也言事之餘至命囚之史臣書之於策傳之於後世後世徒知 殿下有是舉而不加察焉則有累於 聖德矣政院啓曰臺諫之事舉朝啓請不可不從傳于臺諫曰卿等雖同議義臣等題名命之而不往是逆命也與卿等輕重各異矣傳于禁府曰柳義臣朴祥不服故命刑訊矣以臺諫優容之今更平問若復不服當刑訊矣申澣元勳之子身為宰相初則隱諱而至刑訊乃服義臣等逆命情由更問以啓傳于弘文館曰臺諫命往而不叅卿等以為是乎臺諫更啓曰今以輕重各異教之臣等既與同議其罪同矣豈有輕重乎藝文館啓曰臺諫人主之耳目不可斯須去也今柳義臣朴相雖或過當 殿下當優容待之况所言乃其職分之事而遽命囚禁又命刑訊中外驚駭朝廷解體臣等操史筆不忍書 殿下過舉請優容特赦政府六曹同辭啓曰柳義

151) 조옥(詔獄) : 왕명(王命)으로 죄수를 다스리는 옥(獄), 즉 의금부.

臣朴祥刑推事欲連日啓請而近以致齋未敢啓達此人等言雖過當而欲行職任今若刑訊則言事者絕無矣臣等恐有累於 聖德敢啓答曰命往而不往不得已治罪又啓曰命往不往雖似過當只欲行其職任別無他意請優容傳于臺諫曰雖同議爲之有輕重故不允傳于弘文館藝文館曰予非以言事而罪之也不允弘文館藝文館又啓臺諫上筭曰臣等俱以庸資冒忝言責犯天威抗論不知自止者思欲盡其責耳 殿下臨御以來虛懷納諫用廣聰明一國臣民刮目相慶近來漸惡諫爭稍加詆責人主雖虛心迎納雷霆之下猶不得盡言如不樂聞折之以威則誰肯敢諫以自取禍乎將必唯唯諾諾苟容偷安危亡之禍未必不由此也廢朝之事亦足鑑矣今策勳酬勞非常之典而混施於無功盟山誓河輕於一嘖一笑隆恩厚賜徒爲瘠公肥私不唯官爵之濫弊亦不貲如繼衡殷尹之心術不正叔昌之少不更事金勳之沮抑公論原從之追錄特恩之間出皆不協公論物議喧騰臣等不忍容默連旬懇啓累忤聖旨是臣等庸劣不能回天孟子曰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是以決意辭職試官之命義不敢受若怵於天威聞命奔走則是苟徇 上志非直道事君之意也昔張綱埋輪不行朱雲折檻不去陽城裂白麻李沅不奉詔是豈逆命耶如此然後盡其職耳臣等論國事之非期於必正 殿下以爲不可聽而去之臣等竭誠極言欲不失君臣之分 殿下反以不識事體以逆命加罪臣等愚暗不知攸措臣等既與柳義臣朴祥同議以決去就祥等之罪卽臣等之罪也有何輕重臣等請就獄不允[中略]

○傳于政院曰柳義臣朴祥其放之[中略]

○臺諫又啓曰臣等進言而既不從辭職而又不允進退實難就職未安傳曰功臣已行會盟祭故不允餘皆不允李陌則當遞之臺諫辭職而退柳義臣朴祥啓曰天恩至重但作罪復職心甚未安請改之傳于政院曰被推臺諫如此入啓則何以爲之其議啓回啓曰禁府乃詔獄雖受罪若不罷職則就職例也傳于柳義臣朴祥曰爾等誤矣朝廷以言路爲重故予亦重言路而放之其就職

《中宗實錄 卷4, 23面》

중종 2년 9월 26일(병인)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공신을 개정해야 한다면, 어찌 이미 맹세했다 하여 개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신등의 직책은 언책(言責)에 있음에도 말을 납득시키지 못하니, 의리상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누누이 사양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으시니, 몹시 실망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은 들어 줄 수 없으나 취직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지평(持平) 류의신(柳義臣)·헌납 박상(朴祥)이 아뢰기를,

“이미 신등을 가두게 하시고, 또 복직하라 하시니, 대간은 예사 관직에 비할 것

이 아니요, 곧 임금의 이목(耳目)인 것입니다. 이미 옥에 매었는데 어찌 감히 부끄럽게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었으니, 취직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상이 근정전(勤政殿)에 납시어 회맹연(會盟宴)을 행했다.

○丙寅臺諫合司啓曰功臣若當改則豈以已盟而不改臣等職在言責而不得其言義不可冒處留辭而亦不允不勝缺望傳曰事不可聽其就職再啓亦不允持平柳義臣獻納朴祥啓曰旣繫臣等於獄而又使復職臺諫非凡官之比乃人主之耳目旣繫於獄又安敢靦然就職乎傳曰已有前例其就職可也○上御勤政殿行會盟宴
《中宗實錄 卷4, 25面》

중종 2년 9월 27일(정묘)

조강에 납시었다. 집의 류희철(柳希轍)이 아뢰기를,

“공신의 개정은 실로 공론이니, 쾌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조계형(曹繼衡)·신은윤(辛殷尹)에게는 파직도 너무 가볍거늘, 도로 불러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한숙창(韓叔昌)은 나이 30이 채 못되고 재덕도 없으니, 개정토록 하소서. 류의신·박상이 역명(逆命)으로 수금되었으니, 금후로는 할 말을 다할 사람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丁卯 御朝講執義柳希輟曰功臣改正實是公論請速快從曹繼衡辛殷尹罷職已輕不宜還收韓叔昌年未三十又無才德請改之柳義臣朴祥以逆命囚繫今後恐無盡言之人

《中宗實錄 卷4, 25面》

중종 2년 10월 8일(무인)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持平) 류의신(柳義臣)이 공신의 너무 외람한 것을 다시 논하고, 또 전에 일을 계하였으나, 좃지 않았다. 헌납(獻納) 박상(朴祥)이 아뢰기를, “상계서는 공신이 많으면 돕는 사람이 많아 길이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폐조에서는 스스로 인심이 이미 떠났음을 알고 관작(官爵)으로 굳게 맺어 놓으려 하였으나, 인심이 이반(離叛)하여 도리어 초월(楚越 : 거리가 먼 것의 비유.)이 되었으니, 작상(爵賞)으로 인심을 진복(鎮服)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예부터 반역(叛逆)은 공신에서 많이 나오니, 공신을 믿을 수 없음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조계형·신은윤은 서용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다시 서용하는 것은 상계서 반드시 공훈이 있어 쓸 만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역」에, ‘나라를 세우고 집을 계승하는 데 소인을 쓰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공신이라 하여 구태여 소인을 쓴다면 그 해가 어찌 적겠습니까? 만일 공으로 죄를 용

서한다면 왕법(王法)이 행해지지 않고, 만일 죄를 준다면 공신을 보존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윤공(禹允功)·한숙창(韓叔昌)은 죄과(罪過)가 관련이 있으니 더욱 서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류의신은 아뢰기를,

“임금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상(賞)과 벌(罰)입니다. 공이 있는 자를 상주면 공이 있는 자가 권장되고, 죄 있는 자를 벌주면 죄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상과 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태평한 정치를 바라고자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묵묵히 있었다.

○戊寅 御朝講持平柳義臣復論功臣太濫且啓前事不從獻納朴祥曰 上意以爲功臣多則助已者衆可賴以永世然廢朝自知人心已離欲以官爵固結然人心離叛反爲楚越爵賞之不足鎮服人心明矣況自古叛逆多出於功臣功臣之不可恃尚矣且曹繼衡辛殷尹皆不可叙之人今復收叙者 上意必謂有勳可用也易曰開國承家小人勿用若以功臣而敢用小人則其害豈少哉若以功宥罪則王法不行若罪之則非保全功臣之道也且禹允功韓叔昌罪過有關尤不可叙義臣曰人君之所重者賞罰賞有功則有功者勸罰有罪則有罪者懼賞罰不明欲望雍熙之治難矣 上默然

《中宗實錄 卷4, 29面》

중종 3년 3월 29일(병인)

대간이 합사해서 전일의 일을 가지고 다섯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어 아뢰기를,

“홍문관은 직책이 경연을 맡고 있으니 잘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년(연산군 10, 1504) 이후에 홍문록(弘文錄)¹⁵²이 매우 난잡하게 되었고, 노종(盧種)·문계창(文繫昌)·류의신(柳義臣)·김석필(金錫弼)·최세절(崔世節)·정백봉(鄭百朋)·김엄(金淹)·김형(金炯)·조언형(曹彦亨)·안한영(安漢英)·정충량·이번(李蕃)·윤탁(尹倬)·장적(張籍) 등 14인은 모두 홍문록(弘文錄)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감찰(監察: 사헌부의 종6품 직)도 또한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직책이 모든 관사를 규찰(糾察)하는 데 있는지라, 혹은 분대(分臺: 각 관청의 감독 검열을 위하여 파견하는 것.)에 가기도 하고, 혹은 행대(行臺: 지방의 주군(州郡)에 파견하는 것.)에 가기도 하여, 그 임무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홍의손(洪義孫)·박감(朴瑊)·

152) 홍문록(弘文錄): 조선시대 홍문관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들이 각각 뽑힐 사람의 성명 아래에 권점을 찍어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뽑는 일 또는 뽑힌 사람들의 성명을 적은 기록, 이것을 다시 이조를 거쳐 의정부(議政府)에 보내어 정승들이 검토 뒤에 그 수를 조정하게 된다. 홍문록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여 15인 내외로 선정하는데 홍문관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이조에서 이 중 3인을 선정하여 임금이 그중에서 1인을 낙점하여 충원한다.

윤중연(尹仲涓)·윤파동(尹坡童)·정석필(丁碩弼)·김맹균(金孟均) 등 6인은 혹은 허물이 있기도 하고, 혹은 사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모두 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들은 체직시키고, 그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丙寅臺諫合司將前事五啓不允仍啓曰弘文館職帶經筵不可不擇也自甲子以後其爲弘文錄至甚冗雜盧種文繼昌柳義臣金錫弼崔世節鄭百朋金淹金洞曹彦亨安漢英鄭忠良李蕃尹倬張籍十四人皆是不合弘文錄請改正監察亦不可不擇也職在糾舉百司或分臺或行臺其任不小今洪義孫朴城尹仲涓尹坡童丁碩弼金孟均六人或有不治事者請皆遞之傳曰監察等其遞之餘皆不允

《中宗實錄 卷5, 49面》

중종 4년 11월 28일(병술)

대간이 전의 일을 가지고 세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체찰사 종사관(體察使從事官) 류의신(柳義臣)이 아뢰기를,

“전의 입거(入居) 사목(事目)을 보면, 조금 사족(士族)에 관계된 자는 모두 초정(抄定)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아들로 사민(徙民: 변방 지역으로 옮기는 백성) 중에 든 자는, 이번손(李蕃孫) 한 사람 뿐입니다. 그 정리가 애매한 것 같지만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수의(收議)함이 어떻습니까?”

하니,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영의정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전후 입거 사목(入居事目) 안에는 다만 양과(兩科) 출신자 만을 말하고 그 아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번손 또한 입거할 사람을 초정한 후에, 별시위(別侍衛)에 들어가 속하였은즉, 지금 입거를 피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사족의 자손으로서 향곡(鄉曲: 시골)에서 성장하여 혹은 사냥을 좋아하고, 혹은 가축으로 오락을 삼으며 중신토록 폐업하고 자포자기하는 자가 많으니, 이런 점으로 말하면 더욱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류순정은 의논드리기를,

“입거 사목 안에 문과 출신 자서(子壻)를 초정(抄定)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므로 번손 또한 초록(抄錄)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거하는 사람은 전례가 모두 서민이요, 사족에 관계되었으면 모두 뽑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정과(正科) 출신은 사람들이 모두 은총과 영광으로 삼으며 중국 같은 데서는 그 문려(門閥)를 정표(旌表)하여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번손이 문과 출신인의 자서로 입거를 면

하지 못한다면, 정과 출신을 은총으로 대우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권장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어그러짐이 있을까 합니다.”

○丙戌臺諫將前事三啓不允體察使從事官柳義臣啓曰觀前事目則稍干於士族者皆不抄定今以文武科之子與於徒民者只一李蕃孫其情理似曖昧不能擅改收議何如傳曰其議之領議政朴元宗議曰前後入居事目內只論兩科出身者而不及其子蕃孫亦於入居抄定後入屬別侍衛則今避入居實難况士族子孫生長鄉曲或好田獵或以家畜自娛終身廢業自棄者多以此言之尤不宜輕改左議政柳順汀議曰入居事目內無文科出身子壻勿抄之語故蕃孫亦與抄錄然入居例皆庶民若干於士族則皆不抄况正科出身人皆以爲寵榮至如中原則旌表其門閭以寵之蕃孫以文科出身人之子壻不得免入居則正科出身寵待之意安在其於勸獎之方亦或有乖

《中宗實錄 卷10, 18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정랑공(正郎公) 류예신(柳禮臣)

성종 연간?~중종 연간?

자는 문경(文卿)으로 호와 생졸년대는 전하지 않는다. 첨지공 류숙(柳塾)과 문효공 어효침(魚孝瞻: 父 魚變甲)의 따님인 함종어씨(咸從魚氏) 사이에 2남 4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연산군 10년(1504) 사마시 생원과에 장원으로 입격하고 중종 5년(1510) 식년시에 급제한 후에 승문원박사(중종 8년, 1513) 이후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역임했다.

배위는 경주정씨(慶州鄭氏)로 강음현감 함(涵)과 예안현감 정(澣)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박덕성(朴德成)에게 출가했다.

燕山甲子十年式年榜

甲科 三人

進士 李紆(韓山人), 生員 李昌壽(全義人), 進士 柳雲(文化人)

乙科 七人

進士 金城, 進士 崔命昌(開城人), 內侍敎官 李元幹(龍仁人), 生員 朴兼仁(竹山人), 生員 朴良根, 進士 朴鵬(陰城人), 生員 金琮(光州人)

丙科 二十一人

幼學 崔允孫(全州人), 進士 朴巨鱗(咸陽人), 生員 尹時英(南原人), 進士 金漢老(延安人), 生員 朴佺(蔚山人), 進士 李忠男, 別提 慎汝弼(居昌人), 生員 曹彦亨(昌寧人), 生員 許遲(河陽人), 新榜進士 李得全, 生員 李萬孫(原州人), 進士 具之慎(綾城)

人), 生員 郭遂寧(玄風人), 宣務 金允和, 生員 朱善林(熊川人), 進士 金禹瑞(光州人), 判官 李可臣(全義人), 生員 趙翊(林川人), 生員 成雲(昌寧人), 進士 李蕃(德山人), 進士 安處誠(順興人), 生壯幼學 柳禮臣(晉州人), 進壯幼學 鄭百朋(溫陽人)

中宗庚午五年式年榜三月二十三日行

甲科 三人

生員 李膺(固城人), 生員 蔡世傑(平康人), 進士 金磧

乙科 七人

生員 鄭謹元, 教官 李孝彦(龍仁人), 進士 蔡忱(平康人), 生員 金以衡, 進士 許渭(陽川人), 叅奉 南世準(宜寧人), 生員 申光漢(高靈人)

丙科 二十三人

生員 曹允文(昌寧人), 司僕副正 洪景霖(南陽人), 生員 李佑(固城人), 生員 羅昶(羅州人), 進士 鄭球(東萊人), 幼學 鄭應麟(清州人), 生員 柳禮臣(晉州人), 幼學 金振祖(善山人), 幼學 孫洙, 生員 姜瑄(晉州人), 教官 金可遠, 進士 金事結(延安人), 生員 柳墩(晉州人), 秉節 南世瓊(宜寧人), 幼學 金希貞, 進士 朴祐(忠州人), 郡守 鄭洵(延日人), 生員 柳仁淑(晉州人), 幼學 金宗弼(尙州人), 生員 曹漢弼(昌寧人), 別提 南孝純(宜寧人), 生員 李迨(驪興人), 進士 金紈, 武壯 金鈞(高靈人), 生壯幼學 金就精(善山人), 進壯幼學 趙光祖(漢陽人)

중종 8년 12월 15일(기유)

○이 날 중위의 포폄(褒貶)을 아뢰었는데, 예문봉교(藝文奉敎) 박우(朴祐)·승문박사(承文博士) 류예신(柳禮臣)·교서박사(校書博士) 이영준(李英俊)이 거중(居中) 153)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시 4관(四館)¹⁵⁴⁾에는 옛 풍습이 없어져서 상하의 예절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해이했기 때문에, 수관(首官)이 모두 전(殿)에 매겨졌다. 승문박사 신광한만이 모면하였는데, 아관(亞官) 류예신이 광한을 대신하여 폄(貶)을 당하였으니, 대개 광한은 대제학 신용개의 동성 종제(同姓從弟)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때문

153) 거중(居中) : 관리의 성적 평가에서 상·중·하 3등급 중 중등이 되었다는 말. 열 번 고사(考査) 해서 열 번 상(上)을 받으면 상(賞)으로 한 품계를 제수하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으로 서용(敍用)하고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한다. 그리고 두 번·세 번·다섯 번의 고사에서 한 번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벼슬로 옮기지 못하고, 두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한다. 《經國大典 吏典 褒貶》

154) 4관(四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의 총칭.

에 말하기를 ‘류순정(柳順汀)이 있었다라면 예신 역시 모면하였으리라’고 하니, 예신은 류순정의 종제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공도(公道)가 행하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己酉○是日啓中外褒貶藝文奉教朴祐承文博士柳禮臣校書博士李英俊居中史臣曰時四館無古風上下禮毀凡事解弛故首官皆居殿承文博士申光漢獨免亞官柳禮臣代光漢見貶蓋光漢卽大提學申用漑同姓從弟時人爲之語曰柳順汀若在則禮臣亦必免矣禮臣順汀之從弟也當時公道之不行可見矣

《中宗實錄 卷第19, 47面》

중종 32년 10월 27일(계유)

○좌의정 윤은보와 우의정 류부가 아뢰기를,

“육조의 당상을 모두 면대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세종조 때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현상(賢相)이었는데 밤중에 혹시 불러 나라 일을 물으면 비록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더라도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채탐(採探)하여 아뢰었었다. 이제 육조가 다 들어오면 소란스러울 듯하다. 다만 윤안인은 아뢰는 일이 있으니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윤은보·류부·윤안인, 도승지 임백령(林百齡), 기사관(記事官) 임형수(林亨秀)·이무강(李無疆)·남응운(南應運)이 입시하였다. 상이 내관(內官)을 시켜 윤안인이 써서 아뢰는 글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임백령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금부에서 아뢰는 뜻을 보니 허항¹⁵⁵과 채무택¹⁵⁶이 먼저 서울집에 와 있고, 허흡(許洽) 역시 왔다 한다. 상(喪)을 당한 사람은 의당 여막에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이는 반드시 김안로가 불러 온 것이나, 별다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불문에 부친 것이다. 이로 본다면, 허경이 몰래 허항의 집에 간 것은 매우 사특하므로 조옥에 가두라 명하였다.”〔중략〕

155) 허항(許沆) : (?~?)~중종 32년(1537). 자는 청중(淸仲) 본관은 양천(陽川). 중종 19년(1524) 문과에 급제했다. 1535년 대사헌에 이르렀다. 김안로(金安老)가 정권을 잡게 되자 채무택(蔡無擇)과 함께 김안로를 부추겨 반대파를 몰아내고 옥사(獄事)를 함부로 일으키는 등 행패를 자행했다. 1537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의 폐위를 도모하다가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김안로·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흥(丁酉三興 : 여기서 정유년은 1537년을 말한다)으로 일컬어진다. 부친은 허확(許確)이며 조부는 양천부원군 허종(許琮)이며 허흡(許洽)은 허항의 형이 된다.

156) 채무택(蔡無擇) : (?~?)~중종 32년(1537). 자는 언성(彦誠) 본관은 인천(仁川). 중종 19년(1524) 별시문과에 합격했다. 1535년 대사간을 지냈다. 이듬해 부제학에 이르러 좌의정 김안로(金安老)에게 아침, 유림(儒林)들을 무고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이간하는 등 분규를 일으키다가 사사됐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눈으로 본 일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신이 허흡(許洽)과 승지로 함께 있었는데, 그 때 국恤(國恤)정현왕후(貞顯王后)의 상이다.이 있어 상이 효경전(孝敬殿)에서 제사를 지내 상하가 모두 치재(致齋)하고 있어서 신하라면 누구나 큰 일이 있더라도 연고를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흡은 공청에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아버지 허확(許確)가 삼척으로부터 와 평구(平丘)에 묵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허흡은 좌승지요, 정옥형(丁玉亨)이 도승지였는데 억지로 금할 수 없어 평구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친제(親祭)하는 날은 아버지가 혹 병이 위급하다면 가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아무 탈이 없었으니, 제사 후에 가 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허흡의 가노(家奴) 아들이 이웃의 유생(儒生)을 때렸으므로, 형조에서 나장(羅將)을 보내 그 종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허흡이 노발대발하여 그 나장을 의금부에다 가두었습니다. 허흡이 금부당상이었다. 금부는 바로 조옥(詔獄)인데 허흡이 어찌 거기다 사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허항이 류예신(柳禮臣)의 아들류함(柳涵)의 여종을 빼앗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였습니다. 그 때 류관(柳灌)이 형조 판서로 있었는데 그 옥사를 다스리면서 그런 실정을 알고는 시비를 가리려 하자, 허항이 채무택을 사주하여 류관을 아뢰어 파직시켰습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때 박수량(朴守良)을 보고 그 일을 물었더니, 수량은 ‘경중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류예신의 아들을 미워해서이니 방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류부(柳溥)는 류예신과 가까운 친척이라 곤란하겠지만, 윤은보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癸酉○左議政尹殷輔右議政柳溥啓曰六曹堂上皆入面對乎傳曰 世宗朝黃喜許稠乃賢相夜半或有召問國事之時雖非所自見博採羣言而啓之矣今六曹皆入則似擾但尹安仁則有所啓之事許令並參 上御宣政殿尹殷輔柳溥尹安仁都承旨林百齡記事官林亨秀李無疆南應雲入侍 上使內官持安仁所書啓使百齡示大臣 上曰昨見禁府啓意許沆蔡無擇先入京家許洽又來云喪人宜在廬而在家此必安老招來然別無形迹故不問以此觀之許垞之潛往沆家甚爲邪慝命囚於詔獄矣[中略]

安仁曰以目觀之事言之臣與許洽同爲承旨其時有國恤貞顯王后 上祭孝敬殿上下皆致齋臣下雖有大事不可托故而洽在公廳公然言之曰父確自三陟來宿于平丘我可往省洽爲左承旨丁玉亨爲都承旨禁之不可強歸平丘經宿之地親祭之日父或病而危急則猶可往見其父無恙祭後亦可往見也近日洽家奴子辱打其隣儒刑曹發羅將捉其奴洽大怒囚其羅將於義禁府洽爲禁府堂上禁府乃詔獄也洽安得而囚人許沆奪柳禮臣之子涵之婢聞者痛憤其時柳灌爲刑曹判書聽其訟知其情而欲卞是非沆嗾蔡無擇啓罷柳灌臣爲忠清道監司時見朴守良問其事守

良曰京中以言此爲惡禮臣之子不可不放柳溥雖與禮臣切親殷輔則可以言也

《中宗實錄 卷第85, 82面》

중종 32년 10월 27일(계유)

상이 이르기를,

“류예신(柳禮臣)의 아들이 그 종의 일 때문에 전가사변(全家徙邊)되었고, 함창 훈도의 사변(徙邊)은 유사가 공사(公事)를 만들었는데 나도 그것이 미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김안로가 당시 대신이었기 때문에 아뢴 대로 윤택한 것이다. 옛날 남곤(南袞)과 권균(權鈞)이 김안로가 교사하여 반드시 조정을 그르칠 것을 알고는 외방으로 내쳤었다. 방송되어 돌아온 후에는 행여 징계됨이 있는가 하였더니 더욱 방사(放肆)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이행(李荇)과 정광필(鄭光弼)이 오늘의 화를 알고 배척하려 하다가 도리어 죄를 입었고, 홍문관의 두 사람 김섬(金銛)은 직제학이었고 김만균(金萬鈞)은 교리였다.도 그 때문에 죄를 입어 체직되었다. 한 예조 판서의 일로 김안로가 적소에서 돌아와 예조 판서가 되자 조정이 체직하라고 논박하였다. 조계상(曹繼商)·김극성(金克成)·유여림(兪汝霖) 등이 일시에 찬축을 당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변을 미리 알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癸酉 上曰柳禮臣之子以其奴事全家徙邊咸昌訓導之徙邊有司爲公事予亦知其未便然安老時爲大臣也故依允矣昔在南袞權鈞知安老巧詐必誤朝政送諸外方放還後庶可有懲而益肆無忌李荇鄭光弼知有今日之禍欲斥之而反得罪弘文館二人金銛爲直提學金萬鈞爲校理以此亦被罪以違一禮判之事安老自謫所還爲禮曹判書朝廷論違曹繼商金克成兪汝霖等一時被竄此人等先知今日之變而欲預防也

《中宗實錄 卷第85, 84面》

중종 32년 10월 27일(계유)

○밤 일고(一鼓). 정원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1. 홍섬(洪暹)과 이기(李芑)와 김형(金炯)과 장옥(張玉)과 유생(儒生)민기문(閔起門) 등을 말한다. 상이 그 이름을 잊었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못한 것인데 이하도 이와 같다. 등과, 성세창(成世昌), 윤개(尹漑), 문성정(文城正)의 처 윤씨(尹氏), 완천군(完川君) 및 사랑금(思郎今)·사비(四非), 류예신(柳禮臣)의 아들 함(涵), 함창 훈도 채무일(蔡無逸), 나세찬(羅世纘)·구수담(具壽聃) 등을 방송(放送)할 것.

○癸酉○夜一鼓下備忘記于政院洪暹李芑金炯張玉儒生閔起門等也上忘其名故不書名後倣此等成世昌尹漑文城正妻尹氏完川君及思郎今四非柳禮臣子涵咸昌訓導蔡無逸羅世纘具壽聃等放送事

《中宗實錄 卷第85, 93面》

대동야승 제4권 패관잡기 2(稗官雜記二)

현감(縣監) 안중손(安仲孫)이 청빈(淸貧)을 스스로 지켜 옛사람의 풍도가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영남(嶺南)에 집을 짓고 몸소 농사를 지어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하루는 도사(都事) 류예신(柳禮臣)이 그 집을 찾아 가는데 추종(騶從)들이 심히 성하거늘 안중손은 밭에 있다가 샷갓에 잠방이 차림으로 호미를 들고 돌아와서 문 앞에서 자리를 깔지 않고 앉아 막걸리를 가져오라고 하여 권하였다. 그의 진솔(眞率)함이 이러하였다.

縣監安仲孫,淸貧自守,有古人風,未第時,家于嶺南,躬自耕鋤,以養其母,一日柳都事禮臣,往訪其居,騶從甚盛,安在田間,葦笠短袴,荷鋤而至,露坐門前,呼濁酒以勸,其眞率如此.

《國譯本 483面, 原本 755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정민공(貞敏公) 류진동(柳辰叟)

연산군 3년(1497)~명종 16년(1561)

자는 숙춘(叔春) 호 죽당(竹堂) 시호는 정민(貞敏)으로 연산군 3년(1497) 2월 경신(庚申)일에 진사 류한평(柳漢平)과 수사 홍귀해(洪貴海)의 따님인 남양홍씨의 2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 17년(1522) 사마시 양과에 입격하고 중종 26년(1531) 식년시 대과에 급제하였다. 사헌부 감찰, 지평, 장령, 집의를 역임했으며 홍문관 교리, 응교, 전한, 직제학 이어서 부제학에 임명되자 소학(小學)의 장려를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황은 일양소(一陽疏)라 극찬했다. 승정원 도승지, 사헌부 대사헌, 공조·이조참판, 전라·경기·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병법과 무예에도 능하여 좌의정 이준경과 함께 을묘왜변(명종 10년, 1555년)을 진압 토평하여 문무겸전하였다. 오위도총부 도총관과 공조판서를 역임했으며 외교 사절 성절사로 명나라에 두 번 다녀왔다.

경서에 밝은 대학자로서 큰 글씨를 잘 써 제승당(制勝堂)과 남대문의 숭례문(崇禮門) 현판 글씨 또한 공의 걸작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묵죽의 그림 또한 유명하다. 화죽팔첩(畫竹八帖)과 초충팔첩(草蟲八帖) 서독(書牘)과 창화시율집(唱和詩律集) 1권이 전해 왔으나 현재는 행방이 묘연하다.

첫 배위는 별제 김흥문(金興門)의 따님인 안동김씨로 도승지 도(濤)와 경원부사용(溶) 청하현감 회(淮)의 세 아들과 사위로 상주목사와 승지를 지낸 해주인 정척(鄭惕)이 있으며 두 번째 부인으로 판결사 윤형(尹衡)의 따님으로 남원윤씨는 딸 하나를 두었다. 순흥인 안등(安騰)이 둘째 사위이며 이밖에 우봉순(禹奉順) 신덕

우(申德優) 우문명(禹文明)의 세 사위가 있다.

中宗辛卯二十六年式年榜十月初九日行

甲科 三人

生員 金忠烈(江陵人), 生員 姜麟(晉州人), 生員 趙士秀(楊州人)

乙科 七人

生員 朴瑜(咸陽人), 前教授 金光佑(光州人), 生員 李浚慶(廣州人), 進士 羅瀼(安定人), 生員 朴忠元(密陽人), 幼學 李菑(韓山人), 進士 元集(原州人)

丙科 二十三人

前別提 鄭振(東萊人), 生員 金洪(義城人), 生員 盧漢文(光州人), 前監役 吳世佑(羅州人), 生員 任虎臣(豐川人), 幼學 任貞(豐川人), 進士 韓鈞(清州人), 生員 洪暹(南陽人), 生員 尹世忱(坡平人), 進士 柳世華(全州人), 生員 柳智善(文化人), 進士 金彦瑠(光州人), 生員 李彭壽(德水人), 生員 安汝止(竹山人), 幼學 尹行(海南人), 生員 朴世茂(咸陽人), 進士 柳辰全(晉州人), 進士 慶秀恭(清州人), 生員 宣憲, 生員 金彦謙(金海人), 生員 李畬(韓山人), 幼學 張應旋, 進士 金允悌(光州人)

중종 33년 2월 6일(경술)

임백령(林百齡)을 공조 참판에, 류세린(柳世麟)을 한성부 좌윤에, 조인규(趙仁奎)를 우윤에, 권벌(權撥)을 경상도 관찰사에, 남효의(南孝義)를 함경도 관찰사에, 홍춘경(洪春卿)을 세자시강원 보덕에, 류진동(柳辰全)을 사간원 정언에 제수하였다.
○庚戌.以林百齡爲工曹叅判.柳世麟爲漢城府左尹.趙仁奎爲右尹.權撥爲慶尙道觀察使.南孝義爲咸鏡道觀察使.洪春卿爲世子侍講院輔德.柳辰全爲司諫院正言.

《中宗實錄 卷第87, 2面》

중종 34년 2월 13일(임자)

○황헌(黃憲)을 이조 참판에, 임백령(林百齡)을 사헌부 대사헌에, 윤개(尹漑)를 병조 참의에, 신거관(愼居寬)을 사간원 대사간에, 신광한(申光漢)을 성균관 대사성에, 홍춘경(洪春卿)을 집의에, 안위(安瑋)와 김서성(金瑞星)을 장령에, 노한문(盧漢文)과 류진동(柳辰全)을 지평에, 이순형(李純亨)을 헌납에, 민전(閔荃)과 최희맹(崔希孟)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壬子.○以黃憲爲吏曹叅判.林百齡爲司憲府大司憲.尹漑爲兵曹叅議.愼居寬爲司諫院大司諫.申光漢爲成均館大司成.洪春卿爲執義.安瑋金瑞星爲掌令.盧漢文柳辰全爲持平.李純亨爲獻納.閔荃崔希孟爲正言.

《中宗實錄 卷第89, 53面》

중종 34년 3월 7일(을해)

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제 법사가 와서 수령들이 엿보아 회피한다고 아뢰었는데, 나는 많은 사대부들이 죄를 입게 되므로 어렵게 여기었다. 그러나 법사가 폐습을 징계하고자 「대전」에 의거하여 아뢰는 것이므로 윤택하였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그 가운데에 응당 용서할 수 있는 자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을 것인데, 동등하게 죄를 입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기에 율관(律官)에게 널리 물어 보았더니 김유(金鏐)의 전례가 있다고 하였다. 또 이조에게 소방하기 전인가 후인가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윤세호·홍경림·허린·김광준은 소방하기 이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만일 조율하여 아뢰었다면 소방하기 전인가 후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법사에서는 다만 폐단만 막으려고 대강 아뢰었으니, 어떻게 선후를 알겠는가. 대간에서 폐습을 고치고자 아뢰는 것은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용서할 자와 용서하지 못할 자를 동등하게 죄준다면 옳지 못한 것이 아닌가. 법사에서 논의하여 아릴 때에 그 소방 여부를 논의하였는지 성상소를 불러 물어서 아뢰어라.”

하니, 지평 류진동(柳辰叟)이 명을 받고 이르렀다. 송순(宋純) 우부승지이 전교의 뜻으로 류진동에게 물으니 ‘논의하여 아릴 때에 소방에 대한 일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송순이 그 말로 입계하자, 전교하였다.

“어제 아뢰는 사람들을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으로 승진을 받들라. 그리고 윤세호·홍경림·김광준·허린이 정사(呈辭)한 것은 소방하기 이전에 해당되니 송서(送西)할 것으로 아울러 승진을 받들라.”

○乙亥.傳于政院曰.昨日法司.以窺避守令來啓.予以士大夫多有被罪.重難也.然法司欲懲弊習.依大典啓之.故允之矣.今更思之.其中應入疏.放與不應入者.等蒙其罪.似乎不可.故廣問于律官.則有金鏐前例云.又令吏曹.相考其疏放前後.則以尹世豪洪景霖許磷金光準.爲在於疏放前云.若照律以啓.則可知.其疏放前後也.法司只以杜弊.而泛然啓之.何以知先後乎.臺諫之欲革弊習.所啓至當.然應入疏放者與不應入者.與之同罪.無乃不可乎.法司議啓時.論其疏放與否.招問城上所以啓可也.持平柳辰全.承命而至.宋純右副承旨以傳教意.問于辰全.答曰.議啓時疏放事.不舉論矣.宋純以其言入啓.傳曰.昨日所啓之人.依大典施行事.奉承傳.而尹世豪洪景霖金光準許磷.以呈辭在疏放前.故送西事.并奉承傳可也.

《中宗實錄 卷第89, 64面》

중종 34년 6월 7일(계묘)

○정옥형(丁玉亨)을 형조 판서에, 류진동(柳辰叟)을 사헌부 지평에, 윤원형(尹元衡)을 홍문관 교리에, 이무강(李無強)을 사간원 정원에 제수하였다.

○癸卯.○以丁玉亨爲刑曹判書.柳辰全爲司憲府持平.尹元衡爲弘文館校理.李無强爲司諫院正言.
《中宗實錄 卷第91, 9面》

중종 34년 6월 8일(갑진)

○류인숙(柳仁淑)을 한성부 우윤에, 류진동(柳辰全)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였다.
○甲辰.○以柳仁淑爲漢城府右尹.柳辰全爲司憲府持平.
《中宗實錄 卷第91, 12面》

중종 34년 7월 24일(경신)

권벌(權撥)을 한성부 판윤에, 임백령(林百齡)을 병조 참판에, 한운창(韓允昌)을 공조 참판에, 상진(尙震)을 좌윤에, 신광한(申光漢)을 우윤에, 구수담(具壽聃)을 홍문관 응교에, 류진동(柳辰全)을 교리에, 송세형(宋世珩)을 부교리에, 임형수(林亨秀)를 부수찬에, 김천우(金天宇)를 저작에 제수하였다.

○庚申.以權撥爲漢城府判尹.林百齡爲兵曹參判.韓允昌爲工曹參判.尙震爲左尹.申光漢爲右尹.具壽聃爲弘文館應教.柳辰全爲校理.宋世珩爲副校理.林亨秀爲副修撰.金天宇爲著作.
《中宗實錄 卷第91, 23面》

중종 34년 7월 12일(정축)

헌부가 아뢰기를,

“전운사는 조처할 일이 많아 소임이 가볍지 않으니 모름지기 재간이 있는 재상을 선발하여 위임해야 합니다. 지금 한운창(韓胤昌)은 변방 일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재능도 부족하여 결코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체직시키소서.

또 병사와 수사는 축첩(蓄妾)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정하여졌는데, 근래 이를 소홀히 여겨 금법이 있음을 무시하고, 으레 첩을 거느리고 비복(婢僕)도 많이 데리고 가므로 마치 아실(衙室)과 같습니다. 이래서 많은 폐단이 군민(軍民)에게 미치니 각별히 신명(申明)하여 일체 엄금함으로써 군졸의 폐를 없애게 하소서.

홍문관은 논사(論思)하는 중요한 곳으로 이 관아에 있는 관원은 대간(臺諫)·정조(政曹)에 차임하는 것이 아니면 전조(銓曹)¹⁵⁷가 마음대로 주의(注擬)¹⁵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정사(政事: 인사행정)에서 회령 판관(會寧判官)을 가려서 선출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조가 두 사람 교리(校理) 류진동(柳辰全)

157) 전조(銓曹) : 문무 관원의 전형을 맡은 이조와 병조를 말함.

158)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과 수찬(修撰) 임형수(林亨秀).을 마음대로 주의하였으니 이는 내외의 경중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끝없는 폐가 있을 것이므로 본부에서 바야흐로 이를 추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웁니다.”

하니, 답하였다.

“한운창은 체직하라. 그리고 병사와 수사가 첩을 거느린 일은 확실히 밝혀 엄단해야 한다. 어제 대신이 ‘회령 판관은 당연히 무재와 명망을 겸비한 문신을 교대로 차임해야 한다.’고 아뢰었는데 나는 틀림없이 대간과 시종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연후에야 자기 행동을 근심함은 물론, 이웃 고을 수령들도 두려워하여 꺼리는 바가 있어서 제멋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진중(金振宗) 예조 좌랑(禮曹佐郎)이 의망(擬望)에 올랐었으나 대간·시종으로 출입한 사람이 아니기에 홍문관 관원으로 차출하라 한 것뿐이었다. 추고하라는 일은 알았다.”

○丁未.憲府啓曰.轉運使措置事多.所任非輕.須擇有幹能宰相.以委其任.今韓胤昌.非但未諳邊事.才又短拙.決不堪任.請逺.且兵水使不得率私妾.已有法禁.近來慢不知禁.例率私妾.多帶婢僕.有同衙室.因此弊及軍民.請各別申明.一切禁斷.以除軍卒之弊.弘文館.論思重地.見任之員.非臺諫政曹.則銓曹不得擅擬.昨日之政.會寧判官雖有擇差之命.而銓曹乃以二員.校理柳辰全修撰林亨秀擅自注擬.非但失內外輕重之宜.且將有後日無窮之弊.府方推考.敢啓.答曰.韓胤昌可逺之.兵水使率私妾事.宜申明禁斷.昨日大臣啓曰.會寧判官.宜以有武才名望文臣交差.予意以爲.必指臺諫侍從出入之人也.如此然後.乃可以自能謹慎.而隣邑守令.亦有所畏忌.不敢恣也.故金振宗禮曹佐郎雜叅望.非出入臺諫侍從之人.故予亦以弘文館官員差之耳.推考事.知道. 《中宗實錄 卷第91, 27面》

중종 34년 윤 7월 7일(임인)

○홍문관 부제학 권응창(權應昌)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약빙의 상소를 보니 죄다 신하로서는 차마 못할 말입니다. 보고 들은 자는 놀라지 않은 이가 없는데, 전하께서는 이를 보시고 놀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 의논을 강상(綱常)을 복돋우는 큰 도라고까지 하시니 신들은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노산과 연산은 종묘 사직에 죄를 짓고서 이미 속적(屬籍)에서 끊어졌고 미(峴)의 모자는 은밀히 부도(不道)를 꾀했으므로 죽어도 여죄가 있는데, 약빙이 후계를 세우자느니 후회하실 것이라느니 하니, 신들로서는 그 뜻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희귀한 의논이라 하십니까?

대체로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준다는 말은 노산과 연산 같은

죄인을 말함이 아닙니다. 즉 상(商)이 하(夏) 나라 후손을 기(杞)에 봉하고, 주(周)가 상의 후손을 송(宋)에 봉한 것 같은 일은 우(禹)와 탕(湯)의 덕을 위함이요, 결(桀)과 주(紂)의 무후(無後)를 차마 볼 수 없어서 행한 일은 아닙니다. 노산과 연산은 종묘와 더불어 인연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왕법(王法)에 있어서 지친으로 대할 수 없는데, 약빙이 이른바 후계라 함은 어떤 사람을 지적한 말입니까? 신들은 후일에 있을 걱정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사신은 논한다.

옥당(玉堂)의 모임에서 이약빙의 상소를 논의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돌아만 보고 먼저 발언하기를 피했으나 사람이 누구인들 마음 속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겠는가마는 대체로 왕의 뜻을 거스릴까 꺼렸기 때문에 말이 없었던 것이다.[중략] 류진동(柳辰全)은 ‘처음부터 이 말을 듣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은 하였다. 그러나 옛날에 정숙(正叔) 등이 문종(文宗)의 후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하니 어찌 후세에 그 같은 무리가 또 있을 줄을 알았겠는가.’ 하니, 좌중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문종이 무후(無後)한 일을 왜 거론하는가?’ 하였다.[중략]

대체로 전에는 상이 양사의 아뢰음을 듣고도 그를 깊이 허물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에 이르러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국하라고까지 명하였다.

○壬寅。○弘文館副提學權應昌等上劄曰。伏見若氷之疏。所言皆非臣子所忍言也。凡在見聞。莫不驚愕。而 殿下見之。不惟不驚愕。反以此論。爲扶植綱常之大道。臣等尤竊惑焉。魯山燕山。得罪 宗社。已絕屬籍。崑之母子。陰謀不道。死有餘辜。若氷立嗣之說。悔悟之論。臣等未知其意之所在。而 殿下有何所見。以爲至貴乎。夫所謂興滅繼絕者。非此之謂也。如商之封杞。周之封宋。是已。皆爲禹湯之德。非不忍桀紂之無後也。若魯燕。與 廟已絕。其在王法。不可待以。至親。彼所謂嗣者。抑何人耶。臣等恐後日之虞。有不可勝言者也。[中略]

史臣曰。玉堂一會。議若氷之疏。初與席相顧。莫肯先發言。人誰不涇渭于胸中。蓋憚觸諱也。[中略]柳辰全曰。初聞是事。大以爲過甚。昔正叔輩。以爲當立 文宗後云。安知後有如此輩乎。滿坐愕然曰。文宗無後。何攀是言於口乎。[中略]

上頗未深咎。至是。至命三省交坐以推之。 《中宗實錄 卷第91, 41面》

중종 34년 8월 18일(임오)

○안현(安珪)을 홍문관 부제학에, 류진동(柳辰全)을 사간원 헌납에 제수하였다.

○壬午。○以安珪爲弘文館副提學。柳辰全爲司諫院獻納。 《中宗實錄 卷第91, 37面》

중종 34년 9월 19일(계축)

류진동(柳辰全)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제수하였다.

○癸丑.以柳辰全爲弘文館校理.

《中宗實錄 卷第91, 75面》

중종 34년 10월 10일(갑술)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었다.

“요즈음 수군[舟師]에 대한 말을 보니 수군의 공적이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큼니다. 들으니, 이시애(李施愛)의 반란 때 수군이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사기가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신이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로 있을 때 보니, 바닷가에는 조종(祖宗) 때 심은 소나무가 무척 많았는데 어떤 곳은 다 베어 버렸었습니다. 수군을 쓰게 된다면 마땅히 이 소나무로 전함(戰艦)을 만들어야 하고 또 수군이 북도(北道)로 들어가려면 강원도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이곳의 소나무는 마땅히 가꾸어야 함은 물론 베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甲戌. 御夕講.侍讀官柳辰全曰.今觀舟師之語.舟師之功.於國家.所關甚大.聞李施愛背叛之時.聞舟師入歸.皆沮喪失措云.臣爲江原道都事時.見 祖宗朝所種.松木.在海邊者甚多.而或皆斬伐.若用舟師.則當以松木作戰艦.又入舟師于北道.則當自江原而進.此地松木.當封植而勿伐也

《中宗實錄 卷第92, 4面》

중종 34년 10월 28일(임진)

○상이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갔다. 정옥형(丁玉亨)을 의정부 우참찬에, 반석평(潘碩枰)을 형조 판서에, 이기(李芑)를 한성 판윤에, 상진(尙震)을 평안도 관찰사에, 김광준(金光準)을 사간원 대사간에, 정세호(鄭世虎)를 성균관 대사성에, 안위(安瑋)를 사헌부 집의에, 이명규(李名珪)를 홍문관 전한에, 임억령(林億齡)¹⁵⁹을 사헌부 장령에, 류진동(柳辰全)을 홍문관 부응교에, 이몽량(李夢亮)을 사헌부 지평에, 송세형(宋世珩)을 홍문관 교리에, 윤원형(尹元衡)을 교리에 제수했다.

친정(親政)을 오랫동안 폐하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날 비로소 친정을 하였다. 정원과 각 조(曹)의 낭관(郎官)들이 허다한 문안(文案)들을 두루 고찰할 수가 없자 관습대로 서리(書吏)들을 합문(闔門) 밖으로 모이게 한 다음 변분다고 핑계대고 은밀히 드나들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였다.

○壬辰. ○上.御思政殿.親政久廢不行是日爲始政曹郎官許多文案不能遍考使慣習書吏聚于闔門外托

159) 임억령(林億齡) : ?~선조 1년(1568). 임우형(林遇亨)의 아들로 자는 대춘(大椿) 호는 석천(石川)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중종 20년(1525)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으나 아우 백령(百齡)이 권간배(權姦輩)에 아부하여 선비들을 화중(禍中)에 몰아넣자 글을 보내 간절히 만류 경계하였으나 듣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갔다. 유고 석천선생 시집(石川先生詩集)에 류진동과 교유한 시 몇 수가 전해온다. 막내 아우 구령(九齡)의 사위가 류진동의 둘째 아들인 류용(柳溶 : 慶源府使)이다.

以便旋嘗相出入聽免而行焉以于玉亨爲議政府右叅贊.潘碩杵爲刑曹判書.李芑爲漢城府判尹.尚震爲平安道觀察使.金光準爲司諫院大司諫.鄭世虎爲成均館大司成.安瑋爲司憲府執義.李名珪爲弘文館典翰.林億齡爲司憲府掌令.柳辰全爲弘文館副應教.李夢亮爲司憲府持平.宋世珩爲弘文館校理.尹元衡爲校理. 《中宗實錄 卷第92, 34面》

중종 35년 4월 25일(병술)

춘추관 영사(春秋館領事) 윤은보 등이 실록청(實錄廳)의 사일 단자(仕日單子)를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당상(堂上)과 낭관(郎官) 및 하인(下人)에게 상을 내리라.”

영사 윤은보 등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각 1필씩을, 지사(知事) 소세양 등에게는 숙마(熟馬) 각 1필씩을, 지사(知事) 권벌(權撥) 등에게는 아마(兒馬) 각 1필씩을, 편수관(編修官) 이문건(李文健) 등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편수관 류진동(柳辰全) 등에게는 숙마 각 1필씩을, 편수관 이명규(李名珪) 등에게는 아마 각 1필씩을, 편수관 정대년(鄭大年) 등에게는 향표리(鄉表裏) 각 2습(襲)씩을, 편수관 정희홍(鄭希弘) 등에게는 향표리 각 1습씩을, 제원(諸員) 이성(李星) 등에게는 1사일(仕日)에 별사(別仕) 3일을 가산해 주고 면포 3필씩을, 화원(畫員) 하세귀(河世貴)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4일을 가산해 주고 면포 4필씩을 상으로 주었는데, 이 상은 6개월 출사(出仕)한 사람들이다. 제원(諸員) 최윤(崔倫)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2일을 가산해 주고 면포 2필씩을, 인출장(印出匠) 최막동(崔莫同)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3일을 가산해 주고 면포 3필씩을 상으로 주었는데, 이 상은 2개월 출사한 사람들이다. 제원 신월을온(申月乙溫)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1일을 가산해 주고 면포 1필씩을, 화장(花匠) 경이(京伊)에게는 1사일에 별사 2일을 가산해 주고 면포 2필을 상으로 주었는데, 이 상은 1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들이다.

○丙戌.春秋館領事尹殷輔等.以實錄廳仕日單子入啓.傳曰.堂上郎官及下人.賞格可也.領事尹殷輔等鞍具馬各一匹知事蘇世讓等熟馬各一匹知事權撥等兒馬各一匹編修官李文健等各加一資編修官柳辰全等熟馬各一匹編修官李名珪等兒馬各一匹編修官鄭大年等鄉表裏各二襲編修官鄭希弘等鄉表裏各一襲諸員李星等每一日給別仕三綿布三匹畫員河世貴等每日給別仕四綿布四日已上六朔諸員崔倫等每日給別仕二綿布二匹印出匠崔莫同等每日給別仕三綿布三匹已上二朔諸員申月乙溫等每日給別仕一綿布一匹花匠京伊每日給別仕二綿布二匹已上未滿一朔 《中宗實錄 卷第93, 12面》

중종 35년 5월 21일(임자)

○정옥형(丁玉亨)을 의정부 우참찬에, 최보한(崔輔漢)을 사헌부 대사헌에, 특지(特旨)임. 정대년(鄭大年)을 집의에, 권찬(權纘)을 장령에, 류진동(柳辰全)을 홍문관 응교에, 이윤경(李潤慶)과 이세장(李世璋) 160)을 지평에, 윤원형(尹元衡)과 나세찬

160) 이세장(李世璋) : 1497~1562.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도성(道盛) 호는 금강어수이며 무오사화에 화를 당한 평사(評事) 벼슬에 오른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아들이다. 중종 29년(1534)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 검열, 공조좌랑, 부교리 중종 38년까지 지평, 장령, 홍문관, 교리, 응교 등을 계속 번갈아 역임후, 경기도 암행어사, 홍문관 직제학, 명종 5년(1550) 공조·예조·호조·병조

(羅世纘)을 교리에, 이영현(李英賢)을 수찬에, 김천우(金天宇)를 부수찬에 제수하였다.

○壬子。○以丁玉亨爲議政府右叅贊。崔輔漢爲司憲府大司憲。特旨鄭大年爲執義。權纘爲掌令。柳辰全爲弘文館應教。李潤慶李世璋爲持平。尹元衡羅世纘爲校理。李英賢爲修撰。金天宇爲副修撰。
《中宗實錄 卷第93, 30面》

중종 35년 5월 25일(병진)

○공서린(孔瑞麟)을 사헌부 대사헌에, 특지(特旨)임. 최보한(崔輔漢)을 홍문관 부제학에, 김만균(金萬鈞)을 직제학에, 윤원형(尹元衡)과 류진동(柳辰全)을 장령에, 권찬(權纘)을 부응교에, 이준경(李浚慶)을 부교리에 제수하였다.

○丙辰。○以孔瑞麟爲司憲府大司憲。特旨崔輔漢爲弘文館副提學。金萬鈞爲直提學。尹元衡柳辰全爲掌令。權纘爲副應教。李浚慶爲副校理。
《中宗實錄 卷第93, 32面》

중종 35년 6월 20일(경진)

장령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신은 성품이 용렬하여 대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문점마(咨文點馬)로 평안도에 갔다가 유지(有旨)를 받들고 올라올 적에 어압(御押 : 임금의 서명)한 공자문(空咨文)을 직접 받들어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남은 승문원 서원(承文院書員)에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건네주고 올라옴으로써 어압을 외방에 버려 두었으니, 사체에 매우 잘못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집은 남산(南山) 밑에 있습니다. 무술년(중종 33, 1538)에 축조할 때 전(前) 현감(縣監) 조우(趙佑)의 담장 밑 길에 버려진 돌을 채취해다가 썼고, 집터를 닦을 때도 굴취(掘取)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 전의 일이지만 하지만 문밖의 돌을 채취해다 쓴 경우와는 다릅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였다.

“자문(咨文)에 대한 일은, 혹 잘못할 수도 있으니 이 때문에 대간을 체직시킬 수는 없다. 돌을 채취한 일은, 오래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격례(格例)가 이루어졌으니 직에 있을 수 없다.”

○전교하였다.

“류진동이 돌을 채취한 일을 전례에 따라 추고하라.”

○庚辰。掌令柳辰全啓曰。臣非但性品庸劣。不合臺官。頃者以咨文點馬。往于平安道。奉有旨

참의, 도승지, 강원관찰사 역임. 효성이 지극하고 청렴 결백하여 명종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공의 손자 이구순(李久洵)의 딸과 류진동의 손자 류형(柳珩)과 혼인하므로 인척관계가 된다.

上來時.御押空咨文.親目陪持而來.可矣.而承文院書員落後時.未及詳察.授之而來.棄置御押于外方.事體至爲非矣.且臣家在南山下.戊戌年成造時.前縣監趙佑家墻底路棄之石.伐取用之.開基時.亦有掘取之事.日月雖久.非如門外伐石之類.請達臣職.答曰.咨文事.雖或誤爲.而不可以此達臺諫也.伐石事.日月雖久.已成格例.不可在職也.○傳曰.柳辰全伐石事.依前例推考可也.

《中宗實錄 卷第93, 39面》

중종 35년 6월 25일(을유)

○이세장(李世璋)을 사헌부 장령에, 권찬(權纘)을 홍문관 응교에, 나세찬(羅世纘)을 부응교에, 이현당(李賢讜)을 지평에, 류진동(柳辰全)과 윤현(尹鉉)을 교리에, 권철(權轍)과 이진(李震)을 부교리에, 김반천(金半千)을 수찬에, 김주(金澍)를 사간원 정언에 제수하였다.

○乙酉.以李世璋爲司憲府掌令.權纘爲弘文館應教.羅世纘爲副應教.李賢讜爲持平.柳辰全尹鉉爲校理.權轍李震爲副校理.金半千爲修撰.金澍爲司諫院正言.

《中宗實錄 卷第93, 42面》

중종 35년 9월 27일(병술)

○윤인경을 의정부 우의정에, 김안국을 우찬성에, 정옥형(丁玉亨)을 예조 판서에, 권응창(權應昌)을 청공도 관찰사(淸公道觀察使)에, 이임(李霖)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류진동(柳辰全)을 사헌부 장령에, 김홍(金泓)을 지평에, 이세장(李世璋)을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였다.

○丙戌.○以尹仁鏡爲議政府右議政.金安國爲右贊成.丁玉亨爲禮曹判書.權應昌爲淸公道觀察使.李霖爲承政院同副承旨.柳辰全爲司憲府掌令.金泓爲持平.李世璋爲弘文館校理.

《中宗實錄 卷第93, 66面》

중종 35년 11월 18일(을사)

○최보한(崔輔漢)을 한성부 우윤에, 특가(特加) 홍섬(洪暹)을 홍문관 부제학에, 정대년(鄭大年)을 직제학(直提學)에, 임억령(林億齡)을 전한(典翰)에, 류진동(柳辰全)을 사헌부 장령에, 윤원형(尹元衡)을 응교(應教)에 제수하였다.

○乙巳.○以崔輔漢爲漢城府右尹.特加洪暹爲弘文館副提學.鄭大年爲直提學.林億齡爲典翰.柳辰全爲司憲府掌令.尹元衡爲應教.

《中宗實錄 卷第94, 26面》

중종 36년 4월 2일(무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언직(李彦迪) 등 직제학 이준경(李浚慶), 응교 류진동(柳

辰全), 부응교 송세형(宋世珩), 교리 권철(權轍)과 이황(李滉), 부교리 김반천(金半千), 부수찬 이홍남(李洪男), 박사 박공량(朴公亮), 저작 민기(閔箕), 정자 홍담(洪曇)이 상소하기를,

“생각하건대,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 원리가 관통하므로 위와 아래에 간격이 없어서 하늘에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하늘에 응답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쌓아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덕을 닦아서 재앙을 이긴다면, 하늘은 비록 감동시키기 어려운 것이나 이렇게 하여 감동시킬 수 있고, 재앙은 비록 그치게 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렇게 하여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득한 가운데에 처해 있는 몸으로서 높고 높은 위에 있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혁혁하게 진동하는 경계를 돌이키는 것은, 평범한 행동으로 한두 달 안에 그 효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어질고 거룩하신 자질로 완성된 사업을 지키시며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를 돌보시느라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 저녁을 드셨습니다. 이른바 하늘을 공경하는 일과 백성을 염려하는 정사에 있어 마음을 다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의 보람은 더욱 멀어지고 잘못된 정사는 더욱 많아져서, 아래에서 백성이 원망하되 혜택은 더욱 막히고, 위에서는 하늘이 노여워하여 재변이 거듭 나타납니다. 옛 역사를 두루 살펴봐도, 재변이 많고도 크기가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었고 근년보다 심한 때도 없었습니다.

○戊午.弘文館副提學李彦迪直提學李浚慶應教柳辰全副應教宋世珩校理權轍李滉副校理金半千副修撰李洪男博士朴公亮著作閔箕正字洪曇等上疏曰.伏以天人之際.一理貫通.上下無間.天有愛君之心而人有應天之實.故積誠以動天.修德以勝災.則天雖難感.於是而可感矣.災雖難弭.於是而可弭矣.雖然.以藐然中處之身.而感高高在上之天.以恐懼修省之力.而回赫赫震動之警.非可以尋常舉措.期月而得其效也.恭惟主上 殿下.以仁聖之資.守盈成之業.勵精圖治.宵衣肝食.凡所謂敬天之事.憂民之政.無不盡心於其間.而治效愈邈.闕政滋多.民怨於下而惠澤愈鬱.天怒於上而災異疊見.歷觀前古之史.災異之多且大.未有甚於此時.而不未有甚於近年.

《中宗實錄 卷第95, 1面》

중종 36년 6월 29일(갑인)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근래 변방에 흉년이 들어 성밀에 사는 피인(彼人:야인)들이 몹시 곤궁하여 하루에 너댓 사람씩 굶어 죽는다 합니다. 의논하는 자는 혹 ‘야인들이 죽더라도 폐해를 덜고 걱정을 그치게 하는 것이니, 우리 나라에는 무방하다. 우리 나라 사람도 진휼(賑恤)하지 못하는데 야인들을 진휼할 겨를이 있느냐.’ 하나, 야인들은

이미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으니, 진흙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어진 정치에 어찌 피차를 구분할 것이 있겠는가마는 변방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하면 옳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야인들이 편히 살게 하여야 하겠다.”

○甲寅.○御夕講.侍講官柳辰全曰.近來邊方凶荒.城底彼人.窮困莫甚.一日四五人餓死云.議者或以爲.彼人雖至死亡.適足以除害弭患.無妨於我國.我國人.尚不能賑恤.遑恤彼人乎.然彼人既爲藩籬.則不可不恤也. 上曰.仁政豈有彼我.但邊方之事.不可遠度.未知何爲而得其可也.然使彼人安居可也.
《中宗實錄 卷第95, 32面》

중종 36년 11월 8일(경인)

○송인수(宋麟壽)를 사헌부 대사헌에, 심연원(沈連源)을 성균관 대사성에, 류진동(柳辰全)을 집의에, 오겸(吳謙)을 장령에, 이황(李滉)과 이중량(李仲樑)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庚寅.○以宋麟壽爲司憲府大司憲.沈連源爲成均館大司成.柳辰全爲執義.吳謙爲掌令.李滉李仲樑爲持平.
《中宗實錄 卷第96, 41面》

중종 37년 1월 2일(계미)

○예조 정랑 이안충(李安忠)이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로 대관(臺官)을 겸임하고 중국에 갈 적에, 서족(庶族)인 시정배(市井輩) 이부담(李富聃)을 정사(正使) 이희용(李希雍)에게 억지로 청하여 데리고 갔는데, 이부담이 농(籠)에 은(銀)을 담고 하나는 길면에 ‘서장관 농(書狀官籠)’이라고 찌지를 달고 하나는 이안충의 침상(寢床) 밑에 숨겨 두었다가 어사(御史) 류진동(柳辰全)에게 발견되었었다. 헌부가 ‘남보기에 더러운 짓을 하여 대관의 체통을 크게 잃었다.’ 하여, 고신(告身)을 모조리 추탈(追奪)할 것으로 조율하여 아뢰었는데, 공으로 한 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癸未.○禮曹正郎李安忠.以千秋使書狀官.兼帶臺官.以市井人李富聃爲孽族使李希雄處強請率行.富聃盛銀於籠.一隻外面.以書狀官籠懸柱.一隻則隱置於李安忠寢床下.而現捉于御史柳辰全.憲府以爲瞻視黯黯.大失臺官體統.以告身盡行追奪照啓. 命功減一等.

《中宗實錄 卷第97, 19面》

중종 37년 4월 5일(을묘)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심연원(沈連源)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유생을 공궤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 옛 관터를 미나리 받

으로 만들었으나, 그 땅은 분디 모래와 돌로 된 곳이므로 반수(泮水)를 끌어다가 물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수에 해마다 구멍이 생겨 물을 대지 못하고 또 해마다 가물기 때문에 축축하지 않고 몹시 메말랐으므로, 미나리를 심지 못하고 묵혀 버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본래 채소 값은 횡간(橫看)에 4월 이후에는 주지 않게 되어 있고, 학전(學田)에서 나는 것도 많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종[奴]에게 장만하여 바치게 하나, 종이 지공(支供)하기도 어렵습니다. 훈련원의 미나리 밭은 70묘(畝)나 되는데 훈련원은 늘 무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며, 육조와 다른 관사들도 어찌 모두 미나리 밭이 있어야 관원을 지공하겠습니까. 이 미나리 밭을 반 나누어 주거나 옛 관터의 밭과 서로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생들의 공제가 중요하니, 아뢴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서적을 널리 배포하여 외방의 유생들도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등에는 서적이 드물고, 묶은 끈이 끊어지고 해진 책이 겨우 한 둘 남아 있으므로, 뜻 있는 선비들이 구하여 보려 하지만 구해 볼 길이 없습니다.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같은 것을 많이 박아 내어 사가게 하면, 널리 배포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乙卯.○御夕講.特進官沈連源曰.成均館儒生供饋.事多艱難.前者以古館基.爲水芹田.其地本以沙石之處.引灌泮水.而今則泮水年年成窟.不能灌溉.又因逐年早乾.高燥不潤.芹不得栽.陳爲赤地矣.本來菜價於橫看.四月以後.不給學田.所出不多.不得已令奴予備供.奴予難於支供.訓練院水芹田.多至七十畝.訓練院非常養武士之地.六曹及他司.豈盡有水芹田後.爲官員支供也.此水芹田.或分半給之.或以館古基之田.相換用之何如. 上曰.儒生供饋爲重.如啓爲當.侍講官柳辰全曰.書籍廣布.使外方儒生.亦皆得見爲當.平安黃海等道.書籍罕有.斷編敗冊.僅存一二.有志之士.雖欲得見.未內也.如四書三經.多數印出.使得貿去.則庶可廣布矣. 上曰.所啓當矣.

《中宗實錄 卷第98, 4面》

중종 37년 6월 17일(병신)

평안도 관찰사 민제인의 서장에 말하기를,

“의주목사 이윤경의 첩(牒)에 말하기를, ‘표류인을 압령(押領)해 오는 당관인 이

시(李時) 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목사와 판관(判官) 등이 각기 두 차례 술을 돌린 다음 그들에게 전에는 상경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삽화(插花)를 뽑아 내던지고, 아랫사람을 시켜 자문(咨文)을 가져 오고 표류인들을 앞뜰에다 줄지워 세운 다음 「이 무리들과 자문을 이곳에 버리고 돌아가겠다.」 하면서 큰 소리로 노발 대발해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들은 대체로 사납고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나라를 우대하는 일과 공(龔)·화(華) 두 사신이 너그럽게 말한 뜻을 끌어대어 타일렀다. 그래도 더욱 화를 내며 잔치를 거절하고 모두 일어섰다.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 뜻을 말하고자 한 것뿐인데 어찌 대인들은 것처럼 노하느냐. 그렇다면 일로의 일을 다 조치 못했지만 행장을 꾸리라.」고 하자 성냄을 조금 그쳤다. 신들이 술 한잔을 올려 사과하겠다고 하니 대인(大人)이 허락하였다. 15일 새벽에 출발하자고 간절히 말해 보았지만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하였습니니다.” 하였는데,〔중략〕

예조가 회계하였다.

“이제 감사의 서장을 보니 대답한 말이 모두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요동에서 15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말과, 병부(兵部)나 예부(禮部)에서 나온 자문(咨文)은 모두 조선국 국경에서 교할(交割)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다 서장에 실려 있지 않으니, 반드시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뜻을 주야로 달려가 하유한다면 지체하는 동안에 미치게 될지도 모르고, 비록 중로에서 만나 하유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위접관(慰接官) 류진동(柳辰全)이 비록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사(通事)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해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丙申.平安道觀察使閔齊仁書狀曰.義州牧使李潤慶牒云.漂流人押領唐官李時等.宴享排設.牧使判官.各行酒二巡後.以上京例無事.反覆開說.則多叛暴怒.卽拔插花揮置.令下人取來咨文及漂流人.使之列立前庭曰.此輩及咨文.當棄此還歸.厲聲叛怒.使不得措辭.大槩以暴戾無識之人.故以上國優待我國之事及龔華兩天使優容接話之意.援引開說.而激怒尤甚.不受享禮.遽皆起立.臣等語之曰.欲適情意而已.豈知大人訶怒至此乎.若然則一路之事.雖未及措置.當裝束行李云後.怒意小止.臣等以欲進一盃以謝.大人則許諾.十五日曉頭發行事.丁寧設計.則以言辭開諭.不得回撓云.〔中略〕

禮曹回啓曰.今見監司書狀.所答之言.皆不緊.以遼東定限十五日之言及兵部禮部前來咨文.皆於朝鮮國地界交割之辭.俱不載書狀.則必不說與也.此意不分晝夜下諭.則遲留之際.可及見之.雖或逢於中路.而諭之亦當.慰接官柳辰全雖不能言.令通事談話間.可以言之也.

중종 37년 6월 28일(정미)

위접관(慰接官) 류진동(柳辰叟)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중국 관원은 국왕이 친히 자문을 받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사년(중종 16, 1521) 홍은(洪恩)이 왔을 때의 예에 따라 친히 자문을 받들지 않는다는 말을 류진동이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될까 염려하여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였었다. 지금 속히 류진동에게 유시하여 신사년의 예에 따라 국왕이 친히 자문을 받들지 않는다고 자세히 말해 주게 하라.”

서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일 이른 아침에 다시 개유(開諭)하였더니 ‘동정(東庭)에서 절하는 것은 따르겠으나 동계(東階) 위에다 설안(設案)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 한 중앙에 설안하는 것이 예에 마땅하다. 이제 만약 국왕이 전상(殿上)에 나와 앉고 사신들이 친히 자문을 올린다면 자리의 오른쪽에다 올리겠는가, 아니면 앞에다 올려야 하는가? 이것으로 보아도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앙에 안상(案床)을 설치하여 자문을 그 위에 두고 어로(御路) 위에서 예를 행하는 절차가 있다. 다만 국왕이 친히 받지 않고 예조 낭관으로 하여금 받들어 승정원에 두게 하는 것이다. 보통 때의 칙서(勅書)를 위에서 친히 받아서 본 후에 승문원(承文院) 관원이 받들어 처치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류진동은 국왕이 친히 받들지 않는 것을 모를 것이고, 신사년 홍은(洪恩)이 왔을 때에 친히 받들지 않는 일을 당관(唐官) 역시 모를 것이다. 류진동이 친히 받들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면 마땅히 대답이 있었을 터인데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못이다.”〔중략〕

○위접관 류진동이 아뢰기를,

“당관에게 자제 두목(子弟頭目)이 드는 방을 숙소로 정해 주었더니 옷을 벗으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낮은 처소인데 어찌 상방(上房)을 주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천사(天使)가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면 마치 천자가 친히 임어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이곳을 처소로 정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우리는 사가(私家)에 나갔다가 밤을 지내고 돌아와야겠다. 어찌 이런 곳에 들어 유숙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천사는 조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방(上房)에 드는 것이며, 자제 두목이 드는 방 역시 등분(等分)이 있는데 대인(大人)이 상방에 들어 거처한다면 뒤에 오는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나라가 예(禮)를 안다고 하겠는가? 아래 처소 역시 등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子弟)들이 들어 거처하는 방으로 대인을 대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라.”

○류진동이 아뢰기를,

“중국 관원이 오면서 먹던 계령원(桂苓元)이 가득 든 항아리를 땅에 던져 깨어 크게 노한 뜻을 보이고는, 그 문 안에서 교의(交椅)에 걸터앉아 계속 마구 화를 내면서 처소에 들어갈 뜻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이 통사를 시켜 말하기를 ‘대인은 것처럼 크게 화만 내지 말고 천천히 이 관(館)의 생긴 형세를 보라. 그러면 대인이 이 방에 들어야 하는 뜻을 알 것이다. 동서의 상방(上房)은 조사(詔使)의 거처로 높이기 때문에 국왕도 마음대로 들지 못한다. 비록 도사(都司)가 친히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들 수 없다. 다른 처소가 없으니 부득이 이 방에 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국왕이 외방(外方)에 나가 순행(巡行)하다가 한번 묵은 곳에는 신하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조사가 드는 관사에 대인이 어찌 차마 참람하게 들어가서 마음 편히 묵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대인의 노염도 풀어질 것이다.’ 하였더니, 갑자기 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처음 의주에 있을 때는 주관(州官)이 「전례가 없으니 상경할 수 없다.」 하여 억지로 올라왔는데, 평양에 있을 때 또 관찰사가 「전례가 없으니 상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강대인(康大人)이 억지로 권하였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내가 노했다고 말하니 강대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하였습시다. 다시 통사를 시켜 말하기를 ‘너무 노하지 말라. 내일 전하께서 경희루에서 접견(接見)할 것이다. 그때에 대인의 뜻을 말씀드리겠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이제 자문을 올리고 타각부(打角夫)의 방에 들었으니 이는 천대(賤待)하는 것이다. 경희루는 천사를 맞아 연회하는 곳인데 천한 사람이 어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밤이 깊어 즉시 나갈 수가 없어 우선 이곳에 머물지만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겠다. 그러니 자문은 후에 보내주면 된다. 어찌 모든 객실(客室)이 조사들만을 위한 처소이겠는가. 내가 설령 들어가 거처한들 내가 이 집을 지고 가겠는가. 또 조사가 된 사람은 모두 이 방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 하고는 등불을 끄고 누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설득하지 못하였고 밥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사람들이 크게 노하였으니, 풀리지 않을 듯하다. 상방은 조사가 드는 처소이니 그의 말을 따를 수 없다. 그러나 인면 수심(人面獸心)의 사람이니 천사가 드는 방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조에 의논하라.”

○丁未.以慰接官柳辰叢書狀.狀云當日早朝更爲開諭則拜於東庭當從之設案於東階上不可從也當中設案乃禮之當然今若國王出坐殿上而使俺親呈咨文則呈於坐右乎當呈於坐前乎因此而亦可明矣云下于政院曰.唐官意.國王親奉咨文云.依辛巳年洪恩例.不親奉咨文事.柳辰叢不言乎.應其如此.故

大臣處.已曾.議之矣.今速諭于柳辰全處.依辛巳年例.國王不親奉咨文事.詳語之可也.○傳于政院曰.當中設.置案置咨文御路上行禮節次有之矣.但國王不親奉.使禮曹郎官奉之.呈于承政院云.常時勅書.自上親奉見後.承文院官員奉而處置.此其例也.柳辰全未知國王不親奉.辛巳年洪恩時不親奉事.唐官亦未知.辰全以不親奉事言之.則當有所答而不言.此爲非矣.[中略]

○慰接官柳辰全啓曰.唐官下處于子弟頭目所入之房.則脫衣言曰.此是卑處.何不下處於上房乎.答曰.天使持詔書來.則如天子親臨.故下處於此矣.曰然則我等.當於私家.過日而歸矣.何以此處入宿乎云.傳曰.天使持詔來.故入上房.子弟頭目所入之房.亦有等分.大人入樓上房.則後來天使聞之.以我國爲知禮義乎.下處亦有等分.故以子弟入接處.以待大人也.以此意言之可也.○柳辰全啓曰.唐官道上所食桂荅元入盛缸.投地打破.以示大怒之意.因據交倚于其門內.盛怒不已.頓無入處之意.臣令通事言曰.大人無大怒.徐觀此館創制形勢.則大人當入接此房之意可知.東西上房.乃尊詔使之所.雖國王不得入.雖都司親來.亦不得入.他無別處.大人不得已當入此房矣.我國崇尚禮義.故國王如有出巡外方.一經 御宿之所.則臣下永不得入.而況詔使所館.大人豈忍僭擬入處乎.安心入宿.細思此意.則大人之怒.庶幾解矣.怒氣轉劇曰.初在義州時.州官以爲.無前例.不可上京.強自上來.在平壤時.觀察使亦以無例.不可上去云.吾欲還歸.康大人強勸.故上來.以今怒意言之.欲以刀刺康大人.又令通事言曰.無大怒.明日 殿下.接見於慶會樓下矣.此時可達大人之意.答曰.今呈咨文後.下處於打角夫房.是賤待也.慶會樓.乃天使宴所.賤人豈得參宴於其中.今則不通言語.夜日深矣.不得卽出而去.姑留于此.明當早歸.咨文隨後入送可也.且凡客室.豈但爲詔使之處乎.吾雖入處.吾將負去乎.凡爲詔使.其買此室.以爲己物乎.滅燈八臥.不許人出入.故未得再爲開諭.亦不得饋飯.傳曰.此人等大怒.似不可解也.上房.乃詔使入處.其言不可從.然人面獸心之人.雖天使入接房.許之何如.議于禮曹. 《中宗實錄 卷第98, 61面》

중종 37년 6월 29일(무신)

○위접관(慰接官) 류진동(柳辰全)이 당관(唐官)이 써서 올린 소폭지(小幅紙)를 가지고 아뢰기를,

“당관이 말하기를 ‘이는 강진(康鎭)이 청한 물건이다.’ 하였는데, 원래의 뜻은 실로 나누어 갖고자 해서입니다.” 마안(馬鞍)·연면(硯面)·자주(紫紬)·녹주(綠紬)·소도(小刀)를 구청(求請)하고, 청건(靑絹) 16필, 단자(段子) 7필을 매매하고, 인삼(人蔘)·흑마포(黑馬布)·백저포(白苧布)를 무역하고자 하였다.

○戊申.○慰接官柳辰全.以唐官書呈小幅紙啓曰.唐官云.此是康鎭之物也.然原其意.則實欲分之也.求請馬鞍硯面紫紬綠紬少刀買賣靑絹十六匹段子七匹欲買人蔘黑馬布白苧布

《中宗實錄 卷第98, 63面》

중종 37년 7월 1일(기유)

○위접관(慰接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당관이 내일 돌아가겠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상마연(上馬宴)¹⁶¹을 왜 참석하지 않고 가는가?’ 했더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상마연에 참석한 후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당관이 돌아가려고 하거든 보내도 된다.”

己酉朔。○慰接官柳辰全啓曰。唐官明日欲歸。臣曰。上馬宴何不叅而歸乎。答曰。然則叅上馬宴後。請歸云。傳曰。唐官欲歸。則可許送也。 《中宗實錄 卷第98, 64面》

중종 37년 7월 14일(임술)

간원이 아뢰기를,

“평안도 재상어사(平安道災傷御史)를 위접관(慰接官) 류진동(柳辰全)에게 그대로 맡겨 왕래하게 하였는데, 역로의 폐단은 없앨 수 있습니다마는, 어사는 비록 암행어사가 아니더라도 모두 상께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기에 온 도가 경동하여 공손히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外地)에서 다른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면 상께서 특별히 보내는 뜻에 어긋나고, 고을 이름을 추생(抽姓)하여 어필(御筆)로 비밀히 써서 우졸(郵卒)을 시켜 전하는 것도 매우 미안하니 류진동에게 어사의 임무를 맡기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壬戌。諫院啓曰。平安道災傷御史以慰接官柳辰全。仍行往來。驛路之弊則固可除矣。但御史雖非暗行。皆是自上別遣。一道驚動敬奉。今以在外他任之人仍行。有違別遣之意。抽姓邑名。御筆秘書。若傳以郵卒。亦甚未安。請勿以柳辰全仍行。答曰依啓。 《中宗實錄 卷第98, 67面》

중종 37년 8월 19일(병신)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전일 신영 등이 아뢴 것은 진풍정을 못하게 하려고 아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흉년이 극심했고 경상도와 충청도는 금년에도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으며, 경기의 농사는 먹을 만한 데도 있고 먹을 수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종재와 시종들에게 주악(酒樂)을 내리는 일은 그만 두어도 될 것으로 여겨 정지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소견을 아뢴 것으로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송기수가

161) 상마연(上馬宴) :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돌아가기 전날에 베푸는 잔치, 떠나는 날에는 전연(錢宴)을 베푼다. 반대로 입경(入京) 다음날에는 하마연(下馬宴)을 베푼다. <春官通考 46 嘉禮, 宴享>

그르다고 하였어도 구태여 피험(避嫌)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수도 스스로 인혐(引嫌)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신영 등을 논박하여 체직시켰으니, 대간의 위신이 이로부터 가벼워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영 등이 아뢴 말이 과연 그르지 않다. 당초 진풍정을 하자고 할 때 내 생각은, 안에서 진연(進宴)이 있으면 밖의 궐정에서 공궐하는 것이 예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공궐하려 한 것이다. 그뒤 신영 등이, 진풍정을 하더라도 주악을 내리는 것은 그만 두어도 된다고 아뢰었고, 내 생각에도 전에 공궐한 적도 있고 공궐하지 않은 적도 있었으니 신영 등의 아뢴 것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 윤택한 것이다.

어제 대간(臺諫) 신영 등을 가리킴.이 긴하지 않은 일로 굳이 사면하면서 심지어 물론을 기다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물러갔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론을 기다리면서 짐작하여 출사는 해야 되는 것이다. 짐의는 이렇게 피험하는 것을 가지고 동료간에 서로 용납할 수가 없어 사제가 서로 버티기 어렵다고 체직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이 또한 부당한 일이었다.

전에는 대간이 물론을 받았어도 체직할 만한 일이 아니면 으레 체직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다. 동렬(同列)이 논박하면 긴하지 않은 일이라도 으레 모두 체직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전일 대신들도 이를 그르다고 했었다. 이제 이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해야겠다. 단, 흥년이어서 공궐의 정지를 아뢴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데 이를 이유로 체직시켜도 되겠는가?”

하였다.

○丙申.○御晝講.侍講官柳辰全曰.典日申瑛等所啓.非以進豐呈.不欲爲而啓也.去歲兇甚.而慶尙忠淸兩道.今又不稔.京畿農事.或有可食不可食之處.故宗宰侍從等賜酒樂之事.意或可已而請停.自以所見啓之.不爲過矣.宋麒壽雖言其非.固非強爲避嫌之事矣.麒壽亦可自爲引嫌.而反論申瑛等而遞之.恐臺諫自此而輕矣. 上曰.申瑛等所啓.果爲不非.當初進豐呈時.予以爲內有進宴.則外有闕庭供饋.例也.故欲爲供饋.而其後申瑛等啓曰.雖爲進豐呈.賜酒樂則在乎所可已.予以爲前者.或有供饋.或有不爲供饋.則申瑛等之啓.亦非不可而允之矣.昨日臺諫.申瑛等以不緊之事固爲辭免.至於待物論云而退歸.則自待物論.斟酌出之可也.執義以此避嫌之故.啓以同僚不相容.勢難相持而請遞.亦爲不當矣.前者臺諫.雖被物論.而不當遞之事則例不遞之.近來不然.同列論之則事雖不緊.例皆遞之.甚爲不可.前日大臣.亦以此爲非矣.今當以是議于大臣.但以年凶.啓停供饋.非不宜也.而以是遞之何如.

중종 37년 8월 20일(정유)

○대사헌 이언적이 아뢰기를,

“풍헌(風憲)의 장관(長官)은 책임이 매우 중대합니다. 신이 일찍이 외람되어 본직(本職)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개월 동안 죽대없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서 위로는 임금 마음을 바로잡고 아래로는 시정(時政)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였으므로 신 스스로도 늘 부끄러운 마음이었고 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에 특명(特命)이 잘못 신에게 내렸으니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신은 스스로 용렬하여 이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으니, 외람되어 있으면서 중직(重職)을 폐기케 할 수 없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평상시라면 참찬(參贊)을 낮추어 헌장(憲長 : 대사헌(大司憲))에 제수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어제 대신들이 대간을 경솔히 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했고 또 지금 떠들썩한 의논도 있어서 모름지기 대신의 논의에 대한 전말을 아는 사람으로 임명해야겠기에 경을 임명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언적이 이어 아뢰기를,

“대간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서 시종(侍從 : 홍문관 관원)이 논계하려면 반드시 동료들과 회의하고 나서 아뢰는 것은 대간을 중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류진동(柳辰叟)이 송기수의 잘못을 논하려 하면서 동료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솔히 입계(入啓)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수가 스스로 인협하지 않은 것을 그르다고 했습니다. 신영 등이 기수의 말 때문에 사면한 것일 뿐 기수는 당초 잘못된 일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인피(引避)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동의 아뢰는 잘못입니다. 어제 연방(延訪)할 때 위의 뜻도 대간을 중히 여겨 경솔히 체직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기수에게 참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절로 공론이 있을 것입니다. 한 시종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논박받았다 하여 경솔히 체직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체직시키면 대간의 위신이 이로부터 더욱 가벼워져서 그 폐단을 구제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매우 타당하다. 어제 이미 대간을 경솔히 체직시킬 수 없다는 의논이 있었다. 송기수와 신영 등의 일은 다를 것이 없다. 신영 등을 이미 체직시켰는데 유독 기수만 체직시키지 않는다면 기수 자신의 처신도 가볍게 된다. 사세가 이러하기 때문에 체직시킨다. 그러나 사세를 돌아보지 않고 체직하지 않기로 굳게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丁酉.○大司憲李彦迪啓曰.風憲長官.責任甚大.臣曾忝本職.碌碌循嘿.數月之間.無一言上格君心.下補時政.臣心常自愧惡.而物議亦有之.今不意有特命.謬及於身.至爲惶恐.

臣自知庸暗.不能堪任.不可冒處.以曠重職.請遶.答曰.若常時則以叅贊降授憲長.似異矣.昨日大臣.以輕遶臺諫不當云.且今有囂囂之論.須以知大臣論議首末者爲之.故以卿爲之.勿辭.彦迪仍啓曰.臺諫有失誤之事.而侍從欲論啓.則須與同僚會議後啓之者.重臺諫也.柳辰仝.欲論宋麒壽之失.不議諸同僚而輕自入啓.又以麒壽.不自引嫌爲非.申瑛等因麒壽之言而辭免.麒壽則初無失誤之事.未知以何辭而引避乎.辰仝之啓謬矣.昨日延訪時.上意欲重臺諫.而勿輕遶.麒壽誠有所失.則自當有公論.不宜聞一侍從之言.遽以爲被論而輕遶.恐臺諫自此益輕.弊將難救.答曰.啓意至當.昨日已議不輕遶臺諫之意矣.宋麒壽與申瑛等.無異也.旣遶申瑛等.而獨不遶麒壽.則麒壽之自處亦輕矣.勢至如此故遶之.然不顧其勢而堅定不遶之事.則予未及計也.

《中宗實錄 卷第99, 20面》

중종 37년 8월 25일(임인)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진동(柳辰仝)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서방(西方)에 있을 적에 보니, 안주(安州)·노강(老江)·의주(義州)·인산(麟山) 등지에 모두 둔전(屯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흉년과 풍년을 헤아리지 않고 지정된 수량 채우기에만 힘을 썼습니다. 만일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으레 책벌(責罰)이 따르기 때문에 첨사(僉使) 등이 직접 거둔 벼를 살펴보고는 잡곡(雜穀)을 많이 섞어 구차스레 곡수(斛數)를 채운 뒤에 이를 군량(軍糧)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성들에게 방아 찼어 쌀로 만들게 해서 강변(江邊)의 장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낼 즈음, 백성에게 쌀을 징수하기도 하여 폐단이 작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흉년과 풍년에 따라 그 수량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그렇게 하면 과연 민폐가 없겠다. 실제로 모자라는 곡수(斛數)를 백성들에게 방아 찼어 군량으로 지급하게 하니 그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당초 그 수량을 지정하여 놓은 것은 검속할 수 없음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풍년과 흉년을 헤아려서 헛된 숫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해조(該曹)에서 해야 된다.”

○壬寅. 御夕講.侍講官柳辰仝曰.臣前於西方見之.安州老江義州麟山等處.皆有屯田.收穫作穀之時.不計豐歉.務充其數.如有減數.則例有責罰.故僉使等.親見穫禾.多以雜穀.苟盈斛數.以此給與軍糧.已有其弊.況使民舂米.入送於江邊將士之際.徵米於民者.弊甚不貲.民又苦之.若以豐歉.酌定其數.則庶無此弊.上曰.如是則果無民弊.以虛張斛數之穀.令民舂米給軍.其弊必多.初定其數者.慮其不能檢舉也.計豐歉不爲虛數.則該曹爲之矣.

《中宗實錄 卷第99, 25面》

중종 38년 2월 19일(계사)

주강에 나아갔다.

○구수담(具壽聃)을 사간원 대사간에, 류진동(柳辰全)을 홍문관 부제학 특지(特旨)에, 이몽량(李夢亮)을 사헌부 집의에, 임호신(任虎臣)을 사간에, 이황(李滉)을 장령(掌令)에, 김반천(金半千)을 지평에, 남응룡(南應龍)을 헌납에, 홍담(洪曇)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癸巳. 御晝講. ○以具壽聃爲司諫院大司諫. 柳辰全爲弘文館副提學. 特旨李夢亮爲司憲府執義. 任虎臣爲司諫. 李滉爲掌令. 金半千爲持平. 南應龍爲獻納. 洪曇爲正言.

《中宗實錄 卷第100, 34面》

중종 38년 2월 24일(무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구수담이 아뢰기를,

“근래 강상(綱常)의 변이 겹쳐서 한때의 풍습이 도리어 자포 자기하는 데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의논을 세운 다음에야 아랫사람들이 그 의논을 사사로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유생이면서도 책 읽는 것을 힘쓰지 않고 조사(朝士)이면서도 직무 수행을 급하게 여기지 않고 사론(私論)에만 힘써 헛된 낭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이 근래 외방에서 들어와 지난번에 강릉부사가 되었다가 조정에 돌아왔다. 잇따라 시종과 대간의 직을 더럽히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간사한 의논이 비등하여 ‘윤임(尹任)을 대윤(大尹)이라 하고 윤원형(尹元衡)을 소윤(小尹)이라 하는데 각각 당여(黨與)를 세웠다.’ 합니다. 그 실정을 따져보니, 윤임은 부귀가 이미 극에 달했고 원형은 청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을 역임하였으므로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을 일으키려고 다시 당여를 세운단 말입니까? 가령 저들이 당여를 세우려 한다 해도 식견 있는 사람이 어찌 그들에게 붙겠으며 또 어찌 다시 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삶에 있어 어찌 봉우와 족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왕실의 친척이라는 것으로 지목, 당여라는 의논이 비등하니 매우 음험한 사론(邪論)입니다. 이와 같이 시습(時習)이 경박하여 뜯말을 전파하기를 좋아하니, 소인들이 틈을 타 술수를 부려 사람의 마음이 동요되면 후일의 걱정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의 이 사론을 조정에서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형적이 없으므로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상께서 미리 아신다면 후일에 사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로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참찬관(參贊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구수담이 아뢰는 사론(邪論)이라고 한 것은 본디 소인들의 술책입니다. 이것은 김안로가 처음 나왔을 때에 스스로 동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도(正道)를 가탁하여 부정한 짓을 하는데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옳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 당여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술책에 속은 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동궁을 우러러 받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안로가 있어야만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론은 일조 일석에 나오는 것이 아니요, 마침내 극도에 다다른 뒤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마땅히 기미가 보일 때에 진정시켜야 한다.”

하였다. 류진동(柳辰叟)이 아뢰기를,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그 사론을 믿겠습니까?”[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안로도 외간 사람이 아니었다. 왕실(王室)과 혼인을 해서 형세가 동궁에 가까웠으므로 이것을 빙자, 말을 만들어서 마침내는 큰 환란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하였는데, 류진동(柳辰叟)이 아뢰었다.

“김안로의 형세가 위협하게 되자 안로는 악이 극도에 이르고 죄가 컸다. 그 악을 이루게 한 허항(許沆)과 채무택(蔡無擇)이 죽었다. 김근사(金謹思)가 재상에게, 동궁의 형세가 위태로우니 그 뜻을 아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에 조금 식견이 있다고 불리는 자들이야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동궁은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우러르는 바인데 어찌 김안로 혼자만이 보호한단 말입니까.”

○戊戌. 御朝講.大司諫具壽聃曰.近者綱常之變疊出.而一時氣習.反歸於自暴自棄.在上之人必.持議論然後.下不得私其議.今則圓冠而不以讀書爲務.朝士而不以任職爲急.惟務私論而虛傳浪說.臣近者自外入來.頃爲江陵府使還朝連忝侍從臺諫.而風聞.則有邪議飛騰指尹任爲大尹.尹元衡爲小尹.而各樹黨與云.原其情.則任富貴已極.元衡青年登第.歷踐華秩.已無不足.欲.成何事.而更樹黨與乎.假曰彼欲樹其黨與.有識之人.豈有附之者.又豈復有聽其說者乎且居人世.亦豈無朋友族類之相與者.而必屬目王室之親.飛騰黨與之議.邪論之至險也.若此時習輕薄.喜播.浮言.若小人乘間搖術.則人心竦動.恐成後日之患也.今之邪議.朝廷孰不知之.而但以無形.不知其爲某人之言也.自上若預知.則後日雖有邪議.自不動搖矣.[中略]

叅贊官柳辰全曰.具壽聃所啓邪議云者.此本小人之術也.如金安老初來時.自謂保護東宮.托於正以售其不正.而相授者.皆以此言之.雖非其黨與.而見欺於其術者.亦以此言之也.一國臣民.莫不仰戴東宮.奚待安老而保護乎.[中略]

上曰.邪議非出於一朝一夕也.終至於極然後發.而救之爲難.當及幾微之時.鎮定可也.辰全曰.稍有知識之人.誰信其邪議乎.[中略]

上曰.金安老亦非外間人也.聯姻王室.而勢近於東宮.故托此成說.厥終爲患大矣.辰全曰.金安老勢危.而安老惡極罪大而請惡者如許沆蔡無擇在喪金謹思語宰相曰.東宮勢危.不可不啓其意.其時稍號有識者.誰信其言乎.東宮.一國臣民之所仰.豈必安老獨爲保護乎.

《中宗實錄 卷第100, 36面》

중종 38년 3월 4일(무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천하의 일에는 물을 것이 있고 묻지 못할 것이 있는데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는다면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고 묻지 않아야 할 것을 반드시 묻는다면 너무 세심한 폐단이 있으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임금의 정치하는 방법에 해로운 것으로써 그 중에서도 너무 세심한 데서 오는 해가 더 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들으니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이라는 말이 간관(諫官)의 아뢰는 말에서 우연히 나왔는데, 이 말이 매우 국가에 관계된다고 하여 전하께서 그 말이 나온 근원을 하문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란 간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전해지고 두 번 전해지는 사이에 듣는 이들이 모두 믿게 되어 마침내는 국사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니, 이 어찌 제왕으로서 엄히 조사하여 모든 이의 의심을 시원히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자신이 반성할 뿐이며 스스로를 책망할 뿐이니, 자신에서부터 가정,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무릇 한 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도 남에게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없는데도 오가는 말들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자신을 허물하여 ‘내가 가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가를 바로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는가.’ 하신다면, 이로써 헛소문은 자연히 그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간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다만 전하께서 떠도는 여론에 동요되지 말고 더욱 스스로 마음과 뜻을 경계하고 성찰하도록 하고자 했을 뿐, 어찌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겠습니까. 대신들도 그것을 하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신들은 삼가 들으니, 요즘 전하께서 하교하신 뜻이 아마도 대간의 발론(發論)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신들은 사람마다 스스로 위험만 느끼게 할 뿐 말의 근원은 찾지 못한 채 인심만 더욱 동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문하는 데서 오는 해가 너무 세심한 폐단만이 아니니 어찌 우려할 만한 기미가 없겠습니까.

대체로 인척(姻戚)은 모두가 전하의 한집안 친척입니다. 전하의 집안일인데 전하께서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러한 폐단이 없다면 이 말은 공구(恐懼)하게 하는 데 일조(一助)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있다면 이 말은 역시 생민과 사직의 복(福)이 될 것입니다. 신들이 전하께 굳이 하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소문이 떠돌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문하는 데서 오는 해로움이 이보다도 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니, 답하였다.

“이 말이 합당한 것 같다. 다만 소차(疏筭)의 내용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옛날에도 하문했던 때가 있었으므로 하문하고자 한 것이다. 대체로 간사한 논의는 인심을 동요시키기가 쉬운 것이니 비록 없는 일이라도 간혹 믿고 현혹하게 된다. 윤임(尹任)의 말을 듣고 매우 미안하게 여겼으므로 내가 답하기를 ‘그사론(邪論)에 대해서 대간이 말하면 상하가 모두 통쾌하게 여겼을 것이다.’고 하였다. 비록 인척이라고 하지만 임금이 구중 궁궐 깊이 있으니 그들이 사사로이 하는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戊申.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筭曰.天下之事.有可問者.有不可問者.可問而不問.則傷於泛.不可問而必問.則傷於察.此二者.皆傷於人君之政體.而察之害有甚焉.頃聞大小尹之說.偶出於諫官之啓.而此言最關於國家. 殿下欲問其言之發根.凡言之發於人也.或非皆實.而一傳二傳之間.聞之者皆信.竟致國事之誤.豈非帝王之所爲痛究而快解人心之共疑乎.然人君之所先務者.反躬而已.自責而已.自身而家.自家而國.凡一言一行.無足以致人之疑.而其往來之言如是.則必不尤人而尤己曰.我必不正於家也.不正於國也.此物奚宜至哉.是以浮言自止.而人心益固.今諫官之發此言也.只欲 殿下不爲浮議所動.益自警省其心志而已.豈以爲真有此事也.大臣亦言其不可問.其意有在.臣等伏聞近日 殿下下教之旨.似有待臺諫之發論.臣等竊恐人人之自危也.言未必得其根.而適足以益搖人心.則問之害.不特傷於察也.豈無可慮之機乎.大抵姻婭外戚.皆殿下一家親也. 殿下之家事. 殿下有不知之耶.苟無此弊.則此言不過恐懼之一助.稍有其機.則此言亦足以爲生民 社稷之福耳.臣等不欲 殿下之必問者.非謂飛語之無妨也.竊念問之之害.將有甚於此也.答曰.此言似當.但疏筭間之言.若有未解見處.則古亦有問之之時.故欲問之.大抵邪議.人心之所易動也.雖虛事.而或致信惑.聞尹任之辭.甚以爲未安.故予答曰.其邪議.臺諫言之則上下所聞皆快也云.雖姻婭外戚.人君深居九重.其私所爲.豈能知之.

《中宗實錄 卷第100, 41面》

중종 38년 4월 6일(경진)

주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역경(易經)」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서경(書經)」의 흠명문사(欽明

文思)에 비교하여 하늘에 있어서는 원형이정이고 인간에 있어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된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역경」 공부하는 방법은 하늘을 범받는 것이 귀중합니다. 「중용(中庸)」에 「오직 하늘의 명하심이 아아, 아름답기 그지없도다.」 하니, 이는 하늘의 하늘다움을 말함이고 「아아, 뚜렷하지 아니한가? 문왕(文王)의 덕이 순일(純一) 함이여!」 하니, 이는 대체로 문왕의 문왕다움을 말함이다.」 하였으니, 임금이 하늘을 범받는 것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역경」에 ‘나는 용(飛龍)이 하늘에 있다. 훌륭한 인물을 만나봄이 이롭다.’¹⁶²⁾ 하였으니, 임금이 이러한 큰 덕이 있어야 능히 큰 덕이 있는 신하를 얻고, 임금이 큰 덕이 없으면 비록 큰 덕의 신하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며, 쓴다 하더라도 그 덕을 모두 진개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역경」에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는 것이니, 구름은 용(龍)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하였으며, 「시경(詩經)」에는 ‘훌륭한 많은 선비가 이 왕국에 태어났다.’ 하였습니니다. 상께서 먼저 자신의 덕을 닦는다면 현인 군자가 시대에 부응하여 나올 것입니다. 예부터 역대의 인재 등용에 대한 잘잘못은 그 책임이 오로지 위에 있었습니니다.”

하고,

○庚辰. 御晝講. 叅贊官柳辰全曰. 古人以易之元亨利貞. 比言於書之欽明文思. 在天爲元亨利貞. 在人爲仁義禮智. 人君學易之法. 貴在於則天. 中庸曰. 維天之命. 於穆不已. 盖曰天之所以爲天也. 嗚呼不顯. 文王之德之純. 盖曰文之所以爲文也. 人君之法天. 當如是也. 易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夫人君. 有此大德而後. 能得大德之臣. 君無大德則雖有大德之臣. 不能用之. 雖用之. 使不得盡展其德澤矣. 盖同聲相應. 同氣相求. 雲從龍. 風從虎. 詩曰. 思皇多士. 生此王圉. 自上能先修己之德. 則賢人君子. 應時而出. 自古歷代用人. 得失其效. 專在於上也.

《中宗實錄 卷第100, 49面》

중종 38년 5월 4일(정미)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상소를 올렸다.

“성인은 인륜의 지극함입니다. 대저 사람에게 큰 윤리가 다섯이 있는데 오직 성인만이 제대로 다할 수 있기에 만민의 위에 임금과 스승이 되어 천하 강상의 중임을 맡아 표준을 바로잡아 아래를 통솔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식으로 말한다면 그 효성을 지극히 하여 천하의 아버지와 자식의 분한이 여기에서 결정되게

162) 주역(周易) 중천건(重天乾) 괘의 구오(九五)에 나오는 글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氣)는 서로 구한다.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마른 곳으로 나아간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성인이 나타나면 만물이 바라본다. 하늘에 바탕을 두는 자는 위로 친하고 땅에 바탕을 두는 자는 아래로 친한다 했다.

하고 남편과 아내로 말한다면 그 분별을 지극히 하여 천하의 남편과 아내의 분한이 여기에서 결정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특히 그 천성에 고유한 바로 그만둘 수 없는 양지(良知)를 인하여 새롭게 정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화를 밝히면 풍속이 아름다와져 인륜이 더욱 두터워지고 이것을 가지고 선비의 습성을 바로 잡는다면 기절(氣絶)이 확립되어 인륜이 더욱 돈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따로 요순(堯舜)의 도는 넓고 넓어 제대로 이름할 수 없지 마는 그 근본을 찾아본다면 효제(孝悌)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사나운 사람이라도 자식을 보면 어여빠 여기고 심지어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까지도 아버를 보면 우니, 이것이 사람의 참 인정이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욕에 구애되고 이해에 가려져서 그 은의(恩義)를 헤치게 되는 경우가 혹 있는 것이지 어찌 천륜을 없애고 인리(人理)를 끊어 금수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끝내 구원하지 못하는 데야 이르겠습니까.

아, 오늘날의 이변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를 살해하였다는 옛말은 들었으나 그런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옛말은 들었어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찌 천고 이륜(彝倫)의 큰 변이 일시에 전하의 백성들에게서 아울러 발생할 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이치가 여기에 이르러 남김없이 모두 끊어졌으니 비록 곡식이 있다 한들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이는 누가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임어하신 지 40년이 되어 갑니다. 인도(人道)의 기강을 잡고 인간 표준을 건립하는 데에 그 지극함을 사용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교화가 백성에게 미쳐 당연히 효자가 끊이질 않고 여인이 정숙한 현상을 보일 것인데 도리어 악역의 무리가 서로 이어 나오니 백성의 도덕은 어디에 있고 사물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들은 삼가 의혹됩니다. 황천(皇天)이 강충(降衷)하신 이치가 균등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하의, 인륜을 후하게 하는 교화가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역경」에 '나의 생활을 관찰함은 백성에게서 관찰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백성 풍속의 아름다움과 악함을 관찰하여 내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여기에서 어찌 맹성(猛省)하여 인심과 세도(世道)를 위하여 한 차례 개탄을 발하지 않습니까. 대벽(大辟 : 사형)을 실시하여 왕법(王法)을 밝히고 심지어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터에 못을 만들기까지 하였으니 귀신과 사람의 공노(共怒)를 통쾌하게 하기에, 왕화(王化)의 큰 수치를 씻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大禹)에게 보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당우(唐虞 : 요순의 나라 이름)의 조정에서도

이러한 변이 있었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란 풍화(風化)의 주인이니 주인이 올바르게 못하다면 어떻게 가정을 바로잡을 것이며, 가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를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대학(大學)」의 전(傳)에 ‘한 집안이 인(仁)하면 한 나라가 인에 흥기된다.’고 하였으니, 무릇 인이란 것은 모든 선(善)의 으뜸입니다. 본성으로 보아 당연한 것과 직분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 모두 이 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곧 유약(有若 : 공자의 제자)이 이른바, 효제(孝悌)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한 것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맹자(孟子)가, 임금이 인하면 누구도 인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교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웃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면 백성이 효도에 흥기된다고 한 것이 바로 증자(曾子)가 이른바,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국가를 다스린다는 대지(大旨)입니다. 그리고 그 강령(綱領)은 진실로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지지선(止至善), 이 세 가지에 있으니, 전하께서 한 나라의 효도를 흥기시키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버리고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겠습니까? 여기서 「대학(大學)」이란 「소학(小學)」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 진실로 천하를 평치하는 율령(律令)이며 격례(格例)인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학」도 본디 한결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학문하는 공부의 차례를 반드시 무시하거나 빠뜨리거나 하지 못할 점이 있는데 오늘날 건의하는 이들은 유독 「이륜행실(二倫行實)」만 들어서 인심의 악함을 구원할 수 있고 인심의 선함을 흥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륜은 충분히 삼강(三綱)의 미비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어리석은 남자도 함께 알 수 있으며 어리석은 아낙네도 함께 행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 책은 진실로 도움이 없지 않으며 이 말도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 여덟 살이 되면 쇄소 응대(灑掃應對)의 절차를 밝히는 것이 바로 삼대(三代)의 성법(成法)인데 한갓 먼저 이륜에 종사하고자 했다면 이미 옛사람의 학문하는 데 차례 있음을 어기어 등급을 뛰어넘고 차례를 무시하는 폐단을 면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오늘날 「소학」 말하기를 꺼리는 것을 신들이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기묘년 간에 연소한 신진 사류(新進士類)가 오활하고 광견(狂狷)한 자질로서 옛것만 좋아하여 뜻을 높이는 마음만 가지고, 또 전하의 선을 좋아하는 정성을 믿고, 왕자(王者)도 반드시 한 세대를 지난 뒤에야 인(仁)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삼대의 지치(至治)를 날짜를 정하여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며, 오직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이 학교에 있고 가르치는 방법은 또한 「소학」에서 시작하여 「대학」까지 도달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그 사이에 「소학」을 주장

하여 펴니 사람들은 나아갈 방향을 알았고 전하께서도 그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한 이는 비록 털끝만큼도 사특한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따르는 이들이 혹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자신에게 절실한 학문은 힘쓰지 아니하고 한갓 궤격(詭激)한 습성만 숭상하여 소요스럽고 촉박한 폐단이 없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학」의 교육이 본디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이가 잘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찮은 허물을 확대시켜 사림(士林)을 일망 타진하고 아울러 그 책마저 비난하니 마치 송(宋)나라 때의 위학(僞學) 금지와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 장군이 패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찌 병서(兵書)를 거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으며,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서(醫書)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소학」에서 익히지 아니하면 흠어진 마음을 거두거나 그 덕성을 배양할 수 없다는 주희(朱熹)의 말이 어찌 우리를 속인 것이겠습니까. 돌아보건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맹자는, 삼대의 학문이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밝힌다고 하는 것은 강론하여 그 이치의 소이연(所以然)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을 말함이었습니까? 신들이 삼가 보니, 전하께서 경연에 나아가거나 국학(國學)에 행행하셨을 때 강론하는 것은 정령(政令)과 사무의 도구에 불과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도 기송(記誦)과 사장(詞章)의 고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아래에 있는 자들도 역시 '요순(堯舜)의 도리가 아니면 감히 제왕의 앞에 진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누가 제대로 천리(天理)를 인심에다 밝혀서 몸소 실행하여 마음으로 터득한 경지에서 귀에 쫓고 눈에 익게 하겠습니까? 신들은 전하의 학문이 아마도 꼭 지극히 올바르고 지극히 성실한 것에서 나오지 않은 것인 듯 싶습니다. 이미 그 배우는 도리와 가르치는 근본이 잘못되어 천하의 대방(大防)이 무너졌으므로 명색이 사류(士類)라는 이들도 민이(民彝)와 물측(物則)에 관계되는 바를 힘쓰지 아니하여서 군신·부자·형제·부부의 사이에 서로 그 도리를 다하여 패려함이 없게 하는 이가 적습니다. 심지어 봉우의 도리도 폐지되고 빠뜨림이 심합니다. 비록 어찌다 책선(責善)하거나 잘못을 주의라도 주면 병을 숨기듯 꺼리는 마음을 품고 마침내는 서로 소원해 지는 욕됨을 초래하게 됩니다. 완석(完席)에서 일의 시비를 거론하고 사람의 잘잘못을 논의하면 곧장 전과, 누설되어 아름다운 점은 무시되고 비방만 퍼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화복(禍福)에 동요되지 않기를 책망할 것이며, 이런 상태로야 일을 논의할 때 어떻게 조정에서 다투어 굽히지 않기를 책망하겠습니까? 봉우란

이러한 윤리를 유지하는 것인데 책선하고 인을 돕는 역할도 쓸데없어져 폐지되었으니, 군신·부자·형제·부부 네 가지 도리가 독립하여 오래도록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효제(孝悌)가 인심에서 발생하여 의젓하게 도의의 정당함이 되는 것은 기절(氣節)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인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기절을 배양하는 것이며 기절을 배양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인륜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절이란 효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국가에 중대하게 관계됩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날 사습이 어떠한지 여기십니까? 혼란한 세상 투박한 습속에 젖어서 부형이 가르치고 명령함이나 사우(師友)가 강론하고 밝힌 것이 모두 아부하거나, 좃대 없는 처신으로 당세에 잘 보이게 하는 것으로써 일신의 좋은 계책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할 책임이 있는 이는 '남의 단점을 적발하여 그걸 곧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관직의 책임이 있는 이는 '혼자만 잘나서 물의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돌아가며 서로 다짐하여 묵묵함이 습관으로 굳어지니 나라일은 주인이 없고 백사(百司)는 기강이 없습니다. 대신이 된 이는 국가를 위하여 건명(建明)할 일념(一念)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단지 전일의 참혹함을 목격하였기에 위협이 자신에게 닥칠까 두려워하여 꺾꺾하게 어리석은 듯 여유있게 포용하는 듯, 사기(事機)의 관건을 살피지 아니하며, 용사(用捨)하는 것에 무관심하며, 그럭저럭 날짜나 보내고 그저 그렇게 몸이나 보존하니, 그 명철한 지혜는 대단하다 하겠으나 인륜을 부지하여야 하는 재상의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원수(元首)와 고굉(股肱) 같다는 비유가 있으니, 한몸이 되어 사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위 아래의 사이는 정으로 믿고 뜻이 합하여, 말하면 들어주고 계획을 올리면 따라 준 연후에야 장구한 치안(治安)의 계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우(唐虞)·삼대(三代)의 임금이 직설(稷契)과 이윤(伊尹)·여상(呂尙)의 도움을 얻어 정신이 집중되고 서로 마음이 맞아 더욱 도를 빛낸 것입니다.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믿지 못한다면 위 아래의 사침과 덕업의 이룩됨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래 목민관(牧民官)을 보니 대부분 자주 교체되므로 전승하고 맞이하는 폐단이 진실로 백성들에게 관계되는데 대간은 말하기 어렵고 오직 대신이 아뢴 수 있으나 한번 아뢰어 윤택하지 아니하면 곧 입을 다물고 물러납니다. 이 한 가지 일로도 그 나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신 대하는 도리가 과연 서로 기뻐하여 천재 일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모를 일입니다. 대저 기절(氣節)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의 책임이고 기절을 부지시키는 것은 재상의 일입니다. 오늘날 위에서는 믿을 바가 없고 아래에서는 의지할 바가 없으니,

선비된 이들이 누가 즐거이 삶을 버리고 의리를 따르는 것으로 스스로 작정하여
 쉽사리 한 세상의 어려운 일을 해내겠습니까. 문왕(文王)이 없더라도 흥기할 수
 있는 호걸 같기를 어찌 사람마다에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의 잘잘못으로 오늘날의 경계를 삼지 않으십니까. 고조
 (高祖)는 효행을 무익하다고 여겼다가 마침내 선비의 기절이 쓸어버린 듯 사라
 지고 아침하는 것이 습성화하여 다투어 부명(符命 : 도참(圖讖))을 바치는 자들이
 있게 되었고, 한 나라의 국운이 바뀌었습니다. 광무제(光武帝)는 천자로서 양구
 (羊裘)를 벗삼으니 모두들 명망을 조심스레 지키어 절의를 서로 기대하게 되어
 목숨을 잃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이가 있게 되니, 후한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들은 삼가 전하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하
 께서 왕업을 계승하심으로부터 여러번 변고를 겪었는데 주운(朱雲)처럼 난간을
 부러뜨린 이는 누구이며 신비(辛毗)처럼 옷깃을 당긴 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
 가령 불측한 재앙이 암암리에 숨어 있다 한들 전하는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
 까? 간관이 혹 시정(時政)의 절실한 폐단을 통분하게 여기어 장주(章奏)로 간곡
 하게 아뢰는 것이 있다 해도 한 차례 열람하고는 끝내 아무런 실시함도 없고 말
 이 피부에 닿게 절실함이 있어도 비답도 내려주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어찌 제
 왕이 하문하는 걸 좋아하고 좋은 말씀에 절한다는 아름다운 뜻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말씀드려야 할 것을 신들이 진실로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백성 이룬의
 괴멸됨이 이와 같다면 천리(天理)의 미미함을 일으켜 도화(道化)의 융성함을 회
 복시킬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송(宋) 나라 신하 채양(蔡襄)
 이 ‘삼황(三皇)·오제(五帝)의 시대에는 충효(忠孝)가 대부분 천성에서 연유되었
 는데 삼황·오제 후에는 충효가 대부분 권장하는 것에서 연유되었다.’ 하였고,
 진관(陳瓘)은 ‘저 신하로서 임금의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항
 상 옳지 못한 것을 본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그 옳지 못
 한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 매우 은미하였는데도 마침내 속죄할 수 없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당초에 어찌 시역(弒逆)할 마음이 있었겠습
 니까. 만일 이러한 때에 그 병이(秉彝)의 참됨을 격동시키고 선하지 못한 동기
 를 징계하였다면 비록 지극한 효성, 지극한 충성은 못 되더라도 역시 효경(梟
 獍)의 악함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권장하는 것이 참으로 위로하
 고 찾아오게 하며 바로잡아 곤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또한 충분히
 격동시키고 징계한다면 권장하는 도리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왕정(王政)의 중요한 것만 논의한 것이고 만일 삼강(三綱)의 근본과 만화
 (萬化)의 근원을 추구해 본다면 어찌 임금의 한 몸 밖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

륜의 지극함으로 황극(皇極)의 덕을 세울 수 있어 이미 그 준칙이 섰다면 가정에서부터 조정으로, 조정에서부터 사방에까지 미쳐 온 나라의 국민을 병이의 천성으로 배양하고 개도합니다. 그 배양된 가운데로 나아가서 양지(良知)의 단서를 열어주며 그 양지로 안 단서를 인하여 자신에게 반성하여 그 앎을 확실하게 한다면 사람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바가 비록 기질과 물욕의 가리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초연히 그 본체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병이라는 것 또한 사람마다 동일하게 부여받은 바이고 나에게만 부여된 사사로움이 아니니, 저 일반인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부여받고서도 각자가 제대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어찌 측은해 하며 구원할 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탕(成湯)이, 백성에게 잘못 있음은 나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였으니, 제왕의 덕으로 자신에게 되돌리는 것만큼 요긴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반드시 내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미루어 동일하게 부여받은 선(善)을 격동시킨다면 저들도 이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 흥기할 자들의 천리의 참됨이 자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효성을 부자간에 행할 수 있으며 도리를 부부간에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신·장유·붕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당연한 이치를 얻을 것이므로 선인이 자연히 많아지고 기질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질이 세워지면 인륜이 자연히 펴질 것입니다. 이 어찌 천리의 큰 다행이며 국가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전하게서는 유념하소서.”

답하였다.

“이 상소를 보니 매우 절실하고 타당하다. 아버이를 시해하고 지아비를 살해함은 옛날에는 드문 일인데 근래 잇따라 나오니 이것은 내가 제대로 교화하지 못한 잘못이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38년 동안 다스림의 감화는 보이지 아니하고 변고만 예사롭지 아니하여 내가 매번 한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소학」은 사람을 가르치는 근본인데 과연 기묘년 후에 「소학」까지 폐지하였으니 매우 부당하다. 기절(氣節)을 부식(扶植)하는 것은 임금이 당연히 생각할 바이다. 근래 인심과 사습(士習)이 예갈지 않음을 위 아래에 누구인들 걱정하고 탄식하지 않겠는가. 이 상소의 말이 다스림의 체통에 크게 관계되니 마땅히 유념하겠다.”

○丁未。○弘文館副提學柳辰叢等上疏曰。聖人。人倫之至。夫人之大倫有五。而唯聖人。能盡之。作君師於萬民之上。任天下綱常之重。正標準以率下。故語父子則極其孝。而天下之爲父子者。於此定焉。語夫婦則極其別。而天下之爲夫婦者。於此定焉。此無他。特因其所固有不容已之良知而作新之耳。由是而明教化。則風俗美而人倫益厚。由是而正士習。則氣節立而人倫益惇。是以。堯舜之道。蕩蕩乎無能名焉。而求其本。則不越乎孝悌而已。雖有強暴之人。見父則憐。至於襁褓之兒。見父則哭。此人之真情而不可解者也。但爲物欲所拘。利害所蔽。而傷

其恩害其義者.或有之矣.安有至於滅天倫絕人理.與禽獸奚擇.而終不可救乎.嗚呼.今時之變.其忍言耶.子弑父.古或聞其語而未見其人.婦弑夫.古或聞其語而未見其人也.豈意千古彝倫之大變.一時並出於 殿下之民人乎.人心天理.至是盡絕無餘.雖有粟.吾得以食諸.凡有舍生.孰不痛憤.臣等伏見 殿下.臨御垂四十年.其所以紀綱人道.建立人極者固無所不用.其極則教之所入.化之所行.宜見孝子不匱.女也不爽.而反致惡逆之輩.相踵而出.民彝安在.物則安在.臣等竊惑焉.豈皇天降衷之理.有所不均而然歟.豈 殿下厚倫之化.有所未至而然歟.易曰觀我生.觀民也.此言觀民風之美惡而可以知吾身之所出也.殿下於此.豈不惕然猛省而爲人心世道.發一慨歎也.舉大辟明王法.至於洿其宮瀦其宅.足以快神人之共憤.足以雪王化之大恥矣.然使大禹視之.不知當何如爲心也.抑不知唐虞之朝有此變否.人君者.夙化之主也.主而不正.如正家何.家而不正.如正國何.是故.大學傳曰.一家仁.一國興仁.夫仁者.衆善之長也.凡於性本之所當然.職分之所當爲.皆莫非此仁之所發.則有若所謂孝悌也者.其爲仁之本也者.不其信歟.孟子曰.君仁莫不仁者此也.然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有之乎.上老老而民興孝者.乃曾子所謂齊家治國之大旨.而其綱領.實在於明德新民止至善之三者.欲使 殿下.興一國之孝.則舍是三者.復何由焉.是知大學者.收小學之成功.而就平天下之律令格例也.然大學固不可一蹴而徑到則爲學工夫之次第.必有不可亂不可闕也.而今之獻議者.獨舉二倫行實.可以救人心之惡.可以起人心之善.二倫足以補三綱之不備.而可使愚夫與知焉.可使愚婦與行焉.則此書固不爲無助.而此言亦不爲無益也.然人生八歲.而明洒掃應對之節.是乃三代之成法.則徒欲先從事於二倫.已失古人爲學之有序.而恐不免躐等凌節之病也.今之諱言小學者.臣等固知之矣.己卯間.年小新進之士.以迂遠狂狷之質.徒有好古尚志之心.又信 殿下好善之誠.不揆王者必世後仁之意.以謂三代之治.可期日而待矣.唯知化民之本.在於學校.而教之之方.又自小學.而至于大學.於是乎倡小學於其間.而人知趨向之方. 殿下亦爲之崇信焉.然其倡之者.雖無一毫邪念.而從之者.或非其人.不務切己之學.徒尚詭激之習.不能無紛擾促迫之弊.非小學之教本然也.用之者誤也.萋斐一織打盡士林.弁與其書而詆毀之.有如宋朝僞學之禁.嗚呼.特之覆軍者雖有之.而其可疑兵書之難行乎.醫之殺人者亦有之.而其可疑醫書之難用乎.不習之於小學.則無以收其放心.養其德性.朱熹之言.豈欺我哉.顧其用之如何耳.孟子曰.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也.明云者.講明之而使之識其理之所以然也.學云學云.口耳言乎哉.臣等伏見 殿下之或御經筵.或幸國學.其所講論.不過乎政令事爲之具.其所作人.亦不過記誦詞章之陋.而在下者亦不知非堯舜之道.不敢陳於王前.則孰能明天理於人心.而使之耳濡目染於躬行心得之餘乎.臣等恐 殿下之學問.亦未必出於至正至誠也.既失其學之之道教之之本.天下之大防已毀.故名爲士類者.亦不務民彝物則之所關.而其於君臣父子兄弟夫婦之間.交盡其道.而無悖者鮮矣.至於朋友之道廢闕亦甚焉.雖或責一善箴一過.反懷諱疾之忌.竟致斯踈之辱.至於完席之上.論事是非.議人得失.旋即播洩掠美移謗.以之而處臨難.如之何責其爲禍福之不

動.以之而處論事.如之何責其廷爭而不屈乎.朋友者.所以維持是倫.而責善輔仁之職.亦以無用見廢.彼四者之不能獨立久存.宜哉.孝弟之發於人心而毅然爲道義之正者.氣節也.是故欲扶人倫者.必養氣節.欲養氣節者.必正人倫.氣節者.無非孝弟中來.而有關於人國家也甚大.殿下以爲.今之士習.爲如何也.靡靡風塵.悠悠偷俗.父兄之所教詔.師友之所講明.皆以依阿軟熟.取媚當世爲一身之得計.而有言責者則曰.不可許人以爲直也.有官守者則曰.不可獨賢而招議也.轉轉相尚.泯默成習.國事無主.百司無綱.爲大臣者.非不知爲國家建明之一念.而第以目覩.前日之慘酷.恐被危疑之逼已.昧昧焉如愚.休休焉若容.不察於事機之關.不屑於用捨之際.優游度日.因循保身.其於明哲之智.足矣.而其於扶持之相.何哉.雖然.君之於臣.有元首肱股之喻.則其爲一體而無間.可知矣.是以上下之間.情孚意契而言聽計從然後.能成長治久安之策.此唐虞三代之君.獲稷契伊呂之佐.聚精會神.相得益章者也.苟有一毫之未孚.則上下交而德業成.豈不難哉.近見臨民之官.多被數遶.送迎之弊.實關於民.臺諫難言.唯大臣可啓.而一啓未允.旋默而退.由此一事.可知其餘.不知殿下待大臣之道.果能交欣而千載一會者乎.大抵主氣節者.人君之責也.扶氣節者.宰相之事也.今也上無所恃.下無所依則爲士者.孰肯以舍生取義自許.而輕犯一世之所難乎.無文王而猶興者.其可望於人人乎.殿下何不以兩漢之得失.爲今之監戒也.高祖以孝行爲無益.而終致士氣掃地.諛佞成習.爭獻符命者有之.而炎祚以移.光武以天子友羊裘.而能成兢持名檢節義相望.折首不悔者有之.而漢鼎不動.以是觀之.臣等竊爲殿下懼焉.殿下自嗣大歷服.屢經變故.有如朱雲之折檻者誰歟.有如辛毗之牽裾者誰歟.然設有不測.之禍.伏於冥冥之中.殿下何從而知之耶.諫官或有憤時政之切弊.拳拳於章奏之間.而一經乙覽.竟無施設.言有逼切.亦不下答.此豈帝王好問拜昌言之美意也.今之可言者.臣等固不可盡舉.而民彝之泯滅如是.則不可不思所以復天理之微而回道化之盛也.宋臣蔡襄曰.三五之際.忠孝多由於性.三五之後.忠孝多由於勸.陳瓘曰.彼臣弑其君.子弑其父者.常始於見其有不是處耳.彼見其不是之時.其幾甚微而竟蹈莫贖之大惡.然則初豈有弑逆之心哉.若於此時.有以激其秉彝之真.而有以懲其不善之幾.則雖不爲至孝至忠.而亦不至於梟獍之惡也.是知勸固不如勞來匡直之爲甚易.亦足以激之懲之.則勸之道.亦不可廢也.此特論其王政之所不可已者.而若就其三綱之本萬化之原.則豈外於人主之一身乎.誠能以人倫之極.建皇極之德.已立其施人之準則.自家而朝廷.自朝廷而四方.使一國人民.養之以秉彝之天.開之以秉彝之性.使卽其所養之中.以啓其良知之端.因其已知之端.而反之於身.以致其知之之實.則人之所得於天者.雖有氣質物欲之蔽.而豈不超然復得其本體之全哉.其所謂秉彝者.又人之所同得.而非我之所得私也.視彼衆人之同得乎此而不能自全者.豈不爲之惻然思有以救之哉.成湯曰.百姓有過.在予一人.帝王之德.莫要於反躬.苟能歸罪於己.而必推吾之所自得者.以激其同然之善.則彼同有是心而興起者.天理之真.自然呈露.不唯孝可行於父子.道可行於夫婦.而至於君臣長幼朋友.莫不皆得其當然之理.則善人自多而氣節立.氣節立而人倫自叙.

豈非天理之大幸而國家之大福也.伏願 殿下留神焉.答曰.觀此疏.甚切當.弑親殺夫.古所罕有.而疊出於近間.是予不能教化之過也.予以否德.三十八載之間.未見治化.而變故非常.予每恨焉.且小學.教人之本原也.果如己卯之後.弃廢小學.則甚爲不當.扶植氣節.人君所當念.近來人心士習.不如古.上下孰不憂歎.此疏之言.大關於治體.予當留念焉.

《中宗實錄 卷第100, 58面》

중종 38년 8월 10일(임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叟) 등이 차자를 올렸다.

“임금은 못 백성 위에 임하고 구중(九重)의 깊은 곳에 있으므로 말하지 않으면 여쭙 수 없고 여쭙지 않으면 명할 수 없으니, 추기(樞機)의 지위를 두어 임금의 명을 펴는 일을 맡기는 까닭은 한 나라의 기무(機務)를 관찰하여 임금의 후설(喉舌)이 되게 하는 것인데, 후설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각(一刻)이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진히 말한 것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접매정원(政院)이 지은 죄는 매우 작는데 태연히 먼저 물러가서 직숙(直宿)하는 관원이 홀로 며칠을 머무르게까지 하였고 천어(天語)가 정녕한데도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합니다. 무릇 신하가 된 자는 말에 수레 메우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예나 이제나 바뀌지 않는 큰 의리인데, 더구나 임금을 곁에서 모시고 도우며 밀명(密命)을 펴는 일을 맡은 자이겠습니까? 신들이 근래 사습(士習)이 퇴폐하여 기강이 떨치지 않는 것을 늘 염려하였으나, 어찌 근밀(近密)한 곳에서 먼저 이토록 심하게 무너뜨릴 줄 알았겠습니까. 임금의 말이 한번 나오고 한번 들어갈 때마다 국가의 치란(治亂)과 안위(安危)가 관계되거니와, 이때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하면 전하의 명이 어디로 해서 퍼지고 바깥 사람의 뜻이 어디로 해서 아뢰어지겠습니까. 말이 여기에 이르면 못견디게 한심하여 듣는 자가 누구나 다 해괴하게 여기는데, 대관(臺官)이 말하지 않고 간관(諫官)이 말하지 않으니, 신들은 전하에게 후설이 이미 없고 이목(耳目)도 없는 것을 슬퍼합니다. 『서경(書經)』에 ‘팔다리가 있어야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설이 없는 것이겠으며, 더구나 이목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대간(臺諫)을 반드시 가린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인데, 요즈음에는 가리지 않는다는 의논이 물의에 자못 나타나니, 더욱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기강을 가다듬고 인재를 가리소서. 그러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중략〕

○김광철(金光轍)을 한성부 우윤에, 이해(李滢)를 승정원 좌승지에, 이찬(李滌)을 좌부승지에, 류진동(柳辰叟)을 사간원 대사간에, 구수담(具壽聃)을 홍문관 부제학에, 송기수(宋麒壽)를 사헌부 집의에, 이황(李滉)을 사간원 사간에, 이순형(李純

흥)과 진복창(陳復昌)을 장령에, 권물(權勿)과 정희등(鄭希登)을 지평에, 백인걸(白仁傑)을 헌납에, 심봉원(沈逢源)과 이담(李湛)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壬午.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筭曰.人主莅兆民之衆.居九重之深.不言無以稟.不稟無以令.所以設樞機之地.任綸綍之宣.管一國機務.爲一人喉舌.謂之喉舌者.極言其必有而不可一刻無也.臣等伏聞.頃者政院所坐之罪.甚微而忽然先退.至使直宿之員.獨留數日.天語丁寧.尚無驚懼.凡爲臣僚.行不埃駕.是古今不易之大義.而況陪輔帷幄.掌宣密命者乎.臣等常念.近來士習頹靡.紀綱不振.豈料近密地.其先毀至此甚乎.王言之一出一納.國家之治亂安危開焉.設使此時事有緩急.則 殿下之命.何從而布.外人之情何從而達乎.言之至此.不勝寒心.聞之者莫不駭恠.而臺官不言.諫官不言.臣等竊痛 殿下.旣無喉舌.又無耳目也.書.曰股肱惟人.況無喉舌乎.況無耳目乎.古之必擇臺諫.誠以此也.近有不擇之議.頗著於物論.尤可懼也.伏願 殿下.整紀綱擇人材.不勝幸甚.[中略]

○以金光輶爲漢城府右尹.李滢爲承政院左承旨.李滌爲左副承旨.柳辰全爲司諫院大司諫.具壽聃爲弘文館副提學.宋麒壽爲司憲府執義.李滉爲司諫院司諫.李純亨陳復昌爲掌令.權勿鄭希登爲持平.白仁傑爲獻納.沈逢源李湛爲正言. 《中宗實錄 卷第101, 17面》

중종 38년 8월 14일(병술)

지평 정희등(鄭希登)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홍문관에 있으면서 차자(筭子)를 올릴 때 지금의 대사간(大司諫) 류진동(柳辰全), 집의 나세찬(羅世瓘) 등과 함께 의논해서 하였습니다. 차자에 ‘요즈음 대관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논이 물의에 자못 나타난다.’고 한 것은 장령 진복창(陳復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류진동 등이 언관(言官)이 되어서는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세찬은 도리어 서로 용납하여 일을 같이하니, 체모를 몹시 잃었습니다.

대저 대관은 이목(耳目)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조금이라도 품은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물의를 받고 있더라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세찬·진복창과 상회례(相會禮)를 하기도 어려운 형세이므로 감히 아뢰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였다.

“근일 대간이 어지러이 서로 공박하는 것은 지극히 황당하다. 대신과 의논한 뒤에 답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사신은 논한다.

진복창의 사람됨은 경망하고 사독(邪毒)하므로 정희등이 아뢴 것이 혹 지나치는 하였지만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지 않았다.

○정언 이담(李湛)이 아뢰기를,

“전일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대간을 가리지 않는다고 논한 것은 진복창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신은 그때에 그 의논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본직에 제수되어 어제 서경(署經)을 마치고 오늘 이미 상회례를 하였는데도 또한 잠자코 있으면서 그 잘못을 말하지 않았으니, 류진동·나세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미 물의가 일어났으므로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였다.

“이 일은 장차 대신과 의논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대신과 면대하여 의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대간이 안정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매우 놀라게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자주 체직시켰었다. 이제 또 정희등이 진복창은 대관에 맞지 않는다고 와서 아뢰었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릴 때에는 의논만 하고 차자에 쓰지 않았으므로, 류진동·나세찬은 진복창에게 별로 드러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희등은 서로 용납할 수 없다 하여 대간을 공격하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윤은보가 아뢰기를,

“요즈음 긴치 않은 일로 양사(兩司)가 한꺼번에 다 체직되어 조정이 소요하니, 매우 미안합니다. 류진동·나세찬이 홍문관에 있으면서 차자를 올릴 때에 대간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 말이 진복창을 가리켜 말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필시, 이러한 사람도 대관이 되었다고 한 것일 뿐입니다. 나세찬은 차자를 올렸을 때에 참여하였지만 각별히 드러나게 배척한 일이 없으므로, 동료로 허용하여 일을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대관이 각별히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에 있을 때에 대관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 말은 진복창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대사간은 잠자코 말하지 않고 집의는 도리어 서로 용납하여 일을 같이하였으니, 체모를 잃은 것이 심하다.’ 하였으니, 이제 대간은 체직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폐단을 전에 대신과 의논하여 뒤폐단이 없게 하려 하였으나 대간이 조금만 물의를 받으면 으레 행공(行公)하지 않는다. 조종 때에는 논박받더라도 출사(出仕)하였는데, 논박받은 뒤에 으레 출사하지 않는다면 대간이 어느 때에 안정되겠는가? 대관을 체직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김안로(金安老)가 용사할 때에 대간을 자주 체직하되 같은 무리가 아니면 반드시 공격하여 배척하였는데 그 폐단이 마침내 만연되어 손쓰기가 어려웠다. 대저 소인은

없을 때가 없고 소인은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대간이 이처럼 자주 체직되어 안정하지 못하면 소인이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으란 법 없다. 정희등은 출사한 뒤에 와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사피하고 있으면서 또 도리어 남을 공격하니, 이 또한 일의 체모에 있어서 어떠한가?”

하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대간을 둔 것은 후세에서 시작되었고, 예전에는 언책(言責)을 맡은 자가 없더라도 다들 말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대간을 지나치게 가리면 언로(言路)가 넓지 않을 것이고, 언로가 넓지 않으면 대간이 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래의 일로 말하면 문관(文官)이 아니라도 대간이 될 수 있었으므로, 정순(鄭洵)·김극회(金克恢) 등이 모두 대간이 되었습니다. 신이 지평(持平)이었을 때에 류응룡(柳應龍)도 지평이었는데 그 직에 오래 있었습니다. 인물이 감당할 만하면 남행(南行)이라도 다 쓸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문관이 그 직임을 맡을 것은 없습니다. 대저 대간의 길이 좁으면, 저 사람이 체직되면 이 사람이 대신하고 이 사람이 체직되면 저 사람이 대신하니, 일의 체모가 불쌍사납습니다. 그러나 류진동·나세찬은 차자를 올릴 때에 그 의논에 같이 참여하였는데, 대간이 되어서는 잠자코 있으면서 말하지 않거나 서로 용납하여 일을 같이하였으니, 매우 그롭니다. 이들은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고, 좌의정 윤인경이 아뢰기를,

“조종 때에는 대간이 논박받더라도 행공하였으나, 물의가 일어나게 되면 위에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희등이 류진동·나세찬과 함께 차자를 올릴 때에 진복창이 대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의논하였는데, 이제 류진동은 잠자코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고 나세찬은 도리어 진복창과 더불어 일을 같이하였으니, 일의 체모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이미 물의가 일어났으니, 이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희등은 차일장(遮日帳)의 일 때문에 사피(辭避)하였는데 본부(本府)가 이미 출사(出仕)시키기를 청하였다. 다만 류진동과 나세찬이 체직되고 나면 정희등만 남아 있을 수 없다. 또 정언(正言) 이담(李澗)도 그 일을 같이 의논하였는데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하여 사직하니,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윤인경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이담은 서경(署經)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비로소 출사하였다 하니, 류진동 등의 일을 논계(論啓)하려 하였더라도 미처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류관(柳灌)은 아뢰기를,

“정희등이 사퇴하고 있으면서 남을 반박한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한 상의 분부가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정희등은 사퇴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 또 출사하라고 명하셨으니,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형세이므로 그렇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릴 때에 차자에 누구라고 지명하지는 않았으나, 바깥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진복창 때문에 발론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류진동·나세찬 등은 전에 홍문관에 있을 때에 함께 의논하였는데 대간이 되어서는 말없이 잠자코 있다가 체모를 잃었다고 논박까지 받았으니, 체직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다만 정희등은 이미 직에 나아갔는데, 또 아울러 체직한다면 물론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더욱 소요하여 뒤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담은 오늘 비로소 출사하였으니, 비록 사퇴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우찬성 이기(李芑)가 아뢰기를,

“대간이 서로 용납하지 않는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한데, 오늘 성상의 분부가 지금의 병폐를 바로 맞으셨습니다. 위에서 그 정상을 모두 다 아시니,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 군말을 더하겠습니까. 지금 류진동 등의 일은 대신이 이와 같이 아뢰었으니, 직에 나아가게 하더라도 저들 스스로 마다할 것입니다.”

전에 조종 때에는 무릇 처음으로 벼슬하는 자는 반드시 순자격(循資格)에 의하여 삼관(三館)에서 거관(去官)하면 으레 정언(正言)이 되고, 정언이 된 뒤에 좌랑(佐郎)이 되고, 좌랑으로 달수가 찬 뒤에 지평(持平)이 되고 정랑(正郎)이 되었는데, 정랑이 되고 나면 다시 지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래 대간의 권세가 중하여 크고 작은 나랏일을 다 스스로 전담해서 하니, 이 폐단은 조종 때의 일과 다른 듯합니다. 인물을 지나치게 가리면 대간의 길이 너무 좁아질 것이니, 남행인 사람이라도 써야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일렀다.

“요즈음에는 남행인 사람은 육조(六曹)의 낭관(郎官)도 될 수 없는데, 더구나 대간이겠는가. 이것은 지금 의논할 수 없다.”

○丙戌.持平鄭希登啓曰.臣前在弘文館上筭時.與大司諫柳辰全執義羅世纘等.共議爲之.筭中近有不擇臺官之議.頗著於物論云者.指掌令陳復昌言也.而柳辰全等及爲言官.非徒容默不言.羅世纘則反與之相容同事.其爲失體甚矣.大抵臺官.任耳目之寄.小有所懷.雖身在物論之中.不得不達.而臣與世纘復昌爲相會禮.亦爲勢難.故敢啓請達臣職.答曰.近日臺諫.紛亂相攻.至爲荒唐.與大臣議後答之.勿辭.史臣曰.復昌之爲人.輕妄邪毒.故希登之所啓.雖或過中.人不以爲非.○正言李湛啓曰.前日弘文館上筭論不擇臺諫者.指陳復昌.而臣其時同叅其議.今授本職昨日畢署經.今日已爲相會禮.而亦容默不言其失.與柳辰全羅世纘無異.已發於物論.不可在職.請達臣職.答曰.此事將與大臣議之.勿辭.○上.御宣政殿.與

大臣面議. 上曰. 近來臺諫不安. 相與攻擊. 於人見聞. 至爲駭愕. 勢不得已數違矣. 今又鄭希登. 以陳復昌不合臺官事來啓. 弘文館上筭時. 只爲議論而不書於筭. 柳辰全羅世纘. 必以陳復昌爲別無顯過所不啓矣. 鄭希登. 以其不能相容. 攻擊臺諫. 於事體何如. 領議政尹殷輔曰. 近以不關之事. 兩司一時皆違. 朝廷騷擾. 至爲未安. 柳辰全羅世纘在弘文館上筭時. 不擇臺諫之言. 雖指陳復昌而言. 此非指的也. 必曰如此人亦爲臺官耳. 羅世纘雖參於上筭之時. 無各別顯斥之事. 故許爲同僚而共事矣. 但臺官各別來啓曰. 在弘文館時. 不擇臺官之言. 指陳復昌言也. 而大司諫容默不言. 執義則反與同事相容. 失體甚矣. 則今此臺諫. 勢不得不違. 上曰. 臺諫相攻之弊. 前與大臣議之. 欲令無後弊. 而臺諫少被物論. 則例不行公. 在 祖宗朝. 雖被論. 亦還出仕. 若被論之後. 例爲不出. 則臺諫何時安靜乎. 不違臺官不亦可乎. 金安老時. 臺諫數違. 非其同黨則必擊搏而擯斥之. 其弊終至於蔓難圖也. 大抵小人. 無時無之. 而小人喜生事. 臺諫如是數違. 而不得安靜. 則小人不無生心之理矣. 鄭希登出仕後. 所當來啓而方爲辭避. 又反攻他人. 此亦於事體何如. 殷輔曰. 臺諫之設. 起於後世. 古者雖無言責者. 皆得盡言. 若過擇臺諫則言路不廣. 言路不廣則爲臺諫者幾何. 以近時事言之. 雖非文官. 亦有爲臺諫. 故鄭洵金克恢等皆爲之. 臣爲持平時. 柳應龍亦爲持平. 久任其職. 若人物可當. 則雖南行. 皆可用之. 不必文官爲其任也. 大抵臺諫之路窄則. 彼違則此代. 此違則彼代. 事體深爲未安. 然柳辰全羅世纘則上筭時. 同參其議而及爲臺諫. 或容默不言. 或相容同事. 事甚非矣. 此不可不違. 左議政尹仁鏡曰. 祖宗朝臺諫. 雖被論. 猶行公. 而至於物論之發. 則自 上亦不能禁抑. 今者鄭希登. 與柳辰全羅世纘上筭時. 同議陳復昌不合臺官之事. 而柳辰全則容默不言. 羅世纘則反與之同事. 甚失事體. 已發於物論. 此等人不得已違之. 上曰. 鄭希登以帳事辭避. 而本府已請其出仕矣. 但柳辰全與羅世纘既違. 則鄭希登勢不能獨在矣. 且正言李湛. 亦以同議其事. 容默不言爲辭. 此亦何以爲之. 仁鏡曰. 臣聞之. 李湛則不爲署經. 今始出仕. 雖欲論啓柳辰全等事. 恐未能及爲也. 左贊成柳灌曰. 鄭希登方爲辭避. 而反駁他人事. 似不當之言. 上教至當. 但希登辭避. 而未蒙允俞. 又命出仕. 勢難相容. 故如此啓之. 弘文館上筭時. 筭內雖不指名爲某人. 外人皆知其爲陳復昌而發也. 柳辰全羅世纘等. 前在弘文館時. 相與議論. 逮至臺諫. 舍默不言. 至以失體被論. 其勢不可不違. 但鄭希登今已就職. 又若並違則物論以爲何如. 益爲騷擾. 不無後弊. 李湛則今日始出仕. 雖不辭避可也. 右贊成李芑曰. 臺諫不相容之弊. 近來尤甚. 今日 聖教. 正中時病. 自 上盡知其狀. 臣何敢更贅於其間哉. 今此柳辰全等事. 大臣如此啓也. 雖令就職. 彼等必不自就. 曩在 祖宗朝. 凡爲筮仕者. 必循資格. 三館去官. 則例爲正言. 爲正言後佐郎. 佐郎滿朔數後. 爲持平而爲正郎. 旣爲正郎則不復爲持平. 近年以來. 臺諫權重. 小大國事. 皆自專爲之. 此弊與 祖宗朝事似異. 過擇人物. 臺諫之路甚窄. 雖南行之人. 猶可用之. 上曰. 近日南行之人. 雖六曹郎官. 尚不得爲之. 況爲臺諫乎. 此則今不可議爲也.

중종 38년 11월 9일(기유)

○김광준(金光準)을 강원도 관찰사에, 특명이다. 정유선(鄭惟善)을 승정원 우승지에, 류진동(柳辰全)을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하였다.

○己酉.○以金光準爲江原道觀察使.特命也鄭惟善爲承政院右承旨.柳辰全爲司諫院大司諫. 《中宗實錄 卷第101, 43面》

중종 38년 12월 28일(무술)

간원이 아뢰기를,

부호군(副護軍) 류진동(柳辰全), 사성(司成) 이몽필(李夢弼), 직강(直講) 경혼(慶渾), 좌랑(佐郎) 이탁(李鐸), 전적(典籍) 우상(禹鎬)은 전에 간관이었을 때, 사람을 쓰는 것이 타당성을 잃고 정사(政事)가 중도를 잃은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었는데도 끝내 한마디도 말하지 않다가 체직되었으므로 매우 그르니, 모두 파직하여 말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이조가 사람을 쓸 즈음에 사를 따라 정을 쓰는 것은 알 수 없으나, 어제의 정사에 대간·수령만을 체직하라는 말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승지(承旨)에게 물었더니 ‘어제 이조의 당상이 사직한 끝에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대간이 체직되었고 수령에 빈 자리가 많으니, 사직하지 말고 빨리 정사하라.』고 전교하셨고 다른 말씀은 별로 없었다.’ 한다. 이 말이 잘못 전해져서 그러는 듯하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였다면 이조가 어찌 밤이 늦도록 정사하였겠는가. 이것은 이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잘못된 일을 추문(推問)하는 것이 옳거니와, 이조의 당상을 한꺼번에 죄다 체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戊戌.諫院啓.副護軍柳辰全.司成李夢弼.直講慶渾.佐郎李鐸典籍禹鎬前爲諫官時.用人失當.政事不中.乃國家重事.而終無一言而違.至爲非矣.請並.罷職以爲不言者之戒.答曰.吏曹於用人之際.循私用情則不可知也.昨日之政.只違臺諫.守令之言予所無也.故問諸承旨則云.昨日吏曹堂上辭職之端曰.今已日暮.臺諫見違.而守令多闕.其勿辭職.速爲政事.傳教而別無他語.疑此言誤傳而然也.于若有如此之言.則吏曹豈至於夜深爲政事乎.此非吏曹所失也.以其所失之事推之可也.一時盡違吏曹堂上爲何如.《中宗實錄 卷第101, 64面》

중종 38년 12월 29일(기해)

○간원이 아뢰기를,

“접매 한 고을의 축성(築城)하는 일 때문에 특별히 중신(重臣)을 보내는 것을 조정이 다들 온편하지 못하다고 여기는데도, 이조의 당상들은 안주목사(安州牧使)

를 의망(擬望)할 때에 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별히 가려서 차출해야 한다고 위의 뜻을 맞추어 계청(啓請)하였고,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주의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도, 두 도의 장수 경상수사(慶尙水使) 송맹경(宋孟璟)과 충청수사(忠淸水使) 남치근(南致勤)이다. 를 내지(內地) 수령(守令)의 망(望)에 주의하였으므로 경중(輕重)이 타당성을 잃어서 물정이 놀라와 합니다. 사(私)를 따라 정(情)을 쓸 뿐더러 마음대로 하는 길을 열었으니, 매우 그롭니다. 공론이 드러나게 일어났으므로 어제의 정사(政事)에는 긴요하게 관계되는 빈 자리만을 차출하고 물러가 물의를 기다려야 옳은데도, 꺼리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빈 자리를 짐짓 차출하느라 밤이 깊게 되었으니, 물정이 더욱 온편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잘못된 것이 이러하므로 결코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이조의 당상 등을 빨리 체직시키소서. 전 대간(臺諫) 류진동(柳辰全) 등이 잠자코 말하지 않은 잘못을 이미 죄다 아뢰었으니, 빨리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안주에 축성하는 일을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대신들이 아뢰기를 ‘안주에 축성할 일이 있으니 평안도 관찰사는 중신을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따라 내가 생각하니, 축성 뿐만이 아니라 또 조치할 일이 많이 있었다. 이 때문에 특별히 중신을 보낸 것이니, 한갓 축성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조(吏曹)가 축성하는 것 때문에 안주목사(安州牧使)를 가려 차출하려 한 것은 조정의 뜻 때문이고 내 사사로운 뜻 때문이 아닌데, 이조가 어찌 뜻에 영합할 리 있겠는가. 다만 양도의 장수를 의망(擬望)한 일과 짐짓 잡된 빈 자리를 채우며, 물러가 물의를 기다리지 않은 따위의 일은 이조가 잘못 생각하여 그런 것이다. 전 대간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여 빈 자리가 나는 대로 차출하므로 형세가 밤이 깊게 되었을 것이다. 사를 따라 정을 쓴 일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추문하라고 명하였으니 교체할 것 없다. 전 대간도 이미 체직하였으니, 파직할 것 없다.”

○己亥.○諫院啓曰.頃者以一邑築城之事.特遣重臣.朝廷皆以爲未便.而吏曹堂上等安州牧使擬望時.以築城歸重.各別擇差事.逢迎啓請.在京可擬之人.不爲不多.乃以兩道之將.慶尙水使宋孟璟忠淸水使南致勤凝於內地守令之望.輕重失宜.物情駭恠.非但循私用情.且啓專擅自恣之路.至爲非矣.公論顯發.而昨日之政.只差緊關之闕.退待物論可也.尙且不忌.不急窠闕.故爲填差.至於夜深.物情尤爲未便.所失如此.決不可在職.吏曹堂上等請速遶.前臺諫柳辰全等.噤默不言之失.已盡啓之請速罷.答曰.安州築城事.予初未知之.大臣等啓曰.安州有築城事.平安道觀察使可遣重臣云.故因此而予思之.非徒築城.又多有措置之事焉.以此而特遣重臣.非爲一築城而然也.吏曹爲築城.欲擇差安州牧使者.此朝廷之意也.非予私意也.吏曹豈有逢迎之理哉.但以兩道之將擬望及故填雜闕而不退待物論等事.此吏曹錯

料而然也.前臺諫未及置處.隨闕填差.故勢必至於夜深矣.其循私用情之事未可知也.茲命推之.不須遶矣.前臺諫亦已遶之.不須罷也. 《中宗實錄 卷第101, 65面》

중종 39년 1월 24일(계해)

○이찬(李滌)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특지(特旨)에, 정유선(鄭惟善)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권응정(權應挺)을 우승지(右承旨)에, 윤원형(尹元衡)을 좌부승지(左副承旨)에, 류진동(柳辰全)을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송기수(宋麒壽)를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허백기(許伯琦)를 사간원 사간에, 민전(閔荃)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김개(金鎧)와 윤옥(尹玉)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癸亥.○以李滌爲開城府留守.特旨鄭惟善爲承政院左承旨.權應挺爲右承旨.尹元衡爲左副承旨.柳辰全爲同副承旨.宋麒壽爲弘文館直提學.許伯琦爲司諫院司諫.閔荃爲弘文館校理.金鎧尹玉爲正言. 《中宗實錄 卷第101, 73面》

중종 39년 1월 26일(을축)

○간원이 아뢰기를,
“승지(承旨) 류진동(柳辰全)은 논박받아서 송서(送西)¹⁶³된 지 겨우 20여 일이 넘어서 곧 현직(顯職)에 서용(敍用)되었으므로 온편하지 못하니, 교체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류진동은 한때 논박받았더라도 예(例)가 다른 일이고 매우 중대한 것은 아니니, 교체할 것 없다.”

○乙丑.○諫院啓曰.承旨柳辰全被論送西.纔過二十餘日.卽叙顯職未便.請遶.答曰柳辰全雖一時被論.亦他例之事.不至深重.不須遶也. 《中宗實錄 卷第101, 75面》

중종 39년 1월 27일(병인)

○간원(諫院)이 류진동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丙寅.○諫院.啓柳辰全事.不允

《中宗實錄 卷第101, 75面》

중종 39년 8월 2일(무진)

○정원에 전교하기를,
“금부(禁府)의 관리는 같고, 정대년·나세찬은 다른 승지들과 다르므로 송서(送

163) 송서(送西) : 서반(西班)인 중추부(中樞府) 또는 오위(五衛)의 직으로 보내는 것. 동반(東班)이 실직(實職)은 면하되 아직 사환(仕宦)을 면하지 않았거나, 실관(實官)의 자리가 없는데 벼슬을 주어 써야 할 경우 등에 송서한다.

西)하라. 다른 승지 안현(安瑛)·류진동(柳辰全)·송기수(宋麒壽)·박세후(朴世煦)들도 모두 같되, 가승지(假承旨)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익수(金益壽), 상호군(上護軍) 원혼(元混)을 명초하여 들어온 뒤에 승지들이 교대하고 가도록 하라. 또, 전교할 일이 있으니 양사의 성상소(城上所)도 명소(命召)하라.”

○戊辰.○傳于政院曰.禁府官吏則違之.而鄭大年羅世纘.異於他承旨故送西.他承旨安瑛柳辰全宋麒壽朴世煦亦並違.而假承旨禮曹參議金益壽.上護軍元混.命招入來後.承旨等.交代而去可也.且有傳教事.兩司城上所.亦命召.
《中宗實錄 卷第104, 26面》

가정(嘉靖) 29년(명종 5, 1550) 9월 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어 찬(撰)한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합니다.

동지사(同知事)

가선대부 공조참판(嘉善大夫工曹參判) 신 류진동(柳辰全)
가선대부 호조참판(嘉善大夫戶曹參判) 신 주세붕(周世鵬)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 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신 이세장(李世璋)
嘉靖二十九年九月日春秋館奉教撰前後官并錄

同知事

嘉善大夫工曹參判臣柳辰全
嘉善大夫戶曹參判臣周世鵬
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教兼經筵侍講官臣李世璋

동지사(同知事)

가선대부 공조참판(嘉善大夫工曹參判) 신 류진동(柳辰全)
同知事
嘉善大夫工曹參判臣柳辰全

인종 원년 4월 23일(을묘)

○헌부가 아뢰기를,

“부경(赴京)하는 행차에 은(銀)을 금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신(使臣)이 거의 다 무뢰배를 데려가므로 법을 범하는 자가 많으니, 더욱 밝혀서 엄하게 금하지 않으면 장차 바로잡기 어려울 형세입니다. 사신의 친자제(親子弟) 밖에 무뢰한 서열(庶孽)·잡류(雜類)는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대행대왕(大行大王) 때에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는데, 이제 성절사(聖節使) 류진동(柳辰全)은 친자제가 아닌 서열인 사람을 자제로써 데려가니 이미 승전의 본의를 어겼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공사(公私)의 무역을 멈추라고 명하시어 외람된

것을 엄하게 고치는 때에 이러한 잡류는 더우기 데려가서는 안 되니, 승전에 따라 데려가지 말라는 일을 하유(下諭)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乙卯○憲府啓曰赴京行次禁銀之法非不嚴重而使臣率多帶行無賴人故冒犯者多若不申明嚴禁則勢將難救使臣親子弟外無賴庶孽雜類毋得帶行事 大行大王朝已奉承傳而今聞聖節使柳辰全非親子弟庶孽人以子弟帶去已違承傳本意今方命停公私貿易痛革猥濫之時如此雜類尤不可帶行請依承傳勿率去事下諭答曰如啓

《仁宗實錄 卷第2, 36面》

명종 즉위년 10월 25일(갑인)

○성절사(聖節使) 류진동(柳辰全)이 명 나라 서울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처음 예부(禮部)에 도착하였을 때, 낭중(郎中) 주충(周琮)은 갓 제수된 자였습니다. 전에는 배신들이 예방할 적에 낭중이 마루 위에 앉아 있으면서 배신들이 마루 밑에서 절을 하면 답배(答拜)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번에는 오만하게 보면서 답배를 하지 않더니, 자문(咨文)을 올린 뒤 자문의 글이 잘 씌어진 것을 보고 나서는 ‘일찍이 조선은 예의의 나라라 들었는데 이제 보니 과연 그렇다.’ 하며, 통사(通事)에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왔는가?’ 하고 묻자, 통사가 ‘오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뒤로부터는 행례 때마다 답배하지 않는 적이 없었고 하찮은 통사에게까지도 다 읊(揖)만 하고 절은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정월에 전교하기를,

“자문 서사관(咨文書寫官)이 누구였는지 승문원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자문 서사관 및 표문 제술관(表文製述官)의 성명 단자를 열서하여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성절사 류진동의 말 속에, 예부 낭중 주충이 우리 나라 문서가 잘 씌어진 것을 보고 탄복한 나머지 배신 및 하인을 후한 예로 대우하였다고 하였으니 국가의 영광이 이보다 더할 것이 없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내려주어 잘한 일을 포상함이 좋겠다. 사인 김노(金魯), 정랑 이택(李澤), 좌랑 어계선(魚季瑄), 전 봉교 이감(李戡), -이상은 자문을 잘 쓴 자이다.- 전 정랑 이담(李湛)-어전에서 표문을 제술한 자이다.-에게는 각기 숙마(熟馬) 1필씩을 주고, 부사과(副司果) 류이손(柳耳孫)과 이원신(李元臣)-이 두 사람은 서사관으로서 승문원에 늘 출사했다는 것으로 녹직에 부쳐진 자들이다.-에게는 각기 반숙마 1필씩을 주어라.”

하였다.

甲寅.○聖節使柳辰全.回自京師.啓曰.初到禮部.郎中周琮.新除職者也.前日陪臣等禮見

時.郎中坐於堂上.陪臣拜於下.則郎中答拜.例也.今則傲視不答.呈咨文後.見咨文善寫曰.曾聞朝鮮.爲禮義之國.今果然矣.問諸通事曰.書此文者.今到此乎.通事答以不來.自是以後.行禮之時.未嘗不答拜.雖至於通事之微者.皆令揖而不拜.傳曰知道.傳于政院曰.咨文書寫人誰乎.問于承文院以啓.咨文書寫及表文製述官姓名單子.列書入啓.傳曰.聖節使柳辰全言內.禮部郎中周琬.見我國文書善寫.歎服不已.陪臣及下人.待以厚禮.國之有光.無加於此.雖微物.可以賜給褒其能.舍人金魯.正郎李澤.佐郎魚季瑄.前奉教李戡.已上咨文善寫前正郎李湛.御前表製述各給熟馬一匹.副司果柳耳孫李元臣.此二人以書寫官常任承文院付祿者也各給半熟馬一匹

《明宗實錄 卷第2, 73面》

명종 즉위년 11월 18일(정축)

○신의(申儀)를 광덕대부(光德大夫) 영천위(靈川尉)로, -의는 그의 아버지 신수경(申秀溍)의 공신음(功臣蔭)으로 가자된 것이다.- 임백령(林百齡)을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숭선군(嵩善君)으로, 최보한(崔輔漢)을 추성정난위사공신(推誠定難衛社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 겸 동지경연사(吏曹判書兼同知經筵事) 수산군(隋山君)으로, -임백령과 최보한은 모두 대신의 천거로 단망(單望)으로 주의(注擬)하였다.- 홍섬(洪暹)을 가의대부(嘉義大夫) 예조 참판 동지성균관사(禮曹參判同知成均館事)로, 김광준(金光準)을 추성정난위사공신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상락군(上洛君)으로, 류진동(柳辰全)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임구령(林九齡)¹⁶⁴을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 장흥고영(長興庫令)으로, -임구령은 공신이기 때문에 주부에서 오른 것이다.- 최언호(崔彦浩)를 추성정난위사공신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로, 정현(鄭璜)을 추성정난위사공신 사재감 주부(司宰監主簿)로, -최언호와 정현은 모두 직장에서 오른 사람인데 공신이기 때문이다.- 최항(崔沆)을 통정대부(通政大夫) 광주목사(廣州牧使)로, -도감 낭청으로 당상에 오른 것이다.- 이사증(李思曾)을 훈련원도정(訓鍊院都正)으로, 한승권(韓承權)을 절충장군(折衝將軍)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정응두(丁應斗)를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충무위 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으로, 이원우(李元祐)를 절충장군 행의흥위 대호군(行義興衛大護軍)으로 삼았다.

丁丑.○以申儀爲光德大夫靈川尉.儀以其父秀溍功臣之蔭加資林百齡爲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嵩善君.崔輔漢爲推誠定難衛社功臣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經筵事隋山君.百齡輔漢皆用大臣之舉而單望擬之洪暹爲嘉義大夫禮曹參判同知成均館事.

164) 임구령(林九齡) : 1501~1562. 주부(主簿)에서 명종 즉위년 11월에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으로 장흥고령(長興庫令)으로 올랐으며 광주목사, 나주목사, 남원부사 역임후 은퇴하여 영암 구림(鳩林)으로 귀향하여 진남제(鎭南堤) 제방공사를 하였다고 전해온다. 호당록과 문장가에 기록된 임억령, 임백령의 아우로서 류진동의 둘째 아들인 경원부사 류용(柳溶)의 장인이다.

金光準爲推誠定難衛社功臣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上洛君.柳辰全爲弘文館副提學.林九齡爲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長興庫令九齡以功故自主簿而陞崔彥浩爲推誠定難衛社功臣司僕寺主簿.鄭瓚爲推誠定難衛社功臣司宰監主簿.彥浩瓚皆自直長而陞亦以功臣故也崔沆爲通政大夫廣州牧使.以都監郎廳陞堂上李思曾爲訓練院都正.韓承權爲折衝將軍羽林衛將.丁應斗爲折衝將軍行忠武衛上護軍.李元祐爲折衝將軍行義興衛大護軍. 《明宗實錄 卷第2, 95面》

명종 즉위년 11월 24일(계미)

○부제학(副提學) 류진동(柳辰全), 직제학 조언수(趙彦秀), 전한 이명(李冀), 응교 김천우(金天宇), 부응교 심통원(沈通源), 교리 이수경(李首慶), 부수찬 윤인서(尹仁恕), 저작 임보신(任輔臣), 정자 왕희걸(王希傑)이 대왕대비전에 아뢰기를,

“고기 반찬을 권진하는 일은 당초 조정에서 종사(宗社)의 대계를 위해 아뢰어 윤희를 얻었으므로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신들에게 내린 답의 뜻을 조야(朝野)가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의 오늘날 일은 참으로 보통 때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관계된 바가 지중하니 더욱 스스로 경솔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이 비록 무궁하다 하더라도 불가불 대의(大義)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루아침에 아주 허약해지시면 비록 진어(進御)를 시작하더라도 후회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시종(始終) 성궁(聖躬)을 보섭하셔서 종사를 편안케 하는 것이 실로 중종(中宗)의 지극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뜻입니다. 빨리 정을 누르시고 대신의 아뢰에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에 조정의 계청(啓請)을 인하여 권도(權道)를 따른다고 전교하였으나 그후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아직까지 차마 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부터 조정에서 다시 일제히 모여 간절히 청하기에 매우 미안하여 이미 억지로 따른다는 일로 하교하였으니, 홍문관 역시 그리 알라.”

하였다.

癸未.○副提學柳辰全.直提學趙彦秀.典翰李冀.應教金天宇.副應教沈通源.校理李首慶.副修撰尹仁恕.著作任輔臣.正字王希傑.啓于 大王大妃殿曰.勸進肉膳事.當初朝廷爲 宗社大計啓之.而得蒙允俞.莫不感悅.伏聞昨日下午答大臣之意.朝野不勝憂悶. 慈殿今日之事.固非常時之比.所係至重.尤不可自輕.情雖無窮.不可不斷之以大義.若一朝至於羸毀已極.則雖始進御.恐有所悔.終始保攝 聖躬.以安 宗社.此實報答 中宗至恩之意也.請亟抑情.以從大臣之啓.答曰前因朝廷啓請.從權事傳教.而厥後不勝哀愴之心.猶未能忍焉.自昨朝廷.乃復齊會請之懇焉.至爲未安.故旣以勉從事教之.弘文館亦宜知悉.

《明宗實錄 卷第2, 99面》

명종 원년 2월 14일(신축)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叟)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날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정치를 하는 데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물으니 사마 광(司馬光)은, 맨 먼저 언로(言路)를 열어야 한다고 주청하였습니다. 그것은 언로가 통하고 막힘에 국가의 치란(治亂)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위하신 처음에 밤낮으로 선정을 도모하시는데, 간언(諫言)을 듣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간언을 구하고 안색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말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하물며 자만하는 기색을 말쑥에 나타낸다면 누가 위엄을 무릅쓰고 감히 간하려 하겠습니까.

신들이 보건대, 대간이 환시(宦寺)가 외람되게 호소하여 가자를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날을 복합(伏閣)하였으니, 전하께서 허심 탄회하게 들어주시리라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말 한마디의 잘못을 가지고 준엄한 말쑥으로 꺾으시니 이는 간언을 어기지 않고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동과 나뭇꾼의 말도 마땅히 널리 들어야 할 것인데 이목(耳目)의 공론을 듣기 싫어해서야 되겠습니까. 임금이 정치하는 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대신과 대간 뿐입니다. 일에 옳고 그름이 있을 적에는 힘써 서로 조정하여 언로가 확장되게 하며 임금이 즐겨 듣도록 하는 것은 대신의 책무입니다. 가부를 논할 때 조금이라도 혹 충격을 주게 되면 말하는 자가 그 말을 다하지 못하여 장차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윤(伊尹)¹⁶⁵이 태갑(太甲)에게 고하기를 ‘네 마음에 거슬린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道)에 맞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 하였으니, 지금의 대신도 마땅히 이렇게 계도(啓導)해야 언책(言責)을 맡은 자도 마땅히 할 말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결단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거나 혹은 구차하게 서로 용납함으로써 조롱을 받고 있으니, 대간이 아마 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신들은 잘못을 목격하였기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을 준엄한 말로 거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답하여 상하가 서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간이 자주 체직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조종조로부터 대간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직

165) 이윤(伊尹) : 은(殷) 나라의 대신. 이름은 “이”이고 윤은 관직명이다. 가노(家奴) 출신으로 원래는 유신(有莘)의 딸이 시집갈 때 팔려간 몸종이었다고 전한다. 은 나라의 탕왕에 불려가서 재상이 되어 하 나라의 걸왕(桀王)을 토벌하므로써 은 나라가 천하를 평정하는데 공헌했다. 뒤에 태갑(太甲)의 재상이 되었으나 태갑이 포박하여 이윤이 직접 정치를 하였으나 3년 뒤 태갑이 과오를 뉘우치자 정권을 태갑에 되돌려주고 보좌했다. 후세에 주공(周公) 제(齊)의 관중(管中) 등과 함께 명신(名臣)으로 불렸다.

무에 임하라고 명하면 그 명을 따랐다. 체직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辛丑.○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筭曰.昔宣仁太后.問爲政所先.司馬光請首開言路.誠以言路通塞.治亂所係.今當嗣服之初.宵旰圖理.聽諫爲急.開心而求之.和顏而受之.猶恐不盡其言.況弛弛之色見於言表.則誰肯冒威.而敢諫哉.臣等伏見臺諫.以宦寺濫訴受加.累日伏閣.謂虛寧聽納.而反以一言之誤.嚴辭以折之.此非所以從諫弗拂之意也.蕝蕝之言.亦當兼聽.耳目公論.豈宜厭聞.人主所倚以爲治者.大臣臺諫而已.事有是非.務相調劑.而使言路開廣.人主樂聞者.大臣之責也.可否之際.少或相激.則言者不盡.將啓無窮之弊矣.伊尹告于太甲曰.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今之大臣.固當以此而啓迪.任言責者.亦當盡言不撓.或依違組縮.或苟且相容.以被譏笑.臺諫恐自此而不重也.臣等目覩闕失.不能容嘿.伏願 殿下.留心焉.答曰臺諫所啓.非欲嚴辭拒絕也.以實答之.欲其上下相孚也.臺諫數違.此非美事.自 祖宗朝.臺諫雖有所失.自上命就職.則從命矣.不須違之 《明宗實錄 卷第3, 26面》

명종 원년 2월 27일(갑인)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성묘(成廟) 초년에 봉보부인(奉保夫人)이 아는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제수해 달라고 청하자, 성종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내알(內謁)의 부탁으로 사람에게 벼슬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모가 어질지 못하면 그 폐단이 바로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고, 지경연사(知經筵事) 허자(許磁)는 아뢰기를,

“어릴 때 쉽게 따르는 것은 유모의 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 올바른 사람을 신중히 택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류진동이 아뢰기를,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자라서 반드시 착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만일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예의로써 가르치지 않으면 아들도 역시 불경하여 아버이를 희롱하고 업신여기며 이내 습성이 되어 끝내는 반드시 부모에게 행패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반드시 어릴 때 가르친 연후에야 자라서 착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고, 허자는 아뢰기를,

“『소학(小學)』이 비록 임금에게 절실하지 않을 것 같지만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큰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적혀 있고 신하로서의 도리도 적혀 있으며 부인으로서의 도리도 적혀 있으니, 이것으로 백성을 가르친다면 백성이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류진동(柳辰叟)이 아뢰기를,

“내칙편(內則篇)의 내용은 바로 옛날 제후가 가정을 다스리던 법이니, 임금에게도 절실한 것입니다.”

하고, 허자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어린 아들에게 반드시 성신(誠信)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옛날 맹자(孟子)가 어릴 때 이웃에서 돼지 잡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묻기를 ‘돼지를 잡아서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하자, 그 어머니는 ‘장차 너에게 먹이려는 것이다.’ 하였다가 이윽고 실언을 후회하고 즉시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임으로써 그 말을 실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맹자는 마침내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최연(崔演)은 아뢰기를,

“옛날에 ‘어린 아들에게 항상 속이지 않는 정신함을 보였다.’고 함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였다.

甲寅. 上. 御朝講. 叅贊官柳辰叟曰. 成廟初年. 奉保夫人爲所知人請除官. 成宗不許曰. 不可以內謁之故而官人. 乳母不良. 其弊必至於此. 知經筵事許磁曰. 幼時所易從者. 無如乳母之言. 故必謹擇其人也. 辰叟曰. 幼時不教. 長必不善. 母若溺愛. 不教以禮. 則子亦不敬. 以戲侮其親. 因而成習. 終必乖於父母. 故必教之於幼時. 然後長爲善人. 而順於親矣. 磁曰. 小學雖似不切於人君. 乃治民之大本. 有子道焉. 有臣道焉. 有婦道焉. 以此教民. 民莫不出於正矣. 辰叟曰. 內則. 古者諸侯之家法也. 非不切於人君也. 磁曰. 古者幼子. 必教之以誠信. 昔孟子幼時. 隣有殺猪者. 問其母曰. 殺之何用. 母曰. 將以食汝. 旣而悔之. 卽買以食之. 以實其言. 以此養之. 故孟子終爲聖人也. 叅贊官崔演曰. 古者幼子. 常視母誑. 此之謂也.

《明宗實錄 卷第3, 32面》

명종 원년 3월 4일(신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叟)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컨대 윤원로(尹元老)는 죄가 크고 악이 극에 달하여 혈기(血氣)가 있는 자는 분함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보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신들이 합문(閣門)에 옆드려 죄를 청한 것은 먼 앞날을 우려함인데 오래도록 윤택받지 못했으니 이것이 비록 외척을 보전하시려는 높으신 뜻이겠으나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옛날 한(漢) 나라 때 유향(劉向)이 왕봉(王鳳)의 전권(專權)한 죄를 논했으나 성제(成帝)는 생질이요 외숙 사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탄식하고 상심하면서 그

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장제(章帝)는 두헌(竇憲)이 궁액(宮掖)의 세력을 믿고 심수공주(沁水公主)의 전원(田園)까지 빼앗으려고 한 것을 알고 크게 노(怒)하여 엄히 꾸짖고는 심지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자에 비유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그들이 죄악을 쌓아도 고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가 한 나라의 종사가 바뀌게도 하고 왕후의 족속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간악함을 알면서도 그 죄를 일찍 다스리지 않은 실책에 연유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외척을 보전하려 했던 것이 결국 보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정과 고식적인 태도가 필경 종사(宗社)를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으니 사은(私恩)을 따르다가 대의(大義)를 해친 화(禍)가 그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더구나 지금 원로의 죄는 왕씨나 두씨 정도가 아닌데 이겠습니까? 신들이 경악(經輦)에서 모시고 있으니 친친의 은혜 쪽으로 인도해야 함을 모르지 않으나 의(義)가 은(恩)보다는 중한지라 감히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은혜를 끊고 대의로 결단을 내려 쾌히 공론을 따른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원로가 원래 무식하고 경망한 까닭으로 망발을 잘 한다. 대신들이 여러날을 두고 논계(論啓)해서 그의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고 문외 출송하여 그 죄를 다스렸던 것이다. 원로가 경망하다는 것은 지금 상하가 환히 알고 있는 것이라 위에서 잘 처리한다면 무슨 후환이 있겠습니까? 경망한 말의 실수를 가지고 대죄(大罪)를 적용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辛酉.○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劄曰.伏以尹元老.罪大惡極.凡有血氣莫不捨憤.揆諸王法不可容貸.大臣伏閣請罪.其慮遠矣.而久未蒙允.此雖自上保全戚屬之盛意.奈宗社大計何.昔漢時劉向論王鳳專權之咎.成帝以甥舅之故徒嘆息悲傷而不能用其言.章帝知竇憲恃宮掖聲勢.奪沁水公主園田.即大怒切責.至比於指鹿爲馬.而不能繩其罪馴致稔惡不悛.或移漢宗.或血后族.此由於雖知其奸.不以其罪斷之於早之過也.然則其初欲保戚屬者.非但不能保戚屬而已.煦煦姑息.竟底宗社危亡.其循私恩害大義之禍慘矣.況今元老之罪.不止於王竇者乎.臣等忝侍經帷.非不知導迪以親親之恩.義重於恩.不敢容默.伏願殿下.割恩斷義.快從公論.不勝幸甚.答曰.元老本以無識輕妄之故.言辭妄發也.大臣累日論啓.而奪其官爵.黜送門外.以治其罪矣.元老輕妄之事.上下洞照.自上善處.則何有後患乎.以輕妄言辭之失.豈可置諸大罪乎.

《明宗實錄 卷第3, 43面》

명종 원년 3월 10일(정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컨대 원로는 성격이 효경(梟獍) 같고 마음에는 독석(毒螫)을 품어 군부(君父)도 무시하므로 그 죄가 하늘에 닿아 사람들은 만인 앞에서 죽일 것을 생각하며 귀신까지도 은밀히 죽이려고 모의하니 하루도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신인(神人)의 주인이 되었으니 신인이 함께 분히 여기는 일은 진실로 쾌히 씻어주시는 것이 옳을 일인데 어찌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앞세워 대의를 뒷전에 두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므로 한 개인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요 악한 자를 벌하는 법은 더더욱 근엄(謹嚴)해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지친의 처지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유(先儒)들이 한문제(漢文帝)가 박소(薄昭)를 죽인 일을 논하기를 ‘박소가 장릉(長陵)의 흙을 한 줌이라도 훔쳤다면 소를 죽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원로가 임금을 무시한 죄는 장릉의 한 줌 흙을 훔친 정도가 아닌데, 전하께서 어떻게 차마 죽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선왕(先王)의 반신(叛臣)은 바로 전하의 반신입니다. 선왕을 위하여 반신을 죽이는 일이라면 미처 못할 듯이 서둘러야 할 것이요, 만약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을 둔다면 왕법(王法)이 행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세(萬世) 후에 전하를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대신(大臣)과 대간(臺諫)이 일국(一國)의 공론을 가지고 여러날을 합문에 옆드려 진달하여도 전하께서는 번번이 망발이라는 핑계로 그를 두둔하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 대역 불궤(大逆不軌)의 말을 망발로 돌리신다면 앞으로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을 내리시어 공론을 쾌히 따르소서. 그러면 그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리석고 경망한 사람을 역적으로 논단하는 것은 내 뜻에만 불편할 뿐 아니라 자전께서도 불편하게 여기실 것이므로 윤택할 수 없다.”

하였다. 다시 차자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丁卯.○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劄曰.伏以元老.性類梟獍.心懷毒螫.不有君父.罪極滔天.人思顯戮.神議陰誅.不可一日容于覆載之間. 殿下旣爲神人之主.則神人所憤固宜快雪.豈可以私恩掩其大義乎.況法者.天下之公器.非一人之所得私也.而誅惡之法.尤當謹嚴.雖在至親.不可容貸.故先儒論漢文殺薄昭之事曰.使昭盜長陵一杯土.則昭不可不誅.今元老無君之罪.不止於盜長陵一杯土而已.殿下其忍不誅之乎.先王之叛臣.卽殿下之叛臣.

爲先王誅叛臣.猶恐其不及.若有私意於其間.則非徒王法之不行.萬世之下.以 殿下爲何如哉.大臣臺諫.持一國公論.累日伏閣.而 殿下每諉以妄發.曲爲之辭.以大逆不軌之言.爲妄發.則亂臣賊子.將何所懲乎.伏願 殿下.斷以大義.快從公論.不勝幸甚.答曰.愚妄之人.以逆賊論之.非徒予意未安也. 慈殿.亦有未安之意.故不允.再筭不允 《明宗實錄 卷第3, 45面》

명종 원년 4월 12일(무술)

○상이 석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예부터 임금의 사부(師傅)를 존중하였지만, 미천(微賤)한 시절의 사부는 더욱 차마 잊지 못하였습니다. 전하 잠저(潛邸) 시절의 사부 신희복(愼希復)이 지금 평산(平山) 땅에 있는데 상중(喪中)에 궁곤하여 제사도 받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시로 성택(聖澤)을 내리시어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소서. 이 역시 스승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사가 될 것입니다.” 清白
하였다.

戊戌.○上.御夕講.參贊官柳辰全曰.自古人君.尊師重傳.而側微時師傅則尤不忍忘焉.殿下潛邸時.師傅愼希復.今在平山地.守喪窮困.無以供祭云.願時致 聖澤.以周其急.是亦尊師之美政也. 《明宗實錄 卷第3, 62面》

명종 원년 4월 25일(신해)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직제학(直提學) 이명(李瑛), 전한(典翰) 한두(韓斗), 부응교(副應教) 정언각(鄭彦慤), 교리(校理) 윤인서(尹仁恕), 부교리 이수경(李首慶)·민기(閔箕), 부수찬(副修撰) 이원록(李元祿)·유강(兪絳), 박사(博士) 임보신(任輔臣), 정자(正字) 왕희결(王希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국가가 국가로 존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강상(綱常)이 동량(棟樑)이 되고 사기(士氣)가 이를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강상이 땅에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게 되면 멀지 않아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흉역(凶逆)의 마음을 갖거나 부도(不道)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본래 나라의 상형(常形)이 있는데 어찌 척리(戚里)라 하여 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사정에 얽매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꺾이는 일이 있으면 강상이 여지없이 무너져서 난신 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 이 얼마나 한심할 일이겠습니까? 이목(耳目)의 자리에 있고 언론(言論)의 책임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옷깃을 끌기도 하고 머리를 부숴가면서라도 죽음으로써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논계(論啓)할 때 지친(至親)이라고 미루어 먼저 스스로 법을 어기고는

도리어 잘못 아뢰었다 하여 퇴피(退避)의 계책을 삼았고 당악(黨惡)의 죄를 논함에 이르러서도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으며 수악(首惡)을 놓아 주고서도 편안히 생각조차 안 하였으니, 사기는 꺾이고 이목으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못함도 한결같이 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자그마한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겸억(謙抑)하는 말이나 듣기 좋아하고 대신들은 상의 뜻에 거슬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바로잡아 구제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아래가 모두 고식적이어서 날마다 위미(委靡)한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국사가 앞으로 어떠한 지경에 이를 것인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신들도 논사(論思)의 직임을 맡았으므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논열(論列)하였어야 하는데도 지금에 와서 공론의 분격함이 갈수록 더 격렬해진 뒤에야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으니, 그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원로가 비록 부도한 말은 있었으나 윤임(尹任)이 장차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할 흉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고서 종사의 큰 재화를 구원했다 하여 망령되이 공로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그것이 결국 군신 사이에 광언(狂言)을 망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를 만약 흉역 부도로 논한다면 다만 나만이 차마 못하는 뜻이 있을 뿐 아니라 상전(上殿)께서도 크게 차마 못하는 마음을 가져 이로 인해 혹시 병환이라도 나게 된다면 자식된 심정이 어떻겠는가? 비록 온 조정이 간한다 해도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辛亥.弘文館副提學柳辰叢.直提學李蕙.典翰韓岬.副應教鄭彥懣.校理尹仁恕.副校理李首慶.副修撰李元祿.兪絳.博士任輔臣.正字王希傑上筭曰.伏以國家之所賴而爲國家者.綱常爲棟樑.而士氣維持之也.綱常墜.士氣摧.國之亡.無日矣.兇逆將心.罪關不道.自有邦國之常刑.豈容戚里而異律.或繫便私.少有撓屈.則綱常掃地.亂賊無懼.豈不寒心.居耳目之地.有言論之責者.所當牽裾碎首.以死守法.而當初論啓之時.諉以至親.先自毀法.反以誤啓爲退避之計.及論黨惡之罪.亦復結舌無言.縱其首惡.恬不動念.士氣之摧組.耳目之不職.一至於此.而殿下以少不忍之心.姑悅遜志之言.大臣懷違忤之慮.不盡匡救之責.上下姑息.日趨委靡.不知國事.將何所底止哉.臣等職忝論思.亦當終始論列.而及今公論所憤.愈久愈激.然後乃敢有言.罪當萬死.答曰元老雖有不道之語.知尹任將有危宗社兇謀.救宗社大禍.妄生要功之意.至於君臣之間.妄發狂言.若論以兇逆不道.非但予有不忍之意.上殿大有不忍之心.誠恐以此成疾.人子之情爲如何哉.雖舉朝諫之.決不可從.

명종 원년 4월 29일(을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叟)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하께서 원로를 지나치게 비호(庇護)하시는 말씀을 보니, 하나는 자신의 화를 면하기 위함이었다고 핑계하였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고 경망하고 무식하다고 핑계하였는데 신들의 의혹은 더할 뿐입니다. 그가 임금의 수명을 미리 점쳤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자신의 화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윤임을 꺼려서 그가 빨리 죽기를 바랐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령 어느 어리석고 경망하고 무식한 자가 있어 전하께 부도(不道)한 죄를 저질렀다면 역시 어리석고 경망한 자라 하여 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원로는 자전(慈殿)을 원망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하였고 또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그 말을 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가 자전께 품고 있는 화심(禍心)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까. 본시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께서는 비록 조금은 차마 못하는 마음을 가지실지라도 전하와 이 나라 신자들에게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인 것입니다. 만약 원로 한 사람을 아껴 자전과 인종의 역적을 주살하지 않는다면 만대를 두고 그 악명(惡名)이 반드시 전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전께서도 어찌 원로만을 중히 여기시고 전하께서 악명을 듣는 것은 경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역당(逆黨)을 추국하는 데는 원래 상법(常法)이 있는데, 건양의 사간(事干)을 유사(有司)에게 붙이지 않고 정원으로 불러 문게 하여 늦추어주는 단서를 보임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말을 꾸며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만들어 사람들이 다 원로의 처지를 위함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시니, 아마도 광명(光明)한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빨리 왕법(王法)을 바로 세워 인심을 시원하게 하시고 옥사를 엄명히 다스려서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원로가 점을 친 일이나 자전을 향하여 한 말은 모두 말을 망령되어 한 것이다. 무슨 뜻이 있었겠는가? 조정에서 그 죄를 참작하여 결정한 일인데 지금 다시 분란을 일으켜 상하가 경동(驚動)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에도 차마 못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께서 슬프신 중에 더욱 가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것이다.

또 만약 자신에게 긴히 관계된 일이 아니면 정원으로 불러 묻는 것이 예(例)이다. 함풍수(咸豐守) 등을 정원으로 불러 묻는 것은 사실 친문(親問)이니 그것은 바른 말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원로를 위한 것이라느니 모면할 길을 만들어 주었다느니 하는 것은 나로서는 모를 일이니 절대로 그럴 리

가 없다.”
하였다.

乙卯.○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筭曰.伏見 殿下.曲庇元老之辭.一則諉以欲免己禍.一則諉以愚妄無識.臣等滋惑焉.其推卜君上壽筭.欲何爲也.欲免己禍.則其忌尹任.而欲其速死.固所宜也.設有愚妄無識之人.得不道之罪於 殿下.亦以愚妄而原之乎.況元老.怨懟 慈殿.至發口不可道之言.逢人輒說.略無忌憚.其向 慈殿.葺禍心亦慘矣.固非偶發.在 慈殿雖或有小不忍之心.而於 殿下及一國臣子.有不共戴天之讎也.若惜一元老.不誅 慈殿仁宗之逆賊.則萬世惡名.必歸於 殿下矣. 慈殿豈可重元老.而輕 殿下之蒙惡名乎.且推鞠逆黨.自有常法.建陽事干.不付有司.招問政院.以示緩歇之端.使罪人得以飾辭.爲可免之途.人皆以爲元老之地爲疑.恐有累於 聖德之光明.伏願 殿下.垂正王法.以快人心.嚴明獄事.以斷羣疑.答曰.元老推卜之事.與向 慈殿之言.皆是言語之妄發.豈有他意.朝廷已酌定其罪矣.今復紛亂.使上下驚動.非但予心有所未忍. 慈殿哀遽之中.益爲傷痛.罔知攸措.且若非緊關於當身者.則招問于政院例也.咸豐守等招問政院者.此實親問.欲其直言而已.以此爲元老之地.爲可免之途.予所未知.頗無是理. 《明宗實錄 卷第3, 71面》

명종 원년 5월 3일(무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아뢰기를,

“어제의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몹시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중종이 계실 당시 원로와 윤임(尹任)이 서로 부딪쳐 틈이 벌어져서 대윤(大尹)이니 소윤(小尹)이니 하는 말이 전파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연의 자리에서도 그 말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중종께서는 윤임의 흉패한 죄상을 잘 알고 계신 터라 전하를 보호하지 못하실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원로의 죄를 헤아리면서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말을 한 것이요 간적이 날조한 말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지난번 역적이 자전을 지목하고 한 말은 조정의 모든 사람이 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신들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그 말대로 했다면 역시 역적과 같을 것인데 어떻게 감히 뻔뻔스런 얼굴로 원로의 죄를 논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지난번 간적(奸賊 : 윤임을 지칭한 말)이 윤원로의 죄를 다스릴 적에 이와 같이 형적이 없는 일로 죄를 자전에게 돌렸다. 모든 궐내의 일은 외인이 목도한 것이 아니다. 자전이 그 일을 통촉하시고는 적인(賊人)이 종사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술책이라고 반복하여 조정에 전교하신 것을 조정에서 누가 모르겠는가? 원로의 죄상으로 인하여 다시 이와 같은 논란을 일으켜 악명(惡名)을 자전에게 돌리니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하였다.

戊午.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啓曰.伏觀昨日備忘記.不勝惶恐.無地自容.臣等以爲. 中廟時元老.與尹任.相激成隙.大小尹之說.傳播屢發於經筵之上. 中廟洞知尹任兇悖之狀.以不得保護 殿下爲憂.故今數元老之罪.乃有憂慮之語.實異於奸賊構成之語.頃者逆賊.指囑慈殿之事.朝廷上下.莫不痛心.臣等雖無狀.若襲其語.則是亦一逆賊也.何敢強顏論元老之罪乎.答曰前者奸賊.治元老之時.以如此.無形之事.歸罪於 慈殿.凡內間事.外人非目覩也.慈殿洞燭.故曾以賊人將危 宗社之術.反覆傳教于朝廷.朝廷孰不知之.因元老之罪狀.更發如此之論.歸惡名于 慈殿.其意未可知也.

《明宗實錄 卷第3, 74面》

명종 원년 5월 11일(병인)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생각하건대, 원로는 음흉한 종적이 현저하고 죄가 난신 적자(亂臣賊子)에 관계되니 옛법을 상고하면 누구나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과 때가 다르고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있으므로 온 나라의 격분하는 군정(群情)은 사헌부에 집중되고 복합(伏閣)하여 논열(論列)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정상계서도 간적(奸賊)의 정상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인데도 의(義)로써 처단하지 않으시어 성상의 들으심이 더욱 멀어졌으니 대소신민(大小臣民)으로 이반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정(新政)의 실행(失刑)이 끝내 성덕(聖德)에 큰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공론을 받아들여 왕법(王法)을 분명히 보이소서. 이것을 힘입어 강상(綱常)의 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무궁한 복의 터전이 여기서부터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丙寅.○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筭曰.伏以元老.跡著陰凶.罪係亂賊.稽之古法.人所共誅.但時與古異.執法有官.故舉一國羣情之所激.萃之于耳目之官.伏閣論列.爲日已久.聖明亦能洞知奸賊之情狀.而猶不斷之以義.天聽愈邈.大小臣民.莫不解體.竊恐新政之失刑.終爲 聖德之大累.伏願 殿下.察納公論.明示王法.綱常之道.賴以不墜.則國家無彊之福.將自此而基矣.不允.

《明宗實錄 卷第3, 77面》

명종 원년 6월 5일(경인)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상소를 올려 5조목을 진달했는데, 첫째는 임금이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언로(言路)를 여는 것이고, 셋째는 대신(大臣)을 공경하는 것이고, 넷째는 기강(紀綱)을 진작시키는 것

이고, 다섯째는 측은한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었다.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한 글을 보았다. 내가 불민(不敏)하기는 하나 감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재변이 생긴 것은 참으로 임금이 부덕(不德)한 탓이니, 극진히
 간하여 박덕(薄德)을 도우라.”

하였다.

庚寅.○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疏.陳五條.一曰勤聖學.二曰開言路.三曰敬大臣.四曰振
 紀綱.五曰恤民隱.傳曰.今觀疏辭.予雖不敏.敢不留念.大抵災變之生.實由人君不德.須極
 諫以輔涼德

《明宗實錄 卷第3, 89面》

명종 원년 7월 28일(임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진동(柳辰全)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삼가 들건대, 하루 전에 정업원(淨業院)을 수리하여 선왕의 후궁들로 하여금 수
 시로 이우(移寓)토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하니, 전하께서 선왕의 후궁들을 인
 홀(仁恤)하시는 지의(至意)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생각하건대, 정업원은 옛날에 승니(僧尼)들이 모여 살던 곳으
 로 이단(異端)의 소굴이었는데, 선왕께서 중흥의 대업(大業)을 이룩하면서부터
 유신(儒臣)을 위하여 사가독서당(賜暇讀書堂)¹⁶⁶으로 삼으시었고, 그 뒤에 흥천
 (興天)·원각(圓覺) 두 절과 함께 모두 폐지하고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邪)를 억제하고 정(正)을 숭상하는 뜻을 보인 지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목
 재와 기와는 철거하여 공해(公廩 : 관청)를 지었고 주초 또한 민가(民家)로 흘러
 들어간 때문에 겨우 두어 칸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를 수리한다 해도 새로 짓
 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 폐가 적지 않을 터인데, 더우기 도성 안에 다시 승니의
 사원(寺院)을 짓는다면 선왕께서 사(邪)를 물리치신 본의에 어찌하며, 전하의
 신정(新政)에 어찌하겠습니까?

이 일이 아무리 선왕의 후궁을 위해서라 하지만, 사방이 이목(耳目)에 조금이
 라도 의혹을 산다면 어찌 오도(吾道)와 이단(異端)이 소장(消長)하는 기틀에 관
 계되지 않겠습니까. 선왕 후궁의 거처는 인수궁(仁壽宮) 같은 곳이 얼마든지 있
 는데, 굳이 승니의 옛 사원을 수리하느라고 생령(生靈)들을 더욱 피곤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부디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사방의 의혹과 후대(後代)의
 의심을 제거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166) 사가독서당(賜暇讀書堂) : 젊은 문관(文官) 가운데 재주가 특출한 사람을 뽑아 휴가를 주어 학
 문을 닦게 하던 곳. 옥수동(玉水洞), 한남동(漢南洞), 보광동(普光洞) 등지의 강변의 경치 좋
 고 한적한 곳이었음.

“인수궁을 미처 수리하지 못하여 선왕의 후궁이 아직도 사제(私第)에 있으니, 매우 미안한 일이다. 그러므로 장차 정업원을 수리하여 후궁들이 수시로 이우(移寓)할 곳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내 생각에는, 사원을 철거하여 인가(人家)로 만드는 것 역시 불(佛)을 억제하는 일이요 숭상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인데, 홍문관이 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같은 곡론(曲論)을 한 것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인심이 이미 이단에 빠져 버리면 이단을 의당 배격해야 하는 줄도 알지 못하게 마련인데, 지금 불(佛)을 배격한다 하였으니 불을 혹신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고 있는 셈이다. 어찌 단호히 공론에 따라 즉각 수리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지 않는단 말인가. 실제로는 빠져 있으면서 밖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폐지된 사원(寺院)을 수리하려 하면서 이를 성실하지 못한 말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믿어 주겠는가? 이는 마치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으려는 것과 같으며, 훗날의 호령(號令)도 사람들에게 미더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壬午.○弘文館副提學柳辰全等上劄曰.伏聞前一日有命.修理淨業院.命先王後宮.有時移寓云.可見 殿下仁恤 先王後宮之至意.然臣等竊念淨業院.昔之僧尼所萃.爲異端窟穴.自先王中興大業.命爲儒臣.賜暇讀書堂.甚後與興天圓覺兩寺.俱廢不修.以示抑邪崇正.于今四十年.材瓦撤爲公廡.礎砌散入民戶.餘存者僅數間耳.必欲修理.與新立無異.弊且不小.況都城之內.復立僧尼之院.其於先王闢邪本意何.其於殿下新政何.此雖曰爲先王後宮.而於四方觀聽.少有致惑.則豈不有關於吾道異端消長之機乎.先王後宮.如仁壽宮諸處.自有其所.何必復修僧尼舊院.益困生靈.伏望亟收成命.斷四方之疑.絕後代之惑.傳于政院曰.仁壽宮.未及修理.先王後宮.尚在私第.至爲未安.故將修理淨業院.以爲後宮有時移寓之所.予意以爲撤僧舍爲人家.是亦闢佛.非崇佛也.弘文館不知上意.而如是曲論也.史臣曰.人心旣陷溺於異教.則固不知彼之當闢也.而今乃以爲闢佛.則猶知信惑佛氏之爲不可.何不從公論.卽下勿修之命耶.內實陷溺.而外拒人言.修葺久廢之尼院.姑爲是不誠之言.則人果聞而信之乎.是猶掩目而捕雀.他日之號令.亦難乎取信於人矣

《明宗實錄 卷第4, 12面》

명종 원년 8월 5일(기축)

자전은 사정전(思政殿) 분합(分閣) 안에 임어하여 발[簾]을 드리우고 상은 처마 밑에 임어하여 함께 정사(政事)를 들은 뒤에 「소학(小學)」을 강(講)하였다. [중략] 참찬관(參贊官) 류진동(柳辰全)은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 전성정의 가사를 듣고는 한집안의 사소한 말로만 여겼는데 지금 이

같이 놀라운 말을 들으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己丑. 慈殿.御思政殿分閣內垂簾. 上.御簷下同聽政.講小學.[中略]
 叅贊官柳辰全曰.臣初聞全城正家事.或疑一家微細之說.而今聞如此駭愕之言.其漸不可
 長也. 《明宗實錄 卷第4, 21面》

명종 원년 9월 3일(정사)

○정청에 진교하였다.
 “형조 참판의 결원은 도승지 김익수(金益壽)로 충원하라. 부제학(副提學) 류진동(柳辰全)은 이제 승지가 되었으니, 직제학 한두(韓岬)를 그 자리에 승차(陞差)하라.”
 ○정옥형(丁玉亨)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최보한(崔輔漢)을 우찬성으로, 허자(許磁)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임권(任權)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민제인(閔齊仁)을 이조 판서로, 김광준(金光準)을 호조 판서로, 상진(尙震)을 병조 판서로,
사신은 논한다 : 상진은 성품이 완악하고 아둔하며 언지 못하여서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흐름에 부양(俯仰)하며 향배(向背)를 요령있게 잘 하였다. 일찍이 동궁(東宮 : 인종을 말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윤원로(尹元老)와 깊은 관계를 맺어 뒷날의 기만을 구축하려다가 인종이 즉위하면서 경상도 관찰사로 파출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기(李芑)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 직에 제배(除拜)되었다.
 윤사익(尹思翼)을 공조 판서로, 송겸(宋謙)을 지중주부사로, 권응창(權應昌)을 이조 참판으로, 김익수(金益壽)를 형조 참판으로, 김홍윤(金弘胤)을 호조 참의로, 채세영(蔡世英)을 병조 참의로, 임호신(任虎臣)을 승정원 도승지로, 류진동(柳辰全)을 좌승지로, 한두(韓岬)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사수(趙士秀)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정언각(鄭彦慤)을 사옹원 정(司饗院正)으로, 민기(閔箕)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권용(權容)을 부교리(副校理)로, 박민헌(朴民獻)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丁巳.○傳于政廳曰.刑曹叅判缺.其以都承旨金益壽充之.副提學柳辰全.今爲承旨.以直提學韓岬陞差.○以丁玉亨爲議政府左贊成.崔輔漢爲右贊成.許磁爲判中樞府事.任權爲議政府左叅贊.閔齊仁爲吏曹判書.金光準爲戶曹判書.尙震爲兵曹判書

史臣曰.震.性頑鈍.患得患失.與世俯仰.能爲向背.常以東宮無子.厚結尹元老.爲他日地.仁廟卽位初.黜爲慶尙監司.至是李芑力薦.拜是職
 尹思翼爲工曹判書.宋謙爲知中樞府事.權應昌爲吏曹叅判.金益壽爲刑曹叅判.金弘胤爲戶曹叅議.蔡世英爲兵曹叅議.任虎臣爲承政院都承旨.柳辰全爲左承旨.韓岬爲弘文館副

提學.趙士秀爲成均館大司成.鄭彦慤爲司饗院正.閔箕爲弘文館校理.權容爲副校理.朴民獻爲司諫院正言

《明宗實錄 卷第4, 41面》

명종 원년 12월 29일(신해)

류진동(柳辰全)을 승정원 도승지로, 조언수(趙彦秀)를 좌승지로, 민세량(閔世良)을 우승지로, 한두(韓蚪)를 좌부승지로, 채세영(蔡世英)을 우부승지로, 김백순(金伯醇)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辛亥.以柳辰全爲承政院都承旨.趙彦秀爲左承旨.閔世良爲右承旨.韓蚪爲左副承旨.蔡世英爲右副承旨.金伯醇爲同副承旨.

《明宗實錄 卷第4, 92面》

명종 원년 12월 30일(계축)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참판 권응창(權應昌)의 집과 담을 사이에 두고 대문을 서로 마주하였 습니다. 정조(政曹)의 당상관이 문을 마주하여 살고 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도 승지 류진동(柳辰全)이 지금 이방(吏房)이 되었는데, 그 집도 신의 집과 또한 가깝습니다. 신이 육경에 갑자기 승진되었고 또 이조의 장관이 되어서는 항상 황공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판서와 참판과 승지가 모두 한마을 사람이 라서, 더욱 황공합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이 온당치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신들 도 각자 미안하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을 알았다. 그렇다면 참판을 체직시키라.” 하였다.
癸丑.○吏曹判書金光準啓曰.臣家與叅判權應昌家.隔牆對門.政曹堂上.對門而居.至爲未安.都承旨柳辰全.今爲吏房.其家與臣家又近.臣驟陞六卿.又長銓曹.常懷惶恐之心.今者判書叅判承旨.皆是一洞之人.尤爲惶恐.非但於見聞未便.臣等各自未安.請達臣職.答曰啓意知道.然則叅判可達.

《明宗實錄 卷第4, 92面》

명종 2년 1월 22일(을해)

○간원이 아뢰기를,
“도승지(都承旨) 류진동(柳辰全)과 내섬시 정(內贍寺正) 김노(金魯)는 하룻동안 집사(執事)를 하였다는 이유로 친히 증가(重加)할 것을 특별히 명하셨으니 작상(爵賞)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놀라와 하고 있으니 아울러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류진동은 부묘 때 시위(侍衛)였고 김노는 신주를 쓴 사람이므로 대례(大禮)를 위하여 특별히 논상(論賞)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5일간 논계하였는데 윤택하지 않았다.

乙亥.○諫院啓曰.都承旨柳辰全.內贍寺正金魯.以一日執事.特命親受重加.爵賞之濫.莫甚於此時.物情極爲駭愕.請並還收成命.答曰.柳辰全乃附廟時侍衛也.金魯.乃題主者.故爲大禮各別論賞矣.不可改也.論之五日.不允. 《明宗實錄 卷第5, 7面》

명종 2년 1월 27일(경진)

○심연원(沈連源)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남세건(南世健)¹⁶⁷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류진동(柳辰全)을 승정원 도승지로, 민기(閔箕)를 홍문관 응교로, 류잠(柳潛)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원록(李元祿)을 홍문관 교리로, 권용(權容)을 부교리로, 이충남(李冲南)을 공조 좌랑으로, -문음(門蔭)으로 이기(李芑)의 동서이다.- 심수경(沈守慶)을 사간원 정언으로, 남궁 침(南宮忱)을 홍문관 수찬으로, 이감(李戡)을 부수찬으로, 안명세(安名世)를 승정원 주서로, 임보신(任輔臣)을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로, 김익(金翼)·이억상(李億祥)을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로, 민제인(閔齊仁)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여원군(驪原君)으로, 조운손(曹閔孫)을 지중추부사로, 봉승종(奉承宗)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庚辰.○以沈連源爲議政府左叅贊.南世健爲刑曹參判.柳辰全爲承政院都承旨.閔箕爲弘文館應教.柳潛爲司憲府持平.李元祿爲弘文館校理.權容爲副校理.李冲南爲工曹佐郎.門蔭人也李芑之同壻沈守慶爲司諫院正言.南宮忱爲弘文館修撰.李戡爲副修撰.安名世爲承政院注書.任輔臣爲弘文館博士.金翼李億祥爲藝文館檢閱.閔齊仁爲知中樞府事驪原君.曹閔孫爲知中樞府事.奉承宗爲忠淸道兵馬節度使 《明宗實錄 卷第5, 10面》

명종 2년 3월 30일(신사)

○전교하였다.

“도승지 류진동(柳辰全)을 대사헌에 단망(單望)으로 주의(注擬)하라.”

○송기수(宋麒壽)를 추성정난위사공신(推誠定難衛社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덕은군(德恩君)으로, 이미(李薇)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류진동(柳辰全)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연수(趙彦秀)를 승정원 도승지로, 정응두(丁應斗)를 동부승지로, 이몽량(李夢亮)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천우(金天宇)를 사헌

167) 남세건(南世健) : 1482~1552. 중종 19년(1524) 문과 급제. 형조 정랑, 지평, 교리, 장령을 거쳐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형조 참판, 병조 참판, 호조 참판, 경기도 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두 아들 응운(應雲)과 응룡(應龍) 또한 문과 급제후 현달하였다. 바로 위에 형이 이조 참판을 역임한 남세준(南世準)인데 그 손녀가 류진동의 셋째 아들 청하현감 류희(柳淮)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부 집의로, 오상(吳祥)을 사간원 사간으로, 윤우(尹雨)·우상(禹鎔)을 사헌부 장령으로, 진복창(陳復昌)을 장악원 첨정(僉正)으로, 강위(姜偉)·남궁 침(南宮忱)을 사헌부 지평으로, 박공량(朴公亮)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무강(李無疆)을 성균관 직강으로, 윤인서(尹仁恕)를 소격서 영으로, 박승임(朴承任)·한지원(韓智源)을 사간원 정언으로, 윤결(尹潔)을 승문원 교검으로 삼았다.

辛巳。○傳曰。都承旨柳辰全。大司憲單望擬之。○以宋熙壽爲推誠定難衛社功嘉善大夫德恩君。李薇爲同知義禁府事。柳辰全爲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趙彥秀爲承政院都承旨。丁應斗爲同副承旨。李夢亮爲司諫院大司諫。金天宇爲司憲府執義。吳祥爲司諫院司諫。尹雨禹鎔爲司憲府掌令。陳復昌爲掌樂院僉正。姜偉南宮忱爲司憲府持平。朴公亮爲司諫院獻納。李無疆爲成均館直講。尹仁恕爲昭格署令。朴承任韓智源爲司諫院正言。尹潔爲承文院校檢

《明宗實錄 卷第5, 41面》

명종 2년 5월 11일(신유)

○대사헌(大司憲) 류진동(柳辰全) 등이 상소하기를,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은 무상한 것입니다. 다스려지는 데에도 반드시 까닭이 있고 어지러워지는 데에도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그 시초에는 정치가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지만 치란(治亂)의 형태는 하는 바에 따라 곧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형제·부부·장유(長幼)가 각기 도리를 얻고 음양(陰陽)이 순조로와 요열(妖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스려지는 상징입니다. 때문에 치란의 형태를 잘 보는 사람은 정치에서 보지 않고 그 징후에서 살핍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비록 어리신 나이에 보위(寶位)를 이으셨으나 타고난 영특함과 민첩하신 지혜에다가 학문에도 부지런하여, 날마다 세 차례 경연에 나오십니다. 성렬 왕후(聖烈王后)¹⁶⁸께서는 우근 공겸(憂勤恭儉)하시고 자인 명숙(慈仁明肅)하시니 송(宋)나라의 선인 태후(宣仁太后)¹⁶⁹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렴청정(垂簾聽政)하신 이래 큰 실정(失政)이 없었으니 의당 지치(至治)의 아름다운 소문이 천하에 퍼져나가며 재앙과 여기(沴氣: 악한 기운)가 없어지고 복록과 상서가 아울러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해서 수년 사이에 해와 달은 밝음을 잃었고 별들은 운행이 어긋나며, 음양은 절서를 잃어 겨울에 꽃이 피고 여름에 눈이 내리는가 하면 장마와 가뭄이 불시에 밀어닥쳐

168) 성렬 왕후(聖烈王后) : 그 당시 수렴청정(垂簾聽政)하던 명종(明宗)의 모후(母后)를 말함. 성렬은 존호(尊號)임.

169) 선인 태후(宣仁太后) : 송 영종(宋英宗)의 비(妃). 성은 고씨(高氏). 고후(高后)라고도 함. 아들 신종(神宗)이 죽자 여섯째 손자인 철종(哲宗)을 세우고 수렴청정하면서 많은 인재를 등용시켜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게 하였다. 《宋史 卷二百四十二》

여름은 가물고 가을은 장마가 지며, 전염병이 치성하여 백성과 만물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도적이 횡행하여 도성 안에서조차 도적질을 합니까?

그 밖에도 여름 우박 겨울 우뢰며 짙은 안개가 끼는 변괴가 끊임 없이 잇달고 기강은 날로 무너지며 정령(政令)은 날로 어그러져 안팎의 모든 벼슬아치는 헤이하어 제대로 거행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길에 가득하고 분수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조정에 가득하여 나라는 날로 가난하여지고 백성은 날로 빈곤하여져 갑니다. 지금은 순양(純陽)의 달인데도 천지의 기운은 막혀 위축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날씨가 차기까지 합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샘은 말라붙었고 땅도 단단히 말라 붙어 봄 농사를 망쳐 보리 이삭은 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형태로 본다면 치세(治世)의 조짐이 전혀 아닙니다.

옛사람의 말에 ‘재앙은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심한 재앙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삼가하여서 항시 두려운 기틀과 헤아리지 못할 근심이 남 모르는 속에 숨겨져 있음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상하가 직무를 게을리하여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언(求言)하는 전지(傳旨)가 여러 차례 내려졌으나 누구 한 사람 천관(天關 : 임금의 있는 곳)을 두드려 숨기지 않고 말을 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한두 가지 일을 기록한 상소가 있었으나, 전하께서는 이것이 모두를 말한 것이며 그 잘못을 고쳤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백성들은 곤궁하여지고 재앙은 극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자연적인 재앙보다 훨씬 폐해가 심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말하려 하지 않는 까닭을 구해 보지 않으십니까.

상림(桑林)의 여섯 가지 자책(自責)¹⁷⁰⁾이 빠른 감응을 불러 일으킨 까닭은 깊은 뉘우침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하에게는 성탕(成湯) 같이 뉘우치는 마음은 없고 하늘이 재앙에 대응한다는 것이 전지를 내려 구언하는 것과 원옥(冤獄)을 펴 심리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구언하는 것과 원옥을 펴 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의례적인 것으로 하나의 허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태도로 구언하려 하면 사실을 말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태도로 형벌받는 사람을 불쌍해 하면 단지 죄인 집안의 종이나 풀려납니

170) 상림(桑林)의 …… 자책(自責) : 은(殷) 나라 탕(湯) 임금이 등극한 후 7년 동안 연이은 가뭄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자 상림(桑林)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고서 여섯 가지로 자신을 책망하기를 “정치가 간결치 않았는가[政不節], 백성들이 직업을 잃었는가[民失職], 궁실이 사치스러운가[宮室崇], 여말이 성했는가[女譎盛], 뇌물이 횡행했는가[苞苴行], 참소하는 사람이 많았는가[讒夫昌]” 하니 이 말을 마치고도 전에 큰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史略 卷一》

다. 이 같은 것으로 하늘에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너무 멀지 않겠습니까.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되는 까닭에 천변(天變)이 위에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한유(漢儒)처럼 어떤 일에 감응한 것이라고 지적¹⁷¹⁾할 수는 없지만 그 재앙이 오게 된 연유를 찾아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과연 하늘을 두려워하신다면 어찌하여 돌이켜 정령에서 구해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정령 중에는 말할 만한 잘못이 많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인주(人主)는 깊은 구중 궁궐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한 몸으로 온갖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정치의 잘잘못과 민생의安危(安危)를 두루 알 수 없는 까닭에 반드시 눈이 되고 귀가 될 관직을 두어 아는 것은 모두 말하게 하고 말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모두 즐겨 말하려 하여 충명이 날로 넓어져 가고 백성들의 실정이 반드시 주달될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유충(幼冲)하신 자질(資質)로 방락(訪落)의 날을 당하셨으니¹⁷²⁾ 즐겨 물으시고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급한 일입니다. 진실로 고지식한 곧음을 포용하고 온화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감히 우뢰와 번개 같은 군주의 위엄을 범하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올리겠습니까. 요사이 전하께서 간쟁을 받아들이는 때를 살펴보면 거절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없고 자신만이 옳다 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은 도(道)에서 찾아 보지 않고, 뜻에 순종하는 말은 도가 아닌 데에서 찾아 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병통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르고서도 사람들이 진언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뒷날의 화란이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늘도 또한 미리 견고(謹告)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한선제(漢宣帝)가 말하기를 ‘못 백성이 전리(田里)에서 편안하여 걱정 근심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정치가 화평하고 소송이 잘 다스려져서이다. 나와 이것을 같이 할 사람은 오직 어진 이천석(二千石 : 지방관)들이다.’ 하였습니다. 백성들과 가까운 관리로는 수령(守令)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된 바가 중한데도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군(郡)들 중에서 상의 덕스러운 뜻을 이어 받아

171) 한유(漢儒)처럼 …… 지적 : 한유는 경 방(京房)을 가리킴. 경방은 특히 『주역(周易)』에 뛰어났는데, 그가 저술한 『경씨역전(京氏易傳)』에서는 재앙의 발생에 대해 그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자세히 적었다.

172) 방락(訪落)의 날을 당하셨으니 : 방락은 《詩經 周頌》의 편명. 이 시는 성왕(成王)이 무왕(武王)의 3년상을 지내고 지은 것으로, 장차 무왕의 자취를 이어 정사를 펼 것을 다짐한 것이다. 전하여 여기서는 명종이 성왕처럼 막 등극하였음을 뜻한 말이다.

백성 사랑하기를 힘쓰는 수령이 몇이나 됩니까.

연이어 큰 재앙을 만났고 재차 중국 사신을 치뤘으며 거기에다가 장마와 가뭄이 서로 잇달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곤궁이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허다히 굶어 모아 사육을 채우는 자만 보이고 아직까지 무휼하여 안집(安集)하게 하는 수령이 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수령이 되어 나갈 때에는 짐바리가 수십에 불과한데 돌아올 때에는 적다 해도 백여 수레는 되고 많을 경우에는 2백 수레나 됩니다. 그 가운데에 간교한 자는 또 나누어 운반하여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아, 그들이 실어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백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과 원망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 잘못은 어진지 어리석은지, 착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간독(簡牘: 청탁하는 편지)하는 자의 높낮음만을 비교하여 차례대로 제수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너나 없이 모두 그러하여 비록 감사(監司)라 하더라도 모두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가려 제거한다 하지만 뒤에 이어 온 자가 전 수령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가는 번거로운 일을 해서 거듭 백성들을 곤궁하게 합니까.

지난날 조정에서 시험삼아 잘한 사람은 올려주고 못한 사람은 쫓아내어 격려하려 하자, 심한 경우에는 혹 왕래하는 빈객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을 선전하기도 하고 아전이나 백성들을 구슬러 공적을 기리고 은혜를 기원(祈願)하게 하여, 마침내 높이 뻗히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찌다가 애쓰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직분을 돌보면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꺼리고 밑에 있는 자들이 원망하여 미처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못 비방이 먼저 일어나 도리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기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간교한 무리들은 잘 섬기는 것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널리 사귀는 것으로 명예를 노립니다. 때문에 벼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성과 칭찬이 은연 중에 퍼져 많은 폐단을 뒷사람에게 끼쳐 주면서도 먼저 권장과 허여를 받아 승진됩니다. 그러니 간교한 자가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명예를 노리는 데에는 빈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거두는 것은 갈수록 많아지고 백성들은 갈수록 곤궁하여지는 것입니다. 부자·형제·처자가 뿔뿔이 헤어져 안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 화기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명기(名器)는 인주(人主)가 어진 선비에게 주어 함께 천공(天工)을 대신하는 것이니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소관(小官)이라도 반드시 그 그릇에

맞은 뒤에 주어야 하며 높은 벼슬의 막중한 임무는 국가에서 현덕(賢德)한 이를 대우하는 것이니 더더욱 삼가야 합니다. 지금 당상관(堂上官)은 막중한 자리입니다. 반드시 말을 만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여야 함이 분명합니다. 지난해에는 당상관이 거의 3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사(文士)는 7~8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반(武班)을 우대함이 지극했으니, 당연히 간성(干城)의 장수가 줄줄이 나고 숲처럼 들어서서 천리 밖에서 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방의 장수 한 사람이 빌 경우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하면서 매번 사람이 없다고 아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높게 받들고 장려하였는데도 쓸 때를 당해서는 쓸 만한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당상관으로 첨사(僉使)나 우후(虞侯) 한 자리를 맡지 못한다면 명기를 함부로 한 것이며 또한 남용하여 헛되이 제수한 것입니다.

아, 국명(國命)은 하늘의 뜻에 의지하고 하늘의 뜻은 인정(人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인정에 순응하며, 인정에 순응하여 다스리는 까닭에 정치의 기강이 이뤄져 천심(天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에서 하는 모든 처사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마땅함을 얻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복(悅服)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복시킬 수 있다면 하늘의 뜻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사자(子思子)가 ‘중화(中和)를 이룩하면 천지가 제자리하고 만물이 육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중화와 위육(位育)에 대한 공부는 학문 중에서 최고의 공부입니다. 전하께서도 힘써야 하실 것입니다. 학문의 조예란 별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 스스로 얻는 데에 있습니다. 내 작은 한 생각으로부터 북돋고 가꾸며 미루고 넓혀서 재성 보상(裁成輔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진력하면 그 공화(功化)의 묘(妙)가 형상도 화평하고 기운도 화평하도록 넘쳐나 천지의 화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맑은 기풍은 사라져 가고 음특(陰慝)한 기운이 자라나, 비·우박·눈·서리의 변괴가 어느날이고 보고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하께 바라는 것이 어찌 오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이 배운 바는 이에 불과하지만 공효(功效)의 극(極)에는 필연적인 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오늘부터 계신 공구(戒愼恐懼)를 일삼으시어 미루고 쌓아서 기울어지고 치우친 바 없이 하며, 못 변화에 대응하는 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한다면 당장에 중화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후일 천지가 제자리하고 만물이 육성되는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활하고 사정에 너무 어둡다 마시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기울여 주소서. 신들은 차오르는 떨림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인군이 부덕한 소치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올라 학문이 넓지 못하고 생각도 깊지 못하다. 비록 공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성이 위로 하늘의 견책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앙이 거듭 내리는데도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채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상소한 뜻을 보니 매우 적절하고 또 당연한 것이다.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더욱 유의하여 성찰하겠다.”

하였다.

辛酉.○大司憲柳辰全等上疏曰.伏以治亂無常.而其治也必有所以.其亂也亦必有所以.當其始也.雖若無大異於其政.而治亂之形則隨其所爲而卽形.蓋父子兄弟夫婦長幼.各得其理.而陰陽順序.妖孽不作者.治之象也.故善觀治亂之形者.不于其政而于其象.今我 殿下.雖曰冲年嗣位.英睿天成.聖智敏洽.加以勤於學問.而日三經筵. 聖烈王后.憂勤恭儉.慈仁明肅.雖宋之宣仁.無以加矣.而垂簾以來.無甚失政.宜見至治馨音.昭升于天.而災沴消除.福祥荐臻.奈何數年之間.日月失明.星辰錯行.陰陽失序.冬花夏雪.雨暘不時.而夏旱秋澇.癘疫繁興.民物耗盡.盜賊橫行.攻劫都中.其他夏雹冬雷陰霧之變.相繼不絕.而紀綱日毀.政令日乖.內外百司.怠緩不舉.愁嘆盈路.冒濫盈朝.而國日益貧.民日益困.今又純陽之月.氣塞而迫.風狂而淒.自春不雨.井泉枯渴.土脉不敷.南畝輟耕.來麩不穗.以形觀之.則大非治世之象也.古人云災不虛生.必有所召.今日之災甚矣.豈無所以乎.此正凜然增惕.恒懼可畏之幾.不測之憂.隱於冥冥之中.而上下恬嬉.慢不動念.求言之旨屢下.無一人叩天關而極言不諱.縱或有一二錄事之陳疏.殿下其以是爲盡言.而補其闕失者乎.今民窮災極.人莫有言者.夫人之不言.有甚於天災. 殿下何不求其不言之故乎.桑林之六責.所以致感應之速者.以其悔悟之甚.有以動天也.今 殿下無成湯悔悟之心.而所以應天者.則曰下旨求言也.伸理冤獄也.夫求言伸冤.是固美意.而其實則不過循例一虛文而已.是以以之而求言.則一無言事者.以之而恤刑.則只放罪人之家僮也.猶是而欲以應天.不亦遠乎.人事感於下.故天變應於上.今雖不可如漢儒指以爲某事之應.亦不可不求其所以致災之由. 殿下果能畏天.何不反求吾政令之間乎.方今政令得失.可言者多矣.故舉其一二言之.夫人主深居九重.以一身之微.御萬機之煩.政事之得失.民生之休戚.不可以周知.必設耳目之官.使之知無不言.言無不從.故人樂盡言.而聰明日廣下情必達.今 殿下以幼冲之資.當訪落之日.好問納諫.在所當急.苟不包容狂直.和顏色而受之.則誰敢犯雷霆之威.而進逆耳之言哉.近見 殿下於納諫之際.無弗弗之美.有訑訑之色.逆耳之言.不求諸道.遜志之言.不求諸非道.而自用之病日深.如是而欲人之進言.不亦難乎.安知他日之禍亂.不基於此.天亦不爲之預示譴告也.昔漢宣帝有言曰.庶民安於田里.無愁嘆之聲者.政平訟理也.與我共此者.其惟良二千石乎.蓋親民之官.莫守令若也.而所係關重.今我列郡承上德意.務盡字牧者有幾人哉.連遭

大恤.再經華使.加以水旱相仍.年穀不登.民之困窮.未有甚於此時者也.而多見其剝割而益已.未聞有撫恤而安集之者.當其出守也.資裝行李.不過數十.而及其還也.小不下百餘馱.多或至二百.其奸巧之甚者.又有分運而先輸之.嗟乎.其所輸來者.不生於天.不生於地.一出於吾民.則民之愁嘆怨怒.安所紀極.其失在於不擇賢愚.不問減否.惟視簡牘之崇卑.而第授之.故彼此皆然.雖監司不能一切盡去之時.或拔而逐之.後之繼來者.猶前踵也.則何用去來之煩.而重困吾民乎.頃者朝廷.試令陞黜而激礪之.甚者或釐往來賓客之口.或誘令吏民.頌績祈恩.而竟取高選者有之.寧不寒心.非徒此也.幸有勤恪之人.悉心致力.以治其職.則同列者忌之.爲下者怨之.績效未著.羣謗先集.反致黜罰者.寧不解體乎.巧佞之徒.善事以銜能.廣交而市譽.故居官未入.聲譽陰洽.雖多積弊.以遺後先.受獎與而超遷之.則巧佞者.安所懲乎.其所以銜能市譽者.其可徒手而爲之乎.是以.歛愈繁民就窮.父子兄弟妻子離發之.不可保安.得不傷和氣乎.至於名器.人主所與賢士.共代天工者.不可以瀆.故雖小官.必適其器.然後授之.至於高官重任.乃國家所以待賢德者.尤不可不慎.今夫堂上.重任也.其必擇任而授之較然矣.前年堂上之多.幾至三十.其中文士.不過七八.則國家之尚武至矣.宜乎干城之將.駢出而林立.折衝千里之外矣.然而闕一邊將.則銓曹注擬之際.每啓乏人.何其崇獎之隆.而臨用無可用之材乎.以堂上而不能當一僉使虞侯之任.則名器之瀆.甚矣.而虛授之濫亦甚矣.嗚呼.國命依于天意.天意附乎人情.是以爲國者.必順人情.而爲理順人情.故政紀可成.而天心可享.今朝廷凡百處置者.未知皆盡得宜.而有以悅服乎人心乎.人心悅服.則天意可回矣.子思子曰.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夫中和位育之功.則乃學問之極功.在 殿下.不可不勉者也.蓋學問之造無他.在乎反求諸已而自得之.自吾一念之微.培植推廣.以至裁成輔相.無一事之不盡.則其功化之妙.極乎形和氣和.而天地之和應矣.今陽淑消而陰慝長.雨雹霜雪之變.報無虛日.而必以是望 殿下者.豈不迂濶乎.然臣等之所學.則不過乎是.而其功效之極.則有必然之妙.殿下誠能自今日從事於戒愼恐懼之中.推而積之.以至於無所偏倚.而酬酌萬變者.無少差謬.則雖不能致和於今日.豈不爲他日位天地育萬物之基乎.伏願 殿下.勿以迂遠而更加潛心焉.臣等不勝激切屏營之至.答曰大抵災變之生.皆人君不德之所致.予以冲年卽位.學問未廣.計慮亦淺.雖有恐懼之心.誠未能仰答天譴.故降災無常.罔知所措.徒極憂慮而已.今觀疏意.至切且當.豈不激厲乎.更加留省焉.

《明宗實錄 卷第5, 56面》

명종 2년 5월 19일(기사)

상이 조강과 석강에 나아갔다.

○류진동(柳辰叟)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안현(安珪)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봉(林鵬)을 장례원 판결사로, 이명(李莫)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원계검(元繼儉)을 사헌부 집의로, 윤인서(尹仁恕)를 사간원 사간으로, -윤인서는 처음에 간신 김안

로에게 붙어 옥서(玉署 : 홍문관의 별칭)의 직책에 제수되었다. 안로가 죽음을 당한 뒤로 공론의 지탄을 받아 얼굴을 내밀지 못한 지 오래였다. 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 거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다시 이 벼슬에 임명된 것은 윤원형(尹元衡)에게 붙어서 아첨하였기 때문이다. - 이탁(李鐸)을 의정부 사인으로, 윤부(尹釜)와 홍담(洪曇)을 사헌부 장령으로, 진복창(陳復昌)을 홍문관 부응교로, 류감(柳堪)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사필(李士弼)을 사간원 헌납으로, 심봉원(沈逢源)을 홍문관 교리로, 성세장(成世章)을 부교리로, 심수경(沈守慶)을 사간원 정언으로, 원호변(元虎變)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己巳.上.御朝夕講○以柳辰全爲漢城府右尹.安珰爲司憲府大司憲.林鵬爲掌隸院判決事.李莫爲司諫院大司諫.元繼儉爲司憲府執義.尹仁恕爲司諫院司諫.仁恕初附姦臣金安老得除玉署之職自安老敗後爲公論所駁不得見容者久矣自乙巳以後騰楊顯秩無所不忝又拜是職以諂附於元衡故也李鐸爲議政府舍人.尹釜洪曇爲司憲府掌令.陳復昌爲弘文館副應教.柳堪爲司憲府持平.李士弼爲司諫院獻納.沈逢源爲弘文館校理.成世章爲副校理.沈守慶爲司諫院正言.元虎變爲弘文館修撰.

《明宗實錄 卷第5, 63面》

명종 2년 윤 9월 15일(계사)

양사가 완의 일을 거론하며 다섯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부사 홍언필 등이 아뢰기를,

“완의 죄에 대해서는 신들이 이미 남김 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그 사실이 추안에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만약 그것을 살펴보면 성상께서도 마땅히 함께 모의한 점을 환하게 아실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대의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정(私情)은 한 개인의 집안에서만 행해질 뿐입니다. 군신 간의 도리는 진실로 사은(私恩)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골육 간에 서로 죽인다는 것은 진(晉) 나라처럼 서로 쟁탈하는 경우를 말한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신들이 어찌 우연히 생각하고서 감히 그렇게 아뢰었겠습니까. 속히 대의로써 단정을 내리소서. 이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릇 세 번이나 발의(發議)하여 그만 두지 않는 이유는 꼭 윤허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상께서는 늘 ‘인륜의 대변(大變)은 차마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인륜의 중대한 일은 군신 관계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의 사정으로 군신의 대의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단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완의 일은, 사정 때문에 왕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만들었거나 자신이 모의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의로만 따지고 인정과 천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극죄(極罪)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였는데, 홍언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추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자애의 정을 잊지 못하여 그렇게 유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대의를 중하게 여겨야지, 진실로 사정을 용납할 곳이 아닙니다. 예부터 제왕이 은의(恩義)와 정법(情法)에 있어서 어찌 우연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종사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두 사은(私恩)으로 대의를, 사정으로 왕법을 폐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신들이 부득이 윤택을 받아야 물러가겠습니다. 속히 대의로써 단정하소서.”

하였다. 병조 판서 상진(尙震),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한성부 판윤 송겸(宋謙), 이조 판서 김광준(金光準), 예조 판서 윤원형(尹元衡), 좌운 나세찬(羅世纘), 예조 참판 김만균(金萬鈞), 호조 참판 신영(申瑛), 형조 참판 남세건(南世健), 우윤 류진동(柳辰全), 호조 참의 김홍윤(金弘胤), 병조 참의 홍춘경(洪春卿)¹⁷³, 공조 참의 원혼(元混), 이조 참의 심광언(沈光彦), 병조 참지 심통원(沈通源)이 아뢰기를,

“완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이므로, 사정 때문에 천토(天討)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주공(周公)이 변(變)에 대처했던 것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과 대의의 경중이 자연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히 조정의 의논을 따르시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예로부터 형제 간에는 비록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잔당이 다 제거되면 인심이 저절로 진정될 것인데, 어찌 억지로 대죄로 다스려서 형을 죽였다는 이름을 만세에 남겨야 하겠는가. 결코 단정할 수 없다.”

하였다.

癸巳.兩司論訐事.五啓不允.領府事洪彥弼等啓曰.訐罪.臣等已盡啓之無餘蘊矣.其情狀.昭著於推案.若下覽則.自 上當洞照其與謀也.朝廷以大義爲重.而私情只行於一家而已.君臣之義.固不可以私恩廢之.所謂骨肉相殘者.如晉朝相爭相奪之類也.非此之謂也.臣等豈偶然計而如是敢啓乎.請速快斷以大義.此事.自始至今.凡三發而不已者.不得已得請而後已故也.自 上每曰.人倫大變.不可忍爲.所謂人倫之重大者.莫大於君臣.烏得以兄弟之私

173) 홍춘경(洪春卿) : 1497~1548.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명중(明仲) 호는 석벽(石壁) 본관은 남양(南陽) 문과에 급제, 정자(正字)를 거쳐 병조·예조 참의, 이조 참의를 역임했다. 중종의 묘지문을 지었으며 김생(金生)의 체를 잘 썼다. 증손자 홍명구(洪命耆)와 류진동의 손자 류림(柳琳 父 柳淮)이 병자호란 때 금화(金化) 전투의 대첩 훈공으로 금화 충렬사(忠烈祠)에 같이 배향되어 향사하고 있다.

情.廢君臣之大義乎.請卽快斷.答曰.岢事.以私情不得廢王法當矣.然此非自作自謀之事.豈可諉諸大義.不揆之人情天理乎.反覆計之.決不可斷以極罪.彥弼等再啓曰.推案自 上細覽.則可知其罪矣自 上不忘慈愛之情.而留難如此.然朝廷以大義爲重.固不可容其私情之地也.自古帝王.於恩義情法.豈偶然計之.然以宗社爲重.故皆不得以私恩廢大義.以私情廢王法矣.此事臣等不得已得請而後退矣.請速斷以大義.兵曹判書尙震.工曹判書尹思翼.戶曹判書鄭世虎.漢城府判尹宋璫.吏曹判書金光準.禮曹判書尹元衡.左尹羅世纘.禮曹叅判金萬鈞.戶曹叅判申瑛.刑曹叅判南世健.右尹柳辰全.戶曹叅議金弘胤.兵曹叅議洪春卿.工曹叅議元混.吏曹叅議沈光彥.兵曹叅知沈通源啓曰.岢之罪.關係 宗社.不可以私情廢天討.周公處變.所不得已.情義輕重.自有所在.請亟從廷議.以快物情.答曰自古兄弟之間.雖有相殘.事勢不得已然也.此則餘孽盡除.人心自定矣.何可強置大罪.垂殺兄之名於萬世乎.決不可決焉.

《明宗實錄 卷第6, 33面》

명종 2년 10월 12일(기미)

○황헌(黃憲)을 한성부 판윤으로, 송겸(宋璫)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심통원(沈通源)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정언각(鄭彦慤)을 동부승지로, 원계검(元繼儉)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류진동(柳辰全)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영현(李英賢)을 사간으로, 심봉원(沈逢源)·윤우(尹雨)를 사헌부 장령으로, 조광옥(趙光玉)·남궁 침(南宮忱)을 사헌부 지평으로, 박영준(朴永俊)을 사간원 헌납으로, 조방중(趙邦宗)·김희삼(金希參)을 정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정언각은 본디 사독 경복(邪毒傾覆)한 사람인데 정미년의 화를 가장 먼저 일으켜 사람을 죽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았다. 그런데 그를 후설(喉舌)의 자리에 두어 왕명의 출납을 맡겼으니, 아, 위태하도다. 己未.○以黃憲爲漢城府判尹.宋璫爲司憲府大司憲.沈通源爲承政院右副承旨.鄭彦慤爲同副承旨.元繼儉爲弘文館副提學.柳辰全爲司諫院大司諫.李英賢爲司諫.沈逢源尹雨爲司憲府掌令.趙光玉南宮忱爲司憲府持平.朴永俊爲司諫院獻納.趙邦宗金希參爲正言.

史臣曰.彥慤.本一邪毒傾覆之人也.首起丁未之禍.斬伐士林.人皆切齒.而使居喉舌之地.掌出納之任.嗚呼殆哉

《明宗實錄 卷第6, 49面》

명종 2년 11월 6일(계미)

대사헌 송겸(宋璫), 대사간 류진동(柳辰全), 집의 이무강(李無疆), 사간 이영현(李英賢), 지평 이사필(李士弼), 헌납 박영준(朴永俊), 정언 조방중(趙邦宗)·김희삼(金希參)이 아뢰기를,

“김승보와 이승호의 죄는 매우 중대하니, 그 죄로 죄 주어야 하는데, 신들이 단

지 밖으로 내치라고만 아뢰었으니, 잘못함이 가볍지 않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승보와 이승호는 전명(傳命)할 때에 비록 작은 잘못이 있었으나, 이미 밖으로 내쳤으니 어찌 그보다 더 중한 벌을 주어야 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癸未.大司憲宋璫.大司諫柳辰全.執義李無疆.司諫李英賢.持平李士弼.獻納朴永俊.正言趙邦宗金希參啓曰.金承寶李承豪.罪犯極爲關重.當以其罪罪之.臣等只以竄外啓之.所失非輕.請逭.答曰金承寶李承豪傳命之際.雖有小失.已竄於外.豈可過於此而加重乎.勿辭.

《明宗實錄 卷第6, 53面》

명종 2년 11월 19일(병신)

○이기가 아뢰기를,

“옛날에 소강절(邵康節)은 일신(一身)을 위하여 큰 추위와 큰 더위에는 항상 출입을 하지 않았습시다. 상의 기후(氣候)가 비록 화평하지만 조종께서 주신 몸이 아직 기혈(氣血)이 장(壯)하지 못하시니 이러한 극한(極寒)에 함부로 거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양전(兩殿)에 친제(親祭)하는 것은 조종(祖宗)들의 영(靈)에게 정성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불행한 일이라도 있게 되어 성체(聖體)가 조섭(調攝)을 잃게 되면 조종의 영혼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하고, 류진동(柳辰全)과 윤우(尹雨)가 아뢰기를,

“대신의 아뢰음이 마땅합니다. 이제 만약 기일이 되어서 추위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선조(先祖)를 받드는 도리에 어긋나니, 내년 봄으로 몰려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丙申.○李芑曰.昔邵康節.爲一身.若大寒大暑.則不常出入.自上氣候雖平和.以祖宗遺體.氣血未壯.如此極寒.不可輕易舉動也.今者親祭兩殿.將以誠奉祖宗之靈.然萬有不幸.使聖體失攝.則祖宗之靈.其得安乎.柳辰全尹雨啓曰.大臣之啓當矣.今若臨期.寒沍不得行之.則有違於奉先之道.請以明春退行何如.

《明宗實錄 卷第6, 58面》

명종 2년 12월 3일(경술)

대왕대비가 사정전에 나아가 수렴하고, 상 역시 주렴 밖에 나아갔다.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봉, 판중추부사 허자(許磁), 좌찬성 민제인(閔齊仁), 우찬성 황헌(黃憲),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우참찬 임권(任權), 공조 판서 윤사익(尹思翼), 형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이조 판서 김광

준(金光準), 대사헌 송겸(宋謙), 대사간 류진동(柳辰全), 부제학 원계검(元繼儉)이 들어와 동서로 부복하였다. 자전이 하교하기를,

“올해는 흉년이 크게 들어 걱정이 끝이 없는데, 해의 이변이 또한 이러하다.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덕이 없는 내가 어린 주상을 보도하면서 잘못된 일이 많기 때문에 천변이 이에 이른 것이다. 옛날 역사에 세 해가 한꺼번에 나타난 일과 다섯 해가 한꺼번에 나타난 일은 있지만 해처럼 생긴 것이 정양(正陽)에 서로 접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심한 재변이다. 옛날에 엄자릉(嚴子陵 : 자릉은 엄광(嚴光)의 자)이 황제의 배 위에다 발을 얹자 즉시 하늘이 이변을 보였다. 그러니 지금의 재변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조정의 중론(衆論)을 듣고자 하니 숨김 없이 다 말하라.”

하였다.[중략]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해의 변괴가 이러하니 마땅히 조정에서 살펴야 하며, 병상(兵象)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대비가 있으면 환난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이런 때에 준비를 다해 병란을 막아야 합니다. 병사(兵使)·수사(水使)의 군관(軍官)은 먼저 실제로 무재(武才)가 있는가를 알아 본 연후에 거느리고 가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간찰(簡札)에 의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거느린 군관은 모두 용기가 없고 미열(迷劣)한 무리로 한갓 군졸을 침해할 줄이나 아니, 어찌 국가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庚戌. 大王大妃御思政殿垂簾. 上.亦御于簾外.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判中樞府事許磁.左贊成閔齊仁.右贊成黃憲.左叅贊沈連源.右叅贊任權.工曹判書尹思翼.刑曹判書鄭士龍.戶曹判書鄭世虎.吏曹判書金光準.大司憲宋謙.大司諫柳辰全.副提學元繼儉.入伏于東西. 慈殿教曰.今歲凶荒太甚.憂慮罔極.日變又如是.人事失於下.則天變應於上.予以薄德.輔導少主.必多謬誤.故天變至此.古史有三日並見.五日同出.而未聞如日之狀者.相接于正陽.其爲變甚矣.昔者嚴子陵.加足於帝腹.一刻之間.天卽示異.當今之變.必有其由矣.欲聞朝廷衆論.悉言無隱.[中略]

柳辰全曰.日變如是.固當察之於朝廷之上.而兵象亦不可不慮也.古人曰.有備無患.須於此時.備盡兵禦可也.兵使水使之軍官.先知武才之實.然後帶率甚當.而近來以簡札充之.故其所率皆迷劣無勇之徒.徒知侵漁軍卒.而有何裨益於國家哉. 《明宗實錄 卷第6, 62面》

명종 2년 12월 12일(기미)

대사간(大司諫) 류진동(柳辰全) 등이 상소하였는데 1강(綱)과 4조(條)로 진술하였

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는 언로(言路)를 여는 일입니다. 옛날 충직(忠直)한 선비는 기미를 먼저 아는 데 밝아 환난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는데도 임금들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여 마침내는 패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자기 마음을 비워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공론(公論)이 일어난 것이 비록 중요한 일이더라도 만약 척리(戚里)에 관계가 되면 문득 사사로운 정을 써서 일체 굳게 거절하시니 어찌 신정(新政)에 큰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저 조정의 기강은 저절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이 기강을 세우는 데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평 정대한 기강을 사방에 펴면 백관과 경사(卿士)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아 모든 정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백성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은 사정(私情)이 공(公)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공심(公心)을 갖기는 어렵고 사심을 갖기는 쉬워서 비록 공심을 갖고자 하더라도 마침내는 사심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만약 ‘하찮은 한 가지 일이 공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정치에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그냥 둔다면 하찮은 일을 따라서 드러나게 되고 작은 일이 쌓여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자기 일신(一身)을 위해 사(私)를 쓰고, 대부(大夫)는 자기 집을 위해 사를 써서 사사로운 뜻이 성하여 공변된 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강을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를 삼가는 일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새로 즉위하여 정치를 하심이 마치 해가 처음 떠오르는 것과 같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한번 좋아하고 한번 싫어함에 백성들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으니, 자신이 좋다고 좋아하지 말고 온나라 백성들이 좋아함을 좋아하며, 자신이 싫다고 싫어하지 말고 온나라 백성들이 싫어함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소원(疏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아할 만하면 좋아하여 털끝만큼도 편벽되지 않아 천리(天理)의 공변됨에 합치한다면 사사로운 생각이 없어져 상(賞)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요,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져 벌(罰)이 반드시 합당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이 복종하고 숭상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사치를 억제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몸소 공검(恭儉)하시고 절약하여 비용을 줄이시는데, 사대부의 집에서는 도리를 모르고 사치한 것이 풍습을 이루어 좋은 옷 입는 것을 서로 다투어 자랑하기에 힘쓰며, 밥상이 한정 없이 사치스럽고 집이 지나치게 크며 기완(器玩)이 기교스럽습니다. 물가가 비싸지고 모든 물건이 조잔(彫殘)해지는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검약을 숭상하시는 덕을 보여 자신이 먼저 하신다면 사치함을 질박함으로 바꾸어 오래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己未.大司諫柳辰全等上疏.以一綱四條陳之.其略曰.其一曰開言路.古之忠直之士.炳於幾先.防患於未然.而人主執己不信.終至於喪敗者.皆不能虛受之患也.近來公論所發.雖有關重.若涉於戚里.則便牽私情.一切牢拒.豈非爲新政之大累乎.其二曰.立紀綱.蓋朝廷之紀綱.無以自立.必賴君以爲綱.苟能公平正大.紀綱乎四方.則百辟卿士.澡雪一心.夙夜匪懈.庶政舉而生民安矣.大抵紀綱之不立.由於私情之害公也.人心難公而易私.始雖欲公.終陷於私若曰一事之微.雖不合於公.何害於治.有所放過.則從微至著.積小成大.士而私其身.大夫而私其家.私意勝而公道滅.其於立紀綱.不亦難乎.其三曰.慎好惡.今我 殿下.新御萬幾.如日之初昇.人皆仰之.一好一惡.萬民休戚.不以一己之好作好.而以一國之好好之.不以一己之惡作惡.而以一國之惡惡之.雖在踈遠.而可好則好之.無一毫之偏.合天理之公則無有私意.而賞不僭.無有私憎.而罰必當.人心服而不知所尚矣.其四曰.抑奢侈.今我 殿下.躬修恭儉.節用省費.而士大夫之家.不知道揆.侈靡成習.服美于人.爭尚夸耀.食前方丈.窮奢無厭.第宅宏侈.器玩奇巧.市價之翔貴.百物之彫殘.實由於此. 殿下益崇儉約之德.以身先之.則可以革奢歸朴.而爲永久之圖矣.

《明宗實錄 卷第6, 67面》

명종 2년 12월 18일(을축)

상이 주장에 나아갔다.

○대사헌 송겸(宋謙), 대사간 류진동(柳辰全), 집의 이무강(李無疆), 사간 이영현(李英賢), 장령 우상(禹鎔), 지평 남궁 침(南宮忱), 헌납 박영준(朴永俊), 정언 조방종(趙邦宗)이 아뢰기를,

“윤원로는 본래 사악한 사람인데 망령되이 폐부(肺腑)의 친(親)을 믿고 당초에 인종을 추산(推算)하고 자전(慈殿)을 저주하였으니 그 죄악이 극도로 악합니다. 마땅히 중전(重典)으로 처치해야 하는데도 안치(安置)만 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이미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고서 더욱 방자하게 원망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내가 내쫓긴 것은 실로 군흥(群兇)들 때문이다.’ 하고는 자신을 주공(周公)이 동(東)에 있던 것¹⁷⁴에 비기어, 심지어는 시어(詩語)에 나타내기도 하고 또 조정에 있는 사람을 관채(管蔡)¹⁷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4) 주공(周公)이 …… 것 : 주 무왕(周武王)이 죽고 어린 성왕(成王)이 즉위하자, 무왕의 아우인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여 섭정(攝政)하였는데, 주공의 아우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 등이 “공(公 : 주공)이 유자(孺子 : 어린 아이, 즉 성왕을 가리킴)에게 불리할 것이다.”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므로, 주공이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 선왕(先王)들께 아뢴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하고는, 동쪽으로 피해가서 2년 동안 살았던 것을 말한다. 《書經 周書 金縢》

175) 관채(管蔡) : 주공(周公)의 아우들로서 주공을 모함했던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합칭한 말.

옛날 조정에 군림한 모후(母后)의 역년(歷年)을 세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내가 조정에 돌아가는 것이 어찌 멀겠는가. 단지 정유·을사년 사람만 쓰더라도 한 조정을 이룰 수가 있다.’면서 공공연히 떠들어대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의 흉역 부도(兇逆不道)한 죄는 전후에 가득차고 조정을 변란시키려는 계획은 더욱 참혹하여 하루라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울대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원로는 본래 경망스러운 사람이므로 말을 비록 삼가지 았았다 하더라도 멀리 내쳐 종신토록 안치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윤희하지 않는다.”

하였다.

乙丑. 上御晝講. ○大司憲宋璣. 大司諫柳辰全. 執義李無疆. 司諫李英賢. 掌令禹錡. 持平南宮忱. 獻納朴永俊. 正言趙邦宗啓曰. 尹元老. 本以傾邪毒害之人. 妄恃肺腑之親. 當初推筭仁宗. 詛呪 慈殿. 罪大惡極. 當置重典. 只命安置. 聖恩已重. 而尚不懲艾. 益肆怨懟. 常曰我之見黜. 實由羣兇. 白擬周公之. 居東. 至發於詩語. 且以在朝之人. 比諸管蔡. 歷數古之臨朝母后歷年曰. 此皆不能長久. 我之還朝. 亦豈遠乎. 只用丁酉乙巳之人. 亦足以作一朝廷也. 公然唱說. 無所畏忌. 其兇逆不道之罪. 前後貫盈. 變亂朝廷之計. 益爲慘酷. 不可一日容於覆載之間. 請依律定罪. 答曰元老. 本以輕妄之人. 言語間雖有不謹. 黜諸遐裔. 終身安置. 則有何患乎. 不允

《明宗實錄 卷第6, 69面》

명종 3년 10월 15일(을묘)

나세찬(羅世縝)을 한성부 우윤으로, 류진동(柳辰全)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해(李滢)를 충청도 관찰사로, 심수경(沈守慶)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乙卯. 以羅世縝爲漢城府右尹. 柳辰全爲司憲府大司憲. 李滢爲忠清道觀察使. 沈守慶爲吏曹佐郎.

《明宗實錄 卷第8, 49面》

명종 3년 10월 23일(갑자)

송세형(宋世珩)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류진동(柳辰全)을 공조 참판으로 류잠(柳潛)·정유(鄭裕)를 사헌부 장령으로, 최개국(崔蓋國)을 지평으로 삼았다.

甲子. 以宋世珩爲司憲府大司憲. 柳辰全爲工曹參判. 柳潛鄭裕爲司憲府掌令. 崔蓋國爲持平

《明宗實錄 卷第8, 51面》

명종 4년 8월 22일(기미)

공조 참판(工曹參判) 류진동(柳辰全)이 아뢰기를,

“이달 15일에 신이 우연히 윤인서의 집에 갔더니 인서가 ‘전일 정두(釘餽 : 지공(支供)에 관한 일)에 관한 논의 때 그대는 어느 쪽을 따랐는가?’ 하기에, 신이 ‘사사로이 준비하게 하자는 쪽의 논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서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이어 ‘대사헌 진복창이 수의(收議)하던 날 나에게 욕을 하기에 내가 매우 화를 냈었다.’ 하였습니다. 신은 그가 대사헌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모르고 ‘나랏일을 논의할 때는 꼭 자기 뜻이 채용되도록 힘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뜻이 어떻다는 것만 말하여 조정에서 채택하게 할 뿐이다. 꼭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옳지 못한 생각이지만 만약 그 때문에 서로 격해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더욱 군자(君子)로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고 답하였더니, 인서가 곧 신을 가리키며 우유 부단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모든 일을 장자(長者)를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윤사재(尹四宰)와 -원형(元衡)- 김이상(金二相)이 -광준(光準)- 모두 가까운 곳에 있으니 찾아가보라.’ 하였더니, 인서가 ‘전일 경연에서 내가 치우치게 신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다.’ 하기에, 신으로서는 그 말에 답하기가 어려워 다시 장자를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들으니 인서가 지난날 남에게 말하면서 ‘류 아무개가 그러는데 김이상이 대사헌을 거만하다고 나무라고 있으니 그대가 찾아가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의 입에서 나오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근거없는 말을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서의 무례함이 이에 이를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하였다.

己未.工曹參判柳辰全啓曰.今月十五日.臣偶到尹仁恕家.仁恕言.前日釘餽之議.汝從何議乎.臣曰.從私備之議.仁恕有不肯之色.因曰.大憲陳復昌.於收議之日辱我.我甚怒之.臣不知與大憲.嘗有不平之意.答曰.大抵論議國事.不必務用己意.但言其志.在朝廷採擇而已.必用其意.己爲不可.若因此相激.則尤非君子美事也.仁恕卽指臣曰.爲好樣模稜者也.臣曰.凡事.須就長者議之.尹四宰元衡金二相光準.皆在近處.須見之.仁恕曰.前日經筵.吾啓偏任爲害等語.臣難於爲答.復曰.須見長者.及今聞之.仁恕.頃日言於人曰.柳某云.金二相.嘗以踞慢答大憲.汝當往見.此則不出於臣口.而如此托言.心甚駭愕.傳曰.豈知仁恕之無狀至此乎.

《明宗實錄 卷第9, 79面》

명종 4년 9월 4일(경오)

○김광준(金光準)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심광언(沈光彦)을 호조 참판으로, 남세건

(南世健)을 공조 참관으로, 류진동(柳辰全)을 전라도 관찰사로, 박공량(朴公亮)을 사헌부 집의로, 류창문(柳昌門)을 이조 정랑으로, 이사필(李士弼)을 홍문관 교리로, 이중경(李重慶)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庚午.○以金光準爲議政府右贊成.沈光彦爲戶曹叅判.南世健爲工曹叅判.柳辰全爲全羅道觀察使.朴公亮爲司憲府執義.柳昌門爲吏曹正郎.李士弼爲弘文館校理.李重慶爲副修撰.

《明宗實錄 卷第9, 90面》

명종 4년 12월 8일(계묘)

헌부가 아뢰기를,

“유신현(維新縣)에 사는 정병(正兵) 홍광필(洪光弼)이 전라도 관찰사 류진동(柳辰全)의 대노(代奴)와 노비 문제로 형조에서 송사하고 있는데, 형조에서는 광필이 올린 문기(文記)의 인신(印信)이 위조된 것이라 하여 일죄(一罪)로 논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광필 아내의 소원(訴冤)으로 인하여 앞서 추고한 문안(文案)을 가져다 비교 고찰한 바 시비가 분명하였고, 또 본 고을의 문기를 가져다 비교하여 보아도 인신의 장단 광협과 농담(濃淡)이 희미하기는 하였으나 조금도 틀림이 없어 위조가 아닌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형조의 관리들이 사정(私情)에 따라 인신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광필에게 죄를 들렀기 때문에 본부에서 이미 공함(公緘)을 보냈습니다. 진동은 유식한 재상으로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노비를 빼앗기 위하여 그 문기를 전계(傳係)할 때에 거짓 꾸민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임)이 되어서도 부당하게 획득하기에 급급하여 비루한 짓을 많이 하였으니 직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재상을 파직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본직을 체직하고 송서(送西)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진동은 의정(議政) 홍언필(洪彦弼)의 이성종제(異姓從弟)이다. 언필이 항상 의기(意氣)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왔고 또 천성이 효우(孝友)스러웠다. 그러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우(師友)도 없었기 때문에 하는 일 가운데에 추술한 것이 많았고, 시첩(侍妾)을 4~5명이나 거느렸으므로 그들 각자의 생업(生業)을 도모하느라 전장(田庄)을 불러나갔다. 시론(時論)이 이를 단점으로 여겼다.

癸卯.憲府啓曰.惟新居正兵洪光弼.與全羅道觀察使柳辰全.代奴相訟奴婢于刑曹刑曹.以光弼所納文記.爲印信偽造論以一罪.本府因其妻訴冤.取前推文案相考.則是非分明.又取

本官文記比對.則印信長短廣狹熹微濃淡.少無差異.非偽造明矣.刑曹官吏.曲循私情.以印信偽造.歸罪於光弼.故本府已出公緘矣.辰全以有識宰相.欲奪不干奴婢.其文記傳係之際.非徒有誣飾之事.至於元隻之間.急於橫得.亦多鄙陋之狀.不可在職.請罷.答曰.宰相之人.罷職過重.違本職送西

史臣曰.辰全議政洪彥弼之異姓從弟也.彥弼.常以意氣許之.性且孝友.但小孤無師友.事多麤疎.一家侍妾.多至四五人.各圖生業.廣殖田庄時論短之 《明宗實錄 卷第9, 113面》

명종 4년 12월 11일(병오)

○헌부가 류진동의 일을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憲府啓.柳辰全事.如啓

《明宗實錄 卷第9, 114面》

명종 5년 3월 28일(임진)

구수담(具壽聃)을 공조 참판으로, 채세영(蔡世英)을 경상도 관찰사로, 남세건(南世健)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사필(李士弼)을 사헌부 장령으로, 송찬(宋贊)을 홍문관 교리로, 류진동(柳辰全)을 동지중추부사로, 심통원(沈通源)을 호분위 상호군(虎賁衛上護軍)으로 삼았다.

壬辰.以具壽聃爲工曹叅判.蔡世英爲慶尙道觀察使.南世健爲成均館大司成.李士弼爲司憲府掌令.宋贊爲弘文館校理.柳辰全爲同知中樞府事.沈通源爲虎賁衛上護軍

《明宗實錄 卷第10, 13面》

명종 5년 6월 2일(을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류진동(柳辰全)을 북경(北京)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하례하였다.

乙未.遣何知中樞府事柳辰全.如京師.賀 聖節

《明宗實錄 卷第10, 43面》

명종 6년 5월 7일(갑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류진동(柳辰全)은 아뢰기를,

“중종조 때에는 효자(孝子)·순손(順孫)·절부(節婦) 등에게는 음식을 공궤(供饋)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전라감사가 되었을 때에 순시(巡視)차 고부군(古阜郡)에 도착하니, 남편의 상복을 9년 동안이나 입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중종이 승하하셨단 말을 듣고 따로 한 신위(神位)를 설치해 놓고 곡(哭)을 하고, 손수 상복을 만들어 입었으며, 인종(仁宗)이 승하하시니 또

한 그렇게 하여 삼년상을 마친 뒤에 비로소 국상의 상복을 불사르고 도로 남편을 위한 상복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시골의 한 서민의 아내로서 그 처사가 이와 같았으니, 그가 어떻게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포장(褒獎)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권면(勸勉)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甲午. 上.御朝講.特進官柳辰全曰.在 中宗朝.如孝子順孫節婦則有供饋之例.故臣爲全羅監司時.順到古阜郡.有一婦人服夫之喪.至於九年之久.聞 中宗升遐.別設一位而哭之.手制喪服而服之.及 仁宗升遐.亦然.三年喪畢後.乃焚國喪之服.而還服爲夫之服.夫以村巷一匹婦.其處事若是.不知其何以能如此也.如蒙褒獎.足以使人有所勸矣.

《明宗實錄 卷第11, 48面》

명종 6년 7월 12일(무술)

상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소대(召對)하였다. -비로소 정전(正殿)으로 회복하였다.

○좌의정 심연원 등이 빈청에 모였다. 전교하기를,[중략]

예조 판서 정사룡, 지중추부사 윤원형, 병조 판서 안현(安玟), 형조 판서 이미(李薇), 동지중추부사 신영(申瑛)·류진동(柳辰全), 예조 참판 심통원(沈通源), 이조 참판 심광언(沈光彦), 한성부 우윤 남궁 숙(南宮淑)은 의논드리기를,

“재상을 담험할 때에 실결(實結)을 재결(災結)이라고 한 것이 10부(負) 이상인 것과 재결을 실결이라고 한 것이 50부 이상이면 수령은 파직하고 전부(田夫)·위관(委官)·서원(書員)·권농(勸農) 등을 죄주는 것은 조종조로부터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인데, 세입(稅入)을 중히 하고 민생을 구휼하는 뜻이 겸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부로써 10부에 비교한다면 이미 가벼운 것인데, 이제 50부면 파직하는 법마저도 아울러 폐지한다면, 다만 백성을 손실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수령·위관·서원 등이 법이 가벼움을 이용하여 제멋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것이니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해를 장차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실결을 재결이라고 한 것이 10부 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구역 안에서 범(犯)한 것이라야 치죄하는데, 그렇다면 어사·경차관이 비록 온 고을을 고루 담험할지라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결을 재결이라고 한 전지가 10부가 못되고 8~9부에 이른 것은 비록 10~1백 군데가 될 지라도 면죄된다면 이것이 어찌 입법한 본의 이겠습니까. 전부터 합계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기전(起田)을 진전(陳田)이라 하고 진전을 기전이라고 한 것도 모두 조종의 옛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戊戌. 上.召對于思政殿始復正殿.○左議政沈連源等.會于賓廳.傳曰.[中略]

禮曹判書鄭士龍.知中樞府事尹元衡.兵曹判書安珙.刑曹判書李薇.同知中樞府事申瑛柳辰全.禮曹參判沈通源.吏曹參判沈光彦.漢城府右尹南宮淑議.災傷踏驗時.以實爲災十負以上.以災爲實五十負以上守令罷職.田夫委官書員勸農等抵罪.自 祖宗朝.行用已久.其重稅入恤民生之意兼備.而以五十負而比十負.則已爲輕歇矣.今並與五十負罷職之法而廢之.則非但偏於損下之道.守令委官書員等.利其法輕.恣意上下.病民之弊.將不可救.況以實爲災十負以上者.必犯一區然後治罪.則御史敬差官.雖遍歷一邑.未易摘出.且以實爲災之田.未滿十負.而至於八九負者.雖十百皆免罪.則是豈立法本意乎.自前合計者.恐以是也.以起爲陳.以陳爲起.並依 祖宗舊規施行爲便.

《明宗實錄 卷第11, 62面》

명종 6년 7월 26일(임자)

○류진동(柳辰全)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김귀영(金貴榮)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壬子.○以柳辰全爲京畿觀察使.金貴榮爲司諫院正言

《明宗實錄 卷第11, 65面》

명종 6년 12월 21일(갑술)

경기 감사(京畿監司) 류진동(柳辰全)이 과주(坡州)에 거주하는 성수침(成守琛)176과 지평(砥平)에 거주하는 조옥(趙昱)의 학문과 조행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장계를 올렸는데, 상이 벼슬에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장계에 성수침은 효행이 뛰어나고 학문은 경전(經傳)과 사기(史記)를 널리 통달했으며 이록(利祿)에 마음을 두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스스로 도(道)를 즐기니 비록 옛날의 은일(隱逸)에 비교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조옥은 재주와 행실이 고결하였고 청빈(淸貧)을 편안히 여기고 분수를 지키면서 이록을 구하지 않고 항상 산수(山水) 사이를 소요한다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류진동이 고을을 순방하여 이 두 사람을 얻어 조정에 진달했으니, 그 뜻이 또한 가상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신들이 상의 어진이를 구하는 아름다운 뜻을 미루어 넓혀서 이들을 발탁하여 배운 바를 펴보게 하지 못했으니, 어진이를 등용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甲戌.京畿監司柳辰全.以坡州居成守琛.砥平居趙昱學行聞之. 上命叙以職.將啓曰守琛孝行卓異學通經史不以利祿爲心閑居自樂雖方古之逸民足以無愧云豈才行高潔安貧守分不求利祿常逍遙山水間云史臣曰.辰全巡訪州郡.得此二人.以達于朝.其意亦可尚矣.惜乎.大臣不能推廣 聖上求賢之美意.擢而用之.俾展布其所學.是可謂能用其賢乎

《明宗實錄 卷第12, 65面》

176) 성수침(成守琛) : 1493~1564. 조선 명종 때의 학자. 자는 중옥(仲玉) 호는 청송 죽우당(竹雨堂) 파산 청은(坡山淸隱) 우계한민(牛溪閑民)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창령. 세순(世純)의 아들로 조광조(趙光祖)의 문인, 조광조가 처형되고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자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을 탐구하여 문하에서 많은 석학이 배출되었다. 저서에 청송집(淸松集)이 있다. 아들은 성혼(成渾)인데 그 문하에서 류진동의 손자 류형(柳珩)이 수학하였다.

명종 8년 5월 6일(신해)

상이 조강·석강에 나아갔다.

○류진동(柳辰全) - 류진동은 탐욕스럽고 비루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남을 시기하여 해치지 않는 얌으니 혹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 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성제원(成悌元)을 군기시 주부로, - 이때 성제원·성수종(成守琮)·조식(曹植)·이희안(李希顔)·조옥(趙昱) 등 다섯 사람이 모두 유일(遺逸)로서 6품 관직을 제수받았다. 수종의 사람됨은 기질(氣質)이 중후(重厚)하고 성품과 도량이 너그럽고 커서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 예사 사람이 아닌 줄을 알았다. 젊어서부터 공리(功利)와 과거(科擧)에 마음을 두지 않고 파평산(坡平山) 아래에 집을 짓고 유유 자적(悠悠自適)하고 풍월(風月)을 읊으며 회포를 풀었다. 만년에는 풍질(風疾)을 앓아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문을 닫고 출입하지 않았으니, 그 뜻은 더욱더 세상사람과 교류(交流)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가 전원에서 생활할 때 귀천 소장(貴賤少長)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복(敬服)하였다. 식(植)은 천성이 강개(慷慨)하고 정직하여 세상 따라 부양(俯仰)하려 하지 않았고, 몸을 깨끗하게 가져 속된 사람과 말할 때는 자신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뜻이 있었으며 국가에서 누차 초빙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제원(悌元)은 사람됨이 세상 밖에 방랑하여 인간 세상을 하찮게 보는 뜻이 있었다. 스스로 술과 시에 취하고 노래하는 것을 흥취로 삼았고, 가슴속은 광달(曠達)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나아가 보은 현감(報恩縣監)이 되었을 때 정치에는 청렴 간결함을 숭상하고 교화(教化)를 급선무로 삼았으므로 치평(治平)이 제일이었다고 한다. - 채세영(蔡世英)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辛亥. 上. 御朝夕講. ○以柳辰全爲漢城府右尹. 辰全貪淫麤鄙然心不悞害人或許之成悌元爲軍器寺主簿. 時成悌元成守琮曹植李希顔趙昱五人皆以遺逸拜六品官守琮爲人氣質厚重性度寬偉人見其貌知其非常人自少不以功利科擧爲心築室坡平山下逍遙自適吟詠風月以遣其懷晚歲患風疾厭煩聒閉一室不出其志尤不欲與世人交遊也其居鄉村也人無貴賤少長成敬服之植天性慷慨正直不與世俯仰皎皎自潔其與俗人言有望望然去之之意累徵不起悌元爲人放浪物外有脾貌人世之意自以詩酒酣歌爲寓興之物胸中曠達一物不能累出爲報恩縣監政尚清簡以教化爲先治平爲第一云蔡世英爲全羅道觀察使 《明宗實錄 卷第14, 50面》

명종 8년 5월 26일(신미)

간원이 아뢰기를,

“김포(金浦)의 이생지(泥生地)를 송사하는 이는 모두 사대부입니다. 상께서는 단지 김미(金甌)의 탐욕스러움만 알았지, 유막손(劉莫孫)이라고 핑계하여 - 우윤(右尹) 류진동(柳辰全)이 유막손이라는 이름을 핑계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 같이 송사하는 자도 또한 모두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갓 김미에게만 허물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요즈음에는 학궁(學宮)에서 선비를 기르는 데 쓰는 도구가 매우 박하여, 서책·지필 등의 물건을 유생들이 능히 스스로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래 모든 사사(寺社)의 토지를 다 도로 찾아 주도록 하면서 학궁에서는 어전(漁箭)까지도 도로 빼앗아 가므로, 주상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중들에게는 후하고 유생에게는 박하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사림(士林)이 모두 저상(沮

喪)하여 있으니, 김포의 이생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성균관에 영원히 주소서.

그리고 방납(防納)¹⁷⁷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진성(陳省)－본읍(本邑)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의 정장(呈狀)이다.－을 받아서 민생에 폐를 끼치므로 신들이 지난해 9월에 방납인과 서로 결탁하여 함부로 진성을 발급한 수령은 사면 전의 일을 막론하고 즉시 파직하라고 계문하여 법으로 세웠는데, 오늘날 거둬 발급한 수령을 사면 이전의 법으로 논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죄를 한번 범하여도 파직시키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하물며 거둬 범한 자이겠습니까. 성첩(成貼)한 날 짜가 어긋나는 것이, 혹 전관과 후관이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만들어 준 것 외에는 승전에 의하여 사면 이전을 가리지 말 것이며, 함부로 진성을 받은 사람 및 중간에서 술수를 부린 자도 아울러 사면 이전을 가릴 것 없이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辛未.諫院啓曰.金浦泥生之地.相訟者皆是士大夫也.自上徒知金匱之貪.不知托劉莫孫右尹柳辰全托莫孫之名故云同訟者.亦皆貪也.而徒歸咎於金匱可乎.今者學宮養士之具甚薄.而至於書冊紙筆等物.儒生不能自備.況近來凡寺社之田.皆使還推.而其於學宮魚箭.亦爲還奪.故不知上心者.誤以爲厚於僧徒而薄於儒生也.士林莫不沮喪.請金浦泥生之田屬公.承給成均館.且防納之人.冒受陳省.本邑貢物呈狀貽弊生民.故臣等於前年九月.守令交結防納人.冒給陳省者.罷職勿揀赦前事.啓之立法.今者疊納守令.論以赦前.極爲未便.一犯其罪.固當罷之.況至於疊乎.其成貼日月之差違.或前後官之不能詳察而成給者外.請依承傳.勿揀赦前.冒受陳省人及中間用術者.並勿揀赦前.全家徙邊.答曰皆如啓

《明宗實錄 卷第14, 54面》

명종 8년 6월 3일(무인)

○윤원형(尹元衡)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신광한(申光漢)을 우찬성으로, 김광준(金光準)을 판돈녕부사로,－광준(光準)의 성품은 아침을 잘하고 사약하였다. 이름자를 도적질하여 마침 을사년의 청의(淸議)가 조금씩 퍼질 때에 외람되어 간관(諫官)의 장관이 되었다. 급기야 화(禍)가 일어나자 이기(李芑)·정순봉(鄭順朋)·윤원형의 뜻을 받들어 일망 타진하자는 의논을 주장하니, 그 당시 대간들이 항거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뒤로부터 공론(公論)에 죄를 얻어 사림(士林)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거리낌없이 악행을 저질러 모든 도살(屠殺)과 유찬(流竄)에 관한 일을 주장하여 논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승문원 정자 김충갑(金忠甲)은 바로 광준의 인

177)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고 납공자(納貢者)로부터 그 대가를 많이 받아내던 일. 공물은 토산물이므로 일반 백성으로서 얻거나 만들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물을 사서 바쳐야 하는데, 궁방(宮房)·관청의 수요 시기와 품질·규격 등이 흔히 맞지 않으므로 경주인(京主人) 등을 시켜 대납하게 하니, 상인·하급 관리 등이 끼어들어 직납(直納)이 가능한 것까지도 막아 대납하고서 뒤에 그 대가를 배징(倍徵)하였다.

척(姻戚)이다. 광준은 충감이 자신 일가의 탐독한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노여워하여 그를 구함(構陷)하여 20여 년을 버려 두었다. - 심광언(沈光彦)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으로, - 광언은 별다른 재주나 덕행이 없는데 여러 차례 특별히 서용되니 물의가 괴이하게 여겼다. - 류진동(柳辰全)을 이조 참판으로, 정준(鄭浚)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심봉원(沈逢源)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김귀영(金貴榮)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戊寅.○以尹元衡爲議政府左贊成.申光漢爲右贊成.金光準爲判敦寧府事.光準性儉邪盜竊名字方乙巳清議稍張之時叨居諫官之長及其禍起承李芑鄭順朋尹元衡之意主張打盡之議一時臺諫拒而不從自此之後自知得罪公論無所容於士林縱惡不忌凡所屠殺流竄無不主議承文正字金忠甲乃光準之姻族也洩言光準一家貪濁事光準怒構陷之廢棄二十餘年沈光彦爲資憲大夫漢城府判尹.光彦別無才德累被特叙物議恠之柳辰全爲吏曹參判.鄭浚爲承政院同副承旨.沈逢源爲弘文館直提學.金貴榮爲副修撰.

《明宗實錄 卷第14, 58面》

명종 8년 9월 26일(기사)

○심통원(沈通源)을 이조 참판으로, 류중영(柳仲郢)178)을 사헌부 장령으로, - 류중영은 강직하고 명철하여 번거로운 일을 능숙히 처리하는 재주가 있어서 지난번 유신현감(維新縣監)이 되었을 때에 정치를 잘한다는 명성이 크게 있었다. 다만 호남(湖南) 지방에 사명(使命)을 띠고 갔을 때는 그곳에 사는 처사(處士) 이항(李恒)을 매우 잔혹하게 대우하였으며 심지어는 형신(刑訊)까지 하려고 하였으니 그가 무식하여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수철(李壽鐵)을 이조 정랑으로, 류진동(柳辰全)을 평안도 겸병마수군절도사(兼兵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己巳.○以沈通源爲吏曹參判.柳仲郢爲司憲府掌令.仲郢剛明有剪煩之才前爲維新縣監治聲甚著但奉使湖南也待處士李恒甚酷至欲刑訊其爲無識安行可知李壽鐵爲吏曹正郎.柳辰全爲平安道兼兵馬水軍節度使

《明宗實錄 卷第15, 34面》

명종 9년 2월 27일(무술)

상이 주장과 석강에 나아갔다.

○헌부가 아뢰기를,

“평안병사(平安兵使) 류진동(柳辰全)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몸이고 또한 간곡한 하교를 들었으니, 마땅히 상의 뜻을 마음 깊이 생각하여 백성을 무휼하고 폐단을 제거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소잡아 잔치나 일삼으면서 민무(民務)는 다스리지 않고 형장(刑杖)을 남용하므로 백성들이 아무리 원통한 일이 있어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관(軍官) 및 하인들이 중간에서 폐단을 일으켜도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둔 채 방치하고 죄를 묻지도 않

178)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조선 명종 때의 문신. 자는 언우(彦遇) 호는 입암(立巖) 본관은 풍산(豊山). 류성룡(柳成龍)의 아버지. 문과 급제. 명종 8년(1553) 장령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 승지, 경연관 등을 지냈다. 저서에 입암집이 있다.

으며 또한 열읍(列邑)에서 끝없이 혹독하게 세금을 긁어 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첩을 다섯이나 두었으므로 공궤(供饋)마저 지탱하기 어려워 영중(營中)의 물건이 하나도 남김 없이 깨끗이 바닥이 났다고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전날에 무신(武臣)들이 폐단을 일으키므로 신들이 문신(文臣)으로 가려 보낸 것은 서민(西民)들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하는 것이 무신들보다 심하니 신들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상의 하교가 헛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파직시키소서.

戊戌. 上.御晝夕講.○憲府啓曰.平安兵使柳辰全.身在宰相之列.且聞丁寧之教.則所當體念 上意.恤民除弊之不暇.而日以推牛宴飲爲事.不治民務.濫用刑杖.民雖有寃.不得告訴.軍官及下人等.雖中間作弊.任其所爲.置而不問.且誅求列邑.無有紀極.至於率蓄五妾.供饋難支.營中之物.板蕩無餘.極爲駭愕.前日武臣作弊.故臣等欲擇遣文臣者.庶幾西民蒙一分之惠.今者所爲.甚於武臣.臣等之計左矣.自 上之教虛矣.請罷其職.

《明宗實錄 卷第16, 19面》

명종 9년 7월 12일(경술)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에 서책 값을 취품(取禀)할 적에, 백포(白布) 20필의 대가(代價)로 정포(正布) 60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용감(濟用監)의 백포 1필의 대가는 정포 8필이니, 그 전의 값과 비교한다면 감축된 것이 거의 3분의 2나 됩니다. 지금 홍문관이 뽑아서 아뢴 역대의 각종 역사책을 고찰해 보면 그 값이 1백분의 1도 못 됩니다. 지난번에 본조가 서계한 영평부(永平府)의 고(故) 시랑(侍郎) 광경(郭經)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서책의 분량을 다시 류진동(柳辰全)에게 물어보니 ‘역대의 각종 역사책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모든 서책의 목록을 보여 주었지만 창졸간에 그 수량을 다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값을 넉넉히 주어 보낸다면, 홍문관이 뽑은 모든 서책을 다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긴요한 것을 가려서 사게 될 것이고, 모든 서책의 목록을 빠짐없이 등서(謄書)해 온다면 서서히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서, 전후로 사신이 갈 적에 값을 주어 보내 점차로 사오는 것이 편리합니다. 비록 그 집에 소장한 서책이 아니더라도 만일 가포(價布)가 넉넉하다면, 일로(一路)와 북경(北京)에서도 널리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취품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庚戌.○禮曹啓曰.前日書冊之價取禀.而白布二十匹代.給正布六十匹矣.大抵濟用監白布一匹之價.正布八匹矣.比准舊價.則減縮幾至於三分之二.今考弘文館抄報.歷代諸史.則其

價不能當百分之一.前者本曹書啓.永平府故侍郎郭經家所藏書冊多少.更問于柳辰全.則歷代諸史.無不全備.而出示諸書目錄.卒然之頃.不能盡記其數云.今若優價給送.則弘文館所抄各秩書冊.雖不得盡買.擇其要緊而買之.其諸書目錄.無遺謄書而來.則徐准我國有無書冊.而前後使臣之去.給價送之.使之漸次.買來爲便矣.雖非此家所藏書冊.價布若優.則一略及北京.亦可廣購.故更取稟耳.傳曰.依所啓可也

《明宗實錄 卷第17, 6面》

명종 10년 5월 29일(임술)

○류진동(柳辰全)을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대신의 의논에 따라 도순찰사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자(加資)한 것이다. - 권찬(權纘)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한두(韓岫)를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壬戌.○以柳辰全爲資憲大夫知中樞府事.以大臣議爲都巡察故特加權纘爲漢城府左尹.韓岫爲右尹.

《明宗實錄 卷第18, 53面》

명종 11년 7월 11일(정묘)

류진동(柳辰全)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임내신(任鼎臣)을 강원도 관찰사로, 이탁(李鐸) -사람됨이 강직하고 총명하였다. -을 예조 참의로, 원혼(元混)을 병조 참의로, 정준(鄭浚) -권문 세가에 아부하여 좋은 벼슬을 얻었으나 별로 현능하지 못했다. -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丁卯.以柳辰全爲咸鏡道觀察使.任鼎臣爲江原道觀察使.李鐸爲人剛明聰察爲禮曹參議.元混爲兵曹參議.鄭浚附趨權勢之家以取美官別無賢能爲兵曹參知

《明宗實錄 卷第21, 3面》

명종 13년 3월 19일(정묘)

정원에 전교하기를,

“영흥부사(永興府使) 이순형(李純亨)은 선정(善政)이 있으니, 상가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본도의 감사 류진동(柳辰全)의 아뢰에 따른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 이순형이 탐오하다는 것은 전일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있을 때에 이미 드러났다. 이제 선정이 있다 하여 부민(府民)이 서장을 올려 추천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은혜를 팔아 명예를 구한 소치일 것이다. 그리고 감사 류진동은 이순형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정(物情)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순형은 경박하고 망령되며 가는 곳마다 은혜를 팔아 명예를 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

丁卯.傳于政院曰.永興府使李純亨.有善政.賞加可也.因本道監司柳辰全之啓也

史臣曰.純亨之貪污.已著於前日慶州府尹之時.今以善政.見薦於府民之狀.此必市恩要

譽之致.而監司柳辰全.與純亨有分.故不能無物情之致疑.純亨輕淺謬妄.所至市恩要譽.人皆鄙之

《明宗實錄 卷第24, 25面》

명종 13년 8월 15일(기미)

○안현(安瑗)을 관중추부사로, 이명규(李名珪)를 관돈녕부사로, 심통원(沈通源)을 예조 판서로, 윤춘년(尹春年)을 형조 판서로, 류진동(柳辰全)을 공조 판서로, 조언수(趙彦秀)를 이조 참판으로, 박충원(朴忠元)을 병조 참판으로, 홍담(洪曇)을 예조 참판으로, 김개(金鎧)를 이조 참의로, 윤부(尹釜)를 한성부 우윤으로, 경혼(慶渾)을 병조 참의로, 임내신(任鼎臣)을 병조 참지로, 남궁 침(南宮忱)을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로, 강옥(姜昱)을 공조 참의로, 김세한(金世澣)을 회령부사(會寧府使)로 삼았다.

己未.以安瑗爲判中樞府事.李名珪爲判敦寧府事.沈通源爲禮曹判書.尹春年爲刑曹判書.柳辰全爲工曹判書.趙彦秀爲吏曹參判.朴忠元爲兵曹參判.洪曇爲禮曹參判.金鎧爲吏曹參議.尹釜爲漢城府右尹.慶渾爲兵曹參議.任鼎臣爲兵曹參知.南宮忱爲掌隸院判決事.姜昱爲工曹參議.金世澣爲會寧府使

《明宗實錄 卷第24, 56面》

명종 14년 9월 11일(기묘)

삼공과 영부사, 정부(政府)·예조·병조·비변사(備邊司)의 당상들이 의정부에 모여 왕비모(王妃母)의 죽음에 철조(輟朝)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왜선(倭船)이 나타났을 때 자세히 가려 포획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다. 상진·안현·이준경·이명(李瑛)·조광원(曹光遠)·심광언(沈光彦)·류진동(柳辰全)·류지선(柳智善)·성세장(成世章)·이영현(李英賢)·이정(李楨)·어계선(魚季瑄)이 의논드리기를,

“대왕비 부모의 상에 철조하느냐의 여부는, 「오례의(五禮儀)」와 「대전(大典)」을 참고하여 보면 서로가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례의」의 왕비 부모를 위한 거애(擧哀)의 의주(儀註)에 ‘외조부모를 위해 거애하는 예와 같고 오직 최복(衰服)을 사흘 동안 입었다가 벗는다.’ 하였습니다. 최복을 사흘 동안 입는다면 최복으로 조정에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철조입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예입니다. 때문에 「대전」 상장조(喪葬條)에는 거애를 해야 하는데도 복(服)이 없는 종친과 대신만을 거론하여 계문하여 철조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개 왕비 부모의 상은 응당 철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의 철조조(輟朝條)에 애초부터 별도로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논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왕비 부모를 위한 철조는 「대전」에 없는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나 예로 말하더라도 거에는 중한 것이고 철조는 가벼운 것인데, 어떻게 중한 예를 거행하면서 가벼운 것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사람들은 또 ‘왕비 아버지의 죽음에는 『대전』에 의하여 이틀 동안 철조하면서, 어찌 유독 내상(內喪)에는 『대전』에 없는 예를 시행하려 하는가.’ 합니다. 이는 바로 한때의 예관(禮官)이 예문(禮文)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전』에만 의거하여 그대로 따라 행한 잘못이지, 의주(儀註)와 『대전』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신들은 한결같이 선왕이 이미 정해놓은 예를 따르면 되지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중략〕

상이 삼공의 의논을 따랐다. 안현·이준경·류진동이 의논드리기를,

“해도(海島)에 출몰하는 왜노들은 본래 도적질로 업을 삼는데, 그 사이의 적정(賊情)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만일 변장으로 하여금 분별해서 토벌해 잡으라고 한다면, 풍파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자는 먼 섬에 피해 사는 왜놈이라고 핑계할 것이고 겁이 많은 자는 그저 오가는 사람들이라고 핑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왜적이 이르르면 온 나라가 와해될 것이니 이는 참으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표류하다가 섬에 닿아 저항없이 애걸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배를 온전히 포획하여 본국에 돌려보내되 그 무리들에게 효유하기를 ‘너희들이 늘 우리 나라가 오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다고 하는데, 너희들과 같이 궁박하게 돌아갈 곳도 없고 못된 짓을 저지른 적도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죽였을 리가 없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못된 짓을 저지른 무리들일 뿐이다. 돌아가 너희 나라에 잘 말하여 이 뒤로는 조심해서 우리의 변방을 침범해 와 다시 못된 짓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전일에 피살된 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악독한 짓을 한 자들일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온 자들은 죄가 없어 풀려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적들의 마음을 눌러서 조금이나마 변경의 근심이 없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옛날처럼 출몰한다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고 저들은 말없이 그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己卯.三公領府事政府禮曹兵曹備邊司堂上.會于議政府.以王妃母卒.輟朝當否及倭船現形詳辦捕獲事.共議以啓.尚震安珉李浚慶李瑩曹光遠沈光彥柳辰仝柳智善成世章李英賢李楨魚季瑄議.大王妃父母輟朝與否.參考五禮儀及大典.則乃互相發明之義也.五禮儀.爲王妃父母舉哀儀下註云.與外祖父母.舉哀之禮同.唯衰服三日而除云.旣進衰服三日.則不可以衰服臨朝.旣不臨朝.則乃此輟朝也.此則不易之定禮.故大典喪葬條.只舉宗親大臣應舉哀而無服者.啓聞輟朝也.蓋 王妃父母之喪.乃應行常事.故大典輟朝之條.初不別舉.而議者不解其意.乃謂爲 王妃父母輟朝.大典所無云.以情禮言之.舉哀重而輟朝輕.豈可舉重

禮而遺輕典乎.議者又以爲 王妃父之卒.則依大典輟朝二日.何獨於內喪而舉大典所無之禮乎.此則乃一時禮官.不曾詳考禮文.而只據大典因循行之之失也.非儀註與大典不同而然也.臣等之意.一遵 先王已定之禮.不須更議.[中略]

上.從三公議.安珙李浚慶柳辰全議.倭奴之出沒海島者.本以盜賊爲業.其間賊情.實難辨覈.今若使邊將.分辨討捕.則厭涉風波者.托稱遠島避賊.畏怯者諉謂往返.一朝賊至.舉國瓦解.是則固難輕議也.如漂泊于島嶼.束手乞哀者.勿殺一人.全船捕獲.解送本國.因諭其輩曰.爾等常稱我國濫殺往返之人云.若如爾輩.窮無所歸.未嘗作耗者.萬無殺害之理.其被殺者.乃作賊之徒耳.歸諭爾國.爾後慎勿來犯我邊.更萌不善之念云云.如此則彼輩.亦必以爲前日之被殺者.必其肆毒于彼國者也.今此生還者.乃是無罪而見原也.庶幾彈壓賊心.而少紓邊境之虞.如是而出沒如舊.則我乃有辭.彼亦無言而服其罪矣.《明宗實錄 卷第25, 67面》

명종 16년 4월 29일(기축)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류진동(柳辰全)이 졸(卒)하였다. 성품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였고,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

己丑.○知中樞府事柳辰全卒.性不拘檢.工書善畫

《明宗實錄 卷第27, 11面》

명종 19년 2월 9일(임자)

○헌부가 아뢰기를,

“방백(方伯)이란 풍헌(風憲)의 직책을 가지는 것이기에, 알맞은 사람을 얻으면 한 도(道)의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이 두려워서 그치게 되며, 알맞은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한 도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청홍도 관찰사 이순형(李純亨)은 전에 영흥부사(永興府使)가 되었을 때, 단지 백성에게만 폐를 끼쳤을 뿐 아니라, 비루한 일이 많이 있었으며, 몇 명의 품관(品官)을 제 사람으로 만들어 명예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때의 감사 -류진동(柳辰全)으로, 곧 순형과 같이 급제한 친구이다. -가 바르지 못하게 사정(私情)을 따라 선정(善政)으로 아뢰어 상가(賞加)까지 하였으므로, 여론이 지금껏 더럽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판결사가 되어서는 사정만 따를 줄 알고 억울함을 펴주는 것에는 힘쓰지 않아, 권세 있는 사람의 송사에 약간만 관계되면 곡직이 분명하더라도 질질 끌며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물의가 있습니다. 결코 방백의 중임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니, 본직을 바꾸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壬子.○憲府啓曰.方伯之任.職帶風憲.得其人則一道之貪猾畏戰.失其人則一道之冤枉莫伸.清洪道觀察使李純亨.前爲永興府使時.非徒貽弊於民.多有鄙陋之事.泰養數三品官.猶造稱譽.其時監司.柳辰全也.乃純亨之同年友也.曲循私情.啓以善政.至於賞加.物情至今唾鄙.頃

爲判決事.惟知循私不務伸枉.稍涉權勢之訟.則雖曲直分明.延擡不決.已有物議.方伯重任.決不可授之.請適本職.答曰如啓.

《明宗實錄 卷第30, 5面》

명종 20년 6월 8일(계유)

헌부가 아뢰기를,

“안동부사(安東府使) 이순형(李純亨) - 천성이 탐욕하고 비루하며 꾀탄(詭誕)하고 사특하여 소행이 바르지 않았다. 일찍이 영흥부사(永興府使)로 있을 적에 감사 류진동(柳辰全)에게 아첨하였는데 그가 선정(善政)한 것으로 아뢰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됨은 말할 거리가 못된다. - 은 사문(斯文)에서 출신(出身)한 사람으로 관직이 2품에 이르렀으니 다른 범상한 수령과는 비교할 바가 아닌데, 부임한 뒤에 시비가 밝지 못하고 정령(政令)이 전도되어 학교를 권장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고 하였습니다. 유생이 중들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니 이는 천고에 없던 변고이므로 듣는 이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癸酉.憲府啓曰.安東府使李純亨.性貪鄙詭誕所行不正曾爲永興府使阿諂監司柳辰全職啓善政至陞嘉善其爲人不足道矣以斯文出身之人.職至二品.非他庸常守令之比.而赴任之後.是非不明.政令顛倒.以學校勸獎爲何事.儒生被打於緇徒.此千古所無之變.聞者莫不驚愕.

《明宗實錄 卷第31, 40面》

정조 23년 2월 5일(계사)

○영중추부사 홍낙성에게는 효안(孝安)으로, 봉조하 김중수(金鍾秀)에게는 문충(文忠)으로, 판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에게는 문숙(文肅)으로, 증 영의정 민진주(閔鎭周)에게는 정간(貞簡)으로, 좌참찬 윤봉오(尹鳳五)에게는 숙간(肅簡)으로, 공조 판서 류진동(柳辰全)에게는 정민(貞敏)으로, 공조 판서 신응현(申應顯)에게는 충헌(忠憲)으로 각각 증시(贈諡)하였다.

○癸巳.○贈諡領中樞府事洪樂性孝安.奉朝賀金鍾秀文忠.判中樞府事蔡濟恭文肅.贈領議政閔鎭周貞簡.左叅贊尹鳳五肅簡.工曹判書柳辰全貞敏.工曹判書申應顯忠憲.

《正祖實錄 卷之51, 9面》

조천기 중 7월 2일(갑술)

나는 저물게 백원개(白元凱)를 불러 가정(嘉靖 : 명 세종의 연호, 1522~1566)179) 연간에 황성(皇城)이 포위를 당했던 까닭을 물었더니 원개는 이르기를,

“일찍이 경술년(명종 5년, 1550)에 성절사(聖節使) 류진동(柳辰全)을 따라 경

179) 가정(嘉靖) 29년(1550)이며 우리 나라는 명종(明宗) 5년인데, 이 해 6월 을미(乙未)에 류진동(柳辰全)이 성절사(聖節使)로 파견되었다. 《明宗實錄 10卷》

사(京師)에 갔었는데, 그 해 8월 초순에 달자(獐子)의 20만 기마(騎馬)가 냉구(冷口)로부터 변새(邊塞)에 쳐들어 와서 삼하현(三河縣)과 통주(通州) 등처를 약탈하였고, 14일에는 황성(皇城) 아래까지 쳐들어 와서 동북쪽 모퉁이를 포위하고서 성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마구 죽였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었으며, 23일야야 모두 물러갔던 것입니다.

余暮招白元凱問嘉靖中皇城被圍之由元凱曰曾於庚戌年從 聖節使柳辰全赴京師八月初旬獐子二十萬騎馬冷口入塞掠三河縣通州等處十四日到皇城下圍東北隅抄殺城外居民者不可以數計二十三日乃去
《朝天記(中)》¹⁸⁰⁾ 갑술년(1574) 7월》

연려실기술 제3권 233면

세종(世宗)

○임금이 일찍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나인(內人)들이 무당의 말에 혹하여 성균관(成均館) 앞에서 기도를 하매 유생들이 무녀(巫女)를 쫓아냈다. 중사(中使)가 크게 노하여 그 연유를 아뢰었더니, 세종이 병든 몸을 부축케 하여 일어나 앉으면서, “내 일찍이 선비를 기르지 못했는가 염려하였더니, 이제 선비들 기운이 이러하니 내 무슨 걱정을 하리오. 이 말을 들으니 내 병이 낫는 것 같구나” 하였다.

명종조(明宗朝)에 류진동(柳辰全)이 이 이야기를 경연(經筵)에서 아뢰면서, “위께서 선비의 기운을 돋구어 줌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옵니다” 하였다. 동각잡기

○上嘗寢疾內人等惑巫言祈禱於成均館前儒生等驅逐巫女輩中使大怒啓其由 上扶疾起坐曰予嘗恐不能養士今士氣如此予何憂焉聞此言予疾似愈矣

明廟朝柳辰全以此言啓於筵中曰人主培養士氣當若是也東閣雜記 《卷之3, 659面》

대동야승 제56권 송계만록 하(松溪漫錄下)

평양 기생 무정개(武貞介)는 판서(判書) 류진동(柳辰全)의 사랑을 받았다. 데리고 몇 읍을 다녔는데, 마침 먼저 서방의 종을 보더니 슬피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류진동의 종이 꾸짖기를,

“남자의 정이 오로지 저쪽에 있고 우리 주인은 중히 하지 않는 것을 알겠소.”

하니, 답하기를,

“네 정말 사리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의 주인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겠지마는, 혹시 불행히 다른 데로 갔다가 뒷날 너를 만나면 이것보다 10배 더 할 것이다.”

180) 조천일기(朝天日記) : 1574년(선조 7) 성절사 박희립 서장관 허봉과 함께 질정관(質正官)으로 간 조헌(趙憲 1544~1592)이 연도의 풍물, 사건, 인사, 제도, 노정 등을 일기체로 쓴 기행문. 1574년 5월 10일부터 그해 9월 14일까지 일정을 기록했다. 2책 필사본 원제는 “연도일기(沿途日記)”이다.

하였다. 언어가 이처럼 민첩하였다.

平壤妓武貞介.爲柳判書辰全甫所幸.携過數邑.適見前壻蒼頭.悲咽雪涕.柳奴責之曰.娘子之情專在於彼.不重吾主可知.答曰.汝可謂不通事理者也.我爲汝主固當守節.不幸他適而見汝於異日.則十倍於此矣.其敏於言語如此. 《國譯本 288面, 原本 53面》

면앙집 권이(俛仰集 卷二)

류감사 숙춘 진동을 전송하여 호남 안찰사로 가도록 했다. 그의 호는 죽당이다.
送柳監司叔春辰全歸按湖南號竹堂 《韓國文集叢刊 26卷, 俛仰集 217 A》 《晉州柳氏文集 70面》

무릉잡고 별집 권이(武陵雜稿 別集 卷二)

류제학 숙춘의 운을 차운하여 써 주었다.
次贈柳提學叔春 《韓國文集叢刊 27卷, 武陵集 95 C》 《晉州柳氏文集 71面》

무릉잡고 원집 권이(武陵雜稿 原集 卷二)

옥당 다음 직위에 있는 류숙춘이 묵죽을 부쳐준 시에 공손히 답합니다.
敬酬玉堂亞仙柳叔春 寄默竹 《韓國文集叢刊 26卷, 武陵集 488 A》 《晉州柳氏文集 71面》

온계일고 권삼(溫溪逸稿 卷三)

어제 화정 장화사를 보내고 오늘 또 성절사 이경명, 류숙춘 양군과 더불어 작별하게 되어 정호음의 운으로 써서 먼 천리 길을 가는 이들의 면목을 세워 주었다. 먼저 장화사와 사신에 대해 서로 묻는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끝 일곱째와 여덟째 구절에 아울러 언급했다. 신기재 광한이 지었다.
昨送華亭 張華使 今日又與聖節使 李京明 柳叔春兩君作別 用鄭湖陰韻 以爲千里面目 曾與張華使 因使相問 以成久要 七八並及之 申企齋 光漢
《韓國文集叢刊 27卷, 溫溪集 290 B》 《晉州柳氏文集 72面》

석천시집 권일(石川詩集 卷一)

윤평사가 다시 영변막하로 부임할 때 전송하였다. 이름은 흥중이다.

送尹評事重任赴寧邊幕尹弘中 《韓國文集叢刊 27卷, 石川集 342 A》《晉州柳氏文集 72面》

석천시집 권일(石川詩集 卷一)

함경감사 숙춘이 생선을 부쳐주고 시를 지어 달라고 요청 하기에 이 시를 써 사례했다.

咸鏡監司叔春 寄魚索詩 詩以謝之 《韓國文集叢刊 27卷, 石川集 345 B》《晉州柳氏文集 72面》

석천시집 권삼(石川詩集 卷三)

함경도 감사 숙춘 류진동을 작별하면서
別咸鏡監司叔春柳辰全 《韓國文集叢刊 27卷, 石川集 382 D》《晉州柳氏文集 73面》

동고유고 권일(東皐遺稿 卷一)

류지사 진동에게 드리는 제문
祭柳知事辰全文 《韓國文集叢刊 28卷, 東皐遺稿 275 C》《晉州柳氏文集 76面》

농암집 권일(壘巖集 卷一)

종남산 유록끝에 쓴다.
題終南遊錄後 《韓國文集叢刊 17卷, 壘巖集 387 B》《晉州柳氏文集 81面》

농암집 권일(壘巖集 卷一)

류숙춘이 연경으로 사신갈 때 부쳐 주었다.
寄贈柳叔春 赴燕京 《韓國文集叢刊 17卷, 壘巖集 401 A》《晉州柳氏文集 85面》

묵재집 권사(默齋集 卷四)

우연히 칠언절구를 읊어 숙춘 류진동에게 주었는데 류진동은 나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偶吟七絶 書贈叔春辰全公表弟 《韓國文集叢刊 19卷, 默齋集 258 B》《晉州柳氏文集 85面》

모재집 권팔(慕齋集 卷八)

생원 류진동과 정종확이 속리산 절에서 독서할 때 써 주었다.
贈生員柳辰全 鄭從漢 讀書俗離山寺

《韓國文集叢刊 20卷, 慕齋集 143 C》《晉州柳氏文集 86面》

호음잡고 권사(湖陰雜稿 卷四)

신해년 초가을에 윤여옥 윤언평 송헌숙 류숙춘 심사용 임충거 경언희 제인로와
같이 한강에 나가 뱃놀이 했다. 忠孝 清白

辛亥初秋 與尹汝沃 尹彦平 宋獻叔 柳叔春 沈士容 林冲舉 慶彦晦 諸寅老 遊漢江

《韓國文集叢刊 25卷, 湖陰雜稿 127 D》《晉州柳氏文集 87面》

기재집 권사(企齋集 卷四)

류참판 숙춘 진동을 전송하여 연경으로 보냈다.

送柳參判叔春辰全赴燕都

《韓國文集叢刊 22卷, 企齋集 283 D》《晉州柳氏文集 88面》

퇴계집 권구(退溪集 卷九)

이상국 준경에게 답한 편지 기미년

答李相國浚慶 己未

《韓國文集叢刊 29卷, 退溪集 266 D》《晉州柳氏文集 89面》

퇴계집 권십사(退溪集 卷十四)

남시보에게 답한 편지

答南時甫

《韓國文集叢刊 29卷, 退溪集 367 D》《晉州柳氏文集 89面》

퇴계집 별집 권일(退溪集 別集 卷一)

죽당 류숙춘진동 학사가 그림으로 그린 묵죽에 화제로 썼다.

竹堂柳叔春辰全學士畫墨竹 《韓國文集叢刊 31卷, 退溪別集 17 C》《晉州柳氏文集 89面》

퇴계집 속집 권일(退溪集 續集 卷一)

남경임이 대나무 두 그루를 보내어 심도록 한 운에 차운했다. 계묘년이다.
次韻 謝南景霖送竹栽二本癸卯 《韓國文集叢刊 31卷, 退溪續集 91 C》《晉州柳氏文集 99面》

인재집 권일(忍齋集 卷一)

류숙춘의 금직운을 차운함. 이름은 진동.
次柳叔春 禁直韻辰全 《韓國文集叢刊 32卷, 忍齋集 269 A》《晉州柳氏文集 100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승지공(承旨公) 류 여(柳 璵)

자 호와 생졸년이 전하지 않고 있다. 족보에 송화(松禾) 현감 벼슬의 기록이다.
공의 증조는 시윤공(寺尹公) 류척(柳惕)이며 할아버지는 홍문관 정자(正字)를 지낸 류자행(柳子行)이다. 관계에 나가지 않아 참봉으로 끝난 류장손(柳長孫)과 우효정(禹孝精 父 良壽, 祖 仁烈)의 따님인 단양우씨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공은 사정(司正) 윤사묵(尹師默 父 尹堦)의 따님인 파평윤씨와 혼인하여 제용감정 광훈(光勳)을 두었다.

중종 2년 8월 28일(기해)

○신희철이 공초하기를,

“신은 본래 외방에 살았는데,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와서, 하원수의 집 동구에 우거(寓居)하고 있었습니다. 8~9일 전에 신이 천문 습독관(天文習讀官) 류흥조(柳興祖)와 더불어 류여(柳璵)의 집으로 향해 가다가 하원수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원수가 사랑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원수가 신등에게 앉아 이야기 하기를 청하므로 신이 잠시 앉았습니다.

하원수가 ‘가소로운 일이 있는데, 조정 재상들이 반목(反目)하여 분하게 여기고 있는 자가 많고, 이과 역시 공신을 박탈당하였다.’하기에, 신이 ‘성명(聖明)한 세상에 어찌 이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대답했더니, 하원수가 ‘지금 사성(司成)

을 가봐야겠다.’ 하였는데, 분하게 여기고 있는 재상은 이과를 지목하는 듯하였습니다.

하원수가 또 류흥조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 역시 분하게 여기고 있지 않겠나?’ 하니 흥조가 어찌서 쓸데 없는 말을 꺼내느냐?’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가버렸습니다. 류여(柳璵)의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22일에 신이 집에 있으니, 창밖에 하원수가 지나가며 신을 불렀으나, 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4일에 하원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기에, 신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하원수가 ‘윤귀수를 보러 간다.’고 하기에, 신이 잇달아 묻기를, ‘무슨 일로 가느냐?’ 하니, 하원수가 ‘나의 족인(族人)이 충순위(忠順衛)로 있는데, 상주(尙州)에서 올라왔으므로 칭축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25일 해가 진 뒤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 자가 있기에, 발[簾]을 들고 엿보니 윤귀수였습니다. 조금 지나서 하원수가 또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윤귀수는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윤귀수는 이미 지나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원수가, ‘오늘 마땅히 가서 만나야겠다.’고 하고, 또 ‘너는 윤귀수를 아느냐?’고 묻기에, 신이 ‘내가 생원(生員)으로 동시에 성균관(成均館)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 뿐이다.’고 하니, 하원수가 ‘이 사람은 덕(德)이 있으니, 내가 너와 꼭 사귀게 해야겠다.’ 하기에, 신이, ‘그대가 아니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때에 외방(外方)에 사는 두 사람이 지나가자, 하원수가 바라보고는 불러 들였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윤귀수가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전날에도 부탁하였는데 월령(月令)에 발설한 후에 귀수를 가서 볼 것이다.’ 하고 나갔습니다.

또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번에 유의정(兪義貞)의 집에 가서 물으니, 답하기를, ‘이미 금릉수(金陵守) 집에 갔다.’고 하기에, 신이 금릉수의 집을 찾아가니, 하원수 역시 그 집에 와 있었으므로 서로 만나보고 나온 것 뿐이고,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형추(刑推)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다.

○己亥○申希哲供臣本居外方爲赴試到京寓居河源守家洞口退計八九日間臣與天文習讀官柳興祖將向柳璵家過河源守家見河源守出坐舍廊河源守請臣等坐話臣暫坐河源言有可笑之事朝廷宰相反目憤憤者多李穎亦被奪功臣矣臣答以聖明之下豈有如此人河源守曰今當往見司成矣憤憤宰相似指李穎河源守且謂柳興祖曰汝兄亦豈不憤憤乎興祖曰何發無用之言乎遂告去往璵家不遇還家二十二日臣在家簾窗外河源守過行招臣臣不答二十四日河

源守乘馬過行臣問歸何處河源守曰欲見尹龜壽而往臣問因何事而往河源守曰吾族人以忠順衛自尙州上來故欲有所囑耳二十五日日沒後有乘馬過行者舉簾窺見則乃尹龜壽也俄而河源守又過行而入問曰尹龜壽無乃過去乎臣答曰龜壽已過矣河源守曰今當往見且問汝知尹龜壽乎臣曰我以生員同時居館相知而已河源曰此人有德我當使汝得交臣曰雖非君我亦已知矣於是外方居二人過行河源望見招入其人言其事何如河源守曰今者龜壽到吾家未見而歸前者亦囑之月令可爲事發說後當往見龜壽云而出去又日不記頃者往俞義貞家問之則答言已往金陵守家臣尋往則河源亦至其家相見出來耳無他所問刑推不服

《中宗實錄 卷3, 65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현감공(縣監公) 류경선(柳敬善)

증 호조참판 류유(柳柔)와 광흥창수(廣興倉守) 임문재(林文載)의 따님인 풍천임씨(豐川林氏)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났다.

남평현감과 말년에 선조 33년(1600) 거제현령(巨濟縣令)을 역임했다.

생졸년의 기록과 부인에 대한 일체의 기록이 없이 후손까지 병자보(丙子譜 : 진주류씨 최초 대동보 1756 刊行)에 무후로 기록되어 있다.

종선(從善) 순선(順善)은 아우이다.

선조 33년 12월 17일(병술)

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이 성모(聖母)의 지문(誌文)을 쓰고 새기는 일은 매우 중대하여 한 자 한 획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삼가야 하는데, 그 중에 막중한 글자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다른 글자를 잘못 써 넣었다가 다시 깎아 내고 고치기까지 하였으니, 대사(大事)에 임하여 살피지 않은 죄가 큼니다. 당상은 추고하고 담당 낭청과 서사관(書寫官)은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중략]

거제현령(巨濟縣令) 류경선(柳敬善)은 사람됨이 범람하여 전에 남평현감(南平縣監)이 되었을 적에 관가의 물건을 죄다 취하여 공공연히 나주(羅州) 본가로 실어갔으므로 온 도민이 지금까지 더럽게 여겨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줄을 타고 청탁하여 다시 목민(牧民)의 직임에 제수된 것만도 이미 해괴한 일인데, 더구나 지금 본현은 새로 병화를 겪어 온 고을이 다 탕패되어 형편이 없으니, 잔약한 고을을 소생시키는 책임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파직하고 다른 사람을 골라 대신 보내소서. 그리고 연한(年限)의 법이 법전에 실

려 있는 것은 대개 근력이 노쇠하면 번거로운 사무를 수응(酬應)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얼마 전에 상께서 특별히 하교하시어 구전(舊典)을 신명(申明)하셨는
데도, 늙어서 일을 볼 수 없는 수령들이 아직 더러 있으니 이조로 하여금 일일
이 적발하여 도태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서사관의 문제는 서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丙戌○諫院 啓曰今此 聖母誌文寫刻之事極爲重大雖一字一畫所當極意致謹而其中
莫重莫大之字不爲詳審誤以他字書填至於刻完其臨大事不察之罪大矣請堂上推考次知郎
廳及書寫並 命罷職[中略]

巨濟縣令柳敬善爲人汎濫前爲南平縣監時官家之物公然罄取輸入於羅州本家一道之人至
今唾罵而因緣請囑復授臨民之任已爲可駭而況今本縣新經兵火蕩敗無形蘇殘之責不可付
諸此人請 命罷職其代擇遣年限之法載在令甲蓋以筋力旣衰則不可以酬應繁務也頃者自
上特爲 下教申明舊典而守令之老不能治事者尚或保存請令吏曹一一摘發汰去 答曰依
啓書寫官事徐當發落

《宣祖實錄 卷之132, 19面》

선조 34년 3월 1일(기해)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거제(巨濟)에 사는 백성 조원전(趙元詮) 등 28인이 본사(本司)에 와서 소청하기
를 ‘본현(本縣)은 바다에 있는 섬이라서 왜적의 침략을 제일 먼저 당하여 이미
무인 지경이 되었는데, 전 현령(前 縣令) 류경선(柳敬善)이 지난해 봄에 부임하
여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 한결같이 보살피서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잔
여 백성들이 약간은 예전의 생업을 회복하였는데, 뜻밖에도 논박을 당하여 과직
이 되었으므로 백성들은 원통해 마지 않는다. 원컨대 3백 석의 쌀을 본관(本官)
에 바치겠으니, 류경선을 잉임(仍任)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소청
으로 인하여 이미 과직한 관원을 잉임하는 것은 사체에 온편치 못하나 지성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섬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서까지 소청하였
으니,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특별히 조처해야 할 것 같아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의 진실 여부는 그만 두더라도 이미 과직한 수령을 백성들이 소청하였다고
해서 잉임한다면 사체를 손상할 뿐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수령을 그대로 잉임
하기를 바라는 것도 꼭 성신(誠信)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소청으로
인하여 수령을 잉임시키는 것이 이미 폐습이 되었는데 계속 조장해서는 안 된

다.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류경선은 호남의 일개 무뢰배이다. 전에 남평현(南平縣)에 부임해서는 재물을 훔치는 등 비루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었다. 거제현령이 되려고 할 때는 이유중(李有中)이 이조 참관 이었는데, 그에게 말을 바치고 거제현령이 되었으니, 어찌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 편안케 했을 리가 있겠는가. 필시 피어서 소청하게 한 것일 것이다. 난을 겪은 이후로 이러한 폐습이 만연하였는데, 비변사에서는 어리석게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입계하여 잉입시키기를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니, 아, 정말 현명하다.

○己亥○上在貞陵洞 行宮○備邊司 啓曰巨濟居民趙元詮等二十八人來訴于本司曰本縣在海島首被賊鋒已爲無人之境前縣令柳敬善上年春到任視民如子一以撫摩安集爲事子遺之民稍復舊業而不意被論見罷民等不勝冤痛願納三百石米于本官柳敬善仍任云因民所訴仍存已罷之官事體未便而非但出於至誠絕島之民至於越海控訴此前日所未有之事也似當別有處置敢 稟傳曰不論渠之虛實旣已罷職之守令若以人民所訴仍之則非但有傷事體此時民人願仍其守令未必出於誠信以民人告訴仍其守令已成弊習不可長也勿爲舉行柳敬善湖南一無賴予耳前任南平縣肆行偷竊鄙陋之事及圖巨濟也李有中爲吏曹叅判給馬得拜是任安有撫摩安集視民如子之理必教誘冒呈者也亂後此弊罔有紀極備邊司矇不致察至才入 啓請仍而自 上不許嗚呼明哉

《宣祖實錄 卷之125, 1面》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소재공(素齋公) 류순선(柳順善)

중종 11년(1516)~선조 8년(1575)

자는 순중(純仲) 호는 소재이다. 증 호조참판 류유(柳柔)와 광흥창수 임문재(林文載 父 林士洪)의 따님인 풍천임씨(豐川任氏)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류정(柳貞)에 배워 명종 1년(1546)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알성시에 문과 급제하였다.

명종 4년(1549) 예문관 검열, 다음해 홍문관 저작으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이듬해 홍문관 부수찬, 명종 8년(1553) 홍문관 부교리 사간원 헌납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오고, 명종 10년 사가독서(賜暇讀書)로 독서당에 들어갔으며, 11년에 홍문관 수찬,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였다. 14년 부응교 응교, 16년에 홍문관 직제학, 17년에 형조참의를 지내고 성균관 대사성, 18년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 20년 좌승지, 21년 강원도 관찰사, 선조 6년(1573) 장례원 판결사를 지낸 문장까지 뛰어난 문신이다. 평생 책을 옆에 두고 김귀영이 지은 묘지명에 임종을 앞두고 통감강목 한질을 뽑아오게 하여 소리내어 두어 장을 읽고 운명하였다고 전한다.

배위는 공산령(公山令) 이정(李挺 父 岐山守 樞)의 따님인 전주이씨 사이에 석

필(錫弼) 석현(錫賢) 석준(錫俊) 석영(錫英)과 또한 아들 석민(錫民)을 두었으며 두 사위는 좌랑 진천인 송주빈(鎭川人 宋周賓)과 현감 함평인 이성원(咸平人 李成元)이다. 정범조(丁範祖) 서문과 채제공(蔡濟恭) 발문의 유고를 모은 소재유고(素齋遺稿)가 전하여 오고 있다.

明宗丁未二年謁聖榜閏九月二十五日初行酌獻禮親試舉人即日放榜 表

- 甲科 一人
- 進士 李壽鐵(完山人)
- 乙科 二人
- 進士 金光載(延安人), 生員 朴順善(晉州人)
- 丙科 三人
- 進士 金貴榮(尙州人), 生員 朴裕慶(密陽人), 進士 陳寔(驪陽人)

明宗丙辰十一年重試榜二月行

- 甲科 一人
- 工曹佐郎 梁應鼎
- 乙科 二人
- 奉教 姜克誠, 前掌樂正 沈銓
- 丙科 六人
- 銀溪察訪 安公信, 校書正字 邕夢辰, 黃海都事 李俊民, 檢閱 柳瑛, 兵曹正郎 柳順善, 弘文校理 睦詹

가정(嘉靖) 29년(명종 5, 1550) 9월 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어 찬(撰)한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합니다.

감사(監事)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 풍성부원군(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豐城府院君) 신(臣) 이기(李芑)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영경연사 온양부원군(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溫陽府院君) 신 정순봉(鄭順朋)

추성정난위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 청천부원군(推誠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靑川府院君) 신 심연원(沈連源)

동지사(同知事)

가선대부 공조참판(嘉善大夫工曹參判) 신 류진동(柳辰仝)

가선대부 호조참판(嘉善大夫戶曹參判) 신 주세봉(周世鵬)

편수관(編修官)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 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신 이세장(李世璋)

기주관(記注官)

선교랑 행홍문관저작 겸경연설경(宣敎郎行弘文館著作兼經筵說經) 신 류순선(柳順善)

嘉靖二十九年九月日春秋館奉 教撰前後官并錄

監事

推誠協翼炳幾定難衛 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豐城府院君臣李芑

推誠協翼炳幾定難衛 社功臣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溫陽府院君臣 鄭順朋

推誠定難衛 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青川府院君臣沈連源

同知事

嘉善大夫工曹參判臣柳辰仝

嘉善大夫戶曹參判臣周世鵬

編修官

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 教兼 經筵侍講官臣李世璋

記注官

宣敎郎行弘文館著作兼 經筵說經臣柳順善

명종 4년 5월 23일(임진)

○정원에 전교하였다.

“영의정 이기(李芑), 전 좌의정 황헌, 우의정 심연원(沈連源)에게는 각각 노비·논밭 및 가옥 1좌(坐), 숙마(熟馬) 1필, 당표리(唐表裏) 1습(襲)을, 이조 판서 상진(尙震), 지중추부사 윤원형(尹元衡)에게는 각각 노비·논밭 및 가옥 1좌, 숙마 1필을, 호조 참판 송세형(宋世珩), 이조 참판 조사수(趙士秀), 대사헌 구수담(具壽聃), 도승지 주세봉(周世鵬), 좌승지 정언각(鄭彦慤), 대사간 경혼(慶渾)에게는 각각 한 품계씩 가자(加資)하고 논밭 및 가옥 1좌를, 문사 낭청(問事郎廳) 직제학 민기(閔箕), 부응교 김주(金樹)에게는 각각 한 품계씩 가자하고 아마(兒馬) 1필을, 주서(注書) 신여중(申汝摐), 가주서(假注書) 남연경(南延慶)

과 김광재(金光載), 검열(檢閱) 고경허(高景虛)·김질충(金質忠)·류순선(柳順善)에게는 각각 한 품계씩 가자하고 활 1장(張)을, 이홍남(李洪男)에게는 3년 후에 서용(敍用)하도록 하고 노비·논밭 및 가옥 1좌를, 우승지 원계검(元繼儉), 부교리 원호변(元虎變), 사인 정유길(鄭惟吉)에게는 노비·논밭 및 가옥 1좌를 내리고, 그 나머지 의금부의 도사(都事) 및 나장(羅將)에게까지 모두 차등 있게 상을 내리라.”

壬辰○傳于政院曰領議政李芑前左議政黃憲右議政沈連源各奴婢田畝及家舍一坐熟馬一匹唐表裏一襲吏曹判書尙震知中樞府事尹元衡各奴婢田畝及家舍一坐熟馬一匹戶曹參判宋世珩吏曹參判趙士秀大司憲具壽聃都承旨周世鵬左承旨鄭彦慤大司諫慶渾各加一資田畝及家舍一坐問事郎廳直提學閔箕副應教金澍各加一資兒馬一匹注書申汝悰假注書南延慶金光載檢閱高景虛金質忠柳順善各加一資弓子一張李洪男三年後敍用奴婢田畝及家舍一坐右承旨元繼儉副校理元虎變舍人鄭惟吉奴婢田畝及家舍一坐賜給其餘義禁府都事下至羅將皆賞賜有差

《明宗實錄 卷第9, 54面》

명종 4년 8월 19일(병진)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자전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정릉(靖陵 : 중종의 능)의 주산(主山)이 좋지 않다는 말이 인종조로부터 있었는데 그때 헌부에서 비록 그 말을 전파한 사람을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그 말을 듣고 부터는 항상 미안한 생각이 있었다. 때마침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국사(國事)가 바쁘는데다 흉년까지 겹쳐 감히 일에 대한 단서를 열지 못한 지 오래였다. 지금 갑자기 능을 옮길 수는 없지만 이번 배릉 때 예관(禮官)을 시켜 지리를 잘 보는 자를 골라 그로 하여금 대가(大駕)를 따르게 하여 다시 살펴보게 하라.”[중략]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갔다. 대왕대비가 함께 나아가 수렴(垂簾)하였다. 우의정 심연원, 이조 판서 상진, 좌참찬 임권, 공조 판서 윤사식, 우참찬 윤원형, 형조 판서 김인손, 병조 판서 이준경, 대사헌 진복창, 도승지 정대년 및 기사관(記事官) 류순선(柳順善)·이관(李瓘)·남연경(南延慶)이 입시하였다. 자전이 대사헌을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고 분부하기를,

“난적(亂賊)을 제거한 후 위협에 의해 따른 자들은 불문에 부침으로써 대소 신료들이 마음을 다해 보국(輔國)하기만을 날로 바란 지 오래였는데, 지금 대사헌이 아뢰는 것을 보니 매우 한심스럽다. 처음에는 바로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고서 어떤 소인이 술책을 부리려 하는 것인가 보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아뢰는 것을 보고서야 그것이 인서가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인서는 오랫동안 대간과 시종의 직에 있던 사람이므로 위에서는 그가 당연히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무상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사헌부는 억울한 일을 펴주고 백관을 규찰하는 것이 바로 그 직임인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 남의 죄과(罪過)를 논할 때면 위에서는 혹시라도 애매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왔다. 임금으로서도 마음대로 살인(殺人)을 못하는데 어찌 은밀히 대간에게 축탁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축탁하여 듣지 않자 또 모함할 계책을 품고 복창을 허항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바로 소인이 국정을 제멋대로 요리하기 위하여 나랏일에 마음 다하는 사람을 없애려는 술책이다.

중종조부터 이렇게 은밀히 축탁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폐단이 있었는데, 그 구습을 아직까지 바로잡지 못하였다. 대저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무고하게 백성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서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를 금할 길 없다.”[중략]

하니, 심연원(沈連源)이 아뢰기를,

“대신들은 마땅히 서로 공경하며 직무에 힘써야 하고 대간은 가부(可否)를 따져 바로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윤인서는 사심을 품고 감정을 가지고 은밀히 대관에게 부탁했다가 제 뜻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상대를 죄에 빠뜨리려 하였으니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중략]

하니, 자전이 분부하기를,

“풍수설이 비록 정론(正論)은 아니지만 자손에게 있어서 부모의 분묘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주산(主山)이 좋지 않다 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 왔었는데, 행여 좋지 않다면 그런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살피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丙辰 上御朝講○慈殿傳于政院曰 靖陵主山不好之言目 仁宗朝有之而其時憲府雖治其傳播之人自聞此言恒懷未安適以天使出來國事多端加值年凶不敢開端者久矣雖不可遽爲遷陵今當拜陵時其令禮官擇其善相地者使之隨駕更令看審[中略]

○上御思政殿 大王大妃垂簾同御右議政沈連源吏曹判書尙震左贊叅任權工曹判書尹思翼右叅贊尹元衡刑曹判書金麟孫兵曹判書李浚慶大司憲陳復昌都承旨鄭大年記事官柳順善李瓘南延慶入待慈殿命大司憲進前教曰亂賊旣除脅從罔治日望大小之臣盡心輔國者久矣今觀大司憲之啓至爲寒心初不直斥雖未知罪人之爲誰意必有小人之欲行其術也及見再啓然後始知仁恕之所爲也仁恕久於臺諫侍從之任自上意謂當盡心於國事豈料無狀之至此

極乎司憲府則仲寬抑糾察百僚乃其職任也然其在常時論人罪過自上慮或有曖昧之事人君固不可任意殺人安有陰囑臺諫使殺無辜之人乎囑之而不聽則又懷陷害之謀至以復昌比之於許沆此乃小人欲專擅自恣而謀去盡心國事之人也自 中廟朝有如此陰囑構成之弊舊習猶存莫之能矯大抵民不得遂其生者京外之官殺害無辜之故也今於仁恕之事尤不勝憤嫉 [中略]

沈連源曰大臣當同寅協恭臺諫則當可否相濟而已尹仁恕挾私用情陰囑臺官而不遂其志反欲陷害情狀駭愕 [中略]

慈殿教曰風水之說雖非正論父母之墳於子孫豈不重乎况主山不好恒懷未安之心幸若不好則安有如此事乎不得已相之也

《明宗實錄 卷第9, 74面》

명종 4년 12월 22일(정사)

정유(鄭裕)를 홍문관 응교로, 송찬(宋贊)을 부응교로, 이무강(李無疆)을 교리로, 남연경(南延慶)을 승정원 주서로, 이순효(李純孝)·이광진(李光軫)을 예문관 봉교로, 최언수(崔彦粹)를 대교로,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 삼았다.

丁巳以鄭裕爲弘文館應教宋贊爲副應教李無疆爲校理南延慶爲承政院注書李純孝李光軫爲藝文館奉教崔彦粹爲待教柳順善爲弘文館正字

《明宗實錄 卷第9, 116面》

명종 5년 4월 29일(계해)

○심광언(沈光彦)을 호조 참판으로, 진복창(陳復昌)을 공조 참판으로, 구수담(具壽聃)을 경상도 관찰사로, 원계검(元繼儉)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류지선(柳智善)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세장(李世璋)을 좌승지로, 이윤경(李潤慶)을 우승지로, 민기(閔箕)를 좌부승지로, 박충원(朴忠元)을 우부승지로, 정유길(鄭惟吉)을 동부승지로, 홍담(洪曇)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윤옥(尹玉)을 전한으로, 우상(禹鎔)을 응교로, 심봉원(沈逢源)을 성균관 사예로, 송찬(宋贊)을 홍문관 부응교로, 한지원(韓智源)을 교리로, 기대항(奇大恒)을 수찬으로, 임내신(任鼎臣)과 심전(沈銓)을 부수찬으로, 김귀영(金貴榮)을 박사, 류순선(柳順善)을 저작(著作)으로, 이택(李澤)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채세영(蔡世英)을 용양위 상호군(龍驤衛上護軍)으로 삼았다.

癸亥○以沈光彦爲戶曹叅判陳復昌爲工曹叅判具壽聃爲慶尙道觀察使元繼儉爲弘文館副提學柳智善爲承政院都承旨李世璋爲左承旨李潤慶爲右承旨閔箕爲左副承旨朴忠元爲右副承旨鄭惟吉爲同副承旨洪曇爲弘文館直提學尹玉爲典翰禹鎔爲應教沈逢源爲成均館司藝宋贊爲弘文館副應教韓智源爲校理奇大恒爲修撰任鼎臣沈銓爲副修撰金貴榮爲博士柳

順善爲著作李澤爲南陽府使蔡世英爲龍驤衛上護軍

《明宗實錄 卷第10, 16面》

명종 5년 5월 16일(기묘)

○홍문관 부제학 경혼(慶渾), 직제학 홍담(洪曇), 전한(典翰) 윤옥(尹玉), 응교 우상(禹鎬), 교리 한지원(韓智源)과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이사필(李士弼), 수찬 이우민(李友閔)과 기대항(奇大恒), 부수찬 심전(沈銓), 박사 김귀영(金貴榮), 저작(著作) 류순선(柳順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일 천지가 안정을 잃어서 재변이 거듭 이르고 흠비가 내려 낮에도 어둡고 꿩이 정전(正殿) 지붕에 모이는 등 전고에 없는 재변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인자한 마음으로서 어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중외(中外)에 하유하여 잘못된 점을 다 말하도록 하시면 무릇 혈기를 가진 사람치고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구언(求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말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하께서는 사소한 의견은 즉시 채납(採納)하시나 시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정(邪正)이 판연한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완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말을 받아들이는 실상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는 듯싶습니다. 하물며 지금같이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의가 함부로 일어나는 때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국가의 대사에 관계되는데, 오히려 선왕조의 구신이라 하여 잠깐 가벼운 견책만 보이니, 장차 어떻게 인심을 진정하고 하늘의 뜻에 답하려 하십니까.”

하니, 답하기를,

“대간이 아뢴 것을 어찌 즐겨 따르지 않겠는가. 구수담 등은 그 죄로 본다면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선왕조의 구신이므로 차마 무겁게 다스릴 수 없다. 때문에 윤희하지 않는다.” 하였다.

己卯○弘文館副提學慶渾直提學洪曇典翰尹玉應教禹鎬校理韓智源鄭宗榮副校理李士弼修撰李友閔奇大恒副修撰沈銓博士金貴榮著作柳順善上劄曰伏以近日天地失寧災異疊臻雨土晝暝雉升正殿前古所無之變莫不畢見以上天仁愛之心豈無所由而然也 殿下論中外命盡言闕失凡有血氣孰不感激第以求言非難受言爲難受之非難行之爲難 殿下於言之微小者雖卽採納而至於是非明著邪正判然之事拒之愈固臣等恐 殿下受言之實猶有所未至也況今人心不靖異議橫生此實關國家大事而尙諉諸 先朝舊臣薄示輕譴將何以鎮人心而答天意乎答曰臺諫所啓豈不樂從壽聃等以其罪觀之雖不足惜 先朝舊臣不忍重治故不允

《明宗實錄 卷第10, 31面》

명종 5년 5월 22일(을유)

대사헌 송세형(宋世珩)¹⁸¹, 대사간 신영(申瑛), 집의 성세장(成世章), 사간 이무강(李無疆), 장령 이희손(李希孫)·송찬(宋贊), 헌납 한옥(韓沃), 지평 임내신(任龜臣)·고맹영(高孟英), 정언 최언수(崔彦粹)·임여(任呂)가 아뢰기를,

“구수담 등의 죄를 정할 때 위에서 경중을 분별해야 한다고 분부하셨는데, 신들이 상세하게 살피지 못하여 일을 많이 그르쳐 물의가 있게까지 하였습니다. 재직하기가 미안하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구수담 등에 대하여 경중을 분별한 것은 당초 위에서 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송세형과 신영 등이 또 아뢰기를,

“공조 참판 진복창(陣復昌)은 본디 사독(邪毒)한 사람으로 외람되어 청요직(淸要職)에 올라 마침내 특별히 발탁되었으니 은총이 분수에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득 교만하고 고약한 마음을 먹고서 꺼림없이 방자히 굴고 날로 전횡(專橫)을 일삼았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사소한 원한이라도 반드시 보복하였으므로 공경 대부분부터 아래로 천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를 무서워하기를 마치 승냥이나 독약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대부가 모여서 담화할 때에 말이 진복창에게 미치면 두려운 기색을 하며 서로 눈짓하여 중지시켰습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따라서 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중략]

○홍문관 직제학 홍담(洪曇), 전한 윤옥(尹玉), 응교 우상(禹鎬), 교리 한지원(韓智源)·정종영(鄭宗榮), 부교리 이사필(李士弼), 수찬 이우민(李友閔)·기대항(奇大恒), 부수찬 심전(沈銓), 박사 김귀영(金貴榮), 저작(著作) 류순선(柳順善)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진복창은 죄가 가득 차고 악이 극심한데도 공론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기세가 성하여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심이 더욱 울분하여 대간의 논의에 격발되자 중외의 인심은 통쾌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고 혼연히 모두 입을 모아 경축하니 이 어찌 미세한 일이 전파된 것이라고 하여 오히려 지체하여 머뭇거리며 생각할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그 간사한 것을 밝게 살피시지 못해 그로 하여금 멋대로 악한 짓을 하게 놓아 두었고 지금 죄인으로 잡힌 날에 와서도 오히려 망설이며 그 사

181) 송세형(宋世珩) : ?~1553.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헌숙(獻叔). 호는 반곡(盤谷). 본관은 여산 송연손(宋演孫)의 아들이며 정국공신으로 서화에 뛰어난 세림(世琳)의 아우이다. 중종 27년(1532) 별시문과 급제. 주서, 응교, 부제학 등을 지내고 명종이 즉위하자 위사공신에 올랐으며 대사헌, 호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어서는 중 보우(普雨)의 처벌을 소청하였다. 특히 그 형제 송세구(宋世球)의 묘갈명을 류진동이 썼는데 현재 태인 무성서원 뒤쪽에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에 의심을 가지고 진복창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공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신들은 감히 머물러 기다리며 시일을 경과할 수 없어서 곧 상하가 다 함께 분노한 것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복창의 간사하고 반복하고 교활하고 독한 형상은 이루 다 기록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의 세력과 지위가 이미 높아져 사람들이 감히 그의 악을 논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날로 임금을 무시하고 부도한 마음을 쌓아 심지어 언어에 나타내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록하되 조금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안명세(安名世)가 죄를 입을 때에 그는 밖으로는 공론을 따르고 속으로는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순봉(鄭順朋)을 본래 아는 사이라고 하여 사적으로 그의 집에 찾아가 힘써 구해줄 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였는데, 정순봉이 김종직(金宗直)의 시집(詩集)을 내어 보이며 그 당시 사신(史臣)들이 죄를 입었던 일을 가지고 거절하자 그는 감히 다시 말을 못하고 물러 나왔습니다. 이는 유신현의 역당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는 또 홍문관에서 선운(宣醞 : 임금이 술을 하사함. 또는 그 술)하던 날 직접 전교를 받았는데 금방 돌아서서는 그곳에 있던 병풍에 ‘정녕한 전교는 비록 귀에 가득하나 취하면 잘 잊어 버리니 너를 어찌할꼬?’라고 썼으니, 이는 또한 대간이 이른바 자전을 풍자, 모멸하여 욕이 전하에게 미쳤다고 한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 욕이 미친 말에 대해 신들은 차마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오가며 방자하게 반복하고 세력을 타서 원한을 보복하고 때를 엿보아 자신을 보존할 것을 도모하고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체하는 정성을 보여 곧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구하였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위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당한 성조(聖朝)가 일개 조그만 간신에게 모욕을 받은 바가 되었으니, 어찌 절통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밝게 처단하여 온 나라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않고 도리어 애석히 여기는 뜻을 보이시니, 후일 위망(危亡)의 형세가 조석간에 닥쳐도 다시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진복창은 평상시의 소행으로 보면 강직한 선비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발언으로 죄를 입은 자도 역시 근거가 없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다. 어찌 이같이 무상한 사람인 줄을 알았겠는가. 이는 바로 나의 학식이 얕고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없기 때문이다. 대죄로 다스리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갑자기 정할 수가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진복창이 뜻을 얻은 이래로 인물(人物)을 해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는 성품이 매우 교활하여 이기(李芑)와 한경록(韓景祿)

등 한 시대의 훈척(勳戚)들과 결탁하고, 만일 남이 자기를 논하는 자가 있다고 들으면 반드시 중죄를 가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관직이 높고 현달한 사람이더라도 꺼리지 않으니, 상이 강직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총애가 날로 돈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였다. 이때에 사사로운 혐의로 명사(名士) 다섯 사람을 제거할 것을 꾀하였는데, 사인(舍人) 윤춘년(尹春年)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줄을 알고 바로 윤원형에게 말하였다. 윤원형이 ‘한경록에게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윤춘년이 곧 한경록에게 고하매, 한경록은 억지로 따랐다. 진복창이 막 부총관(副總管)으로 입직하였다가 합사(合司)¹⁸²의 소식을 듣고 이속들을 불러놓고 성내면서 말하기를 ‘양사(兩司)가 어찌 내게 상의도 않고 마음대로 아뢰 수 있는가?’ 하였다. 조금 후에 이속이 계사(啓辭)를 가지고 와서 보였는데, 바로 그 일이었다. 흥인문(興仁門) 밖으로부터 금부로 끌려오는데 길에서 물 길는 여자를 만나 물을 떠 달라고 청해 갖을 벗고 마시니, 길 옆에서 보는 자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이에 앞서 진복창이 죄인을 논집할 때에는 반드시 종묘 사직을 들어 말하였기 때문에 꼭 먼 지방에 정배를 하였는데, 진복창을 정배할 때는 비록 종묘 사직을 내세우진 않았더라도 금부가 공론으로써 마침내 삼수(三水)에 정배하였다.

乙酉大司憲宋世珩大司諫申瑛執義成世章司諫李無彊掌令李希孫宋贊獻納韓沃持平任鼎臣高孟英正言崔彥粹任呂啓曰具壽聃等定罪時自上教以分輕重臣等不能詳察多有誤事至有物論在職未安請遶臣等之職答曰具壽聃等分輕重事當初自上所爲勿辭世珩申瑛等又啓曰工曹叅判陳復昌本以邪毒之人濫躡清要竟被超擢恩寵踰分便生驕悍縱恣無忌日事專擅少有不愜於心睚眦必報自公卿大夫下至賤隸畏之如豺虎毒藥士大夫會話間言及復昌愾然變色相目而止之人心如此國事從可知矣[中略]

○弘文館直提學洪曇典翰尹玉應教禹鏞校理韓智源鄭宗榮副校理李士弼修撰李友閔奇大恒副修撰沈詮博士金貴榮著作柳順善上筭曰伏以陳復昌罪盈惡極而公論至今未發者以其勢焰熾張人莫敢開口也今者人心愈鬱而乃激於臺諫之論中外人心莫不痛快欣然相慶不謀而同是豈傳播隱微之事尚可遲留顧思者耶 殿下旣不能明察奸回使自縱惡而及今罪人斯得之日尚且留難疑慮於其間以爲復昌或不然而公論或不實也臣等不敢留待經日卽以上下之共憤爲 殿下申焉復昌傾邪反覆陰狡毒害之狀不暇殫記其勢位旣隆而人莫敢議其惡則日蓄無君不道之心至於形諸言語筆之衆見略無忌憚頃者安名世被罪之時外從公議內實曲護以鄭順朋爲素所見知私謁于其家顯言力救順朋出示金宗直詩集以其時史臣等被罪事折之不敢更言而退此與大唱惟新逆黨無罪之說同一意也至於館中宣醞之日親承傳教而旋卽書於座上屏風曰丁寧傳教雖盈耳醉則能忘奈爾何此亦與臺諫所謂譏侮 慈殿辱及 殿下

182) 합사(合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합동하여 일을 의논하는 것.

之語同一意也其所辱及之言臣等不敢忍言焉往來彼此恣爲反覆乘勢報怨伺時自謀陽示爲國之謀以釣訐直之名豈有一毫爲上之心哉堂堂聖朝爲么麼一奸人之所辱豈不痛心哉 殿下不卽明斷以謝一國而反示顧惜之意臣等竊恐後日危亡之勢迫在朝夕而更無爲 殿下言之者也答曰陳復昌以常時所爲見之則剛直之士無禍於此以其所言而被罪者亦非無據故以爲爲國之人也豈知如此無狀乎此乃由予學識短淺亦無知人之明故爾治以大罪非輕故不得卒定而已

史臣曰復昌得志以來傷人害物人皆側目而性甚巧點締結李芑韓景祿一時勳戚之人若聞人有議己者則必加重罪而後已雖秩高顯之人無所顧憚 上疑以爲剛直故眷注日篤人莫敢下手至是以私嫌謀去名士五人舍人尹春年知人心厭苦乃言於元衡元衡曰不可不議於韓景祿春年卽告於景祿景祿黽勉從之復昌方以副摠管入直聞合司之奇招吏輩怒曰兩司安有不謀於吾而擅啓之理乎俄而有吏持啓辭來示乃其事也自興仁門外拿歸禁府路逢汲井之女乞瓢水而脫笠飲之道傍觀者咸快之先是復昌論執罪人必以宗社爲言故定配必於遠地至是復昌定配時雖無宗社之言而禁府以公論竟配三水

《明宗實錄 卷第10, 35面》

명종 5년 7월 21일(임자)

상이 조참(朝參)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송세형, 대사간 원계검 등이 구수담은 연좌하고 적몰할 것과 허자·송순·이준경·이윤경·신거관은 극변에 유배하고, 이제·류창문·최개국은 문의 출송할 것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여섯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홍문관 부제학 경혼(慶渾), 직제학 홍담(洪曇), 전한(典翰) 윤옥(尹玉), 응교(應敎) 우상(禹鎬), 부응교 윤춘년(尹春年), 교리(校理) 한지원(韓智源)·정종영(鄭宗榮), 부교리 이사필(李士弼), 부수찬(副修撰) 왕희걸(王希傑), 박사(博士) 김귀영(金貴榮), 저작(著作) 류순선(柳順善)이 차자를 올리기를,

“구수담¹⁸³의 흉악한 역심(逆心)은 제 스스로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발로한 것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그 본심을 미루어 보건대 역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백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말감(末減)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허자와 송순은 수담과 결탁하여 이의(異議)를 부추겼고, 윤경과 준경은 중열(中悅)의 죄를 벗겨주려고 간사한 의논을 주창했으며, 신거관은 죄를 받은 사람으로 외람되게 서울에 출입하며 그들과 동조하여

183) 구수담(具壽聃) : 1500~1550. 조선 명종(明宗) 때 문신. 자는 천로(天老). 본관은 능성(綾城). 문과에 급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화를 입은 유림(儒林)의 서용(叙用)을 청하다가 파직, 후에 나세찬(羅世纘)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어 유배되었다. 대사헌 재직시 갑산(甲山)에 유배되었고, 류관(柳灌)을 변호하였다가 사사(賜死), 선조 때에 신원(伸冤)되었다.

그 죄가 모두 균일하니 극변에 물리쳐야 하는데도 가까이 편한 곳에 유배했으니 물정이 더욱 울분해 합니다.

이제 · 류창문 · 최개국은 모두 역적의 친속으로 범한 죄가 많은데도 죄를 정할 당시에 누락되었으니 요행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도성 안에 있으니, 후일에 국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근심이 없을지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국가 대사를 위하여 여러날을 극력 논하는데도 상께서 이렇도록 망설이며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공론의 울분이 오래될수록 더욱 격해질 뿐만 아니라, 왕법이 엄하지 않아 난적의 무리를 징계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수담은 죄가 크고 악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미 중한 법을 적용했는데 자백도 받지 않은 사건을 율에 의거, 죄를 정하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해도 불가하므로 율허하지 않는다. 허자 등은 죄상이 이와 같으나 여러 대의 재상으로서 이미 유배되었으니 고칠 필요없다. 이제 등은 애당초 연좌할 것을 거론하지 않았고 문의 출송 또한 법전에 없기 때문에 율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壬子 上受朝參御朝講○大司憲宋世珩大司諫元繼儉等啓具壽聃緣坐籍沒許磁宋純李浚慶李潤慶慎居寬極邊遠竄李霽柳昌門崔蓋國門外黜送事皆不允至六啓不允○弘文館副提學慶渾直提學洪曇典翰尹玉應教禹瑞副應教尹春年校理韓智源鄭宗榮副校理李士弼副修撰王希傑博士金貴榮著作柳順善上筭曰具壽聃兇逆之心自不能掩故其發於言者固非一再而顯有證據推其本心與逆賊無間不可以不取服而未減其罪許磁宋純締結壽聃鼓動異議潤慶浚慶謀釋中悅唱爲邪議慎居寬以彼罪之人冒入都下互唱於其間厥罪惟均所當遠竄而近配便地物情愈憤李霽柳昌門崔蓋國俱以逆賊親屬所犯亦多漏網於定罪之日已云幸矣尚在輦轂之下怨懟譁張之患安保其必無於後日也臺諫爲國家大事累日極論而自上留難至此尚不快從非徒公論鬱抑久而愈激竊恐王法不嚴無以懲亂賊之黨也答曰壽聃罪大惡極故已示重典而非取服之事反覆計之決不可依律定罪故不允許磁等罪狀如此故以累朝宰相已爲竄逐不須改也李霽等初不舉論於緣坐而門外黜送又無法典故不允 《明宗實錄 卷第10, 62面》

명종 5년 9월 15일(을사)

상이 조강과 석강에 나아갔다.

○홍문관 직제학 홍담(洪曇), 전한 윤옥(尹玉), 부응교 이사필(李士弼), 교리 한지원(韓智源), 수찬 이수철(李壽鐵), 박사 김귀영(金貴榮), 저작 류순선(柳順善), 정자 김여부(金汝孚)가 차자를 올리기를,

“홍역을 저지른 무리들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법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철저히 심문하지 않고 갑자기 가벼운 율을 따르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지한 아랫사람들이 금령(禁令)을 조금 어긴 것은 정상으로 보아 용서할 만한 데도 무거운 율을 적용하여 형장(刑杖)을 가하였으니 법을 적용함에 있어 경중이 모두 정당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대간의 논쟁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이와 같이 굳게 거절하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봉춘(李逢春) 등의 일은 상하가 통분해 하는 것으로 이미 현저히 드러났고 죄가 중사에 관계되니 비록 전하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마음으로도 결코 일개 흉역을 위하여 왕법(王法)을 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릉(光陵 : 세조(世祖)의 능)의 하인들이 중들에게 일을 시키자고 청한 것은 제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禮)에 의거하여 고한 것이요, 승도들의 모욕이 실로 유경(裕慶)의 노여움을 격발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유경의 노여움은 바로 중 때문에 노한 것일 뿐 별다른 뜻은 없는 것이니 유경은 정상으로 보아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그 아랫사람들이겠습니까? 복역(服役)하는 무지한 일개 천민이 단지 지난날의 구습에 따라 오늘날의 새 금령을 범한 것이지 어찌 감히 자전의 뜻을 경멸할 마음이 있어서였겠습니까?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신들도 함께 통분했을 터인데 어찌 하찮은 생명 하나를 아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함부로 진달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릇 전지(傳旨)에 의해 외방 고을에서 추고하면 으레 자백받고 회계(回啓)하게 되는데, 이미 경멸했다는 죄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자신의 죄가 꼭 죽을 죄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 것이니 결국 장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비록 회계하는 날 참작하여 가볍게 해주려고 해도 반드시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전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상과 법을 참작, 쾌히 공론을 따르시어 죄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기룡을 받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봉춘의 일은 죄가 중한 줄을 모르지 않으나 근래 장하에서 죽는 자가 많으므로 초개 같은 인간에게 단지 목숨만 붙여 주었을 뿐이요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은 아니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다. 박유경의 일은 중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전께서 능침(陵寢)을 위해 역사를 시키지 말라는 명을 여러 차례 내렸고, 심지어는 본 고을로 하여금 잘 보호하라는 체문(帖文)까지 만들어 주게 했으니 마땅히 군명(君命)을 공경하여 침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재소(齋所)에서 함부로 벌을 주었으니 이것이 어찌 왕명을 무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단지 그가 실수했다는 뜻만 보였을 뿐이다. 하리들이 백성을 침해하는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었다. 비록 승도들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잘 보호하라

는 법이 있는데도 전과 같이 침해하여 사역시켰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하된 자로 군부(君父)의 명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찌 차마 온전히 석방할 수 있겠는가? 1~2차 형신(刑訊)한 뒤 다시 아된다면 짐작해서 조치하겠다.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乙巳 上御朝夕講○弘文館直提學洪曇典翰尹玉副應教李士弼校理韓智源修撰李壽鐵博士金貴榮著作柳順善正字金汝孚上筭曰伏以凶逆之徒事狀已著在法罔赦而訊不究竟遽從輕律無知下人小違禁令其情可恕而擬以重律輒加刑杖用法輕重俱失其當臺諫之論爭不得不爾而 殿下牢拒至此臣等之惑滋甚焉李逢春等事上下之所痛憤既已顯發罪關 宗社雖以 殿下好生之心決不可爲一兇喘而撓王法也若 光陵下人之請役寺僧不過爲祀事援禮告之而僧徒之陵轍實有以激裕慶之怒裕慶之怒直怒僧而已別無他意則在裕慶情且可恕况其下人哉無知服役之一賤民只循往時之舊習而誤犯今日之新禁豈敢有輕蔑 慈旨之心哉如或有一毫輕蔑之心則臣等之所共痛心豈惜么麼一性命而冒陳不情之辭乎凡以傳旨推於外邑者例爲取服而回啓既負輕蔑之名則彼雖無知亦知其罪抵必死決至於杖斃而已雖欲酌輕於回啓之日必無及矣於 殿下欽恤之心爲如何哉伏願 殿下參照情法快從公論毋使有失出失入之譏也答曰李逢春事予非不知罪重但爲近來杖死者多而如草芥之人只持寸命而已非專釋其罪也不須更改朴裕慶事非爲寺僧也自 慈殿爲陵寢累有勿役之令至使本官成給完護帖文則所當敬待君命不可侵犯而枉罰齋所此豈非不有君命者乎然只示其所失之意耳下吏之侵民莫甚於此時雖僧徒之事既有完護之法而如舊侵役此豈非不有君命哉於人子之心不有君父之命者豈忍專釋乎一二次刑訊後更稟則當斟酌爲之不可改之

《明宗實錄 卷第10, 83面》

명종 6년 4월 29일(정해)

○조사수(趙士秀)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몽량(李夢亮)을 경상도 관찰사로, 이세장(李世璋)을 승정원 도승지로, 정유길(鄭惟吉)을 우승지로, 권철(權轍)을 좌부승지로, 홍담(洪曇)을 우부승지로, 윤옥(尹玉)을 동부승지로, 이탁(李鐸)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경혼(慶渾)을 예조 참의로, 성세장(成世章)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사필(李士弼)을 응교(應教)로, 정종영(鄭宗榮)을 교리(校理)로, 김희삼(金希參)을 부교리로, 이중경(李重慶)을 사간원 정언으로, 허엽(許曄)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김귀영(金貴榮)을 부수찬으로, 류순선(柳順善)을 박사(博士)로, 김여부(金汝孚)를 저작(著作)으로 삼았다.

丁亥○以趙士秀爲弘文館副提學李夢亮爲慶尙道觀察使李世璋爲承政院都承旨鄭惟吉爲右承旨權轍爲左副承旨洪曇爲右副承旨尹玉爲同副承旨李鐸爲弘文館典翰慶渾爲禮曹參

議成世章爲弘文館直提學李士弼爲應教鄭宗榮爲校理金希參爲副校理李重慶爲司諫院正言許曄爲弘文館修撰金貴榮爲副修撰柳順善爲博士金汝孚爲著作 《明宗實錄 卷第11, 46面》

명종 6년 10월 24일(무인)

○홍문관 부제학 조사수(趙士秀), 직제학 이탁(李鐸), 전한 윤춘년(尹春年), 응교 우상(禹鎬), 부응교 정종영(鄭宗榮), 교리 정유(鄭裕)·이감(李戡), 부교리 왕희걸(王希傑), 수찬 허엽(許曄), 부수찬(副修撰) 김귀영(金貴榮)·류순선(柳順善), 저작 김여부(金汝孚)가 상차하기를,

“근년 이래로 천변이 속출하고 수한(水旱)이 계속되어 국세(國勢)는 공허하고, 백성은 곤궁에 빠져 위망의 화가 조석에 임박하였으니 비록 이윤(伊尹)과 주공(周公)같은 유능한 이가 나온다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어찌 그 원인이 없었겠습니까. 둔전(屯田)은 군국(軍國)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양전(良田)을 많이 점유하여 자기의 사물로 삼으며, 방납(防納)은 백성을 좀먹는 간특한 술책인데 주군(州郡)에 청탁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며, 또 관작(官爵)은 국가의 귀중한 그릇인데 오직 뇌물이 들어오고 분경(奔競)하는 사람들이 문전에 가득하며, 양민(良民)은 국가에서 부리는 것인데 사반(私伴)¹⁸⁴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남의 노비를 탈취하고도 본래부터 자기에게 있던 것처럼 하고 주군에 끝없이 징색합니다. 그리고 전조(銓曹)의 장관이 조금만 자기 뜻에 어긋나면 무고로 중상하고, 청의(淸議)를 가진 선비가 자기의 실수를 논하면 죄로 조치하는 등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해가 갈수록 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방관(傍觀)만 하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이런 풍습이 물들게 되면 장차 약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공론이 막히어 발설(發洩)되지 않습니다. 이렇고도 국가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같은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상계서 아무리 세도(世道)를 만회하려고 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벌 백계(一罰百戒)를 늦출 수 있겠습니까. 영중추부사 이기(李芑)가 비록 막대한 공이 있으나, 역시 막대한 죄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허해지고 백성이 곤궁해지는 것은 실상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풍습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어

184) 사반(私伴) : 사사로운 반인(伴人). 원래 반인은 신역(身役)이 없는 양인(良人)을 당상관 이상에게 근수(跟隨)로 부리게 준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이들을 사적으로 차출하여 부리는 것을 사반이라 한다.

찌 영부사만 그러하겠는가. 이는 필시 노쇠하여 사려(思慮)가 전만 못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이미 재상에서 체직되었고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니, 비록 죄를 주지 않더라도 어찌 그 과오를 회개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이기가 젊었을 때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하였다. 그는 일찍이 ‘나의 무예는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형님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지 못했고, 나의 글솜씨도 남들보다 훌륭한데 아우 때문에 역시 이름을 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의 형 이권(李眷)은 당시에 명장(名將)으로 무예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 아우 이행(李苻)은 당시 시단(詩壇)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대제학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뛰어났으나, 장리(贓吏)의 사위라 하여 높은 자리에 서용되지 못하였다. 중종조에 자기의 질손(姪孫)인 부마 한경록(韓景祿)과 은밀히 결탁하여 허통(許通)을 도모하던 차에 수상 윤은보(尹殷輔)가 그의 재능과 기국(器局)을 아깝게 여겨 드디어 ‘장리의 사위는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않는다.’는 법을 폐지하였다. 그가 허통될 당시에 췌내의 별감(別監)이 언서(諺書)를 가지고 가다가 류인숙(柳仁淑)에게 잘못 전달하였는데 인숙이 열어보니 그 서찰 속의 내용은 바로 ‘허통된 것을 깊이 하례한다.’는 등의 말이었다. 이에 인숙은 그 사실을 사람에게 퍼뜨렸고 사람은 비로소 이기가 은밀히 결탁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 마침내 논박하여 우상(右相)에서 강등시켜 병조 판서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을사년 변란에 이기가 원훈(元勳)으로서 다시 정승이 되었는데 그는 공훈을 믿고 방종을 일삼았으니 탐욕스럽고 음험하여 평생에 조그마한 원한만 있어도 역적의 무리로 지목하여 살해하기도 하고 귀양보내기도 하여 조정에 사람이 텅 비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그를 두려워 하였다. 또 전에 자기를 논박한 것을 원망하여 구수담(具壽聃)을 살해하였고, 자기를 간한 혐의로 그의 조카 이원록(李元祿)을 귀양보냈다. 이로부터 이기의 권세가 더욱 성하여져 사람들이 감히 그의 과오를 말하지 못했다. 경술년 가을 조강에 입시하였다가 중풍으로 쓰러져 별감 몇 사람이 들어다가 장청(將廳)에 두었는데 끝내 폐질인(廢疾人)이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권병(權柄)을 놓지 않으려고 영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해를 넘기고 탄핵을 당한 뒤에야 체직되어 영중추부사가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공론이 격렬하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戊寅○弘文館副提學趙士秀直提學李鐸典翰尹春年應教禹鐸副應教鄭宗榮校理鄭裕李戡副校理王希傑修撰許曄副修撰金貴榮柳順善著作金汝孚上劄曰伏以近年以來天變疊出水旱相仍國勢空虛生民凋率危亡之禍迫在朝夕雖使伊尹周公起而扶之未能措手也臣等嘗思

致此之由豈無所自乎屯田軍國之所需而廣占良田以爲己私防納蠹民之奸術而請囑州郡以爲自利官爵國家之名器而惟貨惟來桃李盈門良民國家之所使而私伴之多至於累百奪人臧獲若固有之徵索州郡無有紀極銓曹之長少違其意中之以辜清議之士若論其失置之於罪日以日深歲以歲甚人皆傍觀莫敢開口染習成風將至於不可救藥公論湮鬱而未洩猶爲國有人乎若不治如此之人則自上雖欲挽回世道其可得乎懲一儆百其可緩乎領中樞府事李芑雖有莫大之功亦有莫大之罪國之空虛民之困瘁實由於此人之職競臣等在論思之地不敢不告也答曰此習非一朝一夕其來已久豈獨領府事爲然此必年旣衰耗計慮不如前故也已適相位大功之人雖不加罪豈不改過乎

史臣曰芑少時能弓馬嘗曰吾之弓力絕人而以兄之故名不著吾之文墨過人而以弟之故亦無名蓋其兄李蒼當時名將弓力無雙其弟李荇獨步詩壇爲大提學故也又有幹能而以臧吏婿不叙顯職 中廟朝陰結姪孫駙馬韓景祿以圖許通首相尹殷輔惜其才器遂廢臧吏婿勿叙顯職之法當其許通之時闕內別監持諺書誤傳於柳仁淑仁淑開見之書中所言乃得蒙許通深賀等語也仁淑播其說於士林間士林始知芑陰結之狀駁遶右相降爲兵曹判書乙巳之變芑以元功復爲議政恃功縱恣貪而險詖平生睚眦皆指爲逆黨或殺或竄士林一空人皆重足又以前日駁己之嫌殺具壽聃以前日規諫之嫌竄其姪李元祿自是芑之勢益張人莫敢言庚戌秋入侍朝講中風氣絕別監數人昇置將廳遂爲廢病之人而猶不欲釋其權柄竊據領相之位乃踰期年被駁而適爲領中樞府事至是公論激發人皆快之 《明宗實錄 卷第12, 31面》

명종 7년 7월 2일(임오)

○왕희걸(王希傑)을 홍문관 부교리로, 류순선(柳順善)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壬午以王希傑爲弘文館副校理柳順善爲修撰 《明宗實錄 卷第13, 50面》

명종 8년 7월 4일(무신)

원계검(元繼儉)을 경상도 관찰사로,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기대항(奇大恒)¹⁸⁵⁾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영(李榮)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이영은 영남 사람이다. 군졸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므로, 관리와 백성들이 공경하고 사랑하였다.

戊申以元繼儉爲慶尙道觀察使柳順善爲弘文館副校理奇大恒爲司諫院獻納李榮爲咸鏡南道兵馬節度使榮嶺南人也撫恤軍卒吏民畏愛 《明宗實錄 卷第15, 2面》

185) 기대항(奇大恒) : 1519~1564. 조선 명종(明宗) 때 문신. 자는 가구(可久). 시호는 정건(貞堅). 본관은 행주(幸州). 문과에 급제.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부제학(副提學)이 되었을 때, 이양(李樑)이 새로 등용된 사류(士類)를 숙정하려고 하자 심의겸(沈義謙)과 협의하고 이양을 탄핵하여 귀양보냈다. 대사헌(大司憲)에 기용되어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지냈다.

명종 8년 7월 21일(을축)

정대년(鄭大年)을 경기 관찰사로, 정준(鄭浚)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심봉원(沈逢源)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박영준(朴永俊)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박민헌(朴民獻)을 의정부 검상으로, 류순선(柳順善)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김인후(金麟厚)¹⁸⁶⁾ - 김인후는 청렴하고 근신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속의 누(累)에서 벗어나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며 강호(江湖)에서 풍월을 읊조리고 있었다. - 를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乙丑以鄭大年爲京畿道觀察使鄭浚爲承政院右副承旨沈逢源爲承政院同副承旨朴永俊爲弘文館直提學朴民獻爲議政府檢詳柳順善爲司諫院獻納金麟厚清謹自守脫落世累優游詩酒朗詠江湖爲成均館典籍

《明宗實錄 卷第15, 11面》

명종 9년 9월 26일(갑자)

신희복(愼希復)을 사헌부 집의으로, 어계선(魚季瑄)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류순선(柳順善)을 교리(校理)로, 임보신(任輔臣)을 장악원 정으로 삼았다. - 임보신은 청간(淸簡)하고 온화하였는데 아름다운 천성과 올바른 의지가 시종 변함이 없었다. 급제하게 되자 중묘(中廟)는 그가 익양군(益陽君)의 사위인 것 때문에 특별히 차비문으로 불러오게 했었는데, 보신은 사알(私謁)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가지 않았었다. 이는 그의 뜻이 '사군자(四君子)란 정당하게 몸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어찌 처음 사진(仕進)하면서 먼저 사사로이 임금에게 바라겠는가.'하고 여긴 것이다. 그의 끈고 굳센 것이 대개 이와 같아, 옛사람 중에서 찾아 보아도 흔하지 않은데 오늘날 그를 아는 자가 적었다. 익양군은 중종의 서제(庶弟)이다.

甲子以愼希復爲司憲府執義魚季瑄爲弘文館直提學柳順善爲校理任輔臣爲掌樂院正輔臣淸簡溫雅天質之美心志之定終始不變及登第 中廟以益陽君之壻特召來于差備門輔臣恥其私謁而不徃其意蓋謂士君子立身當以正豈可於仕進之初先以私干其君哉其貞確類如此求之於古不易多得今世之人少有知之者益陽 中宗之庶弟也

《明宗實錄 卷第17, 44面》

명종 10년 2월 11일(병자)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丙子○以柳順善爲弘文館副校理

《明宗實錄 卷第18, 11面》

186) 김인후(金麟厚) : 1510~1560. 조선 명종(明宗) 때의 학자·문신.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담재(澹齋). 시호는 문정(文正). 본관은 울산(蔚山). 김안국(金安國)의 문인. 중종(中宗) 35년(1540) 문과에 급제.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에 등용되었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뒤에 정자(正字)·박사(博士)·부수찬(副修撰) 등을 역임하고,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옥과현령(玉果縣令)으로 나갔으며, 을사사화(乙巳士禍) 이후에는 병을 핑계로 고향 장성(長城)에 돌아가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曆)에도 정통하였다.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장성(長城)의 필암서원(筆巖書院), 남원의 노봉서원(露峰書院), 옥과(玉果)의 영귀서원(詠歸書院) 등에 봉향(奉享)되었다. 저서에 하서집(河西集)·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백련초해(百聯抄解)가 있다.

명종 10년 5월 2일(을미)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이귀수(李龜壽)를 저작으로 삼았다.

乙未 上御朝講○以柳順善爲弘文館副校理李龜壽爲著作 《明宗實錄 卷第18, 28面》

명종 10년 9월 5일(정유)

상이 조하(朝賀)를 받고 이어 조강에 나아갔다.

○김홍도(金弘度)·김귀영(金貴榮)·류순선(柳順善)·윤의중(尹毅中)·이양(李樑)·김계휘(金繼輝)·박순(朴淳)·박계현(朴啓賢)·홍천민(洪天民)·강극성(姜克誠)이 사가독서(賜暇讀書)¹⁸⁷에 피선되었다.

사신은 논한다 : 글에 능한 사람을 길러 문장을 성취시키는 국가의 문치(文治)에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사장(詞章)만 숭상하고 경학(經學)에 근본을 두지 않으면, 부화(浮華)한 풍습만 조장할 뿐이고 착실한 인재를 얻는 효험은 보지 못할 것이니, 그 폐단이 풍속을 해치고 교화를 더럽히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번에 간택된 사람 중에는 정추(精麤)가 뒤섞여 있다. 경망하고 태만한 극성(克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목을 이루어 나라를 빛내는 문장이 될 수 있겠는가. 가령 풍운월로(風雲月露)를 읊는 문장에는 능하다 하더라도 사람됨이 취할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樑)은 부탄(浮誕)함이 비할 데가 없어 중심에는 주장이 없고 행실도 인륜에 어긋나므로 문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재주가 천박한 자임에랴. 양은 정사룡(鄭士龍)의 문인으로 사룡은 양을 아들처럼 대하고 양은 사룡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의 재목이 합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구차하게 수(數)를 채웠으니, 사룡의 불공(不公)한 실책이 크도다. 사룡의 사람됨이 볼 만한 것이 없으니, 그 문인의 비루함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丁酉 上受朝賀仍御朝講○賜暇讀書被選金弘度金貴榮柳順善尹毅中李樑金繼輝朴淳朴啓賢洪天民姜克誠

史臣曰培養能文之人成就文章是實有益於國家黼黻之治而然徒尚詞章不本經學則祇長浮華之習而未見實材之成效其弊終至於風漓治汚也今之揀選之類未免有精麤之混雜而如克誠之輕妄怠慢何能成實其材而爲華國之文哉假使能風雲月露之文而爲人之不足取則何所用哉如樑之浮誕無與爲比而中無所主行又無倫則雖養成其材不足爲用而況其才薄乎樑爲鄭士龍之門人士龍之待樑如子樑之事士龍如父雖知其材之不合苟充其數士龍

187) 사가독서(賜暇讀書) :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讀書堂)에서 공부하게 한 일. 세종 8년(1426)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세조 때 없었고, 성종 24년(1493)에 다시 복구하여 오다가 병자호란 뒤에 폐지하였다.

不公之失大矣士龍之爲人已無足觀則其門人之卑汚何足恠哉 《明宗實錄 卷第19, 22面》

명종 10년 12월 29일(기미)

이사필(李士弼)을 종부시 정으로, 권용(權容)을 성균관 사성으로, 강사상(姜士尙)을 의정부 사인으로, 류순선(柳順善)을 병조 정랑(兵曹正郎)으로, 조광언(趙光彦)을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삼았다.

己未以李士弼爲宗簿寺正權容爲成均館司成姜士尙爲議政府舍人柳順善爲兵曹正郎趙光彦爲鏡城判官 《明宗實錄 卷第19, 61面》

명종 11년 10월 6일(신묘)

이희검(李希儉)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중경(李重慶)을 의정부 검상으로, 진식(陳寔)을 병조 정랑으로, 류순선(柳順善)과 이준민(李俊民)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辛卯以李希儉爲司憲府掌令李重慶爲議政府檢詳陳寔爲兵曹正郎柳順善李俊民爲弘文館修撰 《明宗實錄 卷第21, 35面》

명종 13년 3월 12일(경신)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공 사신이 벼슬 주기를 청한 소첩(小帖)과 이 이름을 쓴 단자(單子)를 삼공(三公)·영부사에게 보이라. 내 생각에는, 관반에게는 안구마(鞍具馬)를 주고 원접사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윤행(尹行)·이언경(李彦憬)에게도 상가(賞加)하고 이중량(李仲樑)·안방경(安方慶)·남경춘(南慶春)·홍춘년(洪春年)·이언충(李彦忠)에게는 말[馬]을 주고 원호변(元虎變)은 벼슬을 올리고 이중호(李仲虎)·류승선(柳承善)·류순선(柳順善)은 자궁(資窮)하지 않은 자이니 가자하고, 윤흥언(尹弘彦) 등 7인은 승천(陞遷)하고 홍겸(洪謙) 등 4인은 그 아문(衙門)에서 으뜸가는 녹(祿)과 벼슬을 주고 의원(醫員) 2인은 그 아문에서 높은 녹을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

庚申○傳于政院曰天使請爵小帖及此書名單子示于三公領府事予意則館伴給鞍具馬遠接使給加尹行李彦憬亦賞加李仲樑安方慶南慶春洪春年李彦忠給馬元虎變陞職李仲虎柳承善柳順善未資窮者加資尹弘彦等七人陞遷洪謙等四人本衙門付首品祿職醫員二人本衙門高品付祿何如 《明宗實錄 卷第24, 23面》

명종 13년 6월 8일(갑신)

상이 석강에 나아갔다.

○심봉원(沈逢源)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甲申 上御夕講○以沈逢源爲承政院同副承旨柳順善爲弘文館副校理

《明宗實錄 卷第24, 38面》

명종 13년 윤 7월 21일(병인)

○황서(黃瑞)를 병조 정랑으로, 박호원(朴好元)을 홍문관 교리로, 류순선(柳順善)을 부교리(副校理)로, 박근원(朴謹元)을 사간원 정언으로, 장사중(張士重)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김덕룡(金德龍) -행실은 효도와 우애를 겸비하고 재주는 문무(文武)를 구비했으며, 고을 다스리기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없다.-을 의주목사로, 류경심(柳景深)을 종성부사(鐘城府使)로 삼았다.

丙寅黃瑞爲兵曹正郎朴好元爲弘文館校理柳順善爲副校理朴謹元爲司諫院正言張士重爲弘文館副修撰金德龍行兼孝友才備文武治郡嚴明姦猾帖息爲義州牧使柳景深爲鐘城府使

《明宗實錄 卷第24, 47面》

명종 13년 윤 7월 27일(임신)

○성세장(成世章)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민기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중량을 사헌부 집의로, 고맹영·류순선을 장령(掌令)으로, 박근원을 지평으로, 김계를 사간원 헌납으로, 이양을 홍문관 교리로, 김제갑을 병조 좌랑으로, 유전을 사간원 정언으로, 안해를 예조 좌랑으로, 권순을 강원도 도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대간은 공론(公論)을 말하는 것이고 낭관은 열수(列宿)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두가 한때의 촉망받는 관직이다. 고맹영이 장령이 된 것과 김계가 헌납이 된 것은 모두 사람들의 뜻에 차지 않았는데, 또, 안해를 춘관(春官 : 예조의 별칭)의 낭관으로 삼았으니, 전조(銓曹)가 인물을 가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잡된 사람을 주의(注擬)한 것을 이번의 정사에서 볼 수 있다.

壬申○以成世章爲司憲府大司憲閔箕爲成均館大司成李仲樑爲司憲府執義高孟英柳順善爲掌令朴謹元爲持平金啓爲司諫院獻納李樑爲弘文館校理金悌甲爲兵曹佐郎柳埴爲司諫院正言安海爲禮曹佐郎權純爲江原道都事

史臣曰臺諫主公論郎官應列宿皆一時之望職也高孟英之掌令金啓之獻納皆不滿於人意而且以安海爲春官郎銓曹之不能權衡人物而庸雜注擬於此政可見也

《明宗實錄 卷第24, 47面》

명종 13년 9월 27일(경자)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류순선(柳順善)과 정언 김덕곤(金德鵠)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정사룡(鄭士龍)은 이미 파직하도록 명하였으나, 만일 이번의 방(榜)도 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수치를 남기게 될 것이니, 통쾌하게 결단하여 파방(罷榜)하도록 명하신 다음에야 공도(公道)가 거의 부지(扶持)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시관(試官)을 파직하였는데 그 방을 파하지 않는다면 구차하게 될 듯하다. 마땅히 대신들의 의논을 보고 헤아려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김덕곤이 또 아뢰기를,

“절의(節義)는 효행(孝行)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효행이 있는 자를 탐문(探問)하여 찾아내도록 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성과 실상이 부합되지 않는 자가 혹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도 하고, 효행이 탁월한 자가 혹 여염에 묻히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낚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혹은 표창을 받게 되는 수가 있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탐문하여 찾아낼 적에 실상대로 하고 명성만으로 하지 않은 다음에야 포장(褒獎)하는 도리에 합치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의는 숭상해야 되는 것이나, 실상이 있는 것만 취하고 소문만 난 것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庚子 上御朝講掌令柳順善正言金德鵬同辭啓曰鄭士龍已命罷職此榜若不罷則貽愧後世快斷命罷然後公道庶乎扶持矣 上曰既罷試官不罷其榜似爲苟且當觀大臣之議量處德鵬又曰節義原於孝行今令搜訪甚美政也然名實不副者或見稱於人孝行卓異者或潛伏於閭閻是以釣名干譽之人或見褒美至爲未便搜訪之際以實而不以名然後合於褒獎之道矣 上曰節義可尚採其實不取其名可也 《明宗實錄 卷第24, 62面》

명종 13년 11월 1일(갑술)

원계검(元繼儉)을 예조 참관으로,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홍담(洪曇)을 경기 관찰사로 삼았다.

甲戌朔以元繼儉爲禮曹叅判柳順善爲弘文館校理洪曇爲京畿觀察使 《明宗實錄 卷第24, 72面》

명종 14년 3월 8일(경진)

상이 선잠제(先蠶祭)¹⁸⁸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오상(吳祥)을 승정원 우승지로, 경혼(慶渾)을 좌부승지로, 강욱(姜昱)을 우부승지

188) 선잠제(先蠶祭) : 잠신(蠶神)에게 그해의 누에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제사.

로, -강육은 재간은 있었으나 품성이 더러웠다. 일찍이 수령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수를 써서 명예를 닦았는데 가자(加資)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다. -남응운(南應雲)을 함경남도 절도사로, 이우민(李友閔)을 공조 참의로, -특지(特旨)에 의하여 직제학에서 본직으로 제수되었다. -이중경(李重慶)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문형(李文馨)을 전한으로, 이양(李樑)을 응교로, 류순선(柳順善)을 부응교(副應教)로, 황서(黃瑞)와 박근원(朴謹元)을 교리로, 장사중(張士重)을 부교리로, 유흥(兪泓)을 수찬으로, 이양원(李陽元)을 박사(博士)로, -이중경 이하는 순차대로 전직(轉職)되었다. -정준(鄭浚)을 행충무위 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으로 삼았다. -정준은 일찍이 부제학으로서 강원도 감사가 되어 나가면서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 청탁했는데 원주(原州)가 곧 그의 고향이었다. 방면(方面)을 맡은 위세를 빙자하여 백성의 전토(田土)를 탈취하고 영동(嶺東)의 세염(稅鹽)을 역마(驛馬)로 수송하여 그 집에 쌓아 놓았으며 남의 장획(臧獲)을 받고 남의 희첩(姬妾)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 뒤 함경도 병사로 재직 중에 상처(喪妻)하였는데, 시신이 실린 교자(輜子)에 녹비(鹿皮)를 채워 보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살아서 왔던 부인(夫人)이 죽어 녹비가 되어 돌아가네.” 하였다.

庚辰 上親傳先蠶祭香祝○以吳祥爲承政院右承旨慶渾爲左副承旨姜昱爲右副承旨昱有幹能而性麤鄙嘗爲守令多行詭術粉飾名至受資加時人笑之南應雲爲咸鏡南道節度使李友閔爲工曹叅議以特旨由直提學拜是職李重慶爲弘文館直提學李文馨爲典翰李樑爲應教柳順善爲副應教黃瑞朴謹元爲校理張士重爲副校理兪泓爲修撰李陽元爲博士重慶以下次次遷轉女鄭浚爲行忠武衛上護軍浚嘗以副提學出爲江原監司托以爲親面原州乃其家鄉也憑藉方面之威劫奪民田驛輸嶺東之稅塩克積其家受人獲奪人姬妾無所紀極及爲咸鏡兵使在營喪妻所乘輜子克鹿皮擔送時人譏之曰生來夫人死爲鹿皮而去
《明宗實錄 卷第25, 18面》

명종 14년 5월 27일(무술)

대제학 홍섭(洪漚) -성품이 명백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밀(詳密)하였다. 그러나 조금 편협한 병통이 있었다. -에게 전교하기를,

“용렬한 내가 외람되게 큰 왕업을 이어받았는데, 본디 지식이 없고 또 학문의 공이 모자라 시가(詩家)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글줄이나 볼 뿐이다. 평소의 출제는 오로지 문형(文衡)에게 맡겨야 되는 것인데, 다만 예부터 혹 글제를 명한 일이 있어 지금 완전히 폐할 수가 없겠기에 당치 않은 일을 헤아리지도 않고 감히 자주 출제하여 전부터 여러 번 남들의 의논을 불러 일으켰으니, 내 마음에도 미안한 점이 있다. 지난번 ‘은대에 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는 글제는 진실로 잘못 생각하고 망령되이 낸 것이니, 공론이 일어난 것은 바로 임금을 바꾸는 도리에 맞는다. 내가 어찌 즐겁게 듣지 않겠는가. 내가 옥당의 제술을 보니, 과차(科次)의 고하가 모두 문의(文意)에 맞았다. 나처럼 시가를 모르는 임금이야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제술은 문아(文雅)를 권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하된 자의 글에서 충후(忠厚)·사정(邪正)과 신밀(慎密)·경박(輕薄)한 뜻을 보기 위한 것이다.

15명이 지은 것 중에서 류승선(柳承善)의,
 나이 따라 근력이 감하는 게 걱정스럽지
 소리개 어깨만 좋아하고 늙은 사람 싫어함은 아니네
 와 박근원(朴謹元)의,
 책임이 무거우니 사람을 잘 가려야지
 와 장사중(張士重)의,
 예부터 출납은 중한 임무라
 어찌 명기를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주랴
 와 이양원(李陽元)의,
 재주 없는 사람을 가볍게 주의하지 말라
 와 이희검(李希儉)의,
 어렵고 신중한 건 후설의 자리가 제일이다
 등의 짓구가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제목에 맞는 듯하다. 최옹(崔顛)의,
 나이와 덕이 모두 높은데 버릴 수 있나
 와 이지신(李之信)의,
 임금에게는 포용하는 덕이 최고이네
 와 이중량(李仲樑)의,
 좋은 시대에 어찌 이 사람을 버릴까
 와 윤인서(尹仁恕)의,
 밝으신 임금 어찌하여 노성인을 버릴까
 와 류순선(柳順善)의,
 성군은 노성인을 박대하지 않으리
 등의 짓구는, 내 생각에는 온당치 않은 듯하다.

直憂筋力隨年減

非喜鳶肩厭舊人

任重端宜務得人

出納從來爲任重

那將名器付非人

莫把非才輕注擬

難慎最先喉舌地

年德俱尊那可捨

包容德最係君人

盛際寧聞棄此人

聖明那棄老成人

聖君非薄老成人

예부터 노성인이라 이르는 이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며 노숙하여 인망이 무거운 공경(公卿)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떻게 한 쇠한 늙은이에게 합당하겠는가. 이는 곧 쇠한 늙은이를 감싸주며 글제를 기롱하는 뜻이다. 또 나를 성명(聖明)이라느니 성군(聖君)이라느니 한 데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부끄럽다. 성스럽고 밝은 임금은 옛날에도 역시 드물었는데 더욱이 말세(末世)이겠는가. 나 같은 임금은 허물이 매우 많아서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불렀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렸다. 생각해 보건대, 후세에서 나를 어떤 임금이라 할지 모르겠다. 역시 중간 정도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 같은 임금을 가

지고 감히 성스럽고 밝다 일컬으니, 부끄러움이 적지 않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밝은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인물을 통쾌히 진퇴시켰을 것이다. 어찌 꼭 일곱 글자 사이에 약간 비쳤겠는가. 나의 밝지 못함은 경도 잘 알 것이다. 이 뜻을 경연에서 경을 보고 자세히 하유하려 하였는데, 바야흐로 성하(盛夏)이기 때문에 시사(視事)를 정지한 때라서 오늘 바로 하유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진정을 통하여 숨기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또한 임금은 우대하고 신하는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의 뜻을 알라.”

하였다. 흥심이 회계하기를,

“상의 전교를 보니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 것 없지만 문직(文職)에서 대죄(待罪)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매양 보건대, 상께서는 문교(文教)로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마음을 두시어 자주 내리는 글의 서두가 보통 사람의 해아림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가 아닌 것이 없으니, 조정의 대소 신료가 누군들 받들어 읽고 심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 어제를 내는 것은, 역대의 글 좋아하는 임금들만 그랬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선왕(先王)들도 그렇게 한 예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의 근본에 말미암지 않고 그저 씻구나 주고 받기를 일삼는 임금에 비교되겠습니까.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진실로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임금은 하늘의 두루 덮어주는 의(義)를 체득하여, 허물을 감싸주어 고운 것과 추한 것을 아울러 용납해야 하는 것인데, ‘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勿用老殘人]’는 다섯 글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규(箴規)를 바쳐서 성상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려고 한 것입니다. 글을 지음에 있어서 말 뜻이 원만하지 못하여 온당치 못한 말이 좀 있으나 어찌 글체를 기롱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만일 참으로 기롱하였다면 신하된 자의 불경함이 막대한 것입니다. 더우기 유신(儒臣)을 아껴 조석으로 함께 논사하다가 갑자기 기롱하였다는 명목을 씌운다면 저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 몸을 두겠습니까. 신은 이로부터 발언하기를 어렵게 여겨 끝내 입을 다물고 묵묵히 지내는 풍습이 자라날까 걱정됩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을 확 풀어서 말을 가려서 하는 풍습이 있지 않도록 하소서.

또 이른바 ‘노성’이란 곧 나이와 덕이 모두 높고 노숙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찌 승지를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이는 다만 말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지 못하여 ‘노성’ 두 글자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저들이 상교를 들으면 어찌 부끄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상교에, ‘성명’ 등의 글자를 해당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은, 곧 한(漢) 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신하에게 ‘신성(神聖)’이라 일컫지

못하게 한 훌륭한 뜻입니다. 그러나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進言)함에 있어서 저절로 이런 등속의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도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만일 '본디 지식이 없고 그저 글줄이나 본다.' 는 등의 전교를 들으면 모두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실로 이 상교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이 평소에 품은 하찮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신하의 과오를 보고도 다만 포용하기를 일삼아,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노여움을 묵혀 두었다가 허물이 쌓이고 노여움이 깊어진 뒤에 죄책(罪責)을 가한다면, 어찌 위 아래가 일체가 되어 정의(情意)가 막힘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그릇된 점을 보면 곧 말하되, 만일 그릇되지 않음을 알고 나면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예전처럼 해야 됩니다. 만일 참으로 옳지 않았다면 신하는 임금의 말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고 잘못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하는 앞으로 상에게 죄를 얻지 않고 보전할 의논을 알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아뢴 말을 보니, 임금의 마음을 바꾸고 임금을 사랑하는 성의가 아닌 것이 없다. 가상하다. 내가 어찌 마음을 풀지 않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서경」에 ‘말이 네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道)인가 살펴 보고 말이 네 뜻에 맞거든 반드시 도가 아닌가 살펴 보라.’ 하였다. 임금이 신하의 말에 대해서 뜻에 맞는 것만을 좋아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그르게 여기면, 끝내 임금이 말하면 어기지 않는 데까지 이를 것이니, 신하들이 순종하기만을 생각하여 충성스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허물이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 나라가 따라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지금 ‘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는 제목에는, 노쇠(老衰)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뜻이 있어서 예로써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공손함이 없다. 때문에 옥당의 신하들이 응제(應製)할 때 경계하고 풍자하는 말을 쓴 것이다. 당연히 누우치고 가상히 여겨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도리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릇되게 여겨 안으로는 불평하는 기운이 있고 밖으로는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입을 다물고 묵묵히 지내는 풍습이 이루어져서 발언할 적에 모두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누가 할말을 다하여 부월(斧鉞)의 위엄을 저촉하려 하겠는가.

戊戌傳于大提學洪暹性明白簡切處事亦詳密然頗有偏狹之病曰予以庸暗叨承丕緒素無知識又乏學問之功詩家則專不得解只見墨行而已常時出題所當專付文衡之任而但自古或有命題今不可頓廢故不量不當之事乃敢頻數出題自前累招人議予心尚有未安頃者銀臺勿用老殘人之題則實是錯料妄出而發於公論正合格君之道予豈不樂聞哉予觀玉堂製述科次高下俱合

於文意如予不解詩家之君則有何言哉然凡製述非特欲爲勸獎文雅亦欲觀人臣造詞忠厚邪正慎密輕薄之意也十五人所製之中柳承善之直憂筋力隨年減非喜鳶肩厭舊人朴謹元之任重端宜務得人張士重之出納從來爲任重那將名器付非人李陽元之莫把非才輕注擬李希儉之難慎最先喉舌地等句予之愚見則似合於題崔顥之年德俱尊那可捨李之信之包容德最係君人李仲樑之盛際寧聞棄此人尹仁恕之聖明那棄老成人柳順善之聖君非薄老成人等句則予意恐未穩當自古老成人云者指年高德劭者舊望重公卿之臣也豈合於一老殘之人乎此乃曲護老殘譏侮命題之意也且稱予聖明或稱聖君予實愧焉聖明之君在古亦罕況於末世如予之君則疵累頗多上致天怒下拂人情予竊每念未知後世比予何如主而亦豈不知尚不及於中主乎將如此之君敢稱聖明羞惡不淺予少有明斷則當痛快進退人物何必微露於七字間乎予之不明卿亦想矣此意欲於經席見卿詳諭而方當盛夏停視事之時故今日卽諭也君臣之間莫如通情不諱而亦莫如君優待而臣敬畏也予意知悉洪暹回啓曰伏觀 上教不勝悚懼臣雖無狀待罪文職已久每見 上銳意文治屢下詞頭無非常情所未及料者在朝大小孰不奉覽而心服且時出御題不但歷代好文之主爲然我朝 先王亦多是例此豈不端治本徒事酬唱詩句之君之比哉微臣淺見實未知其不可也但舍垢匿瑕妍媸弃容人主所以體天覆燾之義勿用老殘人五字不無圭角之露故職在論思之地者欲獻規以廣 聖上包荒之量作句之際語意不圓辭多未穩然豈有譏侮命題之意若果譏侮則人臣之不敬莫大焉况當愛惜儒臣朝夕與之論思而遽加以譏侮之名則彼將措身於何地臣恐自此難於發言遂長舍默之風伏望 聖上於此釋然勿使有擇言之習且所謂老成卽是年德俱邁者舊尊顯之人豈承旨之敢擬哉此特不知措語輕重而誤用老成二字彼聞上教寧不愧懼且 上教不欲當聖明等字此卽漢光武令臣下不得稱神聖之盛意也然臣進言於君自不得無此等語也爲是語者亦豈有他意彼等如見素無知識只見墨行等之教則皆欲隕越于地臣亦聞此 上教不覺汗出沾背微臣平日區區之心以謂人君雖見臣下過誤但事包含不肯發言內實宿怒直待過積怒深然後加以罪譴則夫豈上下一體情意無阻之意見非輒言如知其不非則坦懷如舊若果不是則人臣因此知懼改過夫如是則人臣將不獲戾於上而知保全之議矣答曰觀卿啓辭無非格君心而愛君誠意予用嘉焉予盍釋然哉

史臣曰書曰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有言遜于汝志必求諸非道蓋人主於臣下之言以遜志爲悅而以逆于心者爲非則終至於惟其言而莫予違羣臣爭懷唯諾忠言不至於耳有過不聞而國隨以危矣今勿用老殘之題有譏侮衰老之意而無以禮接下之恭故玉堂之臣應製之際寓其規諷之辭所當悔悟嘉納而反以不合於意者爲非內有不平之氣外示自責之語夫如是則君臣之間舍默成風發言之際皆有顧慮之心孰肯盡其辭說以觸斧鉞之威乎

《明宗實錄 卷第25, 41面》

명종 14년 6월 23일(계해)

○홍섬(洪暹)을 예조 판서로, 이지신(李之信)을 예조 참의로, -특명(特命)이다. -이정

(李楨)－이정은 맑고 대범하게 군(郡)을 다스려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였다.－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이양(李樑)을 동부승지로,－이양은 당시에 전한으로 있으면서 총애가 한창 융성하였다. 상이 초배(超拜)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어렵게 여기다가 마침내 전례(前例)를 끌어 대어, 집의·사간·부응교 이상을 아울러 승지에 주의하도록 이조(吏曹)에 명해서 이양을 승지로 임명하였다. 이양은 입자년 과거에 급제하여 이때까지 8년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거상(居喪)하느라 조정에 벼슬한 것은 6년에 불과하였는데, 금년 봄에 정랑이 되고 여름에는 이런 발탁이 있었다. 물의(物議)가 떠들썩하면서도 두려워서 감히 발론하지 못하였다. 이양은 왕비의 외삼촌으로서 어리석고 성질이 험악하며 재주도 천박하여 공론에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상이 윤원형에게 싫증을 느껴 이양을 등용하여 그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였다. 때문에 관계(官階)의 차서를 밟지 않고 초탁(超擢)시켜, 크고 작은 정사(政事)와 인물의 진퇴를 모두 먼저 이양에게 은밀히 물어본 뒤에 처리하곤 하였다. 이양은 그 총애를 과장하고자 하여 은밀히 사람들에게 누설하니, 듣는 이들이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이문형(李文馨)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중량(李仲樑)을 전한으로, 고맹영(高孟英)을 사헌부 집의로, 류순선(柳順善)을 응교(應教)로, 민시중(閔時中)을 장령으로, 황서(黃瑞)를 부응교로, 안방경(安方慶)을 교리로, 김첨경(金添慶)을 지평으로, 송하(宋賀)를 병조 정랑으로, 정윤희(丁胤禧)를 부교리로 삼았다.

癸亥以洪暹爲禮曹判書李之信爲禮曹叅議特命也李楨莅郡清簡民懷之爲承政院右副承旨李樑爲同副承旨樑時爲典翰寵眷方成上欲超拜而難其舉乃引前例命吏曹執義司諫副應教以上並擬承旨而授之樑登壬子科至是八年而其中間居憂仕於朝者不過六年今春爲正郎而夏有是擢物議譁然懼不敢發樑 王妃之舅也性愚險浮才不容於公論而上厭苦尹元衡欲用樑以分其權故不次超擢大小政事進退人物皆先潛問於樑然後爲之樑欲誇張其寵多微漏於衆中聞者竊笑之李文馨爲弘文館直提學李仲樑爲典翰高孟英爲司憲府執義柳順善爲應教閔時中爲掌令黃瑞爲副應教安方慶爲校理金添慶爲持平宋賀爲兵曹正郎丁胤禧爲副校理

《明宗實錄 卷第25, 51面》

명종 15년 4월 23일(무오)

○허엽(許曄)을 공조 참의로, 목침(睦詹)을 승문원 판교로,－모두 특명(特命)이다.－노진(盧禎)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류순선(柳順善)을 전한(典翰)으로, 조광언(趙光彦)·송하(宋賀)를 사헌부 장령으로, 성의국(成義國)을 홍문관 응교로, 강극성(姜克誠)을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박근원(朴謹元)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戊午○以許曄爲工曹叅議睦詹爲承文院判校皆特命也盧禎爲弘文館直提學柳順善爲典翰趙光彦宋賀爲司憲府掌令成義國爲弘文館應教姜克誠爲世子侍講院文學朴謹元爲弘文館副校理

《明宗實錄 卷第26, 21面》

명종 15년 4월 27일(임술)

○이세림(李世琳)을 사헌부 집의로, 홍천민(洪天民)을 홍문관 전한으로, 류순선(柳順善)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이식(李拭)을 홍문관 수찬으로, 박계현

(朴啓賢)을 만포진 병마첨절제사로 삼았다.

壬戌○以李世琳爲司憲府執義洪天民爲弘文館典翰柳順善爲議政府舍人李拭爲弘文館修撰朴啓賢爲滿浦鎮兵馬僉節制使

《明宗實錄 卷第26, 22面》

명종 16년 1월 6일(정묘)

조언수(趙彦秀) -성품이 관대하고 온화하여 강건하고 과감한 기상(氣象)이 없었다.-를 동지 중추부사로, 류순선(柳順善)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황림(黃琳)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삼았다.

丁卯以趙彦秀性度寬和無剛果之氣爲同知中樞府事柳順善爲弘文館直提學黃琳爲議政府舍人

《明宗實錄 卷第27, 1面》

명종 17년 1월 13일(무술)

○영의정 상진(尙震), 좌의정 이준경(李浚慶), 우의정 심통원(沈通源), 영부사(領府事) 윤원형(尹元衡), 병조 판서 정응두(丁應斗), 참판 성세장(成世章), 참의 류잠(柳潛) -외모는 중후한 듯하나 속마음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이다.- 참지 박대립(朴大立), 형조 판서 권철(權轍) -외모는 위엄과 무게가 있어 보이나 속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서, 말년에 이양(李樑)에게 빌붙어 사람들이 더러운 인간이라고 침을 뱉었다.- 참판 강사상(姜士尙) -천품이 간중(簡重)하고 취향이 바른 쪽에 가까우나 다만 근신(謹慎)함이 지나쳐 너무나도 침묵 일변도여서 사람들이 작은 상진[小尙震]이라 일컬었다.- 참의(參議) 류순선(柳順善) -겉모양도 약게 생겼지만 속마음도 탐욕스러워 시장의 장사치들과 많이 결탁하여 그 집에는 뇌물이 가득하였다.- 이 모여 서임(徐林)을 처리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반적(叛賊) 울이(栗伊)가 '서임이 다시 임궏정과 몰래 통했다.'고 하여 금부(禁府)가 서임을 형신할 것을 청했다. 이에 상이 명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수의하도록 하였다. - 상진이 의논드리기를,

“서임의 흉사(兇詐)한 정상이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극형(極刑)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준경이 의논드리기를,

“흉악한 인간의 본성은 끝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놓아주더라도 끝내는 극악한 도적이 될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단서를 가지고 끝까지 추문하여 실정을 밝혀 뒷날의 근심을 제거하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나라에서 이미 그를 살려주었고 또 그의 한 패거리들을 잡는 데에 조금이나마 공로가 있었으니, 특별히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베푸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통원이 의논드리기를,

“서임이 처음엔 적당(賊黨)에 들어 있었지만 그 도적들을 배신하고 귀순해 왔고,

—통원의 이 의논은 그르다. 서임은 체포된 것이지 귀순한 것이 아니다.—그가 해 온 일이 모두 적도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어서 적도들이 서임을 원망하고 미워하여 원수로 삼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그들과 몰래 통하면서 감싸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정의 신의를 잃는 것은 곤란할 듯합니다.”

하고, 원형이 의논드리기를,

“서임이 10월부터 오랫동안 남치군을 따라 행동을 했으니 어느 겨를에 도망가 숨어 있는 적도들과 비밀히 내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에서 사형을 감해 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도적들을 잡는 것을 지도(指導)해 줬으니, 그 도적의 무리들이 분개하고 미워하여 해치려고 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 그를 형신한다면 도적들의 술수에 빠지는 것이 될 듯합니다.”

하고, 응두 등 7인이 의논드리기를,

“이미 죽이지 않겠다고 허락해 준 터에 이제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느닷없이 형신을 가한다면, 조정의 신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뒤에 귀순해 오는 자들을 막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논들을 살펴보니 모두 타당하다. 자세히 살펴서 회계하라고 금부에 이르라.’

하였다. 금부가 회계하기를,

“서임을 그 무리들과 면질(面質)시켜 보았는데, 별로 밝힐 만한 게 없습니다.”

하니, 서임은 분간(分揀)하여 도로 방면하라고 전교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서임이 포적(捕賊)한 공이 없지 않으니 포도청에 속하게 하여 대장의 명령을 듣게 하고 마음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戊戌○領議政尙震左議政李浚慶右議政沈通源領府事尹元衡兵曹判書丁應斗叅判成世掌叅議柳潛外似重厚內實貪鄙叅知朴大立刑曹判書權轍外似威重內實軟脆晚附李樾人皆唾鄙叅判姜士尙天資簡重趨向近正但謹慎太過容嘿亦甚人謂小尙震叅議柳順善外黠內□多結市賣貨賂盈門會議徐林處置事叛賊栗伊言徐林復與林巨叱正潛通禁府請刑訊徐林上命收議處置尙震議徐林兇詐之情不可謂必無雖不擬諸極律斟酌處置似當浚慶議凶人之性終不可移今雖見放恐其終爲劇賊因端緒之發窮推得情以除他日之患固無不可也第念國家旣許其生又有捕其同黨之微勞特施好生之德何如通源議徐林初雖黨賊皆賊歸順通源此謹非也林見捕非歸順也其所爲之事又皆有害於賊徒賊徒之疾怨徐林作爲仇讎久矣豈有潛通曲庇之理哉似難失信元衡議徐林自十月長隨南致勤而行何暇潛通逃匿之賊徒乎欲報國家償死之恩指導捕賊賊黨之憤疾欲害理勢黨然今若刑訊恐陷術中應斗等七人議旣許以不死而今不詳辨遽加刑訊則非但失信恐妨後來傳曰觀此議皆當詳察回啓事言于禁府禁府回啓曰徐林與其黨面質則別無可辨矣傳曰徐林

分揀還放仍傳曰徐林不無捕賊之功屬于捕盜廳使聽大將之令勿使任意出入

《明宗實錄 卷第28, 4面》

명종 17년 2월 25일(기묘)

상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갔다. -대제학 정유길(鄭惟吉)과 제학 이양(李樑)이 함께 입시켰다.

사신은 논한다 : 정유길이 이양과 교결하여 이렇듯 불시에 나아가 뵈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조금도 옳은 것을 진언하여 잘못을 바로잡지는 않고 아침하여 충애를 구하는 데만 힘썼으니, 정말 위로는 선조께 부끄럽고 아래로는 후세에 부끄러운 자라고 할 만하다.

정유길과 이양에게 전교하기를,

“평소 과차(科次)할 때 혹 특별한 일로 인하여 과차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저번에 옥당과 서당 인원들이 제출한 것이 대내에 많이 들어와 있기에 오늘 특별히 경들을 부른 것이다.”

하였다. -상이 큰 소리로 읊조리며 과차하게 했다.- 이어서 단자(單子)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당상들은 문장력이 뛰어난 자들이다. -홍천민(洪天民)·이홍남(李洪男)·윤의중(尹毅中)·박계현(朴啓賢)·류순선(柳順善)·허엽(許曄)·이언충(李彦忠)·이중경(李重慶)- 그리니 불의에 명소(命召)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어서(御書)를 정유길과 이양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지금 홍천민과 윤의중과 박계현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논란하게 하라.”

하였다. -그 어서(御書)의 내용은 '요(堯)와 순(舜)의 정일집중(精一執中)하는 학문, 하(夏) 나라 우(禹) 임금의 홍수 다스린 일, 성탕(成湯)이 그물을 풀고 짐승을 놓아준 일, 문왕(文王)이 정사를 하여 인(仁)을 베풀되 반드시 홀아비나 과부 등을 우선적으로 돌보아 천하의 3분의 2를 소유하게 된 일, 무왕(武王)이 주(紂)를 쳐부수고 기자(箕子)를 방문하여 홍범(洪範)을 물은 일, 한(漢) 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때 백성들이 잘 살게 된 일, 당(唐) 나라 건성(建成)의 난,¹⁸⁹⁾ 송(宋) 나라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이 북쪽 오랑캐에게 포로가 된 일,¹⁹⁰⁾ 어느 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189) 건성(建成)의 난 : 이건성(李建成)은 당 고조(唐高祖)의 장자로서 고조가 개국하여 제위에 오르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때에 그의 동생 세민(世民)의 명성에 불안을 느껴 중제(仲弟)인 제왕(齊王) 원길(元吉)과 모의하여 세민을 제거하려 했는데, 세민의 부리(府吏) 방현령(房玄齡)과 울지경덕(蔚遲敬德) 등이 권하여 세민이 먼저 이들을 쳤다. 이것이 건성의 난이다. 세민은 이후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이 사람이 당 태종(唐太宗)이다.

190) 송(宋) 나라 일 : 휘종(徽宗)은 북송(北宋) 제8대 임금으로 철종(哲宗)을 이어 신종(神宗)의 제11번째 아들로서 제위(帝位)에 올랐는데, 도교(道教)를 무척 숭봉하여 자칭 교주도군 황제(教主道君皇帝)라 했다. 그의 장자인 흠종(欽宗)이 즉위한 이듬해, 금(金) 나라의 군대가 송도(宋都) 변경(汴京)을 함락시키자 그들의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겪었다. 흠종의 연호인 정강(靖康)을 빗대어 이를 정강의 변[靖康之變]이라 한다.

조화되었던가 하는 문제, 선조(先朝) 때의 중국 사신들의 시문(詩文)의 우열, 우리 나라 옛사람 중에서 시(詩)에 가장 능했던 사람, 선조 때 나세찬(羅世纘)이 제술을 했다가 김안로에게 해를 받은 일, 191) 난정(蘭亭)에서 수계(修禊)한 일, 192)이었다. — 유길이 묻기를,

“정일집중(精一執中)하는 학문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로부터 제왕들이 서로 심법(心法)을 전수하는 데는 고작 이 몇 마디 뿐이었는데,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의중(毅中)이 답하기를,

“윤집궐중(允執厥中)은 요 임금(堯)이 순 임금(舜)에게 명한 말이고, 유정유일(惟精惟一)은 순 임금이 우 임금(禹)에게 명한 말입니다.”

하고, 계현(啓賢)이 답하기를,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는 것이 심학(心學)의 근원인데, 그것을 발로시켜서 말로 표현한 것은 요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천민(天民)이 답하기를,

“공자가 이른바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한 것이 곧 정일집중의 뜻입니다.”

하였다. 유길이 묻기를,

“삼대(三代) 이하로 이 심학을 잘 전수한 제왕이 있었는가?”

하니, 계현이 답하기를,

“삼대 이하로는 없었습니다.” [중략]

하였다. 유길이 묻기를,

“훌륭한 임금과 훌륭한 신하가 서로 만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삼대 이하로 누가 있었는가?”

하니, 계현이 답하기를,

“삼대 이하에서는 한고조(漢高祖)가 장양(張良)을 대우한 것이나 소열황제(昭烈皇帝)가 공명(孔明)을 대우한 것 등이 거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유길이 묻기를,

191) 나세찬(羅世纘) …… 일 : 김안로는 이조 중종 때의 권신으로 처음 남곤(南袞)에게 쫓겨나 유배되었으나, 뒤에 다시 그 일과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고, 누차 옥사(獄事)를 일으켜 이언적(李彦迪)·이행(李荇)·정광필(鄭光弼) 등을 귀양보냈다. 그러나 문정왕후(文定王后)를 폐하려다 실각, 중종 32년(1537)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과 함께 사사(賜死)되니 이를 정유삼흉(丁酉三凶)이라 한다. 나세찬은 중종 31년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봉교(奉敎)가 되었는데, 바로 이중시의 대책(對策) 논문에서 김안로의 흉포를 던지시 논란했다고 하여 안로의 모함으로 고성(固城)에 귀양가게 되었다. 김안로가 죽은 뒤 세찬은 다시 봉교가 되고 발영시(拔英試)에 장원했으며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192) 난정(蘭亭)에서 …… 일 : 진(晉) 나라 목제(穆帝) 영화(永和) 9년 3월 3일에 당시의 명사들이 난정에 모여서 곡수(曲水)에 잔을 띄워 계연(禊宴)을 베풀며 시를 지어 읊은 모임. 난정은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 서남쪽에 있다.

“우리 조종조에 이르러서는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계현이 답하기를,
 “성묘(成廟)가 손순효(孫舜孝)를 대우함에 있어 그 뜻이 지극했습니다.”
 하고, 천민이 답하기를,
 “성묘의 경우는 비단 손순효만 우대했던 것이 아니라, 유호인(兪好仁)·조위(曹偉) 같은 사람들도 총애를 입었습니다.”
 하였다. 유길이가 답하기를,
 “그들은 다만 문장을 잘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총애를 받았던 것일 뿐이나, 세종(世宗)과 황희(黃喜)·허조(許稠)의 관계는 극진했다 할 만하다.”
 하고, 또 묻기를,
 “조종조 이래로 조사(詔使)들의 시문(詩文)의 우열이 어떠한가?”
 하니, 천민이 답하기를,
 “가장 우수한 자로는 옛날에는 장영(張寧)과 기순(祈順)이 있었고 근래에는 당고(唐阜)와 사도(史道)가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나라에서 조종조 이래로 시를 잘 지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천민이 답하기를,
 “김종직(金宗直)입니다.”
 하였다. 유길이가 말하기를,
 “종직은 학문이 정미하고 시문도 모두 잘 하였다. 종직의 뒤로는 이행(李荇)의 시가 훌륭하였다. 박은(朴闇)의 시와 김일손(金駟孫)의 문(文)도 그 짝을 찾기가 힘들다.”
 하고, 또 듣기를,
 “선조(先朝) 때에 나세찬이 책문(策文)을 제출했다가 김안로에게 해침을 당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천민이 답하기를,
 “그 책문의 내용은 중화(中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안로는 그것이 자기를 비난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때문에 죄주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난정(蘭亭)에서 수계(修禊)한 것은 어떤 일이었으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니, 천민이 답하기를,
 “3월 상사일(上巳日)에 신에게 빌어 상서롭지 못한 재액을 떨어버리는 것은 하

나의 풍속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은 왕희지(王羲之)·사안(謝安) 등 17인이었습니다.”

하였다. 이양이 묻기를,

“수계의 일이 치도(治道)와 관계되는가?”

하니, 의중이 답하기를,

“그때는 오랑캐가 중국을 함락했으니, 안일하게 잔치나 배풀 때가 아니었는데, 해오던 습속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 편전(便殿)으로 불러 강론하게 하면서 정일(精一)에 대한 물음을 우선적으로 하였으니, 상의 바른 취향과 독실한 구도 정신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물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정미한 이 말을 끝까지 논하여 성덕(聖德)을 보좌했어야 하는 것인데 배움을 받은 것이 없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없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답한 것이 장구(章句)를 훈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어떻게 성심(聖心)을 깨우치고 성덕을 보좌할 수 있겠는가. 평소에 성명(性命)에 관한 책을 읽어 그 덕을 길러두지 못하고, 창졸간에 자기의 보잘 것 없는 문견(聞見)으로 성상의 물음에 답변하는 책임을 매우려 하였으니, 너무 소홀하지 아니한가?

己卯 上御忠順堂大提學鄭惟吉提學李樑並入侍傳于鄭惟吉

史臣曰惟吉交結李樑不時進見如此而少無獻可替否而徒務依阿取寵可謂上愧乃祖俯愧後世者歟

李樑曰常時科次或因事珠爲之未從容頃者玉堂書堂製述多入于內今日別招卿等耳上使高聲吟咏科次仍下單子曰此堂上有詞華者也洪天民李洪男尹毅中朴啓賢柳順善許曄李彥忠李重慶不意命召使之製述可也又下御書于惟吉樑曰今洪天民尹毅中朴啓賢進前論難其書曰堯舜精一執中之學夏禹治洪水成湯解網放歟文王發政施仁必先鰥寡三分天下有其二武王伐紂訪洪範漢文帝景帝致富庶唐建成之亂宋徽欽被北虜之禍古之君臣相得者何代 先朝華使詩家能否我國古人詩家最能者何人 先朝羅世績製述被金安老之害蘭亭修禊事惟吉問曰精一執中之學始於何人而自古帝王傳授心法止此數語而足耶毅中曰允執厥中堯命舜之辭惟精惟一允執厥中舜命禹之辭也啓賢曰無極太極心學之原發而言之則自堯舜始也天民曰孔子所謂克正復禮卽精一執中之意也惟吉曰三代以下有能傳心學之帝王乎啓賢曰三代以下則無矣[中略]

惟吉曰君臣相得魚水一堂者在三代以下誰耶啓賢曰三代以下如漢高之遇張良昭烈之待孔明可謂近矣惟吉曰至我 祖宗朝則何代相得乎啓賢曰 成廟之待孫舜孝其意至矣天民曰成廟則非特優待孫舜孝至如俞好仁曹偉亦被寵遇惟吉曰只以文翰而如此耳若 世宗之於黃喜許稠可謂盡矣又曰自 祖宗朝以來詔使之詩文優劣如何天民曰最優者古則張寧祈順近則唐臯史道是已又問曰我國 祖宗朝以來能詩者何人耶天民曰金宗直是也惟吉曰宗直

學問精微詩文皆善宗直之後李荇之詩善矣朴闇之詩金駟孫之文亦罕有其比也又問曰 先朝羅世纘製策被金安老之害何耶天民曰其策以中和爲主安老疑其譏已故罪之矣又問曰蘭亭修禊者何事而所會者何人耶天民曰三月上已被除不祥俗也所會者王羲之謝安等十七人也樑曰修禊之事關於治道耶毅中曰其時夷狄陷夏非偷安遊宴之時而不免時習故如此耳

史臣曰召見便殿使之講論而首以精一爲問可見 上趨向之正求道之篤承問者所當極論精微之言以補 聖德可也而學無所受心無所得空空如也故其所對不過訓誥章句而已何能啓沃 聖心而裨補 聖德乎平日不讀性命之書以養其德倉卒欲以所聞見仰塞 聖問不已疎乎

《明宗實錄 卷第28, 12面》

명종 17년 8월 12일(갑자)

박충원을 한성부 좌윤으로, 고맹영을 형조 참의로, 윤의중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류순선(柳順善)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박을을 병조 정랑으로, 이인을 홍문관 부교리로, 류영길을 병조 좌랑으로, 이충작(李忠綽)을 형조 좌랑으로, 손여성(孫汝誠)을 성균관 전적으로, 임열(任說)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甲子以朴忠元爲漢城府左尹高孟英爲刑曹叅議尹毅中爲弘文館副提學柳順善爲成均館大司成朴栗爲兵曹正郎李詡爲弘文館副校理柳永吉爲兵曹佐郎李忠綽爲刑曹佐郎孫汝誠爲成均館典籍任說爲平安道觀察使

《明宗實錄 卷第28, 32面》

명종 18년 3월 6일(갑신)

정응두(丁應斗)를 의정부 좌찬성으로, 이몽량(李夢亮)을 우참찬으로, 김개(金鎧)를 형조 판서로, 심수경(沈守慶)을 경상도 관찰사로, 김덕룡(金德龍)을 전라도 관찰사로, 류순선(柳順善)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이정빈을 성균관 전적으로, 기대승(奇大升)을 승정원 주서로 삼았다.

甲申以丁應斗爲議政府左贊成李夢亮爲右叅贊金鎧爲刑曹判書沈守慶爲慶尙道觀察使金德龍爲全羅道觀察使柳順善爲承政院同副承旨李廷賓爲成均館典籍奇大升爲承政院注書

《明宗實錄 卷第29, 11面》

명종 18년 4월 16일(계해)

윤현(尹鉉)을 승정원 도승지로, 류순선(柳順善)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신호(申灝)를 동부승지로, 김위(金偉)를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신호는 무인으로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본래 아는 것이 없는데, 후설(喉舌)의 지위에서 출납(出納)하는 임무를 이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재상 권철(權轍)과 혼인한 집이었고 또 권문(權門)을 잘 섬

겼으므로 차지하지 못할 자리에 함부로 들어왔다. 그후에 지위가 2품에 이르렀고 절도사의 중임을 여러 번 제수받았으니 인아(姻婭) 관계로 인해 좋은 벼슬을 하는 폐단은 탄식할 만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동부승지 신호는 평소에 물망(物望)이 없을 뿐 아니라 전에 수령이 되어서도 삼가지 못한다는 비평이 있어서 지난번 곤수(閫帥: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이칭)에 의망(擬望)되었을 때에도 여론이 미흡하게 여겼는데, 오늘 갑자기 본직을 제수하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상교(上教)에 무반 가운데 가당한 사람도 아울러 의망하라 한 것은, 명망을 길렀다가 뒷날에 쓰기 위한 것이었으니, 전조(銓曹)는 만약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연유를 갖추어 회계(回啓)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쓸모없는 자까지 아울러 주의 하였으니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신호를 체차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癸亥以尹鉉爲承政院都承旨柳順善爲右副承旨申灝爲同副承旨金偉爲兵曹佐郎

史臣曰灝武人也麤鄙貪瀆本無知識喉舌出納之任豈此人所堪哉特以與宰相權轍爲婚姻之家又善事權門冒入非據之地厥後位至二品屢授節度重任姻婭膺任之弊可勝嘆哉

憲府啓曰同副承旨申灝非但素無物望前爲守令亦有不謹之論頃擬閫帥之望物情猶以爲未洽今者遽授本職尤爲未便 上教以武班中可當人並擬者欲養望爲後日之用也爲銓曹者若無其人則具由回啓未爲不可而冗雜並擬亦爲非矣請申灝遞差答曰如啓

《明宗實錄 卷第29, 20面》

명종 18년 9월 6일(신사)

이택(李鐸)을 이조 참판으로, 이택(李澤)을 예조 참판으로, 심전(沈銓) - 재물을 탐하고 비루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도 전혀 기탄함이 없었다. - 을 경기 관찰사로, 이정(李楨) - 문학과 행실이 있는 사람이다. - 을 호조 참의로, 류순선(柳順善) - 성품이 온후하고 문제가 있다. - 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박순(朴淳) - 순박하고 화평한 기풍이 얼굴에 넘쳤다. - 을 시강원 보덕으로, 심순(沈筭) - 심통원의 동족으로 그 집을 출입하기를 친자제와 다름없이 했으며 이양과도 서로 좋아하여 찾아가게 되면 언제나 마필을 보내왔고 자기 침방으로 끌어들었다. - 을 승정원 주서로, 이해수(李海壽) - 문아(文雅)한 사람이다. - 를 시강원 설서로, 이중경을 사직으로, 김백균 · 고맹영을 부사직으로 삼았다.

辛巳以李鐸爲吏曹參判李澤爲禮曹參判沈銓多行貪鄙略無忌憚爲京畿觀察使李楨文行之人爲戶曹參議柳順善性度溫淳有文藝爲兵曹參知朴淳清純冲和之氣萬然形色之外爲侍講院輔德沈筭以沈通源之族出入其門無異親子弟且與李樛相好徃則輒送馬引入寢房爲承政院注書李海壽儒雅爲侍講院說書李重慶爲司直金百鈞高孟英爲副司直

《明宗實錄 卷第29, 64面》

명종 18년 12월 22일(병인)

○민기(閔箕)－염정 공근하고 학문도 해박했으나 말세에 처하다 보니 구차스런 행동이 없을 수 없었다. 전날에 간신 이양 등의 미움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를 예조 참판으로, 이문형(李文馨)－성격은 엄결하였으나 남을 포용하는 아량이 없었다. 전날에 이양 등의 미움을 받아 큰 화를 당할 뻔했다.－을 승정원 도승지로, 정의국을 좌승지로, 박응남－청렴하고 근신하여 마음씀과 행동을 바르게 하려 했지만 고집스럽고 편벽된 잘못이 없지 않았다. 지난 날 이양 등의 미움을 받아 거의 쫓겨날 뻔했다.－을 승정원 우승지로, 류순선(柳順善)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이억상(李億祥)－기량도 가볍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는데 중종대왕의 친릉도감 낭청으로 상가를 받아 드디어 당상에 올랐다.－을 우부승지로, 이양원을 동부승지로, 홍천민(洪天民)－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일찍 과거에 올랐으며 조심하고 근신하여 청현직을 차례로 밟았다.－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

丙寅○以閔箕恬靜恭謹學文該博然處於末世不能無苟容之失頃爲奸臣李樛等所忤因不得志爲禮曹叅判李文馨性廉潔然無容人之量頃爲李樛等所忤幾被大禍爲承政院都承旨成義國爲左承旨朴應男廉簡謹慎用心行事欲歸於正然不無執拗也失頃爲李樛等所忤幾被□遂爲承政院右承旨柳順善爲左副承旨李億祥器量輕淺別兼才能以中宗大王遷陵都監郎廳得受賞加遂陞堂上爲右副承旨李陽元爲同副承旨洪天民少有才華早捷科第操心恭謹歷踐清顯爲刑曹叅議

《明宗實錄 卷第29, 96面》

명종 19년 7월 15일(을묘)

○홍담(洪曇)을 공조 참판으로, 류순선(柳順善)을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윤두수(尹斗壽)를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

乙卯○以洪曇爲工曹叅判柳順善爲承政院右承旨尹斗壽爲議政府檢詳

《明宗實錄 卷第30, 33面》

명종 20년 1월 1일(기해)

○이건(李楗)을 예조 참판으로, 이문형(李文馨)을 승정원 도승지로, 박계현(朴啓賢)을 좌승지로, 류순선(柳順善)을 우승지(右承旨)로, 류혼(柳渾)을 좌부승지로, 성순(成詢)을 우부승지로, 이광진(李光軫)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己亥○以李楗爲禮曹叅判李文馨爲承政院都承旨朴啓賢爲左承旨柳順善爲右承旨柳渾爲左副承旨成詢爲右副承旨李光軫爲同副承旨

《明宗實錄 卷第31, 1面》

명종 20년 1월 20일(무오)

양사가 이양·이감·윤백원 등을 올대로 죄를 정하기를 청하여 여섯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홍문관이 또한 차자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홍담(洪曇)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특명이다.- 민기(閔箕)를 이조 참판으로, 이문형(李文馨)¹⁹³을 병조 참판으로, -특명이다.- 박계현(朴啓賢)을 승정원 도승지로, 류순선(柳順善)을 좌승지(左承旨)로, 류혼(柳渾)을 우승지로, 성순(成詢)을 좌부승지로, 이광진(李光軫)을 우부승지로, 홍인경(洪仁慶)을 동부승지로, 이식(李拭)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민시중(閔時中)을 부교리로, 양응정(梁應鼎)을 수찬으로, 안종도(安宗道) -기량(器量)이 알고 좁으며 계려(計慮)가 원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세에 불따라 구차스러웠고 벼슬을 잃어 버릴까 근심하는 태도가 많았다.-를 이조 정랑으로, 이후백(李後白)을 병조 정랑으로 삼았다.

戊午○以洪曇爲資憲大夫漢城府判尹特命也閔箕爲吏曹叅判李文馨爲兵曹叅判特命也朴啓賢爲承政院都承旨柳順善爲左承旨柳渾爲右承旨成詢爲左副承旨李光軫爲右副承旨洪仁慶爲同副承旨李拭爲弘文館直提學閔時中爲副校理梁應鼎爲修撰安宗道器量淺狹計慮不遠趨時苟容多有患失之態正郎李後白爲兵曹正郎

《明宗實錄 卷第31, 10面》

명종 20년 2월 24일(신묘)

상이 양화당(養和堂) 후정(後庭)에 나아가, 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박충원(朴忠元)·이홍남(李洪男)·윤의중(尹毅中)·홍천민(洪天民)·박응남(朴應男)·강사필(姜士弼)·이양원(李陽元)·정윤희(鄭胤禧)·최옹(崔顛)·류진(柳璵)·심의겸(沈義謙)·신응시(辛應時)·기대승(奇大升)·이산해(李山海) 등 -정윤희 이하는, 모두 독서당(讀書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한 사람이다.-을 명하여 입시하게 하였는데, 승지 박계현(朴啓賢)·류순선(柳順善)·황서(黃瑞)·홍인경(洪仁慶)·임여(任呂)가 모두 입시하였다. 상이 어필(御筆)로 칠언율시(七言律詩)와 오언율시(五言律詩)의 제목 각 2수 -칠언율시는 '임금이 충신을 사랑하다[人主愛忠臣]', '한식을 읊다[詠寒食]'이고, 오언율시는 '먼 산봉우리가 봄빛을 띠었다[遠岫帶春輝]', '봄이 드니 새가 지저귎다[春入鳥能言]'이다.-를 홍섬·윤춘년·박충원에게 써서 내리며 이르기를,

“입시한 제신(諸臣)이 제진(製進)하도록 하라.”

하고, 또 칠언율시 제목 2수 -'금원(禁苑)에서 제신(宰臣)을 접하다[禁苑接宰臣]', '한식을 읊다[詠寒食]'인데 모두 어제(御題)이다.-를 써서 홍섬·윤춘년·박충원에게 명하여 제진하도록 하고, 입시한 사람들이 올린 제술은 홍섬 등으로 하여금 과차를 정하게 하여 입격한 자는 차등 있게 상사(賞賜)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입시한 신하에게 선운

193) 이문형(李文馨) : 1510~1582. 조선 선조(宣祖) 때의 문신. 자는 형지(馨之). 호는 졸옹(拙翁). 본관은 전의(全義). 중종 35년(1540) 문과에 급제. 검열(檢閱)이 되고, 호조 참판(戶曹參判)·대사성(大司成) 등을 지내고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윤원형(尹元衡)을 논박하였으며, 이양(李樛)의 무고(誣告)로 파면되었다가 명종(明宗) 18년(1563)에 등용되어 이조 참판을 지냈다. 선조 때 관찰사·판서 등을 거쳐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공의 사위가 전주인 군수 이구순(李久洵)인데 이는 충경공 류형(柳珩)의 장인으로서 진주류씨와 혼맥이 이어지고 있다.

(宣醞)하고 또 당상관 이상에게 명하여 진작(進爵)하도록 하고 상도 또한 수작(酬酢)하며 해가 저물어서 과하였는데, 신하들이 혹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아 나온 사람도 있었다.

辛卯 上御養和堂後庭命洪暹尹春年朴忠元李洪男尹毅中洪天民朴應男姜士弼李陽元丁允禧崔顥柳埶沈義謙辛應時奇大升李山海丁允禧以下皆被選於書堂賜暇者也入侍承旨朴啓賢柳順善黃瑞洪仁慶任呂並入侍 上以御筆書下七言律五言律題各二七言律人主愛忠臣詠寒食五言律遠岵帶春輝春入鳥能言于洪暹尹春年朴忠元曰入侍之臣製進可也又書七言律題二禁苑接宰臣詠寒食皆御題命洪暹尹春年朴忠元製進入侍人等進所製令暹等科次入格者賞賜有差仍命宣醞于入侍之臣又命堂上官以上各進爵 上亦下酬日暮而罷羣臣或有扶醉而出者

《明宗實錄 卷第31, 15面》

명종 21년 3월 20일(신해)

○류순선(柳順善) - 약간의 재조(才藻)가 있을 뿐, 기타는 취할 것이 없다. - 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홍인경(洪仁慶) - 천성은 온아(溫雅)하나 기량(氣量)이 천급(淺急)하였다. - 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심의점을 균기시 정으로,

사신은 논한다 : 심의점은 별로 뛰어난 재능도 없는데, 다만 척리의 세력을 인연하여 출신한 지 겨우 5년에 품계와 차서를 뛰어넘는 데 남보다 뒤질까 염려하니, 자못 사람을 쓰는 데 신중을 기하는 도가 아니다.

류혼(柳渾)을 장단부사로, 김익(金翼) - 성행(性行)이 부러하여 본시 취할 것이 없는데, 심통원과 인척이 되어 그 청탁으로 높은 품계에 올랐으니 이 어찌 사인의 행위라 하겠는가. 식견 있는 이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 을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辛亥 ○柳順善稍有才藻餘無可取爲刑曹參議洪仁慶性溫雅然氣量淺急爲司諫院大司諫沈義謙爲軍器寺正

史臣曰義謙別無出人才能而只緣戚里之勢出身纔五載超資越序猶恐不及殆非用人難慎之道也

柳渾爲長湍府使金翼浮虛不根本無可取而連姻沈通源請囑陞資是果士人之行互識者鄙之爲僉知中樞府事

《明宗實錄 卷第32, 38面》

명종 21년 10월 1일(무오)

○류순선(柳順善)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박근원(朴謹元) - 사람이 경박하여 중후한 기색이 없었다. - 을 호조 참의로, 이식(李拭)을 형조 참의로, 이후백(李後白)을 의정부 사인으로, 이제민(李齊閔)을 병조 정랑으로, 기대승(奇大升)을 홍문관 교리로, 임여(任呂)를 황주목사(黃州牧使)로 삼았다.

戊午○以柳順善爲江原道觀察使朴謹元爲人輕淺無重厚之氣爲戶曹叅議李拭爲刑曹叅議李後白爲議政府舍人李齊閔爲兵曹正郎奇大升爲弘文館校理任呂爲黃州牧使

《明宗實錄 卷第33, 51面》

명종 21년 10월 30일(정해)

강원도 감사 류순선(柳順善)이 배사하니 전교하였다.

“방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유서와 교서에 있다. 농상(農桑)을 힘쓰고 학교를 흥왕하게 하고 무비(武備)를 수리하고 출척(黜陟)을 엄히 하는 등 각별히 마음을 다해 임무를 살피라.”

丁亥江原道監司柳順善拜辭傳曰方伯應行之事自有諭教書而務農桑興學校修武備嚴黜陟各別盡心察任

《明宗實錄 卷第33, 61面》

대동야승 제13권 견한잡록(遣閑雜錄)

독서당(讀書堂)은 세종조 때 창설하였는데 연소한 자로 문장에 능숙하고 희망이 있는 자를 뽑아서 장가 독서(長暇讀書:오랫 동안 휴가를 주어서 강학에 전심하게 하는 제도)하게 하였는데, 중종 때에는 동호변(東湖邊)에 강당을 짓고 관에서 모든 도구를 공급하여서 충애가 유달랐다. 심수경은 병오년 가을에 급제하고, 무신년 봄에 피선되었고, 을묘년 가을에 당상관에 승진되어, 전후 8년간 서당에 있었으며, 동료 20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승진하고 침체되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은 것이 각자가 달라서 민기(閔箕)·정유길(鄭惟吉)·김귀영·심수경은 의정(議政)이 되었고 이황(李滉)은 찬성(贊成)이 되었으며, 김주(金澍)는 판윤(判尹)이 되었고 박충원(朴忠元)·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윤의중(尹毅中)은 판서가 되었고 박민헌(朴民獻)은 참판(參判) 허엽(許曄)은 감사(監司) 남응룡(南應龍)은 참의(參議) 류순선(柳順善)은 승지(承旨) 김홍도(金弘度)는 정언(正言)으로 되었으며, 김인후(金麟厚)와 한지원(韓智源)은 교리(校理)가 되었으며, 윤결(尹潔)은 수찬(修撰) 김질충(金質忠)은 좌랑(佐郎) 안수(安璣)는 박사(博士)가 되었다. 그중 박충원·정유길·이황·박민헌·김귀영은 모두 70세가 넘어서 작고하였다. 심수경의 나이 지금 82세이다. 20명 중 70세가 넘는 이가 다만 6명이요, 생존자가 또한 6명뿐이며 선생안(先生案) 중에도 70이 넘는 이가 심히 드무니 70은 과연 희귀하다고 하겠다.

讀書堂創於 世宗朝.選年少能文有望者. 賜長暇讀書. 中廟朝.構堂於東湖邊.官給供具.以寵異之.守慶丙午秋登第.戊申春被選.乙卯秋陞堂上.八年間書堂前後同僚二十人.升沉修短.各自不同.閔箕鄭惟吉金貴榮及守慶爲議政.李滉爲贊成.金澍爲判尹.朴忠元尹鉉

尹春年尹毅中爲判書.朴民獻爲叅判.許曄爲監司.南應龍爲叅議.柳順善爲承旨.金弘度爲正言.金麟厚爲校理.韓智源爲校理.尹潔爲修撰.金質忠爲佐郎.安璫爲博士.而朴忠元鄭惟吉李滉朴民獻金貴榮皆年過七十.並作古.守慶年今八十二.二十二人中過七十者只六.生存者只六.先生案中過七十者甚稀.七十果是稀也. 《國譯本 539面, 原本 130面》

기재집 권십삼(企齋集 卷十三)

영성부원군 신공 광한에게 드리는 제문
祭靈城府院君申公光漢文 《韓國文集叢刊 22卷, 企齋集 370 C》 《晉州柳氏文集 118面》

소재유고 권일(素齋遺稿 卷一)

金司圃山水圖(名諛號醉眠安老子名畫) 외(外) 十五首 《晉州柳氏文集 118面》

송강집 속집 권일(松江集 續集 卷一)

《韓國文集叢刊 46卷, 松江集 187 D》

동원집 권이(東園集 卷二)

《韓國文集叢刊 37卷, 東園集 432 C》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겸재공(謙齋公) 류종선(柳從善)

중종 14년(1519)~선조 11년(1578)

字는 택중(擇仲)이며 호는 겸재(謙齋)이다. 증 호조참판 류유(柳柔 祖 自恭)와 광흥창수(廣興倉守) 임문재(任文載 父 士洪, 祖 元濬)의 풍천임씨(豐川任氏)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숙부인 류정(柳貞) 문하에 수학하여 중종 38년(1543)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명종 1년(1546) 문과에 을과 2위로 합격하여 같은 해 앞서 실시한 식년시에 종제인 승선(承善)이 합격하고 그 이듬 해에는 친형 소재공(素齋公) 순선(順善)이 합격하여 집안의 경사가 이어졌다. 지평, 홍문관 부교리, 교리, 전한, 직제학과 사간

원 사간, 형조참의를 거쳐 동부, 좌우부 승지 등을 역임한 명분과 의리에 밝고 글이 높았으며 불경까지 통달한 문신이다.

공은 안동김씨 김택(金澤 父 義童, 祖 碩)의 따님과 혼인하여 석보(錫輔)를 두었고 한 사위는 청주인 한중후(韓仲厚)이다. 겸재공의 윗 동서인 민기(閔箕¹⁹⁴) 父 世瑠)는 우의정을 지냈으며 문장에 뛰어났다.

明宗丙午元年增廣榜以卽位□四月行

甲科 三人

進士 崔應龍(全州人)¹⁹⁵, 進士 金德龍(安東人), 幼學 梁應給(南原人)

乙科 七人

生員 朴民獻(咸陽人), 進士 柳從善(晉州人), 進士 李希溫(完山人), 生員 盧禎, 進士林復(會津人), 幼學 辛崙, 幼學 睦詹(泗川人)

丙科 二十三人

幼學 金克一(義城人), 進士 姜暹(晉州人), 幼學 高景虛(濟州人), 生員 金忠甲(安東人), 進士 楊士俊(濟州人), 幼學 黃祐, 生員 申義忠(平山人), 幼學 周怡(草溪人), 生員 李希儉, 進士 趙善奎(豐壤人), 生員 李友閔(延安人), 進士 申漢, 進士 鄭思亮(晉州人), 生員 李彥忠(星州人), 幼學 朴全(務安人), 幼學 朴偉(密陽人), 生員 尹弘中(海南人), 幼學 睦大春(沃川人), 生員 李重慶(廣州人), 進士 李克恭(公州人), 進士 李光軫(驪州人), 幼學 郭趕(玄風人), 進士 安士雄(廣州人), 生壯幼學 朴民獻(咸陽人), 進壯幼學 金慶雲(順天人)

연산군 10년 5월 30일(기미)

○승지와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국상(國喪) 때 놀며 잔치한 사람들을 가두게 하였는데, 이 역시 군상(君上)을 업신여겨 한 것이다. 지금 풍속을 고쳐 바로잡는 때인데 남겨두어 무엇에

194) 민기(閔箕) : 1504~1568. 조선 명종 때의 문신. 자는 경열(景說) 호는 관물재(觀物齋) 호학재(好學齋) 시호는 문경(文景) 본관은 여흥. 김안국의 문인. 중종 34년(1539) 문과에 급제. 춘추관 편수관으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 명종 초에 사인으로 권신, 이기, 정순봉 등을 논척하였고 장령, 사도시첨정, 경상도 암행어사, 대사헌, 대사성을 역임하였으며 명종 18년(1563) 이양 일당을 탄핵하여 유배케 한 후 부제학, 이조참판, 한성판윤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문장에 능하여 저서에 석담야사(石潭野史) 대학도(大學圖)가 있다.

195) 최응룡(崔應龍) : 1514~1580.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자는 현숙(見叔) 호는 송정(松亭) 본관은 전주(全州).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명종 1년(1546) 문과에 장원 급제, 의주목사 병조참지 공조참의 우부승지 등을 지내고 선조 10년(1577)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각 읍을 순회하면서 뇌물을 강요한 죄로 삭직되었다가 뒤에 형조참판을 역임했다.

쓰랴? 그때 함께 간 악공(樂工)이나 기생들 역시 같다. 그러나, 기생은 아녀자라 혹 남자에게 끌려서 간 자도 있을 것이니, 깊이 논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풍악을 연주하는 일로 궁중에 출입하였으므로, 놀며 잔치할 때에 궁중 일을 전하여 말한 일이 없지도 않을 것이니, 형장 1백을 때려 관비(官婢)로 정속(定屬)하고, 악공은 음악을 잘 하지만 어찌 다른 사람이 없으며, 남겨둔들 역시 소용이 없다.

또 홍식(洪湜)은 궁중 일을 누설하였으며, 총(摠)은 종친(宗親)으로서 조사(朝士)들과 사귀어 결탁하였는데, 모두 남겨둔들 쓸 데가 없으니, 의금부로 총의 머리를 베어 오고, 가산을 몰수하며, 그 처는 관비로 정하여 붙이고, 아버지와 동생은 형장 1백을 때려, 먼 외방에 안치(安置)하라. 식(湜)도 참형(斬刑)에 처하고, 그 집을 몰수하며, 아들 세필(世弼) 역시 참형에 처하되, 모두 오늘 실행하며, 승지가 가서 형벌을 감독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일찍이 사기(史記)를 보니, 재상과 대간(臺諫)이 항상 그 인군을 권고하여, 요(堯) 순(舜)의 정치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인군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나, 착하고 약한 것은 원래 천성으로 되는 것이지 신하의 말을 듣고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인군의 하는 일을 어찌 말해서 되느냐? 누설하는 폐단은 관계가 매우 중하다. 식은 지위가 승지에 이르렀으니 은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궁중 일을 이렇게 발설하였으니 그 죄가 참으로 깊다. 식이 사간(司諫)일 때 그 아우 한(瀚)이 전한(典翰)으로서 한 때 상소한 일이 있으니, 그 소장을 급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이르기를, ‘총(摠)은 풍의가 준수 명량하고, 시를 배워 문장이 아취(雅趣)가 있으며, 거문고 타기를 잘하여 당시의 명사들과 사귀어 놀았다. 집을 양화도(楊花渡) 가에 짓고, 세상 일을 접하지 않으며 날마다 고기잡고 낚시 질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항상 작은 배 하나를 타되, 거문고와 술을 싣고 가종일토록 돌아오기를 잊으며, 취하면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어, 아무런 얽매임 없이 세속 밖의 생각을 가졌다. 뒤에 죄를 입고 유락(流落)하면서도 거문고를 가지고 다녔으며, 여기 저기 옮겨 귀양다녀 거의 죽게 되어서도 일찍이 근심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하지 않았다.

함께 놀던 사람 종실(宗室) 수천 정(秀泉正)·명양 정(明陽正)도 모두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 하기를 즐겼는데, 명양(明陽)은 청고(淸苦)하게 시를 다뤘으며, 수천(秀泉)은 비파와 현금(玄琴)을 잘 타 당대의 제1인이고, 또 시를 잘 지었으며, 아버이 섬기기를 효성으로 하여 녹을 타면 반찬을 마련하는데 다 써 봉양하였는데, 무오년 사화를 본 뒤로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귀어 노는 일을 끊고, 다만 아버이 봉양하는 것을 일삼았다.

남효온(南孝溫)이란 이가 있어 널리 배워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성종조에 일찍이 글을 올려 일을 말한 뒤로는 거짓 미쳐 벼슬하지 않고, 자호(自號)를 추강 거사(秋江居士)라고 하였다. 문장을 공부하였는데, 시가 고고(高古)하여 당(唐) 나라 문인들의 기풍이 있었다. 대로 총(摠)과 함께 놀면서, 현금부(玄琴賦)를 지어 찬양하였고, 「추강집」(秋江集)이란 저서(著書)가 있다.

또 류종선(柳從善)이라는 이가 있어, 역시 총과 함께 놀았는데, 널리 여러 글을 읽어, 명분과 의리 이야기를 잘 하였으며, 또 불경〔內經〕에 통달하였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젊어서 부모를 여의고,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 전지·가옥과 노비(奴婢)를 모두 그 누이에게 미뤄주고 여러 산을 유람하다가 거의 10년이 되어 돌아와서도 장가들거나 벼슬하지 않았다.

좀 있다 무오년 사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또 몸을 뒤쳐 나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놀았는데, 항상 작은 비파(琵琶)를 가지고 다니며, 아름다운 산수(山水)를 만나면 그만 앉아 한동안씩 타다 가곤 하였다. 이때부터 발을 서울에 들여놓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동방 삭(東方朔)이 「조정과 저자에 숨는다.」 하였는데, 이는 참 은자(隱者)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뒤에 친구가 경상도에서 보니, 그가 가지고 다니던 거문고나 서적도 다 없애버리고, 막연히 무엇 하나 몸에 지닌 것이 없었는데,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명교(名教) 중의 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己未○傳于承旨及政丞等曰昨命囚國喪時遊宴人是亦慢君上而爲之也今當革正風俗之時存之何用其時同往工妓等亦與此同矣然妓則兒女也或有爲夫所携而去者不足深論然此人以奏樂出入宮禁而遊宴之時無不傳說宮禁之事決杖一百官婢定屬工人則雖工於音樂豈無他人存之亦無所用且洪湜漏說宮禁之事摠以宗親交結朝士皆存之無用其令義禁府斬摠首以來籍沒家產妻則官婢定屬父及同生決杖一百安置遠方湜處斬籍沒其家其子世弼亦處斬皆於今日決之承旨往監刑傳曰嘗觀史記宰相臺諫雖常勸其君以致堯舜之治然君之賢否善惡自由天性非聽臣之言而改之也況時君所爲之事豈可言之漏洩之弊所關甚重湜位至承旨可謂承寵宮禁之事如此發說罪固深矣湜爲司諫時其弟瀚爲典翰有一時上疏之事其疏急考以啓承旨等啓上教允當史臣曰摠風儀秀朗學詩有文雅善鼓琴與一時名士交遊築室楊花渡邊不接世務日以漁釣爲樂常乘小艇載琴携酒竟日忘歸醉則鼓琴詠詩翛然有出塵之想後

坐罪流落亦以琴自隨雖遷謫濱死未嘗爲戚戚容同時遊者宗室秀泉正明陽正皆好學樂善明陽清苦攻詩秀泉善琵琶玄琴爲時第一又能詩事親孝得俸祿盡備廚饌以奉之自見戊午禍杜門絕交遊只以養親爲事有南孝溫者博學無所不通 成宗朝嘗上書言事後伴狂不仕自號秋江居士攻文章爲詩高古有唐人風時與摠遊作玄琴賦以讚之其所著有秋江集又有柳從善者亦與摠遊博覽群書善談名理又通內典然常自晦故人罕知者少喪父母不喜人世推田宅藏獲盡與其姊遊歷諸山幾十年而返猶不娶不仕俄見戊午禍又脫身往周遊四方常以小琵琶自隨每遇佳山水輒坐鼓移時乃去自此未嘗足履京都常曰東方朔自謂隱朝市是非眞隱者也後有友見之於慶尚道其所隨琴書亦盡去之漠然無一物累身者嘆曰吾已作名教中罪人

《燕山君日記 53, 48面》

명종 10년 윤 11월 16일(정축)

○송기수(宋麒壽)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강(兪絳)을 이조 참의로, 정종영(鄭宗榮)을 사헌부 집의로, 김홍도(金弘度)를 의정부 사인으로, -김홍도는 김노(金魯)의 아들인데, 강개하고 의논(議論)하기를 좋아하여 남의 과실을 잘 지적하였으므로 권간들이 그를 몹시 미워하였는데, 끝내는 귀양가서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다. - 이명(李銘)·목침(睦詹)을 사헌부 장령으로, 류종선(柳從善)·성의국(成義國)을 지평으로 삼았다. -류종선은 국량이 좁고 식견이 적으면서도 일찍이 옥당(玉堂)에 있었다. 기대항(奇大恒)이 동료들과 함께 이양(李樑)을 논박하려고 의논하자, 류종선이 화(禍)를 두려워하여 낮빛이 변해서 말하기를 '어찌 오래 살아 이러한 일을 보게 되었는가?'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丁丑○以宋麒壽爲司憲府大司憲兪絳爲吏曹叅議鄭宗榮爲司憲府執義金弘度爲議政府舍人弘度魯之子慷慨好議論多斥人過失權奸大惡之後竟竄死人皆寃之李銘睦詹爲司憲府掌令柳從善成義國爲持平從善量褊識寡當在玉堂奇大恒與同僚議駁李樑從善懼禍色變曰胡爲久活得見此事聞者笑之

《明宗實錄 卷第19, 47面》

명종 13년 3월 17일(을축)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世子)를 책봉하였으니 황제의 은혜가 가볍지 않고 나라의 경사가 막대하니 은전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원접사 권철, 도승지 이탁(李鐸), 우부승지 이감(李戡), 승전색(承傳色) 주태문(周泰文), 어전통사(御前通事) 주양우(朱良佑)·고언명(高彦明), 도감낭청(都監郎廳) 윤행(尹行)·이언경(李彦憬)·류종선(柳從善)·이중호(李仲虎)¹⁹⁶, 상천사별통사(上天使別通事) 홍겸(洪謙)은 각각 한 자

196) 이중호(李仲虎) : 1512~1554. 조선 명종 때의 학자. 자는 풍후(風后) 호는 이소재(履素齋) 시호는 문경(文敬) 본관은 전주 류우(柳藕)의 문인. 동몽훈도, 사과(司果) 등을 지냈다. 학문이 높았으며 특히 시문에 뛰어났다. 저서에 심리도설 성리명감(性理明鑑) 자경시문(自警詩文)이 있다.

급(資級)씩을 올려주고, 도감낭청 원호변(元虎變), 예빈별좌(禮賓別座) 윤홍언(尹弘彦), 감조관(監造官) 김회(金晦)·윤소(尹紹)·박재(朴裁)는 벼슬을 올리고, 예조 판서 홍섭(洪暹), 관반(館伴) 정사룡(鄭士龍)은 각각 안마(鞍馬)를 내리고, 별통사(別通事) 김기(金驥), 소통사(小通事) 곽지원(郭之元)·장세곤(張世琨)은 그 아문(衙門)의 으뜸가는 녹(祿)을 주고, 의원(醫員) 2원(員)은 높은 녹을 주고, 그 밖의 승지(承旨)·사관(史官)·상책(尙冊)·도감낭청·종사관·예빈별좌·감조관(監造官)·어전에차통사(御前預差通事) 등은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라.”

乙丑傳于政院曰冊封世子 皇恩非輕國慶莫大不可不施恩典遠接使權轍都承旨李鐸右副承旨李戡承傳色周泰文御前通事朱良佑高彦明都監郎廳尹行李彦憬柳從善李仲虎上天使別通事洪謙各加一資都監郎廳元虎變禮賓別坐尹弘彦監造官金晦尹紹朴裁陞職禮曹判書洪暹館伴鄭士龍各賜鞍馬別通事金驥小通事郭之元張世琨本衙門首品付祿醫員二員高品付祿其他承旨史官尙冊都監郎廳從事官禮賓別坐監造官御前預差通事等賞賜有差

《明宗實錄 卷第24, 24面》

명종 14년 4월 23일(갑자)

안사웅(安士雄)을 사헌부 집의로, 이지신(李之信)을 홍문관 전한으로, 류종선(柳從善)을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류승선(柳承善)을 홍문관 부교리로, 성의국(成義國)을 수찬으로, 윤인함(尹仁涵)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벼슬은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온량(溫良)·방정(方正)·독실(篤實)한 선비인 뒤에야 시정(時政)을 규찰(糾察)하고 임금의 덕을 보성(輔成)할 수 있다. 지금 비루한 의국과 용렬한 지신을 논사(論思)·풍헌(風憲)의 직책에 두었으니, 명기(名器)를 욕되게 한 것이 심하다.

甲子以安士雄爲司憲府執義李之信爲弘文館典翰柳從善爲世子侍講院文學柳承善爲弘文館副校理成義國爲修撰尹仁涵爲正字

史臣曰臺諫侍從之官不可不擇必須溫良方正篤實之士然後可以糾察時政輔成君德今以義國之麤鄙之信之庸劣置之於論思風憲之地其辱名器甚矣 《明宗實錄 卷第25, 32面》

명종 14년 5월 15일(병술)

이중경(李重慶)을 예조 참의로, 심전(沈銓)을 병조 참지로, 이지신(李之信)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양(李樛)을 전한으로, 이중량(李仲樛)을 응교로, 이희검(李希儉)을 교리로, 류종선(柳從善)을 수찬으로, 윤두수(尹斗壽)를 정자로, 김백균(金百

鈞)을 사헌부 장령으로, 한옥(韓沃)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조광언(趙光彦)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중경은 간사하고 사악하며, 심전은 욕심 많고 방종하며, 지신은 용렬하고 비루하며, 이양은 어리석고 망령되며, 백균은 간사하며, 한옥은 용렬하며, 광언은 자질구레하여 한 사람도 본직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어서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통탄스럽다.

丙戌以李重慶爲禮曹叅議沈銓爲兵曹叅知李之信爲弘文館直提學李樾爲典翰李仲樾爲應教李希儉爲校理柳從善爲修撰尹斗壽爲正字金百鈞爲司憲府掌令韓沃爲世子侍講院弼善趙光彦爲文學

史臣曰重慶儉邪沈銓貪縱之信庸鄙李樾愚妄百鈞姦邪韓沃庸劣光彦庸瑣無一人合於本職國非其國無復可爲痛哉

《明宗實錄 卷第25, 37面》

명종 14년 8월 19일(무오)

오상(吳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강사상(姜士尙)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한옥(韓沃)을 사헌부 집의로, 성의국(成義國)을 장령으로, 류창문(柳昌門)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정사현(鄭思顯)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경운(李景雲)을 병조 정랑으로, 성세녕(成世寧)을 병조 정랑으로, 류종선(柳從善)을 홍문관 부교리로, 황임(黃琳)을 수찬으로, 이식(李拭)을 사간원 정언으로, 김억령(金億齡)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戊午以吳祥爲司憲府大司憲姜士尙爲弘文館副提學韓沃爲司憲府執義成義國爲掌令柳昌門爲世子侍講院弼善鄭思顯爲司憲府持平李景雲爲兵曹正郎成世寧爲兵曹正郎柳從善爲弘文館副校理黃琳爲修撰李拭爲司諫院正言金億齡爲兵曹佐郎

《明宗實錄 卷第25, 64面》

명종 14년 8월 26일(을축)

박영준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원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류창문(柳昌門)을 사헌부 집의로, 류종선(柳從善)과 황서(黃瑞)를 장령으로, 송하(宋賀)와 황임(黃琳)을 지평으로, 한옥(韓沃)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권신(權信)을 문학으로, 조희문(趙希文)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乙丑以朴永俊爲司憲府大司憲元混爲司諫院大司諫柳昌門爲司憲府執義柳從善黃瑞爲掌令宋賀黃琳爲持平韓沃爲世子侍講院弼善權信爲文學趙希文爲兵曹佐郎

《明宗實錄 卷第25, 65面》

명종 14년 11월 24일(신묘)

채세영(蔡世英)을 공조 판서로, -세영은 젊었을 때 재명(才名)이 있었다. 기묘사화 때 사관

(史官)으로서 입시하였었는데, 가승지(假承旨) 성운(成雲)이 세영의 붓을 빼앗아 죄를 얻는 말을 쓰려고 하자 세영은 '사필(史筆)이란 사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끝내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쫓겨나 마침내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사람됨은 도량이 좁고 비루하였다. 경상(卿相)의 지위에 이르름에 미처서는 내인(內人)에게 붙어 바른 선비들을 배척하였는데, 민기(閔箕) 같은 사람도 그에게 모함을 당했다. 권찬(權纘)과는 심복(心腹) 사이였다. -이희검(李希儉)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류종선(柳從善)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辛卯以蔡世英爲工曹判書世英少有才名己卯之變以史官入侍假承旨成雲欲取世英之筆書構罪之辭世英曰史筆非他人所執終不與以此見擯遂取名譽於世而爲人墨小而鄙及至卿相攀附內人排擯正士如閔箕亦爲所陷與權纘結爲心腹李希儉爲世子侍講院弼善柳從善爲弘文館副校理 《明宗實錄 卷第25, 81面》

명종 14년 12월 9일(병오)

이영현(李英賢)을 이조 참의로, 신여중(申汝悤)을 호조 참의로, 정종영(鄭宗榮)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정(李楨)을 좌부승지로, 김귀영(金貴榮)을 우부승지로, 황삼성(黃三省)을 병조 정랑으로, 류종선(柳從善)을 홍문관 교리로, 류전(柳堧)을 부교리로, 송하(宋賀)를 사헌부 지평으로, 박근원(朴謹元)을 이조 좌랑으로, 이인(李遴)을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삼았다.

丙午以李英賢爲吏曹參議申汝悤爲戶曹參議鄭宗榮爲承政院都承旨李楨爲左副承旨金貴榮爲右副承旨黃三省爲兵曹正郎柳從善爲弘文館校理柳堧爲副校理宋賀爲司憲府持平朴謹元爲吏曹佐郎李遴爲世子侍講院文學 《明宗實錄 卷第25, 84面》

명종 15년 5월 12일(정축)

○안위(安瑋)를 자헌대부 형조 판서로 -특명이다.-, 원계검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임열(任說)을 병조 참판으로, 오상(吳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양을 병조 참지로, 이정(李楨)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대립(朴大立)을 사헌부 집의로, 류종선(柳從善)을 사간원 사간으로, 김백균(金百鈞)·황임(黃琳)을 사헌부 장령으로, 강극성(姜克誠)을 지평으로 -극성은 논박을 당하여 빛을 보지 못했는데 본래 이양을 추종했기 때문에 도로 이처럼 청현(淸顯)한 벼슬이 되었다.-, 장사중(張士重)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기(李璆)·이후백(李後白)-풍도(風度)가 단아(端雅)하였다. 그러나 일을 처리할 때는 행위가 지나쳤다.-을 정언으로 삼았다.

丁丑○以安瑋爲資憲大夫刑曹判書特命元繼儉爲議政府右參贊任說爲兵曹參判吳祥爲司憲府大司憲李楨爲兵曹參知李楨爲司諫院大司諫朴大立爲司憲府執義柳從善爲司諫院司諫金百鈞黃琳爲司憲府掌令姜克誠爲持平克誠被駁踏踉以素附李楨故還爲淸顯如此張士重司諫院獻納李璆李後白風度端雅然處事之際作爲過之爲正言 《明宗實錄 卷第26, 28面》

명종 15년 6월 2일(정유)

○대사간 이정(李楨), 사간 류종선(柳從善), 헌납 장사중(張士重), 정언 이기(李璽)·이후백(李後白)이 아뢰기를,

“삼가 어제 헌부에 답한 말을 보니 몹시 황공하여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은 천 환과 운명의 일에 대해서 그 사이에 사사로운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인으로서 사족을 구타한 데는 그 죄에 정해진 율이 있고, 또 천환의 죄상이 의심할 것 없이 분명하니 조금이라도 원래 법대로 하지 않고 고친다면 뒤폐단을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신들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간은 꼭 눈으로 본 일만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물의가 적실(的實)하고 사리에 관계가 있는 것이면, 일에 따라 시비를 논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모두 변변치 않은 인물로 이목의 관직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께 신임을 얻지 못해서 끝내 논법(論法)이 맞지 않고 말한 것이 부실한 데로 돌아갔으니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간이 일에 따라 논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법을 지켜서 뒤폐단을 구제하려는 뜻 또한 마땅하다. 그러나 풍문을 듣고서 중하게 다스리면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어제 우연히 말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丁酉○大司諫李楨司諫柳從善獻納張士重正言李璽李後白啓曰伏觀昨日答憲府之辭不勝惶恐之至臣等於千環尹溟事非有私意於其間第以賤人歐打士族罪有定律而千環罪狀昭著無疑一或撓改後弊難救故臣等將公論以啓且臺諫不必以目觀之事爲啓若物議的實而於事理有所關則隨事論列矣臣等俱以無狀忝備耳目之官不能取信於上終歸於論法不中所言不實在職未安請迺答曰臺諫隨事論執是乃美事而欲守法以救後弊此意亦當但以風聞重治恐有冤悶故昨日偶言之勿辭

《明宗實錄 卷第26, 37面》

명종 15년 6월 11일(병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친정(親政)이 있었는데, 이준경을 의정부 좌의정으로, 심통원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김명윤을 승정대부 이조 판서 겸판의금부사로, -특가(特加)이다. 그때 정승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모두 통원을 정승으로 삼고 명윤을 이조 판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때에 와서 과연 말한 대로 되었다. ○명윤은 상의 은총이 이양에게 있음을 알고 깊이 교계를 맺어서 드디어 전형(銓衡)의 중한 지위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벨으며 더럽게 여겼다. - 안위를 병조 판서로, 이윤경을 형조 판서로, 성세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어계선(魚季瑄)을 가선대부 형조 참판으로, -특가(特加)이다. - 박응남(朴應男)을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 이윽고 전교하기를,

“승지는 이미 동벽(東壁)을 지냈던 자로 의망하라.” -우승지 이상을 동벽이라 이른다.

하고, 이양을 승정원 도승지로, 강사상을 병조 참의로, 성의국(成義國)을 사간원 사간으로 삼았다. 그때에 장령에 결원이 있었으므로 전교하기를,

“일찍이 장령·헌납을 지냈던 자로 의망하라.”

하고, 권신을 사헌부 장령으로, 김백균을 홍문관 응교로, 조광언(趙光彦)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류종선(柳從善)을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教)로, 강사필(姜士弼)을 이조 정랑으로, 이영(李翎)을 사간원 헌납으로, -특명(特命)이다.- 박근원(朴謹元)·장사중(張士重)을 홍문관 교리로, 황서(黃瑞)·정척(鄭惕)을 부교리로 삼았다.

丙午 上御思政殿親政命以李浚慶爲議政府左議政沈通源議政府右議政金明胤爲崇政大夫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特加也時相位久缺外人皆以爲通源爲相明胤爲吏判至是果如所言○明胤知眷汪之在李樑深自結納遂得銓衡重地人皆唾鄙安瑋爲兵曹判書李潤慶爲刑曹判書成世章爲司憲府大司憲魚季瑄爲嘉善大夫刑曹參判特加也朴應男爲議政府檢詳尋傳曰承旨望以已行東壁者擬之右承旨以上謂之東壁以李樑爲承政院都承旨姜士尙爲兵曹參議成義國爲司諫院司諫掌令有關傳曰曾經掌令獻納者擬之以權信爲司憲府掌令金百鈞爲弘文館應教趙光彦爲世子侍講院弼善柳從善爲弘文館副應教姜士弼爲吏曹正郎李翎爲司諫院獻納特命也朴謹元張士重爲弘文館校理黃瑞鄭惕爲副校理

《明宗實錄 卷第26, 38面》

명종 15년 10월 30일(임술)

김명윤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정사룡-성품이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우며 농단(壟斷)하여 이익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한 끼니에 고기가 10여 가지나 되었다. 정실을 소박하여 버렸으며 권간에 아부하여 청의에 용납되지 않았으나, 시에 능하여 오래 문명(文柄)을 맡았었다.-을 공조 판서로, 조광원(曹光遠)을 승정대부 판중추부사로 -특가(特加)이다.-, 송기수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원계검을 이조 판서로, 채세영(蔡世英)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정유길을 예조 판서로, 허엽(許曄)¹⁹⁷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홍천민(洪天民)을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특지이다.- 김덕룡을 황해도 관찰사로, 성의국(成義國)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김백균-음험하고 간사한 자질로 이양의 집에 출입하여 기세를 폈다.-을 전한으로, 류종선(柳從善)을 응교로, 박근원(朴謹元)을 부응교로, 황서(黃瑞)를 교리로, 강극성(姜克誠)-재사(才思)가 뛰어나 시(詩)를 잘 짓는다는 소리가 있었다. 사람됨이 무르고 경박하여 이양과 교제를 맺어서 발신(發身)할 곳으로 삼았다.-을 부교리로, 최옹(崔顛)을 수찬으로, 윤인함(尹仁涵)을 박사, 윤두수(尹斗壽)¹⁹⁸를 저작으로 -이상은 차례로 승진한

197) 허엽(許曄) : 1517~1580.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 본관은 양천(陽川). 한(澣)의 아들. 서경덕의 문인. 문과에 급제, 사가독서한 뒤 동부승지, 경연참찬관이 되어 조광조의 신원을 청하고 허자, 구수담의 무죄를 논하다가 파직되었다. 부제학을 거쳐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일찍이 김정국이 편찬한 경민편을 보충하여 반포하고 삼강이륜 행실을 편찬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저서에 초당집, 전언왕행록(前言往行錄)이 있다.

것이다.-, 김첨경(金添慶)을 병조 정랑으로 삼았다.

壬戌以金明胤爲議政府左贊成鄭士龍性貪奢罔利壟斷一飯之內至於十餘朱踈棄正室比附權奸不容於清議但能詩久典文柄爲工曹判書曹光遠爲崇政大夫判中樞府事特加也宋麒壽爲議政府左叅贊元繼儉爲吏曹判書蔡世英爲議政右叅贊鄭惟吉爲禮曹判書許曄爲成均大司成洪天民爲通政大夫工曹叅議特旨也金德龍爲黃海監道觀察使成義國爲弘文館直提學金百鈞以陰邪之資出入李樑之門以張氣勢爲典翰柳從善爲應教朴謹元爲副應教黃瑞爲校理姜克誠才思賴脫有能詩聲爲人軟熟輕浮交結李樑以爲發身之地爲副校理崔顛爲修撰尹仁涵爲博士尹斗壽爲著作已上依次遷轉也金添慶爲兵曹正郎

《明宗實錄 卷第26, 65面》

명종 16년 3월 22일(임자)

○유강(兪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강은 모나지 않은 자세로 작록(爵祿)이나 보존하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재(吏才)는 있었다.- 기대항(奇大恒)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중경(李重慶)을 예조 참의로, -처음에 황대임(黃大任)의 딸이 세자빈(世子嬪)으로 간선되었는데, 이것은 윤원형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대개 대임의 처남의 아들이 원형의 사위이고 대임의 처형인 영양군(永陽君)의 아내가 원형의 첩 난정(蘭貞)과 서로 교결하였던 탓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황씨가 세자빈이 된 뒤로 자주 복통을 앓았으므로 사람들이 의혹과 분노를 품었다. 이양 등도 이를 계기로 원형을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이중경이 이양에게 빌붙은 처지여서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 일찍이 사람들과 얘기하던 중 어떤 사람이 '공이 근일에 성묘하러 간다고 하는데 어느날로 잡았는가?' 하니, 중경이 경솔히 '근일 세자빈을 폐할 것을 논계할 일 때문에 정하지 못했다.' 하였다. 그러자 좌중이 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탄말을 하였는데, 들은 자들이 모두 경솔히 누설한 것을 탓하였다.- 조광언(趙光彦)을 사헌부 집의로, 류종선(柳從善)을 사간원 사간으로, 이관(李瓘)과 이인(李遴)을 사헌부 장령으로, 정사현(鄭思顯)과 송처(宋□) -송처는 벼슬아치의 재능이 있었다. 일찍이 기묘제현(己卯諸賢)을 배척하는 글을 썼으므로 사림(士林)에 죄를 얻었다.-를 지평으로, 고경명(高敬命) -재기(才氣)는 있었으나 성질이 음험하고 사나우며 추향(趨向)이 바르지 못해 이양과 결탁하였다.-을 사간원 헌납으로, 하진보(河晉寶)와 박을(朴栗) -박을은 사람됨이 아둔하고 용렬한데 일찍이 이양과 동문 수학하였으므로 그로 해서 좋은 벼슬을 많이 하였다.-을 정언으로 삼았다.

壬子○以兪絳爲司憲府大司憲絳樸稜以剛保爵祿爲心但有吏才奇大恒爲司諫院大司諫李重慶爲禮曹叅議初黃大任之女選爲 世子嬪是出於尹元衡之意蓋大任妻甥之子爲元衡女婿大任妻兄永陽君之妻

198) 윤두수(尹斗壽) : 1533~1601.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자는 자양(子仰) 호는 오음(梧陰)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해평(海平). 변(忭)의 아들 이황. 이중호의 문인. 명종 13년(1558) 문과급제 대사성을 거쳐 선조 11년(1578) 도승지로서 이종 동생 이수(李銖)의 옥사에 연좌되어 동생 근수(根壽)와 함께 파직되었다. 중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2등에 올라 해평부원군이 되었으며 형조·호조판서에 오르고 유배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되어 선조 32년(1599) 영의정이 되어 호성공신 2등에 올랐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에 성인록(成仁錄) 오음유고(梧陰遺稿)가 있고 편서에 평양지(平壤志) 연안지(延安志) 기사지(箕子志)가 있다.

與元衡妾蘭貞相結故黃氏自與選之後屢患腹痛人懷疑憤李樑等欲藉此以傾元衡重慶附於李樑故與其議嘗與人言人問曰令公近日欲爲省墓之行將以何日□耶重慶率爾對曰近欲論啓廢嬪故不得定耳坐中皆愕胎而言他聞者頗咎其輕洩趙光彥爲司憲府執義柳從善爲司諫院司諫李瓘李遴爲司憲府掌令鄭思顯宋遠有刀筆之才嘗排斥己卯之人形諸文字之間得罪於士林爲持平高敬命雖有才氣性陰悍趨向不端交結李樑爲司諫院獻納河晉寶朴栗爲人暗劣曾與李樑同樑以此多爲□仕爲正言 《明宗實錄 卷第27, 7面》

명종 16년 윤 5월 17일(병오)

류종선(柳從善)을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¹⁹⁹⁾으로 삼았다.

丙午以柳從善爲議政府檢詳

《明宗實錄 卷第27, 37面》

명종 16년 7월 21일(기묘)

○이중경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연충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박응남(朴應男)²⁰⁰⁾을 내자시 정으로, 조덕원(趙德源)을 예빈시 부정으로, 류종선(柳從善)을 의정부 사인으로, 이영(李翎)을 사헌부 장령으로, 강극성(姜克誠)을 지평으로, 황서(黃瑞)를 홍문관 응교로, 송하(宋賀)를 부교리로, 김억령(金億齡)을 부수찬으로, 이거(李蘧)를 예조 정랑으로, 윤인함(尹仁涵)을 병조 좌랑으로, 조위(趙瑋)를 시강원 사서로, 이윤덕(李潤德)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己卯以李重慶爲司諫院大司諫李彥忠爲弘文館副提學朴應男爲內資寺正趙德源爲禮賓寺副正柳從善爲議政府舍人李翎爲司憲府掌令姜克誠爲持平黃瑞爲弘文館應教宋賀爲副校理金億齡爲副修撰李蘧爲禮曹正郎尹仁涵爲兵曹佐郎趙瑋爲侍講院司書李潤德爲僉知中樞府事

《明宗實錄 卷第27, 39面》

명종 16년 8월 20일(정축)

류종선(柳從善)－소견이 좁고 경박하며 아부하기를 좋아하였다.－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박호원(朴好元)－겉으로는 침착한 듯하나 속으로는 실상 거만하였다.－을 의정부 사인으로, 이중호(李仲虎)를 시강원 문학으로, 정사현(鄭思顯)을 사헌부 지평으로, 고경명(高敬命)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김백균(金百鈞)－심지(心志)가 교활하여 이양에게 아첨하고 결탁하였다. 일찍이 용모로써 상에게 칭찬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청현의 벼슬에 올랐다.－을 성균관 전적을 삼았다.

199) 검상(檢詳) : 벼슬 이름. ① 조선 초기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 딸린 한 벼슬 타관(他官)으로 겸하게 하였다. ②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 벼슬(검상관).

200) 박응남(朴應男) : 1527~1572.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 자는 유중(柔仲) 호는 남일(南逸) 간재(艮齋) 퇴암(退庵)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반남. 명종 8년 문과에 급제 참판을 거쳐 대사헌 도승지를 지냈다. 선조 초에 바른 말 잘하기로 제일가는 간관(諫官)이었다.

丁丑以柳從善褊塞輕躁喜於趨附爲弘文館典翰朴好元外似從容內實驕駭爲議政府舍人李仲虎爲侍講院文學鄭思顯爲司憲府持平高敬命爲弘文館副修撰金百鈞心巧諂結李樑嘗以容貌見稱於上而聚忝顯秩爲成均館典籍

《明宗實錄 卷第27, 50面》

명종 18년 1월 30일(기유)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종조(中宗朝) 무진·경오·신미·임신·계유 등의 해에 태백이 경천하였다는 데 안에 기록해 둔 것이 있거든 우선 상고하여 아뢰라.”

○홍문관 부제학 윤의중(尹毅中), 직제학(直提學) 강사필(姜士弼), 전한 류종선(柳從善), 응교 박근원(朴謹元), 부응교 황서(黃瑞), 교리 김경원(金慶元)·이인(李潏), 부교리 류전(柳堧)·고경명(高敬命),—이양에게 붙어서 현요직 얻기를 도모하였다.— 수찬 황삼성(黃三省)·이선(李選), 부수찬 구사맹(具思孟)·류영길(柳永吉), 정자 구봉령(具鳳齡)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재앙은 까닭없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르는 바에 연유하는 것이라 기자(筭子) 홍범(洪範)의 오사(五事)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조짐과 『예기(禮記)』의 시령(時令)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응험은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근년 이래로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그렇지 않은 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없는 지방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천둥이 때를 잃거나 땅에 자주 지진(地震)이 일어나서 인애한 하늘이 전하에게 견책하여 고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비는 날 없이 태백이 주현하더니 끝내는 경천하여, 복해야 하는데도 복하지 아니하고는 해[日]에 대항하여 사(邪)가 정(正)을 범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큰 변이(變異)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척연히 놀라고 두려워하여 널리 상고해 보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시니 신들 또한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몸을 닦고 반성하시며 이를 소멸시키고자 하시는 뜻에 감복하였습니다. 비록 무슨 일 무슨 정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전대의 역사를 보건대 모두 혼란한 때에 나타났으니, 어찌 천도(天道)가 먼 것을 핑계하고 그에 보응하는 실지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육사(六事)로 자신을 책망²⁰¹⁾하고 팔장(八章)으로 자기에게 죄를 돌리며,²⁰²⁾ 상곡(桑穀)이 말라 죽고,²⁰³⁾ 형혹성(熒惑星)이 퇴사(退舍)²⁰⁴⁾한 것

201) 육사(六事)로 …… 책망 : 은(殷) 나라 성탕(成湯)이, 은 나라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자 상림(桑林)에 나아가 제사지내며 하늘에 호소하기를 ‘정사가 한결같지 못해서인가, 백성들이 직업을 잃어서인가, 궁실(宮室)이 높아서인가, 여알(女譏)이 번다해서인가, 뇌물이 성해서인가, 참소하는 자가 날뛰어서인가?’하며 자책하자 비가 내렸다고 한다.

202) 팔장(八章)으로 …… 돌리며 : 『시경(詩經)』 대아(大雅) 운한팔장(雲漢八章)을 가리킨다. 주선왕(周宣王)이 여왕(厲王)의 뒤를 이어 즉위해서는 폐정(弊政)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데 가뭄이 들자, 자신을 책망하며 하늘에 호소하였다 한다.

은 모두가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실상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재앙을 돌려서 상서로움으로 만들고 화를 없애서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수성하는 도리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시면서 이 마음을 시종 여일하게 가지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든 재앙이 내가 부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내 마음이 조심스럽고 두려웠는데 오늘 충언(忠言)을 들었으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己酉傳于政院曰 中宗朝戊辰庚午辛未壬申癸酉等年太白經天內有所記爲先考啓

○弘文館副提學尹毅中直提學姜士弼典翰柳從善應教朴謹元副應教黃瑞校理金慶元李遴副校理柳堧高敬命依附李樛以圖顯要修撰黃三省李選副修撰具思孟柳永吉正字具鳳齡進筭子曰伏以災不虛生由人所召箕範五事之徵戴記時令之應非厚誣也自近年以來天災時變非惟無歲不有而亦無地不然冬雷失節后土屢震仁愛之天謹告於 殿下者非一再矣今者太白晝見殆無虛日終於經天當伏不伏抗日干正變異之大無過於此 殿下惕然警懼特下博考之命臣等亦感殿下過災側身欲消去之意也雖不敢指以爲某事某政之失而歷觀前代未嘗不出於昏亂之時則豈可諉諸天道之遠而不盡應之之實乎六事之責躬八章之罪己桑穀之枯死熒惑之退舍皆由於敬畏之實則轉災爲祥消禍爲福祇在 殿下修省之道如何耳伏願 殿下克謹天戒終始此心幸甚答曰災由否德予心兢兢今聞忠言當留念焉 《明宗實錄 卷第29, 4面》

명종 18년 6월 24일(경오)

박근원(朴謹元)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이인(李訥)을 사헌부 집의로, 류종선(柳從善)을 홍문관 전한으로, 윤백원(尹百源)을 사헌부 장령으로, 류전(柳堧)을 병조 정랑으로, 박인원(朴仁元)을 사헌부 지평으로, 정엄(鄭淹)을 병조 좌랑으로, 이정빈(李廷賓) - 지난 신유년에 상이 녹음당(綠陰堂)에 나아가 5인을 취사(取士)하였다. 대간이 과거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오랫동안 간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가 천변(天變)을 만나자 비로소 파방(罷榜)을 명하였는데 정빈은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금년 3월에 상이 반궁(泮宮)에 행행하여 유생을 시험보여서 정빈이 장원으로 뽑혔는데 몇달이 지나지 않아 추천되어 병조에 들어갔고 또 옮겨서 정언이

203) 상곡(桑穀)이 말라죽고 : 은 태무(殷太戊)가 은 나라를 부흥시키려 하는데 상·곡 두 나무가 뜰에 나서 하루저녁에 두 손아귀에 차도록 크므로 태무가 두려워서 신하 이척(伊陟)의 말을 듣고 덕을 닦자 두 나무가 같이 말라죽었다 한다.

204) 형혹성(熒惑星)이 퇴사(退舍) : 춘추 시대 송 경공(宋景公) 적에 형혹성이 송 나라 분야에 나타나므로, 사성(司星)이 경공에게 '재앙이 임금에게 해당되니 정승에게 돌리소서.' 하자 '정승은 나의 팔다리이다.' 하고 '백성에게 돌리소서.' 하니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하고 '연사에 돌리소서.' 하니 '흉년이 들면 백성이 곤궁해진다. 내가 누구를 위한 임금인가.' 하였다. 그러자 사성이 '하늘은 높이 있지만 아래의 일을 듣습니다. 지금 임금께서 임금다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 형혹성이 옮겨갈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3사(舍)를 옮겨갔다.

되었다. 벼슬한 지 몇해 되지 않았고 나이도 아직 어린데 급급하게 추천하여 마치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듯하니 식자들이 걱정하였다. -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庚午以朴謹元爲承政院同副承旨李詒爲司憲府執義柳從善爲弘文館典翰尹百源爲司憲府掌令柳堧爲兵曹正郎朴仁元爲司憲府持平鄭淹爲兵曹佐郎李廷賓往在辛酉 上御綠陰堂取士五人臺諫以科擧不公久諍不允及過天變乃命罷榜廷賓其一也至于今年三月 上幸泮宮試士廷賓得捷其魁未閱數月而薦入兵曹又轉爲正言歷仕未多年尚幼而以汲推薦猶恐不及有識憂之爲司諫院正言

《明宗實錄 卷第29, 36面》

명종 18년 6월 25일(임신)

성순(成詢)을 병조 참의로, 이정(李楨) - 학문에 뜻을 두었고 일찍이 아버지를 위해 외직(外職)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으며, 자호(自號)를 귀암(龜巖)이라 하였다. -을 형조 참의로, 류종선(柳從善)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광진(李光軫) - 맑고 단아하며 신중하고 과묵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취하였다. -을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이인(李詒)을 홍문관 교리로, 이우민(李友閔) - 외면은 온화한 듯하였지만 내면은 실상 경솔하여 그의 행동과 처사를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였다. -을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壬申以成詢爲兵曹叅議李楨有志學問嘗爲親外補所至有聲績自號龜巖爲刑曹叅議柳從善爲弘文館直提學李光軫清雅慎默人皆取焉爲司僕寺正李詒爲弘文館校理李友閔外雖雍容內實輕率行已處事人多非之爲僉知中樞府事

《明宗實錄 卷第29, 37面》

명종 18년 8월 19일(을축)

○홍문관 부제학 기대항, 직제학 류종선, 전한 황서, 교리 최용·고경명, 부수찬 이거, - 재질과 인품이 용렬하고 식견이 얕았는데 윤원형의 일족과 혼인을 하여 마침내 청현직에 올랐다. - 저작 이산해 등이 상차(上筮)하기를,

“임금이 덕과 교화를 베푸는 자리에 단정히 공수(拱手)만 하고 계셔도 국가가 유지되고 통솔되는 것은 위복(威福)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다가 하루라도 신하에게 옮겨간다면 곧 위망이 닥치게 되는 것이니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시므로 조정이 화평하여 사람이 눈을 씻고 청명한 다스림을 바라고 있는데 이조 판서 이양은 그 몸이 척리(戚里)에 있음으로 인하여 지나친 은총과 발탁을 입고 4~5년 사이에 갑자기 육경에 올랐으니 마땅히 은우에 감격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는 데 힘써 위복을 도적질하여 농락하면서 사악하고 위험스러운 무리들과 유대를 맺고 그들을 끌어들이어 당여로 삼아서 분주히 추종하는 길을 넓히고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는 배척하고 아부하는 자는 등용하면서 어진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온갖 짓을 다하였습니다. 조정의 관작을 제집

의 사유물인 양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무개가 당상에 승진한 것은 나의 힘이었고 아무개가 제직(除職)된 것도 나의 힘이었다.’고 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을 말한다면 사사로이 남에게 벼슬을 주고자 하여 전조에 부탁할 때는 상지(上旨)라고 험박하고, 애완할 보물을 모으려고 널리 남의 집에 요구할 때는 내헌(內獻)할 것이라고 핑계하였으며[중략]

하니, 답하기를,

“이 차자의 논사를 살펴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그 중도(中道)를 얻어야 하는 법이니, 이양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출송하고 이정빈은 관작만 삭탈하라. 그리고 양사는 모두 체직하라.”

하였다.[중략]

사신은 논한다 : 이때에 이양이 한창 상에게 총애를 받아 그 기세가 불꽃처럼 치솟으니 그에게 달려가 붙은 자가 많아서 거리에서 골목까지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었다. 비록 명사라 불리는 자라도 그 문정을 밟지 않은 자가 드물었다. 혹은 아첨하고 혹은 무서워하는 것은 그 형세가 자연 그럴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한때의 사슴이 투미(偷靡)했던 점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에 팔뚝을 걷어붙이고 양의 죄를 논한 자 중에는 전일 이양에게 위협을 당하여서가 아니라 자의로 양의 집에 문안하던 자도 있었으니 이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 기대항 같은 사람만 해도 애초에는 양과 두터운 사이였다. 이때에 이르러 의견의 덕분에 도리어 논죄를 하였으니 의견을 얻은 것이 대항에게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乙丑○弘文館副提學奇大恒直提學柳從善典翰黃瑞校理崔顥高敬命副修撰李蘧才庸瑣識慮短淺托婚於尹元衡之族遂被清顯之選著作李山海上筭曰伏以人君端拱穆清之上其所以維推摠攬者威福而苟或一日下移則危亡立至可不懼哉今者 聖明在上朝廷和平士林拭目佇見清明之治而吏曹判書李樑身居戚里過蒙寵擢四五年來驟躋六卿所當感激恩遇以圖報效之不暇而專務招權竊弄威福締結儉邪傾險之輩引爲手足瓜牙以廣奔趨之路異己者斥之附己者進之妨賢病國靡所不至視朝廷官爵爲一家私有至曰某人陞紹是吾之功也某人除職是吾之力也甚者私欲爵人有求於銓曹則脅之以 上旨謀聚寶玩廣求於人家則托之以內獻[中略] 答曰觀此筭論不陞駭愕然治人當得其中李樑則削奪官爵門外黜送李廷賓削奪官爵兩司並適之也[中略]

史臣曰是時樑方被寵於上氣勢炎炎人多趨附連街接巷車馬填塞雖號爲名士不踏其門者蓋鮮焉或諂或畏勢所必然而一時士習之偷靡亦可想矣其後攘臂而論樑罪者或未必非脅肩而候樑家者人或有有竊笑者至如奇大恒初與樑厚至是賴義謙反論之得義謙恒亦幸矣

《明宗實錄 卷第29, 53面》

명종 19년 1월 22일(병신)

정청(政廳)에 전교하였다.

○원혼(元混)을 호조 판서로, 윤춘년(尹春年)을 형조 판서로, 김귀영(金貴榮)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홍천민(洪天民)을 예조 참의로, 성순(成詢)을 병조 참의로, 박계현(朴啓賢)을 참지(參知)로, 류종선(柳從善)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최응룡(崔應龍)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윤의중(尹毅中)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박순(朴淳)을 직제학으로, 유홍(兪泓)을 사헌부 집의로, 이거(李蘧)를 장령으로, 오겸(吳謙)을 판증추부사로 삼았다.

丙申傳于政廳曰○以元混爲戶曹判書尹春年爲刑曹判書金貴榮爲司憲府大司憲洪天民爲禮曹參議成詢爲兵曹參議朴啓賢爲參知柳從善爲刑曹參議崔應龍爲承政院右副承旨尹毅中爲弘文館副提學朴淳爲直提學兪泓爲司憲府執義李蘧爲掌令吳謙爲判中樞府事

《明宗實錄 卷第30, 3面》

명종 19년 5월 6일(정미)

김덕룡(金德龍)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양원(李陽元)을 우승지로, 박순(朴淳)을 좌부승지로, 이지신(李之信)을 우부승지로, 류종선(柳從善)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丁未以金德龍爲承政院都承旨李陽元爲右承旨朴淳爲左副承旨李之信爲右副承旨柳從善爲同副承旨

《明宗實錄 卷第30, 27面》

명종 19년 7월 20일(경신)

박영준(朴永俊)을 형조 판서로, 김수문(金秀文)을 한성부 판윤으로, 홍담을 이조 참관으로, 강욱(姜昱)을 승정원 도승지로, 박계현(朴啓賢)을 좌승지로, 박응남(朴應男)을 우승지로, 목침(睦詹)을 좌부승지로, 류종선(柳從善)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안방경(安方慶)을 동부승지로, 윤의중(尹毅中)을 이조 참의로, 윤두수를 의정부 사인으로, 류전(柳埶)을 홍문관 교리로, 허엽(許曄)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다. -허엽은 마음을 세움이 조심스러웠고 올바랐다. 지난날 승지로 경연에 입시하여 기묘년간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줄 것을 아뢰었는데 언론이 간절하고 곧았으나 상께서 달갑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직(內職)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외직(外職)을 구해 지방에 보직되었으나 또 이양(李樛) 등에게 밋보여 파직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서임되었다.

庚申以朴永俊爲刑曹判書金秀文爲漢城府判尹洪曇爲吏曹參判姜昱爲承政院都承旨朴啓賢爲左承旨朴應男爲右承旨睦詹爲左副承旨柳從善爲右副承旨安方慶爲同副承旨尹毅中爲吏曹參議尹斗壽爲議政府舍人柳埶爲弘文館校理許曄爲慶州府尹立心近正頃爲承旨入侍經席申救己卯之人言論切直 上厭聞之不得留內求出補外又爲奸臣李樛等所忤見罷未久復叙

《明宗實錄 卷第30, 34面》

명종 19년 10월 23일(임진)

○성의국(成義國)을 예조 참의로, 이양원(李陽元)을 승정원 좌승지로, 박순(朴淳)을 우승지로, 류종선(柳從善)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황서(黃瑞)를 우부승지로 삼았다.

壬辰○以成義國爲禮曹叅議李陽元爲承政院左承旨朴淳爲右承旨柳從善爲左副承旨黃瑞爲右副承旨
《明宗實錄 卷第30, 50面》

선조 6년 11월 10일(병술)

정지연(鄭芝衍)을 사인(舍人)에, 김집(金緝)을 형조 좌랑(刑曹佐郎)에, 박점(朴漸)을 부수찬(副修撰)에, 류종선(柳從善)을 원주목사(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丙戌○以鄭芝衍爲舍人金緝爲刑曹佐郎朴漸爲副修撰柳從善爲原州牧使
《宣祖實錄 卷之7, 54面》

대동야승 제3권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류종선(柳從善)은 진주(晉州)사람으로, 자(字)는 여등(如登)이다. 산에서 살면서 스스로 행동을 감추어서 그 친구와 친척도 그 얼굴 보기가 드물었었다.

柳從善晉州人,字如登,居山自晦,朋戚罕見其面. 《國譯本 370面, 原本 709面》

대동야승 제13권 견한잡록(遣閑雜錄)

나의 동년(同年: 과거에서의 동기를 말함)인 계묘년 사마방(司馬榜) 중에는 급제한 자가 61명이며, 음직(蔭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받는 관직)자가 31명인데, 강사상(姜士尙)과 수경은 의정이 되고 심강(沈綱)은 영돈녕(領敦寧)이며 박계현(朴啓賢)·황임(黃琳)·이임(李琳)·윤의중(尹毅中)은 판서요, 이감(李戡)·이중경(李重慶)·김덕룡(金德龍)·심전(沈銓)·손식(孫軾)·황응규(黃應奎)는 가선(嘉善)이며, 윤주(尹澍)·정척(鄭惕)·홍천민(洪天民)·조징(趙澄)·류승선(柳承善)·김언침(金彦沈)·신희남(愼喜男)·권벽(權擊)·류종선(柳從善)·장사중(張士重)·조부(趙溥)·김백균(金百鈞)·이억상(李億祥)·권순(權純)·임여(任呂)·이집(李楫)은 통정이 되었다. 70이 넘는 이를 말하면, 외방에 있는 자는 상세히 알지 못하나 서울에 있는 이는 이봉수·이집이 83세요. 엄서(嚴曙)가 82세 정척이 80세, 류성남(柳成男)과 이권충(李勸忠)이 75세 황린(黃璘)과 신희남이 75세 권벽은 74세 조부·허현·박홍(朴泓)은 73세, 심호(沈鎬)·권순도 73세이며, 김언침·이감(李鑑)·이인(李遴)은 71세 심전·김진(金鎭)이 70세인데, 모두 작고하였고 심수경은 82세이며 황응규는 80세요. 장사중은 74세로 모두 아직 무병하였

다. 2백 명의 동방(同榜)이 급제한 지도 55년이 된지라 3명만이 생존해 있으니 서글플 뿐이다. 장사중은 정유년 여름에 황응규는 무술년 가을에 작고했다.

吾同年癸卯司馬榜中.及第者六十一人.蔭職者三十一人.姜士尙及守慶議政.沈鋼領敦寧.朴啓賢黃琳李琳尹毅中判書.李戡李重慶金德龍沈銓孫軾黃應奎嘉善.尹澍鄭惕洪天民趙澄柳承善金彥沈慎喜男權擘柳從善張士重趙溥金百鈞李億祥權純任呂李楫通政.而年過七十者.在外則未能詳知.在京則李鳳壽李楫八十三.嚴曙八十二.鄭惕八十.柳成男李勸忠七十七.黃璘慎喜男七十五.權擘七十四.趙溥許鉉朴泓七十三.沈鎬權純七十三.金彥沈李鑑李遴七十一.沈銓金鎮七十.並作古.而守慶八十二.黃應奎八十.張士重七十四.並尙無恙.二百人同榜.五十五年而三人生存.嗚呼愴哉.士重丁酉夏應奎戊戌秋作古

《國譯本 540面, 原本 130面》

용문집 권이(龍門集 卷二)

안변 석왕사 앞을 지나다가 류공 종선의 무덤이 바로 산 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느낀 바 있어 이 추모시를 지었다.

過安邊釋王寺 聞柳公從善之墓在山下 感慕而作

《韓國文集叢刊 28卷, 龍門集 189 B》《晉州柳氏文集 131面》

조총유고 상(篠叢遺稿 上)

류여등 종선에게 드리는 제문

祭柳如登 從善文

《韓國文集叢刊 12卷, 篠叢遺稿 515 B》《晉州柳氏文集 132面》

추강집 권칠(秋江集 卷七)

스승 친구의 이름과 행실을 기록하다.

師友名行錄

《韓國文集叢刊 16卷, 秋江集 139 C》《晉州柳氏文集 135面》

미암집 권칠(眉巖集 卷七)

《韓國文集叢刊 34卷, 眉巖集 268 D》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목사공(牧使公) 류승선(柳承善)

자는 응경(應卿)이며 중종 15년(1520) 전적공 류정(典籍公 柳貞)과 사축 김세완(司畜 金世琬 父 仲訥)의 따님인 선산김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사촌 형제인 강원 관찰사를 지낸 소재공 순선(素齋公 順善)과 호조참의를 지낸 겸재공 종선(從善)과 함께 아버지 밑에서 수학하여 중종 38년에 진사시에 오르고 명종 1년(1546) 식년시에 급제하여 명종 12년(1557) 사헌부 지평, 13년 홍문관 수찬, 홍문관 부교리, 장령, 교리, 사간원 헌납을 두루 거치고 명종 15년(1560) 세자시 강원 필선 다음 해에 해주목사를 역임했다. 족보에는 좌승지, 동래부사의 기록이 보인다.

부인은 권응상(權應祥)의 따님인 안동권씨로 아들 생원인 충각(忠愨)과 충당(忠愨)이 있으며 두 사위는 생원 정사억(鄭思億)과 부계인 홍덕록(洪德祿)이다.

권응상의 조부 영가군 권경(永嘉君 權擎)은 정난공신 3등에 책록되고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明宗丙午元年式年榜十月行

甲科 三人

進士 沈壽慶(豊山人), 生員 金沉, 進士 許曄(陽川人)

乙科 七人

進士 梁喜(南原人), 奉事 鄭純祐(東萊人), 叅奉 韓灝(唐津人), 進士 奇大恒(幸州人), 進士 柳承善(晉州人), 訓導 田霽光(南陽人), 進士 朴文秀(密陽人)

丙科 二十五人

生員 徐克一(利川人), 幼學 郭懷英(淸州人), 幼學 孫翰, 進士 金虬(光州人), 幼學 金德良, 生員 金鎔, 進士 邊偉(原州人), 進士 姜士尙(晉州人), 訓導 金廷碩, 生員 金士銛(江陵人), 訓導 金起文(慶州人), 生員 張文輔(順川人), 生員 沈銓(靑松人), 幼學 朴虎(密陽人), 生員 鄭得(慶州人), 進士 申國樑(平山人), 幼學 劉漢忠, 進士 柳應斗, 生員 李光前(陝川人), 生員 楊士彦(淸州人), 進士 金漢傑(開城人), 訓導 李成義(廣州人), 幼學 李銘(全州人), 生壯幼學 尹槩(坡平人), 進壯幼學 金弘度(安東人)

명종 12년 1월 29일(계미)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류승선(柳承善)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왜인들을 후대하였는데 지금은 대우가 너무 박해서 상물(商物)을 무역하는 데도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 노여움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변

방의 혼단도 이미 열렸습니다. 그들의 교활한 술책에 빠져 경솔히 통신사를 보내면 약점만을 보일 뿐이요,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냈다가 일본에서 또 청하면 무슨 말로 사양하겠습니까? 『예조등록(禮曹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이형원(李亨元)이 사명을 받들고 대마도에 갔을 적에 그들이 오만하게 대하여 국위를 휴손시킨 것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되어 죽을 적에 '도이(島夷)와 통신하는 것은 하나도 좋은 일이 없다.'고 했고, 권주(權宙)도 도주(島主)를 책유(責諭)하는 일로 -성종 때였다.- 대마도에 갔는데, 도주가 권주를 구류하려 하였으나 권주가 응변을 잘해서 모면했습니다. 평시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지금은 혼단이 있는 때인 데이겠습니까. 또 대신들이 객사(客使)가 관(館)에 있다 하여 은밀히 의논했는데, 이는 조정의 큰 일이니 신하들 모두가 알게 해야 합니다. 시종과 대간까지도 그 폐단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언 박응남(朴應男)이 아뢰기를,

“이웃 나라와는 평상시라면 통신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그들을 제압할 수 없으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 통신사를 보내려고 하면 이는 보내고 안 보냄이 그들에게 달린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은 온 나라가 모두 그르게 여기는데도 간원에서는 한마디도 없었고, 응남이 경연에서 아뢴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힘써 아뢰지 않았다. 모르겠으나, 간원이 대신의 뜻에 부화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응남 역시 원(院)의 의논에 견제되어 진언하기가 어려웠던 것인가? 모두 잘못된 일이다.

하고, 영경연사 윤개가 아뢰기를,

“대마도에 통신사를 보내는 일은 지난해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조종조에서는 왜인의 대우를 매우 후히 해서 세견선 50척과 세사미(歲賜米) 5백 곡(斛)을 주었는데, 경오년(중종 5, 1510) 반란 후로부터 -중종 때 이우증(李友曾)이 부산포 첨사로 있을 적에 삼포의 왜인이 난을 일으켰다.- 거절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임신년(중종 7, 1512)에는 일본국왕의 청에 따라 왕래는 허락하였으나 세선과 세미를 반씩 삭감하고 30척만을 주었는데, 그후 사량(蛇梁)의 변이 있자 5척을 도로 빼앗았으므로 그들이 원망해 왔습니다. 조종조 때는 도주가 죽으면 관원을 보내어 제사지내 주었고 도주가 새로 서게 되면 관원을 보내어 위로하였고 허물이 있으면 관원을 보내어 타이르곤 했습니다. 권주를 구류했던 일은 무슨 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말만 듣고 도로 5척을 환급하면 명분이 없게 되니, 모름지기 관원을 보내어 그들이 바다를 지키는 상황을 살핀 후에 세선을 주어 그들의 화를 풀어주면 우리에게도 명분없는 일이 되지는 않

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의논한 것은 조정이 모르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객사가 관에 있는데 의논이 귀일되지 못하였으므로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하다 : 지금 은밀히 아뢰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객사가 관에 있어 전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서너 대신들이 자기 소견을 옳다고 하면서 비밀히 아뢰어 시종·대간까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게 했으니, 이것이 과연 광명 정대한 소위인가? 송 나라 신하 이항(李沆)이 ‘신하로서 비밀히 아뢰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일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체통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癸未 上御朝講持平柳承善曰 祖宗朝厚待倭人今則待之甚薄商物之貿不從所欲而其怒已極邊釁已開陷於狡詐之術輕通信使則徒示弱而已通信馬島而日本亦請則何以爲辭乎考見禮曹謄錄李亨元奉使至馬島以其待之倨傲虧損國威憾憤成疾臨死而言曰通信島夷無一好事權宙亦以責諭島主事成廟末至馬島島主欲拘留權宙而權宙善應變以免平時尚如此况今有釁之時乎且大臣以客使在館密議矣此朝廷大事使羣下皆知之可也而至於侍從臺諫亦不知其弊豈曰小哉正言朴應男曰隣國常時則交通可矣今則不能制其人而聽其人之言欲通信使是送與不送係於其人而不在於我無乃不可乎

史臣曰馬島通信之事舉國莫不非之而諫院寂無一言應男之進奏於經席亦不力陳其不可未知諫院附會大臣之意而然乎應男亦牽制一院之議而難於進言乎皆失之矣

領經筵事尹漑曰馬島通信之議非始於去年已曾有之 祖宗朝待倭甚厚賜歲遣船五十隻歲賜米五百斛自庚午年叛亂之後中廟朝李友曾爲釜山浦僉使時三浦倭作亂拒絕而不通壬申年從日本國王之請許其往來而減半歲船歲米只給三十隻其後地梁之變還奪五隻其怨在此而已祖宗朝島主死則遣官賜祭島主立則遣官致慰有罪則遣官責諭拘留權宙之事未知以何事而然也今者只聽其言而還復五隻涉於無名須遣官審其守海形止然後給歲船以釋其怨則在不爲無名矣且密議非不欲使朝廷知之也客使在館而議論不一故欲使彼不聞而然也

史臣曰今之密啓之事非矣雖曰客使在館不可傳播而二三大臣自是所見秘密封啓至使侍從臺諫不知其何事此果光明正大之所爲乎宋臣李沆曰人臣有密啓者皆非正也以此言之其可謂得體乎

《明宗實錄 卷第22, 20面》

명종 12년 3월 22일(을해)

○정대년(鄭大年)을 한성부 좌윤으로, 성세장(成世章)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류승선(柳承善)을 수찬(修撰)으로, 박계현(朴啓賢)²⁰⁵을 부수찬으로, 심통원(沁通源)

205) 박계현(朴啓賢) : 1524~1580.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자는 군옥(君沃). 호는 관원(灌園). 시호는

을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乙亥○以鄭大年爲漢城府左尹成世章爲弘文館副提學柳承善爲修撰朴啓賢爲副修撰沈通源爲同知中樞府事

《明宗實錄 卷第22, 42面》

명종 12년 8월 11일(신묘)

상이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이준경이 아뢰기를,

“전에 경연관(經筵官) 류승선(柳承善)이 아뢰기를 ‘경각사(京各司)의 조례(皂隸)·나장(羅將)·제원(諸員)은 그 역이 가장 괴롭기 때문에 외방의 무지한 사람이 번을 설 수 없어서 으레 번드는 값을 준비하여 번을 대신 서는 사람에게 값을 지급하여 오는 것이 옛부터 그러한데, 값을 받을 적에 작폐를 부리므로 그 폐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신이 대사헌 때 건의하여 공사로 만들어 병조로 하여금 번드는 값을 받아 각처에 나누어 보내게 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사(上司) 아문(衙門)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의금부(義禁府) 등이다.-에서는 과거의 전례에 따라 받기 때문에 중간의 서리(胥吏)들의 농간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복시(司僕寺) 제원은 일년 중에 여섯 달을 번을 드는데 한 달 번드는 값을 으레 쌀 14~15말씩 받는데, 만약 인정(人情)-중간에 서리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다.-을 쓰는 것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20여 말은 됩니다. 비록 부하고 실한 사람이라도 2~3년이 못 가 유리하여 도망가는 자가 허다합니다. 의금부 조례들이 번드는 값으로 바치는 베가 처음에는 으레 3단(端)이었는데 중간에 승전을 받은 후부터는 비록 줄었다고는 하나-2단 반으로 고쳐 받았다.- 무명의 승수(升數)를 골라 받는 것이 너무 세밀하여 이 폐단이 더욱 심중합니다. 대저 법이 문란해지는 것은 반드시 상사 아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의정부·충훈부·의금부 등 아문의 조례들의 선상포(選上布)를 받을 때는 으레 오승포(五升布)로 하되 점퇴(點退)를 허락하지 않으며, 혹 전대로 저지른 자가 탄로났을 때는 그 관아의 행수장무관(行首掌務官)을 파직할 일로 승전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辛卯 上受朝叅御朝講知經筵事李浚慶曰前日經筵官柳承善啓曰京各司皂隸羅將諸員其役最苦故外方無知之人不能自立例備立番之價以給代立之人從古然矣但於受價之際刀蹬阻當弊甚不貲云故小臣前爲大司憲時建白爲公事令兵曹捧番價分送各處事捧承傳矣然上司衙門如議政府忠勳府義禁府之屬則依前例捧之故中間胥徒作弊之事不可勝言如司僕寺諸員一年之內六朔立役而一朔價米例捧十四五斗若與人情中間□與胥徒之物也而計之則小不下

문장(文莊). 본관은 밀양. 문과에 급제. 명종 13년(1558) 의정부 검상 이조 정랑에 임명되고, 선조 6년(1573) 예조참판을 거쳐 병조판서를 지냈다. 편서에 밀산세고(密山世考)가 있다. 중종 38년(1543) 계묘년 사마시에 류승선과 동방급제 했다. 대동야승 13권 견한잡록에 보인다.

二十餘斗雖富實之人不及二三年流離逃蔽者數多義禁府皂隸立番價布當初例捧三端中間捧承傳後雖曰差減今捧二端半而點擇升數極其細密此弊尤爲深重大抵法之廢闕必自上司而始焉今後議政府忠勳府義禁府等衙門皂隸選上布捧納之際例捧五升木不許點退或有仍前濫捧現露者各其司行首掌務官罷黜事捧承傳何如
《明宗實錄 卷第23, 24面》

명종 12년 9월 27일(정축)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류승선(柳承善)을 세자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윤선지(尹先智)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김수문(金秀文)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신하며 또한 재략이 있어 여러 번 변방의 절도사가 되었는데 모두 명성과 치적이 있었다. -을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丁丑 上御朝講○以柳承善爲世子侍講院文學尹先智爲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秀文爲人廉謹且有才略屢授邊閫之任皆有聲績爲僉知中樞府事
《明宗實錄 卷第23, 44面》

명종 13년 1월 17일(병인)

상이 아침에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선(視膳)하고 저녁에 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하였다.

○류승선(柳承善)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이명(李銘)을 합천군수(陝川郡守)로 삼았다.

丙寅 上視朝膳于 文昭殿夕膳于 延恩殿○以柳承善爲弘文館修撰李銘爲陝川郡守
《明宗實錄 卷第24, 3面》

명종 13년 1월 20일(기사)

류승선(柳承善)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덕곤(金德鵠)을 경기 도사(都事)로 삼았다.

己巳以柳承善爲司憲府持平金德鵠爲京畿都事
《明宗實錄 卷第24, 5面》

명종 13년 3월 4일(임자)

이언경(李彦憬)을 홍문관 응교로, 황임(黃琳)을 사간원 헌납으로, 류승선(柳承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민시중(閔時中)을 수찬으로, 고경진(高景軫)을 예문관 대교로 삼았다.

壬子以李彦憬爲弘文館應教黃琳爲司諫院獻納柳承善爲弘文館副校理閔時中爲修撰高景軫爲藝文館待教
《明宗實錄 卷第24, 18面》

명종 13년 3월 12일(경신)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 사신이 벼슬 주기를 청한 소첩(小帖)과 이 이름을 쓴 단자(單子)를 삼공(三公)·영부사에게 보이라. 내 생각에는, 관반에게는 안구마(鞍具馬)를 주고 원접사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윤행(尹行)·이언경(李彦憬)에게도 상가(賞加)하고 이중량(李仲樑)·안방경(安方慶)·남경춘(南慶春)·홍춘년(洪春年)·이언충(李彦忠)에게는 말[馬]을 주고 원호변(元虎變)은 벼슬을 올리고 이중호(李仲虎)·류승선(柳承善)·류순선(柳順善)은 자궁(資窮)하지 않은 자이니 가자하고, 윤희연(尹弘彦) 등 7인은 승천(陞遷)하고 홍겸(洪謙) 등 4인은 그 아문(衙門)에서 으뜸가는 녹(祿)과 벼슬을 주고 의원(醫員) 2인은 그 아문에서 높은 녹을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

庚申○傳于政院曰天使請爵小帖及此書名單子示于三公領府事予意則館伴給鞍具馬遠接使給加尹行李彦憬亦賞加李仲樑安方慶南慶春洪春年李彦忠給馬元虎變陞職李仲虎柳承善柳順善未資窮者加資尹弘彦等七人陞遷洪謙等四人本衙門付首品祿職醫員二人本衙門高品付祿何如

《明宗實錄 卷第24, 23面》

명종 13년 4월 18일(을미)

신여중(申汝悤)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김귀영(金貴榮)을 전한으로, 이언충(李彦忠)을 시강원 보덕으로, 윤의중(尹毅中)을 홍문관 응교로, 노진(盧禎)을 시강원 필선으로, 이문형(李文馨)을 홍문관 부응교로, 류승선(柳承善)을 교리(校理)로, 민시중(閔時中)·박호원(朴好元)을 부교리로, 류진(柳堧)을 수찬으로, 강사필(姜士弼)을 박사로, 홍인경(洪仁慶)을 저작(著作)으로 삼았다.

乙未以申汝悤爲弘文館直提學金貴榮爲典翰李彦忠爲侍講院輔德尹毅中爲弘文館應教盧禎爲侍講院弼善李文馨爲弘文館副應教柳承善爲校理閔時中朴好元爲副校理柳堧爲修撰姜士弼爲博士洪仁慶爲著作

《明宗實錄 卷第24, 27面》

명종 13년 5월 29일(병자)

○상진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윤개를 좌의정, -윤개는 책략이 많고 응변을 잘하며 윤원형을 꼭진히 섬겨서 작록을 보전하였다. -으로 윤원형(尹元衡)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북상(卜相)이라는 것은 덕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윤원형은 일품의 반열에 앉아 있는 데다가 외척의 권력을 끼고 있으니, 이것이 상진과 윤개가 끌어올려 재상으로 삼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가린 것은 세력과 권력이고 덕망을 가린 것이 아니니, 애석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준경을 좌찬성으로, 홍섬을 우찬성 겸예조판서로, 이명규(李名珪)를 판돈녕부

사 겸병조 판서로, -이 세 사람은 다 어필(御筆)로 써서 내렸다. -민기(閔箕)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의중(尹毅中)을 집의로, 성의국(成義國)·류승선(柳承善)을 장령(掌令)으로, 김백균(金百鈞)·송하(宋賀)를 지평으로, 이중경(李重慶)을 홍문관 응교로, 민시중(閔時中)을 교리로, 노진(盧禎)을 부교리로, 이세림(李世琳)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홍연(洪淵)을 문학으로, 박호원(朴好元)을 사간원 헌납으로, 박응남(朴應男)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丙子以尙震爲議政府領議政尹漑爲左議政漑多機巧善變曲事元衡以保爵祿尹元衡爲右議政
史臣曰所謂卜相者卜其有德望也而元衡據一品之班挾外戚之權此震漑等所以援而爲相也然則所卜者勢與權也非所以卜其德望也可勝惜哉

李浚慶爲左贊成洪暹爲右贊成兼禮曹判書李名珪爲判敦寧府事兼兵曹判書此三人皆御筆書下也閔箕爲司憲府大司憲尹毅中爲執義成義國柳承善爲掌令金百鈞宋賀爲持平李重慶爲弘文館應教閔時中爲校理盧禎爲副校理李世琳爲世子侍講院弼善洪淵爲文學朴好元爲司諫院獻納朴應男爲吏曹佐郎

《明宗實錄 卷第24, 34面》

명종 13년 6월 25일(신축)

윤의중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중경을 전한으로, 이문형을 응교로, 임여(任呂)를 사헌부 장령으로, 노진(盧禎)을 홍문관 부응교로, 박계현을 의정부 검상으로, 류승선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유흥을 수찬으로, 황삼성(黃三省)을 병조 좌랑으로, 권응창(權應昌)²⁰⁶을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삼았다.

辛丑以尹毅中爲弘文館直提學李重慶爲典翰李文馨爲應教任呂爲司憲府掌令盧禎爲弘文館副應教朴啓賢爲議政府檢詳柳承善爲弘文館校理俞泓爲修撰黃三省爲兵曹佐郎權應昌爲洪州牧使

《明宗實錄 卷第24, 41面》

명종 13년 7월 18일(계해)

송하(宋賀)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류승선(柳承善)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황서(黃瑞)·민시중(閔時中)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양(李樑)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癸亥以宋賀爲司憲府持平柳承善爲司諫院獻納黃瑞閔時中爲弘文館校理李樑爲修撰

《明宗實錄 卷第24, 46面》

206) 권응창(權應昌) : 1500~1568. 조선 명종(明宗) 때의 문신. 자는 경우(景遇). 호는知足당(知足堂). 본관은 안동(安東). 중종(中宗) 14년(1519) 문과에 급제. 승지(承旨)를 거쳐 경상도·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명종 원년(1546)에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이듬해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 때 맹산(孟山)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남양부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朝鮮明宗實錄》·《知足堂集》

명종 13년 7월 30일(을해)

심전(沈銓)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류승선(柳承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乙亥以沈銓爲承政院右副承旨柳承善爲弘文館副校理

《明宗實錄 卷第24, 48面》

명종 14년 1월 23일(을미)

○대사헌 정유길(鄭惟吉), 대사간 김개(金鎧), 집의(執義) 이중량(李仲樑), 사간 안방경(安方慶), 장령 성의국(成義國), 헌납 고맹영(高孟英), 지평(持平) 류승선(柳承善)·송하(宋賀)가 아뢰기를,

“오늘 조강에서 영경연사 이준경이 아뢰는 말 가운데에, 옛날에는 바른 언론이 개방되어 바르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기피하므로 정사하거나 용사하는 즈음에, 그리고 여러 관원들 중에 탄핵할 만한 일이 없지 않은데도 탄핵하는 예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진정 어떤 일을 지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대개는 신들의 병통에 적중한 말입니다. 인군이 한 나라의 언책을 대간에게 맡겼는데도, 신들이 어두워 이를 살피지 못하여 대신의 의논에 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죄가 큼니다. 뻔뻔스레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신들을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늘 조강에서 우상의 아뢰는 말을 들었는데 탄핵하는 예가 없다는 의논은 지금의 대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세태가 예와 같지 않음을 범연히 논한 것일 뿐이다. 사직하지 말라. 다만, 더욱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였다. 재차 아뢰기를,

“신들이 노둔하고 용렬한 채주로 연관의 자리에 앉아서 비록 만에 하나라도 책려(策勵)하려 하나, 이목(耳目)이 넓지 못하고 생각이 주밀하지 못하여 말할 만한 일을 말하지 않는 예가 많으므로 경연에서의 의논이 그러한 것입니다. 대간은 조금이라도 남의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 눌러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대신의 말을 들은 경우이겠습니까. 비록 조정의 습독을 범연하게 논한 말이라 하나, 사실은 다 신들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미 지적이 있기 전에 진언하지 못한데다가 지적이 있는 뒤에까지 이대로 앉아 있게 되면 신들의 죄가 더욱 커집니다. 속히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의 대간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우상이 시습을 범연히 논한 말을 가지고 어찌 두 번이나 사직하는가. 번거로이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乙未○大司憲鄭惟吉大司諫金鎧執義李仲樑司諫安方慶掌令成義國獻納高孟英持平柳承善宋賀啓曰今日朝講領經筵事李浚慶所啓古時則危言讜論無事不正近來則不然以言爲諱政事之間用捨之際及庶官之中不無可駁者而不見彈駁云臣等實未知指某事而言然其大槩正中臣等之病人君以一國言責付之臺諫而臣等愾不之察至發於大臣之論不職之罪大矣不可靦然冒處請亟遶臣等之職答曰今日朝講予聞右相所啓不爲彈駁之論非指今臺諫而發也泛論時不如古而已勿辭但當更加盡職再啓曰臣等俱以駑劣待罪言地雖欲策勵萬一耳目不廣思慮不周可言而不言者多故經席所論如此臺諫少有人言不可冒處况至於大臣之有言乎雖曰泛論朝廷間習尙其實皆臣等不職之罪也旣不言於未言之前又復靦然於有言之後則臣等之罪尤大矣請速命遶答曰今之臺諫之不職予未之知也以右相泛論時習之言豈至於再辭乎宜勿煩辭

《明宗實錄 卷第25, 5面》

명종 14년 2월 9일(신해)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류승선(柳承善)이 아뢰기를,

“임금이 정사(政事)를 펴고 인(仁)을 베푸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님이 없으니, 산량 천택(山梁川澤)의 이익을 백성과 함께한 것은 3대(代) 제왕(帝王)의 정사였습니다. 만약 아랫사람이 권세를 믿고 작폐(作弊)하여 실제의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백성이 다 원망하여 그 허물을 옷사람에게 돌릴 것이니, 정사를 해치는 바가 역시 크지 않겠습니까. 근래 흉년이 계속되어 위에서 매번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백성의 곤궁함이 지금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천택(川澤)으로 말하자면, 해변의 이생지(泥生地)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땅인데, 세력 있는 재상가(宰相家)에서 이를 모두 빼앗아 점거하고는 읍민(邑民)들을 징발하여 독을 막는 부역을 시키고 열군(列郡)에서 거두어 들여 경비를 충당하니, 독이 이루어지면 그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재물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를 본받아 근래에는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먹고살 땅을 빼앗긴 데다가 힘겹게 부역까지 하는 실정이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자(王子)나 부마(駙馬)들이 대부분 어전(魚箭)을 받았는데, 그 하인들이 여러 가지로 작폐(作弊)하여 오가는 어선(漁船)에 대해 횡포와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가 어부들이 안절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흩어져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년에 대간의 계청으로 이를 단속하였는데 폐단이 아직도 매우 심하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산량(山梁)으로 말하자면, 도미(渡迷)와 월계(月溪) - 모두 지명(地名)이다. - 의 위는 경기 백성들이 뚝감을 베는 곳이고 삼전도(三田渡) - 나루터 이름이다. - 와 그 너머쪽 정금원평(鄭今院坪) - 지명이다. - 은 조종조에서 열무(閱武)하던 곳으로 주민들이 풀을 베어 마소의 먹이를 마련했었는데, 양종(兩宗 : 선종과 교종)이 다시 설치된 뒤로 봉은사(奉恩寺)가 '수사지(受賜地)'라 자칭하고 금표(禁標)를 세워 백성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어느 절 앞에 있는 천량(川梁)은, 이전부터 주민들이 고기를 잡아 먹었는데 지금은 중들이, 재궁(齋宮) 가까이 있다 하여, 역시 금표를 세우고 고기잡이를 금합니다. 예부터 어찌 중들이 고기잡이를 금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이 같은 작폐에 대해 어리석은 백성들은 중간의 농간인 줄을 알지 못하고, 혹 위에서 명하신 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 일들이 비록 사소한 것 같으나 정사를 해치는 데는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경연사 이준경이 아뢰기를,

“해택 제언(海澤堤堰)의 폐단은 예부터 공통된 걱정거리였는데, 요즈음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대간은 만약 들은 바가 있다면 의당 이를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황희(黃喜)는 어진 재상이었으나 제언 사건으로 논핵(論劾)을 받고 오랫동안 파면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록 재상이라도 한 가지 실수가 있으면 것처럼 논핵했기 때문에 모든 정사가 다 수거(修擧)되었는데, 근래에는 조정의 기강이 떨쳐지지 못하여 폐단이 날로 심해져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논핵하여 경계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어전의 폐단도 근래에 더욱 심하여 어부가 안접하지 못하고 깊숙히 해도(海島)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청홍도(淸洪道)의 저도(楮島)와 부안(扶安) 땅 위도(蝸島) 등도 다 수사지(受賜地)로 되어 그 작폐가 무수한 데다가 병사와 수사의 횡포까지 심합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사방으로 이산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왕자와 부마들이 하사받은 어전은, 일시에 다 반환시킬 수는 없으나 거리가 먼 곳의 속공(屬公)시켜 어부들이 안접(安接)하도록 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시장(柴場)에 대한 일은, 신의 부모의 무덤이 양근(楊根) 지방에 있으므로 양근을 왕래할 때 직접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평지만 있으면 왕자들이 거의 다 점유하였고, 중들도 다 금표를 세워 놓아서 백성들은 송곳 꽃을 만한 곳도 없었으니, 보기에 한심하였습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시 살살이 살피서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폐단과 백성의 억울함에 대하여 아뢴 뜻이 모두 마땅하다. 어전에 대한 일은 전에 대간의 주청으로 단속하였는데, 그 폐단이 지금까지 그러하다 하니 참으로 미편하다. 시장(柴場)에 대해서도 아뢴 뜻이 마땅하다. 대저 이 같은 일은 이목(耳目)을 맡은 관원이 의당 들어서 논핵해야 할 일이다.” 하였다.

辛亥 上御朝講持平柳承善曰人君發政施仁莫非爲民而山梁川澤皆與之共者三代帝王之政也幸有下人憑勢作弊實惠不及於民則民皆怨咨而歸咎於上妨政害治不亦大乎近來年運凶荒自上每加如傷之念而民之困瘁莫今時若也以川澤言之海邊泥生之地民所耕食以資其生而宰相有勢之家皆據奪自占調發邑民以爲防塞之役收斂列郡以爲供役之資堤堰旣成則利歸於已雖不得成無費已物故爭相效之比來尤甚民旣被奪其所食又勞其力而役之其爲冤抑孰甚不但此也諸王子駙馬多受魚箭其奴子多般作弊往來漁船侵暴恐嚇是以沿海漁夫等不得安接散之四方弊甚不貲故癸丑年臺諫啓請禁戰而弊尙尤甚至爲可慮以山梁言之渡迷月溪皆地名之上乃畿民刈柴之場三田渡津名越邊鄭今院坪地名乃 祖宗朝閱武之地居民刈草以備牛馬之食而自兩宗復設之後奉恩寺自稱受賜植其禁標使民不得出入且江原道有二寺其前有川梁自前居民捉魚以食而今則僧人以爲齋宮不遠亦立禁標使不得漁自古豈有僧人禁獵之時乎至爲寒心如此作弊之事愚下之民不知中間操弄而恐或以爲自上命之也雖事若細微而妨政害治莫甚於此也領經筵事李浚慶曰海澤堤堰之弊自古通患而比來尤甚臺諫若有所聞則當舉劾可也我朝黃喜賢相也而以堤堰事被論久罷當時雖宰相一有所失論劾如是故事修舉近來朝綱不振故弊日滋甚將不可救尤當彈論而警勅者也魚箭之弊亦近來甚焉漁人不得安接深入海島而今則如清洪道楮島扶安地蜆島等處亦皆受賜多般作弊加之兵水使侵暴是以漁夫等無所資生離散四方至爲可慮臣意諸王子駙馬受賜魚箭雖不可一時盡還如深遠之處命還屬公使漁人安接爲當矣柴場事臣父母墳在楊根地故往來之際親自目觀小有平地諸王子率皆占受僧人亦皆植標民無立錫之地所見寒心如此等弊亦令察而禁斷爲當矣 上曰時弊民冤啓意皆當魚箭事前以臺諫所啓使之禁戰而弊尙如是可謂未便柴場事亦啓意當矣大抵如此之事爲耳目之官者所當舉而論劾也 《明宗實錄 卷第25, 12面》

명종 14년 2월 17일(기미)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요사이 경연에서 지평(持平) 류승선(柳承善)의 계사(啓辭)를 듣건대, 해변(海邊)의 이생지에 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폐단을 논한 말은 과연 지당하다. 법사(法司)는 들은 대로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라. 제군(諸君)에게 하사한 어전(魚箭)은 지난 계축년에 대간의 주청에 따라, 선왕조에서 사급(賜給)한 곳 이외에는 다 속공시켰는데, 전번에 호조의 공사(公事)를 보니 호조가 세 군데를 잘못 지급했기에 이미 속공시키라고 명하였다. 봉은사 시장(柴場)은

양종(兩宗)이 다시 세워진 뒤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능침사(陵寢寺)가 건립된 이래 있었던 것이다. 내수사를 시켜 이를 적간해 보건대, 주민이 절의 시장을 점유하고는 도리어 양종이 설치된 뒤에 주민의 것을 탈취했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헛소문이다. 정금원평은 본시 공지(公地)이다. 중들이 어찌 주민이 나무라는 것을 금할 리가 있겠는가. 이 또한 헛소문이다. 강원도 어느 절에서 주민의 고기잡이를 금한다는 일은 내가 모르는 바이다. 이 같은 일들은 가까운 시일에 의당 조사해야 할 일이므로 언급하는 바이니, 정원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라.”

○지평 류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전날 경연에서 산량 천택에 대해 아뢰었는데, 삼가 전교를 보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봉은사 시장은, 신의 처(妻)의 고향이 곧 원주(原州) 땅이어서 신이 유생일 때부터 양근(陽根)·월계(月溪)를 거쳐 오고갈 때마다 매번 길가에 긴 푯말을 세우고 거기에 ‘봉은사 시장(奉恩寺柴場)’이라고 써둔 것을 보아 왔는데, 갑인년에 신이 강원도 도사가 되어 왕래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고기잡이를 금하는 것은, 강릉부(江陵府) 서쪽에 오대산(五臺山)이 있고 산 아래에 내(川)가 있는데, 신이 그 도의 도사로 있을 때 마침 구황의 명을 받고 편복 차림으로 순행하다가 우연히 해가 저물어 월정사에 투숙하였더니, 절 아래 긴 푯말 위에 ‘금렵(禁獵)’이라 쓰여 있기에 신이 이상히 여기고 물어 보니, 야로(野老)들이 ‘이 내는 근처 주민이 이전부터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중들이 절 안에 비린내가 풍길까 염려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본 사실입니다. 정금원평 초장(草場)은, 삼천도 주민 두서너 명이 와서 말하기를 ‘봉은사가 정사년 이래 해마다 풀을 베어 오면서 그곳 주민에게는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말이 산량 천택에 미쳐 우연히 계달하였는데, 지금 정원에 내린 전교를 받들고 다시 생각해 보니, 직접 본 일이 5~6년 전이었고 직접 들은 말은 눈으로 본 일이 아닙니다. 또 시장은 능침사가 건립된 이래 있었던 것인데, 양종이 다시 설치된 뒤에 범연히 주달하여, 일이 전과된 헛소문을 듣고 아뢰는 것처럼 되어 상의 전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그대로 언관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허탄한 일을 규찰할 수 없습니다. 속히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간이 일에 대해 보고 들은 바로써 아뢰면, 나는 의당 시비를 자세히 살핀다. 지금 능침사의 시장이 양종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생겼다고 범연히 아뢰기에, 내가 그 오래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강원도의 사승(寺

僧)이 금렵하는 것은 내가 그곳을 알지 못하다가 지금 알았는데, 이것도 예부터 금렵해 오던 것을 주민들이 신설된 것으로 여긴 것일 것이다. 정금원평의 풀베는 일은, 사노(寺奴)를 추문하니, 누구나 다 풀을 벨 수 있는 곳인데 어느 누가 공지(公地)를 금하겠느냐고 하였다. 이는 다 헛소문에 불과한 일이다. 다만 이 뜻을 정원에 알렸을 뿐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己未傳于政院曰予於近日經席之上聞持平柳承善啓辭海澤泥生之地則予未知之事而論弊則果當法司隨所聞詳覈可也諸君家魚箭則癸丑年因臺諫所啓先王朝賜給處外他餘占受之地則盡使屬公而頃者見戶曹公事則戶曹任意誤給三處故已令屬公矣奉恩寺柴場則非設於兩宗復立後也自立陵寢寺以來例有之令內需司摘奸則居民侵占寺之柴場反以爲兩宗復立後奪民刈柴之地云此必虛事傳播而鄭今院坪則乃公地寺僧豈有禁民刈柴之理乎此亦虛傳之語也江原道有寺禁獵則非予所知之事也此等條件近當察之之事故言之政院知悉○持平柳承善啓曰臣於前日入侍經席以山梁川澤事啓達而伏覲傳教之辭不勝惶恐奉恩寺柴場則臣之妻鄉乃原州之地臣自爲儒生往來時道由楊根月溪之邊每見長柱立于道上書曰奉恩寺柴場而甲寅年臣爲江原道都事往來時亦如之禁獵則江陵府西有五臺山山下有川臣爲其道都事時適承救荒之命以便服巡行偶因日暮投宿于月精寺寺下有長柱書曰禁獵臣恠而問之野老皆言此川近地居人等自前網魚以食而寺僧恐其寺中有腥膻之氣禁之云此則臣乃目覩之事鄭今院坪草場則三田渡居民數三來言奉恩寺自丁巳年以來年年刈草而其處居人不得下手云此則臣乃親聞矣語及山梁川澤偶然啓達而今承下政院之教更思之則目覩之事皆在於五六年前親聞之言亦非目覩之事而且柴場自立陵寢寺以來例有之而以兩宗復立後泛然啓之似出於傳播虛言致有自上傳教仍在言地不可糾人誕誣之事請速命適臣職答曰臺諫凡事以聞見啓之則予當察其是非而陵寢寺柴場以爲兩宗復立後始設泛然啓之故使知久遠之意而言之矣江原道寺僧禁獵則予未知某處而今始知之此乃自古禁獵而居民必以爲新設也鄭今院坪郊草事推問寺奴則衆人共刈處誰禁公地乎此是傳播之事只諭此意於政院而已勿辭

《明宗實錄 卷第25, 13面》

명종 14년 4월 18일(기미)

헌부가 아뢰기를,

“거동할 때에 임금의 수레를 따르는 인원은 태묘(太廟) 앞길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장령 성의국(成義國), -비루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 아우 응국(應國)이 용강현령(龍岡縣令)이 되었을 때 바다에 독을 썰게 하여 나누어 가졌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고 침을 뱉었다. -지평(持平) 류승선(柳承善)·송하(宋賀)는 인의(引義)의 말을 잘못 듣고, 거짓으로 전례를 끌어대어 말을 탄 채 지나갔습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하나, 이미 예를 범한 잘못이 있으니, 그대로 법관(法官)의 직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己未憲府啓曰 行幸時隨駕人員至 太廟前路皆當下馬而掌令成義國麤鄙貪汚其第應國爲龍岡縣令時使築海堰而分之人皆唾鄙持平柳承善宋賀誤聽引儀誣援前例騎馬而過雖曰無情既有犯禮之失不可因在法官之職請遶答曰如啓
《明宗實錄 卷第25, 30面》

명종 14년 4월 23일(갑자)

안사웅(安士雄)을 사헌부 집의로, 이지신(李之信)을 홍문관 전한으로, 류종선(柳從善)을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류승선(柳承善)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성의국(成義國)을 수찬으로, 윤인함(尹仁涵)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벼슬은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온량(溫良)·방정(方正)·독실(篤實)한 선비인 뒤에야 시정(時政)을 규찰(糾察)하고 임금의 덕을 보성(輔成)할 수 있다. 지금 비루한 의국과 용렬한 지신을 논사(論思)·풍헌(風憲)의 직책에 두었으니, 명기(名器)를 욕되게 한 것이 심하다.

甲子以安士雄爲司憲府執義李之信爲弘文館典翰柳從善爲世子侍講院文學柳承善爲弘文館副校理成義國爲修撰尹仁涵爲正字

史臣曰臺諫侍從之官不可不擇必須溫良方正篤實之士然後可以糾察時政輔成君德今以義國之麤鄙之信之庸劣置之於論思風憲之地其辱名器甚矣
《明宗實錄 卷第25, 32面》

명종 14년 5월 27일(무술)

대제학 홍섭(洪漚) - 성품이 명백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밀(詳密)하였다. 그러나 조금 편협한 병통이 있었다. -에게 전교하기를,

“용렬한 내가 외람되게 큰 왕업을 이어받았는데, 본디 지식이 없고 또 학문의 공이 모자라 시가(詩家)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글줄이나 볼 뿐이다. 평소의 출제는 오로지 문형(文衡)에게 맡겨야 되는 것인데, 다만 옛부터 혹 글제를 명한 일이 있어 지금 완전히 폐할 수가 없겠기에 당치 않은 일을 헤아리지도 않고 감히 자주 출제 하여 전부터 여러 번 남들의 의논을 불러 일으켰으니, 내 마음에도 미안한 점이 있다. 지난번 ‘은대에 쇠한 노인을 쓰지 말라’는 글제는 진실로 잘못 생각하고 망령되이 낸 것이니, 공론이 일어난 것은 바로 임금을 바꾸는 도리에 맞는다. 내가 어찌 즐겁게 듣지 않겠는가. 내가 옥당의 제술을 보니, 과차(科次)의 고하가 모두 문의(文意)에 맞았다. 나처럼 시가를 모르는 임금이야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제술은 문아(文雅)를 권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

나라 또한 신하된 자의 글에서 충후(忠厚)·사정(邪正)과 신밀(愼密)·경박(輕薄)한 뜻을 보기 위한 것이다.

15명이 지은 것 중에서 류승선(柳承善)의, 나이 따라 근력이 감하는 게 걱정스럽지 소리개 어깨만 좋아하고 늙은 사람 싫어함은 아니네	直憂筋力隨年減 非喜鳶肩厭舊人
와 박근원(朴謹元)의, 책임이 무거우니 사람을 잘 가려야지	任重端宣務得人
와 장사중(張士重)의, 예부터 출납은 중한 임무라 어찌 명기를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주랴	出納從來爲任重 那將名器付非人
와 이양원(李陽元)의, 재주 없는 사람을 가볍게 주의하지 말라	莫把非才輕注擬
와 이희검(李希儉)의, 어렵고 신중한 건 후설의 자리가 제일이다 등의 잇구가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제목에 맞는 듯하다. 최옹(崔顛)의 나이와 덕이 모두 높은데 버릴수 있나	難慎最先喉舌地 年德俱尊那可捨
와 이지신(李之信)의, 임금에게는 포용하는 덕이 최고이네	包容德最係君人
와 이중량(李仲樑)의, 좋은 시대에 어찌 이 사람을 버릴까	盛際寧聞棄此人
와 윤인서(尹仁恕)의, 밝으신 임금 어찌하여 노성인을 버릴까	聖明那棄老成人
와 류순선(柳順善)의, 성군은 노성인을 박대하지 않으리 등의 잇구는, 내 생각에는 온당치 않은 듯하다.	聖君非薄老成人

예부터 노성인이라 이르는 이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며 노숙하여 인망이 무거운 공경(公卿)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떻게 한 쇠한 늙은이에게 합당하겠는가. 이는 곧 쇠한 늙은이를 감싸주며 글제를 기롱하는 뜻이다. 또 나를 성명(聖明)이라느니 성군(聖君)이라느니 한 데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부끄럽다. 성스럽고 밝은 임금은 옛날에도 역시 드물었는데 더욱이 말세(末世)이겠는가. 나 같은 임금은 허물이 매우 많아서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불렀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렸다. 생각해 보건대, 후세에서 나를 어떤 임금이라 할지 모르겠다. 역시 중간 정도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 같은 임금을 가

지고 감히 성스럽고 밝다 일컬으니, 부끄러움이 적지 않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밝은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인물을 통쾌히 진퇴시켰을 것이다. 어찌 꼭 일곱 글자 사이에 약간 비쳤겠는가. 나의 밝지 못함은 경도 잘 알 것이다. 이 뜻을 경연에서 경을 보고 자세히 하유하려 하였는데, 바야흐로 성하(盛夏)이기 때문에 시사(視事)를 정지한 때라서 오늘 바로 하유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진정을 통하여 숨기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또한 임금은 우대하고 신하는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의 뜻을 알라.”

하였다.

戊戌傳于大提學洪暹性明白簡切處事亦詳密然頗有偏狹之病曰予以庸暗叨承丕緒素無知識又乏學問之功詩家則專不得解只見墨行而已常時出題所當專付文衡之任而但自古或有命題今不可頓廢故不量不當之事乃敢頻數出題自前累招人議予心尚有未安頃者銀臺勿用老殘人之題則實是錯料妄出而發於公論正合格君之道予豈不樂聞哉予觀玉堂製述科次高下俱合於文意如予不解詩家之君則有何言哉然凡製述非特欲爲勸獎文雅亦欲觀人臣造詞忠厚邪正慎密輕薄之意也十五人所製之中柳承善之直憂筋力隨年減非喜鳶肩厭舊人朴謹元之任重端宜務得人張士重之出納從來爲任重那將名器付非人李陽元之莫把非才輕注擬李希儉之難慎最先喉舌地等句予之愚見則似合於題崔顥之年德俱尊那可捨李之信之包容德最係君人李仲樑之盛際寧聞棄此人尹仁恕之聖明那棄老成人柳順善之聖君非薄老成人等句則予意恐未穩當自古老成人云者指年高德劭者舊望重公卿之臣也豈合於一老殘之人乎此乃曲護老殘譏侮命題之意也且稱予聖明或稱聖君予實愧焉聖明之君在古亦罕况於末世如予之君則疵累頗多上致天怒下拂人情予竊每念未知後世比予何如主而亦豈不知尚不及於中主乎將如此之君敢稱聖明羞惡不淺予少有明斷則當痛快進退人物何必微露於七字間乎予之不明卿亦想矣此意欲於經席見卿詳諭而方當盛夏停視事之時故今日卽諭也君臣之間莫如通情不諱而亦莫如君優待而臣敬畏也予意知悉

《明宗實錄 卷第25, 41面》

명종 14년 6월 10일(경술)

송기수(宋麒壽)를 예조 참판으로, 이몽량(李夢亮)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문형(李文馨)을 집의로, 노진(盧禎)을 의정부 사인으로, 고맹영(高孟英)과 류승선(柳承善)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황삼성(黃三省)과 유홍(兪泓)을 지평으로, 성의국(成義國)을 홍문관 교리로, 정윤희(丁胤禧)를 수찬으로, 김억령(金億齡)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庚戌以宋麒壽爲禮曹叅判李夢亮爲司憲府大司憲李文馨爲執義盧禎爲議政府舍人高孟英柳承善爲司憲府掌令黃三省兪泓爲持平成義國爲弘文館校理丁胤禧爲修撰金億齡爲司諫院正言

《明宗實錄 卷第25, 45面》

명종 14년 10월 4일(신축)

오상(吳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고맹영(高孟英)을 사간원 사간으로, 권신(權信)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중호(李仲虎)²⁰⁷를 사간원 정언으로, -모두 특명에 의한 것이다. -이몽량(李夢亮)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몽필(李夢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허엽(許曄)을 사헌부 집의로, 류승선(柳承善)과 임여(任呂)를 장령(掌令)으로, 성세녕(成世寧)을 지평으로, 황삼성(黃三省)을 사간원 헌납으로, 류창문(柳昌門)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송하(宋賀)를 문학으로 삼았다.

辛丑以吳祥爲司憲府大司憲高孟英爲司諫院司諫權信爲司憲府持平李仲虎爲司諫院正言皆特命也李夢亮爲承政院都承旨李夢弼爲司諫院大司諫許曄爲司憲府執義柳承善任呂爲掌令成世寧爲持平黃三省爲司諫院獻納柳昌門爲世子侍講院弼善宋賀爲文學

《明宗實錄 卷第25, 75面》

명종 15년 4월 13일(무신)

○류승선(柳承善)을 세자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으로, 안함(安喆) - 을사년 사람의 화에 함이 함경도로 귀양갔다가 양자(養子)가 윤원형(尹元衡) 첩의 딸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방환(放還)되었는데, 바로 직첩을 주니 아는 자들은 비루하게 여겼다. - 을 형조 정랑으로 삼았다.

戊申○以柳承善爲世子侍講院弼善安喆乙巳士林之禍喆被謫咸鏡道以養子取尹元衡娶女既得放還旋授職牒識者鄙之爲刑曹正郎

《明宗實錄 卷第26, 19面》

명종 16년 9월 3일(경인)

이문형(李文馨)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정대년(鄭大年)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신여중(申汝棕)과 박계현(朴啓賢) - 거칠고 정직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 조심하는 것이 없었다. - 을 오위장으로, 김덕룡(金德龍) - 사람됨이 검소하고 굳세고 강한 듯하나, 시속(時俗)에 오염되어 남에게 끌려다니는 구차스러운 잘못이 없지 않았다. - 을 부호군(副護軍)으로, 류승선(柳承善) - 아부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며, 거칠고 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 을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이양원(李陽元)을 이조 정랑으로, 고경명(高敬命)을 홍문관 수찬으로, 윤두수(尹斗壽)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庚寅以李文馨爲五衛將鄭大年爲上護軍申汝棕朴啓賢□疎不正荒酒無儉爲五衛將金德龍爲人儉素且似倔強然汚於時習不無牽人苟且之失爲副護軍柳承善奔附爲事麤鄙不正之人也爲海州牧使李陽元爲吏曹正郎高敬命爲弘文館修撰尹斗壽爲副修撰

《明宗實錄 卷第27, 51面》

207) 이중호(李仲虎) : 1512~1554. 조선 명종 때의 학자. 자는 풍후(風后). 호는 이소재(履素齋). 시호는 문경(文敬). 본관은 전주 류우(柳藕)의 문인. 동몽훈도, 사과(司果), 사간원 정언을 지냈고,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고 특히 시문에 뛰어났다. 저서에 심성도설, 성리명감, 자경시문이 있다.

연려실기술 제10권 71면

붙임 기유(己酉)년 이홍윤(李洪胤)의 옥사(獄事)

○류정(柳貞)은, 자는 복원(復元)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중종 기묘년에 현량과에 추천 받아 등용되었다가 파과(罷科)되자 강음현감(江陰縣監)이 되었다. 얼마 후 벼슬을 버리고 충주 금천리(今遷里)에 가서 살았는데, 대관(臺官)이, “나식(羅滉)과 비밀히 결탁하였다”고 아뢰어 파직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홍윤의 사건에 연루되어 곤장을 맞고 죽었다. 아들 승선(承善)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유분록

○柳貞字復元晉州人 中宗己卯薦科罷科後除江陰縣監未幾棄官寓居忠州金遷里臺啓陸結羅湜請罷至是辭連洪胤獄杖殞子承善文科通政幽憤錄 《卷之10, 555面》

연려실기술 별집 제6권 498면

승정원(承政院)

○명종조 때, 승지 경혼(慶渾)이 나이가 꽤 많아서 잊어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임금 이 은대(銀臺)에 늙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글 제목을 하여 유신(儒臣) 등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올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혼(渾)을 지목한 일이었다. 승지 류승선(柳承善)의 시(詩) 끝귀에 말하기를, 『다만 근력이 해마다 감손함을 붙잡히 여김이요, 소리개 어깨 관상법에 소리개 어깨는 젊어서 현달(顯達)한다 함. 를 좋아하고 옛 사람 늙은 사람을 싫어함은 아니다.』〔只憐筋力隨年減非喜鳶肩厭舊人〕 하였던 바 임금이 기뻐하여 상을 주고 특히 경혼(慶渾)을 가선(嘉善)으로 승진시켰다. 지봉유설

○明廟朝承旨慶渾年紀頗衰有所遺忘 上以銀臺不用老殘人爲題令儒臣等製進蓋指渾也 承旨柳承善詩結句曰只憐筋力隨年減非喜鳶肩厭舊人 上喜而賞之特陞慶渾嘉善芝峰類說 《別集 卷之6, 742面》

대동야승 제10권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류정 전(柳貞傳)

생원 류정은 신사생이고 자는 복원(復元)인데 진주가 본관이고 서울에서 살았다. 병절(秉節) 자공(自恭)의 아들이다.

보유 : 병자년에 생원이 되었다. 천목에는 식도(識度)가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오른 뒤에 관직에는 제수되지 못하고 승문원(承文院)에 분차(分差)되었다. 을사년에 천과가 회복된 뒤에 전적(典籍)으로 보임되었고, 천과가 파방된 뒤에는 강음현감(江陰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충주(忠州) 금천리(金遷里)에 우거하였다. 기유년에 북촌 옥사(北村獄辭)에 연루되어서 형장을 맞다

가 운명하였다. 아들 승선(承善: 문과에 합격하여 통정까지 하였다.) 손자 충신(忠信)·충각(忠愨)·충당(忠愨)이 있다.

柳貞傳

生員柳貞辛巳生.字復元.晉州人.居于京.秉節自恭之子.

補.丙子生員.薦目.有識度.登科後未得授官.分差承文院.乙巳復科.補典籍.罷科後除江陰縣監.未幾棄官寓居忠州之金遷里.己酉連延北村獄辭.杖殞.子承善中文科至通政孫忠信忠愨.

《國譯本 151面, 原本 39面》

대동야승 제13권 견한잡록(遣閑雜錄)

나의 동년(同年: 과거에서의 동기를 말함)인 계묘년 사마방(司馬榜) 중에는 급제한 자가 61명이며, 음직(蔭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받는 관직)자가 31명인데, 강사상(姜士尙)과 수경은 의정이 되고 심강(沈綱)은 영돈녕(領敦寧)이며 박계현(朴啓賢)·황림(黃琳)·이림(李琳)·윤의중(尹毅中)은 관서요, 이감(李戡)·이중경(李重慶)·김덕룡(金德龍)·심전(沈銓)·손식(孫軾)·황응규(黃應奎)는 가선(嘉善)이며, 윤주(尹澍)·정척(鄭惕)·홍천민(洪天民)·조징(趙澄)·류승선(柳承善)·김언침(金彦沈)·신희남(愼喜男)·권벽(權擘)·류종선(柳從善)·장사중(張士重)·조부(趙溥)·김백균(金百鈞)·이억상(李億祥)·권순(權純)·임여(任呂)·이집(李楫)은 통정이 되었다. 70이 넘는 이를 말하면, 외방에 있는 자는 상세히 알지 못하나 서울에 있는 이는 이봉수·이집이 83세요. 엄서(嚴曙)가 82세 정척이 80세, 류성남(柳成男)과 이권충(李勸忠)이 75세 황린(黃璘)과 신희남이 75세 권벽은 74세 조부·허현·박홍(朴泓)은 73세, 심호(沈鎬)·권순도 73세이며, 김언침·이감(李鑑)·이인(李遴)은 71세 심전·김진(金鎭)이 70세인데, 모두 작고하였고 심수경은 82세며 황응규는 80세요. 장사중은 74세로 모두 아직 무병하였다. 2백 명의 동방(同榜)이 급제한 지도 55년이 된지라 3명만이 생존해 있으니 서글플 뿐이다. 장사중은 정유년 여름에 황응규는 무술년 가을에 작고했다.

吾同年癸卯司馬榜中.及第者六十一人.蔭職者三十一人.姜士尙及守慶議政.沈綱領敦寧.朴啓賢黃琳李琳尹毅中判書.李戡李重慶金德龍沈銓孫軾黃應奎嘉善.尹澍鄭惕洪天民趙澄柳承善金彦沈愼喜男權擘柳從善張士重趙溥金百鈞李億祥權純任呂李楫通政.而年過七十者.在外則未能詳知.在京則李鳳壽李楫八十三.嚴曙八十二.鄭惕八十.柳成男李勸忠七十七.黃璘愼喜男七十五.權擘七十四.趙溥許鉉朴泓七十三.沈鎬權純七十三.金彦沈李鑑李遴七十一.沈銓金鎭七十.並作古.而守慶八十二.黃應奎八十.張士重七十四.並尚無恙.二百人同榜.五十五年而三人生存.嗚呼愴哉.士重丁酉夏應奎戊戌秋作古

《國譯本 540面, 原本 130面》

우암유집 권삼(寓庵遺集 卷三)

《韓國文集叢刊 33卷, 寓庵遺集 345 A》

진산군 9세(大丞公 18세) 첨사공(僉使公) 류승손(柳承孫)

공의 자 호나 생졸년 기록이 전해오지 않고 있다.

내금위(內禁衛)를 거쳐 절충장군에 올라 평안도 우후(平安道虞侯)를 역임하고 제포첨절제사(濟浦僉節制使)를 역임하였다.

족보 기록에 의하면 공은 덕수장씨(德水張氏)와 혼인하여 청양군(靑陽君) 계종(繼宗)을 두었다.

공의 父, 祖, 曾祖 등에 대한 기록은 서로 다른 기록이 있어 확정된 기록을 하기가 혼란스러워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다음 기회에 상술하기로 한다.

성종 20년 9월 25일(경진)

○내금위(內禁衛) 류승손(柳承孫)이 와서 고변(告變)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은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한건(韓健)만이 오직 입시(入侍)하였다. 류승손(柳承孫)이 아뢰기를,

“신의 숙모(叔母) 집 계집종[婢] 성금(性今)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내가 사람들에게 듣건대, 이번 강무(講武)에 반드시 이시애(李施愛)와 같이 난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삼가고 조심해서 수가(隨駕)함이 가(可)하다.’고 하므로, 신이 듣고 놀라서 두려워서, 다 들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였다. 곧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권요(權僚)를 보내어 양주(楊州)에 달려가 성금(性今)과 그 남편 장춘(張春)을 잡아 왔다.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이극균(李克均)과 도승지 한건·상전(尙傳) 김자원(金子猿)이 입시(入侍)하고, 사관(史官)은 또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봉교(奉敎) 권경유(權景裕) 등이 아뢰기를,

“사관(史官)은 직책이 기사(記事)를 맡고 있는데, 사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의 일을 누가 기록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아서는 아니될 일이므로 오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뒤에

마땅히 이를 기록하라.”

하였다. 이극균에게 명하여 성금에게 물으니, 성금이 말하기를,

“강무(講武)할 때 영안도(永安道)에서 군사를 모은다는 일을, 제가 남편인 장춘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장춘에게 물으니, 장춘이 말하기를,

“중[僧] 성수(性脩)가 저의 집에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영안도 백성들이 놀라서 어지럽게 도망하여 숨었다.’고 하므로, 제가 이를 처인 성금에게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곧 권요를 보내어 성수를 잡아 오니, 밤이 이미 2경[鼓]이었다. 임금이 또 승문당에 나아가 이를 물으니, 성수가 말하기를,

“영안도의 여러 고을에서 각기 병갑(兵甲)을 갖추므로, 인심(人心)이 놀라 어지럽다는 말을 신이 사노(私奴)인 금이(金伊)에게서 들었고, 금이 이를 영흥(永興)에 사는 윤자(尹慈)의 종[奴] 중남(仲南)과 중산(仲山)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성금 등을 옥(獄)에 가두게 하고, 경력(經歷) 권관(權寬)을 보내어 중남과 중산을 잡아 오게 하였다.

○庚辰○內禁衛柳承孫來告變 上御宣政殿引見注書史官皆不許入都承旨韓健獨入侍承孫啓曰臣叔母家婢性今到臣家言曰近日吾聞之於人今講武必有如李施愛作亂之事謹慎隨駕可也臣聞之驚惶未暇悉聞耳即遣義禁府經歷權僚馳往楊州拿性今及其夫張春而來 上御崇文堂義禁府知事李克均都承旨韓健尚傳金子猿入侍史官亦不入奉教權景裕等啓曰史官職掌記事史官不入則今日之事誰當記之 傳曰爾等所不知之事故今不許入後當記之矣命克均問性今性今曰講武時永安道聚軍之事婢聞之於夫張春問張春張春曰僧性脩到奴家語奴曰今年永安道人民驚亂逃遁矣奴以此言於妻性今耳即遣權僚拿性脩來夜已二鼓 上又御崇文堂問之性脩曰永安道諸邑各備兵甲人心驚亂之語臣聞之於私奴金伊金伊聞之於永興居尹慈奴仲南仲山矣 命下性今等于獄遣卿歷權寬拿仲南仲山來

《成宗實錄 卷第233, 10面》

성종 20년 10월 18일(임인)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금위(內禁衛) 류승손(柳承孫)이 아뢰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봉(李封)이 모반(謀叛)하였다는 일은 비록 뜯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파된 지 이미 오래 되어서 다른 도에까지 들리게 되었으나 하나도 와서 아뢰는 사람이 없었는데, 류승손이 호로 말하였으니 내가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겨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올리겠다.” 하였다.

○壬寅○傳旨兵曹內禁衛柳承孫所啓永安道觀察使李封謀叛之事雖是浮言然喧傳已久至聞他道一無來啓者而承孫獨言之予甚嘉悅特加一資
 《成宗實錄 卷第233, 11面》

성종 31년 2월 5일(정해)

○류순(柳洵)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권건(權健)을 가선 대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한한(韓僞)을 가선 대부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윤민(尹愨)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안호(安瑚)를 통정 대부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성세명(成世明)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조형문(趙亨門)을 봉정 대부(奉正大夫) 장령(掌令)으로, 정광세(鄭光世)를 봉렬 대부 장령으로, 서팽소(徐彭召)를 통덕랑(通德郎) 지평(持平)으로, 이중현(李仲賢)을 봉직랑(奉直郎) 지평으로, 최인(崔潁)을 봉훈랑(奉訓郎)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류정수(柳廷秀)를 선무랑(宣務郎) 정언(正言)으로, 심인(沈潁)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신부(申溥)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류승손(柳承孫)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행평안도 우후(行平安道虞侯)로 삼았다. 사헌부는 사수(死囚) 김세흥(金世興)이 도망하여 추국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체임시킨 것이다.

○丁亥○以柳洵爲嘉善司憲府大司憲權健嘉善兵曹參判韓僞嘉姜漢城府左尹尹愨通政兵曹參議安瑚通政兵曹參知成世明奉列司憲府執義趙亨門奉正掌令鄭光世奉列掌令徐彭召通德持平李仲賢奉直持平崔潁奉訓司諫院獻納柳廷秀宣務正言沈潁折衝僉知中樞府事申溥通政驪州牧使柳承孫折衝行平安道虞侯司憲府以死囚金世興逃亡被推皆適

《成宗實錄 卷第237, 3面》

성종 22년 4월 1일(병오)

○평안도 우후(平安道虞侯) 류승손(柳承孫)·평사(評事) 최서(崔潁)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김주성가(金主成可)가 알린 바 피인(彼人)들이 군사를 요청하여 자피선(者皮船)을 타고 농민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는 말은 비록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즈음의 일로서 헤아려 보면 사실 헛된 말이 아니다. 강변에 적선(賊船)이 와서 정박할 만하다고 의심되는 곳에는 빨리 달려가 방어하는 모든 일에 엄히 조치를 더하게 하라.” 하였다.

○丙午○下書平安道侯虞柳承孫評事崔潁曰金主成可所告彼人等請兵乘者皮船殺擄農民之言雖未可的知以近日之事料之實非虛語江邊賊船到泊可疑處急速馳到防禦諸事嚴加措置

《成宗實錄 卷第252, 1面》

성종 22년 5월 25일(경자)

○평안도 절도사 오순(吳純)이 치계(馳啓)하기를,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 김윤제(金允濟)의 보고에 이달 17일에 온하위(溫下衛)의 야인(野人) 김목소(金木所)와 김임다가(金任多可) 등이 와서 말하기를,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 심일다(沈日多)가 와서 우리 위(衛)의 추장(酋長) 김유리합(金劉里哈)에게 고(告)하기를, 「좌위(左衛)의 고보을치(高甫乙赤)와 우위(右衛)의 동처이응거(童處伊應巨)와 동여은대무(童驢隱代茂) 등이 사방(四方)에서 군사를 청하여 기병(騎兵) 2백 명은 육로(陸路)로 오고 보병(步兵) 2백 명은 수로(水路)로 와서 자피선(者皮船)을 타고 이달 14일에 물을 향하여 내려오므로, 김유리합(金劉里哈)이 나로 하여금 절도사에게 고(告)하도록 한 까닭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서 왔다.」고 했습니다.」고 하므로, 신(臣)이 우후(虞侯) 류승손(柳承孫)을 보내어 방어(防禦)에 관한 여러가지 일을 점검(點檢)하여 살피게 했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도원수(都元帥) 이극균(李克均)에게 보이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오순(吳純)이 변고(變故)를 들었으면 진실로 마땅히 달려가서 변고에 대응(對應)해야만 할 것인데, 다만 우후(虞侯)만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庚子○平安道節度使吳純馳啓曰滿浦僉節制使金允濟報云本月十七日溫下衛野人金木所金任多可等來言建州衛野人沈日多來告于我衛酋長金劉里哈曰左衛高甫乙赤右衛童處伊應巨童驢隱代茂等請兵四方騎兵二百由陸路步兵二百由水路乘者皮船於本月十四日指向水下劉里哈令我告諸節度使故不分晝夜而來臣遣虞侯柳承孫檢察防禦諸事 命示都元帥李克均克均啓曰吳純聞變固當馳往應變只遣虞侯不可 《成宗實錄 卷第253, 35面》

성종 25년 10월 12일(정묘)

○권건(權健)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김극검(金克儉)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광세(鄭光世)를 중직 대부(中直大夫) 집의(執義)로, 조달생(趙達生)을 중훈 대부(中訓大夫) 장령(掌令)으로, 강백진(康伯珍)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장령(掌令)으로, 안윤덕(安潤德)을 승의랑(承議郎) 지평(持平)으로, 양하(梁賀)를 승의랑(承議郎) 지평(持平)으로, 황사효(黃事孝)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류승손(柳承孫)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행제포 첨절제사(行齊浦僉節制使)로 삼았다.

○丁卯○以權健爲嘉善戶曹參判金克儉嘉善司憲府大司憲鄭光世中直執義趙達生中訓掌令康伯珍朝散掌令安潤德承議持平梁賀承議持平黃事孝嘉善同知中樞府事柳承孫折衝行齊浦僉節制使 《成宗實錄 卷第295, 9面》

성종 25년 10월 28일(계미)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제포(薺浦)는 중요한 곳인데 근자에 또 풍기(風紀)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니, 첨사(僉使)는 마땅히 사람을 가려 보내어야 합니다. 이제 류승손(柳承孫)을 보건대, 거동(舉動)이 실조(失措 : 조치를 잘못함)하여 동서(東西)를 알지 못하고 또 내력(來歷)도 없으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류승손(柳承孫)은 일찍이 우후(虞侯)를 지냈으니, 용모(容貌)로써 사람을 뽑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을 병조(兵曹)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류승손(柳承孫)은 본시 내금위(內禁衛)로서 이봉(李封)의 일을 고발하여 당상(堂上)에 승진하였고, 뒤에 평안 우후(平安虞侯)가 되어서는 범죄(犯罪)를 치산(置散)하였으니, 내력(來歷)은 과연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포(薺浦)는 왜인(倭人)이 호시(互市)하는 곳이니, 모름지기 청렴(清廉)하고 간묵(簡默)한 자를 얻어서 지키도록 하여야 하는데, 류승손(柳承孫)이 청간(淸簡)하다는 말이 있는 까닭으로 의망(擬望)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류승손을 보건대, 거동(舉動)이 과연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동서(東西)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이르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대답하기를,

“류승손이 원(院 : 승정원(承政院))에 도착하여 서벽(西壁)을 뒷자리로 여겨 서쪽으로 향해서 앉았으며 또 그가 계달(啓達)한 일이 상하(上下)를 분변하지 못하였으니, 그 가운데 있는 바를 알 만합니다. 신 등은 왜인(倭人)을 대(待)하는데도 또한 이와 같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명하여 개차(改差)하게 하였다.

○癸未○承政院啓曰薺浦重地近又有干紀之事僉使當擇人遣之今觀柳承孫舉動失措不知東西且無來歷恐未堪任 傳曰柳承孫曾經虞侯不可以容貌取人其問于兵曹兵曹啓柳承孫本以內禁衛告李封事陞堂上後爲平安虞侯犯罪置散來歷果不多薺浦倭人互市之所須得淸簡者使守之而有言承孫淸簡者故擬望耳 傳于承政院曰予嘗觀承孫舉動果不中所謂不分東西者何事歟承旨等對曰承孫到院以西壁爲一向西而坐又其啓達之事不辨上下其中所存可知臣等恐待倭人亦如是也 命改差

《成宗實錄 卷第295, 19面》

진산군 10세(大丞公 19세) 충정공(忠定公) 류 빈(柳濱)

?~중종 4년(1509)

자는 자청(子淸)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증 좌찬성 류인습(柳仁濕)과 참봉 이효복(李孝福: 父 집의 李有善)의 따님인 합천이씨 사이에 태어났다.

성종 14년(1483)에 춘당대시 병과 4등으로 급제했다. 성종 21년 사간원 정언, 성종 25년 장령, 연산군 2년 집의, 연산군 4년 홍문관 부제학 등 언관직을 역임하며 직언을 했다. 5년 병조참지, 10년 형조참판, 12년에 유배지인 남원에서 격문을 돌리며 반정을 도모한 공으로 정국원종공신 1등에 오르고 공조참판에 이어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재임후 지중추부사에 오르고 경기도 관찰사 재임중 타계하였다. 졸기(卒記)에 공평 정대하다 하였으며 엄간공직(廉簡公直)하고 항상 거친 배로서 요를 만들어 쓸 만큼 청렴했다 하였다.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첫 배위는 현감 이인행(李仁行: 父 李根健)의 따님인 연안이씨(延安李氏)이며 둘째 배위는 윤해(尹垓)의 따님인 파평윤씨이다.

아들 용근(庸謹)은 대과에 급제하고 함경도 병마절도사, 승지 등을 지내고 기묘 사화에 피화되어 기묘명현록에 기록되었으며 사위는 전주인 이징(李澄), 고성인 이윤(李潤), 하양인(河陽人) 허지(許遲)이다.

成宗癸卯十四年春場榜三月二十九日行 表唐李泌請辭職還上表臯夔稷契讀何書論

甲科 三人

生員 李文佐(慶州人), 宣傳官 李績(龍仁人), 生員 金巔(義城人)

乙科 七人

進士 崔亨漢, 司猛 李世銓(廣州人), 生員 權守平(安東人), 務功 金瑗(義城人), 生員 權瑠(安東人), 訓導 吳凌(咸陽人), 生員 李自健(星州人)

丙科 二十三人

叅奉 洪湜(南陽人), 從仕 韓朐(清州人), 啓功 李藝(載寧人), 進士 柳濱(晉州人), 効力 柳廷秀(文化人), 生員 閔輔翼(驪興人), 展力 李懿孫, 効力 梁芝孫(南原人), 司猛 朴承燾(密陽人), 進士 尹璋(楊州人), 進士 朴增榮(密陽人), 進士 姜子魚(晉州人), 進士 鄭鐸(溫陽人), 生員 金延壽(安東人), 叅奉 許輯(陽川人), 進士 金石精(安東人), 修義 李孝篤(龍仁人), 秉節 柳珂(文化人), 忠義 金益鋼(安山人), 修義 河潤, 生員 高荊山(橫城人), 幼學 金秀英, 生員 安潤德(廣州人), 武壯 鄭洪孫(東萊人), 生壯幼學 姜渾(晉州人), 進壯幼學 李瑞(載寧人)

성종 20년 1월 21일(경진)

○박안부(朴安阜)를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 집의(行司憲府執義)로, 김전(金典)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수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류빈(柳濱)을 선교랑(宣敎郎) 정언(正言)으로, 왕종신(王宗信)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전라 우도 수군 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庚辰○以朴安阜爲通訓行司憲府執義金典奉列守司諫院司諫柳濱宣敎正言王宗信嘉善全羅右道水軍節度使
《成宗實錄 卷第224, 18面》

성종 20년 2월 1일(기축)

○육조(六曹), 한성부 당상관(漢城府堂上官), 대간(臺諫) 등을 부르도록 명하여 권덕영(權德榮)의 처(妻) 이씨(李氏)에게 사사(賜死)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허중(許琮)·성준(成俊)·류지(柳淸)·박건(朴健)·이경동(李瓊全)·김세적(金世績)·윤은로(尹殷老)·성숙(成叔)·권경(權旼)·이숙감(李淑臧)·임수창(林壽昌)·윤해(尹垓)는 의논하기를,

“이씨(李氏)가 그 종[奴] 천례(天禮)와 간통한 것을 비록 승복(承服)하지 아니 할 지라도 사증(辭證)이 명백하므로, 다시 국문할 필요가 없으니, 사약(死)을 내리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중략]

김전(金典)·박삼길(朴三吉)·조구(趙球)·류빈(柳濱)은 의논하기를,
“이씨의 일은 사증으로 보면 명백하고 의심이 없으나, 죄가 대벽(大辟)에 이르니 가볍게 처결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법에 의해 고신(拷訊)하여 복초(服招)를 기다린 뒤에 상복(詳覆)하여 죄를 정하여서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씨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己丑○命召六曹漢城府堂上臺諫等議權德榮妻李氏賜死事許琮成俊柳淸朴健李瓊全金世績尹殷老成叔權旼李淑臧林壽昌尹垓議李氏與其奴天禮奸雖不承服辭證明白不必更鞠賜死允當[中略]

金典朴三吉趙球柳濱議李氏之事以辭證觀之明白無疑然罪至大辟不可輕易處決臣等以謂依法拷訊待其服招然後詳覆定罪以正風俗何如 傳曰李氏下義禁府推鞠
《成宗實錄 卷第225, 1面》

성종 20년 2월 11일(기해)

○정언(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윤지(尹漬)가 일찍이 부장(部將)이 되었다가 위장(衛將) 최호원(崔灝元)과 상피(相避)가 됨으로써 갈렸는데, 특별히 동반(東班 : 문관(文官)의 반열(班列))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제 포천 현감(抱川縣監)에 제수[除拜]하였으니, 윤지는 부장이 되어 개만(箇滿)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 내력(來歷)이 없는데,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직(職)을 주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해조(該曹)에 묻겠다.”

하였다.

○己亥○正言柳濱來啓曰尹漬嘗爲部將以衛將崔灝元相避見遞特蒙送東之 命今拜抱川縣監漬爲部將未箇滿且無來歷而遽授臨民之職未便請改正 傳曰當問諸該曹

《成宗實錄 卷第225, 7面》

성종 20년 2월 21일(기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안팽명(安彭命)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법은 허물어 뜨릴 수 없는데, 이제 월산 대군(月山大君) 장지(葬地)의 영역(塋域)을 어찌 부인의 왕래에 편리하게 한다는 것을 핑계삼아 가볍게 제도를 지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언(正言)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조종(祖宗)의 법은 가볍게 변경시킬 수 없는데, 이제 대군의 장지가 도국(圖局)이 협소하다는 이유로써 조종의 법을 허물어 뜨리면, 장차 어떻게 백성의 국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시키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무지한 백성이 모두 국법을 범할 수 있다고 하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형세가 장차 조정은 도(道)를 믿지 아니하고 신하는 의(義)를 믿지 아니하여, 그 폐단은 장차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옳다. 다만 도국이 협소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이다. 옮겨야 할 옛 무덤에 대해서는 모두 관곽(棺槨)을 내려 주어서 구휼하도록 하라. 이제 공역(功役)이 이미 이루어졌고 장기(葬期)도 임박하였는데, 다시 다른 땅을 고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안팽명이 아뢰기를,

“묘주(墓主)가 있는 것은 마땅히 개장(改葬)할 것이나, 묘주가 없는 것은 반드시 버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 무덤을 모두 이미 옮겼는가 아니 옮겼는가? 내가 마땅히 대비께 아뢰겠다.” 하였다. 안평명과 류빈이 또 아뢰기를,

“손순효(孫舜孝)는 의정부(議政府)의 찬성[貳] 자리에 있으면서 배우(俳優)의 태도를 본받았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손순효는 임금의 하사한 것을 영광으로 삼아서 술이 취해 한 것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己酉 御經筵講訖掌令安彭命啓曰大典法不可毀也今月山大君葬地塋域豈可以夫人往來便易爲辭而輕以踰制乎正言柳濱啓曰 祖宗之法不可輕變今以大君葬地圖局狹小毀 祖宗之法將何以禁民之不從國法乎臣恐無知之民皆以爲邦憲可犯而無所不至勢將朝不信道工不信義其弊將不可勝矣 上曰此言是也但圖局狹小不得已也舊塚當遷者皆賜棺槨以恤之今功役已集葬期亦迫其可更卜他地乎彭命啓曰有墓主者當改葬之若無墓主則必棄之矣 上曰古塚皆已遷之乎否予當啓于 大妃彭命濱又啓曰舜孝以政府之貳效俳優之怨請治其罪 上曰舜孝榮君之賜乘醉所爲耳有何罪也 《成宗實錄 卷第225, 16面》

성종 20년 2월 26일(갑인)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명을 받들고 추국(推鞠)하는데 어찌 사사로움을 용납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송사하는 자의 말로써 당직청 당상(堂直廳堂上)을 자주 바꾸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송사(訟事)란 것은 혐의를 끼는 것이 보통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상례(常例)가 아니며 종친(宗親)이 있고 재상(宰相)이 있고 또 이창신(李昌臣)이 있는데, 이창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당상(堂上)이 이미 고발(告發)을 당하였는데 국문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바꾼 것이다.”

하였다. 류빈이 또 아뢰기를,

“당직청 당상이 사정을 쓴 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한 부인(婦人)의 근거없는 말로써 가볍게 바꾸면, 이는 대신을 위임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대신이 결망(缺望)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대신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또 내가 덕천 부인(德川夫人)의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다. 집장 나장(執杖羅將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하례(下

隸)이 혹은 한 사람이고 혹은 두 사람이니, 사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당상이 이미 인피(引避 : 물러나 회피함)하였으니, 다시 국문하게 할 수 없다.” 하였다.

○甲寅○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大臣承命推鞠豈有容私之理以訟者之言數易當直廳堂上何也傳曰訟者懷嫌常事也然此事非常例有宗親焉有宰相焉又有李昌臣昌臣非常人也其堂上既被告其可鞠問乎是以改之濱又啓曰當直廳堂上用情之狀未著而今以一婦人無稽之言輕改之此非委任大臣之意恐大臣缺望矣傳曰予豈不信大臣也且予非但以德川夫人之言也執杖羅將或一人或二人不無情也其堂上業已引避不可更令鞠問也

《成宗實錄 卷第225, 20面》

성종 21년 7월 21일(신미)

○이엄의(李念義)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여석(金礪石)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승질(朴崇質)을 가선 대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약동(李約束)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종호(李宗顥)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안팽명(安彭命)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권경우(權景祐)를 봉렬 대부(奉列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이에건(李禮堅)을 봉렬 대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홍형(洪澗)을 통덕랑(通德郎) 장령으로, 윤백돈(尹伯焯)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세영(李世永)을 승의랑(承議郎) 지평으로, 김계행(金係行)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류빈(柳濱)을 승의랑(承議郎)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선무랑(宣務郎) 정언으로, 김영유(金永濡)를 가정 대부 행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辛未○以李念義爲嘉靖同知敦寧府事金礪石嘉善戶曹參判朴崇質嘉善司憲府大司憲李約束資憲開城府留守李宗顥通政司諫院大司諫安彭命朝散司憲府執義權景祐奉列司諫院司諫李禮堅奉列司憲府掌令洪澗通德掌令尹伯焯通訓司憲府持平李世英承議持平金係行朝散司諫院獻納柳濱承議司諫院正言張順孫宣務正言金永濡嘉靖行僉知中樞府事

《成宗實錄 卷第242, 22面》

성종 21년 8월 6일(병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세영(李世英)·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남계응(南季膺)은 화순 현감(和順縣監)으로 개만(箇滿)하여 주부(主簿)가 되었는데 얼마 안되어 갑자기 승진하여 공조 정랑(工曹正郎)이 되었습니다. 남계응

은 십고 십상(十考十上)²⁰⁸을 받았으니, 으레 승직(陞職)함이 마땅하나, 그러나 종6품(從六品)으로는 정6품(正六品)과 종5품(從五品)을 역사(歷仕)하여야 하는데, 정5품(正五品)의 직(職)을 제수하였으니, 지극히 타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육조 낭관(六曹郎官)이겠습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그 직위(職位)를 고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이조(吏曹)에 묻겠다.” 하였다.

○丙戌○司憲府持平李世英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南季膺以和順縣監筭滿爲主簿未幾遽陞爲工曹正郎季膺十考十上例當陞職然以從六品歷正六品從五品授正五品之職至爲過當况六曹郎官不可不擇人請改其職 傳曰當問吏曹 《成宗實錄 卷第243, 3面》

성종 21년 8월 10일(경인)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세영(李世英) ·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남계응(南季膺)은 정랑으로 초수(超授)함은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명하여 남계응의 직(職)을 고치게 하였다.

○庚寅司憲府持平李世英司諫院正言柳濱等來啓曰南季膺超授正郎未便 命改季膺職

《成宗實錄 卷第243, 8面》

성종 21년 8월 13일(계사)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임사홍(任士洪)을 관압사(管押使)로 삼았으나, 임사홍은 소인(小人)이라 전대(專對)하는 임무를 맡길 수 없으니, 청컨대, 고치게 하소서.”

하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세영(李世英)이 와서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학문(學文)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요사이 성서(盛暑)로 인하여 주장(晝講) · 석강(夕講)을 정과(停罷)하였사오나 이제는 더위가 이미 물러갔으니 석강을 함이 어떠하며, 또 세자(世子)는 모름지기 자주 사우(師友)를 접하여야 하는데 지금 시강원(侍講院)에 직숙원(直宿員)이 없으니, 세자(世子)께서 만약 불시(不時)에 고문(顧問)할 일이 있으면 어찌 청문(聽聞)하겠습니까? 청컨대, 이제부터는 본원(本院)의 관원이 서로 교체하여 숙직(宿直)하게 하소서. 또 국가에 무릇 사명(使命)이 있으면 으레 모두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데, 임사홍은

208) 십고 십상(十考十上) : 벼슬아치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 경관(京官)은 각 청(廳)의 장관, 지방관(地方官)은 감사(監司)가 해마다 두 번씩 그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나눌 때, 동일한 직(職)에 있는 사람이 다섯 해 동안 늘 상급의 성적을 얻었을 때의 일컬음.

음험(陰險)한 소인(小人)이니, 중국(中國)에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또한 매우 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은 늘 사역원(司譯院)에 근무하며 한어(漢語)를 교훈(教訓)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으니, 반드시 스스로 질정(質正)한 뒤에야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까닭으로 보내는 것뿐이다. 이제 그대들이 논박하니, 북경(北京)에 나아감의 당부(當否)를 마땅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고 시강원 관원(侍講院官員)의 입직(入直)하는 일은 그 아뢰는 것대로 하되, 다만 세자(世子)는 문리(文理)를 때에 다 통하지 못하여 조강(朝講)에 읽은 바를 숙독(熟讀)하는 데 미치지 못하는 까닭으로 다시 석강(夕講)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 어떻게 하면 자주 사우(師友)를 접(接)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세영이 대답하기를,

“세자(世子)께서 하루에 3시(三時)를 서연(書筵)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당 시강원 관원(侍講院官員)으로 하여금 2, 3일 간격으로 세자(世子)와 강학(講學)하게 하라.”

하였다.

○癸巳○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今以任士洪爲管押使士洪小人不可付專對之任請改之司憲府持平李世英來啓曰世子學文已就頃因盛暑停晝夕講今則暑已退夕講何如且世子須屢接師友今侍講院無直宿員世子若有不時顧問事於何聽聞請自今本院員相遞直宿且國家凡有使命例皆擇遣任士洪陰險小人也使上國亦甚未便 傳曰士洪常任司譯院以漢語教訓爲任必親自質正而後可以訓人故遣之耳今爾等駁之赴京當否當議于領敦寧以上與政府侍講院官員入直事其依所啓但世子文理時未該通朝講所讀未及熟讀故不復夕講耳何以則屢接師友乎世英對曰世子若一日三時書筵則可矣 傳曰宜令侍講院官員間二三日與世子講學

《成宗實錄 卷第243, 8面》

성종 21년 8월 15일(을미)

조하(朝賀)를 받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홍문관(弘文館)에 완월연(翫月宴)을 내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뇌진(雷震)이 번고를 보이고 바야흐로 또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신 지가 달을 지나지 않았거늘, 온 조정이 연락(宴樂)하여 희롱하여 노는 일을 하면, 그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는 데에 어떻겠습니까

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다만 중추 절일(仲秋節日)을 만난 것뿐이다. 옛사람도 달을 구경한 일이 있었고, 또 진찬(進饌)을 대비전(大妃殿)에 갖추어야 하는 까닭으로 겸하여 재상(宰相)을 먹이려고 함이니, 내 어찌 이르지 않고서 하겠느냐? 또 한 번 재변(災變)이 있다 하여 끝내 연음(宴飲)하지 않게 되면 어느 때에 즐기겠느냐?”

하니, 류빈(柳濱)이 말하기를,

“뇌진(雷震)·산붕(山崩)·수한(水旱)의 재이(災異)는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습속(習俗)이 본래 유연(遊宴)을 숭상하는데, 이제 재상(宰相)과 시신(侍臣)에게 사악(賜樂:악(樂)을 내려 줌)하여 연락(宴樂)하게 하시면 제신(諸臣)이 이를 본받아 모두 황음(荒淫)하여 법도가 없을까 저어합니다. 절일(節日)이라고 하여서 먹이려 하면 궐내(闕內)에서 먹인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완월(翫月)은 반드시 밤에 하니, 야연(夜宴)을 궐내(闕內)에서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류빈이 말하기를,

“옛사람으로 뜻을 얻지 못한 자가 후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달을 구경하며 회포를 풀 적은 있었지만, 어찌 온 조정이 완월(翫月)하며 희롱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앞에서 궐내(闕內)에서 먹여도 해로움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완월(翫月)이 궐내(闕內)·궐외(闕外)가 어찌 다르겠느냐? 이제 마침 국가가 무사(無事)한 까닭으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한 번 즐기도록 하려는 것뿐이다. 옛날에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꽃을 구경하며 고기를 낚았으며 당시의 사람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제 이 하루의 즐거움 또한 무방(無妨)하지 않을까 한다.”

하였다.

○乙未 受朝賀○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今聞議政府六曹弘文館 賜宴翫月頃者雷震示變方且恐懼修省曾未閱月舉朝宴樂爲戲玩之事其於謹天戒何 傳曰爾言是也但值中秋節日耳古人有翫月之事且進饌具于 大妃殿故兼欲饋宰相予豈無謂而爲也且一有災變終不宴飲則何時而樂歟柳濱曰雷震山崩水旱之災所當恐懼修省我國習俗素尚遊宴今乃宰相侍臣賜樂宴樂恐諸臣效此舉皆荒淫無度矣以謂節日而欲饋之則於闕內饋之何妨 傳曰爾言是矣然翫月必于夜不可夜宴于闕內也柳濱曰古人不得志者或於良辰美景翫月遣懷則有之

豈可舉朝爲翫月之戲乎 傳曰爾前言於闕內饋之無妨翫月則闕內闕外何異焉今適國家無事故欲使宰相一歡耳昔宋仁宗賞花釣魚當時不以爲非今此一日之樂恐亦無妨

《成宗實錄 卷第243, 10面》

성종 21년 8월 16일(병신)

명하여 임사홍(任士洪)이 관압사(管押使)에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정언(正言)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소인(小人)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임용(任用)할 수 없거늘, 더구나 중국(中國)에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임사홍이 소인(小人)인 정상(情狀)은 성상께서 이미 아시고, 나라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으니, 이제 사명(使命)에 붙이심은 심히 불가합니다. 대저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반드시 양립(兩立)하지 못하니, 신은 소인이 임용되면 선인(善人)·군자(君子)가 장차 반드시 물러가 숨지 않을까 저어합니다. 그리고 뜻의논이 모두 임사홍을 보내도 무방(無妨)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 임사홍의 유(類)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에게 정권(政權)과 병권(兵權)을 주었다면 그대들의 의논이 마땅하지만, 이는 다만 압마(押馬)하는 것뿐이니, 보내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느냐? 임사홍이 한어(漢語)를 명습(明習)한 까닭으로 관압(管押)으로 인하여 가서 음운(音韻)을 질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임사홍을 보냄이 비록 왕실(王室)과 연혼하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政府)와 육조(六曹)도 모두 임사홍에게 붙좃아서 한가지로 무방하다고 하였겠는가?”

하였다. 류빈(柳濱)이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임사홍의 소인(小人)됨을 환히 알고 계셔서 여러 번 서용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리셨는데, 이제 다시 사명(使命)을 제수하시니, 비록 정권(政柄)과 병권(兵柄)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곧 임용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대체(大體)에 옳다. 그러나 이는 다만 압마(押馬)하는 것일 뿐,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어(漢語)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인 까닭으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丙申 命議任士洪管押使當否正言柳濱啓曰小人雖小事尚不可任況使上國乎士洪小人之情狀 上既知之國人亦皆知之今付之使命甚不可也大抵君子小人必不兩立臣恐小人見用則善人君子將必退藏矣羣議皆曰士洪遣之無妨云則是皆士洪之類也 傳曰授士洪以政

權兵權則爾等論之宜矣此但押馬耳遣之何害士洪明習漢語故因管押之行使質音韻耳予之遣士洪雖曰連姻王室而然政府六曹其皆依附士洪而共謂之無妨乎柳濱曰 聖上洞知士洪之爲小人而屢下勿用之教今復授使命雖非政柄兵柄乃是用之也 傳曰爾等之言於大體是矣然此但押馬而已非關於社稷漢語亦國之重事故不允 《成宗實錄 卷第243, 10面》

성종 21년 8월 17일(정유)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임사홍(任士洪)을 관압사(管押使)로 삼음은 불가한 일이라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丁酉司諫院正言柳濱來啓任士洪管押使不可事 不允 《成宗實錄 卷第243, 11面》

성종 21년 8월 18일(무술)

○장령(掌令) 이에건(李禮堅)·정언(正言) 류빈(柳濱)이 임사홍(任士洪)을 관압사(管押使)로 보낸은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戊戌 掌令李禮堅正言柳濱啓任士洪不宜差管押使不聽 《成宗實錄 卷第243, 12面》

성종 21년 8월 27일(정미)

○영돈녕(領敦寧) 이상(以上)과 정부(政府)·병조 당상(兵曹堂上), 변방 일을 아는 무신 재상(武臣宰相)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장래(將來)의 장수(將帥) 27인을 뽑아서 아뢰니,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제 장래(將來)의 장수(將帥)로 간택(揀擇)한 훈련원 부정(訓練院副正) 이영희(李永禧), 전(前) 부사(府使) 김수정(金守貞), 사직서 령(社稷署令) 권중신(權仲愼), 동관 첨사(潼關僉使) 조원장(趙元璋),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여승감(呂承堪), 경기 도사(京畿都事) 이세준(李世俊),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이줄(李茁), 충훈부 경력(忠勳府經歷) 윤탕로(尹湯老), 훈련원 첨정(訓練院僉正) 박원종(朴元宗), 선전관(宣傳官) 홍지(洪祉), 내자시 첨정(內資寺僉正) 하맹윤(河孟潤), 부장(部將) 김석철(金錫哲), 겸사복(兼司僕) 구전(具詮), 선전관(宣傳官) 허감(許臧), 내금위(內禁衛) 심형(沈亨), 이산 군수(理山郡守) 최인수(崔麟壽), 내금위(內禁衛) 류담년(柳聃年), 전(前) 현감(縣監) 이침(李琛),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김윤제(金允濟), 겸사복(兼司僕) 정은부(鄭殷富), 내금위(內禁衛) 이권(李菴)·채윤문(蔡允文), 전(前) 선전관(宣傳官) 김곤(金坤), 선전관(宣傳官) 정홍손(鄭洪孫)·장정(張玼), 전(前) 평사(評事) 류순정(柳順汀), 정언(正言) 류빈(柳濱) 등은 혹 변방(邊方)의 수령(守令)을 제수하고, 혹 변장(邊將)의 막료(幕僚)로 차견하며, 혹 대신(大臣)이 순변(巡邊)할 때에 대행사(帶行

使)로 하여서 변사(邊事)를 갖추어 알고 그 재능을 성취하게 하라.” 하였다.

○丁未○領敦寧以上及政府兵曹堂上知邊事武臣宰相等詣賓聽擇將來將帥二十七人以啓傳旨兵曹今揀擇將來將帥訓練院副正李永禧前府使金守貞社稷署令權仲慎潼關僉使趙元璋軍器寺僉正呂承堪京畿都事李世俊都摠府都事李茁忠勳府經歷尹湯老訓練院僉正朴元宗宣傳官洪社內資寺僉正河孟潤部將金錫哲兼司僕具詮宣傳官許城內禁衛沈亨理山郡守崔麟壽內禁衛柳聃年前縣監李琛司僕寺判官金允濟兼司僕鄭殷富內禁衛李菴蔡允文前宣傳官金坤宣傳官鄭洪孫張珽前評事柳順汀正言柳濱等或除邊方守令或差邊將幕僚或大臣巡邊時帶行使備諳邊事成就其才

《成宗實錄 卷第243, 20面》

성종 21년 9월 17일(병인)

육조(六曹)와 한성부(漢城府)가 부름을 받고, 빈청(賓廳)에 모이어서 이평(李枰)의 일을 의논하였다. 신승선(愼承善)·어세겸(魚世謙)·이승원(李崇元)·한한(韓僞)·이육(李陸)·권정(權佺)·윤탄(尹坦)은 의논하기를,

“이평(李枰)이 수뢰(受賂)한 일은 애매(曖昧)하여 밝히기가 어려우니, 이로써 죄(罪)를 삼음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대사간(大司諫)으로 있을 때에 언책(言責)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체임(遞任)을 당하였고, 얼마 안되어 죽자를 써서 바쳤으니, 자취가 아침을 바친 것과 같은데 대간(臺諫)이 고집(固執)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대간(臺諫)은 공론(公論)이 있는 곳이니,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중략]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종호(李宗顥)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평(李枰)이 전임(前任) 청주 목사(淸州牧使) 적에 한 가지의 선정(善政)도 없었으며,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 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이평에게 무엇을 취할 것이 있어서 반드시 승직(陞職)시키 고자 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평이 청주 목사로 재직하였을 때에 청렴하지 못하였다는 일은 전일에 듣지 못했는데, 그대들은 반드시 들은 것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종호 등이 말하기를,

“전일 헌부(憲府)가 면대(面對)할 때에 아뢰기를, ‘이평은 청주 목사가 되어 탐명(貪名)이 있었습니다.’고 하였고, 또 헌부가 정언(正言) 류빈(柳濱)에게 묻기를, ‘이평이 충주(忠州)에 집을 지은 일을 원소(院疏) 안에 아울러 기록하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평이 만약 염정(廉正)하고 탐오(貪汚)하지 않았다면, 어

찌 이런 이름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로써 아뢰었을 뿐입니다.”

○丙寅六曹漢城府承召會賓廳議李杵事慎承善魚世謙李崇元韓僴李陸權佺尹坦議李杵受賂事曖昧難明不可以是爲罪但以大司諫時未盡言貫見遞未幾書籒以獻迹似獻諛臺諫固執不已蓋以是也臺諫公論所在不可不從其言[中略]

○司諫院大司諫李宗顥等來啓曰李杵前任清州牧使無一善政而頗有不廉之名臣等未知殿下於杵何所取而必欲陞職乎 傳曰杵爲清州時不廉事前日所未聞爾等必有所聞其言之宗顥等曰前日憲府於 面對時啓曰杵爲清州有貪名又憲府問於正言柳濱曰杵忠州造家事院疏內並錄乎杵若廉正不汚則何有此名臣等是以啓之 《成宗實錄 卷第244, 10面》

성종 21년 9월 27일(병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노인(老人) 최경(崔涇)을 명하여 당상관(堂上官)에 올리셨는데, 사류(士類) 같으면 노인(老人)으로 승직(陞職)함도 무방하지만, 최경은 본시 화사(畫師)입니다.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하오니, 청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노인(老人)은 으레 가자(加資)하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丙子○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今者老人崔涇 命陞堂上官如士類以老陞職無妨涇本畫師恐爲不可請收成 命傳曰老人例加其勿言 《成宗實錄 卷第244, 17面》

성종 21년 9월 28일(정축)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최경(崔涇)은 승계(陞階)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丁丑司諫院正言柳濱來啓崔涇不可陞階 不聽 《成宗實錄 卷第244, 17面》

성종 21년 윤 9월 15일(갑오)

임금이 영릉(英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고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뇌성과 비가 대단하여 제사를 행하지 못할까 저어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활짝 개여 제사를 행하였으니, 내 마음의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대저 경사가 있을 때 자급(資級)을 주는 것은 으레 있는 법이다. 제사의 집사관(執事官)들에게 1자급을 더하여 내 마음을 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또 내가 이천(利川)을 지나다가 그 고을의 교생(校生)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보았으니 시취(試取)를 행하여 향리(鄉里)로 하여금 영광됨을 알게 하려고 하며, 또

향교에는 물품을 내려 학비(學費)에 보태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경기(京畿)의 백성들에게는 전지의 조세(租稅)를 감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중략]

○대사헌(大司憲) 이계동(李季叟)·대사간(大司諫) 이종호(李宗顥)·지평(持平) 홍한(洪瀚)·정언(正言)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제사의 집사관에게 자금을 올려 주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어제 천둥이 치고 비가 오더니 오늘 제사를 행할 때 개인 것은 곧 전하(殿下)의 정성스런 효심에 감동함인데, 집사관들이 무슨 공(功)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는 내가 제사를 행하지 못하게 되지만 앓을까 두려워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 개여 제사를 행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기뻐서 명을 내린 것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甲午 上詣 英陵親祭傳于政丞等曰昨日雷雨大作恐不克行祭幸今開霽得行祀事予心之喜不可勝言大抵有慶事賜級例也祭執事官欲加一階以表予心何如且予經利川見其邑校生今於此又見之欲行試取使鄉里知榮又賜物于鄉校以資學費又欲減甸民田租何如[中略]

○大司憲李季叟大司諫李宗顥持平洪瀚正言柳濱啓曰祭執事加資甚未便昨日雷雨今日行祭時開霽是 殿下誠孝所感執事有何功哉 傳曰昨日予恐不克行祭今朝幸開霽得行故予喜而有命其勿言

《成宗實錄 卷第245, 8面》

성종 21년 윤 9월 17일(병신)

○어가가 용인(龍仁) 파오달(波吾達)에 이르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한(洪瀚)·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명일(明日)에 타위(打圍; 사냥)를 하고자 하신다 하나, 신은 길 위에 죽어 있는 말과 또 사람도 동상(凍傷)으로 사경에 이른 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 만약 타위를 행한다면 사람과 말의 사상(死傷)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청컨대, 군사와 말을 쉬게 하고 명일 후에 타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한 바가 과연 나의 뜻에 합한다.” 하였다.

○丙申○駕至龍仁波吾達司憲府持平洪瀚司諫院正言柳濱啓曰今聞欲以明日打圍臣見道上有死馬人亦有凍傷垂死者明日若行打圍則人馬必多死傷請休士馬明日後打圍 傳曰爾等所言果合予意

《成宗實錄 卷第245, 9面》

성종 22년 7월 22일(병신)

영안도 도사(永安道都事) 류빈(柳濱)과 겸사복(兼司僕) 윤성경(尹成罔)이 도원수

(都元帥)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와서 아뢰니, 임금(引見)하고 이르기를,
 “도원수(都元帥)의 서장(書狀)은 내가 이미 보았다.”

하고는, 이어 윤성경에게 묻기를,

“그대가 저들의 땅에 갔다가 왔는데, 그 행군(行軍)하는 길은 어떠하던가?”

하니, 윤성경이 아뢰기를,

“길은 평탄하고 넓었습니다. 신(臣)이 이달 초 4일에 아량함(阿良哈)과 더불어 함께 온성(穩城)의 강가에 도착하여 행장(行裝)을 꾸려 강을 건너가니 밤 삼경(三更)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국사당(國祀堂) 고개에 이르니 날은 벌써 어둑어둑한 새벽이었습니다. 신(臣) 등이 죽을 먹고 말을 먹여 가통현(加通峴)을 지나 남라현(南羅峴)을 넘어가니 하수(河水)가 있는데, 순평(順平)하고 넓어서 끝이 없었습니다. 신(臣) 등이 지나온 고개(峴)는 비록 이름은 고개라고 하였지만 모두가 높거나 험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사당(國祀堂) 고개는 조금 높았으나 또한 험준하고 좁아서 넘기가 어려운 곳은 없었습니다. 한 강을 건너니 거다개 고성(居多介古城)의 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조그만 시내(水)가 있었으며, 길에 두 필의 말 자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을하현(古乙何峴)에 이르니 밤 이경(二更)이었는데, 밤을 무릅쓰고서 울지(鬱地)에 이르니 앞에 한 고개가 있었고 울지(鬱地)로부터의 거리는 20리(里) 정도였습니다. 그 고개 아래에 5, 6필의 말이 지나간 자취가 있었는데, 아량함(阿良哈)이 말하기를, ‘이 고개에 오르면 울적함(兀狄哈)이 거주하는 곳을 두루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므로, 신(臣)이 그 고개에 올라가서 적(賊) 등의 거주하는 곳을 바라보려고 하니, 아량함(阿良哈)이 체지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타고 지나간 말의 자취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이 만약 돌아와서 우리들의 말의 자취를 보고서 발자취를 찾아내어 그 돌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우리들의 죽음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국가의 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臣)이 대답하기를, ‘장수(將帥)가 이미 나에게 명하여 친히 그들의 거주하는 곳을 보도록 했는데, 지금 만약 보지 않고서 돌아간다면 장수가 반드시 나를 군법(軍法)에 처할 것이니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가서 보아야 하겠다.’ 하니, 아량함(阿良哈)은 말하기를, ‘내가 저들의 땅에 왕래한 것이 지금 다섯 번이나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근일(近日)에 있으며, 전로(前路)의 지휘(指揮)는 내가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니마거(尼麻車)가 거주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혹은 20리(里)가 되기도 하고 혹은 30리(里)가 되기도 하고 혹은 60리(里)가 되기도 합니다. 물가를 따라서 가면 도골(都骨)이 거주하는 곳은 1백 20리(里), 1백 50리(里)가 됩니다.’ 하면서 아량함(阿良哈)이 이 일로써 강제로 말리는 까

답으로 신(臣)이 올라가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윤성경이 이미 원수(元帥)의 명령을 받고도 저 사람들의 거주하는 곳을 친히 보지 아니했으므로, 원수(元帥)가 그를 군법(軍法)에 두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이 하면 군기(軍機)가 누설될 것이 염려되며, 또 다시 윤성경으로 하여금 체탐(體探)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잠정적으로 이를 용서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성경이 이미 저곳에 이르렀으니 만약 끝까지 염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랑합(阿良哈)이 굳이 이를 말렸으므로 윤성경이 혼자서 억지로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랑합(阿良哈)이 굳이 말렸던 것은 무슨 마음인가?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고는, 이어 묻기를,

“이 울지(鬱地)는 이른바 수목(樹木)이 울밀(鬱密)한 곳인가? 그 무성하고 뾰뾰한 것이 얼마 가량이던가?”

하니, 윤성경이 전중(殿中)의 기둥을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이와 같은 나무가 촘촘하지도 않고 영성하지도 않았으며, 아래에는 싸리나무와 갈대풀이 섞여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는 터져 있어 막힌 곳이 없었습니다. 또 신(臣)이 돌아올 때 지나온 물은 때마침 비가 와서 깊었지만, 9, 10일의 물이 줄어들 때에는 말다래²⁰⁹⁾가 젖지 않을 것이니,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나간 길은 넓은 데가 많으므로 수만(數萬) 명의 병졸도 또한 한꺼번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고개는 그 넓이가 혹은 백보(百步)가 되기도 하고, 혹은 1백 50보(步)가 되기도 했습니다. 울지(鬱地)는 곧 세 길이 모이는 곳이니, 오랑캐가 군사를 청하여 도적질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5, 6일 동안에 저곳에 도착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윤성경이 아뢰기를,

“신(臣)은 낮과 밤을 합하여 4일 만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신(臣) 등이 자취를 숨기고 갔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만약 역마(驛馬)를 타고 평탄한 길로 간다면 1, 2일의 노정(路程)일 뿐입니다.”

하였다.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209) 말다래 :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리어 놓은 기구. 가죽 따위로 만들. 장니(障泥).

“윤성경이 체탐(體探)할 때에 도원수(都元帥)가 생각하기에 말을 타고 가면 번거로울 것이므로 걸어서 가도록 했던 것인데, 아랑합(阿良哈)이 말하기를, ‘말을 타지 않으면 나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고 한 까닭으로, 마지 못하여 말을 타고서 가도록 했던 것이다. 이후에는 비록 아랑합(阿良哈)이 없더라도 저 땅의 길을 윤성경이 이미 알고 있으니, 군관(軍官)과 여러 장수 중에서 담기(膽氣)가 있는 사람을 가려서 함께 체탐(體探)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느 시기에 보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원수(元帥)가 참작하여 처치(處置)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군기(軍器)의 수보(修補)는 얼마나 했던가?”

하니,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대개는 이미 수보(修補)했는데, 갑옷은 1만 3천 부(部)이고, 장전(長箭)은 7천 50여 부(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쓰지 못할 것은 현재 바야흐로 수보(修補)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윤성경에게 묻기를,

“네가 보기에 아랑합(阿良哈)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던가?”

하니 윤성경이 아뢰기를,

“신(臣)이 그 말을 듣고 그 하는 짓을 살펴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丙申永安道都事柳濱兼司僕尹成罔賁都元帥書狀來啓 上引見曰都元帥書狀則予已見之仍問成罔曰汝往來彼土其行軍道路何如成罔曰道路平易廣濶臣今月初四日與阿良哈偕到穩城江邊治裝越江則夜三更行到國祀堂峴則日已昧爽臣等食糜秣馬歷加通峴越南羅峴則有河順平廣濶無垠臣等所過之峴雖名之曰峴而皆不高峻其中國祀堂之峴稍高然亦無險隘難越之處渡一水有居多介古城基址其間有小溪見路有二馬跡又至古乙何峴則夜二更犯夜至鬱地前有一峴自鬱地相距二十里許其峴下有五六馬過行之跡阿良哈曰登此峴則可通望兀狄哈所居處臣欲登其峴望賊等所居阿良哈止之曰彼人過行馬跡未久彼人若還來見吾等馬跡尋蹤扼其歸路則吾等之死不足惜國家大事不諧矣臣答曰將帥既命我親見所居處今若不見而歸則將帥必置我軍法雖死必往見阿良哈曰我之往來彼土今五度矣國之舉師在近日前路指揮我任其責由此距尼麻車所居或二十里或一舍或二舍從水滸迤邐而往則都骨所居四五舍矣阿良哈以此強止之故臣未得登望柳濱啓曰成罔既受元帥之命而不親見彼人居處元帥欲置軍法然如此則恐軍機漏洩且更使成罔體探故姑賁之耳 上曰成罔既已到彼若窮探則善矣然阿良哈固止之則成罔獨不可強行阿良哈之固止何心哉必疑懼耳仍問曰此鬱

地所謂樹木鬱密之處乎其茂密幾許乎成岡指殿中之柱曰如此之木不密不疎下有柎木蘆草交雜而生然其下疏通無礙處矣且臣歸時所經之水適雨下而深若九十月水落之時則不沾馬韉不待冰合而渡矣其所過道路多廣濶數萬之兵亦可並駟諸峴則其廣或百步或百五十步矣鬱地乃三路交會之處虜欲請兵作賊則必會於此 上曰然則五六日可到彼乎成岡啓曰臣并晝夜四日往還臣等秘跡而往猶如此若乘駟坦途而行則一二日程矣柳濱啓曰成岡體探時都元帥以謂乘馬則煩故欲使步往阿良哈曰不騎則余不得歸矣故不得已乘馬以送此後則雖無阿良哈彼地道路成岡已知之軍官諸將中擇其有膽氣者并令體探何如且何時送之乎 上曰此則在元帥斟酌處置耳 上又問曰軍器修補幾許柳濱啓曰大槩已修補甲則一萬三千部長箭七千五十餘部其不用者時方修補矣 上問成岡曰汝見阿良哈果可信人乎成岡曰臣聽其言語觀其所爲可信人也

《成宗實錄 卷第255, 28面》

성종 22년 8월 18일(임술)

○영안도 도사(永安道都事) 류빈(柳濱)이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의 서장(書狀)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원수(元帥)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류빈(柳濱)이 대답하기를,

“영흥(永興)에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서장(書狀)의 뜻을 보고 처치(處置)가 적당함을 알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류빈이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를 받들건대, 성(城) 아래에 거주하는 야인(野人)이 장차 저 오랑캐들과 몰래 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병(伏兵)을 요로(要路)에 설치하여 맞아치도록 했는데, 다만 아치랑구(阿赤郎口)로부터 저들의 땅에 이르는 데는 그 길이 한둘이 아니며, 울지(鬱地) 이북(以北)은 다만 한 길뿐이니 울지(鬱地)에서 군사를 매복(埋伏)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곳은 오랑캐의 지역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병졸이 많으면 아마도 저들이 먼저 알 듯하고 병졸이 적으면 또한 반드시 잡히게 될 것이니, 우리 국경(國境)에 가까운 중로(中路)에 군사를 매복(埋伏)시켜 막아 끊으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먼 곳에서 지시(指示)할 수 없는 것이니, 원수(元帥)가 시기에 임(臨)하여 잘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農事)는 어떻던가?”
 하니, 류빈이 아뢰기를,
 “영흥(永興) 이북(以北)과 부령(富寧) 이남(以南)은 벼가 무성했으나, 다만 북청(北靑)은 벼가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그 도(道)에도 또한 풍재(風災)가 있던가?”
 하니, 류빈이 아뢰기를,
 “비록 있었으나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군무(軍務)는 다 포치(布置)되었던가?”
 하니, 류빈이 아뢰기를,
 “이미 다 포치(布置)되었습니다.”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원수(元帥)가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무릇 군무(軍務)와 교초(郊草 : 들에 있는 마초(馬草)) 등의 일은 조치(措置)할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원수(元帥)가 재상(宰相) 한 사람을 보내어 도내(道內)의 일을 대신 다스리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大臣)을 보내어 도내(道內)의 일을 총괄해 다스리려고 하는데, 원수(元帥)가 현재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원수(元帥)와 절도사(節度使)가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피차(彼此)의 긴급한 일을 어디서 전해 보고하겠는가? 지금 원수(元帥)의 장계(狀啓)를 살펴보니, 매우 내 뜻에 맞다.”
 하였다. 류빈에게 남주 유의(藍紬襦衣) 1령(領)과 화(靴) 1사(事)를 하사(下賜)하였다.

○壬戌○永安道都事柳濱賚都元帥許琮書狀而來 上引見曰元帥今在何處濱對曰在永興上曰予見書狀之意處置得宜如是可也濱啓曰前日承 教以城底野人將漏通彼虜令設伏要路以邀之但自阿赤郎口至彼土其路非一鬱地以北則唯一路可於鬱地伏兵但此地距虜地不遠兵多則恐彼先知少則亦必見執欲於近我境中路伏兵要截矣 上曰此不可遙制在元帥臨機善處耳 上曰農事何如濱曰永興以北富寧以南禾穀茂盛惟北靑不茂矣 上曰其道亦有風災乎濱曰雖有無傷矣 上曰軍務盡布置否濱曰已盡矣仍啓曰元帥入征則凡軍務郊草等事無人措置故元帥請遣一宰相代治道內事 上曰予欲將遣大臣摠治道內事元帥時未知予意也元帥節度使入征則彼此緊急之事於何傳報今觀元帥之啓甚合予意 賜濱藍紬襦衣一領靴一事

성종 23년 3월 25일(을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는 문신(文臣) 중에서 허종(許琮)·이극균(李克均)을 얻어서 장수(將帥)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진(行陣)하는 일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의 문신은 조금만 사후(射侯)할 줄을 알면 모두 오진(五鎭)의 판관(判官)을 제수(除授)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활쏘는 기술을 익히지 않습니다. 청컨대, 문신으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려서 겸선전(兼宣傳)을 삼아서 미리 실력을 길러 두었다가 앞으로 쓰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에서 류순정(柳順汀)·이수언(李粹彦)·류빈(柳濱)·안윤손(安潤孫)·신건(辛鍵)·이종준(李宗準)·홍식(洪湜)·홍형(洪洞)·이계복(李繼福)·민수복(閔壽福)·김연수(金延壽)·이세영(李世英)·성희안(成希顔) 등 13명을 녹계(錄啓)하니, 전교하기를,

“이 중에서도 도태시킬 만한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밖에도 반드시 취할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무리들은 마침내 크게 기용(起用)해야 하겠지만, 가볍게 선발(選拔)할 수는 없다. 단지 활쏘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 인품(人品)을 보아야 한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를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중략]

심희(沈澮)가 아뢰기를,

“그들이 만약 성취되었다면 누구는 대장(大將)이 될 만하고 누구는 비장(裨將)이 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은 모두 후진(後進)들이는데, 신 등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활쏘기를 시켜보고, 강서(講書)를 시켜보고, 선전관(宣傳官)의 직임(職任)을 맡겨서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본다면 마침내 반드시 쓸만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겸선전관(兼宣傳官)으로 제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乙未○兵曹啓曰 世祖於文臣得許琮李克均以授將帥之任故二人能知行陣間事今文臣稍知射侯者皆授五鎭判官故人皆厭之不習射藝請擇文臣之能射者 以爲兼宣傳 儲養待用 從之兵曹錄啓柳順汀李粹彦柳濱安潤孫辛鍵李宗準洪湜洪洞李繼福閔壽福金延壽李世英成希顔等十三人 傳曰此中有可汰者此外亦必有可取者此輩終當大用未可輕選非徒取其射藝亦當觀其人品其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議之[中略]

沈澮等啓曰此輩若成就則知某也可爲大將某也可爲裨將此皆後進臣等何以知之今若或觀射或講書或授以宣傳之任以試其可則終必有可用者矣 傳曰可拜兼宣傳官

《成宗實錄 卷第263, 24面》

성종 23년 4월 11일(신해)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이에 앞서 문신 선전관(文臣宣傳官)과 무신(武臣)을 명하여 각각 6명씩을 가려 짝짓게 하고 문신은 연(連) 2일을 무신은 연 3일을 사후(射侯)²¹⁰하게 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居首者]에게는 가계(加階 : 벼슬의 품계(品階)를 올림)하고 다음을 차지한 자에게는 말(馬)을 내려 주면 그 다음을 차지한 자에게는 활[弓]을 내려 주기로 하였었는데, 이날 문신의 연사(連射)가 끝나자 류빈(柳濱)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가계(加階)를 명하였다.

○辛亥○御夕講○先是 命文臣宣傳官及武臣各選六耦文臣則連二日武臣則連三日射侯居首者加階次者賜馬次者賜弓是日文臣連射畢柳濱居首 命加階 《成宗實錄 卷第264, 9面》

성종 23년 4월 19일(기미)

○북정 도원수(北征都元帥) 허중(許琮)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임금(王)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북정(北征) 때에 얻은 바가 비록 적더라도 군사들을 온전히 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몹시 기뻐한다.”

하니, 허중(許琮)이 대답하기를,

“저들의 지역은 도로(道路)가 험조(險阻)하고 초목(草木)이 울창하며, 또 물을 건너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반은 얼음이고 반은 물이어서 보병(步兵)이 갈 수 없으므로, 누기(累騎 : 남이 탄 말의 뒤에 탐)하여 건너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사가 멀리 가지 못하고 하루에 겨우 30리를 가서 저들의 땅에 들어갔는데, 8일이 되어서야 울지현(鬱地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김장손(金長孫)이 먼저 가서 이 현(峴)을 넘어 적(賊) 6, 70인을 만나 싸웠는데, 적이 우리의 대군(大軍)을 바라보고는 돌아서서 곧 흩어져 도주하였습니다.[중략]또 아군(我軍)은 류엽전(柳葉箭)으로 적(賊) 하나를 쏘아 맞혔는데 투구가 뚫리고 두 개골이 관통당해 죽으니, 이로 말미암아 적의 기세가 꺾이고 풀이 죽었습니다. 군사가 돌아옴에 사졸(士卒)로서 죽은 자는 불과 10여 인이었고, 한 사람도 뒤에 처진 자가 없었습니다. 강상(江上)에 이르러니,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사졸(士卒)이 갈 수가 없었으므로, 신이 도사(都事) 류빈(柳濱)으로 하여금 가서 호위

210) 사후(射侯) : 술(侯)에 활을 쏘아 시험하는 것. 술은 사포(射布)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여사(御射)에 쏘는 옹후(熊侯), 종친과 문·무관(文武官)이 쏘는 미후(麋侯), 무과 교습(武科敎習)에 쏘는 시후(豕侯) 등이 있었음.

해 오도록 하였는데, 동사(凍死)한 자가 11인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만(數萬)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멀리 오랑캐의 소굴(虜穴)에 들어갔다가 죽은 자가 여기에 그쳤으니, 비록 옛날의 현장(賢將)이라 하더라도 어찌 더 하였겠는가?”

하니, 허중(許琮)이 아뢰기를,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번 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김장손(金長孫)이 오랑캐(虜)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다.’고 하였으나, 신의 뜻으로는 이번에 종정(從征)한 야인(野人)이 공(功)을 다룬 소치(所致)이며 김장손의 죄만은 아닙니다. 대군(大軍)이 도로 우리 땅에 들어옴에 미쳐 뒤에 처져 돌아오지 않은 자가 5백여 인이었는데 아직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신이 여러 도(道)의 추쇄 계본(推刷啓本)을 보니, 도망(逃亡)이라 일컫고 물고(物故)라 일컫은 것이 비록 많았으나, 뒤따라 와서 나타나는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수령(守令)이 자세히 추현(推現)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들으니, 사졸(士卒)이 돌아와서 우리 경계에 들어올 때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말한 바를 들으니, 기쁘다.”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이 사망(死亡)한 자가 매우 많다고 하였는데, 신이 본 바로는 그 수(數)가 많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기망(欺罔)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졸(士卒)로서 병사(病死)한 자는 아무리 원수(元帥)라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변경(塞上)에 추위가 심한데, 군사(軍士)로서 피로(疲勞)한 자가 만약 다시 야숙(野宿)을 할 것 같으면, 사람과 말이 죽는 것이 반드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영(營)을 내리기를, ‘조정(朝廷)에서 군졸(軍卒)로 하여금 여염(閭閻)에 들어가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침해(侵損)를 염려해서이다. 만약 침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록 들어가 잔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는데 이 때문에 죽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己未○北征都元帥許琮來復命 上御宣政殿引見曰北征時所獲雖少全師而還予甚喜焉

琮對曰彼地道路險阻草樹茂密且多有涉水處半冰半水步兵不能行累騎而渡由是師不得遠行一日僅行三十里入彼土至八日到鬱地峴翌日金長孫先行踰是峴遇賊六七十人而戰賊望見我大軍旋即散走[中略]又我軍以柳葉箭射中一賊穿兜鍪貫顛而死由是賊勢摧沮軍還士卒死者不過十餘人無一人在後者比至江上日候寒甚士卒未能行臣令都事柳濱往護而來寒凍死者十一人 上曰領數萬衆遠入虜穴其死者止此雖古賢將何以加之琮曰諸將皆言此行不得成功由金長孫使虜先覺而然也臣意此從征野人爭功所致非獨長孫之罪也及大軍還入我地在後未還者五百餘人猶未盡知也右承旨權景禧啓曰臣見諸道推刷啓本稱逃亡物故雖多然隨後來見者亦多是必守令不仔細推現也 上曰初聞士卒還入我境死者甚多今聞所言可喜也琮曰人言死亡者甚多以臣所覩其數不多臣何敢欺罔乎 上曰士卒病死者雖元帥亦無如之何琮曰塞上寒甚軍士疲勞者若更野宿則人馬死者必多故臣令曰朝廷不使軍卒入宿閭者慮侵損也如不侵損雖入宿何害以此死者不多 《成宗實錄 卷第264, 14面》

성종 23년 7월 7일(을해)

○문신(文臣)·선전관(宣傳官)을 모아놓고 북소(北所)²¹¹에서 시사(試射)하게 하였는데, 교서관 저작(校書館著作) 정자당(鄭子堂)이 1등이었고 류빈(柳濱)이 2등이었다. 정자당에게 아마(兒馬) 1필(匹), 류빈에게 활 1장(張)을 내려 주었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임금이 자주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여 승부(勝負)를 나누어 장려하였으므로, 문사(文士)들이 다투어 궁시(弓矢)를 숭상하며 각각 그 능력을 과시하였었다. 조정 의논이, 오진(五鎭)의 수령(守令)을 모두 무신(武臣)을 등용하니 이무(吏務)에 밝지 못하다고 하여, 으레 활쏘기 줄 아는 문신(文臣)으로 교차(交差)시키니, 그로부터 문사들이 활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乙亥○會文臣宣傳官試射于北所校書館著作鄭子堂居首柳濱次之 賜子堂兒馬一匹濱弓一張史臣曰前此上數令文臣射侯分勝負獎之文士爭尚弓矢各誇其能朝議以五鎭守令並用武臣不諳吏務例以文臣能射者交差自是文士不喜射 《成宗實錄 卷第267, 4面》

성종 24년 1월 3일(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사도시 정(司導寺正) 김사원(金嗣源)²¹²은 바로 이조 정랑(吏曹正郎) 류빈(柳

211) 북소(北所) : 사소(四所)의 하나. 사소(四所)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네 곳으로서, 《예종실록》에 의하면, 동소(東所)는 창덕궁(昌德宮)의 순청(巡廳)이고, 서소(西所)는 운종가(雲從街)의 순청이고, 북소(北所)는 의금부(義禁府)이고, 남소(南所)는 용양위(龍驤衛)라고 하였음.

212) 김사원(金嗣源) : 상의원 정을 역임했으며 승지 김유양(金有讓)의 아들이며 좌의정을 역임한

濱)의 처삼촌(妻三寸)이 되는 친척이니, 법으로는 응당 상피(相避)²¹³해야 합니다. 비록 수령(守令)의 고과(考課)가 십상(十上)²¹⁴이면 예(例)대로 올려서 서용(敍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조(吏曹)에서 혐의하지 않고 주의(注擬)²¹⁵하였으니, 청컨대, 관리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류진(柳軫)은 전에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로 있으면서 궁성문(宮城門)을 마음대로 닫았으니, 광망(狂妄)함이 막심합니다. 본부(本府)는 사송(辭訟)이 번잡하여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으니, 청컨대, 아울러 개정(改正)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사원의 관직을 올린 것은 취품(取稟 : 임금에게 상주하여 그 의견을 기다림)하여 의망(擬望)한 것이므로 낭관(郎官)에게는 관계가 없고, 류진이 현명한지의 여부는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己巳○司憲府持平閔壽福來啓曰司導寺正金嗣源乃吏曹正郎柳濱妻三寸親也法當相避雖以守令考十上例當陞叙吏曹不引嫌注擬請鞫官吏漢城府判官柳軫曾爲都摠府都事擅閉宮城門狂妄莫基本府辭訟煩劇非諳練不可任也請並改正 傳曰嗣源陞職取稟而擬望非關於郎官軫之賢否當議大臣

《成宗實錄 卷第273, 2面》

성종 24년 1월 4일(경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이 와서 아뢰기를,

“김사원(金嗣源)을 전에는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 올리자 이조(吏曹)에서 류빈(柳濱)과 상피(相避)가 된다고 하여 아뢰어서 바꾸었었는데, 이번에는 사도시정(司導寺正)으로 추천하여 제수(除授)하였으니, 사정(私情)을 둔 것이 명백하여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庚午司憲府持平閔壽福來啓曰金嗣源前則陞禮賓寺正而吏曹以柳濱相避啓遞之今則擬

김승주(金承雚)의 손자로서 순천인(順天人)이다. 처는 이근건(李根健)의 딸로서 연안이씨이다. 류빈의 처부가 되는 이인행(李仁行)과는 남매간으로써 정확히 류빈의 처 고모부가 된다.

213) 상피(相避) : 인연(人緣)·지연(地緣)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政事)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던 제도. 혹은 같은 부서(部署)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시관(試官) 같은 것을 피함.

214) 십상(十上) : 관리의 근무 성적이 열 차례 평정(評定)하여 열 번 모두 상등(上等)인 것을 말함.

215)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除司導寺正用情明矣不可不問 不聽

《成宗實錄 卷第273, 2面》

성종 24년 1월 6일(임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이 차자(笏子)를 올려 말하기를, “관작(官爵)은 조정(朝廷)의 공기(公器)이니, 그 권한을 잡고 한 세대를 제어하는 자는 임금이고, 그 법을 받들어 인물(人物)을 주의(注擬)하는 자는 전조(銓曹)로서,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전조(銓曹)이겠습니까? 김사원(金嗣源)은 전날 예빈시 정(禮賓寺正)에 제수되었었는데, 정랑(正郎) 류빈(柳濱)과 상피(相避)가 된다 하여 즉시 도로 고치도록 아뢰었습니다. 이제 류빈이 아직도 전조에 있는데, 간곡하게 그를 위하여 청해서 취품(取稟)하여 올려 서용하였습니다.

○壬申○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上笏子曰官爵朝廷之公器操其柄以駕馭一世者人主也奉其法以注擬人物者銓曹也人主不得而私況銓曹乎金嗣源前日授禮賓正以正郎柳濱相避啓啓還改今濱猶在銓曹而曲爲之辭取稟陞叙

《成宗實錄 卷第273, 3面》

성종 24년 1월 9일(을해)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안호(安瑚) 등이 차자(笏子)를 올려 아뢰기를, “법(法)이라는 것은 임금이 의거하여 다스리는 바이니, 진실로 한 번 흔들리게 되면 간사한 자가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 나라의 정사가 날로 그릇되는 것입니다. 김사원(金嗣源)은 처음에 장단 부사(長湍府使)로서 사만(仕滿)되어 부정(副正)에 제수하였고, 또 올려서 정(正)을 삼았습니다. 이조(吏曹)에서 정랑(正郎) 류빈(柳濱)과 상피(相避)가 된다 하여 아뢰고서 개정(改正)하였으니, 다시 서용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말을 꾸며 계청(啓請)하여서 감히 그를 서용하였으니, 당초에 아뢰고서 개정(改正)한 것은 무슨 의도였으며, 이제 또 아뢰고서 올린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법을 마음대로 적용한 것이 매우 확실합니다.

○乙亥○司諫院大司諫安瑚等上笏字曰法者人主所依以爲治者也苟一撓之則奸邪得行其志而國政日非矣金嗣源初以長湍府使仕滿授副正又陞爲正吏曹以正郎柳濱相避啓而改之其不得復用明矣今又飾辭啓請而敢用之當初啓而改之者何意今又啓而陞之者何意其爲弄法明甚

《成宗實錄 卷第273, 7面》

성종 25년 6월 28일(을유)

○채수(蔡壽)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이집(李詰)을 가

선 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율(金律)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수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로, 이순명(李順命)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사헌부 장령(守司憲府掌令)으로, 류빈(柳濱)을 통덕랑(通德郎) 수사헌부 장령(守司憲府掌令)으로, 정경조(鄭敬祖)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乙酉○以蔡壽爲嘉善戶曹叅判李諱嘉善司憲府大司憲金律奉列守司憲府執義李順命朝散守司憲府掌令柳濱通德守司憲府掌令鄭敬祖嘉善同知中樞府事 《成宗實錄 卷第291, 24面》

성종 25년 7월 1일(정해)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류빈(柳濱)은 이조 정랑(吏曹正郎)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승진시켜 장령(掌令)을 삼음은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류빈(柳濱)의 직(職)을 고치고 아울러 이조 관리(吏曹官吏)를 국문(鞫問)하소서. 또 김율(金律)은 전자에 장령(掌令)이 되었으나 함묵(含默)하였다 하여 체임(遞任)을 당하였는데, 이제 집의(執義)를 체수함은 불가하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류빈(柳濱)의 일은 이미 숙계(熟計 : 깊이 생각하여 계략(計略)을 짜 냄)하여 하였으며, 김율(金律)의 일은 벌써 지난 일이니, 추론(追論)함은 옳지 못하는데, 대간(臺諫)은 어찌 이다지도 말을 많이 하는가? 만약 일의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고 걸핏하면 반드시 이를 말한다면,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러나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원성이 다시 아뢰기를,

“전자에 정석견(鄭錫堅)·구숙손(丘夙孫)은 모두 이조 좌랑(吏曹佐郎)으로 지평(持平)을 삼았다가 대간(臺諫)이 논박하여서 개정(改正)하였으니, 청컨대, 전례(前例)를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 김수동(金壽童)·반우형(潘佑亨)·권주(權柱) 등을 의망(擬望)²¹⁶하였기에, 내가 이르기를, ‘김수동은 이미 장령(掌令)을 경유하여 지금은 필선(弼善)이 되었었는데, 세자(世子)의 학문이 아직 해박하게 통하지 못하였으니, 김수동은 시강(侍講)에 합당하고, 반우형은 사유(師儒)에는 우수(優秀)하나 언책(言責 : 언관(言官)의 책임)에는 부족하며, 권주(權柱)는 내가 언관(言官)에 합당한 지 알지

216) 의망(擬望) : 관원(官員)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를 추천하던 일. 비의(備擬).

못하나, 또 이제 대마도(對馬島)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대간(臺諫)의 임무는 오래 비워둬야 마땅하지 못한 까닭으로 다시 이조(吏曹)로 하여금 삼망(三望)에 구애하지 말고 다수(多數)를 의망(擬望)토록 하라.’ 하였더니, 류빈도 또한 끼게 되었다. 내가 일찍이 류빈의 사람됨을 아는 까닭으로 특별히 제수한 것 뿐이다.”

하였다.

丁亥司諫院正言李元成來啓曰柳濱以吏曹正郎仕未滿陞爲掌令甚不可請改濱職并鞫吏曹官吏且金碑前爲掌令以舍嘿見遞今授執義不可請改之 傳曰柳濱事已熟計爲之金碑事已往不宜追論臺諫豈在多言若不分事之是非動必言之則言雖多何益哉然當議于大臣元成更啓曰前者鄭錫堅丘夙孫俱以吏曹佐郎爲持平臺諫駁而改之請依前例 傳曰初以金壽童潘佑亨權柱等擬之予謂壽童旣經掌令時爲弼善世子學未該通壽童合於侍講佑亨優於師儒短於言責權柱予未知合於言官且今往對馬島未還臺諫之任不宜久關故更令吏曹不拘三望多數擬之而濱亦與焉予嘗知濱之爲人故特授之耳

《成宗實錄 卷第292, 1面》

성종 25년 7월 2일(무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손주(孫澍)가 와서 아뢰기를,

“류빈(柳濱)을 장령(掌令)으로 승수(陞授：벼슬의 품계를 올려 제수하는 것)함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戊子○司諫院正言孫澍來啓曰柳濱陞授掌令未便 不聽

《成宗實錄 卷第292, 1面》

성종 25년 7월 4일(경인)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손주(孫澍)가 와서 아뢰기를,

“류빈(柳濱)은 근무 일수가 차지 않았는데 장령(掌令)을 제수하였습니다. 그 때에 비록 널리 의망(擬望)하라는 명(命)이 있었으나, 반드시 조랑(曹郎)을 의망하였으니 어찌 그 정실이 없었겠습니까? 또 허집(許輯)은 1자급(資級)을 준직(準職)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장령(掌令)을 제수하였으니, 이와 같은 단서(端緒)를 열어놓으면 폐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臺長)은 마땅히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규찰(糾察)해야 하니, 이미 바르지 못했다면 어찌 사람의 시비(是非)를 말하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허집(許輯)의 자급(資級)이 족하지 못하였음을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이조(吏曹)로 하여금 널리 가당(可當)한 사람을 의망하도록 하여서 제수했을 뿐, 이조(吏曹)에서 은연(隱然)히 정실을 그 사이에 쓴 것이 아니다. 만약 혹 자급

에 구애된다면, 그 용인(用人)하는 지보(地步)가 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류빈(柳濱)·허집(許輯)에게 어찌 정실이 있겠는가?”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庚寅○司諫院正言孫澍來啓曰柳濱仕未滿而授掌令其時雖有廣擬之命必擬曹郎豈無其情且許輯未准一資而特授掌令如此開端弊將不貲臺長當糾察政事得失已既不正何以言人之是非乎請改之 傳曰許輯資級未足予何以知之予令吏曹廣擬可當之人授之耳非吏曹隱然用情於其間也若或拘於資級則其用人地步不廣矣予於柳濱許輯有何情焉不聽

《成宗實錄 卷第292, 3面》

성종 25년 7월 11일(정유)

조참(朝參)을 받았다.

○명하여 정부(政府),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을 불러, 김지(金漬)의 정죄(定罪)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대관의두(對款議頭)》에는 속사죄지법(贖死罪之法)이 있으니, 그 살리기를 구하는 도리가 지극하다. 김호문(金好文)은 아버를 위하는 정(情)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부자(父子)의 정(情)이 어찌 상하(上下)에 사이가 있겠는가? 내가 관가(觀稼: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作況)을 돌아보던 일)하였을 때에 몸소 김호문(金好文)을 보고 자못 측은히 여겼지만, 그러나 《의두(議頭)》에 ‘아무 일은 속(贖)바치게 할 만하고 아무 일은 속바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인정(人情)과 법(法)으로 가금(可矜)하다 하여서 법에 경중(輕重)을 따지면 인정(人情)의 좋아하고 미워함도 또한 반드시 따르게 되어 폐단이 장차 생길 것이다. 또 범장(犯贓)을 속사(贖死)하면, 탐리(貪吏)가 거리낌이 없어 백성이 장차 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군의(群議)를 보고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옳겠는가? 그것을 상의(商議)하여 아뢰라.”[중략]

하고, 이집(李諶)·류빈(柳濱)·허집(許輯)·송여해(宋汝諧)·신용개(申用溉)는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의 용형(用刑)하는 조목[條]에는 《대명률(大明律)》을 오래 행용(行用)하였어도 속사지조(贖死之條)는 없습니다. 《율조소의(律條疏議)》와 《대관의두(對款議頭)》는 모두 《대명률》의 뒤에 나왔으니, 그 속사(贖死) 9조(九條)는 무엇에 의거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법을 쓰는 것은 획일(劃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마땅하고, 별도로 본조(本朝)에서 본시 행하지 않았던 법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한데, 하물며 장오(贓汚)의 과죄(科罪)는 역대(歷代)로 엄격히 한 바이니, 본조(本朝)에서도 또한 율(律)에 의해서 정단(正斷)하여 조금

도 용서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또 범(犯)하는 자가 서로 이었는데, 만약 그 율(律)을 관대하게 하면 형세가 금집(禁戢)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 등은 마땅히 예전대로 《대명률》을 써서 주장(誅賊)하는 법(法)을 엄히 하고, 탐도(貪饕 : 재물을 탐내어 구함)하는 문(門)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의 제왕(帝王)은 죄(罪)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보면, 울면서 죽었으니, 그것은 법(法)이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까닭에서였다. 내가 관가(觀稼)할 때에, 김호문이 아비를 위하여 애호(哀號)함을 보고는 측은(惻然)함을 참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법(法)을 무너뜨리고 사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뒤에 오는 장리(贓吏)들이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없어 백성이 해(害)를 입어도 구(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복(反覆)하여 이를 생각하고 부득이 헌부(憲府)의 의논을 따를 뿐이다.” 하였다.

○丁酉受朝叅○命召政府坡平府院君六曹漢城府臺諫議金漬定罪事 傳曰對款議頭有贖死罪之法其於求生之道至矣金好文爲父之情至於如此父子之情何間於上下乎予於觀稼時親見好文良用惻然但於議頭不明言某事爲可贖某事爲不可贖今若以情法可矜而輕重之則人情好惡亦必隨之弊將生矣且犯贓贖死則貪吏無忌民將受害予觀羣議不能自斷何以則可其商議以啓〔中略〕

李諱柳濱許輯宋汝諧申用漑議大典用刑條去用大明律而無贖死之條律條疏議對款議頭皆出於大明律之後其贖死九條未知何據大抵用法宜畫一勿撓不宜別用本朝素所不行之法况贓汚之科歷代所嚴本朝亦依律正斷不少容賞猶且犯者相踵若寬其律勢難禁戢臣等以爲當依舊用大明律以嚴誅賊之法勿開貪饕之門〔中略〕

傳曰古之帝王見有罪當死者泣而殺之以其法不可撓也予於觀稼時見好文爲父哀號惻然不忍然不可以此而壞法賞死也若此不懲則後之贓吏無所畏忌民之受害將不可救矣予反覆思之不得已從憲府議耳

《成宗實錄 卷第292, 12面》

성종 25년 7월 17일(계묘)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류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서연(書筵)에서 엮드려 세자(世子)께서 전강(前講)한 글을 읽으시는 것을 보니, 말이 수삽(羞澁 : 부끄러워 주저주저함)함이 많아서 다 통달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들으실 때에도 즐겨 문변(問辨 : 모르는 것을 물어서 변정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자(世子)의 춘추(春秋)가 이미 장성하시니, 평범한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글을 통하고 이치를 통달할 때이온데, 이제 바로 이와 같으시니, 향학(向學)하는 마음이 아마도 지극하지 않은 듯합니다. 신의 뜻으로는 1일 강

(講)한 것은 반드시 이튿날에 모든 빈객(賓客)·시강관(侍講官) 등과 서로 난해한 것을 분변하여 다 통하고 막힘이 없는 뒤에야 다시 다른 글을 강(講)하게 하고, 이로써 항식을 삼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령(掌令)의 말이 진실로 옳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시강관(侍講官) 등이 세자(世子)가 난해함을 묻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 변석(辨析)하여 쉽게 깨우치도록 하면 거의 옳을 것이다.”

하였다. 류빈이 아뢰기를,

“상교(上教)가 매우 지당합니다마는, 그러나 강관(講官) 등이 비록 문신(文臣)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어찌 모두가 학문(學問)에 유여(有餘)한 자이겠습니까? 스스로 홍문관(弘文館)이나 성균관(成均館)의 선비가 아니면 문의(文義)에 능통(能通)한 자가 드뭅니다. 이제 이 직(職)에 있는 자도 겨우 수월(數月)을 지나면 갑자기 다른 관사로 천전(遷轉)하는 까닭으로 스스로 자기의 임무로 삼고서 공력(功力)을 더하는 자가 있지 않으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강관(講官)이 된 자는 자주 천전(遷轉)을 허락하지 말아서 그 임무를 오로지 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은 진실로 옳다. 학문은 마땅히 중지하지 않고 반드시 항상 공(功)을 더한 뒤에야 가(可)하다. 금후로는 시강관(侍講官)을 자주 천직(遷職)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이 뜻을 이조(吏曹)에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癸卯○司憲府掌令柳濱來啓曰臣於書筵伏觀世子讀前講之書語多羞澁似未該通又於聽受時不肯問辨世子春秋旣壯在恒人亦通文達理之時今直若此向學之心恐未至也臣意以爲一日所講必於翌日與諸賓客侍講官等相辨難盡通無碍然後復講他文以此爲式 傳曰掌令之言誠是矣自今以後侍講官等不待世子問難先自辨析使之易曉則庶乎可矣濱啓曰 上教甚當但講官等雖名文臣豈皆學問有餘者乎自非弘文成均之儒鮮有能通文義者矣今居是職者纔經數月輒遷他官故未有自爲己任而加功者臣願自今爲講官者勿許數遷以專其任 傳曰爾言良是學問不宜作輟必常加功然後可也今後侍講官令勿數遷仍 傳于政院曰其以此意諭吏曹

《成宗實錄 卷第292, 19面》

연산군 2년 8월 11일(을유)

김심(金諶)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복선(李復善)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류빈(柳濱)을 사헌부 집의로, 윤석(尹皙)을 사간원 사간으로, 안당(安瑒)을 사헌부 장령으

로, 곽종원(郭宗元)과 강숙돌(姜叔突)을 지평으로, 오능(吳凌)을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정광필(鄭光弼)과 조원기(趙元紀)를 정언으로 삼았다.

○乙酉以金諶爲司憲府大司憲李復善司諫院大司諫柳濱司憲府執義尹皙司諫院司諫安瑒司憲府掌令郭宗元姜叔突持平吳凌司諫院獻納鄭光弼趙元紀正言 《燕山君日記 17, 10面》

연산군 2년 9월 15일(무오)

○집의(執義) 류빈(柳濱)과 사간(司諫) 윤석(尹皙) 등이 아뢰기를,

“다만 퇴락한 곳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목석(木石)을 실어 나르니, 신등은 크게 영건(營建)이 있는가 두려워 합니다. 또 하교하시기를, ‘천친(天親)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천변과 관계되느냐?’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부왕도 천친으로 보는데 급거히 유교를 어기고 사사로이 사당과 신주를 세우며, 소인을 함부로 높은 계품에 승진시키고 인륜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불문에 붙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천변의 일어남이 여기에 연유한 것인가 합니다. 원하옵건대 신등의 말을 들으시어 여망에 부응(副應)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한환(韓權)은 국문하고 다른 것은 들어 주지 않는다.”

하니, 대간이 사직하였다.

○戊午○執義柳濱司諫尹皙等啓只修頽落處而轉輸木石不絕臣等恐大有營建也且教曰爲天親立廟何關天變臣等以謂 父王亦天親而遽違遺教私立廟主小人濫陞崇品而勿問敦倫之人臣意天變之作由於此也願聽臣等之言以副輿望傳曰韓權鞠之餘不聽臺諫辭職

《燕山君日記 18, 4面》

연산군 2년 9월 18일(신유)

집의(執義)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가사 성종께서 지금 상왕이 되셨다면 전하께서 반드시 가르침을 어기고 입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죽은 이 섬기는 것을 생존한 이 섬기듯 한다.’ 하였습니다. 성종께서 승하하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곧 유교를 어긴다면 어찌 옛 사람의 이른바, 그 아버이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습니까?”

하였다. 수동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폐비에게 효도를 하시려면 한결같이 성종께서 제정한 제도로 좃는 것으로 그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신(神)은 예 아닌 것을 누리지 않사오니, 만일 명호(名號)가 맞지 않는다면 윤씨의 영혼은 반드시 편안

히 누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효자가 효도를 다하는 뜻이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입주(立主)하는 일에 대하여는 결코 들어 줄 수 없다. 공신을 가자하는 일은 대간의 말이 공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다섯 사람 등을 개정하는 것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빈(濱)이 아뢰기를,

“윤민 등이 위의 뜻을 영합(迎合)하여 전하를 잘못하는 일로 빠뜨리니, 죄를 더하지 않는다면 후배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입묘·입주는 윤민 등의 말에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하였다.

○辛酉執義柳濱曰假使 成宗今爲上王殿下必不得違教而立廟古云事亡如事存 成宗昇遐未久卽違遺教豈古人所謂不死其親之意耶壽童曰 殿下必欲致孝於廢妃一從 成宗所定之制亦足以盡其誠况神不享非禮若名號不稱尹氏之靈必不安享此豈孝子盡孝之意 王曰立主事決不可聽也若功臣加資事臺諫之言公論所在五人等改正何難濱曰尹愨等迎合上意陷 殿下於過舉若不加罪無以懲後 王曰立廟立主非因尹愨等之言已與大臣議定矣

《燕山君日記 18, 6面》

연산군 2년 9월 19일(임술)

경연에 납시다.

집의 류빈은 아뢰기를,

“윤민 등을 만일 치죄(治罪)하지 않는다면 상과 벌이 밝지 못하고, 또 민의 가자역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분명한 일이오니 곧 청납(聽納)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등의 말을 믿지 않으시면, 청하옵건대 좌우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다.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치형(致亨)이 아뢰기를,

“입주·입묘의 일은 신의 의견으로는 무방하기 때문에 전의 의논에서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민의 일은 신이 무엇이 그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중략]

빈(濱)이 아뢰기를,

“근자에 대신으로 하여금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게 하시니 대신된 자가, 무릇 조정의 득실을 모두 일일이 들어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형이 지금 하문하심에, 윤민의 일을 무엇이 그른 줄을 모른다고 대답하니, 대신의 도리에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하교에 이르시기를, ‘대간의 말을 어찌 다 들을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성덕을 크게 손상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먼저

이 마음을 고집하심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신등의 말을 일일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신등이 무상(無狀)하여 천의(天意)를 돌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전후의 대간이 어찌 모두 무상하기가 신등과 같다 하여 거절을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전 인군이 요·순·우·탕보다 더한 성인이 없는데도 혹은 간함을 좇아 거스르지 않으며, 혹은 아름다운 말을 꺾지 않으며, 혹은 대중에게 물어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좇았습니다. 신하로 경계하는 말을 드리는 사람 역시 말하기를, '제 마음대로 하면 작아지고, 묻기 좋아하면 커진다.' 하였고, 혹은 '나무가 먹줄을 좇으면 바르고, 임금이 간함을 좇으면 성인이 된다' 하였고, 혹은 '말이 네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에서 구해 보고 네 뜻에 공손하면 반드시 도 아닌 데에 구해 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말로 간하는 말을 좇지 않으면 하정이 상달될 수 없어서 막히고 가리우는 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였다.[중략]

빈은 아뢰기를,

"작일 경연 때, 승지를 입시하게 명하심은 대개 정론(正論)을 청납하려 하신 것인데, 한 사람도 가부를 말하는 승지들이 없었으니, 청하옵건대 국문하소서. 또 상과 벌은 인군의 대권(大權)이라, 사람을 조종에서 상주는 것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고, 사람을 저자에서 형벌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순손(舜孫)에게는 망령되이 존대(尊大)한 체하며 군상(君上)에게 오만하다.'고만 하시면서 죄상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큰 죄로 처치하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이 추측할 수가 없는데, 상과 벌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중략]

빈(濱)이 아뢰기를,

"전하의 벽불(闕佛)하는 하교를 신료(臣僚)가 손뻑치며 하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산사의 소금은 아직도 전처럼 하고 있으니, 청하옵건대 다시 잘 헤아리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선왕조의 고사를 일조에 갑자기 고치는 것이 불가하다."

하였다. 빈이 아뢰기를,

"의무(宜茂)를 이미 추국(推鞠)하게 하였는데, 윤민(尹愨)도 국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가자도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민의 죄는 의무에 비하면 경하다. 그러나 함께 국문하게 하고 가자는 도로 거둘

수 없다.”

하였다. 빈(濱)이 아뢰기를,

“이미 내린 명이라고 하여 개정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죄가 있고 공이 없는 데도 자급을 더하니, 이것은 크게 불가한 것입니다.”

하였다. 처량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처음 민을 발탁하여 헌장(憲長)을 삼은 것은 정론을 들으려 한 것인데, 민이 맡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 자급을 도로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민이 사당 세우는 일을 그르다고 하지 않은 것은 그 심정을 직언한 것이다. 다만 정론(正論)을 휘방했기 때문에 이미 국문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자급을 도로 뺏는 것은 불가하다.”

○壬戌御經筵執義柳濱曰尹愨等若不治罪則賞罰不明且愨之加資亦當改正此是非分明之事宜卽聽納若未信臣等之言則請問于左右 王顧問左右致亨曰立主立廟臣意以爲無妨故於前議以謂可也愨之事臣未詳知某事爲非也[中略]

濱曰近者令大臣知無不言爲大臣者凡朝廷得失皆當一一陳啓而致亨今當下問答以尹愨之事未知某事爲非也大臣之道果如是乎昨日教曰臺諫之言何可盡聽此虧損聖德之大者也殿下先執此心如是故臣等之言一一拒之臣等無狀不能回天然前後臺諫豈盡無狀如臣等而拒之若此乎古之人君莫聖於堯舜禹湯而或從諫弗咈或嘉言罔伏或稽于衆舍己從人其臣進戒者亦曰自用則小好問則裕曰木從繩則正后從諫則聖曰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遜于汝志必求諸非道其所以如是者誠以不從諫言則下情不得上達而壅蔽之禍大矣[中略]

濱曰昨日經筵時命承旨專數入侍者蓋欲聽納正論承旨等無一可否請鞠之且賞罰人主之大權賞人于朝與衆共之刑人于市與衆棄之今殿下於舜孫但曰妄自尊大傲慢君上而不暴罪狀徑置大辟故外人莫測賞罰不宜如是也[中略]

濱曰殿下關佛之教臣僚莫不忭賀而洛山之塩尙且因循請更商量王曰先王朝故事不可一朝遽改濱曰宜茂已令推鞠尹愨亦不可不鞠而其加資亦當改正 王曰愨之罪較之宜茂則輕矣然并鞠之加資則不可還收也濱曰若曰已成之命而不改正則不可也有罪無功而加以資此不可之大者也處良曰臺諫之言是也其初擢愨爲憲長者欲聞正論而愨不供職事還收其資當矣 王曰愨不以立廟爲非者直言其情耳但毀正論故已命鞠之然其資不可還奪也

《燕山君日記 18, 7面》

연산군 2년 10월 1일(갑술)

경연에 납시었다. 집의(執義) 류빈(柳濱)이 입묘에 대해 의논한 사언을 써서 소매

속에서 꺼내어 아뢰기를,

“어세겸(魚世謙)이 의논하기를, ‘성종의 유교는 추숭(追崇)만을 허락지 않고, 제사는 금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교에 이르기를, ‘제사만을 받게 함으로 족하다. 특히 수묘(守墓) 2인을 두고 소재지의 관원으로 속절(俗節)에 제사 드리게 할 뿐이다’ 하였으니, 그 의논이 어찌 유교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겸의 의논에 또 이르기를, ‘대간의 말을 전하께서 추숭하실 것을 염려하여 우선 이런 예방의 의논을 한 것이라’ 하였는데, 전하께서 추숭에 대하여는 이미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살피시고 또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신 등이 어찌 추숭하실 것을 의심하여 예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극돈(李克墩)·이세좌(李世佐)는 의논하기를, ‘궁벽한 곳에 치우쳐 있어 사묘(私廟)가 된다’ 하였는데, 만일 변화한 도회 중에 있더라도 그것은 사묘가 안 되겠습니까? ‘사치스럽고 큼이 없이 한다’ ‘예절을 강등하여 제사 드린다’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간교하게 하는 말이요 정론이 아닙니다. 류지(柳輕)도 또한 이르기를, ‘영조(營造)가 다 마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대저 사당을 세울 수 있는 여부가 어찌 영조의 성취 여부에 관계되겠습니까? 이 의논은 취할 수 없습니다. 류순(柳洵)의 의논에 또한 이르기를, ‘선왕의 가르침은 이것이 그 당시 한결같이 억제하느라고 이른 것이라’ 하였는데 선왕이 이미 일정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억제하는 데에 있을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오활한 의논을 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전하의 간절 측은한 심정에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순(洵)이, 선왕이 어찌 전하께서 유교를 어기는 것을 한하지 않고 도리어 감동하실 것을 알겠습니까? 이 역시 허탄하고 망녕된 말입니다. 홍귀달(洪貴達)의 의논에는, ‘사당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변경한다면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사체의 옳고 그름은 보지 않고 오로지 사당이 이미 이루어진 것만을 중시하는 것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계동(李季叟)은, 모자간의 상도(常道)로 말을 하였으며, 윤효손은 이르기를, ‘한 나라로써 봉양하고 그 제사를 극진히 한다’고 하였는데, 신은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드리기를, ‘정례를 짐작한다.’ 하였는데, 그 이른바 정례라는 것은 애모(哀慕)를 말함이었지만,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말을 하여 위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니, 취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널리 의논하소서.”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대신이 한 사람만이 아닌데 어찌 모두 영합하는 것이며, 천친(天親)을 위하는 일을 말리는 것이 어찌 정론이 되겠는가?”[중략]

하였다. 빈(濱)은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의론이 경(卿)·사(士)에 미치고, 의론이 서인에게도 미친다’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다시 중의를 모르소서.”

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甲戌御經筵執義柳濱書立廟議得之辭出諸袖中以啓曰魚世謙議云 成宗遺教但不許追崇而不禁祭祀然遺教云但受祭祀足矣特置守墓二人所在官俗節致祭而已則其議豈合於遺教耶世謙議又云臺諫之言恐 殿下追崇而姑爲此預防之論 殿下於追崇已審其不得爲之意而且有成命臣等豈疑於追崇而預防乎李克墩李世佐議以僻在一處爲私廟若在通都之中獨非私廟耶曰無侈大曰降禮祀之皆巧爲之辭非正論也柳輕亦云營造臨畢夫廟之可立與否豈關於營造之就與不就耶此議不可取也柳洵議亦云 先王之教是當時一向裁抑而云耳 先王已有一定之制則其意豈在於裁抑耶此過爲迂濶之論又曰 殿下懇惻之情 先王在天之靈豈無感動者乎洵安知 先王不恨 殿下之違教而反感動者乎此亦誕妄之說也洪貴達議云廟已成矣今又更變於事體何此不見事體之是非而專以廟之已成爲重可乎李季全以母子常道爲言尹孝孫云以一國養而盡其祭祀臣不知所言果何謂也尹弼商議云斟酌情禮則所謂情則哀慕之謂也所謂禮者何謂也大臣之議皆曲爲之說以徇上意其不可取明矣請更廣議王曰大臣非一豈皆逢迎乎爲天親之事止之者豈爲正論[中略]

濱曰古人云謀及卿士謀及庶人請更收衆議不答

《燕山君日記 18, 16面》

연산군 2년 11월 11일(갑인)

전교하기를,

○집의(執義) 류빈(柳濱) 등이 상차(上筭)하기를,

“신등이 월령 외의 진상과 동청례(童淸禮)·고숭례(高崇禮)의 가자·승직(陞職)이 옳지 못하다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여러번 천청(天聽)을 더럽혔는데도 아직 윤택을 입지 못하니,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무릇 국가에 진공(進貢)하는 물건은 그곳에서 나는 산품에 따라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에서 아래에 취하는 것에 제한이 있고, 아래서 위에 바치는 데에 절도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탐욕·가혹하고 불법한 수령(守令)들만은 공사를 빙자하고 백성들이 받은 피해가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월령(月令)에 속하지 않은 물건을 각도에 유시해서 수와 명목도 정하지 않고서 얻는 대로 다 봉진(封進)하게 한다면 감사는 부득불 수령에게 책임지우고, 수령은 부득불 백성에게 책임지워 백성들이 받는 폐단은 전보다 배나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실상이겠습니까? 옛날 문왕(文王)은 여러 제후에게 공급을 공정히 하였으며, 당(唐) 나라의 태종(太宗)은 조집사(朝集使 : 지방 행

정을 조정에 모여 보고하는 관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토지에 따라 바치는 것이 전의 법전에 널리 실려 있는 것으로서 그 고을에서 나는 산품으로 관정(官庭)에 쌓는 물건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요즈음 들으니, 도독(都督)이나 자사(刺史)가 성명(聲名)을 내려고 그 토지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좋지 못할 것 같으면 지경 밖에 넘어가서 구하고 있고, 이것을 서로 모방하고 본받다가 드디어 풍속이 되어 그 노고와 소란이 심하니, 이 폐단을 고쳐서 다시 그러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주 나라의 문왕이나 당 나라의 태종이 평생 공납하는 일정한 수 외에는 구하지 않았으며, 그 고을의 소산이 아니면 역시 외지에 가서 구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황해감사 김자정(金自貞)이 물품을 바쳐 드리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국문하여야 마땅합니다마는, 신등이 염려하는 것은, 자정 한 사람을 국문함으로 인하여 여러 도의 감사가 이 소식을 듣고 서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폐단은 앞으로 지경 밖으로 나가서 좋은 물건을 구하게 될 것이니, 어느 겨를에 백성의 노고와 소란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마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비록 어진 마음, 어진 명망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장차 그 실지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찰(省察)하소서.

작상(爵賞)은 임금의 큰 권병(權柄)으로서, 한번 참람됨이 있으면 불초한 자들은 요행을 바라고 어질고 유능한 이는 권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동청례·고승례 등이 건주위(建州衛)에 사신으로 갔는데, 정말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귀순하여 성심으로 복종하게 하고 또 포로들을 쇄환케 하였다면 그 공을 상줄 만도 합니다. 지금 한 가지도 증험할 것이 없는데, 다만 그들의 말만을 믿고 갑자기 작상을 더한다면 신등은 관작이 참람되고 임금의 큰 권병이 경솔해질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상전(賞典)을 폐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저 사람들이 귀순하여 와서 현저하게 공적이 있기를 기다려 더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옛날 부열(傳說 : 은(殷)나라의 중신)은 고종(高宗)을 경계하기를 ‘의상은 옷 상자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韓) 나라의 소후(昭侯)는 헤어진 바지가 있었는데 잘 간직하라고 명하며 이르기 를, ‘공 있는 이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옛날 임금들이 작상을 중히 여긴 것이 이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황해감사는 국문하지 말라.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甲寅傳曰○執義柳濱等上劄曰臣等將月令外進上及童清禮高崇禮加資陞職不可等事累塵天聽未蒙允可不勝缺望臣等竊念國家凡貢進之物隨土所產定爲恒式上之取下有制下之奉上節然守令之貪酷不法者則憑公作弊民之受害固非一端况今月令不付之物下諭各道

不定數不定名隨其所得悉令封進則監司不得不責守令守令不得不責於民民之受弊倍於前昔此豈 殿下恤民之實乎昔文王以庶邦惟正之供唐太宗謂朝集使曰任土作貢布在前典當州所產則充庭實比聞都督刺史邀射聲名厥土所賦或嫌其不善踰境外求更相倣效遂以成俗極爲勞擾宜改此弊不得更然由是觀之周文唐宗不求之於常供正數之外而非當州所產則亦勿令外求今黃海監司金自貞不能供進罪固當鞫臣等竊恐鞫一自貞而諸道監司轉相驚懼其弊將至於越境外求奚暇念民之勞擾若此不已則 殿下雖有仁心仁聞百姓將不被其實惠矣伏願 殿下省察焉爵賞人主之大柄一有僭焉則不肖者僥倖而賢能不勸矣今童清禮高崇禮等使于建州衛誠能使彼人歸順納款又還虜口則功可賞也今無一驗而徒信其言遽加爵賞臣等恐官爵僭而人主之大柄輕矣 殿下若欲不廢賞典則待彼人歸順顯有功績而加之未晚也昔傳說戒高宗曰惟衣裳在筭韓昭侯有弊袴命藏之曰以待有功古之人君重爵賞如是伏願殿下亟收成命傳曰黃海道監司勿鞫餘不聽

《燕山君日記 19, 9面》

연산군 2년 12월 6일(기묘)

어세겸(魚世謙)이 의논드리기를,

“조원기(趙元紀)가 이자건(李自健)·강숙돌(姜叔突)과 서로 문답한 것은 아무런 편사(偏私)한 뜻도 없습니다. 또 대사간들이 아뢰 바도 역시 송사가 지체됨을 염려한 것이니 이것은 공의(公議)일 뿐이며 다른 뜻은 없는 것이리라 생각되니 피험(避嫌)하여야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헌부(司憲府)에서 스스로 혼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어찌 억지로 관직에 같이 있게 하겠습니까?”[중략]

하였다.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풍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간원이 이미 사헌부의 논란을 당하였으며, 이자건·강숙돌 역시 본부(本府)와 의사가 같지 않으니, 지금 각각 피험하는 것은 형제가 서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급급한 일이 아니며 또 이자건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류빈(柳濱)과 곽종원(郭宗元)이 이자건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것 역시 동료간에 함께 의논한다는 것은 사체를 상실하였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함께 바꾸는 것이 편하다고 하겠습니다.”[중략]

하였다. 장령 이자건·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당초 정언 조원기는 정숙지(鄭叔墀)가 출사(出仕)함이 합당한지 그 여부를 신등에게 물어 왔으므로 신등은 가하다고 하였는데, 류빈과 곽종원이 신등과 같이 의논하지 않고 간원을 공격하였으니 신등은 공격하는 의사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피험하는 까닭이니 전교가 이러하다 하더라도 단연코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己卯魚世謙議趙元紀與李自健姜叔突相問答頓無偏私之情而大司諫等所啓亦慮滯訟此公議耳恐無他情不必避嫌但憲府自作釁隙豈可強使同官乎[中略]

成俊議臺諫相攻實非美風然諫院既爲憲府所論李自健姜叔突亦不與本府同意今各避嫌勢不相容但此非急急之事且非李自健等所不得與聞之事而柳濱郭宗元不與自健等議啓亦失同僚同議之體臣意以謂俱遞之爲便[中略]

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啓當初正言趙元紀以鄭叔擥出仕當否問于臣等臣等以爲可柳濱郭宗元等不與臣等同議以攻諫院則攻臣等之意在其中此臣等所以避嫌也雖傳教如是斷不可就職不聽

《燕山君日記 20, 2面》

연산군 2년 12월 8일(신사)

경연에 납시었다. 집의(執義)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김효강(金孝江)의 일은 수의(收議)할 필요 없이 단연코 죄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한 환관을 아껴서 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종조로부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 도리어 마음대로 아된다고 그에게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김효강이 암암리에 봉안역(奉安驛)의 노비(奴婢)를 선두안(宣頭案)에 기록하였으며, 장례원(掌隸院)에서 마침 노비를 선별하는 데도 김효강이 또 해당 관청과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에 아뢰어, 사후에야 법을 쓰게 까지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환관과 화는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이루어진 것으로서, 뿌리가 박히고, 점점 물들고, 젖어 들어가게 되면 비록 밝은 인군이라도 반드시 모두 믿고 들어주어서 끝내는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온전히 죄 주기를 청합니다. 지금 이를 의논한다 하더라도 누가 죄 주는 것이 불가하다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그를 죄 주려 한다. 그러나 김효강은 공신인데 지금 만일 죄 준다면 어찌 공신을 위하는 것이겠는가?”[중략]

하였고,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환관은 조석으로 가까이 모시면서 인군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 거기에 영합하니 밝은 인군이 아니면 그 말을 믿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일찍이 도모하소서. 대저 간신이나 환관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며 뜻을 맞추어 충애를 굳히고 인군이 그 술수 중에 빠지게 하고야 마는 것이니 위엄있게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말하는 것은 지당하다. 그러나 노비를 내수사에 소속시키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봉안역(奉安驛)에 소속시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손실이 될 것인가? 다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근자에 선전관(宣傳官)의 활쏘기를 시험하여 자품을 더하기도 하며 말을 하사하기도 하니 그 무비(武備)에 대하여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학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종께서는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하여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하였는데 흉년으로 인해 임시로 과하였으니 지금 다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속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지금 노사신(盧思愼)의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만을 갈고 노공필(盧公弼)의 직위를 갈지 않았는데,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소임을 가는 것은 사체에 방해가 있을 듯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아 한 것이다. 또 말하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말기지 마는 것이다. 이미 말기고서 다시 의심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였는데,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말하면 원래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논하면 아래 있는 자를 갈아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의논을 모으게 하였으니, 여러 의논을 보아서 알려주게 하겠다.”

고 하였다.

○辛巳御經筵執義柳濱曰金孝江事不必收議斷可罪也 王曰予非惜一宦而不罪但自祖宗朝有前例既有前例而今反以擅啓而罪之無乃不可乎濱曰孝江暗錄奉安驛奴婢于宣頭案掌隸院時方分揀而孝江又不由該司政院而擅啓至立後法自古宦寺之禍非出於一朝乃積成其漸以至根據漸染浸漬雖明君必皆信聽而終至於不能制也此非小事請全科罪之今雖議之誰曰不可罪乎 王曰觀諸議皆欲罪之然孝江功臣今若罪之安在其爲功臣也[中略]

濱曰宦寺朝夕近侍揣摩人主之意而逢迎之自非明主鮮有不信請早圖之大抵奸臣宦寺從上所好逢迎固寵使人主陷於術中而後已請加威斷 王曰所言至當然奴婢屬內需司於予何裨屬奉安驛於予何損但有前例故不之罪耳壽童曰近者試宣傳官射或加資或賜馬其於武備可

謂至矣然文學不可不留意 成宗選年少文臣賜暇讀書尋以年險權罷今可復行 王曰其速行之濱曰今只遞思慎軍器提調而已不遞公弼之職以子之故遞父之任於事體有妨 王曰已收衆議而爲之且任則勿疑疑則勿任旣任之而復疑之無乃不可乎濱曰任則固當勿疑以法論則在下者當遞 王曰已令收議當觀諸議而報之

《燕山君日記 20, 3面》

연산군 2년 12월 13일(병술)

경연에 납시었다. 왕이 물어 이르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근거 없는[無稽] 말을 듣지 않고, 묻지 않은[弗詢] 모계를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근거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중략]
 하였다. 정언(正言) 남곤(南袞)이 김효강(金孝江)의 일을 논계(論啓)하니, 왕이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한 편으로 하며, 과오로 범행한 것은 크더라도 반드시 용서하는 것인데 이 일은 과오이고 또 전례가 있으며, 또 이미 태장 40에 처하였으니, 그를 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어찌 반드시 형장 1백에 처한 후에야 만 치죄(治罪)가 될 것이냐?”[중략]

하고, 집의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이것은 과오가 아니라, 믿고서 두 번 하는 것[怙終]이니, 쾌히 결단하여 상과 벌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만일 굳이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종사(宗社)의 복이 아닐까 합니다. 김효강이 행한 바는 마치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指鹿 爲馬]하며 인군의 뜻을 알아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김효강의 일은 원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것과 같지 않다. 내수사(內需司)의 판부(判付 : 건의안의 허가)는 이미 전례가 있었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일인즉 다르지만 환관으로서 위의 뜻을 알아 보려는 것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고,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조고는 죄가 있어 죽었어야 했는데도 놓아 주고 처벌하지 않아서 마침내는 그 술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김효강을 죄 주지 않는다면, 후일 조고의 화가 있지 않으리라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이것은 조짐이 아니라 지금 벌써 거리낌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성종조에 거짓으로 왕의 전지를 전한 것은 그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기 때

문에 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전례를 따른 것이고, 일이 발생한 데는 사정(私情)이 없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이것은 거짓으로 전지를 전한 것보다도 더욱 심합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이에 우연히 착오를 가져온 것이라면 혹 사정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니, 반드시 그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국법은 어찌 환관이 마음대로 만들겠습니까? 신은 환관이 조석간에 있을까 두려워 합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丙戌御經筵王問曰書曰無稽之言不聽弗詢之謀勿用所謂無稽者何也[中略]

正言南袞論啓金孝江事 王曰罪疑惟輕過誤所犯雖大必宥此正過誤而又有前例且已加笞四十非不罪之也豈必加杖一百然後爲治罪也[中略]

執義柳濱曰此非過誤乃怙終也請快斷以明賞罰若固拒不聽則恐非宗社之福孝江之所爲正如趙高之指鹿爲馬以揣君意也 王曰孝江之事固不與指鹿爲馬同也內需司判付已有前例袞曰事則雖異其宦寺擅探上意則不異濱曰趙高有罪當死釋不之罪竟行其術今亦不罪孝江則安知後日不有趙高之禍袞曰此非漸也今已放肆王曰 成宗朝詐傳 王旨罪當死矣故不得不罪此則特因前例而事出無情袞曰此則尤甚於詐傳彼則言語間偶致誤錯或有無情此則故犯必有其情濱曰國法豈宦寺所得擅立耶臣恐患在朝夕矣王不答 《燕山君日記 20, 11面》

연산군 3년 1월 4일(병오)

전교하기를,

○대사헌 구치곤(丘致峴)과 집의 류빈(柳濱)·장령 이자건(李自健)·지평 강숙돌(姜叔突) 등이 아뢰기를,

“신계원(愼繼源)은 전에 창녕(昌寧)·진천(鎭川)·죽산(竹山)에 부임할 때에는 늙은 어미가 있으면서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포(金浦)에 가는 것은 3백 리 안에 있으니 법대로 부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를 시켜 글을 올려 말씀 드리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포가 쇠잔한 고을이기 때문에 피하기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올린 것을 해조(該曹)에 내려 보내지도 않고 특명을 내려 경직(京職)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하, 근본을 바로 잡으려는 첫 단계에는 무슨 일이나 바른대로 하여야 할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김효강(金孝江)은 제 마음대로 아뢰어 법을 만들었으니 그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였다.

○丙午傳曰○大司憲丘致崐執義柳濱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等啓慎繼源前任昌寧鎮川竹山時雖有老母不辭今爲金浦在三百里內法當赴任教母上言此無他以金浦爲殘邑而窺免也其上言不下該曹而特命換京職 殿下正始之初事事當出於正不可以私恩示之也金孝江擅啓立法請治罪

《燕山君日記 21, 2面》

연산군 3년 10월 6일(갑술)

○류빈(柳濱)을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으로, 남세주(南世周)를 교리(校理)로, 신복의(辛服義)를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한치례(韓致禮)를 도총관(都摠管)으로, 한충인(韓忠仁)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로, 구전(具詮)을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甲戌○以柳濱爲弘文館典翰南世周校理辛服義司憲府持平韓致禮都摠管韓忠仁嘉善同知中樞府事具詮慶尙左道兵馬節度使

《燕山君日記 28, 2面》

연산군 3년 10월 18일(병술)

○전한(典翰) 류빈(柳濱) 등이 아뢰기를,
 “15일에 차자(笏子)를 올리어 경연(經筵)에 납시기를 청하오니, 전교하시기를 ‘무(武)를 사열한 후에 나가겠다.’ 하셨는데, 오늘도 또 정지하시니, 세월이란 쉽게 가는 것입니다. 밝음을 잇는[緝熙] 공부를 닦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명일에 나가겠다.”
 하였다.

○丙戌○典翰柳濱等啓十五日上笏請御經筵教曰閱武後當御之今日又停歲月易逝緝熙之功其可不修乎傳曰明日當御之

《燕山君日記 28, 12面》

연산군 4년 1월 5일(신축)

○이계동(李季同)을 병조 판서로, 김응기(金應箕)를 호조 참판으로, 권경우(權景祐)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표연말(表沿沫)을 겸동지 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로, 홍한(洪澣)을 이조 참의로, 류빈(柳濱)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홍식(洪湜)을 전한(典翰)으로, 이점(李坫)을 사간원 사간으로, 류순정(柳順汀)을 헌납으로, 남곤(南袞)을 홍문관 수찬으로, 신공제(申公濟)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辛丑○以李季全爲兵曹判書金應箕戶曹叅判權景祐司憲府大司憲表沿沫兼同知成均館事洪澣吏曹叅議柳濱弘文館副提學洪湜典翰李坫司諫院司諫柳順汀獻納南袞弘文館修撰

申公濟副修撰

《燕山君日記 29, 3面》

연산군 4년 2월 13일(기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빈(柳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

“작년 선릉(宣陵)의 곁에 절을 창건하려 하다가 조정에서 굳이 논쟁하므로 역사를 파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지금에 또 목재와 석재를 수집하여 그 역사를 도로 하시려 하시니, 이 어찌 교령(敎令)의 반복이 이다지도 심하십니까? 신 등은 소망에 결여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성종 대왕께서 이교(異敎)를 통렬히 배척하여 새로 창설한 절을 허시고 도승(度僧)의 법을 파했습니다. 그리고 자전(慈殿)의 분부가 진지하셨는데도 조용하게 익히 간함으로써 마침내는 개오(開悟)되어 양궁(兩宮)께서도 도승(度僧)을 금하는 법을 행하여 금석(金石)과 같이 굳건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맨 먼저 불교를 물리치는 교명(敎命)을 내리시어, 무릇 듣고 보는 자들이 모두 전하께서 계지(繼志)·술사(述事)를 잘하신다 하였으니, 어찌 능(陵)의 흠이 겨우 마르고 어묵(御墨)이 상기 새로운데, 갑자기 초지를 변하여 이러한 누(累)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하였습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대비(大妃)께서 분부를 내리신 것이므로 나오는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지만, 한 나라 정사가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모였사온대, 선왕의 뜻을 어기고 사찰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일도 이보다 클 수는 없는데, 전하께서 대비께 핑계대고 홀로 과실 없는 땅에서 계시려 하옵니까? 대비께서는 전하에게 삼종(三從)의 의(義)가 있는데, 어떻게 토목(土木)의 역사를 크게 일으켜 원릉(園陵)을 진동하게 하면서 전하를 모르게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아셨으면 더우기 아버지의 명명을 따르는 것으로 효삼아서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시면 아니 됩니다.

지난 해에 역사를 할 때에는 전하께서 능히 간해서 정지를 하게 하여 성효(聖孝)를 나타내셨는데, 어찌하여 금년에만 간하지 못하옵니까? 만약 ‘지금의 이 역사가 고사(古寺)를 중수하는 것이므로 지난번 새로 짓는 것과는 다르다’ 하신다면 신 등이 그 절의 신·구와 역사의 크고 작은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교(異敎)를 숭상하고 선왕의 뜻을 위배하여 성상에게 누(累)가 되는 것은 한 가지오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성심으로써 간하기를 성종께서 양궁(兩宮)에게 하시듯이 하여 무익한 역사를 파하시고, 대효(大孝)를 보전하시오면 종묘 사직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己卯○弘文館副提學柳濱等上劄曰去年將營殺宣陵之傍因朝廷固爭罷役未幾今又鳩集木石旋復其役是何教令之反覆至此極也臣等不勝缺望 成宗大王痛斥異教毀新創之寺罷度僧之法雖慈旨繾綣從容熟鍊卒能開悟兩宮行禁度之法堅如金石 殿下卽阼之初首下關佛之教凡在見聞咸謂 殿下善於繼述豈意陵土纔乾御墨尙新而遽移初志有此累舉乎 殿下雖曰大妃有教無關於我一國之政皆叢于 殿下 一身違先志營寺刹事孰有大於此者而 殿下欲諉之於 大妃獨立於無過之地乎 大妃於 殿下有三從之道安有大興土木掀動園陵而使 殿下不知乎 殿下旣知之又不可以從親之令爲孝而不恤其陷親於不義也前歲之役 殿下旣能諫而止之以昭聖孝顧於今年獨不能諫耶若曰今是役也重修古寺異乎前之新創則臣等非論其寺之新舊役之巨細其爲崇異教違先志以累聖躬則一也伏願 殿下誠心以諫如成宗之於兩宮罷無益之役以全大孝 宗社幸甚不聽 《燕山君日記 29, 6面》

연산군 4년 2월 23일(기축)

왕은 경연(經筵)에 납시어 강목(綱目)을 강했는데, 양병(楊秉)이 상소(上疏)한 대문에 이르니, [중략]

참찬관(參贊官)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공채(公債)를 수납하고 분배하는 수효가 수령(守令)의 해유(解由)²¹⁷와 관계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 얼른 상납(償納)하지 못하면 이웃과 마을에서 징수하게 되므로 족친(族親)들이 또한 견디지 못하여 도산(逃散)하고 절호(絶戶)된 자가 자못 많사오니,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절호(絶戶)된 공채는 탕감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己丑御經筵講綱目至楊秉上疏[中略]參贊官柳濱曰公債歛散之數關守令解由故貧民未能償納則徵於隣里族親亦不能支逃散絶戶者頗多民之冤抑何可勝言其絶戶公債蠲減何如

《燕山君日記 29, 8面》

연산군 4년 3월 7일(계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빈(柳濱)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효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철마다 생각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로(霜露)가 내리면 반드시 처창(悽愴)한 마음이 있게 되고, 우로(雨露)가 적시면 반드시 출척(愴惕)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장차 비올 것 같은 데도 끝내 얻어 뵈지를 못하니, 효자의 정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까. 필부(匹夫)도 오히려 그

217) 관아의 물품을 맡아 관리하던 관리가 갈릴 때에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면하는 일.

러하거든 하물며 임금이리까. 전하께서 성종을 계승하여 위(位)에 나아가 예를 행하신 것이 지금 4년이 되었으니, 종신토록 사모하시는 정은 깊은 궁궐에서 일 없이 한가히 계실 때라도 조금의 이해함이 없으실 터이온데, 하물며 원묘(原廟)에 제사지내느라 주선하시고 승강(升降)하실 적에는 숙연히 그 용모와 성음을 보고 듣는 듯할 것이요, 전하께서 어떻게 마음을 진정하시겠습니까? 역시 그 뜻을 생각하여 감히 잊지 못하실 것이 아니옵니까?

무릇 의(誼)를 바르게 하고 도(道)를 밝히며 이교(異教)에 혹하지 않는 것이 성종의 뜻이라서 축수(祝壽)의 재(齋)도 파하시고 도승(度僧)의 법을 금하고 불에 아첨하는 유자(儒者)들을 내쳤습니다. 이어서 책(策)에 써서 천조(天朝: 명나라)에 시호를 청했고, 현궁(玄宮: 임금의 재궁(梓宮)을 묻은 광중(壙中))에 지식(誌石: 죽은 사람의 이력을 써서 무덤 앞에 묻는 판석(板石))을 묻었으니, 이는 바로 26년 동안 실록(實錄)이 옮겨져 전하께서 어떻게 차마 등지시고 사(邪)에 따르십니까? 그 평일에 있어서는 비록 대비(大妃)의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여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친히 관(灌)하는 즘에 성종을 생각해도 뵈지 못하니 성종 평일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도 잘 계승하지 못하고 구차히 모후(母后)의 뜻만을 따라서, 신도(神道)는 고요를 숭상하는데 그 땅에 사찰을 건립하시면 어찌 대효(大孝)라 이르리까. 바라옵건대 빨리 그 역사를 파하여 선왕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癸卯○弘文館副提學柳濱等上劄曰孝子之思親無時焉不思故霜露既降則必有悽愴之心雨露既濡則必有怵惕之心如將見之而終不可得見則孝子之情寧有既耶匹夫猶然況人主乎殿下繼體 成宗踐位行禮四年于茲終身之慕雖在深宮燕間之間有不容少懈者况薦祀 原廟周旋登降肅然若有聞乎其容聲則不知天衷何以爲心盍亦思其意而不敢忘乎夫正誼明道不惑異教 成宗之志也所以罷祝壽之齋禁度僧之法黜佞佛之儒之類繼書于策以之請諡于天朝以之納誌于玄宮斯乃二十六年之實錄也 殿下其忍背之而從於邪耶其在平日縱不能違 大妃教有不暇念當親灌之際思 成宗而不見則其可不思平日之志耶思其志而不以善繼苟徇 母后而起刹於神道尚靜之地則其可謂之大孝耶伏望亟罷其役以成 先王美德不聽

《燕山君日記 29, 10面》

연산군 4년 3월 15일(신해)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빈(柳濱) 등이 아뢰기를,

“성종께서 이단(異端)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비단 조정 신하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는 친히 보신 바입니다. 지금 강제로 불당(佛堂)을 짓는

것은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선왕의 일을 기수하는 본의가 아니오니 청컨대 빨리
정지하도록 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나.

○辛亥弘文館副提學柳濱等啓 成宗不好異端非徒廷臣皆知之 殿下所親見也今之強營
佛宇非繼志述事之意乞速停之不聽 《燕山君日記 29, 11面》

연산군 4년 6월 13일(무인)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빈(柳濱)이 차자(笏子) 올리기를,

“성종(成宗)께서는 어린 나이에 경학(經學)에 뜻을 독실히 두어 비록 깊은 겨울,
성한 더위라도 잠시도 폐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여 뜻을 계승하
시어 비록 창잠(昌歎 : 창포로 담그는 김치)을 즐기는 것이라도 능히 말 수 없거늘,
하물며 학문을 부지런히 해서 만세 치화(治化)의 근본을 개척하는 것임이겠습니
까? 접때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더운 철에는 경연(經筵)을 철폐해야 하겠다’ 하
였아온데, 그옥이 생각하면, 육 칠월 사이가 비록 더운 철이라 말하지만, 아침
에는 밤기운이 흩어지지 아니하오니, 비록 선비를 가까이 하시고 바른 말을 들
으시면 마음이 썩썩하고 기운이 숙여하여 죽히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경들이 성종의 고사를 끌어다가 말하는 것은 미
편할 듯하다. 무릇 사람이 천지의 기운을 받을 적에 강약이 다르다. 나는 못이겨
서 경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戊寅弘文館副提學柳濱等上笏曰 成宗幼年篤志經學雖隆冬盛夏暫不休廢今 殿下踐
位繼志雖昌歎之嗜有不能已況勤學好問以開萬世治化之本乎頃者教曰暑月當輟經筵竊意
六七月之間雖名署月而朝則夜氣未散近正士聞正言心莊氣肅足以忘暑傳曰何不早言之耶
卿等引 成宗故事爲言似未便也夫人受天地之氣有強弱之異予病暑不得御經筵耳

《燕山君日記 29, 21面》

연산군 5년 4월 3일(임진)

함경도 절도사(咸鏡道節度使) 류빈(柳濱)이 치계(馳啓)하기를,

“야인 20여 기(騎)가 삼수군(三水郡)을 침범하여 거민 7명을 살해하고, 남녀
33인과 우마(牛馬) 10여 마리를 노략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일 구성(具誠)을 모두 처벌하였으되 오히려 징계가 되지 않고 변방의 환란이
이와 같이 끊어지지 않으니, 웬일인가? 이는 반드시 방어를 소홀히 한 때문일

것이므로 한 사람을 엄중히 징벌하여 경계코자 하니, 대신 및 변경의 일을 잘 아는 재상과 병조 당상 등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정미수(鄭眉壽)가 아뢰기를,

“이는 대사이니, 반드시 널리 물어야 합니다. 소위 변방의 일을 안다는 재상은 다만 그 도의 일만 알고 대체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대저, 사체를 아는 자는 비록 목격하지 아니하였을 지라도 일을 요량하면 반드시 적중하게 되오니, 청컨대, 의논할 만한 재상을 특별히 선출하여 의논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를 선출하여 무릇 대사가 있으면 특별히 불러서 함께 의논하겠다.”

하였다. 드디어 이극돈(李克墩)·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박건(朴健)·신수근(愼守勤)·박안성(朴安性)·신준(申浚)·류순(柳洵)·성현(成愼)·강귀손(姜龜孫)·홍귀달(洪貴達)·이계동(李季叟)·윤효손(尹孝孫)·박송질(朴崇質) 등을 선출하여 아뢰기를,

“오늘날 변방의 일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壬辰咸鏡道節度使柳濱馳啓野人二十餘騎寇三水郡殺居民七人虜男女三十三牛馬十餘而去傳曰近日具誠皆已抵罪而猶不懲戒邊患如此不絕何耶必防禦疎虞之故也欲大懲一人以警之其令議于大臣及知邊事宰相兵曹堂上等承旨鄭湄壽啓此是大事必當廣詢所謂知邊事宰相只知其道之事不知大體者有之大抵知事體者雖非目覩而料事必當請別選可議宰相與議王曰其選之凡有大事特召共議遂選李克墩李克均李世佐朴健愼守勤朴安性申浚柳洵成愼姜龜孫洪貴達李季叟尹孝孫朴崇質等以啓曰今日邊事請令與議傳曰可

《燕山君日記 33, 1面》

연산군 5년 4월 21일(경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병조가 아뢰기를,

“류빈(柳濱)이 사직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빈은 나이 젊고 병이 없으니, 이는 병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도의 삼수군민이 많은 노략을 당하게 되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직코자 함이오니, 청컨대, 전일에 갔던 경차관으로 하여금 절도사와 삼수군수를 아울러 추국하여 계문(啓聞)하기를 기다려 처벌하도록 하소서. 또 평안도에서 벤 적의 머리가 비록 적기는 하나 적

을 추격한 군사는 다만 20명인데, 고군(孤軍)으로서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적의 머리를 베게 되었으니, 벤 바는 비록 적을 지라도 그 공을 보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군공을 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빈은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시행하고 이어서 석의(石義)에게는 호전(號箭)·편전(片箭) 각 1부씩을 더 사급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변방을 방어한 자이니, 또 아마(兒馬) 1필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庚戌御經筵○兵曹啓柳濱辭職臣等謂濱年少無疾非以病辭必以其道三水郡民多被擄掠恐不堪任故欲辭耳請令前去敬差官并鞫節度使三水郡守待其啓聞而罪之且平安道所斬賊首雖少然追賊之軍只二十人以孤軍深入賊地得斬敵首所斬雖少其功不可不酬請論軍功傳曰濱依所啓仍加賜石義虎箭片箭各一部傳曰此人乃邊方防禦者其又給兒馬一匹

《燕山君日記 33, 3面》

연산군 5년 5월 9일(무진)

함경남도 절도사(咸鏡南道節度使) 류빈이 치계하기를,

“피적(彼賊 : 야인을 지칭) 50여 기가 삼수군 감파리(甘坡里)를 침범하여 남녀 4구(口)와 소 2마리를 노략하여 갓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적이 여러 번 우리의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니, 어떻게 처리할 까를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저들이 작폐하여 마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토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문죄(問罪)하는 군사는 경솔히 일으킬 수 없고 또한 지금 그리할 시기가 아닙니다.”[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전일에 의논한 재상 및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재상으로 하여금 회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정문형·한치형·성준·이극균·변종인·이계동·여자신·권건·신부·이감이 의논드리기를,

“대거하여 문죄하는 것은 대사이므로 경솔하게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욕을 당하

였으니, 어찌 말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랑캐의 지역은 진 데가 많으므로 오직 11월에서 정월까지 얼음이 얼어 군사를 행할 만한 때이니, 마땅히 미리 기회를 정하고, 또한 주장(主將)을 먼저 정해야 하며, 주장이 정해지면 모든 군무에 관한 일은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를 거행하려면 마땅히 연사의 풍흉을 보아야 하고 또한 먼저 대신을 파견하여 삼수로부터 평안도 변진(邊鎭)에 이르기까지 순시하여 방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고 혹은 배를 만들어 정벌하려는 뜻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대병(大兵)이 장차 조석간에 이를 것이라고 의심하여 농사도 지을 수 없어 곤경에 이르게 하고, 이러한 기회를 타서 그 죄를 가서 치되, 그들의 소굴을 불태워 버리고 쌓아 둔 곡식을 훔쳐 그 생활할 방도를 끊어버리면 저들도 반드시 자복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서 정벌하는 일은 아뢰는 대로 하고, 주장도 또한 지략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아뢰라. 다만, 순변사(巡邊使)에 있어서는 나의 얕은 생각으로는, 지난번 북정(北征)할 때에 선성(先聲)이 이미 저들에게 들렸으므로 저들이 모두 도망하여 대거(大舉)하였다가 공을 세우지 못하고 한갓 군사들만 괴롭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만약 먼저 순변사를 보내고 배를 만들어 위엄을 보인다면 저들이 반드시 장차 정벌하리라는 뜻을 먼저 알고 멀리 눈이 깊은 곳으로 피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비록 대병을 일으킬지라도 수고만 하고 공이 없을까 염려된다.”

하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처음 뜻으로는, 연사의 풍흉을 예측할 수 없고 토벌하는 것도 기필하기 어려우니, 만약 순변사를 보내어 위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들이 더욱 우리를 가볍게 여길까 하였는데, 지금 상교(上敎)를 받자오니, 실로 운당합니다.”

하였다. 성준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비록 나이 많기는 하나 이는 실로 중대한 일이니, 경이 아니면 누가 가서 치겠소.”

하매, 준이 아뢰기를,

“신은 늙고 병이 있으니, 청컨대, 중신으로써 부장(副將)을 시켜 주옵소서.”

하니, 명하여 이극균을 부장으로 삼게 하였다.

○함경남도 절도사 류빈이 치계하기를,

“야인이 또 삼수 경내를 침범하여 우리의 변민(邊民) 7구(口)를 사로잡으므로, 우리 군사가 소선(小船)을 타고 추격하다가 배가 뒤집혀 4인이 익사하고, 야인의 수급(首級) 하나를 베었습니다.”

하니,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戊辰咸鏡南道節度使柳濱馳啓彼賊五十餘騎寇三水郡甘坡里虜男女四口牛二頭而去傳曰賊屢犯我邊虜掠人畜何以處之其議之尹弼商議彼人等作耗不已是不有我也不可不討然問罪之師不宜輕舉且今非其時也[中略]

如傳曰復令前議宰相及知邊事宰相會議尹弼商鄭文炯韓致亨成俊李克均卞宗仁李季全呂自新權健申溥李堪議大舉問罪此是大事不可輕易爲之也然旣已受辱焉可已也但胡地多泥淖處惟冬十一月至正月冰堅可以行師之時也當預定期會而亦當先定主將主將旣定則凡干軍務以爲已任而措置之矣然欲舉大事當觀歲之豐歉且先遣大臣自三水巡至平安道邊鎮申嚴防備或造船以示徃征之意使彼疑大兵將至於朝夕不得耕耘以至困弊因棄此機徃征其罪焚蕩巢穴散其積穀絕其生理彼必自服矣傳曰徃征事依所啓而主將亦擇其有智略者以啓但巡邊使則予之淺計以爲曩者北征之時先聲已聞於彼故彼皆逃散大舉無功徒爲勞師而還令若先遣巡邊使造船示威則彼必先知將伐之意遠避於雪深之處矣如是則雖舉大兵恐其徒勞而無功也弼商等啓臣等初意以爲年之豐歉未可預占而徃征難必若不遣巡邊使以示威則彼益輕我也今承上教實爲允當傳于成俊曰卿雖年深此實重事非卿誰徃征之後啓臣年老有病請副以重臣命以李克均爲副○咸鏡南道節度使柳濱馳啓野人又寇三水地面虜我邊民七口我軍乘小船追逐舟覆四人溺死斬野人首一級命議之

《燕山君日記 33, 5面》

연산군 5년 5월 12일(신미)

우의정 성준·좌찬성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 등을 서정 장수(西征將帥)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국가가 야인들에게 욕을 당한지 여러 차례이므로 조정에서 모두 통분(痛憤)하니, 성상의 진려(軫慮)가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 등이 명령을 받든 날에 감히 늙고 병든 것으로서 사양치 못하였습니다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서정(西征)은 북정의 예와는 다르다고 여깁니다.[중략]

평안·함경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서적(西賊)이 여러 번 우리 변경을 침범하므로 마땅히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여야 한다. 적이 만약 이러한 거사가 있는 것을 들으면 장차 도망하여 깊이 숨거나, 혹은 설비를 하여 항거할까 심히 염려되므로 이 기밀을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처참(處斬)하고 그 처자는 종으로 삼으며, 그러한 자가 있어도 검거하지 못하는 진장(鎭將)은 추고(推考)하여 파직하고, 관찰사와 절도사도 또한 중죄로 논할 터이니, 경은 잘 알아 두라.”

하고, 또 함경도 관찰사·북도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내의 변장들이 서로 진을 떠나 떼를 지어 술을 마신다’ 하니, 내가 심히 놀랍게 여긴다. 방어하는 도리는 마땅히 군대를 통어하여 계엄하

기를 항상 적이 닦친 것같이 해야 하는데, 어찌 안일에 져서 방비를 잊어버리고 날로 놀고 마시기를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경은 마음을 써서 검거하여 구습대로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중략]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죄인들이 재차 삼수를 침범하여 이득이 있었으므로 잇달아 작폐하여 그 형세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하물며 지금 김득광(金得光)의 통서(通書) 안에, ‘심제중거(沈諸衆巨)와 이피선로(李彼先老) 등 2백 명이 장차 삼수·갑산을 침범하리라’는 말은 헛말이 아닌 듯하오니, 빨리 사리에 익숙한 재상을 보내어 그 방비와 섬멸의 방책을 상세히 조치하도록 하고, 류빈이 아뢴 민호(民戶)의 철거에 관한 편부도 또한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함이 어떠하옵니까?”[중략]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류빈이 아뢴 적변은 지극히 염려되니, 그 어면(魚面) 등처에는 축성하여 보루(堡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설치하지 못한 동안에는 일체 거민을 내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온편하옵니다.”[중략]

하니, 전교하기를,

“전임은 잔혹(殘酷)한 사람이 아닌가?”

하매, 성준이 아뢰기를,

“임은 잔혹한 사람이 아니라, 청렴개결하고 무재가 있으니,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변종인을 순번사로 임명하도록 명하였다.

○辛未右議政成俊左贊成李克均啓以臣等爲西征將帥今者國家受辱於野人屢矣朝廷皆焉痛憤聖上之軫慮豈偶然哉以是臣等受命之日不敢以老病爲辭臣等謂西征非北征之例[中略]

○諭平安咸鏡道觀察使節度使曰西賊屢犯我邊當舉兵以討虜若聞有此舉將逃竄深匿或設備以拒甚可慮也有洩此機當處斬妻子爲孥其不能檢舉鎮將推考罷黜觀察使節度使亦當重論卿其知悉又諭咸鏡道觀察使北道節度使曰人言道內邊將互相離鎮群飲予甚驚焉守禦之道當勒兵戒嚴常若敵至豈可狃安忘備日事遊飲乎卿其用心檢舉毋使因循[中略]

○尹弼商議彼人等再寇三水得利陸續作耗其勢已成至爲可慮況今金得光通書內沈諸衆巨李彼先老等二百名將寇三水甲山之言似不虛矣亟遣鍊事宰相其防備勦殺之策詳加措置柳濱所啓民戶撤去便否亦令審檢以啓何如[中略]

成俊議柳濱所啓賊變至爲可慮其魚面等處不可不築城設堡也未設間一應居民移置內地爲便[中略]

傳曰田霖無乃殘酷人耶成俊啓霖非殊酷有廉介武才不可不用命以卞宗仁爲巡邊使

연산군 6년 1월 9일(갑자)

○좌승지 권주(權柱)가 아뢰기를,

“전일에 정승들이 아뢰기를 ‘근래 평안도에 적변이 그치지 않으니 특별히 권도(權道)를 따라서 서쪽 길을 열고 야인(野人)의 왕래를 허락하여 변방 경계를 쉬게 한 후에 지경이 명(明)나라에 접하여 저 곳 사신의 왕래하는 길이 된다고 하면서 다시 막으면 계책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길을 열어 놓고 후에 다시 막는다면 그 원망이 전보다 배나 되겠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물어야 합니다.”

고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의 말이 내 뜻에 꼭 맞는다. 조종조에서도 폐해가 있어서 막은 것이다. 의논해 보라.” 하였다.[중략]

이계동(李季叟)·권건(權健)·이거(李据)·류빈(柳濱)은 의논드리기를,

“옛부터 오랑캐를 대하는 것은 정벌이 아니면 화친입니다. 지금 정부가 아뢴 것은, ‘평안 한 도의 병력이 피폐하고 군수(軍需)가 결핍되어 병력을 동원할 시기가 아니니, 청하읍건대 서쪽 길을 열어 주어 우선 변방 우환을 늦추소서’ 하였습니다. 그 계책이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도에는 인가가 적고 관역(館驛)이 쇠잔하여 이편의 위엄을 보이는데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것 역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종조에서 일찍이 시험하고서도 끝내 수행하지 못한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한 번 열어 놓으면 여러 야인들이 모두 변방 문을 열어 달라고 할 것인데, 만일 다 들어 주지 못한다면 원망이 반드시 배나 될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정벌하여 위엄을 보이지 못하고 또 위무하여 회유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믿어서 견고하게 할 것이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조종조에서 압록강(鴨綠江)을 따라 장성(長城)을 쌓았는데, 만포(滿浦)에서 시작하여 창성(昌城)에서 그쳤습니다. 근래 조정에서 유의하지 않아, 거의 다 무너져서 적기(敵騎)로 하여금 단숨에 몰아 들어오게끔 되었습니다. 지금 수축하는 수고로움은 창성 이하에서 새로 쌓는 공이 창설에 비하여 크게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출동시켜 이 큰 역사를 완성하고 정장(亭障 : 초소)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후망(候望)을 조심하여 한다면 만세토록 미덥게 견고할 것이니, 그 이(利)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경변사(警邊使) 이극균(李克均)이 오래도록 서쪽 국경에 있어 그 곳 형세를 잘 알 것이니, 그것들을 건치(建置)하는 방략을 잘 헤아려서 알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라.” 하였다.

○甲子○左承旨權柱啓前日政丞等啓近來平安道賊變不止特從權宜開西路許野人往來以息邊警然後托以境連上國天使往來之路而復塞之則於策爲當臣意以謂今也開路而後復塞之則其怨倍昔不可不博採群議也傳曰承旨之言正合我意 祖宗朝亦因有弊而塞之其議之 [中略]

李季全權健李瑠柳濱議自古待戎非征則和今政府所啓以平安一道兵力刑弊軍需匱乏用兵非其時請開西路姑紓邊患其策似得然本道人烟尠少館驛凋殘非惟不合於示威供頓亦必難支 祖宗朝嘗試之終不果豈非以此歟此路一開諸種野人皆有款塞之請若不得盡從則其構怨必倍臣等意以謂旣不能征伐以威之又不能綏撫以懷之則必有所恃以爲固者 祖宗朝沿鴨綠江築長城起滿浦至昌城而止頃緣朝廷不以爲意頽圯殆盡使敵騎長驅而入其修治之勞昌城以下新築之功比諸創始大有經庭今舉大衆成此大役列亭障謹侯望則將萬世恃以爲固其利豈可勝言警邊使李克均久在西陲備諳形勢其建置方略令商度以聞何如傳曰其留政院

《燕山君日記 36, 2面》

연산군 6년 1월 12일(정묘)

경변사 이극균(李克均)이 글을 성준(成俊)에게 보내기를,

“불초가 오랫동안 변방에 있어 오랑캐의 정상을 고루 알고 있는 바, 저들은 인의(仁義)는 부족하지만 모계는 남음이 있으며 구름 모이듯 새 날 듯하면서 교묘하게 도망하여 숨습니다. 명년에 크게 정벌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이 없습니다.[중략]

하였다. 이계동(李季叟)·권건(權健)·이거(李瑠)·류빈(柳濱)은 의논드리기를,

“근래 평안도에서 작란[作耗]하는 자는 여러 위(衛)가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둘의 위가 복수한다 칭탁하고 도둑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서쪽 길을 열어 놓는다면 귀순 왕래하며 포로를 쇠환한 자는 제일 먼저 입공(入貢)할 것이지만, 작란한 자는 자연 의구심이 생겨서 수년 안에는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 중간에 처치한다는 것이 귀순의 도리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작란한 자는 그 원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귀순한 자도 다시 말썽을 만들어, 여러 부(部)가 연결하여 서로 일어나서 도둑질할 것이요, 그러면 변방 백성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방비와 진수(鎭戍)의 노고가 언제 그칠지 모를 것이니, 서쪽 변경의 여위고 약한 군사들이 앞으로 어찌 당해 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변방을 굳건히 하고 우리 병력을 길러서 그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신 등이 전에 성 쌓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바라건대 유의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원에 머물러 두라.” 하였다.

○丁卯警邊使李克均遣書成俊曰僕久在塞上備悉虜情雖仁義不足計謀有餘雲集鳥舉巧爲逃竄明年雖爲大舉必無所得恐未副[中略]

李季全權健李琚柳濱議近來平安道作耗者非諸衛皆然不過一二衛托以復讎爲寇也若開西路則歸順往來刷還人口者首先入貢而作耗者自生疑懼數年之內必不肯來矣其從中處置皆歸順之道也然則作耗者益厚其怨歸順者更構釁隙諸部連結迭起爲寇則邊民之害不可勝言防戍之勞不可以歲月而止西邊羸弱之卒將何以當之今宜固我邊圍畜我兵力以制之爾臣等前議築城事伏惟留神焉傳曰其留政院

《燕山君日記 36, 4面》

연산군 6년 2월 28일(임자)

전라도 병마절도사 한충인(韓忠仁)과 관찰사 정숙지(鄭叔墀)가 치계하기를,

“왜선(倭船) 11척이 마도(馬島)에 돌입하여 하륙해서 서로 싸웠는데, 만호(萬戶) 및 군관 한 명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하니, ‘정승 등과 의논하라.’ 명하였다. 병조 판서 이계동(李季叟)·참판 권건(權健)·참지(叅知)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마도의 적 왜선이 11척이나 되니 적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도둑이 아닌데 만일 여러 섬에 출몰하면서 장난질한다면 그 피해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또 마도성은 새로 쌓았는데, 만일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성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살해·약탈을 남김없이 할까 두렵습니다. 청하옵건대, 활 잘 쏘는 당하관(堂下官)을 가려 보내어 효용(驍勇)한 군관을 거느리고 병사·수사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가서 잡게 하소서. 경상 우도는 전라도와 지경을 연결하고 있으니, 이 역시 방어에 긴요한 곳이요, 적선(賊船)이 경유하는 길이니, 역시 보내어 포획·방어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마야호로 일이 생겼는데, 새로 제수한 전라우도 수사 김훤이 종성부사(鍾城府使)를 갈라서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 않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사람으로 교체 급히 보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壬子全羅道兵馬節度使韓忠仁觀察使鄭叔墀馳啓倭船十一隻突入馬島下陸相戰萬戶及軍官一人中箭命議于政丞等兵曹判書李季全叅判權健叅知柳濱啓馬島賊倭船至十一隻則賊必多此非小寇若出沒諸島作耗則其害必多且馬島城新築若不固守恐闖入城內殺掠殆盡請擇遣堂下官能射者率驍勇軍官與兵使水使同力往捕慶尙右道與全羅連境此亦防禦所緊而賊船所由之路亦遣之使捕禦今方有事而新授全羅右道水使金萱遞鍾城府使時未到京請改他人獨遣傳曰依所啓

《燕山君日記 36, 20面》

연산군 6년 3월 20일(갑술)

전교하기를,

“해랑도에 있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데려올 때에 만일 엄중한 병졸(兵卒)을 데리고 임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그 자기들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대항하게 될 것이니,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사복을 하고 가서 초무(招撫)하러 온 뜻을 깨우치다가, 저들이 만일 순종하지 않게 되면 위엄으로 보여 주는 것이 어떨까 하니, 병조 및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문형(鄭文炯) · 한치형(韓致亨) · 성준(成俊) · 이극돈(李克墩) · 이세좌(李世佐) · 박건(朴健) · 이계동 · 권건(權健) · 이거(李据) · 류빈(柳濱)이 의논드리기를,

“해랑도에 왕래하여 그곳 사세를 잘 아는 사람이 많으니, 반드시 먼저 사람을 보내어 탐지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초무사가 바로 포구에 가서 먼저 배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하여 놓고, 이어 조정에서 초무하는 뜻을 깨우쳐 주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해 숨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요, 만일 든든한 지세를 믿고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병력으로 제재하고 기회를 보아 조치해야 할 것이니, 여기서 한 두가지를 지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중략]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철동과 찬은 충군하지 말고, 충인과 송인을 공으로 한 등을 감하라.”

하였는데, 의논하여 두 등을 감하였다.

○甲戌傳曰海浪島人搜刷時若嚴兵臨之彼必懼其害己而拒敵則無辜多死予意微服而往諭其招撫之意彼若不順則威以示之何如其議于兵曹及政丞等鄭文炯韓致亨成俊李克墩李世佐朴健李季全權健李据柳濱議往來海浪島備知形勢者多不必先遣人探候當令招撫使直抵浦口先奪舟楫使不得他適仍諭朝廷招撫之意勿令驚懼逃竄萬一負固不服則當用兵而制之乘機措置不可一二遙授[中略]

傳曰哲全僭勿充軍忠仁崇仁功減一等議減二等

《燕山君日記 37, 6面》

연산군 6년 4월 6일(기축)

야인(野人)이 함경도 혜산(惠山) 등지에 들어와 살기를 청하므로, 정문형(鄭文炯) · 성준(成俊) · 이극돈(李克墩) · 이극균(李克均) · 이계동(李季全) · 여자신(呂自新) · 권건(權健) · 류빈(柳濱)을 불러,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성준 · 문형 등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여자신 역시 절도사였는데, 야인 금단다무(金丹多武) 등 3~4인이 우리 나라 성 밑에 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등이 치계하였더니, 조정 의논이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지금 야인의 수가 매

우 많으니 만일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후에는 반드시 억제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절도사 권중개(權仲愷)가 역시 ‘야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삼 계문(啓聞)하였으니 지금 비록 하서(下書)하여 물으신다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전에 아뢰는 내용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청컨대, 별도로 현명하고 유능한 조사(朝士) 한 사람을 보내되, 임시로 군관을 삼아 따로 절도사의 앞에서 야인들과 서로 면대하여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아보아 아뢰게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리까?”[중략]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저들이 만일 고집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종당에는 필경 부득이 허락하게 될 것이니, 지금 정승들이 아뢰는 뜻대로 별도로 조신(朝臣)을 파견해 보내어, 오랑캐의 실정을 잘 알아본 후에 처리함이 가하다.”

하였다. 성준 등이 아뢰기를,

“광흥창 수(廣興倉守) 고흥산(高荊山)이 일찍이 그 도의 도사(都事)를 지내어 변방 사정을 잘 알므로 그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己丑野人請居咸鏡道惠山等地召鄭文炯成俊李克墩李克均李季全呂自新權健柳濱議其便否成俊文炯等啓臣爲咸鏡道監司時呂自新亦爲節度使其時野人金丹多茂等三四人欲來居我國城底故臣等馳啓朝議以爲不可以止之今則野人之數甚多若不早圖則後必難制今節度使權仲愷亦以野人不歸本土之意再三啓聞今雖下書問之彼必以前啓之意啓之請別遣賢能朝士一人假爲軍官而別立節度使之前與野人等相與面請審知其情以啓後處置何如[中略]傳曰彼人等若堅執不歸則終必不得已而許之今以政丞等所啓之意別遣朝臣往審虜情後處置可也成俊等啓曰廣興倉守高荊山嘗爲其道都事備知邊事宜可差遣傳曰可

《燕山君日記 37, 10面》

연산군 6년 7월 14일(병인)

한치형(韓致亨) · 성준(成俊) · 이극균(李克均) · 이계동(李季全) · 권건(權健) · 류빈(柳濱) · 이균(李均)이 의논드리기를,

“우리 나라의 서북쪽 변방은 압록강이 천참(天塹)²¹⁸을 이루고 있으므로 강물이 한창 창일할 때는 비록 농민이 들판에 퍼져 있더라도 오랑캐의 기병(騎兵)이 감히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근년 이래로 야인(野人 : 여진족)이 혹은 작은 배를 타고

218) 천참(天塹) : 강하(江河)로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진 요해지(要害地).

혹은 얇은 여울을 건너서 도적질을 자주 하므로 방비하는 괴로움이 그전보다 몇 배가 되어, 우리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양 조정에서 서쪽 변방을 염려하는 걱정을 끼쳤으니, 만약 험지(險地)에 웅거하여 관문(關門)을 설치한다면 그 수비는 용이할 듯합니다. 세종(世宗) 때에 강을 따라 성을 쌓았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그쳤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 되매 성이 무너져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이 허물어진 터를 그대로 따라 증수(增修)를 한다면 일과 공력(功力)은 또한 절반 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본도(本道: 평안도)와 함경도는 연변(沿邊) 방수(防戍)하는 곳이고, 경기(京畿)는 요역(徭役)이 배나 과중하니 이 3도(道: 평안·함경·경기도)를 제외하고, 각 도에서 그 풍흉(豐凶)에 따라 윤번(輪番)으로 군사를 뽑아서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丙寅韓致亨成俊李克均李季全權健柳濱李均議我國西北鄙以鴨綠江爲天塹當江水方漲雖農民布野虜騎不敢窺覷近年以來野人或駕小船或涉淺灘寇鈔者數矣隄備之苦倍屣於前使吾民不得寧每貽朝廷西顧之憂若據險設關其守似易在 世宗朝沿江築城未就而止歲月已久圯毀殆盡今因遺址增修事功亦半本道及咸鏡道沿邊防戍之地京畿徭役倍重除三道外各道隨其豐歉輪次抄軍以供其役似便 《燕山君日記 38, 11面》

연산군 6년 7월 30일(임오)

○김성동(金誠童)의 죄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박건(朴槿)·이세좌(李世佐)·신준(申浚)·이계돈(李季全)·윤효손(尹孝孫)·박승질(朴崇質)·채수(蔡壽)·권건(權健)·허침(許琛)·윤간(尹侃)·이창신(李昌臣)·신승복(慎承福)·류빈(柳濱)·민사건(閔師騫)이 의논드리기를,

“성동의 죄는 나라에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류순(柳洵)은 의논드리기를,

“계본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온당하옵니다. 다만 공신(功臣)은 사유(赦宥)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는 것인데, 성동은 김사형(金士衡)의 현손(玄孫)이고 김질(金磧)의 아들이니, 위에서 재가(裁可)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돈(李克墩)·신수근(慎守勤)은 의논드리기를,

“김성동 등의 죄는 모두 형률에 해당되옵니다만 다만 의공(議功: 평의(評議)해서 형벌을 감하던 여덟 가지 중 하나)의 은전(恩典)은 성상께서 단정하셔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에도 공신(功臣)의 자손이 사죄(死罪)를 범했을 때 사형을 감면해 준 자가 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매, 극균(克均)이 아뢰기를,

“성종때에 한 사람이 살인죄(殺人罪)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곧 허주(許稠)의 손자였습니다. 신이 아뢰기를 ‘허주는 세종 때의 어진 재상이었습니다’ 하니, 성종께서 그가 어진 사람의 후손이라 해서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壬午○命議金誠童罪尹弼商韓致亨成俊李克均朴健李世佐申浚李季全尹孝孫朴崇質蔡壽權健許琛尹侃李昌臣慎承福柳濱閔師騫議誠童之罪國有常典依啓本施行鄭文炯柳洵議依啓本施行爲便但功臣宥及後世誠童金士衡玄孫金碩之子上裁何如李克墩慎守勤議金誠童等罪皆當於律但議功之恩裁自聖斷傳曰前例有功臣子孫犯死罪而減死者考啓克均啓成宗朝有一人犯殺人罪應死乃許稠之孫也臣啓曰許稠 世宗朝賢宰相也 成宗以其賢者之後特減死此外未能記憶傳曰知道 《燕山君日記 38, 15面》

연산군 6년 8월 3일(을유)

○전교하기를,

“김성동(金誠童)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공신(功臣) 김질(金質)의 아들로서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은 자못 ‘사유(赦宥)는 영세(永世)토록 미치게 한다’는 가르침에 어긋나니, 특별히 사형(死刑)을 감하여 곤장 1백 대를 치고 온 가족을 변방 잔읍(殘邑)으로 옮겨 종으로 삼으라.” 하니,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이계동(李季全)·신준(申浚)·권건(權健)·허침(許琛)·류빈(柳濱)·이창신(李昌臣)·신승복(慎承福)·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성동의 일은 상교(上教)가 과연 지당하옵니다. 그러나 조종(祖宗)때 금은(金銀)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조정(朝廷: 명나라 조정)에 청하여 겨우 진공(進貢)함을 면제 받았으므로, 금은을 중국에 사용하는 죄는 사죄(死罪)로 논정(論定)하였는데도, 아직도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이 금은을 몰래 가지고 가서 서로 판매하는 자가 진실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성동의 죄는 진실로 형률에 의거해야만 되옵니다. 더구나 망오적(亡吾赤)의 죄를 이미 사죄로 단정하였으니 죄는 같은데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신(功臣)과 의친(議親)를 논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뒷 세상

사람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극돈(李克墩)·류순(柳洵)·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대체로 공신은 사유(赦宥)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는 것이니 공신의 후손으로 해서 용서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동의 죄는 형률에 의거 처단하라.” 하였다.

○乙酉○傳曰金誠童罪在不赦然功臣金礦之子罪非關係 宗社而依律斷之頗失宥及永世之教特減死杖一百全家徙邊殘邑爲奴韓致亨成俊李克均李世佐李季全申浚權健許琛柳濱李昌臣慎承福閔師騫啓誠童之事上教果當然 祖宗朝以金銀非我國之產請于朝廷僅得免貢以是金銀用中國之罪以死論定然猶中國往來之人潛持金銀轉相販賣者固多如此之事摘發不易誠童之罪固當依律且亡吾赤之罪則旣斷以死不可罪同而罰異也若論功臣議親而不之罪則後人無所懲戒矣李克墩柳洵洪貴達啓大抵功臣宥及後世以功臣之後而赦之無妨傳曰誠童之罪依律斷之 《燕山君日記 38, 15面》

연산군 6년 10월 4일(을유)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좌의정 성준(成俊)·우의정 이극균(李克均)·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좌찬성 박건(朴健)·우찬성 신수근(慎守勤)·공조 판서 박안성(朴安性)·우참찬 신준(申浚)·이조 판서 강귀손(姜龜孫)·병조 판서 이계동(李季全)·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여자신(呂自新)·호조 판서 박송질(朴崇質)·형조 판서 김응기(金應箕)·이조 참관 허침(許琛)·병조 참관 권건(權健)·형조 참관 정광세(鄭光世)·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승건(李承健)·이조 참의 이복선(李復善)·형조 참의 정숙지(鄭叔墀)·병조 참의 류빈(柳濱)·참지(參知) 이균(李均)을 불러 전교하기를,

“번번히 신하들의 직언을 구해 드릴 때에 있어 비록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도, 조정에서는 이것을 조종(祖宗)의 법이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그 말을 쓰지 않았으니, 신하들의 직언은 구해드린 본의가 어데 있는 것인가? 형벌과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사이에 있어 관리들이 사정(私情)을 두고 형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운명하게 한 일이 또한 만드시 있을 것이니,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어 이번 재변(災變)을 초래하게 된 일이 어찌 없을 것인가?”

하매,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8월이면 뇌성이 걷히게 되는 것인데, 이번의 뇌성 변괴는 시기와 계절이 아니므로 천재와 시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신하들의 직언을 구해 드리고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웃사람이나 아랫 사람이 모두 마땅히 성실하게 조심하고 반성하기를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상림(桑林)의 들판에서 6가지 일로 자책한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인사(人事)가 아래서 잘못되면 하늘의 변괴가 위에 나타나는 것이니, 금번의 뇌성 변괴가 어찌 그 초래된 이유가 없겠는가? 또한 시경(詩經)의 ‘시월의 계절이 바뀔 때 뻥뻥뻥 뇌성나고 번개친다’는 주(註)에 이르기를 ‘폐첩(嬖妾)들이 안에서 왕의 마음을 고희(蠱惑)시키고 소인들이 밖에서 용사(用事)한다’ 하였는데, 금번도 또한 소인이 벼슬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乙酉召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禮曹判書李世佐左贊成朴楛右贊成慎守勤工曹判書朴安性右叅贊申浚吏曹判書姜龜孫兵曹判書李季全知中樞府事呂自新戶曹判書朴崇質刑曹判書金應箕吏曹叅判許琛兵曹叅判權健刑曹叅判鄭光世同知中樞府事李承健吏曹叅議李復善刑曹叅議鄭叔擥兵曹叅議柳濱叅知李均傳曰每當求言之時雖有言之者朝廷以爲此 祖宗之法而不可改也遂不用其言求言之意安在刑獄之間官吏挾私用刑以致殞命者亦必有之豈無冤抑而致此災變乎弼商等啓八月雷始收聲今此雷變非時令也可謂災異當恐懼修省求言慎刑傳曰上下皆當以誠實修省如成湯之桑林六責可也人事失於下則天變應於上今之雷變豈無所召且詩之十月之交燁燁震電註云嬖妾蠱惑王心於內小人用事於外無乃今亦有小人在位而然耶

《燕山君日記 39, 6面》

연산군 7년 7월 3일(기유)

○권건(權健)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홍자아(洪自阿)를 병조 참의로, 류빈(柳濱)을 참지로 삼았다.

○己酉○以權健爲同知經筵事洪自阿兵曹叅議柳濱叅知

《燕山君日記 40, 16面》

연산군 7년 8월 7일(임자)

○명하여 장성(長城) 쌓는 일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한치형(韓致亨)·이계동(李季全)·류빈(柳濱)이 의논드리기를,

“일이 크면 폐단이 반드시 있는 것이므로, 지금 남쪽 백성들을 징발하여 서북(西北)으로 보내어 큰 역사를 일으키면 폐단이 있을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평안도 일대의 방수(防守)하는 괴로움이 옛날보다 몇 갑절이나 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피폐해졌으므로, 비록 해마다 별장(別將)을 보내어 방어하는 것을 도와도 병졸은 분산되고 힘은 약해져서, 사로 잡히고 살해된 사람이 매양 백 명으로 헤아릴 수 있으니, 그 재난(災難)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장성을 쌓아 적을 막는 보루(堡壘)를 벌여서 오랑캐의 기병이 많이 몰려오는 길을 끊어버리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잠자도록 하고 조정(朝廷)에서는 서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없어지게 한다면, 비록 잠시 동안의 괴로움이 있더라도 어찌 만대(萬代)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근년 이래로 오랑캐의 변고가 잦아서 본도(本道) 군사와 백성들이 방수(防戍)하는데 잠시도 쉴 수가 없으므로 형세가 장차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작년에 오랑캐 정벌하는 의논으로 인하여 본도(本道)의 군사의 수효를 상고해보니, 지난 계축년(성종 24, 1493)의 군인 총수가 2만 9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9천 명 뿐이니, 줄어든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오늘날 크게 패전하기에 이르지 않은 것만 보고, 성 쌓는 일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의논하는 사람들이 망령되어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나무 가리 밑에 불을 두고 그 위에 앉아서 불이 미쳐 타오르지 않으므로 평안하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종(祖宗) 때에는 군사 수효가 갑절이나 많았고 방수(防戍)하기가 또한 수월하여 반드시 성을 쌓고 난 후에야 편안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오랑캐들의 쳐들어 오는 것이 헤아리기 어려워 동쪽을 방비하면 서쪽을 침범하고, 서쪽을 방비하면 동쪽을 침범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중국 조정에서 압록강가에 점점 가까이 보루(堡壘 : 적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하여 돌 등으로 구축한 것)를 만들어서, 전일의 동팔참(東八站 : 압록강과 산해관(山海關) 사이에 있었던 여덟 군데의 역참(驛站) 등지에 진영(鎭營)과 보루를 멀리 배치하니, 옛날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몰래 가서 의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백성들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고 또한 성과 보루의 한계가 없으면, 가서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록 온 가족을 이끌고 도망치더라도 누가 능히 알아서 그것을 금지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말하기를, ‘백성들의 원망이 적지 않을 것이니 축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무지해서, 심하게 춥거나 덥거나 비만 와도 오히려 원망하는데, 하물며 부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상고(上古)의 일은 오래되어 까마득하지만, 삼대(三代 : 하·은·주) 이후에는 어찌 역사(役事)를 일으켰는데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변방의 장수만 그 책임자를 얻는다면 오랑캐의 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근년 이래로 본도(本道) 절도사(節度使)로서 패전하지 않은 사람이 적었는데, 어찌 모두 용렬하여 능히 조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신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변방을 튼튼히 하는 계획은 이 일(성 쌓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대간(臺諫)과 홍문관이 신의 의논을 극도로 비난하지만 신은 아직도 전일의 의견을 고집하여 감히 다시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壬子○命議築城便否韓致亨李季全柳濱議事鉅則弊必有之今發南民赴西北以興大役非不知有弊也但以平安一道防守之苦倍蓰於昔民生日以凋弊雖歲遣別將以助防禦兵分力弱被虜被殺者動以百計其爲患害靡有紀極故請築長城列障堡以截虜騎充斥使吾民得以奠枕而朝廷無西顧之憂則雖有暫時之勞豈不爲萬世之利哉成俊議近年以來賊變頻數本道軍民防戍暫無休暇勢將不支臣於去年因西征之議考本道軍數去癸丑年軍額二萬九千今則一萬九千減耗至此但視今日不至大敗謂築城爲無用謂議者妄爲紛紜何以異於屠火積薪而處其上火未及燃因謂之安也祖宗朝軍額倍多防戍且歇未必築城而後安也今則賊之奔突難測備東則犯西備西則犯東况近來中朝於鴨綠江邊漸近設堡在前東八站等處鎖堡遠排在此無艱苦之事而民猶有潛投者如今民之艱苦已甚又無城堡之限欲投者雖挈家而逃誰能知而禁之此亦不可不深慮儻曰民怨不少不可犯之則小民無知祈寒暑雨尚且怨咨况樂於赴役乎上古之事尚矣三代以下安有舉役而民不怨者乎儻曰邊將得人可無賊變則近年以來本道節度使鮮有不敗者豈皆庸劣不能措置而然也臣反覆思量固邊之策無踰於此雖臺諫弘文館極詆臣議然臣猶執前議未敢更改

《燕山君日記 41, 2面》

연산군 8년 2월 9일(임자)

○박원종(朴元宗)을 평성군(平城君)으로, 홍백경(洪伯慶)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민효증(閔孝曾)을 공조 참판으로, 이세영(李世英)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이복선(李復善)을 수강원도 관찰사(守江原道觀察使)로, 류빈(柳濱)을 이조 참의로, 김감(金勘)을 병조 참지로, 안윤손(安潤孫)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남곤(南袞)을 홍문관 응교로, 신징(申澄)을 사간원 헌납으로, 정환(鄭渙)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壬子○以朴元宗爲平城君洪伯慶同知敦寧府事閔孝曾工曹參判李世英漢城府右尹李復善守江原道觀察使柳濱吏曹參議金勘兵曹參知安潤孫司諫院大司諫南袞弘文館應教申澄司諫院獻納鄭渙弘文館副校理

《燕山君日記 42, 27面》

연산군 8년 6월 4일(갑진)

이조 판서 강귀손(姜龜孫)·참판 김수동(金壽童)·참의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대간(臺諫) 류응룡(柳應龍)을 논박한 일로 인하여 신등에게 전례를 상고하도록 하시므로, 신등이 성세명(成世明)·손번(孫蕃)·강숙돌(姜叔突)·정순(鄭洵)의 예를 적어 아뢴는데, 대간의 말이 ‘세명(世明) 등은 모두 5품을 거쳤는데도 혹은 6품으로 강등된 사람들이므로 이 예가 아닌데, 적어 아뢴으니, 이는 속인 것이

다.’ 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면서 어찌 감히 속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선공 첨정(繕工僉正)은 비록 4품이지마는, 관직이 천하고 사무가 괴로우며, 그 인기(人器)가 서로 적당하므로 의망(擬望)한 것입니다. 대간이 만약 사람을 씌미 잘못된 것으로써 신등을 논핵(論劾)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임금을 속인다고 지적하니 몹시 민망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임보다 큰 것이 없는데, 경등이 어찌 그랬겠는가? 대간의 말이 지나친 것이다.”

하였다.

○甲辰吏曹判書姜龜孫參判金壽童參議柳濱啓因臺諫駁應龍命考前例臣等書成世明孫蕃姜叔突鄭洵例以啓臺諫謂世明等皆經五品而或降爲六品者非此例也而書啓是欺罔也臣等以謂人臣事君豈敢欺罔繕工僉正雖是四品職賤務苦其人器亦相當故擬之耳臺諫若以用人之失劾臣則當矣斥以欺罔不勝痛憫傳曰人臣之罪莫大於欺罔卿等豈至此乎臺諫之言過矣

《燕山君日記 44, 13面》

연산군 8년 7월 1일(신미)

이조 판서 허침(許琛)·참판 송일(宋軼)·참의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 내에, ‘수령(守令)이 두 번 중(中：감사가 해마다 두 번씩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상·중·하의 세급으로 나눌 때 그 중을 말함)을 받으면 임기가 다 된 후에 녹봉(祿俸)이 없는 관직을 제수(除授)하고, 세 번 중(中)을 받으면 파출(罷黜)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두 번 중(中)을 받은 수령이 반드시 다 스리기를 삼가지 아니했을 것이라 하여, 임기가 다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녹봉이 없는 관직을 제수했으니, 지금 이 예(例)대로 한다면 『경국대전』의 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과 한치형(韓致亨)이 의논드리기를,

“두 번 중(中)을 받은 수령에게 즉시 녹봉이 없는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비록 전례가 있지만, 이와 같이 한다면 『경국대전』의 법은 무너지게 될 것이니,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임기가 다 된 후에 체차(遞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수령은 백성에게 친근한 관원이므로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이에 매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포폄(褒貶: 감사가 1년에 두 번 관하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것. 전최(殿最)라고도 함.)에 있어서 혹시 한 번 중(中)을 받더라도 마음을 쓰는 것이 조금 덜하게 되는데, 하물며 두 번 중(中)을 받음이겠습니까? 세 번 중(中)을 받게 되면 파출하는 것은 비록 「경국대전」의 법이지마는, 신의 의견으로는 두 번 중(中)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를 체직(遞職)시키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성준(成俊) 등의 의논을 좇았다.

○辛未吏曹判書許琛叅判宋軼叅議柳濱啓大典內守令二中則考滿後無祿官除授三中則罷黜頃者以二中守令必不謹於治官不待考滿卽授無祿官今因此例則大典之法毀矣當何以處之傳曰修議于政丞尹弼商韓致亨議守令二中者卽授無祿官雖有例如是則大典之法毀矣此甚未穩依大典考滿後遞差何如成俊李克均議守令親民之官民之休戚係焉凡人於褒貶或遇一中用心少衰況二中乎三中而罷雖大典之法臣意二中者遞之亦當從俊等議

《燕山君日記 45, 1面》

연산군 8년 8월 10일(기유)

○류순(柳洵)을 의정부 우찬성(右贊成)으로, 노공필(盧公弼)을 호조 판서로, 이자건(李自健)을 충청도 관찰사로, 류빈(柳濱)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한형운(韓亨允)을 이조 참의로, 신용개(申用溉)를 승정원 도승지로, 장순손(張順孫)을 좌승지로, 이점(李坵)을 우승지로, 한위(韓偉)를 좌부승지로, 김감(金勘)을 우부승지로, 허집(許輯)을 동부승지로, 박열(朴說)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己酉○以柳洵爲議政府右贊成盧公弼戶曹判書李自健忠淸道觀察使柳濱黃海道觀察使韓亨允吏曹叅議申用溉承政院都承旨張順孫左承旨李坵右承旨韓偉左副承旨金勘右副承旨許輯同副承旨朴說弘文館副提學李自堅直提學

《燕山君日記 45, 13面》

연산군 9년 3월 12일(기묘)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강령현감(康翎縣監) 장사손(張嗣孫)은 청렴 간명(簡明)하여 백성을 구휼(救恤)하고 송사를 밝게 결단하므로 백성의 원성이 없고, 해주 판관(海州判官) 정자지(鄭子芝)는 공사(公事)에 부지런하여, 폐지 방치된 일을 다시 거행하되 백성의 힘을 번거롭히지 않으나, 연안부사(延安府使) 남혜(南惠)는 일하기에 어둡고 간사한 이속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백성들의 원통한 일이 많고, 장연(長淵)현감 박계달(朴季達)은 늙고 둔하여 게으른 데다가 행실마저 바르지 못하며, 강음(江陰)현감 이선승(李善承)은 용렬하고 염치가 없으며 술에 빠져 일을 폐하므로 간

사한 이속이 마음대로 하여 고을이 점점 조잔 피폐해지니 모두 수령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己卯○黃海道觀察使柳濱啓康翎縣監張嗣孫清簡恤民明斷詞訟民無所寃海州判官鄭子芝勤於奉公修舉廢墜不煩民力延安府使南愾暗於治事失御奸吏民多寃枉長淵縣監朴季達老鈍慵懶行已不正江陰縣監李善承庸劣無恥昏酒廢事奸吏恣橫邑漸殘弊並不合守令

《燕山君日記 49, 5面》

연산군 9년 12월 11일(갑진)

○허집(許誦)을 호조 참판, 안윤덕(安潤德)을 형조 참판, 정숙지(鄭叔墀)를 공조 참판, 김영정(金永貞)을 검전라도 관찰사, 류빈(柳濱)을 병조 참지(兵曹參知), 박열(朴說)을 승정원 도승지, 이계맹(李繼孟)을 동부승지, 이과(李顥)를 홍문관 부제학, 박소영(朴紹榮)을 사헌부 집의, 권홍(權弘)을 홍문관 응교(應教), 김근사(金謹思)를 사헌부 장령, 한세환(韓世桓)을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하였다.

○甲辰○以許誦爲戶曹參判安潤德刑曹參判鄭叔墀工曹參判金永貞兼全羅道觀察使柳濱兵曹參知朴說承政院都承旨李繼孟同副承旨李顥弘文館副提學朴紹榮司憲府執義權弘弘文館應教金謹思司憲府掌令韓世桓弘文館副應教

《燕山君日記 51, 22面》

연산군 10년 1월 27일(기축)

함경북도 절도사(節度使) 이손(李蓀)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마거(尼爾車)가 올랑합(兀良哈)으로 더불어 친하여 결혼하려 하는데, 변방의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하니, 정승들을 불러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류순(柳洵)·박건(朴健)·박안성(朴安性)·이계동(李季叟)·정미수(鄭眉壽)·송일(宋軼)·강귀손(姜龜孫)·한사문(韓斯文)·류빈(柳濱)·홍자아(洪自阿)·이양(李良)이 의논드리기를,

“이마거와 올랑합이 틈 생기기 전에 함께 모의하여 변방에서 도둑질하므로 조정에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해년(성종 22, 1491) 북정(北征) 때에, 올랑합이 실지는 우리의 향도(嚮導)가 되었는데, 그 뒤로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노략질하여 편안한 해가 없었지만 우리의 변방 진영(鎭營)은 편안하여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지금 14년이나 됩니다. 어쩐 일인가 하면, 이마거는 멀리 홀하(忽河)가에 있고, 올랑합은 가까이 성 밑에 있으면서 우리의 변병(藩屏: 울타리와 파수문)이 되어 있으니, 두 오랑캐가 잘 지내게 되지 않는다면 들어와서 도둑질하려 하여도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원수를 풀고 서로 왕래하며 혼인을

맺는다면, 변방의 우환이 다시 전과 같아질 것이니,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그렇게 되기 전에 성곽과 진지를 수축하고, 군사와 말을 정비하여 미리 준비를 하며 이 간시키는 계교를 쓰고 좋게 지내는 것을 막아, 원수를 풀지 못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己丑咸鏡北道節度使李蓀馳啓尼爾車欲舉兀良哈和親結婚恐生邊警命召政丞等議之尹弼商成俊柳洵朴楨朴安性李季全鄭眉壽宋軼姜龜孫韓斯文柳濱洪自阿李良議尼爾車與兀良哈未隙時共謀寇邊朝廷患之辛亥北征兀良哈實爲嚮導自爾作仇互相殺掠未有寧歲而吾邊鎮則晏然無警今已十四年矣何者尼爾車遠處忽河之濱兀良哈近在城底爲我藩屏二虜若不通好雖欲入寇其路無由今若解仇交質連結婚姻則邊鄙之患復如前宜下諭節度使及其未然修城堡整士馬預爲之備行間謀沮通好毋致解仇何如 《燕山君日記 52, 5面》

연산군 10년 3월 23일(갑신) 忠孝 清白

○승정원에 묻기를,

“회묘(懷墓 :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묘)께서 성왕께 죄를 얻기는 하였지만, 어머니는 자식으로 하여 귀해지는 것이니, 묘호(墓號)를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 그때 일을 내가 친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찍이 듣건대, 그렇게 한 자가 있으니, 이는 나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이다. 백 년 안에 처치하지 못한다면, 백 년 뒤에 뼈를 가루낸들 어찌 잊으랴? 마침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역시 선왕의 후궁으로 그 상사를 지내야 하랴? 그 소생 아들에게 복을 입게 할 것인가? 강등함이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묘호를 고쳐 존송하는 시호를 올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후궁의 치상과 그 아들이 복 입는 일은 반드시 옛 제도가 있을 것이니, 재상 예관(禮官)과 의논해서 정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윤필상(尹弼商) · 류순(柳洵) · 박건(朴楨)이 의논드리기를,

“회묘(懷墓)께서 좌죄(坐罪)된 일이 종묘 사직에 죄를 얻은 일이 아니니, 전하의 망극하신 심정을 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호(諡號) 및 능호(陵號) 올리는 일은 해당 조(曹)에서 의논해서 시행토록 하시고 후궁에 대한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강귀손(姜龜孫) · 박송질 · 신준(申浚) · 이계동(李季叟) · 이집(李詰) · 허침(許琛) · 정미수(鄭眉壽) · 김수동(金壽童) · 송일(宋軼) · 김감(金勘) · 한사문(韓斯文) · 안처량(安處良) · 이계남(李季男) · 성세명(成世明) · 이창신(李昌臣) · 신용개(申用漑) · 장순손(張順孫) · 류빈(柳濱) · 허집(許詰) · 이점(李沾) · 한형운(韓亨

允)·노공유(盧公裕)·남궁 찬(南宮璨)·정광필(鄭光弼)·이복선(李復善)·성희안(成希顔)·이과(李顥)·손주(孫澍)는 의논드리기를,

“회묘를 추숭(追崇)하는 일이 의리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하의 망극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니, 존숭하는 절목(節目)을 예조에서 의논하여 시행함이 편하겠습니다. 죄 있는 후궁은 그 몸이 죽은 뒤에는 후궁의 준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중략)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성인(聖人)의 칠거(七去)의 법²¹⁹이 있으니, 만일 그런 죄라면 버리고 말 것이 지 하필 죽어야 하는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푸른 상의를 입음이여! 누른 치마로다.’[綠兮衣兮綠衣黃裳]²²⁰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후궁 속에 한 사람의 소위일 것이다. 성종(成宗)께서 명철한 임금이지만, 어찌 잘못된 일이 없겠는가? 그때의 재상들이 극력 간하였다면 반드시 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옛말에 ‘만일 그 도가 아닌 일이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릴 것인가?’ 하였다. 이에 앞서 재상 및 신용개(申用漑) 등이 또한 이런 뜻으로 시를 지었다. 그때는 내 나이 매우 적었다. 만일 지금 같았다면,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어찌 세상에 있게 하였겠는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찌 후궁의 예로 장사지내며, 그 소생 아들인들 역시 어찌 그 복 제대로 복 입을 수 있는가? 대간(臺諫) 및 귀손(龜孫) 등의 의논에 ‘그 아들의 삼년 복을 폐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은 그르니, 정승들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필상(弼商) 등이 의논드리기를,

“후궁으로서 죄 있는 자는, 살았더라도 당연히 강등하여 내쳐 후궁의 이름이 있을 수 없으니, 죽으면 반드시 후궁의 예로 장사지낼 수 없고, 그 소생 아들도 당연히 서인(庶人)의 준례에 따라 백일 복만을 입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의정부와 전직 정승·관각 당상(館閣堂上: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과 제학)·6조 참판 이상을 불러 윤씨(尹氏)의 시호를 같이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甲申○問于承政院曰懷墓雖得罪於先王然母以子貴改墓號何如其時之事予雖不親見然嘗聞有致之者是予不共戴天之讎也百年之間若不處置則百年之後粉骨何忘且其人已死則亦以先王後宮治其喪耶其所生之子當令服其喪乎降殺何如承旨等啓可改墓號而陞

219) 칠거(七去)의 법: 옛날 아내를 버리던 일곱 가지의 조건. 1. 부모에게 불순한 것, 2. 아들이 없는 것, 3. 음란한 것, 4. 질투하는 것, 5. 나쁜 병이 있는 것, 6. 말이 많은 것, 7. 도둑질하는 것.

220) 푸른 상의 누른 치마[綠兮衣兮 綠衣黃裳]: 폐풍(邶風)편 둘째 장의 말인데, 위장공(衛莊公)이 첩에게 미혹되어, 부인 장강(莊姜)이 어질면서도 불행하게 된 것을 비유한 것. 즉 푸른 색은 간색, 누른 색은 정색(正色)인데, 푸른 상의에 누른 치마를 입어, 귀천과 상하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

尊諡矣且後宮治喪及其子服喪事必有古制與宰相禮官議定爲便○尹弼商柳洵朴楛議懷墓所坐非得罪於宗社則殿下罔極之情不得不伸上諡及陵號令該曹擬議施行後宮事上教允當姜龜孫朴崇質申浚李季全李諱許琛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韓斯文安處良李季男成世明李昌臣申用漑張順孫柳濱許諱李坫韓亨允盧公裕南宮瓌鄭光弼李復善成希顏李穎孫澍議追崇懷墓於義雖難然出於殿下罔極之情尊崇節目令禮曹擬議施行爲便有罪後宮身死後不以後宮之例待之宜矣但以其母之罪不可廢其子之通喪[中略]

傳曰聖人有七去之義如其罪也則去之而已何必殺之詩云綠兮衣兮綠衣黃裳此是後宮之中必有一人所爲成宗哲王然豈無過舉其時宰相等若極諫則必有回天之心矣古云如其非道何待三年前此宰相及申用漑等亦以此意製詩矣其時予春秋甚少若如今時則不共戴天之讎豈令在世乎其人死後安可以後宮之禮葬之所生之子亦豈得全服其喪乎臺諫及龜孫等議曰不可廢其子之通喪是言非也政丞等更議以啓弼商等議後宮有罪者其生也當降黜不得有後宮之名死必不得以後宮禮葬之其所生之子當從庶人例只服百日傳曰明日其召議政府曾經政丞館閣堂上六曹叅判以上共議尹氏諡號

《燕山君日記 51, 22面》

연산군 10년 4월 5일(병신)

조하를 받았다.

○류순(柳洵)으로 의정부 좌의정, 허침으로 우의정, 강귀손(姜龜孫)으로 우찬성(右贊成), 신준(申浚)으로 좌참찬(左參贊), 김감(金勘)으로 예조 판서, 이계동(李季全)으로 병조 판서, 박송질(朴崇質)로 한성부 판윤, 윤구(尹邁)로 병조 참판, 류빈(柳濱)으로 형조 참판, 한사문(韓斯文)으로 공조 참판, 성세명(成世明)으로 사헌부 대사헌, 류순정(柳順汀)으로 평안도 관찰사, 이중현(李仲賢)으로 병조 참지(兵曹參知), 신숙근(申叔根)으로 사간원 대사간, 윤석보(尹碩輔)로 홍문관 직제학, 장충보(張忠輔)로 사헌부 집의, 김준손(金俊孫)으로 장령, 김지(金祉)로 사간원 헌납, 정봉(鄭鵬)으로 홍문관 교리, 이현보(李賢輔)·양계벽(梁季璧)으로 사간원 정언을 임명하였다.

○丙申受朝賀○以柳洵爲議政府左議政許琛右議政姜龜孫右贊成申浚左參贊金勘禮曹判書李季全兵曹判書朴崇質漢城府判尹尹邁兵曹叅判柳濱刑曹叅判韓斯文工曹叅判成世明司憲府大司憲柳順汀平安道觀察使李仲賢兵曹叅知申叔根司諫院大司諫尹碩輔弘文館直提學張忠輔司憲府執義金俊孫掌令金祉司諫院獻納鄭鵬弘文館校理李賢輔梁季璧司諫院正言

《燕山君日記 52, 29面》

연산군 10년 4월 18일(기유)

○전교하기를,

“폐비(廢妃) 때에 이파(李坡)가 옛일을 인용하여 찬성했으니 그 죄가 난신(亂

臣)과 다름이 없다. 널을 쪼개 시체를 베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자손을 금고(禁錮: 벼슬길에 못나오는 것)하여야겠다. 신하로서 인군을 섬길 때는 죽든 살든 한 절개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윤필상(尹弼商)이 전에는 그렇게 의논하고, 지금 추숭(追崇)할 때에는 의논을 이렇게 하여 반복하며 뜻을 순종하니, 그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주(紂)가 비록 무도하였지만, 죄악이 가득 찬 뒤에야 정토(征討)하였으며, 그렇지만 차마 괴로움을 주지[竿頭] 않고 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한 것은 신하로서 인군을 쳤기 때문이다. 대저 신하로서 인군에게 간하다가 듣지 않으면 부질(斧鑕: 도끼와 작두. 옛날 중죄인을 처벌할 때 썼음) 아래 죽기를 청해야 할 것인데, 정창손(鄭昌孫) 등은 힘써 간하지 아니하여, 북(杼)을 던지는 의심이 이루게 하였다. 그 몸은 이미 죽어 장사지냈지만 서인(庶人)의 준례에 의하여 그 아들들을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의정부·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홍문관·육조(六曹)를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류순(柳洵)·허침(許琛)·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叡)·박송질(朴崇質)·이집(李諱)·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송일(宋軼)·김감(金勘)·이점(李坵)·이계남(李季男)·안처량(安處良)·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한형운(韓亨允)·허집(許輯)·윤구(尹邁)·류빈(柳濱)·노공유(盧公裕)·이복선(李復善)·남궁 찬(南宮燦)·성희안(成希顔)·이과(李顥)·정광필(鄭光弼)·손주(孫澍)·이중현(李仲賢)·윤은보(尹殷輔)·심정(沈貞)·정봉(鄭鵬)이 의논드리기를,

“이과(李坡)는 널을 쪼개 시체를 베며, 가산을 적몰하고 자손을 금고하고, 윤필상(尹弼商)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가산을 적몰하며, 아들과 함께 외방에 부처(付處)하며, 정창손·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정인지(鄭麟趾)·김승경(金升卿)은 고신을 추탈(追奪)하고, 장사를 서인의 준례에 의하여 묘의 석물을 제거하며, 그 아들도 고신을 빼앗고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사세에 합당합니다.” 하고, 성세명(成世明)·신숙근(申叔根)·이충걸(李忠傑)·김준손(金俊孫)·김승조(金崇祖)·김지(金祉)·이현보(李賢輔)는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필상의 죄는 심회 등보다 중하니, 경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己酉○傳曰廢妃時李坡引古事以贊成之其罪與亂臣無異當剖棺斬屍籍沒家產子孫禁錮人臣事君當死生一節而弼商前議如彼今追崇時議之如此反覆順旨其罪不可不論且紂雖無道罪惡貫盈而後致討然不忍竿頭使得自焚以臣伐君故耳大凡人臣諫君不聽則請伏斧鑕可也而昌孫等諫之不力使成投杼之疑雖其身已死葬依庶人例分配其子可也其召議政府漢城府臺諫弘文館六曹議之柳洵許琛姜龜孫申浚李季全朴崇質李諱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李

拈李季男安處良申用漑張順孫韓亨允許輯尹邁柳濱盧公裕李復善南宮璘成希顏李穎鄭光弼孫澍李仲賢尹殷輔沈貞鄭鵬議李坡剖棺斬屍籍沒家產子孫禁錮尹弼商盡奪告身籍沒家產并其子付處外方鄭昌孫韓明澮沈澮鄭麟趾金升卿追奪告身葬依庶人例撤去墓道石物其子奪告身分配合於事宜成世明申叔根李忠傑金俊孫金崇祖金趾李賢輔議上教當矣但弼商之罪重於沈澮等不可輕論

《燕山君日記 52, 34面》

연산군 10년 4월 25일(병진)

○허침(許琛)·박건(朴楗)·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全)이 의논드리기를,

“죄인이 살던 고을은 혁파하는 것이 매우 온당한 일이나 다만 능침이 있는 곳은 전부 폐하지 못할 것 같으니, 모두 강등(降等)하여 부르며, 또 죄인이 살던 지방을 떼어 근방의 조잔한 고을에 붙이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안처량(安處良)·성세명(成世明)·임사홍(任士洪)·장순손(張順孫)·이점(李楬)·한형윤(韓亨胤)·허집(許輯)·류빈(柳濱)·이복선(李復善)·노공유(盧公裕)·남궁인(南宮璘)·성희안(成希顏)·이과(李穎)·정광필(鄭光弼)·손주(孫澍)·신수근(申叔根)·이중현(李仲賢)·윤석보(尹碩輔)·이충걸(李忠傑)·김준손(金俊孫)·윤은보(尹殷輔)·심정(沈貞)·김송조(金崇祖)·이희보(李希輔)는 의논드리기를,

“이 무리가 위에 속하는 부도한 말을 하였으니, 사지를 찢어 죽이더라도 그 죄에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던 고을을 혁파하여 중외와 원근(遠近)으로 경계할 줄 알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는데, 처량 등의 의논을 좇았다.

○전교하기를,

“어지러운 말 하는 사람은 죄가 반역과 같으므로 모두 중한 법으로 다스리고, 살던 고을을 혁파하였으니 중외에 효유하여 이 풍습을 없애도록 하라. 죄인의 수족은 각도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 수령에게 전하여 인민들에게 조리돌린 다음 서명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함께 봉하여 급보로 아뢰라.” 하였다.

○丙辰○許琛朴楗姜龜孫申浚李季全議罪人所居之邑革之甚便但 陵寢所在恐不可全廢皆降號又割罪人所居地面屬傍近殘邑何如安處良成世明任士洪張順孫李楬韓亨胤許輯柳濱李復善盧公裕南宮璘成希顏李穎鄭光弼孫澍申叔根李仲賢尹碩輔李忠傑金浚孫尹殷輔沈貞金崇祖李希輔議此輩發屬上不道之言雖支解不足以當其罪令革所居之邑使中外遠近知戒何如從處良等議○傳曰亂言之人罪同反逆故並置重典革所居官其曉諭中外以祛此風罪人手足令各道監司傳送各邑守令徇示人民訖署名牒報監司監司並封馳啓

《燕山君日記 52, 37面》

연산군 10년 윤 4월 2일(임술)

○류순(柳洵)·허침(許琛)·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박건(朴楗)·정미수(鄭眉壽)·이집(李諶)·김감(金勘)·김수동(金壽童)·허집(許輯)·한형운(韓亨允)·류빈(柳濱)·임사홍(任士洪)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여, 대행대비의 시호(諡號)를 소혜(昭惠), 휘호(徽號)를 휘숙 명의(徽肅明懿)로 올렸다.

○壬戌○柳洵許琛姜龜孫申浚朴楗鄭眉壽李諶金勘金壽童許輯韓亨允柳濱任士洪會賓廳議上 大行大妃諡號曰昭惠徽號曰徽肅明懿 《燕山君日記 53, 1面》

연산군 10년 윤 4월 11일(신미)

○류순(柳洵)·허침(許琛)·박건(朴楗)·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叡)·박승질(朴崇質)·이집(李諶)·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안처량(安處良)·이점(李坵)·한형운(韓亨允)·허집(許輯)·류빈(柳濱)·이과(李顥)·정광필(鄭光弼)·이중현(李仲賢)이 의논드리기를,

“구성(具誠) 등이 사사 감정을 가지고 구전(具詮)의 부자를 해치려 하고, 무근한 말을 지어내서 대간(臺諫)에게 청탁하였는데, 유령은 그 청탁을 듣고, 들어 탄핵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죄를 결정할 때에 그 죄를 함께 벌주지 않았으니, 다시 경중을 사실하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辛未○柳洵許琛朴楗姜龜孫申浚李季叡朴崇質李諶鄭眉壽金壽童金勘安處良李坵韓亨允許輯柳濱李顥鄭光弼李仲賢議具誠等挾私憾欲害具詮父子造爲無根之言以囑臺諫而幼寧聽囑舉劾罪固不赦但當初決罪時罪不同科更覈輕重論定何如 《燕山君日記 53, 5面》

연산군 10년 윤 4월 20일(경진)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은 죽으면서, ‘무죄하다.’하고, 윤필상(尹弼商)은 또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고 하였다. 하니, 이것은 모두가 성내어서 하는 말이다. 신하된 도리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부와 한성부(漢城府) 육조(六曹)를 불러 다시 그 죄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중략]

○류순(柳洵)·허침(許琛)·박승질(朴崇質)·박건(朴楗)·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叡)·이집(李諶)·정미수(鄭眉壽)·김수동·김감(金勘)이 모여,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의 죄를 논하기를,

“필상 등은 죄악이 매우 큰데, 사사로 그치니, 죽어도 감격해야 할 것인데, 말하

는 것이 그러하니, 어찌 신하로서 두려워하는 뜻이겠습니까?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으니 시체를 베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안처량(安處良)·임사홍(任士洪)·이점(李沾)·한형윤(韓亨允)·허집(許輯)·류빈(柳濱)·노공유(盧公裕)·이복선(李復善)·성희안(成希顔)·이과(李穎)·정광필(鄭光弼)·이중현(李仲賢)은 의논드리기를,

“극균 등의 범행은 사실 중한데 노대신임을 생각하여 사사하였으니, 죽어도 감격해야 할 것인데, 극균의 말은 원망하는 데서 나오고 필상의 말은 참으로 오만하니, 죄가 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머리를 베어 사람들의 보고 들음을 쾌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의하여, 참시(斬屍)하라.”

하였다.

○庚辰○傳曰李克均臨死而云無罪尹弼商又云已知如是此皆發怒而言也人臣之道豈如是乎其召政府漢城府六曹更議其罪[中略]

○柳洵許琛朴崇質朴楛姜龜孫申浚李季全李諱鄭眉壽金壽童金勣會議尹弼商李克均罪曰弼商等罪惡甚大而止賜死死猶知感矣而所言如此豈臣子畏懼之意死有餘辜斬屍何如安處良任士洪李沾韓亨允許輯柳濱盧公裕李復善成希顔李穎鄭光弼李仲賢議克均等所犯實重願以舊老大臣賜死死亦知感矣而克均之言出於忿懣弼商之言真是奸傲罪不容誅宜斬其頭以快人視聽傳曰依群議斬屍

《燕山君日記 53, 12面》

연산군 10년 윤 4월 26일(병술)

○강귀손(姜龜孫)으로 우찬성(右贊成), 이계남(李季男)으로 호조 판서, 민효증(閔孝曾)으로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성희안(成希顔)으로 형조 참관, 홍자아(洪自阿)로 경상도 관찰사, 류빈(柳濱)으로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강징(姜徵)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 손주(孫澍)로 동부승지, 김종(金琮)으로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임명하였다.

○丙戌○以姜龜孫爲右贊成李季男戶曹判書閔孝曾漢城府判尹成希顔刑曹叅判洪自阿慶尙道觀察使柳濱咸鏡道觀察使姜徵右副承旨孫澍同副承旨金琮弘文館副提學

《燕山君日記 53, 17面》

연산군 10년 윤 4월 28일(무자)

○정승들이 아뢰기를,

“내관(內官)이 말탄 것을 말한 자는, 전대간 김제신(金悌臣)·이자건(李自健)·

류빈(柳濱)·곽종원(郭宗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눈으로 그 사실을 보고 말하였으니, 그 죄가 지레 짐작한 자와는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제신 등은 죄가 중하니, 삼정승은 율문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다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라.”

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올타리 두르고, 휘장 두른 일 및 후원에서 활쏘기 구경한 일은 한치형(韓致亨)·어세겸(魚世謙)·성준(成俊) 등이 논계(論啓)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한 죄로 논하라.”

하였다. 순(洵) 등이 아뢰기를,

“성준은 참형에 처하고, 한치형·어세겸은 부관참시하고, 이극균(李克均)은 능지(凌遲)했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극균은 능지하고, 준·세겸·치형은 우선 늦추라. 논계할 때, 사인(舍人)은 반드시, 3인 중에서 먼저 주장한 사람을 알 것이나. 정승들은 명일에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강귀손(姜龜孫)·송일(宋軼)이 승지로서, 제신이 논계할 때에 저지 못하였으니, 추문하여 아뢰라, 또 신징(申澄) 등이 진계(進啓)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주장한 자가 있을 것이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그리고 노형손(盧亨孫)·윤필상(尹弼商)의 머리 베어 오는 것이 어찌 더디냐? 물어보라.” 하였다.

○戊子○政丞等啓言內官乘馬者前臺諫金悌臣李自健柳濱郭宗元也然此人則目見其事而言之其罪與揣度者異矣傳曰金悌臣等罪重三政丞考律以啓又傳曰其皆處斬政丞等啓圍籬圍帳及後苑觀射事乃韓致亨魚世謙成俊等論啓也傳曰論以重典洵等啓成俊處斬韓致亨魚世謙剖棺斬屍李克均凌遲傳曰李克均凌遲俊世謙致亨姑緩之論啓時舍人必知三人中首唱矣政丞等明日考啓又傳曰姜龜孫宋軼以承旨當悌臣論啓時不能沮之推問以啓且申澄等進啓時必有首唱者考啓盧亨孫尹弼商頭斬來何遲其問之

《燕山君日記 53, 19面》

연산군 10년 윤 4월 29일(기축)

전교하기를,

“류빈(柳濱)·이자건(李自健)이 친히 보고 말한 것이라 하지만, 궁중의 일을 감

히 스스로 누설하였으니, 사형수로서 가두라. 그리고 어세겸(魚世謙)·곽종원(郭宗元)·김제신(金悌臣) 등은 부관참시하라.”

하였다.

○己丑日暈傳曰柳濱李自健雖云親見而言然宮禁之事敢自漏說其以死囚囚之魚世謙郭宗元金悌臣等其剖棺斬屍

《燕山君日記 53, 20面》

연산군 10년 5월 1일(경인)

○전교하기를,

“권균 등은 영의정과 함께 그대로 금부(禁府)에 앉아서, 류빈(柳濱)을 국문하라.”

하였다.[중략]

○승지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류빈(柳濱)이 공술(供述)하기를, ‘지평(持平) 곽종원(郭宗元)이 후원에서 말타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등에게 말하였는데, 대사헌 김제신(金悌臣)이 신등과 의논하기를, ‘후원에는 보행하는 자라도 언제나 왕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말을 타는 자이겠는가? 지금 들어가 아뢰다면 그 연유를 알 것이라고 하여, 함께 의논하고 들어가 아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정승 및 의금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빈(濱)이 말하기는 하였지만, 빈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일은 종원(宗元)에게서 나왔고, 의논을 주장한 것은 제신(悌臣)이니, 그 죄가 지레 짐작으로 억측한 유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원이 보고서 말하더라도, 빈으로서는 금지시켜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제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일 빈을 사(赦)하여 준다면 신징(申澄)의 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같은 한가지 죄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어떻게 빈을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징·류빈이 감히 궁중 일을 말하였으니, 죄가 원래 중합니다. 그러나 징은 아뢰기를, ‘대궐 안 장막 친 속에 반드시 놀이하고 회롱하는 일이 있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궁중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고 한 말이요, 빈은 종원(宗元)의 말로 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정승을 불러 물으라.”

하였다. 영의정 류순(柳洵)과 의금부 당상 정미수(鄭眉壽)·김감(金勘)·이계남(李季男) 등이 승지들과 함께 아뢰기를,

“자건(自健)과 류빈의 죄는 신징에 비하면 경중이 판이합니다. 징은 궁중에 없는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또 종원이 혹 엿보고 말하더라도 빈으로서는 의당 금하고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한 일인데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짐작으로 억측하고 말한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차등 있게 죄를 줌이 마땅합니다.”

하고, 전교하기를,

“김제신(金悌臣)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아들은 장 80을 때려 먼 지방에 충군(充軍)하며, 이자건(李自健)의 아들도 충군하고, 류빈(柳濱) 이상은 각각 장 1백을 때려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고, 아들은 충군하며, 곽종원(郭宗元)은 능지(凌遲)하고, 아들은 장 1백을 때려, 아주 먼 변방의 종이 되게 하며, 신징(申澄)의 아들은 장 80을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박한주(朴漢柱)는 능지하고, 아들은 장 1백을 때려 아주 먼 변방에 종이 되게 하며, 이윤번(李允蕃)의 아들은 장 80을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곽종번(郭宗蕃)의 아들은 장 60을 때려 먼 지방에 충군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하관이 말할 수 없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는데, 제신(悌臣)이 막지 못하였으니, 이 사연으로 찌를 쓰게 하라.” 하였다.

○庚寅○傳曰鈞等與領議政仍坐禁府鞫柳濱[中略]

○承旨權鈞啓柳濱供云持平郭宗元望見後苑乘馬人語臣等大司憲金悌臣與臣議曰後苑雖步行者不可常時往來况騎馬者乎今若入啓則可知其由以是同議入啓耳仍以政丞及禁府堂上之意啓曰濱雖言之非濱所親見也事出宗元而唱議者悌臣其罪非揣度之類也傳曰宗元雖見而言之濱當禁而勿言可也而與悌臣同議以啓其罪何異若赦濱則申澄之受罪差失也同是一罪而或死或不死甚不可何以處濱承旨等啓申澄柳濱敢言宮禁之事罪固重矣然澄則啓云大內圍帳之中必有玩戲之事此真揣度宮禁事而言也若濱則因宗元之言而啓之其罪與澄有間傳曰其速召政丞問之領議政柳洵義禁府堂上鄭眉壽金勘李季男等與承旨等啓自健柳濱罪比於申澄則輕重懸絕澄則揣度宮禁所無之事而言之是輕君上也且宗元雖或窺見而言濱當禁而勿言可也同議以啓此則非矣然不可與揣度宮禁事者同也差等科罪允當傳曰金悌臣剖棺斬屍子決杖八十充軍遠方李自健子充軍柳濱已上各決杖一百遠方付處子充軍郭宗元凌遲子杖一百極邊爲奴申澄子決杖八十遠方爲奴朴漢柱凌遲子決杖一百極邊爲奴李允蕃子決杖八十遠方爲奴郭宗蕃子杖六十充軍遠方又傳曰下官議啓所不得言之事而悌臣不能止之其以此書柱

《燕山君日記 53, 22面》

연산군 10년 5월 4일(계사)

밝을 녘에, 3정승·의금부 당상이 남빈청(南賓廳)에 나가니, 전교하기를,

“준(俊)을 급속히 조율하여 아뢰라.”

하고, 또 최숙생(崔淑生)에게 묻기를,

“사복시(司僕寺) 발을 내원포(內園圃)에 속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발언했느냐? 만일 먼저 발언한 자가 있으면, 빨리 잡아다 국문하라.”

하였다. 류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전일 한치형(韓致亨)·이극균(李克均)의 죄를, ‘승여를 지척하되 정리가 극히 해롭게 한 율(指斥乘輿 情理切害之律)로 논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준의 공초에, ‘전일 논술한 일들은 모두가 치형·극균에게서 나온 것이요, 자기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서명(署名)을 한 것 뿐이라.’고 하니,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감히 품합니다. 또 숙생(淑生)을 국문한 즉, 먼저 말을 한 것은 정인인(鄭麟仁)이라 하니, 잡아다 빙국(憑鞠)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류빈(柳濱)·이철균(李鐵均) 같은 자는 먼저 주창한 사람이나 자수하였기 때문에 모두 사형을 감하여 종이 되게 한 것이다. 성준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모의에 참여했을 것이니,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어떤가? 또 그 손자는 직첩을 거두고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그 아들 역시 외방으로 내보내야 한다.”

하였는데, 류순 등이 아뢰기를,

“교수형에 처함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숙생은, 위에 바치(供上)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아뢰다 하나, 대저 내포(內圃)에 속하면 어디에 쓰겠는가? 말이 매우 간사하니, 형신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성준(221)을 교수형에 처하되, 준에게 이르기를, ‘네가 경연(經筵)에서 김인후(金麟厚)와 자기 일을 가지고 서로 힐난하여 말지 않으며 심지어 포악하다고까지 말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중금(中禁 : 액정서의 하인) 노형손(盧亨孫)의 사형을 의논할 때, ‘바로 위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요, 또 궁

221) 성준(成俊) : 1436~1504. 조선 연산군 때의 문신. 자는 시좌(時佐) 시호는 명숙(明肅) 본관은 창녕, 문과에 급제 예종 때 대사간, 성종 때에 이조판서, 우참찬을 역임하고 북정부원수로 야인을 정벌하였다. 좌의정이 되어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등과 시폐 십조(時弊十條)를 올려 연산군의 난정을 바로 잡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뒤에 영의정에 올랐다가 갑자사화 때 윤비(尹妃) 폐위와 사사(賜死)에 관여한 죄로 교살 당하였다. 성준의 장인이 성주인(星州人) 공조참의 이계기(李啓基 : 父 李穗)인데 그형 이건기(李堅基)가 청백리 류겸(柳謙)의 사위로 연결된다.

중의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하였다. 가령 다른 사람이 말하더라도 네가 금하고 막았어야 할 것인데 감히 말하였으니, 그 죄가 셋이라고 하라.”

하였다.

○癸巳遲明三政丞及義禁府堂上詣南賓廳傳曰俊急速照律以啓且問崔淑生曰司僕寺田屬內園圃未便事汝先發言耶如有先發言者則其速拿來鞠之柳洵等啓前此韓致亨李克均之罪命論以指斥乘輿情理切害之律而今俊供辭曰前日論列等事皆出於致亨克均而已不出一言但署名而已何以照律敢稟且鞠淑生則云先發言者鄭麟仁也請拿來憑鞠何如傳曰若柳濱李鐵均則其首唱人自首故皆減死爲奴俊則雖云不出一言必叅謀矣處絞何如且其孫收職牒使不得居京其子亦當出送于外洵等啓處絞允當傳曰淑生雖云未知供上之事而啓之然夫屬於內圃用之何處言甚奸詐刑訊以啓又傳曰成俊處絞令語俊曰汝於經筵與金麟厚將自己事相詰不已至稱暴惡其罪一也中禁盧亨孫議死時以不直屬上言之其罪二也且今宮禁之事揣度而言假如他人言之汝當禁遏而敢言之其罪三也

《燕山君日記 53, 24面》

연산군 12년 9월 2일(기묘)

금상(今上 : 중종(中宗))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왕을 폐(廢)하여 교동현(喬桐縣)으로 옮겼다.

처음에 왕의 어머니 폐비 윤씨(廢妃尹氏)가 성질이 모질고 질투하므로, 정희(貞熹 : 세조비 윤씨(尹氏)) · 소혜(昭惠 : 덕종(德宗)비 한씨(韓氏)) · 안순(安順 : 예종(睿宗)비 한씨) 세 왕후가, 윤씨의 부도(不道)한 짓이 많음을 보고 매우 걱정하여 밤낮으로 훈계하였으나, 더욱 순종하지 않고 악행(惡行)이 날로 심하므로, 성종(成宗)이 할 수 없이 의지(懿旨 : 왕비의 명령. 여기에서는 대비(太妃)의 명령)를 품(稟)하여 위로 종묘에 아뢰고 폐하였었다.

왕은 그때 아직 강보(襁褓) 속에 있었는데, 자라남에 미쳐 성종은 그가 어머니 여윈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적장(嫡長)이기 때문에 왕세자(王世子)로 세웠다. 그리고 시기와 모짐이 그 어미와 같고 성질이 또한 지혜롭지 못하므로 성종은 당시의 단정한 선비들을 골라 뽑아 동궁(東宮)의 관원으로 두어 훈회(訓誨)하고 보도(輔導)함을 특별히 지극하게 하였다.[중략]

이 때 적인(謫人 : 귀양간 사람) 류빈(柳濱) · 이과(李顥) · 김준손(金駿孫) 등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전라도에서 거병하기로 하고, 조숙기(曹淑沂) 등은 또한 경상도에서 거병하기로 의논하여, 모두 금상을 추대하려 하였다가 상이 이미 즉위했다는 말을 듣고 곧 중지하였다.

처음에 왕이 백관에게, 충(忠)자 · 성(誠)자를 새겨 사모(紗帽)의 앞뒤에 붙이게 하였으니, 대개 충성으로써 책려(責勵)하려 한 것이요, 모든 유행(遊行)과 출입을

행행(行幸)이라 일컬음을 금하고 거둥이라 하게 하였으며, 또 흥청을 선치(選置) 하되 기필코 만 명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교동으로 폐천(廢遷)되어 가시 올타리 안에 거처하게 되자 백성들이 왕을 뒤쫓아 원망하여 이가(俚歌)를 지어 부르기를,

충성이란 사모요,	忠誠是詐謀
거둥은 곧 교동일세.	舉動是喬桐
일 만 흥청 어디 두고,	一萬興清何處置
석양 하늘에 뉘를 좇아 가노고?	夕陽天來去誰從
두어라 예 또한 가시의 집이니,	已哉此亦娘婦家
날 새우기엔 무방하고 또 종용하지요.	無妨達曙且從容

하였으니, 대개 사모(紗帽)와 사모(詐謀), 거둥(舉動)과 교동은 음이 서로 가깝고 방언에 각시[婦]와 가시[荊棘]는 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뜻을 빌어 노래한 것이다.

폐부(廢婦) 신씨(愼氏)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 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妃)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하므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학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음난,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간하되 말 뜻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또, 번번이 대군·공주·무보(姆保)·노복들을 계칙(戒勅)하여 함부로 방자한 짓을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 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己卯今 上卽位于景福宮王廢遷于喬桐縣初王母廢妃尹氏性悍戾妬忌 貞熹昭惠安順 三王后見尹氏所爲多不道甚憂之日夜警訓愈不順惡行日甚 成宗不得已稟 懿旨上告 宗廟而廢之王時尚在襁褓中及長 成宗憐其失母且長嫡立爲 王世子猜忌剛戾類所出性 又不隸 成宗妙選一時端正之士備東宮官屬訓誨輔導特至[中略]

謫人柳濱李穎金駿孫等唱衆謀舉兵于全羅道曹淑沂等又議舉兵于慶尙道皆欲推戴今 上及聞 上已卽位乃止初 王令百官書刻忠字誠字分貼于紗帽前後蓋以忠誠責勵也凡遊幸 出入禁稱行幸而曰舉動又選置興清必欲滿萬及廢遷喬桐居棘圍中民間追怨王作俚歌以歌 之曰忠誠是詐謀舉動卽喬桐一萬興清何處置夕陽天末去誰從已哉此亦娘婦家無妨達曙且 從容蓋紗帽與詐謀舉動舉喬桐音相近方言稱婦與稱荊棘語相類故托意歌之廢婦愼氏有賢 德和厚溫謹撫群下以恩王有所寵幸妃亦加厚之 王雖狂虐甚見重每見王多殺不辜淫縱無 道日夜憂悶時或泣諫辭意切至 王雖不能聽亦不之怒又每戒勅大君公主姆保奴僕不令橫 恣至是號泣必欲從 王而去不得

중종 원년 9월 8일(갑신)

연산 말년에 장차 복망(覆亡)할 화가 있었으나, 조정에는 있는 듯 신하는 한 사람도 계교를 내어 의를 외치는 일이 없었으니, 전라도에서는 류빈(柳濱) 등이 거사(擧事)할 것을 같이 모의하여 서울과 지방에 격문을 띄웠고, 경상도에서는 조윤손(曹潤孫)²²² 등이 가까운 친척인 윤탕로(尹湯老)와 더불어 기병(起兵)할 것을 협모(協謀)했으나 거사하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마침 박원중 등이 먼저 대의(大義)를 세움에 힘입었으니, 삼공 육경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다. 그런데 훈맹(勳盟)에 참여함에 미처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자체들로 하여금 훈적(勳籍)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공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줄로 인하여 참여하기를 청한 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 이와 같은 류는 죽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우의정 김수동은 한때의 명류(名流)로 어머니의 복제 중이었으니, 추대한 뒤에는 곧 돌아가 상제 노릇하는 것이 옳거늘, 공을 논한 뒤에 조용히 집으로 물러나 류자광에게 묻기를, ‘아우 수경은 어떤 등수의 공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수동은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탐모(貪冒)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라.

○박원중·성희안·류순정 등이 아뢰기를,

“공로의 다소로 3등으로 나누었으나, 다만 지금 국가가 피폐하여 상사(賞賜)를 외람되이 많게 할 수는 없습니다. 3등 안에서 심정(沈貞) 이상 30인을 3등으로 삼고, 변준(卞僑) 이하는 4등으로 삼아 상사를 차별하소서.” 하였다.

○甲申燕山末年將有覆亡之禍在朝群臣無一人出計倡義而全羅則柳濱等同謀擧事移檄京外慶尙則曹潤孫等與近戚尹湯老協謀起兵未及擧事適賴朴元宗等先建大義三公六卿得保首領足矣及叅勳盟不以爲愧又使子弟並叅勳籍其所謂功不知爲何事也不特此也因緣請叅者不知其幾如此之類不足道也右議政金壽童以一時名流方持母服推戴後卽還居憂可也論功之後從容退家問柳子光曰弟壽卿錄何等功乎壽童稍有知識貪冒如此況他人乎○朴元宗成希顏柳順汀等啓曰以功勞多少分爲三等但今國家疲困賞賜不可猥多三等內以沈貞以上三十人爲三等以卞僑以下爲四等以差賞賜

《中宗實錄 卷1, 10面》

중종 원년 10월 11일(병진)

○박원중으로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류순정(柳順汀)으로 의정부 우의정

222) 조윤손(曹潤孫) : 父 대사헌 淑沂) : 조선 중종 때의 무신. 시호는 장호(莊胡) 본관은 창녕. 주역에 조예가 깊은 대사헌 조숙기의 아들로 연산군 8년(1502) 무과급제 선전관으로서 류빈 등과 함께 연산군을 폐하려 했으나 박원중 류순정 등의 반정(反正)이 먼저 성공하여 공신녹권만 받았다. 웅천현감 때 왜구를 격파하고 함경도병사 때에 야인을 토벌하였다. 중종 31년 병조판서가 되고 좌찬성에 이르렀다. 류홍(柳泓) : 父 영의정 順汀)의 삼배(三配)의 처부가 된다.

(右議政), 류빈(柳濱)으로 공조 참판(工曹參判), 홍경주로 승정원 도승지, 홍숙(洪淑)으로 좌승지, 정광필로 우승지, 안당으로 좌부승지, 이계복(李繼福)으로 우부승지, 이유청으로 동부승지, 윤희손(尹喜孫)으로 대사간, 이윤으로 홍문관 부제학, 성몽정(成夢井)으로 직제학, 성윤조(成允祖)로 사헌부 집의, 강중진(康仲珍)으로 사간원 헌납을 삼았다.

○丙辰○以朴元宗爲議政府左議政柳順汀爲議政府右議政柳濱爲工曹參判洪景舟爲承政院都承旨洪淑爲左承旨鄭光弼爲右承旨安塘爲左副承旨李繼福爲右副承旨李惟清爲同副承旨尹喜孫爲大司諫李胤爲弘文館副提學成夢井爲直提學成允祖爲司憲府執義康仲珍爲司諫院獻納

《中宗實錄 卷1, 34面》

중종 원년 11월 5일(경진)

○전교하기를,

“홍문관과 대간이 모두 파방할 것을 말하니, 육조의 참판 이상, 증경(曾經) 정승, 의정부, 부원군 이상, 한성부 당상 등으로 하여금 빈청에서 회의하게 하라.”
 하매, 영의정 류순·무령부원군 류자광·좌의정 박원종·우의정(右議政) 류순정(柳順汀)·능천부원군 구수영·고양부원군 신준·연창부원군 김감·해평부원군 정미수·창산부원군 성희안·좌찬성 박안성·우찬성 노공필·좌참찬 이손·예조 판서 송일·공조 판서 권균·호조 판서 이계남·형조 판서 이집·한성부 판윤 전임(田霖)·이조 참판 류응룡·병조 참판 허집·예조 참판 김전·공조 참판(工曹參判) 류빈(柳濱) 등이 의논드리기를,

“갑자년 겨울에 선비를 시험할 때, 과거(科擧)의 규칙은 없었으며, 전시(殿試) 비슷한 예는 있어, 그 글제는 폐주 자신이 내고 시관은 왕래하며 등급을 매겼으나, 처음에는 과거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시를 지은 자가 실정에 지나쳤으니, 마땅히 파방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과거라 일렀으면 파방하기는 사세가 곤란하다. 시 짓기를 심하게 한 것만 뽑아서 파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상의가 이같으시니, 사람 끊기를 가볍게 앓는 것이라 하겠습니까만, 취인(取人)을 법대로 못하였으며, 과거의 예가 아닌 데다가 글제의 뜻이 이미 무도하고 시 지은 사연이 또한 너무 심하니, 뽑아서 파하기는 곤란합니다. 파방하느니만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이 비록 이러하나, 순모(詢謨: 여러 사람의 의견.)가 모두 같으니, 아뢴 대로 파망하라.” 하였다.

○庚辰○傳曰罷榜事弘文館臺諫皆言之其令六曹叅判以上曾經政丞議政府府院君以上漢城府堂上等會議于賓廳領議政柳洵武靈府院君柳子光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綾川府院君具壽永高陽府院君申浚延昌府院君金勘海平府院君鄭眉壽昌山府院君成希顏左贊成朴安性右贊成盧公弼左叅贊李孫禮曹判書宋軼工曹判書權鈞戶曹判書李季男刑曹判書李諱漢城府判尹田霖吏曹叅判柳應龍兵曹叅判許諱禮曹叅判金詮工曹叅判柳濱等議甲子冬試士時無科擧之規而有似殿試之例其題廢主自出而試官亦往來科次初以爲非科擧也況其作詩者過情宜罷榜傳曰旣曰科擧則罷榜勢難其以作詩已甚者抄罷何如政丞等啓曰 上意如此可謂不輕絶人也然取人不以法非科擧之例題意旣爲無道而製詩之辭亦已甚且抄罷爲難莫如罷榜傳曰吾意雖如此詢謨僉同依所啓罷榜

《中宗實錄 卷1, 47面》

중종 원년 11월 24일(기해)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 김언평(金彦平)과 헌납 강중진(康仲珍)이 갑자방 파할 것을 청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과거는 사(私)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 시관이 모두 물러가 자기 집에서 잤으니, 이는 결코 과거의 예가 아닙니다. 대간 시종(侍從)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영사 성희안인 아뢰기를,

“정성근의 효행은 온 나라가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폐주가 살해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죽여야 한다.’하여, 감히 논란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글제를 명하였는데, 거자로서 감히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강중진이 아뢰기를,

“폐왕 때 만조의 군신이 모두 거짓을 따라 구차스럽게 영합하였으되, 유독 김처선(金處善)은 직언하다가 죽었고, 권달수(權達手)의 아내는 정렬(貞烈)로써 죽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을 포장하여 사풍(士風)을 장려하소서. 즉위하신 처음에 마땅히 선을 포상하고, 악을 깎아 내려야 합니다. 청컨대 그 방을 파하고, 그 사람을 내쳐서 사습을 새롭게 하소서.”

하니, 윤택하지 않았다.

○己亥御朝講掌令金彦平獻納康仲珍請罷甲子榜特進官柳濱曰科擧不可私也其時試官皆退宿私家大非科擧例臺諫侍從之言是也領事成希顏曰鄭誠謹孝行一國皆知之然廢主欲殺而合百官議之皆曰可殺莫敢難之況人主命題而爲擧子者其敢違乎仲珍曰廢王之時滿朝群臣皆詭隨苟合獨金處善以直言死權達手妻以貞烈死如此之人可褒獎以勵士風卽位之初宜

褒善貶惡請罷其榜黜其人以新士習不允

《中宗實錄 卷1, 56面》

중종 원년 12월 1일(을사)

조하를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좌의정 박원종·우의정(右議政) 류순정(柳順汀)·이조 판서 성희안 등이 아뢰기를, “류빈(柳濱)·이과(李顥)·김준손(金駿孫) 등은 죄를 입고 전라도에 있으면서, 국운이 이미 떠나고 민심이 붙은 바를 알아서, 주상(主上)을 추대하고자 옥과(玉果) 현감(縣監) 김개(金漑)로 하여금 서울에 격문을 전달하게 하였는데, 미처 이르지 않아서 전하께서 등극한 것을 듣고 돌아갔으니, 그 사기(事機)가 꺾이지 않고서도 같았습니다. 그런즉, 중외가 협심하여 추대한 것임을 이미 볼 수 있으니, 마땅히 사책(史冊)에 크게 적어야 하므로, 와서 아뢰입니다.”

하였다. 그 격서(檄書)는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은 간난하게 창업하여 자손에게 끼쳐 주셨고, 우리 세종에 이르러 덕교(德教)가 아름답고 밝아졌으며, 정화(政化)가 크게 행하여져서 예악 문물이 환하게 날로 새로와졌습니다. 우리 성종에 이르러는, 한결같이 성헌(成憲)을 좇아 국용을 절약하고 인민을 사랑하여, 형벌은 죽이지 않는 것으로써 위엄을 삼고, 재물은 축재하지 않는 것으로써 부유함을 삼았습니다. 관후하게 백성을 대접하고 은혜(恩禮)로 선비를 대우하며, 문무를 아울러 숭상하여 등용하니, 사람들은 쓰임을 즐거이 여기고 모두 명절(名節)을 숭상했습니다. 백성은 평안하고 물화는 풍성하여 온 세상이 승평하니, 태평스러운 정치가 이에 융성했습니다. 아깝게도 하산(遐算: 장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정호(鼎湖)²²³의 슬픔을 주어, 비록 심산 궁곡이라도 달려와 호곡하지 않음이 없었음은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이 인심에 젖은 때문이었습니다.

불의에 사군(嗣君)이 계승하여서는 선왕의 법을 모두 변혁하고, 포악하고 무도함이 날로 심하였습니다. 부왕의 후궁을 장살(杖殺)하고 옹주와 왕자를 유배하여 죽였으며, 일을 말리는 대간을 귀양보내거나 주참하였습니다. 대신을 옥보이고 충량(忠良)을 해치되, 아버가 살륙되면 아들에게 미치고 아들이 살륙되면 형에게 미치니, 서로 수사(收司)²²⁴ 연좌(連坐)²²⁵함이 진(秦) 나라 법보다도 심했습니다.

223) 정호(鼎湖) :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가 용을 타고 하늘에 올랐다는 곳. 제왕의 죽음을 뜻함.

224) 수사(收司) : 서로 규찰하여 적발하는 것.

225) 연좌(連坐) : 친척이나 이웃간에 죄를 연대하여 받는 것. 중국 전국시대 진(秦) 나라 상양(商鞅)이 만든 법.

죽은 자와 귀양간 자가 그 얼마인지를 몰랐는데, 모두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앙이 마른 해골에까지 미쳐, 두골이 여기저기 거리에 매여 달려 있고, 맨송장이 오래도록 저자에 버려져 있으며, 촌참(寸斬)하는 형벌과 뼈를 부수는 형벌은 이 또 무슨 형벌입니까?

남의 처첩을 앗아 음욕을 자행하고 남의 집을 헐어서 원유(苑囿)를 넓혔으며, 선왕의 능침은 꿩이나 토끼의 놀이터가 되고, 선성(先聖)의 사묘(祠廟)는 꿈이나 호랑이의 우리로 변했습니다. 정사는 내실에 있어 명분이 문란하고 용도는 절제가 없어 공사(公私)가 허갈(虛竭)하니, 징발하여 거두어 들임이 그침 없었으므로 백성이 의지하여 살 길이 없어서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며 유망(流亡)이 잇달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종실 형제의 첩을 뺏박하여 서로 간통하게 하니 인륜이 벌써 두절되고,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삼년상에 있어서도 천하의 통상 상사인대 차마 그 상제를 단축하고, 부모의 기일은 군자가 종신토록 입는 상사인대 또한 모두 없었으니, 이는 곧 제사 지냄이 유익함이 없다 하여 스스로 그 제사를 끊는 것입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선왕의 영혼이 과연 평안히 흠향하시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니, 통곡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기타 토목의 역사와 성색의 기호(嗜好), 대지(臺池)·유전(游畝)의 오락과 금수 화훼(花卉)의 완상을 일일이 다 들기 어렵습니다. 곤충 초목과 돌까지도 모두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큰 죄가 결주(桀紂)보다도 더하니, 예로부터 나라를 망친 임금 중에 이와 같이 심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생민의 일시적 괴로움은 아직 죽히 말할 것도 없으나, 임금 자리는 간사한 이가 엿보는 것인데, 만일 신기(神器 : 왕위)를 엿보는 자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다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평안하길 생각하는 백성이 반드시 소리가 호응하듯 그림자가 따르듯 할 것이니, 역성(易姓)의 화가 또한 걱정됩니다.

성묘(成廟)께서 26년간 경사(卿士)를 예로 대접하고 충의(忠義)를 배양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묘를 섬겨 두터운 은혜를 받고 총권(寵眷)을 입은 자가, 사직이 망하는 것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차마 두 성을 섬기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종의 영혼은 응당 구천지하의 옛 신하들과 이미 몰래 주참할 것을 의논했을 것이고, 또 조정에 있는 공경 대부들의 녹봉만을 구차스럽게 탐하고 제 몸만을 오로지 두호해서 옛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음을 원망할 것입니다.

진성대군(晉城大君) 휘(역(攄))는 성종대왕의 친아들로서, 어질고 덕이 있어서 중외가 촉망하여 구가(謳歌)하여 돌아가는 바이니, 이 분을 두고 어느 분을 우

러르겠습니까? 그래서 성종의 옛 신하 모모(某某) 등은 진성(晉城)을 추대하고자 모일 모일에 의병을 일으켜 제도(諸道)에 격서를 돌리고 날을 약속하여 서울에 모일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삼공 육경과 여러 집사(執事)들은 마땅히 속히 추대하여 종사의 위태로움을 붙들고 인신의 분함을 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함께 도모하여 보호해서 의병이 이르기를 기다리십시오!

태공(太公)이 무왕을 도와 주(紂)를 침에, 앞의 무리가 창을 거꾸로 잡고 뒤를 공격하여 배반했으니, 이 때를 당하여는 무왕이 이성(異姓)으로서 혁명하였으되, 인심은 순한 것을 돕는 것이라, 오히려 이와 같았거든, 지금 이 거사는 성종의 친아들을 추대하는 것이라,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니, 누가 감히 이의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간계를 꾸미는 이가 있으면 스스로 조정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주(甲冑)를 입지 않고, 궁시(弓矢)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건 인심이요, 의거하는 바는 대의(大義)일 뿐입니다. 만약 어지러운 명령을 받들고 군사를 거느려 막는 자가 있으면, 뒤를 공격하여 배반하는 일이 사세상 만드시 이를 것입니다. 각각 마땅히 소심하게 살피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乙巳朔 受朝賀 御朝講○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吏曹判書成希顏等啓曰柳濱李穎金駿孫等被罪在全羅道知國事已去民心所屬欲推戴 主上使玉果縣監金漑傳檄于京師未至聞 殿下登極而還其事機不謀而同然則中外協心推戴於此可見當大書史冊故來啓其檄書曰恭惟我 太祖康獻大王艱難創業以遺子孫逮我 世宗德教休明政化大行禮樂文物煥然日新及我 成宗一遵成憲節用愛人刑以不殺爲威財以不畜爲富寬厚待民恩禮待士崇文尚武文武並用人樂爲用咸尚名節民安物阜躋世界平大平之治於斯爲盛惜其不享遐筭遽有鼎湖之悲雖深山窮谷莫不奔走號哭深仁厚澤浹於人心故也不意嗣君繼體盡變 先王之法暴虐無道惟日以滋 父王後宮杖而殺之翁主王子流而殛之臺諫之言事者竄之誅之戮辱大臣賊害忠良父戮則子及子戮則父及兄戮則弟及弟戮則兄及相收司連坐甚於秦法死者竄者不知其幾而皆非其辜發人之塚禍及枯骸頭骨相懸於藁街暴屍長留於市肆寸斬之刑碎骨之辟此又何等刑也奪人之妻妾恣行淫慾破人之廬舍以廣苑囿 先王陵寢盡爲雉免之場先聖祠廟變作熊虎之圈政在宮闈名分紊亂用度無節公私虛竭徵歛無藝民不聊生扶老携幼流亡相繼不特此也宗室兄弟之妾逼令相奸彝倫已斲人道滅矣至於三年之喪天下之通喪而忍短其制父母忌日君子終身之喪而亦皆罷之是乃謂祭無益自絕其祀也嗚呼 先王在天之靈果安所享乎言念至此不覺痛哭其他土木之役聲色之好臺池游畋之娛禽獸花奔之翫難以覩縷而昆虫草木石皆不得其寧焉貫盈之罪浮於桀紂自古亡國之君未有如是之甚者也生民一時之苦姑不足言大位奸之窺也萬一窺覲神器者一朝遽起則厭若思安之民必響應而影從矣易姓之禍亦或可虞 成廟二十六年之間禮接卿士培養忠義者正爲今日也其逮事我 成廟

受厚恩荷寵眷者坐視社稷之亡而忍事二姓乎 成宗在天之靈應與泉下舊臣已議陰誅且怨在朝公卿大夫苟錄容身不念舊主之恩也 晉城大君諱 成宗大王之親子也賢而有德中外屬望謳歌所歸舍此安仰茲以 成宗舊臣某某等欲推戴 晉城某月某日舉義兵移書諸道約日聚京師在朝三公六卿凡百執事速宜推戴以扶 宗社之危以攄人臣之憤如不得爾則共謀保護以待義兵之至者太公相武王伐紂前徒倒戈攻于後以北當是時武王以異姓革命人心助順尚且如此今此之舉推戴 成宗親子應天順人誰敢有異議不然有奸計者自有朝廷之議不以戰爭爲事故不甲冑不弓矢所恃者人心所據者大義耳如有奉亂命將兵以禦者攻于後以北勢所必至各宜小省毋貽後悔

《中宗實錄 卷1, 57面》

중종 원년 12월 11일(을묘)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육조 참의 이상 및 홍문관·대간 전부와 서반(西班) 2품 이상이 류송조(柳崇祖)가 차차 올린 일로 빈청에 모여 의논하였다. 류순·박원중·송일·권균·민효증·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윤순·강훈·김준손·성세명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이 임금의 도리를 잃었던 것은 고금에 없는 바로서, 스스로 하늘의 버림을 받았을〔自絶于天〕뿐만 아니라,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며, 능을 두고 사당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성상께서는 폐왕을 위하여 은혜(恩禮)가 극히 두터웠고, 조정의 처치 또한 의심할 것이 없는데, 송조가 망령되이 가당치 않은 고사(古事)를 인용, 이렇듯 굽은 말을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차자(筭子) 가운데 있는 일로 말하더라도, 그 인용한 바 무경(武庚)의 일은 더욱 크게 어긋나고 잘못된 것입니다. 무왕(武王)이 무경을 봉한 것은 곧 성탕(成湯)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서이지, 주(紂)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타 경서를 인용한 것도 모두 이와 같으니 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중략〕

정광세(鄭光世)·허집(許輯)·반우형(潘佑亨)·류응룡(柳應龍)·안운덕·박영문·김봉(金峯)·신용개(申用溉)·이점(李坫)·홍자아(洪自阿)·류빈(柳濱)·고형산(高荊山)·심광보(沈光輔)·하한문(河漢文)·이운거(李芸矩)·민상안(閔祥安)·박의영(朴義榮)·이굉(李宏)·이세정(李世貞)·최인(崔潏)·송천희(宋千禧)·조계상(曹繼商)·이가신(李可臣) 등이 의논드리기를,

“폐왕은 종사에 죄를 얻어 호칭을 강등하여 군(君)이 되었으니, 상장(喪葬) 의식에 왕례(王禮)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상주를 세우려면 마땅히 후계자를 두어 그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데, 후계자를 두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사세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사위 승습’(辭位承襲)으로써 사연을 만들어 주

청하였습니다. 이제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것이 사리에 순한 것 같으나, 그러나 사부(賜賻: 부의를 내리는 것.) 조제(吊祭)하는 천사(天使: 중국 사절)가 올 때 국가에서는 상례를 써서 복제(服制)를 고쳐 대접하겠습니까? 이도 또한 사세 상 시행하기 어려운 바입니다.”[중략]

○전교하기를,

“공신의 노비 구사(丘史)를 전번에 정하여 준 것 외에는, 앞으로는 연로의 잔읍(殘邑) 노비는 정하여 줄 수 없다.”

하였다.

○乙卯 受朝叅 御朝講○六曹叅議以上及弘文館臺諫全數西班二品以上柳崇祖上筭事會議賓廳柳洵朴元宗宋軼權鈞閔孝曾朴安性盧公弼李季男李蓀李諱尹珣姜渾金俊孫成世明等議廢王君道之失古今所無非唯自絕于天得罪於 宗社其不可計聞請諡置陵立祀明甚且 聖上爲廢王恩禮極厚朝廷處置亦無可疑而崇祖妄引不類古事有此曲說最不可曉且以筭中一事言之其所引武庚事尤大舛謬武王之封武庚乃爲奉湯之祀非爲紂也其他引經皆類此不可施行[中略]

鄭光世許諱潘佑亨柳應龍安潤德朴永文金崙申用漑李沾洪自河柳濱高荊山沈光輔河漢文李芸柁閔祥安朴義榮李浚李世貞崔潏宋千喜曹繼商李可臣等議廢王得罪 宗社降號爲君喪葬之儀不可復用王禮立主則當置後以立其祀置後立祀勢不可行國家旣以辭位承襲爲辭奏請今計聞請諡於事似順然賜賻吊祭天使之來國家用喪禮變服以待之乎此亦勢所難行[中略]

○傳曰功臣奴婢丘史已前定給外自今以後路傍殘邑奴婢毋得定給 《中宗實錄 卷1, 64面》

중종 2년 1월 11일(을유)

정원이 다시 사찰 세우는 일의 그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 류자광(柳子光) ·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 우의정 류순정(柳順汀) ·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 신준(申浚) ·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 · 공조 판서 권균(權鈞) · 예조 판서 송일(宋軼) · 좌찬성(左贊成) 박안성(朴安性) · 우찬성 노공필(盧公弼) · 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 ·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 형조 판서 이집(李諱) · 우참찬(右叅贊) 이손(李蓀) · 판윤(判尹) 전임(田霖) · 이조 참판 류응룡(柳應龍) · 호조 참판 박영문(朴永文) · 예조 참판 김진(金詮) · 형조 참판 신용개(申用漑) · 병조 참판 허집(許輯) · 공조 참판(工曹參判) 류빈(柳濱) · 좌윤(左尹) 안윤덕(安潤德) · 우윤 하한문(河漢文) · 풍양군(豐陽君) 김무(金賦) · 이조 참의(叅議) 조계상(曹繼商) · 병조 참의 박의영(朴義榮) · 공조 참의 류승조(柳崇祖) · 형조 참의 최인(崔潏) · 병조 참지(兵曹叅知) 이세정(李世

貞) 등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찰에 관한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논계하였는데도 윤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선왕의 유교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지마는, 유교 중에서도 시행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원래 다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단(異端)의 허탄한 일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지난번 사찰을 다시 세우지 말도록 명하시어 인심이 다 감복하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다시 세울 것을 명하시니, 어찌 이리 명령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만일 큰 해가 없는 일일진대, 신등이 어찌 감히 번거롭게 말씀 드리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대의로 자전케 아뢰시어 다시 세우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乙酉政院啓復立寺刹之非不允

○武靈府院君柳子光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高陽府院君申浚昌山府院君成希顏工曹判書權鈞禮曹判書宋軼左贊成朴安性右贊成盧公弼晉川君姜渾戶曹判書李季男刑曹判書李輯右叅贊李蓀判尹田霖吏曹叅判柳應龍戶曹叅判朴永文禮曹叅判金詮刑曹叅判申用漑兵曹叅判許輯工曹叅判柳濱左尹安潤德右尹河漢文豐陽君金砮吏曹叅議曹繼商兵曹叅議朴義榮工曹叅議柳崇祖刑曹叅議崔潁兵曹叅知李世貞等啓曰朝廷將寺刹事累日論啓未得蒙允若以謂先王遺教不可不從則遺教中苟或有不可施者固不可盡從況此異端虛誕之事乎前者命勿復立寺刹人心咸服而遽命復立是何命令之不一耶若事無大害臣等豈敢煩讀乎願以大義啓 慈殿命勿復立不允

《中宗實錄 卷2, 4面》

중종 2년 1월 30일(갑진)

주강에 납시었다.

○우의정 류순정(柳順汀)으로 병조 판서를 겸하게 하고, 박안성(朴安性)으로 우찬성(右贊成), 류빈(柳濱)으로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삼았다.

○甲辰 御晝講○以右議政柳順汀兼兵曹判書朴安性爲右贊成柳濱爲兵曹判書

《中宗實錄 卷2, 14面》

중종 2년 윤 1월 5일(기유)

조강에 납시었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겸병조 판서 류순정(柳順汀)은 판서 류빈(柳濱)과 동성 5촌 숙질간이니, 법으로는 상피(相避)할 것이 없지만 친척으로는 한 집안입니다. 또 헌부(賢否)를 가리지 않고 겸선전관(兼宣傳官)을 모두 재상의 자제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

다. 청하옵건대, 판서 한 사람은 체직(遞職)을 하소서.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겸 판서로는 병권(兵權)을 맡고 정권에는 간여하지 말게 하며 겸선전관 역시 공선(公選)하게 하소서.” 하였다.

○己酉 御朝講○憲府啓曰兼兵曹判書柳順汀與判書柳濱同姓五寸叔姪於法雖無相避親則一家兼宣傳官不擇賢否皆用宰相子弟皆非矣請遞一判書如不可遞則請令兼判書只摠兵權不干政權兼宣傳官亦令公選

《中宗實錄 卷2, 15面》

중종 2년 윤 1월 25일(기사)

○공조 참의(工曹叅議) 류승조(柳崇祖)가 아뢰기를,
 “김공저(金公著)가 집을 빌려, 신의 이웃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초에 공저가 신의 집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좌상(左相 : 박원종(朴元宗))이 전 왕의 나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또 빈객 접대를 좋아한다. 그리고 류자광(柳子光)이 공을 논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을 많이 참록(參錄)하였는데, 그 날 시위 군사 중에 참여 못한 자들이 모두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별의 변괴[星變]가 있으니 변고가 생길까 염려된다.’ 했고, 이 달 15일께 공저가 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박(朴)·류(柳) 두 정승이 지금 마음대로 방자하니 광망(狂妄)한 무리들이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 하느냐?’ 하니, 대답이, ‘무사(武士)들이 약에 대해 물어보려고 우리 집에 많이 오는데,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하므로, 신이 또 묻기를 ‘누구냐?’고 하니, 공저의 대답이, ‘이장길(李長吉)의 무리다.’고 합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런 광망한 일을 어찌하여 하느냐?’고 하니, 공저가 대답하기를, ‘윤탕로(尹湯老)를 시켜 위에 계달(啓達)하게 해서 이 두 정승을 제거하려 한다. 다만 탕로는 믿기 어려우니 가볍게 말할 수 없고, 또 죄악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역시 경솔하게 거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중략]

신이, ‘정미수·김감·이계맹도 과연 이 일을 아는가?’ 하니, 경이, ‘알 것이다.’ 하므로, 신이, ‘미수 등이 인군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한 뒤에는 또 어찌 하려는 것인가?’ 하니, 경의 말이, ‘그 후의 일은 미리 말할 것이 없다. 미수 같은 이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말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니, 선치(善治)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미수 등이 성사 하더라도, 조정에 선량한 이가 많고 또 공신이 많으니, 반드시 이의가 있을 것인즉, 실패하는 일이 없겠는가?’ 하니, 경이 말하기를, ‘그럴 염려는 없다. 이계맹이 류순정과 원래 친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려 하였지만, 그 눈에 기름이 덮여 있어 하지 못하였다. 또 성희안·류빈(柳濱)과도 말하려 하였으나, 길이 없었

다. 부귀를 탐하는 자는 눈에 모두 기름이 덮여 있는 것이니,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己巳○工曹參議柳崇祖啓曰金公著借家來居于臣之隣本月初公著到臣家謂臣曰左相多畜前王內人且喜接賓客柳子光論功時其鄉人多叅錄焉其日侍衛軍士未叅者皆爲憤怨今有星變恐生變故本月十五日間公著又來謂臣曰朴柳兩相至今縱恣狂妄等輩欲擊之臣問曰何人欲如此爲答曰武士以問藥事多來吾家人人皆如此發說臣又問伊誰公著答云李長吉輩也臣又問如此狂妄之事何以爲之公著答云欲令尹湯老啓達除去此兩相但湯老難信不可輕說且罪惡未彰亦不可輕易舉事[中略]

臣曰鄭眉壽金勸李繼孟果知此事乎耕曰其知之矣臣曰眉壽等除君側之惡復將何爲耕曰其後事不須預言如眉壽者能容受下人之言言無不從善治不難矣臣曰眉壽等雖成事朝多善良又多功臣必有異議寧無見敗耶耕曰必無是慮李繼孟與柳順汀素善欲言此事而其目冒油未果且欲說與成希顏柳濱而無因也貪戀富貴者目皆冒油不可與圖事也《中宗實錄 卷2, 17面》

중종 2년 윤 1월 30일(갑술)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박영문(朴永文)의 처모 이씨(李氏)에 관한 「적침상고일기초」(嫡妾相考日記草)를 내려보내서, 육조(六曹) 참판 이상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서 아뢰게 하니, 류순·류자광·박원중·류순정·신준(申浚)·성희안(成希顔)·박건(朴楗)·박안성(朴安性)·송일(宋軼)·권균(權鈞)·이계남(李季男)·이손(李蓀)·이집(李詰)·류빈(柳濱)·허집(許輯)·김봉(金峯)·신용개(申用漑) 등이 의논드리기를,

“박영문의 처모 이씨는 원래 황효원(黃孝源)에게 급부(給付)되었던 여자지만, 사족의 딸로서, 효원이 외조모 박씨(朴氏) 집에서 길러 줄 것을 허락한 바 있었는데, 장성한 다음에 효원이 예절을 갖추어 장가든 여자입니다. 그래서 후의 논자들은 그 명분을 중히 여겨, 혹은 정실이 될 수 없다 하고, 혹은 본래 사족이며 또 예절을 갖추어 장가들었으니, 정실로 논정하는 것이 옳다는 자 역시 많습니다. 성종께서도 정의(廷議)를 참작하여 허통(許通)케 하였으며, 영문(永文)은 또 육례를 갖추어 그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으니, 정실이 아니라고 논하는 것은 원통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의논을 대간(臺諫)에게 보이고, 또 박영문의 처 황씨(黃氏)의 허통하는 일을 의정부와 이(吏)·병·예조·대간에게 전하라.” 하였다.

○甲戌 御朝講○下朴永文妻母李氏嫡妾相考日記草令六曹叅判以上更議以啓柳洵柳子光朴元宗柳順汀申浚成希顔朴楗朴安性宋軼權鈞李季男李蓀李輯柳濱許輯金峯申用漑等

議朴永文妻母李氏雖給付于黃孝源而以士族之女孝源聽其長養于外祖母朴氏家既長而孝源成禮娶之後之議者重其名分或議爲不可爲嫡或議爲本以士族且以禮聚之以嫡論定爲當者亦多 成宗亦因廷議叅酌許通而永文又以禮娶其女爲妻論以非嫡寃矣傳于政院曰以此議示于臺諫且以朴永文妻黃氏許通事傳于政府吏兵禮曹臺諫 《中宗實錄 卷2, 27面》

중종 2년 2월 23일(정유)

조강에 납시었다.

사간(司諫) 김말문(金末文)과 장령 한급(韓汲)이 ‘최수준은 범죄가 명백하니, 반드시 추문 핵실할 것이 없다.’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추문 핵실하고 있으니,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정함이 가하다.”

하였다. 급이 또 아뢰기를,

“첨사(僉使)·만호(萬戶)를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로 차견(差遣)함은 매우 불가합니다. 이 무리들은 선비들과 달라, 그 소망이 이것뿐인 까닭에 탐람 부정을 거리낌없이 하고, 방어하는 일은 여사(餘事)로 알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폐조(廢朝) 때에는, 임사홍(任士洪)이 병조 판서가 되어 모두 그가 아는 용잡(庸雜)한 무리들을 차견하였었습니다. 청하옵건대 앞으로는 내금위(內禁衛)를 차견하고, 이미 제수된 자라도 갑사의 무리가 있으면 도태(淘汰)하여 버리소서. 또 무예(武藝)로 취재(取才)하는 법은 순전히 감사·별시위가 만호·첨사가 되는 계제(階梯)이오니, 다시 거행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고, 영사 박원종과 특진관(特進官)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한 급이 아뢴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丁酉 御朝講司諫金末文掌令韓汲論崔秀俊罪犯明白不必推覈 上曰今方推覈待畢定罪可也汲又曰僉使萬戶以甲士別侍衛差遣甚爲不可此輩非士類之比所望止於此故貪黷無忌視防禦爲餘事專不用意廢朝時任士洪爲兵曹判書皆以所知庸雜之類差遣請自今以後以內禁衛差遣曾已除授者如有甲士之類請汰去之且武藝取才之法專是甲士別侍衛爲萬戶僉使之階梯請勿復舉行領事朴元宗特進官柳濱曰韓汲所啓當矣 上曰可 《中宗實錄 卷2, 36面》

중종 2년 4월 3일(병자)

류순·류자광(柳子光)·박원종·류순정·신준(申浚)·성희안(成希顔)·박견(朴健)·류빈(柳濱)·김봉(金封)·구전(具詮) 등이 의논드리기를,

“왜노(倭奴)가 우리 백성들 사는 데에다 불을 놓았는데도 버려둔 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라의 위엄이 없는 것이요, 저들은 더욱 우리를 경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김준손(金俊孫)으로 하여금 왜추(倭酋)들을 불러다 효유하

기를, '전일 우리 민가에 불놓은 자가 누구냐? 가사 우리 백성이 너희들 사는 집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우리 진장(鎭將)에게 와서 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여야 할 것인데, 더구나 우리 백성은 불놓은 형적이 없는데도 너희들이 백주에 때를 지어 성 밑까지 와서 인가를 불태우는 것이 가하냐? 국가에서 너희들을 대우함에 은혜와 예절이 지극히 후한 것은, 너희들이 좀 예의를 알아서 개·돼지 같은 북쪽 오랑캐에는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너희들을 대우하는 뜻은 생각하지 않고, 횡포 무도하기가 개·돼지 같으니, 이것은 너희들의 수치이기도 한 것이다. 너희들은 함께 악명을 받는 것이 불가하니, 속히 불놓은 사람을 찾아 오라. 내가 그 사유를 캐어 물으려 한다.' 하고, 만일 찾아서 잡아 오면 불놓은 이유를 국문하며, 또 화복(禍福)을 말하여 반복 힐책(詰責)하고, 효유하여 말하기를, '조정에서 법으로 처단하려 하였지만, 도주(島主)가 네 죄를 다스리려 한다 하므로, 아직은 정지하고, 도주의 처치하는 것을 기다린다.' 하고, 또 왜주(倭酋)에게 말하기를, '도주가 불놓은 사람을 가려내어 죄를 다스리려 한다 하므로 지금은 추궁하여 논죄하지 않으니, 너는 범죄인의 성명 등을 적어 도주(島主)에게 급보하여 속히 죄를 다스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정의 처치가 있을 것이니 누우쳐도 안 될 것이다.'고 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준손에게 회유(回諭)하되, 다만 왜(倭)는 성품이 조급하니 사세를 보아 적당히 선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丙子柳洵柳子光朴元宗柳順汀申浚成希顏朴楗柳濱金崱具詮等議倭奴火我民居置而不問則果無國威彼將益肆輕我之心矣令金駿孫招諭倭酋等曰前日火我民家者誰耶假使我民火爾居廬爾當來告鎭將使之治罪可也況我民縱火形迹未著爾等白晝成群徑到城底故燒人家可乎國家待爾等恩禮至厚者以爾稍識禮義非如北虜犬豕之此也今不念國家待爾之意暴橫無道自同犬豕亦爾等所羞也爾輩不可同受惡名其速尋縱火人來吾欲究問厥由若尋來則鞫問縱火之由且開陳禍福反覆詰責仍諭曰朝廷欲置于法聞島主將治爾罪故姑停之以待島主處置耳又語倭酋曰聞島主將摘出縱火人治罪今不推論爾可開具有罪人姓名馳書島主俾速治罪不然則當有朝廷處置悔無及矣大槩以此回諭駿孫但倭性躁急使之觀其事勢務要處置得宜

《中宗實錄 卷2, 45面》

중종 2년 5월 13일(을묘)

○대간이 아뢰기를,

“이조 참관 류응룡(柳應龍)은 본래 재능도 없고, 또 문과로 출신한 사람도 아닌데, 폐주(廢主)가 류순(柳洵)의 아들이므로 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품계(品

階)를 가선(嘉善)으로 올리고 관직을 참판으로 제수했습니다. 매양 정사(政事)하는 날에 남을 벼슬시키고 싶으면 아버지의 요청이라 핑계하여 문득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수상(首相)을 하고 아들은 이조(吏曹)에 있어 부자가 정권을 장악하였으니, 그 징조를 커지게 할 수 없으며 또 추쇄도감 제조(推刷都監提調)로서 공평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여, 그 인물됨이 전조(銓曹)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조(六曹) 어디에도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개차(改差)하소서.

한성부 우윤(右尹) 하한문(河漢文)도 역시 재능이 없는 데다가 정당하지 못한 길로써 지위가 2품(品)에 올랐습니다. 한성부도 육조와 같으므로 어질고 능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더구나 한문(漢文)은 폐조 때에 내아(內兒 : 연산군의 아들)를 봉양(奉養)하면서, 음식 대접을 잘함으로써 은총을 받아 요직을 빨리 얻었으니, 어찌 같이 사대부(士大夫)의 열에 끼일 수 있겠습니까? 모두 속히 개차하소서.

광주목사(光州牧使) 이줄(李茁)은, 지난 병인년 가을 8월 이과(李顥)·류빈(柳濱)·김준손(金駿孫) 등이 남쪽 사람과 더불어 계책을 결정하여 성상(聖上)을 추대할 때에, 이줄이 무사(武士)이며 또 외척과 연줄이 닿는다 하여 준손을 보내어 격서(檄書)를 가지고 급히 가서 약속을 정하게 하였더니, 이 때에 이줄이 발끈 얼굴빛을 변하며 준손을 결박하고, 상변(上變)하려 하므로, 준손이 변소로 빠져 나가 겨우 면했습니다. 줄이 반복하여 속임수가 많았음은 형용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 만일 상변했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화란(禍亂)이 있었을 것이나, 성상의 몸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속히 추국하여 그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류응룡은 비록 재능이 없다 하나 벼슬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하한문은 비록 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드러난 허물이 없고, 이줄이 상변하려던 일도 현저하지 않으므로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4차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줄의 일은 대간(臺諫)이 아뢰는 바가 이러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대간이 아뢰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는 적은 일이 아니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 때의 일을 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 사람에게 하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줄의 일을 김준손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乙卯○臺諫啓曰吏曹叅判柳應龍本無才能又非出身廢主以柳洵之子慰藉其父階嘉善除叅判每於政事之日若欲爵人則托稱父請輒成己欲父爲首相子居政曹父子秉政漸不可長且以推刷都監提調多有不公之事其人物非但不合銓曹於六曹亦不當宜速改差漢城府右尹河漢文亦無才能由傍蹊曲徑位至二品漢城府又與六曹同當擇賢能而任之况漢文在廢朝奉養內兒盛其供饌以市恩幸驟得美官豈可並齒於士大夫之列乎並速改差光州牧使李茁去丙寅年秋八月李穎柳濱金駿孫等與南人決策推戴 聖上時以李茁爲武士且連戚畹遣駿孫持檄書馳詣定約茁勃然作色勢將縛駿孫上變駿孫如廁僅免茁之反復多詐不可形言若上變則亦有不測之禍其於 聖躬何如也請速推鞠以懲其罪傳曰柳應龍雖曰無才能筮仕已久河漢文雖非出身無顯然之過李茁上變之事亦未顯著皆不允又四啓不允傳于政院曰李茁之事臺諫所啓如是何以爲之政院啓曰臣等聞臺諫所啓無任驚惶之至此非小事不可不鞠且其時同事之人有之當先下問傳曰李茁事其問于金駿孫以啓

《中宗實錄 卷3, 5面》

중종 2년 5월 14일(병진)

○사간 김준손(金駿孫)이, 이줄의 약속을 어긴 사실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그 글은 아래와 같다.

“류빈(柳濱)·이과(李穎)와 신등은 지난 병인년 8월에 의거(義舉)하기로 같이 의논하되, 9월 10일에 남원 광한루(廣寒樓) 앞에서 군오(軍伍)를 지어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9월 1일에 우선 격서(檄書)를 옥과현감(玉果縣監) 김개(金溉)와 전 좌랑(佐郎) 이부(李頰)에게 주어서 서울로 달려 가서 조정에 알리고, 곧 이어서 공사(弓士)를 거느리고 말(馬)을 재촉하여 가서 진성대군(晉城大君)을 은밀히 모시고 남쪽 군중(軍中)으로 오라 했습니다.

또 ‘조정에서 만일 의거하기로 한다면, 박원종(朴元宗)·류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이 계책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키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방어할 사람도 또한 이 세 사람일 것이니, 이 세 사람에게 서신을 통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하여, 이과(李穎)가 곧 박원종·류순정·성희안에게 글을 보내어 내응(內應)하도록 했습니다.

격서(檄書)를 띄우고 나서 이과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이줄(李茁)이 공사(公事)로 옥과(玉果)에 왔을 때에 과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그 도리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종묘 사직을 어찌할 것인가?」[중략]하고, 감히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는 내어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줄이 자제들로 하여금 둘러 싸서 지키게 하고는 마구에서 말을 끌어내 안장을 갖추어 밖으로 나가므로, 이 때에 신은 반드시 이과와 류빈(柳濱) 등을 잡으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거짓 대변을 보고 싶다하여 관청 섬돌 아래로 나와 앉아, 신의 종 수천(守

千)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諸將記)를 담 아래 대나무 숲 속에 몰래 묻게 하고, 또 이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했는데, 때는 이미 밤중이었습니다.[중략] 상이 정원에 묻기를,

“나는 이줄(李茁)의 사람됨을 아는데, 그가 반드시 큰 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다고 여기므로 그러한 듯하니, 잡아 오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삼공(三公)에게 물어보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줄이 처음에 이과(李穎) 등과 약속을 정하고 도리어 고변할 뜻이 있었습니다. 신등이 이 단자(單字)를 보고 통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사오니, 잡아 오는 것이 매우 당연하옵니다.

그러나, 김준손(金駿孫)의 단자를 삼공에게 내려 수의(收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丙辰○司諫金駿孫書李茁背約事啓之其書曰柳濱李穎與臣等去丙寅年八月共議舉義約於九月初十日軍于南原廣寒樓前仍發向京師九月初一日先以檄書授玉果縣監金漑前佐郎李穎馳往京師以諭朝廷仍令率弓士□馬以往密奉 晉城大君南至軍中又曰朝廷若舉義朴元宗柳順汀成希顏當決策吾等起兵則領兵來禦亦此三人也三人處通書似當李穎即裁書於朴元宗柳順汀成希顏使之內應檄書既發李穎與臣言曰往者李茁因公到玉果穎從容語之曰上失其道國勢已危奈 宗廟社稷何[中略]敢出示分諸將記茁令子弟圍守且令牽出廐馬鞵鞍而出外臣意必捕李穎柳濱等而去陽欲大便出坐軒砌下召臣奴守千潛埋檄書及諸將記于墻下竹林又令往李穎處諭此意時夜已分矣[中略]

上問于政院曰予知李茁之爲人彼必以大事不可輕易爲也故如是耳拿來當否其問于三公政院啓曰李茁初與李穎輩約定而反有上變之意臣等見此單字不勝痛憤拿來甚當然金駿孫單字下三公收議何如

《中宗實錄 卷3, 6面》

중종 2년 5월 17일(기미)

조강에 납시었다.

○전 대사성(大司成) 이과(李穎)가 이줄이 고변(告變)하려고 한 사실을 써 올렸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병인년 8월 □일에 신이 김준손·류빈 등과 의거하기로 의논, 부서(部署)의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널리 알려, 9월 10일에 남원부의 광한루(廣寒樓) 앞에 모두 모였다가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의논하기를, ‘모름지기 조정에 알려 미리 조치하게 해야 한다.’ 하고 바로 8월 30일에 먼저 격서

(檄書)를 옥과현감(玉果縣監) 김개(金漑)와 전 좌랑(佐郎) 이부(李頰)에게 주어 장사(壯士)를 거느리고 좋은 말을 구하여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신고 서울로 달려가 조정에 알리게 하였다. 한편 또 의논하기를, ‘박원종·류순정·성희안이 주선하여 내응(內應)할 수 있다.’ 하여 신이 그 세 폭을 써서 3인에게 나누어 부쳤는데 그 내용은, ‘나라 형편이 이와 같아 앞 일을 추측할 수 없다. 공등은 모두 성종의 옛 신하로서 은혜를 받음이 가장 융숭하였는데, 사직의 위기를 차마 앓아 보기만 하고, 속히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진성대군은 성종의 친아들로서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촉망을 받으니 시급히 추대하여, 사직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공등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지금 나는 류빈·김준손 등 2~3인의 옛 신하와 의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근이 호응하여 양식을 지니고 구름같이 모여, 명성과 위세(威勢)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천심(天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9월 10일에 남원 광한루 앞에 진을 치고 곧 서울로 향할 것이니, 공등은 조정과 협의하여 대비전(大妃殿)께 명을 받아 시급히 추대(推戴)하는 것이 상책(上策)이요, 시위하고 보호하여 의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책(中策)이요, 척리(戚里)의 여러 군(君)과 밤에 잠저(潛邸)로 가서 이해득실을 말씀드리고 호위(扈衛)하여 남쪽으로 강을 건너 대군(大軍)과 합세하는 것이 하책(下策)이니, 각자가 빨리 결정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였다. 격서(檄書)를 가진 자가 이미 떠나자 또 삼도 경차관(三道敬差官) 문계창(文繼昌)에게 격서의 뜻을 가지고 경상도(慶尙道)로 달려가 알리도록 하니, 계창이 격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신은 김준손에게 또 말하기를, ‘지난번 광주목사(光州牧使) 이줄(李茁)이 공사(公事)로 이 고을에 왔을 때에, 서로 찾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술이 얼근히 취한 뒤에 과(顛)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 도리(道理)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이미 위태롭게 되었으나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성종의 덕택이 민심(民心)에 젖었기 때문인데, 지금 학정(虐政)이 물과 같이 더욱 깊어지고, 불과 같이 더욱 뜨거워지니, 종묘와 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성대군은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촉망을 받으니, 성종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의뢰하는 데 있다.」 하니, 줄은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다. 지금 백성이 어육(魚肉)이 되었는데, 공과 류빈(柳濱)은 다 지위와 명망이 있으니 우리 3인이 의거를 일으키면 누가 좇지 않겠는가?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서 위에서 알아줌이 또한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과 힘을 같이하지 않겠는가? 전임(田霖)이 지금 순찰사로서 본도에 와 있는데, 내가 공사로 인해 당연히 만나보게 될 것이니, 또한 가만히 말해 보려고 한다…」 하면서 돌아갔다. 지금 격서가 이미 서울로 올라갔

으니, 박·류·성 3인이 반드시 조정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조치할 것이다. 다만, 줄(茁)이 스스로, 자기는 외척으로서 알아줌이 또한 깊어 오직 그가 잠저(潛邸)에 출입하면서 중간에서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 하니, 줄에게 이 의도를 말하여 서울로 올라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준손은 말하기를, ‘매우 당연한 일이다.’ 했습니다.

이 때에 줄이 공사로 멀리 진도(珍島)에 가 있었으므로 신은 준손과 더불어 이장곤(李長坤)의 친족 추쇄(推刷)에 관한 일을 급히 보고하여, 그 마음을 경동(驚動)시켜 관아로 돌아오게 재촉하였습니다. 이 때 장곤은 망명(亡命)했는데, 줄과 장곤은 사촌형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줄에게 보고하기를, ‘관아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김준손과 같이 가서 이야기 하겠다.’ 하였습니다.

줄이 관아로 돌아온 뒤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 신은 준손과 같이 광주(光州)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병이 나서 준손이 격서(檄書)와 분부제장기(分部諸將記)를 간직하고 홀로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 광주에 도착하니 줄이 관청방 으스스한 데로 인도해 들어가 그 처남과 아우 이내 등을 불러 늘어 앉히고, 줄이 묻기를 ‘어째서 왔느냐.’ 하므로, ‘공이 일찍이 이과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지금 그 약속을 매듭 지으려고 왔노라.’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서 절목을 묻기에, 준손이 격서를 내어 보이고, 따라서 기병할 시기와 방략을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획이 이미 정해졌으니, 공은 대비전(大妃殿)과 아주 가까우므로, 잠저(潛邸)를 출입하면서 조치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족하(足下)로 하여금 준마(駿馬)를 많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주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이 방략을 자세히 듣고 격서를 다 본 뒤에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너는 비록 나와 동년(同年)이나, 교분(交分)이 깊지 않은데 내 마음이 어떠한 줄로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당초에 이과와 공이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지난번 약속을 거듭 매듭 짓고 공을 재촉하여 북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오지 못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저 이과는 지금 상인(喪人)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와 이과는 한 마디도 그 전에 서로 언급이 없었다.’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제장기(諸將記)를 내어 보이지 못하였는데, 줄이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포위하여 지키게 하고 또 안장을 갖추게 하여 곧 밖으로 나가므로, 준손은, 줄이 반드시 류빈·이과를 잡으러 간 줄로 생각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길이 없으므로 거

짓 대변을 핑계하고 관청 뜰 아래로 나와 앉아, 종 수천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를 담 아래 대나무 숲에 묻게 하고, 이어서 수천을 시켜 신에게 보고하기를, ‘광주목사(光州牧使)는 참으로 무례(無禮)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를 결박하려 하여, 일이 급하니, 류빈·의신정(義新正) 등과 더불어 빨리 기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이 광주에서 밤중에 옥과(玉果)까지 60리를 달려 왔는데, 날이 아직 새지도 않았었습니다.

신은 줄이 임금의 외척이 되기에 당초 약속을 간절하게 했었는데, 이제 배신하고 말았으므로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병을 참고 광주로 달려가, 그 간악한 자의 칼날을 꺾으려 했는데, 10여 리를 가다가 준손이 탈출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도로 돌아 왔습니다.

준손이 처음에 수천을 보내어 신에게 이 변고를 보고하게 하고 도로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줄이 밖에서 들어와 결박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또 창문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준손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온갖 방법으로 이해시키자, 줄이 말하기를, ‘이 고을 사람들이 또한 어찌 나를 따르랴.’ 하므로, 준손이, ‘이 고을 사람들이 공의 치적에 감복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으며, 또 이 의거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므로 비록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어찌 감히 고소할 것이며, 비록 고소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일가는 곧 다 멸망하는 화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 큰 일을 저해하여 인심을 동요시켜 기병할 시기를 늦추게 하는데, 대군이 만일 김개·이부의 말을 따라 성밖으로 나와 길에 오르면 중도에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이 앞으로 어디에서 혈식(血食)을 받으시겠는가? 공만이 오직 성종의 옛 신하가 아닌가?’ 하며, 말을 맺기 전에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었다 합니다.

또 준손은 줄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위 권주(權柱)가 죄 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아깝고도 아깝다.’ 하여, 그 어머니가 듣고 비통하게 여기게 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자, 줄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말하기를, ‘너의 계책이 너무 소루(疏漏)하니, 격서를 가진 자가 비록 이미 떠났다 하더라도 빨리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라. 또 감사(監司)에게 요청하여 나를 청녀압거차원(靑女押去差員)으로 차출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조치할 것이다. 또 정빈(丁嬪)은 나의 처와 아주 가까운 일가이니, 내가 지금 물화를 가지고 가서 후하게 은정(恩情)을 맺으면, 혹 허물이 있더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떡과 과실을 주어 보내면서 말하기를, ‘빨리 쫓아가면 김개 등이 가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준손이 승낙하고 드디어 탈출했다

합니다.

준손이 집으로 돌아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줄의 반복하는 마음을 끝내 믿기 어려우니, 서신을 보내어 그 뜻을 시험해야겠다.’ 하고 드디어 서신을 보냈으나 회답하지 않았고, 신도 서신을 보냈으나 줄은 또한 회답하지 않고, 바야흐로 청녀압거차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 뒤 10월 4일에 과는 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여 진도(珍島)로 향해 가는데 길이 광주(光州)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판관(判官) 김양수(金良秀)가 신에게 말하기를, ‘목사(牧使) 이줄의 어머니가 신사(神祀)로 인하여 나의 어머니를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말하기를, ‘큰 아들이 김함양(金咸陽 : 준손)을 결박하려는 것을 내가 작은 아들 내(萊)에게 듣고 힘껏 말렸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빈(柳濱)이 서계(書啓)한 말도 김준손·이과와 서로 같았다.

이에 앞서 위에서 이과·류빈(柳濱)을 불러 이줄이 고변(告變)하려고 한 절차를 서계하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써 올린 것이다.

○己未御朝講○前大司成李穎書李茁欲上變事曰丙寅八月日臣穎與金駿孫柳濱等共議舉義部署諸將廣諭本道約於九月初十日大會于南原府之廣寒樓前仍發向京師議曰須諭朝廷預爲措置乃八月三十日先以檄書授玉果縣監金漑前佐郎李穎令率壯士押良馬載甲冑弓矢馳往京師以諭朝廷又議曰朴元宗柳順汀成希顏可以周旋內應臣穎裁書三幅分寄三人曰國勢若此事將不測公等皆以 成宗舊臣受恩最隆其忍坐視社稷之危而不早爲之所乎 晉城大君 成宗之親子也賢而有德中外屬望早自推戴復安社稷非公等之責耶今者僕與柳濱金駿孫等二三舊臣決議舉義遠近響應羸糧雲合聲勢已成豈非天耶肆於九月初十日陳于南原廣寒樓前仍向京師公等與朝廷協議受命 大妃殿作急推戴上策也侍衛保護以待義兵之至中策也與戚里諸君夜詣潛邸開陳利害扈衛南渡與大軍合下策也各宜早決毋貽後悔檄書者旣發行又令三道敬差官文繼昌將檄書意馳諭慶尙道繼昌覽檄書注下而行臣穎語金駿孫曰向者光州牧使李茁因公到縣相訪設爵酒半穎從容語之曰上失其道國勢已危而尚且維持者以 成宗德澤洽於民心故也今者虐政如水益深如火益熱奈 宗廟社稷何 晉城大君賢而有德中外屬望是能光復 成宗之業賴有此耳茁曰公言正是今者百姓爲魚爲肉公與柳濱皆有位望吾三人奮義則誰不信從况我以戚畹受知亦深敢不同心戮力田霖今以巡察使在本道我當因公相會亦欲微諭云云而去今者檄書已上京朴柳成三人必與朝廷同心措置第茁自言以戚畹受知亦深惟此可以進退潛邸周旋其間諭茁是意促令上京可也駿孫曰甚當時茁因公遠在珍島臣穎與駿孫飛報李長坤族親推刷事以恐動之促令還官時長坤亡命茁與長坤爲四寸兄弟故也又報茁曰待還官當與金駿孫往話茁旣還官以書報之臣穎欲與駿孫同往光州適患疾駿孫袖檄書草分部諸將記獨往還語臣穎曰初到光州茁引入衙房奧處召其妻媪及群弟李萊等列坐茁問曰何爲而來答曰以公會與李穎有約今來欲申結耳茁曰我已知之因問節

目駿孫出檄書草以示之因陳軍期方略且曰此處之事群策已定公於 大妃殿爲切親進退潛邸可易措置故令足下多持駿馬馳往京師周旋爲之耳苗悉聞方略覽檄書訖攘臂厲聲曰汝雖與我同年交分不深度我心何如而發此言耶駿孫曰當初李穎與公熟議故今遣我來申結前約促公北行耳李穎亦欲與我偕來以病未果苗曰彼李穎者乃喪人何敢來見我乎吾與李穎曾無一言相及駿孫曰然則李穎乃誤我也不敢出示諸將記苗令子弟圍守且令韃鞍苗卽出外駿孫意苗必捕柳濱李穎而去蒼黃罔措伴稱大便出坐軒外階下召奴守千潛埋檄草及諸將記于墻下竹林因令守千走報于臣穎曰光牧眞無壯人也今將縛我事急矣宜與柳濱及義新正等火迫起兵云云守千自光州夜走玉果六十里天尚未明矣臣穎以苗戚里之人當初結約丁寧而今反覆乃爾不勝痛憤欲力疾馳往光州折其奸鋒行十餘里聞駿孫旣脫而還駿孫初遣守千報變于臣穎還入房中俄而苗自外而入勢若束縛然者牖間又有密語聲駿孫婉辭遜語多方以解之苗曰此州之民亦豈從我駿孫曰州人服公之治誰敢不從且此舉人人所願雖無識之人安敢告訴雖有告者旋有赤族之禍今公背約沮大事以動搖人心而使軍期稽緩 大君若從金漑李穎之言出城登途則中路必有變故然則 成宗在天之靈將何所血食乎公獨非 成宗舊臣乎言未終泣下沾衣又駿孫以苗母之寵壻權柱無罪被誅高聲語曰權柱可惜可惜使其母聽而悲慟言訖苗旣入衙內出曰汝計太踈賫檄書者雖已行促使人停之且請於監司差我青女押員則當上京措置且丁嬪與吾妻爲切族我今貨物而往厚結恩情則脫有罪辜可以免矣仍給餅果而送曰可速追止金漑等之行駿孫曰諾遂得脫出駿孫旣還家語臣曰苗反覆之心終亦難保須通書以試其意遂折簡不報臣穎亦折簡苗又不答方求爲青女押員上京其後十月初四日穎因奔父喪向珍島道經光州判官金良秀語臣曰牧使李苗母因神祀邀予母氏相話間語之曰長子欲縛金咸陽我因小子萊得聞而力止之云柳濱書啓之辭與金駿孫李穎相同先是 上命召李穎柳濱書啓李苗上變節次至是書上

《中宗實錄 卷3, 8面》

중종 2년 6월 6일(무인)

좌의정 박원중 ·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 · 지사(知事) 민효증(閔孝曾) ·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 공조 판서 윤탕로(尹湯老)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이줄(李茁)이 국문에서 한 말을 입계(入啓)하고, 이어 또 아뢰기를,

“이과(李穎) · 류빈(柳濱) · 김준손(金駿孫) 등이 비록 덕망은 있으나, 다 죄를 입어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만일 큰일(反正 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화가 컸을 것이므로, 줄이 화가 두려웠던 것일 뿐 별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과 등의 단자(單字)와 이줄이 공초(供招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한 말이 거의 같으니, 그 본뜻은 변을 고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줄의 사람됨이 재간이 없고 의심이 많아 큰 일에 쾌히 따르지 못하였으니 이 점은 죄줄만 하나, 줄은 대비전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추대하고 싶은 생각이 어찌 한이 있었겠습니까? 만

일 형장(刑杖)을 쓴다면 정상이 가공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 또한 그러하다. 내가 본래 줄을 잘 알므로, 비록 밖에 있었으나 공신으로 기록하도록 허락한 것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는 비록 정은 그렇지 않은 듯하나, 기회를 타서 의(義)를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과 등에게 그 사기를 잃게 하였으니, 죄가 없다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戊寅左議政朴元宗昌山府院君成希顏知事閔孝曾戶曹判書李季男工曹判書尹湯老等詣賓廳以李茁鞠辭入啓因曰李穎柳濱金駿孫雖有德望皆被罪謫居人若大事不成則其禍不測茁迫於畏禍別無他情李穎等單字與李茁招辭大同小異其元情則非欲上變茁之爲人無才幹多狐疑不能快從大事此似可罪茁於慈殿切親其推戴之意詎有涯耶若用刑杖則於情可矜傳曰予意亦然予素知茁故雖在外許錄功臣有何罪焉又啓曰此雖情涉無實不侍臨機舉義使李穎輩沮喪其氣不爲無罪請罷職乃命罷之
 《中宗實錄 卷3, 15面》

중종 2년 6월 17일(기축)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 우의정 류순정(柳順汀) · 좌찬성 박안성(朴安性) · 우찬성 송일(宋軼) · 좌참찬 이손(李蓀) · 우참찬 이즙(李諶)이 아뢰기를,
 “왕비 책봉하는 일을 신등이 전일에 두 번이나 아뢰었으나, 이제까지 국모를 정하지 못하여 대체에 미편하오니, 바라건대, 속히 정하시어 나라 사람들의 소망에 맞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국모를 정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이 큰 일을 갑작스럽게 빨리 정하기는 온당하지 못하다. 선왕들께서도 후사를 중히 여기시므로 결연히 정하지 못하신 것이다. 이제 자전(慈殿)의 뜻도 그러시고 나 역시 그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큰 일을 갑자기 정하기가 온당치 못하다는 하교는 매우 당연합니다. 국모의 범절은 마땅히 덕행으로 으뜸을 삼는 것이요, 비록 뒤를 이을 후사가 없더라도 다른 분에게 아들이 있으면 역시 대통(大統)을 잇게 될 것입니다.”

하니, 곧 윤숙원(尹淑媛 : 윤여필(尹汝弼)의 딸.)으로 왕비를 삼도록 명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일 이죽(李茁)을 원종공신록(原從功臣錄)에 올리라고 명이 계실 때 신들이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정국(靖國:반정(反正)) 때에 당해서 그 공이 류빈(柳濱)·이과(李顥)만 못한 사람이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하였습니다. 류빈(柳濱) 등이 비록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그 뜻은 가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류빈(柳濱) 등의 공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하였다. 아뢰기를,

“정국 공신 4등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고, 김개(金漑) 역시 그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등을 낮추어 공을 상주도록 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의신정 징원(義信正澄源)이 이과(李顥) 등과 힘을 같이하여 건의(建議)하였으니, 김개와 같이 원종공신 1등에 올리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중략]

○병조 판서(兵曹判書) 류빈·직제학 김준손 등이 사은함은, 정국공신으로 추가 기록된 때문인데, 전교하기를,

“사은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계책을 마련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사양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을 공신록에 기록하고자 한 지 오래였는데, 이제 삼공이 아뢰므로 기록하였으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중략]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류빈·전 대사성 이과·홍문관 직제학 김준손 등은 전라도에서 귀양살이할 때 먼저 대의를 주장하여 종사를 안정시키고자 도모하였으니, 그 뜻이 아름답다. 정국 공신 4등에 추가하여 올리고, 격서(檄書)를 가지고 온 옥과(玉果)현감 김개(金漑)와 의신부정 징원(義新副正澄源)은 원종공신 1등에 추가하여 올리라.”

하였다.

○己丑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左贊成朴安性右贊成宋軼左叅贊李蓀右叅贊李諱啓曰

封王妃事臣等前日再啓矣至今國母未定大體未便請速定封以副國人之望傳曰早定國母甚當然如此大事遽爾早定未便 祖宗朝以繼嗣爲重故未能決然定之今 慈殿之意如此予亦以此爲難又啓曰大事遽定未便之教甚當母儀當以德行爲先雖無繼嗣他若有子則亦當承統卽 命以尹淑媛尹汝弼之女爲王妃又啓曰頃者命李茁錄原從功臣時臣等未及啓之方靖國之時其功不如柳濱李穎者得叅靖國功臣柳濱等雖未成功其志可嘉傳曰柳濱等功何以待之啓曰追錄于靖國功臣四等似可傳曰可金漑亦叅其謀減等賞功又啓曰義新正澄源與李穎等同力建議與金漑同錄原從功臣一等何如從之[中略]

○兵曹判書柳濱直提學金駿孫等謝恩以追錄靖國功臣也傳曰勿謝恩又啓曰臣等雖設計如此未克成功有何功焉請辭傳曰欲錄卿等功久矣今三公啓之故錄之其勿辭[中略]

○傳曰兵曹判書柳濱前大司成李穎弘文館直提學金駿孫等全羅道謫居時首倡大義圖安宗社其志可嘉追錄靖國功臣四等檄書賚來玉果縣監金漑義新副正澄源追錄原從功臣一等

《中宗實錄 卷3, 23面》

중종 2년 6월 18일(경인)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전에 류빈(柳濱)·이과·김준손 등이 마음으로는 의거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성공하지는 못하였는데, 어제 듣건대, 이 사람들을 이 때문에 공신록에 올렸다 하니, 신등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거할 마음만 있었고 그 공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어찌 공신록에 올리겠습니까? 만약 그 정을 참작해서 올린다면 온 나라 사람 중 누가 추대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전하께서 하나 하나를 모두 공신록에 올리시렵니까?”

한순(韓恂)이 궁녀와 흥청(興淸)을 간통하고 조관(朝官)을 쥐어박고 끌며 기괴하고 방탕한 짓으로 임금의 마음을 앞질러 영합한 일을 이미 다 아뢰었고, 이 줄은 준손(駿孫)을 결박하여 고변(告變)하고자 한 흥계가 뚜렷하니, 두 사람의 죄를 다스리기 바라오며, 조연(趙演)은 이미 죄안(罪案)에 기록하였고, 이세희(李世薈)도 기록하려 하는데, 마침 분간(分揀)하라는 명이 게서 이를 기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연의 범한 것이 비록 작으나 이미 죄안에 기록하였으니 가벼이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세희가 범한 것은 조연의 10배가 되니 어찌 죄안에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류빈(柳濱) 등의 일은 윤택하지 않고, 조연 등의 일은 이미 대신들에게 의논하였으니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공을 논하고 상을 주는 것은 예로부터 중히 여기는 바로, 광광(霍光)²²⁶이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울 때, 양창(楊敞)이 그 모의에 참여하였으나 공신에 올리지 않고 단지 다섯 사람만 올렸으며, 장간지(張柬之)²²⁷가 칙천무후(則天武后)를 폐하고 현종(玄宗)을 세웠으나 단지 5왕의 공만 논하였고, 송 나라 태조가 천자가 되었을 적에 공신이 불과 여섯 사람이었고, 아조(我朝)의 이제껏 여덟 차례의 공신 수도 또한 많지 않은데, 이제 정국공신이 그 수가 예보다 배나 되고, 류빈 등 세 사람은 비록 의거할 마음이 있었으나 털끝만한 공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공신록에 추가하여 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순·이줄은 마땅히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되고, 조연·이세회는 역시 죄안에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진교하기를,

“공신이 많고 적음을 대신이 어찌 자세히 헤아리지 않고 아뢰었겠느냐? 그들이 공이 있으므로 의논하여 한 것이다.”

하고, 한순 등의 일을 모두 윤택하지 않으므로 세 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택하지 않았다.

○庚寅臺諫合司啓曰前者柳濱李穎金駿孫等心欲舉義而事未及成昨聞此人等以此而錄功臣等不勝驚愕此人徒有舉義之心而未成其功豈可錄乎若原其情而錄之則一國之人誰無推戴之心乎 殿下其可一一而盡錄乎韓恂奸宮女及興清粹曳朝官奇技淫巧先意迎合等事已悉啓之李茁欲縛駿孫其上變之計的矣請治二人之罪趙演既已錄案李世蒼亦將錄之而適有改分揀之命故未及錄矣趙演所犯雖小然已錄案不宜輕改况世蒼其所犯十倍趙演何以不錄案乎傳曰柳濱等事不允趙演等事已議于大臣故不允又啓曰論功行賞自古所重霍光廢昌邑立宣帝楊敞叅其謀議而不錄功只錄五人張柬之廢則天立玄宗只論五王之功宋太祖爲天子功臣不過六人至我朝八功臣之數亦不多矣今靖國功臣厥數倍前柳濱等三人雖有舉義之心未成絲毫之功不宜追錄韓恂李茁當痛治其罪而趙演李世蒼亦不可不錄案傳曰功臣多少大臣豈不細度而啓之乎彼既有功故議爲耳韓恂等事皆不允三啓亦不允 《中宗實錄 卷3, 24面》

226) 광광(霍光) : 한(漢) 나라 평양(平陽) 사람. 소제(昭帝)가 여덟 살에 즉위하자, 광광이 광무(光武)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 정사를 도왔고, 소제가 죽자 창읍왕(昌邑王)을 맞이하여 세웠으나 음행(淫行)이 있어 폐위하고 선제(宣帝)를 세웠다. 이 공로로 광광은 인각(麟閣)에 화상이 그려졌으나, 당시 광광 휘하로 같은 공로가 있었던 양창은 같이 공신에 올려지지 않았음.

227) 장간지(張柬之) : 당(唐) 나라 양양(襄陽) 사람. 적인걸(狄仁傑)이, '재상의 재목이라고' 추천, 칙천무후(則天武后)가 낙주 사마(洛州司馬)를 삼음. 후에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어 무씨(武氏)를 제거하고 당 나라 사직을 회복하였는데, 이때 먼저 피를 내어 무후(武后)로 하여금 중종(中宗)에게 양위하게 하였음.

중종 2년 6월 19일(신묘)

대간이 합사하여, 류빈(柳濱) 등을 공신록에 올린 일과 한순·이줄·조연·이세희 등의 일을 극력 논하고, 다시 차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윤여필(尹汝弼)로 파원(坡原)부원군을 삼고, 류빈(柳濱)으로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삼고, 청양군(�淸陽君) 이과로 전산군(全山君)을 삼았다.

○辛卯臺諫合司極論柳濱等錄功事及韓恂李茁趙演李世蒼事又上劄論之不允○以尹汝弼爲坡原府院君柳濱爲兵曹判書淸陽君李穎爲全山君
《中宗實錄 卷3, 25面》

중종 2년 6월 20일(임진)

대간이 합사하여, 류빈(柳濱) 등을 공신록에 올린 것과 한순·이줄·조연·이세희의 일을 논하여 여섯 번 아뢰고 또 차자를 올렸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壬辰臺諫合司論柳濱等錄功及韓恂李茁趙演李世蒼事六啓又上劄皆不允
《實錄 14卷 158面 〈中宗實錄〉 卷3, 25面》

중종 2년 6월 21일(계사)

대간이 합사하여 앞서 일을 논하고,

류빈(柳濱) 등이 의거하려 꾀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어찌 털끝만한 공이 있겠습니까? 그를 부당하게 상준 잘못은 비단 한때의 비방거리일 뿐 아니라,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순은 내보낸 궁녀를 간통하여 첩으로 삼았고, 영선(營繕)과 건판(建辦: 건설을 주관함)으로 연산에게 꺾을 얻었으며, 조관(朝官)을 쥐어박고 끌어당겨 교만과 방종을 마음대로 하고, 임금이 가까이한 천과 흥청(天科興淸)을 방자하게 데리고 다녀, 한 몸이 이 네가지 큰 죄를 범하였거늘, 전하께서 어찌 간사한 한 죄인을 아껴 공론을 굽히게 하십니까?

이줄과 이과는 의병 일으키기를 모의하였다가 이어 그 약속을 저버리고 갑자기 변을 고하고자 하였는데, 요행으로 무거운 상을 받았으니, 미루어 생각하매 한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추관(推官)은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하나, 줄이 만약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준손(駿孫)이 격문을 보였을 때 어찌하여 성내면서 일어나 준손을 가두려 하였겠습니까? 줄이 고변하려던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큰 죄를 면하고 오히려 원종공신에 참여하여 황금 띠를 매었으니, 이는 하늘을 속이는 일입니다.

○癸巳臺諫合司論前事

柳濱等謀欲舉義未就而止有何一毫功勞耶其僭賞之失非徒取譏一時抑貽笑萬世矣韓恂奸

放出宮女以爲妾以營繕建辦得幸燕山猝扑朝官以肆驕縱要致天科恣意帶行一身而犯此四大罪 殿下何惜一奸邪罪人以屈公論耶李茁與李穎謀舉義兵尋負前約遽欲告變僥倖重賞推而思之不覺寒心今推官斷以無情茁若無情當駿孫示檄何以驚怒起立欲囚駿孫耶茁之告變情狀已露而旣免大罪尙叅原從橫帶黃金是欺天也

《中宗實錄 卷3, 25面》

중종 2년 6월 22일(갑오)

대간이 합사하여 전일 일을 아뢴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류빈(柳濱)의 일은 앞서 3대장(박원중·성희안·류순정을 말함.)이 정국공신 4등에 올리기를 청하므로 따른 것인데, 이제 대간이 여러 날 복합(伏閣)하여 논계하기를 마지 않는다. 대체로 정국공신은 기록을 마친 지가 이미 오래이나, 원종공신은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고 또한 추가로 올리는 자가 있으니, 이제 류빈(柳濱)등을 원종공신 1등에 올리고, 김개(金溉)와 의신정(義新正 : 정원(澄源))을 2등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이 뜻으로 다시 3대장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甲午臺諫合司啓前事不允

○傳曰柳濱事前此三大將請錄靖國功臣四等故從之今臺諫累日伏閣論啓不已大抵靖國功臣則畢錄已久原從功臣則時未畢且有追錄者今柳濱等錄原從一等金溉義新正二等何如將此意更議于三大將

《中宗實錄 卷3, 25面》

중종 2년 6월 23일(을미)

○3대장이 류빈(柳濱) 등의 일을 의논드리기를,

“중사의 위기를 당했을 적에 온 나라 신민이 누가 성상(聖上)을 추대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의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일 주창하기를 경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류빈 등은 한몸의 생사와 일의 성패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이 경계하는 바를 무릅쓰고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격문을 조정에 보내어 사직을 안정시키려 했는데, 마침 일의 기회가 오기 전에 나라 일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런 의분으로 추대하려 한 마음은 조정에 있던 여러 신하와 진실로 다름이 없었는데, 신등이 홀로 훈공을 독차지하니 마음이 실로 편치 못하기에 그 일을 아뢴 것인데, 대간의 의논이 있습니다. 재상과 대간은 옳고 그름에 있어 서로 맞추어 가야 하는데 어찌 신등의 말이 옳다고 반드시 따를 것이겠습니까? 대간의 의논을 받아들여 성상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류빈(柳濱) 등의 일은, 3대장의 의논이 나의 뜻과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정원에게 아뢰기를,
 “그 뜻이 이미 전교에 갖추어졌으므로, 3대장의 의논이 성상의 뜻대로 재량하시
 도록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류빈(柳濱)·이과(李顥)·김준손(金駿孫) 세 사람은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올리고 김개(金漑)·의신정 정원(義新正澄源)은 원종공신 2등에 올리라.”

하였다.

○乙未○三大將議柳濱等事曰當 宗社幾危之日一國臣民孰無推戴 聖上之心然無人舉
 義者豈非以首事爲戒乎當濱等不恤一身死生成敗犯人所戒首倡大義移檄朝廷圖安社稷適
 事機未至國事已定然忠憤推戴之心與在朝諸臣固無彼此而臣等獨專勳功心實未安以此啓
 之而有臺諫之論宰相臺諫當可否相濟豈宜以臣等之言爲可而必從乎宜採臺諫之論裁自
 聖心傳于政院曰柳濱等事三大將議與予意不同何如政院啓曰其意已具於傳教故三大將所
 議以裁自 聖心啓之傳曰柳濱李顥金駿孫三人錄原從功一等金漑義新正澄源錄原從功二
 等

《中宗實錄 卷3, 25面》

중종 2년 7월 4일(을사)

○전교하기를,

“의신부정 정원(義新副正澄源)은 김준손·류빈(柳濱)·이과(李顥) 등과 의거(義
 舉)하기로 마음을 같이 하였으니 원종공신 1등에 올리라.”

하였다.

○乙巳○傳曰義新副正澄源與金駿孫柳濱李顥等同心舉義其錄原從功臣一等

《中宗實錄 卷3, 29面》

중종 2년 7월 12일(계축)

좌의정 박원중·우의정 류순정·좌참찬 이손·판윤 전임(田霖)·병조 판서(兵曹判
 書) 류빈(柳濱)·참판 허집(許輯)·참의 구견·참지 이세응(李世應)을 빈청으로
 불러, 보 읍기는 것을 가서 살필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원종 등이 의계(議啓)하
 기를,

“보 읍기는 일은, 대간이 폐가 있다 하여 보내지 말라 하였는데 과연 읍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소견으로 헤아려 보건대, 무산보(茂山堡)는 사는 백성들이, 땅이

척박하여 농사 지을 수가 없으므로 이사하려 한 지가 오래입니다. 매양 이 일로 감사(監司)에게 정장(呈狀)하는데, 금년에 만약 옮기지 못하고 명년에 옮긴다면, 명년 농사도 또한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가서 살펴계 하되, 부득이 중신을 보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변방의 사정을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변방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위안해 주는 것이니, 그 말은 소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癸丑命招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左叅贊李蓀判尹田霖兵曹判書柳濱叅判許輯叅議具詮叅知李世應于賓廳議往審移堡事元宗等議啓曰移堡事臺諫謂有弊請勿遣果是矣然臣等以所見計之茂山堡居民以地瘠不得耕種欲移居者久矣每以此事呈狀于監司今年若不移而明年移之則明年耕種亦不得矣且必使往審不獲已以重臣遣之一以觀邊鄙之事而措置焉一以鎮邊氓之心而撫安之其委任甚重傳曰可

《中宗實錄 卷3, 32面》

중종 2년 8월 26일(정유)

밤 사고(四鼓 : 새벽 2~4시 사이. 사경.)에 행행(行幸 : 임금의 거동.)의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졌는데, 전 우림위(羽林衛) 노영손(盧永孫)이 정원에 이르러 고변(告變)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이 달 18일 신이 7촌 질녀의 지아비(재종질서(再從姪婿)) 하원수(河源守 : 종친 임.) 집에 갔더니, 하원수가 말하기를, ‘구현휘(具玄輝)는 그대의 사촌인데 아직 봉군(封君)이 안 되었느냐?’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안 되었다.’ 하니, ‘양반으로 가선(嘉善 : 종2품의 품계.)이 된 사람은 곧 봉군이 되었는데, 현휘(玄輝)의 무리는 봉군이 못되었으니, 이는 고르지 못한 처사이다.[중략]

하원수가 또 말하기를, ‘박경(朴耕)이 다만 이 두 사람을 제거할 뿐이니 그 공이 오직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하자, 이과(李顥)가 「김공저(金公著)는 이미 박경과 같은 무리와 일을 도모하였으니, 어찌 그와 같지 않겠느냐? 이제 큰 일을 도모하자면, 마땅히 병부(兵部)의 사람에게 통유(通諭)해야 뒷 일이 잘되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류빈(柳濱)을 타일러 보고 싶어도 류순정(柳順汀)과 동성(同姓) 5촌(五寸)이라, 혐의찍어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성희안(成希顔)은 나에게 5촌이니 부득이 입시에 이야기 해야겠다. 지금에 논공(論功)을 하자면, 마땅히 공정(公正)하게 해야만 된다.」 하였다.’ 하였습시다.[중략]

또 신이 편지를 받은 일로, 윤귀수의 집에 갔더니, 윤귀수가, ‘성희안은 멀리

생각하는 사람이다. 도총관(都總管 :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정2품 벼슬.)을 너무 자주 체직하지 말라고 아뢴으니, 사체(事體)에 합당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나와 류빈(柳濱)과는 친하므로, 이러한 뜻을 일러주려 하지만, 류빈(柳濱)과 류순정(柳順汀)은 집안간이니 일러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너의 형에게 반드시 일러주라.’ 하기에, 신이, ‘나의 형은 봉사(奉祀 : 종손)하는 사람이니 만일 뜻을 일러주면 매우 좋으나, 외방에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했더니, 이과가 말하기를, ‘나와 너의 형과는 본래 교분이 두터우니 너는 꼭 통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신이 사람이 없어서 통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신이 손유(孫洵)를 보고 ‘이과가 너를 보고자 하더라.’ 하니, 손유가 말하기를, ‘이과의 처(妻)와 나의 처가 6촌이 되므로 보자고 하였을 뿐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이과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인심을 얻을 수 있느냐?’ 하니, 이과가 말하기를, ‘김잠(金岑)을 시켜서 사접(射接 : 활쏘기를 같이 배우는 동접(同接).)이 되어, 그 중에 앙심을 품은 자가 있거든, 살며시 타이르면 인심을 모을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또 이과가 말하기를, ‘내가 전라도에 있으면서 의거할 때, 류빈(柳濱)과 같이 의논을 하였으나, 그 사람됨이 좁아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고, 같이 모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석철(金錫哲)·구전(具詮) 뿐이다. 또 내가 들으니, 김잠은 말을 중지하고서 분소(墳所)로 돌아가고, 노영손은 광주(廣州)에 있다 하니, 사람을 시켜서 전에 의논한 일을 어찌하겠느냐고 물어보라.’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당연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편지를 보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노영손에게, ‘윤귀수가 『나와 이과가 같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하였습니다마는, 실은 윤귀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신이 노영손의 마음을 떠보려고 지어낸 말이었습니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밤이 이미 깊었으니, 속히 추국하도록 하라. 또 이과와 하원수를 면질(面質)시킨 뒤에 형벌을 가하는 게 옳겠다.”

하매, 정승 등이 아뢰기를,

“한 차례 가형(加刑)한 뒤에 대질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면질한 후에 형추(刑推)하라. 또 이과와 하원수를 면질시키면, 이과가 변명하지 못할 것이고, 다시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밤이 깊었으니, 내일을 기다려 추국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하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이과 등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무엇이나 상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수죄(首罪) 이과·하원수·윤귀수 등은 궐내에 엄하게 가두어 의금부 낭관(義禁府郎官) 및 내관(內官)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직(守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이에 상이 추국을 과하고 안으로 드니, 밤은 이미 사고(四鼓：사경)였다.

○丁酉夜四鼓行幸諸事已俱前羽林衛盧永孫到政院告曰月十八日臣到七寸姪女夫河源守家河源曰具玄輝汝之四寸猶未封君乎曰未也曰兩班爲嘉善者卽封君如玄輝輩不得封君此不均處也[中略]

河源守又言朴耕只去此二人而已則其功伊誰用之乎穎曰金公著旣與朴耕者類謀事豈不然乎今欲謀大事當諭兵部之人而後可也又云欲諭柳濱嫌於與順汀同姓五寸不可與爲之矣且成希顏於我五寸不得已臨時諭之也今之論功當以公正爲之可也云[中略]

且臣以受簡事往尹龜壽家龜壽曰成希顏有遠慮者也都摠管啓勿數遞無乃合事體乎且穎言予與柳濱有素欲諭此意然濱與柳順汀切親不可諭矣且穎言須諭汝兄臣言我兄奉祀人若諭志則甚善矣然在外奈何穎言我本與汝兄交厚汝須通諭可也臣無人故未得通諭且臣見孫洧言穎欲見汝洧言穎妻與我妻六寸故欲見耳且臣問穎曰何以得人心乎穎言使金岑作射接其中有快憤者因而潛諭則可收人心矣且穎言我在全羅道舉義時與柳濱共議其爲人狹窄不可共事唯有可議者金錫哲具詮耳且余聞金岑語中止出歸墳所盧永孫在廣州使人問前議事何以爲之臣答以當見面而言矣不可寄簡且臣謂永孫曰尹龜壽言我與李穎共作則何事不成等語實非龜壽所發臣欲見永孫之心創意開說也[中略]

上曰夜已闌矣其速推之且李穎與河源守面質後加刑可也政丞等啓曰加刑一次後面質何如上曰面質然後刑推之且李穎與河源守面質而穎不能辨對無復異辭矣 上曰夜深以待明日畢推之可也政丞等啓曰 上教至當仍啓曰臣等聞穎等所言則莫不相通而謀此事也其首罪李穎河源守尹龜壽等堅囚闕內令義禁府郎官及內官等率軍士而守直何如上曰可於是 上遂罷入內夜已四鼓矣

《中宗實錄 卷3, 55面》

중종 2년 9월 1일(신축)

중친들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아뢰기를,

“견성군(甄城君 : 돈(惇))이 비록 자신은 이과(李穎)의 역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미 죄인들의 입에 오른 바 되었으니, 그를 도성(都城) 안에 있게 함이 매우 부당합니다. 청컨대, 성밖으로 내쫓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과가 부당한 무리들로 견성군을 가탁하여 역모를 꾸민 것이다. 견성군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죄 없는 사람을 성외로 내쫓는 것은 내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바다. 그러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중략]

강혼(姜渾)·박안성(朴安性)·송일(宋軼)·이집(李諶)·김응기(金應箕)·류빈(柳濱)·성희안(成希顔) 등이 하례(賀禮) 때 마침 빈청에 나와서 아뢰기를,

“이과가 남이(南怡)와 다름이 없으니, 그 추관 등도 익대의 예에 의하여 논공하소서.”

하니,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라의 의논이 나의 뜻과 같으니, 논공하는 것이 옳다. 공신의 칭호와 등제(登第)를 곧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辛丑朔宗親等詣賓廳啓曰甄城君雖不自與於李穎之謀然既登於罪人之口其在都城之內甚未安請黜城外傳曰穎等以不逞之徒假托甄城爲謀耳甄城有何罪焉以無罪而黜之於外於予心有所不忍茲不允再啓不允[中略]

姜渾朴安性宋軼李輯金應箕柳濱成希顔等以賀禮適詣賓廳而議啓曰李穎與南怡無異其推官等當依翊戴之例而論功傳于政丞等曰國議與予心既同其論功可也功臣稱號及等第卽議

《中宗實錄 卷4, 1面》

중종 2년 9월 12일(임자)

상이 근정전(勤政殿)에 남시어 양로연(養老宴)을 행하고, 연회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각각 작위 한 급씩 올려 주되 자궁(資窮)한 자는 친수(親授)하였다.228)[중략]

○우의정(右議政) 류순정(柳順汀)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류빈(柳濱) 등이 아뢰기를, “귀화(歸化)한 달자(獐子 : 북방에 사는 오랑캐.) 박삼태(朴三太)가 아뢰는 바 평안도에 장차 변극(邊隙 : 변방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일.)이 있겠다 하니, 일을 잘 아는 무신(武臣)을 선택하여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아서, 병사(兵使)와 함께 같이 의논하여 조치게 하소서. 그리고 박삼태 등은 일찍이 우리 나라의 벼슬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 씀이 성실하오니, 심상(尋常)히 대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28) 자궁(資窮)한 자는 친수(親授)하였다 : 당하관(堂下官) 최고의 자급에 이른 동반(東班) 통훈대부(通訓大夫), 서반(西班) 어모장군(禦侮將軍) 등에게 대가(代加)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자(加資)하는 것.

“가하다. 조방장을 선택하여 아뢰라.”
 하였다. 류순정이 아뢰기를,
 “이종인(李宗仁)이 일찍이 평안도 병사를 지내서, 그 도(道)의 변방 형세를 역력
 히 잘 알고 있으니, 조방장으로 차출하여 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壬子 上御勤政殿行養老宴賜叅宴老人爵各一級資窮者親授[中略]
 ○右議政柳順汀兵曹判書柳濱等啓曰向化獐子朴三太所報平安道將有邊隙請擇事知武臣
 爲助防將與兵使同議措置且三太等曾受我國之爵而其用心誠懇不可待之尋常傳曰可助防
 將其揀擇以啓柳順汀啓曰李宗仁曾經平安道兵使歷知其道邊地形勢助防將差遣何如傳曰
 可
 《中宗實錄 卷4, 13面》

중종 2년 9월 19일(기미)

○류빈(柳濱)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홍경주(洪景舟)를 병조 판서로, 장순손
 (張順孫)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이점(李坫)을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윤순(尹珣)을 경상도 관찰사로, 이계맹(李繼孟)을 전라도 관찰사로, 정수강(丁壽
 崗)229)을 강원도 관찰사로, 성몽정(成夢井)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이맥(李陌)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류송조(柳崇祖)230)를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았다.
 ○己未○以柳濱爲吏曹判書洪景舟爲兵曹判書張順孫爲漢城府左尹李坫爲右尹尹珣爲慶
 尙道觀察使李繼孟爲全羅道觀察使丁壽崗爲江原道觀察使成夢井爲承政院同副承旨李陌
 爲司諫院大司諫柳崇祖爲成均館大司成
 《中宗實錄 卷4, 17面》

중종 2년 11월 22일(임술)

○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지가 주의(注擬)할 때 당상관(堂上官) 및 자궁(資窮)한 판사(判事)도 함께
 주의하라. 또 정사는 사정(私情)을 쓸 수 없고 공론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모

229) 정수강(丁壽崗) : 1454~1527.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불붕(不崩) 호는 월헌(月軒) 본관은 나주. 성종 때 문과에 급제 연산군 때에 장령을 거쳐 부제학이 되었으나 갑자사화로 파직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등용되어 중종 2년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고 한문소설 포절군절(抱節君節)을 지었고 저서에 월헌집(月軒集)이 있다.

230) 류송조(柳崇祖) : 1452~1512. 조선 중종 때의 문신. 학자. 자는 종효(宗孝) 호는 진일재(眞一齋) 석헌(石軒) 시호는 문목(文穆) 본관은 전주. 문과급제, 정언, 연산군 10년(1504)에 장령으로 원주에 유배됨.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공조참의, 대사성,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실현하려는 최초의 학자로서 성리학과 경사(經史)에 밝았고 조광조(趙光祖) 등의 대학자를 양성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저서에 진일재집, 대학강목잠(大學綱目箴)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 경서언해(經書諺解)가 있다.

름지기 삼당상(三堂上 : 육조의 판서·참판·참의.)이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여야 된다. 요즈음은 판서와 참의가 병이 있어 참판이 홀로 정청(政廳)에 참석하게 되니 온편치 못하고, 판서 역시 정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필시 안심되지 않을 것이니, 그를 한관(閑官)으로 보내어 조리하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이제 북의 일은 대간이 말하니 체직하겠다.”

하매, 회계하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 정사는 사람을 쓰는 것이 큰 일인데, 참판만이 홀로 참석하는 것은 과연 온편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판서(判書) 류빈(柳濱)은 사람 쓰기를 조심스럽게 하였고, 또 공평 정대하였으며, 오늘 좌랑 신엄(申儼)이 와서, ‘병이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판이 홀로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미편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 판서(吏曹判書) 류빈(柳濱)은 체직하라. 판서가 비록 어질지만 사체로 보아 불가하다. 후에도 다시 판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중략]

○대간이 윤탕로·남치원·한승형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조 판서 류빈을 병으로 인해 체직을 명하셨으나, 대신의 진퇴(進退)는 경솔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빈의 병이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체직하심은 매우 불가합니다. 빈은 정대한 사람입니다. 전조(銓曹)는 반드시 정대한 사람을 시킨 후에야 인물을 권형(權衡)할 수 있는 것이니 체직하지 마시고, 이유청은 개차(改差)하고 추문하시기를 청합니다. 지금 들으니, 안윤덕이 이조 판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인물이 전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류빈(柳濱)의 공평 정대함은 나 역시 알고 있으나, 요즈음 정사에 판서와 참의가 모두 병이 있어, 참판 혼자만이 정청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한 것이다. 안윤덕에 대해서는 무슨 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가? 또 정사(政事)를 하비(下批)하기도 전에 어떻게 아는가?”

하며,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대간이 또 윤탕로·한승형·남치원·이유청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안윤덕이 명패(命牌)로 들어왔기에 들었습니다만, 인물이 적합하지 못하오니 속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壬戌○傳于政院曰承旨注擬時堂上及資窮判事並擬且政事不可用私情必以公論故須三

堂上僉議注擬近者判書叅議有病叅判獨叅政廳未便判書亦以未叅政事爲慮必不爲安心矣
閑官換差調理何如李繼福事臺諫言之其遞之回啓曰 上教至當政事用人爲大叅判獨叅果
爲未便但判書柳濱用人敬慎又公平正大今日佐郎申儼來言病向差云然叅判獨叅政事未安
傳曰吏曹判書柳濱其遞之判書雖賢事體不可後亦可爲判書矣[中略]

○臺諫啓尹湯老南致元韓承亨事且吏曹判書柳濱以病命遞大臣進退不可輕易也今濱病未
久而遽遞甚不可濱正大人也銓曹必正大人然後可以權衡人物矣請勿遞李惟清請改差推問
今聞安潤德爲吏曹判書人物不合銓曹請改之傳曰柳濱之公平正大予亦知矣近日政事判書
叅議皆有病叅判不可獨叅政廳故不得已改之安潤德何事不合乎且政事下批前何以知之餘
皆不允臺諫又啓尹湯老韓承亨南致元李惟清等事且曰安潤德以命牌入來故聞之人物不合
請速改之並不允

《中宗實錄 卷4, 48面》

중종 2년 11월 24일(계해)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領事) 류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제왕(帝王)의 역년이 길고 짧은 것은 임금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제왕이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말 달려 사냥이나 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이는 화를 부르고 망함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무일(無逸 : 「상서」(尙書)의 편명)을 읽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어 장구한 치안의 도를 염두에 두심이 옳은 줄 압니다.”

하고, 지평 허굉(許磁)·정언 김안로(金安老)가, 윤탕로·남치원·한승형의 일을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대신이 병이 있으면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리며 또 휴가를 주어, 비록 한 두달이 되더라도 곧 개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류빈이 병이 있다 하여 곧 개정하시니, 대신을 대우함이 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윤덕은 전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조는 조정의 근본이니, 전조가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조정은 해체됩니다. 속히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탕로에게 무슨 불가한 점이 있는가? 한승형은 어떤 일에 그 책임을 감당치 못하는지 알 수 없다. 류빈(柳濱)은 정사를 위해 체직된 것이다. 안윤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며, 남치원의 일과 아울러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허굉과 안로(安老)가 또 아뢰기를,

“윤탕로는 성종 졸곡 전에 공공연히 기생집에서 묵었으니 그 악덕이 극심하며, 남치원은 도총관(都摠管)에 부적합 한데도 병조에서 의망(擬望)한 것은 잘못임

니다. 한승형은 장관에 부적합 하오니, 속히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류빈의 공평 정대함은 성상께서도 이미 아시면서 까닭없이 체직하시므로, 외인들은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윤덕은 성품이 본래 부과(浮誇)하여 남에게 위세를 보이기 때문에, 무릇 그가 말하는 것이면 사람들이 모두 풍미(風靡)하고 맙니다. 그가 불합한 까닭은, 입시(入侍)하는 사람에게 물으시면 반드시 바로 아될 것입니다. 이유청이 자질구레한 일만 아뢰고 탕로와 류홍(柳泓)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 위세를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어찌 사직(社稷)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류빈(柳濱)은 다시 기용하면 된다. 탕로(湯老)는 새로 얻은 기생이 아니라 자식까지 둔 첩이요, 더구나 10여 년 전의 일임에라?”

했다.

○癸亥 御朝講領事柳順汀曰帝王歷年長短在人主敬天勤民而已帝王以稼穡艱難無逸爲心則可也若以馳騁田獵爲心則是速禍促亡之道也 殿下今讀無逸存心於此念長治久安之道可也持平許琮正言金安老啓尹湯老南致元韓承亨事且曰 祖宗朝大臣有病遣醫賜藥從以給由雖一二朔不卽改之今柳濱以病卽改待大臣不可如是也安潤德不合銓曹銓曹朝廷之本銓曹不能用人則朝廷解體請速改之 上曰尹湯老有何不可之事韓承亨不知何事不堪其任柳濱則爲政事姑遞之耳安潤德不合事不知何事也南致元事並不允許琮安老又曰尹湯老成宗卒哭前公然宿娼其惡德甚矣南致元不合都摠管而兵曹擬望誤矣韓承亨不合長官請速改之柳濱之公平正大 上已知之而無故遞之外人皆疑焉安潤德性本浮誇示威於人故凡有所言人皆風靡其不合之故若問入侍之員則必以直啓李惟清徒啓細事而不論湯老柳泓者怵於威勢也豈知有社稷而不知有其身者也 上曰柳濱還叙可也湯老非新奸之妓有子息妾也況十餘年前事乎

《中宗實錄 卷4, 49面》

중종 2년 11월 27일(병인)

대간에서 이유청·안윤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탕로를 파천군(坡川君)으로 하고, 류빈(柳濱)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용개(申用溉)는 공조 판서 겸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工曹判書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 성윤조는 우부승지, 권홍(權弘)은 동부승지, 남울(南慄)은 대사간, 최숙생은 겸예문관 응교(兼藝文館應教), 안팽수(安彭壽)는 홍문관 전한, 이행(李荇)은 응교, 김철문은 부응교, 김관(金寬)은 교리, 안처성(安處誠)과 서후(徐厚)는 부교리, 한효원은 수찬을 삼았다.

○丙寅臺諫啓李惟清安潤德事不允○以尹湯老爲坡川君柳濱爲吏曹判書申用溉爲工曹判

書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成允祖爲右副承旨權弘爲同副承旨南慄爲大司諫崔淑生兼藝文館應教安彭壽爲弘文館典翰李荇爲應教金綴文爲副應教金寬爲校理安處誠徐厚爲副校理韓效元爲修撰

《中宗實錄 卷4, 52面》

중종 2년 12월 7일(병자)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의 아뢰는 일이 만약 국가의 경중이 매이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번거로운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신은 또 들으니, 류빈(柳濱)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서 체직될 때 박원종이 홍경주를 추천했다 하고, 안침(安琛)이 평안감사에서 갈릴 때는 원종이 안윤덕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임금의 일이요, 전조(銓曹)에서는 주의(注擬)해서 낙점만 받을 따름이거늘, 원종이 어찌 제멋대로 사람을 천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흐름의 폐단을 마침내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가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할 수 없거늘, 하물며 윤덕은 지금 논박을 받고 있음에리까? 홍문관 수찬 강홍(姜洪)은 그 아버지의 집상(執喪)을 삼가지 않았으니, 청하옵건대 체직하소서. 또 근래에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儀節)을 자세히 기록하여 널리 사방에 하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공신의 전도와 장획(臧獲)의 일은 이제 이미 등급에 따라 분축(分軸)하였고, 건의한 대신도 개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윤택하지 않았다. 박원종은 정승으로서 정사를 더불어 의논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한 것이다. 강홍은 무엇을 삼가지 않은 일이 있는가?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儀節)에 대한 일은 아뢴 바와 같이 하겠지만,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丙子○臺諫啓曰臣等所啓若非係國家輕重何敢至此煩瀆臣又聞柳濱遞吏判時朴元宗薦洪景舟安琛遞平安監司時元宗薦安潤德用人人主事而銓曹注擬受點而已元宗豈可擅便薦人乎其流之弊終不可勝言雖可當人不可如此況潤德方被駁乎弘文修撰姜洪不謹父喪請遞且近來風俗不美請令該司詳錄守喪儀節廣諭四方傳曰功臣土田臧獲事今已等第分軸建議之臣亦以爲不可改故不允朴元宗以政丞與議政事故言之耳姜洪有何不謹之事乎守喪儀節事如啓餘不允

《中宗實錄 卷4, 56面》

중종 3년 1월 6일(갑진)

○대간이 함사하여 아뢰기를,

“음직으로 가자한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비록 다만 구치명(具致明)의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때의 특별한 은전입니다. 작명(爵命)은 군주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탕로(尹湯老)는 들은 곳을 바로 아뢰지 않았으니, 소문이 난 출처를 하문하기를 청합니다. 특진관은 유악(帷幄)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이니, 안윤덕(安潤德)과 강징(姜澂) 등을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신등이 또 영접도감낭관(迎接都監郎官)의 마련기(磨鍊記: 인원을 기록한 것.)를 살펴보니, 이진(李堧)과 김극장(金克鏘)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류빈(柳濱)의 사촌이고, 송여해(宋汝諧)는 참판 정광필(鄭光弼)의 처남이고, 이사균(李思鈞)은 그 조(曹: 이조(吏曹))의 낭관입니다.

○甲辰○臺諫合司啓曰蔭加無前例雖只有具致明之事是一時特恩也爵命人主所貴不可不改正尹湯老所聞處不直啓請下問言根特進官近侍帷幄安潤德姜澂等請改正臣等又觀迎接都監郎官磨鍊記李堧金克鏘則吏曹判書柳濱四寸宋汝諧則叅判鄭光弼妻甥李思鈞則其曹郎官

《中宗實錄 卷5, 5面》

중종 3년 1월 13일(신해)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듣건대, 정괄(鄭恬)이 북경(北京)에 갔을 때, 검상(檢詳) 류빈(柳濱)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다시 상고해 보니, 서장관이 아니요, 점마(點馬: 말을 점검하는 직책)로서 의주(義州)에 갔다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박광영(朴光榮)은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동반(東班)의 조사(朝士)를 군관으로 삼은 것은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가 있으니, 한명회(韓明澮)가 북경에 갔을 때에도 모두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용렬 조잡한 무뢰배(無賴輩)들을 거느리고 갈 수는 없으니, 비록 동반의 조사일지라도 거느리고 가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대간(臺諫)은 반드시 사무를 폐하는 것으로써 염려를 하지마는, 그러나 한 두 사람의 조관(朝官)이 없다 해서 어찌 사무를 폐하는 데까지야 이르게 되겠습니까? 이장곤(李長坤)은 형조의 낭관이기 때문에 대간이 이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장곤은 비록 문신이지마는 무재(武才)가 탁이(卓異)하므로, 무신들이 따라갈 수 없고, 또 지식이 있으므로 신이 데리고 가고자 하였지마는, 대간이 이를 말하게 되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광영(朴光榮)은 개정할 것이고, 이장곤(李長坤)은 비록 형조의 낭관이지만 한 관(閑官)으로 이차(移差)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辛亥○朴元宗啓曰聞鄭佶赴京時以檢詳柳濱爲書狀官更考則非書狀也以點馬到義州而還朴光榮請改正以東班朝士爲軍官有舊例韓明澮赴京時皆然不可率庸雜無賴之徒雖東班朝士率行何妨臺諫必以廢事爲慮然雖無一二朝官豈至廢事乎李長坤刑曹郎官故臺諫啓之長坤雖文臣而武才卓異非武臣所可企及且有智識臣欲率行然臺諫言之請改傳曰朴光榮則改之李長坤雖刑曹郎官移差閑官帶行可也
《中宗實錄 卷5, 10面》

중종 3년 1월 18일(병진)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 김극픽과 정언 김안로가 아뢰기를,

“음직(蔭職)으로 가자(加資)한 일에 관하여 대신이 말하기를, ‘조그만 사의(私意)도 없습니다.’ 했지마는, 대신에게 어찌 사의가 없었겠습니까? 주상께서도 외람된 줄을 알고 계시니, 모름지기 이를 속히 개정하소서. 김윤제(金允濟)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고, 이곤(李坤)은 겸판결사(兼判決事)가 되었으나, 모두 인품과 기량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판서 류빈(柳濱)의 4촌인데, 류빈(柳濱)이 도감 낭관(都監郎官)을 마련(磨鍊)할 때에 모두 4촌을 차임(差任)했으며, 지금도 또한 이와 같으니, 그가 사정(私情)을 쓸 수 있습니다.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김윤제와 이곤도 또한 개차(改差)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丙辰御朝講掌令金克幅正言金安老曰蔭加事大臣曰無一毫私意大臣豈無私意 上亦知此猥濫須速改之金允濟爲慶州府尹李坤爲兼判決事皆人器不合又判書柳濱之四寸柳濱當都監郎官磨鍊時皆差以四寸今亦如是其用情可見請推之金允濟李坤亦當改差

《中宗實錄 卷5, 12面》

중종 3년 1월 19일(정사)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이조 판서 류빈(柳濱)과 참관 정광필(鄭光弼)을 체직(遞職)하도록 명하였다. 도감 낭관(都監郎官)과 김윤제(金允濟) 등의 일로 사헌부의 추문(推問)을 받아 태(笞) 50과 현임(見任)을 해직(解職)하고, 별서(別叙)하기로 조계(照啓)되었다.

○丁巳 御朝講○命遞吏曹判書柳濱叅判鄭光弼以都監郎官及金允濟等事推被憲府以笞五十解見任別叙照啓

《中宗實錄 卷5, 13面》

중종 3년 2월 2일(경오)

○류빈(柳濱)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삼고, 이세인(李世仁)으로 사간원 대사간을 삼았다.

○庚午○以柳濱爲知中樞府事李世仁爲司諫院大司諫

《中宗實錄 卷5, 21面》

중종 3년 3월 1일(무술)

조하(朝賀)를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사간 김승조(金崇祖)와 장령 이위(李偉)가 원종공신의 부표한 것과 족친에게 함부로 가자한 일에 대하여 아뢰고, 이위는 신윤무를 나추(拿推 : 연행하여 추문함.)할 일에 대하여 독계(獨啓)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중략]

성종(成宗)께서 어찌 한 사람의 김석을 아낀 것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기를 이같이 한 후에라야 아랫사람이 믿고 복종할 것입니다.

또 안윤덕(安潤德)이 사옹원제조(司饗院提調)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요, 대간이 필시 남의 말을 듣고 아뢰는 말일 것입니다. 대간이 또 말하기를, ‘안윤덕이 북경에 갈 때 수레에 실은 것이 한명회(韓明澮)와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부채(扇子)와 마른 노루고기(乾獐)를 중국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으니 그가 한명회와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연손(崔連孫)은 신과 동년(同年 : 함께 참방(參榜)한 사람.)이며 또 함께 병조(兵曹)의 낭관(郎官)으로 있었는데, 그 마음 쓰는 것이 전혀 비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황산곡(黃山谷 : 북송 때 시인인 황정견(黃庭堅))의 시집(詩集) 판목을 불태운 일로 탄핵을 받았고 그 일의 관련자가 이미 조사를 받아 다섯 차례나 무죄함을 변명했는데도, 지금 듣자옵건대 다시 행대(行臺)를 보냈다 하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류빈(柳濱)은 아뢰기를,

“안윤덕이 북경에 갈 때에 신이 황해도 관찰사였는데, 그가 가는 길에 수령(守令)들이 두려워 하거나 분주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戊戌朔 受朝賀 御朝講司諫金崇祖掌令李偉啓原從付標族親濫加李偉獨啓辛允武拿推事並不允[中略]

成宗何惜一金碼必須詳察如此而後下人信服且安潤德司饗提調時納賂云者誤矣臺諫必聞人言而啓之矣又云潤德赴京時裝載之多與韓明澮同然其所持扇子及乾獐多散於華人華人至今稱之其不與明澮同明矣崔連孫乃臣同年又同兵曹郎官其用心全不鄙陋而後以焚黃山谷板被劾其事干已受訊五次發明而今聞更遣行臺甚未便特進官柳濱曰安潤德赴京時臣爲黃海道觀察使潤德之行守令亦無畏懼奔走者

《中宗實錄 卷5, 37面》

중종 3년 3월 6일(계묘)

조강에 납시었다.

○대간이 합사해서 아뢰기를,

“신등이 누차 사임하기를 청했으나 취직하기를 명하시니, 취직을 한다면 언사(言事)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희안(成希顔)이, ‘전하께서 짐작해서 처리하시라’고 한 말은, 전하에게 간언을 거절하시도록 한 것이므로 그 조짐이 작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추문(推問)하기를 청합니다. 신용개(申用漑)와 류빈(柳濱)은 성희안의 말을 부회(傳會)하였으니 또한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안한영(安漢英) 또한 대신의 말을 인연해서 사삿일을 계달(啓達)했으니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희안이 ‘짐작해서 하라.’ 한 말은 간언을 거절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원한과 답답한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나에게 상세히 살피게 하고자 한 것이다. 류빈(柳濱)과 신용개도 각각, ‘마음속에 생각함이 있으면 반드시 아된다.’는 것이며, 안한영은 그 아버지의 일을 논박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부자간(父子間)의 정의(情義)가 절박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무단히 말을 낸 것이 아니니 무슨 사정(私情)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癸卯 御朝講○臺諫合司啓曰臣等累請辭免而命就職就職則不可不言也成希顔斟酌之言欲上拒諫其漸不小請推問其由申用漑柳濱似傳會希顔之說請亦推之安漢英亦因大臣之言啓達私事請推傳曰希顔斟酌之言非謂拒諫也恐有怨悶欲予詳察也柳濱申用漑亦各有懷必達安漢英聞其論父之事父子之間情義迫切故言之矣非無端而發也何情之有再啓不允

《中宗實錄 卷5, 41面》

중종 3년 3월 7일(갑진)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성희안·류빈(柳濱)·신용개(申用漑)·안한영(安漢英) 등을 추문하기를 청하여 네 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甲辰○臺諫合司請推成希顔柳濱申用漑及安漢英四啓不允 《中宗實錄 卷5, 42面》

중종 3년 3월 8일(을사)

조강에 납시었다.

○대간이 합사하여 다시 성희안·류빈(柳濱)·신용개·안한영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乙巳 御朝講○臺諫合司再啓成希顔柳濱申用漑安漢英事不允 《中宗實錄 卷5, 42面》

중종 3년 5월 22일(기미)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김봉(金封)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에, 그 도는 천사(天使)가 왕래하기 때문에 받는 폐해가 만드시 많을 것이라 하여 도계진상(到界進上)을 특별히 줄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관(館)에 머물러 있어 모든 지공(支供)을 경기(京畿)에서만 담당하므로 폐폐가 막심합니다. 새 관찰사(新觀察使) 류빈(柳濱)의 도계(到界：임지에 도착함.) 하거든 그 봉진(封進)할 것을 김봉의 전례대로 또한 줄여 줘야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생각하였다. 줄여 주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소순청(二所巡廳)의 눌러 죽은 사람은 비록 공사(公事)로 죽은 사람의 예는 아니지만, 이 또한 사사일로 죽은 것이 아니니 매우 가엾습니다. 각역(各驛)의 전시(傳屍)에 전례가 있으니, 은전을 특별히 베푸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각각 쌀 2석(石)을 주라.’ 하였다.

○己未臺諫呈辭狀而退○政院啓曰金封赴平安道觀察使時以其道天使往來受弊必多特減到界進上今天使留館凡所供億京畿獨當其殘弊極矣新觀察使柳濱到界其所封進依金封例亦減何如傳曰卿等雖不言予已料之其令減之又啓曰二所巡廳壓死人雖非因公身死者例其死亦非私事甚可矜憐各驛傳屍自有其例特施恩典何如傳曰各給米二石 《中宗實錄 卷6, 9面》

중종 3년 6월 29일(을미)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경영(京營)의 진상(進上)을 봉헌(封獻)²³¹할 때에 관찰사가 출순(出巡)하였을 때에는, 도승(渡丞)²³²으로 하여금 감봉(監封)하게 하는 것이 고례(古例)입니다. 그러나 도승은 본디 서리(書吏) 출신의 지극히 미천한 자이므로, 그 진상물을 감봉함에 있어서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또 고을의 폐해가 많이 있으니, 청하옵건대 군직(軍職) 및 별좌(別坐) 중에서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겸도사(兼都事)로 제수(除授)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는 새로 설치하는 일이니, 부원군(府院君) 이상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231) 봉헌(封獻) : 봉과(封裹)해서 헌상(獻上)함. 토산물 등을 짐을 꾸려 봉인(封印)하여 날라다 바치는 것.

232) 도승(渡丞) : 경기 다섯 나루(처음에는 일곱)에 두었던 종9품직. 영조 때에 도진별장(渡津別將)으로 개칭(改稱)하였음.

○乙未○京畿觀察使柳濱啓曰京營進上封獻之時觀察使出巡時則使渡丞監封古例也然渡丞本以書吏出身至微賤者其於監封進上不能用意明甚且多有州縣之弊請於軍職及別坐中擇可當者除兼都事何如傳曰卿言是也然此新設之事令府院君以上議其可否

《中宗實錄 卷6, 26面》

중종 3년 7월 2일(무술)

○류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경기의 물선(物膳)은, 감사(監司)가 출순(出巡)한 때에는 역승(驛丞)²³³·도승(渡丞)이 감장(監掌)하여 봉진(封進)하니, 사체(事體)가 미안합니다. 광주(廣州)·수원(水原)의 판관(判官) 중에서 1원(員)이 와서 일을 보살펴서 봉진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였고, 신준(申浚)·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의 헌의(獻議)도 거의 같았고, 김수동(金壽童)·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은 전례대로 함이 온편하다고 아뢰었고, 류순정(柳順汀)은 의논드리기를,

“류빈(柳濱)이 아뢴 바와 같이 군직(軍職) 및 별좌(別坐) 중에서 가려서 겸도사(兼都事)로 삼아, 관찰사가 순행(巡行)할 때에는 영고(營庫)에서 일을 보살피 봉진하게 하고, 관찰사가 낭관(郎官)의 예(例)에 따라서 포폄(褒貶)함이 온당하오리다.”

하였고, 박건(朴楗)은 의논드리기를,

“겸도사는 조종(祖宗) 때부터 없던 일입니다. 차사원(差使員)을 항정(恒定)하여 같지 않으므로 폐해를 짓는 자가 있으니, 서로 갈아서 차정(差定)하면 폐해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의논한 바를 보건대, 전례대로 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많으며, 또 조종조에서 도승으로 하여금 감봉(監封)하게 한 지 이미 오래이니, 많은 편을 따라서 전례대로 함이 옳으리라. 그 분수에 넘치는 일은 관찰사가 규찰(糾察)하라.”

하였다.

丁酉○柳洵議京畿物膳監司出巡時驛渡丞監掌封進事體未安廣州水原判官中一員來仕封進何如申浚金勘鄭眉壽議亦略同金壽童盧公弼成希顔閔孝曾議仍舊爲便柳順汀議如柳濱所啓軍職及別坐中擇爲兼都事觀察使巡行時則仕營庫封進觀察使依郎官例褒貶便當朴楗議兼都事自 祖宗所無之事差使員恒定不遞故作弊者有之相遞差定則弊可祛矣傳曰今觀所議請仍舊者多且自 祖宗朝令渡丞監封已久從多仍舊可也其汜濫事觀察使糾之

《中宗實錄 卷6, 29面》

233) 역승(驛丞) : 각 역로(驛路)에 두어 속역(屬驛)을 감독하는 중6품직. 찰방(察訪).

중종 3년 11월 1일(을미)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유생의 강서(講書)를 마치고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류빈(柳濱)이 아뢰기를,

“경기의 금표(禁標) 안의 철거된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조금씩 돌아와서 정착한다 하더라도, 난리 후 농기구가 없어졌고 또 천사(天使 : 중국 사신)가 지나게 되어 아직 기경(起耕)을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면세(免稅)하여야 하오나, 해조(該曹)에서는 ‘서울의 창고가 허갈(虛竭)되어 면세하기 어렵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면세시키지 아니하면 끊어진 민호(民戶)의 세액을 그 일족(一族)에게 침독(侵督)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종업하지 못하고 장차 도로 흩어질 것이니, 청컨대 면세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강무(講武)하던 장소를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시매 백성들이 매우 이로왔으나, 그 기한이 금년에 끝나게 되니, 청컨대 기한을 연장하여 경작하도록 허가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에 문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乙未朔一 上御思政殿講儒生畢○京畿觀察使柳濱啓曰京畿禁標內撤居之民今雖稍稍還定亂離之後無農器又經天使未得起耕固當免稅而該曹以爲京倉虛竭免稅爲難然不免稅則絕戶之稅侵督一族民不安業勢將還散請免稅且講武場許民耕食民甚利之而限止今年請退限許耕傳曰其問于該曹 《中宗實錄 卷7, 12面》

중종 4년 1월 19일(임자)

조강에 나아갔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류빈(柳濱)이 죽으니, 부의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빈(濱)은 성품이 엄간 공직(廉簡公直)하여 가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항상 거친 베로써 요를 만들었으며,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주의(注擬)할 때에 모두 공문을 따랐으며, 문에는 사사로운 청탁이 없었으므로, 사림(士林)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시호(諡號)는 충정(忠定)이라 하였다.

○壬子 御朝講○京畿觀察使柳濱卒 命賜賻濱性廉簡公直不治家事常以麤布爲褥及爲吏判注擬皆從公論門無私謁士林嘉之諡曰忠定 《中宗實錄 卷7, 53面》

중종 4년 1월 24일(정사)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이 송일(宋軼)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다. 특진관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근자에 변경(邊境)에 근심이 없어 수년 동안 편안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위태한 일은 편안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송일의 행차는 비록 폐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변방의 일은 가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양계(兩界)는 성 밑의 야인이 국은(國恩)을 탐내어 우리에게 순종하고, 변장(邊將)도 이들을 우리 백성처럼 보고 있어, 제어하기가 용이하나, 남방(南方)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은 예로부터 복심(腹心)의 병이라고 칭하였는데, 약간의 변고는 변장이 숨기고 계문(啓聞)하지 않으니, 이는 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인들도 또한 이러한 뜻을 알고 수시로 겁략(劫掠)을 합니다. 근자 웅천(熊川)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있었으니, 이 또한 대환(大患)입니다. 왜료(倭料)²³⁴도 또한 경상도 성주(星州) 이상의 곡식을 보내 주고, 또 그 선척(船隻)의 대소(大小)를 참작하여 보내는 것도 적지 아니하여, 그 도에 비축한 곡식은 거의 다 하였습니다.

금후로는 부득이 성주(星州) 이상의 곡식을 전수(轉輸)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제포(齊浦)에는 7백여 석이며, 부산포(釜山浦)도 또한 5백여 석이 못되지 아니하니, 신은 장차 유지하지 못할 듯합니다. 또 문신시사(文臣試射)는 성종조(成宗朝)의 고사(故事)이며, 폐조(廢朝)에서도 또한 하였으니, 이는 무사(武事)를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종조에 있어서는 문신으로서 활 잘 쏘는 자에게 선전관의 직을 겸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장차 유장(儒將)을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류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류빈(柳濱)·신용개(申用漑)도 또한 시사(試射)에 참가하였었는데, 지금도 어찌 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신 중에 잘 쏘는 자가 적으니, 많이 뽑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²³⁵

하였다.

○丁巳 御朝講執義朴光榮請勿遣宋軼特進官洪景舟曰近者邊境無虞數年晏然危生於安患生所忽宋軼之行雖似有弊邊鄙之事不可不往審且兩界則城底野人貪戀國恩聽順於我邊將視如吾民其勢易制南方則不然三浦倭人古稱腹心之疾少有變故則邊將匿不以聞以其有罪也倭人亦知此意劫掠無時近者熊川有殺人者此亦大患倭料亦以慶尚道星州以下穀輸給又量其船隻大小所遺不貲其道所儲之穀殆盡今後則不得已轉給星州以上之穀齊浦七百

234) 왜료(倭料) : 일본 대마도주의 사자(使者)를 수행한 왜인이 공식으로 입국하여 왜관(倭館)에 체류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는 양료(倭人糧料).

235) 번역본에 성주 이상의 곡식을……원문은 星州以下之穀
번역본 제포(齊浦)에는 백여석이며……원문은 齊浦七百餘石
번역본 부산포(釜山浦)도 또한 6백여석이 못 되지 아니하니……원문은 釜山浦亦不下五百餘石
“번역본” 세곳을 가로하여 정정하였음을 밝힌다.

餘石釜山浦亦不下五百餘石臣恐將不能支矣且文臣試射 成宗朝故事而廢朝亦爲之欲使知武事也在 成宗朝以文臣善射者職兼宣傳官將欲爲儒將也故柳順汀成希顏柳濱申用漑亦叅試射今亦豈無其人然文臣善射者少不必多抄 《中宗實錄 卷7, 56面》

중종 9년 10월 13일(임인)

정원이 아뢰기를,

○이전에 병조(兵曹)에 명하여 문신(文臣)과 무신(武臣) 중에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14명을 뽑게 했는데 각기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다.[중략]

공조 참판(工曹參判) 류빈(柳濱)은 서계(書啓)하기를,

“신(臣)이 육진(六鎭)의 성저(城底)에 거주하는 야인(野人)들을 살펴보니, 깊은 곳에 거주하는 우지개(于知介)와 더불어 결혼(結婚)을 하고 서로 사귀고 국경 지방을 드나들면서 방비의 허실(虛實)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변방을 편안하게 하고 방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는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곡식을 조운(漕運)하여 변방을 충실하게 하면 군대와 백성이 모두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흉년과 풍년을 따라서 갑자기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하지 말고, 모름지기 10년으로 기한을 삼아 일정한 규례(規例)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군량의 공급을 보충하기에 어려운 근심은 없어질 것이요 위급한 경우에도 민을 만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평안도의 의주(義州)는 맞은편에 있는 중국 백성이 땅을 차지하여 경작(耕作)하고 있어, 들어선 집들이 이빨처럼 배열(排列)하여 점차로 강(江)가의 땅에까지 미치게 되니, 이 일은 이해(利害)에 관계되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강물이 얼어 붙은 때는 육지를 보행(步行)하듯이 편리하므로 무지한 변방의 백성들이 날마다 도망해 들어가며, 이미 관문과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적인(敵人)의 모욕(侮辱)을 받게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성(州城)은 마땅히 물려 쌓되 삼포(三浦)의 수군(水軍)을 적당히 징발해서 해마다 조금씩 쌓아서 관문과 요새를 만든다면, 변성은 잘라 끊은 듯이 험준하고 굳건하게 될 것이고 인물(人物)이 몰래 통행하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산군(理山郡)은 산양회보(山羊會堡)와 더불어 모두 적로(賊路: 적(賊)이 침입하는 길목)의 요충(要衝)에 있으니, 방비의 긴요함이 다른 곳과 비교하면 배나 되는데도 토호(土戶)가 많지 못하고 지키는 군사도 단약(單弱)합니다. 백성을 옮겨서 입거(入居)²³⁶하더라도 10명에 8~9명은 도망하여 민호(民戶)가 없어

236) 입거(入居): 『대명률(大明律)』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 범법자(犯法者)의 전 가족

지고 전지가 황폐하게 됩니다. 부세(賦稅)가 면제되지 않는데 더구나 진헌(進獻)하는 인삼(人蔘)으로 약제(藥劑)를 지어 상납하면 반드시 점퇴(點退)를 당하게 됩니다. 먼 도(道)의 공리(貢吏)들이 열흘이나 한달씩 시일을 지체하니 이 때문에 공사(公私)의 일이 많은 폐해를 받게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없어진 민호와 황폐한 전지(田地)는 깨끗이 기록에서 제거하고 진헌하는 인삼을 바치는 일은 그 도의 감사가 해당 관사에 수송(輸送)하도록 허가한다면, 변방의 백성은 직업이 안정되어 삶을 즐기는 편리가 있을 것이며, 공리는 시일을 지체하여 갑절이나 비용이 드는 원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상도 삼포(三浦)에 거주하던 왜인(倭人)은 이미 복몰(覆沒)을 당했으니, 보복(報復)하려는 계책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추려 하겠습니까?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은 매우 뻘뻘하게 모여 사는데 만약 적변(賊變)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방비도 갖추고 있지 않으니, 어찌 능히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목책(木柵)을 설치하거나 담을 축조(築造)하여 그 편리한 데에 따라서 스스로 방비를 하도록 하고 기치(旗幟)를 많이 벌여두어 의병(疑兵)을 삼고 동리의 호민(豪民)을 뽑아서 우두머리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제(節制)를 받게 하기를 장수와 병졸(兵卒)같이 한다면, 관청은 방비를 갖추게 되고 민간에서도 지키는 곳이 있을 것이니, 비록 창졸간에 변고를 만나도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계(兩界)의 수졸(戍卒)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강을 건너가서 몸소 지형과 적의 동정(動靜)을 정탐하는데 그 고생이 비할 데가 없고, 또 모두가 가난하여 말을 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큰 적을 만나더라도 창졸간에 말을 구하여 타기도 어려운 것인데, 어찌 능히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목장(牧場)이 있는 곳에는 나라에서 쓰는 데 적합하지 않은 말 가운데 많은 수효가 늙어 죽고 있으니, 즉시 일정한 수효를 정하여 뽑아 내어 군졸에게 나누어 주고서 늘 말을 타고 연습하게 한다면, 목장의 말은 헛되이 늙어 죽는 폐단이 없을 것이고 군졸도 말을 타는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함경도(咸鏡道)의 육진(六鎭)은 신미년(중종 6, 1511) 무렵에 굶어 죽은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되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한 것이 이때보다 더한 적이 없으니, 만약 미리 일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변고(變故)를 당해서는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민호(民戶)를 강제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좋은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삼도(下三道 : 전라도·경상

을 함경·평안 양도의 국경 지역 변읍(邊邑)으로 강제 입주시키는 처벌인데, 전가사변(全家徙邊)·전가입거(全家入居)라고도 한다.

도·충청도를 말한다)의 향리(鄉吏)는 토지를 많이 차지하여 호부(豪富)하고 은실(殷實)한 자들이 많으니, 그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어 날래고 용감한 자들을 골라 보내면, 변방 백성이 날로 보태지는 편리가 있고 읍민 민호는 홀로 근심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壬寅政院啓曰○先是命兵曹選文武臣知邊事者十四人各上備邊之策[中略]

工曹參判柳濱書啓曰臣伏觀六鎮城底野人與深處弓知介結婚締交出入境上防備虛實歷歷詳知小有不□難保無虞臣愚以謂安邊固備最宜積穀漕穀實邊軍民兩便毋以凶稔遽爲廢設須限十年著爲定例如此則饋餉無難繼之憂緩急有可恃之資平安道義州越邊中朝之民占地耕墾偏戶齒排浸及江堦事關利害不可不慮又當江水凍合陸行自便無知邊氓日就逃入旣無關隘之設易受敵人之侮臣愚以謂州城須當退築量發三浦水軍年年加築作爲關塞則邊城有截截之險人物無潛通之弊理山郡與山羊會堡俱係賊路要衝備禦之緊視他有倍而土戶不多戍卒單弱徙民入居十亡八九戶絕田荒賦稅未蠲加以進獻人參劑造上納必見點退遠道貢吏淹滯旬朔公私受弊職此之由臣愚以謂絕戶陳田淨除記籍進獻人參許令其道監司輸送該司則邊民有安業樂生之便貢吏無淹滯倍償之寃慶尙道三浦居倭已見覆沒報復之計豈肯小弛傍海居民甚爲稠密如遇賊變防備無具何能措手臣愚以謂或設木柵或築牆堡隨其順便使自爲備多張旗幟以爲疑兵擇取里豪以爲酋首人受節制有同帥卒則官備有防民居有守雖猝遇變可至濟事兩界戍卒不論昏明雨雪必使越江體探涉險覘變艱苦無比又皆貧乏一無畜馬如遇大敵卒難求乘何能轉鬪臣愚以謂所在牧場國用不合之馬多數老死卽令定數捉出頒給軍卒常用騎用調習則場馬無老死之弊軍卒有騎乘之益咸鏡六鎮在辛未年間餓死殆半邊備虛疎無逾此時若不預爲措辦誠恐臨變誤事富實民戶勒令入居可謂實邊長策臣愚以謂下三道鄉吏亦多有廣占田土豪富殷實者擇其中有武才驍勇者亦令抄送則邊民有日益之偏徙戶無獨憂之患

《中宗實錄 卷21, 3面》

중종 9년 12월 25일(계축)

예조에서 아뢰기를,

○좌의정 정광필이 청백리(清白吏)를 천거했는데, 죽은 정갑손(鄭甲孫)·정창손(鄭昌孫)·구치관(具致寬)·이약동(李約東)·김종직(金宗直)·이승원(李崇元)·류빈(柳濱)·정성근(鄭誠謹) 등의 자손(子孫) 10여 인이다. 이조로 하여금 재간에 따라 뽑아 쓰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조정에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금의 인물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절개를 지킨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판교(判校) 강숙돌(姜叔突)은 여러 고을을 두루 거쳤는데 관청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간묵(簡默)하고 조용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며, 나이 많아 늙을수

록 더욱 청렴하고 곤궁한 것을 견뎌냈으니, 마땅히 표창해야 할 듯합니다.” 하였다.

○癸丑禮曹啓曰○左議政鄭光弼薦舉清白吏卒鄭甲孫鄭昌孫具致寬李約東金宗直李崇元柳濱鄭誠謹等子孫十餘人請令吏曹隨才錄用且今在朝清慎人員不爲不多然古今人物終始一節者少判校姜叔突歷守數邑居官處家皆簡靜不懈年老尤清苦似宜嘉獎

《中宗實錄 卷21, 36面》

연려실기술 제6권 125면

병인(丙寅)년에 정국(靖國)하여 중종(中宗)을 추대(推戴)하다

○박원종 등은 귀양갔던 이과(李顥)가 병사(兵使)·수사(水使)·수령(守令)들과 함께 본도(本道)의 군사와 군마(軍馬)를 거느리고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시기를 앞당겨 먼저 거사(舉事)하였다. 기묘속록(己卯續錄)

이때, 류빈(柳濱)·이과·김준손(金駿孫) 등은 호남(湖南)으로 귀양가 있었는데, 임금이 음란함이 날로 심하여 사직(社稷)이 위태함을 보고 중종(中宗)을 추대(推戴)하려고 격서(檄書)를 서울로 보냈는데, 그 격서가 이르기 전에 반정(反正)이 되었다. 그 격서의 대략에, 『태조는 나라를 처음 세우기를 어렵게 하였으며, 세종은 덕화가 밝았고 성종(成宗)은 한결같이 선대의 법도를 따라 용도를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니 백성이 편안하고 물질은 풍성하여 세상이 태평하게 되었더니 뜻밖에 사왕(嗣王)이 포악하고 인도에 벗어나서 부왕의 후궁을 때려 죽이고, 옹주와 왕자를 귀양보내 죽이였다. 대간의 말하는 자는 귀양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대신을 옥보이고, 충성하고 선량한 신하를 살해하였으며, 이들의 부자·형제들까지 연좌(連坐)시킴이 진(秦)나라 법보다 더 심하였다. 무덤을 파서 해골에까지 화가 미치게 되었으니 시체를 토막토막 베는 형벌과 뼈를 부수는 형벌은 무슨 형벌인가.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아 음욕(淫慾)을 마음대로 행하고 남의 집을 부수어 원유(園囿)를 넓히었다. 선왕의 능침(陵寢)은 모두 여우와 토끼의 놀이터가 되고, 선성(先聖)의 사우(祠宇)는 곰과 범을 기르는 우리로 변하였다. 세금을 한없이 많이 거두니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뿐 아니라 종실 형제들의 아내와 첩까지도 뺏박하여 서로 간통하고, 삼년상(喪)은 예로부터 다 행하는 것인데 그 기한은 짧게 줄이고, 부모의 기일(忌日)도 또한 모두 폐지시켰으니, 인륜(人倫)은 무너지고 인도(人道)가 멸망되었다. 그밖에 토목(土木)의 역사(役事)와 노래·여색(女色)을 즐기고 못을 파며 대(臺)를 쌓고 사냥을 일삼으며 새·짐승과 화초를 좋아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많은 죄가 걸·주(桀紂)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니, 백성들의 한때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만일에 크게 간악한 자가 신기(神器) : 왕

위(王位)를 엿보아 하루 아침에 일어난다면 왕조(王朝)가 바뀌는 화(禍)가 생길 것이 두렵다. 성종이 26년 동안 신하들을 잘 대우하고 충의(忠義)를 배양한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다. 진성대군(晉城大君)은 성종대왕의 친 아드님이다. 어질고 덕이 있어 온나라의 칭송이 그에게 돌아간다. 이에 아무 아무 등은 진성대군(晉城大君)을 추대(推戴)하여 아무 달 아무 날에 의병(義兵)을 일으키려 한다. 격서를 모든 도에 돌려서 기일을 약속하여 서울로 모일 것이니, 조정에 있는 공경(公卿)과 백관들은 마땅히 곧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종실의 위태함을 붙들라...』 하였다. 동각잡기

○元宗等詮聞竄謫人李穎與兵水使守令領本道兵馬上來事遂促期先發己卯續錄
 時柳濱李穎金駿孫等竄湖南見廢主荒亂日甚 社稷將危謀推戴 中宗傳檄京師未至而反正其檄書略曰 太祖創業艱難 世宗德教休明 成宗一遵成憲節用愛人民安物阜躋世界平不意嗣王暴虐無道父王後宮杖而殺之翁主王子流而殛之臺諫之言者竄之誅之戮辱大臣賊害忠良父子兄弟收司連坐甚於秦法拔人之塚禍及枯骸寸斬之刑碎骨之辟此何等刑也奪人妻妾恣行淫恣破人廬舍以廣園囿 先王陵寢盡爲狐兔之場先聖祠宇變作熊虎之圈徵歛無藝民不聊生不特此也宗室兄弟妻妾逼令相奸三年通喪忍短其制父母忌日亦皆罷之彝倫已斲人道滅矣其他土木之役聲色之好池臺遊畋之娛禽獸花奔之翫難以覩縷貫盈之罪浮於桀紂生民一時之苦姑不足言萬一大奸窺覲神器一朝遽起則易姓之禍亦或可畏 成廟二十六年禮接卿士培養忠義者正爲今日也晉城大君 成宗大王之親子也賢而有德中外屬望謳歌所歸茲以某某等欲推戴晉城大君某月某日舉義兵移書諸道約日聚京師在朝公卿百執事宜速推戴以扶 宗室之危云云東閣雜記 《卷之6, 615面》

대동야승 제53권 동각잡기 상(東閣雜記上)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

연산 때에 류빈(柳濱)·이과(李穎)·김준손(金駿孫) 등이 호남(湖南)으로 귀양이 있으면서, 연산의 방탕이 날로 심하여 나라가 장차 위태로운 것을 보고, 중종을 추대하기로 계획하여 격문(檄文)을 서울에 전했다. 도착하기 전에 반정이 되었다. 그 격문의 대략에,

“태조는 건국에 애쓰셨고, 세종은 정치가 아름답고 밝았다. 성종은 한결같이 선왕의 법도를 지켜 재물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자, 백성이 안정되고 산물이 풍족해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었다. 뜻밖에도 사왕(嗣王)이 포악하고 무도하여, 부왕(父王)의 후궁을 매를 쳐 죽이고, 옹주(翁主)와 왕자를 유배(流配)시켜 처형하며, 바른 말하는 대간(臺諫)을 귀양보내고 베어 죽이며, 대신을 형벌하고 옥보이며, 충성스럽고 어진이를 해치며, 부자 형제를 연좌(連坐)시키되 진(秦)나라

법보다도 심하며, 남의 무덤을 파헤쳐 해골에까지 화가 미치는데, 마디마디 베는 형벌을 하고 뼈를 가루로 만드는 형벌을 하니, 이 무슨 형벌인고.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아 음욕을 자행하고, 남의 집을 부수어 동산[園]을 넓히며, 선왕의 능이 모두 여우, 토끼의 마당이 되고 선성(先聖)들의 사당[祠]이 모두 꿈, 범의 놀이터가 되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한도가 없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 뿐만 아니라, 종실(宗室)과 형제의 아내와 첩을 협박하여 간통하게 하였다. 삼년 상은 누구나 입는 복인데 잔인하게 그 기한을 짧게 하고, 부모의 기일(忌日)도 또한 모두 파하여, 윤기(倫紀)가 무너지고 인도(人道)가 멸망되었다. 기타 토목의 역사, 풍류와 여색의 즐길, 놀이와 사냥의 오락, 새 짐승과 화초의 탐호, 이 루 다 들 수 없으니, 한도대로 가득 찬 죄가 걸주(桀紂)보다 더하다. 민생들 일시의 고통은 아직 말할 것조차 없다. 만일 크게 간악한 자가 임금의 자리를 노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다면, 역성(易姓)의 화(禍)도 있게 될까 또한 혹은 염려된다.

성종께서 26년 동안 경사(卿士)를 대우하고 충의를 배양(培養)한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때를 위한 것이다. 진성대군(晉城大君)은 성종대왕의 친아들이다. 현명하고 덕이 있으므로 중외(中外)에서 기대하고 촉망(矚望)하여 칭송이 돌아가고 있다. 이에 모모(某某) 등이 진성대군을 추대하려 하여, 모월, 모일에 의병(義兵)을 일으키기로 각도에 격문을 보내어 기약한 날짜에 서울에 모이겠으니, 조정에 있는 공경·백집사(公卿百執事)들도 마땅히 속히 추대하여 종사(宗社)의 위기를 구출할지어다……” 하였다.

○燕山時.柳濱李穎金駿孫等.竄湖南.見燕山荒亂日甚.社稷將危.謀推戴 中廟.傳檄京師.未至而反正.其檄書略曰. 太祖創業艱難. 世宗德教休明. 成宗一遵成憲.節用愛人.民安物阜.躋世昇平.不意嗣王.暴虐無道.父王後宮.杖而殺之.翁主王子.流而殛之.臺諫之言者.竄之誅之.戮辱大臣.賊害忠良.父子兄弟.收司連坐.甚於秦法.拔人之塚.禍及枯骸.寸斬之刑.碎骨之辟.是何等刑也.奪人妻妾.恣行淫慾.破人廬舍.以廣園圃.先王陵寢.盡爲狐兔之場.先聖祠宇.變作熊虎之園.徵斂無藝.民不聊生.不特此也.宗室兄弟妻妾.逼令相奸.三年通喪.忍短其制.父母忌日.亦皆罷之.彝倫已斁.人道滅矣.其他土木之役.聲色之好.池臺遊.畋之娛.禽獸花卉之翫.難以覩縷.貫盈之罪.浮於桀紂.生民一時之苦.姑不足言.萬一大奸.窺覩神器.一朝遽起.則易姓之禍.亦或可虞. 成廟二十六年.禮接卿士.培養忠義者.正爲今日也.晉城大君.成宗大王之親子也.賢而有德.中外屬望.謳歌所歸.茲以某某等.欲推戴晉城.某月某日.舉義兵.移書諸道.約日聚京師.在朝公卿百執事.宜速推戴.以扶宗社之危云云.

《國譯本 422面, 原本 80面》

십청헌집 권일(十淸軒集 卷一)

류판서 빈에게 드리는 만사
柳判書濱挽 《韓國文集叢刊 18卷, 十淸軒集 215 C》 《晉州柳氏文集 141面》

허백정집 권일(虛白亭集 卷一)

고부로 부임하는 류후자청을 보내면서 시 두절구를 짓다.
送柳侯子淸 赴任古阜 二絶 《韓國文集叢刊 14卷, 虛白亭集 33 C》 《晉州柳氏文集 141面》

허백정집 권삼(虛白亭集 卷三)

신공중거에게 드리는 제문
祭辛公仲居文 《韓國文集叢刊 14卷, 虛白亭集 113 A》 《晉州柳氏文集 142面》

허백정집 속집 권일(虛白亭集 續集 卷一)

고부고을로 부임하는 류후자청 빈을 전송하다.
送柳侯子淸 濱 赴任古阜 《韓國文集叢刊 14卷, 虛白亭集 145 A》 《晉州柳氏文集 144面》

진산군 10세(大丞公 19세) 선교랑공(宣敎郎公) 류 침(柳 沉)

자 호 및 생졸년은 전하지 않으며 무장현감(茂長縣監) 류의습(柳義濕)과 사정(司正) 최숙신(崔淑信 父 崔安禮)의 따님인 전주최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의 벼슬은 선교랑(宣敎郎)이며 배위는 진사 이승(李繩 父 郡守 李惕若)의 따님인 용인이씨로 슬하에 장사랑(將士郎) 종정(宗汀)과 종윤(宗潤)을 두었는데 종윤은 무후가 되었고 손자 택(澤 1561~1617)이 선조 18년(1585)에 문과 급제후 장단부사와 봉상정(奉常正)을 역임했다.

사위로 남양인 홍백손(洪百孫) 광주인(廣州人) 안종(安宗 父 承命) 한산인 이몽룡(李夢龍)이 있다.

중종 25년 4월 10일(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류종원(柳宗源)의 포착(捕捉)에 관한 절목은 잘 되었다. 다만 ‘숨겨준 사람에게
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율을 적용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법이 되어버린
뒤에는 고치기가 어렵다. 조관(朝官) 및 음덕(蔭德)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
일백(杖一百)에 유삼천리(流三千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느 지역을 지나
갔을 경우는 그 고을 수령을 파직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한다면 수령들이 반드
시 도직(盜直)²³⁷을 세울 것이다. 금년은 극심한 흉년에다 농사일이 지금 한창
이므로 도직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도직을 세우지 말 것도 아울러
사목(事目)에 넣어야 한다. 종원의 족친 가운데 재상이나 명사는 모두 정원에
불러놓고 ‘그대들을 비록 수금하지는 않지만, 만일 범인의 소재를 알면서 고하지
않았다가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중죄를 적용할 것이다.’고 이르라.”

하였다. 정원이 금부에서 초(抄)한 류종원(柳宗源)의 족친 가운데 동성과 이성을
분간하는 사항에 관한 단자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그의 삼촌숙 류침(柳沉)을 연행해서 물어보니 ‘가장 절친한 사람은 나 뿐이다. 그
러나 부(府)에서 방금 들었는데 몇 촌으로 제한하여 수금하는가?’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원의 족친을 다 수금할 수는 없으니, 동성과 이성을 분간하지 말고 삼촌으로
제한하여 수금하는 것이 좋겠다. 류침(柳沉)의 경우는 그의 삼촌인데 어찌 종원
의 소재를 모르겠는가. 그를 수금해 두고 범인이 출두하기를 독촉하도록 하라.”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류종원(柳宗源)의 범행은 매우 잘못된 인인데다 또 도망까지 하였으니 더욱 용
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란(逆亂)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족친들을 수금하고
출두를 독촉한 전례가 없으니, 상께서 헤아려 조치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류종원(柳宗源)은 조관으로서 국곡(國穀)을 1백여 석이나 훔쳐 썼으니 예전에
는 없던 일이다. 이는 바로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진 때문이다. 류종원은 죄가 무
겁기 때문에 체포하여 바친 사람에게 논상할 절목을 만들도록 한 것인데, 종원
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 삼촌숙 류침(柳沉)을 수금했던 것이다. 대신의
뜻도 나의 뜻과 같으니 형신을 삼가야 할 때에 어찌 오래도록 수금할 수 있겠는
가. 의당 의논하여 석방하도록 하라.”〔중략〕

○헌부가 아뢰기를,

237) 도직(盜直) : 농민들을 무리하게 징발해서 각처를 수비(守備)하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 듯하나 미상.

“류종원(柳宗源)은 욕심이 많고 방자하기가 그지 없으니 끝까지 수포(搜捕)하여 전형(典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역란(逆亂)에 관계된 일이 아닌데 일족(一族)을 수금해 두고 출두하기를 독촉하는 것은 대체를 손상시킬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류종원(柳宗源)의 일은 나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므로 반드시 체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포고절목(捕告節目)은 비록 이러하지만, 종전에 신봉년(辛鵬年)의 경우는 이 사람처럼 중죄는 아니었는데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또 체포하여 바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류종원의 족친 가운데 동성과 이성을 서계하게 하여 살펴보니 류종원의 체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무죄한 인척을 많이 수금하도록 한 것이다. 또 종원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삼촌인 류침(柳沉)을 수금한 것 뿐이다. 류종원(柳宗源)은 빌어먹고 다닐 사람이 아니니 족친의 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체포하여 바치겠는가. 대신도 동성과 이성의 족친을 수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뜻으로 아뢰기에, 류침만 수금하라는 뜻으로 답하였다. 그런데 사중(司中)에서는, 촌수를 제한하여 서계한 내막을 듣고 아뢰는 것인가, 류침만을 수금하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여겨 아뢰는 것인가? 만일 류침(柳沉)만을 수금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와서 아뢰었다면 내가 전교한 뜻을 사중(司中)에 자세히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부가 회계하기를,

“류침(柳沉)만을 수금하라는 전교를 사중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역란에 관계된 일이 아닌데 그의 삼촌숙을 수금하여 그가 출두하기를 독촉하는 것은 사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와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류침을 수금한 것은 류종원으로 하여금 속히 출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류종원이 국고의 곡식을 1백여 석이나 제멋대로 꺼내서 쓴 것으로 보면 자기 삼촌을 수금했다 하여 출두할 자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류침을 오랫동안 수금해 두면 반드시 놓아 주자는 의논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 아니니 놓아 보내도록 하라.”

○己巳傳于政院曰柳宗源捕捉節目至矣但許接人全家徙邊云如此爲法而後改爲難若朝官及有蔭之人則決杖一百流三千里可也境內過行則其官守令亦爲之罷職云如此則守令必爲盜直矣今年凶甚農務方張盜直之弊不少矣除盜直之事並入于事目可也宗源族親中宰相名士則皆招于政院曰汝等雖不囚之若知而不告後現則加以重罪事言之政院以禁府所抄柳宗源族親分同異姓單子入啓曰其三寸叔柳沉捉致問之則曰切親只我而已然府方聞見矣以何寸爲限而囚之乎傳曰宗源族親不可皆囚不分同異姓限三寸囚之可也柳沉則以三寸豈不知宗源之在處乎囚禁督現可也 三公啓曰柳宗源所犯至爲過甚而又卽逃亡尤不可赦但非干

於逆亂之事而囚族親督現古無其例自 上斟酌何如傳曰柳宗源以朝官偷用國穀至百餘石在前無如此之事此朝廷紀綱解弛之故也宗源則罪重故使爲捕告論賞節目矣宗源之父已死故但囚其三寸叔柳沉耳大臣意與予意同謹刑之時豈可久囚乎行當論釋[中略]

○憲府啓柳宗源貪恣莫甚窮極搜捕以正典刑可也然非如逆亂之事囚一族督現恐傷大體傳曰柳宗源之事予亦驚駭期得必捕故如是耳捕告節目雖如此在前辛鵬年之事雖不如此人之甚而至今不現又無捕告之人故宗源同異姓使之書啓而觀之則宗源之捕不可期而多囚無罪之人且宗源之父已死故只囚其三寸柳沉而已宗源非行乞之人雖隱於族親之家伊誰捕告乎大臣亦以囚同異姓未便之意啓之以只囚柳沉之意答之也且司中聞限寸書啓之事而啓之數以只囚柳沉亦爲不可而啓之乎如不聞只囚柳沉而來啓則以所教之意詳言于司中可也憲府回啓曰只囚柳沉之事司中已知之故啓之耳但以非關亂逆之事囚其三寸叔督現有傷事體故來啓傳曰其囚柳沉之意欲使宗源速爲現出也果以宗源國穀百餘石擅自出用觀之則其人必不以三寸之囚出現也若久囚柳沉則必有放之之議而且非干己之事放送可也

《中宗實錄 卷68, 7面》

진산군 10세(大丞公 19세) 부정공(副正公) 류 린(柳 潏)

?~중종 7년(1512)

공의 호는 운봉(雲峰)이며 찬성공 류인습과 이효복(李孝福:父 有善)의 따님인 합천이씨(陝川李氏) 사이에 큰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조에 무과 급제후 돈녕부정(敦寧副正)을 역임했으며 배위는 첨지(僉知) 조득인(趙得仁:父 趙乘)의 따님인 평양조씨로 재령군수 종한(從漢)과 진사 의한(依漢)을 두었으며 사위에 전주인 이함(李瑊:父 列山正 偕)이다.

중종 11년 2월 11일(임술)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윤순(尹珣) 등이 류린(柳潏)의 아내 성씨(成氏)가 상언(上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류린(柳潏)이 경오년(중종 5년 1510) 2월에 성씨와 결혼하였고 그해 8월에 아무 연고 없이 버렸다가, 신미년(중종 6년 1511) 정월에 사헌부가 이 풍문을 듣고 추고하여 그 해 5월에 부합(復合)하라고 판하(判下)하였으나, 임신년(중종 7년 1512) 정월에 류린(柳潏)이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고 그해 8월에 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마침내 부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부합한 예(例)로 사실을 논하여 판하하였으니, 신등의 의견에는 국가에서 비록 부합하라고 하였으나 예(禮)를 갖추어 성혼(成婚)하지 못

하였으므로, 후처(後妻)로써 논하는 것이 불가할 듯하여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합하라는 일은 신미년 5월에 판하하였는데, 다음해인 임신년 정월까지 부합하지 않았다 하니, 그 부합하지 아니한 것은 사사(私事)이다. 그 사실이 전실 자식들에게 계모(繼母)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혼인은 대사이니 부합도 마땅히 처음 성례할 때와 같이 하여야 하는데, 성씨가 부합하지 못하였으니 그 자식에 대하여 어머니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 일이 심히 난처합니다. 널리 수의(收議)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壬戌○漢城府判尹尹珣等以柳潁妻成氏上言來啓曰柳潁庚午年二月與成氏結婚其年八月無故棄別辛未年正月憲府風聞而推之其年五月復合事判下壬申年正月柳潁丁母憂其年八月身死竟未得復合今以復合例論事判下臣等意國家雖使復合而未得成禮成婚未可論以後妻敢稟傳曰復合事辛未年五月判下而至明年壬申正月之久而尚不復合其不復合者私事也其以前室子息等不以爲繼母之意論之可也政院啓曰婚姻大事復合則亦當依初成禮爲之而成氏未得復合爲其子息者不可以爲母亦不可不以爲母其事甚難廣議處之何如 命議于大臣等

《中宗實錄 卷第24, 9面》

중종 11년 2월 24일(을해)

전교하기를,

또 류린(柳潁)의 아내 성씨(成氏)의 상언한 일을 의논하니, 류순·정광필·김응기·권균·신용개·김전·이계맹이 의논드리기를,

“성씨의 일은 헌부(憲府)가 비록 부합(復合)하라고 논정하여 계하(啓下)하였습
 니다만, 그러나 다시 부합하려면 마땅히 다시 예를 갖추어 초례(醮禮)를 지내야
 하는데, 류린(柳潁)이 부합하지 않은 채 죽었으니 아내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내로 논하면 뒷날 성씨가 죽었을 경우 마땅히 린(潁)의 사당에 합사(合
 祀)하고 아들들은 삼년상을 입고 그 아버지 린(潁)의 길제(吉祭)를 폐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제사를 폐하게 되어 또한 자식된
 도리에 어긋나며, 아들들이 성씨를 계모로 섬기는 것도 곤란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물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정리가 또한 야박하니 의논하여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남곤·김석철은 의논드리기를,

“류린(柳潁)이 당초에 성씨를 내쫓은 것은 정당한 도리가 아니므로, 조정에서 그 허물없이 아내를 버린 죄를 바꾸어 부합하게 하였고 린(潁)도 할말없이 죄를 받았는데, 부합하지 않은 것은 다만 린(潁)이 완고해서 법을 받들지 않은 것이니, 의리에 있어서 성씨(成氏)는 이미 린(潁)의 처가 된 것입니다. 종한(從漢) 등이 구차히 그 아버지의 그릇된 뜻만을 따라서 전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는 않고 도리어 그 봉양을 꺾하고 재물을 빼앗아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효리(孝理)의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등의 생각은 마땅히 종한(從漢) 등의 죄를 다스려, 성씨를 계모로 논정하여 인륜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석철은 남곤의 의논만 보고 대신(大臣)의 의논은 미처 보지 못했으므로 홀연히 나의 이름도 여기에 쓰라고 말하였는데, 대신의 의논을 보고서는 두 의논을 반복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미 이름을 곤의 의논에 썼으므로 감히 다른 말을 못하였다.

○乙亥 傳曰 議柳潁妻成氏上言事柳洵鄭光弼金應箕權鈞申用漑金詮李繼孟議成氏憲府雖以復合論定啓下然若復合則當更成禮婚醮而柳潁未復合身死不可論以爲妻若論以爲妻則後日成氏之死當附于潁廟諸子亦復三年喪廢其父潁之吉祭背父志輟父祀亦違於子道諸子於成氏以繼母事之爲難但若實迫奪財物則其情意亦薄似當論治南袞金錫哲議潁當初黜成氏不以其道故朝廷正其無咎棄妻之罪使之復合而潁亦無辭受罪其不復合特潁之頑不奉法而已於義則成氏已爲潁之妻矣從漢等苟從其父非道之意不肯圖蓋前愆乃反闕其奉養至於攘取財產致令陳訴甚非孝理之世所宜聞也臣等意宜治從漢等之罪定成氏爲繼母以立人紀似當錫哲見南袞議未及見大臣等之議忽言吾名亦書于此及見大臣等議將兩議反覆見之然既書其名于袞議故未敢他言

《中宗實錄 卷第24, 17面》

중종 11년 2월 30일(신사)

“류린(柳潁)의 아내 성씨(成氏)는 전일 대신이 의논하여 후처로 논정하지 않았는데, 린(潁)이 부합하지 않은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부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린(潁)이 만일 살아 있으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린(潁)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 종한(從漢) 등이 아버지가 부합하지 않았음을 빙자하여 그 어미를 내쫓고 재물을 빼앗았으니 매우 박절합니다. 당초에 린(潁)이 성씨를 버린 것은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첩에게 빠져 소박당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씨(成氏)는 하나도 죄가 없으므로 그때 법사(法司)가 이미 논결(論決)하여 부합하게 하였고, 린(潁)도 말없이 복죄(服罪)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병들어 죽었으니, 이것으로 아내를 버렸다고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갓 다시 예를 갖추어 성혼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처(棄妻)로 논한다면, 실로 종한(從漢) 등의 뜻과 같은 것이어서 심히 효리(孝理)로 강상(綱常)을 바로 세우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비록 아내를 내쫓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면

오히려 의논할 수 있을 것이나, 자식된 자가 아버지가 버렸다고 하여 핍박하여 내 쫓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다시 널리 의논하여 정하소서.”

하니, 다시 정부에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류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김전·이계맹 등이 의논드리기를,

“류린(柳潑)이 그 아내를 버린 뒤에 법사가 다시 부합하라고 논정하였으나, 린(潑)이 예를 갖추어 성혼하지 않은 채 죽었으니 아내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린(潑)이 살아 있으면서 미루적 거리며 부합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 부합을 독촉하겠지만 린(潑)이 이미 죽었으니, 관에서 다스려도 예를 갖추어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아내로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예(情禮)를 헤아려 봐도 모두 온당하지 않으므로, 신등의 전달 의논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辛巳○柳潑妻成氏前日大臣議不以後妻論定潑之不復合非平常而然也以病未得復合潑若在則當治其罪矣潑既死矣其子從漢等依憑其父之不復合黜逐其母攘奪財物至爲薄絕當初潑之棄別成氏非以爲有過惡也以溺愛其妻疎薄而然也成氏則無一罪故其時法司既爲論決使之復合柳潑亦無辭服罪未久而病死不可以此而論以棄妻也徒以不更成禮成婚而以棄妻論之則正如從漢等之意也甚非以孝理扶植綱常之意也其父雖出其妻而若在他人則猶有議也爲子者不可以爲其父之所棄而迫黜之請更廣議以定 命更收議于政府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金銓李繼孟等議柳潑棄去其妻後法司雖以復合論決潑不成禮成婚而身死不可論以爲妻潑若生存而遷延不復合則當治其罪督令復合潑既死不可以官治之強以不成禮復合之人定以爲妻也揆之情禮俱未穩便故臣等前議如是 《中宗實錄 卷第24, 18面》

진산군 10세(大丞公 19세) 진양군(晉陽君) 류 영(柳 潑)

공의 자는 영지(潑之)이며 남원부사 류첨정(柳添汀 父 壤, 祖 子偕)과 직장 홍종(洪琮 父 燕山, 祖 度)의 따님인 남양홍씨(南陽洪氏)의 큰 아들로 예종년간에 태어났다. 공의 태어난 시기의 기록이 없으나 동생 류부(柳溥)가 성종 1년(1470) 태어났기에 예종년간으로 기록한다.

중종 원년(1506) 9월에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로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록되고 있다. 후에 위훈 삭제 논란으로 중종 14년(1519)에 거론되었지만 공은 중종 19년에 김제(金堤) 군수(郡守)를 역임하고 충훈부 도사(都事)에 오르고 전설 사수(典設司守)를 지냈다. 김정국(金正國)이 지은 만사(輓詞)에 보면 부정(副正)에 오르고 병자보(丙子譜 1756)에는 형조판서의 기록이 있다. 공은 이당(李塘 父

近愚)의 따님인 전주이씨(全州李氏) 사이에 사기(師琦)와 사석(師奭)²³⁸⁾ 두 아들을 두었으며 따님 한 분을 두어 사위는 전주인 이창지(李昌智 父 목사 承元)이다. 사기는 청주 판관을 거쳐 부평 도호부사를 역임하고 명종 8년(1553)에 광흥 창수(廣興倉守)로 경복궁 선수등록 서문(景福宮 繕修謄錄序文)의 기록에 중건에 참여하였음이 호음잡고(湖陰雜稿²³⁹⁾ 173P)에 나오고 있다.

중종 원년 9월 8일(갑신)

전교하기를,

○박원종·성희안·류순정 등이 거의(舉義)한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류자광(柳子光)·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장정(張玘)·홍경주(洪景舟)를 1등으로, 운수군 효성(雲水君孝誠)·심순경(沈順經)·변수(邊脩)·최한홍(崔漢洪)·윤형로(尹衡老)·조계상(曹繼商)·류순(柳洵)·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운산군 계(雲山君誠)·이계남(李季男)·구수영(具壽永)·덕진군 예(德津君濊)를 2등으로, 고수겸(高守謙)·심형(沈亨)·황탄(黃坦)·류세웅(柳世雄)·류계종(柳繼宗)·윤사정(尹士貞)·이심(李蔭)·이식(李軾)·민회발(閔懷發)·민회창(閔懷昌)·허상(許瑩)·장온(張溫)·구현휘(具賢暉)·백수장(白壽長)·이극정(李克正)·이석번(李碩蕃)·김우증(金友曾)·이손(李蓀)·신준(申浚)·정미수(鄭眉壽)·박건(朴健)·송일(宋軼)·강혼(姜渾)·한순(韓恂)·류경(柳涇)·김수경(金壽卿)·정윤겸(鄭允謙)·김경의(金敬義)·이함(李菡)·심정(沈貞)·변준(卞僞)·변사겸(邊士

238) 사석(師奭) : 사석(師奭)이 반남박씨(父 季老)와 혼인하여 외아들 숙(淑)을 낳았는데 병자보(丙子譜 1756) 족보에는 후사의 기록이 없다. 이후 기축보(1829)에도 똑같이 후사의 기록이 없는데 1967년도에 만든 정미보(丁未譜)에 숙(淑)의 아들에 처음 세걸(世傑)과 그 아들 여산(汝山) 이후 전랑공 여산파(殿郎公 汝山派)로 인입 등재되어 있다. 전랑공파는 류영(柳潁)의 묘소가 있는 도봉동 산 54번지에 설단까지 마련하여 왔다. 문제는 세걸(世傑)이 영변파(寧邊派)로서 원 진주류씨 족보에 그 상계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계대를 제대로 잇지 못한 문과 급제자도 배출한 가문이다. 원 진주류씨 족보에 의하면 부(溥)－개성윤을 지낸 간(玓)－지택(之澤)－번(藩)－백규(伯逵)－창(閻)이 군수 자오(自圻)와 부사직(副司直) 자은(自垠) 형제인데 자은(自垠)이 부사정 계(溪)로 이어져 세공(世恭) 세걸(世傑) 세양(世讓) 삼형제를 두었는데 세걸 후손은 영변파로서 영변에 집단 세거하였으며 동생 세양 후손은 함흥에 세거하여 함흥파로 분류되었다. 6.25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대거 월남한 세걸 후손들이 진주류씨가 원 진주류씨와 이봉 진주류씨로 갈라져 온 지가 아득히 먼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집안의 족보를 좀 밝으며 안다고 한 세걸 후손 중원(哲熙)이 이봉 진주류씨 중원들을 설득하여 1967년 정미보 간행시 대량 인입 족보에 올리므로서 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후 1986년에 간행한 병진보에도 똑같은 오류가 전해 내려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239) 호음잡고(湖陰雜稿) : 이조 명종 때의 문신 정사룡(鄭士龍)의 문집. 자는 윤경(雲卿) 호는 호음 본관은 동래 명상(名相) 정광필(鄭光弼)의 조카 중종 4년 문과에 장원 급제. 대제학, 판중추를 지냈다. 시문에 뛰어났고 음률에도 밝아 명나라 사신을 여러번 접대하여 이름이 높았고 이양(李梁)의 당이 되어 정1품 위계에 까지 올랐으나 이양이 실각되자 파직됨. 호은시고 등 유집이 있다.

謙) · 한숙창(韓叔昌) · 박이검(朴而儉) · 류영(柳潑) · 성희옹(成希雍) · 윤형(尹衡) · 신윤문(辛允文) · 홍경림(洪景霖) · 강지(姜漬) · 윤금손(尹金孫) · 류응룡(柳應龍) · 윤탄(尹坦) · 신수린(申壽麟) · 조세훈(趙世勳) · 한세창(韓世昌) · 이맹우(李孟友) · 윤여필(尹汝弼) · 손동(孫仝) · 류승건(柳承乾) · 안현수성동(安賢守盛同) · 이종의(李宗義) · 허광(許曠) · 이한원(李翰元) · 류홍(柳泓) · 이기(李夔) · 성율(成瑛) · 조원륜(趙元倫) · 김선(金瑄) · 민효증(閔孝曾) · 윤장(尹璋) · 조계형(曹繼衡) · 이우(李瑀) · 김극성(金克成) · 황맹헌(黃孟獻) · 성몽정(成夢井) · 이세응(李世應) · 장한공(張漢公) · 한사문(韓斯文) · 김임(金任) · 박영창(朴永昌) · 박영분(朴永蕢) · 조계은(曹繼殷) · 수안군 당(遂安君讚) · 박이온(朴而溫) · 이희옹(李希雍) · 이성언(李誠彦) · 신은윤(辛殷尹) · 윤희평(尹熙平) · 강윤희(康允禧) · 이창(李敞) · 최유정(崔有井) · 채수(蔡壽)를 3등으로 삼아 아뢰었다.²⁴⁰⁾

영의정 류순 · 우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박원종 등은 감히 스스로 자기의 공을 의논할 수 없으므로, 아뢴 바가 이와 같습니다. 박원종 · 성희안 · 류순정은 제일 먼저 큰 계책을 결단하여 큰 공을 정하였으니, 그 서차가 마땅히 자광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수린은 성희안의 매부다. 공을 논할 때, 희안이 그의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박원종 · 류순정과 저 세 사람의 자제들이 모두 녹공(錄功)에 참여하였으되, 저희 자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린은 나이가 젊어서, 사세가 입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곧 노하여 누우며 ‘내 다시는 네 낫을 보지 않으리라.’ 하였다. 이튿날, 희안이 어머니의 말로 원종 등에게 청하여 덧붙여 기록

240) 반정(反政)이라는 목숨을 건 거사의 특수성 때문이겠지만 반정공신들의 면면을 보면 혈맹이라고 볼 수 있겠다. 왕실 내부의 권력 암투와 함께 역사적인 한 부분의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과제가 되리라 본다.

반정의 주역인 정국공신 1등 류순정(柳順汀)과 그 아들 류홍(柳泓) 장조카 류영(柳潑)이 4등에 오르고 류홍의 장인이 이계남(李季男)이며 정종(定宗)의 아들 덕천군(德泉君)의 둘째 아들 운수군 효성(雲水君 孝誠 父 密城君)은 류영의 둘째 아들 사석(師奭)이 장인 박계로(朴季老)와 처남 남매가 된다.

운수군의 사위가 윤탕노(尹湯老)이고 탕노의 숙부 윤탄(尹坦 父 尹三山)이 참여하였고 그 아들 윤형노(尹衡老)가 정국공신이다.

운수군과 형제간인 수안군 당(遂安君讚)이 정국공신이고 사위 한세창(韓世昌 父 致禮)과 그 형제 한숙창(韓叔昌)이 참여했다. 창녕인 조계상(曹繼商 父 九叙) 조계은(曹繼殷) 형제이고 뒤에 우의정에 오른 김수동(金壽童)과 김수경(金壽卿)이 형제 참여하였다. 덕진군 예(德津君 濊 父 德原君 一祖 世祖)가 2등공신이고 영평대군(永膺大君)의 사위 구수영(具壽永)이 정국공신이며 아들 청풍군(淸風君)의 사위가 류방(柳房)으로 류자광(柳子光)의 아들이고 류승건(柳承乾 父 軫)이 류자광의 손자로 연결된다.

하였다. 그 이웃 마을이나 족속들이 수린을 지목하여, 「노와공신」(怒臥功臣)이라 하였다. 기타 외람되게 참여한 자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또 논한다.

연산 말년에 장차 복망(覆亡)할 화가 있었으나, 조정에 있는 못 신하는 한 사람도 계교를 내어 의를 외치는 일이 없었으되, 전라도에서는 류빈(柳濱) 등이 거사(舉事)할 것을 같이 모의하여 서울과 지방에 격문을 띄웠고, 경상도에서는 조윤손(曹潤孫) 등이 가까운 친척인 윤탕로(尹湯老)와 더불어 기병(起兵)할 것을 협모(協謀)했으나 거사하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마침 박원종 등이 먼저 대의(大義)를 세움에 힘입었으니, 삼공 육경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다. 그런데 훈맹(勳盟)에 참여함에 미처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자제들로 하여금 훈적(勳籍)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공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줄로 인하여 참여하기를 청한 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 이와 같은 유는 족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우의정 김수동은 한때의 명류(名流)로 어머니의 복제 중이었으니, 추대한 뒤에는 곧 돌아가 상제 노릇하는 것이 옳거늘, 공을 논한 뒤에 조용히 집으로 물러나 류자광에게 문기를, ‘아우 수경은 어떤 등수의 공에 기록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수동은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탐모(貪冒)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라.

○甲申傳曰○朴元宗成希顏柳順汀等論舉義之功分爲三等以柳子光辛允武朴永文張珽洪景舟爲一等以雲水君孝誠沈順徑邊脩崔漢洪尹衡老曹繼商柳洵金壽童金勘雲山君誠李季男具壽永德津君滅爲二等以高守謙沈亨黃坦柳世雄柳繼宗尹士貞李滌李軾閔懷發閔懷昌許礫張溫具賢暉白壽長李克正李碩蕃金友曾李孫申浚鄭眉壽朴楛宋軼姜渾韓尙柳涇金壽卿鄭允謙金敬義李菡沈貞卞儁邊士謙韓叔昌朴而儉柳滌成希雍尹衡辛允文洪景霖姜漬尹金孫柳應龍尹坦申壽麟趙世勳韓世昌李孟友尹汝弼孫全柳承乾安賢守盛同李宗義許礦李翰元柳泓李夔成琛趙元倫金瑄閔孝曾尹璋曹繼衡李瑀金克成黃孟獻成夢井李世應張漢公韓斯文金任朴永昌朴永蕘曹繼殷遂安君讚朴而溫李希雍李誠彥辛殷尹熙平康允禧李敞崔有井蔡壽爲三等以啓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啓曰朴元宗等不敢自議己功故所啓如此朴元宗成希顏柳順汀首決大策立定大功其序次當在子光之上傳曰知道史臣曰申壽麟成希顏妹夫也論功時希顏告其母曰朴元宗柳順汀與吾三人之子弟皆叅錄功而吾之子弟最多壽麟年且少勢不可開口其母聞言卽怒臥曰吾不復見汝面翌日希顏以母言請于元宗等添錄之其隣里族屬目壽麟曰怒臥功臣其他濫與者亦多類此又曰燕山末年將有覆亡之禍在朝群臣無一人出計倡義而全羅則柳濱等同謀舉事移檄京外慶尙則曹潤孫等與近戚尹湯老協謀起兵未及舉事適賴朴元宗等先建大義三公六卿得保首領足矣及叅勳盟不以爲愧又使子弟並叅勳籍其所謂功不知爲何事也不特此也因緣請叅者不知其幾如此之類不足道也右議政金

壽童以一時名流方持母服推戴後卽還居憂可也論功之後從容退家問柳子光曰弟壽卿錄何等功乎壽童稍有知識貪冒如此况他人乎
《中宗實錄 卷1, 10面》

중종 14년 11월 11일(신축)

○정국공신(靖國功臣)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傳旨)하기를,

“예전부터 임금(代位)에 오를 때에는 크게 보좌하는 신하가 있어 천명(天命)을 도와 공훈(功勳)을 세운다. 그래서 공로를 보상하되 오직 함부로 베풀지 않고 지나치게 받지 아니하여, 위에서는 법대로 이행하고 아래에서는 감히 분수에 넘치게 바라지 않아야 인양(仁讓)의 도리가 통달하고 공리(功利)의 풍습이 구원할 것이다. 전에 어려운 시국을 당하여 종묘(宗廟)가 위태로왔으나, 덕이 없는 나로서는 감히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는데, 우리 두세 충신(忠臣)이 힘을 합쳐 거사에 분주한 신하들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사직(社稷)을 붙들고 우리 백성을 건져서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고, 나를 후사(後嗣)로 추대하여 선왕(先王)의 유업(遺業)을 잇게 하니, 내가 감히 그 공을 적다 할 수 없으므로 훈적(勳籍)에 기록하여 영구히 남기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초창(草創) 때에 일이 황급하여 원대한 계획에 어두웠으므로,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공(錄功)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우리 현저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거의 나라를 탐욕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 가니 또한 내가 어찌 감히 ‘함께 허물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나에게 어렵고 큰 기업(基業)을 주셨으니, 이제 기본(基本)을 크게 정돈하여 국맥(國脈)을 세우고 천명에 보답하지 않고서 ‘아직 뒷날이 있다.’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습속이 퇴폐하여 사람들이 의(義)를 버리고 이(利)를 향하며 아버지를 버려두고 임금을 뒤로 미루어 거의 못하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내 마음이 아프다. 내 고굉(股肱: 대신)·이목(耳目: 대간)이 되는 어진 신하들이 원대한 계획으로 구제하는 정성을 다해서 나를 계도(啓導)하여 참람(僭濫)한 과실을 징계하고 공리(公利)의 근원을 막아서 의(義)를 이(利)로 삼아 우리 국운을 장구하게 하려 하니, 내가 어떻게 감히 좇아서 오래 쌓인 때를 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게 밝은 하늘이 환히 굽어보고 만백성은 분명히 상성(常性)을 가졌으므로, 예전부터 대업을 세우고 대통을 잇는 임금은 모두가 하늘이 살피고 못사람이 보는 바이니, 내가 어질지 못하더라도 감히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일 수 없다. 내 어찌 공훈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國是)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수군 효성(雲水君孝誠) · 류순(柳洵) · 김수동(金壽童) · 김감(金勘) · 운산군 계(雲山君誠) · 이계남(李季男) · 구수영(具壽永) · 덕진군 예(德津君濊) · 장온(張溫) · 이석번(李碩蕃) · 신준(申浚) · 정미수(鄭眉壽) · 박건(朴楗) · 송일(宋軼) · 강혼(姜渾) · 한순(韓恂) · 이손(李蓀) · 류경(柳涇) · 김수경(金壽卿) · 윤탕로(尹湯老) · 변준(卞儁) · 변사겸(邊士謙) · 한숙창(韓淑昌) · 박이검(朴而儉) · 류영(柳潐) · 성희용(成希雍) · 윤형(尹衡) · 홍경림(洪景霖) · 강지(姜漬) · 윤금손(尹金孫) · 류응룡(柳應龍) · 윤탄(尹坦) · 신수린(申壽麟) · 조세훈(趙世勛) · 한세창(韓世昌) · 이맹우(李孟友) · 윤여필(尹汝弼) · 안현군 성동(安賢君盛同) · 이종의(李宗義) · 허광(許曠) · 이한원(李翰元) · 류홍(柳泓) · 이기(李夔) · 성율(成瑛) · 조원륜(趙元倫) · 김선(金瑄) · 민효증(閔孝曾) · 김극성(金克成) · 황맹헌(黃孟獻) · 성몽정(成夢井) · 이세응(李世應) · 장한공(張漢公) · 한사문(韓斯文) · 김임(金任) · 조계은(曹繼殷) · 수안군 당(遂安君讚) · 박이온(朴而溫) · 이성언(李誠彦) · 신은윤(辛殷尹) · 윤희평(尹熙平) · 강윤희(康允禧) · 이창(李敞) · 최유정(崔有井) · 채수(蔡壽) · 우정(禹鼎) · 문치(文致) · 서경생(徐敬生) · 김계공(金繼恭) · 김숙손(金叔孫) · 김은(金銀) · 임원산(任元山) · 권균(權鈞) · 김준(金俊) · 김무(金玆) · 반우형(潘佑亨) · 이곤(李坤) 등의 외람된 것을 추가로 바로 잡아서 공권(功券)을 맑게 하라.

아,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임금은 인의(仁義)를 급하게 여기고 도(道)를 말하는 선비는 공리(功利)를 천하게 여긴다. 나는 시종 여기에 유념하니, 모든 우리 벼슬아치와 선비들은 내 뜻을 잘 알라.”

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렸다.

○辛丑○靖國功臣改正事傳旨 粵昔帝王陟丕釐景命乃有宏碩之輔翼猷定命以樹勳庸於是乎有酬勞報功之舉惟其施之不濫受之不僭上克迪厥典下不敢侈志覬幸仁讓之道旁達功利之習遠矣者遭時艱宗祊阽危越予寡德罔敢自恤厥惟我二三盡臣協力暨奔走服采之臣舉能奮庸匡扶我社稷拯拔我兆庶弘濟艱難用推予後侗丕恢先緒予罔敢鮮厥功勒命錄勳籍用垂永久然當草創事屬倉皇昧厥經遠之慮不克秉用裏斷用侈于功載用清我功宗其不幾於率國而趨饕之路乎職是輿論激起愈久愈鬱亦越不穀其敢不曰與有咎焉嗚呼惟天惟 祖宗付畀我丕基厥艱大今不大整頓基本以樹國脉以答天命而曰尚有後日哉乃今習俗靡然人將去義趨利遺親後君殆無所不至其將何以爲國予懷盡然惟予股肱耳目之良懷經遠之見盡匡救之誠庸予迪予懲僭濫之失塞功利之源以義爲利以長我國家予何敢不從不洒久受之垢哉上帝孔昭有臨赫然蒸蒸黎元明有常性從古建業承統之君罔非上帝所監臨有衆所指觀予惟不良亦非敢誣于天敢罔于民予詎有虛籍非勳不斷之以國是其以雲水君孝誠柳洵金壽童金勘雲山君誠李季男具壽永德津君濊張溫李碩蕃申浚鄭眉壽朴楗宋軼姜渾韓恂李蓀柳涇金壽卿尹湯老卞儁邊士謙韓叔昌朴而儉柳潐成希雍尹衡洪景霖姜漬尹金孫柳應龍尹坦申壽麟趙

世勛韓世昌李孟友尹汝弼安賢君盛同李宗義許礦李翰元柳泓李夔成琛趙元倫金瑄閔孝曾
金克成黃孟獻成夢井李世應張漢公韓斯文金任曹繼殷遂安君讚朴而溫李誠彥辛殷尹尹熙
平康允禧李敞崔有井蔡壽禹鼎文致徐敬生金繼恭金叔孫金銀任元山權鈞金俊孫金碓潘佑
亨李坤等追正冒濫澄固功券嗚呼願治之主急仁義談道之士賤功利予念終始于斯凡我庶官
庶十悉體予意事下議政府

《中宗實錄 卷37, 14面》

중종 19년 9월 4일(을축)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사균(李思鈞)이 치계(馳啓)하기를,
“김제군수(金堤郡守) 류영(柳潑)은 한 교생(校生)이 취학하려 하지 않는다 하여
양 무릎을 때로 때려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헌부(憲府)에 명하여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乙丑○全羅道觀察使李思鈞馳啓云金堤郡守柳潑以一校生不肯就學杖兩膝致死 命憲
府推之

《中宗實錄 卷51, 52面》

중종 19년 9월 26일(정해)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 어사(平安道御史)가 아뢰 불법(不法)한 수령 의주 판관(義州判官) 김국
량(金國良)·용천군수(龍川郡守) 김의형(金義亨)을 파직하소서. 김제군수(金堤
郡守) 류영(柳潑)은 교생(校生)을 때려 죽였으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문(推
問)하소서.”
하니, 김국량·김의형·류영은 파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丁亥○臺諫啓前事憲府又啓平安道御史所啓不法守令義州判官金國良龍川郡守金義亨
請罷之金堤郡守柳潑打殺校生請先罷後推 命罷金國良金義亨柳潑餘不允

《中宗實錄 卷51, 59面》

중종 21년 7월 1일(임오)

○헌부가 한경기(韓景琦)·이호(李瑚)·강연(姜演) 등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
기를,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 류영(柳潑)은 전에 김제군수(金堤郡守)로 있을 때 함
부로 형벌을 행한 것 때문에 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곧 서용(叙用)되었
고, 경기 도사(京畿都事) 허백기(許伯琦)는 포폄을 맡는 관원에는 합당치 않으
니 아울러 체직하소서. 전 대간(臺諫) 들심사순·홍석건·이희건을 가리킨다.은 그 시비
를 분변해서 화직(華職)에 제수하지 말 것으로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모두 화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대저 근래의 용인(用人)과 모든 정령(政令)에 대해 위에서 전교했다가 위에서 곧 도로 훼손(毀棄)시키므로 정령이 한결같지 않게 되니, 이는 치도(治道)에 관계되는 바가 큼니다. 의당 상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조(銓曹)에서는 전교를 듣기가 바쁘게 즉시 화직에 의망(擬望)했으니 이 역시 그릇된 일입니다. 때문에 본부에서 바야흐로 함문(緘問)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원이 허백기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해조(該曹)에서 아뢴 바를 보건대 감사·병사의 부임은 모두 30일이 기한이라 한다. 황침은 사은한 지 이미 50여 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니 파직시키고, 임무를 감당할 만한 다른 사람을 가려 임명해서 급히 부임하게 하라. 병조는 직사에 완만하여 규거(糾舉)하지 않았으니 역시 추문(推問)해야 한다. 허백기와 전 대간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壬午○憲府啓韓景琦李瑚姜演等事又啓忠勳府都事柳滌前爲金堤郡守以濫刑被罪未久卽叙京畿都事許伯琦不合褒貶官請並違前臺諫等沈思順李熙騫洪石堅辨其是非不授華職事已有傳教而數日間皆授華職大抵近來用人及凡于政令自上傳教而自上旋毀政令不一甚關治道宜自上留省銓曹纔聞傳教而卽擬華職亦爲非矣故府方緘問耳諫院啓許伯琦事傳曰觀該曹所啓監司兵使赴任皆以三十日爲限云黃琛謝恩已過五十餘日尙不赴任其罷職擇差他可堪者促赴兵曹之慢不糾舉亦宜推之許伯琦前臺諫事如啓餘不允

《中宗實錄 卷57, 19面》

중종 21년 7월 2일(계미)

헌부가 한경기·이호·강연·류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癸未憲府啓韓景琦李瑚姜演柳滌等事皆不允

《中宗實錄 卷57, 19面》

중종 21년 7월 3일(갑신)

헌부가 한경기·이호·강연·류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甲申憲府啓韓景琦李瑚姜演柳滌等事皆不允

《中宗實錄 卷57, 19面》

중종 21년 7월 4일(을유)

헌부가 한경기·이호·강연·류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乙酉憲府啓韓景琦李瑚姜演柳滌等事皆不允

《中宗實錄 卷57, 20面》

중종 21년 7월 8일(기축)

헌부가 한경기(韓景琦)·이호(李瑚)·강연(姜演)·류영(柳滌) 등의 일을 아뢰니, 이호·강연은 체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己丑憲府啓韓景琦李瑚姜演柳滌等事命遣李瑚姜演餘不允 《中宗實錄 卷57, 20面》

중종 21년 7월 11일(임진)

○헌부가 한경기 류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壬辰○憲府啓韓景琦柳滌等事皆不允 《中宗實錄 卷57, 22面》

중종 34년 10월 24일(무자)

전교하였다.

○공신(功臣)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극성(金克成),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 윤여필(尹汝弼), 창녕군(昌寧君) 조계상(曹繼商), 서원군(西原君) 한순(韓恂), 해양군(海陽君) 윤희평(尹熙平), 문원군(文原君) 류응룡(柳應龍), 안현군 성동(安賢君盛同), 청성군(靑城君) 심순경(沈順徑), 익원군(益原君) 홍경림(洪景霖),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변사겸(邊士謙)과 성울(成慄), 호군(護軍) 장온(張溫), 전 부사(府使) 이맹우(李孟友), 전설시수(典設寺守)²⁴¹⁾ 류영(柳滌), 전 첨정(僉正) 이기(李夔), 호군(護軍) 우정(禹鼎)을 인견하였다. 곧 모든 공신에게 전교하기를,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중삭연(仲朔宴)²⁴²⁾ 및 훈신(勳臣)들을 특별히 접대할 때가 많았는데, 근자에는 재변(災變)과 사고(事故) 때문에 오랫동안 접견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안타까운 일이다. 내 특별히 접견하고 연회를 베풀려 했었으나 마침 겨울 천둥으로 인하여 연회를 베풀지 못하고 단지 인견만 할 뿐이다.”

하였다. 그리고 빈청(賓廳)으로 물러가게 한 다음 술을 내리고 각각 아마(兒馬) 1 필씩을 주었다.

○戊子傳曰○引見功臣光城府院君金克成坡原府院君尹汝弼昌寧君曹繼商西原君韓恂海陽君尹熙平文原君柳應龍安賢君盛同靑城君沈順徑益原君洪景霖僉知中樞府事邊士謙成慄護軍張溫前府使李孟友典設寺守柳滌前僉正李夔護軍禹鼎仍傳諸功臣曰 祖宗朝仲朔宴及特接勳臣之時亦多矣近者或因災變或因事故久闕接見此是欠事予特見欲饋酒適因冬

241) 전설시수(典設寺守) : 조선시대 궁중의 제향이나 의식에 쓰는 장막(帳幕)의 공설(供設)을 담당하던 관아. 태종 3년에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로 14년(1414)에 충호위로 고쳤다가 세조 12년(1466)에 전설사로 고쳤다. 처음에는 수(守)를 장관으로 하는 정4품 아문이었는데 말기에 종6품 아문으로 강등하였다.

242) 중삭연(仲朔宴) : 사계절(四季節)의 가운데 달로, 곧 2월·5월·8월·11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잔치.

雷不設酒禮只引見而已退坐賓廳饋酒各賜兒馬一匹

《中宗實錄 卷92, 31面》

사재집 권이(思齋集 卷二)

류부정 영에게 드리는 만사

挽柳副正 溍

《韓國文集叢刊 23卷, 思齋集 41 A》 《晉州柳氏文集 146面》

진산군 10세(大丞公 19세) 효성공(孝成公) 류 부(柳 溍)

성종 1년(1470)~중종 39년(1544)

공의 자는 언박(彦博)이며 시호는 효성(孝成)이다. 성종 1년(1470) 남원부사 류첨정(南原府使 柳添汀)과 직장(直長) 홍종(洪琮 父 燕山, 祖 度)의 따님인 남양 홍씨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효령대군의 손자이며 한훤당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인 주계군 이심원(朱溪君 李深源)²⁴³의 사위가 되어 문하생으로 글을 배워 성종 23년(1492) 사마시에 오르고 연산군 7년(150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다음해 청요직인 홍문관 정자(正字)에 임명되었으나 2년 후 갑자사화 때 은진(恩津)으로 귀양갔다. 중종반정 후 풀려나 중종 2년(1507) 강원도사 4년 사헌부헌납 이후 사유(師儒)로 선발되고 왕과 함께 가 명륜당에서 중용을 강독하였다. 중종 16년(1521) 진하사 서장관으로 명나라 서울에 갔으며 19년 사헌부 집의, 홍문관 직제학, 사간원 대사간. 20년 동부승지, 우·좌부승지, 우참판. 21년 도승지. 22년 전라도 관찰사. 23년 한성부좌윤. 24년 5월 1일 첨지중추부사, 성절사로 북경에 갔다. 25년 정현왕후(貞顯王后)²⁴⁴ 상에 수릉관(守陵官)을 역임했다. 26년 지중추부사. 27년 지의금부사. 28년 호조판서, 공조판서. 29년 우참찬. 30년 우찬성, 좌찬성(상의원, 사옹원 도제조 겸직). 32년 우의정, 좌의정. 33년 판중추부사. 34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39년 8월 12일 운명할 때까지 역임했다.

243) 이심원(李深源) : 주계군(朱溪君)으로 효령대군의 증손자로 평성군(淸城君) 위(偉)의 아들이며 자는 백연(白淵)이며 한훤당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조광조·김안국 등과 동문수학하였다. 연산군 때 고모부가 되는 임사홍(任士洪)의 참소로 갑자사화(1504)에 연루되어 두 아들과 함께 죽었다. 조광조·정광필의 상소로 복권되어 추증되었으며 충신정려가 내려졌다. 사당은 계룡시 금암동에 있다.

244) 정현왕후(貞顯王后) : 1462~1530. 조선 9대 임금인 성종(成宗)의 계비(繼妃). 성은 윤씨(尹氏) 본관은 파평 호(壕)의 딸. 성종 4년(1473)에 숙의(淑儀)가 되었고 왕비 윤씨가 폐위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중종과 신숙공주(愼淑公主)를 낳았다. 존호는 자순화혜(慈順和惠) 휘호(徽號)는 소의흠숙(昭懿欽淑) 능은 선릉(宣陵)이다.

배위는 주계군 이심원의 따님인 전주이씨와 월성부수(月城副守) 이의(李儀)의 따님인 전주이씨가 있다. 아들은 사상(師尙)이며 사헌부 감찰을 역임했다.

동서로서는 문과에 오른 은진인(恩津人) 송세충(宋世忠) 홍덕준(洪德俊) 평산인(平山人) 신정(申楨 또는 申挺)과 허린(許鱗) 등이 있다. 특히 송세충의 사위 정응두(丁應斗 父 丁玉亨)는 한문소설 포절군절(抱節君節)을 남긴 월헌 정수강(月軒 丁壽崗)의 손자이다.

燕山辛酉七年式年榜

一等 三人

生員 李頰(全義人), 生員 金漑(靈光人), 生員 李世應(咸安人)

二等 七人

進士 曹繼衡(昌寧人), 進士 柳公爽(文化人), 生員 金世瑀, 進士 韓效元(清州人), 生員 朴祥(忠州人), 生員 申儼(平山人), 訓導 張翼(扶安人)

三等 二十五人

訓導 俞好禮, 進士 卞亨長(草溪人), 生員 李希輔(平壤人), 經歷 李世貞(廣州人), 進士 李允濯(星州人), 奉事 洪景舟(南陽人), 進士 尹龜壽(坡平人), 生員 鄭舟臣(晉州人), 司果 尹珣(坡平人), 訓導 朴元稔(彦陽人), 進士 柳溥(晉州人), 進士 尹倬(坡平人), 進士 李耘(韓山人), 昭威 任瀏(豐川人), 展力 李芑(德水人), 永義 金瑋(完山人), 新榜生員 李守貞(廣州人), 訓導 金欽祖(禮安人), 生員 朴鯤(陰城人), 生員 金乃文(光州人), 直長 權憲(安東人), 訓導 金驥趾, 生員 金胤文(光州人), 生員 李紹元(碧珍人), 司直 柳房(靈光人), 生壯幼學 李守貞, 進壯幼學 金安國(義城人)

연산군 8년 7월 22일(임진)

○고형산에게 사헌부 집의를 겸직하게 하고, 한세환(韓世桓)을 지평으로, 류부(柳溥)·김내문(金乃文)을 홍문관 정자(正字)로 삼았다.

○壬辰○以高荊山爲兼司憲府執義韓世桓持平柳溥金乃文弘文館正字 《燕山君日記 45, 7面》

연산군 9년 5월 15일(경진)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의정부 영의정 성준(成俊)·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상사(上使)의 말이, ‘내가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백관의 품계(品階)를 올려 황제의 은혜를 반포하려 하는데, 전하께서 가부를 말하지 않으시니 어떤 일인가?’ 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가 거만하기는 하지만 황제의 은혜를 빙자

하여 그 말이 이치에 가까우니, 따르더라도 무방할까 합니다.”
하니, 전임 정승과 육조의 당상관·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좌평부원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드리기를,

“천자의 사신이 노여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그러지는 일이고, 저편의 하는 말은 바르고도 큰데, 우리의 대답은 모자라 순탄하지 못합니다. 또, 일은 언제나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오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힘써 대체를 생각하시어 소홀함이 없게 하소서.”〔중략〕

부제학 윤금손(尹金孫)·직제학 민이(閔頤)·교리 강징(姜澂)·권홍(權弘)·부교리 권달수(權達手)·이자화(李自華)·수찬 김극휼(金克幅)·심정(沈貞)·박사(博士) 류부(柳溥)·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정자 김양보(金良輔)·강홍(江洪)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신의 말 때문에 재차 백관의 자급을 올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크게 범람한 짓이요, 또한 조종 때의 준례에도 어그러지는 것이니 결코 거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황제의 은혜라고 핑계하고 굳게 청하여 마지 않으며 불손한 말을 하기까지 하니, 지금 만일 좇지 않는다면 그 노여움을 격발시킬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三公)과 재상이 모두들 나의 사신 대접이 미진하다 하여, 반드시 사신의 청을 따르게 하려 하니 이는 신하는 어질고 인군은 용렬한 탓이다. 관반(館伴)이 형편을 보아 저지하여 노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반드시 조정이 힘써 그의 청을 따르게 하려 한다. 내 생각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여러 의논이 다 같으니,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을 따라야 하겠다. 다만 내 뜻이 아니니, 무슨 말을 가지고 사신에게 말할지 모르겠다. 정승들에게 묻노라.”

하였다.〔중략〕

권균(權鈞)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두 사신의 말이, ‘북경(北京)에서 황태자를 책봉하면 은혜를 반포하는 것이 예이니, 예법이 어찌 저기와 여기가 다르겠는가? 그래서 본국에서도 이렇게 하려는 것이요. 칙서가 있기 전에 은혜를 반포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하고, 이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예요.’ 하였습니다.”

하였다.

○庚辰御經筵○議政府領議政成俊左議政李克均啓上使云俺奉 帝命而來欲加百官階以頒皇恩 殿下不報可否何故耶臣等意彼雖倨憑籍皇恩其言近理雖曲從無妨命召曾經政丞六曹堂上弘文館臺諫議之坡平府院君尹弼商議使 天子之使有愠於禮有乖彼所言正且大我所答短而不順且事端常生於所忽伏惟聖上勉思大體毋忽〔中略〕

副提學尹金孫直提學閔頤校理姜澂權弘副校理權達手李自華修撰金克幅沈貞博士柳溥著

作金乃文正字金良輔姜洪議今以天使之言再加百官之級是固大濫亦違 祖宗故例決不可
 舉但彼諉以皇恩罕請不已至發不遜之語今若不從恐激其怒也傳曰三公宰相皆謂予待天使
 未盡必欲從天使之請此臣賢君庸之故館伴亦可因便沮止不使有怒而必使朝廷務從其請予
 意雖獨不然群議皆同當舍已從人但非予意不知何辭以語天使其問于政丞[中略]

權鈞還啓兩使曰在北京冊封 皇太子則頒恩禮也禮何有異於彼此故欲使本國亦如是耳勅
 前頒恩之言若非俺則不可言也因笑曰此乃禮也 《燕山君日記 49, 27面》

연산군 10년 3월 18일(기묘)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세상을 보면, 선비들의 풍습이 변하고 막하여져, 재상이 죄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인군을 그르다 하며, 또 자제들을 교훈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된 자도 부형의 말을 듣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 점점 높은 체 논란하는 풍습을 이루니, 이르고서 위에 인군이 있다 하겠는가? 군신의 분별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중략]

문기를,

“속바침을 받는 것은 과실을 징계하는 것인데, 그 속바치는 물건이 그 집에서 나오는가? 만일 그 관사(官司)에서 나온다면 이는 국가에서 징계하는 뜻이 아니다.”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에도 이미 전교를 받들어 금하였습시다. 그러나 다시 거듭 밝히기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중략]

○전후 홍문관원 정자(正字) 강홍(姜洪)·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 박사 류부(柳溥)·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과 부교리(副校理) 권달수(權達手)· 교리 이자화(李自華)· 부응교(副應教) 이행(李荇)과 승지 강징(姜澂)과 이의손(李懿孫)· 진정야 김양보(金良輔)· 정언 류인귀(柳仁貴)· 부수찬 이사균(李思鈞)· 부제학 손주(孫澍)· 호조 참의 이과(李顥)를 태(笞) 40대 씩을 속바치게 하였다.

○己卯傳于承政院曰觀今之世士習儉薄宰相有罪不自惕慮反非君上又不教誨子弟故爲子弟者聞父兄之言亦多巷議漸成高論之風其謂上有君乎君臣之分不可不丁也[中略]

問曰收贖所以懲過也其所贖之物出於其家乎若出於其司則非國家懲之之意也承旨等啓前已承傳禁之矣然請更申明傳曰可[中略]

○贖前後弘文館員正字姜洪著作金乃文博士柳溥修撰朴光榮副校理權達手校理李自華副應教李荇承旨姜澂李懿孫前正字金良輔正言柳仁貴副修撰李思鈞副提學孫澍戶曹叅議李顥答四十

연산군 10년 3월 23일(갑신)

전교하기를,

○윤필상(尹弼商)·류순(柳洵)·박건(朴健)이 의논드리기를,

“회묘(懷墓)께서 좌죄(坐罪)된 일이 종묘 사직에 죄를 얻은 일이 아니니, 전하의 망극하신 심정을 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호(諡號) 및 능호(陵號) 올리는 일은 해당 조(曹)에서 의논해서 시행토록 하시고 후궁에 대한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강귀손(姜龜孫)·박승질·신준(申浚)·이계동(李季叟)·이집(李詰)·허침(許琛)·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송일(宋軼)·김감(金勘)·한사문(韓斯文)·안처량(安處良)·이계남(李季男)·성세명(成世明)·이창신(李昌臣)·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류빈(柳濱)·허집(許輯)·이점(李坫)·한형윤(韓亨允)·노공유(盧公裕)·남궁 찬(南宮璨)·정광필(鄭光彌)·이복선(李復善)·성희안(成希顔)·이과(李顥)·손주(孫澍)는 의논드리기를,

“회묘를 추숭(追崇)하는 일이 의리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하의 망극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니, 존숭하는 절목(節目)을 예조에서 의논하여 시행함이 편하겠습시다. 죄 있는 후궁은 그 몸이 죽은 뒤에는 후궁의 준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의논드리기를,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어머니는 아들로 하여 귀해진다.’ 하였습니다. 회묘(懷墓)의 칭호는 마땅히 올려 능(陵)으로 하여야 하며, 시호(諡號)를 예조에서 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또 궁인(宮人)의 범행은 그 악이 대소가 있고, 죄가 경중이 있어, 만일 크고 중한 것이라면 살아서도 후궁이라 할 수 없는데, 죽은 뒤에 어찌 그 상례를 치르겠습니까?”

하고, 최숙생(崔淑生)·이행(李荇)·이자화(李自華)·권달수(權達手)·박광영(朴光榮)·이사균(李思鈞)·김양진(金楊震)·류부(柳溥)·김내문(金乃文)·강홍(姜洪)은 의논드리기를,

“전하께서 애모(哀慕)하시는 정은 이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숭하는 의식은 예절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다시 더할 수 없을까 합니다. 후궁의 일은 신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나 선왕 때에 있던 일이니, 지금 추후하여 들출 수 없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상사를 치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중략]

전교하기를,

“성인(聖人)의 칠거(七去)의 법이 있으니, 만일 그런 죄라면 버리고 말 것이지 하필 죽여야 하는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푸른 상의를 입음이여! 누른 치

마로다.[綠兮衣兮綠衣黃裳]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후궁 속에 한 사람의 소위 일 것이다. 성종(成宗)께서 명철한 임금이지만, 어찌 잘못된 일이 없겠는가? 그때의 재상들이 극력 간하였다면 반드시 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옛말에 ‘만일 그 도가 아닌 일이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릴 것인가?’ 하였다. 이에 앞서 재상 및 신용개(申用漑) 등이 또한 이런 뜻으로 시를 지었다. 그때는 내 나이 매우 적었다. 만일 지금 같았다면,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어찌 세상에 있게 하였겠는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찌 후궁의 예로 장사지내며, 그 소생 아들인들 역시 어찌 그 복제대로 복입을 수 있는가? 대간(臺諫) 및 귀손(龜孫) 등의 의논에 ‘그 아들의 삼년복을 폐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은 그러니, 정승들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필상(弼商) 등이 의논드리기를,

“후궁으로서 죄 있는 자는, 살았더라도 당연히 강등하여 내쳐 후궁의 이름이 있을 수 없으니, 죽으면 반드시 후궁의 예로 장사지낼 수 없고, 그 소생 아들도 당연히 서인(庶人)의 준례에 따라 백일 복만을 입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의정부와 전직 정승·관각 당상(館閣堂上 :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과 제학)·6조 참판 이상을 불러 윤씨(尹氏)의 시호를 같이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甲申傳曰○尹弼商柳洵朴楛議懷墓所坐非得罪於 宗社則 殿下罔極之情不得不伸上諡及陵號令該曹擬議施行後宮事上教允當姜龜孫朴崇質申浚李季全李諱許琛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韓斯文安處良李季男成世明李昌臣申用漑張順孫柳濱許諱李坵韓亨允盧公裕南宮璫鄭光弼李復善成希顏李穎孫澍議追崇懷墓於義雖難然出於 殿下罔極之情尊崇節目令禮曹擬議施行爲便有罪後宮身死後不以後宮之例待之宜矣但以其母之罪不可廢其子之通喪朴安性議春秋傳曰母以子貴懷墓之號當陞爲陵諡稱令禮曹勘啓何如且宮人所犯惡有大小罪有輕重若大而重者則生不得謂之後宮死安得成其喪禮乎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議 殿下哀慕之情雖無所不至然追崇之典於禮已極恐不可復加後宮事臣等雖不得知然事出 先王今不可追舉而且令其子不得服喪也[中略]

傳曰聖人有七去之義如其罪也則去之而已何必殺之詩云綠兮衣兮綠衣黃裳此是後宮之中必有一人所爲 成宗哲王然豈無過舉其時宰相等若極諫則必有回天之力矣古云如其非道何待三年前此宰相及申用漑等亦以此意製詩矣其時予春秋甚少若如今時則不共戴天之讎豈令在世乎其人死後安可以後宮之禮葬之所生之子亦豈得全服其喪乎臺諫及龜孫等議曰不可廢其子之通喪是言非也政丞等更議以啓弼商等議後宮有罪者其生也當降黜不得有後宮之名死必不得以後宮禮葬之其所生之子當從庶人例只服百日傳曰明日其召議政府曾經政丞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共議尹氏諡號

연산군 10년 3월 30일(신묘)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좌(世佐)가, 제 스스로 지위가 높고 나이 늙었으니 혹 죄를 범하더라도 나를 어찌하랴 하여, 이래서 그 교만 방종한 마음을 길러 내가 친히 주는 술을 옹지르고 마시지 않은 것이다. 또, 성종께서는 명철한 임금이니, 왕비를 폐위할 때에 있어서 만일 힘써 다투어 중지하여 선왕의 성대한 덕이 누가 없게 하였으면 좋을 것인데, 구차스럽게 인군의 명을 따라, 가서 일을 보았으니, 이는 간교하고 아침하여 살기만 탐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역시 교만 방종하여 이런 불경을 범하였으니, 반드시 베어 죽인 뒤에야만 쾌하겠다. 전일에 일을 의논한 재상 및 홍문관과 함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세좌를 죄 주자고 의논하는데 누가 불가하다 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조정에 베풀시키는 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을 저자에 형벌하는 데는 여러 사람과 함께 버려야 하기 때문에 수의(收議)하는 것이다.”

하니, 승지들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다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김순손(金舜孫)이 망령되어 존대(尊大)한 체하며, 군상(君上)을 업신여겼다. 전일에 내가 드러내 베려 하였는데, 그때 인명이 지극히 중하다고 아뢰는 자가 있으므로 사형에서 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폐스러운 풍습을 통렬히 고치는 때이니 함께 베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유녕(李幼寧)은 남을 해치려 하여 남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으며, 박은(朴闇) 역시 남을 해치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초잡은 소장(疏章)을 고쳐 지었다. 이런 유(類)는 먼 변방으로 물리쳐야 하겠으니, 남김없이 써서 아뢰라.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 · 류순(柳洵) · 박건(朴健) · 박안성(朴安性) · 강귀손(姜龜孫) · 신준(申浚) · 이계동(李季叟) · 박송질(朴崇質) · 이집(李詰) · 허침(許琛) · 정미수(鄭眉壽) · 김수동(金壽童) · 송일(宋軼) · 김감(金勘) · 한사문(韓斯文) · 안처량(安處良) · 이계남(李季男) · 성세명(成世明) · 허집(許輯) · 장순손(張順孫) · 이점(李沾) · 류순정(柳順汀) · 한형운(韓亨允) · 윤구(尹邁) · 손주(孫澍) · 최숙생(崔淑生) · 이행(李荇) · 이자화(李自華) · 권달수(權達手) · 박광영(朴光榮) · 이사균(李思鈞) · 김양진(金楊震) · 류부(柳溥) · 김내문(金乃文) · 강홍(姜洪)이 의계(議啓)하기를,

“이세좌 · 김순손 · 이유녕 · 박은의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좌는 재상이다. 사약(死藥)을 내리도록 하라. 또 대신으로서 중한 죄를 범하

여 사약을 내린 뒤에 역시 뒤따라 처치한 일이 있는가? 전의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순손은 율문(律文)에 의하여 참(斬)하여야 하면 참하고 교(絞)하여야 하면 교하되, 또한 성문 밖에 그 머리를 조리돌리고, 의금부에서는 검험(檢驗)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세좌의 죄는, 율문을 상고해 보니, 단지 그 몸만 죄주고 적몰(籍沒)하는 일은 없습니다. 순손은 군상에게 오만하였으니, 법에는 참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좌와 순손의 죄를 처결한 뒤에 전지를 의정부에 내려 중외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辛卯傳于承政院曰世佐自以爲位高年老雖或犯罪其於吾何以此長其驕縱之心親賜之酒傾注不飲且 成宗哲王當廢妃時若力爭以止之使 先王盛德無累則可矣而苟從君命往蒞其事是非巧佞偷生乎今亦驕縱犯此不敬必誅戮而後乃快也其與前日議事宰相及弘文館共議以啓其議罪世佐誰曰不可然爵人於朝與衆共之刑人於市與衆棄之故修議耳承旨等果如上教又傳曰金舜孫妄自尊大傲慢君上前日予欲加顯戮而其時或以人命至重啓之故減死耳然今方痛革弊風其並誅之又傳曰李幼寧謀欲害人而聞人之言傳說於人朴閔亦欲害人而改撰他人草疏若此之類當屏諸遐裔無遺書啓其以此並議尹弼商柳洵朴楗朴安性姜龜孫申浚李季全朴崇質李諱許琛鄭眉壽金壽童宋軼金勳韓斯文安處良李季男成世明許輯張順孫李坫柳順汀韓亨允尹邁孫澍崔淑生李苻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議啓曰世佐舜孫幼寧閔事上教允當傳曰世佐宰相也其賜死且大臣犯重罪賜死後亦有從而處置之事乎其考前例以啓舜孫依律文斬則斬絞則絞且於城門外徇示其頭義禁府檢驗以啓義禁府啓世佐之罪考律文則只罪其身而無籍沒之事舜孫傲慢君上法當斬也傳于承政院曰世佐舜孫定罪後下傳旨于議政府使曉諭中外

《燕山君日記 52, 26面》

연산군 10년 4월 4일(을미)

전일에, 재상·홍문관·대간(臺諫) 등이 제헌 왕후(齊獻王后)를 추숭(追崇)한 의논을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박안성(朴安性)의 의논에, ‘악은 대소가 있고 죄는 경중이 있다.’ 하였는데, 이 일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건만 이렇게 의논하였으니, 그르다. 또 홍문관원 최숙생(崔淑生)·이행(李苻)·이자화(李自華)·권달수(權達手)·박광영(朴光榮)·이사균(李思鈞)·김양진(金楊震)·류부(柳溥)·김내문(金乃文)·강홍(姜洪)이 역시 의논하기를, ‘추숭하는 의식은 예에 이미 지극하게 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간 황성창(黃誠昌)의 의논과 같으니, 옥에 가두

고 국문하라.” 하였다.

○乙未下前日宰相弘文館臺諫等追崇齊獻王后議曰朴安性議惡有大小罪有輕重此非疑似之事也而以是爲議非矣且弘文館員崔淑生李苻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亦議云追崇之典於禮已極今不可復加此與臺諫黃誠昌議同其下獄鞫之

《燕山君日記 52, 29面》

연산군 10년 4월 7일(무술)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은 금부에 가서 홍문관원에게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여 외방에 부처(付處)하게 하라.”

하였는데, 박안성(朴安性)은 장형(杖刑)을 속받고 진잠(鎭岑)에 부처하고, 응교 최숙생(崔淑生)은 장 60을 때려 신계(新溪)에 부처하고, 부응교 이행(李苻)은 장 60을 때려 충주(忠州)에 부처하고, 교리 이자화(李自華)는 장 60을 때려 아산(牙山)에 부처하고, 부교리 권달수(權達手)는 장 60을 때려 용궁(龍宮)에 부처하고,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은 장 60을 때려 목천(木川)에 부처하고, 부수찬 이사균(李思鈞)은 장 60을 때려 보은(報恩)에 부처하고, 부수찬 김양진(金楊震)은 장 60을 때려 예천(醴泉)에 부처하고, 박사 류부(柳溥)는 장 60을 때려 은진(恩津)에 부처하고,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은 장 70을 때려 청안(淸安)에 부처하고, 정자 강홍(姜洪)은 장 70을 때려 익산(益山)에 부처하라.” 하였다.

이때 대간(臺諫)이 되었다가 죄를 입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무릇 조사(朝士)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서로간에 가리키며 말하기를, 아무개가 대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손을 저으며 ‘불상(不祥) 불상’이라 하였다.

○戊戌○傳曰承旨朴說李繼孟其往禁府監杖弘文館員付處外方朴安性贖杖付處鎭岑應教崔淑生杖六十付處新溪副應教李苻杖六十付處忠州校理李自華杖六十付處牙山副校理權達手杖六十付處龍宮修撰朴光榮杖六十付處木川副修撰李思鈞杖六十付處報恩副修撰金楊震杖六十付處醴泉博士柳溥杖七十付處恩津著作金乃文杖七十付處淸安正字姜洪杖七十付處益山時爲臺諫而被罪者甚多故凡朝士會談相指言曰某當爲臺諫則揮之以手曰不祥不祥

《燕山君日記 52, 29面》

연산군 10년 9월 26일(계축)

○승지 권균·강흔·윤순이, 회릉(懷陵)의 추봉 및 천묘(遷墓) 때에 논계한 사람을 고찰하여 아뢰기를,

“‘추송하는 특전은 예에 이미 극진하게 되었으니, 다시 더할 수 없는 듯하다.’고

한 자는 최숙생(崔淑生)·이행(李荇)·이자화(李自華)·권달수(權達手)·박광영(朴光榮)·이사균(李思鈞)·김양진(金楊震)·류부(柳溥)·김내문(金乃文)·강홍(姜洪)이고, ‘그 정과 예를 참작, 추송하여 효도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수 없다.’고 한 자는 황성창(黃誠昌)·김세필(金世弼)·정침(鄭沉)·류인귀(柳仁貴)·신봉로(申奉盧)이고, ‘사초와 대석의 설치는 비록 선왕·선후(先后)의 능침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천묘(遷墓)에 배설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한 자는 그때 정승이며, ‘천묘하는 일로 도감까지 두는 것은 잘못이다.’고 한 자는 장령 이수공(李守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속히 잡아오라.” 하였다.

○癸丑○承旨權鈞姜渾尹珣考追封懷陵及遷墓時論啓人以啓追崇之典於禮已極恐不可復加者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也酌其情禮以盡追孝之誠今不可復加者黃誠昌金世弼鄭沉柳仁貴申奉盧也設莎臺石雖 先王先后陵寢皆未得爲之今於遷墓排設未便者其時政丞也遷墓事至設都監非也者掌令李守恭也傳曰皆急速拿來
《燕山君日記 55, 26面》

연산군 10년 10월 27일(갑신)

○승지 권균(權鈞)이 당직청에 가서 홍문관 대간(臺諫) 등을 국문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홍문관에서는 권달수(權達手)가 먼저 발언하였는데, 권달수의 공술에, ‘이 일은 어찌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의사(疑似)하게 여겨 먼저 발언한 것이다.’ 하였고, 대간에서는 김세필(金世弼)이 먼저 발언하였는데, 조숙기(曹淑沂)의 공초에, ‘신이 권경우(權景祐)와 같이 가토(加土)하는 일을 살폈고, 또 천묘(遷墓)할 능소(陵所)를 살펴 이미 수미(首尾)를 알았고, 또 성상의 정이 망극함을 알았기 때문에, 대사간으로 있을 때 또한 감히 아뢰지 못하다가 이세걸(李世傑)의 논박을 받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홍(姜洪)·류부(柳溥)·김내문(金乃文)이, ‘어느 사람이 먼저 발언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간사한 짓이니, 그를 형신하고, 이수공(李守恭)은 사죄(死罪)로써 가두고 형신하여 신구(新舊)의 정상과 사유를 분변하고, 권달수(權達手)는 다른 사람이 일찍이 먼저 발언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도 의사(疑似)하게 여겼다는 말을 하니, 그도 또한 형신하여 사죄로써 가두고, 김세필은 그 공초에, ‘다른 관원이 의논을 주장하고 아무아무 관원이 글자를 썼

다.’ 고하여, 평문(平問: 형구를 쓰지 않고 그냥 죄인을 심문함)할 때 자복하지 않았으니 그도 형신하되,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면 또한 죽을 죄인으로 가두고, 김양진(金楊震)·이행(李荇)·최숙생(崔淑生)은 임금을 능멸하고 명예를 닦았으니 또한 형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甲申○承旨權鈞往當直廳鞠弘文館臺諫等還啓弘文館則權達手先發言權達手之供曰此事無奈不可乎以疑似間先發之臺諫則金世弼先發言曹淑沂之供曰臣與權景祐同審加土事又審遷墓陵所既知首尾又知上情罔極故大司諫時亦不敢啓之而被李世傑之論駁傳曰姜洪柳溥金乃文言不的知某人先發言甚姦詐其刑訊李守恭以死罪囚之刑訊新舊分辨情由權達手則他人曾指爲先發言而供云問以疑辭其亦刑訊囚以死罪金世弼供他官主議某某員下字云而平問不服其刑訊若未自明則亦死囚金楊震李荇崔淑生陵君鈞名亦不可不刑訊

《燕山君日記 56, 12面》

연산군 10년 11월 12일(무술)

○전교하기를,

“권달수(權達手) 등은 비록 명령을 받아 의논한 것이기는 하나, 누군들 부모가 없겠는가? 선후(先后)를 추숭(追崇)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대간은 홍문관의 의논을 보고 본받았으니, 이는 심히 옳지 못하다. 먼저 발언한 자를 중한 벌에 처하려고 하는데, 중벌에도 또한 참형과 교형이 있으니, 최숙생(崔淑生) 등 고문해야 할 자를 고문하라.”

하였다. 영의정 류순(柳洵)이 아뢰기를,

“달수와 세필은 모두 중벌에 해당하나, 참형과 교형은 모두 사죄로서 그 감등에 모두 유삼천리(流三千里)에 해당시킨 것은, 참형과 교형이 비록 차등은 있을지라도 죽는 것은 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전일 이수공(李守恭)의 일이 비록 이와 같지만, 수공은 자기의 의견으로써 경연(經筵)에서 아뢴기 때문에 이미 중벌을 받은 것이요, 달수는 수의(收議)를 인하여 말한 것인데 그 말이 또한 공손하였고, 세필은 달수의 의논을 보고 말한 것이어서, 모두 수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강홍(姜洪)·김양진(金楊震)·김내문(金乃文)·류부(柳溥) 등은, 세 사람이 같이 상의하였다고 하고 누구를 적실하게 지적하지 않으므로 모두 이미 세 차례 고신(拷訊)하였고, 황성창(黃誠昌) 이하는 모두 바른 대로 말하므로 다만 한 차례 형신하였으나, 모두 잘못 의논한 것이라 하고 다른 말은 없으니, 그 중에 형신 한 차례만 한 자를 더 형신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달수 이하를 모두 한 차례 더 형신하라.” 하였다.

○戊戌○傳曰權達手等雖承命議之然誰無父母追崇先后在所當爲而謂不可爲且臺諫見弘文館之議而效之此甚不可其先發言者欲置重典重典亦有斬有絞崔淑生等可拷者拷之領議政柳洵等啓達手世弼皆當重刑而斬與絞俱是死罪其減等皆流三千里者以斬與絞雖有差等而死則一也前日李守恭之事雖與此同而守恭則自出己意啓於經筵故已被重典達手因收議而言其言亦遜世弼見達手之議而言之皆與守恭有間且姜洪金楊震金乃文柳溥等言三人共議不的指爲某也故皆已三次拷訊黃誠昌以下則皆直告故只刑訊一次然皆云誤議而無他辭其中刑訊一次者加刑何如傳曰達手以下皆加一次
《燕山君日記 56, 17面》

연산군 12년 8월 26일(계유)

○전교하기를,

“이과(李頴)·김詮(金詮)·권민수(權敏手)·송흠(宋欽)·홍언충(洪彦忠)·정광필(鄭光弼)·이자화(李自華)·김양진(金楊震)·박광영(朴光榮)·박소영(朴紹榮)·류부(柳溥)·김내문(金乃文)·이사균(李思鈞)·강홍(姜洪)·최숙생(崔淑生)·이행(李荇) 등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압송하다가 형신(刑訊)하고, 또 그 자손도 익명서(匿名書)를 투입했는지 의심스러우니 아울러 형신하게 하라.” 하였다.

○癸酉○傳曰李頴金詮權敏手宋欽洪彦忠鄭光弼李自華金楊震朴光榮朴召榮柳溥金乃文李思鈞姜洪崔淑生李荇等令其道觀察使差人押送後刑訊且疑其子孫投匿名書並刑訊

《燕山君日記 63, 19面》

중종 2년 3월 6일(기유)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이조에 전교하기를,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 류부(柳溥)를 독촉하여 부임케 하라.”

하였다. 부가 후에 강릉부사(江陵府使) 김연수(金延壽)와 힐난하였는데, 연수가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니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만류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후에 부가 보고, 달려 들어 말하기를 “우리 태수(太守)를 내치고 어찌 우리를 살리겠느냐?” 하였다. 연수는 김종서(金宗瑞)의 외손으로 청백한 절개가 있었다.

○己酉 御朝講○傳于吏曹曰江原道都事柳溥其促赴任溥後與江陵府使金延壽相詰延壽棄官歸百姓遮道挽留而不果後見溥擁馬留曰而黜吾太守何以活哦延壽金宗瑞之外孫有清白之節

《中宗實錄 卷2, 41面》

중종 3년 4월 11일(무인)

대간이 합사해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여천위(驪川尉) 민자방(閔子芳)은 폐조 때 ‘방(榜)을 붙였다.’는 말로써 그 임금에게 계도(啓導)하여 비위를 맞추어 화내는 것을 조장(助長)하여 마음대로 주륙(誅戮)을 행했으니, 마땅히 큰 형벌을 주어야 한 터인데도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였다가 곧 서용하기를 명했으니 속히 성명(成名: 이미 반포한 명령.)을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감찰 민양(閔樑)은 부모 상(喪)을 입는 데 근신하지 않았고, 부정(副正) 권욱(權旭)은 늙어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며, 학관(學官: 승문원의 한 벼슬.) 김정간(金貞幹)·영(令: 소격서 등의 종5품 벼슬.) 류부(柳溥)·주부(主簿: 돈령부 등의 종6품 벼슬.) 남치명(南致明)·봉사(奉事: 군기시 등의 종8품 벼슬.) 김세견(金世堅) 등은 욕심이 많아 더러운 짓을 했고, 판관(判官) 안방언(安邦彦)·도사(都事) 이근인(李根仁)·참봉(參奉) 김억수(金億壽) 등은 둔하고 연약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모두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민자방(閔子芳)은 부마(駙馬)인데 어찌 오랫동안 파직할 수 있겠는가? 민양(閔樑) 등의 일에 대해서는 의당 삼공에게 수의한 후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다시 원종공신과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민자방(閔子芳)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기를,

“만약 신등의 말을 옳다고 하시면 속히 들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히 신등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戊寅臺諫合司啓前事且啓曰驪川尉閔子芳廢朝以貼榜之辭啓導其君逢迎長怒肆行誅戮宜加大罪而只罷其職未幾卽命叙用請亟收成命監察閔樑不謹守喪副正權旭老不治事學官金貞幹令柳溥主簿南致明奉事金世堅等貪污判官安邦彦都事李根仁參奉金億壽等罷軟不勝任請皆罷職傳曰兩加事不允子芳乃駙馬何可久罷閔樑等事當收議三公後發落再啓原從族親兩加及閔子芳等事曰若以臣等之言爲是則宜亟聽納不然速遞臣等之職不允

《中宗實錄 卷5, 52面》

중종 3년 4월 14일(신사)

○대간이 합사해서 다시 전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전일에 아뢴, 권욱은 체직(遞職)시킬 수 없다. 민양(閔樑)·김정간(金貞幹)·류부(柳溥)·남치명(南致明)·김세견(金世堅) 등의 일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말하라. 안방언(安邦彦)·이근인(李根仁)·김억수(金億壽) 등은 서반(西班牙)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아뢰는 것은 본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할 수 없으니 민양 등 5인은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민양(閔樑)·김정간(金貞幹)·류부(柳溥)·남치명(南致明)·김세견(金世堅) 등의 일에 대해서 신등이 어찌 자세하게 물어 보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지금 대간에게 하문하신 것은 사체(事體)에 방해됨이 있으며, 또 소문의 출처를 물어 보는 것 같으니 꼭 추문한 뒤에 파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욱(權旭)은 전일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재임했을 때 선정(善政)이 없었으니 체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물의 진퇴를 어찌 경솔히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추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권욱(權旭)의 일에 대해서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고 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였거나 파직된 사람 및 일체의 작죄(作罪)한 자들을 남김없이 써서 아뢰라.”

하였다.

○辛巳○臺諫合司再啓前事不允傳曰前所啓權旭不可遶閔樑金貞幹柳溥南致明金世堅等事言其所犯安邦彦李根仁金億壽等送西可也傳于政院曰憲府所啓不可令本府推之閔樑等五人其下義禁府臺諫復啓曰閔樑金貞幹柳溥南致明金世堅等事臣等豈不審問而啓乎今下問臺諫有妨事體且似問言根不須推問而後罷職權旭前任平山府使時無善政不可不遶傳曰人物進退豈可輕易當推問以處權旭事不允傳于政院曰收職牒罷職人員及一應作罪人無遺書啓

《中宗實錄 卷5, 53面》

중종 3년 4월 15일(임오)

○대간이 합사해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류부(柳溥)는 전에 개성군사(開城郡事)로 있을 때 비록 긴요하지 않은 차지(次知)에도 꼭 면포(綿布)를 징수하여 마침내 둘 곳이 없을 정도였고, 또 농장에 큰 집을 짓고 놋쇠·구리·철물들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남치명(南致明)은 전에 성(城)을 쌓는 감역(監役)으로 있을 때 거느리고 있는 방내군(防內軍)으로 사사로이 자기 집 짓는 데 일을 시켰고, 조사(朝士)와 사대부(士大夫) 집에서 침독(侵督)을 건디기 어려워 혹 음식물을 제공하고 혹은 면포를 주면 태연히 이를 받았으며 또 가평(加平) 태실(胎室 : 궁가(宮家)의 태(胎)를 묻는 석실(石

室).)의 돌난간 만드는 일을 감독할 때도 군인들을 많이 내보내어 면포를 거두어 들였습니다.[중략]

전교하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과 민자방(閔子芳)·권욱(權旭)의 일에 대해서는 윤택하지 않는다. 민양(閔樑)·류부(柳溥)·김정간(金貞幹)·남치명(南致明)·김세건 등은 의금부로 내려 보내어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다시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壬午○臺諫合司啓前事且曰

柳溥前任開城郡事時雖不緊次知必以絁布徵納竟無置處於抱川農莊作大家鑰銅鐵物多數取來南致明前爲築城監役時所領防內軍私役造家朝士及士族家難堪侵督或贈食物或贈絁布安然受之且監造加平胎室石闌干時多放軍收布[中略]

傳曰兩加閔子芳權旭事不允樑溥貞幹致明世堅等下禁府推考復三啓不允

《中宗實錄 卷5, 53面》

중종 3년 4월 17일(갑신)

조강에 납시었다.

○전교하기를,

“김정간·류부·남치명 등에 대한 일은 처음 정승들의 말에 따라 의금부에 내려 보내어 추문(推問)하고 있지만, 그러나 갇힌 사람들이 매우 많고 또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그들을 사헌부로 옮기고 명(明) 나라 사신이 돌아간 뒤에 가을철을 기다려 행대감찰(行臺監察)²⁴⁵⁾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우선 그 관직만 파면하라.”

하였다.

○甲申御朝講○傳曰金貞幹閔樑柳溥南致明等事初從政丞之言下禁府推之然見囚者甚多今方農時事千人拘囚未便其移憲府天使回還後待秋行臺發遣推之姑罷其職

《中宗實錄 卷5, 54面》

중종 4년 4월 16일(정축)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김개(金漑)·헌납(獻納) 류부(柳溥)가 앞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개가 또 이르기를,

“3월 보름 전에 잇달아 비가 내려서, 토맥(土脈)이 수렁이 되어 능히 밭 갈고 씨뿌릴 수가 없겠더니, 그 뒤는 크게 가물어서 종자가 흙에 들어가지 않으며, 양

245) 행대감찰(行臺監察) :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어 불법한 일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감찰.

맥(兩麥 : 보리와 밀)도 방금 무성하나 또한 장차 마를 것입니다. 국가가 본래 부요하지 않아, 비록 1년만 흉년이 들어도 반드시 지탱할 수가 없으니 조사(朝士)의 반록(頒祿)은 말할 것 없고, 혹 변방에 일이라도 있으면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수재나 한재는 요·탕(堯湯)도 면하지 못한 바로되, 수한에 상한 바 되지 않은 것은 재앙을 대비한 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조에 있어서는 혹 금중(禁中 : 궁성안)에서 비를 빌기도 하였으니 청컨대, 몸소 측수(側修 : 근심 있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여 옆으로 앉아 덕을 닦는 것.)하는 정성을 다하여 가뭄의 재앙을 녹이소서.”

하였다.

○丁丑御朝講持平金漑獻納柳溥啓前事不允漑又曰三月望前連雨土脉融淖不能耕種其後大旱種不入土兩麥方茂而亦將枯槁國家本非富饒雖一年凶荒必不能支朝士頒祿則已矣脫有邊事將何以應之水旱之灾堯湯所不免而其不爲水旱所傷者以有備灾之道也其在 祖宗朝或於禁中禱雨請躬盡側修之誠以弭旱乾之灾

《中宗實錄 卷8, 24面》

중종 4년 4월 22일(계미)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조순(趙舜)·헌납(獻納)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근래 가뭄이 심하니, 무릇 영선(營繕)을 일체 정지하되, 창경궁(昌慶宮)과 옛 자수궁(慈壽宮) 및 긴요히 관계되는 곳 외에는 모두 정파(停罷)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좃았다.

○癸未 御朝講執義趙舜獻納柳溥啓曰近來早甚凡營繕一切停役昌慶宮古慈壽宮及緊關處外請皆停罷從之

《中宗實錄 卷8, 29面》

중종 4년 5월 6일(정유)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권복(權福)·헌납(獻納) 류부(柳溥)가 재차 어살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丁酉 御朝講持平權福獻納柳溥再啓魚箭事不允

《中宗實錄 卷8, 36面》

중종 4년 5월 12일(계묘)

조강에 나아갔다.

헌납(獻納)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구수영(具壽永)은 영행(佞倖)의 신하입니다. 그가 폐조에서 한 일을 모두 논할 수는

246) 구수영(具壽永) : 1456~1524. 조선 중종 때 문신. 자는 미숙(眉叔) 본관은 능성. 세조의 동생 영응대군의 사위. 성종이 즉위하자 원종공신으로 도총관을 거쳐 지돈녕부사가 되었고 중종

없고 큰 것만을 들어 말하면, 미녀를 바쳐 폐주에게 여색을 탐하게 하여 마침내 화패(禍敗)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반정할 때에 마땅히 사홍(士洪)과 더불어 함께 현륙(顯戮)을 받았어야 되는데, 반정하는 날 마침 부른 사람이 있어서 공신의 옆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인이 분완(憤惋)하고 있으니 마땅히 자급을 모두 빼앗아 종신토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권균(權鈞)은 내신(內臣)으로서 임금을 인도하여 흥포하게 만드니, 반정할 때 사람들이 모두 사홍(士洪)과 더불어 함께 주륙(誅戮)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 능히 이공(貳公 : 찬성의 지위)의 홍화(弘化)하는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물며, 의금부는 비록 찬성과 같지는 않지만, 조옥(詔獄)을 어찌 가며이 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속히 체직시키소서.

윤순(尹珣)은 출신(出身)한 지 오래지 않아 품계가 정헌에까지 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반정한 뒤에 자급을 빼앗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거늘, 하물며 의금부가 되겠습니까? 폐조의 영행(佞幸)한 사람이 징예(懲艾 : 징계)되지 않으면 뒤에 감계(鑑戒)할 사람이 없습니다.

윤여림(尹汝霖)은 소행(素行)이 광패하여 쓸 수 없는 사람인데, 내지(內旨)로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옛날에 사봉 묵칙(斜封墨勅)²⁴⁷이 있었던 것은 쇠세(衰世)의 일이니 청컨대 속히 개정하소서.

무릇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자취를 성감(聖鑑)으로 훤히 비추실 것이오니, 임금이 과실이 있으면서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큰 걱정이 됩니다. 옛날 성탕(成湯)이 허물 고치기에 인색하지 않은 것을 후세에서 일컫습니다.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상교에 ‘그가 비록 노열(駑劣)하나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야 될 수 없겠느냐?’ 하셨지만, 신은 생각하기를 ‘광패한 사람은 비록 작은 소임이라도 맡겨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전곡(錢穀)의 중임이겠는가?’ 하고 여깁니다. 결단코 같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어살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癸卯 御朝講

獻納柳溥曰具壽永佞倖之臣其廢朝所爲之事不可殫論姑舉大者言之進獻美女使廢主冒亂女色終至於禍敗 反正之時宜與士洪共受顯戮而 反正之日適有招之者得參功臣之列國人憤惋當盡奪資級廢棄終身權鈞以內臣導君爲昏 反正之時人皆謂與士洪共被誅戮而今爲贊成其能堪貳公弘化之任乎況義禁府雖不以贊成詔獄豈可輕乎請速遞之尹珣出身未久

반정 직후에는 능성부원군으로 봉해졌다. 연산군 때의 행적으로 류부의 탄핵을 받은 것이다.

247) 사봉 묵칙(斜封墨勅) : ‘사봉’은 당대(唐代) 청알에 의하여 벼슬을 제수할 때 사령서(辭令書)로 사용된 비스듬히 봉합된 문서. ‘묵칙’은 천자의 친필 조서(詔書)로서 외정(外廷)을 거치지 않고 금중(禁中)에서 직접 발부되며 주색(朱色) 인신을 찍지 않음.

階至正憲人皆笑之反正後不奪資級幸矣况爲義禁府乎廢朝倭幸之人不見懲艾則後無鑒戒者尹汝霖素行狂悖不可用之人也以內旨拜職古有斜封墨勅衰世之事請速改正凡治亂興亡之迹 聖鑑洞照人君有過不改終爲大患昔成湯改過不吝後世稱之不意 聖明之朝如有此事乎 上教以爲彼雖駑劣其不能爲軍資主簿乎臣以爲狂悖之人雖小任不可委之况錢穀之重乎決不可不從又啓魚箭事皆不允

《中宗實錄 卷8, 40面》

중종 4년 5월 18일(기유)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안주·헌납(獻納) 류부가 아뢰기를,

“권균(權鈞)은 다만 금부만 체직하고, 찬성은 전과 같으니, 일이 몹시 전도되었습니다.”

하고, 또 구수영 등과 어살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己酉 御朝講掌令金安國獻納柳溥啓曰權鈞只逢禁府而贊成如舊事甚顛倒且以具壽永等魚箋事啓之皆不允

《中宗實錄 卷8, 42面》

중종 4년 5월 28일(계미)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권홍·헌납(獻納) 류부가 앞의 일을 논계(論啓)하였다. 부(溥)가 아뢰기를,

“어살은, 만약 궁곤한 백성에게 해롭지 않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논계하겠습니까?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만약 궁곤하면 마땅히 창림을 열어 진휼하여야 하겠거늘, 하물며 백성의 소유를 빼앗아 대신에게 줍니까? 옛적 성제(聖帝)·명왕(明王)은 산에 금을 버리고 구렁에 구슬을 던졌는데, 말세에 이르러서는 다투어 이(利)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무제(漢武帝)는 배와 수레를 셈하고, 당 덕종(唐德宗)은 차(茶)와 소금의 이익을 독점하니, 이를 역사에 적어 후세에 경계를 남겼습니다. 조조에서는 어살이 호강(豪強)의 독점하는 바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에게 줄 것으로써 「대전」에 실어 놓았으니, 마땅히 조종의 헌장(憲章)을 좇아야 합니다.

근래 성상께서는 가뭄을 근심하여 무릇 백성에게 편리한 정사를 강구하여 행하시나,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아 민막(民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신이 듣건대, 경기(京畿)의 물선(物膳) 공납을 감독하는 사람을 역승(驛丞)으로 차정(差定)하는데, 이들은 모두 욕심이 많고 앞길이 없는 사람이어서, 각 고을의 진상을 그 뇌물의 많고 적은 것을 보아 받고 물리고[進退] 하니, 수령은 뇌물이 후하지 못할까 두려워 백성을 침어(侵漁)하여 바치므로 승(丞)이 된 지 오래지 않아 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는 성명(聖明)의 모적(蠹賊)이니, 감사(監司)

와 도사(都事)와 순행할 때는 인근의 수령으로 하여금 공납을 감독케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각 도의 공안(貢案 : 공납품 목록)은 상정(祥定)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산은 무상한 것이어서, 혹 옛적에는 생산되었어도 지금은 생산되지 않으며, 혹 지금은 생산되는 것이 옛날에는 생산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산 사슴(生鹿) 같은 것은 그 값이 면포 70여 필에 이르니, 이는 모두 민간에서 나오는 바로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공안을 다시 상정하소서.”

하고, 홍(弘)은 아뢰기를,

“신은 아뢰고자 하는 일이 있으며, 법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결단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예 취재(武藝取才 : 시취(試取)의 한 가지)는 거의 모두 시정(市井) 사람인데, 북방은 방어가 긴요하므로 무신을 가려 차견하고, 남방은 방어가 험(歎)하므로 무예의 잡류(雜類)를 보냅니다. 그런데 북방은 이(利)를 도모할 일이 적고, 남방은 이를 도모할 일이 많으니, 무예인(武藝人)을 남방에 차견하는 것은 그 욕심을 이루게 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사를 놓아 보내고 그 값을 거두어서 방어가 허소한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모두 무신으로 가려 차견하되, 만일 출신(出身)이 부족하면 무관에 응시하였던 사람을 뽑아 차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전」에 없는 일이니, 마땅히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여 처결토록 하소서.”

하였다. 부(溥)가 또 아뢰기를,

“혼가(婚嫁)에 때를 잃어 음양이 고르지 못한 것도 또한 가뭄을 부르는 실마리입니다. 성종조에 있어서는 관에서 자장(資粧 : 혼수감)을 지급하여 시집가게 하였 습니다. 지금 나이 장성한 처녀가, 집이 가난하여 미처 때에 맞춰 혼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계집의 원망이 3년을 가물게 한다.’ 하였으니, 이치가 혹 그럴 것입니다. 마땅히 그 가장(家長)을 죄주어야 합니다. 근자에 조선(漕船)이 많이 패몰하여 국비를 마땅히 먼저 생략하여야 할 것이니, 전생서(典牲署)와 사축서(司畜署)의 축료(畜料 : 사료)도 또한 적당히 감해야 하 겠습니다. 「주관」(周官) 황정(荒政)에 이르기를 ‘말은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달 리는 길은 소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제 풀 먹는 때를 당하여 말에게 줄 콩 도 또한 감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己未 御朝講大司憲權弘獻納柳溥論啓前事溥曰魚箭若不害於窮民則豈敢如此論啓大抵民惟邦本民若窮困當發倉廩賑之况奪民之有以與大臣乎古之聖帝明王損金於山投珠於壑至於末世爭相謀利漢武帝筭舟車唐德宗推茶塩筆之於史垂戒後世 祖宗恐魚箭爲豪強所專故以給貧民載在大典宜從 祖宗憲章近來 聖上憂旱凡便民之政講求而行之下不奉

行民瘼未祛臣聞京畿物膳監納者以驛丞差之類皆多欲而無前程者各官進上觀其賄賂多寡而進退之守令恐賄賂之不厚侵漁百姓以給之爲丞未久建置大家此 聖明之蠹賊監司都事巡行時則令旁近守令監納甚便且各道貢案詳定已久然物產無常或古產而今不產或今產而古不產之地如生鹿之價至於綿布七十餘匹此皆民間所出其弊不小請更詳定貢案弘曰臣有欲啓之事而法在大典故不果武藝取才率皆市井之人北方防禦緊故擇武臣差遣南方防禦歇故以武藝雜類差之北方則謀利之事少南方則謀利之事多以武藝人差遣南方適所以遂其慾也以此放軍收價防禦虛疎臣意以爲率以武臣擇差如其出身人不足則以赴舉人抄差亦可此大典外事當收議于大臣處之溥又曰婚嫁失時陰陽不和亦召旱之一端也其在 成宗朝官給資粧令嫁之今年壯處女以家貧未及趁時婚嫁者多古人云一女之怨三年枯旱理或然也當罪其家長近者漕船多敗沒國費宜先省約典牲署司畜署畜料亦可量減周官荒政云馬不食粟馳道不除今當食草之時馬豆亦減之便

《中宗實錄 卷8, 45面》

중종 4년 6월 5일(을축)

조강에 나아갔다. 헌납(獻納)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옛날, 성탕(成湯)은 7년 동안의 가뭄을 만나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였습니다 [六事自責]. 지금 구수영(具壽永)이 승품(崇品)에 있으니, 법도 있는 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어살의 이익을 입을 수 없게 하니, 백성이 직분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으면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어선(御膳)을 감하는 것은 허문(虛文)에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기신재(忌晨齋 : 선왕의 기신에 올리는 제)는 성조(聖朝)의 큰 누(累)입니다. 목욕하고 부처에게 절하는 모습은 차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향사(享祀)가 이와 같으면 하늘에 계신 선왕·선후의 신령이 즐겨 흠향하시겠습니까? 운한(雲漢)²⁴⁸ 여덟 장(章)으로 보면, 조종의 흠향도 또한 재앙을 소멸하는 단서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폐단을 개혁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내수사의 장리(長利)는 그 폐가 지극히 큼니다. 거두고 내주는 즈음에 백성이 몹시 괴로워하니 조종에서 하신 바라고 핑계하지 마소서.” 하였다.

○乙丑 御朝講獻納柳溥曰昔成湯遭七年之旱以六事自責今具壽永備在崇品其可謂政事之節乎使民不得蒙魚箭之利其可謂民不失職歟如此而避殿減膳恐歸虛文也且忌晨齋 聖朝之大累也其沐浴拜佛之狀不忍啓之凡享祀如此則 先王先后在天之靈其肯歆降乎以雲漢八章觀之 祖宗歆饗亦消災之一端也如此數弊革之甚當內需司長利其弊至大歛散之際民甚苦之勿諉以 祖宗所爲

《中宗實錄 卷8, 48面》

248) 운한(雲漢) : 『시경』(詩經) 대아(大雅) 탕지습(蕩之什)의 편 이름으로, 여덟 장(章)으로 되어 있음. 주 선왕(周宣王)이 한재로 인하여, 몸을 닦고 덕을 행하여 하늘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천하가 크게 기뻐하여 왕의 이러한 덕화를 노래한 것임.

중종 4년 6월 10일(경오)

조강에 나아갔다.

헌납(獻納)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강론이 어찌 구두만을 할 뿐입니까? 역대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의 자취를 보아 장차 정사에 조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벗과 더불어 강문(講問)하여 스스로 돕거늘, 하물며 나라 임금이겠습니까? 성종조에 있어서는 혹 강(講)이 성리(性理)의 근원에 이르면 날이 늦어도 권태로움을 잊으셨습니다. 좌우에서 아뢰기를, ‘성공(聖躬)을 수고로이 할까 두렵습니다.’ 하면, 성종께서 이르시기를, ‘수고롭고 권태로운 줄을 알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전하의 행하실 가법(家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합당하다. 금후로는 강론하는 것이 옳다.”

○庚午 御朝講獻納柳溥曰講論豈爲句讀而已見歷代治亂興亡之迹將以措之於政事也常人與朋友講問以自輔況國君乎其在 成宗朝或講至性理之原日旰忘倦左右啓曰恐勞 聖躬 成宗曰不知勞倦此 殿下可行之家法 上曰茲言甚當今後其講論可也

《中宗實錄 卷8, 50面》

중종 9년 4월 13일(병오)

○류부(柳溥)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삼았다.

○丙午○以柳溥爲弘文館校理

《中宗實錄 卷20, 23面》

중종 9년 4월 23일(병진)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임추(任樞)와 정언 남효의(南孝義)가 전의 일을 논계하고, 효의가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양편이 다 옳을 리는 없으니, 피차간에 반드시 한편이 옳습니다. 아뢰는 일은 신이 그 옳고 그른 것을 모르나, 만일 오래도록 이와 같이 나간다면 나라 일이 어찌 많이 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와 검토관(檢討官) 이정호(李挺豪)가 대간의 말을 좃기를 청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효의는 간관(諫官)으로서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모른다고 했으니 그가 남에게 견제(牽制)되어서 마음에 일정한 소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의는 본래 용렬한 사람이므로 그 가슴 속의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정해지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丙辰 御朝講持平任樞正言南孝義論啓前事孝義曰凡事無兩是之理彼此之間必有一是所啓之事臣未知是非也若長如此則國事豈不多廢乎侍講官柳溥檢討官李挺豪請從臺諫之言並不允史臣曰孝義以諫官自言未知是非其牽制於人心無定見可知孝義本庸暗人故其胸中是非素不定而發言如此

《中宗實錄 卷20, 24面》

중종 9년 4월 29일(임술)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김협·장령 김희수(金希壽)가 전의 일을 의논하고, 시독관(侍讀官) 류부(柳溥)·검토관(檢討官) 이정호(李挺豪)도 논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壬戌 御朝講司諫金協掌令金希壽論啓前事侍讀官柳溥檢討官李挺豪亦論之不允

《中宗實錄 卷20, 26面》

중종 9년 5월 8일(경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임추(任樞)와 정언 남세준(南世準)이 전의 일을 논계(論啓)하고, 시독관 류부(柳溥)와 검토관 채침(蔡忱) 또한 논계하였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대저 의논이 고상(高尚)하면 조정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니, 소신(小臣)같은 자는 역시 부끄럽기만 합니다. 윤순(尹珣)·강징(姜澂)은 전에도 논박을 받았고, 송일(宋軾)은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녹록(碌碌)한 사람은 아닌 듯싶으며, 홍숙(洪淑)도 나라일에 힘쓰는 사람인데, 혹 의논이 고상해서 아뢰는 것인지, 혹 따로 들은 바가 있어서 아뢰는 것인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일 논박을 받을 때에 윤순이 구황(救荒)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신이 함경도(咸鏡道)에 가 보니 구황하는 일을 매우 잘 처리하였습니다. 강징을 잔약하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과연 성품이 바른말을 잘 하지는 못하나, 사람됨이 단정하고 어질어서 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의가 모두 이들 두 사람이 갑자기 승진되었다고 합니다. 요사이 나라에 대간이 없는 지 오래 되어 중앙과 지방에서 원통한 마음을 품은 자가 자못 많은데도 이것을 풀 수가 없으며, 부임하지 않은 수령(守令)도 역시 많아, 심지어 창평(昌平) 같은 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수령이 없어 폐단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대간이 취직하려 해도, 아뢰는 말이 전혀 윤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니, 권도(權道)로 우선 윤순·강징만 갈아, 대간으로 하여금 취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일을 폐한 것이 어찌 많지 않겠는가! 다만 윤순과 강징은 별로 뚜렷한 허물이 없으니 바꿀 수가 없다.” 하였다.

○庚午 御朝講持平任樞正言南世準論啓前事侍讀官柳溥檢討官蔡忱亦論之領事鄭光弼曰大抵議論高尚則朝無全人如小臣者亦爲可愧尹珣姜澂前亦被駁矣宋軼則臣之妄意以謂非至碌碌之人洪淑亦勉爲國事之人或議論高尚而啓之或別有所聞而啓之皆未可知也前日被駁時以尹珣爲不能救荒臣往見咸鏡道救荒之事極爲措置矣以姜澂爲殘弱以實言之則果無謬誤之性爲人端良不爲奔趨者也然物議皆以爲此二人驟陞近者國無臺諫已久京外抱冤者頗多而無所得伸守令之不赴任者亦多至如昌平自前年十月而無邑宰弊莫甚焉今臺諫雖欲就職所啓專不蒙允故尚以爲難請以權宜姑遞尹珣姜澂使臺諫就職 上曰近來廢事豈不多哉但尹珣姜澂別無顯過不可遞也 《中宗實錄 卷20, 27面》

중종 9년 5월 22일(갑신)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임추(任樞)와 정언 남효의(南孝義)가 전의 일을 논계하고, 시독관 류부(柳溥)와 검토관 채침(蔡忱) 또한 의논했으나, 운허하지 않았다.

○甲申 御朝講持平任樞正言南孝義論啓前事侍讀官柳溥檢討官蔡忱亦論之不允

《中宗實錄 卷20, 29面》

중종 9년 6월 4일(을미)

이장곤(李長坤)을 대사헌으로, 류운(柳雲)을 형조 참의로, 권민수(權敏手)를 대사간으로, 이성동(李成童)을 집의(執義)로, 허지(許遲)를 사간(司諫)으로, 조방언(趙邦彦)·김내문(金乃文)을 장령으로, 이득전(李得全)·윤인경(尹仁鏡)을 지평(持平)으로, 이원화(李元和)를 헌납(獻納)으로, 류부(柳溥)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임추(任樞)를 부교리로, 한충(韓忠)·조언형(曹彦亨)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정청(政廳)에 전교하였다.

“류운은 시종(侍從)한 지가 이미 오래고, 당상(堂上)이 된 뒤에는 실직을 주지 못했으므로 특별히 형조 참의에 제수한다.”

○乙未以李長坤爲大司憲柳雲爲刑曹叅議權敏手爲大司諫李成童爲執義許遲爲司諫趙邦彦金乃文爲掌令李得全尹仁鏡爲持平李元和爲獻納柳溥爲弘文館校理任樞爲副校理韓忠曹彦亨爲正言傳于政廳曰柳雲前日侍從已久而堂上後未授實職其特拜刑曹叅議

《中宗實錄 卷20, 32面》

중종 9년 7월 16일(정축)

○류부(柳溥)를 장령(掌令)으로, 이말(李埜)을 지평(持平)으로, 윤지형(尹止衡)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丁丑○以柳溥爲掌令李埰爲持平尹止衡爲弘文館副修撰

《中宗實錄 卷20, 41面》

중종 9년 8월 8일(무술)

조강에 나아갔다. 「예기」(禮記)를 강(講)하다가 ‘임금을 섬김에는 범함이 있을지언정 숨김이 없다’는 말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대저 신하가 선(善)한 것을 진술하고 음사(淫邪)를 막는 것은 임금을 공경하는 실지입니다. 위엄을 두려워하여 아첨하고 비위를 맞춰서 임금의 허물을 보고도 직언(直言)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무엇을 말미암아 잘못을 알아서 고칠 수 있으리까? 임금이 신하를 대함에 너그럽게 포용(包容)하여 자기의 허물 듣기를 즐겨한다면, 신하가 다 직언할 수 있어,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간(諫)하고 간언(諫言)을 들으면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그 허물은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과 같아 사람들이 모두 보고 그 고침에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봅니다. 이런 까닭에 보고 들음[耳目]이 넓어지고 총명이 날로 진보합니다. 그렇다면 요·순(堯舜)의 정치를 이름이 무슨 어려울 것이 있으리까? 임금이 그렇지 않고 허물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알지 않기를 바라고, 아랫사람이 이미 알아서 바른 도리로 간하는 것을 괴로워 하며 가리려고 한다면, 마침내 허물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순·우(舜禹)는 대성인(大聖人)이라 경계할 만한 일이 없는 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지 말소서, 도리를 어겨서 백성의 칭찬을 구하지 말며, 백성을 어겨서 내 욕심에 좇지 말소서.’ 하였으니, 대체로 자기의 허물 듣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서로 바른 도리로 경계함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뒤의 임금에, 한무제(漢武帝) 같은 이는 급암(汲黯)의 말을 싫어하여 낮빛을 변하고 조회(朝會)를 꾀하였으며, 진주(晉主)는 이도(李濤)의 말을 싫어하여 옷깃을 떨치고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는 모두 신하가 그 허물 말함을 싫어한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어진 임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순·우를 법받으시고 무제·진주를 경계로 삼으소서.”

하였다. 장령(掌令) 류부(柳溥)·헌납 김선(金璇)이 전의 일을 논계하였는데, 허원필(許元弼)을 갈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戊戌 御朝講禮記至事君有犯無隱之語侍講官尹殷輔曰大抵人臣陳善閉邪乃敬君之實也畏威阿穴見上之過而不直言則人主何由知過舉而能改乎人主之於臣下包容寬假樂聞己過則臣下皆能直言而有過必諫聞諫必改其過也如日月之食人皆見之其改也人皆仰之是以耳目開廣而聰明日進矣然則致堯舜之治有何難焉人主不然有過而欲下人不知下人既知而規諫則厭苦而欲掩覆如是則終爲有過之人耳是故舜禹大聖人也無可戒之事然猶曰無若

丹朱傲罔違道以千百姓之譽罔拂百姓以從己之欲蓋樂聞己過故交相規戒如此後之人君如漢武厭忌汲黯之言而變色罷朝晉主厭忌李濤之言而拂衣入內此皆厭忌臣下之言其過故終不但爲賢君願以舜禹爲法以武帝晉主爲戒掌令柳溥獻納金璇論啓前事 命濤許元弼餘不允
《中宗實錄 卷20, 44面》

중종 9년 9월 12일(신미)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장령(掌令) 류부(柳溥)는 추고(推考)를 받았으니, 같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류부는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辛未○臺諫啓前事憲府又啓曰掌令柳溥被推請濤傳曰柳溥如啓餘並不允

《中宗實錄 卷20, 48面》

중종 9년 10월 1일(경인)

류순(柳洵)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홍경주(洪景舟)를 좌찬성으로, 이계맹(李繼孟)을 우참찬으로, 고흥산(高荊山)을 호조 판서로, 안침(安琛)을 공조 판서로, 이자건(李自健)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윤은보(尹殷輔)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허굉(許碁)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조방언(趙邦彦)을 전한(典翰)으로, 이언호(李彦浩)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최명창(崔命昌)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로, 이빈(李蘋)을 부응교(副應教)로, 류부(柳溥)와 임추(任樞)를 교리(校理)로, 민수천(閔壽千)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庚寅以柳洵爲議政府領議政洪景舟爲左贊成李繼孟爲右叅贊高荊山爲戶曹判書安琛爲工曹判書李自健爲漢城府判尹尹殷輔爲弘文館副提學許碁爲直提學趙邦彦爲典翰李彦浩爲司諫院司諫崔命昌爲弘文館應教李蘋爲副應教柳溥任樞爲校理閔壽千爲副校理

《中宗實錄 卷21, 1面》

중종 9년 12월 2일(경인)

상참(常參)을 받고 조계(朝啓)를 들었다.

○이장생(李長生)을 병조 참판으로, 김당(金瑯)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김세필(金世弼)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류부(柳溥)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삼았다.

○庚寅 受常叅 聽朝啓○以李長生爲兵曹叅判金璫爲漢城府右尹金世弼爲司諫院大司諫柳溥爲弘文館校理
《中宗實錄 卷21, 28面》

중종 9년 12월 21일(기유)

조강에 나아갔다.

○영의정 류순 등이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해당될 만한 사람으로 김안국·윤탁·이행·홍언필·김정·소세양·이순량·배익신·김유·조유형·박호·진식(陳埴)·이위(李偉)·이득전(李得全)·곽수령(郭遂寧)·김가원(金可遠)·안중손(安中孫)·최호(崔灝)·임계중(任繼重)·황위(黃瑋)·최명창(崔命昌)·김양진(金楊震)·류부(柳溥)·성운(成雲)·신상(申鎰)·김희수(金希壽)·조방언(趙邦彦)·신봉전(申奉全) 등 28인을 뽑고서 이어 아뢰기를,

“사유는 경학(經學)만을 전공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사장(詞章)하는 사람도 함께 초(抄)했습니다.”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남곤은 호조 판서로서 성균관 동지를 겸했었는데, 호조는 하루라도 비워 둘 수가 없으며 성균관의 일도 또한 오랫동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직무이므로 양쪽을 겸할 수는 없을 듯하나, 이 때문에 육경(六卿)을 체직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교가 퇴폐하는 일에 대하여 요즈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호조 판서는 합당한 사람이 많으나, 사유에 합당한 자로는 남곤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서 성공을 바라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를 중하게 여겨서 육경을 체직하는 뜻을 알리게 된다면, 이것도 또한 학문을 권장하는 한 가지 단서가 될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남곤은 그 당시에 재주가 뛰어난 선비로서 명망이 매우 무거운 까닭에 이를 천거한 것이다. 그러나 재예(才藝)에는 장점이 있어도 성리(性理)의 학문에는 어두웠다. 겉으로는 비록 총명하고 민첩하였지만, 속으로는 몸소 실천하는 실상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마음이 간사하고 또 학문에 의한 굳건한 힘도 없었으니, 어찌 사표(師表)에 합당하겠는가?

○己酉 御朝講○領議政柳洵等議擇師儒可當者以金安國尹倬李荇洪彦弼金淨蘇世讓李純良裴益臣金鏐趙有亨朴壕陳埴李偉李得全郭遂寧金可遠安中孫崔灝任繼重黃瑋崔命昌

金楊震柳溥成雲申鐸金希壽趙邦彥申奉全等二十八人啓曰師儒不可專主經學故以詞章之人兼抄矣又僉啓曰南袞以戶曹判書兼成均同知戶曹不可一日不仕而成均館之仕亦不可久廢皆是重任似不可兼爲此而遞六卿亦似未便傳曰學校頽廢事近日多有言者戶曹判書則多有可當者合於師儒如南袞者固不易得故欲專委責成以見效也且使人人皆知重學校而遞六卿之意則是亦勸學之一端也史臣曰袞當時之美士名望甚重故薦之然長於才藝而暗於性理之學外雖明敏而內乏躬行之實持心回曲又無定力豈合師表

《中宗實錄 卷21, 36面》

중종 9년 12월 27일(을묘)

상(上)이 친히 정사를 하여, 고흥산을 호조 판서로, 안당을 공조 판서로, 남곤을 지중추부사 겸 동지성균관사(知中樞府事兼同知成均館事)로, 한형윤(韓亨允)을 호조 참판으로, 윤은보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허굉(許磁)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신상(申鐸)을 직제학으로, 이빈(李蘋)을 응교로, 류부(柳溥)를 부응교(副應教)로, 류옥(柳沃)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정호(李挺豪)·최호(崔灝)를 정언으로, 민수원(閔壽元)을 홍문관 수찬으로, 류인숙(柳仁淑)·박세희(朴世熹)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乙卯 上親政以高荊山爲戶曹判書安塘爲工曹判書南袞爲知中樞府事兼同知成均館事韓亨允爲戶曹參判尹殷輔爲司諫院大司諫許磁爲弘文館副提學申鐸爲直提學李蘋爲應教柳溥爲副應教柳沃爲司諫院獻納李挺豪崔灝爲正言閔壽元爲弘文館修撰柳仁淑朴世熹爲副修撰

《中宗實錄 卷21, 36面》

중종 10년 1월 23일(신사)

주강에 나아갔다.

○석강에 나아갔다. 「고려사(高麗史)」를 강하다가 '왕이 흥왕사(興王寺)에 행행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흥왕사는 전조(前朝)의 큰 사찰인데 역사를 감독한 관리까지도 모두 서작(叙爵)과 상사(賞賜)를 더해 주었으니, 그 불교를 숭상하고 존중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교를 존중하지는 않지만 기신재(忌晨齋)는 매양 사찰에서 베푸는데 신자(臣子)들이 차마 볼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부처를 공양(供養)할 때에는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신주(神主)를 먼저 욕실(浴室)에 보내어 목욕을 시킨 뒤에 뜰에 꿰어앉아 절하게 하니, 생사가 다름이 없거늘 어찌 임금에게 이런 굴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통분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조종(祖宗) 때부터 오래 해온 구습(舊習)이라 갑자기 그 폐단을 고치기는 어려울 듯하지마는 만약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 것인 줄을 안다면 어찌 3년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빨리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辛巳 御晝講○御夕講講高麗史至幸興王寺侍講官柳溥曰興王寺前朝巨刹至於董役官吏並加爵賞其崇重佛教之意可知今雖不重佛教忌晨齋每設於寺刹臣子所不忍見之事多矣方其供佛之時以 先王先后神主先入於浴室沐浴然後跪拜於庭生死無異豈以人君而屈辱至此乎痛憤莫此爲甚 祖宗朝久遠因循之弊似難卒革然如知其非道何待三年如此之事可速革罷

《中宗實錄 卷21, 42面》

중종 10년 2월 6일(갑오)

주강에 나아갔다.

○좌의정 정광필·좌참찬 장순손 등이 아뢰기를,

“망합(莽哈)의 일을 다시 들은즉, 우리 나라를 능멸함이 이번만이 아니라 합니다. 전일 이빈이 아뢰던 것이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그랬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빈 및 여진 통사(女眞通事)를 불러 자세히 물은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또 오랑캐의 사정을 알고 변방의 일도 아는 강윤희(姜允禧: 서얼(庶孽)로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어 가선(嘉善)에 승진하였다.)같은 자도 모두 와서 계책을 말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장순손은 아뢰기를,

“입거하는 일은 경연관의 아뢰므로 하여 하문하셨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성명(成命)이 이미 내렸으니 이때에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광필이 또 아뢰기를,

“지금 만일 곧 뽑아 보내지 않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들여보내게 되면, 간민(奸民)들이 그 자손이라도 혹 물 속에 던져서 일부러 단소(單少)한 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입거를 모면하려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망합이 과연 우리 나라를 능멸하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우리 나라가 군량이 적고 군사가 약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근본을 굳건히 하지 않고 저들과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하므로 전날의 의논이 그러했던 것이다. 이것은 관계가 큰 일이니, 다시 의논해서 처리하여야 하겠다. 강윤희 및 변방 일을 아는 다른 자도 모두 와서 말하게 하며, 또 시종하는 신하로서 비록 변방 일을 잘 모르더라도 고급의 사변을 알 수 있으니 명일에 모두 와서 의논하게 함이 가하다. 입거(入居)하는 일은 경연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철에는 미편하다고 말한 것이다. 과연 천연(遷延)하여 결정하지 못하면, 아뢰던 바와 같은 폐단이 생길 것이다.”

하매, 광필이 여럿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다시 통사와 이빈에게 물은즉, 망합이 사납고 거만하여 성을 내는 일이 매우 많다 하며, 윤은보·이빈 및 다른 재상들은 모두 치죄(治罪)함이 마땅하다 합니다.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인 허굉(許礪)·류부(柳溥)·류돈(柳墩)·임권(任權) 등은 모두 말하기를 ‘가볍고 쉽게 여길 것이 아니다.’ 하며, 심정의 말 또한 전의 의논 그대로입니다. 소신이 중론을 듣고 자세히 생각하여 보았는데, 북방의 병력이 매우 허약합니다. 망합이 이번에 가서 난을 일으킬지의 여부는 반드시 그러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만일 망합의 죄를 다스린다면 그가 난을 일으킬 것은 분명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대신이 널리 조정 의논을 취하기를 청함은, 그것이 널리 묻고 즐거이 취하는 뜻은 될 수 있지만, 국정을 맡은 대신으로서 혼자서 결단을 못하고 문득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취하니, 발언함이 조정에 가득 차고 국론(國論)을 정하지 못하여 체통이 높아지지 못하므로 식자가 근심하였다. 심정이 혼자서 ‘우리가 먼저 움직임이 불가능하다.’ 하였는데 광필이 이 말에 구애되어 아뢰기를 ‘다시 생각한즉 먼저 우리가 공격함이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그 말에 따랐다. 광필이 심정의 혼자 고집에 견제되어 여러 번 그 의논을 고쳤는데, 결단을 하지 못함이 이러하니 조정이 어찌 의지하여 믿을 것인가? 그러나 집요(執拗)하여 큰 일을 실패시키는 자에 비하면 낫다.

입거(入居)하는 일에 대하여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하려면 지금 곧 하여야 합니다.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면 폐해가 반드시 많은 것입니다. 또 북도의 군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함경도 인근 고을의 금년 미납한 전세(田稅)를 모두 옮겨 수운(輸運)하여 군량을 예비하소서. 또 북도의 현재 있는 군사는 유명 무실하니 유이(流移)한 군호(軍戶)를 으레 쇄환하여야 하며, 현재 남은 자의 수효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각별히 추쇄함은 불가하니, 병사(兵使)가 순행할 때에 실존 수효를 점고(點考)하도록 새 병사가 내려갈 때에 친교(親教)하여 보내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甲午 御晝講○左議政鄭光弼左叅贊張順孫等啓曰莽哈事更聞之其陵蔑我國非特今時也前日李蘋所啓必有所聞而然也請卽召李蘋及女眞通事詳問之然後更議之且諳虜情知邊事如姜允禧以庶孽爲請國功臣陞嘉善者皆使來陳其策何如張順孫啓曰入居事以經筵官之啓而下問若不爲則已成 命已下須及今時爲之光弼亦啓曰今若不卽抄送而待秋成入送則奸民等雖其子孫亦或投諸水中故爲單少人口而謀免入居者必多有之不可待秋成而爲之也傳曰

莽哈果凌蔑我國而不之較則彼必以爲我國糧少兵弱不能抗衡云爾然不先固其本而生釁於彼人不可故前議如是矣此甚關係之事須更議處之姜允禧及他知邊事者皆使來陳且侍從之臣雖不諳邊事亦能知古今事變明日皆令來議可也入居事經筵官非以爲不當爲也以其農時未便云爾果遷延不決則有如所啓之弊矣光弼持衆議啓之曰更問于通事及李蘋則其桀驁發怒之事甚多尹殷輔李蘋及他宰相則皆以爲治罪爲當弘文館官員許砮柳溥柳墩任權等則皆曰不宜輕易爲之沈貞之之言亦不過前議小臣聽衆論更詳思之北方兵力甚虛弱莽哈今去而作亂與否不可必也今若治莽哈之罪則其致亂必也史臣曰大臣請廣取廷議雖有得於博詢樂取之意然當國大臣不能獨斷輒取人議發言盈庭國論莫定體統不尊識者憂之沈貞獨以爲自我先動不可光弼拘於此言啓曰更思之則不可先自搖動 上從之光弼牽制沈貞之偏執屢改其議不能決斷如此朝廷何足以倚重然比於執拗以敗大事者則優矣入居事僉議啓曰爲則今卽爲之若待秋成則弊必多矣且北道軍糧不可不備咸鏡隣近之邑今年未納田稅請皆移輸預備軍糧且北道見在軍士有名無實流移軍戶固當刷還其見存者宜悉知數然不可各別推刷宜於兵使巡行之際點考見存之數新兵使下去時親教而送之何如傳曰可 《中宗實錄 卷21, 47面》

중종 10년 2월 11일(기해)

○주장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성을 쌓는 일과 입거(入居)하는 일을 지금 일시에 함께 거행하지만, 변방이 어찌 갑자기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또 함경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니, 군자(軍資)를 만드시 다른 데서 운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만일 입거한다면 그 백성은 장차 무엇으로 식량을 삼겠습니까? 국가에서 믿는 것은 하삼도(下三道)인데, 지금 만일 백성을 움직여 농사를 폐지한다면 백성이 소복(蘇復)되지 못하고 국용도 결핍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거하는 일은 나 역시 급급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조정 의견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경솔하게 정지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己亥○御晝講侍講官柳溥曰築城入居今雖一時並舉而邊圉豈能遽至於堅固乎且咸鏡道則連年凶荒軍資必賴移運而裕足今若入居則其民又將何以爲食國家之所賴者下三道而今若動民廢農則民不蘇復而國用亦乏矣 上曰入居事予亦不以爲汲汲也但朝廷之意已定不可輕易停之
《中宗實錄 卷21, 52面》

중종 10년 2월 16일(갑진)

장순손을 우찬성으로, 김전을 예조 판서로, 신용개를 병조 판서로, 허굉(許砮)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신상(申鎰)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김안로(金安老)를 직제학으

로, 이빈(李蘋)을 전한(典翰)으로, 류부(柳溥)를 응교(應教)로, 홍언필(洪彦弼)을 부응교로, 류인숙(柳仁淑)을 수찬(修撰)으로, 채침(蔡忱)·김구(金絀)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甲辰以張順孫爲右贊成金詮爲禮曹判書申用漑爲兵曹判書許砮爲承政院同副承旨申鐸爲弘文館副提學金安老爲直提學李蘋爲典翰柳溥爲應教洪彦弼爲副應教柳仁淑爲修撰蔡忱金絀爲副修撰

《中宗實錄 卷21, 56面》

중종 10년 2월 22일(경술)

조강에 나아갔다.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형조 판서 강혼·병조 판서 신용개·우찬성 장순손(張順孫)·이조 판서 박열(朴說)·우참찬 이계맹·지중추부사 안윤덕 류담년·호조 판서 고행산·공조 판서 안당·한성부 판윤 이자건·병조 참판 이장생·형조 참판 류미·풍창군(豊昌君) 심형(沈亨)·계림군(鷄林君) 최한홍(崔漢洪)·청양군(菁陽君) 류계종(柳繼宗)·병조 참의 김극성·판결사 윤은보(尹殷輔)·예조 정랑 반석평(潘碩枰) 등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의견으로서는 망합이 오면 금부에 가두고, 이빈(李蘋)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으로 그 죄를 설명하고 추문한 후에 남방 외딴 섬에 거처하게 하고, 황형(黃衡)이 북도에 가서 오랑캐의 실정을 보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문관 직제학 김안로·응교(應教) 류부(柳溥)·교리 홍언필·부교리 류돈민수천(閔壽千)·수찬 류옥 류인숙·부수찬 김구(金絀)·저작 윤자임(尹自任)·정자 임권(任權) 등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은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오랑캐의 실정도 모르니, 이 일을 처리하는데 타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형에 처할 수도 없으며 또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중략]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이적(夷狄)을 대우하는데, 작은 죄를 가지고 중한 법으로 처리함은 불가하다. 망합은 원래 사납고 거만하기로 알려졌다. 지금 궐정(闕廷)에서의 과실이 있지만 이는 인면 수심(人面獸心)인 오랑캐의 상태(狀態)이다. 마땅히 책망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큰 죄가 있는 것을 회정(回程)한 후에 들었기 때문에 잡아온 것이다.’ 하고, 또 효우하여 이르기를 ‘너의 범람됨이 매우 많다. 큰 죄로 처벌하려 하였지만 내가 오래도록 변방 울타리에 거처하면서 국가에 향한 정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한다.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한 말

로 깨우치고 그 고장으로 돌려보낸다면, 저가 잡혀올 때 죽게 될 줄 알았던 만큼 어찌 은혜에 감동하여 허물을 뉘우치지 않겠는가? 아들을 볼모로 삼아 조정에 있게 하는 일은 내 생각으로는, 전에 와서 향화(向化)하였으면 모르되 지금 그들을 많이 와서 있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진씨(晉氏)의 경계(249)이니 경등은 살펴 헤아리고 멀리 생각하여 다시 의논해서 처치하고 사기(事機)을 잃지 말라.”

하였다.

○庚戌 御朝講○左議政鄭光弼右議政金應箕刑曹判書姜渾兵曹判書申用漑右贊成張順孫吏曹判書朴說右叅贊李繼孟知中樞府事安潤德柳聃年戶曹判書高荊山工曹判書安瑋漢城府判尹李自健兵曹叅判李長生刑曹叅判柳湄豐昌君沈亨雞林君崔漢洪菁陽君柳繼宗兵曹叅議金克成判決事尹殷輔禮曹正郎潘碩枰等議臣之意以爲莽哈來則囚于禁府以李蘋持去事目數其罪推問後處于南方絕島黃衡往北道見虜情然後更議處之爲當弘文館直提學金安老應教柳溥校理洪彦弼副校理柳墩閔壽千修撰柳沃柳仁淑副修撰金綵著作尹自任正字任權等議臣等未知邊事又未諳虜情故處此事不得其當否耳然不可置於極刑又不可還送[中略]無傳曰國家待夷不可以小罪論重典也莽哈素稱桀驁今雖有闕廷之失此人面獸心之常態當責曰汝有大失回程後聞之故拿來耳又諭曰汝汎濫心多欲置大罪但汝久居藩籬向國之情非偶然故特恕耳後勿如是嚴辭論諭放還其土則彼之見拿以當死之心豈不感恩而悔過乎質子侍朝之事予意以爲前來向化則已矣今不可多許其來居此晉氏之所戒也卿等審度遠慮更議處置毋失事機

〈中宗實錄 卷21, 58面〉

중종 10년 11월 24일(병오)

○한형윤(韓亨允)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장곤(李長坤)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안국(金安國)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성세창(成世昌)을 집의(執義)로, 문근(文瑾)을 사간(司諫)으로, 김희수(金希壽)·류부(柳溥)를 장령(掌令)으로, 김감(金城)을 지평(持平)으로, 이우(李佑)를 헌납(獻納)으로, 장옥(張玉)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丙午○以韓亨允爲工曹參判李長坤爲司憲府大司憲金安國爲司諫院大司諫成世昌爲執義文瑾爲司諫金希壽柳溥爲掌令金城爲持平李佑爲獻納張玉爲正言 《中宗實錄 卷23, 36面》

중종 10년 11월 27일(기유)

대사헌(大司憲) 이장곤(李長坤)·장령(掌令) 류부(柳溥)와 김희수(金希壽)·지평

249) 진씨(晉氏)의 경계 : 진 나라처럼 될 것을 조심하라는 뜻. 진 나라는 남흉노(南凶奴)의 후손인 유연(劉淵)과 파서(巴西)의 유랑민(流浪民) 이특(李特) 및 선비족(鮮卑族) 모용 위(慕容廆) 등 많은 외방 사람들을 끌어들이 잘 대우하다가, 얼마 후에는 그들에게 강토와 세력을 빼앗기고 쇠망하였는데, 이를 말한다. 《史略 卷三 西晉紀》

(持平) 김감(金城) 등이 상회례(相會禮)를 행한 뒤에, 대의(臺議 : 사헌부(司憲府)의 의논)가 동일하지 않다 하여 그 뜻을 와서 아뢰었는데, 장곤과 김감이 아뢰기를,

“정언(正言) 조광조(趙光祖)가, 전 대간이 김정(金淨)·박상(朴祥)에게 죄주기를 청한 것이 언로(言路)를 막는다 하여 논박해서 같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박상 등은 구언(求言)한 뒤에 진언(進言)하였거니와, 대간 등이 상께서 그 말을 채용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으면 죄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여서는 안 될 터이고, 그때 상께서 ‘정원(政院)이 상소를 받아들인 것이 옳지 않다.’고까지 분부하셨으니, 상의 뜻이 이미 정해지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굳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구언한 뒤에는 그 말이 지나칠지라도 버려두고 따지지를 알아야 언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중(司中)의 뜻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희수는 아뢰기를,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 등의 상소에 있는 일이 매우 놀라우니, 대간이 죄주기를 청한 것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언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로가 워낙 중대하나 그 일은 더욱 중대하니, 어찌 언로를 위하여 죄주기를 청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상의 뜻이 이미 정해지신 뒤에 죄주기를 청할 수는 없다고는 하나, 한 열흘 사이에 어찌 상의 뜻이 이미 정해지셨다 하여 문득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경연관(經筵官)이 박상 등을 놓아 주기를 청하였는데, 대간도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논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령 상(祥) 등이 석방되었더라면 대간이 다시 간쟁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무슨 언로를 막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대간도 중한데, 어찌 언로를 위하여 대간을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는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다 하여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신은 반복해서 생각하여도 전 대간이 그르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류부가 아뢰기를,

“조광조와 전 대간의 논하는 뜻이 서로 어그러지는 것은 오로지 박상 등의 상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이 두 논의가 어그러진 사이에 처하여 어찌 생각하는 바가 없겠습니까마는, 김정 등이 상소한 뜻에 신의 삼촌숙(三寸叔) 류순정(柳順汀)을 논하여 험뜯은 데가 있어, 신은 피혐(避嫌)하여야 마땅하므로 아뢰 수 없습니다.”

하였고, 대사간(大司諫) 김안국(金安國)이 뒤따라 와서 아뢰기를,

“조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하여 같게 하였는데, 신이 그 직을 갈음하였습니다. 신은 광조와 뜻이 같으므로 상견례를 행하였습니다. 신도 본디 박상 등이 국가의 큰 일을 잘못 아뢰는 것은 워낙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박상 등의 대의는 구언한

뒤이므로 제가 품은 생각을 아뢰었을 뿐이고 다른 뜻이 없었으며, 대간이 그들의 말한 바가 종사에 관계되어 국가의 큰 일을 잘못 논한 것이므로 언로에 방해된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여 잡아다가 묻도록 청한 것은 그 뜻이 옳거니와, 잡아다가 물었을 때에도 다른 뜻이 없고 다만 구언하신 분부에 응하여 품은 생각을 바로 아뢰었을 뿐이라 하매, 상의 뜻이 이미 정해지시고 조정도 그들에게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대간은 굳이 죄주기를 청하여 당초 구언한 때에 ‘말이 지나치더라도 죄주지 않는다.’ 하고서 이제 죄주어 도형(徒刑)의 중한 죄로 처치하기에 이르렀으니, 언로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조가 그것을 논박한 것은 신의 뜻과 같습니다. 다만 대간도 다른 뜻 없이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었는데, 광조가 파직하기를, 청한 것은 지나친 듯하나, 대의는 신과 같으므로 드디어 서로 용납하였습니다. 오히려 상(祥) 등이 도죄(徒罪)에 이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빨리 사면(赦免)하도록 하는 뜻을 의논하여 아뢰려고 하였는데, 이제 대사헌 및 지평은 신의 뜻과 같으나 장령은 광조를 그르게 생각합니다. 대저, 대간은 일체(一體)이므로 반드시 뜻이 합한 뒤에야 서로 용납되는 것인데, 이제 이미 신과 뜻을 같이하는 광조를 그르게 여기니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형세이므로 아뢰입니다.”

하였다. 장곤·회수·감 등에게 전교하기를,

“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한 것은 다만 구언한 뒤의 일을 위한 것이고 대간의 언사(言事)가 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므로, 내가 그 뜻을 잘 모르겠으며 또 그 일을 중하게 여겨서 대신에게 물었더니, 대신도 다만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만 말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대간의 언사가 지나치더라도 논박해서 가면 반드시 뒤에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전 대간을 간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였다고 여긴다.”

하고, 류부에게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하매, 부가 아뢰기를,

“전 대간이 상(祥)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은 종사를 위한 생각에서였다고 신은 생각합니다. 종사를 위한 생각이라면 워낙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며 또 경중으로 말하면 종사가 중합니다. 저들도 대간인데, 어찌 언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언로를 여는 것도 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조광조가, 전 대간의 한 일이 언로를 방해한다 하였으니, 듣기에는 마땅한 듯하나 일의 시비를 깊이 생각하면 언로는 워낙 여사(餘事)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으므로 파직하기를 청한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전 대간의 일이 그르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지나칩니다. 신이 처음에는 비록 피험하였으나, 김희수와 뜻이 같으므로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고, 이장곤과 김감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언로가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 등이 비록 지나치고 마땅치 않은 말을 하였을지라도, 대간이 된 자로서는 상께서 그 말을 채용하시지 않는 줄 알면 죄주기를 청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이는 구언한 뒤의 일이니 여느 때의 예와는 다른데도 굳이 죄주기를 청하여 귀양가기에 이르렀으니, 언관(言官)으로서 언로를 유지하지 않고 도리어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조가 능히 논박하여 바로 잡았으므로, 신 등은 광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께서는 온당치 못하였다고 분부하시니, 신등은 재직할 수 없으므로 물러가서 대명(待命)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사간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을 논박하여 가는 데에는 워낙 여러 가지 까닭이 있으나, 양사(兩司)를 합하여 논쟁한 일을 뒤의 대간이 다시 시비하여 오늘처럼 공박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언로를 생각하더라도 대간을 갈기까지 하는 것이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경(卿)도 전 대간은 종사를 위하여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찌 논박하여 갈기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류부(柳溥)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도 언로인데, 광조가,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다고 논박하여 갈게 한 뜻은 알 수 없다.”

하고, 대사헌에게 전교하기를,

“조광조가 언로를 부식(扶植)하는 것은 옳다고 하겠으나, 그때는 대간이 상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을 그르다고 생각한 자가 없었는데, 이제 어찌하여 논박하여 갈게 하기까지 하였는가? 그러므로 내가 온당치 못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己酉大司憲李長坤掌令柳溥金希壽持平金城等行相會禮後以臺議不一各將其意來啓長坤與金城啓曰正言趙光祖以前臺諫之請罪金淨朴祥爲有妨言路而駁逆之臣等意謂朴祥等於求言後進言臺諫等知 上不用其言則當不至於請罪其時 上教至以政院納疏爲不可則非不知 上意之已定而強請罪之求言之後則雖其言過重當置以不問然後可維持言路故臣等之意以光祖駁正前臺諫爲是也司中之意各異不得相容矣金希壽啓曰臣意朴祥等疏內事甚可愕也臺諫之請罪爲 宗社大計而不假計言路也言路固大而其事爲尤大豈可爲言路而不請罪乎雖曰 上意已定之後不可請罪旬日之間豈可爲 上意已定遽能中止乎其時經筵官請釋朴祥等而臺諫猶不論其不可假令祥等得釋臺諫必不更諍何有妨於言路乎且臺諫亦重豈可爲言路而非臺諫乎趙光祖至以陷君不義請罷其職爲言臣雖反覆計之不知前臺諫之

爲非也柳溥啓曰趙光祖與前臺諫論意相乖者專以朴祥等上疏而然也臣處兩論相乖之中豈無所謂但金淨等疏意論詆臣三寸叔柳順汀臣當避嫌故不得啓之大司諫金安國隨後來啓曰趙光祖駁違前臺諫而臣今代其職臣則與光祖意同故昨行相會禮臣之本意亦謂朴祥等錯陳國家大事固爲不可然其大意以其求言之後啓其懷抱而已無他意也前臺諫以其所言關於宗社錯論國家大事故不假計言路之有妨而請使逮問其意是矣及其逮問亦無他意只應求言之教直達懷抱而已 上意已堅定朝廷亦知其無異意而強請罪之當初求言之時以爲言雖過中不罪云而今而罪之至置於徒罪之重有妨於言路故今光祖駁之與臣意同焉但臺諫等亦無他意爲 宗祖大計而光祖至請罷職雖似過越大意則與臣同故遂與相容尚以祥等至被徒罪爲未安將議啓速赦之意今大司憲及持平則與臣意同而掌令則以光祖爲非夫臺諫一體必意合然後相容而今既以與臣同志之光祖爲非則勢不得相容故啓之傳于長坤希壽城等曰光祖之駁前臺諫只爲求言後事而不知臺諫言事之重也予未解其意又重其事至問於大臣則大臣亦只以不得相容之意言之予意以爲臺諫言事雖過中駁違則必有後弊前臺諫之違實爲未穩矣傳于柳溥曰勿避嫌溥啓曰臣意前臺諫請罪祥等爲 宗社計也爲 宗社計則固不可計言路之通塞也且以輕重言之則 宗社重矣彼亦臺諫豈不計言路乎開言路亦爲 宗社也趙光祖以前臺諫所爲爲妨言路於所聞雖似宜然若深思事之是非則言路固爲餘事且不止此也至以陷君不義請罷職爲言前臺諫之事不爲非矣而如是言之過當矣臣初雖避嫌而與金希壽意同故如是啓之李長坤與金城更啓曰臣意則重言路也朴祥等雖爲過中不當之言爲臺諫者知上之不用其言則不當請罪也况是求言之後則非如尋常之例而乃強請罪之以至於竄逐以言官不扶言路反塞之而光祖能駁正之臣等以光祖爲是而 上教以爲未穩臣等不可在職請退而待命傳于大司諫曰臺諫駁違固爲多端然合兩司論諍之事後臺諫復以爲是非而攻之如今日者未之聞也雖以言路觀之至違臺諫豈不過當乎卿亦云前臺諫爲 宗社不得不爾然則豈可至於駁違乎傳于柳溥曰臺諫之言亦是言路而光祖論以陷君不義而駁違之意未可知也傳于大司憲曰趙光祖扶植言路雖云可也其時無以臺諫請罪祥等爲非者則今何至駁違乎故予以爲似爲未穩爾

《中宗實錄 卷23, 36面》

중종 10년 11월 28일(경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전교하였다.

“대간이 논하는 바가 같지 않으니, 그 한 편을 같아야 하겠다. 오늘 정사(政事)를 하라.”[중략]

○장령(掌令) 김희수(金希壽) · 류부(柳溥) 등이 아뢰었다.

“이제 듣건대, 김안국(金安國)이 서계(書啓)한 일이 있다 하니, 글을 보여 주소서.”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근사(金謹思) · 직제학(直提學) 김안로(金安

老) · 응교(應敎) 홍언필(洪彦弼) · 교리(校理) 민수천(閔壽千) · 부교리(副校理) 신광한(申光漢) 이청(李清) · 수찬(修撰) 윤지형(尹止衡) 박세희(朴世喜) · 박사(博士) 윤자임(尹自任) · 저작(著作) 임권(任權) · 정자(正字) 정응(鄭膺) 기준(奇遵) 등이 아뢰기를,

“전자에 박상(朴祥) 등이 상소한 일이 광패(狂悖)하므로 대간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신등은 말이 광패하더라도 죄주면 언로에 방해가 된다 하여 죄주지 말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대간이 죄를 청한 것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므로 신등이 대간을 그르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사간(大司諫) · 대사헌(大司憲) · 지평(持平) · 헌납(獻納) · 정언(正言) 등을 다 명하여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로를 위하여 말하였으므로 그 말이 워낙 옳으나, 전 대간이 김정(金淨) · 박상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도 생각없이 한 일이 아니므로 인심이 의심할 것이며, 또 상의 뜻을 모르고서 큰 일인 까닭에 부득이 아뢰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그르게 여기는 것은 이미 지나칩니다. 김희수(金希壽) · 류부(柳溥) 등이 전 대간을 그르다고 하지 않는 것은 워낙 옳으나, 이제 인심과 위의 뜻이 다 정해졌으므로 언로를 열어야 할 터인데도 도리어 언로를 위하여 논계(論啓)한 광조(光祖)를 그르다고 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대사헌을 그르다 하고 또 장령을 그르다 하나, 내 생각은 이리하다. 대사헌이 전 대간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거니와, 장령 등이, 조광조가 그르지 않은 대간을 논박한 것을 잘못이라고 여겨서 그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될 것이 없다. 대사헌 등이 옳다면 장령 등이 그르고, 장령 등이 옳다면 대사헌 등이 그른 것이지 어찌 양편이 다 옳거나 양편이 다 그른 일이 있겠는가? 다 갈 수는 없으나, 이미 물의에 올랐으니, 장령 등도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뜻을 알게 하고자 말할 따름이다.”

하였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이 양론(兩論)을 다 그르게 여기므로, 장령 등도 재직할 수 없으니 갈아야 한다. 지평(持平)은 비록 전혀 어느 편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양단(兩端)을 지키면서 행직할 수는 없으니, 아울러 갈아야 한다.”

하매, 희수(希壽) · 류부(柳溥) · 임추(任樞) 등이 다 물러갔다.

○김근사(金謹思)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의 일에 어찌 양편이 다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일이라면 시비를 결단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이 일은 양단으로 나뉘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비를 이처럼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상 등을 그르게 여기는 것은 종사(宗社)를 위한 생각이고, 전 대간을 그르게 여기는 것은 언로를 위한 것인데, 언로가 어찌 종사를 생각 밖에 두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종사를 위하여 넓히는 것입니다. 이장곤(李長坤)·김희수(金希壽) 등이 언로를 위하여 논계(論啓)하기는 하였으나 다 편벽됨을 면치 못하고 언로에 방해가 되어 뒤에 해를 끼치게 되니, 양편이 다 잘못이므로 다 갈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대사헌·장령을 다 한 편에 치우쳤다 하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대저 한 대관(臺官)이 못 대간(臺諫)을 공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면 모르거니와, 사리에 맞지 않으면 뒤의 대간이 또한 공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류부 등이, 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한 것을 잘못이라 하여 논하였으나, 이미 갈렸는데 또 무엇을 하라?”

하였다.[중략]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근래 사풍(士風)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매양 이르기를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이 말이 매우 옳다.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이 생기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전조(銓曹)가 정사(政事)를 위하여 주의(注擬)할 즈음에 신구(新舊)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이르고서는 비록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을 막고자 하더라도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대저 새로 등용된 사람은 지기(志氣)가 있을지라도 숙달된 일이 적을 것이고, 이미 조정의 법도를 모르는데 더구나 조정의 사체(事體)를 알 수 있겠는가? 사체에 숙달된 뒤에 쓰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오래 벼슬한 사람은 뚜렷한 허물이 없어도 아랫줄에 침체되어 있고, 출신(出身: 과거 급제)한 지 오래지 않은 자가 도리어 그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그르지 않겠는가?”

하매, 판서(判書) 안당(安瑒)이 아뢰기를,

“이제 분부하신 말씀을 들으니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력(資歷)이 오래지 않더라도 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으로 합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선진(先進)·후진(後進)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재기(才器)가 같고 관질(官秩)이 같다면 선진을 먼저 써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대사헌(大司憲) 권민수(權敏手)·대사간(大司諫) 이행(李荇) 등이 박상(朴祥)·김정(金淨)의 상소를 가리켜 간사한 의논이라 하고, 언로를 작은 일이라 하여 잡아 오기를 애써 청하여 도죄(徒罪)에 처하기에 이르매, 사림(士林)이 분

개하고 낙담하여 말을 삼갔다. 초야의 선비로서 구언(求言)의 분부를 듣고 봉사(封事)를 가지고 올라 오다가 박상이 죄를 받았다는 말을 길에서 듣고서 외측되어 그만둔 자가 자못 많았으니, 이처럼 언로를 막고 사기(士氣)를 꺾은 것이다. 그래서 위로는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유림에 이르기까지 민수 등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검상(檢詳) 이언호(李彦浩)·사인(舍人) 류부(柳溥) 김희수(金希壽)의 무리만은 민수 등의 의론이 옳다 하였으니, 그 뜻은, 박상의 상소는 종사(宗社)에 관계되므로 언로를 생각할 겨를 없이 죄를 청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사람에서 칭송되어 언호의 무리가 청현(淸顯)하고 화요(華要)한 벼슬에 드나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명류(名流)라고 지목하는 까닭에 중심이 없는 사류(士類)는 자못 그 말에 미혹되어 시비에 어두웠다. 그래서 의논이 분분하다가, 조광조(趙光祖)가 정언(正言)이 되자, 사은(謝恩)한 이튿날 분연히 들어가 아뢰기를 '언로(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데에 크게 관계됩니다. 대간은 언로를 맡은 관직인데 일을 말한 사람을 죄주기를 청하여 먼저 스스로 언로를 막고, 또 전하께서 간쟁을 거절하는 시초를 만들었으므로 제 직분을 크게 잃었으니, 다 파직하소서.' 하였다. 상이 어려워하고 윤택하지 않으며, 광조가 이 때문에 강개하여 반복해서 아뢰어 마지 않으니, 상이 명하여 사관(史官)을 시켜서 삼공(三公)에게 수의하게 하였는데, 삼공도 일찍이 마음에 불편히 여겼었으므로, 다들 광조의 의논이 옳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이 명하여 죄다 벼슬을 가니 조정의 논의가 이를 쾌하게 여기고 사람이 서로 경축하였으나, 김희수·류부가 장령(掌令)이 되매, 군자(君子)들은 속으로 억제당하여 공론이 행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대사헌 이장곤(李長坤)·지평(持平) 김감(金臧)은 광조가 능히 언로를 열었으므로 제뜻에 바로 맞는다 하였으나, 류부 등은 여전히 전의 의논을 고집하여 광조를 그르게 여기니, 장곤이 일을 말한 것을 죄주어서는 안되며 언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우쳤으나, 오히려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궐정(闕廷)에 나아가 각각 제뜻을 아뢰었고, 또 서로 용납될 수 없다 하여 피험(避嫌)을 청하였으나, 상의 뜻도 광조의 의논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곧 정사(政事)를 하도록 명하여 장곤 등을 갈고, 이어서 류부 등에게 직무를 집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언로가 거듭 막히게 되고 사기가 더욱 상실되었는데, 다행히 홍문관의 아뢰어 또 류부 등을 갈았으므로 그 설이 조금은 멈추었으나, 홍문관의 말도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양편이 다 옳다고 지칭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권민수는 종사를 위하여 죄주기를 청하였고, 조광

조는 언로를 위하여 부지한 것이니, 처음에는 다 그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므로, 상의 뜻에 오히려 의심스럽게 여겨졌다. 또 대사간(大司諫) 김안국(金安國)이 또한 홍문관보다 앞서 아뢰기를, ‘광조가 언로를 위하여 정론(正論)을 부지하였는데 신의 뜻도 같은 것이므로 류부 등과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피험하겠습니다.’ 하니, 또 같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그때의 의논은 이를 비평하여 이르기를 ‘장곤·안국의 무리가 이미 중심(衆心)에 따라 정론을 주장하였으면, 본디 힘껏 간쟁하여 류부의 무리를 공박해 물리쳐서 시비를 확정하여, 상의 뜻이 굳게 정해지고 언로가 중하다는 것을 아시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용감하게 공문을 부지하여 조정의 기강을 떨치고 언로가 이미 막혔던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그 기회인데, 도리어 그러지 않고 각각 제뜻을 아뢰어 겨우 책임만 막아 내고서 미치지 못할세라 피험했으므로, 한갓 대간의 기풍을 훼손하였을 뿐이니,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하였다.

언호(彦浩)²⁵⁰)는 사람됨이 견개(狷介 :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굳게 지키고 굽히지 않다)로 자수(自守 : 신조로 삼아서 스스로 지키다)하고 산업(產業)에 생각을 두지 않으니 이는 칭찬할 만하나, 기량이 좁고 대체(大體)에 어두워서 잔단 일을 몹시 살피므로, 의향이 한번 기울면 남을 따르지 않고 고집하여, 마침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선을 좇기를 꺼렸다. 그러므로 전에 박상의 상소에 속으로 분격하여 민수가 죄주기를 청한 것을 매우 옳게 여기고, 군자(君子)의 정론(正論)을 들어도 폐고(蔽固 : 도리에 어둡고 고루하다)가 아주 심해서 또한 고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또 광조·장곤의 뜻이 자기와 다른 것을 속으로 미워하여 매우 유감을 품었다.

류부(柳溥)는 본디 정력(定力 : 굳게 정하고 동요되지 않는 힘)이 없고, 마음이 시비에 어두워서 언호의 의논에 미혹되어 언로는 국가의 여사(餘事)라고 아뢰기까지 하여 상이 언로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국가를 거의 그르쳐서 만세의 공론에 죄를 얻었으니, 언호가 그를 그르친 것이다.

김희수(金希壽)²⁵¹)는 사람됨이 단정하고 온후(溫厚)하고 공평하고 정직하여

250) 이언호(李彦浩) : 1477~1519.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양중(養仲). 본관은 한산(韓山). 유청(惟淸)의 아들. 문과에 급제. 중종 11년(1516)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이듬해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글씨에 능하여 전서(篆書)와 팔분체(八分體)를 잘 썼으며, 동왕 13년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 임지에서 죽었다.

251) 김희수(金希壽) : 1475~1527.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몽정(夢禎). 호는 유연재(悠然齋). 본관은 안동(安東). 중종 2년(1507) 문과에 급제. 정언(正言)·정자(正字)·박사(博士)가 되고, 이어 지평(持平)·장령(掌令)·집의(執義)·참찬관(參贊官) 등을 거쳐 우부승지·좌부승지가 되었다. 동왕 19년에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다. 글씨를 잘 썼다. 글

사림(士林)이 존중하였으나, 언호·류부(柳溥)와 서로 친하였고 또 의논이 그들과 같았으므로 또한 끌린 것이 이와 같아 공론의 비평을 받았으니 아깝다.

○庚戌 御朝講○傳曰臺諫所論不同當遞其一今日爲政事[中略]

○掌令金希壽柳溥等啓曰今聞金安國有書啓之事請見其書○弘文館副提學金謹思直提學金安老應教洪彥弼校理閔壽千副校理申光漢李清修撰尹止衡朴世燾博士尹自任著作任權正字鄭鷹奇遵等啓曰前者朴祥等上疏事狂悖故臺諫請罪而臣等則以爲言雖狂悖若抵罪則有妨言路請勿罪之然臺諫之請罪爲 宗社大計故臣等不以臺諫爲非今者大司諫大司憲持平獻納正言等皆 命適之此人等爲言路言之其言固是也然前臺諫之請罪金淨朴祥亦非無計也當人心危疑且未知 上旨而以大事故不得已啓之此人等一切非之旣過矣金希壽柳溥等不以前臺諫爲非者固是也今人心與上志皆定當開言路而反以爲言路論啓之光祖爲非亦過矣傳曰爾等以大司憲爲非又以掌令爲非予意以爲大司憲等非前臺諫過矣掌令等以趙光祖駁不非之臺諫爲過而非之未爲過矣大司憲等是則掌令等非也掌令等是則大司憲等非也豈有兩是兩非之事乎雖不可皆適然已登於物議掌令等亦不可行矣但以欲曉予意而言之耳○傳于政院曰弘文館以兩論皆非之掌令等亦不可在職當適之持平雖不專主於某邊而持兩端不可行也宜並適之希壽柳溥任樞等皆退○金謹思等更啓曰天下之事豈有兩是者乎若一事則是非固不難斷此事則分兩端而起故其是非如是其難斷矣以朴祥等爲非者爲 宗社計也以前臺諫爲非者爲言路也言路豈外於 宗社乎亦當爲 宗社開廣也李長坤金希壽等雖爲言路論啓而皆不免偏僻妨於言路有害於後兩皆失焉故皆可適也傳曰爾等以大司憲掌令皆爲一偏予意則不然大抵以一臺官攻衆臺諫若合於事則已矣不合於事則後臺諫亦當攻之是故柳溥等以光祖之駁前臺諫爲過而論之然已爲適矣又何爲乎[中略]

○傳于吏曹曰近來言士風者每曰躁進之習未殄此言甚是其所躁進之習非他銓曹於爲政注擬之際不審新舊故也如是而雖欲防躁進之習豈不難乎大抵新進之人雖有志氣諳歷之事必少旣未知朝章况能識得朝廷事體乎須待鍊達事體然後用之甚當久於歷任之人雖無顯咎而沉於下流出身未久者反居其右豈不非乎判書安瑯啓曰今聞下教之辭不勝惶恐臣意以爲有人於此雖資歷未久而弘文館臺諫可當之人則不可計先後進也若才器齊同官秩相准則當先用先進也史臣曰大司憲權敏手大司諫李荇等以朴祥金淨之疏指爲邪議至以言路爲小事力請拿致置於徒罪士林扼腕喪膽以言爲戒草野之士承求言之旨封事上來道聞朴祥之被罪畏縮而止者頗多其閉塞言路挫沮士氣如此於是上自公卿下至儒林莫不歸咎於敏手等唯檢詳李彥浩舍人柳溥金希壽之輩獨以敏手等之議爲得其意以朴祥之疏有關 宗社不暇計其言路其所請罪不得已以是嘗大唱於士林彥浩之輩出入清顯華要時人目爲名流故士類之中心無所主者頗惑其說眩於是非於是議論紛紜及趙光祖爲正言謝恩翌日奮然入啓曰言路通塞大關治亂臺諫職主言路而請罪言事之人先自閉塞又成 殿下拒諫之漸大失其職請皆罷

씨에 계주문(戒酒文)·영상김수동비(領相金壽童碑) 등이 전한다. 《朝鮮中宗實錄》《北渚集》

職 上難之不允光祖以此慷慨反覆啓達不已 上命使史官收議三公三公亦嘗不便於心故皆以光祖之議爲是於是乃 命盡遞朝論快之士林相慶但金希壽柳溥爲掌命君子之流陰恐其或沮抑公論又不得行也至是大司憲李長坤持平金城以爲光祖能開言路正合其意柳溥等果執前議深非光祖長坤反覆曉諭言事之不可罪言路之不可閉猶不變焉於是皆詣闕庭各達其意又以不可相容請避嫌 上意亦不悅光祖之議故亟 命爲政適差長坤等仍 命柳溥等行職於是言路重爲之塞士氣益喪幸賴弘文館之啓又適柳溥等故其說小寢焉然弘文之言亦不分辨指爲兩是其意蓋權敏手爲 宗社請罪趙光祖爲言路扶持也未始皆非故於是 上意猶疑惑之又大司諫金安國亦先弘文館而啓曰光祖爲言路持正論臣意亦同不可與柳溥等相容請避嫌又 命適之於是時議譏之曰長坤安國輩旣因衆心能主正論固宜力諍攻斥柳溥之輩確定是非使 上意堅定知言路之爲重勇持公論以扼朝廷之紀綱以通言路之旣塞此其機也顧乃不然各陳己意僅能塞責而避嫌如不及焉徒毀臺諫之風可勝惜哉彥浩爲人狷介自守不事產業此足可稱然氣量褊狹暗於大體苟察細瑣故意向一偏則執不從人終必遂非憚於從善是以嘗私忿朴祥之疏深許敏手之請罪雖聞君子之正論而蔽固已甚亦不能改至是又陰嫉光祖長坤之異己而深舍之柳溥本無定力心暗是非而惑於彥浩之議至啓以言路乃國之餘事致 上意輕忽言路幾誤國家得罪於萬世之公論彥浩爲之誤也金希壽爲人端厚平正士林推重但與彥浩柳溥相善而又與同議故亦牽而如是見譏於公論惜哉 《中宗實錄 卷23, 38面》

중종 10년 12월 3일(을묘)

정원(政院)에 전교(傳敎)하였다.

“요즈음 해수(咳嗽)로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시사(視事: 정사(政事)를 돌보다)하지 못한다. 내가 오래 경연(經筵)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온편치 못하게 여길 뿐 아니라, 군신(群臣)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 승지들은 내 뜻을 알아야 한다.”

○대사간 방유령·헌납 이원간·정언 허위가 아뢰기를,

“오늘 헌부(憲府)와 함께 의논해 보니, 논하는 바가 각각 다르므로 아뢰습니다. 대저,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에 관계됩니다. 구언한 뒤에 박상(朴祥) 등이 상소하였으니, 그 말이 지극히 광패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상께서 죄를 다스리시더라도 대간이 된 자로서는 구제해 풀어 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할 것인데, 도리어 죄를 다스리기를 힘껏 청하였으니, 이는 언로에 지극히 해롭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이처럼 중도(中道)를 벗어났으므로, 조광조(趙光祖)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뢰었습니다. 광조의 말이 지나치기는 하나, 그 뜻은 언로를 중하게 여겨 아뢰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옳은데도, 김희수(金希壽)·류부(柳溥) 등이 잘못된 생각으로 망령되

게 논하여 광조를 그르다 하니, 신등은 시비가 마땅함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곤(李長坤)·김안국(金安國)은 광조의 말을 옳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옳은 것이니, 누구를 재직하게 하고 누구를 체직하게 해야 마땅한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장곤의 무리를 남겨두고 희수 등을 갈아야 옳은데, 이제는 도리어 장곤·안국의 직을 갈고 김희수·류부 등은 갈게 하지 않으셨으니, 신등은 아마도 상께서 의향이 잘못되어 시비를 잘 모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일에는 양편이 다 옳거나 양편이 다 그른 이치가 없는 것인데, 헌부의 뜻은 권민수(權敏手)·이행(李荇) 및 조광조 등을 다 옳다고 하니, 이는 시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어서 본원(本院)의 뜻과 다릅니다. 근래 말하는 자가 다 양단(兩端)을 부지하여 시비를 정하지 않고서 아뢰매, 상의 뜻에 질충(折衷)할 바가 없어, 구언한 뒤에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간(臺諫)을 가셨으니, 아마도 뒷날 숨김없는 말로 지극히 간(諫)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언한 뒤에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신이 이미 아뢰었으므로 이는 시비가 분명한 것인데, 한때의 대간이 논집하여 애써 청하였다 하여 어찌 그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헌부도 그와 같이 말하니 옳지 않거나와 신등은 헌부가 그르다고 생각하여 아뢰니다. 신등이 대간이 서로 맞서는 것이 분요(紛擾)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헌부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부득이 아뢰니다.”

하고, 집의(執義) 성세창(成世昌)·장령(掌令) 홍언필(洪彦弼)·지평(持平) 박수문(朴守紋) 김인손(金麟孫)이 아뢰기를,

“전 대간권민수·이행을 가리킨다. 등이 어찌 언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국가의 중한 일에 언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니, 죄주기를 청한 것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구언한 뒤에 상소하였으면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고금의 정론(正論)이니, 그런 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조광조가 언로를 위하여 한 말은 옳기는 옳으나, 전 대간을 그르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중도를 잃은 것입니다. 사간원이, 권민수·이행이 언로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여 그르게 여기고, 류부 등의 말이 그르다 하여 아뢰었으나, 신등은 그들이 그르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삼공(三公)이, 당초에 언로를 열기 위하여 아뢰었으면 김정(金淨) 등을 파직하도록 아뢰지 말아야 하고, 광조의 말을 옳게 여긴다면 광조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먼저 아뢰었어야 옳습니다. 국론이 정해지지 못한 때에, 대신으로서는 시비를 결정하여 시종이 한결같이 하여야 정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남이 가리키는 데에 따라서 제 의논을 바꾼다면 국론이 어느 때에 가서 정해질 수 있겠으며, 상의 뜻은 어디서 바른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제 집에 물러가 앉아 있으니 재상의 체모가 아주 없습니다.”〔중략〕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경등의 말을 듣건대, 또 조광조의 말 때문에 서로 맞서니 매우 놀랍다. 어찌하여 조정에 이같이 큰 변이 있는가? 이는 국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대신이 조정의 큰 일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홍문관은 전 대간 권민수·이행 등이 죄주기를 청한 것을 그르다 하지 않고 조광조의 말도 옳다고 하였으므로 한편을 같고 한편을 그대로 두었으니 시비가 정해진 듯 한데, 홍문관은 양편이 다 그르다고 하니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기는 하나 시종(侍從)이 이미 다 논박받아 갈렸으니, 이제 대간이 된 자로서는 다시 논해서는 안 되는데, 또 각각 의논을 고집하므로 군정(群情)이 동요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였다.

○乙卯傳于政院曰近因咳嗽聲嘔之證不能視事予非徒以久未經筵爲未穩以不接群臣爲未安承旨等宜知予意○大司諫方有寧獻納李元幹正言許渭啓曰今日與憲府同議則所論各異故啓之大抵言路之通塞國家之治亂係焉求言之後朴祥等上疏則雖其言至爲狂悖所當優容設使自上治罪爲臺諫者所當救解以廣言路而反爲力請治罪此極有害於言路也其所爲如是其過中故趙光祖以爲不可而啓之光祖之言雖過越然其意重言路而啓之此甚是也而金希壽柳溥等錯計妄論以光祖爲非臣等則以爲是非之失當也李長坤金安國以光祖之言爲是此則是也其在職遶職之當否則存長坤之類而遞希壽等可也今乃反遶長坤安國之職而金希壽柳溥等則不使之遶臣等竊恐 上意指向之誤而不詳其是非也大抵事無兩是兩非之理而憲府之意以權敏手李荇及趙光祖等皆是也此則是非不明而與本院之意有異近來言者皆持兩端不定是非而啓之以此 上意無所折衷求言之後不可治罪云之臺諫遞之則恐他日無盡言極諫不諱之人也求言後不可治罪大臣旣已啓之此則是非判然而一時臺諫論執力請豈其可乎今憲府亦如此言之不可矣臣等以憲府爲非而啓之臣等非不知臺諫角立相異之爲紛擾憲府之論如是不得已啓之○執義成世昌掌令洪彦弼持平朴守紋金麟孫啓曰前臺諫指權敏手李荇等豈不計言路但以國家重事不暇計言路也其請罪不爲非矣以求言後上疏則不可治罪爲言者此古今之正論也此論不可使之無也趙光祖爲言路之言是則是矣然以前臺諫爲非而請罪此乃失中矣司諫院以權敏手李荇爲不計言路而非之以柳溥等之論爲非而啓之臣等不知其非也三公初爲開言路而啓之則不當以罷金淨等職爲啓也若以光祖之言爲是則當不待光祖之言而先啓之可也當國論未定之時爲大臣者決定是非終始如一然後可以定之若隨人指向而變其議論則國論何時而可定 上意於何取正乎安然退坐其家殊無宰相之體矣[中略]臺諫曰今聞卿等之言又因趙光祖之論相爲角立甚爲驚愕朝廷大變何有如是者乎此國是不定而然乎大臣知朝廷大事不辨是非而然乎弘文館不以前臺諫權敏手李荇等請罪爲非而光祖之言亦是一遞一存是非似定弘文館以爲兩皆非也予未之知也雖然侍從已皆駁遶則今爲臺諫者不可更論也而又各執義論群情搖動是何意乎

《中宗實錄 卷23, 42面》

중종 10년 12월 4일(병진)

○대사간(大司諫) 방유령(方有寧)·헌납(獻納) 이원간(李元幹)·정언(正言) 허위(許渭)가 아뢰기를,

“대간으로서 반드시 국시가 정해진 뒤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에 국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취직하면 반드시 물의가 있습니다. 어제 분부하시기를, ‘내 의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신은 전전 대간과 김희수(金希壽)·류부(柳溥)가 아뢰는 바는 언로에 방해가 되고, 조광조(趙光祖)·이장곤(李長坤)이 아뢰는 바는 언로를 넓히기를 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께서는 언로에 방해가 되는 자를 옳게 여기고, 언로를 열기를 청한 자를 그르게 여기시어, 장곤 등을 가셨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곤·광조의 직을 그대로 두고 김희수·류부를 가셨더라면 시비가 정해질 수 있었거니와, 누가 잡된 의논을 하였겠습니까? 김희수·류부가 각각 소견을 고집한 것은 지극히 그런데, 상께서는 이 사람들을 옳게 여기시고, 또 홍문관이 아뢰는 바가 양단(兩端)을 유지하여 가부를 정하지 않아서 상의 의향이 좇으실 바를 결정 못하였으니, 신은 이 때문에 상의 의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분부하시기를 ‘대신이 시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셨으나, 신은 전에 대신이 박상 등을 파직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니, 이제 다시 묻지 않더라도 시비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광조가 아뢰는 바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림(士林)의 공론이므로, 한때 혼자 아뢰기는 하였으나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상께서는 옳지 않다고 여기시니, 신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원(本院)의 직임은 간(諫)하여 바로 잡는 데에 있는데, 상께서 언로에 방해가 되게 아뢰는 것을 옳게 여기시므로, 신등이 분요(紛擾)한 줄 알면서 부득이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박상 등의 소(疏)의 뜻을 그르게 여겼으므로 파직을 청하였고, 죄주기를 청한 대간을 그르지 않게 여기므로 논하는 바가 없거니와, 대신은 이미 그 시비를 아는데 어찌하여 조광조가 정언(正言)이 되기를 기다렸겠는가? 광조가 정언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신이 이 시비를 몰랐겠는가?”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류순(柳洵)·좌의정(左議政) 정광필(鄭光弼)·우의정(右議政) 김응기(金應箕)·우찬성(右贊成) 김전(金詮)·우참찬(右參贊) 남곤(南袞)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근래 대간의 일을 보니 매우 요란하다. 이는 곧 조정의 큰 변고이니 경등이 어찌 염려하지 않겠는가! 전전 대간이 박상(朴祥)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은 그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광조가 정언이 되어서는, 전전 대간이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다고 아뢰어 드디어 논박하여 갈게 하였다. 이는 지나치므로, 후 대간 류 부(柳溥)가 이를 논할 즈음에, 이장곤(李長坤) 등이 광조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그래서 홍문관이 논계하기를 ‘이장곤 등이 잘못이 없는 대간을 논박한 광조를 옳다고 하였으므로 이 말은 편벽되고, 류부 등이 언로를 위하여 말한 그들을 일체 그르다 하였으므로 이 말도 편벽되니, 그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제 대간이 된 자로서는 다시 논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간원(諫院)은 광조의 말이 옳다 하고, 헌부(憲府)는 전전 대간이 그르지 않고 조광조도 그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맞서서, 간원은 내가 잘못 처리하였다 하고, 대관(臺官)은 이러한 큰 일을 대신들이 물러가 앉아서 시비를 논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광조가 대간을 논박한 것이 지나치다는 생각에는 시종 변함이 없다. 다만 간원이 잘못이라고 하므로 대신들에게 묻는다.”

하매, 류순이 홀로 아뢰기를,

“대간이 갈려서 서로 시비하는데, 신은 이것이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전 대간의 뜻은, 박상 등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말을 하였으므로 죄주기를 청한 것이고, 언로를 위하여 아뢰는 자는 구언(求言)한 뒤에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신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상 등은 일을 말하였는데, 도년(徒年)의 죄를 받았으니, 버려두게 하면 인심이 쾌하게 여기겠으나, 신은 다만 과출(罷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광필·김응기·김전·남곤 등이 아뢰기를,

“이장곤 등이 조광조를 옳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옳습니다. 류부 등은 조광조를 그르다고 하였으나, 광조의 말이 지나친 듯할지라도 대간이 된 자로서는 너그러이 용납하자고 말해야 할 것이요, 그르다고 해서 안 되니, 류부 등이 매우 잘못이거니와, 그래서 다 같았습니다. 지금 10분 중에서 1분이라도 그 그른 것을 다 말하지 못한 것을 시비하는 것은 옳으나, 다 옳다고 해서 안 됩니다. 신은, 이것으로 시비를 생각하면 대간의 거취는 따라서 알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박상·김정(金淨)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간이 맞서 있으므로 그 처치를 묻는 것이다.”

하매, 류순 등이 다시 아뢰기를,

“김정·박상의 일에 대하여 신등이 근본을 따져서 아뢰는 것은, 그 시비를 정해서 대간의 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전 대간이 김정 등의 일에 대하여 과중하게 논계하였으니, 이것이 10분 중에서 1분의 미진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양편이 다 옳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미진한 것을 말한 자는 그 직에 그대

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뚜렷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주장하는 뜻이 있으니, 그 뜻으로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丙辰○大司諫方有寧獻納李元幹正言許渭啓曰爲臺諫者必國是已定然後可以就職若國是未定而就職則必有物論矣昨教云未知予指向之誤也臣意前前臺諫與金希壽柳溥所啓則有妨言路趙光祖李長坤所啓則請廣言路而上以有妨言路者爲是以請開言路者爲非而適長坤等臣意存長坤光祖之職而適金希壽柳溥則是非可定孰有雜議乎金希壽柳溥各執所見至爲非矣而上乃以是人等爲是且弘文館所啓持兩端無可否而上莫適所從臣以是謂上之指向之誤矣昨教云大臣不定是非臣意前者大臣已請勿罷朴祥等今雖不更問而此則是非已定矣趙光祖所啓非一人之論乃士林公論也雖一時獨啓實出於公論而上以爲不是臣意未穩也本院之任在諫諍格正而上以所啓妨於言路者爲是故臣等雖知紛擾而不得已啓之傳曰大臣以朴祥等疏意爲非故請罷職以請罪臺諫爲不非故未有所論大臣既知其是非何待於趙光祖之爲正言乎若非光祖爲正言大臣不知此是非乎○領議政柳洵左議政鄭光弼右議政金應箕右贊成金詮右叅贊南袞承命詣賓廳傳曰近觀臺諫之事甚爲擾亂此乃朝廷大變卿等豈不慮乎前前臺諫請罪朴祥等意未爲非也而趙光祖爲正言乃啓曰前前臺諫陷君不義遂駁適此過中故後臺諫柳溥等論此之際李長坤等以爲趙光祖之言是也於是弘文館論啓李長坤等以光祖駁無所失之臺諫爲是此言偏僻也柳溥等以彼爲言路之言一切非之此言亦偏僻也不可在其職也云今爲臺諫者不宜更論而諫院則以光祖之言爲是也憲府則啓曰前前臺諫不非也趙光祖亦不非也如是角立而諫院則乃以予爲誤處之也臺官則乃曰以如是大事而大臣等退坐不論是非予則自初以光祖之駁臺諫爲過中終始不可變也但諫院以爲誤故問于大臣等柳洵獨啓曰臺諫見違而相爲是非臣意此爲兩條之事也前前臺諫之意以朴祥等爲關係宗社之言故請罪其爲言路而啓者以求言之後不可治罪臣意皆是也朴祥等言事而受徒年之罪若令放棄則人心快矣臣意只罷黜可也鄭光弼金應箕金詮南袞等啓曰李長坤等以趙光祖爲是此亦是矣柳溥等以趙光祖爲非光祖之言雖似過焉而爲臺諫者則當以優容爲言不可謂之非也柳溥等甚失矣乃皆遞之今之是非於十分雖有一分未盡言其非者乃是也不可皆謂之是也臣之意以此而爲是非則臺諫去就從可知矣傳曰予非問朴祥金淨事也今臺諫角立故問其處置耳柳洵等復啓曰金淨朴祥事臣等推本而啓者欲定是非以定此臺諫耳前前臺諫之於金淨等事過重論啓此於十分有一分未盡處也安有兩是之事乎言其未盡者存其職可也傳曰雖不顯言然有主意當以此察而處之

《中宗實錄 卷23, 44面》

중종 11년 1월 14일(병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지금 국가에 종친(宗親)의 수가 아주 많아서 호조가 녹(祿)을 나누어 주기 어려우므로 재감(裁減 : 재량하여 줄이다)하고자 하되, 조종조(祖宗朝)의 일이어서 차마 줄이지 못하나 상께서는 재단하셔야 할 듯합니다.[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족(九族)²⁵²에게 친선을 도탑게 하라는 말은 지당하다. 조종조에서는 제군 및 종친을 자주 접견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때때로 접견해야 하겠다. 또 백관(百官)을 수행(隨行)하게 하여 조정의 예모를 알게 하는 것도 좋겠다.”[중략]

대사헌 이계맹(李繼孟)·헌납(獻納) 신광한(申光漢)이 이장생(李長生)·홍혼(洪混) 등의 일을 아뢰고 또 박상(朴祥) 등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동지사(同知事)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박상 등이 말을 잘못하였으나, 사람들은 다 말 때문에 죄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士氣)가 꺾이는 것은 정치의 득실(得失)에 관계되니,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청(李清)·사경 임권도 이를 극진히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상 등을 어찌 문득 놓아 줄 수 있겠는가?”[중략]

하고, 광한이 아뢰기를,

“대간은 언책(言責)을 맡은 자입니다. 상세(上世)에서는 사람마다 다 진언하였으므로 빠뜨리고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나, 후세에서는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부득이 대간의 벼슬을 두어서 언론을 책임지웠으니, 대간은 오직 언로를 위하여 아뢰는 것인데, 전 대간 중에 언로가 사직(社稷)²⁵³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자류부(柳溥)가 그렇게 말하였다. 가 있으니, 지극히 잘못입니다. 임금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라야 하거니와, 근일 언로가 오래 막혀 있으니, 상 등을 빨리 용서하여 언로를 여소서.”

하고, 특진관(特進官) 권균(權鈞)도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날 저녁에 내전(內殿)에서 제군(諸君)을 인견(引見)하니, 곧 광필의 말에 감동된 것이다. 상이 종실(宗室)에 대하여 법으로 단속할 뿐이고 우애하고 친친(親親)하는 도리가 적어서 당시의 의논들이 애석하게 여기므로 광필이 언급하였으니, 체모를 잘 아는 일이라 하겠다.

○丙申 御朝講領事鄭光弼曰今國家宗親之數至多戶曹難於頒祿雖欲裁減而 祖宗朝之

252) 구족(九族) : 아홉 가지 친족(親族). 고조(高祖)로부터 현손(玄孫 : 4세손)에 이르는 친족. 이 밖에 이성(異姓)을 포함한다는 설(說)도 있다.

253) 사직(社稷) : ① 나라 사(社)는 토신(土神) 직(稷)은 곡신(穀神)으로 임금이 될 때는 사직을 세우고 제사하여 나라의 존망을 같이 한데서 온 말. ② 왕조의 주권.

事不忍減損自 上則疑可裁制也[中略]

上曰敦叔九族之言至當在 祖宗朝屢接諸君及宗親今則不然宜可以時接見矣且使隨行百官中使知朝廷禮貌亦可也[中略]

大司憲李繼孟獻納申光漢啓李長生洪混等事又請宥朴祥等同知事南袞曰自 上卽位而來未嘗有以言獲罪者朴祥等雖失言然人皆以爲以言獲罪矣士氣之摧挫關於政治之得失請從臺諫之言侍讀官李清司經任權亦極論之 上曰朴祥等豈可遽放[中略]

光漢曰臺諫受言責者也上世人人皆進言故無闕失之事後世無敢言之人故不得已設臺諫之官而以言爲責臺諫只爲言路而啓之前臺諫有以言路爲 社稷之外者柳溥所言也至爲失矣人主當捨己從人近日言路久塞須速赦祥等以開言路特進官權鈞亦請宥之 上不答史臣曰是夕引見諸君於內殿乃感光弼言也上之於宗室但以法繩之而已少友愛親親之道時議惜之故光弼及之可謂得體

《中宗實錄 卷23, 59面》

중종 11년 2월 7일(무오)

상이 춘당대로 나아가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관람했다.

○이계맹(李繼孟)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박열(朴說)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허굉(許礩)을 전라도 관찰사로, 정수강(丁壽崗)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김양진(金楊震)을 집의(執義)로, 류부(柳溥)를 사간(司諫)으로, 이원간(李元幹)·홍언필(洪彦弼)을 장령(掌令)으로, 신필주(辛弼周)·윤지형(尹止衡)을 지평(持平)으로, 채침(蔡忱)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戊午 上御春堂臺觀武臣射○以李繼孟爲議政府左參贊朴說爲司憲府大司憲許礩爲全羅道觀察使丁壽崗爲禮曹參議金楊震爲執義柳溥爲司諫李元幹洪彦弼爲掌令辛弼周尹止衡爲持平蔡忱爲獻納

《中宗實錄 卷24, 4面》

중종 11년 2월 11일(임술)

조참(朝參)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박열이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시종이 긴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공박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그 직임에 안거하지 못하게 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홍문관이 또 아뢰기를 ‘경연관에게 공함(公緘)을 독촉했다.’ 하지만,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추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함을 내어 추고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로 헌부를 모두 체직하기를 아뢰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청 등은 본관(本館)을 더럽혔으므로 다시 경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심히 옳지 못한 의논입니다. 조정에 어찌 이와 같은 풍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름지기 체직시키고 추고하고서.”

하고, 사간(司諫)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홍문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잘못이라고 해야 하고 대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역시 스스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일에 헌부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홍문관이 욕을 당하였다고 한다 하나, 법사가 혹 추고할 일이 있으면 비록 1품 재상이라도 반드시 공함을 내어 추고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욕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격(忿激)한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약의 신하가 된 자는 임금의 덕을 보양하여야 하는 것이며,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청 등에게 욕을 당하였다 하여 다시는 경약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하니 이는 이청 등의 잘못보다도 더 심한 잘못입니다. 어찌 이같은 잘못을 범하고서도 경약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하고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긴하지 않은 일로 시종·대간이 서로 공박하고 있으니, 사체에 어찌 이같은 수가 있겠는가? 당초에 대간이 하찮은 일로 시종을 공박하였고 시종도 또한 대간을 공박하였으니, 양쪽이 모두 잘못이다. 홍문관이 진실로 대간을 공박하려면 마땅히 익히 헤아린 뒤에 해야 할 것인데, 이같이 경솔하게 행동하였으니 진실로 잘못이다. 그러나, 만약 체직하려면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매, 박열이 아뢰기를,

“조방언·김감 등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닌데도 장옥의 아됨이 이같으니,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장옥이 동관(同官)을 정면으로 공박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일은 모름지기 징계하여 부박(浮薄)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같은 풍조는 조광조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조광조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일이 이와 같다면 비록 1인으로서도 의당 공박할 수 있겠으나, 하찮은 일로 1인이 공박한 것을 가지고 대간을 모두 체직하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다.”

하매, 류부가 아뢰기를,

“중요한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을 평정하게 가지지 못하여 분격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은 크게 사체를 손상한 것이니, 체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壬戌受朝參 御朝講大司憲朴說曰近來臺諫侍從以不緊之事相攻使臺諫不得安其職任

豈爲美事弘文館又啓以經筵官出公緘督促云雖宰相推考則必出公緘而推之豈以此而至啓盡違憲府乎以李清等爲汙辱本館不可復入云此甚不正之論也朝廷之上何有如是之風乎此人等請須違而推之司諫柳溥曰弘文館若有所失則當自以爲非臺諫若有所失則亦不可自以爲是前日憲府非失而弘文館以爲窘辱云云法司若有推考事則雖一品宰相亦必出公緘推之以此爲窘辱出於忿激爲經幄之臣者當輔養君德先正其身可也以李清等爲受辱不可復入經幄云此尤甚於李清等之所失豈可如是而在經幄乎請違而推之 上曰近來以不關之事侍從臺諫相攻事體豈如是乎當初臺諫以不緊事而攻侍從侍從亦攻臺諫兩失之矣弘文館果若攻臺諫則當熟計爲之而如是輕舉固爲非矣然若違之則人物之乏亦不可不計只使知其所失可也朴說曰趙邦彥金城等言不至失而張玉之啓如是至爲非矣鄭光弼曰張玉直攻同官未知其意如此之事須懲之使不肯爲浮薄之事可也 上曰此風自趙光祖而始然非只光祖也前亦是事若是則雖一人宜可攻駁也不緊之事而以一人之攻至於盡違臺諫甚不可也柳溥曰以非重事而不平正其心憤激啓之大失事體不可不違也 《中宗實錄 卷24, 8面》

중종 11년 2월 14일(을축)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부(柳溥)·지평 윤지형이, 신옥형·이장생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윤택하지 않았다. 지형이 아뢰기를,

“이제 국상(國喪)을 당하여 조정에서 크게 의례(儀禮)에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의주(儀註)』에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은 모두 화려한 장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라는 것은, 금수(錦繡)·금옥(金玉)·주취(珠翠)인데 재상들이 모두 청장니(靑障泥)를 달고 옥관자(玉貫子)를 붙였으니, 이는 모두 화려한 장식이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니,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화려한 장식에 대한 일은 당초에 신등이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청장니는 선왕조에서도 또한 개정하지 않았으며, 신등도 이미 일찍이 의정(議定)하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최복(衰服) 중에 이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으니, 법사(法司)에서 스스로 마땅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乙丑 御朝講司諫柳溥持平尹止衡啓申玉衡李長生等事 上不允止衡曰今國恤之時朝廷有大失儀之事儀註內宗親文武百官皆去華飾華飾云者乃錦繡金玉珠翠而宰相等皆懸靑障泥着玉貫子此皆華飾也所當改正領事鄭光弼曰華飾事當初臣等未及計料但靑障泥自先王朝亦不改之臣等已嘗與議定矣華飾云者未知其何物也 上曰衰服中如是則似不可也

法司自當糾之也

《中宗實錄 卷24, 10面》

중종 11년 2월 19일(경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부(柳溥)·지평 윤지형이 이장생·신옥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지형이 아뢰기를,

“대간은 매양 인물을 논박할 뿐이고 아름다운 말이나 훌륭한 계략을 진달한 것이 일찍이 없었으니, 마땅히 때때로 대신을 맞아다가 정치를 강론하고 경연관(經筵官)도 불시소대(不時召對)하여 고금의 득실(得失)을 구문(究問)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선왕이 하시던 일인데 전폐하고, 경연에서도 글귀만 읽는 것을 일삼을 따름입니다. 상참(常參)과 조계(朝啓)도 구차하게 상례(常例)만을 따르니 이려고서도 근정(勤政)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알(女謁)은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일입니다. 임금의 항상 내전(內殿)에 있을 때가 많고 밖에 나와 있을 때가 적으니, 전후 좌우가 모두 올바른 사람만이어야 합니다. 안에 있을 때가 항상 많으면 아름다운 말과 훌륭한 정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 덕성(德性)을 배양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 마음이 바르면 무슨 일인들 바르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먼저 임금의 마음을 고치고 그 일을 바로 잡으리라.’ 하였으니, 임금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서 일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말단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심히 옳다. 환관·궁첩을 가까이 할 때는 많고 여진 사대부(士大夫)를 접할 때가 적으면 나라 일이 그릇될 것이다. 요즈음 과연 사고가 있어서 오랫동안 경연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위에서 어찌 묻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에서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로 논란(論難)하는 것이 가하다.”〔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비록 없다고는 하나 혹 있을지도 모르니, 살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성탕 육책(成湯六責)에도 여알을 제일 먼저 들었으니, 이는 더욱 더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관을 불시소대(不時召對)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나 다만 경연이 있을 때에는 절로 삼시(三時) 접견하게 된다.”

하매, 동지사 남곤이 아뢰기를,

“대신을 접견할 때에는 예모를 차려야 하기 때문에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만, 시

종(侍從)하는 신하라면 일이 있을 때마다 논란하게 되므로 평상복으로 접견하여도 무방하니, 반드시 진강하는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라도 그에 따라 치란과 득실을 강론하면 크게 유익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즈음 과거의 규정이 자못 쇠퇴하여 옛날과는 크게 다릅니다. 과장(科場)에서 몰래 책을 끼고 들어가는 것을 수색하는 것은 오히려 말단이고, 강경(講經) 시험에 한 사람이 통(通)도 되고 조(粗)도 되어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 매우 고르지 못하니, 강경할 때에 유생(儒生)으로 하여금 시관(試官)의 얼굴을 못보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공도(公道)는 오직 과거 뿐인데 이렇게 사정(私情)을 용납하면 되겠는가? 제술(製述)할 때에 봉미(封彌)·역서(易書) 등의 일은 모두 공정을 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강서(講書)하는 일은 법전(法典)에 있으므로 경장(更張)하기 어려울 듯하니 의논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庚午 御朝講司諫柳溥持平尹止衡啓李長生申玉衡等事不允止衡曰臺諫每只論駁人物而已未嘗有嘉言善謀宜以時迎訪大臣講論政治而經筵官亦不時召對究問古今得失可矣先王所爲之事全廢不爲經筵亦只事句讀而已其以常參朝啓苟循常例之事而謂之勤政可乎女謁最可戒也人君處內時常多處外時常少左右前後無非正人可也在內時常多則嘉言善政無得而聞薰陶德性其可異乎人君正心爲大心若正則何事不正乎古云惟先格王正厥事不正君心而欲正厥事末也 上曰所言甚善親宦官宮妾之時多接賢士大夫之日少則國事日非矣近果有事故經筵久未得御然若有所議則上豈不問下亦豈不言哉果相與論難可也[中略] 柳溥曰雖曰無矣當恐其或有而省念可矣成湯六責先以女謁稱之此尤所致慮者也 上曰經筵官不時召對固宜也但有經筵時則自有三時接見矣同知事南袞曰見大臣則有禮貌不宜容易若侍從之臣則每遇事論難以衰服接見不必進講之書雖某書因此而講論治亂得失則亦大有益也且近來科舉頗有陵夷大不如古場中搜挾猶爲末事如講經時出柱或通或粗有大相絕甚不均平講經時使儒生不得見試官之面何如 上曰國家公道惟科舉而已其容私情若是製述時封彌易書等事皆欲公正而然也講書事在法典似不可更張可議而爲之

《中宗實錄 卷24, 11面》

중종 11년 2월 22일(계유)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부(柳溥)가 이장생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기신재는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신령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부처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려(高麗)의 사대부는 기일(忌日)이면 반드시 절에 올라가 중에게 재를 올리고 부처에게 공양을 올렸으나, 아조에는 정교(政教)가 아름답고 밝아서 사대부의 집에서도 오히려 이런 일은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처가 정말로 이런 영험을 베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적(夷狄)의 종교(宗教)이니 어찌 차마 부처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이것은 허무한 일임에러이까! 세종 대왕은 우리 나라의 성주(聖主)이십니다. 말년에 안질 때문에 내불당(內佛堂)을 지었는데, 그때 집현전(集賢殿)에서 이를 논하자 세종께서 어느날 불러들여 면대(面對)하시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시며 이르기를,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되, 행여 명복이 있을까 하여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감히 하였다.’ 하시므로, 집현전에서 말리지 못하여 성덕(聖德)에 누(累)가 된 것입니다. 상께서는 크게 유위(有爲)한 자질로서 어찌 차마 이런 허무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즉시 통쾌하게 혁파(革罷)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마땅히 한 나라로 집을 삼는 법인데, 어찌 따로 내수사(內需司)를 설치하여 사사로이 축재를 하십니까? 장리놀이를 하는 것은 폐단만 있을 뿐이 아니라, 임금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재물을 늘이기만 힘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국가로써 본전(本錢)을 두고 변리 취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산 밑에 있는 인가와 궁궐에 바짝 다가서 있는 집은 마땅히 헐어야 할 것이나, 과히 가깝지 않은 집과 풍수설(風水說)에 의하여 헐게 된 것은, 비록 그 법이 있더라도 허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중략]

특진관 권균(權鈞)은 아뢰기를,

“이제 봉은(奉恩)·봉선(奉先) 두 절에서 예조에 보(報)하여 차비승(差備僧)을 보내달라 청하니, 예조가 외방(外方)에 이문(移文)하여 올려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추쇄(推刷)하더라도 모두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일을 없애면 중의 근본이 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비록 선왕·선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는 하나, 한갓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 성치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조원기(趙元紀)·시독관 류관도(柳觀道) 기신재는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癸酉御朝講司諫柳溥啓李長生事仍啓忌晨齋以 祖宗在天之靈沐浴拜佛安有如此事乎前朝士大夫以忌日必上寺齋僧飯佛我朝則治教休明雖士大夫家尚不爲此事而國家獨爲之假使佛真有是事是乃夷狄之教安忍拜佛乎況是虛無之事乎 世宗我東方聖主末年因眼暗營內佛堂其時集賢殿論之 世宗於一日召入面對至於墮淚曰非不知其虛僞也恐幸有冥福故知其不是而敢爲之集賢殿不能請止以累聖德今 上以大有爲之資安忍爲此虛無之事乎須卽痛快革罷可也人主當以一國爲家安可別設內需司以爲私蓄乎長利歛散非但有弊以人主而行歛散似爲殖貨豈可以國家而爲存本取利之事乎今山底人家其臨壓切近於闕則在所當撤也其非切近者及以風水之說而應撤者雖有其法撤之未便[中略]

特進官權鈞曰今奉恩奉先兩寺報禮曹請送差備僧禮曹移文于外方使之上送如此則雖有推刷可使盡無乎若無此事則僧之根本自絕之矣雖云爲 先王先后而設非徒無益又累於 聖治特進官趙元紀侍讀官柳灌亦啓忌晨齋不可不革不納

《中宗實錄 卷24, 14面》

중종 11년 3월 7일(경인)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 박열(朴說)·집의 김양진(金楊震)·사간(司諫) 류부(柳溥)·특진관 안당(安瑒)·이장곤(李長坤)·참찬관 이자화(李自華)·시독관 류관(柳灌)·전경 이약빙(李若氷)이 기신재(忌晨齋)의 혁파를 청하고, 열곧 대사헌이다. 양진·부 등이 또 장리(長利)의 혁파 및 이장생(李長生) 일을 아뢰니, 장생은 체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영사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기신재 때 판자(板子)로 신주를 만들어 백평상(白平床)이나 백의자(白椅子)²⁵⁴ 위에다 놓고 지전(紙錢 : 종이로 만든 돈이다)으로 사방을 모두 두르고 못 중들이 둘러서 징과 북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신주를 맞아 들이는데, 불상(佛像)은 위로 법당에 있고 신주는 아래로 방에 있게 되니, 이것이 더욱 상서롭지 못합니다. 대왕(大王)으로서 승사(僧舍 : 절을 뜻함)에서 제사하는 것도 이미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왕후의 신위를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왕후의 신령이 만드시 놀라서 결코 흠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인효(仁孝)와 성경(誠敬)의 뜻이겠습니까? 종묘에서는 궁위령(宮闈令 : 궁중 관원의 직명)이 왕후의 신주를 받드는데, 기신재 때는 중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니 될 일입니까? 또 내수사(內需司)는 노비들의 신공(身貢)²⁵⁵으로도 쓰기가 족한데, 어찌 꼭 장리를 해야 합니까?”

하엿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庚寅 御朝講同知事朴說執義金楊震司諫柳溥特進官安瑒李長坤叅贊官李自華侍讀官柳灌典經李若氷請罷忌晨齋說即大司憲楊震溥等又請革長利及李長生事 命適長生餘不允領事金應箕曰忌晨齋時以板爲神主置之白平床白椅子之上四面皆匝以紙錢羣僧圍立亂擊錚鼓迎入神主佛像在法堂神主在下室此尤不祥以大王而祭於僧舍固已不可况王后神位乎王后神靈必至於駭愕決不歆格此豈近於仁孝誠敬之意耶其在 宗廟則宮闈令官職名奉王后神主忌晨齋則令僧奉之可乎且內需司奴婢身貢亦足用何必長利也皆不允

《中宗實錄 卷24, 23面》

254) 백평상(白平床)·백의자(白椅子) : 아무 장식을 하지 않은 민 평상과 의자.

255) 신공(身貢) : 노비들로부터 징수하는 공부(貢賦)의 한 가지. 신역(身役)의 댓가로 받는 것인데, 공천(公賤)으로 독립 가정을 가진 외거 노비(外居奴婢)의 노(奴)는 매년 포(布) 1필, 저화(楮貨) 20장, 비는 포 1필, 저화 10장을 바치고, 사천(私賤)으로 독립 가정을 가진 사노(私奴)는 면포 2필, 사비는 1.5필을 바쳤다.

중종 11년 4월 13일(갑자)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부(柳溥)·장령 이원간(李元幹)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좌우에서 종묘(宗廟) 제향 때 조출하지 못했던 폐단을 아뢰고 시독관 박수문(朴守紋)이 아뢰기를,

“무릇 능침(陵寢)을 관찰사가 항시 적간(摘奸)합니다. 그러나 자주 적간한 연후에야 소심(小心)하게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경연에서 종묘의 포진(鋪陳)·지의(地衣)²⁵⁶ 및 잡물(雜物)이 누후하고 훼손되었다 하니 예조로 하여금 다시 만들도록 하고, 봉상시(奉常寺)의 제복(祭服)도 다시 만들도록 하라. 내가 잠저(潛邸: 임금되기 전을 뜻함)에 있을 때 자주 헌관(獻官)이 되었었는데, 봉상시의 제복이 지극히 누후하고 심한 악취가 풍겨 내가 일찍이 미안하게 여겼었다. 또한 봉상시 공상(供上) 때는 관원이 친히 진배(進排)해야 하는데, 단지 노자(奴子)들만 보내니 이 역시 불가한 일이다. 이 뒤부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나도 때때로 적간하겠으니 미리 효유하라.”

○甲子 御朝講司諫柳溥掌令李元幹啓前事不允左右啓 宗廟祭享不潔之弊侍讀官朴守紋曰凡陵寢觀察使常摘奸矣然數數摘奸然後庶可小心供事矣○傳于政院曰今日經筵有宗廟鋪陳地衣及雜物汚毀者其令禮曹改造奉常寺祭服亦令改造予在潛邸時常爲獻官而着奉常寺祭服至爲汚陋多有穢臭予嘗以爲未安且見奉常寺供上時官員躬親進排而只送奴子此亦不可自今以後勿復如是予亦時時自摘奸矣其先諭之 《中宗實錄 卷24, 37面》

중종 11년 4월 25일(병자)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부(柳溥)·장령 이원간(李元幹)이 기신재 및 내수사 장리의 혁파를 청하고, 한 급의 탐장죄는 고치지 말기를 청하였으며, 임유겸·심광손·김한홍의 직을 개정하기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원간이 아뢰기를,

“박상(朴祥) 등은 구언(求言)함에 따라 상소한 것인데, 한 말이 비록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요사이 상소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전번에 모두들 놓아 주기를 청하다가 중지하고 아뢰지 아니함은, 성상께서 놓아 주라고 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의주(義州) 성을 당초에는 유방(留防)하는 군사들로 쌓아 왔으니 이는 좋은데, 다만 농사 틈에 연호군(烟戶軍)²⁵⁷을 징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는 모자라지

256) 포진(鋪陳)·지의(地衣) : 포진은 바닥에 까는 방석·요·돛자리 따위. 지의는 가장자리는 형 겹으로 꾸미고 연폭(連幅)하여 크게 만든 제사 때 쓰는 돛자리.

만 이미 유방하는 사람들로 성을 쌓도록 하였는데, 또 추수한 뒤에 연호군을 뽑아 겨울 석 달을 부역(赴役)하도록 한 다음 2월 중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므로 이 때문에 평안도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장차 이산(離散)하게 되었으니, 신의 생각에는 단지 유방군만 역사시키고 연호군은 징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 평안도의 군읍(郡邑)은 거개 무반으로 수령을 삼아, 수령들이 10월에 부방(赴防) 나가면 석 달을 지내고 삼월이 되어서야 본읍으로 돌아가는데, 일이 번다한 고을에선 공사(公事)가 적체되고 또 백성의 원통한 일을 펴주지 못하니, 신의 생각에는 방어가 필요한 곳에는 경중(京中)의 무신을 가려서 보내고, 그 도의 수령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전에 평안도는 수령으로 조방장(助防將)을 삼지 않았는데, 근자에는 많이 입방시켜 가을부터 겨울을 나기까지 본 고을 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반 년이나 되어 이 때문에 고을 일이 많이 방치되니, 류부의 말이 옳습니다. 또한 감사가 차사원(差使員)을 삼기 때문에 더욱 본 고을 일을 보지 못하게 되니, 신은 병사(兵使)에게는 원래 군관(軍官)들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을 부방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을 단번에 쌓는다면 마땅히 연호군을 사용하여야겠지만, 이는 해마다 쌓아가는 것이니 연호군을 부림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조방장을 보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수령이 백성 일을 또한 폐할 수도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짐작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丙子 御朝講司諫柳溥掌令李元幹請罷忌晨齋及內需司長利請勿改韓汲贓罪請改正任由謙沈光孫金漢洪不允元幹曰朴祥等因求言上疏所言雖失至於受罪故近無有上疏者頃者皆請放釋中止不啓者待自 上命放也柳浮曰義州城初以留防軍士築之此則可也但於農隙調發烟戶軍數小人物旣以留防而築城又於秋成以烟戶抄發冬三朔赴役後二月間還歸今年如是明年又如是由是平安道人蕩盡家產將至離散臣意只役留防軍而勿發烟戶軍可也且平安道郡邑多以武班爲守令其守令於十月赴防而過三朔至三月乃還本邑若事煩之邑則公事積滯又不得伸決民寃臣意防禦緊急之處則擇遣京中武臣不須遣其道守令領事鄭光弼曰古則平安道不以守令爲助防將近者多使入防故自秋經冬不得顧本邑事者半歲矣由是官事多廢柳溥之言是矣且監司亦以爲差使員故尤不得治事於本邑臣意兵使自有軍官可令此人赴防也若一舉築城則當用烟戶軍此則逐年以築役烟戶軍不可矣 上曰助防將雖不可不遣然

257) 연호군(烟戶軍) : 각호(各戶)에 배당되어 부역에 나가는 인부. 연호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곧 빈집이 아닌 일반 인가라는 뜻.

守令之於民事亦不可廢也其令監司斟酌爲之

《中宗實錄 卷24, 49面》

중종 11년 5월 8일(무자)

조강(朝講 : 아침에 여는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예기(禮記)」를 강독하였다. 상이 ‘군자가 백성을 화육(化育)하여 좋은 풍속을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학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분부하기를,

“근래 풍속이 예와 같지 아니하여 학교가 퇴폐하였다.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은 원래 위에서 어떻게 전이(轉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나, 학교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내가 그 육성하는 방도를 다하지 못함을 매우 염려한다.”〔중략〕

○영의정 정광필 · 좌의정 김응기 · 우의정 신용개 · 좌찬성 김전(金詮) · 좌참찬 이자건(李自健) · 우참찬 남곤 · 대사헌 조원기(趙元紀) · 부제학 이행(李荇) · 사간 류부(柳溥)를 연방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일 가뭄이 매우 심하고 팔도(八道)에서 재변이 이어 일어나는데, 어느 일의 소치인지 모르기는 하나 반드시 인사에 잘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대신들은 저마다 품은 뜻을 아뢰라.”〔중략〕

사간(司諫)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이제 삼왕(三帝三王)의 정치는 다 학교에 근본을 두었습니다. 요즈음 수장(帥長)을 가려 써서 남곤으로 성균관을 맡게 하였으나, 다른 관사(官司)를 아울러 맡은 곳이 자못 많으므로 향시 봉사(奉仕)할 수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전임시켜야 합니다. 이제 학생을 대우함에 있어서 별로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도가 없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사습이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게 하면 백성의 풍속이 절로 도타와 질 것입니다. 당 태종(唐太宗) 때에 봉 덕이(封德彝)가 ‘삼대(三代 : 하(夏) · 은(殷) · 주(周))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천박하고 부실해졌다.’ 하였는데, 정관지치(貞觀之治)²⁵⁸에 이르러 태종이 ‘봉 덕이에게 보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다.’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천박한 풍속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원기가 아뢰기를,

“유생이 착용하는 의관(衣冠)은 구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자(儒者)는 원래 구별해야 하며, 성종조(成宗朝)에도 다 그 의관을 구별하였다.

258) 정관지치(貞觀之治) : 당 태종(唐太宗) 때의 훌륭한 정치. 당 태종은 영주(英主)로서 방현령(房玄齡) · 두여회(杜如晦) 등 현상(賢相)과 위징(魏徵) · 이정(李靖) 등을 등용하여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잘해서 세상이 태평하였으므로, 그 연호(年號)를 붙여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 아침 경연에서, 길을 다니는 유생은 유관(儒冠)을 쓰게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 일은 시행할 수 없더라도 청금(靑衿) 같으면 입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그 의관을 구별하는 것은 말단의 절도입니다. 먼저 그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연에서 누군가 ‘남행(南行)에 나온 자는 과거보지 못하게 하자.’고 청하였으나, 이미 벼슬에 든 자도 과거볼 수 있게 하면 그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아름답게 여길 일이다.”[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온갖 관사의 공사(公事)를 이미 정부로 하여금 총치(摠治)하게 하였으니, 형옥(刑獄)의 공사도 정부에 신보(申報)하여 마감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서사(署事)의 규모를 신등이 잘 몰라서, 세종(世宗) 영락(永樂) 갑오년과 정통(正統) 병자년²⁵⁹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신이 규모를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의 진퇴도 살펴야 한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망합(莽哈)이 진도(珍島) 성 밖에 있으니, 만약에 틈을 타서 바다를 건너면 반드시 큰 변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는 것을 인(仁)이라고 생각하나, 저들이 본토(本土)로 도망해 돌아가면 그 해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용개도 부가 아뢰는 것이 옳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임금은 풀 하나 나무 하나도 문득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망합은 사람인데, 어찌 명복 없이 문득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살피고 지키면서 사세를 보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수직(守直)을 삼가지 않아서 혹 육로로 올라와서 달아나게 된다면 큰 걱정이 될 것이니 수직을 삼가야 한다.”

하였다. 부가 이어서 내수사의 장리와 기신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전교하였다.

259) 세종(世宗)……병자년 : 세종 연간에는 영락 갑오년과 정통 병자년이 없으며, 또 정통 연간에는 병자년이 없으므로, 말한 사람의 착오이거나 편집상의 착오인 듯하다.

“전일에 김정·박상의 다스린 까닭은 못사람이 그 말에 혹하여 그것이 그른 줄 모를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나, 이제는 재변이 있고 대신이 또 다들 용서할 만하다고 하며, 또 그 죄가 구언(求言)한 뒤에 생긴 것이니 용서하라. 이정호(李挺豪)는 광병(狂病)이 있어 망언(妄言)으로 죄를 얻었으므로 이는 실로 무정(無情)하니 아울러 용서하라. 정호는 양근(楊根)에서 귀양살이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지 이미 오래데 상이 모르므로 이렇게 분부하였다. 또, 각 고을의 수령 중에서 탐오하고 잔혹한 자 및 청근(淸謹)하게 봉공(奉公)하는 자, 그리고 무릇 교수(教授)·훈도(訓導)로서 재주가 없거나 게을러서 그 직임에 합당하지 않은 자도 많으니 자주 강서(講書)하여 그 근만(勤慢)을 상고해서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는 모두 다 치계(馳啓)하라고 각도의 감사에게 하서(下書)하도록 하라. 또, 각사(各司)의 선상(選上) 및 조례(阜隸)를 권도(權道)로 줄이는 일은 뒷날에 정부 및 각사의 제조(提調)가 의논하여 아뢰고, 남방의 군사에게 쉴 사이가 없다는 일도 아울러 정부 및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²⁶⁰이 상의하여 아뢰게 하라. 거리에서 기우(祈雨)하는 것은 이 뒤로는 하지 말라. 저화(楮貨)에 관한 일은, 여염에서 쓰지 않는 자는 죄주고 각사의 징속(徵贖)에는 저화를 쓰지 않으니 어찌 옳으랴? 헌부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여 죄를 다스리라.”

○戊子 御朝講禮記上舉君子如欲化民成俗其必由學之語而教曰近來風俗不古學校頽廢作成人材之道固在上轉移如何耳然非學校何以哉予深恐作成之未盡其道也[中略]

○延訪領議政鄭光弼左議政金應箕右議政申用漑左贊成金銓左叅贊李自健右叅贊南袞大司憲趙元紀副提學李荇司諫柳溥上曰近日旱災彌甚八道災變繼作雖不知某事所致然必人事有闕失而然矣大臣等其各陳所懷[中略]

司諫柳溥曰二帝三王之治皆本於學校近雖擇用帥長以南袞掌成均館然他司兼任處頗多故未能常任如此之人須專任可也今待學生別無勸懲之方此大不可若令士習一出於正民風自厚矣唐太宗時封德彝以爲三代以下人漸澆訛及貞觀之治太宗曰恨不令封德彝見之以此可見風俗之薄亦可變也元紀曰儒生所着衣冠當別而異之 上曰儒者固當辨別 成宗朝亦皆別其衣冠今朝經筵有言使儒生行路者着儒冠此事雖不可行如青衿則可令着矣柳溥曰別其衣冠乃末節也先治其心可也 上曰今之經筵或請已出於南行者使不得赴舉然旣入仕者亦許赴舉則彼亦不棄其所業是可嘉也[中略]

柳溥曰百司公事已令政府摠治之刑獄公事亦當報政府磨勘可也光弼曰署事規模臣等未詳知之 世宗永樂甲午正統丙子間有此事臣欲考規模而未能矣 上曰人物進退亦可察也柳溥曰莽哈在珍島城外若乘間渡海必生大變今以不殺爲仁而使彼逃還本土其害可勝言哉用

260)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 : 성종 때 야인(野人)의 노략질이 심해진 이래, 변방에 관한 대책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변방의 사정에 밝은 2품 이상의 문관·무관을 지변사재상으로 삼아서 의논하게 하였다.

漑亦以溥啓爲是光弼曰人君於一草 木尚不可遽除况莽哈乃人爾豈可無名而遽殺乎當譏察守直以觀事勢可也 上曰果不謹守直而或得登陸路以逃則爲患大矣守直當謹溥仍啓內需長利忌辰齋等事不允○傳曰前日所以治金淨朴祥之罪者恐衆人惑於其言而不知其非故也今則有災變大臣又皆以爲可宥且其罪發於求言之後其宥之李挺豪有狂病以妄言獲罪此實無情並宥之挺豪謫居楊根自□已久 止不知故有此教也且各官守令中貪污殘酷者及清謹奉公者與夫教授訓導等或才疎或瀨慢不合其任者亦多數數講書考其勤慢其中尤甚者並皆馳啓事下書各道監司可也且各司選上及阜隸權減事後日政府及各司提調議啓南方軍士無休息之時並令政府及知邊事宰相議之街巷祈雨今後勿爲楮貨事閭閻則罪其不用者而各司徵贖則不用楮貨豈其可乎其令憲府摘發治罪

《中宗實錄 卷25, 3面》

중종 11년 5월 21일(신축)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김양진(金楊震)·사간(司諫) 류부(柳溥)가 기신재(忌晨齋)·장리(長利)의 해(害)를 극론(極論)하고, 지사(知事) 이계맹(李繼孟)은 대간(臺諫)이 아뢰는 바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양진이 아뢰기를,

“이제 사대부(士大夫) 및 민간이 다 재(齋)를 지내지 않는데 국가만이 지내니, 좌도(左道)를 매우 혁거(革去)하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이는 안에서 은밀히 사람을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관(禮官)을 보내고 경비(經費)를 쓰기까지 하니, 어찌 치도(治道)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어진이를 천거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재상(宰相)의 직분이나, 누가 어질고 누가 어리석은지는 듣고 보기 또한 어려우며, 역대(歷代)를 보건대 군자와 소인이 역시 섞여 등용되었으니, 지금도 어찌 소인이 없겠습니까마는, 밝은 시대에는 소인이 있더라도 제 술수를 부릴 수 없으나, 반드시 그 정상이 드러나고서야 소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인은 치세(治世)에는 위낙 간사를 부릴 수 없고, 반드시 어지러울 때에 나오는 것이다. 다만, 형장(刑杖)을 함부로 쓰는 외방(外方)의 수령(守令)도 있으므로 이미 하유(下諭)하였거니와, 서울은 백사(百司)가 헤이하니 엄하게 출척(黜陟)해야 한다. 선과 악이 섞여 있게 되면, 권려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외방에는 감사(監司)가 있거니와, 예전에는 3년에 한 번 성적을 고사하였으나 이제는 1년에 두 번 포폄(褒貶)하는데도, 탐오(貪污)하여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합니다. 신이 일찍이 관찰사로 있을 때에 보니, 위낙 험뜯거

나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승출(陞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중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서 알만한 자라면 계문(啓聞)해야 할 것이나, 잘 알지 못하므로 못했습니다. 이제 각별히 하유하면, 감사가 계문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수령도 스스로 경계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지런히 법을 지켜서 관의 일을 돌보기를 집의 일처럼 하는 자는 특별히 탁용(擢用)하고, 게을리 하여 맡은 일을 돌보지 않는 자는 특별히 죄를 다스리면, 사람들이 절로 권려될 것이다. 근일 경중(京中)의 포폄에 있어서도 애쓰지 않으니, 삼가서 출척을 가해야 한다.”

하였다.

○辛丑 御朝講執義金楊震司諫柳溥極論忌齋長利之害知事李繼孟請從臺諫之啓楊震曰今士大夫及民間皆不設齋而國家獨爲之殊無痛革左道之意此非自內潛使人行之者至遣禮官又用經費豈不累於治道乎領事金應箕曰進賢退不肖宰相之職然某賢某愚聞見亦難以歷代見之君子小人亦相雜用今亦豈無小人但明時則雖有小人不得售其術必其情狀顯著然後可知爲小人也 上曰小人固不得售奸於治世而必出於昏亂之時矣但外方守令濫用刑杖者亦有之已下諭矣京則百司解弛當嚴黜陟也若善惡雜處則殊無勸勵之道也應箕曰外方則有監司矣古者三載一考績今則一年再爲褒貶而貪污虐民未得摘發耳臣嘗爲觀察使見之固不可以毀譽爲陞黜但其表表可知者則所當啓聞而未能詳知故未也今乃各別下諭則監司當有啓聞者而守令亦自戰矣 上曰勤謹奉法而治官事如家事者當別擢用懶慢不職者當別治罪則人自勸勵矣近日京中褒貶亦不用意當慎加黜陟也

《中宗實錄 卷25, 24面》

중종 11년 5월 28일(무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조원기(趙元紀)·사간(司諫) 류부(柳溥)가 전의 일을 아뢰고,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듣건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렸고, 우박은 팔도에 모두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시절이 불화(不和)해서 그런 것이니, 근신하고 덕을 닦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경인손이 요망한 말로 못사람을 미혹시켰으니 이단(異端)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간이 아뢴 바를 빨리 윤택하셔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도에 우박이 내리고 강릉(江陵)에는 서리가 내려 재변이 심해 가니 매우 근심된다. 경인손은 전혀 광망(狂妄)한 자이고, 요망한 말을 하여 못사람을 미혹시킨 것이 아니다. 미친 병이라 믿을 것이 못되므로, 다만 장일백으로 처벌하고 말았다.”

하매, 시독관(侍讀官) 이청(李清)이 아뢰기를,

“어제 본관(本館)이 상차하니, 상께서 ‘조종(祖宗)의 일을 일일이 고치지 않는 것은 그 과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까닭이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대저 선왕의 과실은 뒤를 이은 분이 마땅히 고쳐야 하며, 모름지기 궤히 고쳐야 선왕을 빛나게 됩니다. 이제 재변이 몹시 심하여, 정양의 달[正陽之月 : 음력 4월]에 서리가 내리는 재변이 있었으니, 당연히 공구수성(恐懼修省)해야 하며,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을 일일이 경청(傾聽)해야 하는데도 지금은 따르지 않으시니, 재변을 만나서 수성하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戊申 御朝講大司憲趙元紀司諫柳溥論前事領事金應箕曰聞江原道降霜而雨雹則八道皆然此乃時之不和而然也側身修德不容小忽且景仁孫以妖言惑衆以異端根柢尚存故也臺諫所啓當速允之上曰諸道雨雹而江陵則降霜災變轉甚深用憂懼景仁孫則專是狂妄者也非爲妖言以惑衆也以狂病不足取實故只決杖一百而已侍讀官李清曰昨日本館上筭 上教以爲 祖宗之事不一一改之乃所以不著其失也夫 先王之失後嗣當改之須快革然後有光於 先王矣今災變彌甚當正陽之月有霜降之災宜恐懼修省下之所言可一一傾聽而今乃不從恐非遇災修省之意也 《中宗實錄 卷25, 32面》

중종 11년 6월 2일(임자)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류부(柳溥)·지평 김인손(金麟孫)이 기신재·장리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한참 잠자코 있다가 이르기를,

“이 일을 혁파(革罷)하기가 과연 무엇이 어려우라? 다만 조종(祖宗)께서도 갑자기 혁파하기 어려워 하시던 것이니 하루 아침에 모두 혁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내수사의 장리 및 기신재를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뒤로는, 내용(內用)이 부족하면 곧 팔도 사찰의 전지(田地)를 찾아 모아서 내수사에 옮겨 붙이라고 명하였다. 해마다 위차(委差 : 위임하여 보내는 사자(使者))를 나누어 보내어 거기서 나는 것을 거두어 관창(官倉)에 날라 들여서 내간(內間)의 여러 가지 지공(支供)을 장만하게 하니, 이는 장차 여알(女謁)이 성하고 정령(政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올 조짐이다.

○壬子御朝講司諫柳溥持平金麟孫啓忌晨齋長利等事 上默然良久曰此事革罷果何難焉但 祖宗亦難於卒革不可一朝盡革也○命罷內需司長利及忌晨齋史臣曰此後內用告乏即命搜括八道寺刹田地移屬內需司年年分遣委差收所出輸入官倉以備內間諸供此女謁將盛政出多門之漸也 《中宗實錄 卷25, 41面》

중종 11년 6월 19일(기사)

○의정부·이조·예조·성균관이 함께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합당한 인원으로 정수강(丁壽崗)·방유령(方有寧)·최숙생(崔淑生)·김세필(金世弼)·이행(李荇)·김안국(金安國)·김안로(金安老)·김굉(金磁)·신공제(申公濟)·윤탁(尹倬)·이위(李偉)·조방언(趙邦彦)·김양진(金楊震)·류부(柳溥)·허지(許遲)·문근(文瑾)·송흠(宋欽)·한효원(韓效元)·이언호(李彦浩)·공서린(孔瑞麟)·신봉전(申奉全)·정순봉(鄭順朋)·홍언필(洪彦弼)·소세양(蘇世讓)·이원화(李元和)·권수익(權受益)·이수(李壽)·이겸(李謙)·민수천(閔壽千)·한충(韓忠)·최호(崔灝)·황사우(黃士佑)·문서귀(文瑞龜)·표빙(表憑)·조광조(趙光祖)·이득전(李得全)·김진조(金振祖)·박우(朴祐)·김환(金紈)·김구(金絀)·황효헌(黃孝獻)·안중손(安仲孫)·조유형(趙有亨)·배익신(裵益臣)·김유(金鏐)·서후(徐厚)·진식(陳植)·류돈(柳墩)·이순(李純)·이자(李籽)·박상(朴祥)·김정(金淨)을 간택(揀擇)하여 아뢰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권수익·이수·이겸·조유형·김환은 다 학식에 어두운데도 사유의 간택에 끼었으므로, 시의(時議)가 비방하였다.

○己巳○議政府吏曹禮曹成均館同議揀擇師儒可當人員丁壽崗方有寧崔淑生金世弼李荇金安國金安老金磁申公濟尹倬李偉趙邦彦金楊震柳溥許遲文瑾宋欽韓效元李彦浩孔瑞麟申奉全鄭順朋洪彦弼蘇世讓李元和權受益李壽李謙閔壽千韓忠崔灝黃士佑文瑞龜表憑趙光祖李得全金振祖朴祐金紈金絀黃孝獻安仲孫趙有亨裵益臣金鏐徐厚陳植柳墩李純李籽朴祥金淨以啓史臣曰權受益李壽李謙趙有亨金紈皆暗於學識而亦與於師儒之選時議譏之

《中宗實錄 卷25, 54面》

중종 11년 9월 2일(신사)

상참(常參)을 받았다.

○이계맹(李繼孟)을 호조 판서로, 안구(安觀)를 사간으로, 류부(柳溥)·김구(金絀)를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남세준(南世準)을 지평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부(溥)는 편협하고 도량이 없었다. 주계군 심원(朱溪君深源)에게 글을 배웠으나, 입으로 읽는 것만 알았지 그의 사람됨은 배우지 못했다. 구는 학문에 확고한 힘이 있고 일을 당해서는 강개(慷慨)하였다.

○辛巳 受常參○以李繼孟爲戶曹判書安觀爲司諫柳溥金絀爲弘文館副校理南世準爲持平史臣曰溥偏狹無容量學於朱溪君深源只解口讀不學其爲人絀學有定力臨事慷慨

《中宗實錄 卷26, 16面》

중종 11년 9월 29일(정미)

○야대에 나아갔다. 참찬관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고려사」 같은 것은 상께서 혼자 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학연의」와 「고려사」는 비록 비유가 안되지만, 우리 동국(東國) 군신들의 현명 여부가 소연(昭然)하여 권면과 징계가 될 수 있으니, 진강을 끝내야 한다. 무릇 사기(史記)는 해독하기가 쉬우나, 오직 이 성리서(性理書 : 「근사록」을 말한다)는 깊이 생각하여 반복해 보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

하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이는 곧 성리학의 기본이니, 항시 체념(體念)하신다면 옛 제왕들의 심학(心學)의 전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요지(要旨)를 살피서 마음다스리는 궁극에 도달하기를 구해야 하고, 심상히 여겨 경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전경 안처순(安處順)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 ‘사학(史學)은 알기 쉽다.’ 하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역사를 읽을 때 그 성패(成敗)를 보아 권면과 징계를 삼으려면,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파본 다음에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학이 또한 어찌 알기 쉬운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丁未○御夜對參贊官尹殷輔曰如高麗史 上自覽 上曰若以大學術義比高麗史則雖不
 □東國君臣賢否昭然可以勸懲當畢講也凡史記讀之易解唯此性理之書近思錄非沉潛反覆
 莫之能解侍講官柳溥曰此乃性理之本源常常體念則古之帝王心學之傳可得矣非徒務文字
 而察其要指以求至乎治心之極不可以爲尋常而忽之也典經安處順曰 上教云史學易解臣
 意以謂讀史之時觀其成敗以爲勸懲則必深究其義而後可也然則史學亦豈易解哉

《中宗實錄 卷26, 28面》

중종 11년 11월 5일(임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공서린(孔瑞麟)이 노산(魯山)과 연산(燕山)의 후손 세우는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대신들의 의논에 따라 결정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서린이 후손 세우는 일을 중하게 여겨 반복해서 아뢰었다. 경연에 입시(入侍)했던 사람 가운데 저 혼매한 김전(金詮)이나, 무식한 윤순(尹珣)·안윤손(安潤孫)과, 편협한 류부(柳溥)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이 이 일에 힘썼던 신상

(申鏞)·임권(任權)·정응(鄭鷹)마저 한 마디도 조언하지 않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석강에 나아갔다. 『대학연의』를 진강하였는데 ‘한 문제(漢文帝)가 스스로 삼년상(三年喪)을 단축했다.’는 대문에 이르러, 설경(說經) 정응이 아뢰기를,

“하늘의 도리와 사람의 이룬(彝倫)은 만고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현명한 임금들이 모두 시행한 것입니다. 다만 아들된 사람들의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한이 없으며, 성인들이 이를 억제하여 삼년의 복제를 단정한 것인데, 후세에는 도리어 날 수로 달 수를 바꾸었으니, 어찌 이런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선왕(先王)의 상제(喪制)는 감히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는 것인데 단축하여 날 수로 달 수를 바꾸었으니, 이는 고금을 통한 인도의 큰 변입니다. 진 무제(晉武帝)는 옛 복제를 복구하려다 실현하지 못했고, 위 문제(魏文帝 : 위는 서위(西魏)를 말한다.)에 이르러서야 단연 시행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사대부들은 모두 삼년상을 거행하지만 군사(軍士)와 서인(庶人)은 모두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대전』에 비록 이 예를 통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인정으로 보면 자연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제로서 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우리 나라도 사대부들은 모두 삼년복을 입지만 군사나 서민은 거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민들도 모두 삼년상을 거행하도록 대신들에게 의논했더니, 모두들 불가하게 여기며 ‘서민 중에 역사를 피하려 거행하는 자가 생기면 혹 방해롭게 될까 싶다.’ 하였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역사 피하려 함을 고려할 것 없이 모두 삼년복을 입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였다.

○壬午 御朝講掌令孔瑞麟論魯山燕山立後事 上曰已因大臣之議而定耳史臣曰瑞麟以立後爲重反覆啓之入侍經幄如金詮之昏昧尹珣安潤孫之無識柳溥之狹隘不足數也申鏞任權鄭鷹曾眷眷於此而不助一言惜哉○御夕講講大學衍義至漢文自短三年之喪說經鄭鷹曰天理民彝萬古不泯故其間賢主舉而行之人子爲親之心無窮而聖人乃抑之斷爲三年之制後以日易月安有如此非常之事乎侍講官柳溥曰先王之制不敢過與不及而乃短之以日易月此古今人道之大變晉武帝欲復古制而未能焉至魏武帝斷以行之我國士大夫皆行三年之喪而軍士庶人則皆不能行大典雖不許通行而情則不能自止矣 上曰三年之喪天下之通喪自天子至於庶人一也我國士大夫則皆服三年而軍士庶民則不行故頃者欲使庶民皆行三年而議於大臣皆以爲不可曰於庶民避役者恐或有妨予意當不計避役而皆服三年也

중종 11년 11월 12일(기축)

소대(召對)에 나아갔다. 참찬관 신상이 아뢰기를,

“요사이 간사한 자가 고변(告變)하자 비록 재상이지만 또한 목을 매어 오게 하여, 한갓 위에서만 놀라신 것이 아니라 중외(中外)가 모두 놀랐습니다. 대저 군신의 사이는 의리가 부자간과 같아, 양편이 서로 시기하거나 의심함이 없어야 서로가 편한 것이고, 더구나 대신은 임금의 심복이니 의심없이 위임하여 성심으로 대우한 다음에야 자연히 의구(疑懼)하는 마음이 없어져, 상하의 정의(情意)가 서로 통하게 되는 법입니다. 상께서 전일에 누차 불의의 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변을 당초에 반드시 의심하게 되신 것이고, 추국(推鞠)하는 큰 일도 비록 법대로 하시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미혹한 사람의 말을 들으셨을 때는 또한 마땅히 먼저 그 실정을 살피셔야 하고, 대신에게 의심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류담년(柳聃年)은 장수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사곡한 마음이 없음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그의 마음에 만일 상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신다고 여긴다면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으며, 상께서 만일 의심을 두신다면 어찌 큰 소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추핵(推覈)하여 무고임을 알았으니, 상께서야 반드시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마땅히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반복하여 위로하신 뒤에야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화평해지고 군신의 사이도 정의가 서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지난 여름에 고변하는 자가 생겨 상께서 밤중에 경동(驚動)하셨고, 이번에 또 밤중에 경동하시게 된 것은 지극히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발된 사람을 대신에게 위임하여 국문하더라도 어찌 안 되겠습니까?”[중략]

상이 이르기를,

“류담년 등을 내가 어찌 의심해서 그랬겠는가? 일이 매우 관계가 중하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침에 이미 중사(中使 :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를 류담년·이장생(李長生)의 집에 보내 선은(宣醢)하고 위로하도록 하였으니, 반드시 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것이나, 정원으로 초치(招致)하여 다시 타이르기를 ‘당초에 그런 말을 듣자, 일이 큰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대신임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되었지만, 상하에 어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여 안심하고 있도록 하라.”

○己丑御召對叅贊官申鐸曰近者奸細之人上變告雖宰相亦令係頸以來不徒自上駭愕中外皆驚大抵君臣之間義如父子兩無猜疑可以相安況大臣君之腹心委任不疑誠心待之然後

自無疑懼之心而上下之情志相孚矣 上於前日累經不意之變故其所告初必疑之推鞠大事雖當依法然聞至迷者之言亦當先察其情不置疑於大臣如柳聃年可任將帥者而心無邪曲人皆知之其心若謂 上有一毫之疑則豈能安心 上若置疑則豈可委以大任乎今既推覈知其誣罔 上必不疑然當以不疑之意丁寧慰諭然後人皆平心而君臣之間情志交孚矣侍講官柳溥曰去夏有告變者而 上乃夜半驚動今又夜半驚動極爲未安被告者委大臣鞠之豈不可乎[中略]

上曰柳聃年等予豈疑之而然也事甚關重故也○傳于政院曰朝來已遣中使宣醞于柳聃年李長生之第而慰諭之必知予意矣其召致政院更諭之曰初聞其言事關於大故雖不計大臣而然矣上下豈有疑之之心乎其安心處之

《中宗實錄 卷26, 62面》

중종 11년 11월 18일(을미)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관례(冠禮)²⁶¹는 성인(成人)의 도리를 책임지우는 일입니다. 관혼 상제(冠婚喪祭)가 모두 인륜 중에 중요한 일인데, 우리 나라는 상례와 제례만 다소 올바르게 되고, 혼례는 요사이 와서야 또한 친영(親迎)²⁶²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례는 반드시 관례를 앞세워야 합니다.”

하고, 집의 성세창(成世昌)이 아뢰기를,

“남자는 스무 살에 관례하고 서른 살에 장가들며, 여자는 열 다섯에 계례(笄禮)²⁶³하고 스무 살에 시집가는 것이 곧 옛 예법인데, 지금은 나이 겨우 열 두 셋만 되면 부모된 사람들이 벌써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곧 혼례를 거행하니, 역시 옛법을 따르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유독 남자만 관례해야 혼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마땅히 계례해야 시집가게 되니, 관례를 거행하지 않는다면 혼례가 반드시 따라서 올바르게 못할 것이나, 만일 위에서 거행하신다면 아래서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261) 관례(冠禮) : 성인(成人)이 되는 예식. 15~20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편에 따라 늦는 수도 있다. 이때 내빈(來賓)이 자(字)를 지어 준다. 3일 전에 사당에 고하고 당일 난삼(襪衫)·띠·신·조삼(早衫)·심의(深衣)·대대(大帶) 등을 상 위에 올려 놓으면 주인 이하 내빈들이 일제히 일어나, 전날 청수(淸水)에 감은 머리를 상투 틀고 관을 씌운다. 초가(初加)·제가·삼가 등의 순서로 예식이 끝나면, 주인과 관자(冠者)가 사당에 고하고, 마을 존장과 내빈에게 인사를 한다.

262) 친영(親迎) : 혼인 때의 육례(六禮)의 한 가지, 곧 정혼한 다음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한 뒤의 마지막 절차로서, 신랑이 몸소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오는 의식인데 신랑 집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옛 예법이다.

263) 계례(笄禮) : 여자의 성인 예식. 15세가 되면 땅았던 머리를 풀어 남자를 하고 비녀를 지르며, 자를 지어 부르는 것.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례나 혼례가 모두 「오례의주」에 실려 있으니, 모두 선왕의 법제대로 행하도록 한다면 어찌 되지 않겠는가?”

하매, 세창이 아뢰기를,

“노산(魯山)·연산(燕山)을 관에서 치제(致祭)하는 일은 절목(節目)을 보건대 모두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옛일을 보건대, 종사에 죄를 얻어 폐출(廢黜)된 임금을 ‘무슨 왕’이라 이름하여 후손을 세워 이어받도록 한 것이 많으니, 이렇게 함이 예문에 맞습니다. 지금 관이 치제하도록 하여 제물은 따로 백성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데, 이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비록 가묘(家廟)에 치제하도록 하지만, 노산이 무슨 가묘가 있습니까. 가묘가 있으면 반드시 신주가 있고 신주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 받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나 지금 제사 받들 사람도 없고, 송씨(宋氏)가 비록 생존해 있지만 나이 이미 늙었으니, 제사가 반드시 오래 지 않아 끊어질 것입니다. 임금으로 말하건대, 비록 공이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복제(服制) 있는 친족이 없으면 마땅히 조천(祧遷)²⁶⁴하는 법인데, 더구나 이 치제를 한없이 할 것입니까? 일이 매우 구차하여, 신은 옳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후손 세우는 일이 성상의 덕에는 지극하지만 예문에는 맞지 않으니,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정언 임권(任權)이 또한 이와 같이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제사하는 일은 과연 중대하니 마땅히 이처럼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일에 대신들이 후손 세우는 것을 곤란하게 여기므로 부득이 관이 치제하도록 한 것인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乙未 御朝講侍講官柳溥曰冠禮責成人之道者也冠婚喪祭皆是人倫之大者而我國喪祭之禮稍得其正婚禮近亦行親迎然婚禮必以冠禮爲先執義成世昌曰男子二十而冠三十而有室女子十有五而笄二十而嫁是古之禮也今則年纔十二三歲爲父母者已加冠於其首旋行婚家之禮亦是不師古也柳溥曰非獨男子旣冠而可婚女子亦當旣笄已許嫁若不行冠禮則婚禮必隨而不正上若行之下何有不從 上曰冠婚之禮皆在五禮儀注使皆依 先王之制而行之豈不可乎世昌曰魯山燕山官爲致祭事見節目則皆無所據觀古事則得罪宗社以君見廢者多有稱號某王而立後嗣之者是合禮文今使官爲致祭而其祭物別令民供之此何據也雖使致祭于家廟魯山有何家廟乎若有家廟則必有神主有神主則必有奉祀者今無奉祀者而宋氏雖存其年已老其祭祀必不久而絕以人君言之雖有功之主親盡則當祧況此致祭其無期限乎事甚苟且臣不知其可也此立後事於 聖德至矣於禮文未合更令商確處之何如正言任權亦啓之

264) 조천(祧遷) : 종묘에 봉안했던 위패를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는 것. 5세가 되어 대가 찼음을 말한다.

以此 上曰祀事果爲重矣而不當如是苟且矣前日大臣等以立後難之不得已官爲致祭未知何如而可也
《中宗實錄 卷26, 66面》

중종 11년 12월 3일(기유)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옛적에는 큰 종가(宗家)·작은 종가를 세웠기 때문에 가도(家道)가 화목했으나, 지금은 종법(宗法)이 폐지된 지 오래되어 종족(宗族)이 화목하지 못하니, 만일이 도리를 진흥한다면 자연 종족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순(舜)이 천하(天下)로써 부모를 봉양한 것은 봉양을 지극하게 한 것이므로 후세에 대효(大孝)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상께서 온 나라로써 자전(慈殿)을 봉양하시니 역시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땅히 외간(外間) 사람들로 하여금 성상의 효도가 그 도리를 다하심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명절에 진풍정(進豊呈)²⁶⁵을 폐하지 마소서.”

하고,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는 아뢰기를,

“근년의 흉년 때문에 정국(靖國 : 중종 반정을 가리킨다) 이후부터 진풍정 예절을 거행하지 않으므로 모두들 섭섭해 하니, 부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된 말이 지당하다.”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흉년을 물론하고 마땅히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지(冬至) 때 진풍정을 두 차례나 간청하였지만, 자전께서 흉년이라고 굳이 사양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한 것이다. 어찌 비용 허비를 생각했겠느냐?”

하였다.

○己酉 御朝講侍講官柳溥曰古者立大宗小宗故家道和睦今者宗法久廢不能睦族若興此道則自然睦族矣又曰舜以天下養養之至也後世稱爲大孝今 上以一國奉養 慈殿亦可謂至矣當使外間之人知 聖孝之盡其道也須於節日不廢進豊呈領事金應箕曰近因年歉自靖國後不舉進豊呈之禮衆皆缺望溥之言是也 上曰所啓當矣應箕曰勿論年歉當舉行 上曰冬至進豊呈再度懇請而 慈殿以年凶固辭故未敢耳何諭糜費乎 《中宗實錄 卷27, 2面》

265) 진풍정(進豊呈) : 임금 내외와 자전의 경사를 경축할 때 올리는 잔치. 진연(進宴)보다 의식이 정중하며, 기생·광대들에게 가무(歌舞)와 잡희(雜戲)를 시킨다.

중종 11년 12월 9일(을묘)

조강에 나아갔다.

○한효원(韓效元)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언호(李彦浩)를 직제학(直提學)으로, 박수문(朴守紋)을 전한(典翰)으로, 류부(柳溥)를 응교(應教)로, 정충량(鄭忠樑)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자(李耜)를 부응교(副應教)로, 황사우(黃士祐)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표빙(表憑)·장옥(張玉)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류용근(柳庸謹)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효원은 유약(柔弱)하여 한결같은 의지가 없고, 언호는 간솔하고 검소하나 선비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수문은 질박하고 어눌한데 옥당(玉堂)에 들어간 것은 특히 벼들이 끌어 준 것이요, 부는 언호처럼 험착한데 행실은 미치지 못했다.

○乙卯 御朝講○以韓效元爲弘文館副提學李彦浩爲直提學朴守紋爲典翰柳溥爲應教鄭忠樑爲司憲府掌令李耜爲副應教黃士祐爲司諫院正言表憑張玉爲副修撰柳庸謹爲正字史臣曰效元脂韋無定志彦浩簡儉然不愛士守紋朴訥其入玉堂特爲友人所推挽也溥挾隘同於彦浩而行則不逮

《中宗實錄 卷27, 4面》

중종 11년 12월 19일(을축)

○의정부·육조·시종(侍從)·대간·한성부가 모두 모여 의논하였다. 윤순(尹珣)·윤금손(尹金孫)·고형산(高荊山)이 의논드리기를,

“명주보(綃幅)에 쓰인 글자로 추문한다면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이니 정부가 아뢴 대로 함이 어떠하리까?”[중략]

한효원(韓效元)·이언호(李彦浩)·류부(柳溥)·이자(李耜)·신광한(申光漢)·이청(李清)·조광조(趙光祖)·한충(韓忠)·표빙(表憑)·기준(奇遵)·정응(鄭鷹)·안처순(安處順)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국가의 큰 변괴로서 신명이나 사람이 다같이 통분한 일이니, 진실로 여러 가지로 추국(推鞠)하여 기필코 죄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국문할 때에도 정적(情迹)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모두 형신(刑訊)하였지만 죄인은 잡지도 못하고 도리어 원통하고 억울하게만 하였으니, 지금 비록 글자 획으로 시험하여 혹시 서로 유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疑似)한 것 때문에 또 옥사를 일으켜 과람하게 죄없는 사람에게 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비록 사람의 소위에서 나온 듯하지만 실은 고금에 없던 재변이니 진실로 마땅히 통절하게 자책하되, 더욱 성경(誠敬)을 독실히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였다.

○乙丑○議政府六曹侍從臺諫漢城府皆會議尹珣尹今孫高荊山議納幅所書推之不可謂無據且事關重大依政府所啓何如[中略]

韓效元李彦浩柳溥李耆申光漢李清趙光祖韓忠表憑奇遵鄭膺安處順議此事國家大變神人共憤固宜多方推鞠期得罪人然當初鞠問之時情迹可疑者悉加刑訊未得罪人反致冤枉今雖以字畫試之偶有相同者不可以疑似之事又起獄事濫及無辜此雖若出於人爲實古今所無之災變固當痛自刻責益篤誠敬以答天譴

《中宗實錄 卷27, 13面》

중종 12년 1월 14일(경인)

주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안국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임(吏任)을 시재(試才)함은 장차 사람을 가려 관직을 제수하려는 것이니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과거와 다름없는데, 지금 시취(試取)하는 일을 이조에만 맡기니 이는 그 소임을 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재상의 자제들로, 본디 알거나 족속(族屬)이기 때문에 거개 모두 어리석고 용렬하여 책을 펴놓아도 읽지 못하는 자들을 취재한다 핑계하고 모두 조정에 서용합니다. 이러므로 주의할 즈음에 항시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게 되는데, 당초에 적합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간이 가서 참여하지 않으려 함은 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이나, 신의 생각에는 대간이 참여하는 것처럼 사리에 합당한 것은 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이조는 육조(六曹)의 우두머리인데, 이미 전임(專任)할 권한을 주어놓고 또 대간을 참여하게 한다면, 이는 육경(六卿)의 장을 대간에게 검찰(檢察)받게 하는 것이니, 이래서는 불가합니다. 김안국이 논한 말은 대개 한때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庚寅 御朝講叅贊官金安國進曰吏任試才將以擇人而授職其仕進之路與科舉不異今也試取專委吏曹是信其任也然或以宰相子弟武以素識或以族屬率皆愚孩殘劣之輩展卷不讀者托爲取才盡叙於朝是以注擬之際常患無人者在初不擇其人故也臺諫之所不欲往叅者以其古無之事也臣意以爲無如斯事之當理也侍講官柳溥曰吏曹乃六曹之長也旣授專任之權而又使臺諫往叅是以六卿之長爲臺諫所檢察此不可也金安國所論蓋欲矯一時之弊也

《中宗實錄 卷27, 22面》

중종 12년 1월 20일(병신)

○한형윤(韓亨允)을 형조 참판으로, 류부(柳溥)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이자(李耆)를 홍문관 전한으로, 최명창(崔命昌)을 응교(應教)로, 김정(金淨)을 부응교 겸예문관응교로, 류돈(柳墩)을 부교리로, 장옥(張玉)을 사간원 정언으로, 허흡

(許洽)을 수찬(修撰)으로, 정응(鄭膺)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丙申○以韓亨允爲刑曹叅判柳溥爲司憲府執義李耆爲弘文館典翰崔命昌爲應教金淨爲副應教兼藝文館應教柳墩爲副校理張玉爲司諫院正言許洽爲修撰鄭膺爲弘文館著作

《中宗實錄 卷27, 30面》

중종 12년 1월 23일(기해)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류부(柳溥)·헌납 문관이 전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己亥 御朝講執義柳溥獻納文瓘論啓前事不允

《中宗實錄 卷27, 31面》

중종 12년 2월 21일(정묘)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류부(柳溥)·정언 장옥이 전의 일을 극력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丁卯 御朝講執義柳溥正言張玉力論前事不允

《中宗實錄 卷27, 37面》

중종 12년 3월 7일(임오)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이연호가 아뢰기를,

“벗 사이는 마땅히 선(善)으로써 서로 규제(規戒)하여 선왕(先王)의 도를 밝히고 인륜의 근본을 바로 잡는 것으로, 크게 명교(名教)에 관계되므로 오륜(五倫)의 하나에 끼인 것입니다. 후세에는 사우(師友)의 도리가 없어져, 어찌다 한 두 사람이랴도 성현들의 학문에 마음을 두어, 선각(先覺)에게 찾아가 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초한 무리들이 붕당(朋黨)이라고 지목하여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도록 하니, 이는 임금이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벗 사이는 서로 절차(切磋琢磨)할 뿐인 것이니, 조정 안에서 옳고 그름을 논박하는 것이 어찌 비방하여 헐뜯기로 마음먹는 것이겠는가? 이 역시 책선(責善)하는 도리이다. 뜻이 같고 도가 같아 서로 스승 삼고 서로 벗 삼는데, 소인들이 붕당으로 지목함은 모두 사우의 도리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매, 집의(執義)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듣건대, 어떤 백성이 그의 처자와 더불어 굶주림에 휩박되었는데, 그 아내가 지아비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살아 있으면 울면서 우리가 가는 곳을 따라 다닐 것이니, 만일 이 애가 없다면 우리 두 사람이 다른 고장으로 가서 빌어먹기나 쉬울 것이다.’ 하고, 곧 지아비와 피하기를 ‘벽 틈에 새끼를 꿰어놓고 자식의 목

을 조르라.’ 하고, 지아버로 하여금 당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윽고 새끼를 조를 때에 그 아내가 차마 자식의 목을 매지 못해 자신이 매어 죽었는데, 그 지아버가 도로 들어와 보니 바로 제 아내가 목을 매고 죽었는지라, 그제야 통곡하며 아이를 업고 떠났다 합니다. 알 수 없지만, 황량한 마을 오막살이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지 알 수 없으니 진실로 애처롭습니다.”

하고, 부 및 사간 김희수(金希壽)가 전의 일을 극력 논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壬午 御朝講叅贊官李彦浩曰朋友之間當以善相規明先王之道正人倫之本大關於名教故居五倫之一焉後世師友道缺幸有一二輩留心於聖賢之學而求道於先覺者則不肖之類指以爲朋比使不得見容於世此人主之所當深念也 上曰朋友之間切磋琢磨而已如朝廷間論駁是非之事豈以詆毀爲心哉是亦責善之道也志同道同相師相友而小人指以爲黨皆師友之道不明故也執義柳溥曰聞有一民與其妻子迫於飢餓其妻語其夫曰此兒生則號泣而隨吾所之若無此兒則唯我二人往于他境乞食便易矣卽與夫相謀以索貫於壁隙將縊其子之項令夫引之及其將縊也其妻不忍縊子之項而自經而死其夫還入而視之乃其妻也於是痛哭負兒而去云不知荒村蔀屋之中如此者有幾人哉聞之良可痛心溥及司諫金希壽力論前事皆不允

《中宗實錄 卷27, 45面》

중종 12년 3월 25일(경자)

조강에 나아갔다. 「예기」를 진강하였는데, 집의(執義) 류부(柳溥)가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지금 비록 향음주례(鄉飲酒禮)²⁶⁶를 거행하고 있지만, 모두 빈객대기의 형식만 하는 것이요, 그 심오한 것은 모릅니다. 대저 옛 예법을 지금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또한 수령(守令)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한갓 형식만 다루기 때문에 인심과 풍속이 지극히 야박해져, 효성스럽지 못하고 공손스럽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되니 모름지기 실지를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 조광조는 아뢰기를,

“무릇 예문(禮文)대로 시행하는 것은 하루 사이에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

266) 향음주례(鄉飲酒禮) : 존현(尊賢)·양로(養老)를 목적으로 베푸는 주연(酒宴). 「주례」에 향대부(鄉大夫)가, 향학(鄉學)에서 3년 동안의 학업을 닦은 사람 중에서 우수한 자를 임금에게 천거할 때, 송별하기 위해 향로(鄉老) 및 향대부가 전별하는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것이 곧 향음주의 시초인데, 「의례(儀禮)」의 향음주례와 「예기」의 향음주의(鄉飲酒義)도 그 내용은 이와 비슷하다. 선유(先儒)의 설에는 향음주가 네 가지이니, 첫째는 3년마다 현능한 사람을 빈객(賓客)의 예로 천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향대부가 국중의 현자에게 주연을 베푸는 것이요, 셋째는 주장(州長)이 활 쓰는 연습을 하며 술을 대접하는 것이요, 넷째는 당정(黨正)이 사제(蜡祭: 연말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며 술대접하는 것인데, 대체로 모두 존현·양로하기 위한 것이다.

한 거행하기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한갓 형식만 다루고 말 수도 없는 것으로 모름지기 먼저 배양(培養)하여 인심과 풍속이 순후하고 아름다와지게 한 후에야 마을에 선한 풍속이 생기는 법이니, 모름지기 조정에서 먼저 예의와 겸양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은 아뢰기를,

“예의와 겸양은 백성을 교화(教化)시켜 풍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니, 조정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광조의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민(細民)들은 굽주림과 추위의 근심이 있어서 거주하는 고장에 안정되지 못한다면 예의와 겸양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조정 안에서 날마다 논하는 것이 비록 황왕(皇王)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외방 백성들이 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으니, 진념(軫念)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류부(柳溥)와 헌납 이청이 노영손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庚子 御朝講禮記執義柳溥臨文曰今雖行鄉飲酒之禮而皆爲糠粃之事不知其蘊奧也大抵古禮不能行於今也且守令不能盡其責徒爲虛文故人心風俗至薄而至有不孝不弟者矣要須行之以實可也侍讀官趙光祖曰凡禮文之事不可以一日之間盡能之又不可以難行而止之亦不可徒爲文具而已先須培養使人心風俗醇美然後鄉有善俗朝廷須先行禮讓可也領事鄭光弼曰禮讓化民成俗者也光祖以朝廷爲本之言是也若小民飢寒愁嘆而不安於田里則不得行其禮讓矣近者朝廷之上日日所論雖是皇王之道外方百姓困於飢寒可不軫念乎溥與獻納李清論盧永孫等事不允

《中宗實錄 卷27, 52面》

중종 12년 9월 21일(갑오)

문묘(文廟)에 친제(親祭)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갔다. 분진강서관(分進講書官)이 경서(經書)를 강론하였다. 대사성(大司成) 류운(柳雲)이 역(易)의 도(道)를 논하였는데, 곁들이는 인증(引證)이 곡진하게 통하고 제서(諸書)를 두루 보아 막히는 것이 없었고, 또 인(仁)자의 뜻을 극진히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불인(不忍)의 단(端)이 있음에 따라 그 단을 알고서 미루어 넓혀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집의(執義) 김희수(金希壽)·사성(司成) 류부(柳溥)는 한갓 입으로 읽었을 뿐이고,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신광한(申光漢)도 글에 따라 논설했으나, 부수찬(副修撰) 기준(奇遵)만이 풍간(諷諫)이 많았는데 아뢰기를,

“임금과 재상(宰相)에게 조금이라도 선비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국가가 글러집니다.”

하고, 진서(秦誓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의 ‘만약에 한 신하가 있어……’ 이하의 어구에 따라 아뢰기를,

“임금과 재상은 매양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곤(南袞)이 전일 연방(延訪) 때에 아뢰 “금세의 선비는 언행(言行)이 다른 데가 있다.”한 말을 던지시 공격한 것이다. 하였다. 강이 끝나매, 이어서 전(田) 1백 결(結)을 주어 양현(養賢)의 밑거리로 삼게 하였다.

○甲午 親祭文廟 御明倫堂分進講書官講論經書大司成柳雲論易之道旁引曲通出入諸書無所阻碍又極論仁字之義 上曰因其有不忍之端識其端而推廣之可也執義金希壽司成柳溥徒口讀而已弘文館校理申光漢亦因文論說而獨副修撰奇遵多有諷諫乃曰人君與宰相有一毫不好士之心則國家誤矣因誦秦誓若有一介臣以下之語曰人君宰相每以此爲念可也此隱然攻破南袞前日延訪時所啓今世之士言行有異之言也講訖仍給田百結以爲養賢之資焉

《中宗實錄 卷29, 58面》

중종 12년 윤 12월 26일(정유)

○이조 판서 남곤 등이 신공제(申公濟)·문근(文瑾)·김양진(金楊震)을 승지(承旨)에 주의(注擬)하면서 아뢰기를,

“전에는 15원(員)까지 주의하였으나, 근래에는 정선(精選)하게 되고 직제학(直提學 : 곧 조광조(趙光祖)이다.)은 현재 3품의 자급이 아니므로 주의할 수 없으며 그 밖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 세 사람만 주의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특히 조광조는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정3품의 직(職)에 초수(超授)되자 경연관이 ‘너무 지나치다.’ 하였는데 남곤은 왕의 뜻을 엿보고서 계청(啓請)한 것이다. 비록 주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표시한 것이니 이는 대개 조광조를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중략]

사신은 논한다.

이조(吏曹)는 박열(朴說)이 판서가 되면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좌우 사람에게 아부하였으므로 주의(注擬)가 모두 아랫사람에 의해 조종되었다. 두 번째 판서로 있을 적에도 그러하였으니 전후 거의 5년이나 그런 식이었다. 그가 체직될 때에 하리(下吏)들이 ‘열지(說之)는 적막하게 떠난다.’ 기롱하여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열지는 박열의 자(字)이다. 이 기롱은 대개 그가 자임(自任)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것이 폐습이 되었다. 송천희(宋千禧)가 그를 대신하여 정사를 할 때는 자못 박열과 같지 않아서 하료(下僚)들에게 용납되지 못하더니 얼마 안 가서 논박을 입고 체직되었다. 한세환(韓世桓)에 와서도 또한 주의할 때는 문득 문기를 ‘대간의 뜻이 어떠한지, 옥당은 또한 어떻게 논하겠는가.’ 하고 잔뜩 의심하고 주저하여 그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돌아가서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그리고 사성(司成) 류부(柳溥)와 첨정(僉正) 채침(蔡忱)은 모두 유명한 선비로 일찍이 시의(時議)의 배척한 바가 되었는데 낭관(郎官)이 이 두 사람을 외방교수(外邦教授)에 주의하고자 하니 세환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처럼 쓸 수가 없다.’ 하고 극력 저지하자, 낭관들이 크게 미워하고 따라서 물론이 일어났다. 대간이 세환을 암렬(暗劣)하다고 탄핵하여 체직시켰는데 시론(時論)이 분노하였다.

또 사신은 논한다.

이때 이언호(李彦浩)·이자(李紆)도 역시 승지가 되었는데 류운(柳雲)은 부랑하여 검속하지 못하고 문근(文瑾)은 고집불통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자 같은 사람은 경사(經史)에 통하고 치도(治道)를 알아서 사람에서는 보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연소배와 결탁하여 궤격(詭激)을 숭상하고 노성(老成)을 배척하며 옛 전장(典章)을 변혁하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평생의 배운 바가 씻은 듯이 없어졌다.

○丁酉○吏曹判書南袞等以申公濟文瑾金楊震擬承旨啓曰前者至擬十五員近來精選而直提學卽趙光祖時未爲三品之資不敢注擬他無可當人故只以三員擬之傳曰知道史臣曰時光祖方被寵任超授正三品經筵官已爲過矣而袞逆探其意啓請雖不注擬隱然形言蓋畏光祖而爲此言也[中略]

史臣曰吏曹自朴說爲判書欲圖自保依阿左右注擬悉牽於下再判亦如之前後幾五年及其適也下吏譏之曰說之寂寞而去一時傳笑說之其字也蓋言其不得自任也因成弊習宋千喜代之爲政頗不如說爲下僚不容未幾遭駁見適至於世桓亦臨注輒問曰未知於臺諫之意將何如玉堂亦何以論耶遲疑顧慮權歸於下人皆笑之然司成柳溥僉正蔡忱皆有名之士嘗爲時議所擯郎官欲擬二人於外教授世桓不可曰此人等不可如是用之力止郎議大惡旋起物論臺諫劾以暗劣遞之時論憤之又曰時李彦浩李紆亦爲承旨柳雲之浮浪不檢文瑾之執拗不通不足道也如李紆通經史識治道者平日士林以公輔期之豈意此人亦締結於年少輩爭尚詭激排擯老成變亂舊章乎平生所學掃地盡矣

《中宗實錄 卷31, 40面》

중종 14년 4월 12일(을해)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 류부(柳溥)는 직사(職事)를 삼가지 않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행동하여 이미 사명(使命)의 체통을 잃었으며, 말은바 추국(推鞠)에 대하여는 전연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사간인(事干人: 사건에 관계된 사람)을 먼 고을에 나누어 가둔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한 가지 일도 처결(處決)하지 못함으로써 원망하는 울부짓음이 잇달아 들리게 하니, 속히 파직하

고 다시 어진 어사(御史)를 보내소서. 하물며 도내(道內)에 또 윤효빙(尹孝聘)의 옥사(獄事)가 있음에리까! 이는 풍화(風化)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류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한다면, 한 해가 다 가도 처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흉년에 옥사마저 지체시키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조(吏曹)에서 태거한 사람들은 모두 용렬하고 망령된 사람들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범칭한 것은 비록 명백하지 못한 것 같으나 그 뜻은 공평합니다. 또 최방귀 등은 미관(微官)이기 때문에 직계(直啓)하지 않은 것인데, 이 때문에 이조를 죄준다면 도리어 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삼공(三公)이 이런 일을 가지고 입계(入啓)하여 상의 노여움을 격동시켰으니 삼공 또한 잘못입니다. 추문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乙亥○臺諫啓前事又曰慶尙道推考敬差官柳溥不謹職事恣行無忌已失使命之體而所任推鞠全不用意分囚事干於遠邑迄今十朔不決一事使冤呼相聞請速罷職改遣賢御史况道內又有尹孝聘之獄此事大關風化使柳溥推之則終歲不能決凶年滯獄事甚可愕吏曹所汰之人皆是庸妄泛稱不職雖似不明然其意則公也且崔邦貴等皆微官故不直啓耳若以此罪吏曹則反生大弊三公以是入啓以激 上怒則三公亦失矣請勿推之 上皆不允 《中宗實錄 卷35, 64面》

중종 14년 11월 20일(경술)

○안당을 의정부 좌의정으로, 김전을 우의정으로, 남곤을 좌찬성 겸이조판서로, 이장곤을 우찬성 겸병조판서로, 심정을 화천군 겸지의금부사(花川君兼知義禁府事)로 한형운(韓亨允)을 형조 참판으로, 이빈(李蘋)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사균(李思鈞)을 홍문관 부제학특지(特旨)으로, 정사룡(鄭士龍)을 직제학으로, 류부(柳溥)를 응교(應教 : 특지)로, 임추(任樞)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윤개(尹漑)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庚戌○以安瑯爲議政府左議政金詮爲右議政南袞爲左贊成兼吏曹判書李長坤爲右贊成兼兵曹判書沈貞爲花川君兼知義禁府事韓亨允爲刑曹叅判李蘋爲司諫院大司諫李思鈞爲弘文館副提學特旨鄭士龍爲直提學柳溥爲應教特旨任樞爲司憲府掌令尹漑爲司諫院正言

《中宗實錄 卷37, 31面》

중종 14년 12월 11일(신미)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강독(講讀)하던 글 가운데에 있는 이강(李綱)의 ‘법도와 기강이 아주 통속(統屬)이 없다.’는 말을 들어 지금 기강이 해이한 데에 대해서 논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저 명분이 정해지고 조정이 엄숙하면 기강이 절로 설 것이다. 근일의 병통은 옷사람이 잘 단속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기강을 세우려면 형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바르게 되면 조정이 절로 엄숙해지고 기강이 절로 서나 형법만을 숭상하면 국맥(國脈)이 도리어 사그라질 것입니다. 근래 시사(時事)를 보면 기강이 아주 퇴폐하였으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이 없어졌으므로, 상하에 분별이 없고 선후가 전도되며 당상(堂上)과 낭관(郎官) 사이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매, 영사(領事) 정광필이 아뢰기를,

“송휘종(宋徽宗)은 임금다운 큰 도량이 없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화석(花石)에 뜻을 붙였고, 원우(元祐 : 송 철종(哲宗)의 연호) 이래로 조신(朝臣)들이 서로 경복(傾覆)하여 군자가 군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군자가 소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소인이 군자를 공격하기도 하였으므로 인제가 아주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다운 군자가 소인을 공격하는 것은 옳으나, 군자가 군자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송 나라는 그러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난망(亂亡)의 조짐은 본디 한길만이 아닙니다. 송 나라와 지금은 다르기는 하나 다르다 하여 염려하지 않으면, 그 한 생각이 발하는 데에 따라 흥망이 갈라질 것이며, 일이 장차 클러질지도 모르는데 염려하지 않는다면 기강이 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강을 세우기에 바쁘다 하여 서두르려 하면 온편치 못할 것이다.”

하매, 집의(執義) 류관(柳灌)이 아뢰기를,

“접때 기강이 퇴폐한 것을 걱정하여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만 하고 엄하게 다스리기에만 힘썼으니 이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헌부(憲府)가 이 뜻을 알고 한다면 될 것이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근래 조종조(祖宗朝)의 구법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접때 광조(光祖) 등을 죄줄 때에 기강이 아주 없었다. 유생(儒生)이 상소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겠으나 문을 밀치고 궐정(闕庭)에 마구 들어 왔으며, 유생은 따질 것도 없으나 조사(朝士)까지도 그리하여 마치 싸우는 것 같았다.”

하매, 류관이 아뢰기를,

“이번에 유생들이 궐정에서 통곡한 것은 매우 사람의 정리에 맞지 않습니다. 늘 저희끼리 마치 못 미칠세라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 하더니 죄받던 날에는 통곡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정리가겠습니까?”

하고, 헌납(獻納) 남효의(南孝義)가 아뢰기를,

“조금만 기강이 있다면 재상의 집이라 해도 곡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궐정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연경(李延慶)·이희민(李希閔)은 대관(臺官)으로서 다투어 궁문에 들어와 옷을 찢기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싸움이지 나라의 일은 아니다.”

하매, 검토관(檢討官) 이환(李堧)이 아뢰기를,

“송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휘종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유래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쇠퇴한 뒤에 나라의 형세가 어지러워지면 슬기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강에 통속이 없으니, 종말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근래 형제 숙질 사이에도 그 잘못을 남에게 밝혀 말하고, 부자간 일지라도 숨기지 않는 것이 곧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날카롭게 나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심과 풍속의 시비와 향배가 이러하니, 상께서는 사(邪)와 정(正)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형이 용렬하더라도 그 자제를 가르쳐야 하거니와, 자제가 도리어 부형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전에 듣건대, 자제가 하는 짓을 부형이 막아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부형이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향거리선(鄉舉里選)의 법은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뒤에 점점 거짓이 많으므로 정자(程子)도 ‘뒤에는 거짓이 많았다.’ 하였으니, 선비가 출신하려면 과거에 응시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백 년 이래로 조금이라도 공도(公道)를 보존한 것은 오직 과거 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죄다 무너뜨렸습니다. 친림(親臨)하여

하례받은 일은 헤아릴 것이 못 됩니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근일 따라야 할 일은 곧 들어 주었거니와, 현량과를 혁파하려는 뜻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인재가 아까워서 현직(顯職)에만 서용하지 말게 한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현량과(賢良科)를 파방(罷榜)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안당은 어제 정사(政事)에 영중추(領中樞) 및 경연(經筵)에 제배(除拜)되었으니, 이는 정승 자리에서 갈렸을 뿐이고 맡은 일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파직하소서. 오늘 경연에서 대간·시종(侍從)이 ‘대신이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정광필은 ‘저들에게 죄를 더 줄 것인가, 또 그 무리를 다스릴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는 평온한 말이 아니라 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니, 대신으로서 할 말이겠습니까? 상께서 광필이 제 말이 잘못된 줄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당의 일은 삼공(三公)의 진퇴는 중한 것이므로 가벼이 갈 수 없으나 저들의 일을 양성(釀成)했다 하므로 정승을 면한 것이니 파직할 것은 없다. 정광필의 일은 어찌 말 꼬투리로 대신을 책망하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올 가을 별시(別試)는 공정하지 아니하여 문리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었고, 현량과는 이미 그르고 외람된 것인데다가 저렇듯 방자한 짓을 꺼리지 않았으니, 모두 파방하고 다시 공정하게 선비를 뽑으소서. 그러고서야 공도(公道)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 시관(試官)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침 경연에서 ‘한 사람의 글은 문리가 이어지지 않는데도 참방(參榜)하였다.’ 아뢰었는데 어찌 한 사람의 일 때문에 그 파방(科榜)을 혁파할 수 있겠는가? 시관은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辛未 御朝講侍講官柳溥臨文舉李綱所言法度紀綱蕩然無統之語而論及方今紀綱之弛上曰大抵名分定朝廷肅則紀綱自立近日之病在於上之人不能檢攝故也溥曰立紀綱不在於刑罰名分歸正則朝廷自嚴紀綱自立徒尚刑法則國脉反爲索然矣近見時事紀綱專廢此非一朝之所能立也 上曰近無敬長之禮故上下無別先後顛倒至於堂上郎官之間亦然矣領事鄭光弼曰宋徽宗無人君大度不念治天下之事猶着意於花石自元祐來朝臣相爲傾覆或以君子攻君子以君子攻小人以小人攻君子人才蕩然矣 上曰以真君子而攻小人則可以君子攻君子則大不可溥曰不可謂宋則如此而今時則不然也亂亡之漸固非一途宋雖與今有異若以謂

異以不念則一念之發興喪判矣不知事之將誤而不爲之慮則紀綱之立難矣 上曰若急於立紀綱而欲速則未便矣執義柳灌曰頃者患紀綱之廢而欲立之只爲虛事徒務嚴治此甚失矣上曰果然憲府知此意而爲之則可也溥曰見今之事可謂寒心者多矣近來 祖宗朝憲章蕩盡矣 上曰頃者罪光祖等之時專無紀綱儒生上疏則可爲而乃排門闌入闕庭者大不近於人情常時儕輩中喜言過惡如未及而痛哭於被罪之日豈其情乎獻納南孝義曰稍有紀綱則雖於宰相之家不可哭況於闕庭乎 上曰李延慶李希閔以臺官爭入宮門至裂衣服是鬪也非國事也檢討官李芑曰宋朝紀綱之毀非始於徽宗其所由來者漸矣委靡之後國勢板蕩則雖有智者亦難能也今時紀綱無統不知厥終何如也溥曰近來兄弟叔姪之間明言其過失於人雖父子之間自以不隱爲直此無他喜銳進也人心風俗是非向背如此須自 上使知邪正可也 上曰父兄雖庸當教其子弟若子弟反言父兄之過則甚不可前聞子弟之所爲父兄禁遏而不肯受教故父兄莫能教也[中略]

溥曰鄉舉里選之法尚矣後漸多僞故程子亦言後多詐僞士欲出身則當赴科舉我朝數百年來稍存公道者唯科舉而已而一朝毀之盡矣親臨受賀之事不足計也[中略]

上曰近日可從之事則卽聽之欲罷賢良科之意予豈不知但人才可惜只令勿叙顯職耳○臺諫合司啓賢良科罷榜事不允又啓安瑋昨日政拜領中樞及經筵是只違相位而所任則猶在也請罷之今日經筵臺諫侍從謂大臣不爲國事而光弼乃曰加罪彼等乎又治徒黨乎此非穩平之語乃鉗人之口也豈大臣之所言乎自 上須使光弼知其言之誤發也 上曰安瑋事三公進退爲重不可輕違而謂釀成彼等之事故免相耳不須罷也光弼事豈以言端責大臣乎又啓今秋別試不公多有不成文理者賢良科旣已誤濫又恣行不忌若是請並罷榜復以公正取士然後公道昭明矣請推其試官 上曰朝經筵有啓一人之作文理不屬而得叅豈可以一人之事罷其榜乎試官則可推

《中宗實錄 卷37, 51面》

중종 14년 12월 25일(을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이빈(李蘋)이 아뢰기를,

“한층의 죄는 광조 등보다 못하지 않은데 이제 다른 일로 추고하고 조율도 다르니 어찌하여 이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다른 일로 추고하더라도 절로 큰 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저들의 전례에 따라 추고하지 않은 것이다.”[중략]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과거는 공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량과(賢良科)는 이미 혁파하였으나, 이제 듣건대 별거(別舉)도 매우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물의가 들끓는다 합니다. 그 때 남곤도 시관(試官)이었는데, 어찌 공정하지 않았음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한

것이므로 혁파하기 어려울 듯하기는 하나 공정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혁파하지 않는 것도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거와 현량과는 차이가 있다. 대간이 ‘미리 문제를 내어서 시험하였다.’ 하나, 이것은 한 두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 어찌 과장(科場)에서 모두들 그 문제를 알았겠는가? 공정하지 않게 과거에 든 자를 적발하여 삭제해야 하며, 한 사람 때문에 온 과방(科榜)을 혁파할 수는 없다.”[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글은 괴벽하더라도 공정하게 뽑았다면 괜찮겠으나, 이는 사정을 용납하여 미리 짜고 한 뜻이 있으므로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만 삭제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역시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사람 때문에 혁파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하매, 이빈이 아뢰기를,

“사관(四館 :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서는 이 과방이 공정하지 않다 하여 간택하러 하지 않으나, 상께서 간택하라 하시면 간택할 것입니다. 홍문록(弘文錄)이야 어찌 이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류관이 아뢰기를,

“재주 없이 급제한 자가 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지 않은 까닭은 그 시관이 공정하게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방은 매우 공정하지 않으므로 물의가 들끓어 퍼져서 극구 비난하니, 이렇다면 열 번 혁파하더라도 안 될 것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과방에 든 사람은 사관에 대하여 죄를 얻었으니, 사관이 간택하지 않으려 한다면 위에서 간택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혁파하지 않는다면 사관이 어찌 간택하지 않겠는가!”[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송태종(宋太宗)이 ‘문형(文衡)은 공기(公器)인데 어찌 사람(私濫)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자가 남아 있으면 역시 뒷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망설일 것 없니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류관이 아뢰기를,

“이 과방은 초시(初試) 때에 신도 시관이 되었는데, 수시관(首試官)은 최숙생(崔淑生)이고 그 나머지는 김구(金絳)·김식(金湜)·박훈(朴薰) 등이었습니다. 문

제를 낼 때에 저들이 신등에게 말하지 않고 저희끼리 사사로이 의논하여 시책(試策)을 내었으므로, 신은 당초에 책제(策題)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사요 공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러하다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하고, 류관이 아뢰기를,

“이 일은 조옥곤(趙玉峴)도 압니다.” 옥곤도 시관이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향거리선(鄉舉里選)의 법은 그 폐단이 공정하지 않기에 이르렀으므로, 역대에서 다 과거를 공정한 것으로 삼았고 정자(程子)도 사람을 뽑는 데에는 모름지기 과거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법이 참으로 중한 것인데, 근래 과거가 구습만 따르고 구차하며 공정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니다. 이제 파방하는 것이 한때의 폐단이 된다 하여 혁파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폐단이 앞으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중략]

류관이 아뢰기를,

“신상(申鎰)이 과거에 급제할 때에 정소종(鄭紹宗)도 삭제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함께 의논하여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류관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남행(南行)²⁶⁷에 궐원(闕員)이 많습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홍문관에 감당할 만한 인원이 없으므로 이처럼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신이 전에 홍문관의 남행으로 채워졌다가 5년 뒤에야 박사(博士)가 되었는데 그때 재상들은 오히려 갑자기 오른 것이라 하였으며, 성희안(成希顔)은 남행으로 종사(從仕)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였다. 9년토록 오래되었는데, 당시에 역시 나이 젊고 글에 능한 사람이라 하여 뽑아서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남행이 된 지 오래지 않아 초승(超陞)하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근래 갑자기 오르는 폐단이 있으므로, 그 직임을 맡은 자가 내가 이 직임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현재의 직임을 돌보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직임에는 경중이 있고 일에는 대소가 있는데, 성종조(成宗朝)에

267) 남행(南行) : ① 고려 때 동반과 서반 속하지 않는 벼슬아치. 그 직을 7품으로 한정하였다. ② 부, 조의 음공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거나 높은 학행으로 천거되어 오른 벼슬 또는 벼슬아치. ③ 벼슬 아치가 품계에 따라 줄을 지어 늘어 섰을 때 남쪽에 늘어선 줄 그 줄에 늘어서 있는 벼슬아치.

는 그 경중·대소에 따라 사람을 각각 적당하게 임용하였으므로, 죄다 착하지는 않더라도 온갖 벼슬이 직분을 다했습니다. 근일에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만 흠이 있는 사람이면 배척하여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므로 각사(各司)의 관원에 쫓원이 많으니, 어찌 일대(一代)에 인재가 없어서 그 벼슬을 비워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후세에서 듣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의 폐단은 의논이 조정에 달려 있지 않고 전혀 대간에 달려 있는 것이며, 대간이 자주 사직하는 것은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다.”

하매, 류관이 아뢰기를,

“대간은 언책(言責)을 맡았는데, 어찌 언책을 맡고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사직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도 말할 만한 때가 있으나, 근일의 폐단은 의논이 전혀 대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대신과 대간의 말은 상께서 절충해서 쓰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류관이 아뢰기를,

“광조 등이 정사를 어지럽혔는데 이제 다들 내쫓겼으므로 인심이 다 시원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정사를 마음대로 하던 때에 조정이 억제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역시 상의 소치인데, 근자에 저들이 죄받은 뒤로는 상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으니, 신은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도 당초에는 드러나게 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모든 일을 다 옛것을 본떠서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그 그림을 알더라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나도 저들이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줄 몰랐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허물을 자기에게 돌린다 하였으니 대간이 아뢴 바가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천거로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이 되었거나 백집사(百執事)의 직임에 있는 자가 과연 많으나, 죄다 개정하려 하면 조정에 인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 중에서 쓸만하지 못한 자만을 가려서 개정하도록 하라.”[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근자에 관작이 외람하므로 인심이 승복하지 않으며 국사도 글러깁니다. 전일 배

척받은 사람들이 어찌 죄다 쓸만하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들이 구인(舊人)을 물리치고 오로지 천거된 사람을 임용하였으므로, 천거된 사람으로서 수령(守令)이 된 자가 사리를 몰라 마치 시동(尸童)처럼 앉아 있었으나, 그때의 대신들이 그를 알지라도 그 세력이 치열하므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는 상께서 이미 그 시비를 환히 살피셨으니, 현우(賢愚)가 섞여서 등용되게 한 것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당초에 사람마다 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겨서 좃았으나, 이제 이미 호오(好惡)를 정하였다면 인심이 스스로 시비를 알아서 허물을 고칠 것이니, 반드시 개정할 것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천거된 사람이라 하여 일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물이 어질면 쓰고 그렇지 못하면 버려야 합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김정국(金正國)은 전일 황해도에 있을 때에 계청(啓請)한 것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정국이 노하여 사직하고 떠나려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대개 세력이 치열함을 빙자하여 멀리서 조정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니, 이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감사(監司)는 소견을 아뢰고 해조(該曹)가 그 가부를 논해야 하는 것인데, 정국이 제 말을 좃지 않았다 하여 노했다면 매우 옳지 않다. 그때 하서(下書)하여 불가한 뜻을 일렸거니와 이제 추론(追論)할 수는 없다. 또 전일 서계(書啓)한 사람을 낱낱이 추론한다면 아마도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정국·이청은 대간이 물의에 따라서 아뢰었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미 그 경중을 의논하여 죄주었는데, 이제 다시 다스린다면 인심이 위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宗親)의 죄는 파직만 하더라도 되겠으나, 파릉군(巴陵君)은 다른 예에 따라 논할 수 없다.”

하매, 신상·홍숙이 다 아뢰기를,

“이미 파직하였으니 다시 더 죄주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친이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야 하겠으나, 파릉군이 한밤에 한 일은 아주 놀랍다.” 하였다.

○乙酉 御朝講大司諫李蘋曰韓忠之罪不下於光祖等而今以他事推之而照律亦異不知何以如此也 上曰予初意以爲雖以他事推之自有大罪故不以彼類之例推之矣[中略]

侍講官柳溥曰科擧不可不公賢良科旣已罷去今聞別擧亦甚不公物論騰播其時南袞亦爲試官豈不知其不公乎旣已爲之雖似難罷知其不公而不罷亦甚未便 上曰別擧與賢良科有異矣臺諫以謂預出題以試此不過一二人也擧場豈能盡知其題乎當摘其不公而中科者而削之不可以一人之故而擧榜罷之也[中略]

溥曰文雖奇僻而若取之以公則可矣此則容私而有綢繆之意大不可也且只削一人而不罷之則亦未便 上曰以一人之故而罷之寧削去也蘋曰四館以此榜爲不公而欲不揀取若自 上令揀取則揀矣弘文錄則豈可以此爲之灌曰不才而中第者自前多有之然人不以爲非者以其試官公取之也此榜則不公甚矣物論騰播極口非之如此則雖十罷之未爲不可也 上曰此榜人得罪於四館若不揀取則不可自 上使之揀取也然若不罷則四館豈不揀取也[中略]

溥曰宋太宗曰文衡公器豈宜私濫若不公者猶存則亦有後弊當罷之無疑也灌曰此榜初試時臣亦爲試官而首試官則崔淑生其餘則金練金湜朴薰等也出題時彼類等不諭臣等自相私議已出試策臣初未知策題爲何事也此乃私也非公擧也袞曰如此則固不可也灌曰此事趙玉崐亦知之矣玉崐亦爲試官故云溥曰鄉擧里選之法其弊至於不公故歷代皆以科擧爲公程子亦云取人須以科擧如此則科擧之法實重近來科擧因循苟且不公亦多今若以罷榜爲一時之弊而不罷則不公之弊後必無窮矣[中略]

溥曰申鐸登科時鄭紹宗亦被削去矣 上曰今日可僉議以決灌曰弘文館南行多有闕員溥曰弘文館無可當人員故如是多闕矣臣曩時承乏爲弘文館南行凡五年後爲博士當時宰相猶以爲驟陞成希顔則從仕南行爲弘文館正字至於九年之久而當時亦以年少能文者擇而授之今則不然爲南行未久而超陞此不可也袞曰近有驟陞之弊故當其任者以爲我之爲此職必不久也專不顧見在之任此甚不可任有輕重事有大小在 成宗朝隨其輕重大小而任人各適其用故人雖非盡善而百職盡矣近日則不然人有小疵則斥之使之不容於朝故各司之員多闕豈可謂一代無人材而曠廢其職也此不可使聞於後世也 上曰近日之弊議論不在朝廷而專在臺諫臺諫屢辭其職其弊尤甚灌曰臺諫任言責豈可任言責而不言耶若不得其職則當辭職矣 上曰臺諫亦有可言之時但近日之弊則議論專在臺諫矣鐸曰大臣及臺諫之言必自 上折中而用之可也灌曰光祖等亂政而今皆被竄人心皆以爲快然非但彼等之罪當彼輩擅政之時朝廷不能沮抑此亦 上之所致也而近者彼輩抵罪之後自 上無責躬之辭臣意未便 上曰彼亦當初非顯爲不善凡事率皆倣古而爲之故大臣雖知其非而不敢開口予亦不知其彼之誤國事也袞曰引咎歸已臺諫所啓是也 上曰以薦擧爲六曹郎官及百執事之任者果多有之然欲盡改置則朝廷無人矣但擇其不可用者而改正可也[中略]

溥曰近者官爵猥濫故人心不服而國事亦非前日被斥之人豈盡不可用者彼等斥去舊人專任薦人薦人之爲守令者不知事理坐如尸童其時大臣雖知其非而畏其勢焰莫敢開口今則上已洞察其是非不可不辨其賢愚使之雜處混用哀曰當初人人皆以彼類所爲爲美而從之今既定其好惡則人心自知是非而改過矣不須改正也特進官洪淑曰不可以爲薦人而一切去之若人物賢則用之否則去之可也蘋曰臣聞金正國前日在黃海道有所啓請而朝廷不從正國怒至欲解職而去此蓋憑藉勢焰欲遂制朝廷此人不可用也上曰大抵監司以所見啓之該曹當論其便否正國以不從其言爲怒則甚不可其時下書以諭其不可之意今不可追論且前日書啓之人若一一追論則恐人心不安但正國李清則臺諫必因物論而啓之矣哀曰旣議其輕重而罪之今若更治則人心危懼矣上曰宗親之罪雖止罷職可也但巴陵君則不可以他例論也申錫洪淑皆曰旣已罷職今更加罪未便也上曰宗親有懷必達可也巴陵君夜半之事至爲可愕

《中宗實錄 卷37, 68面》

중종 15년 1월 11일(경자)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류관(柳灌)·헌납(獻納) 남효의(南孝義)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현량과(賢良科)를 파방(罷榜)하는 일에 대하여는, 내 뜻에도 불가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사(私)를 용납한 실상이 현저하고 또 조종의 법이 아니므로 파한 것이다. 그러나 별시(別試)는 여기에 견줄 바가 아니니, 만약 파방한다면 뒷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하매, 영사(領事) 남곤이 아뢰기를,

“비록 공평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도 파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에 송영(宋英)이 장원(壯元)하였을 때도 모두들 고문(古文)을 전사(傳寫)한 것이라고 하여 물론(物論)이 비등하였으나 끝내 파방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찌 그 글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으로 갑자기 파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신등의 의논은 헛소문을 듣고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곤이 비록 시관(試官)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그 아래 시관이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는 참시관(參試官) 소세양(蘇世讓)이 상세히 말하였습시다만, 상께서 그 일이 이 지경으로 공평하지 못했던 것을 어찌 다 아실 수 있겠으며 대신도 어찌 이렇게 심하였을 줄 알겠습니까? 만약 범론(泛論)한다면 파방은 신중히 하여야 하지만, 세양의 말로 본다면 어찌 그대로 용인(容忍)한 채 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전시(殿試) 268)의 책

268) 전시(殿試) : 문무과의 초시(初試)·복시(覆試)에 합격된 자에 대해서 임금이 친림하여 등급을

문을 출제할 때에는 시관이 각각 지어 수점(受點 : 임금의 재가를 받는 것)하는 것이 예(例)이나, 이번 시험의 책문 출제를 비록 남곤이 냈다고는 하지만 그 실은 남곤의 자의(自意)로 낸 것이 아니라 곧 김식(金湜)의 뜻이었습니다. 식(湜)이 사습(士習)이라는 것으로 책문을 내자고 할 적에 남곤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못하고 마침내 출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곤(袞)은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신이 출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부(溥)는 아뢰기를,

“문자(文字)는 비록 남곤이 썼지만 그 출제의 본의는 김식에게서 나왔으니, 미리 의논하였던 출제의 뜻을 거자(舉子)들에게 누설하였다는 말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거자들만 말하였을 뿐 아니라 시관도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출제할 적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하는 것이나, 주의(主意)는 본래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지금 시관들이 출제를 의논할 때에 한 시관의 주의를 출제한들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매, 부(溥)가 아뢰기를,

“이뿐만 아니라 거자(舉子) 권진(權璣)이 ‘시일(試日)에 앞서 기준에게 들으니 ‘이번 과거의 책제(策題)는 사습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날 것이니 그리 알라.’ 하였는데, 시장(試場)에 들어가 내건 출제를 보니 과연 전에 들은 출제의 뜻과 같았다.’ 하였다 합니다.”

하고, 부(溥)가 또 아뢰기를,

“김식이 ‘시권(試券)은 피봉(皮封)할 필요가 없다. 피봉하는 것은 공정(公正)하게 하려는 것이니 마음이 공정하다면 피봉은 없어도 된다.’ 하니, 세양(世讓)이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뒷 폐단이 있을 것이니 봉(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합니다. 식(湜) 등이 꺼림없이 자행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또한 무슨 짓인들 못 하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진이란 자는 합격자인가 불합격자인가?”

하매, 부(溥)가 아뢰기를,

“진(璣)은 곧 이번 방(榜)에 든 자입니다.”

정하는 시험으로 문과는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과 무과는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0인의 등급을 판정하였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를 파방(罷榜)하는 것은 경솔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매, 관(灌)이 아뢰기를,

“신이 초시(初試)의 시관(試官)이었는데, 성수중(成守琮)²⁶⁹의 초시 시권(試券)을 보니 역시 문리(文理)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승지(承旨) 조옥곤(趙玉崑)도 그때 시관이었으니, 하문(下問)하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부(溥)는 아뢰기를,

“만약 거자(舉子)의 과실로 파방한다면 불가하지만, 시관이 말썽을 일으켜 공정하게 하지 않은 허물로 본다면 파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파방하지 않는다면 전조(前朝)의 홍분방(紅粉榜)²⁷⁰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뒷날 무엇으로 공도(公道)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효의(孝義)은 아뢰기를,

“상상께서는 오랫동안 잠저(潛邸 :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에 계셨으므로, 세간(世間)의 일을 모르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공부하여 학술(學術)이 비록 정통(精通)하였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 등제(登第)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형세로 말한다면 재상의 자제들이 반드시 먼저 등제할 것이니, 초야(草野)의 천한 선비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초야의 선비가 등제하기도 하고 부귀한 사람의 자제가 등제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공도(公道)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과거가 중한 줄 알게 되고 따라서 공도도 보존되는 것인데, 근일에 이르러서는 혹 현량(賢良)이라 일컬어 과(科)를 설치하기도 하고 혹 천거(薦舉)라는 것으로 초자(超資)하여 발탁하기도 하므로 도리어 과거를 경시하여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조종조로부터 유지되어 온 공도가 이에 쓸어버린 듯 없어졌으니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부(溥)는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과연 파방한 예(例)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과거도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거자의 허물이 아니라 시관의 허물이다. 만약 그 그릇을 지척(指斥)한다면

269) 성수중(成守琮) : 1495~1533.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자는 숙옥(叔玉) 시호는 절효(節孝) 본관은 창녕 세순(世純)의 아들. 조광조의 문인 문과에 급제, 조광조가 화를 당하자 그의 문인이자 하여 과거(科榜)에서 삭제되었다. 문장과 시에 뛰어났으며 직제학에 추증되었다.

270) 홍분방(紅粉榜) : 나이 어린 권문(權門)의 자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거에 급제한 것을 비웃는 뜻으로 고려 우왕(禑王) 11년 시관(試官) 윤취(尹就)가 뽑은 99인 가운데 세가(勢家)의 젖내 나고 붉은 옷 입은 아이들이 많았던 데서 온 말. 분홍방(粉紅榜).

먼저 시관을 추문(推問)해야 하며, 성수종을 삭과(削科)한 일에 대하여는 역시 조종조에서도 있었던 예(例)이다.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과방하는 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다.”

하매, 부(溥)가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전에 현득리(玄得利)라는 자는 곧 류양춘(柳陽春)의 외숙(外叔)이었는데 득리의 글 재주가 양춘만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응시할 적에 득리가 몰래 양춘(陽春)의 명지(名紙: 시권(試券))를 가져다가 그 이름을 지워 버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고쳐 써 가지고 마침내 등제(登第)하였었습니다만 일이 발각되자 득리만 삭과(削科)하였었습니다. 지금 수종(守琮)을 삭과한 일은 그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시관(試官)이 수종 한 사람에게만 사심(私心)을 쓴 것이 아니라, 혹 미리 의논한 출제(出題)를 누설하기도 하고 혹 시권을 채점할 때에 아무가 지은 시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선취(選取)하기도 했으니, 방(榜) 전체가 거개 모두 공평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였다. 상이 재이(災異) 때문에 걱정하니, 곤(袞)이 아뢰기를,

“마땅히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할 뿐입니다. 조정의 상하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곧 상계(上計)인데 근일 연소한 사람들에게 죄를 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달라서 조정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고 둘로 나누어 졌었으므로 화(禍)를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 매우 두려웠습니다. 조정이 화목한 것밖에 믿을 것이 없으니 지금 힘써야 할 일은 화평(和平)하게 하는 데 있으며 바야흐로 닥쳐오는 일을 더욱 밝게 수거(修擧)한 뒤에라야 화난이 없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고집을 세워 우겨대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중략]

부(溥)는 아뢰기를,

“근일의 일을 만약 소요(騷擾)하다 하여 그대로 버려 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논하는 바는 시비(是非)와 호오(好惡)가 분명하니 그 사람들의 곡직(曲直)과 사정(邪正)을 상계서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만약 고집하여 우겨대는 것이라 하여 윤택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김극휼(金克桴)은 아뢰기를,

“지난번의 사람들은 입시(入侍)할 적에는 경학(經學)을 말하였으나 밖에 나가서는 저와 같았으니, 재변이 온 것은 반드시 이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형정(刑政)이 지나친 것이 재이를 부르는 원인이 아닌가 염려하시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과연 대간의 말과 같이 주견없이 불췌은 사람들을 죄준 뒤라야 인심이 모두 화(和)하여 거의 추향(趨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신임하여 탁용(擢

用)하였다가 하루 아침에 죄주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들은 어찌서 그러는 줄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 사람들(조광조 등을 가리킨다)의 일은 모두 고집하여 우겨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대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과연 마음만으로는 불가한 것이요, 마음을 두지 않게 된 뒤라야 될 수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과거(科擧)는 조정의 중대한 일이므로 이미 조정 대신과 의정(議定)하였으니, 지금 비록 다시 의논하더라도 반드시 파방(罷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庚子 御朝講執義柳灌獻納南孝義啓前事不允 上曰賢良科罷榜事予意猶以爲不可然顯有容私之實又非 祖宗法故罷之矣別試則非此之比今若罷榜則後弊必多矣領事南袞曰雖顯知不公而不得罷故其在前時宋英爲壯元皆以爲傳寫古文物論喧騰而終不罷今亦豈以其文之不美遽罷乎侍講官柳溥曰臣等之論非因虛傳而發也南袞雖入試官亦未知其下試官不公之至此極也其實叅試官蘇世讓詳言之 上豈盡知不公之至此大臣亦豈知如此其甚耶若泛論則罷榜爲重以世讓之言見之則亦豈容忍而不罷凡殿試策題試官各製受點例也此試策題雖云南袞所製而其實則非南袞主意乃金湜之志也湜欲以士習發問南袞欲止不得乃許爲文袞曰此言是也臣乃許文耳溥曰文字雖出於南袞而題之本意則出自金湜其所預議且以題意漏通舉子云者果不虛矣此非但舉子言之乃試官言之也 上曰凡製題之時衆人共議而主意則本自一人出也非衆人所共爲也以此言之則今之試官議題時一試官主意出題有何妨耶溥曰非徒此也舉子權璣曰先於試日聞諸奇違今科策題當問以士習諸子其知之及入場見掛題則果如前所聞題意溥又曰金湜云試券不須皮封其爲皮封者欲其公正也若心公則無皮封可也世讓言如此則必有後弊不可不封湜等恣行無忌如此亦何所不至也 上曰所謂權璣中者歟不中者歟溥曰璣乃今榜中者 上曰科擧之罷不可輕易爲也灌曰臣爲初試試官見成守琮初試之文亦不成文理承旨趙玉崐其時亦爲試官若下問則可知其實也溥曰若以舉子之罪罷之則不可以試官紛亂不公正之罪見之則不得不罷若不罷則與前朝紅粉榜何異後日何由得見公道耶孝義曰 聖上久在潛邸世間事無不知之爲學之士自少勤業學術雖精而終身不得登第者有之以勢而言則宰相子弟必先得焉草茅賤士何可望也然而草茅之士有得焉膏粱子弟有不得焉者以其有公道也以此世人皆知科擧之爲重而公道於是乎存焉及至近日或稱賢良而設科或以薦舉而超拔反以科擧爲輕賤而忽之自 祖宗朝維持之公道於是乎掃地甚所未安也溥曰 祖宗朝果無罷榜之例然 祖宗朝亦無如此不公科擧也 上曰此非舉子罪也乃試官之罪也若斥其非則當先推試官也成守琮削去事亦 祖宗朝所有例也反覆思之未知其罷榜之爲可也溥曰果然前有玄得利乃柳陽春舅也得利之文劣於陽春及其應舉得利

乃潛去陽春名於其名紙而改書己名終獲登第事覺只削得利今守琮削去事非其例也試官非徒私一守琮也或預議題漏通或臨文先知某也之作而選取之一榜舉皆不公也 上以災異爲憂哀曰當盡在我之道而已朝廷上下輯睦則此上計也近日年少人加罪時朝廷之議不一人心各異歧而爲二禍在不測甚可懼也朝廷輯睦則此可恃也在今務在和平而方來之事益修明然後庶無患矣 上曰人之執拗甚不可[中略]

溥曰近日之事若以爲騷擾而捨之則何以爲國今之所論是非好惡分明其人曲直邪正上必知之若以爲執拗而不允則甚不可特進官金克愾曰曩時之人入侍則以經學爲言出外則如彼災變之來必由此等人也今以刑政濫重慮其以爲致災之由乎此甚不可也果如臺諫之言矣罪其和附之人然後人心皆和庶知趨向矣但信任擢用而一朝罪之故衆人不知爲何如也 上曰彼人之事皆由執拗也臺諫如此則不可也[中略]

上曰果有心則不可無心然後乃可爲也又曰科舉乃朝廷重事已與朝廷大臣議定今雖更議亦必以爲不可罷也

《中宗實錄 卷38, 6面》

중종 15년 1월 16일(을사)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홍문관의 소(疏)를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경연관(經筵官)·대간(臺諫)은 앞으로 나아오라.”

하매, 집의(執義) 서후(徐厚)·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헌납(獻納) 남효의(南孝義)·시독관(侍讀官) 손수(孫洙) 등이 앞으로 나아왔다. 상이 이르기를,

“시종(侍從)이, 내가 다시 의심하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들이 반드시 틈을 엿볼 것이라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은 의심하여 한 말이 아니다. 저 죄인들은 으레 죄 주어야 하지만 단 과직(罷職)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기에 말한 것 뿐이니, 간사한 사람들이 엿볼 리가 만무하다. 다만 과방(罷榜)에 관한 일은 집요(執拗)할 뿐만이 아니라 중도(中道)에도 지나친 것 같은데, 이를 중용(中庸)의 도(道)대로 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매, 부(溥)가 아뢰기를,

“신등이 소(疏)를 올려 주달(奏達)한 것은 상의 뜻을 굳게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였는데, 상께서는 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신등은 상의 뜻이 굳게 정해지지 않았는가 염려스러우며, 따라서 일념(一念)이 이와 같으면 소인들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은 죄인들을 모두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으로 하여금 밝게 보고 자세히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고, 수(洙)는 아뢰기를,

“임금의 마음이 광명(光明)하고 정대(正大)하면 절로 부의(浮議)에 동요되지 않

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마음이 굳게 정하여지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아무리 곧은 말과 정당한 의논을 제기하더라도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었으니 소(疏)의 뜻을 상세히 살펴 유념(留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았으나 집요함이 중도에 어긋나 끝내는 패하는 데 이르렀는데 이는 앞의 수레가 엮어졌는데도 뒷 수레가 경계하지 않은 탓이니, 이제 저들로 하여금 전에 한 짓을 고쳐 중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이, 정원(政院)이 내 뜻을 옹폐(壅蔽)한다고 하였는데 정원이 옹폐한 것이 아니다. 다만 김정(金淨)은 이미 안치(安置)되었으니 출입(出入)하여서는 안 되고, 수령(守令)은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잡아다가 추문(推問)하게 한 것이다.”

하매, 부(溥)가 아뢰기를,

“신등이 들건대, 정(淨)이 망명(亡命)하여 유성(儒城 : 공주(公州)의 속현(屬縣)이다.)에 이르러 잡혔다 하는데, 황세헌(黃世獻)의 계문(啓聞)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을 죄다 믿을 수는 없으나 본관(本館)에도 자세히 들은 자가 있습니다. 정(淨)이 망명하여 회덕(懷德)의 처가(妻家)에 가 있을 적에 장인(丈人)이 준절하게 나무라기를 ‘일찍이 육경(六卿)을 지낸 사람으로서 필부(匹夫)의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니, 그가 망명한 것이 분명한데도 세헌(世獻)이 정직하게 아뢰지 않았고, 정원은 으레 상세히 물은 다음 입계(入啓) 하여야 하는데 한갓 세헌이 아뢴 바로 진달하였으니, 왕명의 출납을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풍조가 습관이 되면 외방(外方)에 비록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께서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承旨) 성운(成雲)에게 묻기를,

“세헌의 말이 어떠하였는가?”

하매, 운(雲)이 아뢰기를,

“세헌의 말을 들건대, 과연 전해 들은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사군자(士君子)는 비록 벗 사이 일지라도 정직하게 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상달(上達)하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부(溥)는 아뢰기를,

“세헌의 말을 들으니 역시 망명한 것입니다. 비록 어미를 만나보기 위하여 갔었다고 하지만 망명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등은 그 말을 듣고 경악(驚愕)을 금

할 수 없었으므로 아뢰는 것이니, 정웅(鄭熊)이 올라온 다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효의(孝義)는 아뢰기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배(分配)하면 출입(出入)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안치(安置)된 자이겠습니까! 비록 어머니가 죽었더라도 오히려 돌아갈 수 없는 것인데, 어머니를 만나 본다고 핑계하면서 갔으니 망명(亡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였다.

○乙巳 御朝講 上曰予見弘文館疏有所欲言經筵官臺諫其進前來執義徐厚侍講官柳溥獻納南孝義侍讀官孫洙等前進 上曰侍從以予爲更生疑貳奸人未必不窺伺也予之所言非疑貳而然也彼罪人則固當於罪矣但恐罷職之人太濫故云爾奸人萬無窺伺之理但罷榜事非但執拗亦似過中其可謂得中庸之道乎溥曰臣等奏疏者欲其 上志堅定而 上以執拗言之臣恐 上志不能堅定也一念如此則小人乘隙臣等非以罪人盡爲奸人蓋欲 上見之明知之詳洙曰人主之心光明正大則自不爲浮議所動自古人主之心不堅定則下之人雖危言正論而不能濟事當詳察疏意而留念 上曰彼輩始雖似是而執拗過中終至於敗前車旣覆後車不戒今若改前之所爲不爲過中之事則可矣[中略]

上曰弘文館以政院爲壅蔽予意政院非壅蔽也但淨旣安置則不可出入而守令知而不禁其罪非輕故拿推矣溥曰臣等聞淨亡命至儒城公州屬縣見執而世獻之啓則有異焉傳聞雖不可盡信然本館亦有聞之詳者淨亡命在懷德妻家其妻父切責以爲曾爲六卿之人不可行匹夫之事則其亡命的然而世獻之啓不以直政院固當詳問入啓而徒以世獻所啓達之有乖於出納惟允之義此風成習則外方雖有大事 上何從而知之乎 上問承旨成雲曰世獻之言何如雲曰聞世獻之言果與傳聞異矣然臣等以謂士君子雖朋友間不可不以直告之況上達之事乎溥曰聞世獻之言則亦亡命也雖曰覲母而歸其亡命則一也臣等聞之不勝驚愕故啓之待鄭熊來問則可知矣孝義曰雖小罪分配則不可出入況安置乎母雖死尚不可歸托以覲母而歸非亡命而何

《中宗實錄 卷38, 13面》

중종 15년 윤 8월 3일(무자)

대간이 전의 일을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위(李偉)를 판결사(判決事)로, 임추(任樞)를 전한(典翰)으로, 류부(柳溥)를 보덕(輔德)으로, 소세양(蘇世讓)을 사인(舍人)으로, 채침(蔡枕)을 응교(應教)로, 소세량(蘇世良)을 부응교(副應教)로, 박윤경(朴閔卿)을 교리(校理)로, 황효헌(黃孝獻)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戊子臺諫啓前事至再皆不允○以李偉爲判決事任樞爲典翰柳溥爲輔德蘇世讓爲舍人蔡忱爲應教蘇世良爲副應教朴閔卿爲校理黃孝獻爲副校理

《中宗實錄 卷40, 19面》

중종 15년 윤 8월 7일(임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어제 재변이 있었으므로 세자가 사제(私第)에 피우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부득이 피우해야 할 형세라면 대궐 안에서 옮겨 거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가 감기 들었다가 이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대비(大妃)께서도 미령하시어 함께 같은 궁(宮)에 있는 것이 온편치 못하므로 자전께서 피우시키시는 것이다. 세자가 나이 들었다면 사처(私處)에 거처할 수 없겠으나, 지금은 어리고 사처에 피우하는 것도 고례(古例)가 있다. 또 본궁은 사처와 같지 않아서 안팎이 엄하게 막혔으므로 피우할 수 있다. 이미 일이 정해졌으므로 고칠 수 없는데, 더구나 오래지 않아 도로 들어올 것임에랴?” 하였다.

○전교하였다.

“삼공이 날마다 문안하므로 자전께서 그 번요(煩擾)한 것을 싫어하여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상이 약방(藥房 : 내의원(內醫院)으로 별칭)에 문기를,

“자전께 약을 올릴 때에 내가 먼저 맛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라.”

하매, 승지(承旨) 윤희인(尹希仁)이 곧 의원에 물으니, 하종해(河宗海)가 ‘약을 맛보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하였다.

○壬辰侍講院輔德柳溥啓曰昨日有災變世子避寓私第未便若勢不得已避之則移寓闕內何如傳曰世子前已感寒今雖差復 大妃亦未寧同在一宮未穩 慈殿使之避寓且世子若年壯不可寓於私處今則幼弱避寓私處亦有古例矣且本宮非若私處內外嚴隔可以避寓今已事定不可改也況不久當還入耶○傳曰三公逐日問安 慈殿惡其煩擾命勿問安○上問藥房曰進藥 慈殿時予當先當其考前例承旨尹希仁卽問醫河宗海云嘗藥例也 《中宗實錄 卷40, 20面》

중종 15년 윤 8월 16일(신축)

상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삼공과 예관(禮官)이 시신(侍臣)에게 술을 내리는 의주(儀註)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문(禮文)을 보면 강서관(講書官) 이하와 유생(儒生)에게 술을 내리고 시신에게도 술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정(情)으로 말하면 작(爵)을 올리기 전에 먼저 시신에게 술을 내리는 것이 이상하나, 예문에 실려 있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시강관(侍講官) 이하에게 술을 내렸다. 드디어 강서관을 나오게 하여 경의(經義)를 논란하게 하였는데, 김양진(金

楊震)·윤탁(尹倬)·정옥형(丁玉亨) 등이 「역(易)」을 강독(講讀)하고, 성세창(成世昌)·서후(徐厚)·채소권(蔡紹權)이 「상서(尙書)」를 강독하고, 김굉(金磁)·임추(任樞)·황효헌(黃孝獻)이 「시(詩)」를 강독하고, 정백봉(鄭百朋)·채침(蔡忱)이 「논어(論語)」를 강독하고 류부(柳溥)·이겸(李謙)·장옥(張玉)이 「중용(中庸)」을 강독하였다. ‘대신을 공경한다.’는 어구에 이르러 이겸이, 장순손(張順孫)이 배척당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뜻을 말하고 아뢰기를,

“망국 패가(亡國敗家)의 소인(小人)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때의 폐단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辛丑 上幸成均館行酌獻禮○三公及禮官議 賜侍臣酒儀註曰以禮文觀之則賜講書官以下及儒生酒侍臣亦當 賜酒但以情而言則進爵前先 賜侍臣酒爲異然從禮文所載可也上從之 御明倫堂賜侍講官以下酒遂進講書官論難經義金楊震尹倬丁玉亨等講易成世昌徐厚蔡紹權講尙書金磁任樞黃孝獻講詩鄭百朋蔡忱講論語柳溥李謙張玉講中庸至敬大臣之語李謙言張順孫見斥不當之意曰號以亡國敗家之小人一時之弊可見於此

《中宗實錄 卷40, 22面》

중종 16년 6월 3일(계미)

등극사 이유청(李惟淸)·부사(副使) 한형운(韓亨允)·서장관(書狀官) 류부(柳溥)가 표문(表文)을 가지고 명 나라 서울에 갔다.

○癸未登極使李惟淸副使韓亨允書狀官柳溥奉表如京

《中宗實錄 卷42, 24面》

중종 19년 6월 11일(갑진)

○류부(柳溥)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강현(姜顯)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甲辰○以柳溥爲司憲府執義姜顯爲司諫院正言

《中宗實錄 卷51, 4面》

중종 19년 6월 20일(계축)

○안윤덕(安潤德)을 호조 판서로, 류부(柳溥)를 홍문관직제학 겸예문관응교(弘文館直提學兼藝文館應教)로, 정응린(鄭應麟)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삼았다.

○癸丑○以安潤德爲戶曹判書柳溥爲弘文館直提學兼藝文館應教鄭應麟爲司憲府執義

《中宗實錄 卷51, 7面》

중종 19년 7월 28일(신묘)

조강에 나아갔다.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강독(講讀)하였다. 상이 임문(臨

文)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천거는 중대하다.’고 말한 것을 살피건대, 지금 산림(山林)에 유일(遺逸)의 선비도 있을 것이며, 조정 사이에도 아랫자리에 침체되어 있는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신은 사람을 천거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라.”

하매, 영사(領事)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외방에 있는 유일의 선비를 신은 알 수 없으나, 조정 사이에도 아랫자리에 침체되어 있는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인물이 적어서 겨우 빈자리를 채울 수 있고, 천거의 일은 근래 하지 않던 것이므로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인재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筓子)를 보면 ‘간사한 사람이 뜬말을 만들어 대신(大臣)·대간(臺諫)이 새로 의심하게 한다.’ 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거짓인 줄 안다면 대신은 참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릇 군신(君臣)이나 부자 사이를 은미(隱微)한 일로 이간하는 자가 없지 않으나, 은미한 일에 어찌 이러한 것이 있겠는가? 지금 인심과 풍속이 박악(薄惡)하여 상하에 반복하는 버릇이 있으니, 이 폐단은 없애야 한다.”

하매, 권균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아직 몰랐습시다. 이제 비로소 얻어 들었는데,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나 말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면 추고하기도 어렵습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이 일이 심상한 뜬말이라면 위에 아뢰기도 어렵겠으나, 이것은 대신·대간을 이간하려는 것이고 그 술책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중(司中)이 생각하기를 ‘그 조짐이 적지 않은데, 위에서 모르시고 상하 사이에 못 의심이 속에 차서 시비를 정하지 못한다면 조정이 위구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아뢰었습니다. 참으로 위에서 아시어, 조정이 그 허무(虛誣)를 알게 하고 참조하여 이간하는 자가 다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참조하여 이간하는 사람을 안다면 그 이름을 써서 아뢰었을 것이며, 이름을 모르더라도 정상이 드러날 것이므로 아뢰었습니다. 접때 이줄(李茁)도 뜬말로 대신을 요동시켰으나, 그것은 경박한 자가 한 것이므로 그 사정이 쉽게 드러난 까닭에 죄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은연히 말한 것이므로 그 말은 들었으나 그 당자를 모르니, 그 위태한 것이 이줄의 일보다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내면 꽤히 그 죄를 징계하겠으나, 우선 조정의 의심을 풀고자 하였으므로 아뢰었습니다.” 하였다.[중략]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부자 사이는 지극히 가까운 것인데 회민태자(懷愍太子)²⁷¹는 참소당하여 죽었고, 군신 사이도 우연하지 않은 것인데 북제(北齊)의 대장군 곡률 광(斛律光)은 임금이 의지하고 한 나라의 흥망이 걸려 있었으나 하루 아침에 참소당하여 패망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참설(讒說)은 위란(危亂)한 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혹 성명(聖明)한 때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짐(朕)은 참설이 군자의 행실을 끊어 없애는 것을 미워한다.’ 하고 또 ‘말만 교묘히 하고 낮빛만 좋게 보이는 공임(公任 : 매우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을 어찌 두려워 하라?’ 하였으니, 요순(堯舜) 때 일지라도 참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술책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점점 스며드는 참소와 살갓에 와 닿는 참소가 자기에게 행해지지 않으면 명철하다고 할 만하고 또 고원(高遠)하다고 할 만하다 하였으니, 오직 밝게 비추어 간위(奸僞)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면 자연히 참소가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회민태자의 일을 보면 참담하다 하겠다.” 하였다.

○辛卯 御朝講講大學衍義補 上臨文曰按此言薦舉爲大今山林遺逸之士亦必有之朝廷之間亦豈無可用之人沉於下位者乎大臣勉於薦人可也領事權鈞曰外方遺逸之士臣未得知之朝廷問亦必有可用之人沉於下位者也但今人物數少僅足填闕而薦舉之事近所不爲故不爲也然人才豈曰無之乎 上曰昨見弘文館筭子云奸人造爲浮言使大臣臺諫相疑深可驚也此不知其出自何人也若知其誣則大臣固不當疑也凡君臣父子之間不無以隱微之事離間之者隱微之事安有如此者乎今人心風俗薄惡上下有反覆之習此弊可去也權鈞曰此事臣未知之今始得聞深爲未安然不得言根則推之亦難矣侍講官柳溥曰此事若尋常浮言則 上達亦難此則欲離間大臣臺諫而其術得行焉司中以爲其漸不少自 上不知而上下之間群疑滿腹莫定是非則朝廷將爲危懼故不得已啓之誠欲自 上知之而使朝廷知其虛誣讒間者不得復行其說也臣等若知讒間之人當書其名而啓之雖不知其名情迹敗露故啓之矣曩者李茁亦以浮言動搖大臣然此輕薄子之所爲其事情易著故得以罪之矣此則隱然言之故聞其言而不知其身其危有甚於李茁之事若得其人則快懲其辜矣姑欲釋朝廷之疑故啓之耳[中略]

○御晝講侍講官柳溥臨文曰父子之間至親而懷愍太子遇譖而死君臣之間亦不偶然而北齊大將軍斛律光爲人主之所倚仗係一國之興亡而一朝遇讒而敗亡自古讒說非徒出於危亂之時亦或出於聖明之朝其曰朕慳讒說殄行又曰何畏乎巧言令色孔壬雖以堯舜之朝不能無讒

271) 회민태자(懷愍太子) : 미상하나 회의태자(懷懿太子)인 듯하다. 회의태자는 당 목종(唐穆宗)의 넷째 아들로, 이름은 이주(李湊)인데, 헌종(憲宗)을 시해하고 목종을 세운 환관(宦官) 왕수징(王守澄) 등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참소당하여 귀양가서 죽었다.

人也然使不得行其術則自然無矣 上曰浸潤之譖膚受之訴不行焉可謂明也已可謂遠也已
惟明以照之使奸偽不得行則自然讚不得行矣觀懷愍之事可謂慘悽 《中宗實錄 卷51, 29面》

중종 19년 9월 12일(계유)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여기에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공경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길흉(吉凶)이 어김 없이 사람에게 있는 까닭은 하늘이 재상(災祥)을 내리는 것이 덕(德)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덕이 순일(純一)하면 언제나 길하지 않음이 없고, 덕이 잡되면 언제나 흉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능히 덕을 삼가면 하늘이 반드시 상서를 내리고, 덕을 삼가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니,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이므로 현응(顯應)과 징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르기를 ‘여는 사람은 그윽한 것과 드러난 것의 차이에 어둡고, 성인(聖人)은 마음과 눈의 차이에 밝다.’ 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일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덕을 삼가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밝은 임금들은 혹 경근(敬謹)하고 명달(明達)하고 문아(文雅)하고 사려(思慮)가 있는 것이 안안(安安 : 자연에서 나오고 애써 하지 않는 모양)하며 혹 성경(聖敬)이 날로 높아지는데, 송경공(宋景公)도 한 마디 말을 착하게 하여 형혹(熒惑)이 물러갔고, 성탕(成湯)이 육사(六事)로 자책(自責)하여 비를 오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능히 경신(敬慎)하고 능히 염려하면 재앙이 바뀌어 상서가 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많은 나라는 그 나라가 반드시 흉한다.’ 한 것은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면 재앙을 바꾸어 상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천심(天心)이 임금을 인애(仁愛)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 장왕(楚莊王)이 ‘하늘이 어찌하여 우리 나라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가?’ 하였는데, 임금의 경구(警懼)가 이러하면 재변이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근래 재변이 그치지 않으니, 지금이 다시 더 수성(修省)할 때입니다. 전자에 지진(地震)이 괴이를 보이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나서 과연 응험(應驗)이 있었거니와, 이제도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없는 해가 없는데, 어느 일이 잘못되어 어느 허물의 징조가 응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또한 형관(刑官)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어찌 알겠는가? 형옥(刑獄)의 일은 다시 더 삼가 살펴야 한다.”

하였다.

○癸酉 御晝講侍講官柳溥曰此言人君事天之敬又言惟吉凶不僭在人惟天疑災祥在德又

曰德惟一動罔不吉德二三動罔不凶是以人君能敬德則天必降祥不能敬德則天必降災天人一理顯微無間而此又云常人暗於幽顯之隔聖人瞭然於心目之間若以天人上下爲相遠則是無敬德之意也是故聖帝明王或欽明文思安安或聖敬日躋而宋景公亦一言之善而熒惑退舍成湯以六事自責而致雨是以人君克敬克念則災轉爲祥古人云多災之國其國必興以其恐懼修省則可以轉災爲祥也此天心之仁愛人君也昔者楚莊王曰天何不降災於我國人君之警懼若是則災變自當消弭矣近來災變不已此更加修省之時也前者地震示恠雌鷄化爲雄而後果有應不知今亦有何事也 上曰災變無歲無之雖不知某事失而某咎徵應然亦安知刑官有所失而然歟刑獄之事須更加慎察可也

《中宗實錄 卷51, 55面》

중종 19년 9월 17일(무인)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류부(柳溥) 등이 아뢰기를,

“근일 재변이 거듭 나타나고 전자에 능(陵)에 참배하는 일도 재변이 있기 때문에 멈추었으며, 무릇 임금의 출입은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제의 답렵(踏獵)도 경구(警懼)하는 마음이 없는 듯한데다가 또 밤에 환궁하는데 호위하던 신하도 많이 전도(顛倒)하여 햇불이 대가(大駕)에 닦쳤으니, 임금의 거동이 어찌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임금의 거동을 법가(法駕)라 한 까닭은 언행(言行)에 법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때에 있어서도 이러할 수 없는데, 더구나 재변이 있을 때이겠습니까? 공구 수성(恐懼修省)해야 마땅한데 이제 이렇게 하시니, 신들의 생각에는 경구하는 마음이 없으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도 홍문관의 생각과 같다. 답렵의 일은 즉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게 하였고 따로 군사를 낸 것이 아니다. 다만 환궁할 때에 동대문으로 들어오면 밤이 되지 않을 것인데, 도로가 이미 닦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동소문으로 들어와서 밤이 되었다. 아뢴 뜻은 지당하다.”

하였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즉위하신 이후로 성밖에서 친열(親閱)과 행행(行幸)을 하신 때가 많았으나, 어제의 행행에는 성문에 못 미쳐서 이미 햇불을 설치하였고 겨우 문을 들어오자 밤이 이미 인정(人定)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아랫사람들이 다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본디 위에서 잘못하신 것이며 임금의 거동은 이러하지 않아야 합니다.[중략]

전교하기를,

“밤에 환궁한 것은 나도 그른 줄 안다. 습진(習陣)을 위한 것일 뿐이 아니라 아올

러 관가(觀稼 : 농사를 봄)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소문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해가 저물 것을 염려하여 병조(兵曹)를 시켜 모든 일을 재촉하여 준비하게 하였으나 곧 아뢰지 않았으므로 이 병조의 낭관(郎官)을 추문하게 하였다. 내 잘못이 아니다.

○戊寅弘文館直提學柳溥等啓曰近日災變疊出而前者拜陵之事亦以有災停之凡人君出入皆當有時而昨日之踏獵亦以無警懼之心又犯夜還宮扈衛之臣亦多顛倒炬火逼於大駕人君舉動豈可如此古云人君舉動謂之法駕者言行當有法也雖在常時猶不可如此况今有災之時宜恐懼修省而今乃如此臣等恐無警懼之心也傳曰予意正與弘文館意同踏獵之事非即時爲之乃預令爲之而非別出軍也但還宮時由東大門而入則不至犯夜道路已修故不得已由東小門而入以致犯夜所啓之意至當○憲府啓曰自即位以後爲親閱及行幸于城外之時多矣而昨日行幸未及城門已設炬火纔入門夜已人定如此之事下人皆以爲未安此固上之所失人君舉動不宜如是[中略]

傳曰乘夜還宮予亦知其非也非止爲習陣而已欲兼觀稼不得已由東小門而還予慮其日暮令兵曹促備諸事而不即啓之故已令推兵曹郎官非予之所誤 《中宗實錄 卷51, 56面》

중종 19년 10월 26일(정사)

○류부(柳溥)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표빙(表憑)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박윤경(朴閏卿)을 사간(司諫)으로, 기형(奇迥)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심언경(沈彦慶)을 헌납(獻納)으로, 김희열(金希說)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丁巳○以柳溥爲司諫院大司諫表憑爲弘文館直提學朴閏卿爲司諫奇迥爲司憲府持平沈彦慶爲獻納金希說爲正言 《中宗實錄 卷52, 16面》

중종 20년 3월 6일(을축)

○김극개(金克愷)를 승정원 좌승지로, 유여림(兪汝霖)을 우승지로, 서후(徐厚)를 좌부승지로, 김영(金瑛)을 우부승지로, 류부(柳溥)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섭(金銛)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로 삼았다.

○乙丑○以金克愷爲承政院左承旨兪汝霖爲右承旨徐厚爲左副承旨金瑛爲右副承旨柳溥爲同副承旨金銛爲弘文館應教 《中宗實錄 卷53, 29面》

중종 20년 3월 26일(을유)

우부승지(右副承旨) 류부가 추관(推官)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장종의 본가(本家)· 처가와 삼절린을 국문하니, 모두들 ‘장종이 동짓달에 시골로 갔다가 일찍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장종은 활쏘는 것이 업

이고 황효정은 문(文)인데 「중용」을 방금 다 배웠다 합니다. 또 다른 틀리는 점은 없는데, 장종 자신은 9월에 시골로 내려갔다 하고 절린들은 동짓달에 시골로 갔었다 하여, 달은 비록 틀리지만 모두들 ‘시골로 내려간 다음 일찍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기에, 마땅히 취품(取稟)한 다음 추국해야 하므로 어제 형장 추문 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장종은 9월에 내려갔다 했고, 절린들은 동짓달에 내려갔다고 하여, 말이 틀리는 데가 있으니 한 차례 형장 신문하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이장종을 추국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장종을 한 차례 형장 신문했으나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그냥 신문할 적에는 ‘9월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다가, 오늘 형장 신문할 적에는 ‘동짓달 28일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여 말이 틀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또 권균(權鈞)이 도사(都事)에게 묻기를 ‘잡아올 적에 들은 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도사가 ‘잡아올 때에 당해 그의 어머니가 울며 「지난해 정월에 장가들었고 선달에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보성은 먼 데라 28일에 서울에서 떠나면 응당 선달에야 내려가게 됩니다.」 했다.’고 하여, 이 말이 옳은 듯하기에 아울러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장종이 한 말이 앞 뒤가 다른 점이 있고 선한(宣漢)은 그의 삼촌이니, 선한과 함께 살았다면 선한의 당(黨)을 장종이 어찌 유독 알지 못하겠는가? 장종이 ‘동짓달 28일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나옥수(羅玉守)가 공술한 말에도 ‘동짓달 18일에 함께 모였다.’고 했었으니, 한 두차례 더 형장해야 한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고 다시 고찰해 보건대, 나옥수가 공술한 말에 ‘선달 18일에 함께 모였다.’고 했으니 동짓달 18일이 아니며, 선한은 곧 장종의 사촌(四寸)이고 삼촌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고찰해 보니, 과연 동짓달 18일이 아니고 곧 선달 18일이다. 달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말이 앞 뒤가 맞지 않고 여러번 죄인들이 공술하는 말에 나왔으며 선한이 그의 사촌인데, 어찌 같은 무리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형장 추문해야 한다. 또 이 추안(推案)은 복잡하여 고찰해 보기가 쉽지 않으니, 이 다음에는 동정(東庭)에서의 추안과 서정(西庭)에서의 추안으로 분리하여 고찰하기 편리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추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장종을 한 차례 형장했으나 전일의 공술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종의 일은 외방(外方)에서 반드시 증거를 고찰해 올 것이니, 우선은 삼성추국(三省推鞠)하지 말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추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나석주(羅石柱)는 옥수(玉守)의 아버지인데, 옥수를 처참(處斬)만 하였으므로 석주를 연좌함은 마땅치 않고, 이택(李澤)은 이연(李淵)의 형이니 법에 의해 연좌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택은 해당되는 죄대로 죄주고, 석주는 놓아 보냄이 가하다.”

하였다.

○乙酉右副承旨柳溥以推官意啓曰李長宗本家及其妻家三切隣鞠之則皆曰長宗至月下鄉未嘗上來云且長宗業弓黃孝貞業文學中庸纜畢云且他無違端而長宗則九月下鄉其切隣則至月下鄉云月雖差而皆曰下鄉後未嘗上來云當取稟然後推之故昨日不得刑推傳曰李長宗則九月下歸云其切隣則至月下歸云言有違端其刑問一次○柳溥以李長宗推事來啓曰長宗刑訊一次不服矣但昨日平招則曰九月下鄉而今日刑推則曰至月二十八日下鄉云言端有違但權鈞問都事曰拿來時所聞何事都事曰當拿來時其母泣曰前年正月娶妻臘月下鄉其間作何罪耶寶城遠地二十八日發京則當於臘月下歸此說似是并稟之傳曰李長宗所言有前後之殊而宣漢其三寸也與漢同居則漢之同黨人長宗豈獨不相知耶長宗曰至月二十八日下鄉羅玉守招辭亦曰至月十八日相會云其加刑一二次可也○柳溥啓曰今承 上教更考之則羅玉守招辭臘月十八日相會非至月十八日也宣漢乃長宗四寸也非三寸也傳曰更考之則果非至月十八日而乃臘月十八日月雖相異而言有前後累出罪人招辭宣漢其四寸也豈不知同類耶刑推可也且此推案冗煩未易考見今後其分東西庭推案以便考見可也○柳溥以推官意啓曰長宗一次加刑與前招無加減矣傳曰長宗事自外方必爲憑閱來矣姑罷三省推○柳溥以推官意啓曰羅石柱玉守之父玉守只爲處斬石柱不宜連坐李澤則李淵之兄法當連坐傳曰李澤以其罪罪之石柱則放送可也

《中宗實錄 卷53, 61面》

중종 20년 3월 28일(정해)

전교하였다.

“어제 경연(經筵)에서 이조 참판 허굉(許磁)이 사람 쓰는 일을 말했는데, 이에 앞서 판서도 이 일을 말했었으니 참판이 말한 것을 가지고 대신들과 의논하라.”

○류부가 금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황효정이 공술한 말과 장련현감의 서장을 대조해 보니 각기 다른 말은 없으나 다만 유숙(留宿)한 날짜가 다르고, 유숙한 집 주인을 황효정은 관속(官屬)이라고 했는데 장련현감은 사노(私奴)라고 하였으니, 이 점이 또한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효정이 처음에는 공술하기를 ‘동짓달 초여드렛날 시골로 내려갔다.’ 하였다가, 다음에는 ‘동짓달 그믐날이다.’ 하여 앞 뒤 말이 같지 않고, 또한 다른 죄인들은 모두 선달에 함께 모였다고 하였는데 그는 모두 동짓달이라 했으며, 삼절린과 사간(事干)들은 모두 선달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으니, 네가 금부에 가서 추관(推官)·대간(臺諫)들과 의논해 보아, 만일 그의 말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추국하고, 모두들 놓아 주어야 한다고 하면 놓아줌이 가하다.” 하였다.

○류부가 금부 추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양산령(楊山令)이 공술한 말은 ‘12월에 함께 모였다.’ 했고, 황효정이 공술한 말은 ‘12월 1일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비록 형장 추문할 것은 없지만, 다만 일이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아래에서 감히 그냥 놓아줄 수 없으니 오직 상께서 재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에 앞서 안처겸(安處謙)을 벨 때 이름이나 자가 거론된 사람들을 모두 죄주었다. 효정도 마땅히 불온한 무리들과 사권(私權) 것을 들어, 우안민(禹安民)의 예대로 장 1백(杖一百) 유3천리(流三千里)에 처하라.”

하였다.[중략]

○류부(柳溥)가 추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황효정(黃孝貞)은 이미 결죄(決罪)했는데, 그의 아버지 황우(黃祐)가 간혀 있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놓아주라.’ 전교하였다.

○丁亥傳曰昨日經筵吏曹叅判許磁言用人事前此判書亦言此事其以叅判之言議于大臣○柳溥自禁府來啓曰以黃孝貞招辭及長連縣監書狀比對則無各異之辭但其留宿之日有異而其所接家主孝貞則謂官屬而長連縣監則謂私奴此亦有異也傳曰黃孝貞初供曰至月初八日下鄉而後則曰至月晦日前後不同且他罪人皆稱臘月相會此則皆曰至月其三切隣及事干則皆稱臘月下鄉爾其往禁府與推官臺諫議之如曰其言各異則推之皆曰可放則放之可也○柳溥以禁府推官等意啓曰楊山令招辭十二月相會孝貞招辭十二月初二日下鄉此事雖不至於

刑推而但事涉重大自下不敢專釋惟 上所裁傳曰前此安處謙之誅其名字相舉人皆罪之孝貞亦當以交結不逞之徒依禹安民例杖一百流三千里[中略]

○柳溥以推官意啓曰黃孝貞已決罪其父祐在囚敢稟傳曰其放之 《中宗實錄 卷53, 62面》

중종 20년 4월 2일(신묘)

○승지(承旨) 류부(柳溥)가 추관(推官)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노영정(盧永貞)과 고읍덕·말동 등을 추국하였으나 모두 자복하지 않았고, 충개는 공술하기를 ‘지난달 그믐께 영정의 집에 가자, 영정이 『죄입은 사람들이 모두 나의 친구인데 그들의 죄에 끼이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 영정에게 힐문하니, 영정이 ‘신이 과연 이노신(李魯臣)과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노신과 류세영(柳世榮)이 한 여인을 서로 간음하는 처지이기에, 신과 노신이 함께 류세창(柳世昌) 형제에게 뵈게 보여 속여서 끌어대게 될까봐 의구(疑懼)하였을 뿐이고 달리 한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추문(推問)해야 한다.”

하였다.

○辛卯○承旨柳溥以推官意啓曰推盧永貞及古邑德末同等皆不服虫介招云去月晦時往永貞家永貞曰被罪人皆我友恐叅其罪云以此詰問永貞則曰臣果與李魯臣相交魯臣與柳世榮爭奸故臣及魯臣同爲柳世昌兄弟所憎恐爲誣引以此疑懼而已他無所爲傳曰當更推問

《中宗實錄 卷54, 2面》

중종 20년 4월 3일(임진)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승지(承旨)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노영정을 한 차례 형장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고, 충개·고읍덕·막장은 모두 자복했습니다. 다시 영정을 추문하자 영정도 자복했는데, 다만 ‘세창(世昌) 등이 속여서 끌어대게 될까 의구했었고, 함께 모의를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으며, 또한 ‘이름을 모른다.’는 사람은 곧 연안감(延安監) 팽손(彭孫)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안감을 추문하니, 그는 ‘과연 영정과 집 뒤 동산(東山)에 오르기는 했지만, 성안을 바라다 보거나 의구한 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정과 연안감이 역당(逆黨)들과 교분을 맺고 같이 모의했기 때문에, 동산에 올라 성안을 바라 보다가 장차 도주하려 한 것이다. 비록 그들과 혐오(嫌惡)가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고발을 당한 다음에는 마땅히 해명해야 하는데 감히 이
러했으니, 모의에 참여한 것이 의심없다. 이를 들어 다시 신문해야 한다.”

하였다.

○壬辰 御朝講○承旨柳溥啓曰刑訊盧永貞一次不服虫介及古德莫藏皆已承服更問永貞
永貞亦服但疑懼爲世昌等所誣引相與謀議之事則專無云且名不知人乃延安監彭孫也推延
安監則曰果與永貞登家後東山而無望見城中疑懼之事云傳曰永貞延安監與逆黨交結同謀
故登東山望城內將欲逃走耳雖與彼輩有嫌當於被訴後發明而乃敢如是其與叅謀無疑其以
此更訊可也

《中宗實錄 卷54, 2面》

중종 20년 4월 8일(정유)

승지(承旨) 류부(柳溥)가 정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최원손(崔元孫)이 바른대로 공술하지 않으니, 실정대로 말할 때까지 형장 추문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영정(盧永貞)과 이장종(李長宗 : 역당(逆黨)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자이다.)은 오늘 모
두 세 차례씩 형장을 가해야 하고, 연안감(延安監) 팽손(彭孫)을 아직은 추문하
지 말고 영정의 공술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추문하라. 최원손의 일은 알았다.”

하였다.

○丁酉承旨柳溥以政府意啓曰崔元孫不爲直招限輸情刑推爲當傳曰盧永貞及李長宗以逆
黨被告者今日皆可加刑三次延安監彭孫姑勿推待出於永貞招然後推之元孫事知道

《中宗實錄 卷54, 6面》

중종 20년 5월 15일(계유)

문신(文臣)들에게 정시(庭試)를 보였는데, 당상관은 동편으로 들어가고 당하관은
서편으로 들어가게 했다. 명제(命題)는, 팔진도(八陣圖)를 두고 칠언 율시(七言律詩), 염계(濂
溪)를 두고 칠언 율시, 전연(澶淵)을 두고 오언 율시(五言律詩)를 짓도록 했다.[중략]

○전교하기를,

“요사이 글을 짓도록 하면, 절반쯤 짓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까닭도 없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모두 써서 아뢰라.”

하매, 시관(試官)들이 초계(抄啓)하기를,

“승지(承旨) 류부(柳溥)는 짓지 않았고, 필선(弼善) 임권(任權)은 나오지 않았습
니다.”

하니, ‘추고(推考)하라.’ 전교하였다.

○癸酉庭試文臣堂上官則入東邊堂下官則入西邊命題八陣圖七言律濂溪七言律澶淵五言律[中略]
○傳曰近日命製或有半篇或稱病或有無緣不來者如此之人并抄以啓試官等抄啓曰承旨柳溥不作弼善任權不來矣傳曰其推之
《中宗實錄 卷54, 24面》

중종 20년 6월 4일(임진)

조계(朝啓)를 들었다. 승지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 죄수 윤좌(尹佐)·이후손(李厚孫)이 건춘문(建春門) 밖 큰 나무 위에 앉아 대궐을 향해 징을 치며 소리 높여 울었고, 잡도록 명하였을 때 항거한 죄는 참대시(斬待時)인데, 초복(初覆)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를 어떻게 해야 마땅할 것인가?”

하매, 영사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마땅히 율(律)대로 해야 하는데, 다만 입거(入居)를 모면하려 한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상은 비록 용서할 만하지만, 소위가 지극히 완악(頑惡)하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차관(差官)에게 대항한 것도 불가한데, 더구나 임금의 명을 받아 잡는 데 대해 대항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壬辰 聽朝啓承旨柳溥啓曰典獄署囚尹佐李厚孫坐建春門外大樹上向闕擊錚高聲哭泣命捕時拒捕罪斬待時初覆 上曰此當如何領事李惟淸曰當依律但欲免入居情則可恕 上曰情雖可恕其所爲至頑惟淸曰差官猶不可拒况 命捕耶 上曰依律 《中宗實錄 卷54, 38面》

중종 20년 6월 19일(정미)

○김희수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심사손(沈思遜)을 집의로, 안중손(安中孫)을 장령으로, 조세철(趙世哲)·황윤준(黃允峻)을 지평으로 박호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윤경(朴閔卿)을 사간으로, 김극개(金克愷)를 도승지로, 유여림(兪汝霖)을 좌승지로, 임추(任樞)를 우승지로, 류부(柳溥)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이환(李芑)을 우부승지로, 김세준(金世準)을 동부승지로, 심언광(沈彦光)·황헌(黃憲)을 정언으로 삼았다.

○丁未○以金希壽爲司憲府大司憲沈思遜爲執義安中孫爲掌令趙世哲黃允峻爲持平朴壕爲司諫院大司諫朴閔卿爲司諫金克愷爲都承旨兪汝霖爲左承旨任樞爲右承旨柳溥爲左副

承旨李茂爲右副承旨金世準爲同副承旨沈彦光黃憲爲正言

《中宗實錄 卷54, 46面》

중종 20년 7월 6일(계해)

금부가, 광필(光弼)의 공술이 틀리는 데를 뽑아 서계(書啓)하기를,

“광필은 공술하기를 ‘조부 의중(義中) 및 아버지 옥진(玉珍)이 조계상이 정랑(正郎)이 되었을 때부터 찾아 뵈었다.’고 했는데, 김옥진의 공술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오복(五福)이라 하고 김의중이란 이름은 원근 족친(族親)들 중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 귀정(貴丁)과 뇌러갈 재상(宰相) 집이 없습니다.’ 했으니, 이렇게 말이 서로 틀립니다. 광필의 공술은 ‘내 아명(兒名)이 귀정인데, 열 세 살 때 아버지가 이름을 광필이라고 고쳤습니다.’ 했는데, 김옥진의 공술은 ‘자식 귀정의 이름은 본디 고치지 않았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같지 않습니다. 김광필의 공술은 ‘내가 어제 서소문 밖에 가서 잤는데, 오늘 미명(未明) 때 조모(祖母)의 집 계집종 운비(雲非)가 말하기를 「이세정(李世貞)이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했었고, 우리 조모의 이름은 이묵정(耳墨丁)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령(管領)은 ‘마을 안에 본디 이묵정이니 운비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 또한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광필의 공술이 ‘계상이 그의 계집종 기덕(己德)을 시켜 나를 불러 술을 대접하게 하려 했고, 계상의 종 윤복(尹福)도 「계상이 사과(仕罷)하기 전에 세정이 먼저 왔었다.」고 했습니다.’ 하였고, 광필이 또 ‘운비는 역시 계상의 집 계집종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상의 집과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윤복·운비·기덕이라는 사람은 본디 계상의 집안에 없다.’고 했으니, 이도 말이 서로 틀립니다.[중략]

이어 류부(柳溥)가 위관(委官)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각 사람이 공술한 말을 보건대, 조계상이나 이세정과 관계된 일이 조금도 없으니 광필을 형장 추국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므로 광필을 세 차례 형장 심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으니, 전교하기를,

“귀정이 오래도록 자복하지 않으면 이처럼 더운 철에 이세정 부자가 필시 오래도록 옥에 지체되겠으니, 보석하라.” 하였다.

○癸亥禁府抄光弼達端書啓曰光弼招云祖父義中及父玉珍自曹繼商爲正郎時見謁云金玉珍招言我父名五福也金義中則於遠近族親中皆無有而我及子貴丁於宰相家無所謁見之處此相異也光弼招言我兒名貴丁而年十三歲時父改名爲光弼也金玉珍招言子貴丁名本不改也比亦不同也金光弼招言我於昨日來宿西小門外今日未明時祖母家婢雲非言李世貞過家前而去云吾祖母名耳墨丁也云西小門外居人及管領則言里中本無耳墨丁雲非稱名人亦不

同此也光弼招言繼商使其婢已德呼我將饋酒繼商奴尹福亦言繼商仕罷前世貞先來光弼又言雲非亦是繼商家婢而繼商家切鄰居人皆言尹福雲非已德稱名人於繼商家內本無此相異也[中略]

柳溥仍以委官意啓曰見各人招辭則事無少關於曹繼商李世貞請刑推光弼傳曰如啓光弼刑訊三次不服傳曰貴丁若久不服則當此暑月李世貞父子必久滯於獄其保放

《中宗實錄 卷54, 54面》

중종 20년 7월 7일(갑자)

광필(光弼)을 또 형장 심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광필이 다시 말하기를,

“6월 28일에 계상(繼商)의 집 행랑 첫칸에서 자고, 29일에 종 금손(今孫)을 통해 찾아되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만일 항시 그 집에 드나 들었다면 어찌 하루를 머문 다음에야 비로소 찾아뵈게 되었겠느냐?”

하고, 광필에게 계상의 집 형편과 창문 및 유숙한 방 안에서 본 물건들을 들어 힐문하도록 명하였다. 금부를 시켜 적간(摘奸)하니 모두가 서로 맞지 않았다. 그가 말한 계상의 집 노비(奴婢)도 노비 문서를 고찰해 보니 또한 없었다. 때문에 드디어 세밀히 힐문하도록 명했다.

○류부(柳溥)가 금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전교하신 말씀대로 광필에게 힐문하니, 잡다한 말이 많아 취실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힐문하자 ‘내가 과연 근거없는 일로 고변했습니다.’ 하기에, 고변하게 된 연유를 힐문하니 ‘균등하게 관작(官爵)을 얻고 싶어 그랬습니다.’ 하였는데 이대로 계속 형신을 가하여 죽게 되면 법을 거행하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광필이 이미 무고했다고 했지만, 균등하게 관작을 얻고 싶어 무고했다는 말은 온당하지 못하니, 승지를 시켜 도로 금부에 가서 다시 광필에게 힐문하기를 ‘네가 본래 조계상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으면서도 드나들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너는 광필이라 개명(改名)했다고 했지만, 네 아버지는 「너의 본 이름이 귀정(貴丁)이고, 개명한 적이 없었다.」고 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 ‘조정에 가득한 조신(朝臣)들 중에서 유독 계상 등 두 사람을 무고한 것은 미움이나 원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네가 즉시 그런 흉계를 만들어 고변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흉계를 한 지가 이미 오래였느냐?’고 묻도록 하라. 이렇게 자세히 힐문해 본

다음에야 그 실정을 알게 될 것이고, 인심 역시 통쾌하게 여길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이미 자복했으니, 조계상과 이세정을 놓아 주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금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전교하신 말씀대로 광필에게 힐문하니 모두 자복하지 않았고, 반복해서 힐문해도 마침내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어 위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 사람을 반복해서 힐문해도 승복(承服)하지 않으니, 만일 추국하려면 형장 추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장 추국을 한다면 숨이 떨어지게 될까 싶습니다. 범한 일을 대개는 이미 승복했으니, 속히 법대로 처리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세히 힐문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미 자복한 공술에 따라 조율(照律)해야 한다. 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아비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만일 연좌(緣坐)시킨다면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짐작해서 판부(判付)해야 한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전교하신 말씀대로 반복해서 힐문하니 모두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조부 의중(義中)이란 이름은 짐작으로 속여서 말한 것이고, 조계상의 노비(奴婢)와의 말도 근거없는 것을 속임수로 꾸며서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타의 일들은 모두 문초를 받지 못했으나, 자복하지 않으면 조율(照律)하라고 전교하셨기 때문에 조율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의 아비를 연좌하는 일은, 율관(律官)들을 불러 물어보니, 무고(誣告)한 일을 연좌시키는 법은 「대명률(大明律)」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김광필의 죄는 참부대시(斬不待時 : 죄를 범한 자를 판결 후 바로 참형에 처하는 것)와 가산 몰수로 조율하였다.

○甲子光弼又加刑不服○光弼復言六月二十八日留宿于繼商家行廊第一間二十九日因其奴今孫納謁傳曰若常出入其家則豈至留一日然後始得謁見乎命問光弼以繼商家形勢窓戶及所宿房內所見之物使禁府摘奸則皆不相同所稱繼商奴婢考賤籍則亦無有遂命細詰○柳溥還自禁府啓曰以傳教之辭詰問光弼則其言多雜沓不可取實及窮詰則曰吾果以虛事進告矣問其告之之由則曰欲均得官爵而然耳恐其死而未得行典刑也傳曰光弼既云誣告矣然其欲均得官爵誣告之語未爲穩令承旨其復往禁府更問光弼曰爾本不出入于曹繼商家而乃云出入者何意耶汝則云改名光弼汝父則言汝本名貴丁而未嘗改名云此何故耶滿朝朝臣獨以繼商等二人誣告者有疾怨而然耶爾即生此謀而告之乎抑爲此謀已久乎以此詳問然後可

知其情而人心亦快矣且此人已服曹繼商李世貞其放之○柳溥自禁府啓曰以傳教之辭問光弼則皆不承服反覆詰問而終不得問之矣仍以委官意啓曰此人反覆詰問不承服若推之則當刑推也然若刑推則恐至於殞命也其所犯大槩已承服速正典刑何如傳曰詳問不服則以已服招辭照律且逃出時不言于其父而若緣坐則似未穩可斟酌判付也○柳溥還啓曰以傳教之辭反覆詰問則皆不直招但其祖父義中名則斟酌誣招繼商奴婢以虛事誣飾言之云他事則皆不得取招矣傳教以爲不服則照律故照律而來且其父緣坐事招律官問之則誣告者緣坐之法於大明律無有云金光弼罪以斬不待時籍沒家產照律

《中宗實錄 卷54, 55面》

중종 20년 10월 14일(기해)

조강에 나아갔다. 심의흠(沈義欽)·헌납 김희열(金希說)이 전의 일을 논계(論啓)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고, 다시 아뢰어도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성절사(聖節使)²⁷²가 강을 건널 때가 임박했는데도 선래 통사(先來通事)²⁷³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바야흐로 변방 사단이 있으므로, 적병(賊兵)들이 대기했다가 막는 것인가 싶어 매양 염려된다. 이 뒤로는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들의 자제(子弟)를 반드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가리고, 여진 통사(女眞通事)와 한학 통사(漢學通事)는 비록 일정한 수가 있지만 또한 더 데리고 가도록 하라.”

하매, 영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신도 북경에 가 보았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빨리 출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달 보름 때는 마땅히 도착하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우참찬(右參贊)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의 장계(狀啓)에 ‘선래 통사가 28일에는 마땅히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했었으니, 만일 동팔참(東八站)²⁷⁴에서 소식이 있게 되면, 의주(義州)에서 반드시 치계(馳啓)할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중국에서 일을 끝내지 못해 오래 체류하고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전일에 박영(朴英)이 북경에 갔다 돌아올 적에도 적을 만났었는데, 박영의 일행 중에 힘세고 날랜 사람 하나가 있어 혼자 담당하자, 그들이 모두 무너져 흩어졌었습니다. 거느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용맹스러운 사람 하나만 못한 것이니, 이번 길에도 역시 정해진 인원수 이내에 용맹스러운 사람을 가려서 보내소서.” 하였다.

272)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

273) 선래 통사(先來通事) : 외국에 갔던 사신(使臣)이 돌아올 적에 앞당겨 돌아오는 역관(譯官).

274) 동팔참(東八站) : 압록강과 산해관(山海關) 사이에 있는 여덟 군데의 역참(驛站). 우리 나라 사신이 중국에 갔다올 때의 교통로.

○전교하였다.

“정조사(正朝使)²⁷⁵와 성절사의 내왕에 대해 피인(彼人)들도 그 시기를 알고서 혹시 대기했다 막는가 싶어 매우 염려스럽다. 이번 정조사의 일행은 이미 정해졌고, 이 뒤에 데리고 갈 사람 중에 여진 통사(女眞通事) 및 한학 통사(漢學通事)도 비록 그칠 수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군관(軍管)과 자제(子弟) 및 잡인(雜人)은 무용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라.”

○己亥 御朝講掌令沈義欽獻納金希說論前事不允更啓不答 上曰聖節使越江臨近先來通事尚不至方有邊釁恐爲賊兵邀截每以爲慮自後赴京使臣子弟必擇有武才者而如女眞漢學通事雖有定數亦可加率領事張順孫曰臣亦赴京頗知之矣雖不能速發今月望時當到而至今不來可慮右叅贊柳溥曰平安道觀察使狀啓云先來通事二十八日當越江云若於東八站有聲息則義州必馳啓矣此必在中原未得竣事而久留不發也且前者朴英赴京還來時遇賊英之行有一人驍勇乃獨當彼皆潰散所率雖多不如一人之勇也今行亦可於數內擇勇者送之○傳曰正朝聖節使之行彼人亦知其期或有邀截甚可慮也今次正朝使之行則已定自後行率去之人如女眞及漢通事雖不可改然如軍官子弟及雜人擇武才者送之 《中宗實錄 卷55, 38面》

중종 20년 11월 14일(기사)

우승지(右承旨) 류부(柳溥)가 상의원(尙衣院)의 뜻으로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의 개조해야 할 그릇의 중량이 30여 냥(兩)이나 되고, 또 반드시 십품은(十品銀：순은)을 써야 할 것인데 본원(本院) 및 공조에는 모두 없으니, 무역(貿易)해다 쓰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저자에서 무역해 오면 물의가 불가하게 여기는데, 제향소(祭享所) 등처의 은그릇을 모두 무역해다 개조하였으니 과연 불가하다. 사옹원(司饗院) 및 공조에 소장한 부서진 은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가하다. 함경도가 비록 올해 조금 풍년들기는 하였지만, 은을 채굴(採掘)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으니, 내년 추수 뒤에 단천(端川)에서 채굴하기로 상의원이 공사(公事)를 만들어 아뢰라.”

하였다.

○己巳右承旨柳溥以尙衣院意啓曰中宮殿改造銀器之數至三十餘兩而必用十品則本院及工曹皆無有請貿易用之傳曰凡貿易于市物論以爲不可如祭享所等處銀器皆貿易而改造果爲不可其以司饗院及工曹所藏破銀器打造可也咸鏡道今雖稍稔不可起採銀之役其於明年秋成後採于端川事尙衣院爲公事啓之 《中宗實錄 卷55, 54面》

275) 정조사(正朝使) : 정조(正朝)를 축하하러 중국에 가는 사신.

중종 20년 11월 24일(기묘)

○주장에 나아갔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후한(後漢)의 권신(權臣)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림이 그 손에 달렸었는데도, 사대부(士大夫)들이 정당한 말과 강경한 논(論)으로 대놓고 그들의 뜻을 꺾으므로, 간신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기탄하여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이는 특히 한때에만 통쾌한 일이 아니라, 후일의 선비들이 마땅히 두렵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하매, 참찬관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사람에게는 절의(節義)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기(梁冀)²⁷⁶의 권세와 기염(氣焰)이 훈증하고 치열할 때를 당해 사대부들이 죽음을 아끼지 않고 바른 대로 말한 것은, 광무(光武)가 절의를 숭상하고 권장했던 소치입니다. 또 권신이 국가의 권력을 쥐게 됨은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의 일이 아닌 것이고, 국가의 원기(元氣)가 또한 이로 인해 소멸되고 손상되는 법이니, 임금이 분명하게 결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己卯○御書講 上臨文曰東漢權臣生殺在手而士大夫昌言勁論直折其意奸臣猶有所畏忌不敢爲者此非特快於一時後來之士所當惕念也叅贊官柳溥曰節義之於人大矣當梁冀勢焰薰熾而士大夫不愛其死而直言者由於光武崇獎節義之所致也且權臣竊柄非一朝一夕之故元氣亦以是消傷則人主可不明斷乎
《中宗實錄 卷55, 63面》

중종 20년 윤 12월 14일(무진)

○석강에 나아갔다. 검토관 황염(黃恬)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했습니다. 재변이 수해와 한해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해·달·별의 변괴와 산이 무너지거나 지진이 이는 재변을 또한 반드시 드러내어 써놓음은, 재변이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수한 것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변을 만나면 작은 재변이라고 해서 홀만히 할 수 없는 법인데, 항차 큰 재변을 만났으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한해(旱害)는 해마다 계속된 데다가 지금은 수해 뿐이 아니라 평안도에는 태양의 변괴까지 있었으니 매우 놀라운데, 또한 서울에도 태양의 변괴가 있었습니다. 대범 흰 운기가 태양을 꺾는 것은 천변 중에도 큰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특별히 더 두려워하며 재변을 해소하고 하늘에 응답할 길을 생각한다면

276) 양기(梁冀) : 후한 시대 사람. 자는 백거(伯車). 순제(順帝)·충제(沖帝)가 잇달아 죽자, 질제(質帝)를 세우고서 흉포한 짓을 마구 하므로, 질제가 발호장군(跋扈將軍)이라고 지목하니, 질제를 독살하고 환제(桓帝)를 세우고서 20여 년을 권세를 부리다 잡혀 자살했다. 《後漢書 卷六十四》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또 흰 운기는 병란의 형상인 법이니, 반드시 내부와 외부가 서로 수성(修省)해야 합니다. 비록 변방에 환란이 있더라도 만일 사졸(士卒)과 군마(軍馬)가 정예(精銳)롭고 군사의 식량만 넉넉하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지금 군마도 훈련되지 못하였고 군사들 식량도 고갈되었으니, 다시 더 진념(軫念)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태평한 때라 하더라도 계구(戒懼)하는 마음을 조금도 풀어서는 안되는 법인데, 더구나 요사이는 재변이 겹치고 흰 운기는 병란의 형상임에랴? 양계(兩界)에 바야흐로 변방 사단이 있으면서도 폭발하지 않는데, 발동이 완만하면 환란이 반드시 큰 법이다. 사졸과 군마가 훈련되지 않은 것은 단지 양계만이 아니라 서울도 그러한데, 군비(軍備)가 허술함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하매, 참찬관(參贊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나라 일이 전혀 정리(整理)되지 않았습니다. 옛적에는 일에만 민첩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만 아름답고 일이 실답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신이 보건대,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는 신하들이 무슨 일이고 아뢰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말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못 정리된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농사가 흉년이 들어 민생들이 곤궁한데, 충청도 병사(忠淸道兵使)가 주관하는 관원을 정하여 도둑들을 단속하기를 청하므로 이미 윤허하셨습니다. 만일 도둑들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면 마땅히 미리 금단하여 잡을 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이는 아직 어디서 발동했는지 듣지 못한 것인데, 관원을 차정(差定)하여 민중들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수색하는 군사들이 산골짜기에서 숙직(宿直)하게 되므로 간사한 아전들이 이를 계기로 폐단을 부립니다. 도둑을 막는다는 것이 도리어 탄 도둑을 생기게 하는 것이 되었으니, 신은 유익함은 없고 폐단만 있으리라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도 편치 못하게 여겼으니 아뢴 말의 뜻이 매우 지당하다.” 하였다.

○戊辰○御夕講檢討官黃恬曰此書夏大旱災變莫重於水旱而日月星辰之變山崩地震之災亦必大書之者以變不虛生必有所失也故遇災不可以小災忽之况遇大災其可不更加恐懼乎近者旱災連歲非但水災平安道日變甚爲驚駭亦於京師有日變夫白氣貫日天變之大者也此不知由何事而應也然必有所致另加恐懼思所以弭災應天幸甚且白氣兵象必當內外交修雖有邊患若士馬精強軍食有餘則何憂焉方今軍馬不練兵食匱竭更加軫念焉 上曰雖在平時戒懼之心不可少弛况近來災異疊現白氣兵象兩界方有邊釁而不發發遲則其患必大士馬之不練非但兩界京師亦然軍備虛疎誠非細故參贊官柳溥曰國事全不整齊古者事敏而言不及

言美而事不實何事可濟臣觀經筵入侍之臣何事不啓但不踐言故殊未見整齊也近者年凶民困而忠清道兵使請定主掌官約束捕盜已允之若盜賊方有竊發之患則當預爲禁捕之策此則時未聞竊發于某處而差定官員騷擾人民摘奸弓箭直宿山谷奸吏因緣作弊弭盜只所以超盜臣恐無益而有弊也 上曰兵曹亦以爲未便啓意甚當

《中宗實錄 卷56, 22面》

중종 21년 1월 17일(경자)

○류부(柳溥)를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이환(李荊)을 우승지로, 정옥형(丁玉亨)을 좌부승지로, 박윤경(朴閔卿)을 우부승지로, 허위(許渭)를 동부승지로, 조방언(趙邦彦)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허관(許寬)을 직제학으로, 이귀령(李龜齡)을 전한으로, 강현(姜顯)을 응교로, 심언경(沈彦慶)을 부응교로 삼았다.

○庚子○以柳溥爲承政院左承旨李荊爲右承旨丁玉亨爲左副承旨朴閔卿爲右副承旨許渭爲同副承旨趙邦彦爲弘文館副提學許寬爲直提學李龜齡爲典翰姜顯爲應教沈彦慶爲副應教

《中宗實錄 卷56, 38面》

중종 21년 1월 22일(을사)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신이 전주(全州) 죄수 귀화인(歸化人) 동강(童綱)을 추고(推考)한 사안(事案)을 보건대 ‘당초에 신원을 추문(推問)할 때는 「본디 의주(義州) 지방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는데, 어음(語音)이 우리 나라 말과 같지 않은 것이 많았다. 또 「부모를 따라 동양하러 나오다 어머니는 온양(溫陽)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용인(龍仁)에 이르러 죽었다.’고 했는데, 평안도에 이첩하여 의주의 이정(里正)과 고로(告老)들에게 알아보니 「동강은 본디 의주에 산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했습니다. 이로 본다면 행적이 지극히 모호합니다. 대저 우리 나라는 관방(關防)이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와 도로의 우회(迂回)와 직통을 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동강은 필시 깊은 지방의 야인(野人)인데 동양을 핑계하고 깊이 남쪽 지방까지 들어온 것이니, 망합(莽哈)과 서로 통하게 될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외방(外方)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첩하여 왔다 갔다하는 동안에 반드시 자상하게 국문하지 못했을 것이니, 만일 본조(本曹 : 심정이 이때 병조 판서였다.) 혹은 조옥(詔獄)으로 하여금 잡아다 추문하도록 한다면, 간사한 허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 감옥의 죄수는 문서를 왕복하여 추국(推鞠)하므로 미진한 데가 있을까 싶으니, 잡아다가 추국한다면 간사한 허위를 알게 될 것이다.”

하매, 좌승지(左承旨)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본디 관방이 없으므로 야인들이 기탄없이 드나들며 산천(山川)과 도로를 모두 밟아 보았으니, 만일 다시 본토로 도망해 들어갔다가 우리 국경에서 도둑질하게 된다면 화가 반드시 클 것입니다. 또 전일에 김섬(金銛)이 계문(啓聞)한 것을 듣건대, 고원(高原)에 옮겨가 사는 야인들이 오로지 당장만 편하려 하고 즉각 물러가지 않아 점차 만연하게 되었다 하였고, 평안도에 구금한 야인 10여 명을 거제(巨濟)와 진도(珍島) 등지에 나누어 두기로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다만 당시에 있어서는 사람 수가 비록 적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많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각 고을에 분산해 두지만 만에 하나라도 편리한 틈을 타 하루 아침에 불러 모으게 된다면, 사세가 반드시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진(晉) 나라 때의 오호(五胡)²⁷⁷를 당초에 어찌 만연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곽흠(郭欽)이 용적(戎狄)들을 옮기자고 한 계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받은 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왜노(倭奴)들을 삼포(三浦)에서 살도록 허락했다가 경오년(중종5, 1510)의 왜변(倭變)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야인들은 활 쏘기와 말 타는 기술이 우월하여 왜인들과는 비교가 안되니, 지금 만일 남쪽 지방에 섞여 살도록 한다면 마침내는 복심(腹心)의 고질이 될 것이므로 본토(本土)로 쇄환(刷還)하는 것이 진실로 상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적(夷狄)들은 만연시켜서는 안된다. 지금 만일 남쪽 지방에 분산해 둔다면 한갓 뒤에는 반드시 해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고 양식을 또한 많이 허비하게 되어 과연 편리하지 못하니, 쇄환하는 계책을 거행해야 한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경연(經筵)에서 심정의 말이 동강(童綱)이 외방(外方)에 간혀 있으므로 자세히 국문할 수 없으니 잡아다가 추고(推考)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과연 지당하니 금부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라. 또 류부(柳溥)의 말이, 평안도에 분산하여 구금한 야인들을 남쪽 지방에 두지 말기로 하고 모두 쇄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야수(野獸)같은 무리들을 남쪽 지방에 많이 있게 함은 과연 편리하지 못하다. 내 생각에도 본토에 쇄환하고 싶으니, 다시 의논해서 아될 것을 병조에 말해주라.”

○乙巳 御夕講特進官沈貞曰臣觀全州囚向化童綱推考事當初推問根脚時本於義州地方

277) 오호(五胡) : 진 무제(晉武帝) 때에 북방에서 중국 본토에 이주한 다섯 종류의 호인(胡人)들, 곧 흉노(匈奴)·갈(羯)·선비(鮮卑)·저(氏)·강(羌). 진 무제가 죽은 뒤 제왕(諸王)들이 권력을 다투느라 치고 죽이고 하여 국내가 불안하므로, 이들이 기회를 타 중국을 나누어 차지하고 서로 잇달아 임금에 되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胎生長養云而語音多不如我國之言且隨父母乞糧出來母則歸溫陽父則到龍仁身死云及行移平安道推閱義州里正古老人則童綱元非義州居住人物云以此觀之情迹至爲綢繆大抵我國關防不嚴故外人出入自如道路迂直靡不周知童綱必是深盧野人托於乞糧深入南方不無與莽哈相通之弊但因因在外方文移往來之際必不能詳鞠若令本曹貞時爲刑曹判書或詔獄拿來推之則奸僞必見矣 上曰外方獄囚往復推鞠慮有未盡若拿來推之奸僞可知左承旨柳溥曰我國本無關防野人出入無忌山川道路盡行涉躐若復逃入本土作賊我疆則其禍必大且前聞金銛所啓移居高原野人專爲姑息不卽驅去而漸成滋蔓平安道囚禁野人十餘人分處巨濟珍島等地事朝議已定但在當時口數雖少終必繁滋且今雖分置各邑萬一得乘便隙一朝嘯聚則勢必響應晉之五胡初豈知滋蔓然不聽郭歆徙戎之策故終受禍不少我朝亦許居倭奴于三浦以致庚午之變况野人技長弓馬非倭人之比今若雜處南方則終成腹心之疾刷還本土誠爲長策 上曰夷狄不可滋蔓今若分置南方則非徒後必有害其費公廩亦多果爲未便刷還之策亦可舉也○傳曰於經筵沈貞言童綱囚在外方未必詳鞠請拿來推考云果當其令禁府推鞠且柳溥言平安道分囚野人勿處南方請皆刷還云野獸之徒多居南方果爲未便予意亦欲刷還本土其更議啓事言于兵曹

《中宗實錄 卷56, 41面》

중종 21년 1월 24일(정미)

병조가 아뢰기를,

“평안도에 분산하여 구금한 야인(野人)들의 일은, 당초에 사로잡혀간 우리 나라 사람 3명을 속환(贖還)하면 구금된 야인 1명을 쇄환(刷還)해 주기로 공사(公事)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속환해 오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뒤에 다시 2명을 속환해 오는 자에게는 1명을 쇄환해 주기로 했지만 역시 속환해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일에 김극성(金克成)이 아뢰는 말에 따라, 만일 성심으로 우리 나라 사람을 속환하게 된다면, 비록 1명을 속환해 온다 하더라도 또한 1명을 쇄환하기로 다시 공사를 만들어 여러 야인들에게 효유(曉諭)했었습니다. 또 이전에 야인들이 비록 우리 나라 사람 1명을 속환해 왔지만 2명에 차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쇄환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사로잡아온 야인들을 덮어놓고 돌려보내는 것도 사체에 어그러지니, 아직은 쇄환하지 마는 것이 어떠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류부(柳溥)가 ‘남쪽 지방에 분산해 놓으면 반드시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므로 쇄환하는 것이 편리하다.’ 했는데, 내 생각에도 역시 그렇게 여겼었다. 다만 우리 나라 사람을 비록 1명이라도 쇄환하는 것이 또한 우연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쇄환하는 일을 이미 공사로 만든 것이니, 병조가 아뢴 대로 아직은 구금해

두고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丁未兵曹啓曰平安道分囚野人事當初若贖還我國被擄人三口則許還被囚野人一口事爲公事而無一贖還者其後更以贖還二口者許還一口而又無贖還者故頃因金克誠所啓若以誠心贖還我國人則雖還一口亦贖一口事更爲公事已令曉諭頭頭野人且野人前雖贖得我國人一口而未滿二口故亦有未得刷還之理且擄來野人無端還送亦乖事體姑勿刷還何如傳曰柳溥謂分處南方則必爲後患刷還爲便云予意亦以爲然但我國人雖刷還一口亦不偶然故刷還事已爲公事矣其依兵曹所啓姑令囚待

《中宗實錄 卷56, 42面》

중종 21년 2월 24일(정축)

○주장에 나아갔다. 시강관 이귀령(李龜齡)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조숙후(趙肅侯 : 전국 시대 조나라 임금)가 일찍이 대릉(大陵)에서 놀이 하자 대무 오(大戊午)가 간하기를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급하여, 하루만 일하지 않으면 백날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했다.’ 했습니다. 종자를 심고 가꾸는 데는 각각 시기가 있는 법이어서, 하루를 경작하지 않으면 백 날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또한 내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듣건대 황해도 연안(延安)·백천(白川) 등 고을은 추수하는 초기부터 민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거의 다 유리도망하여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다 합니다. 만일 농사철까지 도로 모여 갈고 심지 않는다면, 민중들만 먹을 것이 없게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용도 또한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지금 특히 연안 등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京畿)의 흉년도 매우 심합니다. 비록 시기에 미쳐 종자를 심으려 해도 먹을 것만이 아니라 종자 또한 없기 때문에 부종(付種)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호조가 마련한 종자가 비록 우연한 계획은 아니지만 태반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비가 순조롭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종을 한 다음에야 마땅히 추수할 가망이 있게 되는 법이니, 농사가 부실할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농사는 시기가 있는 것이어서 만일 유리(流離)한 사람들이 도로 모이지 못한다면 종자가 있어도 파종(播種)하지 못할 것이고, 종자가 없는 사람 역시 경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작은 일이 아니니 마땅히 팔도에 유지해야 한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진휼(賑恤)에 진념(軫念)하시어 한 지아비라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시기에 맞추어 농사를 하여 한 이랑도 묵는 땅이 없게 하려 하시니, 뜻이 지극 하십니다. 다만 지난해의 실농(失農)이 너무 심하여 전답에서 수확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흉년 구제와 종자에 관한 일에 진력하여도 두루 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종자를 호조로 하여금 시기에 맞춰 마련하게 함이 어떠리까?”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농사일을 보살핌은 수령(守令)들의 직책이다. 수령은 마땅히 공문만 보고 사사 일은 잊으며 국가 일만 하고 가사는 잊고서, 농사할 시치를 놓치지 않게 유리(流離)한 민중들을 돌보아 안도하게 해야 한다. 근래에 비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가 부실하다. 그러나 백성들을 잘 돌보아 안도시키고 넉넉하게 종자를 지급한다면 민중들이 유랑하고 도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 금번에 모름지기 넉넉하게 종자를 지급하고 곡진하게 조치하라는 것으로 팔도 및 개성부(開城府)에 하서(下書)하라. 재변이 무슨 일의 반응인지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형옥(刑獄) 사이에서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하게 되기가 더욱 쉬운 법이다. 요사이 각도(各道)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50~70 차례씩이나 형장 심문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속에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겠느냐? 열 차례 이하의 사람은 진실로 모두 계문(啓聞)하기 어렵겠지만, 열 차례 이상의 사람은 비록 의옥(疑獄)이 아니더라도 형장 심문을 한 본의 및 발명한 본인의 사연을 갖추 기록하여 계문하라. 그러면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처치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하서(下書)하라.”

○丁丑○御晝講侍講官李龜齡曰此言趙肅侯嘗遊大陵大戊午諫曰農事方急一日不作百日不食大抵耕種耘耔各其有時一日不耕則非但百日不食亦且終歲不食矣聞黃海道延安白川等邑自秋初民無所食流亡殆盡十室九空云如不及農時還集耕種則非但民無所食國用亦將不贍矣叅贊官柳溥曰今非特延安等地爲然畿甸凶荒已甚雖欲趁時耕種而非但口食也種子亦乏故未得付種云戶曹磨鍊種子雖非偶然太半不足今年雨澤雖調必付種然後當有西成之望農事之不實已可知也 上曰農事有時若流離者未得還集則雖有種子不得播種其無種子者又未得耕此二事皆非細事當諭八道溥曰自 上軫念賑恤欲使無一夫飢餓耕農以時欲使無一畝陳荒其意至矣但去年失農已甚田地所收無幾故於救荒種子之事雖極盡心而不得周足然豈無可爲之道耶種子請令戶曹及時磨鍊何如○傳于政院曰觀課農桑守令之職也守令當公耳忘私國耳忘家使農不失時撫存流民可也近來水旱不調故農事不實然若能存撫百姓優給種子則民不至於流亡矣今須優給種子曲盡措置事下書于八道及開城府可也災變之作雖未知其事之應然刑獄之間感傷和氣尤易近觀各道啓本受刑有五六七十次者其間豈無冤枉者十次以下者固難盡啓十次以上者雖非疑獄其以刑訊本意及發明辭緣具錄啓聞則當與

大臣共議處置其並下書

《中宗實錄 卷56, 54面》

중종 21년 4월 7일(기미)

주강에 나아갔다. 검토관 임병(任柄)이 아뢰기를,

“옛적에는 병무(兵務)와 농무(農務)가 일체이어서 군사가 농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일이 없으면 농사에 힘쓰고 일이 있으면 군무에 종사했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아 병무는 병무이고 농무는 농무이기 때문에 병무와 농무가 두 가지로 됩니다. 만일 군졸들을 들어 말한다면, 한 집에 열 사람이라도 모두 군사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힘쓰는 백성이 적게 되고 군사들은 또한 보인(保人)²⁷⁸이 없기 때문에 군액(軍額) 또한 충실하지 못하니, 만일 병졸을 감한다면 반드시 농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엔 뉘라서 왕의 신민(臣民)이 아니라고 감히 싸움에 나가지 않겠습니까?”[중략]

상이 이르기를,

“군사 중에 여정이 있게 된다면 또한 능히 농사일을 힘쓰게 될 것이다. 옛사람의 말이 ‘군사는 정병(精兵)이어야 하고 많아야 할 것이 없다.’ 했으니, 반드시 여정이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비록 군액을 감하더라도 다음에 또한 물의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경솔하게 할 수는 없고, 변장(邊將)들이 일이 없을 적에 당해서는 군사들을 내보내 농사일을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매, 참찬관(參贊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역대(歷代)에는 군사 중에 여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록 액수(額數)는 많지만 군사가 모두 도망하여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단(孤單)한 군사가 되고 보인(保人)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삼국(三國) 시대에는 군사가 반드시 많지 않았어도 능히 수(隨) 나라와 당(唐) 나라의 백만 군사를 대항했었지만, 통합(統合)한 뒤 삼국이 하나가 되어서는 혹시 변방사단이 있으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 이는 여정과 보솔(保率)도 없고 단지 과장된 인원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양식을 마련하여 적에게 달려가게 되겠습니까? 만일 당번(當番)들은 병역을 맡고 하번(下番)들은 농사를 힘쓰도록 한다면 군졸이 자연히 충실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己未 御晝講檢討官任柄曰古者兵農爲一兵寓於農無事則力農有事則從軍我國則不然兵自兵農自農故兵農爲二若以軍卒言之一家十人皆爲軍士故力農之民少軍士又無保人故

278) 보인(保人) : 정군(正軍)의 군장(軍裝)이나 정군이 복역중에 가사(家事)를 돕기 위해 정군에 딸린 사람.

軍額亦不實若減兵卒則必有益於農也國家有急則誰非王臣何敢不赴戰耶[中略]
 上曰兵有餘丁則亦能力於農作古人云兵在精不在多必使有餘丁可矣今雖減額後亦不無物
 論此不可輕爲也邊將當其無事時出軍民使之力農可也叅贊官柳溥曰歷代之兵多有餘丁故
 可爲農業今則額數雖多而軍皆逃散故只爲單兵而無保人矣我國三國之時軍丁亦必不多而
 能敵隨唐百萬之兵統合之後三國爲一而脫有邊禍則勢不能支此無餘丁保率而只有虛名故
 也雖國家有急其何能備糧赴敵如使當番立役下番務農則軍卒自實矣 《中宗實錄 卷56, 63面》

중종 21년 8월 27일(정축)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우의정 권균의 병세가 근일 더욱 침중하다 하니, 의원(醫員)을 보내어 증세를
 묻고 약을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 증세를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합당한 약을 내의
 원(內醫院)으로 하여금 제조해서 하사하게 하라.” 하였다.
 ○丁丑○都承旨柳溥啓曰聞右議政權鈞病勢近日尤重遣醫問證賜藥何如傳曰速遣內醫詳
 問病證而可當藥物令內醫院劑賜可也 《中宗實錄 卷57, 37面》

중종 21년 9월 11일(신묘)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망원정(望遠亭)에서 무재(武才)를 시험 보일 때 보사(步射)와 소혁(小革)
 을 들로 나누어 동시에 같이 쏘게 하라. 보사는 한 차례에 화살 한 개씩 쏘고
 소혁은 한 차례에 화살 다섯 개씩 쏘게 하되, 모두 세 차례 쏘아서 등급을 정하
 도록 하라.”[중략]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에게 전교하기를,
 “어떤 여자가 물건을 이고 강가에 오래도록 서 있으니 사유를 물어보라.”
 하니, 류부(柳溥)가 즉시 사람을 시켜 물어보게 하였다. 아뢰기를,
 “남새밭에 심은 수박과 가지가 매우 크고 맛 있어서 바치려고 한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인이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성심으로 가지고 와서
 바치려는 것이니 사옹원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라.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배
 [布]를 상으로 주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중략]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와 사관(史官)을 들로 올라오라 명했다. 이어 정광필(鄭

光弼)·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권균(權鈞)·장순손(張順孫)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성묘(成廟)께서 타위(打圍)²⁷⁹⁾하실 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오얏을 가져와 바치니, 받으라고 명하셨다 한다. 오늘 어떤 여자가 물건을 이고 강
 가에 오래도록 서 있기에 물어 보았더니 남새 밭에 심은 수박과 가지를 바치려고
 한다 했다. 나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었으나 백성이 성심으로 가져와 바치는
 것이므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래에 없던 일이니 대신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백성에게는 진실로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²⁸⁰⁾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받는 것이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辛卯傳于政院曰今日望遠亭觀武才時步射小革分兩運一時並射步射則一矢小革則以五
 矢定三巡而射[中略]

都承旨柳溥曰有一女戴物久立江邊其問之溥即使人問之乃曰家圃所種西苾茄子甚佳欲獻
 之云傳曰女人私獻不宜受也然以誠來獻其命司饗院受之饋酒賞布而遣之[中略]

○命都承旨柳溥暨史官上階仍傳于鄭光弼南袞李惟淸權鈞張順孫曰予曾聞 成廟嘗打圍
 而近地居人有以園李來獻者命受之今日有一女戴物立江邊久之問之欲以家圃所種西苾茄
 子獻之予初欲不受庶民以誠來獻故命受之但此近來所無之事於大臣之意何如南袞等啓曰
 小民固有獻芹之誠是非受其物也受其誠也受之爲當傳曰知道 《中宗實錄 卷57, 40面》

중종 21년 9월 13일(계사)

○류부(柳溥)가 권균(權鈞)의 집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권균이 망극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만 했을 뿐 특별히 한 말은 없었습니다.”

○癸巳○柳溥還自權鈞家啓鈞但爲謝恩罔極之辭別無所言 《中宗實錄 卷57, 41面》

중종 21년 12월 22일(경오)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영상 남곤의 병이 침중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리는 전례가 있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이 전일 사직(辭職)할 때 가벼운 병이라고 했기에 그렇게 침중한 줄은 몰랐

279) 타위(打圍) : 임금이 스스로 나가서 행하는 사냥을 말한다.

280) 미나리를……정성 : 백성에게는 미약하나마 임금을 위하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文選 嵇康與山巨源書》에 “시골 사람이 햇볕에 등을 쬐는 즐거움과 맛있는 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치
 려 했었다.” 했다.

었다. 내의(內醫)는 약을 제조하여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고, 또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를 명하여 문병하게 하라.”

하였다.

○庚午政院啓曰今聞領相南哀病重遣醫賜藥有前例故敢稟傳曰領相前日辭職謂其微恙而不知其重也其令內醫劑藥往救且命都承旨柳溥問病 《中宗實錄 卷58, 8面》

중종 22년 1월 5일(계미)

전교하기를,

“듣건대 영상(領相) 남곤(南袞)의 병이 위급하다 하니, 도승지를 보내어 문병하고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을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돌아와서 복상 단자(卜相單字)를 봉함(封緘)하여 입계했다. 검열(檢閱) 한숙(韓淑)도 좌상(左相) 이유청의 집에서 돌아와 복상 단자를 입계하였다.

○癸未傳曰聞領相南袞病緊其遣都承旨問之且遣內醫看病柳溥還以卜相書名單字緘封入啓檢閱韓淑亦自左相李惟清家還以卜相書名單字入啓 《中宗實錄 卷58, 11面》

중종 22년 1월 17일(을미)

○전교하였다.

“지금 듣건대 영상(領相)의 병세(病勢)가 매우 위중하다 하니, 내가 몹시 우려하고 있다. 도승지(都承旨)는 가서 문병하라.”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시학(視學)하는 예문(禮文)은 강서관(講書官)이 담당하는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강서관 한 두 사람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가 아뢰었다.

“남곤(南袞)이 ‘신의 복(福)에 재앙이 생겨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했고, 또 ‘권균(權鈞)의 장기(葬期)가 3월에 있습니다. 만약 장사가 끝난 뒤 차출(差出)한다면 삼공(三公)은 좌상(左相)만 남게 될 것입니다. 2월에 시학(視學)할 때는 삼공 가운데 1인은 압반(押班), 1인은 헌관(獻官)이 되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부족합니다. 전일 서계(書啓: 써서 아뢰다)한 사람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채택해서 속히 정승에 임명하소서. 신은 정사(政事)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틀림 없이 정승을 차출하는 것이라 여겨 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전교하였다.

“복상(卜相)은 반드시 조심하고 삼가서 널리 선발해야 한다. 전일 서계(書啓)한 것은 직차(職次)에 따라 서계한 것이니 그 사람들이 누군들 정승이 될 수 없겠는가? 그러나 복상은 중대한 일이다. 전일 이유청은 삼재(三宰 : 좌참찬(左參贊)의 별칭이다)로 정승이 되었었다. 지금 정부의 2품과 육경(六卿) 가운데 어찌 합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다시 생각해서 직차는 따지지 말고 합당한 인물을 가려 서계하라.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서계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영상(領相)에게 주서(注書)를 보내어 물으라. 좌상에게는 사관(史官)을 보내라.”

○乙未○傳曰今問領相病勢緊重予甚軫念都承旨其往問病○禮曹啓曰視學禮文講書官之令吏曹講書官一二人磨鍊何如傳曰依啓○都承旨柳溥啓曰哀云臣福禍災生以至於此又曰權鈞葬期在三月若待此而後出則三公只左相耳二月視學時則三公一人押班一人獻官則恐爲不足也前日書啓人中擇可爲之人速命爲相臣問政事日則必以爲出相也每日望之○傳曰卜相必須難慎而廣選觀前日書啓則但以職次書啓其人等孰不爲政丞乎然卜相乃重事前日李惟清以三宰爲政丞今於政府正二品及六卿中豈無可當人乎須更思之不計職次以人物可當者書啓若無則已有則書啓可也以此意遣注書于領相問之左相則遣史官

《中宗實錄 卷58, 13面》

중종 22년 2월 1일(무신)

영의정 남곤의 사장(辭狀)에 이르기를,

“신(臣)은 나이 육순(六旬)이 다 되어 이런 중병(重病)에 걸렸습니다. 정통한 의원과 좋은 약도 끝내 아무런 효험이 없는 채 점차 기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뒤척이는 데도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하니 다시 며칠이나 더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중임(重任)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병과 함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특별히 딱하게 여기어 신의 직을 체직시켜 주소서. 그러면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은혜는 다시 살려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신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아뢰었고, 말도 순서를 잃은 것이 많아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참을 길이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사장(辭狀)을 보니 내용이 간절하다. 또 병을 간호하는 의원의 서계 단자(書啓單子)에도 병세가 점점 더해 간다고 했다. 체직 여부는 병세의 증감(增減)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체직시켜주면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직한 것이다. 일기가 점차 따뜻해져

가니 체직시켜 병이 회복된다면 다시 이 직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좌상과 우상에게 묻도록 하라.”[중략]

전교하기를,

“이제 우상(右相)의 의논을 보건대 ‘직접 영상을 만났는데 중임을 띠고 있어 마음이 편치 못하다 하니 우선 아뢴 대로 윤택하라.’ 했다. 이 의논이 지당하니 우선 체직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승지(承旨)로 하여금 문병(問病)하게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잘 조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효유하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가 남곤의 집에서 돌아와 남곤의 말로 회계(回啓)하기를,

“신이 지금 병에 걸린 지가 이제 50여 일입니다. 음식도 점점 감소되고 기력도 날로 쇠퇴해져서 굴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아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신은 거의 죽게 된 가운데도 오히려 중직(重職)을 띠고 있으므로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직한다는 명을 들으니 평생 입은 상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같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신의 병이 끝내 치유되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戊申朔領議政南袞辭狀云臣年垂六旬得此重證醫技雖精藥餌雖良卒無一效歸於漸盡而已臣今轉側須人能復幾日支持歟重任未解心魂驚惕鬱結于中與病俱痛伏願 聖慈特垂矜問許遶臣職則命雖難續恩猶再生臣今在垂死之中既不避煩瀆又言多失倫竊增惶恐迫於情懇冒昧上聞傳曰今觀狀辭懇切且見看病醫書啓單字病證有增無減云遶不遶無關於病之增減然其意以爲若見遶則庶可以安心調理故如此再辭耳日氣漸就溫和雖使遶之若得平復則亦可復爲此職也其以此意遣史官問于左右相可也[中略]

都承旨柳溥自南袞第以其言回啓曰臣得病今至五十餘日飲食日漸減少氣力日就羸憊至於不能運身又年老萬無生理臣在垂死之中而尚帶重職雖一日未能安心今聞遶 命平生 上恩無如今日臣病終雖不愈亦可安心而逝矣

《中宗實錄 卷58, 16面》

중종 22년 3월 24일(신축)

추관(推官)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미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지(傳旨)가 있는 뒤에라야 추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먼저 추문해야 할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정(反正) 이후의 예를 보건대 큰 옥사는 반드시 고발에 따라 추문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생긴 일이라 아직 어느 사람의 소행인지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지적하기가 매우 곤

란하다. 추문하려 한다면 부득이 어제 취초(取招)한 사람을 추국하는 수밖에 없다. 어제 의금부 당상과 좌상·우상을 추관(推官)에 임명했다. 그러나 정1품은 참여되지 않았다. 사람의 생각은 각기 다른 것이니 아울러 추국에 참여하게 하라.”

하매, 추관 등이 함께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정광필(鄭光弼)을 국문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광필을 패초(牌招)하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장순손·이행·이항·황맹헌(黃孟獻)이다.이 아뢰기를,

“궁내의 일을 밖에서는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 궁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추국 하라고 명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나인(內人)을, 외인(外人)이 어디다 기준 을 두고 추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형적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니 속히 명쾌 하게 결단을 내리소서.”

하고, 이유청·심정은 아뢰기를,

“안빈(安嬪 : 창빈(昌嬪) 안씨(安氏))의 계집종 내은덕(內隱德)이 제일 먼저 보았으니, 먼저 추국하게 하소서. 그러나 초하룻날의 일은 신등이 그 전말을 모르겠으니, 다시 그 사람에게 물어서 만일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내다 추국하게 하소서. 궁중의 요괴스런 일 가운데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속히 내다가 추문하소서. 이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위에서도 경악하고 있는 일이니 이대로 침식(寢息)시키기는 미안한 일이다. 세종조(世宗朝)·성종조(成宗朝)의 고사(故事)를 위에서 어찌 모르겠는가? 이런 일은 궁내에서 발단되어 조정과 의논해서 조처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궁중의 일을 아래에서 아뢰어 큰 옥사를 일으켰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아직껏 누구의 소위인지 모르고 있으니 위에선들 어떻게 누구 누구를 추문하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추문하겠다면 어제 취초(取招)받은 사람을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처음에는 사건의 전말을 몰랐었다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이 일은 외인이 지추(指推 : 지적하여 추문하다)해서 실정을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하문하셨으니 어찌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려 추문하도록 하소서. 신의 뜻은 이러합니다.”[중략]

전교하기를,

“전일 취초받았던 사람을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빈(安嬪)의 계집종 내은덕(內隱德)의 공사(供辭)는,

“2월 25일 오후에 소변을 보기 위해 세자궁(世子宮) 서북쪽 담장 밖에 있는 동산(東山)의 나무 밑으로 갔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올려다 봤더니 죽은 쥐를 매달아 놓은 것이 보였으므로 내심 매우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녀(侍女)가 역시 소변보러 그곳에 갔다가 그 쥐를 보고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시녀들이 몰려가서 보고는 모두들 ‘이는 틀림없이 액땀하려는 것이다.’ 했으므로 저도 어저께 봤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매달 쥐를 보니 주둥이는 지졌고 꼬리는 끊겼었으며, 그의 특별한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매달아 놓은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했고, 세자궁의 시녀 은금(銀今)의 공사(供辭)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소변을 보기 위해 세자궁 북쪽 동산(東山) 당향목(唐杏木) 아래로 갔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올려다 봤더니 삼끈에다 죽은 쥐를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진어(眞魚 : 춘치)의 머리통과 수청목(水靑木 : 물푸레 나무)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무수리 현비(玄非)도 소변 보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무심히 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달 초하룻날 아지(阿之)도 ‘대전(大殿) 근처에 불로 지진 죽은 쥐가 버려져 있었다.’ 했습니다만, 저는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양일(兩日)에 있었던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자궁 색장방자(色掌房子)인 은금(銀今)의 공사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상궁(尙宮)이 ‘동산에 쥐를 매달았다고 한다. 너도 감찰(監察)이니 의당 같이 가서 봐야 한다.’ 하므로, 시녀 중월(仲月)과 함께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자궁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 당향목 가지 끝에 생삼끈으로 죽은 쥐와 진어의 머리통과 수청목이 함께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있었고 중월이는 그것을 풀었으며, 시녀들도 다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마침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들어 왔으므로 불로 지진 쥐의 모양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또 쥐를 매달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달 초하룻날 대전(大殿) 근처에도 불로 지진 죽은 쥐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궁중에서 잠시 떠드는 말만 들었을 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자궁의 무수리 현비(玄非)의 공사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소변 보기 위해 세자궁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 당향목 아래로 갔었더니, 은금이 먼저 그곳에 와 있었는데 ‘쥐를 당향목 가지 끝에

매달았다.’ 하기에, 제가 즉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삼꾼으로 죽은 쥐의 허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았는데 진어의 머리통과 수청목도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돌아와 아지(阿之)와 상궁(尙宮) 등에게 말했더니, 상궁이 감찰시녀(監察侍女)와 색장방자(色掌房子) 등을 시켜 가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쥐의 형상을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또 이달 초하룻날 대전(大殿) 근처에 불에 지진 쥐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잠시 소문으로 들었으므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자궁 시녀 중월(仲月)의 공사(供辭)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아지(阿之)와 상궁(尙宮) 등이 색장방자(色掌房子)와 나에게 같이 가서 동산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쥐를 보고 오라 했습니다. 즉시 은금과 같이 세자궁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 당향목 아래로 가서 올려다 보니 과연 삼꾼으로 허리를 묶인 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진어(眞魚)의 머리통과 수청목도 함께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금에게 쥐가 매달린 가지 끝을 휘어잡게 한 뒤 내가 손수 풀어서 조사해 보니 그 쥐의 꼬리는 반쯤 잘렸고 주둥이는 불로 지졌으며, 두 귀·두 눈·네 발도 모두 불에 지져져 있었습니다.[중략]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가 이 공사를 가지고 가 입계(入啓)하니, 그 공사를 도로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대저 쥐라는 것은 평상시 보아도 매우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몸소 만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지극히 해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궐내(闕內)에는 방(房) 하나에 거처하는 사람이 한 사람 뿐이 아닌 것으로 그 숫자가 매우 많다. 그리고 쥐가 매달려 있던 곳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慈殿)께서 근거없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까 저어하여, 자비로운 마음에서 묵묵히 말하지 않고 계셨었다는 뜻은 이미 대신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초하룻날 또 그런 짓을 했으니 이는 틀림없이 고의적으로 일을 만들어 사람을 해치려는 수작으로, 지극히 강포(強暴)한 짓이다. 궁내에서 반복하여 물어 보았으나 어느 사람의 소위인지 모르겠으니 실로 지적하기가 곤란하다.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른 법인데 대신의 의견은 어떤가?”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동궁(東宮)을 위해서 아뢰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월(仲月)의 말을 듣건대 대전(大殿)의 침실 곡란(曲欄) 아래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더욱 경악스럽습니다.”[중략]

전교하기를,

“초하룻날의 일을 다시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니 강녕전(康寧殿) 동쪽 처마밑 뜰 아래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곳도 세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 성종조 적의 일도 그 종적을 잡아서 조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이 일은 온 조정이 추문하려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난들 어찌 통렬히 치죄하려 않겠는가? 반복해서 추문해 봐도 지적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하매, 추관 등이 모두 아뢰기를,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으니 세월이 오래되면 간사한 술책이 틀림없이 탄로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 말고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견이 과연 지당하다. 궐정(闕庭)에서 이렇게 추문하면 의심스런 사람이 있다 해도 누가 감히 고발하려 하겠는가? 위에서 늘 잊지 않고 살핀다면 시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혹 서로 싸우든가 혹 진고(進告)하는 데 따라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뒤에 통렬히 치죄하도록 하겠다. 난들 추문하여 죄주고 싶은 마음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하였다.

○辛丑推官等啓曰臣等皆已聚會矣但有傳旨然後可推也且何人爲先推之歟敢稟傳曰以反正後見之大獄必因告而推之今者此事則許多人物往來之處時未知某人所爲自上則指的可疑之人甚難若欲推之則不得已以昨日取招人推之昨日令義禁府堂上及左右相爲推官矣然正一品有未叅歟人之計慮各異並令叅鞫推官等僉啓曰 上教至當鄭光弼並令叅鞫傳曰牌召光弼○義禁府堂上張順孫李苻李沆黃孟獻啓曰內事自外知之甚難請自內可疑人命推爲當官中之人外人豈以準擬推之此事形狀現著須速明斷李惟清沈貞啓曰安嬪婢內隱德先見可以先推也但初一日事臣等未知首尾更問其人如有干涉人請出推之宮中妖恠驚莫甚焉可疑人速出推之此所關重大之事故敢啓傳曰此事自上亦爲驚駭寢息未安且 世宗成宗朝故事自上豈不見乎若如此事自內發之與朝廷議爲之時則有之矣宮中之事自下啓起大獄曾所未聞也時未知某人所爲則自上安能命推某人乎不得已推之則以取招之人推之可也○領中樞府事鄭光弼啓曰臣初不知首尾而今得見之此事非外人指推而得情累日下問豈無可疑之人乎其中可疑人請出而推之臣意如此矣[中略]

傳曰其以取招人推之可也安嬪陪婢內隱德供云在二月二十五日午後以小便之事往于世子宮西北邊牆外東山樹木下仰見死鼠結懸心甚驚懼然不傳說於他人翌日午後名不知有一侍女又以小便事往于其處見其鼠而播諸衆人然後侍女多數往見皆云此必防穰余亦以昨日所見言于衆人矣觀其懸鼠灼其觜斷其尾而別無他物矣至於懸結則非余所知世子宮侍女銀今供云去二月二十六日午後以小便事往于世子宮北邊東山唐杏木下仰見則以麻繩結死鼠而懸于枝上眞魚頭水青木並結矣水賜玄非亦以小便往于其處見之女身初以無心見之故不傳

說於他人矣今月初一日阿之亦曰 大殿近處亦棄置火煎死鼠女身只傳聞而已兩日事不知何人所爲世子宮色掌房子銀今供云去二月二十六日午後尚宮云聞東山有懸鼠汝亦是監察當一時往見矣乃與侍女仲月往見則世子宮北邊牆外東山唐杏樹枝頭以生麻繩結死鼠及真魚頭水青木而懸之矣女身卽俛屈其枝而仲月解結諸侍女亦共見之矣女身則適以多事先來不得詳見灼鼠之形狀若懸鼠則不知何人所爲也今月初一日 大殿近處亦棄置火煎死鼠只於宮中暫聞喧說而已未知其詳世子宮水賜玄非供云去二月二十六日午後以小使事往于世子宮北邊牆外東山唐杏樹下銀今亦先到其處曰有鼠懸結於唐杏木枝上云我卽往見果有死鼠以麻繩結腰倒懸而真魚頭水青木并結矣卽時入來傳說于阿之尚宮等處尚宮使監察侍女及色掌房子等往見而我則更不往見故其鼠形狀不得詳見矣且今月初一日 大殿近處火煎之鼠棄置之事則覽聞奇別而已未知其詳世子宮侍女仲月供云去二月二十六日午後阿之尚宮等使色掌房子及我一時往見懸鼠于東山云卽與銀今一時往于世子宮北牆外東山唐杏樹下仰見則果有鼠以麻繩結腰倒懸而并結真魚頭水青木矣使銀今挽屈懸鼠枝端而我乃手自解結看審則其鼠尾則半斷火煎口齧兩耳兩目四足亦皆火煎[中略]

都承旨柳溥以此供辭入啓還下供辭曰此則詳見之矣大抵鼠於常時所見甚爲陋矣而此乃非親執不能如此爲之矣至爲怪異但闕內一房所居非止一人也其數甚多而懸鼠處亦人之多數往來也故 慈殿以無據之事恐多傷人故以慈悲之言默然不言此意大臣已知之矣初一日又爲之必故令生事謀欲傷人至爲強暴自內反覆問之而不知何人所爲實難指的也人之計慮各異大臣之意何如李惟清啓曰初爲東宮而啓之今聞仲月之言 大殿寢室曲欄又如之云尤爲驚懼[中略]

傳曰初一日事更問下人則於康寧殿東簷階下棄置云此處亦似三街路人多往來矣 成宗朝事得其蹤迹而爲之未可知也今此事朝廷舉欲推之故可疑之人欲得而未能矣若有可疑之人則予豈不欲痛治之乎反覆推之指的甚難推官等僉啓曰大明照察而日月積久則邪術必爲發露請少不弛意而察之傳曰大臣之意果當闕庭如此推問則雖有疑似之人誰敢告之自上寤寐不忘而察之則遲速間或因相聞或因進告而出矣如此然後痛治當矣予之欲推而罪之之心烏可量也

《中宗實錄 卷58, 27面》

중종 22년 4월 7일(계축)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 · 좌의정(左議政) 이유허(李惟清) · 우의정(右議政) 심정(沈貞)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장순손(張順孫) 이행(李荇) 이항(李沆)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황맹헌(黃孟獻) 등을 명소(命召)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일에 대해 아무리 반복해서 궁중(宮中)에 물어 보아도 고(告)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인(奸人)을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조정과 대간이 잇달아 궐정(闕庭)에 모였었고 내외(內外)의 인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러나 분명히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추문하지 못하였다. 어제 대간이 ‘아랫사람을 추문해야 한다.’고 아뢰었고, 나도 이 일은 한 여인의 소위가 아니라 반드시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아랫사람을 형신하려 하였다. 그러나 근거없는 일로 하찮은 자들을 함부로 형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내가 대신들을 부른 뜻은 포고절목(捕告節目)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자수하는 자는 죄를 면해주고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자는 죄준다는 내용을 언문(諺文 : 한글)으로 바꿔 써서 내외에 방(榜)을 붙이면 와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청목(水靑木 : 물푸레 나무)은 궁중에 있는 물건이 아니니 틀림없이 밖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하매, 대신 등이 첨의(僉議)로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죄인을 잡을 수 없게 된 뒤에야 부득이 포고절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외간(外間) 죄인의 예(例)가 아니므로 외정(外庭)에서 절목(節目)을 만들기가 죄송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에서는 위에서 지적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방(榜)을 걸게 하려는 것이다. 되풀이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중대한 일에 정범(正犯)이 색출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경등은 이에 대해 의논해서 아뢰라.”[중략]

○대신 등이 나인을 추국하기 위해 경연청(經筵廳)으로 나아가니, 상이 제명기(題名記)를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여기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을 추문하도록 하라.” 제명기에 기록된 사람은 경빈(敬嬪)의 계집종 범덕(凡德), 안씨(安氏)의 방자(房子) 잉읍화이(仍邑火伊), 김씨(金氏)의 방자 가지가이(加知加伊), 시녀(侍女) 향이(香伊)의 방자 가응지(加應之), 둔일(頓逸)의 방자 생심(生心), 효덕(孝德)의 방자 석비(石非), 천이금(千伊今)의 방자 이비(李非) 등 7인이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가 나인(內人)의 초사(招辭)를 가지고 입계하였다.

“경빈(敬嬪)의 계집종 범덕(凡德)의 공사(供辭)에는 ‘지난 3월 1일 대전(大殿) 침실의 곡란간(曲欄干)에 발이 끊기고 불에 지저진 쥐가 버려져 있었다는 데 대한 근인(根因)을 추문하시는데, 저는 그날 오후 안씨(安氏)와 시녀(侍女) 향이(香伊) 등이 그 쥐를 대비전(大妃殿)으로 가져 왔다고 들었습니다. 대비전 감찰시녀(監察侍女) 소매(小梅)와 나 그리고 각방(各房) 사람들이 실지로 보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추문하시는데, 이는 들어서 알 뿐입니다. 쥐는 직접 못 보았고 또한 누구의 소위인지도 모릅니다.’ 했습니다. 안씨의 방자 잉읍화이(仍邑火伊)의 공사에는 ‘지난 3월 1일 대전(大殿)의 곡란(曲欄) 위에 발이 끊기고 불에 지

저진 쥐가 버려져 있었던 근인을 추문하시는데, 이 일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3월 1일 오후 저와 각방의 방자·사비(私婢) 등이 대비전으로 나아가 추문받을 때도 모른다는 것으로 공초(供招)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가 대전(大殿)에 가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침실 근처에는 으레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 쥐를 못보았고 아울러 근인(根因)도 모릅니다.’ 했습니다. 김씨의 방자 가지가이(加知加伊)·시녀 향이(香伊)의 방자 가응지(加應之)·시녀 돈일(頓逸)의 방자 생심(生心)·시녀 효덕(孝德)의 방자 석비(石非)·시녀 천이금(千伊今)의 방자 이비(李非)의 공초도 위와 같았습니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지금 써서 내린 7인은 모두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같았고, 누구의 소위인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쥐를 저진 일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 분부에는 곡란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들은 으레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어긋난 것 같으니 다시 힐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헌(大司憲) 손중돈(孫仲墩)과 대사간(大司諫) 임추(任樞)는 아뢰기를,

“기타 어긋난 단서는 대신 등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보통으로 추문해서는 절대로 자복(自服)할 리가 없으니, 반드시 형신(刑訊)을 가해야만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수(自首)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침실 근처를 왕래하는 사람이 쥐를 가진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니 이는 매우 솔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자(房子)를 추문하라고 명한 뜻은 이리했다. 방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방의 방자들은 배시(陪侍)하는 사람이므로 모두 침실을 출입하고 있으니, 요사한 일을 하기 위해 쥐를 잡아서 지질 적에 하인으로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기에 추문하라 했었다. 이제 공초를 보니 모두 예사(例事)로 받은 공사(供辭)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른 말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 다시 추문하기를 ‘너의 주인이 쥐를 가지고 왕래할 때 네가 보았지?’ 하거나 ‘이 일은 너의 주인이 한 것이지? 너의 주인이 한 일을 네가 어찌 모르겠느냐? 너의 주인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궁중(宮中)에 반드시 의심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생각에 의심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빈 그릇을 가지고 드나들 적에 같이 드나든 사람은 누구냐? 또 어느 곳에서 있었느냐?’ 하고 다방면으로 힐문하면 착오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드나들 때 가져다 버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이 점도 힐문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 힐문하도록 하라.”

하고, 류부(柳溥)에게 전교하기를,

“이들이 추문을 받고 있지만 역시 내인(內人)이다. 음식은 의녀(醫女)를 시켜 갖다 먹이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가 즉시 다시 추문한 초사(招辭)로 입계(入啓)하였다.

“나인들을 전교의 뜻에 의거 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범덕(凡德)의 공사(供辭)에는 ‘지난달 초하루 오후 홍귀인(洪貴人)은 대비전(大妃殿)으로 갔었고 우리 주인 경빈(敬嬪)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붙에다 지진 일을 사람들이 혹 우리 주인의 소위인 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고 억측했을 뿐입니다. 기타 의심스러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했고, 잉읍화이(仍邑火伊)의 공사에는 ‘나는 당초에 그 쥐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지난 3월 1일 다른 방자(房子)들은 먼저 빈 그릇을 가지고 왔었고 나는 맨 나중에 혼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녀 돈일(頓逸)은 동편 박석(薄石) 쪽에서 나와 음식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만 보았을 뿐 달리 본 사람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가지가이(加知加伊)·가응지(加應知)·생심(生心)·석비(石非)·이비(李非)의 공사도 대략은 위와 같았습니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이들은 이미 다시 추문하여 힐문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추안(推案)을 보건대 어긋난 단서가 없는 것 같으니 형추(刑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긋난 단서가 없다고 해서 형추하지 않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이는 가벼운 일이 아니니 부득이 형장(刑杖)을 가해야겠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한결 같지가 않고 연소(年少)한 자도 있는데 이들을 모두 형신(刑訊)해야겠는가, 아니면 의심스러운 자만 가려서 형신해야겠는가? 이 점을 같이 의논해서 아뢰라.”

하매, 대신 등이 첨의(僉議)로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이들은 과연 특별히 어긋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하니 부득이 아울러 형신해야겠습니다. 형신을 하게 되면 어는 곳에서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늘 침실에 있는 사람이 관련되었는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하인(下人)을 추문하라고 명했었다. 만약 간모인(奸謀人)이 쥐를 가지고 와서 곁에 서서는 다른 사람이 한 짓이라고 말한다면 지극히 애매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침실 근처에는 본디 왕래하지 않던 사람이 쥐를 버리고 달아났는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형문(刑問)한 뒤에야 인심이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1차 형문해서 어긋난 단서가 있게 되면 형장을 가해도 좋다. 하지만 자전(慈殿)이 위에 계신 궐내(闕內)에서 형장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송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궐정(闕庭)에서 형신한 다음이라야 말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내어 추문하기가 쉬울 것이다. 형추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금부에 내리라. 1차 형신하여 어긋난 단서가 없으면 도로 궐내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난신 적자(亂臣賊子)라면 원장(圓杖)을 써야 하겠지만 이들은 경우가 다르니, 형장(刑杖)을 법(法)에 맞추어 맹렬히 때려 형문(刑問)하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형추한 추안(推案)을 가지고 입계하기를,

“범덕·잉읍화이·가지가이·가옹지·생심·석비·이비 등에게 각각 1차 형신을 가했는데 공사(供辭)는 전과 같았습니다.”

하고, 대신 등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을 모두 이미 형실했습니다만 또 실정을 캐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범덕의 초사에 ‘자기의 주인이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했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연히 말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단서가 있었다면 어찌 숨겼겠는가? 증거없는 일로 여러번 형신을 가하는 것이 사리에 어떨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의논해서 아뢰라.”

하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이들을 1차 형문했지만 모두 승복(承服)하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단서가 있었다면 의당 형문을 가해야 겠지만 이들에게는 별로 어긋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계청(啓請)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유의(留意)하여 살피셔서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대간(臺諫)의 장관(長官)이 별도로 아뢰기를,

“1차 형문해 가지고야 어떻게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위의 사람들을 금부(禁府)에 내려 형문을 가해야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범덕의 말에서 나온 단서가 의심스러우니 형문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문을 가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들을 이제 금부에 내려 형문을 가하게 되면 간인(奸人)은 잡지도 못한 채 죄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많이 상(傷)하게 된다. 대신이 아뢴 대로 유념(留念)하여 애를 쓰면, 저들도 위의 뜻을 알고 간인(奸人)

을 고발(告發)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들 뿐만 아니라 궁중(宮中)이 모두 위구심(危懼心)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급하게 다그치면 일에 옳지 못한 점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癸丑命招領中樞府事鄭光弼左議政李惟清右議政沈貞判義禁府事張順孫李苻李沆知義禁府事黃孟獻等啓曰此事雖反覆問諸宮中無告之者故不得奸人矣以此朝廷臺諫連會闕庭內外洵洵非不知也然不能指之故未卽推之耳昨者臺諫啓云下人可推云予亦謂此非一女人所爲必有共謀者以此欲刑訊下人而但以無據之事迷劣之人不可濫杖也予之命招大臣之意欲磨鍊捕告節目而自首者免罪知而不告者罪之事以諺文易書於內外掛榜則意或有來告之者矣且水青木非宮中所有之物必自外入之故言之矣大臣等僉議啓曰常時罪人不得捕獲然後不得已爲磨鍊捕告節目矣此事非如外間罪人例也自外爲節目未安傳曰朝廷欲自上指的而予則不知故欲以此掛榜矣反覆計之事如此其大而正犯未出未知何以則可也卿等其議啓[中略]

○大臣等坐于經筵廳鞠內人下內人等題名記曰□題名人等推之可也其題名記內敬嬪婢凡德安氏房子仍邑火伊金氏房子加知加侍女香伊房子加應之頓逸房子生心孝德房子石非千伊今房子李非等七人也
○都承旨柳溥以內人招辭入啓敬嬪婢凡德供去三月初一日 大殿寢室曲欄干在置斷足火煎鼠根因推問而女身於其日午後安氏及侍女香伊等持進其鼠于 大妃殿同殿監察侍女小梅與我及各房人見知與否推問事問知而已鼠則不得親見而亦不知某人所爲也安氏房子仍邑火伊供去三月初一日 大殿曲欄上在置斷足火煎鼠根因推問而此事專不知之故同日午後女身及各房房子私婢等於 大妃殿進來推問時亦以不知納招矣且同日女身雖持進空器于 大殿而寢室近處則例不得進去故不得親見其鼠而並不知其根因也金氏房子加知加伊侍女香伊房子加應之侍女頓逸房子生心侍女孝德房子石非侍女千伊金房子李非所供上同
○大臣等啓曰今書下七人皆已取招而其辭同非徒不知某人所爲也灼鼠之事專不知之云上教謂曲欄近處人多往來而此人等則例不得進去故專不見知云此似違錯更爲詰問同如大司憲孫仲暉大司諫任樞啓曰他餘違端則如大臣等所啓臣等意謂緩辭平問萬無取服之理必須刑訊然後庶可得其情也不然則誰肯自首乎且以寢室近處往來之人專不知灼鼠事云此甚不直故敢啓傳曰命推房子之意非謂房子自爲此事各房房子等陪侍之人皆出入寢室若爲妖事捕鼠輝灼之時下人非不知之故命推之矣今見供招皆以例事取招如此則其能直言乎今更推問曰汝主持鼠來往時汝見之乎且問此事汝主所爲乎否汝主所爲之事豈汝不知乎汝主若不爲此事則宮中必有所疑者矣汝之所可疑者誰歟且汝持空器出入時誰與同出入乎且立於何處乎以此多般問之則庶可得其錯矣且此人等出入時亦不無棄置之理此亦可詰以此更爲詰問可也傳于柳溥曰此人等雖被推是亦內人也飲食令醫女傳饋可也都承旨柳溥卽以更推招辭入啓內人等以傳教之意詰問則凡德供去月初一日午後洪貴人進歸于 大妃殿我主敬嬪則仍在故同鼠火灼事無乃人或致疑於我主所爲乎以此臆料而已他餘可疑之人則專不聞知也仍邑火伊供我則初不得親見其鼠而可疑之人非徒專未聞知去三月初一日他餘房子等

則空器已先持歸而我則最後獨持而進侍女頓逸出來東邊溥石受去他無證見之人也加知加伊加應之生心石非李非所供大槩上同○大臣等啓曰此人等已爲更推詰問何以爲之敢稟傳曰見此推案則似無違端不可刑推也然以爲無違端不爲刑推亦不可也此乃非輕之事不得已用刑杖也且此人等言辭不一而亦有年少迷劣者並可刑訊耶擇其可疑者刑訊耶其同議以啓大臣等僉議啓曰 上教至當此人等果無各別違端然事乃重大不得已並可刑訊矣若爲刑訊則爲之於何處乎傳曰寢室常在人疑其干連故命推其下人矣若奸謀人持鼠在傍而指爲他人之所爲云爾則至爲曖昧如此事或有之未可知也且安知寢室近處本不往來之人棄鼠而回走耶如此大事必須刑問然後人心可快也今爲刑問一次而若有違端則加刑亦可也 慈殿在上闕內用刑至爲未安然闕庭刑訊然後辭連之人可易出而推之也若有可刑推之人則其下于禁府只一次而無違端者還入闕內可也且亂臣賊子則可用圓杖矣此人等訊杖依法較正而猛杖問之可也○柳溥以刑推推案入啓凡德仍邑火伊加知加伊加應之生心石非李非等刑訊各一次如前供大臣等啓曰此人等皆已刑訊又未得情何以爲之傳曰凡德招辭以其主在寢室故如是疑似云然此乃泛言也若小有違端則豈爲諱哉以無據之事數多加刑未知何如其議啓大臣等啓曰此人等刑問一次皆不承服若有違端則當加刑而此則別無違端故不啓請矣臣等之意請 聖鑑留神而照察推得也臺諫長官別爲啓曰一次刑訊何能得情右人等請下禁府而加刑得情況凡德言端疑似不可不加刑也傳曰所當加刑也然此人等今下禁府而加刑則奸人無得而無罪者反爲多傷若依大臣所啓而留心刻意則彼人等亦知上之意向而來告奸人者意或有之矣非徒此人等也宮中舉皆危懼若如此急爲之則於事恐或不可也 《中宗實錄 卷58, 42面》

중종 22년 5월 13일(기축)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를 보내어 졸(卒)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남곤(南袞)에게 사제(賜祭)하게 하였다.

○己丑○遣都承旨柳溥賜祭于卒領中樞府事南袞 《中宗實錄 卷59, 5面》

중종 22년 7월 17일(임진)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통례원(通禮院)을 추고(推考)하는 공사(公事)는 해당 관원을 추고할 것으로 이미 전지(傳旨)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관청이 잘못된 일은 장관의 책임이 크니, 장관을 추문하소서. 또 듣건대 시강원(侍講院)이 사부(師傅)의 뜻으로 통례원을 죄주기 청할 때에 ‘사체 매몰(事體埋沒)’이란 말을 정원에서 빠뜨리고 아뢰지 않았던 바, 긴요하지 않은 범연한 일이라는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의논을 듣고서야 다시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정원은 전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지위이니, 왕명(王命)을 출

납할 때에는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조심하여야 할 것인데, 더구나 대신이 입계(入啓)한 이런 사연을 마음대로 감하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짐은 기를 수 없습니다. 도승지(都承旨) 류부(柳溥) 및 색승지 조방언(趙邦彦)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문하소서.”

하고, 간원(諫院)은 아뢰기를,

“사중(司中)에서 사인(舍人) 정언호(鄭彦浩)가 연달아 출사(出仕)하고 있는데 가자(加資)에 부정이 있었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금일 사중이 함께 모였으나 이미 서경(署經)을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도당(都堂: 의정부임)의 낭관(郎官)이라서 잡관(雜官)과 비교할 수 없고, 또한 후일을 기다려서 서경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속히 본직을 체직시키소서. 그의 출사와 가자의 정(正)과 부정(不正)은 자연 추문할 관사가 있으니 추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통례원의 일은 해당 관원 및 장관을 함께 체직시키되, 또 사체가 매몰하다는 말은 승지가 처음에는 아뢰었으나 승전을 받들 때에는 미처 넣지 못한 것인데, 그 후에 부당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과연 부표(付標: 쪽지를 붙임)하여 입계하였다. 이것이 무슨 정실이 있어서 이겠는가? 파직은 너무 지나치다. 행공(行公: 공무 집행)하면서 추고(推考)받게 하라. 정언호는 체직시키라.”

○壬辰憲府啓曰通禮院推考公事以當該官已奉傳旨矣但一司誤爲之事長官爲大請推長官且聞侍講院以師傅意請罪通禮院時事體埋沒之言政院脫漏不啓而以不緊泛然之辭捧承傳其後聞未便之論而更捧承傳政院在近密喉舌之地出納之際雖小事在所當況謹此大臣入啓之辭擅減不啓其漸不可長也都承旨柳溥及色承旨趙邦彦請先罷後推諫院啓曰司中聞舍人鄭彦浩連出仕加不正之奇今日於司中齊坐已越署經此乃都堂郎官也不可與雜官比亦不可待後日署經也請速遶本職其出加之正不正自有推處推之則可知也傳曰通禮院當該官及長官並遶之且事體埋沒之言承旨初則啓之而及其捧承傳時未及入之其後聞未便之言而果付標入啓此有何情罷之則過也其行公推考鄭彦浩其遶之

《中宗實錄 卷59, 30面》

중종 22년 8월 20일(을축)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김근사·대사간 김인손이 이항의 일을 극론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지사(知事) 이항(李荇)이 아뢰기를,

“이 일은 홀로 이항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조정이 다 부당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항이 알면서 주달하지 않았다면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이 폐단을 알면서도 아뢰지 못하는데 이항이 홀로 먼저 아뢰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이 반드시 그를 잘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이

와 같이 하니, 이항이 언로(言路)를 막고 사기(士氣)를 저상(沮喪)시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정(時政)의 폐해를 대신이 알면서 어찌 계달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으로 하여금 폐해를 알고도 말할 수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큰 폐단입니다. 지금의 기미(機微)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대저 언로가 어찌 홀로 대신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위에서 또한 짐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찌 이항을 영구(營救)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이 또한 대간에게 논박받을 것을 신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간이 이항의 말이 후폐(後弊)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아뢰었다고 하였으니, 대신이 그 시폐(時弊)를 아뢰는 것을 죄준다면 또한 어찌 폐해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근자에 선비의 풍습의 잘못을 그 즉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언로에 있기 때문에 비록 대신이라도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극도에 이른 연후에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傷)하는 자가 많았던 것이다. 이 일이 만약 여러 사람의 논의라면, 대신이 알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대신과 대간의 말은 일이 옳고 그른 데 있는 것이니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가치고 경중(輕重)을 나누는 것은 마땅치 않다.”[중략]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우의정 심정(沈貞)·좌찬성 이행(李荇)·우찬성 김극픽(金克幅)·대사헌 김근사(金謹思)·승지(承旨) 류부(柳溥)·대사간 김인손(金麟孫)과 사관(史官)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대간의 뜻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다 조정을 위한 일이다. 이항이 대신과 뜻을 같이하여 말하였으니 사(私)가 아니다. 이것으로 하여 죄줄 수는 없다. 죄주면 수상(首相)도 또한 언사(言事)로 인하여 논박받게 된다. 이와 같아서는 대신은 반드시 일을 말하는 것을 어렵게 여길 것이다. 항도 또한 시폐를 바로 잡고자 하여 말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중략]

○대간이 아뢰기를,

“다른 뜻은 지금 면대에서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결정을 모르겠으니 속히 폐단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정광필·이항을 파체(罷遞)시킬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다 말하였다. 대신의 뜻도 이제 면대에서 이미 다 알았다. 만약 광필·이항을 요동시킨다면 의정부도 의논을 같이하였으니 반드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윤택하지 않는다.”

○乙丑 御朝講大司憲金謹思大司諫金麟孫極論李沆事不允知事李荇曰此事非獨沆之意

也朝廷皆以爲未便久矣沆知而不達則實非矣他人則雖知此弊而不能啓之而沆獨先啓之臣意以爲朝廷必以爲美而今反如是若以沆爲欲杜塞言路沮喪士氣則臣實未知也時政之弊大臣知之豈不啓達乎使大臣知弊而不能言此亦大弊也今之幾微固不小矣大抵言路豈獨不在大臣乎自 上亦可斟酌臣蒙國厚恩豈欲營救李沆而言之如是乎臣非不知如此言之亦被臺諫之論但臺諫以沆之言爲有後弊而啓之然大臣啓其時弊又從而罪之亦豈無弊乎 上曰頃者士習之非其時不能言之者其人皆在言路故雖大臣亦不得輕易言之至於極然後矯之故所傷多矣此事若僉議則大臣知之而不言非矣但大臣臺諫之言在於事之是非不宜以位之高下分輕重也[中略]

○上御宣政殿右議政沈貞左贊成李荇右贊成金克愾大司憲金謹思承旨柳溥大司諫金麟孫及史官等入侍 上曰大臣臺諫之意各異然皆爲朝廷事也李沆與大臣同意而言之非其私也不可以此而罪之也首相亦以言事被論如此則大臣必以言事爲難沆亦欲矯弊言之豈有他意哉[中略]

○臺諫啓曰他意今於面對已盡啓之未知發落請速快斷傳曰鄭光弼李沆不可罷遷之意已盡言之大臣之意今於面對皆已知之若搖動光弼李沆則議政府同議爲之必未安故不允

《中宗實錄 卷59, 39面》

중종 22년 9월 10일(갑신)

○신공제를 이조 판서에, 박호를 이조 참판에, 류부(柳溥)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이현보(李賢輔)를 승정원 동부승지에, 이희건(李熙騫)을 홍문관 응교에, 권예를 부응교에, 임백령(林百齡)을 교리에, 주세봉(周世鵬)을 부수찬에, 이항·손중돈(孫仲暉)을 지중추부사에, 성세창(成世昌)을 동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甲申○以申公濟爲吏曹判書朴壕爲吏曹叅判柳溥爲全羅道觀察使李賢輔爲承政院同副承旨李熙騫爲弘文館應教權輓爲副應教林百齡爲校理周世鵬爲副修撰李沆孫仲暉爲知中樞府事成世昌爲同知中樞府事

《中宗實錄 卷59, 54面》

중종 23년 9월 2일(신미)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좌의정 심정(沈貞)·우의정 이행(李荇) 등이 사면(辭免)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근래 재변(災變)이 잇단데다가 어제 또 큰 재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9월이니 절후(節候)는 바로 소리를 거들 때인데 천변(天變)이 이처럼 비상(非常)합니다. 천도(天道)는 흐릿한 것이 아니니, 신(臣)들이 직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변이 이러한 것입니다. 신들의 벼슬을 가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은 천둥이 소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인데 이러하다. 전일에도 천둥이 있기는 했어도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천둥하고 번개치는 것이 마치 여름과 같았으니 매우 놀랍고 괴이하다. 그러나 어찌 대신(大臣)이 직무를 잘못해서 그러하겠는가? 사면하지 말라. 또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본디 공구 수성(恐懼修省 : 두렵게 여겨 자신을 닦고 살핌)해야 하나, 어찌 양손을 모으고만 있겠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재변이 있다 하여 하지 않을 수 없다. 연락(宴樂)과 희완(戲玩) 같은 일은 일체 정파(停罷)하였으나 영릉(英陵)²⁸¹ · 제릉(齊陵)²⁸² 등에는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상하가 폐단을 생각하여 즉위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으니, 아랫사람들이 대(代)가 멀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까 매우 염려된다. 올해에는 농사가 조금 잘되어 경기(京畿) 등에 풍재(風災)와 수재(水災)가 있기는 하였으나 왕년과 같이 심하지 않고 또 지금은 수확할 때이니 농사철과 같지는 않으므로, 다음달 보름 뒤에 날을 가려 조종(祖宗)의 능에 참배하려 하는데 대신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성종조(成宗朝)의 일을 보면 즉위하신 처음에 먼저 능에 참배하시고 또한 여러번 참배하셨는데, 지금 나는 즉위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천변이 이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모른다.”〔중략〕

삼공(三公)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능에 참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흉년 끝에 올해의 농사가 웬만하기는 하나 풍재(風災) · 수재(水災)가 남아 있어서 그 결실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또 납의(衲衣 : 누비 옷) · 엄심(掩心 :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꿰매어 만드는 일을 다른 도 충청도 · 경상도이다. 예서는 사목(事目)대로 하였으나, 전라도에서는 관찰사(觀察使 : 류부(柳溥)이다.)가 잘못 생각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주지 않고 도회(都會)를 정하여 각 고을이 모여서 만들게 하였으니, 그 두께와 길이를 본관(本官)의 수령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전주(全州)로 말하면 도회관(都會官)으로서 감독하여 만들어야 할 것인데도 만든 것이 규격을 어겼으니 죄주는 것이 옳겠으나, 나머지 수령들은 전혀 모르는 일로 죄를 받으니 온편치 못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능에 참배하는 일은 물의가 거행해야 한다고도 하고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하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해야겠다. 전라도의 납의를 만든 일은 감사(監司 : 관찰

281) 영릉(英陵) : 세종과 세종비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의 능. 여주(驪州) 성산(城山) 즉 지금의 여주군 능서면(陵西面) 왕대리(旺垞里)에 있다.

282) 제릉(齊陵) : 태조비(太祖妃)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 풍덕(豐德) 북숙촌(北粟村) 즉 지금의 개풍군(開豐郡) 상도면(上道面) 풍천리(楓川里)에 있다.

사(觀察使)의 별칭)의 잘못이니, 추고(推考)해야 할 것이다. 또 어느 고을은 도회에 서 만들고 어느 고을은 스스로 만들었는지,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분간하여 써서 아뢰게 하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류부(柳溥)가 치계(馳啓)²⁸³하였다.

“지난 7월에 장흥부(長興府)에서 비바람이 크게 일어 부내(府內)의 과원(果園)과 여염의 배나무가 묵은 잎이 죄다 떨어지고 10여 일 만에 새 잎이 죄다 나서 봄처럼 꽃을 피웠습니다.”

○辛未領議政鄭光弼左議政沈貞右議政李荇等辭免曰近來災變連綿而昨日又有大變今乃九月也節侯正收聲之哇而天變之非常如是天道非茫茫也以臣等不能稱職故災變如是也請達臣等之職答曰今者雷始收聲之時而天動如是前日雖有天動猶未分明爲之昨日雷動電光正如夏月甚可驚恠也然豈以大臣失職而然耶其勿辭且人君遇災變則固當恐懼修省也然豈但拱手而已耶若有可爲之事則不可以有災而不爲也如宴樂戲玩之事則一切停罷矣但英陵齊陵等處近以連年凶歉上下計弊卽位二十餘年一不展拜深恐下人則以爲代遠而不爲也今年則農事稍稔京畿等處雖有風水之災然不如往年之甚且今收穫之時非如農月故欲於來月望後擇日往拜于 祖宗之陵於大臣意何如以 成宗朝事見之卽位之初首拜陵寢拜之亦累今予卽位二十餘年一不爲之天變恐或由是以生也[中略]

三公再啓曰臣等非不知拜陵之美事也但凶歉之餘今年農事雖偶然有風水之災其結實亦未可知也故如是啓達且衲衣掩心縫造事他道忠清道慶尙道則依事目爲之而全羅道則觀察使柳溥誤爲執着不分授各官定其都會使各官聚會製造其厚薄長短本官守令所不知也若全州則以都會官所當監造而其所造違格罪之可也他餘守令則以專不知之事被罪恐未便也故敢啓傳曰拜陵之事物論或以爲可行或以爲不可行當廣議處之全羅道衲衣造作事乃監司之誤所當推考且某縣造于都會某邑自造乎下書于監司分揀書啓○全羅道觀察使柳溥馳啓曰去七月長興府風雨大作府內果園及閭閻梨木舊葉盡落其後十餘日新葉盡生發花如春

《中宗實錄 卷63, 1面》

중종 23년 9월 22일(신묘)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라도의 납의(衲衣 : 누비 옷)를 규격을 어겨 만든 임피(臨陂) 수령(守令 : 김수준(金守濬)이다.)과 고부(古阜) 수령(최순성(崔順成)이다.)을 전례에 따라 파직하였는데, 대신이 ‘그 납의는 다 도회관(都會官)에서 만들었으니 그 수령들에게는 죄가 없다.’ 하므로 잉임(仍任 : 계속하여 그 직임을 맡음)시켰다. 그러나 그 도의 관찰사

283) 치계(馳啓) : 사명을 받고 외방(外方)에 나가 있는 신하가 빠른 방법으로 임금에게 서장(書狀)을 보내어 아뢰는 것이다.

(류부(柳溥)이다.)에게 다시 물으니, 그 서장(書狀)에 ‘그 수령들을 각각 가까운 도회관에 붙여 왕래하며 감독하여 만들게 했으니 이것은 그 고을에서 만든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그래서 이 서장의 뜻으로 다시 대신에게 물었더니, 대신이 ‘참으로 관찰사가 왕래하며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는데 이렇게 규격을 어겨 만들었다면 수령은 물론 죄를 받아야 마땅하나, 왕래하며 감독하여 만들게 하지 않았다면 수령에게 죄가 없는데, 그 수령이 추안(推案)을 보면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따라서 그 추안을 대내(大內)에 들여오게 하였으나 이 추안이 번다(煩多)하여 죄다 볼 수 없으니, 사헌부(司憲府)의 성상소(城上所)를 불러 분간하여 아뢰라고 말하라.

또 무릇 거동 때에 전령(傳令)하는 선전관(宣傳官)과 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은 으레 다 가전(駕前)에 있으므로 전교할 일이 있으면 곧 가전에서 전교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교할 일이 별로 없으므로 이러한 전교를 하지 않았는지, 선전관과 의금부의 관원이 다 신관(新官)이므로 옛일을 몰라서 가전에 부르면 놀라고 두려워 할지도 모르니 이 뜻을 미리 선전관과 의금부의 관원에게 말하라.”

○辛卯傳于政院曰全羅道衲衣違格製造臨陂金守濬古阜崔順成等官今依前例罷之而大臣以爲其衲衣皆造於都會官右守令等無罪故使之仍任而更問于其道觀察使柳溥其書狀云使其守令等各於其付近都會官往來監造此與本官所造無異云故以此書狀之意更問于大臣大臣云實爲觀察使使之往來監造而如此違格造之則守令固宜受罪若不令往來監造則守令無罪也觀其守令之推案則可知其使之監造與否之事云故其推案使之入內而此案煩多不可盡見也其招司憲府城上所分揀以啓事言之且凡爲行幸之時傳令宣傳官及義禁府官員例爲皆在駕前故若有傳教之事則卽於駕前傳教近來別無所教之事故不爲如此傳教而宣傳官及義禁府官員皆是新官未知古事若於駕前招之則恐或驚懼也此意預言之于宣傳官及義禁府郎官

《中宗實錄 卷63, 16面》

중종 23년 10월 26일(갑자)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전 대간(臺諫)에게 병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찌 3원(崔重演)·상진(尙震)·이억손(李億孫)이다.)이 한꺼번에 다 서계에 갈 수 없는 병이 났겠습니까? 대간은 백사(百司)를 규정하므로 다른 관원의 예와 같지 않은데, 어찌 먼저 그 도리를 잃고서 백사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중대하므로 사간원이 곧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박받아 갈렸는데, 전 대관(臺官)도 체차(遞差)에 그쳤으니, 이것은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파직하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인재(人才)는 국가의 원기(元氣)이므로 배양(培養)해야 할 것인데, 이제 듣건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류부(柳溥)가 생원(生員)·진사(進士)를 권농(勸農)에 차정(差定)하였다 하니, 그렇게 하면 사기가 이 때문에 저해될 것입니다.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전 대간이 서계에 가지 않은 일은 과연 잘못이나, 다 병 때문에 가지 못하였으니 까닭없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때문에 체차하였고, 이제 바야흐로 인물이 부족하니 다시 파직할 수 없다. 또 전라도 감사(監司)의 일은, 생원·진사를 권농에 차정한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는 것은 중한 일인데, 경중(京中)의 일이라면 그 실정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먼저 파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외방(外方)의 일이므로 소문만으로 먼저 파직할 수 없다. 추고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甲子憲府啓曰前臺諫雖云有病豈有三員崔重演尙震李億孫一時皆得不能往誓戒之病耶臺諫糾正百司非如他員之例豈可先失其道而能糾百司乎所失重大故司諫院以不卽糾正被論見遞而前臺官亦止於適差是無輕重之差也請速罷職諫院啓曰人才國家之元氣所當培養今聞全羅道觀察使柳溥以生員進士差定勸農云然則士氣因是沮喪矣請先罷後推傳曰前臺諫不往誓戒之事果爲非也然皆以病不得往之非無緣不叅也旣以此適差今方乏人不可復罷也且全羅道監司之事其以生員進士差定勸農者不知其以某事爲然也但先罷後推乃是重事若京中之事則的知其實故可先罷也此則乃外方之事不可以所聞先罷矣推之則可知其實也

《中宗實錄 卷63, 62面》

중종 23년 10월 27일(을축)

○헌부가 전 대관(臺官)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 류부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택하지 않았다.

○乙丑○憲府啓前臺官司諫院啓全羅道監司柳溥事皆不允

《中宗實錄 卷63, 62面》

중종 23년 10월 28일(병인)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이 글에 ‘세도(世道)의 치란(治亂)은 인재의 유무에 말미암고 인재의 유무는 학교의 흥폐에 말미암는다.’ 하였다. 대개 학교를 수명(修明)하고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심상히 여겨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더욱더 힘써야 한다. 학교를 수명하는 일을 힘쓰지 않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중략]

김탁이 아뢰기를,

“학교를 일으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한 도(道)의 주인이 되면 인재를 양육해야 할 것인데,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 류부(柳溥)는 양육을 잘하지 못할 뿐더러, 권농(勸農)은 천역(賤役)인데 도리어 생원·진사를 이것으로 삼았으니 듣고 보기에 매우 그롭니다. 그러므로 먼저 파직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상교(上敎)에 그것이 사실인지를 모르고서 먼저 파직하는 것을 옳지 않다 하였고 신도 헛된 일일는지 모르므로 상세히 살펴 물었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습니다. 그 부당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하였겠는가? 참으로 그렇다면 과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방면을 맡긴 사람을 쉽사리 파직할 수 없으니, 먼저 추고하여 그 답통(答通)한 말을 보고 참으로 그러하면 파직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망령되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 사정(私情)이 있었겠습니까? 류부는 이제 이미 추고 받았는데 도회관(都會官)을 따로 정하여 납의(納衣)를 만든 일이다. 다시 추고한다면 추고가 잇달아서 공사(公事)를 할 수 없을 것이니, 방면을 맡은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워서 안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미 개만(箇滿)하였으니 빨리 갈아서 군직(軍職)에 붙이고 나서 추고하여 참으로 죄가 있으면 파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제 다시 추고하면 몸둘 곳이 없을 것이고 외방 사람들도 방면을 맡은 사람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중략]

전교하였다.

“복성군이 내려간 뒤에 부인이 뒤따라 내려갔는데, 그때 삼도(三道)에 분부한 것이 있으므로 내려간 것을 내가 이미 안다. 올라온 것은 내가 처음에는 몰랐으나, 그뒤에 듣건대 그 아버지 윤인범(尹仁範)이 상중(喪中)에 병이 났으므로 병든 아버지를 보러 올라왔다 한다. 무지한 아낙이 아버지를 보고 돌아가는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또 정원에 상언하였다 하는데, 그 상언은 아뢰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른다. 저 감사와 수령의 생각도 내 생각과 같이 아버지를 보고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여 올려 보냈을 것인데 이 일로 나래하여 추고한다면 소문에 있어서도 놀라울 것이다. 또 대간이 논계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부인도 내려갈 것인데 어찌 이 일로 감사와 수령을 나래할 수 있겠는가? 전 대관의 일은 운허하지 않는다. 전라도 감사는 내일 정사(政事)가 있으니 체직한 뒤에 추고하도록 하라. 정언 임봉은 갈도록 하라.”

○丙寅 御朝講 上曰此書云世道之治亂由乎人材之有無人材之有無由乎學校之廢興也盖脩明學校養育人材不可以爲尋常而忽之當更加勉力也不務修明其學校而以爲乏人豈爲可乎[中略]

金鐸曰興學校重事也爲一道主則當養育人才也全羅道監司柳溥非徒不能教養勸農賤役而反以生員進士爲之聞見甚非故啓請先罷而 上教以爲不可不知其實不實而先罷也臣亦恐其虛事詳審問之則其言乃信其爲不當莫甚於此 上曰其人豈爲如此之事哉若實然則果爲誤也然授任方面之人不可輕易罷之也先爲推考見其答通之辭若其實然則罷之未晚也光弼曰妄量計之而然豈有私情乎柳溥今已被推別定都會官衲衣製造之事也若復推考則推考連綿不得爲公事待方面之任不可如是輕也况今已箇滿宜速遞之付于軍職而後推之若實有罪則罷之可也今更推之則措躬無地而外方之人亦必以方面之任爲輕也[中略]

傳曰福成君下去後夫人隨後下去其時有旨于三道故其下去之事予既知之其上來之事予初不知其後聞之以其父尹仁範喪中得病故欲覲病父而上來云無知婦人覲親而還去何害耶且云呈上言于政院云其上言則不啓故予不知之也彼監司守令之意亦如予意必以爲覲親還去而上送矣若以此事而拿來推之則於所聞亦爲驚駭矣且若聞臺諫之論啓則夫人亦必下去矣豈可以此拿來推監司守令乎前臺官事不允全羅道監司明日有政違差後推之可也正言林鵬遠之可也

《中宗實錄 卷63, 62面》

중종 23년 12월 22일(기축)

○조계상(曹繼商)을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에, 류부(柳溥)를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 류관(柳灌)을 우윤(右尹)에, 이사균(李思鈞)을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제수하였다.

○己丑○以曹繼商兼同知義禁府事柳溥爲漢城府左尹柳灌爲右尹李思鈞爲兼五衛都摠府副摠管

《中宗實錄 卷64, 53面》

중종 23년 12월 25일(임진)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류부는 전에 전라도 관찰사였을 때 잘못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곧 본직(本職)을 제수(除授)한 것은 온편하지 못하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류부(柳溥)는 전에 전라도 감사였을 때 생원(生員)·진사(進士)를 권농관(勸農官)으로 삼았거니와, 대간(臺諫)이 날날이 들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전에 추고할 때 그 공함(公緘)²⁸⁴을 보니, 그 생각은 다름 아니라 농상(農桑)을 중하게 여겼을 것이고, 따로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은 알 수 없다. 윤택하지 않는다.”

○壬辰憲府啓曰漢城府左尹柳溥前爲全羅道觀察使時多有誤事卽授本職未便請違傳曰柳溥前爲全羅道監司時以生員進士爲勸農官臺諫雖不枚擧言之前者推考時見其公緘其意無

284) 공함(公緘) : 함문(緘問)하는 공문이다.

他必以農桑爲重也別有誤事未可知也不允

《中宗實錄 卷64, 54面》

중종 24년 1월 4일(신축)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류계종(柳繼宗)과 류부(柳溥)는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辛丑臺諫啓前事 命遞柳繼宗柳溥餘不允

《中宗實錄 卷64, 56面》

중종 24년 4월 1일(무진)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이 이제 북경(北京)에 갈 것인데, 승정원이 ‘황제가 친히 지은 글을 이번 행차에 사오라는 전교(傳敎)가 계셨다.’ 합니다. 그 책 이름을 신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책을 발간하여 판다면 신이 널리 찾아서 사오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한효원(韓效元 : 무자년(중종 23, 1528)에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갔다 돌아왔다.) 이 말하기를 ‘황제가 친히 지은 글을, 장충(張聰)이 『정관정요(貞觀政要)』의 전례와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하였다. 민간에서 발간하였다면 사 와야 하겠으나, 발간하지 않았다면 사 올 것 없다. 최세절(崔世節)이 부경할 때에도 이것을 말하였는데, 잘못 듣고 다른 책(『황명정요(皇明政要)』이다.)을 사왔으므로 다시 말한 것이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었다.

“중국의 일은 신도 전에 보았는데, 하찮은 책이라도 발간하여 파는 것을 일삼습니다. 더구나 이는 황제(皇帝)가 친히 지은 것이니, 사방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겨 발간하였을 것이고 값도 비쌀 것입니다. 살 만한 형제라면, 신이 널리 찾아서 사오겠습니다.”

○戊辰 御朝講

特進官柳溥曰臣今將赴京而承政院以皇帝親製之文今行次貿來事有傳教云其冊名臣未詳知之若如此之冊開刊轉賣則臣當旁求貿來也 上曰前者韓效元戊子年以聖節使赴京以還曰皇帝親製之文張聰請依貞觀政要云民間若開刊則當爲貿來若不開刊不須貿來也崔世節赴京時亦以此言之誤聽以他冊皇明政要貿來故更言之耳柳溥曰中原之事臣亦前者見之雖微小之書以開刊轉賣爲業況此皇帝親製則四方之人必爲貴重其必開刊而價亦必高矣若有可貿之勢則臣當旁求貿來

《中宗實錄 卷65, 18面》

중종 24년 5월 1일(을미)

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류부(柳溥)를 성절사(聖節使)에, 해풍군(海豐君) 이 함(李涵)을 책봉(冊封)된 황후(皇后)의 진하사(進賀使)에 임명하여 경사(京師 : 북경(北京))로 보냈다.

○乙未朔僉知中樞府事柳溥爲聖節使海豐君李涵爲冊封皇后進賀使如京師

《中宗實錄 卷65, 35面》

중종 24년 6월 1일(갑자)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의 서장(書狀)을 승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대신들의 집에 보내어 의논을 아뢰게 하라.”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진위사(陳慰使) 이환(李芑)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중국 조정에서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본조(本朝)의 종계(宗系) 개정에 관한 일을 예부(禮部)에 정문(正文)하니, 예부가 개정하겠다고 면대해서 분명히 말했다.’ 했습니다. 신이 생각해 보건대, 만일 중국 조정이 딴 의논을 하여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부득이 정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으며, 본조의 선원(璿源 : 왕실 계보)과 분파(分派)와 이인임(李仁任)의 족계(族系)를 중국 조정에서 물으면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이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일 주청(奏請)한 문서를 모두 등서(謄書)하여 보내 주소서. 신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甲子朔 於朝講

○下聖節使柳溥出狀略曰臣到義州與陳慰使李芑相遇其言曰中朝大明會典方修改本朝宗系改正事呈文禮部禮部當改正事丁寧面說云臣思之中朝如有他議而仍舊不改則不得已呈文將何如得當本朝璿源分派及李仁任族系中朝若問則不可不答而臣未及詳知前日奏請文書并謄書下送臣仍留待命于政院曰令翰林注書分往大臣家議啓

《中宗實錄 卷65, 54面》

중종 24년 6월 2일(을축)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종계(宗系) 개정에 관한 일은, 전일 주청(奏請)했던 문서를 등서하여 보낸다면, 선원(璿源)의 종계(宗系) 및 이인임(李仁任)의 족계(族系)를 등서해서 보내지 않아도 절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이는 국가의 큰 일이어서 부득불 개정해야 하니, 성절사(聖節使)가 명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 조정이 이미 개정했다면 좋겠지만 만일 개정하지 않았다면, 이 일의 시말을 알려야 합니다. 이인임의 족계를 변명(辨明)하는 일은 전일에 남곤(南袞)이 주청(奏請)한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급히

등서(騰書)해서 보내야 합니다. 또 남곤이 주청할 적에 예부(禮部)에 글을 제출했으니 그 글도 아울러 조사해서 등서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행(李荇)의 의논은 정광필의 의논과 같았다. 이 의논을 승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지금 의논하여 아뢴 뜻을 보건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이미 개정했다면 그 만이지만 만일 개정하지 않았다면, 이 의논 및 남곤이 주청했던 문서를 모두 급히 등서해서 보내라. 또 개정했는지 않았는지는 「대명회전」을 본 다음에야 알게 될 것이니, 「대명회전」을 무역(貿易)할 대가(代價)의 배도 같이 보내라.”

○乙丑領議政鄭光弼議宗系改正事前日奏請文書騰書下送則璿源宗系及李仁任族系不必書送而自然詳知矣左議政沈貞議此乃國家大事不得已改正聖節使待 命至爲善矣中朝若已改則好矣如或不改則不可不知其事之首末而爲之李仁任族系辨明事前日南袞奏請文書盡矣所當急速騰書下送且南袞奏請時呈書于禮部其書并考騰送爲當右議政李荇議與光弼議同下其議于政院曰今見議啓之意大同小異若已改正則已矣如或未改則其以此議及南袞奏請文書并速騰送且改與不改須見會典然後知之會典貿易價布亦并下送

《中宗實錄 卷65, 55面》

중종 24년 6월 5일(무진)

「고려사(高麗史)」 한 권을 승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전번에 승문원(承文院)이 주청(奏請)할 문서를 등서(騰書)하여 입계(入啓)할 적에, 태조(太祖)의 관직을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썼었다. 내 생각에는 전조(前朝)의 관직이 시중(侍中)으로 여겨져서 「고려사」를 고찰해 보니, 문하시중으로 되어 있었다. 다음부터는 상고할 일이 있거든 시중으로 고쳐 쓰라.”

○삼공(三公)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주청사(奏請使)를 보낼 것인지에 관한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주청사를 보냈다가 혹시 강을 건넌 다음에 성절사(聖節使)를 만나 개정하였음을 듣게 된다면 진퇴가 곤란하게 되니,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청(奏請)하는 문서를 정조사(正朝使)에게 주어 보내는 것도 합당치 못합니다. 개정(改正)에 관한 시말을 이미 성절사에게 류부(柳溥)이다. 유시(諭示)했으니, 수정되지 않았다면 정조사가 보고 듣는 대로 형편에 따라 정문(呈文)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청사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戊辰下高麗史一卷于政院曰頃者承文院奏請文書騰書入啓時太祖之職以門下侍郎書來予意謂前朝之職有侍中而考之高麗史則門下侍中爲是幸有後考之事其以侍中改書○三公議啓曰奏請使入送與否事 上教至當奏請使雖入送幸於越江後遇聖節使得聞改正則進退

爲難不可入送也且奏請文書付送于正朝使亦不當其改正首末已諭于 聖節使柳溥若未修改則正朝使聞見而隨宜呈文爲當奏請使不必送之 《中宗實錄 卷65, 58面》

중종 24년 6월 6일(기사)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류부(柳溥：성절사(聖節使)이다.) 및 서장관(書狀官：장옥(張玉)이다.)과 질정관(質正官：조인규(趙仁奎)이다.) 등이 모두 시중(侍中)²⁸⁵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일이니, 급급히 유시(諭示)를 내리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己巳三公啓曰柳溥聖節使及書狀張玉質正趙仁奎等官必皆知其爲侍中矣然此是大事急速下諭何如傳曰如啓 《中宗實錄 卷65, 58面》

중종 24년 6월 7일(경오)

부제학(副提學) 유여림(兪汝霖) 등이 아뢰기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수록된 본국(本國)의 종계(宗系)²⁸⁶에 관한 일은, 신자(臣子)들로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하는 때이니, 진실로 극력 진청(陳請)하여 기어코 고쳐야 합니다. 이번에 주청사(奏請使)를 보내지 않고 단지 성절사(聖節使)와 정조사(正朝使) 등이 정문(呈文)하여 주청한다면, 이것은 배신(陪臣)이 사사로이 주청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환(李荊)이 조정(朝廷：중국 조정임)에서 돌아왔으니 조정이, 우리 나라에서 수정하려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사신을 보내 주청하지 않고 다른 사신에게 주청하게 하는 것은,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중국 조정에 보여주는 처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환이 들은 말은 조정의 명이 아니고 바로 예부(禮部)가 사사로이 한 말인데, 어찌 이를 믿고 천자(天子)에게 주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사신을 보내 주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아뢴 내용은 내 뜻과 같다. 지금은 『대명회전』을 수정하는 때이니, 이 기

285) 시중(侍中)：고려 때에 태조(太祖)의 관직이 문하시랑(門下侍郎)이 아니라 문하시중(門下侍中)인 것을 말하는 것.

286) 종계변무(宗系辨誣)：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아버지가 명(明)나라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밝히어 바로잡은 일. 중종 24년(1529)에 성절사(류부)와 정조사(소세양)을 보내어 주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에 선조(宣祖) 17년(1584)에 황정욱(黃廷彥)을 주청사(奏請使)로 삼아 파견하여 바로잡게 하였다.

회를 놓치지 말고 주청하여 개정해야 하겠기에, 앞서 경연(經筵)에서 대신과 우상(右相) 이행(李荇)이다. 의 논했었다. 그러나 대신이 사신을 보내 주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라.”

○대간이 김안로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대명회전』에 우리 나라의 종계(宗系)가 다른 사람의 성으로 잘못되어 있고, 또 악명(惡名)이 가해져 있습니다. 이는 온 나라 신민들만 통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들의 영혼도 반드시 원통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특별히 대신을 보내 지성으로 주청(奏請)했고, 그때 윤허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름지기 별도로 대신을 보내어 남곤(南袞)이 한 것처럼 지성으로 진청(陳請)하도록 하여 기어코 수정하여야 사체에 온당하게 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주청사(奏請使)를 보내는 일은 대신과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庚午副提學俞汝霖等啓曰大明會典所載本國宗系事臣予所痛心適在會典改撰之時固當極力陳請期於必改今不遣奏請使只以聖節正朝等使呈文陳請此則陪臣私請今李芑已自朝廷回還朝廷亦知我國已聞修改之由而不別遣使奏請憑他使奏請非示中國以重其事也况李芑所聞非朝廷之命乃禮部私言豈可信此而不請於天子乎臣等以謂遣使奏請爲當傳曰今此啓意與予意相同今當會典修改之時其爲請改當不失此機故前於經筵議于大臣右相李荇大臣以爲不須遣使奏請故不果也當以此意更議于大臣○臺諫啓金安老事諫院啓大明會典內我國宗系冒以他姓又加惡名非徒一國臣民通憤也 祖宗在天之靈亦必抱冤於冥冥之中矣以此前者特遣大臣至誠奏請其時雖得蒙允至今尚未修改今須別遣大臣至誠陳請如南袞之爲而期於修改事體至當傳曰奏請使入送事議于大臣餘不允

《中宗實錄 卷65, 58面》

중종 24년 6월 9일(임신)

○예부(禮部)의 탄장(彈章 : 탄핵하는 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주청사(奏請使)는 상하의 의논이 결정되었으니 보내야 하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 전에 주청한 다음에 예부에서 이자(移咨)한 탄장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찾아 들이도록 하였더니, 과연 주청한 것을 그르다고 이자한 것이 있었다. 이는 역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이환(李荇)이 예부(禮部)에 정문(正文)하자 정녕하게 고치겠다고 했지만, 만일 언론(言論)을 담당할 사람들이 탄장을 낸다면 고치려 하겠는가?

또, 고치도록 윤허하는 정덕황제(正德皇帝 : 명 무종(明武宗)을 말함)의 성지(聖旨)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갔던 주청사(윤은보(尹殷輔)이다.)의 말이, 조훈

(祖訓)은 고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이환이 아뢰는 말을 듣건대, 정덕황제가 한 일을 지금 황제가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에는 주청사를 보내야 한다. 다만 이환의 정문 때문에 고쳤다면 말할 것 없지만 만일 고치지 않았다면, 성절사(聖節使)가 반드시 정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신을 보내 주청하였다가 불행히도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그르케 여기는 의논이 있게 된다면, 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문은 사신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고, 주청사는 국왕(國王)이 보내는 것이다. 이번에 주청하였다가 전처럼 탄장(彈章)을 받게 된다면 곤란해지지 않겠는가? 주청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뜻은 이러하다. 대신들에게 문의해 보라.”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심정·우의정 이행·좌찬성 김극성·좌참찬 조원기·우참찬 한효원 등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왔다.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탄장(彈章)을 신들은 미처 기억하지 못했는데 성상께서 기억하시어 찾아보셨으니, 이것은 범연한 일이 아닙니다. 종계(宗系)의 개정은 군부(君父)의 일이므로 신들이 비록 어리석지만 어찌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같은 의논이 있을 것 같기에 앞서도 주청사를 보내지 말자고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신이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소식을 듣고서 정문(正文)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상께서 사신을 보내 주청(奏請)하는 일에 대한 신들의 의견은 헤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날에도 주청하자 탄핵한 논장(論章)을 이자(移咨)해 왔었는데, 지금 다시 발명(發明)하여 개정하려 한들 중조(中朝)에서 가만히 있으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정덕황제(正德皇帝)가 한 일을 지금 황제가 실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전일 의논하여 아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장의 논의로 보더라도 결코 주청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계를 고치고 싶은 마음은 신민(臣民)이나 상하를 막론하고 어찌 한이 있겠는가? 일의 중대성으로 보건대 내가 몸소 만나서 고치기를 청하고 싶다. 그래서 급히 사신을 보내 주청하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 전에 탄장(彈章)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의논하게 한 것이다. 이미 저와 같은 탄장이 있었고, 대신들의 의논도 이러하니, 아직은 주청사를 보내지 말라. 류부(柳溥)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중국 조정의 사정을 들어보고 나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청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정조사(正朝使)가 다시 정문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도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류부(柳溥)도 억지로 변명할 것이 없고, 정조사도 정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탄장(彈章)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朝鮮國王)은 본래부터 예(禮)를 안다고 했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또한 교정(矯情 :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체하는 것)하는 짓을 하고 있다. 조훈(祖訓)에는 ‘아직 기다리라.’는 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신으로 나간 김의(金義)와 진호(陳浩)에게 뇌물을 주면서 다시 고치게 해주기를 요구했다. 그러자 선제(先帝)께서 잘못 듣고 유신(維新)해 주겠다고 하시는 윤허를 내렸었다. 비록 『대명회전』에 쓰인 것은 잠시 덮어놓고라도 조훈(祖訓)이나 구장(舊章)을 감히 어떻게 경솔히 고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지나치게 용의주도한 것 같다. 이로써 헤아려 본다면, 이번의 지나치게 후한 선사는, 간사한 오랑캐가 영구(營求)하기 위한 꾀를 부려 저희 나라를 크게 떠벌려 빛내려는 수작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이상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하는 조서를 내렸거니와, 앞으로는 이 허물을 거울삼아 신하 노릇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전교하였다.

“주청사(奏請使)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니, 소세양(蘇世讓)은 그대로 정조사(正朝使)에 차임(差任)하라.”

○壬申○下禮部彈章于政院曰奏請使上下議定當發送之而予幸慮其前者奏請之後禮部移咨彈章有之故令承文院搜入見之則果以奏請爲非而移咨之事也此亦不可忽而不察也今李芄呈文于禮部而雖丁寧許改持言論者若有彈章之事則其肯許改乎且正德 皇帝雖有 聖旨許改然今去奏請使尹殷輔言聞有祖訓難改之事且聞李芄所啓正德皇帝之事今 皇帝不樂舉行云今奏請使當入送矣但以李芄呈文改之則已矣若不改之則聖節使亦必呈文而又遣使奏請中原幸有非我國之議則此事何如呈文者使臣私爲之事奏請使國王遣送之事也今若奏請而如前日彈章之爲則無乃難乎非以奏請使爲不可入送也予意如是其問于大臣○領議政鄭光弼左議政沈貞右議政李荇左贊成金克成左叅贊趙元紀右叅贊韓效元等承命詣賓廳議啓曰此彈章之事臣等未及記憶而自上覺悟而推見之此非偶然之事也宗系改正君父之事臣等雖愚惑豈不計之乎恐有如此之議故前以勿遣奏請議啓也使臣因他事而去聞奇呈文猶可也自上遣使奏請臣等以爲終不可爲也前日奏請而其彈論移咨如此今雖更欲發明而改正中朝之人其肯默默而不言乎况正德皇帝之事今 皇帝不肯舉行其何以取必於改正乎臣等前日議啓之意以此也且以彈章之議見之決不可奏請也傳曰我國宗系欲改事臣民上下之心寧有紀極以事見之予猶欲親見請改也以此欲速遣使奏請而今朝幸覺前日有彈章之事故更議也彈章既如彼大臣之議又如此奏請使姑勿遣送而柳溥回還後更聞朝廷之事更議而處之可也且不送奏請使則正朝使更爲呈文可乎其并議啓彈章略曰朝鮮國王素號知禮近亦矯情知祖訓有姑待之文而心不自安假來使金義陳浩通賄賂之門而求爲更改致蒙先帝誤聽許以維新雖會典所載曷爲掩除而祖訓舊章豈敢輕易似此用意良亦已勤由是觀之則今者過腆之賜安知非好夷布計營求以爲彼國夸大光重之具也前項□尤遇認既已宥免將來臣節因過尤當謹持光弼等啓曰柳溥猶不可強辨爲之正朝使不須呈文也傳曰可○傳曰奏請使今不入送其以蘇世讓仍差正朝使 《中宗實錄 卷65, 59面》

중종 24년 8월 11일(갑술)

○전교하였다.

“중계(宗系)를 고치는 일은, 전에 이미 주청(奏請)하였고, 남곤(南袞) 등이 주청했다. 이환(李荊)이 또한 지성으로 정문(呈文)하여 개정을 청했으며, 류부(柳溥)가 또 정문하였다. 만약 우리의 청을 들어주어 고치라는 명을 내린다면 우리 나라가 1백여 년 동안 고치지 못한 것을 하루 아침에 개정하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경사(慶事)가 없다. 이 일을 개정하게 되면 중국 조정에서는 자문(咨文)만 보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칙서(勅書)도 내릴 것이다. 전일 우리 나라 경사에 중국 조정에서 칙서를 내리려고 할 때에, 우리 사신에게 묻기를 ‘그대가 칙서를 가지고 가겠는가, 아니면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물으면, 우리 나라 사신들은 우리 나라에 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가지고 왔었다. 그 뒤부터는 이 일을 잘 조처한 것이 아니라고 했었다. 지금 다행히도 중계를 개정하게 되어 칙서를 내리려고 사신에게 묻는다면 마땅히 ‘상국(上國)의 사신이 해외의 나라에 나온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다.’라고 대답하라. 만약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대답한다면 중국 사신이 나오는 것을 꺼리는 뜻이 있는 것 같아 부당하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꼭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이는 바로 예상 밖의 일을 대비하자는 것이다. 뜻밖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창졸간에 반드시 잘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뜻을 미리 알도록 정조사(正朝使)에게 말하라.”

○甲戌○傳曰改宗系事前者已爲奏請南袞等奏請而李荊亦以至誠呈文請改柳溥又爲呈文若得請而命改則我國百餘年未改之事一朝得改其爲慶事孰大於是此事若爲得改則中朝不但爲移咨當降勅書前者中朝以我國慶事欲爲降勅而問於我國使臣曰汝費去勅書乎遣使費送乎我國使臣計其我國之弊而請自受去云遂爲費來其後有以此事爲不善處之云今若幸改宗系而欲爲降勅問之於使臣則當答之曰上國使臣出送海外之國其慶莫大云可也若以親自受去事答之則似有厭天使出來之意此不當也今者非以爲應有此事是乃預爲計外之事幸有此事則倉卒之間必不能善對其預知此意事言于正朝使

《中宗實錄 卷66, 2面》

중종 24년 9월 19일(신해)

승문원이 아뢰기를,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가 아직 서울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문(呈文) 문제는 이미 그만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사(正朝使) 일행이 중국에 도착하면 저들이 묻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니, 의사대로 잘 대답케 함이 어떻겠습니까?

또 윤개(尹漑 : 질정관(質正官)이다.)도 이 일 때문에 가는 것이니, 이런 뜻을 미리 알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듣건대, 중국에서 지지(紙地)에 관해 말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조사해 보니 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지지를 조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에 대해 묻는다면 이 일도 불가불 미리 알아야 되니, 대답할 말을 정조사로 하여금 미리 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辛亥承文院啓曰聖節使柳溥時未來還不知在彼何爲也呈文則已令不爲但正朝使之行到中原在彼有所問在我有所言則隨意善辭何如且尹漑質正官亦爲此以往此意亦當使之預知且聞中原有言紙地之事云考見大明會典則前者我國亦貢紙地若中原問之則此事不可不預先知之所答之言使正朝使預知而去何如傳曰依啓 《中宗實錄 卷66, 22面》

중종 24년 9월 28일(경신)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와 진하사(進賀使) 이함(李菡) 등이 선래통사(先來通事) 권정련(權楨連) 등을 보냈다. 그 서장(書狀)의 대략은,

“신들이 북경에 들어가 예부에 나아가 먼저 낭중(郎中)에게 고하기를 ‘『회전(會典)』에 잘못 기재된 본국 사실이 두 건(件)인데 종계(宗系)와 악명(惡名)이 바로 그것이다. 전에 모 상서(毛尙書)가 이른바 양건(兩件)의 일은 명백히 윤택했는데 우리들이 잘 몰라서 아뢴다.’ 하니, 낭중이 답하기를 ‘양건의 일은 선조(先朝)의 성지(聖旨)에 『모두 개정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상서에게 고하니 그의 말도 낭중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신들이 재삼 고하기를 ‘이렇게 번거롭고 욱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죄가 되는 줄 알지만 일이 군부(君父)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하니, 상서가 답하기를 ‘마땅히 완전히 개정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하고, 또 ‘성절일(聖節日)이 박두하여 본부(本部)에 일이 많다. 끝내고 나서 12~13일 경에 마땅히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들이 예부에 나아가 먼저 해사(該司)를 찾아 보고 제본(題本)이 결정 났는가를 물으니, 낭중이 ‘그 제본은 이미 내렸다. 그대들이 이른바 양건이라고 한 것은 이미 모두 개정하기로 하였다.’ 하기에 신들이 칙서(勅書)를 내려 본국에 알려주기를 청하자 답하기를 ‘그대들의 임금(上奏)하면 칙서를 내릴 것이요, 자문(咨文)을 보내오면 자문으로 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배신(陪臣)의 정문(正文)에 의해 본부가 윤택을 받았으니 그대들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다시 칙서나 자문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다시 상서에게 고했더니,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성지를 베껴 가지고 가라.

마땅히 그대 나라의 사은사(謝恩使)가 오기를 기다린 뒤에 자문을 보내 알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재삼 아뢰었지만 그 대답은 ‘성지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 개정될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서장(書狀)을 보건대, 종계(宗系)를 개정하는 일은 허락받은 듯하니, 매우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예부의 의견은 마땅히 우리 나라로 하여금 ‘사은사를 보내면…….’ 하였으니, 비록 개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성지(聖旨)를 받들었으니, 사은사를 들여보내도 좋을 것인지를 즉시 정부당상(政府堂上)을 불러 회의하여 아뢰게 하라.”

예부(禮部)의 제본(題本)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변무(辨誣)를 진정하는 일로, 주객청리사(主客淸吏司)에서 본부(本部)에 정봉(呈奉)된 안건입니다. 조선국왕이 차견(差遣)해서 보낸 배신(陪臣) 이조 참판 류부(柳溥)와 형조 참판 이함(李菡) 등이 국왕의 명을 받아 성절(聖節)을 하례하는 표문(表文)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국의 의주(義州) 지방에 도착한 진위사(陳慰使) 배신 이환(李荊)에게, 북경(北京)에서 돌아올 때에 조정(朝廷: 중국 조정)에서 지금 막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다시 편수(編修)한다는 말과, 또 본국의 종계(宗系) 등에 관한 일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서장(書狀)을 갖추어 예부에 보고했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溥) 등이 이런 말을 듣고 왔는데, 이제 또 개정하라는 명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통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홍무(洪武: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영락(永樂: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연간의 일을 조사해 보았던 바 국조(國祖) 강헌대왕(康獻大王)과 그 아들 공정왕(恭定王: 정종(定宗)에 대한 본종(本宗)의 세계(世系)가 이인임(李仁任)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이지강(李志剛) 등이 성지(聖旨)를 받든 바 ‘조선 국왕이 이미 이인임의 후손이라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상주했다. 생각컨대 이는 앞서 전해온 말이 착오인 듯하니, 저들의 말에 의해 개정하라.’ 하였습니다. 또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연간에도 국왕이 『대명회전』 안에 ‘국조(國祖)가 이인임의 아들이고, 또 고려 왕씨(王氏)의 네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말이 있으므로, 배신 남곤(南袞) 등이 오로지 이 일로 차견(差遣)되어 와서 무고(誣告)받은 사실을 갖추어 진달한 바 예부 상서 모징(毛澄) 등이 올린 제본(題本)에 ‘이 『회전(會典)』은 오로지 본조(本朝: 중국 조정)의 관직과 제도 등을 자세히 실어 모든 문무(文武) 관아(官衙)로 하여금 참고에 편리하도록 할 것이니, 외국에 관계된 시비(是非)나 의사(疑似)스런 점은 모두 생략하여야 됩니다. 하물며 태조(太祖: 단(旦))가 나라를 열고 국호(國號)를 개정함에 있어 모두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 명 태조 주 원장(朱元璋)을 말함)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은(聖恩)을 받은 것이 결코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태조 단(旦)이 이인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의 조지(詔旨)를 받들어 조령(詔令)으로 개정하게 하였고, 『일통지(一統志)』에도 왕요(王瑤: 공양왕(恭讓王)의 이름)가 혼미(昏迷)하므로 태조 단(旦)이 국민의 추대를 받았다는 등등의 일이 지금 아뢴 것과 대략 서로 부합됩니다. 신들이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그 나라가 글을 좋아하고 예법(禮法)을 지키는 나라로서 자기 조상을 위하여 변무(辨誣)하는 정성을 생각하시어 소청을 들어주시고 배신에게 칙서(勅書) 1 통을 내려주소서. 그러면 하늘과 같은 어짊이 해외 한 모퉁이에까지 덮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지(聖旨)를 받드니 ‘이는 조선 국왕 이(李)의 선조는 이인입의 후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도 이미 윤희한 바 있다. 그에 의거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칙서를 1통 베껴서 국왕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윤희받은 예부에서는 칙서를 남곤 등에게 주어 본국으로 가지고 가게 했고, 본국의 군신(君臣)들은 황은(皇恩)에 감읍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진사(陳謝)하였습니다.

그뒤 그럭저럭 13년이 되도록 아직껏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배신 이환(李荊)이 이런 연유를 대강 갖추어 고하였으나 역시 윤희받지 못했습니다. 조회(照會)해 보건대, 본국의 세계 및 그릇 악명(惡名)을 쓴 사실 등은 모두 정덕(正德) 13년(1518)의 주본(奏本)과 배신(陪臣) 남곤(南袞) 등이 예부에 올린 2통의 서장(書狀)에 갖추어져 있으니, 조사하여 보신다면 환히 알 수 있어 재차 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조정(朝廷 : 중국 조정)에서 「대명회전」을 다시 편수하려는 까닭은 한때에 수록한 것 중에는 잘못된 것이 매우 많아 반드시 다시 편찬해야 마야호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관한 사실 중에도 착오나는 일이 있는데 외국 얘기는 잘못 전해진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국조(國祖) 단(檀)이 무함받은 것은 전적으로 간인(奸人) 윤이(尹彝)와 이초(李初)의 입에서 나온 것²⁸⁷⁾으로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그들의 죄를 밝게 처결하셨으니 날조(捏造)된 말은 오늘날 가장 먼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예부가 처음 성지(聖旨)를 받들었을 때는 「대명회전」이 이미 천하에 널리 반포되어 있어 개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침 다시 편수하는 때를 만났으니, 이는 실로 소방(小邦)의 행복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 편찬할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이는 소방이 품고 있는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 또한 실제 기록과 어그러짐이 있게 됩니다.

부(溥) 등이 외람되게 천한 신분으로 엄한 위엄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진실로 참람하기 그지 없사오나 군부(君父)에 관계되는 중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 이르는 것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본국이 정덕 연간에 올린 원래의 주본(奏本) 및 영락 연간에 성지를 받든 사실을 살펴, 이번 중수하는 때를 당해 사실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본국의 세계가 밝혀지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매우 다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예부와 청리사에 보내 왔었는데 이번에 전에 예부에 온 것들을 조사해 보고, 조선국 배신 류부 등이 올린 문서에 「대명회전」에 등재된 국왕 이단(李旦)의 종계(宗系)가 다르니, 밝게 분별해 달라.’는 일절(一節)은 이미 본부가 태종황제와 무종황제의 밝은 성지를 받은 것과 날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부에서 사유를 상세히 갖추어 사관(史館)에 송부하여 채택에 대비하고 즉시 개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무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처결할 수가 없어 가정(嘉靖) 8년 8월 18일에 제본(題本)을 올려 성지(聖旨)의 결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월 19일에 받은 성지에 ‘조선국 배신이 올린 본국의 종계(宗系)에 관한

287) 윤이(尹彝)와……나온 것 : 이초(李初)의 옥(獄)을 말한다. 고려 말 공양왕 때 이성계(李成桂)의 세력이 날로 강성, 나라가 위태해 가자 중랑장(中郎將) 이초와 파평군(坡平君) 윤이가 명 나라에 가서 명 태조(明太祖)에 호소,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모의한 사건. 그러나 명 태조는 이들을 당시 사신으로 갔던 이성계 일파인 조반(趙胖)과 대질시킴으로써 사건이 국내에까지 파급, 이성계 일파는 당시 중망(重望)이 있던 이색(李穡)과 우현보(禹玄寶) 등을 옥에 가두고 사건을 확대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고려의 원로 대신들이 몰락하고 이성계의 집권을 더욱 다지는 결과만 낳았다.

사정은 이미 조종조의 분명한 성지가 있었으니, 본부에서는 편한 대로 조사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사관에 보내 채택, 시행케 하라.’ 하였습니다. 본월 20일 본부는 전후 연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수본(手本)과 함께 사관에 송부, 채택하여 개찬하게 했습니다.”

○庚申○聖節使柳溥進賀使李菡等先來通事權楨連等入來其書狀曰臣等入京進禮部先告郎中曰會典誤載本國事有兩件 宗系惡名是也前者毛尚書將所謂兩件事明白題准俺等未知來稟郎中答曰兩件事俱有先朝聖旨皆當改正勿疑也又告尚書其言亦如郎中所道臣等再三告稟曰如此冒瀆固知有罪事關君父不能自止尚書答曰當盡改勿疑且曰聖節日迫本部多事俟十二三日當題奏其後臣等進禮部先謁于該司問題本發落郎中曰其題本已下爾等所謂兩件事已令盡改矣臣等因請降勅以諭本國答曰爾國王有奏則當有勅有咨則當有咨今唯以陪臣之呈而本部題蒙允准於爾等亦已多矣復何至於勅與咨乎又告尚書答曰爾等騰聖旨以去當待爾國謝恩使然後方移咨報也臣等再三稟之答曰當以聖旨為主當皆改正勿疑云傳于政院曰今見書狀宗系改正事似爲得請此甚喜慶之事禮部之意當令我國入送謝恩使云雖不知定改與否而既奉聖旨則謝恩使尚可入遣乎此意即招政府堂上會議以啓禮部題略曰爲陳情辨誣事主客清吏司案呈奉本部送□朝鮮國王差來陪臣吏曹叅判柳溥刑曹叅判李菡等主蒙國王差齋擊聖節進賀表文前到本國義州地方有陳慰使陪臣李芑回自京師聽知朝廷方重修大明會典又聽得本國宗系等事未曾改正隨即具狀告送禮部未見發落溥等聽此前來如今又聞改正之命猶未施行下勝驚痛照得先於洪武永樂年國祖康獻王并子恭定王連將本宗世系於李仁任不干事一一具奏禮部尚書李志剛等欽奉聖旨朝鮮國王奏既不係李仁任之後想是比先傳說差了准他改正欽此又於正德年國王爲因會典內以國祖爲李仁任之子又云弒王氏四王爲此專差陪臣南袞等將被誣事情備由具奏當蒙禮部尚書毛澄等題稱節該會典一善□以詳載本朝官職制度俾文武諸司便於叅考其事關外國是非疑似之問皆在所略況太祖諱得國改號皆自太祖高皇帝之命聖恩所授決非偶然且其不係李仁任之後已奉有太宗文皇帝詔旨詔令改正而一統志又明著王瑤昏迷太祖諱爲報所推等事與今所奏大略相符臣等欲望皇上念其奸文守禮之國鑒其爲祖辨誣之誠俯從所請降勅一道責付差來陪臣則如天之仁覆冒海隅而遠人之心安矣具題欽奉聖旨是朝鮮國王李之祖不係李仁任之後我太宗文皇帝已有旨准他改正還寫勅與王知道欽尊蒙禮部就將勅書責付南袞等齋還本國君臣感戴皇恩上表陳謝厥後因循至今十有三年尚未改正近有陪臣李芑略將緣由告于禮部亦未聞定奪爲照本國世系及枉被惡名等事具在正德十三年奏本及陪臣南袞等所上禮部書二通倘蒙查考灼然可知不容再陳竊念朝廷所以重修會典者以其一時所錄頗有舛誤必須改纂方可取信中國之事猶未免於舛誤外國之說傳訛必多況國祖之被誣一出於奸人尹彝李初之口荷蒙太祖高皇帝明正其罪其虛捏之言在今日所當先改又念禮部初奉聖旨相因會典之書廣布天下無從改正目今適遇重修之日實是小邦之幸機會若失改纂無期非徒小邦抱冤而未雪抑亦實典有乖於實錄溥等猥以賤介瀆冒嚴威固知僭越緣係君父重事不能自抑如蒙查照本國正德年原來奏本及永樂年欽奉聖旨內事理越此重修之日從實改正使本國之世系以明冤枉以伸不勝幸甚等因呈部送司案照今該前因案呈到部看得朝鮮國陪臣柳溥等呈稱會典所載國王李諱宗系不同乞要明辨一節既該本部節奉太宗皇帝武宗皇帝明旨合無候命下之日本部將前後緣由備細開錄送付史館以備採擇應否改正徑自施行緣係陳情辨誣事理未敢擅便謹題請旨嘉靖八年八月十八日題本月十九日本聖旨是朝鮮國陪臣所呈本國宗系事情既有節奉祖宗朝明旨體部裏便通查備細開載送付史館採擇施行欽此本月二十日本部備□前後緣由開具手本送付史館遵照採擇改纂外云《中宗實錄 卷66, 26面》

중종 24년 10월 19일(신사)

○예조 판서 윤은보(尹殷輔)와 참판(參判) 소세양(蘇世讓) 등이 아뢰기를,

“장성자인 황태후(章聖慈仁皇太后)의 성단(聖旦)이라 했는데 이는 필시 황제는 성절(聖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변형하여 탄신일을 성단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자문(咨文)에서도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에 진하(進賀)하는 예(例)에 따라 표문(表文)을 올리라.’고 했으니, 이는 황후전에도 황제를 진하하는 예에 따라 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조·동지·성단에도 마땅히 모두 진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요동에 소속된’이라고만 하고 외국(外國)이라 일컫지 않았으니, 우리 나라가 요동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던 일입니다. 외국이라 칭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정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금년 6월 예부가 받은 성지(聖旨)에 진실로 우리 나라를 역시 중원(中原) 해내(海內)의 지역이라고 한 예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문(表文)을 올려야 할 것이라면 소소한 일들도 우리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고 반드시 다 말을 하는데, 하물며 이런 큰 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가 북경에 도착했을 때 예부에서도 반드시 이 일을 성절사에게 말했을 것이고 성절사가 들었다면 선래통사(先來通使)가 올 때 역시 먼저 통지했을 것인데,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동의 자문(咨文)만 보고서 사신을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하는 일은 해조(該曹)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일이 아니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잘 알았다. 대신들과 의논하라.”

○辛巳○禮曹判書尹殷輔參判蘇世讓等啓曰章聖慈仁皇太后聖朝云此必皇帝則稱聖節故變其文必以誕日爲聖朝也咨文亦以依正朝冬至進賀之例進表云此則皇后前亦依皇帝進賀之例正朝冬至聖朝亦當皆爲之但云遼東所屬而不稱外國我國之屬於遼東未之知矣不稱外國則亦不知定爲也此乃今年六月禮聖奉旨誠以我國亦依中原海內之例當進表則雖小小之事見我國之人必皆言之况如此大事其不言之乎聖節使柳溥赴京禮部必以此事言于聖節使也聖節使若聞見則先來通事之來亦當先通而專不言之但因遼東咨入送則未知其當也然而事大之事非該曹所能擅斷大臣處共議處之何如傳曰啓意知道其與大臣議之

《中宗實錄 卷66, 39面》

중종 24년 10월 26일(무자)

명하여 어사(御史)를 팔도에 파견하게 하였다. 강원도는 권예(權輓), 경기는 심언광(沈彦光), 충청도는 임권(任權), 전라도는 허흠(許洽), 함경도는 정세호(鄭世虎), 평안도는 박소(朴紹), 황해도는 양연(梁淵), 경상도는 황엽(黃恬)이다.〔중략〕

○진하사(進賀使) 이함(李菡)과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류부가 아뢰기를,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종계(宗系)를 개정하는 일은 신이 북경에 들어간 즉시 예부(禮部)에 정문(明文)했더니 이미 성지(聖旨)를 받든 뒤였습니다. 그 권질(卷帙)이 많아서 당시에 인쇄를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 그것이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예부의 제본(題本) 및 성지에는 모두 일일이 열거해서 사관(史館)에 송부(送付)했으니, 지금은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은사(謝恩使)를 들여보내는 일을 대신들에게 물었더니, 대신들은 모두 ‘이미 사관으로 하여금 개정하게 했더라도 개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당시 조칙(詔勅)을 내린 것도 없으니, 지레 사은사를 보내는 것이 온편치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다. 부경사신(赴京使臣)의 말을 듣고서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 사은사를 들여 보내지 않아도 되겠는가?”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은 선래통사(先來通事)가 나올 때에 사은사 입송여부를 지정하지 않고, 조정에서 짐작하여 조처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입경(入京)했을 때에 한 일들만 서계(書啓)했을 뿐입니다. 다른 나머지 일들은 신들이 자유로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부에 문의했더니, 상서낭중(尙書郎中) 등의 말에 ‘제본(題本)이 이미 내려 갔다.’ 하였고, 또 ‘성지에 이미 개정하라고 했다.’ 하기에 신이 ‘전에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연간에도 이 일로 개정하라는 준허(准許)를 받고 칙서(勅書)를 내린 일이 있었다. 이 일은 바로 같은 일로 또한 준허를 받았으니 전례에 따라 조칙을 내릴 것인가?’ 했더니 ‘그대의 국왕이 주청(奏請)한다면 조칙을 내려 알려 줄 것이고, 자문(咨文)을 보내온다면 자문으로 회보할 것이다. 이 일은 곧 배신(陪臣)이 정문한 일인데 내가 입주(入奏)한 것이 또한 많기 때문에 조서를 내리는 일이나 자문을 보내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사은사가 들어온다면 그때에 가서 마땅히 자문을 보내 답할 것이다.’고 답하였습니다. 신이 또 ‘이 『회전(會典)』의 책자가 정조(正朝) 때에 인쇄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으니 ‘그 때에도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또 ‘이번 일은 배신이 마음대로 정문할 수 없는 일이다. 전일 국왕이 주청하여 개정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정문하는 것은 배신이 사사로이 할 일이 아니다. 칙서를 내려주도록 청하고, 또 칙서를 내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자문을 보내도록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물으니 ‘그대의 말도 합당하다. 그러나 그대 국왕이 주청이 없으니 칙서를 내리거나 자문을 이첩할 수도 없다. 또 성지에 이미 개정하도록 명했으니 지금 등서(謄書)해 가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우리 나라의 종계(宗系)는 황은(皇恩)이 지대하며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일로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종이 한 장에 베껴다가 국왕에게 알리는 것은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자문을 이첩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더니 ‘이것은 그대가 구전(口傳)할 일이 아니다. 그 제본과 성지를 예부에서 등사(謄寫)해 보내 주면 자문을 보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제본과 성지 및 사관(史館)에 송부한 문서를 모두 베껴주겠다.’하고 또 ‘사은사가 들어오면 자문을 이첩하여 회답할 것이다. 지금은 칙서를 내려줄 수도 없고 또 자문을 이첩할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더 이상 강청할 수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예부 상서와 낭중(郎中)의 의중을 보건대, 모두 사은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칙서가 내리고 자문이 이첩된 뒤에 사은사를 보내는 것이 옳다. 지금 먼저 사은사를 보낸 뒤에 자문을 보낸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대신들이 사은사를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도 일찍이 그것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예부 낭중이 신에게 ‘이 일은 사관(史館)으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했으나 아직 고치지 않았으니, 지금 자문을 이첩한다면 반드시 개정된 문자를 자문에 써 넣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개정하지도 않았으니 어떤 문자를 써 넣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자문을 이첩할 수 없다.’ 했습니다. 과연 신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개정된 문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을 이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태후의 성단(聖旦)에 표문(表文)을 올리는 일은 요동(遼東)에서 자문을 보내 알려 왔다. 이러한 일은 전에는 없던 일인데, 지금 표문을 올리자면 마땅히 성단 일이 며칠인지를 안 뒤에라야 할 수 있겠다. 서반(序班)의 말에는 조선에 알리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동에서 알려 왔다. 요동에서 알려 왔다고 해도 조정의 의논은 이미 표문을 올리지 않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이 북경에 있을 때는 예부가 이 일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 알지 못하여 탐문해 보지를 못했다가, 요동에 도착한 뒤에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의 심부름꾼이 자문을 가지고 왔기에 신들이 보니, 피지(皮紙)를 사용하여 집에서 만든 것으로 봉함하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이는 신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봉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풍습이 그러하여 본디 풀로 봉함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그 자문을 보니 ‘황태후의 성단(聖壇)에 십삼포정사(十三布政司)는 표문을 올려 하례(賀禮)할 일로 6월 24일 사례감태감(司禮監太監)이 성지를 받들었다.’ 하였습니다. 신들도 생각해 보건대, 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례로서 지극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통사(通事)를 보내 물었더니 ‘절일(節日)이 어느 날인지도 모르고 그대 나라가 표문을 올려야 하는지의 여부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므로, 자세히 알려 달라 했더니 ‘우리는 십삼포정사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대 나라에 알리는 것일 뿐, 반드시 그대 나라로 하여금 표문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기별이 있으면 요동에서는 으레 그대 나라에 모두를 통지하기 때문에 알리는 것일 뿐이다. 표문을 올릴 것인지의 여부는 그대 나라에서 짐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절일이 어느 날인지도 모르고 표문을 올린다는 일은, 바로 6월 24일에 성지를 받들었다. 그러나 성단(聖壇)이 어느 날인지를 모르는가?’ 하고 물었더니 ‘상고해서 말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상고해 본 뒤 신들에게 ‘그 날을 문서에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성지(聖旨)를 받은 날은 6월 24일이나 절일도 이날 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지금 두 대인(大人)이 북경에 갔다가 장차 돌아올 것인데, 돌아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여나 알지 못한다면 심부름꾼이라도 보내어 알아와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다시 더 묻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가산(嘉山)에 이르러 신이 정조사(正朝使) 박광영(朴光榮)을 만나서 절일을 미처 탐문하지 못하고 왔는데 표문을 올려야 하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이 안정되지 못한 듯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어떻던가?”

하매, 류부(柳溥)가 아뢰었다.

“중국 조정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어사(御史) 육계(陸燾)의 상소에 ‘장총(張聰)과 계약(桂萼)의 당류(黨類)가 이미 많은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 벼슬길에 나온 자가 매우 많습니다. 누구는 사당(死黨)이고 누구는 불쫓는 자로, 예부상서 역시 불쫓는 무리입니다.’ 하였습니다. 장총과 계약이 파직되어 전리(田里)로 돌아갔을 때에 황제가 ‘장총은 윤기(倫紀)를 크게 안정시킨 사람이니 복직시킴이 마땅하다.’고 하교하여 도로 사진(仕進)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신이 조하(朝賀)할 때에 보니 장총이 복직되어 돌아와서 사은하러 대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전리에 방귀(放歸)되었는데 조정에 있는 그의 당류들에게도 서로 허물을 상고하여 아뢰라 했는데, 육계는 이 일을 알고도 즉시 진주(陳奏)하

지 않고 지금 와서 상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추고(推考)받고 외임(外任)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또 장충과 계약의 당이 육계의 당인 각로(閣老) 양일청(楊一淸)의 잘못을 논박했는데 일청은 나이가 이미 90세이고 4조(朝)를 내리 섬긴 원로(元老)의 한 사람입니다. 일청이 논박받은 뒤에 피혐(避嫌)했으나 재직(在職)토록 명하였습니다. 또 양일청 당인의 상소에 ‘일청은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행동하여 오계(五季)의 풍도(馮道)²⁸⁸와 같다고는 할 수 있으나 어찌 진(秦) 나라의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같겠는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상소에 일청을 진 나라의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것과 같다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이 화락하지 못하여 의논이 분분한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세묘(世廟) 사건으로 의논이 둘로 갈라진 때문입니다.”[중략]

“평상시 표문으로 진하(進賀)할 때는 인진(引進)할 때도 있고 봉진(封進)할 때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진이라는 것은 사신이 직접 황제에게 가지고 가서 진하하는 것이고, 봉진이라는 것은 예부에 곧바로 내는 것입니다. 봉진인지 인진인지의 여부는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나오던 날 예부에 돌아갈 것을 고했더니 낭관(郎官)이 통사를 불러 ‘진하표(進賀表)를 진헌(進獻)할 때에 인진으로 할 것인가, 봉진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므로, 통사가 ‘예부의 자문에 인진이면 인진이라 하고 봉진이면 봉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부가 인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방물(方物) 및 표문을 아무날 직접 예부에 들이겠다. 그 뒤의 일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렸더니 낭관이 ‘이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는 그 낭관은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신들은 내심 미안한 감이 있어 서반(序班)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인진이나 봉진은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어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뢰지도 않고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戊子命遣御史于八道江原道權輓京畿沈彥光忠淸道任權全羅道許洽咸鏡道鄭世虎平安道朴紹黃海道梁淵慶尙道黃恬[中略]

○進賀使李菡聖節使柳溥還自京師 上引見于宣政殿柳溥曰大明會典 宗系改正事臣入京卽呈文于禮部已奉聖旨矣以其卷帙數多時未畢印故臣未知其改與否也但其禮部題本及

288) 오계(五季)의 풍도(馮道) : 지조 없는 사람을 가리킨 말. 오계는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의 오대를 말한다. 풍도는 후당에서 벼슬하기 시작, 후당이 후진에게 망하고 후진이 요(遼)에 망할 때까지 차례로 세 왕조를 섬기다가, 후한이 서자 다시 후한에 벼슬하고 후주가 후한을 멸하자 다시 후주를 섬겼다. 그가 다섯 왕조를 섬기며 20여 년 동안 재상 노릇 한 것을 후세 사람들은 비루하게 여겼다.

聖旨皆已枚舉而送付于史館今將改正矣 上曰謝恩使入歸事議于大臣則大臣等皆以爲雖已令史館改之其定改與否時未的知且時無降勅徑送謝恩使亦爲未便云故不入送耳但欲聞赴京使臣之言而更議也然則謝恩使不送可乎柳溥曰臣於先來通事出來時謝恩使入送當否未能指定而朝廷斟酌處置故只以入京時所爲之事書啓而已他餘事則臣等不能任意出入故不得聞知只問于禮部則尚書郎中等言內題本已下且於聖旨已命改正云臣言之曰前在正德年間以此事蒙准許改而降勅諭之此乃一事也亦曾蒙准請依前降勅答曰若汝國王奏請則當降勅移咨則當回咨矣此乃陪臣呈文之事我之入奏亦已多矣降勅移咨則有不可爲也但謝恩使入來則其時當移咨答之云臣又問之曰此會典冊在正朝時尚能畢印乎答曰其時亦未畢也臣又言曰今此事非陪臣擅自呈文也前者國王奏請而已許改正故因此而呈文此非陪臣私爲之事也請降勅且雖不能降勅請移咨何如答曰汝言亦當然汝國王時無奏請今不可降勅移咨也且於聖旨旣命改之今若騰書賫去則可也臣又曰我國 宗系皇恩至大而我國重事莫大於此騰寫於一紙而達諸國王心甚未安請移咨何如答曰此非汝傳之以口其題本聖旨禮部騰寫給送則雖不移咨亦可知也其題本聖旨及送付史館文書皆騰書給之而且言曰謝恩使入來則當移咨回答矣今則不可降勅又不可移咨云臣不能強請以來以此見之禮部尚書郎中之意皆以爲謝恩使所當入來矣 上曰降勅移咨之後遣謝恩使則可也今若先送謝恩使之後遂移咨則亦有異也大臣等不可入送之議亦以此也柳溥曰臣亦嘗計之禮部郎中語諸臣曰此事雖令史館改正時未改正今若移咨則必須以改正文字書填於咨內矣今尚未改將以何文字書填乎以此不可移咨云果於臣之意亦如此矣改正文字時未見故不能移咨矣 上曰皇太后聖朝進表事遼東移咨而諭之此事古所未有今若進票則當知聖朝之在某日然後可也序班所言則無論于朝鮮之言而遼東諭療之雖或諭之不爲進表事朝議已定矣然此事何如柳溥曰臣在北京時禮部所言一不及此事臣亦未知故不能探問及到遼東都指揮使司伴人送咨臣等見之則用皮紙作家而不爲粘付蓋欲令臣等見之而不封乎抑其習俗本不粘付乎未可知也臣等聞見其咨文則皇太后聖朝十三布政司當進表以賀事已於六月二十四日司禮監太監已奉聖旨云臣等亦思之此乃古所未有而新例之事至爲重大故遣通事問之曰不知節日在某日而我國進表與否亦不細知請仔細聞見答曰我則只以十三布政司文書諭于汝國而已非必欲使汝國進表也凡一應奇別遼東例通于汝國故諭之耳其進表與否在汝國斟酌處置之如何耳且問之曰節日不知在某日進表事則乃於六月二十四日奉聖旨矣然未知聖朝亦在何日乎則曰當相考言之及相考說與臣等曰其日不爲置簿未之詳知奉聖旨則在六月二十四日而節日在此日與否果未可知今者二大人往北京將還若還來則可知之矣幸若不知則當委伴人聞見而來云臣等更不問之而還來至嘉山臣見正朝使朴光榮言之曰節日未及探問而來進表與否當知而來事言之[中略]

上曰中原朝廷似不得安靜云此事何如也柳溥曰中朝別無他事但御史陸榮上疏以爲張璉桂萼黨類旣多援引他人而仕進者多某也死黨某也趨附而禮部尚書亦與趨附之類云張璉桂萼

罷歸田里之時皇帝下教曰張璠則定大倫之人所當復職遂命還仕其後臣於朝賀時見之則張璠以復職還來以謝恩事赴闕云桂萼則放歸田里其黨類在朝之人亦命相考以奏陸榮以曾知此事不即陳奏今始上疏事推之而出爲外任云又張璠桂萼之黨上疏而論陸榮之黨閣老楊一清之非而駁之一清年已九十歷事四朝元老之人也一清於被論之後避嫌而乃命在職矣又楊一清黨人上疏以爲一清不辨是非朦朧行之若以爲如五季馮道則可矣豈可謂之如秦時趙高指鹿爲馬乎以其上疏內一清如秦時趙高指鹿爲馬故如是論之也朝廷不和議論紛紜此非由他事只以立世廟事議論歧而爲二故也[中略]

○進賀使李菡聖節使柳溥啓曰常時進賀表或有引進之時或有封進之時所謂引進者使臣親持進于皇帝前也所謂封進者直進于禮部也其封進引進與否禮部當取稟于皇帝而爲之也臣等出來之日告歸于禮部則郎官召通事而問之曰進賀表進獻時引進乎封進乎何以爲之耶通事答曰禮部教云引進則引進封進則封進而今則禮部不言引進之事故方物及表某日直納于禮部其後事則未之知也云郎官曰此在此誤爲之事也其即退去云臣等未安於心而召序班問之則曰引進封進禮部取稟于皇帝而爲之也今不爲取稟而誤爲故如此云云矣

《中宗實錄 卷66, 41面》

중종 24년 11월 8일(경자)

○유여림(兪汝霖)을 형조 참판에, 서지(徐祉)를 사헌부 대사헌에, 류부(柳溥)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부(溥)는 젊어서부터 대성(臺省)에 출입했으나 성질이 편협하여 너그러움과 융통성이 없었고, 재능과 명망도 없었다. 옥당(玉堂)의 장관은 조정의 중요한 자리이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많았다.

○庚子○以兪汝霖爲刑曹叅判徐祉爲司憲府大司憲柳溥爲弘文館副提學史臣曰溥自少雖出入臺省固滯不通且無才望玉堂長官朝廷重選多有不合之論

《中宗實錄 卷66, 50面》

중종 24년 11월 24일(병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柳溥) 등이 상소하기를,

“『서경(書經)』에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림을 조절하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를 보호한다.’ 하였고, 전(傳)에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면 이루어지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했습니다. 대개 일을 도모하는 데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이면 하기도 쉽고 공효도 있으나, 일이 이미 기울어진 뒤에 구제하려 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 임금들은 어지러워지거나 위태로워지기 전에 원려(遠慮)를 하지 않고, 스스로 어지러움도 위태함도 없다고 생각하여 태연히 방종한 행

동을 하면서 아무 근심도 없이 편안히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화란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면 그제서야 과거를 후회하고 장래를 계획하며, 이미 어지러워진 것을 다스리려 하고 이미 위태하게 된 것을 보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기울어진 집을 지탱하려 하고 무너진 방죽으로 넘쳐 나오는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고급의 나라들이 난망(亂亡)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승평(昇平) 백여 년에 성자(聖子)와 신손(神孫)이 계승하여 오늘 날과 같이 훌륭한데 됨으로써 태평한 운수가 형통(亨通)하고 옛 명이 더욱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4년 동안 정사에는 순수함과 순수하지 못함이 있고, 풍속에는 아름다움과 악함이 있어, 시종(始終)과 선후가 서로 크게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임금의 덕이 혼암하나 현명하나에 의해, 다스림이 융성해지느냐 침체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몸을 닦는 것은 이 덕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며,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 덕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경계함은 덕이 밝은 것이고, 마음이 더러운 때로 가려진 것은 혼암한 것입니다. 임금된 사람 그 누가 덕을 밝혀 순(舜) 임금같이 사물을 밝게 보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밝음을 가리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궁중을 밝게 하려면 부녀자나 환관이 가리고, 정사를 밝게 하려 하면 음험하고 간특한 자들이 가립니다. 진실로 현명한 군주가 아니면 가리워지지 않는 이가 드문데, 가리워지면 혼암해지고 혼암해지면 임금다운 임금이 될 수 없으며, 임금다운 임금이 되지 못하면 위태롭게 됩니다.

성묘조(成廟朝)에 임사홍(任士洪)이 인척이라는 세력을 믿고 아침과 간특의 모습을 드러내어 간심(姦心)을 부릴 기회를 엿보다가 성묘의 밝은 덕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성묘의 밝은 덕이 다시 밝아짐에 힘입어 간특한 정상을 밝게 비추어, 인척이라 하여 사정(私情)을 두지 않고 사홍을 법대로 다스려 영영 사판(仕版)에 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역(鬼賊)같이 죽지 않고 연산(燕山)의 시대를 만나자 관(冠)을 떨고 일어나 간사함으로 혼암한 것을 도와 미처 부리지 못한 간특함을 크게 드러내어 사류들을 참조하니, 화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화가 참혹했습니다. 예부터 부녀자들이 재물을 탐하고, 음흉하고 간특한 자들이 임금을 으르는 것은, 반드시 임금의 덕이 혼암한 것을 이롭게 여겨서입니다. 왜냐하면 혼암하면 은총을 굳게 할 수 있고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있지만, 현명하면 간사함을 환히 알아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궁중에 있어서는 내외의 출입하는 방비를 엄하게 하고, 신하나 가까운 사람을 접견할 때에는 시비와 사정(邪正)의 분별을

살펴서, 한쪽만 치우치게 믿어 간특함이 생기거나 특정인에게만 맡겨서 난(亂)이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어찌 밝은 덕을 밝혀 얻은 공효(功効)가 아니겠습니까?

이장길(李長吉)²⁸⁹은 아첨하고 간특한 늙은이 일 뿐입니다. 서반(西班)의 하찮은 벼슬도 줄 수가 없는데, 결단을 늦추시어 간사함을 제거하는 데도 의심하여 반드시 묘당(廟堂)에 물어 진퇴시키려 하십니다. 장길은 나이는 많으나 기능은 없고, 늙어서도 쇠퇴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아첨하고 간사한 구습(舊習)일 뿐입니다. 이러한 폐습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내는 반드시 밝은 덕만 더욱 심하게 가릴 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심(私心)을 없애어 능히 천리(天理)를 밝히시고 한결같은 마음의 덕으로 내면을 밝히고 겉에 나타나게 하여, 한 조각 안개나 구름도 청천백일의 누(累)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국세(國勢)의 성쇠와 복조(福祚)의 장단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국세라 합니까? 성하지 못하면 쇠퇴해지는 것이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혼란하게 됩니다. 혼란의 조짐은 다스림이 있을 때부터 생기고, 쇠퇴의 조짐은 왕성할 때부터 생기는 법입니다. 나라에는 쇠퇴해지려는 형세가 있고 또 어지러워지려는 형세도 있습니다. 형세에는 구제할 수 있는 형세도 있고 또 구제하지 못할 형세도 있습니다. 다행히 임금이 그 형세를 살펴서 구제하면, 쇠함을 돌려 도리어 융성하게 할 수도 있고 어지러움을 기화로 다스림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唐) 나라가 망한 것은 주온(朱溫)의 발호(跋扈) 때문이 아니라, 번진(藩鎮)이 전제(專制)하게 된 시초에 있었으며,²⁹⁰ 송(宋) 나라의 멸망은 오랑캐 원(元) 나라가 나라를 차지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녕(熙寧)과 원풍(元豐) 연간의 시끄러웠던 시기²⁹¹에 있었습니다. 당시 보통 정도의 임금과 자리나 지키는 변변찮

289) 이장길(李長吉) :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자하(子賀). 본관은 벽진(碧珍). 연산군(燕山君) 10년(1504)에 의성현령(義城縣令)이 된 후 악정(惡政)으로 이름이 높아 신극성(愼克成)·남경(南景)과 함께 삼맹호(三猛虎)라 불리었다. 중종 때 반정 공신(反正功臣)을 제거하려다가 제주에 안치되었고, 동왕 16년(1521) 평안도 병마우후(兵馬虞侯)를 지내고, 동왕 26년 심정(沈貞)의 일당으로 몰려 쫓겨났다.

290) 당(唐) 나라가……있었으며 : 주온(朱溫)은 당(唐) 나라 말기 선무절도사(宣武節度使)로서 양왕(梁王)에 봉해진 주전충(朱全忠)의 초명(初名). 그는 당 나라 소종(昭宗)과 애제(哀帝)를 시해(弒害)하고 후량(後梁)을 세웠다. 당은 주전충에 의해 멸망되었으나 이것은 그가 절도사로서 병권을 잡았기 때문이었고, 절도사에게 군국(軍國)의 대권을 준 것은 현종(玄宗) 말년의 일로 당의 쇠운은 평로(平盧)·범양(范陽)·하동(河東)의 세 절도사를 겸했던 안록산(安祿山)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291) 희녕(熙寧)과……시끄러웠던 시기 : 희녕과 원풍은 북송 신종(神宗) 때의 연호. 송은 당시 북방 요(遼) 나라의 침입을 받아 국세가 위태로워지자 신종은 왕안석(王安石)을 제상으로 등용

은 신하라고 하더라도 성하고 쇠하고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기미를 밝혀서, 미리 구제할 방도를 조처하고 병통의 소재를 알아 약석(藥石)으로 다스리게 했다면, 방진(方鎭)이 아무리 강성하다 해도 어찌 당 나라가 망하기에까지 이르렀겠으며, 희령과 원풍 연간의 정사로 어찌 송 나라가 망하기까지야 했겠습니까?

지금 국가는 장구하게 다스려지고 오랫동안 평안할 형세가 아니어서 상하가 모두 침체되는 조짐이 있어, 중흥의 융성이 도리어 중기의 쇠퇴기를 이루었습니다. 정신과 명맥(命脉)은 점차 소모되고 탐욕이 습속(習俗)을 이루어 상하가 뇌동하여 수령은 자신의 사욕만 힘쓰고 변방 장수는 혼단 열기를 좋아하며, 조정에는 법도가 문란하여 백료(百僚) 중에는 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급속하게 날로 침체해 가니 다시는 흥기할 기미도 없어 큰 나무가 줄기를 멀리 뺄고 가지와 잎은 무성하지만 몸속에는 썩이 생겨 밑둥치가 넘어가려는 형상과 같습니다. 나라를 위한 계책(計策)을 세우는 이는 없고 길 가에서 집을 지으면 간섭하는 자가 많은 것과 같이, 일에 당해서는 혼미하나 방관하는 데는 매우 밝습니다. 지혜가 깊고 원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은, 시속(時俗)이 허물어지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위망(危亡)의 화가 조석에 닥쳤다고 두려워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시세(時勢)를 자세히 살펴 경사(卿士)를 격려하시고 어지러워지려는 데서 다스림을, 쇠퇴해지는 데서 융성함을 구하시어 반석처럼 편안하게 함으로써 종묘사직의 복을 넉넉하게 하소서. 선비들의 기백을 양성함은 국맥(國脉)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의가 나오고 염치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묘(成廟)께서 이를 배양하고 이를 진작시키는 데는 방도가 있어 인재의 융성함이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양성된 기개와 절의는 한 번은 무오사화(戊午史禍)에서 두 번째로는 갑자사화(甲子士禍)에서 손상되었습니다. 선비들은 그 궤적(軌跡)에 징험, 점차 쇠퇴해져 오늘날 유약한 것이 관습이 되었고, 부형이나 사우(師友)의 가르침도 모두 이로움만 좇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계책 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말한 ‘언행이 고준(高峻)하고 대담하다.’고 한 것은 실행할 겨를도 없을 뿐 아니라 달갑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정직(正直)이란 맥(脉)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상실됨이 날마다 심해갑니다. 이는 순숙(荀淑)이 양씨(梁氏 : 양기(梁冀))가 용사(用事)할 때에 바른 말을 했지만 그 아들 상(爽)은 이미 이기심에 젖어 동탁(董卓)이 전횡(專橫)을 부리는 조정에 서게 되

하여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에 왕안석은 보갑법(保甲法)·보마법(保馬法)·청묘법(靑苗法) 등 이른바 신법(新法)을 실시, 부국강병을 꾀했으나 너무 급진적인 개혁에 불안을 느낀 보수파 사마 광(司馬光) 등의 반대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송조(宋朝)는 수십년 동안 신법당과 구법당의 각축장이 되었다.

있고, 그 손자 옥(彧)은 드디어는 당형(唐衡)의 사위로 조조(曹操)의 신하가 된 것과 같습니다. 대개 굳고 곧은 기절(氣節)도 흉악한 여독(餘毒)에는 꺾여져서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비를 기르는 것은 바로 후일 그 보답을 받기 때문인데 선비들이 좌절되어 떨치지 못함이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 없고 언관(言官)으로 있는 자는 격양(激昂)하는 기절(氣節)이 없어 태평한 시대에도 기절을 다하지 못하니 환란을 당하여서 어찌 감히 죽음을 달게 여기겠습니까? 곧은 말을 용감하게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아침을 잘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크게 작록(爵祿)을 누린다고 생각하여, 백료(百寮)와 벗들 사이에서 사사로 은밀히 '누구는 무슨 일을 논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을 탄핵했으니,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면 얼마 안 있어 과연 그 말과 같이 됩니다. 이럴데 누가 감히 모두 어렵게 여기는 말을 할 것이며, 전하께서 또한 어찌 바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어그러진 것이 이렇기 때문에 습속은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것을 좇으며, 문재(文才)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학문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아, 학궁(學宮)은 적막하고 제배(儕輩)들은 흩어져서 요행히 출세할 문으로 모여듭니다. 혹시 누가 알더라도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간사한 입을 마구 놀려 비밀리 상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바른 것을 배척하고 간특한 행위를 하며 흰 것을 가리켜 검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간사한 사람이 착오를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역시 쇠약해진 조짐이 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완고한 자를 격려하며 나태한 자를 일으켜서, 일세의 교화를 부식(扶植)함으로써 후일의 절의를 튼튼히 하고 황정(荒政)을 일으켜 곤궁한 백성들을 진휼(賑恤)하소서. 국가는 백성에 의존하고 백성은 식량(食糧)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자도 정사(政事)를 물을 적에 '먼저 식량을 넉넉하게 하라.'고 답하였고, 맹자는 정사를 논할 때마다 반드시 백성 기르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이른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식량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周官)」에는 황정(荒政)이, 한(漢) 나라 때에는 상평(常平)이 있었으니, 모두 백성들을 진휼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면 긴급하지 않은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것이 바로 황정의 하나입니다. 금년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매우 굶주리고 있습니다.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는 단지 형식적인 것들 뿐이고 번거로운 영선(營繕)은 풍년든 해와 같아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갓이 찢어지는 때에도 재목을 운반하고 돌을 옮기는 고통만이 있으며, 길에 가득한 것은 굶주

린 시체와 구걸하는 소리 뿐입니다. 경기 백성들은 더욱 살아갈 방도가 없어 마을마다 쓸쓸하고 볼때는 연기조차 그치려 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듣건대, 오곡이 익지 않는 것을 대침(大侵)이라 하고 대침을 당해서 취할 의식은 '임금은 음식을 갖춰 먹지 않고, 대사(臺榭)에는 도장(塗裝)을 하지 않으며, 조정의 길도 쓸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주례(周禮)」 선부(膳夫)에 이른바 '크게 흉년이 들면 성찬(盛饌)을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비교해 보면 그 자식이 젖을 못 먹고 죽는데 부모된 자들이 차마 보고서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벌을 늦추고 금법을 풀어주며, 부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며, 흉례(兇禮)를 덜고 혼사(婚事)를 많게 하는 것 등이 모두 옛날의 황정(荒政)인데, 모르겠습니까마는 오늘날의 정사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救恤)하기를 지성으로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세를 견감(蠲減)하고 양식을 빌려주는 진휼의 정사를 행한다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문서가 반복해서 내왕하고 명령이 아무리 내리더라도, 이는 한갓 겉치레일 뿐입니다. 송진종(宋眞宗)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시어사(侍御史)를 파견하여 승전(乘傳 : 역마를 타고 공무를 신속히 수행함)으로 안무(安撫)케 한 것을 구차한 헛된 문구를 유사(有司)에게 주어 고사(故事)를 따르게 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게서는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시고 흠아비와 과부들도 사랑하고 잘 돌보아 주실 것이며, 성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하시어 사방의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이 실다운 혜택을 입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丙子弘文館副提學柳溥等上疏曰經曰制治于未亂保邦於未危傳曰凡事豫則立不豫則廢蓋圖之於未然之前則易爲功救之於已然之後則難爲力世之人主不圖遠慮其未亂未危也自謂必無亂必無危泰然自肆帖然無虞一朝禍起蕭牆變生肘腋於是乎悔旣往圖將來始欲治其已亂保其已危是猶支大廈於旣傾遏橫流於已潰此古今人國之所以常亂亡也我國家昇平百年聖繼神承以至于今日休泰運方亨舊命惟新然而二十四年之間政有醇疵俗有美惡始終先後有大相戾君德之昏明而治之隆替隨之何謂君德正心修身存此德也齊家治國推此德也惺惺於屋漏德之明也汶汶於方寸德之昏也君人者孰不欲昭明其德如舜之明於庶物而所以蔽其明者非一欲明於宮闈而婦寺蔽之欲明於政事而儉邪蔽之苟非明明之主鮮不爲所蔽蔽則昏昏則不君不君則殆矣在 成廟朝任士洪怙姻婭之勢肆譎邪之態覬售其姦以蔽 成廟之明德賴成廟明德克明燭照奸狀不以姻婭有所假借治士洪如律永不齒錄鬼蜮不死遇燕山彈冠而起以邪濟昏大售其未售之奸陰讒士類薙獮殆盡其禍慘矣自古妾婦之黷貨儉邪之要君者必利其君德之昏何者昏則可以固吾寵肆吾志明則照吾奸而禍吾身矣明主有見於此在宮

闡則嚴內外出入之防接臣隣則察是非邪正之之分不偏聽以生奸不獨任以成亂茲豈非明德既明之效哉李長吉一諂邪老漢耳西班牙小職尚不可授而乾斷猶遲去邪亦疑必問廟堂以爲進退長吉年老無技其老而不衰者乃諂邪舊習耳此習尚存終必蔽明德深矣伏以 殿下滌去已私克昭天理一心之德明於內而著於外毋使尺霧寸雲爲青天白日之累國勢之盛衰而祚之長短係焉何謂國勢不盛則衰不治則亂亂生於治衰生於盛國有將衰之勢亦有將亂之勢勢有可救之勢亦有不可救之勢惟幸人君審其勢而救之援衰而反盛由亂而歸治耳唐之亡不在於朱溫之跋扈而在於藩鎮專制之初宋之亡不在於胡元之充任而在於熙豐紛紜之日使當時有中主具臣明於盛衰治亂之幾預爲救之之方知病之所在治之以藥石則方鎮之強豈至於亡唐熙豐之政豈至於亡宋哉今國家無長治久安之勢有上陵下替之漸中興之盛反成中衰精神命脉索然消耗貪黷成風上下雷同守令務封已邊臣喜開釁朝廷無道揆察案無法守駸駸然日趨於委靡無復有興起之氣譬如大木遠條枝葉尚茂蠹生心腹根幹將顛矣謀國無人作舍有譏當局雖昏傍觀甚明深智遠識憫時傷俗常恐危亡之禍近在朝夕夜或未寐者多矣伏願 殿下審察時勢率勵卿士求治於將亂求盛於將衰歸之盤石之安以衍宗社之福養士氣將以養國脉也節義之所由生廉恥之所由立我 成廟培養有道振作有方人才之盛蔚有可觀然其所養之氣節一傷於戊午再傷於甲子士懲其軌寢成頽靡以今長日軟懦之習父兄師友之教率皆趨利避害之計其於古人危言危行將不暇爲而亦不屑爲正直一脉隨世隨喪日甚一日如筍淑正言於梁氏用事之日而其子爽已濡跡於董卓專命之朝至其孫或則遂爲唐衡之壻曹操之臣蓋剛大方直之氣折於凶虐之餘不覺其淪胥而至此耳今日之養士乃所以受其報於他日而其挫而不振未有甚於斯時居官者無恪謹之心言事者無激昂之節在平時尚未盡節當患難安敢效死抗直敢言者世以爲必蹈危機脂韋苟容者世以爲大享爵祿百僚朋儕之中私相密語曰某也論某事某也彈某人必取禍敗未幾果如其言若是則誰敢言其所難言而 殿下亦安得聞直言乎惟其頽靡之如是故俗尚又從而美不貴文藻不喜學問儒宮寥落朋儕怠散群趨倖門罔或知愧或搖邪喙陰試 上心甚至斥正爲邪指白爲黑此豈但寔人之誤入於邪逕哉亦委靡之漸有以醞釀也伏願 殿下振作士氣激頑起懶扶植一世之風化以基異日之節義舉荒政所以賑窮民國依於民民依於食故孔子答問政先足食孟子每論政必先養民謂有民斯有國矣民非食不生活故周官有荒政漢世有常平皆所以賑民也民勤於食百事皆廢此荒政之一也今歲荒饑生民大饑救荒之政只循文具營繕之煩一如稔歲屬墮指裂膚之日有輸材運石之苦呼邪載路餓莩鬻歌畿甸之民益不聊生里落蕭然烟火將空豈不寒心嘗聞五穀不升謂之大侵大侵之禮君食不兼味臺榭不塗廷途不除此周禮膳夫所謂大荒則不舉者也比諸父母焉其子不哺而死爲交母可以忍視而不救乎緩刑舍禁弛役薄征殺哀多婚皆古之荒政而未知今日之政有一於此乎惠恤飢民一以至誠以哀矜惻怛之心行蠲貸賑恤之政則庶幾民受其惠矣文移反覆三令五申祇爲虛文而已宋真宗以歲歉民饑遣侍御史乘傳安撫其與苟且虛文付之有司以應故事者異矣伏願 殿下懷保小民惠鮮鰥寡存誠實之心停不急之務使四方赤子獲蒙實惠焉 上嘉納

之

《中宗實錄 卷66, 58面》

중종 24년 11월 29일(신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柳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장령 상진은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굽혀 안종전을 비호하기 위하여 감찰(監察) 임백손(林百孫)에게 사사로 청촉(請囑), 그 죄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추핵(推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백손이 종전의 일을 발명(發明)하지 않은 죄에 연좌되어 추문받아 파출(罷黜)될 때에도, 스스로 인혐(引嫌)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천연스레 치죄(治罪)하는 데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손과 헌관(獻官) 안지(安智)가 파출당하고 물의가 비등(飛騰)하게 되어 끝내 그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 뒤에야 구차스레 피혐했고, 그 피혐한 팔에도 그 실정을 다 드러내지 않았으니, 상진은 무례함이 매우 심합니다.

그 당시의 동료들 또한 그 일을 다 모른 것이 아니로되 자기들에게는 관계 없는 일처럼 생각하여 끝내 시비의 논의가 없다가, 상진이 피혐한 뒤부터 사람들이 그 잘못을 환하게 알게 되었는데도 헌부의 계(啓)는 상진이 잘못이라는 뜻은 거의 없이 구차하게 모호한 말로 아뢰었습니다. 또 간관(諫官)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방관만 할 뿐 한마디 말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언론(言論)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같이 그릇되어 가니, 공론(公論)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인심이 나태해지고 공론이 막힘을 이 한 가지 일의 예를 들어 유추(類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이래 언관(言官)의 투박(偷薄)함이 습속을 이루어 일이 있어도 감히 말을 못하고, 모두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말할 것이다.’ 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려 하고 자기가 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론이 있으면 모두 체직되어 책임을 면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깁니다. 폐습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실로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곧은 기절(氣絕)을 배양하시고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 잡아 공론이 크게 행하게 한다면 대간이 그 직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강도 바로잡아 질 것이고 시비도 밝아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차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상진이 전일 사면할 때는 안종전(安從典)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다. 그 자세한 실정은 몰랐었는데 과연 차자의 말과 같다면 상진의 일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대간들은 직에 나오기 어렵겠다. 아울러 체직시키라.”

○辛酉○弘文館副提學柳溥等上劄曰伏見掌公尚震居風憲之地曲庇安從瑛私囑監察林佰孫以沮其課狀使不得推覈及佰孫坐不發從瑛事按問罷黜之際震不自引嫌初若不知其事者而覩然叅治使栢孫及獻官安智至於見罷物議騰播終不得掩匿後然苟且避嫌而其避嫌之辭猶不悉露其情震之無狀則甚矣其時同僚非不悉知其事而目以爲不與於己竟無是非之議自震之避嫌群情洞知其非而憲府之啓略無非震之意苟爲朦朧之說在諫列者旁觀而已噤無一言任言責者偷靡如此公論何從而出人心之頑懶公論之壅闕舉此一事可以類推頃年以來言事之官偷靡成習遇事不敢言皆以爲吾雖不言他人必有言之者異以其責歸於人而不歸於己少有公議皆以適免爲得計弊習至此可謂寒心伏願 殿下培養直氣矯正士習使公論大行而臺諫盡其職紀綱整釐而是非得其明下劄于政院曰尚震勿課安從瑛事前於辭免時予暫知之然其情則未詳知也果如劄子所言則尚震之事至爲非矣臺諫等就職難矣其并適之

《中宗實錄 卷66, 63面》

중종 25년 1월 19일(경술)

석각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류부(柳溥)가 칩충(蟄蟲: 겨울에 땅속에 숨은 벌레)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에 따라서 아뢰기를,

“지난번 이천(利川)에서 있었던 충재(蟲災)를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초봄으로 양기(陽氣)가 발동할 시기이기 때문에 칩충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장(書狀)에 ‘눈 위에서는 마구 기어다니다가 해가 뜨면 숨었다.’ 했습니다. 이는 정상에 어긋나는 괴이한 일로, 범연한 재변이 아닙니다. 사중(司中)에서 「문헌 통고(文獻通考)」를 조사해 보니, 충재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리로 따져 보아도 이보다 더 큰 재변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재 뿐이 아니다. 근래 태양의 변괴도 자주 있었고 흰 운기(雲氣)가 태양을 가로질렀었다. 백기(白氣)는 전쟁의 상징인데 변방이 안정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변방의 전쟁 단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상황이다. 재변의 발생은 오로지 백성의 일 때문인 것으로 금년 봄의 구황(救荒)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각별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전에 경연(經筵)에서 대간(臺諫)이 ‘상평창(常平倉)의 일은, 부민(富民)만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빈민(貧民)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곡식이 민간(民間)에 유통되면 빈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이 사리에 합당한 것 같다.”

하였다.

○庚戌 御夕講參贊官柳溥因蟄虫始振之語而乃言曰頃見利川虫灾事今乃孟春陽氣發動蟄虫固當始振但其書狀云雪上則橫行日出則自匿此乃反常爲異非偶然之灾也司中考諸文

獻通考則雖有虫灾未有如此者以事理計之其爲灾變莫大於此 上曰非徒虫灾近屢有日變且白氣貫日白氣乃兵象而邊方似不安靜邊釁不可謂無也大抵灾變之作專由於民事而今春救荒甚難所當各別措置也前於經筵臺諫曰常平倉之事雖云富民獨專其利而貧民不得蒙惠米穀若布於民間則貧民亦有可賴之理此言似當也 《中宗實錄 卷67, 12面》

중종 25년 1월 23일(갑인)

석강에 나아갔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柳溥)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삼가 은(殷) 나라의 조기(祖己)가 고종(高宗)을 간하는 말에 ‘먼저 왕을 바꾸고 그 일을 바꾸리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을 바룬다는 것은 임금 마음의 그른 점을 바룬다는 뜻이고, 일을 바룬다는 것은 정사(政事)의 잘못을 바룬다는 뜻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만화(萬化)의 본원(本源)이고 정사는 임금 마음의 발현(發見)입니다. 따라서 본원이 맑은 연후에야 만사(萬事)를 처리함에 있어 조리가 정연하여 모두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임금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만사를 올바르게 하려는 것은 저울대와 추를 흔들면서 물건의 무게를 달려는 것과 같아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부터 임금에게 진계(陳戒)하는 신하치고 누군들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고 않았겠으며 신하를 경계시키는 임금치고 누군들 마음을 바꾸려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이래로 한 사람도 힘써 반성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스스로 순수(純粹)한 경지에 이른 현명한 군주가 있었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학문에는 의(義)와 이(利)의 구분이 있고 마음에는 공(公)과 사(私)의 분별이 있습니다. 천리(天理)의 올바름을 체득하여 광명 정대하게 하는 것이 의(義)요 공(公)이고, 인욕(人慾)의 사됨이 섞여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利)요 사(私)입니다. 천리와 인욕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선악(善惡)은 마침내 요(堯) 임금과 도척(盜跖)²⁹²처럼 현격하게 됩니다. 때문에 옛사람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모두들 먼저 마음 공부에 주력했었습니다. 지극히 세밀히 살피고 지극히 명확히 분별하여 만사(萬事)를 조처하면, 꼭 올바르게 하려 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됩니다.

삼가 살펴보면, 전하께서는 제왕의 학문에 유념하여 힘을 기울여온 지 오랫동안입니다. 그러나 20여 년 사이 정사(政事)와 호령(號令)에 나타난 것은 편벽되고 박잡스러운 일은 많은 반면 광명 정대한 일은 적었습니다. 지혜는 기미를 밝히

292) 도척(盜跖) :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있었던 몹시 악한 사람. 류하혜(柳下惠)의 아우로 9천 명의 졸개를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하면서 약탈을 자행하였다 함.

기에 부족했고, 인자함은 백성의 고통을 돌보기에 부족했고, 용단은 사은(私恩)을 끊기에 부족했고, 총명은 소인을 분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격치성정(格致誠正)²⁹³의 공력이 아직 미진한 데가 있어 그런 것인가 여겨집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건강(乾剛)한 덕을 지니고 독실하게 심성(心性)을 닦으시어 공경으로 마음을 끈게 하고 의(義)로 행동을 절제하소서. 그리하여 마음 속에 천리가 환히 밝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도리에 맞아 만물이 태평무사하게 되는 지극한 공(功)을 이루신다면,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태자(太子)는 임금의 다음이요 나라의 근본입니다. 대를 이어 정사를 밝게 펴 나가고 종묘사직을 주관할 중하고도 존엄한 자리이므로, 보양(輔養)하는 방도를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살펴보면 동궁(東宮 : 세자(世子))께서는 깊은 덕과 아름다운 자태로 학문이 날로 진취됨은 물론 인효(仁孝)한 성심(誠心)은 하늘에서 타고 나셨고 훌륭한 자질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계십니다. 순수하고 지선(至善)한 덕은 하늘에서 타고 나셨다 하지만, 보도(保導)하는 데에는 반드시 보필자(輔弼者)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의당 단정하고 선량한 사람을 가려서 요속(僚屬)에 임명하여 덕성(德性)을 훈도(薰陶)시키게 하는 반면 시강(侍講)하는 자리에서는 충심으로 간(諫)하는 도리를 다하게 하고 글의 뜻을 풀어감에 있어서는 자세히 살펴 깨우쳐 주는 성심을 다하게 하소서. 이어 먼 옛날로는 문왕(文王)이 세자로 있을 때를 본받게 하고 본조(本朝)에 있어서는 문종(文宗)이 세자로 있을 때를 본받게 하여 삼선(三善)을 극진히 하고 사술(四術)²⁹⁴을 넓히게 하소서. 이는 세자의 보양에 있어 급선무인 것입니다.

지금 시골의 필부(匹夫)라도 가정을 이어갈 만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자(諸子 : 둘째 이하 여러 아들)보다는 특별히 우대, 애호하고 교회(教誨)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하물며 임금이 세자를 보양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힘써 예범(睿範 : 임금의 모범)을 몸소 숭선하여 세자가 보고 본받는 것이 말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그 덕성을 더욱 성대하고 더욱 빛나게 하소서. 이는 온 나라 신민(臣民)들의 복입니다.

『역경(易經)』에도 ‘기미(幾微)는 발동의 조짐으로 길흉(吉凶)의 결과에 앞서 나타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기미의 조짐을 살피자면 총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대저 화란(禍亂)은 은미함에서 시작되어 드러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293) 격치성정(格致誠正) : 『대학(大學)』 팔조목(八條目)의 하나로 인격 수양의 과정. 격물(格物) · 치지(致知) · 성의(誠意) · 정심(正心)을 말함.

294) 삼선(三善)을……사술(四術) : 삼선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 《禮記 文王世子》 사술은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방법으로 충애(忠愛) · 무사(無私) · 용현(用賢) · 간능(簡能)이다. 《小學紺珠 治道類 四術》

서 은미할 적에 조처하면 공을 이루기가 쉽지만, 드러난 다음 도모하려면 힘을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작은 불이 넓은 들을 태우고 개미 구멍이 제방을 무너 뜨리는 법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에는 시비(是非)가 있고 의(義)에는 경중(輕重)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론(國論)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세월이 오래되어 형적(形迹)이 희미하다는 것으로 다시 이론을 제기, 이미 정해진 국론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성인(聖人)이 은미할 적에 참가야 된다고 한 본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산군(寧山君 : 성종(成宗)의 제13자 전(愼)임)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서 자주 간인(奸人)의 입에 올랐었습니다. 당초 조정에서 조처하여 귀양보낸 것은 종묘사직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직첩(職牒)을 도로 돌려주고자 하여 묘당(廟堂 : 조정(朝廷))에 하문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정의(情意)에 있어서는 치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묘사직은 지극히 중하므로 결단코 사적인 우애 때문에 시비와 경중을 문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미할 적에 삼가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는 일이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삼가 기미를 상세히 살펴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언다는 조짐을 막음으로써 종묘사직을 위해 도모하소서.

학교(學校)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요 훌륭한 선비를 배출하는 관문입니다. 옛날 성명(聖明)한 군주는 교도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덕을 갖춘 인재와 조예를 지닌 젊은이들이 육성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런 신하가 되기도 하고 효성스런 아들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일을 당해서도 구차스레 피하지 않았고 의를 보면 반드시 과감하게 실행했으므로, 평일에는 임금이 면전에서 과감하게 간쟁(諫諍)했고 위난(危難)이 닥쳐서는 의에 목숨을 바치는 절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학교가 명교(名教)를 뿌리박게 한 것이 범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교육 행정이 크게 무너져 유도(儒道)가 궤멸되었으므로, 장보관(章甫冠)에 도포 입은 선비들이 게을러 빠져 책 가지고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가르침 받는 것을 오활하게 여기는 반면, 사학(私學)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에도 나가지 않음은 물론 책을 묶어놓고 읽지 않기 때문에 학교(學校)가 조용하고 쓸쓸키만 합니다. 따라서 벼슬한 사람 가운데 박학(博學)한 선비가 드물어 강석(講席)을 헛되이 베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유가 없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시학(視學 : 성균관 시찰임)하는 법과 경서(經書) 강론하는 일은 간혹 거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옛 의례(儀禮)만 준행할 뿐 선비를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는 성의가 없어 고무시키고 진작시키는 기틀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24년토록 교양(教養)의 효과가 적적기만 할 뿐입니다. 전조(銓曹 : 이조와 병조임)에서도 스승에게 교육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므로 주의(注擬)²⁹⁵할 적에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있어 심지어는 술수(術數)만을 배운 사람과 권간(權奸)에 아첨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끼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기절(氣節)이 있는 자가 있으면 모두들 침을 뱉고 있으니 누가 책을 가지고 스승 앞에 나가서 머리 숙이고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아, 사우(師友)의 도가 무너지고 학정(學政)이 폐된 것이 지금보다 더한 때는 없었습니다. 인심(人心)은 날로 사악해져 가고 사습(士習)도 날로 비속하여져서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앞 사람의 얘기만을 되풀이 하고 공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앞 사람의 의견에만 찬동하기 때문에 정직한 기개는 없고 교사(巧邪)한 기풍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라 하문(下問)해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식견이 없는 무부(武夫)들이야 진실로 꾸짖을 가치조차 없겠지만,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들도 죄과(罪過)를 숨기고 헛말을 꾸며 임금을 속이는데도 이 말을 믿고 계십니다. 아, 사풍(士風)의 붕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인재의 교육을 숭상하여 학교를 일으킴으로써 사똥 습속을 개혁, 사풍을 바꾸소서.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데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사람을 쓰는 방법은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권면하고 선한 말을 진달하여 충직하고 선량한 자는 군자이고, 위의 뜻만 맞추고 구차스레 보전되지만 바라 음험하고 사특한 자는 소인입니다. 군자가 진출하는 것은 잘 다스려짐의 표상이고, 소인이 기용되는 것은 혼란의 기미입니다. 그러나 어진이를 기용하기는 돌을 굴리듯 쉽고 소인을 제거하기는 산을 뽑듯 어려운 법이니 충언(忠言)은 용납되기 어렵고 사설(邪說)은 먹혀들기 쉬운 탓이 아니겠습니까?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임금에게 어진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지니고 있는 뜻과 덕이 공고하지 못하면 간혹 점차적으로 험뜯는 참소나 부녀와 환관(宦官)들의 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임(信任)한 지 오래지 않아 의심하고 꺼리게 되어 속으로는 은밀히 배제하면서도 밖으로는 높이 기용한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한무제(漢武帝)의 경우도 급암(汲黯)의 충성을 알면서도 멀리 회양(淮陽)으로 내쳤고, 공손홍(公孫弘)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정승의 자리에 임용함으로써 용사(用捨)가 전도되어 한(漢) 나라의 국운이 쇠하고 말았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는 내 몸같이 여기고 간사한 사람은

295) 주의(注擬) : 관원(官員)을 임명할 적에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이때 맨 앞에 올리는 사람을 수망(首望)이라 하고 전부를 삼망(三望)이라 함.

의심없이 제거, 어진이를 존대하고 참소를 막으시니,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도 외척(外戚)들이 좋은 벼슬에 오르고 요행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용렬한 자가 벼슬자리를 더럽히는가 하면 뇌물로 자리에 오른 자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옳은 말이 쓰여지고 정직한 이가 오래 용납됨을 기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간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날로 열리고 정직한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날로 막힐까 우려스럽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밝게 살피고 믿고 신임하시어 간사한 무리를 멀리하고 올바른 선비의 기개를 회복시킴으로써 군자의 도(道)가 성하고 소인의 도가 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는 간사한 자들이 맑은 조정에 발 붙일 수 없게 하소서.

나라를 가진 자는 누구든 무비(武備)를 중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태평해도 안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위태함을 우려해서이고 보존되고 있는데도 준비하는 것은 망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태평한 때에도 적을 방어하기 위해 장수(將帥)를 가리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졸(士卒)을 조련시키고 군마(軍馬)를 정돈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고 기계(器械)를 손질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는 경계를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 1백여 년 동안 태평했던 것을 믿고 훈련에 태만한 지가 오래했습니다. 변방의 장수를 가려 뽑지 않아 거개가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차견(差遣)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보를 지키는 자까지도 탐학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권세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자리에 발탁되는가 하면 군졸을 놓아보낸 댓가로 돈을 받아 자신을 살찌우고, 군졸을 남에게 빌려주어 일을 시키게 합니다. 때문에 진보(鎭堡)가 텅 텅 비었고 군기(軍器)가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오랑캐들과 교통하여 금법(禁法)을 무시하고 물건을 매매하고도 욕심이 차지 않아 징수하는 세목(稅目)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변(北邊) 사람들은 '차라리 오랑캐 집에 가서 머슴을 살망정 변장들에게 사역(使役)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탐오가 사람의 뺨골을 저며내는 참혹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변방 장수가 공 세우기를 즐겨 먼저 혼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잘못이 우리쪽에 있다면 저들이 분을 품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변방 장수를 신중히 가려 변방의 경비를 철저하게 함은 물론, 탐풍(貪風)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전쟁의 단서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늘과 사람의 응보(應報)는 메아리보다 빠른 것으로 아래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위에서 견책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변(災變)이 일어나는 것은 실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니, 하늘의 견고(譴告)가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정월(正月)입니다. 그런데 흰 운기(雲氣)가 태양을 가로지르고 관(冠)과 이

(履)의 변괴까지 있는가 하면, 눈보라가 사납게 일고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정월은 양(陽)에 속하는 달입니다. 태양은 양이고 흰 운기는 음(陰)으로 태양 주위에 흰 운기가 있었으니, 이는 음이 양을 가리운 것입니다. 눈(雪)은 음기(陰氣)이고 벌레는 음물(陰物)인데 벌레가 눈 위에 떨어져 기어 다니니 이는 음이 음과 교합한 것이요, 햇벌이 나면 절로 숨어버리니 이는 양기(陽氣)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음이 성하고 양이 쇠미한 것은 소인(小人)의 도(道)가 자라나는 조짐인 것으로, 하늘의 경고가 깊고도 절박합니다. 대저 재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과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흰 운기와 벌레의 괴변은 하늘의 재변이요, 도성(都城) 부근에 주려 죽은 시체가 잇단 것은 사람의 재변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는 노고가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위로 천재(天災)를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는 성실한 마음으로 재변 없앨 방도를 강구하소서.

신들은 모두 변변찮은 자질로 경악(經幄)에 대죄(待罪)하고 있습니다만, 시사(時事)를 살펴보면 항상 위망(危亡)의 화(禍)가 곧 닥칠까 두려운 나머지 격정(激情)에 치받쳐 차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유념하소서.”

전교하였다.

“이제 상소(上疏)를 보니 상하(上下)의 병통에 적중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재변(災變)이 잇달아 나타나는 때이니, 상하가 더욱 더 유념해야 한다. 동궁(東宮: 세자(世子)를 가리킴)을 보양(輔養)하는 것은 당금의 급선무이다. 때문에 지난번 경연에서 내가 이미 자주 말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規戒)한다는 말을 못들었다. 영산군(寧山君)은 당초 방환(放還)시키지 않았을 적에 아래에서 아뢰에 따라 방환시켰는데 그때 내가 미리 직첩에 대한 일을 의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미 방환시키고 나서도 평인(平人)처럼 직첩을 회수해 버리고 마는 것은, 우애(友愛)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묘당(廟堂: 조정(朝廷))에 의논한 것이다.

학교가 퇴폐되기는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유(師儒)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들도 부지런히 자제들을 권면하여 학교에 나아가게 해야 된다.

변신(邊臣)들이 공 세우기를 즐겨 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 않다. 간혹 일이 발각되어 죄를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변장(邊將)을 가려 임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 흉년이 너무 극심하여 도성(都城) 근처에 굶어죽은 시체가 잇달았다. 따라서 나의 근심하는 마음을 조금인들 헤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해조(該曹)에

서 진구(賑救)하려 해도 가난을 숨기고서 있는 체하는 자들이 간혹 있다. 이런 일은 이미 추핵(推覈)하게 했다. 상하 모두가 마음을 기울여 진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황(救荒)하는 일은 의당 급속히 조치해야 된다. 그런데 해조에서 세후(歲後)에 구황할 것으로 절목(節目)을 만든 것은 내 생각에는 너무 늦다고 여겨진다.”

○甲寅 御夕講○弘文館副提學柳溥等上疏曰伏聞祖己諫高宗之言曰惟先格王正厥事格王云者格君心之非正厥事云者正政事之失君心者萬化之本源政事者君心之發見本源澄澈然後經緯於萬事者井井然皆得其正不能先格君心欲正萬事者是撓權衡而稱輕重其可得乎自古人臣之進戒於其君者孰不曰正心人君之爲戒於其臣者孰不欲正心然而三代以下未聞有一明君誼辟用力於存省積功於學問自至純粹之地夫學有義利之辨心有公私之分得天理之正而光明正大者義也公也雜人欲之私而反側偏頗者利也私也其間相距所爭一髮而善惡之效終至於堯跖之相遠故古人爲學皆先於心上用功察之至密辨之至明而施之於萬事者不期正而正矣伏見 殿下留神於帝王之學用功悠久然而二十餘年之間著於政事發於號令者多偏私駁雜之政少光明正大之事智不足以燭幾微仁不足以恤民隱勇不足以割私恩明不足以辨小人臣恐格致誠正之功有所未至而然也伏願 殿下體乾剛之德篤涵養之功敬以直內義以方外使方寸之間天理惺惺以臻中和位育之極功豈非偉歟太子君之貳國之本處繼明之重當主鬯之尊輔養之方寧容少緩伏見東宮川冲玉裕學問日就仁孝之誠亶自天成元良之資蔚於人望然純善之德雖性情得之保導之力須人輔弼宜擇端良以爲宮案薰陶德性使讀席談筵務盡忠規之道紬文繹義方資審諭之謹在往古則以文王之爲世子爲法在我朝則以 文宗之爲世子爲法盡三善弘四術此保養之急務也今夫鄉里匹夫猶知家嗣之重禮秩異於諸子愛護之教誨之無所不至況國君之養儲乎伏願 殿下務推睿範勗率以身使其所視效者在於不言不勉之地離徽克茂副德愈光此一國臣民之福也易曰幾者動之微吉凶之先見者也察幾於微非明曷以大抵禍亂起於微而成於著救之於微則易爲功圖之於著則難爲力灼火燎原蟻穴潰堤可不戒哉事有是非義有輕重定其國論而只歲月之久形迹之微復有他議欲撓已定之國論豈聖人謹微之意乎寧山君以王室至親屢登奸人之口當初朝廷之處置爲 宗社大計也乃者欲還職牒降問廟堂在 殿下友愛之情可謂至矣然 宗社至重斷不可以友愛之私混是非紊輕重也微而不謹則事之不可救者將必有大於此者矣伏願 殿下察其幾審其微杜履霜之漸爲 宗社之圖學校風化之原賢士之關古之聖帝明王能盡教導之方故成人有德少子有造爲臣則忠爲子則孝臨事則不苟避見義則必勇爲犯顏諫諍之心施之平日伏羲死直之節效之危難學校所以扶植名教豈偶然哉頃年以來學政大頽儒道日毀章甫縫掖之徒散落怠惰以挾冊爲羞受斲爲迂自私其學不赴學庭束書不讀鬻舍寂然博士罕仕講席虛設此豈無使而然也殿下視學之典橫經之舉間或行之而徒遵古儀無崇儒重道之誠失鼓舞振作之機故積二紀教養之效寥寥無聞銓曹以師教爲輕注擬之際略不擇人至有專治術數之人諂附權奸之老側于

其中少有氣節者咸唾鄙之誰肯執經俯首師事受業哉噫師友道喪學校政廢未有甚於今之時人心日訛士習日卑談事者擬迹而投足持論者卷舌而同聲無讜直之氣有巧僞之風清問再降對以不知如賀賀武夫固不足責至以近侍之臣掩罪匿過構飾虛辭欺罔宸聽而宸聽信之嗚呼士風之毀一至於此伏願 殿下崇菁義之教以興學校革浮詐之習以正士風代天理物莫急於用人用人之方莫切於辨君子小人之分其責難陳善忠純直諒者君子也逢迎苟全險隱陰邪者小人也君子進者治之表小人用者亂之機然用賢則如轉石去佞則如拔山豈非忠言難容而邪說易入耶願治之主雖有好賢之心植志不固執德不堅或陷於浸潤之譖或撓於婦寺之說信任未幾遽懷疑忌內實陰擠外示顯用如漢之武帝知汲黯之忠而斥淮陽之遠燭公孫弘之邪而任鼎軸之重用舍顛倒漢業遂衰可不鑑哉伏見 殿下用人由己去邪勿疑其尊賢暨讒可謂至矣然姻婭膺仕倖門大開闢茸忝竊瘳曠居多危言未必見用正直未必久容臣等恐群枉之門日以闢直言之路日以塞矣伏願 殿下明以察之信以任之遠佞邪之黨恢正士之氣使君子道長小人道消蠹國之奸不得接跡於清朝有國家者莫不以武備爲重安而不逸以慮危也存而設備以懼亡也當昇平之日猶以擇將禦侮爲急操鍊士卒整擷軍馬繕城堡鍊器械桑土之戒不容少懈而近者籍百年積累之安訓鍊久弛不揀邊帥類遣非人至於乘障守堡者無非貪饕輸帛權門拔援買除釋旅收債以肥其己借卒事人以賭其喜鎮堡空虛兵甲不修甚者交通夷虜冒禁貿物溪壑不填徵科蠹起北人爲之語曰寧作胡家傭莫逢貂皮役甚矣貪風之刻人若是慘也不特此也邊臣喜功先自構豐曲若在我彼之懷憤固其所也伏願 殿下慎簡邊帥戒嚴邊備毋長貪風毋開豐隙天人之報捷於影響政疵於下謫見于上災變之興實由人召天之譴告豈無其由今當歲首之月白氣貫日有冠履之異風雪大作有雨虫之災蓋正月陽月也日者陽也白氣陰也日邊有白氣此以陰蔽陽也雪陰氣也虫陰物也而虫在雪上以陰交陰也見晁自匿畏陽氣也陰盛陽衰此小人道長之象也天之警告深且迫矣夫災有在人之災有在天之災白氣虫異在天之災也都城之近餓莩相繼在人之災也未審 殿下宵旰憂勞其亦及此耶伏願 殿下上畏天災下恤民隱以誠實之心爲消弭之方臣等俱以無狀待罪經帷目覩時事常恐危亡之禍近在朝夕情激于中不忍泯默伏願 殿下留神屬傳曰今見上疏正中上下之病况災變疊見之時上下益當省念也輔養東宮當今之急務故頃於經筵予已屢言然未聞規戒之言也寧山君當初未及放還之際自下啓而放還其時予未之先議也若已放還而其收職牒如平人等則似乖友愛之道故議于廟堂也學校之頹莫甚於此時莫如急擇師儒也在宰相之列者勤勸子弟使之就學則可也邊臣喜功其罪不小或有事覺而被罪者然莫若擇邊將也去年凶荒大甚都城之近餓莩相繼予之憂念曷嘗少弛哉該曹雖欲賑救諱貧而示富者容或有之如此之事已令推覈上下豈不動念而賑恤哉救荒之事當急速措置該曹以歲後救荒事爲節目予意以爲緩也《中宗實錄 卷67, 17面》

중종 25년 2월 4일(갑자)

석강에 나아갔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지난번 인심과 사슴이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폐단에 대해 소를 올려 진달했었습니다. 이는 범연하게 논한 것이요 의도가 대간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대간을 지적(指斥)했다면 임금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어세(語勢)가 자기들에게 관계되었다고 하여 여러날 굳게 사퇴하고 있지만 신들의 뜻이 본디 대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사체에도 합당합니다. 남효의는 주제넘게 간원의 장(長)으로 있으면서 함부로 자기의 의견만 고집함으로써 동료들이 따르기만을 바랬을 뿐 공론의 소재는 돌보지 않은 채 스스로 편견을 고수, 홀로 자꾸 사퇴하여 기필코 자신이 사퇴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집요(執拗)하기만 할 뿐이겠습니까. 사면(辭免)되는 것을 최상의 계책으로 여기니, 실로 전하의 분부와 같이 기어코 물러가려는 것입니다. 가령 남효의가 어떤 일을 만나 과감하게 말했을 적에 동료들이 자기의 의논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홀로 각립(角立 : 의견 대립)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홀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요, 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론이 자기에 휩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끈질기에 고집하여 기어코 사면되기를 바람으로써 서로 의심하는 사슴(士習)의 단서를 열었으니, 장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시비를 분명히 밝혀 호오(好惡)를 보임으로써 뒷 폐단을 막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의논이 지당하다. 남효의는 망령되이 자기의 의견만 고집한 채 공론을 돌보지 않았고, 사면(辭免)할 적에도 예하 관리들이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도 잘못이라 여긴다. 호오를 보이려면 남효의²⁹⁶⁾를 파직해야 되겠다.”

○甲子 御夕講○弘文館副提學柳溥等上筭曰頃者以人心日訛士習日卑疏陳時習之病此泛論耳意不在臺諫也如或指斥臺諫則咫尺清問其不以實對乎臺諫雖以爲語勢逼己累日固辭知臣等之意本不指臺諫乃就其職是固當然允合事體南孝義忝竊諫長妄執己見欲同僚之苟從不顧公論之所在自守頗僻之意而煩猥獨辭必遂其計而後己豈徒其心之執拗哉以適免爲得計誠如 殿下所教必欲自退也使孝義遇事敢言而同僚不從其議則其獨立宜矣反是則是獨率妄意也非獨立也旣知公論之不逼於己而猶且固執必欲適免以啓士習相疑之端將來之弊可勝言哉伏願 殿下明燭是非以示好惡以杜後弊幸甚傳于政院曰見弘文館筭字議論

296) 남효의(南孝義) : 조선 중종(中宗) 때 문신. 자는 중유(仲柔). 호는 지소재(志素齋). 본관은 의령(宜寧). 문과에 급제. 함경도 관찰사·대사헌 등을 거쳐 형조 판서를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至當南孝義妄執己見不顧公論辭免之時以爲下官不從己意云予亦非之也如欲示其好惡則孝義罷職可也

《中宗實錄 卷67, 27面》

중종 25년 2월 23일(계미)

정청(政廳)²⁹⁷에 전교하였다.

“이귀령은, 인물을 가지고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술(經術)이 부족한 것으로 아뢰기에 체직하였다. 그리고 대사성(大司成)으로 합당한 사람을 경외관(京外官) 가운데서 주의(注擬)하라 했는데 이조(吏曹)는 ‘외관(外官)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지만 부제학(副提學 : 류부(柳溥)가 부제학이 되었는데 전에 대사성의 망(望)에 들어 있었음.)은 체직해서는 안 된다.’ 하였고, 육조 참의(六曹參議)는 ‘인물은 비록 모르는 것은 아니나 경술이 어떠한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하였다. 이조 당상(吏曹堂上)은 스스로 의심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인데 정옥형(丁玉亨 : 이조 참의임.)은 어떠한가? 그가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 합당하다면 단망(單望)으로 주의하라.”

○癸未傳于政廳曰李龜齡非以人物爲不當以經術不足啓達大司成可當之人令以京外官注擬則吏曹以爲外官無可當人副提學柳溥爲副提學前入大司成望不可適也而六曹參議則人物雖非不知然未詳知經術之何如吏曹堂上不可自疑故言之丁玉亨吏曹參議何如無奈可當乎如可當也以單望注擬

《中宗實錄 卷67, 36面》

중종 25년 3월 6일(병신)

조강에 나아갔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함(李菡)이 진하사(進賀使)로 중국에 갈 때 표문(表文)²⁹⁸을 싸가지고 가서 예부(禮部)에 올린 뒤에 그것이 진주(進奏 : 황제에게 아뢰)되었는지의 여부를 마땅히 자세히 물어 보았어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 조정(朝廷)에 하직하고 떠나던 날에 진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마땅히 예부에 다시 품달하여 그것이 진주되기를 기다렸다가 왔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미련스럽게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돌아왔으니, 그 죄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조옥(詔獄)으로 하여금 추문케 하소서. 검찰관(檢察官) 장옥(張玉)도 이함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함은 곧 무인(武人)이라서 사체를 몰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

297) 정청(政廳) :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政事)를 행하는 곳으로, 이조 정청(吏曹政廳)과 병조 정청(兵曹政廳)이 따로 있음.

298) 표문(表文) : 소회(所懷)를 진술하여 임금께 올리는 글. 대개 경하(慶賀) 때 흔히 올리는 것인데 여기는 조선 임금이 중국 천자에게 올리는 표문을 말함.

겠으나,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와 질정관(質正官) 조인규(趙仁奎)만은 그 표문이 진주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자세히 의논하여 힘을 다했어야 옳은 것인데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즉시 물러 나왔으니,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조옥으로 하여금 추고해서 뒷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장령(掌令) 조인규를 체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인규는 동료에게 논핵을 받았으니 체직시키라. 그리고 이함의 일은 정조사(正朝使)의 서장(書狀)에서 보았는데, 다시 류부(柳溥) 등이 복명(復命)하는 서계(書啓)를 상고하여 보니, 곧 예부가 잘못된 것이지 사신(使臣)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예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이 표문을 예부에 버려두고 곧바로 진주하지 않다가 정조사가 들어간 뒤에야 정조사로 하여금 진주하게 했다고 하니, 대국을 섬기는 일에 있어 지극히 미안한 일이다.

당초에는 배신(陪臣)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전에 경연에서 대신에게 물어 보았더니 대신과 다른 재상(宰相)이 모두 ‘이것은 예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예부에 표문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 전례이므로 사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추문을 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예조(禮曹)의 공사(公事)를 보고서야 이함을 헌부에게 추문토록 하자, 헌부가 ‘장령 조인규에게 간섭되었으므로 추문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부(禁府)에 이첩(移牒)하라 한 것인데, 지금 그 조율을 보니 바로 공죄(公罪)이다. 그러니 장옥(張玉)은 마땅히 추문해야 할 것이며, 장령은 지금 이미 체직하라 명하였으니 마땅히 법사(法司)에서 추문할 일이고, 꼭 조옥(詔獄)에서 추문할 것은 없다.

류부(柳溥)는 바로 성절사(聖節使)이고 조인규는 질정관(質正官)이었으니 모두 그들 책임은 아니다. 단 함께 돌아온 일행이면서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과연 잘못된 듯하다. 그러나 치죄는 각각 잘못된 바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 어찌 함께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추문을 받게 해야 하는가. 류부와 조인규는 추문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류부(柳溥)와 조인규가 이함과 함께 동행하여 중국에 갔으니 국가의 중대한 일은 진실로 함께 의논하여 처리했어야 마땅한데, 어찌 이함에게만 맡길 수 있던 말입니까? 부(溥) 등의 생각으로는 나의 소임이 아니라고 여겨 타인의 일처럼 보았을 것인데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 사람들을 죄주지 않았다가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모두

나의 소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대국을 섬기는 일에 있어 지극히 잘못될 것이 오니, 아울러 조옥으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

하고, 대간이 이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연(崔演)의 말이 한림(翰林) 김노(金魯)와 사알(司謁) 최수정(崔守貞)에게도 연관되었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최연의 일이 또 사알에 간여되었으니 이것은 곧 조짐이 보이는 일입니다. 만약 즉시 그 말의 뿌리를 추문하지 않으면 크게는 치란(治亂)에 관계되오니, 오늘 속히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장옥은 과연 잘못이다. 류부(柳溥)와 조인규의 소임은 각각 다르다. 이함과 함께 논핵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한림과 사알 등의 일은 오늘 안으로 추문하게 할 것이니, 추문해 보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丙申 御朝講○憲府啓曰李菡以進賀使赴京賫去表文呈于禮部之後其進奏與否所當詳問而不爾至爲誤矣及其辭朝之日聞其不奏則當更稟于禮部待其進奏然後出來可也頑不動念遽卽回還其罪無狀請以詔獄推之檢察官張玉與李菡無異李菡乃武人不知事體未及計料矣聖節使柳溥質正官趙仁奎亦聞其表文不奏則固當詳議極力處置可也略不顧念亦卽退來至爲誤矣請並詔獄推之以懲後人掌令趙仁奎請違之傳曰趙仁奎被論於同僚其違之李菡事見正朝使書狀而更考柳溥等復命所啓而見之則乃禮部之所誤非使臣之誤也雖禮部誤爲而我國之人置表於禮部而不卽進奏至於正朝使入去之後令正朝使進奏云事大之事至爲未安初以爲陪臣所失前於經筵問大臣大臣及他宰相皆曰此乃禮部所失我國之人呈表于禮部乃其例也非使臣之所誤云故不卽命推其後觀禮曹公事而李菡令憲府推之則以干涉於掌令趙仁奎推之爲難云故移于禁府矣及見其照律則乃公罪也張玉所當推之掌令今已命違當以法司推之不必推于詔獄也柳溥則乃 聖節使而趙仁奎爲質正官則皆非其責但同歸一行而不與共議處之果似誤矣然而治罪各以所失可也豈以不同相議之事并令推之柳溥趙仁奎等其勿推之憲府再啓曰柳溥趙仁奎與李菡同行赴京則國家大事固當同議爲之豈可獨季李菡乎溥等之計以爲非我所任視如他人之事豈曰無罪今若不罪此人則後有如此之事而皆曰非我所任云爾則事大之事至爲誤矣請并詔獄推之臺諫仍啓前事又啓曰崔演言辭連於翰林金魯司謁崔守貞尤爲驚愕崔演之事又干於司謁此乃幾微之事若不卽推言根則大關於治亂請於今日速推傳曰張玉果爲非矣柳溥趙仁奎所任各異與李菡同論未便也翰林司謁等事令今日內推之推之則可知其情矣餘不允

《中宗實錄 卷67, 43面》

중종 25년 3월 7일(정유)

주서 최연의 옥중상소(獄中上疏)를 임추(任樞)에게 내리면서 일렀다.[중략]

그리고 헌부가 아뢰린 류부와 조인규 등을 조옥(詔獄)에서 추고하라는 것은, 사대(事大)하는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계한 것이다. 이함은 진표(進表)의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허둥지둥 중국 조정에 하직하고 왔고, 장옥(張玉)은 검찰관(檢察官)으로서 또한 규정(糾正)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큰 잘못이다. 마땅히 추문해야 한다. 류부(柳溥)와 조인규는 소임이 이미 다른데 어떻게 함께 의논하지 않았단다 하여 이함 등과 같은 율(律)로 추문할 수 있겠는가. 조정에 의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즉시 삼공과 의논하여 아뢰라.”

○영의정 정광필과 우의정 이행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최연과 김노 등의 추안(推案)을 보면 최연은 전교를 사칭한 일이 없으니, 이것으로서 승복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께서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였다. 좌상 심정은 그 아들 사순(思順)이 승지로 있었기 때문에 의논드리지 않았다. 광필과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성절사(聖節使)가 진하사(進賀使)와 비록 동행은 하였으나 소임이 각각 다르니, 아울러 추문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니, 우의정 이행은 장옥과 사돈간(婚家)이기 때문에 의논드리지 않았다. 삼공의 의논을 임추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다. 대간에게 보이라.”

하고, 이어 최연의 추안을 임추에게 내리면서 일렀다.

“그를 형신(刑訊) 추문하지 말고, 다만 위에서 대간이 아뢰린 말을 감록(減錄)하라는 하명(下命)이 없었는데 빠뜨리고 함께 기록하지 않은 일로, 판부(判付)를 고쳐 추고하라.”

○丁酉下注書崔演獄中上疏[中略]

且憲府所啓柳溥趙仁奎等詔獄推考事以事大之事重大故如是論啓耳李菡不察其進表與否而遽卽辭朝張玉以檢察官亦不糾正此其大失果當推之柳溥趙仁奎所任旣異豈可以不爲同議而與李菡等一律推之乎不可不議于朝廷其卽議于三公以啓○領議政鄭光弼右議政李荇議啓曰今觀崔演及金魯等推案崔演無有稱傳教之事不可以此取服聖明旣已洞照左相沈貞以其子思順爲承旨故不議光弼與沈貞議聖節使與進賀使雖同行所任各異并令推問未便右議政李荇與張玉爲婚家故不議下三公議于任樞曰大臣之議如此其示臺諫仍下崔演推案于任樞曰其勿刑推而只以自上無減錄臺諫所啓之命而遺漏不爲俱錄事改判付推考 《中宗實錄 卷67, 44面》

중종 25년 3월 9일(기해)

석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류부(柳溥)와 조인규의 일은 윤택하고 나머지는 윤택

허하지 않았다.

○己亥 御夕講○臺諫啓前事柳溥趙仁奎事從之餘不允

《中宗實錄 卷67, 47面》

중종 25년 3월 14일(갑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 등이 차자를 올렸다.

“2월 17일에 지진(地震)이 있고 명천(明川)에서는 피비가 왔는데 피빛이 대홍색(大紅色)이었으며 인마(人馬)의 발자국에 거의 가득했다 하니, 해괴하고 경악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해 보니 ‘한 혜제(漢惠帝) 2년에 의양(宜陽) 땅에 피비가 왔는데 그때에 제려(諸呂)가 용사(用事)하여 참소가 멋대로 횡행하였으므로 세 황자(皇子)를 죽이고²⁹⁹⁾ 비사(非嗣)를 세웠으며 여 태후(呂太后)가 봉하(封) 대신(大臣)이 함께 제려를 주살(誅殺)³⁰⁰⁾하매 시체가 즐비했고 피가 내처럼 흘렀다.’ 하였고 또 ‘영인(佞人) 여녹(呂祿)이 공신(功臣)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제(哀帝)³⁰¹⁾ 4년에는 산양(山陽)과 호릉(湖陵)에 피비가 왔는데 왕망(王莽)이 조정을 제마음대로 뒤흔들어 귀척(貴戚)인 정·부(丁傅)³⁰²⁾와 대신(大臣) 동현(董賢)³⁰³⁾ 등을 주살하고 모두 먼 지방으로 내쫓았으며, 진 혜제(晉惠帝) 원년에는 위지(尉氏)에 피비가 왔는데 이해 정월(正月)에 회민태자(懷愍太子)를 보내어 허궁(許宮)에 유폐(幽廢)하니 왕실(王室)에 틈이 생겨 그 화가 천하에 유전(流傳)하게 되었으며, 후제(後齊) 2년에는 태원(太原)에 피비가 왔는데 명년(明年)에 주(周) 나라 군사가 돌궐(突厥)과 함께 병주(并州)에 침입하

299) 제려(諸呂)가……죽이고 : 제려는 한 고조의 황후인 여 태후(呂太后)의 친정(親庭) 형제자매를 가리킴. 즉 여태(呂太)와 여산(呂産) 등을 가리키며 세 황자(三皇子)를 죽였다는 것은, 여 황후가 혜제(惠帝)가 봉하(封) 후궁(後宮)의 아들을 세워 황제를 삼고, 태후가 조화에 임하여 명을 내렸는데, 그때 태(台)와 산(産) 등이 권세를 뒤흔들면서 참조하여 고조의 아들인 조유왕 우(趙幽王友)·공왕 회(共王恢)·연왕 건(燕王建)을 죽인 일을 가리킨다. 《漢書 卷九十七上 外戚傳》

300) 여 태후(呂太后)……주살(誅殺) : 여 태후가 임조칭제(臨朝稱帝)하다가 봉하(封), 태위(太尉) 주발(周勃), 승상(丞相) 진평(陳平), 주허후(朱虛侯) 유장(劉章) 등이 함께 도모하여 여산(呂産)과 여녹(呂祿)을 주살하고 모든 여씨의 남녀를 모두 잡아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참살(斬殺)한 일. 《漢書 卷九十七上 外戚傳》

301) 애제(哀帝) : 서한(西漢)의 12대 임금 유흔(劉欣).

302) 정·부(丁傅) : 한 애제(漢哀帝)의 외척(外戚) 정씨(丁氏)와 부씨(傅氏). 정씨는 애제의 어머니 정 태후(丁太后)의 친정이고, 부씨는 원제(元帝)의 소의(昭儀)이며 애제의 할머니인 부 태후(傅太后)의 친정을 가리킴. 《漢書 卷九十七上 外戚傳下》

303) 동현(董賢) : 한(漢) 나라 운양인(雲陽人)으로 자(字)는 성경(聖卿). 애제(哀帝)의 총애를 받아 왕의 좌우에서 떠난 적이 없었으며 고안후(高安侯)에 봉해졌음. 22세에 벼슬이 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에 이르렀는데 애제가 죽자 왕망(王莽)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돌아가서 자살(自殺)하였음. 《漢書 卷九十三》

여 성서(城西)에서 대전(大戰)을 하니 죽은 시체가 1백여 리에 깔렸었다.’ 하였으니, 이 역시 후제가 나라를 망치게 될 조짐(兆朕)이었습니다. 대저 피라는 것은 음(陰)의 정기로서 상해(傷害)의 상(象)이며 강시(僵尸)의 유(類)입니다. 그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이니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큰 재앙이 겹쳐 일어나 정월(正月)에 하늘에서 별레가 쏟아지는 재이(災異)가 있는가 하면, 삼월(三月)에 눈이 오는 재변(災變)이 있는 데다 흠비와 우박이 겹쳐 내리니 하늘의 꾸지람이 전하께 급박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진과 피비 두 재앙이 함께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것으로 하늘의 꾸지람이 더욱 급박한 것입니다. 임금은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의 괴이(怪異)를 만나도 오히려 허물을 반성하고 생각을 조심해서 모두 없애지게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재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허물을 인책하는 실상이 없고, 아래서는 계도하여 이끌어갈 대책은 세우지 않고, 보통의 일로 여겨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신들은 적이 위망(危亡)의 화(禍)가 가까이 조석 사이에 있거나 없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방책(方策 : 옛 문헌(文獻)을 가리킴)에 기재된 것에서 참고될 만한 것을 가려 전하의 관성(觀省)에 대비하였사오니, 전하께서는 지난간 자취를 통찰(洞察)하시어 그 조짐을 살피소서. 그리고 신료(臣僚)들을 불러들여 그 재변이 온 까닭을 물어보아 조심스럽게 덕을 닦으시어 아직 싹트지 않은 재환(災患)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하신다면, 국가에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까.”

전교하였다.

“내가 차자를 보고 역대의 재이에 대한 조짐을 자세히 알고 나니,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신료를 불러들여 물어보는 일은 경연(經筵)이 있으니, 특별히 할 것은 없겠다. 그리고 근래의 폐단을 보니 겉치레만 있고 그 실상은 없다. 전자에 교지를 내려 구언(求言)하였는데 비록 고칠 만한 폐단이 있을지라도 의논을 하면 다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으니, 민생(民生)이 어느 때에 그 실다운 은혜를 입겠는가. 근자에는 흉년이 더욱 심하여 남북의 변방에 경보(警報)가 끊어지지 않으니, 상하가 다시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더하여, 각각 그 직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甲辰○弘文館副提學柳溥等上劄曰今二月十七日地震雨血于明川血色大紅人馬足跡幾盈不勝駭愕歷攷文獻通考漢惠帝二年天雨血於宜陽時諸呂用事讒口妄行殺三皇子建立非嗣及呂太后崩大臣共誅諸呂僵尸流血又曰倭人祿功臣戮哀帝四年山陽湖陵雨血王莽擅朝誅貴戚丁傅大臣董賢等皆放徙遠方晉惠帝元年尉氏雨血此歲正月送懷愍太子幽于許宮王

室成釁禍流天下後齊二年太原雨血明年周師與突厥入并州大戰城西伏尸百餘里亦後主亡國之應夫血者套之精傷害之象僵尸之類其應不爽可監可戒近來以大沴疊作三陽之月有雨虫之異五陽之月有雨雪之灾加之以雨土雨雹天之譴告 殿下迫矣而今又地震雨血二灾俱發此曠古所無天之譴告益迫矣人君遇一草一木之恠尚當省愆惕慮以盡消弭之方而遇如此莫大之灾 上無引咎之實下無啓迪之謨視爲尋常恬不知懼臣等竊恐危亡之禍近在朝夕謹撫方策所載以備觀省伏願 殿下洞察往迹以審其應延訪臣僚以問其由側身修德使未萌之患潛消於冥冥國家幸甚傳曰予觀蒟子詳知歷代灾異之應不勝驚懼延訪則自有經筵不須特別爲之也見近來之弊有文具而無其實前者下旨求言而雖有可革之弊議之則皆置而不用民生何時蒙實惠乎近者年凶尤甚南北邊警不絕上下更加恐懼修省各修其職可也

《中宗實錄 卷67, 52面》

중종 25년 3월 22일(임자)

○정조사(正朝使) 박광영(朴光榮)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하니,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제가 조회 보는 것이 그전과 같던가?”

하니, 광영이 아뢰기를,

“황제가 날마다 조회를 보는데, 비록 눈이 오더라도 모든 관원이 모두 대궐에 나아갔다가, 조회할 시간에 임해서도 눈이 오고 그치지 않으면 아뢰고 조회를 중지하기 때문에 미리 정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릇 치재(致齋)하는 날에는 여타(餘他) 문서(文書)는 출입할 수 없으나 조회 보는 일만은 정지하지 않았으며, 행제(行祭)한 뒤에도 조회를 보았습니다. 서반(西班)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말에 조정(朝廷)의 의논이 조회 보는 일은 폐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계사(宗系事)에 있어서는 신이 들어갔을 때와 돌아올 때에 성절사(聖節使) 류부(柳溥)를 만나보고 물어보니 류부(柳溥)가 ‘이미 개정했다.’고 하였는데, 신이 경사(京師)에 도착하여 내각(內閣)과 사관(史館)의 사람에게 들어보려 했으나 형세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사(主事)는 옥화관(玉華館)에 있었고 신들이 우거(寓居)하고 있는 곳에는 항시 문신(文臣)이 와서 검속(檢束)하기에 신이 보고 ‘종계(宗系)의 일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주청(奏請)했지만 그것이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내관(內官)이 아니니 어떻게 예부(禮部)의 일을 알겠는가? 그대가 하마연(下馬宴)³⁰⁴⁾ 때를 당하여 예부 상서(禮部尙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304) 하마연(下馬宴) :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베푸는 환영연. 곧 말에서 내리자 차리는 잔치

는 주사(主司)의 관리이므로 사관(史官)의 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후 하마연 때에 예부 상서에게 ‘본국(本國 : 우리 나라)의 종계(宗系) 개정에 대해 성지(聖旨)로 이미 고치라고 허락했다 하니,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기쁘고 경사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고쳤다면 다만 온 나라의 신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하(地下)에 계신 조종(祖宗)의 신령에게도 우연한 경사가 아니다. 그러나 개정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돌아가면 온 나라의 상하(上下)가 누구인들 자세히 이 일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 일의 시말을 알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무엇으로 전하(殿下)에게 회보(回報)한단 말인가?’ 하니, 상서(尙書)가 대답하기를 ‘그대는 어쩌면 이토록 의심하는가. 조정에서 외이(外夷)를 접대함에 있어 모두 신의를 잃지 않는다. 더구나 그대 나라는 곧 예의(禮義)의 나라로서 조정에서 대우하기를 보통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개정하는 일에 대하여는 성지가 이미 내렸으니, 어찌 개정하지 않았겠는가. 그대들은 의심치 말라. 단 『대명회전(大明會典)』만은 그때 수정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지금 책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지(聖旨)가 정녕하니 뭐 의심할 게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적실(的實)한 말을 듣고자 하였으나 내각(內閣)과 사관(史館)의 관리를 만나보지 못하여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반(序班)·하리(下吏) 등 족친(族親)에 내각서사(內閣書寫)의 직임에 끼어 있는 자가 있기에 개정하였는지를 물어보니, 말하기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금방 수찬(修撰)에게 들어보고 와서 말하겠다.’고 하기에 그뒤에, 물어보니 ‘무슨 의심할 게 있겠는가? 단 전에 기록된 종계(宗系)의 악명(惡名) 등의 일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다만 그 아래에 첨주(添注)하기를 『모모년(某某年)에 개정할 일로 주청(奏請)하니, 성지(聖旨)……』이라 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글을 총재관(摠裁官)이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서(成書)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것도 전해 들은 말이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생각컨대 성지(聖旨)를 첨주(添注)하여 써 놓았다면, 전에 써 놓은 악명 등의 일은 반드시 삭제해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광영이 아뢰었다.

“『대명회전』은 아직 모두 수정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성지를 그 아래에 첨주한 것이지만 만약 수정을 끝냈을 때라면 총재관(摠裁官)이 마땅히 다시 살펴서 마감(磨勘)하여 만들 것이니, 뭐 의심할 게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만약 개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분

명히 말했겠습니까? 서반(序班) 및 서사(書寫)하는 사람들이 모두 침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기에 신들이 등서해 줄 것을 요청하니, 총재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써 보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壬子○正朝使朴光榮還自京師復命 上御宣政殿引見 上曰皇帝視朝如舊爲之乎光榮曰皇帝逐日視朝而雖雨雪千官皆詣闕臨其時雨雪不止則奏而停之故不得預停矣凡致齋之日他餘文書不得出入而視朝則亦不停也行祭之後亦視朝問諸序班則曰朝廷之議以視朝不可廢也故如此爲之云且 宗系事臣入歸時見聖節使柳溥問之柳溥曰旣已改正云臣到京欲聞見於內閣史館之人而勢難不爾也主事在玉華館之內臣等所寓處也常時文臣每來檢舉臣見而問之曰 宗系之事往者累爲奏請而其定改與否未□詳知焉答曰我非內官何以知禮部之事耶汝當下馬宴時問于禮部尚書則可知矣我乃主司之官不知史官之改正也其後下馬宴時問於禮部尚書曰本國 宗系改正事 聖旨已許修改其爲一國臣民之喜賀可勝言耶若誠修改則非徒一國臣民之喜於 祖宗地下之靈亦非偶然之慶也然而改正與否未之詳知我等若還則一國上下孰不欲詳聞此事乎今不知首末而歸則其何以回報於 殿下也尚書答曰汝何疑之至此耶朝廷之待外夷皆不失信而況汝國乃禮義之邦朝廷待之亦非尋常矣改正事聖旨已下其何不正乎汝等其勿疑但大明會典時未畢修正故今未成書耳然而 聖旨丁寧有何疑乎臣等欲聞的實之言而不得見內閣史館之官未能詳問之耳序班下吏等族親有干於內閣書寫之任者問其改正與否則曰未能詳知今方修撰當聞見來言厥後更問則曰有何疑也但前 宗系惡名等事全不改正只於其下添注曰某某年奏請改正事 聖旨云云耳如此書之而摠裁官時未見之故未得成書此亦傳聞之說何以取信 上曰今以 聖旨添注書之則前書惡名等事必不削去矣光榮曰會典時未畢修故以 聖旨添注于其下若畢修之時則摠裁官當更考磨勘而爲之有何疑也云禮部尚書非常之人若不當改正之事則何以如此分明言之乎序班及書寫之人皆言添注之事臣等以謄書許給事請之則曰摠裁官時未見之我輩何以擅目書示

《中宗實錄 卷67, 58面》

중종 25년 4월 6일(음축)

조강에 나아갔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 등이 아뢰기를,

“대제의 치재일에는 고문이나 처벌을 하지 말라는 조문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삼성교좌(三省交坐)할 적에 형신한 일을 번연히 알면서, 분사(分司)가 국문에 참여한 것은 크게 사체(事體)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헌부는 규찰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전혀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론(輿論)이 있는 다음에야 관례적인 피혐(避嫌)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리어 국문에 참여한 대간을 논핵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 하였습니다

니다. 이렇게 하고서 태연하게 금부와 색승지를 추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간원은 비록 금부의 관리와 색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하였으나 분사가 국문에 참여한 것은 또한 사체를 크게 손상시킨 일인데도 스스로 피험하지 않았고, 국문에 참여한 대간을 추고할 것도 청하지 않았으니, 더욱 사체를 손상시킨 처사입니다. 아울러 체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乙丑 御朝講○弘文館副提學柳溥等啓曰大祭致齋之日勿行考訊決罰載在大典司憲府司諫院非不知三省交坐之日用刑訊之事而分司叅鞫大失事體而憲府則以糾察之任嘗然不知其非至於物論騰播然後例避自安反論叅鞫臺諫求免己責如此而豈可安然推其禁府及色承旨乎司諫院雖請推禁府官吏及色承旨然分司叅鞫亦失事體不自避嫌叅鞫臺諫又不請推尤爲失體請並違傳曰依啓

《中宗實錄 卷68, 5面》

중종 25년 4월 19일(무인)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류부(柳溥) 등이 상소하였다.

“임금이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무슨 기미를 당했을 때 이를 사체에 타당하게 처리하여 끝내 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는 공경을 주로 삼아 근본을 세우고 자신에 반성하여 그 실상을 책임지는 것 뿐입니다. 공경을 가지는 방도는 우선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행동을 정제히 하고, 행동을 정제히 해서 마음을 수양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과 밖이 서로 의뢰하고 본(本)과 말(末)이 돕게 되면 마음이 어찌 부정해지며 일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게으른 생각이 마음에 싹트면 과오를 저지르게 되고 따라서 누우치고 한탄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지난번 종묘의 하향제(夏享祭) 때에 친행하겠다는 명을 내리심에 군신들이 모두 선조의 영혼이 참으로 감림해 계신 것처럼 여기는 전하의 정성을 우러르면서 충충걸음으로 대제에 집사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향이 있기 3일 전에 마침 날씨가 어둑컴컴 해지면서 아침 비가 내리자 전하께서는 정원의 경솔한 계품을 한번 듣고서 대번에 섭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내린 지 얼마 안되어 날씨는 맑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상하가 재계하는 뜻이 소홀했던 점을 누우쳤지만 이미 재계를 끝낸 뒤이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제(陪祭)하는 신하들이 모두 각사(各司)에 재숙(齋宿)하고 있는 만큼 집사를 바꾸어 정하는 것을 어찌 미처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정원이 미리 계품하여 이미 갖추어진 전하의 성의를 흠축(欠縮)시켜 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는 당연히 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가부를 짐작해서 사리에 알맞게 하는 일은 전하의 한 마음에 있는 것이요 다른 데에 있지 않은 것이니, 이는 의당 전하께서 먼저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서 아랫사람에게 뉘우치는 뜻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원이 승지의 잘못을 한번 논하자 전하께서는 그 사이에 조금도 뉘우치는 뜻이 없었으니, 이는 곧 죄를 아랫사람에게만 돌리고 자신은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 정사의 잘못됨과 한 백성의 억울함이 비록 임금의 한 몸에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옛 성왕들은 모두 그 허물을 자신에게 돌렸고 아랫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으니 남의 웃사람이 된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도를 의당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피소서.

일전에 전하께서 대신에게 전교하시기를 '요즘에 사람 쓰는 것이 온당치 못하여 순후한 사람을 일러 용렬하다 하고, 가볍고 민첩한 사람을 일러 쓸만하다고 한다.' 하시었는데, 전하의 이 전교가 과연 무슨 뜻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번 나오자 군정(羣情)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몸들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직언(直言) 한 마디 없이 입을 꼭 다물고 출세의 기회를 노리는 자는 순후한 것처럼 보이고, 임금을 직접 대하여 직간(直諫)하는 사람은 가볍고 민첩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른바 순후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민첩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현부(賢否)를 잘 알아보는 일은 요순도 어렵게 여겼던 바입니다. 만일 공정한 중언(衆言)을 참고하지 않고 실지 행사(行事)로써 시험했을 경우에는 속임을 당하지 않은 경우가 적습니다.

전하께서는 유사(有司)가 주의(注擬)해서 관직을 임명한 이외에 특명으로 임명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당세에 쓸만한 사람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로 은충에 보답하고 아래로 중망(衆望)에 부응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하의 호오(好惡)가 진정 다 밝다고 할 수 있겠으며, 취사(取捨)가 진정 다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인심의 향배(向背)와 사기(士氣)의 성쇠는 모두가 임금의 말 한 마디에 달린 것입니다. 예부터 간사한 소인들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엎드려서 임금의 의향을 살피다가 어떤 계기를 잡으면 이를 빙자하여 간사한 수법을 부려서 정사(正士)를 용납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자는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랫사람을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때에 말을 마구 하는 것은 왕자(王者)로서 크게 주의할 점입니다. 도(道)를 독실히 믿어서 사리를 밝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군들 전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의구(疑懼)하지 않고서 위태로운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의심하여 정의(情意)가 신실하

지 못하면 이것은 국가를 장구하게 보전하는 계책(計策)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그 취사를 잘 살피시어 군신(羣臣)들의 의혹을 없애소서.

대체로 사람의 현부를 잘 알아보는 임금을 명군이라 하고 직책을 잘 완수하는 신하를 양신(良臣)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 신하의 일을 직접 한다면 이는 좀스러운 것이고 신하가 임금이 위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게으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순(舜)과 고요(皐陶)가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맡은 책임은 크지만 직접 다스리는 일은 간단하기 때문에 임금은 안일하지 않을 수 없고, 맡은 책임은 작지만 직접 다스리는 일은 자상해야 하기 때문에 신하는 수고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잘한 일을 힘쓰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작은 일에 관심을 두어 큰 일을 빠뜨리며, 한 사람의 몸으로 백관(百官)의 직임을 다하려 한다면 그 체(體)가 서로 어지러워지고 그 용(用)이 주도(周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몇 해 전부터 넓게 포용하는 도량은 적어지고 세쇄한 살핌이 많아져서 심지어는 용인(用人)의 당부와 행정(行政)의 득실에 관해서도 일일이 간섭을 하시어 사람들의 조그마한 하자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하여 따짐으로써 아랫사람들에게 몸둘 바를 모르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 까다롭게 살피는 병폐는 서민(庶民)들에 있어서도 그 집안을 다스려 나갈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임금이란 마치 위에서 운행(運行)하고 있는 하늘과 같은데 사시의 한서(寒暑)가 각기 절서(節序)를 맡고 있으므로 하늘은 수고롭지 않고도 만물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높고 큰 지위를 비하(卑下)시켜서 스스로 수고롭고 스스로 낮아지려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대체를 잘 보존하시어 여망(輿望)에 대처하소서.

옛날에 사람을 잘 관찰해서 쓴 나라들은 반드시 그 정사(政事)의 순수함과 순수하지 못함과, 정령(政令)의 엄격함과 해이함을 먼저 살폈으니, 이는 바로 정사를 하는 도구가 여기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려(思慮)가 이미 익숙해지고 모책(謀策)이 이미 이루어졌어도 함부로 발령(發令)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기가 마치 금석과 같고 미덥기가 마치 사시와 같아서 상을 주면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벌을 주면 백성이 모두 복종하였습니다. 만일 정령에 조령모개(朝令暮改)의 변동이 있고 권징하는 데 있어 경중의 타당성을 잃는 일이 있으면, 나라에 법다운 법이 없을 것이니 백성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정령은 과연 모두 인정에 부합하고 후세에 전할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정원이 주밀하지 못한 실수 사초(史草)를 써서 보인 일임.가 있어 대간이 파직시킬 것을 청하자 전하께서 윤택하신 것은 공론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파

직시킨 지 열흘도 못되어서 다시 서용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司)의 장관된 사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아랫사람 주서 권응창을 가리킴. 역시 죄는 똑같은데 그 사람만 서용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죄가 가벼워서 곧 서용할 만하면 애당초 파직(罷職)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요, 파직시켰다가 다시 서용할 경우에는 또 함께 파직된 사람들을 반드시 똑같이 서용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정령이 이토록 전도되어 시비가 귀착될 곳이 없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조정이 존엄해지고 인심이 열복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시기를 밝게 살피시어 국정(國政)을 일정하게 시행하소서.

신들은 모두 불초한 자질로 외람되어 논사(論思)의 열(列)에 참여하여 전하를 보양하는 방도에는 비록 조금치의 보탬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보거나 한 가지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의 한 마음은 종사(宗社)와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깊은 궁중(宮中) 한가히 계시는 곳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는 공력이 혹 조금이나마 해이해짐으로써 방탕한 생각과 게으른 기색이 잠시나마 전하의 마음에 머무르게 될까 염려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태묘의 대제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치재를 하고 있었으니 어찌 조금 내린 비 때문에 정지하려 하였겠는가. 정원이 아뢰는 바로 본다면 ‘헌관과 집사를 오늘 미리 개정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수향(受香)을 하지 못할 듯하다.’ 하므로, 부득이 정지시켰던 것이다. 배제관(陪祭官)을 다시 정한 일로 말하면 내가 미처 몰랐던 일이니 이는 정원의 실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실수인 것이다. 이제 가부를 짐작해서 하는 것은 상에게 달렸다고 하였는데, 내가 짐작해서 하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나의 실수이다.

전일에 대신들이 재변(災變)으로 인하여 사피(辭避)할 때에 사람을 쓰는 데에 관한 일을 언급하였었는데, 사람을 쓰는 데에 타당성을 잃었다고 한 말은 범론(泛論)일 뿐이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순후하다 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 가볍고 민첩하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말 때문에 군정(羣情)이 의구(疑懼)하여 마치 용납할 곳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하는데,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데 있어 주의(注擬)에 의해서 등용한 이외에도 쓸만한 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예부터 특별히 등용한 때가 있었다. 조금이라도 사의(私意)만 없이 한다면 사람을 쓰는 데는 무방할 듯하다. 더구나 전조(銓曹)가 의망(擬望)하여 취품하는 일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특별히 등용하는 예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원의 관원들을 이미 파직시켰다가 바로 서용한 것이

온당치 못한 일임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신들을 연방(延訪)했을 때에 좌우에서 모두 서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시 서용한 것이다.

권응창의 경우는 대신이 서용하라고 말하지 않은 일ियो, 따라서 나 역시 류윤덕과 죄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 다만 관계되지 않은 승지만을 논했을 뿐이니 이제, 죄는 똑같은데 누구는 서용하고 누구는 서용하지 않았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다.”

○戊寅○弘文館副提學柳溥等上疏曰人主之遇事臨機皆適其宜終於無過之地者主敬以立其本反躬以責其實而已持敬之方莫先於一其內以齊其外齊其外以養其內而內外相資本末相濟則心何有不正事何有不遂者乎反是則怠惰之念一萌于中而過誤之成悔吝之來自不能勝其煩矣頃者 宗廟夏享之祭親行之令已下矣群臣咸仰如在之誠期執駿奔走之事先享三日天適晦冥朝雨有作 殿下聞政院率爾之稟遽令攝行令下未幾日旋明霽上下雖悔於齋意已散之後亦何益哉陪祭之臣皆齋宿其司則更定執事何慮不及而政院徑自啓稟使 殿下已集之誠意有缺而無施其罪固有在矣斟酌可否滴其事宜則實在於 殿下之一心而不在於他是宜先引其咎以示悔悟於下也諫院一論承旨之失 殿下了無自悔之意及於其間此則委罪於下而已不與也夫一政之失一民之寃雖非直出於君之一身者古之聖王皆當之於已而不歸於下誠以爲人上者受過之地當如是也伏願 殿下更加收省以進聖德日者 殿下教大臣曰近日用人失當醇厚者以爲庸劣輕捷者以爲可用未知 殿下此教何所見而發乎此言一出而群情疑畏若無所容夫舍默偷容者近於醇厚抗顏直諫者近於輕捷 殿下所謂醇厚者果何人面輕捷者亦何人哉知人堯舜所難苟不考諸衆言之公試以行事之實鮮不爲其所欺矣殿下常於有司注擬之外率多有 特命之事必以爲此人在當世爲可用者也然上答 恩寵而下副衆望者有幾人哉然則 殿下之好惡其可謂盡明乎取舍其可謂盡公乎大抵人心之向背士氣之盛衰皆繫於人主之一言自古奸細之徒潛伏於一隅候伺君上旨意因緣憑藉以售其奸使正士無所容焉者無世無之則臨下而不懼臨言而不惜者王者之大戒也自非信道篤而自知明者孰不聞 殿下之言而懷疑負懼以爲自危計乎上下相疑情意不孚甚非國家長久之術也伏願 殿下審其取舍以斷群疑夫君以知人爲明臣以任職爲良若君行臣職則叢脞矣臣不任君之事則惰矣此舜臯陶所以廢歌而相戒者也所司者大所治者要故君不可以不逸也所司者小所治者詳故臣不可以不勞也若務細而多疑舉小而遺大欲以一人之身代百官之任則其體相亂而其用不周矣伏見 殿下數年以來少舍弘之量而多細微之察至於用人之當否行政之得失容有下侵而人之點瑕微疵縷折毫分使無所容於下察察之病在匹夫四婦猶不能成其家政矧在千乘之位乎人君者如天運於上而四時寒暑各司其序則不勞而萬物自生矣何必卑其尊小其大以爲自勞自卑之地乎伏願 殿下務存大體以對舉望古之善觀人之國者必先察其政之醇疵令之張弛爲治之具無以過此故也惟其慮之既熟謀之已成發之不妄故能堅如金石信如四時賞之而民莫不悅罰之而民莫不服也苟有政令有朝暮之變勸懲失輕重之宜則國無

以爲法民安所取信乎然則 殿下當時之政令果皆合於人情而可傳於後世乎往者政院有不密之失書示史草事臺諫請罷而 殿下許之者從公論也罷未經旬還叙其職者有何意乎爲其長者則已矣其下注書權應昌乃有罪同而獨未還叙者抑又何意乎其罪在可即叙則初不必罷也罷而還叙則又不可不同叙也是何政令爲之顛倒而是非無所歸宿乎如是而欲使朝廷尊嚴人心悅服不亦難乎伏願 殿下明燭是非以一國政臣等俱以無似猥忝論思之列其於輔養之方雖未效涓埃之分然見一事聞一過則未嘗不惕然悚然仰望其改如不及焉誠以 殿下之一心爲宗社萬福之原深宮燕閑之地祇敬寅畏之功恐或少弛而得使放念怠氣有留於俄頃也伏願殿下留神焉答曰 太廟大祭予已致齋豈以小雨而欲停之乎以政院所啓觀之獻官執事今日未及改定則恐未及明朝受香之時也云故不得已停之矣以陪祭官移定事予未及知之也此非徒政院之失乃予所失之意也今日斟酌可否在於上也予不能斟酌亦予之失也前日大臣等因灾辭避時論及用人之事用人失當之意泛論而已不指某人爲醇厚某人爲輕捷也以此言至於群情疑畏若無所容予未料之也人君之於用人注擬之外人物可用者自古有特用之時也少無私意則恐不妨於用人也况銓曹難備擬望取稟則亦有特用者矣政院已罷即叙未便之事予非不知而大臣等延訪時左右皆曰叙之可也云故還叙也權應昌則大臣不言叙用之事予亦以爲與柳潤德同罪故不論而只論不干承旨而已今云罪同或叙或不叙之言予未之知也

《中宗實錄 卷68, 12面》

중종 25년 5월 21일(경술)

부제학(副提學)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은 학문이 넓지 못하고, 일을 요량함이 깊지 못하여 경연의 막중한 자리에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종사(從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노쇠함이 날로 심하여 더욱이 직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간원이 올린 소(疏)를 보니 ‘간혹 강개한 선비가 있어 시속을 민망히 여겨서 정론(正論)을 격발(激發)하여 서로 더불어 의논하려 하면서도 혹은 형적(形迹)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평범한 것만을 따르기도 하며, 애써 따르는 것으로써 서로 유인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기도 하니, 그 실상은 전하의 노여움을 범할까 두려워서이고, 당로자(當路者)의 비위를 거스르까 두려워서이다.’ 하였으니, 이는 비록 이름을 들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신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신을 속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간원의 상소가 비록 이와 같지만, 누구를 지적해서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일로 시종(侍從)을 체직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류부(柳溥)는 과거(科擧)에 급제한 이후 비록 문벌(門閥)이 좋은 관계로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였지만 실상은 성질이 어리석고 꺾 막혀서 사리를 몰랐으니, 시론(時論)이 그를 싫어한 것은 당연하다.

○庚戌副提學柳溥啓曰臣學問不博料事不長不合經筵重地而黽勉從仕近來衰老日甚尤不堪任今見諫院上疏曰間有慷慨之士傷時悶俗欲激發正論相與議之而或存形迹或循尋常扣之以勉從強之以不聽其實則畏犯宸怒也畏忤當道也云此雖不舉名言之必指臣而言也請速達臣職傳曰諫院之上疏雖如此非指言之也以此達侍從非輕勿辭柳溥至三啓不允史臣曰溥登第雖以門地顯進歷揚清班然性質庸暗滯不曉事理宜乎時論不與也 《中宗實錄 卷68, 29面》

중종 25년 6월 2일(경신)

○부제학(副提學) 류부가 아뢰기를,

“신이 사간원의 소론(疏論 : 상소하여 논핵하는 일)을 입고 누차 사면(辭免)하였으나, 윤희를 얻지 못하여 황공합니다. 상교에는 굳이 신에게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어찌 경연의 장관이 논핵을 받고도 뻔뻔스럽게 직에 그대로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결코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다시 사면하려 하였으나 병 때문에 그리 못하였으니, 속히 체직하시어 중론(衆論)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이미 사면을 청하고 지금 또 간절히 사면을 청하였으니, 어찌 범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였겠는가. 그러나 대간과 시종은 일체(一體)여서 다른 관리의 예와는 다른데, 사면한다 해서 체직할 수 있겠는가. 사면하지 말라.”

하였다. 류부(柳溥)가 재차 사면하니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庚申○副提學柳溥啓曰臣被司諫院疏論累次辭免不得蒙允惶恐 上教當欲黽勉就職然而自古豈有經筵長官被論靦然在職者乎雖反覆計之決然不可在職且必有物論即欲更辭而病未能也請速達之以快衆論傳曰前旣請辭今又懇辭豈偶然計而如是乎然臺諫侍從皆一體非如他官之例豈可以辭免達之乎勿辭柳溥再辭 命達 《中宗實錄 卷68, 38面》

중종 25년 8월 16일(계유)

상이 이어소(移御所)에 문안했다. 자전(慈殿)의 증세가 혼수 상태로 지치고 신열이나 번번(煩悶)하는데다 입이 말라 마실 것을 자주 찾았다. 심장과 폐의 맥이 자주 뛰고 비장과 위장의 맥은 약하게 자주 뛰었으며, 얼굴과 허리가 조금 부었다.[중략]

○삼경(三更) 이점(二點). 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관(內官)을 이어소에 보내 문안했더니, 자전께서 증세가 위중하시다 하므로 내가 듣기에 망극(罔極)한데, 곧 친히 나아가 문안하려고 하면 반드시 놀라와 하실 것이다. 자전께서 돌아와 계시려고 하지만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즉시 삼공에게 물어보라. 또 정원의 뜻은 어떤지, 내반원(內班院)이나 승정원은 미처 수리하지 못했으니, 내 생각에는 모시고 돌아와 동궁(東宮)에 계시게 하고 싶은데 또한 어떠하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동궁으로 옮겨 계시게 하려는 성상의 분부는 지당하시지만 지금 친히 가서 살피시는 것은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서서히 증세를 보아서 대처하되 한결같이 이어에 관한 모든 일을 시급히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조 판서 김극성(金克成), 도총관(都總管) 유여림(兪汝霖), 부총관(副總管) 류부(柳溥)가 또한 모두 입직하였으니 명초(命招)하여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김극성 등이 아뢰었다.

“증세가 위중하시게 되면 마땅히 대궐 안으로 시급히 돌아와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신들과 육경의 뜻이지만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증세가 그러하시다면 더욱 시급하게 돌아와 계시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돌아와 계시는 모든 일을 지금 곧 조치해야 하지만, 대신들이 또한 오래지 않아 마땅히 오게 될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대처함이 합당합니다. 또 환어(還御)하시게 될 때 군사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하나하나 취품하여 시행하려면 번거롭게 될 듯하니 네 곳의 위장(衛將)들에게 표신(標信)³⁰⁵을 내주어 정리하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癸酉 上問安于移御所 慈殿證候昏沉困倦身熱煩悶口渴引飲心肺脉浮數脾胃脉細數面上及腰下微浮[中略]

○三更二點傳于政院曰遣內官問安于移御所則 慈殿證勢危重予聞之罔極卽欲親詣問安則必爲惶駭 慈殿雖欲還御而今已夜深何以爲之其卽問諸三公且於政院之意何如內班院承政院等處未及修理予意欲奉還御于東宮亦何如其議啓之政院啓曰移御東宮 上教至當今親省之恐不可爲徐觀證勢而處之一以速治移御諸事何如兵曹判書金克成都總管兪汝霖副總管柳溥亦皆入直 命招問之何如傳曰可金克成等啓曰證勢危重則當速還御于闕內大臣六卿之意也而未敢啓也證勢如此則尤不可不速還御還御諸事今方措置大臣亦不久當至更議處之爲當且還御時軍士出令一一取稟似爲煩數四所衛將處出標信整齊宜當

《中宗實錄 卷69, 10面》

305) 표신(標信) : 궁문(宮門)의 개폐(開閉) 또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 중의 통행 허가나 군국(軍國)의 긴급한 일 때문에 관원이나 군사 등을 부를 때 증명으로 쓰는 표.

중종 25년 9월 24일(경술)

○예조가 아뢰기를,

“오는 27일은 곧 금정(金井)³⁰⁶을 여는 날이니 총호사(摠護使)와 예조 당상 및 풍수학 제조(風水學提調 : 관상감(觀象監) 소속임.)가 마땅히 가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다만 풍수학 제조 성세창(成世昌)은 마야흐로 지문(誌文)을 쓰고 있고 류부(柳溥)는 역시 제조(提調)임. 지금 수릉관(守陵官)이 되었고 단지 영사 정광필만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승지가 따라가는 일은 비록 의궤(儀軌)에는 없지만 장경 왕후 때에 이르러서는 있었는데, 이는 곧 한때의 일이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풍수학 제조 정광필 및 도승지 등에게 가서 둘러보게 하라.”

○庚戌○禮曹啓曰來二十七日乃開金井日也摠護使禮曹堂上及風水學屬觀象監提調當往審矣但風水學提調成世昌則方書誌文而柳溥亦提調也今爲守陵官只有領事鄭光弼何以爲之且承旨隨去事雖無儀軌至章敬王后時有之此乃一時之事敢稟傳曰風水學提調鄭光弼及都承旨等往審可也

《中宗實錄 卷69, 27面》

중종 26년 9월 5일(을묘)

심언경(沈彦慶)을 사헌부 대사헌에, 특배(特拜)임. 류부(柳溥)를 수지중추부사(守知中樞府事)에, 허위(許渭)를 황해도 관찰사에, 정옥형(丁玉亨)을 승정원 좌승지에, 박홍린(朴洪麟)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乙卯以沈彦慶爲司憲府大司憲特拜柳溥守知中樞府事許渭爲黃海道觀察使丁玉亨爲承政院左承旨朴洪麟爲持平

《中宗實錄 卷71, 20面》

중종 27년 3월 16일(을축)

○수릉관(守陵官)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이 여러 달 동안 능소(陵所)에 있으면서 능을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새 능의 주산(主山) 밖에 인가(人家)가 지극히 가까이 있어서 다듬이 소리, 닭과 개의 소리, 말발굽 소리가 계속 들려 매우 미안합니다. 신이 입번한 종친 및 시릉관과 함께 주산에 올라서 바라보니, 새 능 뒤쪽의 동편이 대로(大路)와 지극히 가깝고 길가의 인가 또한 가까워서 매우 온당치 못했습니다. 이제 옛 선릉의 산형도(山形圖)를 아울러 올리니 이것을 보시면 신이 아뢴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호군(守護軍)은 처음에는 70호(戶)를 정하여 솔정(率丁) 2명을

306) 금정(金井) : 무덤자리를 팔 때 길이와 너비를 정하는 데에 쓰는 나무틀. 정자(井字) 모양으로 만들어 바닥에 뉘어놓고 그 안을 팸. 여기서는 무덤자리를 가리킴.

주었으므로 모든 일이 군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빈궁하여 결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제대로 수호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강가에 이생지(泥生地)가 있는데 뽕나무는 심을 수 없고 농사는 지어 먹을 수 있다 하니 이 수호군에게 절급(折給)하여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乙丑○守陵官柳溥啓曰臣累朔在陵所詳審陵事新陵後主山外人家至近砧聲與鷄犬馬蹄聲相聞至爲未安臣與入番宗親及侍陵官上主山觀之新陵後東邊大路至近路傍人家亦近至爲未便今并獻舊宣陵山形圖見此則臣之所啓之意可知也且守護軍初定七十戶給率丁二名凡事不審今則貧窮已甚乞資生無以守護臣聞江邊有泥生之地不可植桑可耕食願折給此軍以資其生何如傳曰依啓

《中宗實錄 卷72, 60面》

중종 27년 8월 24일(기해)

김안로를 지의금부사에, 류부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하였다.

○己亥以金安老爲知義禁府事柳溥爲知中樞府事

《中宗實錄 卷73, 21面》

중종 28년 2월 20일(계사)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류부(柳溥)와 동지의금부사 심언경(沈彦慶)이 아뢰기를, “한덕을 데리고 아이에게 가서 보이며 ‘누가 네 발을 잘랐는가?’ 하니 ‘한덕이다.’ 하였습니다. 한덕과 중덕(仲德)을 같이 앉혀놓고 다시 ‘어느 사람이 네 발을 잘랐는가?’ 하고 물으니, 또 한덕을 가리켰습니다. ‘무엇으로 잘랐는가?’ 하니 ‘칼이다.’ 하였고, ‘어디에서 잘랐는가?’ 하니 ‘방안에서 잘랐다.’ 하였으며 ‘언제 잘랐는가?’ 하니 ‘낮에 잘랐다. 두 손을 묶고 숨으로 입을 막았다.’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한덕이 한 짓이 틀림 없어서 이제 한덕을 추문할 것으로 공사를 만들었는데, 계하(啓下)하셨습니다.[중략] 무녀 귀덕의 초사에는 ‘정월 27일 어린 아이가 두 발이 동상에 걸려 있으므로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이달 초 5일에 발 하나가 동상으로 빠졌고 초 8일에는 또 다른 발이 동상으로 빠졌다. 자질금(者叱今)과 을비(乙非) 등이 이것을 보았다.’ 하였고, 자질금의 초사에는 ‘무녀 귀덕이 과연 아이를 데리고 와 살렸는데 그때는 두 발이 완전하였으며 동상으로 빠졌을 때는 보지 못했다.’ 하였고, 을비의 초사에는 ‘정월 26~27일께 귀덕이 두 발이 동상에 걸린 아이를 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발이 빠졌을 때는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중략]

하니, 전교하였다.

“아된 뜻은 알았다. 과연 귀덕의 일을 보면 귀덕을 먼저 형추해야 옳을 것 같다.

귀덕이 아이가 쓸모 없다고 하여 돈독(敦篤)을 시켜서 버리게 하였으니, 이로 보면 발이 잘리지 않았을 때 데리고 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먼저 형추해야 한다. 한덕의 공사를 보니, 80세 이후와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고 한 말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아이에게 보이며 ‘이 사람이 네 발을 잘랐는가?’ 하면 모두 ‘아니다.’ 하고, 한덕을 보이면 ‘내 발을 자른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한다고 하니, 이 아이가 귀덕과 한덕에게 무슨 애증(愛憎)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단지 그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손금과 자질금에게 긴급하게 물을 일이 없으면 류(柳)·심(沈) 두 당상이 참여하여 추국하는 것이 옳다. 근년에 경성(京城) 가까운 곳에서 잔혹하게 해치는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하니 이 어찌 작은 변괴인가. 속히 주문하도록 하라.”

○癸巳○知義禁府事柳溥同知義禁府事沈彦慶啓曰以漢德入示兒曰何人斷汝足乎曰漢德也令漢德與仲德同坐更問何人斷爾足乎則指漢德也問何物以斷之乎則曰刀予也問何處則曰房內也問何時則曰晝也兩手繫結以綿塞口云分明漢德之所爲故方推漢德爲公事啓下矣[中略] 巫女貴德招辭正月二十七日有兒兩足凍傷因率而來家今月初五日一足凍落初八日又一足凍落者叱今乙非等見之者叱今招辭巫女貴德果收兒救活兩足完固至於凍傷脫落時未見也乙非招辭正月二十六七日間見貴德兩足凍傷之兒救活至於脫落時未見也[中略]

傳曰所啓之意知道果以貴德之事見之貴德先刑推似可矣貴德以兒無用使敦篤棄之以此觀之足之不斷時率去明矣則先刑推可也以漢德公事見之八十歲以後十歲以前無足取實之說可矣然以他人示兒曰此人割汝足乎則皆曰非也示於漢德則曰斷吾足者此人也兒於貴德漢德有何愛憎而然哉只能見其面而記其人但以[中略]

孫今者叱今果無緊問之事二堂上叅鞫可也近年京城近地殘害之事甚多此豈小變速推可也

《中宗實錄 卷73, 56面》

중종 28년 2월 29일(임인)

○류부(柳溥)를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홍언필(洪彦弼)을 사헌부 대사헌에, 채소권(蔡紹權)을 동지중추부사에, 채무택(蔡無擇)을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였다.

○壬寅○以柳溥爲戶曹判書洪彦弼爲司憲府大司憲蔡紹權爲同知中樞府事蔡無擇爲弘文館副校理

《中宗實錄 卷73, 62面》

중종 28년 3월 1일(갑진)

간원이 아뢰기를,

“호조는 보통 때의 예와 달라서 구황(救荒)하는 일이 급하므로, 판서가 전적으로

관장하여 조치하기를 마치 불에 타는 사람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듯이 해야 지 조금도 늦출 수 없어 그 직임이 평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비록 그 직임에 오랫동안 있어 그 기관의 일을 자세히 알고 백배나 힘을 써서 조치하더라도 오히려 미진(未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근래에는 자주 판서를 교체하기 때문에 경비의 출납 액수조차 자세히 알 겨를이 없는데, 더군다나 구황하는 정책까지 조치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판서(判書) 류부(柳溥)는 성품이 본래 소활(疎闊)하고 또 막혀서 통달하지 못하니, 만일 일이 조금 수월한 다른 조(曹)라면 괜찮겠지만, 구황이 한창 급한 이런 때에 어찌 호조 판서에 적임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도 사람이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구황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히 아립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류부(柳溥)는 아된 대로 체직하라.”
○甲辰朔諫院啓曰戶曹非如常時之例救荒方急判書須當專掌措置如救焚拯溺不容少緩其任尤重於平時雖久任其職詳知其司之事百倍措置猶恐有未盡之事近來頻數遞代經費出入之數未暇詳知况望其措置荒政乎判書柳溥性本疎迂且泥而不通若如事歇他曹則已矣如此救荒方急之日豈稱其地乎臣等非不知乏人專以救荒爲重故敢啓傳曰柳溥依啓違之

《中宗實錄 卷74, 1面》

중종 28년 3월 2일(을사)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호조 판서(戶曹判書) 류부(柳溥)는, 어제 간관이 논계하기 때문에 이미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다만 당초 의망(擬望)할 때 주의(注擬)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을 그 망(望)에 넣었었다. 류부(柳溥) 역시 부증(浮症)으로 휴가를 받은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서에 합당한 자는 오직 류부(柳溥) 뿐이었고, 그 비망(備望)한 사람 가운데도 역시 병든 자가 있었기 때문에 류부(柳溥)를 임명한 것이다. 정2품 재상의 수가 적어 겨우 육경(六卿)을 채우고 있으니, 이조(吏曹)에서 이제 누구로 비망할지 모르겠다. 이미 류부(柳溥)가 부적합하다고 체직하였으니, 모름지기 류부(柳溥)보다 뛰어난 자를 차임해야 한다.

금년은 근고(近古)에 없던 흉년인데 진휼사(賑恤使)를 따로 내보내지 않았으니, 진휼하는 책임을 호조에 겸임시키면 호조의 임무가 이조나 병조보다 더 무거워진다. 병조 판서 윤은보(尹殷輔)는 자세하고 분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호조 판서에 제수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류부(柳溥)와 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을 서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안윤덕은 여러 차례 다른 조(曹)의 판서를 지냈으니 진

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나, 다만 지금은 이미 늙어서 합당할지 모르겠다. 또 2품 이상은 아래에서는 마음대로 작성해 쓸 수 없고, 작성하는 권한은 위에 있다. 위에서 종2품 재상을 정2품 재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종2품 재상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종2품으로 오래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정2품으로 올리면 여론이 있을까 두렵다. 경들은 이에 대하여 의논하라.” 하니, 이사균(李思鈞) 등이 아뢰기를,

“호조의 직임이 비록 지금은 평상시보다 무거운 듯하나 단지 나라의 저축을 이리 저리 옮겨 쓰는 것이요 따로 조처하는 일은 없는데, 이조나 병조보다 무겁다는 뜻을 신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안운덕은 과연 합당하지만 이미 늙었으며, 또 연전에 병을 얻은 후부터는 건망증이 심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에게 호조의 직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홍숙(洪淑)은 전에 아버지가 병들고 자신도 병이 있었기 때문에 체차하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병과 자신의 병이 모두 다 나아 회복되었고, 또 일찍이 호조 판서를 지내어 경비의 출입 액수를 자세히 압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뜻을 두었기 때문에 홍숙을 수망(首望)으로, 김안로(金安老)를 부망(副望)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조 판서도 가벼이 체직할 수 없지만 달리 주의(注擬)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삼망(三望)을 갖추지 못하고 이 두 사람만을 의망(擬望)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께서 윤은보에게 뜻을 두어 하교하시기 때문에 비망을 입계(入啓)하지 못하고 감히 이런 뜻을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호조 판서의 의망은 이미 기록한 망(望)으로 입계해야 한다.”

○이사균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류부(柳溥)를 호조 판서에 제수했는데, 의금부와 호조는 모두 사무가 바쁜 곳이기 때문에 겸하여 처리할 수가 없다. 전에도 한 사람에게 이 직책을 함께 제수하면 으레 스스로 사면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류부를 가리킴도 사면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체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성종조(成宗朝) 때 이계남(李季男)이 호조 판서 겸지의금부사가 되었었는데, 이 일은 내가 직접 본 것인데도 그날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의금부 당상은 숫자가 많아 한 사람쯤 출사(出仕)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제 김안로를 호조 판서에 제수했는데 그도 지의금부사를 겸대한 자이니, 류부(柳溥)를 체직시키지 않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하니, 이사균 등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한성부 관원들도 의금부사를 겸하였는데, 오직 형조와 병조의 관원만

이 검직할 수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스스로 두 곳의 사무가 복잡하다 하여 사면하기 때문에 체차한 것이 마침내 예사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상교가 지당합니다. 호조 판서는 홍숙과 김안로를 비망(備望 : 삼망(三望)을 갖추)하여 김안로는 이미 호조 판서가 되었고, 예조 판서는 비망할 만한 사람이 없어 홍숙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단망(單望)으로 입계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므로, 전교하였다.

“이조에서 예조 판서 비망을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이제 정2품 재상은 홍숙과 류부(柳溥)만 남았으니, 이 두 사람으로 비망하라.”

○김안로를 호조 판서에, 홍숙을 예조 판서에 제수하였다.

○乙巳傳于政廳曰戶曹判書柳溥昨日諫官論啓故已命適之但當初擬望時無可注擬之人故以有病者猶備其望柳浮亦以浮證呈病受由予非不知也然當爲判書者惟柳溥爲可當而備望之中亦有有病者故以溥爲之耳正二品宰相數少僅充六卿不知吏曹今以何人備望耶旣以柳溥爲不合而遞之則須以優於柳溥者差之也今年凶荒近古所無而不出賑恤使賑恤之責兼付於戶曹戶曹之任尤重於吏兵曹兵曹判書尹殷輔詳明人也欲以此人爲戶曹判書何如且柳溥與工曹判書安潤德相換亦何如潤德累經也曹判書固非偶然之人但今已老不知其合否也且二品以上自下不得擅便作成而用也作成之權在上自上非不知以從二品宰相爲正二品而用之也從二品宰相雖多可用之人但以從二品未久之人遽爲正二品則恐有物議也卿等其議之思鈞等啓曰戶曹之任今雖似重於常時然但以國儲推移用之別無措置之事其重於吏兵曹之意臣等未之知也安潤德果爲可當然其已老又於年前得病之後有善忘善忘之人不可爲度支之任但洪淑前者有親病又有身病故適差今則親病與身病皆已差復而曾經此任詳知經費出入之數下人之意俱屬于此人故以洪淑爲首望金安老爲副望然禮曹判書亦不可輕適但無他注擬人故未得備三望而只以此二人擬之耳然今者自上注意於尹殷輔而下教故備望不敢入啓而敢以此意取稟傳曰戶曹判書當以已書之望入啓也○傳于李思鈞等曰前者知義禁府事柳溥爲戶曹判書義禁府戶曹皆務劇之地不可兼治前亦有一人并授此職則例必自爲辭免故予意其指柳溥辭免而先令遞差耳今更思之則在成宗朝李季男爲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而行此乃予目覩之事而當其日未及思之耳義禁府堂上數多一員雖或不仕之時他員可以爲之今者金安老爲戶曹判書此亦兼知義禁府事者也雖不適之無奈可乎思鈞等啓曰古者漢城府官員亦兼義禁府事而惟刑曹兵曹官員不得兼之近來自以兩地務劇辭免故適差而遂成例事今此自上教至當戶曹判書則以洪淑金安老爲備望矣安老旣爲戶曹判書禮曹判書則無可備望之人但洪淑一人在然自下不可單望入啓故取稟傳曰吏曹以禮曹判書備望而爲難之意予亦已知矣今者正二品宰相只餘洪淑柳溥今以此二人備望○以金安老爲戶曹判書洪淑爲禮曹判書

《中宗實錄 卷74, 1面》

중종 28년 6월 22일(계사)

류부(柳溥)를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류윤덕(柳潤德)을 병조 참지에, 정백봉(鄭百朋)을 승정원 우승지에 제수하였다.

○癸巳以柳溥爲工曹判書柳潤德爲兵曹參知鄭百朋爲承政院右承旨 《中宗實錄 卷75, 17面》

중종 28년 11월 8일(병오)

○이조 판서 김안로, 좌참찬 홍언필(洪彦弼), 호조 판서 이사균(李思鈞), 우참찬 손주(孫澍), 공조 판서(工曹判書) 류부(柳溥), 예조 판서 류관(柳灌), 병조 판서 윤임(尹任), 형조 판서 윤인경(尹仁鏡)이 의논드리기를,

“김형과 이기 등의 사건에 대하여 승복받지 않고 단죄한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 매우 흉악한 말이긴 하나 뚜렷한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죄로 결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형 등을 울에 의거하여 본다면 그 죄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조정 의논이 그렇다면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위관과 금부당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평상시에는 점목(粘目 : 증거 서류나 의견서의 조목)에 의거하여 사형을 감한 때가 있었으나 이렇게 궤정에서 추국하여 조율할 때에는 사형을 감한 전례가 없는데, 별도로 승전(承傳)을 받들게 해야 하는가?”

하니, 모두 아뢰었다.

“별도로 승전을 받드는 것이 지당합니다.”

○丙午○吏曹判書金安老左參贊洪彦弼戶曹判書李思鈞右參贊孫澍工曹判書柳溥禮曹判書柳灌兵曹判書尹任刑曹判書尹仁鏡議曰金洞李芑等事不取服而斷之甚爲未安且其言議雖甚兇惡其施爲之迹未著斷以一罪恐未安傳曰金洞等以照律觀之罪固大矣然廷議如此依啓可也傳于委官禁府堂上等曰當時粘目有減死之時如此闕庭推鞠照律無減死之例別爲奉承傳耶僉啓曰別奉承傳至當

《中宗實錄 卷76, 33面》

중종 28년 12월 20일(무자)

○이조 판서 김안로, 호조 판서 이사균, 예조 판서 류관, 병조 판서 윤임, 공조판서(工曹判書)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대간을 전부 체직하는 것은 매우 중난합니다. 이제 상교를 들으니 바로 대간의 사면(辭免)에 대한 내용인데, 직에 나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체직하는

일은 중단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간을 전부 체직하면 소요스러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삼공과 육경에게 의논하게 한 것인데, 아뢰는 것이 이와 같다. 지금 날이 저물었으나 대간을 불러, 참여해서 들은 장관과 외부에 있었던 하관(下官)과는 경중이 있으므로 체직할 수 없다는 뜻을 이르라.”

○戊子○吏曹判書金安老戶曹判書李思鈞禮曹判書柳灌兵曹判書尹任工曹判書柳溥啓曰全遶臺諫至爲重難今聞 上教乃臺諫辭免之辭就職似難然遶之重難傳曰全遶臺諫有騷擾之弊故與三公六卿議之所啓如此今雖日暮招臺諫言叅聽長官與在外下官有輕重不可遶之意
《中宗實錄 卷76, 49面》

중종 29년 2월 12일(기묘)

○심언경(沈彦慶)을 형조 판서에, 이조 참판으로 특명으로 제수됨. 류부(柳溥)를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제수하였다.

○己卯○以沈彦慶爲刑曹判書以吏曹叅判特授柳溥爲工曹判書
《中宗實錄 卷76, 63面》

중종 29년 4월 2일(무술)

○함경도 감사 김인손(金麟孫)을 형조 판서에, 오준(吳準)을 한성부 좌윤에, 모두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류부(柳溥)를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한윤창(韓胤昌)을 승정원 좌승지에, 윤풍형(尹豐亨)을 동부승지에, 이임(李任)을 홍문관 직제학에, 채세영(蔡世英)을 사간원 사간에, 조윤손(曹閔孫)을 함경도 관찰사에, 채세걸(蔡世傑)을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

○戊戌○以咸鏡道監司金麟孫爲刑曹判書吳準爲漢城府左尹皆特授柳溥爲工曹判書韓胤昌爲承政院左承旨尹豐亨爲同副承旨李任爲弘文館直提學蔡世英爲司諫院司諫曹閔孫爲咸鏡道觀察使蔡世傑爲黃海道觀察使
《中宗實錄 卷77, 14面》

중종 29년 4월 24일(경신)

○손주(孫澍)를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류부(柳溥)를 우참찬(右參贊)에 제수하였다.

○庚申○以孫澍爲議政府左叅贊柳溥爲右叅贊
《中宗實錄 卷77, 24面》

중종 29년 5월 21일(정해)

정광필(鄭光弼) · 장순손(張順孫) · 한효원(韓效元) · 김근사(金謹思) · 윤은보(尹殷輔) · 손주(孫澍) · 류부(柳溥) · 류관(柳灌) · 심언경(沈彦慶) · 윤인경(尹仁鏡) · 김

인손(金麟孫)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분부하기를 ‘사족(士族)의 부녀들은 그 자신이 범한 일이 아니면 줄연히 잡아다 추문하기가 중난하다.’ 하셨으므로 온 조정이 반갑고 다행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상(綱常)에 관한 큰 일이어서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부득이 우윤(禹綸)의 아내 등을 마땅히 추문해야 합니다. 돌석(玃石)과 오을미(吾乙未)의 황당한 정위(情僞)도, 위관(委官)들이 우선 끝까지 추문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계품하여 추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중한 죄를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 채 처벌할 수는 없으니 비록 사족의 부녀라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추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위관들의 말이 ‘돌석은 남효문의 어미의 말에 의거 심언광(沈彦光)에게 가서 물어볼 적에 말을 바꾸고 이름도 고쳤으니 매우 황당했다.’고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금부에 가서 평문(平問 : 형장하지 않고 심문하는 것)하도록 하되 자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즉시 형추하라.”

○丁亥鄭光弼張順孫韓效元金謹思尹殷輔孫澍柳溥柳灌沈彦慶尹仁鏡金麟孫等啓曰 上教以爲士族婦女非自犯事而卒然拿推爲重難朝廷不勝喜幸然此綱常大事不得其情則不得已禹綸妻等當推石乙石吾乙未荒當情僞委官等爲先窮推事已啓稟推之而如不得情則重罪不可不得其實而處決雖士族婦女亦當推也傳曰委官等曰石乙石以孝文母言往問彦光時變辭變名至爲荒唐以此意令往禁府平問不服則宜卽刑推 《中宗實錄 卷77, 34面》

중종 29년 5월 26일(임진)

○영중추 정광필(鄭光弼), 영의정 장순손(張順孫), 좌의정 한효원(韓效元), 우의정 김근사(金謹思), 이조 판서 김안로(金安老), 호조 판서 이사균(李思鈞), 좌참찬 손주(孫澍), 우참찬(右參贊) 류부(柳溥), 예조 판서 류관(柳灌), 공조 판서 윤인경(尹仁鏡), 형조 판서 김인손(金麟孫)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남효문의 아내는 자신의 간음에 관한 일이니 비록 오래 갇혀 있더라도 괜찮지만 남효인과 우윤의 아내는 사간(事干)으로서 갇혀 있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보방(保放 : 보석)한다면 옥사(獄事)가 한편으로만 돌아가게 될 듯하여 옥사가 지체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한편의 말에만 의거하여 심문했다가 만일 흔비가 나타나 하는 말이 틀리게 된다면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흔비를 독촉하여 나타나게 하는 일을 팔도(八道)에 행문이첩(行文移牒)하되, 만일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무거운 죄를 주도록 하고, 또 그의 상전이나 족친(族親) 중에 의심스러운 자는 비록 조사(朝士)

라 하더라도 자세하고 빠짐없이 말해 주어 다방면으로 수색하여 잡게 하며, 또한 금부로 하여금 포고 절목(捕告節目)을 엄중하고 빠짐없이 만들게 하여 반드시 흔비를 찾아내어 추국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수색해도 마침내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때에 가서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경들의 의견이 지당하다.”

○壬辰○領中樞鄭光弼領議政張順孫左議政韓效元右議政金謹思吏曹判書金安老戶曹判書李思鈞左叅贊孫澍右叅贊柳溥禮曹判書柳灌工曹判書尹仁鏡刑曹判書金麟孫議啓曰南孝文妻自己奸事雖久繫猶可也南孝仁禹綸妻以事干見囚似未安然今若保放則獄事似歸於一邊不可計滯獄也且據一邊之言而訊之若欣非出而其言異則亦未便也臣等意以爲欣非督現事行移八道若有隱匿而不告者則加以重罪其上典族親可疑處雖朝士詳悉言之使多方搜捕又令禁府捕告節目嚴悉爲之必得欣非而推之如此多方搜捕而竟不得則當臨時更議傳曰僉意至當

《中宗實錄 卷77, 35面》

중종 29년 6월 4일(기해)

○정광필(鄭光弼)·김근사(金謹思)·윤은보(尹殷輔)·이사균(李思鈞)·손주(孫澍)·류부(柳溥)·윤인경(尹仁鏡)·심언경(沈彦慶)·김인손(金麟孫) 등이 의논드리기를, “사족(士族)의 부녀자에게 형신(刑訊)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돌석의 공초를 보건대, 우윤(禹綸)의 처가 그 어미의 말로 거짓 꾸며내어 모해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낸 일은 실상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므로 사간(事干)의 예(例)와는 같지 않으니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중략]

하니, 영상의 의견에 낙점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우윤의 처를 형문하는 일에 대해 어제 그렇게 하라고 운허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그 어미의 말이라고 가탁하여 말한 것을 가지고 형문한다는 것은 곤란할 듯 싶어서 의논한 것이다. 우윤의 처가 그 어미의 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물어 봄으로써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꾸몄으니, 형문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형문해서 자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여러 차례 형문하지 말라. 돌석의 말을 살펴 볼 때 근거없는 말을 꾸며낸 사실이 분명하니 증언에 의거해서 죄를 정하라.”

○己亥○鄭光弼金謹思尹殷輔李思鈞孫澍柳溥尹仁鏡沈彦慶金麟孫等議士族婦女至於刑訊實所未安但以石乙石所供觀之禹綸妻假作其母之言謀害情狀已露其構虛之事乃實自犯非如事干之例勢不得不窮推矣[中略]

領相議仍傳曰禹綸妻刑問事昨日依允而今思之以其母言言之而刑問似難故議之綸妻以其母言問于他處謀實其言宜刑問矣然刑問一次若不服則不可數多加刑以石乙石之言觀之其構虛之事分明據證定罪可也

《中宗實錄 卷77, 36面》

중종 29년 7월 3일(무진)

○류부(柳溥)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김안로를 승정대부(崇政大夫)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에, 이사균(李思鈞)을 검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에, 권예(權輓)를 사헌부 대사헌에, 황효공(黃孝恭)과 김광진(金光軫)을 장령(掌令)에 제수하였다.

○戊辰○以柳溥爲議政府右參贊金安老爲崇政大夫兼判義禁府事李思鈞爲兼知義禁府事權輓爲司憲府大司憲黃孝恭金光軫爲掌令

《中宗實錄 卷77, 44面》

중종 29년 9월 17일(경진)

관상감 제조 김안로(金安老)와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보루각(報漏閣)이 오래되어 비가 새는 곳이 있고 누기(漏器)도 많이 낡아서 유환(鑰環)에서 떨어지는 물도 지체되어 즉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조한다면 한 두 군데를 고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뜯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누기는 보통의 기구가 아니므로 아무리 솜씨 좋은 장인이라 하더라도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대로 둔 채 고치지 않는다면 시각이 점점 어긋나게 되어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나 낡은 진품을 잃으면 표준 삼을 누각이 없게 됩니다. 창덕궁엔 누기가 없고 경복궁에 누기가 있으므로 시각을 전달하여 북을 치게 되는데, 전달하는 중간에서 혹 잘못 되는 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성종조 때 남쪽 담 밑에 따로 누기를 설치하려다가 무슨 사고로 인하여 중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엔 창덕궁에 따로 누기를 설치하되 일호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각이 되게 한 뒤에 이 궁의 누각을 고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 이 일은 보통의 토목 공사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였다가 내년 봄에 개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庚辰觀象監提調金安老柳溥啓曰報漏閣年久有兩漏處漏器多有差失鑰環之落亦有留滯未能卽下若改造則不必一處改更必毀全體而後可也然則此器非非常之器雖巧匠莫知其端倪不能改成也若仍舊而不改則時刻漸差不能適中勢不得已改造而失真則無所質正昌德宮無漏器景福宮有漏器傳傳而擊鼓則其間恐有差失之弊臣聞 成宗朝南牆下欲別設漏器適有事故還止臣意亦以爲昌德宮各別排設無一毫差違時刻正中然後此闕漏閣改正則可也且

此事非凡土木之類自今預備明春改造何如傳曰依啓

《中宗實錄 卷78, 4面》

중종 29년 11월 6일(무진)

○우의정 김근사(金謹思)와 우참찬(右參贊) 류부(柳溥)가 의논드리기를,

“대간은 이미 논박받았으니 재직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표(拜表)의 대례(大禮)가 임박해 있으니 대간이 없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득이 빨리 그들을 체직시키고 새로운 관원을 차출하여 대례를 거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세찬의 사특한 정상을 물론(物論)이 매우 해괴하게 여깁니다. 시추로 조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심문하여 자복을 받아 그 실정을 죄다 밝혀낸 다음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간들을 모두 체직시키라. 배표할 일이 시급하니 속히 대간을 차출하라. 4품 이상의 관원은 즉시 숙배(肅拜)³⁰⁷한 뒤에 참석하게 하라. 나세찬의 추안(推案)을 다시 부표(付標)하여 들이도록 하라.” 형추(刑推)를 허락했다.

사신은 논한다.

무택(無擇)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근사(謹思)가 뒤에서 응수하여 모든 의논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가 시작하고 종결짓곤 하였다. 심언경(沈彦慶)과 박홍린(朴洪鱗)이 고의로 지체하면서 말하지 않은 데는 필시 깊은 의도가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요, 세찬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서가 아니었다. 대간들이 사피할 때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제각기 말하되 서로 행동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김미(金璽)가 와서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출입하거나 진퇴할 적에 이 사람이 없고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당류에게 중방을 받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김미는 그의 벗인 홍우세(洪佑世)와 친해서 우세가 반드시 그를 안방에 맞아들여 첩을 시켜 술을 따르게 하였다. 김미는 우세의 첩을 좋아하여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우세를 죽이고 그 여자를 차지했으니, 그의 악행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戊辰○右議政金謹思右參贊柳溥議曰臺諫既已被駁勢不可在職而今臨大禮亦不可無臺諫不得已亟遶差出新員行禮羅世纘邪惡情狀物論駭愕除時推照律窮訊取服盡得其情酌定其罪傳于政院曰臺諫可盡遶拜表事急速出臺諫四品以上官卽令肅拜後隨班可也羅世纘推案改付標以入刑推依允史臣曰無擇倡之謹思和之凡所議論必相終始彦慶洪鱗之故遲不言者必有深意寓於其間非惜世纘之死也臺諫辭避或先或後各自有言不相統攝必以金璽之未來

307) 숙배(肅拜) :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또는 벼슬에 제수(除授)된 관원이 전정(殿庭)에서 임금에게 사배(四拜)로 인사를 올리는 것.

啓之其出入進退不可無此人而有重於其類亦可見矣臺與其友洪佑世相從佑世必迎入寢房以其妾行酒臺悅其妾構虛無之說殺佑世納之其惡不忍言也 《中宗實錄 卷78, 25面》

중종 29년 11월 7일(기사)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나세찬(羅世纘)³⁰⁸을 처음에는 형신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시종(侍從)의 직책에 있던 사람을 책문 때문에 형신하다가 만일 그가 쉽게 자복하지 않는다면 혹 운명할까 하여 조율하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가 사죄(死罪)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 만일 그가 사죄에 해당된다면 금부(禁府)는 마땅히 다시 취품했어야 했는데도 취품하지 않은 것은 금부의 잘못이다. 대간이 비록 논박받아 체직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그 사건을 아릴 겨를이 없어서였다.” 나세찬의 사건을 조율할 때가 바로 행행하던 날이라서 전교를 이와 같이 내렸다.[중략]

○류부(柳溥)와 류탁(柳濯) 금부 당상들이 아뢰기를,

“나세찬의 조율은 일죄(一罪)로 취품해야 했는데 미처 취품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시종의 직에 있던 사대부를 형신한다는 것은 옳지 못해서 시추(時推)로 조율하라고 명했었다. 나는 그의 죄가 사죄(死罪)에 해당되는 줄을 알지 못했고 금부도 몰랐기 때문이었으니 대죄하지 말라.”

○己巳 御朝講 上曰羅世纘初意以爲可刑訊更思之侍從之人以策辭刑訊若不易服則或至殞命故命照律初不知至於死罪也若是死罪則禁府宜更取稟不爲取稟禁府之誤也臺諫雖被駁而違實無暇啓也其照律之日乃 行幸之日故傳教如此[中略]

○柳溥柳濯禁府堂上也啓曰羅世纘照律當以一罪取稟而不及取稟待罪答曰侍從士大夫不宜刑訊故命以時推照律予未知爲死罪禁府亦未知故耳勿待罪 《中宗實錄 卷78, 25面》

중종 29년 11월 9일(신미)

○좌의정 한효원(韓效元), 우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찬성 김안로(金安老), 우참찬

308) 나세찬(羅世纘) : 1498~1551. 조선 명종(明宗) 때의 문신. 자는 비승(丕承). 호는 송재(松齋). 시호는 희민(僖敏). 본관은 나주(羅州). 중종(中宗) 23년(1528) 문과에 급제. 동왕 31년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봉교(奉敎)가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의 진횡(專橫)이 심하여 앞서 중시의 대책문(對策文)에서 김안로를 통박한 것이 그의 귀에 들어가 고성(固城)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듬해에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봉교로 복직되었고, 그 이듬해에 발영시(拔英試)에 장원하여 문명을 떨쳤으며,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명종이 즉위하자 충청도 관찰사·대사성·대사간 등을 지냈다. 저서에 송재유고(松齋遺稿)가 있다.

(右參贊) 류부(柳溥), 예조 판서 류관(柳灌), 참판 강징(姜澂), 이조 참판 심언광(沈彦光), 예조 참판 류윤덕(柳潤德), 대사성 윤안인(尹安仁) 등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고 유생의 권학 절목(勸學節目)을 입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생이 학궁(學宮 : 성균관 별칭)에 머물고 있다 하여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매일 청강(聽講)토록 하며 사장(師長)의 유고 때를 제외하고는 청강하는 날이 아니면 원점(圓點)³⁰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유생이 읽은 책은 날마다 서도(書徒)하여 매달 말, 예조(禮曹)에 올려 장부에 기록하고, 불시에 돌아가면서 추생 적간(抽生摘奸)한다. 친림(親臨)하거나 명관(命官)에게 주재시켜 강(講)하게 하거나 제술(製述)하게 하도록 한다. 세초(歲抄)³¹⁰하거나 반년마다 통산하여 그 분수(分數 : 점수)의 다소에서 우등한 사람은 급분(給分)³¹¹하기도 하고 혹은 직부(直赴)하게 하기도 한다. 임시(臨時)하여 특별히 상을 내리며 불통한 사람에게 학벌(學罰)을 내린다.

1. 실학(實學)에 정통하여 가르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이를 사장(師長)으로 삼아 유생들을 교훈(教訓)하는 것을 전임(專任)시키고 탄 관직은 맡기지 않으며, 제례(祭禮)의 집사(執事)나 그 밖의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유생들의 근면과 태만, 통(通)과 불통(不通)³¹²을 상고하여 이를 토대로 사장의 진최(殿最)에 반영하고 그 가운데 특히 근면한 자와 태만한 자를 별도로 징계하거나 장려한다.

1. 식년시(式年試)와 팔도의 유생들을 널리 뽑는 별시(別試)³¹³ 외에 불시에 실시하는 시취(試取)가 있으면 모름지기 학궁에서 청강한 날이 많은 사람을 녹명(錄名)³¹⁴하게 한다. 시취하는 날을 많게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는 계품하여 참작한다. 봄·가을에 보이는 유생의 과시(課試)도 학궁에 있는 유생을 시취한다.

309) 원점(圓點) : 성균관(成均館) 및 사학(四學) 즉,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의 유생들의 출석과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갈 적에 도기(到記)에 찍던 점.

310)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의 관원들이 관리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왕에게 상주한 다음 분부를 받아 강등 또는 승진 서용하는 일.

311) 급분(給分) :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양호한 사람에게 내리는 점수.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 점수에 이르면 초시 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다.

312) 통(通)과 불통(不通) :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冊)을 외었거나 외지 못한 것으로 등급을 나타내는 말.

313) 별시(別試)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나 또는 천간(天干)에 병(丙)자가 든 해에 보이는 문과나 무과 시험.

314) 녹명(錄名) :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는 것. 이름이 기록된 자에 한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

1. 정시(庭試) 및 불시에 보이는 시취에서는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로 삼기도 하고, 또는 급제(及第)로 삼기도 한다.

1. 거관 유생(居館儒生) 중에 재능과 학식이 있는 자는 당연히 과거로 선발하며, 생원이나 진사 중에 학궁에 나아가 부지런히 닦았으나 누차 응시해도 합격하지 못한, 나이 40에 이른 자는 성균관에서 해마다 4~5인을 추천하여 남행(南行) 가운데 상당하는 직책에 서용한다.

1. 명색이 유생이라 하면서 학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물리쳐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1. 적간(摘奸)할 적에 비록 점검을 받았다 해도 평소 학궁에 나아가 청강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辛未○左議政韓效元右議政金謹思左贊成金安老右叅贊柳溥禮曹判書柳灌叅判姜澂吏曹叅判沈彦光禮曹叅判柳潤德大司成尹安仁會議于賓廳以儒生勸學節目入啓一儒生雖在學宮若不藏修亦無實效須令日日聽講師長有故日外苟非聽講之日則勿許爲圓點一儒生所讀書逐日爲書徒每月季進呈于禮曹置簿不時輪回抽柱摘奸或親臨或命官或講或製或歲抄或半年通考其分數多少優等者或給分或直赴臨時特施賞格不通者施學罰一擇實學精通堪爲教誨者爲師長專委教訓勿差他官如祭執事及他務並勿差定考其儒生勤慢通不通憑考殿最其中勤慢異等別加懲獎一式年及八道儒生大舉別試外有不時試取則須以就學聽講日數多者方許錄名試取日數多寡啓稟酌定春秋儒生課試亦以在學儒生試取一庭試及不時試取或爲生員進士或爲及第一居館儒生有才學者自當以科舉取之生員進士中勤於就學屢舉不中年至四十者令成均館每一年薦報四五人南行相當職叙用一名爲儒生而不就學者一切擯斥不許赴試一摘奸時雖逢點若無平日赴學聽講之勤則勿許試 《中宗實錄 卷78, 27面》

중종 29년 11월 27일(기축)

○상께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의정부(議政府)·양사(兩司 : 사헌부 사간원)·홍문관(弘文館)을 인견하시고 나세찬의 사건을 의논하는데, 좌의정 김근사(金謹思), 우의정 김안로(金安老), 좌참찬 손주(孫澍), 우참찬(右參贊) 류부(柳溥), 대사간 허항(許沆), 집의 류세린(柳世麟), 사간 황효공(黃孝恭), 장령 안현(安珪)과 황기(黃琦), 헌납(獻納) 신석간(申石澗), 지평(持平) 권응창(權應昌), 정언(正言) 이문건(李文楨)과 박충원(朴忠元), 부제학(副提學) 채무택(蔡無擇), 전한(典翰) 채세영(蔡世英), 응교(應教) 김미(金璽), 부응교 김수성(金遂性), 수찬(修撰) 채낙(蔡洛), 박사(博士) 박종린(朴從麟), 저작(著作) 임열(任說),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겸(宋謙), 주서(注書) 이팽수(李彭壽), 검열(檢閱) 원계검(元繼儉)과 박봉린(朴鵬麟)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세찬이 간교하게 논변한 뜻에 대하여 끝내 그 진의를 알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세 번이나 형신(刑訊)을 받았다. 사대부가 운명(殞命)하게 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교사(巧詐)한 실정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받은 공초(供招)로 곧장 조율하게 되면 다시금 형신할 까를 문의한 일이 헛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물론이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중략]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나세찬의 사건은 그가 지은 대책을 보니 유래된 곳이 깊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試場)에서 처음 이 대책을 읽을 적에 그 정상을 죄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추국(推鞠)할 때 세 번이나 형신을 받았지만 죽을 각오로 버티니 자복을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득이 억지로 추국한다면 운명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정상이 비록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사대부가 형장 아래서 죽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조정의 시비(是非)와 호오(好惡)가 바르게 정해지고 세찬도 운명하지 않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간들이 아뢰는 일 또한 지극히 당연하니 자복(自服)을 받은 뒤에 그 죄를 결정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도 그 대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간들과 같으나 다만 그가 운명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저 세찬이 목숨을 잃는 것 짚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성상의 정치에 누가 될까 걱정해서입니다.

그러나 물정(物情)이 어찌 범연히 헤아려서 계달(啓達)하였겠습니까. 그 대책은 필시 유래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유래된 뿌리를 끝까지 추고하자는 것이며, 대간과 시종(侍從)들 또한 그를 죽음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을 받은 다음 죄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조정의 기강이 해이(解弛)해지고 상께서 일을 굳게 결정하지 못하시면 비록 실제로 나세찬이 없다 하더라도 나세찬과 같은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께서 시비(是非)를 분명히 결정하여 조정이 당당해진다면 수백 명의 세찬과 같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틈을 노릴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시비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와 같은 성조(聖朝)에 사대부가 형장으로 운명하게 될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의 뜻도 김안로와 같습니다. 사건이 유래된 곳을 추신(推訊)했지만 전혀 초사(招辭)를 알아내지 못했고 두 번에 걸쳐 형장을 더하여 신문하였으나 모든 것을 죽은 스승에게 미루어 교묘히 이리저리 둘러대고 있으므로 형장을 가할 것을 계

청하였습니다. 세 번이나 형장을 받았지만 그것이 유래된 곳에 관해서는 전날과 같이 말할 뿐 다른 것은 자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을 모함했다는 것으로 자복을 받아 죽이려고 한다면 이같은 추운 날씨에 운명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간과 시종들의 아뢰는 바 역시 지당합니다. 대간이 들은 것도 없으면서 아뢰는 리가 있겠습니까. 대간이 들은 것을 가지고 신문한다면 나세찬인들 어떻게 그 사실을 모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복을 받고 형장을 더하다가 운명하게 된다면 성상의 정치에 누가 될 듯합니다.”[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세찬은 스스로 죽을 각오로 버티어 사실을 실토할 뜻이 없습니다. 만일 단서가 드러났다면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을 것이며 비록 단서가 없더라도 특별히 친히 문초하시면 군부의 면전에서 어찌 형장을 맞고서야 승복하겠습니까. 저절로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에서 문초하다가 불복하면 형장을 더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 번에 걸쳐 형장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형장을 가하자고 청했을 때 나는, 세찬이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형장을 가한다면 반드시 운명하게 될 것이며, 운명하게 된다면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궐 뜰에서 친히 문초하여 그 사실을 알아낸다면 좋겠다.”

하였다.[중략]

○좌의정 김근사(金謹思), 우의정 김안로(金安老), 좌참찬 손주(孫澍), 우참찬(右參贊) 류부(柳溥),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겸(宋璫), 홍문관 부응교 김수성(金遂性 : 문사낭청(問事郎廳)), 주서(注書) 이팽수(李彭壽), 검열(檢閱) 박봉린(朴鵬鱗)이 빈청(賓廳)에서 명을 받들고 나세찬을 불러들여 힐문할 때, 좌상과 우상이 아뢰기를,

“전지(傳旨)의 조목에 따라 문책해야 합니까, 그가 지은 대책의 조목에 따라 추문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추신(推訊)할 일을 대간과 시종들이 모두 아뢰었다. 산지(散地)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자는 누구를 가리킨 것이며 불공(不公)하고 부정(不正)한 손이란 어떤 일을 지적해서 한 말인가 등을 그가 지은 책사의 조문에 따라 추문하라.”

○己丑○上御思政殿引見議政府兩司弘文館議世繼事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左參贊孫澍右參贊柳溥大司諫許沆執義柳世麟司諫黃孝恭掌令安珙黃琦獻納申石澗持平權應昌正言李文楨朴忠元副提學蔡無擇典翰蔡世英應教金璽副應教金遂性修撰蔡洛博士朴從鱗著作任說同副承旨宋璫注書李彭壽檢閱元繼儉朴鵬鱗入侍 上曰羅世繼邪論之意竟未得

情故三次受刑士大夫至於殞命未安也巧詐之情已見而不服以已招之辭徑照則更問刑訊之事爲虛至今有物論何以爲之[中略]

安老啓曰羅世纘事觀其策辭所自處遠矣其策辭非一朝一夕之故試場中初讀此策悉知情狀至於推鞠三次受刑自分必死專無取服之計不得已強鞠之則殞命丁寧臣意以爲情狀雖露士大夫殞於杖下不當今朝廷好惡是非大定世纘亦不至於殞命則兩全矣臺諫所啓亦至當取服後定罪則可快臣等之意大槩與臺諫同但恐其殞命也世纘殞命何關但恐累於 聖治耳然物情豈偶然計而啓達其策辭必有所自故欲窮推其根抵之所自臺諫侍從亦非欲固致之於師也欲取服然後定罪也若朝廷解弛 上不堅定則雖無羅世纘亦有如羅世纘者矣自 上明定是非而朝廷堂堂則雖百世纘莫能投其隙何能眩亂是非乎但恐如此聖朝至於殞命矣柳溥啓曰臣之意與金安老同推訊其所自處而專不服招刑推二次歸之於亡師巧飾百端加刑啓請至於三次受刑而所自處依前據他不服但願以謀陷朝廷服招而死云則如此嚴寒殞命丁寧臺諫侍從所啓亦至當臺諫豈無所聞而啓之乎以臺諫所聞的問則世纘豈盡匿其情乎然欲取服而加刑至於殞命則恐累聖治[中略]

柳溥曰世纘自分必死無意於輸情若端緒旣露則不能隱也雖無端緒各別 親問則君父之前豈待刑杖而服之乎自然有必服之事矣須招問于政院不服則加刑何如[中略]

上曰三次受刑役加刑啓請時予以爲世纘自分必死加刑則必至於殞命殞命則不得輸情矣親問于闕庭若得情則可矣[中略]

○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左叅贊孫澍右叅贊柳溥同副承旨宋璣弘文館副應教金遂性問事郎廳注書李彭壽檢閱朴鵬麟承 命於賓廳進來羅世纘詰問左右相啓曰以傳旨逐條問之乎以策辭逐條問之乎傳曰推訊事臺諫侍從皆啓之嚙怨於散地者指誰而言耶不公不正云者指何事而言耶以策辭逐條問之可也 《中宗實錄 卷78, 41面》

중종 29년 12월 16일(무신)

좌의정 김근사, 우의정 김안로, 좌찬성 윤은보, 우찬성 홍언필, 좌참찬 손주, 우참찬(右參贊) 류부가 빈청에 모여 서계(書啓)하기를,

“옛날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할 적에 선왕(先王)들이 장구한 국운을 누린 것은 바로 무일(無逸)³¹⁵의 공효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힘써 잘 다스려지기를 도모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뒤로 끝없는 국운을 누리게 되면 모두가 무일의 실효인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성상께서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처음처럼 끝까지 삼가시어 더욱 힘쓸 때입니다. 신민(臣民)에 있어서는 경사스런 기쁜 마음을 부칠 데가 없어 만세를 부르고 화축(華祝)³¹⁶

315) 무일(無逸) : 『서경(書經)』의 편명인데, 성왕(成王)이 정사를 맡게 된 처음 방일한 데로 흐를까 우려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깨우치기 위해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함. 《書經 周書 無逸》

을 올리며 수복(壽福)을 비는 것은 예부터 하여 오던 것입니다.

송(宋) 나라의 일을 상고하여 보더라도 경절(慶節)을 만나면 신하들이 으레 헌수(獻壽)를 청하였고, 우리 나라의 법전에 상고하여 보더라도 진연(進宴)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선왕의 법제에 경사를 하례하고 잔치를 베푸는 예는, 결코 과장하여 즐기면서 부화(浮華)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하의 통정(通情)과 이륜(彝倫)의 절문(節文)에 맞춰 예를 만든 것입니다. 나라에 30년간 사고가 많았으므로 오래도록 국가의 의식을 폐하였는데 정상께서 상복(喪服)을 마쳤을 때와 환후(患候)가 나오신 뒤에는 속히 국가의 의식을 신명하여 신민들의 기뻐하는 지극한 정성을 펴게 하여야 했는데도 그대로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서운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동궁(東宮)께서는 순수한 효성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새해의 연길(涓吉)은 국전(國典)에 의하여 하고 정부와 육조가 진연하고 동궁께서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헌수하며 경사를 하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일 의논하라 한 것은 세종 29년에 생원을 더 뽑은 것이 만드시 까닭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알 수가 없어서였다. 즉위한 지 30년이라는 것 때문에 더 뽑은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사람 뽑는 일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기에 하문한 것이요, 경들도 옛일을 상고하라고 청하였다. 내가 하문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어찌 즉위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하례를 받고 진연하게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근일 천변이 비상하여 상하가 더욱 수성(修省)할 때에 있어서이겠는가. 나는 부덕한 몸으로 즉위한 지 30년에 이르렀으나 치효(治效)는 타나나지 않은 채 민생은 날로 피폐하여 가고 인심은 점점 나빠져서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니, 마땅히 만족에 앞서 더욱 힘써야 하겠다.” 하였다.

○戊申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左贊成尹殷輔右贊成洪彦弼左叅贊孫澍右叅贊柳溥會賓廳書啓曰昔周公之告成王歷舉先王之享國長久乃以爲無逸之效今 聖上憂勤圖治垂茲三十年自此以往享國無窮莫非無逸之實在 聖上此正不自滿暇 終如始益加矜惕之時其在臣民欣戴慶抃之情無所於寓崇呼華祝獻嘏受禧自前古所不能已也考諸宋朝凡遇慶節羣臣例請上壽考之國典亦有進宴之儀蓋先王之制宴享慶賀之禮非所以誇張佚豫以事浮華正爲通上下之情節彝倫之文以爲禮也國家三十年間多因事故久廢國儀 聖上衰制之闕與疾瘳之後固宜亟伸國儀庶展臣民歡抃之至情而因仍不舉衆心無不缺然況於東宮純孝之誠乎歲後涓吉依國典許政府六曹進宴東宮率群臣上壽稱慶允協輿情答曰前日議之者 世宗二

316) 화축(華祝) : 수(壽)·부(富)·다남자(多男子)를 축원하는 말. 옛날 요(堯) 임금의 화(華) 땅에 가자 봉인(封人)이 이런 내용으로 송축하였다고 함. 《莊子 天地》

十九年加取生員必有所以未知其事疑若 卽位三十年加取之則取人之美不可不議故問之卿等亦請考古事予問之者非爲己之事也何以卽位之久受賀進宴乎況近有天變非常上下更加修省之時乎予以否德卽祚將至三十年治效未見民生日瘁人心漸惡風俗不美當不自滿暇益加勉勵

《中宗實錄 卷78, 56面》

중종 30년 1월 19일(경진)

조강(朝講)³¹⁷에 나아갔다.

○좌의정 김근사, 우의정 김안로, 좌찬성 윤은보, 우참찬(右參贊) 류부가 의논하여 아뢰었다.

“양원군(楊原君)의 일은, 「대전(大典：『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에 ‘내보낸 시녀를 혼취(婚娶)하면 장일백(杖一百)³¹⁸에 처한다.’라고 한 것은 아주 내보낸 여자를 말한 것이며, 날을 가려서 도로 들어가는 것은 내보낸 것이라 할 수 없으니, 그에 따른 법률은 반드시 이와 다릅니다. 양원군은 왕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시녀를 강제로 더럽혔으므로 범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니,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금부에 내려 조율(照律)한다면 으레 가두어야 하겠으나, 왕자(王子)가 종사(宗社)에 관계된 일이 아닌데 하옥되는 것도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관원들을 모두 궐정(闕庭)에 나와 안율(按律)하여 아뢰게 한 다음 위에서 헤아려 처리하소서.

홍섭의 일은, 사대부를 형신(刑訊)하는 것은 매우 미안하므로 상교(上教)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홍섭이 허항(許沆)과 말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아직 전부를 속여서 숨기고 승복하지 않으므로 여론이 더욱 격렬하니, 우선 더 형신하여 승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庚辰 御朝講○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左贊成尹殷輔右參贊柳溥議啓曰楊原君事大典內娶放出侍女杖一百云者永出之女擇日還入者則不可謂放出其律必異於此矣楊原君以宗室至親強瀆侍女情犯非輕不可以至親容貰若下禁府照律則例應囚禁王子非關係宗社而下獄亦甚非輕命齊官就闕庭按律以稟自上量處之洪暹事士大夫刑訊至爲未安上教至當但洪暹與許沆所言昭昭顯白而尙執詐罔全諱不服物議尤激姑加刑以觀其輸服何如

《中宗實錄 卷79, 17面》

317) 조강(朝講) : 아침에 여는 경연(經筵). 경연이란 임금의 신하와 함께 경사(經史)와 시정(時政)을 강독(講讀)하고 논사(論思)하는 자리로서, 아침·낮·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 여는 것이 상례(常例)이며, 이것을 각각 조강·주강(晝講)·석강(夕講)이라 하는데, 조강을 특히 경연이라 부르기도 함.

318) 장일백(杖一百) : 굵은 막대기로 볼기 1백 대를 때리는 형벌. 장(杖)은 『대명률(大明律)』 오형(五刑：태(笞)·장·도(徒)·유(流)·사(死)임)의 하나이며, 장육십부터 10대씩을 더하여 장일백까지 5등급이 있음.

중종 30년 1월 24일(을유)

○류부(柳溥)를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손주(孫澍)를 우참찬에, 류관(柳灌)을 호조 판서에, 김인손(金麟孫)을 예조 판서에, 소세양(蘇世讓)을 형조 판서에, 서지(徐祉)를 한성부 판윤에, 황헌(黃憲)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하였다.

○乙酉○以柳溥爲議政府右贊成孫澍爲右叅贊柳灌爲戶曹判書金麟孫爲禮曹判書蘇世讓爲刑曹判書徐祉爲漢城府判尹黃憲爲承政院同副承旨 《中宗實錄 卷79, 20面》

중종 30년 2월 13일(갑진)

석강에 나아갔다.

○좌의정 김근사(金謹思), 우의정 김안로(金安老), 좌찬성 윤은보(尹殷輔), 우찬성(右贊成) 류부(柳溥), 이조 판서 심언경(沈彦慶), 참의(參議) 강현(姜顯), 병조 판서 윤임(尹任), 참지(參知) 박홍린(朴洪鱗)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훈련원(訓練院) 권지(權知) 중에 침체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천전(遷轉: 다른 벼슬로 옮기는 것)하는 숫자가 법전(法典)에는 1년에 3인 만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후에 1인을 추가 하였으나 침체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또 2인을 추가하는 법을 헛수를 정하여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천전하지 못한 자가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늙어 죽도록 천전하지 못한 자도 많으니, 그 답답함은 호소한 바와 같습니다. 거관(居館)을 세군데로 하는 길을 지금 회복시킬 수는 없고, 특별히 천전하여 소통시키는 방책 또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대저 국가에서 관제(官制)를 설정하여 인재를 수용하는 법은 조리가 정연합니다. 문관과 무관을 등용함에 있어 한쪽만 중하게 할 수는 없는데 문신은 사관(四館: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을 설치했으니, 무신에 비하면 그 길이 더욱 넓습니다. 적체되기는 무신 뿐만 아니라 삼관(三館: 성균관·승문원·교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양과(兩科: 문과 무과)를 중히 여겼고, 문음(門蔭: 조상의 덕으로 벼슬함)·이재(吏才: 재간이 있는 관리)로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여 등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와 문음이 도리어 첩경(捷徑)이 되어 겨우 30개월만 되면 거관(去官)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과 교서관 같은 곳은 10년이 넘도록 천전하지 못하니, 경중의 전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온당치 못하니 개혁하여 변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인재가 모자라는 때이겠습니까? 법령(法令) 이외에 별도로 영구적인 조목을 세우기는 어려우니, 다만 이후에는 훈련원과 삼관의 권지가 4인이 되면 도목(都目) 때마다 추가로 1인을 더 천전시키되 기한을 정하

지 말며, 권지가 4인이 되지 않으면 중지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다만 도목에는 항상 천전할 자는 많은데 빈자리는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당 별천(別遷)시켜야 할 자는 다음 정사(政事: 인사 행정) 때 결원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무관의 일을 의논하면서 삼관에까지 언급한 것은 진실로 문무는 일체이며 적체되는 폐단 또한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甲辰 御夕講○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左贊成尹殷輔右贊成柳溥吏曹判書沈彦慶參議姜顯兵曹判書尹任參知朴洪麟同議啓曰訓鍊院權知沉滯者至衆其遷轉之數載在令甲者一年只三人其後又加一人而沉滯如舊故又有限年加二人之法行之十年而未遷者尚至於百數老死不遷者多其憫鬱果如所訴三歧居官之路今不可復別遷疏通之策亦所難已大抵國家設官定制收用人才之法條理有序文武之用雖不可偏重而文臣則設四館視武臣其路尤廣然其積滯非獨武臣三館亦然初旣以兩科爲重以門蔭吏才爲之補缺而參用焉今則吏蔭反爲捷徑纔滿三十朔去官者比多有之如成均校書館則過十年未遷其輕重倒施一至於此談者皆以爲不便有所更張而變通之蓋不得不爾况如此乏人之時乎令甲之外別立恒條爲難只令今後訓鍊院及三館權知滿四人以上每都目加遷一人不限年月而權知不滿四人則止似爲便當但都日常遷者多窠闕不裕則其應別遷者後政隨闕遷叙恐亦無妨因議武官之事并及三館者誠以文武一體而積滯之弊亦同故也傳曰依啓

《中宗實錄 卷79, 23面》

중종 30년 2월 18일(기유)

○류부(柳溥)를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손주(孫澍)를 좌참찬(左參贊)에, 김인손(金麟孫)을 우참찬(右參贊)에, 윤인경(尹仁鏡)을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류관(柳灌)을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조윤손(曹潤孫)을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황사우(黃士祐)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김미(金甕)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제수하였다.

○己酉○以柳溥爲議政府右贊成孫澍爲左參贊金麟孫爲右參贊尹仁鏡爲戶曹判書柳灌爲禮曹判書曹潤孫爲工曹判書黃士祐爲司憲府大司憲金甕爲弘文館校理《中宗實錄 卷79, 24面》

중종 30년 3월 22일(임오)

○류부(柳溥)·조윤손(曹潤孫)·서지(徐祉)·류관(柳灌)·소세양(蘇世讓)·윤인경(尹仁鏡)·황사우(黃士祐) 등이 의논드렸다.

“근래 인심이 부박하여 부정 한 의논이 많았으므로 일찍이 교서를 내려 정녕히 경계하여 타이르셨으니, 마땅히 심려를 깨끗이 하여 모두 큰 교화로 귀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악한 사람들이 감히 모반할 마음을 품고 조정을 혼

란시키려 획책했으니, 율에 의거 죄를 정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사람을 형벌하는 중대한 일은 신중하게 의결해야 한다는 상의 분부는 지당합니다. 차등을 두어 죄를 정함으로써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보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에서 재가하소서.”

○壬午○柳溥曹潤孫徐祉柳灌蘇世讓尹仁鏡黃士祐等議啓曰近來人心浮薄邪論多逕曾已下教丁寧戒諭所當深心滌慮同歸大化今者兇邪之人敢蓄禍心謀亂朝廷按律定罪宜矣但刑人重事慎重議決 上意至當差等定罪以示好生之德何如伏惟 上裁 《中宗實錄 卷79, 40面》

중종 30년 3월 26일(병술)

김근사를 의정부 영의정에, 김안로를 좌의정에, 윤은보를 우의정에, 류부(柳溥)를 우찬성(右贊成)에, 황사우를 병조 판서에, 정옥형을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은보는 젊어서부터 명망이 있고 또 이재(吏才)가 있었다. 그러나 성품이 본디 유순하고 또 결단력이 없었으므로 안로에게 거스림을 받지 않아 지금 정승의 지위에 올랐다. 다만 사람들의 의논이 있을 때면 시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범범히 안로를 따랐으므로 끝까지 실패를 보지 않았다.

사우는 겉으로는 비록 공손하고 근신스러우나 속은 진실로 탐욕스럽고 비루하였다. 안로와는 인척(姻戚)으로 당초의 발신(發身)이 모두 그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항상 아버같이 섬겼고 비록 문서상의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몸소 찾아가 질문한 다음 일체 그의 지시에 따르는 등 교사스런 아첨을 지나치게 했다.

○丙戌以金謹思爲議政府領議政金安老爲左議政尹殷輔爲右議政柳溥爲右贊成黃士祐爲兵曹判書丁玉亨爲全羅道觀察使史臣曰殷輔自少有名且有吏才性本柔順又乏剛果故不爲安老所技今陞相位但凡人有議不明是非泛泛隨彼故終不見敗士裕外雖恭謹內實貪鄙與安老連姻當初發身皆賴其力故常事之如父雖簿書間微細事必躬就質問一如其指極盡諂媚之態

《中宗實錄 卷79, 43面》

중종 30년 6월 27일(병진)

우찬성(右贊成)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전일 홍문록(弘文錄)의 간선(揀選)이 있을 때 나익에게 물의가 있다는 말을 미처 못들었고 다만 나익이 나이 젊고 재주 있다는 것만을 알고 권점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의를 듣고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조광원은 계상의 아들이니 물의에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나익은 물의가 있지만 광원과는 차이가 있으니, 대죄하지 말라.”

○대간이 이몽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어제 윤은보가 ‘조광원의 이름 밑에 먼저 권점이 있었다.’고 아뢰었는데 오늘 이조 판서 심언경(沈彦慶)의 함답(緘答)에 ‘조광원과 나익의 이름 밑에 처음에는 권점이 있지 않았다. 또한 어느 관원이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했고, 류부는 ‘나익에게만 권점을 쳤다.’고 했으며, 우참찬(右參贊) 조윤손(曹潤孫)은 자신이 무인(武人)이라는 것으로 인혐(引嫌)하여 권점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광원(光遠)에게 권점을 친 자는 반드시 손주(孫澍)일 것입니다. 권간의 서열(庶孽)은 시종(侍從)으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공론을 꺼리지 않고 남몰래 끌어 들이려고 이름 밑에 은밀히 권점을 쳤으니, 이미 사특한 짓을 하였습니다. 공론이 이미 일어났고 시종과 대간이 함께 논계(論啓)하는데도 자신의 소행을 숨기고 자취를 혼란시키기 위해 아직도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있으니, 더욱 무례합니다. 파직시키소서. 나익(羅瀾)의 이름 밑에 친 세개의 권점이 김근사(金謹思)·김안로(金安老)·조윤손(曹潤孫)·심언경(沈彦慶)의 소행이 아니라면, 실로 윤은보(尹殷輔)·류부(柳溥)·손주(孫澍) 등이 친 권점일 것입니다. 나익에 대해 물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부(溥)는 높은 품계에서 있는 재상으로서 공론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찬성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

하니, -사신은 논한다 : 나익(羅瀾)은 나숙(羅淑)의 아우이다. 숙이 전에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김안로의 간사함을 논박하려 했었는데 이 때문에 안로에게 배척당하여 파직되었다. 익이 과거에 급제하자 안로는 숙에게 품었던 노여움을 익에게 옮겨 늘 모해하려 하였었다. 이래서 안로의 당도 안로의 뜻에 영합(迎合)하여 익의 단점을 빚어내어 사림(士林)에 전파, 마침내 공론을 유발시켰다. 당시의 지론자(持論者)들이 혹 그 이유도 살피지 않고, 혹 그 실정을 알면서도 안로의 세도를 두려워하여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나익을 물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하여 그를 끌어들인 사람까지 논박하였다. 이러한데도 시종과 대간이 쓸리듯이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였으니, 아! 애석하도다. - 답하였다.

“손주의 일에 대해, 윤은보는 ‘처음에 권점이 쳐져 있어서 신은 무심히 권점을 쳤다.’ 하였고, 류부(柳溥)는 나익에게만 권점쳤다고 하였고, 심언경은 권점을 치지 않았다고 하였고, 조윤손은 무반(武班)이라서 권점치지 않았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반드시 손주의 소행인 것 같은데 손주가 숨기고 아뢰지 않고 있으므로 나 또한 추고하려 하고 있었으니 아뢴 뜻이 합당하다. 윤은보와 류부는 모두 스

스로 와서 사면(辭免)도 하고 대죄(待罪)도 하는데, 손주는 숨긴 채 와서 아뢰지도 않으니, 지극히 그르다. 아뢴 대로 파직시켜야 옳을 것 같다. 그러나 늙고 망령된 사람을 만드시 책할 것이 없으니, 파직만 하고 추문하도록 하라. 류부의 일은, 조광원(曹光遠)이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아는 일이니,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익에 대해서도 물론이 있다는 것을 류부(柳溥)는 모른다고 했는데, 조광원과 나익의 일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신을 체직하기도 하고 파직하기도 하면 소요스러운 폐단이 있을 것 같고, 또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이 없게 된다. 류부는 추문만 할 것이요 체직할 필요는 없다.”

○丙辰右贊成柳溥啓曰前日弘文錄揀擇時羅澗之有物論不及聞知而只知澗年少有才而圈點昨聞物論惶恐待罪傳曰曹光遠繼商之子不容物論人所共知也羅澗則雖有物論與光遠有間勿待罪○臺諫啓李夢麟事不允又啓曰昨日尹殷輔所啓曹光遠名下先有圈點云而今日吏曹判書沈彥慶緘答曰曹光遠羅澗名下初非有圈且不知某員所爲柳溥啓曰只圈羅澗云右叅贊曹潤孫自以武人引嫌不圈云然則先圈光遠者必是孫澍所爲權奸枝孽不可遴選侍從人所共知不忌公論謀欲援進陰圈名下已爲邪慝公論已發侍從臺諫俱有論啓掩匿所爲欲混其跡迄未直啓尤爲無狀請罷羅澗名下三圈旣非金謹思金安老曹潤孫沈彥慶所爲則實是尹殷輔柳溥孫澍等所圈也羅澗之有物論人所共知溥以崇品宰相不忌公論援薦隣私不可居弘化之地請遞其職史臣曰羅澗羅淑之弟淑前爲正言時欲論金安老奸邪以此爲安老所排見罷及澗登科安老怒於淑者移於澗常欲陷害安老之黨延合安老之意媒孽其短傳播士林遂以爲公論當時持論者或不察其所以然或知其情而畏安老之勢不能辨明指澗有物論至駁其援進之人如此而侍從臺諫靡然噤不能言吁可惜也答曰孫澍事尹殷輔啓云初有圈點而臣無心圈點云柳溥只圈羅澗云沈彥慶則不圈云曹潤孫以武班不圈云予以爲必是孫澍所爲而孫澍掩覆而不啓予亦欲推之啓意當矣尹殷輔柳溥則皆自來或辭免或待罪孫澍則欲掩覆而不來啓至爲非矣如啓罷之可也然老妄之人不必責也只罷而推可也柳溥事曹光遠之不爲公論所容人人所知羅澗之有物論柳溥不知云且曹光遠羅澗有間隔也政府大臣或適或罷似有騷擾之弊又無重大臣之意柳溥但推而已不須遞也

《中宗實錄 卷79, 62面》

중종 30년 6월 28일(정사)

대간이 류부(柳溥)와 이몽린의 일을 아뢰니, 비답하였다.

“이몽린의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류부의 일은 마땅히 대신이 의논을 모은 다음 결정하겠다.”

○丁巳臺諫啓柳溥李夢麟事答曰李夢麟事不允柳溥事當收議于大臣後發落

《中宗實錄 卷79, 63面》

중종 30년 6월 29일(무오)

영의정 김근사와 좌의정 김안로가 의논드리기를,

“요즈음 본부(本府)에서 좌죄(坐罪)되어 체직도 되고 파직도 되었는데, 신들이 그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전일 은보의 일을 하문하실 때 신들은 ‘대신을 진퇴하는 것 또한 가벼운 일이 아니고 나익과 조광원은 차이가 있으며, 또 류부(柳溥)가 찬성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사정에 끌려 가까운 사람을 비호하여 나라를 속이고 은혜를 저버렸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대신의 의논을 보니 위의 뜻과 같다. 나익과 조광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류부에게는 다만 추고하여 잘못을 깨닫게 했을 뿐이다. 전에 어찌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사람에게 권점친 때가 없었으랴마는 권점친 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체직하지 말라.”[중략]

○대간이 이몽린과 류부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송숙근은 계모(繼母)의 상언(上言)에 의해 병사에서 체직시켰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마음을 바치고 섬김에 있어서는 험난함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편안한 데는 달려가고 위태로운 데는 피한다면, 일신을 위해 스스로 도모하는 계책에는 좋겠지만 순경에나 역경에나 변함없는 절의를 가진다는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근은 무반으로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니 나라에서 후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모(繼母)의 나이도 그리 늙지 않았고, 또 아우도 있고 누이도 있어서 형제가 없는 독자의 예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먼 변방으로 가는 것을 면하려고 계모를 사주하여 거짓 상언(上言)을 올려 피하려 하였으니, 그 죄에 해당되는 법이 국전(國典)에 있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戊午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議近日本府坐事或遞或罷臣等側坐其間豈得安心前日殷輔事下問之時臣意以爲大臣進退亦爲非輕羅漢與曹光遠有間且柳溥居弘化之地豈敢牽情庇隣至以欺國孤恩哉其有物論恐或不知也傳曰今觀大臣議得與 上意合矣羅漢與曹光遠有間故柳溥則但推考使知其非而已前者豈無不容公論之人亦有圈點之時乎但不施行而已勿違可也[中略]

○臺諫啓李夢麟柳溥事不允諫院啓宋叔瑾以繼母上言命遣兵使人臣委質事君當不避艱險若趨安避危則爲一身自謀之計得矣於夷險一節之義安在叔瑾以武班之人位至二品受國厚恩思當報效之不暇而其繼母年未甚老且有弟有妹非如獨子無兄弟之例以免邊遠之地教誘

繼母冒呈上言謀避之罪自有國典請速罷不允

《中宗實錄 卷79, 63面》

중종 30년 6월 30일(기미)

대간이 류부(柳溥)와 이몽린의 일을 아뢰었고, 간원이 송숙근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己未臺諫啓柳溥李夢麟事諫院啓宋叔瑾事皆不允

《中宗實錄 卷79, 64面》

중종 30년 7월 26일(을유)

영의정 김근사, 우찬성(右贊成) 류부(柳溥), 좌참찬 조운손, 우참찬 김인손이 벌봉전(罰俸錢)에 대하여 의논드리기를,

“『대명률』의 벌봉전은 한(漢) 나라 때 주금(酎金)에 따라 줄이던 유법(遺法)입니다. 또 우리 조정에서 종친(宗親)은 구사(丘史)를 거두어 들이고, 조관(朝官)은 자급을 강등시킨 것이 모두 법률 밖에 일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를 모방한 듯합니다. 죄가 파직에 이르지 않는다고 특별히 서용하게 되면 체직을 자주하여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공죄(公罪)를 추문만 하고 벌이 없으면 역시 징계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행직(行職)은 자급을 강등시키면 꺼릴 것이 없게 되고 수직(守職)은 자급을 강등하면 아울러 현직까지 해임해야 하니 똑같은 죄에 벌이 다르게 된다면 상벌이 명백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벌봉전을 시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는 봉전(俸錢) 제도가 없으므로 이제 이 법으로 벌주려고 한다면 녹봉(祿俸)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 녹봉 감소(減少)의 정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마련,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乙酉領議政金謹思右贊成柳溥左叅贊曹潤孫右叅贊金麟孫議罰俸錢曰大明律罰俸錢此漢時省酎金之遺法也且在我朝宗親則收丘史朝官則降資雖皆律外似或倣此罪不至罷而別叙則慮有頻遶難人之患公罪只推而無罰則亦無懲戒之意行職降資則無所憚守職降資則并解見任同罪異罰恐失無章不如罰俸錢之爲當但我國無俸錢今欲罰之當以祿俸然要以罪之輕重爲減祿之多寡令該曹磨鍊議定傳曰知道

《中宗實錄 卷80, 9面》

중종 30년 8월 19일(정미)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 류부와 김인손, 대사성 원계채 등이 요속(僚屬)과 유생 윤은 등 2백 53인을 거느리고 와서 전(箋)을 올려 사은하였다. 그 내용은,

“밝은 해가 하늘에 떴으니 문명(文明)의 다스림이 크게 열렸고, 수운(需雲)이 뭉

게 뭇게 이니 양육하는 은택이 온 나라를 적셨습니다. 행단(杏壇 : 성균관을 말함)에는 찬란한 빛이 발하고 벽수(壁水 : 성균관을 말함)에는 기쁨의 물결이 넘쳐 흐릅니다. 삼가 신들은 외람되이 못난 자질로 어진 사람들 틈에 끼어 시(詩)를 외고 글을 읽었으나 책을 펴 봐도 유익됨이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공근(恭謹)한 것이 어찌 맡아들을 가르치는 데에만 정당한 방법이겠습니까? 바야흐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리어 술을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은혜가 하해처럼 넓어 빼와 살에까지 스며들었고, 봄빛처럼 따뜻한 전하의 말씀이 눈과 귀에 쟁쟁합니다. 더구나 쌀까지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더욱 오도(吾道 : 유교)가 환히 빛났습니다. 삼가 성덕(聖德)이 날로 새롭고 천성(天性)이 성인다운 신 주상 전하를 만났으니 학교를 설치하여 한제(漢帝)가 경서(經書)를 논란하게 하던 일³¹⁹⁾을 자주 거행하고 학문을 계속 넓혀가는 것은 참으로 반궁(泮宮)에 나아간 노후(魯侯)³²⁰⁾보다 뛰어났습니다.

신들이 감히 우러러 전하(殿下)의 큰 뜻을 몸받고 굽혀 신들의 미련함을 자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壽考)로 사람을 진작(振作)시켰으니 거의 역박(楫樸)의 교화³²¹⁾가 있음을 찬미하고, 산등성이처럼 수하시기를 비니 천보(天保)의 시(詩)³²²⁾를 바칩니다.”

이었는데, 사은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丁未○成均館同知事柳溥金麟孫大司成元繼蔡等率僚屬及儒生尹閔等二百五十三人來獻箋稱謝其辭曰離日中天丕闡文明之治需雲需澤普霑養育之恩光增杏壇喜溢壁水伏念臣等猥以庸質濫廁賢關誦其詩讀其書未見開卷有益直而溫寬而栗寧能教育得宜方懼倚席之譏反承錫爵之寵睿恩河廣浹於骨而淪於肌天語春溫接于目而入于耳况蒙廩粟之賜益顯吾道之光茲蓋伏遇 主上殿下德惟日新性由天縱設爲庠序屢舉漢帝之橫經學有緝熙允邁魯侯之在泮臣等敢不仰體鴻造俯策駑頑壽考作人庶贊楫樸之化岡陵祝筭載廣天保之詩傳曰

319) 한제(漢帝)가……일 : 한 선제(漢宣帝)가 감로(甘露) 연간에 석거각(石渠閣)에 나아가 여러 선비들과 경서(經書)의 동이(同異)에 대해 강론을 벌인 일이 있었고 《漢書 儒林傳 施讐》 후한(後漢) 효명황제(孝明皇帝)도 벽옹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고 경서를 강론하게 한 일이 있었다. 《後漢書 儒林傳序》

320) 반궁(泮宮)에……노후(魯侯) : 노후가 태학인 반궁에 나아가 연회를 베풀면서 학문을 강론했는데, 우리 임금도 노후처럼 성균관을 시찰하였다는 뜻으로 썼다. 이 말의 출처는 《詩經 魯頌 泮水》에서 온 말이다.

321) 역박(楫樸)의 교화 : 주 문왕(周文王)의 교화를 말한다. 역박은 나무 이름으로, 많은 어진이가 국가에 기용이 되어 나라가 잘 다스려졌음을 무성한 이 나무에 비교하여 시를 지었다. 《詩經 大雅 楫樸》

322) 천보(天保)의 시(詩) : 임금의 수복(壽福)이 무궁하기를 비는 시. 《詩經 小雅 天保》

勿謝

《中宗實錄 卷80, 16面》

중종 30년 10월 9일(정유)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김안로가 아뢰기를,

“요즈음 태백(太白)이 주현(晝見)하여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늘은 또 겨울 천둥이 일어났으니, 보통의 천변이 아닙니다. 대체로 겨울 천둥이 일어나는 것은 음양이 법도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10월에는 양기가 지하에 갇혀 있다가 봄이 되어 발설(發洩)하게 되면 만물이 자라게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양이 먼저 발설하니 만물이 자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의 농사 또한 걱정입니다. 천변에 응답함은 걸치레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人事)에 잘못이 없고 인심이 화목한 뒤에야 천심(天心)을 화평하게 하여 천변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래 인사가 순조롭지 못하여 천변이 이와 같은데 소신은 헛되이 자리만 지키면서 어쩔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태백이 주현하여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서(古書)에도 ‘태백은 병란(兵亂)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천둥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음양의 기운이 서로 부딪쳐 천둥 번개가 됩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시월지교(十月之交) 장에 ‘번쩍번쩍 번개와 천둥 급하고 불안하게 치는구나.’ 하였는데, 해설하는 자가 ‘혹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이기거나, 이적들이 중국을 침범하거나, 소인이 군자를 능멸함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한층 모든 일에 삼가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중략]

안로는 아뢰기를,

“4자를 깨뜨려 낸 일과 흉상(凶像)을 매단 일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겨울 천둥은 지극히 두려운 천변이다. 영천 사람의 사건은 내 생각에도 수령을 미워하고 원망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매우 황당스런 일이다.”

하였다.[중략]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변경 방비에 관한 일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가덕도(加德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은, 비록 태평시대라고는 하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포(滿浦) 건너편에 와서 사는 야인(野人)들은 타일러도 떠나지 않으면 죄를 성토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이 일도 우려스럽긴 하지만 이는 변방의 일입니다. 함경도에는

귀화한 야인이 내지(內地)에 많이 삽니다. 북청(北靑)의 무해대(無海臺: 지명(地名)임.)에는 귀화한 야인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으므로 더욱 우려됩니다. 지난날 제포(齊浦: 웅천(熊川)의 내이포(乃而浦)임)에 왜노(倭奴)가 많이 와서 살 적에 조정에서는 뱃속의 병처럼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러다 경오년의 난(亂)이 일어났었는데 국가에서 제압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함경도에 많이 살고 있는 야인은 왜노보다도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회를 봐서 일어난다면 화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노는 주사(舟師: 수군(水軍))여서 칼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활은 잘 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인은 육전(陸戰)이 그들의 장기(長技)이니, 휘몰아 쳐들어오는 것을 염려하여 미리 조처해야 됩니다.”[중략]

부는 아뢰기를,

“지금은 비록 이러하나 오호(五胡)의 난(亂)³²³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오호가 마음을 바꾸어 귀화할 때는 백성과 같았지만 끝내 중국을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이런 일은 천천히 도모해가면 가능하지만, 급하게 조처하면 소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丁酉 御朝講領事金安老曰近來太白書見久而不滅今又冬雷發作天變非常蓋冬雷之發由於陰陽之失度也古人云純陰之月陽氣闔藏於地下春而發洩則萬物生遂今者陽氣先洩萬物難於生遂明年農事亦爲可懼答天之變不可以文必須人事無失人心和睦然後天心可和天變可弭近來人事不順故天變如此小臣戶位罔知攸爲知事柳溥曰太白晝現久而不滅古書曰太白兵象也且冬雷之變極爲非常大抵陰陽之氣戰溥而爲雷電詩曰燁燁震電不寧不令說者曰或妄婦乘其夫夷狄侵中國小人凌君子皆其應也今之有他事未可知也然當恐懼修省[中略] 安老曰斷破四字與懸像之事何以哉 上曰冬雷之變至爲可懼永川人事予意亦以爲非嫉怨守令者所爲至爲荒唐[中略]

溥曰邊備之事所當軫念加德島設鎮事時雖昇平而不可不慮也滿浦越邊來居野人若開諭而不去則聲罪驅逐矣彼亦雖似可慮然外事也咸鏡道向化野人多居內地如北靑無海臺地名向化野人至爲滋蔓尤爲可慮前者齊浦倭奴滋蔓朝廷以爲腹心之疾而庚午亂作國家制之至爲幸甚咸鏡道野人之滋蔓甚於倭奴若乘間而起則禍不可言倭奴則以舟師只能用劔而不能射矣野人則陸戰其長技也長驅而入亦爲可慮預爲處置可矣[中略]

溥曰今雖如此五胡之亂可監當革心向化之時則無異於編氓而終使中原爲腥膻之域矣 上

323) 오호(五胡)의 난(亂): 오호는 중국의 진(晉) 나라 말기에 서북방에서 중국 본토로 이주하여 온 다섯 민족. 즉 흉노(凶奴)·갈(羯)·선비(鮮卑)·저(氏)·강(羌) 등인데, 이들의 이주를 방치했다가 결국 국가를 세우는 데 이르렀고 오호 십육국 시대를 야기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인의 진입을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다는 뜻.

曰如是之事若徐爲之所則猶可若急處則當致騷擾矣

《中宗實錄 卷80, 33面》

중종 30년 10월 15일(계묘)

금부의 나례(儼禮)³²⁴에 관한 단자(單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나례 가운데 잡희(雜戲)는 줄여야 할 것도 있고 더해야 할 것도 있다. 이것은 조종조(祖宗朝)에서 하던 일이다. 빈풍 칠월(邠風七月)³²⁵을 그린 그림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한 것이다. 지금 잡희에서 농작(農作)과 양잠(養蠶)하는 것을 연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뜻이다. 내전에 있는 병풍에 빈풍 칠월도를 그린 것이 있을 것이다. 나례가 끝난 다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이것을 본떠 놀이를 하라. 칠월류화(七月流火)로부터 끝장의 착빙충충(鑿冰沖沖)에 이르기까지 미리 연습하도록 하라.”[중략]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가서 신하들을 맞이하여 시정의 득실을 하문하였다. 영의정 김근사가 아뢰기를,

“요즈음 천변이 보통이 아닙니다. 태백이 주현하고 겨울 천둥이 여러 차례 일어나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여 천변이 계속 일어나니, 위에서도 특별히 삼가고 유념하소서. 옛사람들이 ‘재변은 모두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일어난다.’ 하였으니, 반드시 백성들에게 실제의 혜택을 베풀어 재변을 그치게 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겨울이 아직 이른 때인데도 날씨가 이미 추우니, 여러 곳에서 공사(工事)를 하는 역졸(役卒)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가운데 일하느라 어찌 원망과 탄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법에,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는 자에게는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어 때를 놓치지 말도록 하고 있으니, 관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 올리게 하여 혼기(婚期)를 놓치지 않도록 하면 원망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농사가 좀 잘 되자 공채(公債)를 거두어 들임이 지극히 가혹합니다. 스스로 농사지은 곡식으로도 식량이 부족하여 떠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망이 어찌 적겠습니까.

대체로 천변은 백성의 원망에서 나옵니다. 임금이 하늘에 응답함에 있어서는 실답게 하여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정 신하들을 맞이하여

324) 나례(儼禮) : 음력 선달 그믐날 밤에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儀式).

325) 빈풍 칠월(邠風七月) : 『시경(詩經)』의 편명(篇名)으로, 주(周) 나라의 무왕이 죽고 나서 어린 성왕(成王)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당시 섭정(攝政)으로 있던 주공(周公)이 지은 시라 함. 내용은 농사의 시기에 대한 것을 서술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그림으로 그려 경계로 삼기도 하였음. 이 시는 칠월에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서쪽으로 흐르거든[七月流火]으로 시작해서 십이월에 얼음을 떠서[二之日鑿冰沖沖]에서 끝남. 《詩經 邠風 七月》

정사의 득실을 묻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중외(中外)에 구언하셨으니, 상께서 하신 일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한갓 묻기만 하고 채용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일도 쓸데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쓸만한 말이면 즉시 채용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일로써 하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중략〕

우찬성(右贊成)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겨울 천둥이 한 달 안에 여러번 일어나니 매우 놀랍습니다. 옛사람이 ‘음이 성하고 양이 약하여지면 음양이 서로 부딪쳐 겨울 천둥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군자는 양이고 소인은 음이며, 중국은 양이고 이적(夷狄)은 음이며, 남편은 양이고 부인은 음입니다. 오늘날의 사세로 본다면 군자와 소인은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연(閩延)과 무창(茂昌)의 일은, 바로 야인들이 우리 나라를 업신여긴 짓으로 그들이 만포(滿浦) 건너편에 와서 살고 있으니 조정의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국경 넘어 내지(內地)에 와서 사는 야인도 많습니다. 만일 변란이라도 일어나면 반드시 자기네 종족을 따르지 어찌 우리 나라를 따르겠습니까? 내응(內應)할까 두려우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숫자를 파악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첩부(妾婦)가 남편을 이기는 사례도 어찌 한 둘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둔 뒤에야 재변에 대응하는 방법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중략〕

상이 일렀다.

“좌우의 말이 옳다. 나라가 무사하더라도 재변이 있으면 공구 수정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다. 더욱 유념해야 한다.”

○癸卯以義禁府儺禮單字下于政院曰單字中雜戲有可減者有可加者此乃 祖宗朝所爲之事盡幽風七月周公所以使人君知稼穡之艱難也今戲爲農作養蠶亦似倣此內葢畫屏有盡幽風七月圖者儺禮畢後別無所爲之事欲使倣此爲戲自七月流火至卒章之鑿冰冲冲使之預習〔中略〕

○上御思政殿延訪群臣領議政金謹思曰近來天變非常太白晝見冬雷屢發至爲惶恐今者朝廷不和以致天變之繼作請自 上別加修省焉古人云災變之發皆自民怨須施實惠於民以弭之近來冬候尚早日氣已寒諸處營繕役卒呼耶於風雷之中豈無怨咨哉且於國法貧窘而不得婚嫁者官給資裝使不失時令攸司抄之使不失時則亦可以無怨矣近來年穀少登公債徵歛至爲苛刻自耕之穀尚不得食至於流離其怨亦豈少哉大抵天變出於民怨人君應天所當以實不宜以文今者延訪朝廷責己求言于中外自 上之事則至矣然若徒訪問而不採用則今日之事亦是浮文而已言可用之卽採而用此乃應天以實也〔中略〕

右贊成柳溥曰冬雷疊發於一朔之內至爲驚愕古人云陰盛陽微陰陽戰薄而冬雷發焉君子陽也小人陰也中國陽也夷狄陰也夫陽也婦陰也以今見之必有君子小人相間也且閭閻茂昌之事乃野人凌蔑我國來居于滿浦越邊朝廷之隱憂不小且野人之居于內地者亦多若有變則必

從其族類豈從我國乎恐爲內應也令該司知其數而使不得橫行可也至如妾婦乘其失亦豈特一二事哉無所不念然後應災之方得矣[中略]

上曰左右之言是矣國家雖無事若有災則所當修省况今人心不定尤當省念

《中宗實錄 卷80, 38面》

중종 30년 11월 19일(병자)

○윤은보(尹殷輔)³²⁶를 의정부 우의정에, 류부(柳溥)를 좌찬성(左贊成)에, 황사우(黃士祐)를 우찬성에, 윤임(尹任)을 병조 판서에, 심언광(沈彦光)을 공조 판서에, 오결(吳潔)을 병조 참판에, 김선(金璇)을 승정원 도승지에, 조인규(趙仁奎)를 좌승지에, 남세건(南世健)을 우승지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오결은 김안로에게 빌붙어서 관질(官秩)을 뛰어올 수 있었다. 그때 특별히 승진한 자를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안로의 일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丙子○以尹殷輔爲議政府右議政柳溥爲左贊成黃士祐爲右贊成尹任爲兵曹判書沈彦光爲工曹判書吳潔爲兵曹參判金璇爲承政院都承旨趙仁奎爲左承旨南世健爲右承旨史臣曰吳潔附安老而得超官秩當時特陞者時人皆指安老之黨云

《中宗實錄 卷80, 55面》

중종 30년 12월 11일(정유)

성균관 지사(成均館知事) 김안로(金安老), 동지사(同知事) 류부(柳溥)와 김인손(金麟孫), 대사성(大司成) 원계채(元繼蔡)가 아뢰기를,

“신들은 교육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이렇다 할 공적도 없는데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근래에는 유생들이 전혀 학교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오는 자가 있어도 대개는 글도 안 읽고 글짓기도 안 합니다. 때문에 경학(經學)과 사장학(詞章學)이 다 함께 없어져가고 있어 온갖 수단으로 바로 잡으려고 애써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장(師長)이 된 신들이 못한 탓입니다. 그런 데로 무릅쓰고 있는 것이 매우 미안스러우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유생들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서 사장학과 경학이 다 예전같지 못하다는 것은 나도 염려가 되어 경연(經筵)에서 논란하였으나, 이것은 온 조정이 같

326) 윤은보(尹殷輔) : 1468~1544.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상경(商卿). 시호는 정성(靖成). 본관은 해평(海平). 성종(成宗) 25년(1494) 별시 문과에 급제. 동왕 26년 교검(校檢)을 거쳐 집의(執義)를 지내면서 성종실록(成宗實錄)·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좌·우의정·영의정 등을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중종 38년(1543)에 왕명으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편찬하였다.

이 염려할 일이다. 저번의 권장절목(勸獎節目)에서도 벌써 상세한 방안이 제시되었거니와, 근일에 또 전강(殿講)·정시(庭試)를 보이려 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서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생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을 뿐이 아니라, 학관(學官)도 해이해져서 잘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저번에 대간이 아뢴 대로 학관을 파직시켜 연말의 서계(書啓) 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를 징계하는 까닭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관학(館學)의 학관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은 소치이지, 관각(館閣) 당상관들의 잘못이 아니다. 스승이 비록 가르쳐주고 싶어도 유생이 스스로 즐겨 배우지 않는다면, 이는 종아리를 때리고 겁을 주어서 될 일도 아니다. 저번에 마련한 절목 외에 또 시행할 만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배우는 자의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하다 할 만하다. 다른 관원으로 대신한다해도 또 어찌 경들보다 낫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김안로 등이 아뢰기를,

“이제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신들이 인재를 양성하는 무거운 임무를 띠고서 하는 것도 구차히 지내고 있으므로, 저번에 따로 절목을 세워 권장하여 보았지만, 여전히 이와 같습니다.

성상께서 이처럼 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일은 말로 아뢴다면 전달되는 사이에 행여 빠뜨린 게 있을까 싶으니 대략 조목을 만들어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김안로(金安老) 등이 올린 조목안로가 본래 이 일을 아뢰기 위하여 먼저 사피하였다.은 이러하다.

“첫째. 사장(詞章)과 경술(經術)이 본래 경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經傳)의 공부를 보조함에 있어 문장이 아니고는 되지 않으며, 그 체(體)와 용(用)이 서로 작용을 하므로, 어느 하나를 빼놓아도 안 되며, 또 갈래를 지어 둘로 여겨도 안 됩니다. 게다가 교린(交鄰)과 사대(事大)의 교령(敎令)과 사명(辭命)은 정사를 보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남의 문장을 봄에 있어서도 이보다 더 밀접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더러 사부(辭賦)로 사람을 취한 것도 어찌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또 문장을 배우는 방법에도 그 순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선비는 먼저 사(詞)와 부(賦)를 읽혀서 문리(文理)를 안 뒤에야 대책(對策)을 시험하여 시무(時務)를 통달합니다.

근래에 공부하는 자들이 과거를 보기에만 급하여 입에 젓냄새가 나는 아이도 배우는 방법은 알지 못한 채, 먼저 대책을 익혀 요행을 바랍니다. 대저 대책이란 것도 흔하게 쓰는 체양(體樣)이 있어 표절하기가 쉬우므로 이전 사람의 진부한

말들을 주워모아 채양에 맞추어 엮어서 과거에 합격하려 하고, 문장에 대한 공부는 전폐한 채 익히지를 않습니다. 관중(館中)의 모든 과제(課製)나 정시(庭試)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등격(等格)에 맞는 자가 전혀 없으니 이는 부박(浮薄)한 무리기묘사화 때의 사람들을 가리킴.가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알고서, 사장은 말단이므로 배울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여 온 세상이 휩쓸린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또래 가운데 더러 문장으로 공부를 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조소(嘲笑)를 하니, 그 유폐(流弊)의 심각함이 오늘날에 이르러 더욱 고질이 되었습니다. 이러나 한심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후로는 식년시(式年試) 외의 별과 초시(別科初試)는 모름지기 사나 부 등을 이것저것 2~4편씩 시험보이고 전시(殿試)에서만 간간히 대책을 넣어서 그 유폐를 바로 잡으소서.

둘째. 경전(經傳)은 도(道)를 담는 도구이니 구두만 익히고 문의(文義)를 강론하지 않으면 깊은 뜻을 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전의 학자는 음석(音釋)과 훈고(訓詁)를 모두 스승에게 배웠고 모름지기 서로 모여 강론하고 스승에게 나아가 질문을 하여 학문을 일치시킨 뒤에야 강격(講格)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이나 사학(四學)에 나와 공부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근래에 공부하는 자들은 서로 강론을 하거나 질정을 받지 않고 각기 혼자서만 하며, 공부가 성숙하였다고 하는 자도 짧은 문장이나 외어 말이나 잘하고 강답(講答)하는 것만 일삼아 전(傳)과 주(註)를 찢어 나누고 구절대로 해석을 하여 옷점만 간추려 읽고 문장 전체는 읽지 않습니다. 또 전체의 뜻을 통하여 아는 것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강과(講科)에서 취하는 것이 대개 이러하여 이것이 점점 오래되자 이제는 강관(講官)으로서 듣고 있는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도 적으니, 어떻게 선비의 학문을 바로 잡고 이 폐습을 고치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강과에서 외는 것만을 보지 말고 모름지기 글의 뜻을 통달한 자를 뽑을 것이며, 강관도 부디 학문이 정숙(精熟)하고 일찍이 교수의 경력이 있는 자로 선발하여 참석시키고 경전의 뜻을 해석함이 옛날 합격한 자만 못한 자는 뽑지 말게 하소서.

셋째. 식년시(式年試) 이외의 모든 별과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조종(祖宗) 때에는 문학을 하는 선비가 울창한 숲처럼 많았기 때문에 정원이 더러는 3백에서 6백 명까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뽑으려 했고, 그 주에는 요행으로 합격한 자도 있었지만 평소에 화려한 명망이 있던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래에는 선비의 풍습이 게을러지고 비루하여 온 세상이 무식하여 큰 과거를 보일 때면 선비는 구름처럼 모여들지만, 지난날과 같이 동료 가운데서 우뚝 뛰어난 자를 보지 못합니다. 선비의 학풍은 이와 같은데, 정원의 수효는 예전의 규

정과 같아서 반드시 그 수효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체제와 격식이 맞지 않은 자도 함께 취하여 간신히 그 정원을 채웁니다. 상께서 친림(親臨)하여 책문을 시험보일 때 대과(大科)에 장원한 자도 글이 조리를 이루지 못하여 남의 웃음을 사니 이는 과거를 천시하게 만들어 국가의 체모를 욕되게 함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많이 뽑고자 하는 것이 혼잡하여 정선을 기하기 어려운 폐해를 끼치기만 하고 선비를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 공부를 폐지하고 요행수를 넘보는 문만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터는 별과 초시에 부디 정원을 정하지 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편(篇)을 시험하여 등급이 우수한 자만 뽑고 그렇지 못한 자는 탈락시켜 혼잡하고 속이려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넷째. 서도(書徒)³²⁷의 법은 근일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식년시(式年試)와 대거별시(大舉別試) 외에는 모두 서도에 의거 응시를 허락하였으나, 해마다의 별시를 모두 대거로 하였으므로 서도의 법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거 별시에도 서도를 함께 반영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흥학조(興學條) 안의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시행하여 계속 오래오래 지켜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원(生員)과 진사(進士)의 시험은 서도(書徒)에 의거 원점(圓點)을 쳐서 응시시키기 때문에 더러 성균관에 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幼學)은 여섯 달마다 있는 도회(都會)에서만 서도를 반영할 뿐, 그 외에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사학(四學)의 생도들이 해이해져서 학관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서도에 의거 원점을 정하여 향시(鄉試)나 한성시(漢城試)에 응시할 수 있게 법을 정하되 향시는 별도로 빈공(賓貢)³²⁸의 법을 엄격히 하여 공부하는 자를 권장하소서.

여섯째.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장려하는 것은 오로지 조장(條章)만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고무 진작시키는 방도를 조장 밖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성상께서는 오직 성의를 다하셔야 합니다.”

전교하였다.

“아된 절목(節目)은 매우 합당하다. 아된 대로 시행하라.”

○전교하기를,

“김혼(金渾)의 일은 끝까지 신문하여 그 사실을 알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327) 서도(書徒) : 독서 실적의 기록. 중종 29년 11월 신미조에 좌의정 한효원(韓效元)이 유생(儒生)의 권학 절목(勸學節目)으로 만든 규정안(規定案)의 한 조항임. 《中宗實錄 七十八卷 十一月 辛未》

328) 빈공(賓貢) : 빈공(賓公)으로서 각도에서 과거를 볼 때에 다른 도 출신의 유생이 과장에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는 일.

만 사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도 아닌데 박빈(朴彬)은 벌써 세 차례의 신문을 받았고 박춘동(朴春同)과 최유례(崔有禮)는 중병으로 죽게 되었다 한다. 이제 만약 형신을 한다면 어찌 형벌을 신중히 하는 본뜻이겠는가. 이것은 의욕인 듯하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는가. 사관을 보내어 다시 대신과 의논하라.”

하니, 김안로·류부·김인손이 의논드렸다. 마침 빈청(賓廳)에 모여 있다가 의논하여 아뢰었다.

“장법(贓法)은 매우 신중한 것이므로, 사간을 두어 번의 신문으로 그만 둔다는 것은 경솔한 듯합니다만, 이제 박빈은 형신을 더하여도 자복을 하지 않고 나머지 두 사람은 다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정리로 본다면 종이금이 김혼을 위해서 그 흔적을 덮어 주려는 것이 사간(事干)들보다는 더해야 전관(前官)을 위해서 숨겨 주려는 정리가 되는데도, 종이금은 장(杖)을 맞지 않고도 바로 자복을 했고, 사간들은 죽게 되었는데도 아직 견디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이니 의심할 만한 일이나 까닭없이 함께 죽도록 한다는 것은 흠휩(欽恤)하는 인(仁)의 도리를 손상시킬까 염려됩니다.”

○丁酉成均館知事金安老同知事柳溥金麟孫大司成元繼蔡啓曰臣等職帶養育之地無所建明不能稱職而近來儒生專不就學雖有就學者類皆不讀不製故經學詞章俱爲掃地百計欲矯已無所容其力矣是皆臣等爲師長無狀之過也徒爲冒處至爲未安請迺臣等傳曰近來儒生等不樂就學詞章經學皆不如古予亦軫念而論難於經筵此朝廷所共慮也前者勸獎節目旣已詳盡矣近日又欲爲殿講庭試而日氣寒凍不得視事故未能爲矣非但儒生不樂就學也學官慢不教誨故前因臺諫所啓罷之而歲抄書啓時亦不叙用所以懲戒之也此皆館學下官不勤教誨之所致非館閣堂上之失也師長雖欲教訓儒生自不樂就非可以箠楚驅脅之也未知前日所磨鍊節目之外又有可行之事耶學者之弊至於此極可謂寒心雖使他員以代之又豈加於卿等乎勿辭安老等啓曰今承 上教至爲感激臣等帶作成重任苟延日月無所作興前者雖別立節目以爲勸獎猶爲如此自 上何以知若是之甚也是以來啓矣且學者之事以言啓之則轉傳之間恐或脫漏却當略撰條列以啓傳曰知道安老等條列安老本欲啓此事而先爲辭避其一曰詞章經術固有輕重然羽翼經傳非文不可其體用相須不可闕一亦不可歧而爲二也况交鄰事大出教令飾辭命羽儀黼黻之用最爲關重而觀人文辭莫近於是在昔或以辭賦取人者豈無所謂且學文之術要有其序故初學之士始習詞賦以就文理然後乃試對策以通時務近來學者急於進取乳臭稚童學不知方先習試策以窺僥倖夫對策亦有俗樣體模可易剽竊掇拾前人陳腐依樣倣襲以規取科第詞藻之事頓廢不習凡於館中課製或庭試稍合等格者亦絕無此乃浮薄之徒指己卯之人自視不能唱之以詞章末節不可學一世靡然今雖有儕流間或以文墨爲事者相與嘲笑其流弊之深至于今尤痼曷勝寒心今後式年外別舉初試須雜試詞賦等數四篇唯於殿試間以策問以矯流弊其二曰經傳載道之具只習句讀不講文義無以通其奧趣故古之學者於音釋訓詁皆

有師授且須群居講習就師質問以同其學然後可以中講格故樂就館學近來學者不相師習各私其學其謂熟習者亦記誦小章以口便講答爲事其傳註分裂句解只抄要釋不讀全文又不要通解其義而科講所取率皆類是寢以積久講官之能解其聽者亦少其何以正士學而革此習乎今後講經不必專於記誦須取通達文義者且講官須擇精熟曾經師授者參之以黜釋義之不如舊格者其三曰凡式年外別舉非有定規其在 祖宗朝文學之儒蔚然林立故解額或三百六百要在多取其間雖有幸中碩材名儒素著華聞者居多近來士習儉鄙舉世貿貿雖當大舉繼掖雲集未聞有人能雄鳴儕流如往日者也如是而解額之定猶倣舊規必欲取盈故雖體格不具俱收并取苟充其額及臨軒親策擢魁大科者文不成理取笑於人其賤科第而辱國體甚矣以是而言其欲廣取徒貽混雜難精之害其欲勸士徒啓廢業覬幸之門今後別舉初試不須定額累試諸篇只取擾入等格者其不中格者皆黜使無混雜苟僞之弊其四曰書徒之法所以矯近日不學之弊故式年及大舉別試外皆以書徒許赴而頻年別試皆以大舉其書徒之法無施措之地只爲文具今後別試並考書徒凡興學條內事件逐一行之無少間輟以之悠久不怠則庶有益也其五曰生員進士以書徒爲圓點故或有就學者幼學則唯六月都會考書徒其他則無法故四學生徒怠散不就今後幼學通京外亦以書徒定其圓點許赴鄉漢城試以爲定式鄉試別嚴賓貢之禁以勵學者其六曰興學勵材不可專以條章其鼓無振作之道亦於條章之外求之唯在 聖上致誠盡意而已傳曰所啓節目至當如啓行之○傳曰金渾事所當窮訊得情但事干以非己之罪而朴彬則已受三次朴春同崔有禮則病重將死云今若加刑豈恤刑之意乎此似疑獄何以處之遣史官更議大臣金安老柳溥金麟孫適會賓廳議啓議贓法甚重其事干但訊數次而遽已似輕然今者朴彬加刑而不服其餘兩人皆病垂死以情論之種伊今爲金渾欲蓋其迹固有甚於事干爲前官掩庇之情而種伊今則不杖而旋服事干垂死而尚忍反常如此事固可疑無故並斃恐傷欽恤之仁

《中宗實錄 卷80, 63面》

중종 30년 12월 18일(갑진)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황사우, 지의금부사 심언경, 우참찬 김인손, 동지사 권예와 허흠, 대사헌 허항, 대사간 채무택, 사간 권기, 집의 정만중, 장령 이이와 임봉, 헌납 이몽필, 지평 조사수와 정희렴, 정언 이팽수와 노한문 등이 의논드리기를,

“영천(永川)의 옥사(獄事)는 신인(神人)이 공노할 일입니다. 진실로 통쾌한 처벌을 내려 분노를 가시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초 본군(本郡)이 옥사를 일으킬 적에 의문이 갈만한 단서는 다루지 않고, 그가 지난날 고을 원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원한을 품었을 것이라는 하나의 단서만을 가지고서 거기에 심증을 두고 끝까지 다스리고자 하여, 아전을 시켜 김막동(金莫同)을 띄어 그 일에 증거를 서게 한 사실이, 이제 김막동의 초사(招辭)에서 드러났습니다.〔중략〕

예부터 흉역(凶逆)이란 처음에는 잠시 도망쳤다가도 끝내는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므로, 아직은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지심으로 자수하여 나올 때를 기다려 보는 것이 성군의 인자한 뜻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서로 멀지 않으므로,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흉인이 드나드는 것은 알 수 있을 터인데도 살고 있는 사람 및 수직(守直)한 자도 모두 함께 벌을 주어 뒷날을 경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甲辰○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左贊成柳溥右贊成黃士祐知義禁府事沈彦慶右叅贊金麟孫同知事權輓許洽大司憲許沆大司諫蔡無擇司諫權祺執義鄭萬鐘掌令李頤林鵬獻納李夢弼持平趙士秀鄭希廉正言李彭壽盧漢文議曰永川獄事神人共怒固當快置典刑以謝其憤但當初本郡起獄不因可疑之緒只以宿昔受罪有怨邑宰乃欲憑此窮治使吏教誘金莫同俾證其事乃見於金莫同之招[中略] 自古凶逆初雖暫這終必敗露姑用不輕之仁以待自速之誅似合於聖朝欽恤之意但此人等所居不遠雖不自與謀兇人出入宜可知之而若不發覺豈得無罪貽峰傍近處居人及直守者並皆徵治以戒後來何如傳曰如啓 《中宗實錄 卷80, 66面》

중종 30년 12월 28일(갑인)

영의정 김금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황사우, 좌참찬 조운손, 병조 판서 윤임, 우참찬 김인손, 병조 참판 오걸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함경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면, 박세영(朴世英)과 남귀년(南龜年) 등이 처음 어전(魚箭)의 수직(守直)으로 정송(定送)되었는데, 사로잡히자 복병(伏兵)이 있었다고 하였고, 쇄환(刷還)할 적에는 야인(野人)들에게 말과 소를 주며 화해를 빌고서는 곧 싸워서 탈환을 하였다 했고, 저들의 경계에서 어정거리다 저들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적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포를 쏘아 몰아내고 추격해오는 적을 두 번이나 격퇴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힘써 싸웠다고 과장하여, 조정을 속이고 성상을 기만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사(兵使)가 추신(推訊)을 할 적에도 교묘히 거짓말을 꾸며대며 자신의 허물을 벗어나려 하였을 뿐이 아니라, 도리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주장(主將)을 모함하여 해치고자 하였습니다.[중략]

이를테면 찰방(察訪)·만호(萬戶)·권관(權管) 등도 모두 중성(鍾城)에 소속된 관리로서 거짓으로 대답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온 도(道)가 환히 아는데도 서면으로 신문을 받을 적에 여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관련자가 모두 승복한

뒤에는 진실로 숨기기 어려웠으나 그래도 완강히 숨겨서 위로 조정을 속이고 아래로 간사한 무리를 비호하였습니다. 이들이 하찮은 관원이기는 하나 역시 중대한 임무를 맡은 자이니 그 죄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부터 변방의 내막은 덮어두는 것이 버릇이 되어 조정에서 그 사실을 아는 일이 드물어서 상벌이 거꾸로 내려진 일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간사하게 숨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끝까지 추궁하여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잡아다가 형신을 하여 자복을 받게 하고, 그 밖에 아직 임소(任所)에 있는 자는 먼저 파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중략〕

전교하였다.

“찰방과 만호 등은 의논대로 파직시키고 추고하라.”

○甲寅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左贊成柳溥右贊成黃士祐左叅贊曹潤孫兵曹判書尹任右叅贊金麟孫兵曹叅判吳潔議啓曰今觀咸鏡道監司所啓朴世英南龜年等初以魚箭守直定送被擄而乃曰伏兵其刷還也乃給彼人牛馬乞和而乃曰接戰奪還逕遯近境不見虜人而乃曰深入胡窟放炮追北賊騎追躡再度擊逐誇張力戰之功其誣朝罔上之罪在所罔原而且兵使推訊時非徒巧飾虛辭圖脫已愆反欲構織僞問陷害主將〔中略〕

如察訪萬戶權管等亦皆符右鍾城官吏執詐巧對其事狀分明一道洞知而下書窮覈之時尚不以實雖事干俱服固難掩隱而其庇諱猶牢上以欺朝廷下以黨奸罔此雖微官亦是受任重寄者厥罪豈細自古邊鄙之情蒙蔽成習朝廷罕得其實賞罰乖倒者多矣今此奸蔽敗露若不究意置法無以徵後並拿來刑推取服其尚在任所者先罷其職爲〔中略〕

傳曰察訪萬戶等依議得罷推可也

《中宗實錄 卷80, 68面》

중종 31년 3월 10일(을축)

대간이 의논드리기를,

“신들이 듣건대 김극개가 체포되어 도하(都下)에 이르렀는데 바로 투옥(投獄)되지 않고 며칠 동안 지체하다가 8일 황혼녘에야 비로소 나타났다고 하니, 그가 끝내 악한 성질을 부려 조정을 능멸함이 너무 심합니다. 바라건대 아울러 전지를 내려 그 죄를 추고하게 하소서. 금부도사(禁府都事) 김인경(金麟慶)이 김극개를 체포하여 도하에 이르고서도 며칠 동안 지체하고 바로 복명하지 않았으니, 이는 국법을 경멸하고 권간에게 아첨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먼저 파직부터 시킨 뒤에 추고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금부 당상관 판부사(判府事) 류부(柳溥)·심언경(沈彦慶)과 동지(同知) 권예(權輓)·허흠(許洽) 등도 김인경이 지체한 사실을 들었다면 의당 즉시 아뢰어 치죄해야 할 것이요, 혹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산(連山)은 3일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데, 연산은 김극개가 거주하는 곳임. 김인경이 떠난 지 이미 7일이 지났으므로 아뢰어 그 태만함을 추론해야 마땅할 것인데도 방치해 두고 말았습니다. 또 김극개가 8일에 투옥되었으니, 어제 환궁(還宮)하신 뒤에 의당 즉시 추국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옥(詔獄)의 막중한 일을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으니, 이는 태만함이 막심할 뿐 아니라 그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소서.”

하고, 이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권간들이 조정에 응거하여 위복(威服)을 도절(盜竊)할 때 그 심복과 당파가 안팎으로 체결되고 조아(爪牙)와 응견(鷹犬)이 요로에 배치되어 기세가 등등하고 국본이 흔들렸으며, 대병(大柄)이 아래서 잠탈(潛奪)되고 주세(主勢)는 위에서 고립되었으니 그들의 악랄한 계략을 말하자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직 하늘과 조종(祖宗)의 혼령이 성충(聖衷)을 도우시어 공론에서 지적하는 말을 마치 물 흐르듯 따라 단행하시어 거간 노환(巨奸老猾)이 뒤를 이어 축출되게 하심으로써 조정이 맑아지고 국본이 안정되었으니, 안으로 백료(百僚)와 밖으로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경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운 곳을 다 긁기도 전에 놓쳐버린 이[蟣蟲]가 수두룩하고 소굴이 너무 깊숙함으로써 빠져 나간 호리(狐狸)가 많으며, 백방으로 무함하고 서로 선동하는 버릇이 그대로 남았고 쥐처럼 잠복하고 원숭이처럼 엿보는 수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정과 국법을 경멸하여 저지르지 못하는 바가 없으나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조계상(曹繼商)의 방면 소문이 도하에 떠들썩하여 원근에 전파됨으로써 물론이 놀라고 듣는 이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들 같은 간힐(奸黠)의 괴수들이 어찌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감히 그런 말을 만들어 안팎을 동요시키는 것은 결길이 수없이 많고 인심이 갈라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신(宰臣)은 장구하게 진정시켜 가는 계책이 없고 사림(士林)도 고식적으로 관망만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그 천심과 경중에 대해 진작부터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세호가 방면되기를 주선하고 박운이 양이(量移)를 노린 일은 그 자취가 비밀스럽고 변화 무쌍하여 헤아리기 어렵지만, 노상(路上)의 소문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들은 전하의 호오(好惡)가 능히 공정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사정(邪正)과 시비(是非)를 결정할 즈음 혹 갈팡질팡하여 의리의 공정함을 따르지 못하고 공론의 진실함을 다하지 못하실까 염려됩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요사이 대간의 의논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왜 것처럼 소란스러우냐고 한다 합니다. 대체로 대간은 잘못을 탄핵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여,

아무리 미세한 제수(除授)나 명에 대하여도 온당치 못함이 있으면 반드시 거론하여 논핵해야 합니다. 더욱이 근래의 일은 사정(邪正)의 진퇴(進退)와 국가의 안위(安危)가 관계되는데, 어찌 감히 입 다물고 있기를 달게 여겨 그 화(禍)를 조정에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관망하는 자가 것처럼 많기 때문에 조정의 기맥이 완전치 못하고 국가의 대세가 튼튼하지 못하여, 엿보는 자는 더욱 무엄해지고 발호하는 자는 더욱 방자해지니, 어떻게 간봉(奸鋒)을 사전에 꺾고 화란(禍亂)을 미연에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순군(巡軍)이 죄인을 체포하여 도하(都下)에 이르러 며칠동안 지체하다가 늦게야 복명하였으니, 간당을 두둔하고 국위를 말살시켰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하께서는 지금을 어떠한 시기로 보십니까. 사정이 이미 분별되고 시비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궁위(宮闈)를 단속할 필요가 없고 간행(奸倖)을 두절시킬 필요도 없다 하시어, 호오를 명시하여 단호히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호오를 명시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 이미 분별된 사정을 더욱 밝히시고 이미 정해진 시비는 더욱 가리시어 사람을 형상(刑賞)하는 데도 이를 이용하고 사람을 진퇴(進退)하는 데도 이를 이용하되, 시종 한결같이 하여 오래도록 유지하시면, 종묘사직에 더없이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호오를 명시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 궁위를 바꾸고 가정(家政)을 다스리심으로써 궁중이 숙연해지고 안팎이 엄격해지면 요행을 바라는 길이 막히고 반연(攀緣)을 이용하는 선(線)이 두절될 것이며, 청탁도 소용이 없어지고 간알(干謁)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시종 한결같이 하여 오래도록 유지하시면 종묘사직에 더없이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답하였다.

“지금 상소를 보니 매우 간절하고 지당하다.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다. 금부 당상 관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아뢴 대로 하라.”

○乙丑臺諫啓曰臣等聞金克愷被拿而來及到都下不卽就獄遲留數日乃於初八日之昏始現云其尚肆桀驁凌蔑朝廷甚矣請以此並入傳旨推考義禁府都事金麟慶拿克愷而來至都下留連數日不卽復命是輕蔑國法顯媚權奸罪犯甚重請先罷而推考治罪義禁府堂上等判府事柳溥沈彥慶同知事權輓許洽聞麟慶之留連則所當卽啓治罪雖或不聞連山程途三日之內可以往還連山克愷所居之地麟慶發去已過七日亦當啓推其緩慢置而不聞且克愷初八日就獄矣昨日還宮後當卽推鞠而不推今日亦不推之詔獄重事淹然至此非徒緩慢莫甚其意之所在亦未知也請先遞後推仍上疏其略曰頃者權奸盤據于朝盜竊威福腹心黨援締結於內外爪牙鷹犬布列於權要勢焰燻灼國本搖動大柄潛奪于下主勢孤立于上其計慘酷言之痛心唯天惟祖宗默佑聖衷公論所發睿斷如流巨奸老猾相繼屏逐朝廷以清國本以安內而百僚外而四方凡有血氣者莫不相慶矣然而爬搔未盡蟻蝨之脫遺者衆窟穴深幽狐狸之漏網者多交構互煽之尚

隸鼠伏狙伺之不止其所以蔑朝廷輕邦憲無所不至豈不寒心况曹繼商放還之語都下喧譁流聞遠近使物情駭愕人聽疑惑以彼輩奸黠之魁豈不自知厥罪之罔赦然敢爲此言搖撼內外者亦豈非蹊徑之多歧人心之携貳宰執無持久鎮靖之謨士林有姑息觀望之習其於淺深輕重固當揣之而然耳世虎之布置求還朴雲之僥倖量移蹤跡秘昧閃爍難測道路之傳亦云多矣臣等竊恐 殿下之好惡亦未克持循於公正臨邪正是非之間或至依違掣肘不足以遵義理之正盡公論之實也臣等又聞臺諫近日所論或有不悅曰何爲騷擾夫臺諫彈糾爲職雖在差除之細號令之微有所不便則必舉覈不置况近日之事關邪正之進退係國家之安危其敢甘心於循默嫁禍於朝廷乎觀望之人如是其多故朝廷之氣脉不完國家之大勢未固覬覦者益無所憚跋扈者尤有所恣其何以摧奸鋒於欲發消禍亂於將萌歟巡軍拿罪逮至都下俺留數日乃始復 命右奸黨而滅國威亦可見矣不審 殿下以爲此何等機會耶謂之邪正已辨是非已定宮闈不必嚴而奸倖不必杜不明示好惡而痛絕之乎伏願 殿下明好惡以爲之本而益辨已辨之邪正益定已定之是非刑賞人必用是進退人必用是終始惟一持之悠久則國家幸甚 宗社幸甚明好惡爲之本而以正其宮闈以齊其家政使閭閻肅爾內外截然希僥之途塞攀緣之路杜請托無所施干謁無自入終始惟一持之悠久則國家幸甚 宗社幸甚答曰今觀上疏至爲切當予當留念焉禁府堂上等事依啓 《中宗實錄 卷81, 27面》

중종 31년 4월 1일(을유)

○류부(柳溥)를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심언경(沈彦慶)을 우찬성에 제수하였다.

○乙酉○以柳溥爲議政府左贊成沈彦慶爲右贊成 《中宗實錄 卷81, 29面》

중종 31년 4월 2일(병술)

영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의정 김안로(金安老), 우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심언경, 좌참찬 조윤손(曹閔孫), 병조 판서 윤임(尹任), 우참찬 김인손(金麟孫), 한성부 좌윤 윤희평(尹熙平), 우윤 황침(黃琛), 호조 참판 반석평(潘碩枿), 동지중주부사 김호(金湖), 병조 참판 오결(吳潔) 등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동평고(童平古 : 임투의 건너편에 살던 오랑캐임.) 등은 처음부터 우리 나라를 배반할 뜻이 없었는데 지금 내지에 살기를 청한 말을 살펴보니 실정과 사연이 매우 간절하고 절박하여 진실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조상이 살던 땅은 이미 금지되어 철거하였으니 본토로 돌아가려 하여도 또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진실로 용납할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다른 종족이긴 하나 또한 임금의 포용력있는 교화로 보아 궁지에 몰려 오는 자들을 거절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과연 처자식을 모두 데리고 다시 온다면 남쪽 지방의 외딴 섬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구휼하여 안거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소서. 후일 서쪽 변방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또한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로의 원근과 험이(險夷), 부락의 숫자와 강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이니, 군사 행동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화하여 여러 고을에 산재해 있는 자들에게 당초에는 관에서 토지를 지급하고 호조의 장부에 올려 그들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호세(戶稅)와 부역을 면제해 주면서 대수(代數)의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법규를 헤이하게 봉행함에 따라 저들이 멋대로 국경을 드나들 뿐 아니라 저들의 본토와 몰래 통하고 있습니다. 대수의 기한이 지난 후에들이 오히려 귀화하였다는 이름을 가탁하여 관역(官役)을 피하고 있는가 하면 폐지어 촌락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민(良民)들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는 곳을 살피지 않는다면 점차 큰 폐단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일찍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일일이 장부에 의거 조사해서 각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추쇄(推刷)하게 해서 각각 본래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법률을 엄하게 밝혀 통렬히 금궤(禁戢)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여연과 무창을 탐색할 때의 일은, 전쟁에서의 참획의 예가 아니고 바로 항거하는 사람을 포획한 것이니, 논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서 궁시(弓矢)와 마필(馬匹) 등의 물건으로 논상(論賞)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丙戌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左贊成柳溥右贊成沈彥慶左叅贊曹閔孫兵曹判書尹任右叅贊金麟孫漢城府左尹尹熙平右尹黃琛戶曹叅判潘碩枿同知中樞府事金湖兵曹叅判吳潔詣賓廳啓曰童平古林投越邊居胡人等初無叛國之情今觀請居內地之言情辭懇迫似出誠願其父祖所居之地既被禁撤欲還本土則又被侵苦彼此皆礙實無所容彼雖異類亦在王者一視之中以窮來投拒之亦難若果舉妻子更來則分處南方絕島撫恤存接以安其心後日西邊倘有緩急亦可爲嚮導其知道路遠近夷險部落衆寡強弱必審恐或有益於用兵也但向化散置諸邑者當初官給田科置籍該曹俾不得任意遷徙其復戶復役且有代數而官吏奉法弛廢非徒縱意出入潛通本土其代盡之裔猶冒向化之名躲避官役群行村落侵怯良民所在無察寢成巨弊不可不早爲之防令該曹一一憑籍文移刷閱使各還本居嚴申憲條痛加禁戢爲當又啓曰閔迎茂昌體探時事非斬級之例乃捕獲抗拒之人無可議之事令該曹考前例弓矢及馬匹等物論賞可矣傳曰皆如啓

《中宗實錄 卷81, 31面》

중종 31년 5월 12일(병인)

○김근사에게 전교하기를,

“심언광(沈彦光)과 정사룡(鄭士龍)의 글 지은 점수가 똑 같으니 두사람이 모두 삼상(三上)과 차상(次上)이었다. 마땅히 다시 같은 제목으로 글을 짓게 하여, 고하(高下)를 결정케 하라.”

하고, 상이 ‘동정추월(洞庭秋月)’로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서산제설(西山霽雪)’로 오언율시를 짓도록 시제(詩題)를 써서 내렸다. 그리하여 심언광이 1등을 하였고 활 쏘는 일도 끝났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선온(宣醞)을 끝낸 뒤에 이름을 불러 상을 주되, 심언광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정사룡에게는 표피(豹皮) 1벌을 내리고, 그밖에 소세양(蘇世讓)·조인규(趙仁奎)·류부(柳溥)·조사수(趙士秀)·오결(吳潔) 등에게는 각각 현궁(弦弓)을 갖춘 활 1장(張)을 주라. 이상은 글을 지은 자들이다. 관사(觀射)에서 1등인 교서관 부정자(校書館副正字) 남궁 숙(南宮淑)에게는 상가(賞加)하고 그 다음인 김감(金城)·윤계(尹溪)·조희(曹禧)·박자영(朴自英) 등에게는 숙마를 주고, 서위(徐偉)·반석평(潘碩枰)·황기(黃琦)·민선(閔瑄)·최보한(崔輔漢) 등에게는 아마를 주라.”

○丙寅○傳于金謹思曰沈彦光鄭士龍所製等畫兩人皆爲三上次上宜更令作一題決高下上以洞庭秋月五言律詩西山霽雪五言律詩題書而下之於是彦光居首而射事亦畢傳于政院曰畢宣醞後呼名賜給彦光熟馬一匹士龍豹皮一令其餘蘇世讓趙仁奎柳溥趙士秀吳潔等各賜俱弦弓一丁此製述觀射居首校書館副正字南宮淑賞加其次金城尹溪曹禧朴自英等熟馬徐偉潘碩枰黃琦閔瑄崔輔漢等兒馬 《中宗實錄 卷81, 55面》

중종 31년 5월 16일(경오)

상이 동교(東郊)에 행행하여 관가(觀稼)하였다. 승지 상진(尙震)이 김근사(金謹思)의 뜻으로 아뢰기를,

“상께서 타신 말이 너무 빨라 호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위(侍衛)하지 못하니, 사체에 마땅치 못한 듯합니다. 헤아려 보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은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빨리 간다. 이처럼 천천히 행행할 때에는 이 말을 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진이 또 아뢰기를,

“또 종묘(宗廟) 동구(洞口)에 이르러 말에서 내릴 때에 상마대(上馬臺)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 말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기색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길들이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내승(內乘)을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길들이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호종하는 사람들이 뒤에 바짝 따라왔기 때문에 말이 놀라 움직인 것이니 추고하지 말라.”

하고, 또 정원에 전교하기를,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에 왕래하는 배는 통행하라는 명이 없으면 통행하지 못하는데, 금지하지 말고 오르내리게 하도록 해조(該曹)에 이르라.”

하였다. 상이 방포(放炮)와 사어(射御)를 관람하고 또 ‘강정전객(江亭餞客)’으로 칠언을 시를 ‘사정완월(沙汀翫月)’로 오언을 시를 짓도록 시제(詩題)를 내리고 이르기를,

“입시한 사람은 모두 글을 지어 올리되, 다만 영의정과 류부(柳溥)는 과차(課次)를 해야 하니 글을 짓지 말라.”

하였다. 제술(製述)에서 1등인 정사룡(鄭士龍)과 그 다음인 윤인경(尹仁鏡)·황기(黃琦)에게는 활과 화살을 차등 있게 주고, 관혁(貫革)에서 1등인 김전(金澗)에게도 전죽(箭竹) 40개를 주었다. 신시(申時). 상이 환궁하였다.

○庚午 上幸東郊觀稼承旨尚震以金謹思意啓曰御乘馬太疾扈從之人皆未及侍衛於事體似不當請斟酌何如傳曰此馬雖不加鞭自爾太疾如此徐行之時不御可也尚震又啓曰且於宗廟洞口下馬時不入於上馬臺似有不馴之氣此不調習而然也請推內乘傳曰非不調習而然也扈從之人擁逼於後馬自驚動矣勿推傳于政院曰水上水下往來船無通行之令則不得行矣其勿禁之而上下事言于該曹 上觀放炮射御又以江亭餞客七言律詩沙汀翫月五言律詩題下之曰凡入侍之人皆得製進而唯領相及柳溥則爲課次矣勿製製述居首鄭士龍其次尹仁鏡黃琦賜弓箭有差貫革居首金澗亦賜箭竹四十箇申時 上還宮 《中宗實錄 卷81, 59面》

중종 31년 6월 16일(기해)

영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의정 김안로(金安老),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심언경(沈彦慶), 좌참찬 조윤손(曹閏孫), 호조 판서 소세양(蘇世讓), 참판 반석평(潘碩枰)이 서계(書啓)하였다.

“안행량(安行梁)의 공사는 호조만의 뜻이 아니라 온 조정의 논의로 정한 것인데, 지금 상의 분부를 듣고 보니 너무도 황공스럽습니다. 중들을 역사시킬 일을 거론한 것은 애당초 안행량 역사만을 위해서 거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래 불교는 매우 쇠퇴하였으나 중들의 번성함은 숭배할 때에 비하여 백 배만 될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있어서는 자비스런 계율이 없고 국법에 있어서는 도첩(度牒)을 제한하여 억제하는 금법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멋대로 굴지만 절제할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피하고 병역을 피하는 소굴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적의 소굴로 변하여 무덤을 파헤치고 사람을 찢러 죽이는 행위를 대낮에도 기탄없이 저

지릅니다. 이와 같이 흉악하고 사나움이 점점 심해지니 그 습성은 이미 고질화되어 늦추어주면 더욱 심하고 다그치면 환란이 생겨나서 이루 다 제지할 수 없고, 이루 다 죽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찍 막지 않았다가 마침내 도끼와 창을 사용한 뒤에야 평정하게 되었으니 어찌 성상(聖上)에게 큰 누가 아니겠습니까.

무릇 큰 홍수의 범람을 막으려면 먼저 개천을 터주고 도랑을 돌려서 나머지 물이 흐를 수가 있는 뒤에야 무너지고 충돌하는 걱정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간사함을 막고 환란을 없애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간의 깊은 생각과 먼 뜻은 바로 잠잠히 소멸시키고 묵묵히 변화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요, 역사를 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조정의 의논이 모두 일치하여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얕은 생각과 알팍한 지식을 가진 자가 조정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경망하게 한결같이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온 조정의 깊은 계획을 막고자 하니 신들은 그 뜻의 소재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행량 수로로 조운(漕運)하기 어렵다는 것은 예부터 큰 걱정이었으므로, 새로 나무를 파서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기하는 계획은 벌써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고흥산(高荊山)이 맨 먼저 그 계획을 올려 그 기지(基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부 3천 명을 동원하여 4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거의 완공이 되었으나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부터 일을 세우고 계획을 짰다가도 마침내 유의(遊議: 근거 없는 의논)에 동요되고 참소와 비방에 저지되어 일이 이루어질 무렵에 가서 갑자기 폐기되는 것은 모두 이러해서입니다. 이는 멀리 고사(古事)로 증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선 우리 조정(朝廷)을 두고 말하더라도 육진(六鎭)을 설치할 때에 참소하고 반대하는 자가 대궐 뜰에 가득하였어도 위에서 의심하지 않았고 화살이 앓은 자리에 쏟아졌어도 일을 주관하는 신하가 역시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끝내는 성취한 바가 있어 지금에도 힘입고 있습니다. 세종(世宗)의 독신(篤信)함과 주관하는 신하의 굳은 확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중들을 역사(役事)시켜 나무를 굴착하는 세세한 일도 그런데 더구나 육진을 설치하는 큰 일이겠으며, 온 조정에서 여럿이 함께 피한 것도 오히려 이러한데 더구나 한 신하가 세운 계획이겠습니까. 모신(謀臣)과 지사(志士)가 개탄할 일입니다.

이제 안행량을 굴착하는 공사가 완성된다면 조운(漕運)하는 데 침몰하는 걱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가는 뱃사람이 영영 물고기 밥이 되는 환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한 명의 백성도 괴롭히지 않고 조금의 재력도 허비하지 않은 채 그 공로가 만세에 전해지고 혜택이 못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가령 공역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호패(號牌)를 공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노는 인력을 부리는 것이 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긴요함을 놓고 말하더라도 안행량은 중하고 견항(犬項)은 가벼우므로 처음에 견항을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험해 보고 장차 중한 데에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견항은 이미 거행하고 있거니와, 신들은 다만 좋은 일로 여겨 공역에 몰려오는 것만 보았고 아직 폐단이 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또 들으니, 이 역사가 있는 후로 하삼도(下三道)에 머리깎은 도둑이 없어졌고 중들도 호패가 없이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양정(良丁)들은 오히려 뒤에 있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천구(賤口)들도 많이 그 본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장(令章)을 번거롭히지 않고도 악습을 없애고 환속시킬 수 있으니 신들은 다만 그 이로움만 보고 해로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의 작은 폐단으로 큰 공을 가리려고 하니 신들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들을 줄이려다가 도리어 늘리게 된다는 것을 신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견항의 역사에 호패를 받은 자가 5천여 명이니 이밖의 지방에 있는 자가 어찌 그 수의 백 배만 되겠습니까. 이미 역사에 참가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무엇하러 처음부터 호패로 해야겠습니까. 천지에 음양(陰陽)과 사정(邪正)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단의 종교가 중국에 들어온 이래 1천 1백여 년 동안 수시로 성쇠(盛衰)하여 위(魏)나라 때는 모두 베어버렸으나 끝내 근절하지 못하고 역사의 비난만 받았으니 이것은 영영 끊어 버릴 수 없다는 징험입니다. 성인이 웃자리에 있을 때도 다만 물리치고 저지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이제 호패를 받은 5천 명 외에는 다 쇄환하지 못하고 민간으로 몰아낸다면 호패가 있는 자는 아주 적고 호패가 없는 자는 아주 많아서 호패를 가진 자가 호패 없는 자를 이기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간교한 도적들의 소굴을 제지하고 금지하기 어려워 환란이 다시 전과 같아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것이니 이른바 물줄기를 막으면 반드시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일을 정부·육조·한성부 및 중추부에 내려 두루 의논하였으니 이른바 의논이 넓고 계획이 깊다 할 만한데, 한 두마디 말이 갑자기 온 조정의 의논을 억누를 수 있다면 신들은 길가에 집을 짓는 격으로 국가의 계획이 흔들려 사체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김근사와 김안로가 또 아뢰기를,

“전 대관(臺官) 정만중(鄭萬鍾) 등을 체통을 잃은 것으로 파직한 것은 지나쳤습니다. 요즘 또한 사람이 없어 대간과 시종을 할 만한 자가 더욱 없습니다. 만약

큰 일에 관계된 것이라면 사람이 모자라도 파직하여야 하므로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체직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신들만의 뜻이 아니라, 온 조정이 온당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하니, 답하였다.

“전일 전교에서 이른 말은 의정부의 공사(公事)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번 경연에서 논란할 때 ‘견항의 중들을 역사시킨 일은 폐단이 너무 많아서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기가 했다.’ 하고, 또 안행량의 역사를 거행한다면 그 폐단이 견항보다 배나 많을 것이므로 중들을 줄이자는 것이 도리어 늘리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의 뜻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간과 시종들은 물론 재상까지도 그렇게 말하였다. 반석평(潘碩桴)이 그 도(道)의 감사가 되었을 때 직접 보았는데, 안행량은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이므로 견항보다 공력이 배가 든다고 하였다. 조수가 드나들면 많은 사상자(死傷者)가 날 것이다. 호조가 이 의논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닐 터인데 다시 취품하지 않고 갑자기 정부에 보고하자 정부에서는 호조의 보고에 의거하여 처음 논의한 대로 아뢰는 것이니, 어찌 옳지 않은가. 운선(運船)해운 지가 이미 오래어서 일이 급급하지도 않는데 금년에 견항의 역사를 하고 명년에는 안행량의 역사를 거행한다면 이것이 중들이 해마다 하는 큰 역사라 할지라도 어찌 옳은 일인가. 마땅히 시절이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보아 다시 의논해서 하라.

전 대간을 파직한 일은 과연 과중하니 경들의 말이 지당하다. 대간의 논의를 들으니 ‘전 대관들이 체통을 잃은 것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사직하고 한 관원이 사사로운 청탁을 받고 여러 동료들에게 통보하여 대궐에 모였다가 무단히 물러갔다.’ 하고, 이제 홍문관의 의논을 들으니 ‘전 대관들이 스스로가 대관의 체통을 가버려 했으니 전례대로 체직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파직시켜야 된다.’고 하였다. 옳건 그르건간에 한 대관의 일을 가지고 혹은 파직해야 한다고 하고 혹은 서용해야 한다고 하니 정령이 매우 가볍게 되었다. 서용하더라도 의당 참작해서 서용해야겠다.”

○己亥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左贊成柳溥右贊成沈彦慶左叅贊曹閔孫右叅贊金麟孫戶曹判書蘇世讓叅判潘碩桴書啓曰安行梁事非獨戶曹意舉朝議定今聞 上教不勝惶恐竊以役僧之舉初不獨爲此梁役而起近來釋教雖甚衰廢僧徒之繁比崇奉之時不啻百倍在其教無慈悲持戒之律在國法無度牒限抑之禁所在自恣無所制節初焉逃罪竊役之窟穴轉爲無賴淫盜之淵藪以至掘塚刺人白晝無忌兇悍漸張爲習已痼緩之則益滋急之則生患制之不可勝誅之不可盡不早提防終至於煩斧礪勞戕及而後定豈不爲聖明之大累也凡障大水塞橫流必先須開瀆導渠使餘派有所歸然後可以免潰冒衝突之憂防奸杜患亦猶是也其間深思遠慮乃在於潛銷默化不在於爲役此所以朝議僉同初無異論者也薄慮淺識者不知朝廷深意妄欲以

一已私見阻遏舉朝之熟謨臣等不知其意之所存也且安行梁漕運之難自昔大患開鑿新梁避險就安之策在前已曾營略而未就在頃時高荆山首獻其畫移卜他基役三千夫閱四箇月功乃垂成而未訖自古建事設畫終必爲遊議所撓讒謗所沮垂成而旋廢者皆是不暇遠證古事姑以我朝言之營置六鎮之時譖毀盈庭而上不之疑流矢集座而主事之臣亦不爲動故終有所就至今賴之如非世宗之篤信而主臣之牢確則能若是乎役僧鑿梁細事而尚然况置鎮之大乎舉朝僉謀而尚爾况一臣之建畫者哉謀臣志士不能無慨嘆者也今若開梁功遂則非徒轉運無沉沒之憂舟人往來者永免魚腹之患國家不勞一民不費寸力而功流萬世惠及蒸庶設使未就號牌之頒當不及無功遊手之勞何損於國以役之關緊者言之安行爲重犬項爲輕初以犬項爲先者先試於輕將以用重也犬項旣舉臣等只見其樂事赴功之成而未見其爲弊也臣等抑又聞之此役之後下三道髡盜止息僧徒亦知無號牌之難容良丁則猶恐後役之不舉賤口則多還其本籍不煩令章而戰惡還俗臣等只見其利益而不見其害也托言一二小弊欲蔽大功臣等實所未曉也若以爲欲減僧徒而反貽滋蔓則臣等尤竊未解今之役犬項受號牌者五十餘數其在方域者豈止百倍於是哉若能只存已役之數餘悉還俗則彼言誠善初何必號牌爲哉天地之間陰陽邪正不可偏無異教自入中國以來千百餘年隨時盛衰魏明之盡誅終不能絕而祇見譏於青史此不可永絕之驗也聖人在上但使之退伏消沮斯爲美矣今若五千號牌之外不能悉刷而驅還則有牌者至少無牌者極多有牌之不能勝無牌者明矣其奸盜淵藪難以限禁患復如前而亦必有難言之害所謂障水塞流必有潰冒之患者此也事下朝堂政府六曹漢城府并中樞府雜議之可謂議之廣計之深矣一二片言遽足以抑滿朝之議臣等竊恐道傍作室之勢撓奪國謀有妨體統也謹思安老又啓曰前臺官鄭萬鍾等以失體罷之過矣今且乏人臺諫侍從尤無可爲之人若不關於事則雖乏人當罷而不計之矣此似可只適而已非獨臣等之意舉朝皆以爲未便矣答曰前日傳教之言非以政府之公事爲非也頃於經筵論難之除犬項役僧之事弊端甚多至於儒生上疏云又舉安行之役則其弊倍多欲損僧徒之本意反歸於增益之弊非特予意然也臺諫侍從至於宰相亦言之潘碩杵爲其道監司時目覩之安行乃潮水往來之處功倍於犬項云潮水往來則人多死傷戶曹非不聞此議而不更取稟遽報政府政府則據該曹之報依初議粘啓豈不可乎運船已久事非汲汲而今年大舉犬項之役明年又大舉安行之役此雖僧徒連年大役豈可乎當見年歲凶歉更議爲之前臺諫罷職事果重卿等之言至當但聞臺論前臺官等非特失體而已不當辭職而有一員聞私囑通諸僚集闕庭無端退去云今聞弘文館之論前臺官等自輕其臺體不可例遞當罷云是非間以一臺官之事或啓罷或啓即叙政令甚輕雖叙當斟酌以叙

《中宗實錄 卷82, 6面》

중종 31년 7월 17일(경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응사(支應使)³²⁹는 김인손(金麟孫)이 한관(閑官)으로 있기에 시켰더니 이제

는 형조 판서가 되어 사무가 번거롭고 바쁠 것이다. 류부(柳溥)는 전에도 지응사를 맡은 일이 있으니 부(溥)로 고쳐 부표(付標)하라.”

○庚午○傳于政院曰支應使金麟孫在閑官故爲之今爲刑曹判書事務煩劇柳溥前爲支應使以溥改付標可也
《中宗實錄 卷82, 17面》

중종 31년 12월 5일(병술)

김안로가 예조 판서 윤인경과 함께 아뢰기를,

“성균관은 동지사 정사룡과 대사성 이희보가 다 중요한 임무를 받아서 떠났으므로, 남은 동지사 1원(員)은 류부(柳溥)입니다. 류부(柳溥)는 겸직이 많아 여느 때에도 자주 사진(仕進)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상의원(尙衣院)과 사옹원(司饗院)은 매우 일이 많으므로 류부는 이 두 원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성균관에 사진할 수 없는 형세이니, 그러면 성균관의 세 당상이 다 없어집니다. 가르치는 따위의 일이라면 모르겠으나, 사신이 알성(謁聖)³³⁰한다면 수리할 일이 많을 뿐더러 외방(外方)의 유생(儒生)을 모아 예절을 가르치느라 할 일도 매우 많을 것이니, 류부(柳溥)를 체직하고 신공제(申公濟) 등과 같은 산직(散職)³³¹에 있는 사람을 이조를 시켜 가려서 차출하여 성균관에 상사(常仕)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바가 지극히 마땅하다. 류부를 체직하고 신공제를 시켜서 성균관에 상사하게 하라.” 하였다.

○丙戌金安老與禮曹判書尹仁鏡啓曰館同知事鄭士龍大司成李希輔皆受重任而去同知一員卽柳溥也溥多有兼職雖在常時不得頻仕況今尙衣院司饗院甚爲多事溥兼此兩院提調勢不可仕于成均館然則成均館三堂上皆無矣如教誨等事則已矣天使若謁聖則不徒修理多事而已聚會外方儒生教之以禮所爲之事亦甚多請遶柳溥而如申公濟等置散之人令吏曹擇差使之常仕于成均館以治諸事傳曰所啓至當遶柳溥以申公濟爲之而常仕于成均館

《中宗實錄 卷83, 5面》

중종 31년 12월 15일(병신)

정원에 전교하였다.

○류부(柳溥)를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제수하였다.

329) 지응사(支應使) : 궁중과 정부에 행사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차비를 도맡아 주선하던 장관.

330) 알성(謁聖) : 문묘(文廟)에 모신 공자의 소상(塑像)에 배알하는 것.

331) 산직(散職) : 직명(職名)은 있으나 실무가 없는 벼슬.

○丙申○以柳溥爲議政府左贊成

《中宗實錄 卷83, 13面》

중종 31년 12월 17일(무술)

○영의정 김근사, 우의정 윤은보,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심언경, 좌참찬 김인손이 명을 받고 이르니, 전교하기를,

“오늘 좌상이 두 세 번 사직하기를 ‘간원이 아뢰었기 때문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삼공(三公)으로 대제학을 겸하였으니, 모두 중요한 직임인데, 직무를 폐기하게 되므로 사직하는 것입니다.’ 하며 간절히 사퇴하였으므로, 대제학을 갈 것인지를 경(卿)들과 의논하는 것이다.”

하니, 김근사 등이 회계하기를,

“김안로는 다만 미안하므로 그렇게 사퇴하는 것입니다. 삼공을 대제학으로 삼은 것은 지금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에 세조(世祖) 때에는 정인지(鄭麟趾)가, 성종(成宗) 때에는 어세겸(魚世謙)이, 접때는 남곤(南袞)과 이행(李荇)이 다 삼공으로서 하였습니다. 이 직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다른 벼슬에도 인재가 모자라서 채워 차출하기 어려우니, 대제학을 어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직을 들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좌상은 대제학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미안하여 와서 아뢰는 것이나, 조종조 때와 근래에 다 이 전례가 있으니, 과연 갈 수 없겠다.”

하였다. 김근사 이때에 장악원 도제조(掌樂院都提調)였으므로 홀로 아뢰었다.가 아뢰기를,

“천사에게 여악(女樂)을 쓰지 않는다면 남악(男樂)을 써야 하겠으므로, 가동(歌童)·무동(舞童)을 미리 익히라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무동의 관(冠)과 옷이 있기는 하나 관은 모두 해졌으며, 또 무동은 춤을 버려두고 익히지 않은 지 20년이 나 되어 열흘 정도에 쉽게 익히지 못할 듯하니, 무동의 예전 춤을 쓰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천사가 여악을 물리친다면 남악을 쓰려 하였으므로, 가동·무동을 미리 익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근일 익히지 않았다면, 어찌 때에 임박해서 익힐 수 있겠는가. 예전 춤이 아니더라도 지금 춤을 미리 익히도록 하라.”

하고, 김안로에게 전교하였다.

“사퇴하는 뜻은 지극하나, 나도 가볍게 갈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고, 조정에서도 다들 전례가 있으므로 갈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는 가벼운 일이 아니니, 쉽게 갈 수 없다.”

○戊戌○領議政金謹思右議政尹殷輔左贊成柳溥右贊成沈彦慶左叅贊金麟孫承 命至傳

曰今日左相再三辭免曰非以諫院之啓辭之以三公兼大提學俱是重任徒爲曠職而已懇切辭避今此大提學適之乎否與卿等議之耳謹思等回啓曰金安老持以未安故如此辭之矣以三公爲大提學非自今日始也前在世祖朝鄭麟趾成宗朝魚世謙頃者南袞李荇皆以三公爲之此任非人人所爲必惟其人然後爲之況今他職尚且乏人充差爲難大提學豈可輕易適之乎固不宜聽其辭也傳曰左相爲大提學至於累年故未安而來啓耳然祖宗朝及近來皆有此例果不可適也謹思時爲掌樂院都提調故獨啓曰天使不用女樂則當用男樂以歌舞童預習事下教舞童冠服雖有之而冠則盡弊矣且舞童之舞廢而不習今至二十年矣旬日之間似未易習也請勿用舞童舊時之舞傳曰天使若却禮樂則欲用男樂故歌舞童預習之事言之耳然近日若未習則豈可臨時而能習乎雖非舊時之舞以時舞預習可也傳于金安老曰辭免之意至矣予亦已言不可輕適之意朝廷皆言有前例不可適云此非輕事不可容易適之 《中宗實錄 卷83, 14面》

중종 32년 1월 27일(정미)

정원이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진하사와 사은사 등을 동시에 들여보내는 일은, 좌의정 김안로와 우의정 윤은보는 다 이미 의논하여 아뢰었으므로 다시 함께 의논하지 않았고, 오직 영의정 김근사,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심언경이 의논하기를 ‘전일의 의논이 지극히 마땅하다. 또 표문의 말도 존호를 더한 것만을 칭할 수 없다. 이제 구묘를 이루고 존호를 더한 일들을 중국에서 한 종이에 써서 천하에 반유할 것이므로, 구묘를 버려두고 휘호만을 칭할 수 없으니, 두 가지 일을 모두 칭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을 사간원을 불러서 말하라.”

○丁未政院以承文院提調意啓曰進賀謝恩等使同時入送事左議政金安老右議政尹殷輔皆已議政故不復與議而唯領議政金謹思左贊成柳溥右贊成沈彦慶議曰前日之議至當且表辭亦不可獨稱加尊號也今成九廟加尊號等事中原同書一紙頒諭天下不可捨九廟獨稱徽號也二事並稱至當傳曰所啓之意招司諫院言之 《中宗實錄 卷83, 45面》

중종 32년 3월 14일(계사)

○정원이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 류부(柳溥)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전에 천사를 경회루로 초청하여 잔치할 때면 더러는 다락으로 올라가 관망(觀望)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깔 자리 및 과반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초청하여 잔치 할 때에는 다락 위에서 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한갓 경회루 위에서 만이 아니다. 천사가 후원(後苑)에서 산보(散步)하고자 한다면, 취로정(翠露亭) 등과 같은 모든 곳에서 쓸 깔개와 과반 등도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癸巳○政院以司饗院提調柳溥意啓曰前者天使於慶會樓請宴時或有登樓觀望之事則鋪陳及果盤等物未及卒辦今日請宴時樓上諸緣並爲預備何如傳曰非徒慶會樓上天使若欲散步於後苑則如翠露亭等諸處其鋪陳果般等亦爲預備可也

《中宗實錄 卷84, 20面》

중종 32년 5월 6일(갑신)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류부(柳溥), 예조 판서 윤인경(尹仁鏡), 경기 관찰사 김희열(金希說)이 산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헌릉(獻陵) 근처 8~9곳을 보았는데 다 쓰지 못하겠고, 희릉(禧陵) 2~3리 쯤에 있는 웅암(瓮巖)의 언덕이 쓸 만합니다. 산은 감수(坎水 : 북방(北方))에 자좌오향(子坐午向)이고 수파(水破)는 이록(二祿)인데, 청룡(靑龍)³³²이 낮은 듯하나 외청룡(外靑龍)이 첩첩이 싸였으니 역시 무방한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내청룡(內靑龍)이 낮더라도 외청룡이 있으면 썼습니다. 혈(穴) 끝에 비록 돌이 있으나 바로 지상에 있는 것을 제거하면 무방하고, 또 혈 뒤 1백 보(步) 쯤에 구덩이가 있지만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맥(地脈)이 통하지 못할 데는 아니니, 보토(補土)만 해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단지 주산(主山) 근처에 잔돌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지상에는 돌이 있더라도 지하에는 없을 수도 있고, 지상에는 돌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하에는 있을 수도 있으니, 금정(金井)만 파보아서는 돌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취적동(吹笛洞)은 희릉의 남산(南山) 화소(火巢)³³³ 밖에 있으니, 범안(凡眼)으로 보아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임산(壬山 : 북방에 위치한 산)에 자좌오향(子坐午向)이요, 수파(水破)는 삼문곡(三文曲)인데, 단, 화산(火山)³³⁴인 것입니다. 금년은 연극(年克)³³⁵이니, 명년에 쓰면 매우 좋습니다. 상지관이, 간산(看山)하여 이와 같은 땅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합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명년 2월이 바로 길삭(吉朔 : 좋은 달)이라 하니, 그

332) 청룡(靑龍) : 주산(主山)에서 갈라져 나간 왼쪽의 산맥. 산맥이 여럿 있을 경우는 내청룡(內靑龍)·외청룡(外靑龍)으로 구분해 일컫기도 한다.

333) 화소(火巢) : 산불을 막기 위해 능원(陵園) 등의 해자(垓子) 밖에 있는 숲을 불살라 버린 곳.

334) 화산(火山) : 오행(五行) 중에서 화(火)에 속한 산.

335) 연극(年克) : 음양가(陰陽家)의 말로, 그 해 운수가 나쁘다는 뜻. 연기(年忌)와 같은 말.

때에 쓰면 무방할 듯하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신이 보기로는 주산(主山)·안산(眼山)³³⁶·청룡(靑龍)·백호(白虎)³³⁷가 모두 단정하여 그 형세가 마치 공수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언덕 위에는 고총(古冢)이 몇 군데 있고 주산 근처에는 유생(儒生) 우성윤(禹成允)의 묘가 있어 장사한 지 겨우 3년이 지났는데, 명당(明堂)은 아니었습니다. 전례에, 다른 묘지가 있더라도 만일 나라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상관하지 않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상 두 산을 그림으로 그려서 아뢰는 바입니다.”

○甲申○觀象監提調柳溥禮曹判書尹仁鏡京畿觀察使金希說還自看山而啓曰獻陵近處八九處見之皆不可用禧陵二三里許瓮巖之原可用山則坎水子坐午向水破則二祿而靑龍似低然外靑龍疊疊亦不妨常時內靑龍雖低而有外靑龍則用之矣穴端雖有石而乃在地上者去之則無妨且穴後百步許有坑塹而又非天成乃因路而成焉者也地脉不至於不通補土則無妨但主山近處小石多在焉大抵地上雖有石而地下則或無矣地上雖不見石而地下則或有之矣穿金井而石之有無未可知也吹笛洞在禧陵南山火巢之外以凡眼見之亦爲最好壬山而子坐午向水破三文曲但火山也今年則年克明年用之則甚好也相地官以爲看山而得如此之地甚難若不得之於他處則明年二月乃吉朔也云其時用之恐無妨故啓之以臣見之主山眠山靑龍白虎並皆端正勢若拱袖也且其原上有古塚數處而主山近處有儒生禹成允之墓葬之纔過三年而明堂則異矣前例雖有他墓之地若國用則不計而用之矣故右二山圖形以啓

《中宗實錄 卷85, 5面》

중종 32년 6월 4일(신해)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의정부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득정은 장하에서 죽고 자복하지 않았다. 성담기는 비록 가형한다 하더라도 높고 혼매한 사람이니, 그 자백한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만일 가벼운 법을 가한다면 범죄 관계가 중대하므로 형벌을 잘못 적용했다는 책망을 들을까 염려되고, 만일 큰 법으로 다스린다면 일에 의심점이 많으므로 ‘가벼운 쪽으로 다스려야 한다.’³³⁸는 뜻에 크게 어긋나니 대관절 어떻게 조율해야 중도를 얻겠는가?”[중략]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336) 안산(眼山) : 맞은 편에 있는 산. 풍수학상 주산(主山)·청룡(靑龍)·백호(白虎)와 함께 요소로 꼽는다. 안산(案山).

337) 백호(白虎) :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갈려 나간 산맥. 여러 산맥이 있을 경우엔 내백호·외백호로 구분해 말한다.

338) 가벼운……한다 : 《書經 大禹謨》에 “죄가 의심스럽거든 가벼운 쪽으로 다스리고 공이 의심스럽거든 후한 쪽으로 치하할 것이니,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법을 쓰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낫다.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한 데서 온 말이다.

“희릉 자리를 흥지에다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들 분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승복을 받지 못했다 해도 증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의 분부처럼 비록 모반대역임을 분명히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실정을 잡은 다음에 죄를 정하는 것이 예입니다. 지금 별로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한갓 인심의 울분만을 감안하여 얼른 동일한 죄로 정해버린다면 율법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번 그 단서를 열어 놓으면 후일의 폐단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담기(成聃紀)는 비록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를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고 있으니, 지금 다시 신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실정을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간이 인심의 울분을 감안하여 율법대로 죄를 정하려고 하니, 위에서 마땅히 참작해서 정할 일입니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추신하지 말고 죄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辛亥 上御思政殿引見議政府堂上 上曰黃得正死於杖下而不服成聃紀雖加刑老鈍茫昧之人也安足取信乎若加輕典則所關重大恐失於不經若正大法則事多有疑大非惟輕之意將何照律而得中[中略]

左贊成柳溥曰禧陵卜兆之犯凶孰不憤心雖不承服宜加重典雖然果如上教雖明知謀叛大逆必得其情然後定罪例也今別無明驗而徒因物情之憤遽以一罪定之不但不合於律一開其端後弊難救成聃紀雖不加刑不省人事今雖更訊必不得其情雖然臺諫因物情欲依律定罪自上當酌定耳[中略]

上曰然則不推而定罪可也

《中宗實錄 卷85, 16面》

중종 32년 6월 8일(을묘)

영의정 김근사, 우의정 윤은보, 좌찬성(左贊成) 류부(柳溥), 우찬성 심언경, 좌참찬 권예(權輓) 좌의정 김안로는 김전의 조카이므로 참여하여 의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가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왔다. 근사 등이 아뢰기를,

“정광필 등의 일은 전일 신들과 의논하실 때나 면대하실 때에 신들은 공사(公事)의 뜻을 가지고 아뢰었을 뿐이었는데 대간이 불공평한 사심을 가져 모유(謀猷)에 올바름을 잃고 의죄(議罪)에 공평하지 못했다고 하니, 신하로서 나라를 위함에 불성실함이, 올바름을 잃고 공평하지 못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바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논사(論事)의 처지에 있으므로 말은 비록 그와 같이 했을지라도 어찌 진

심으로 한 말이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합문 밖으로 오라.”
하고, 따라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이미 대간을 패초하도록 하였으니, 지금 필시 대궐에 나왔을 것이다. 대신을 면대하고 나서 마땅히 대간에 답할 것이니, 명을 기다리게 하라.”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김근사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전의 일에 대하여 어제 정부에 수의(收議)하였더니, 대략은 같았으나 아직도 귀일되지 못하고 있다. 대간이 사직하려 하기 때문에 귀일시켜서 답해 주려 하니 이것을 의논하라.

대신은 김전의 죄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대간은 죄는 같은데 율법을 달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니, 그의 논이 지당하다. 그러나 김전의 고신을 빼앗은 것은 다른 사람과 같게 하고 오직 아들 금고하는 것만은 동일하지 않게 한 이유는 대개 전일에는 대역으로 조율하고 연좌하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낮추어 적용하고 친아들만 금고하였던 것이고, 그 뒤에는 율을 고쳐 낮추어서 적용하니 친아들을 금고하는 것은 바로 율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대간은 전일 이미 금고한 것을 도로 풀어주지 않으려고 논집해 마지 않는 것이다. 김전은 유삼천리(流三千里)에 적용되었으니, 그 아들을 금고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율법 밖의 일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시원 하겠지만 반드시 후세의 기롱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미 금고된 다른 사람의 친아들과 함께 풀어 준다면 분명히 죄는 같은데 율을 달리한다는 논이 없을 것이다. 그 중도를 얻는다면 비록 열 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병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형벌을 잘못 적용하는 실책에 대한 기롱이 없게 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겠는가?”[중략]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전에 이미 그 아들을 금고했다가 뒤에 곧 개정하니, 대간의 논의는 아마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금고하는 일은 모두 율허하시고 김전의 아들을 금고하는 일은 유독 율허하지 않고 난처하게 여기기까지 하신 때문에 논집해 마지 않는 모양입니다. 위에서 ‘율 밖의 일이다. 그 단서를 한 번 열어놓으면 후일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셨으니,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여러 날을 합문에 엮드려 있으니, 그들이 율 밖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은 아닐 터인데, 따로 들은 바가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 사직하고 있으니, 끝내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중략]

상이 일렀다.

“그렇다면 전지를 고친 다음에야 반드시 대중의 염원에 합할 것이다.”

○乙卯領議政金謹思右議政尹殷輔左贊成柳溥右贊成沈彦慶右叅贊權輓左議政金安老以證

之姪子難於叅議托病不來承 命來賓廳謹思等啓曰鄭光弼等事前日下議及面對時臣等以公事之意啓之而已臺諫以爲有偏係之私謀猷失正議罪不公人臣爲國不誠至於失正不公乃大罪也其何以在職請辭傳曰臺諫在論事之地言雖如彼庸有情乎勿辭來閣門之外因傳于政院曰昨日已令牌招臺諫今必詣闕矣面對後當答臺諫其令待命○上御思政殿引見金謹思等上曰金詮事昨者收議于政府大槩雖同尚未歸一臺諫辭職故欲歸一而答之以此議之金詮之罪大臣以爲有間於他人而臺諫以罪同律異爲未便其論至當然詮之奪告身則同於他人而唯錮子不同蓋前者以大逆照律而有緣坐之文故降之而只錮親子也厥後改律降照則禁錮親子乃律外之事也然臺諫以前已禁錮不欲還釋執之而不已金詮以流三千里之罪不可以禁錮其子也大抵律外之事雖快於一時必有後世之議若並與他人親子已錮者而釋之則必無罪同律異之論也要得其中雖十易之不爲病如欲無失刑之譏何以爲之[中略]

柳溥曰前旣禁錮其子而後乃改之臺諫之論蓋由於此而他人之子禁錮事並皆允之詮之子禁錮事獨不依允至於留難故論之不已自上以爲律外之事一開其端恐有後弊 上教至當然臺諫累日伏閣其爲律外非不計也恐別有所聞也况今辭職終不可不從其言[中略]

上曰然則改傳旨然後必合於物情也

《中宗實錄 卷85, 21面》

중종 32년 8월 5일(신해)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병조의 군정(軍政)이 번다하고 기무(機務)가 또한 중합니다. 판서(判書) 류부(柳溥)는 재능과 기량이 합당치 않으니 체직하소서. 함경감사 반석평(潘碩枰)은 비록 병이 나서 정사(呈辭: 사직(辭職)·청가(請暇) 등을 관(官)에 신청하는 것)했다더라도 본래 체직하라는 명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멋대로 방면(方面)의 임무를 버리고 편한 대로 움직였으며, 서장(書狀)의 말투도 매우 불공하였으니 이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정례로 추문해서는 안 되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문하소서.[중략]

하니, 모두 아뢴 대로 윤택하였다.

○辛亥○臺諫啓前事不允憲府又啓曰兵曹軍政浩繁機務亦重判書柳溥才器不合請適咸鏡監司潘碩枰雖得病呈辭而固當待其適命擅棄方面重任任便去就書狀之辭亦極不恭是豈人臣之道乎不可例推請先罷後推[中略]

皆依允

《中宗實錄 卷85, 41面》

중종 32년 10월 24일(경오)

진교하기를,

“어제 말하려 했는데 소란하여 하지 못하였다. 보덕(輔德)은 체직해야 한다. 수

령이 많이 비었으니 오늘은 비록 날이 저물었지만 이조·병조의 당상을 명초하여 정사(政事)를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한참 뒤에 다시 전교하였다.

“호조·공조·형조의 참판이 비었는데 형조와 공조는 비록 꺾일되더라도 다른 당상이 있다. 호조 참판은 으레 채용감 제조(濟用監提調)를 겸하는데 만약 천사(天使)라도 나오게 되면 모든 일이 매우 긴급하게 된다. 우승지(右承旨) 박수량(朴守良)은 통정(通政)으로 오른 지가 비록 오래지 않았으나 출신(出身)한 지 이미 오래이니, 참판이 되어도 무방하다. 사간 채낙(蔡洛)을 승지로 올려 제수하라. 채낙은 자급이 비록 낮으나 전에도 사간이 당상관으로 오른 자가 있었다.”

사신은 논한다.

채낙은 김안로와 절친한 사람이다. 상이 곧 채낙이 김안로를 탄핵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채낙을 특별히 올려 대간의 반열에 있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사헌 양연(梁淵), 집의 안사언(安士彦), 장령 한숙(韓淑)·이몽필(李夢弼), 헌납 최보한(崔輔漢), 지평 정대년(鄭大年)·이원손(李元孫), 정언 정응두(丁應斗)·이승효(李承孝)가 아뢰기를,

“좌의정 김안로는 흉악하고 사독함이 무상하여 탄핵할 가치도 없습니다. 몰래 재상의 지위를 차지하여 위복(威福)의 권한을 마음대로 농간하고, 조정의 중대한 의논은 모두 자기가 내놓고 공론이라 핑계하여 제 욕심을 채웠습니다.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고,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출시키며, 눈 한 번 흘려본 원한만 있어도 반드시 몰래 귀역의 독을 뱉는데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반드시 맞히므로, 조정의 높고 낮은 신하가 그 칼날을 당하지 못하고 전갈의 독처럼 여겨 숨을 죽이고 발을 포개 디디며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 김안로에게 미치면 눈을 감고 입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세가 치열하여 거리낌없이 더욱 방자했습니다.

안으로 조정의 백사(百司)와 밖으로는 방백(方伯)·수령(守令)이 모두 약간 중요한 공사만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품의한 후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상(卿相)이나 대간·시종의 직에 있는 자칭 강직하다고 이르는 선비로서 탐악하고 간특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를 피하지 못하여 마음속으로는 그르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따라서 모두 그를 옳다고 했습니다. 비록 친척인 사람일지라도 그의 악을 알고도 말을 하지 못하여 구차하게 따르며 받드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외의 신민이 모두 통분해 한 지 오래여서 마음 속으로 복종해 악의 무리가 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께서야 어찌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다 살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대세가 이미 그의 손에 기울어서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 윤원로 등의 흉악한 계책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이니 그 악이 극에 이르러 죄를 주기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으니, 종사를 위해 사사로운 은혜를 끊으시면 한 나라의 신민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모함한다.’고 말한 윤원로 등의 본의는 김안로의 부도(不道)한 형상을 가리킨 것인데 김안로가 자기에게 해당된 말임을 감쪽같이 숨기고 도리어 사람을 해친다고 칭탁하여 사람에게 전파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 실로 사람의 화를 재촉하였으니, 이는 역시 김안로의 간사한 계책이었습니다. 신하의 최악이 이처럼 극에 이르러 잠시라도 도성 안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 속히 절도(絶島)로 멀리 내치셔서 인심을 쾌하게 하시고, 조정을 안정시키소서. 신들이 대간의 열에 있으면서, 이런 형상을 환히 알고도 화를 피하느라 끝내 말 없이 다 계달하지 않아 나라 일을 그르친다면 비록 오늘은 목숨을 보전하겠으나 후일에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 김근사는 김안로와 같은 성씨로 서로 좋아하는 친척인데 그 사람의 간사한 형상을 잘 알고도 자신이 나라 일을 담당하지 않고 끝내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부(府)에 있으면서 아뢰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라도, 조정의 큰 일을 수상(首相)을 제쳐두고 먼저 아뢰 수 없어서 묵묵히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김근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김근사 역시 수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이 매우 경악스럽다. 그 사람을 내가 어찌 신임하지 않았겠는가. 공론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을 터이니, 아뢴 대로 멀리 내치는 것이 옳다. 또 ‘넘어지려는데도 붙들지 않고, 위태로운데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전일 경연(經筵)에서 말하였다. 김근사는 김안로처럼 심하지 않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다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체직만 해서는 안 되니 파직해야 한다.”

하였다. 양연 등이 다시 아뢰기를,

“김안로는 간웅(奸雄)의 우두머리여서 그 변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라도 늦출 수 없으니 즉시 잡아서 절도(絶島)에 안치시켜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속히 당직 낭관(郎官)에게 명하여 성 밖으로 내보낸 후 장소를 정하는 것이 옳다.”

사신은 논한다.

양사(兩司)에서 김안로의 사독함과 권세를 독차지한 죄가 극악하다는 것과, 김근사가 악의 무리라는 형상을 자세히 아뢰자, 상이 즉시 윤허하였다. 이때 양

연이 대사헌으로 이 의논을 먼저 주장한 것은 왕의 밀지(密旨)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보다 며칠 전에 상이 경연에서 ‘위태한데도 붙들지 않으니 그런 재상을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말을 하였고 또 우의정 윤은보에게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조정에 사람이 없음을 걱정한다는 뜻을 극론하였는데, 이는 대개 상이 김안로의 죄악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교시를 내려 조정에 은미하게 보인 것이다.

또 논한다.

김안로가 윤원로 등이 장차 자기를 해칠 것을 알고는 공론을 칭탁하여 사림에 전파하여 윤원로 등을 정죄(定罪)하였다. 윤원로 등이 김안로의 흉사하고 부도한 죄상을 몰래 상께 아뢰니, 상께서 매우 두려워하여 무사(武士)를 시켜서 김안로의 무리를 박살하려 했는데, 초친(椒親 : 왕비의 친척) 윤안인(尹安仁)등과 의논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윤임과 윤안인을 시켜 은밀히 양연에게 교시하였다. 양연이 즉시 양사를 거느리고 아뢰었는데 김안로의 일은 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일이 조정에서 나오지 않고 외척에게서 나왔으므로 정대(正大)하지 못하다 해서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양연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경들을 면대하고자 하는데 다시 그 일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뜻이 어떠한지 보고자 해서이다. 윤은보(尹殷輔 : 우의정) · 류부(柳溥 : 좌찬성) · 심언경(沈彦慶 : 우찬성) · 소세양(蘇世讓 : 이조 판서) · 윤임(尹任 : 한성부 판윤) · 윤인경(尹仁鏡 : 호조 판서) · 김인손(金麟孫 : 예조 판서) · 정백봉(鄭百朋 : 공조 판서) · 윤안인(尹安仁 : 병조 참판)을 부르라.”

하고는,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를,

“육경을 모두 부르되 형조 판서 오준(吳準)을 부르지 않음은 그가 김안로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반드시 시비를 자상하게 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승지들은 이 뜻을 알라.”

하였다. 얼마 후 윤은보 등이 명을 받들고 합문(閣門) 밖에 들어왔다. 상이 선정전(宣政殿 : 도승지 임백령(林百齡), 주서 최희맹(崔希孟), 대교 권철(權轍), 검열 남응운(南應雲)이 입시하였다.)에서 면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일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간이 반드시 대소 신료들의 뜻을 합하여 발설한 것인데 다른 일은 망설여도 되지만 이는 공론이 일어났고 관계된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대체로 국권(國權)은 의당 위에 있어야지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권간(權奸)이 있어 큰 권력을 농간하면 불쫓는 자가 많게 되니 나라의 대세가 어찌 위

태롭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조정의 큰 일이 모두 자기 손에 나와,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고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출시키니 어찌 신하의 도리어겠는가. 지금 시비를 크게 정하고자 경들을 불러 면전에서 의논하는 것이니, 각기 생각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 내가 부덕하여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두워서 매양 이런 일을 당하니 참으로 부끄럽다. 시비를 정하려면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채납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들은 모두 말하라.”〔중략〕

류부가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위복의 권한이 상계 있으면 국가가 편안하고, 아랫사람에게 있으면 위망이 곧 이르게 됩니다. 지금 대간이 조정의 공론을 가지고 아뢴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상께서 쾌히 따르시고 의심하지 않으셨으니 실로 나라의 경사입니다.”

하고, 심언경이 아뢰기를,

“양사가 어찌 우연히 헤아려 아뢰었겠습니까. 공론이 답답하게 여긴 지 오래였는데 이제야 발론되었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러하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이 지경으로 국맥(國脈)이 점차 손상되니 보고 듣기에 해괴합니다. 대간은 비록 부득이해서 그렇겠지만 늘 이러하면 국맥이 점차로 손상되어 끝내 아무 이익이 없을까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개혁하는 것이다. 국맥이 손상되는 것을 난들 어찌 마음 편히 여기겠는가. 백관(百官)이 각기 자기 직책을 다하여 상하가 화평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느 겨를에 국맥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위급한 일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庚午傳曰昨欲言之因擾未能也輔德當違守令多闕今日雖晏命招吏兵曹堂上爲政可也已而又傳曰戶曹工曹刑曹叅判有闕刑工則雖有闕員有他堂上乎曹叅判則例兼濟用監提調天使若又出來則諸事甚緊其以右承旨朴守良爲之守良陞通政雖不允出身已久雖爲叅判無妨以司諫蔡洛超爲承旨洛之資級雖卑然前亦有以司諫陞爲堂上者史臣曰洛乃安老切親也蓋上知將劾安老故特陞蔡洛使不在諫列○大司憲梁淵執義安士彥掌令韓淑李夢弼獻納崔漢輔持平鄭大年李元孫正言丁應斗李承孝啓曰左議政金安老其兇邪毒害無狀不暇殫論竊據相位擅弄威福之權朝廷重議皆自己出托爲公論圖濟己私異己者斥之附己者進之少有睚眦潛射鬼域之毒如影響必中朝廷大小莫當其鋒視爲虺螫毒藥重息累足惴惴危懼語及安老徒爲寓目莫敢開口勢焰已成益肆無忌內而朝廷百司外而方伯守令小有關重公事則必稟可而行雖職在卿相臺諫侍從自謂剛直之士憤疾貪邪奸慝者猶不能自避心非而面從者皆是雖親

戚之人亦知其惡而不能發言苟從其事者多有之中外臣民無不痛憤者久矣無一人心服黨惡者自上豈能盡燭此人肝膽乎國之大勢已傾於其手岌岌殆矣今此元老等兇邪之計所不忍道其惡極矣當罪無疑一國臣民咸服爲宗社忍斷私恩也但傾陷士林之語則元老等本意乃在安老不道之狀而安老全諱逼己之跡反托士林之害播言士林陰濟己私實促士林之禍此安老亦一奸計也人臣罪惡至於此極不可一刻留在都下請速遠竄絕島以快人心以安朝廷臣等忝臺諫之列洞知如此之狀避禍終默不盡啓達以誤國事則雖苟保頑命於今日其無後日之斧鉞乎領議政金謹思以安老同姓相好之親深知此人奸狀而不以身當國事竟不啓達雖有同在相府欲啓之者朝廷大事捨首相不可先發悠悠默默至于今日者此謹思之罪也謹思亦不可在首相之位請亟遫之傳曰此事至爲驚駭此人予豈不信任乎公論之發必有其源如啓遠竄可也且顛而不扶危而不持之語予於前日經筵言之謹思不如安老之甚予亦豈不知之然居首相之位不盡其職惡得無罪不可只遫其職罷之可也淵等再啓曰此人奸雄之魁變出難測不可一刻緩也卽刻拿出絕島安置以定人心傳曰速令當直郎官拿出城外後定處可也史臣曰兩司極陳安老邪毒專權罪大惡極謹思黨惡之狀一上卽允時梁淵爲大司憲實倡此議承密旨也云前此數日上於經筵發危而不持將焉用彼相之語且下備忘記于右議政尹殷輔極論朝廷乏人憂念之意蓋上深燭安老罪惡故有是教微示朝廷又曰安老知元老等將陷害其身托以公論播於士林定罪元老等元老等以安老兇邪不道之狀潛達於上上甚危懼欲令武士縛殺其類與椒親尹安仁等議之而不果潛令尹任安仁教于梁淵淵卽率兩司啓之安老之事人無不快者而但事不出朝廷出於外戚不能正大識者恨之○傳于梁淵等曰予欲面對卿等非爲更議此事欲觀羣情之何如耳招尹殷輔右議政柳溥左贊成沈彥慶右贊成蘇世讓吏曹判書尹任漢城府判尹尹仁鏡戶曹判書金麟孫禮曹判書鄭百朋工曹判書尹安仁兵曹叅判仍傳于政院曰六卿皆命招而不招刑曹判書吳準者乃安老切親也必不能盡陳是非故不招矣承旨等其知之俄而尹殷輔等承命詣閣門之外上面對於宣政殿都承旨林百齡注書崔希孟待教權轍檢閱南應雲入侍上曰此事非一朝一夕而發臺諫必合大小羣情而發之也他餘事則可留難而此則公論之發所關至大故予不留難大抵國權宜在於上而不宜在下有權奸竊弄大柄則趨附者多國之大勢豈不殆哉况朝廷大事盡出於己異己者斥之附己者進之豈人臣之道乎今欲大定是非故招卿等面議各陳所懷無少隱諱予以否德昧於任人之道每致如此良用赧赧欲定是非則不可不博採羣議卿等其盡言之[中略]

柳溥曰上教至當威福在上則國家安而在下則危亡立至今臺諫持朝廷公論而啓之是豈偶然自上快從勿疑實是邦家之慶彥慶曰兩司豈偶然計而啓之公論久鬱至此始發士林之意如此不可不革而改之然每若如是國脉漸傷聞見亦駭矣臺諫雖不得不爾每若如此國脉則漸傷而恐終無益也上曰此言當矣然不得已改革國脉之傷予豈安心哉百官各守其職上下和平則豈有是事事至於此則何暇慮國脉之傷而不救其危急也

《中宗實錄 卷85, 67面》

중종 32년 10월 26일(임신)

○윤은보(尹殷輔)를 의정부 좌의정에, 류부(柳溥)를 우의정(右議政)에, 정백봉(鄭百朋)을 형조 판서에, 심언광(沈彦光)을 공조 판서에, 이귀령(李龜齡)을 호조 참판에 제수하였다.

○壬申○以尹殷輔爲議政府左議政柳溥爲右議政鄭百朋爲刑曹判書沈彦光爲工曹判書李龜齡爲戶曹參判
《中宗實錄 卷85, 78面》

중종 32년 10월 27일(계유)

대간 전원이 아뢰기를,

“하늘에 닿은 죄를 지은 악인은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으며, 임금을 업신여긴 자와는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으니, 공론을 따르시어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근일의 변은 오로지 김안로 한 사람 때문인데, 악을 조장한 무리들은 이미 치죄하였으니 하찮은 지엽적인 무리는 일일이 치죄해서는 안 된다. 경들이 부득이해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을 논계한 것이다. 이후로는 인심이 진정되고 조정도 화평할 것이다. 김안로가 비록 중한 죄를 졌지만 위리안치를 한다면 겨우 실날 같은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다. 대신의 반열에 있던 자를 차마 갑자기 중형에 처할 수는 없다. 경들의 우려는 반드시 ‘근래에 인물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겨우 빠져 나왔는데 그 호랑이가 만약 그대로 있으면 뒤에 큰 해가 있게 된다.’고 멀리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조정이 당당한데 다른 일이 있겠는가.”[중략]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김안로는 임금을 업신여긴 적이니 왕법(王法)을 안로 한 사람 때문에 굽힐 수는 없습니다. 속히 쾌단하여 여론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제 대신들을 면대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좌의정 윤은보와 우의정(右議政)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육조의 당상을 모두 면대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세종조 때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현상(賢相)이었는데 밤중에 흑시 불러 나라 일을 물으면 비록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더라도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채탐(採探)하여 아뢰었었다. 이제 육조가 다 들어오면 소란스러울 듯하다. 다만 윤안인은 아뢰는 일이 있으니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윤은보·류부(柳溥)·윤안인, 도승지 임백령(林百齡), 기사관(記事官) 임형수(林亨秀)·이무강(李無疆)·남응운(南應雲)이 입시하였다. 상이 내관(內官)을 시켜 윤안인이 써서 아뢰는 글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임백령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금부에서 아뢰는 뜻을 보니 허항과 채무택이 먼저 서울집에 와 있고, 허흡(許洽) 역시 왔다 한다. 상(喪)을 당한 사람은 의당 여막에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이는 반드시 김안로가 불러 온 것이나, 별다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불문에 부친 것이다. 이로 본다면, 허경이 몰래 허항의 집에 간 것은 매우 사특하므로 조옥에 가두라 명하였다.”[중략]

윤안인이 아뢰기를,

“눈으로 본 일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신이 허흡(許洽)과 승지도 함께 있었는데, 그 때 국휼(國恤 :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상이다.)이 있어 상이 효경전(孝敬殿)에서 제사를 지내 상하가 모두 치재(致齋)하고 있어서 신하라면 누구나 큰 일이 있더라도 연고를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흡은 공청에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아버지허확(許確)가 삼척으로부터 와 평구(平丘)에 묵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허흡은 좌승지요, 정옥형(丁玉亨)이 도승지였는데 억지로 금할 수 없어 평구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친제(親祭)하는 날은 아버지가 혹 병이 위급하다면 가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아무 탈이 없었으니, 제사 후에 가 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허흡의 가노(家奴) 아들이 이웃의 유생(儒生)을 때렸으므로, 형조에서 나장(羅將)을 보내 그 종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허흡이 노발대발하여 그 나장을 의금부에다 가두었습니다. 허흡이 금부당상이었다. 금부는 바로 조옥(詔獄)인데 허흡이 어찌 거기다 사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허항이 류예신(柳禮臣)의 아들류함(柳涵)의 여종을 빼앗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였습니다. 그 때 류관(柳灌)이 형조 판서로 있었는데 그 옥사를 다스리면서 그런 실정을 알고는 시비를 가리려 하자, 허항이 채무택을 사주하여 류관을 아뢰어 파직시켰습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때 박수량(朴守良)을 보고 그 일을 물었더니, 수량은 ‘경중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류예신의 아들을 미워해서이니 방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류부(柳溥)는 류예신과 가까운 친척이라 곤란하겠지만, 윤은보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류예신(柳禮臣)의 아들이 그 종의 일 때문에 전가사변(全家徙邊)되었고, 함창훈도의 사변(徙邊)은 유사가 공사(公事)를 만들었는데 나도 그것이 미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김안로가 당시 대신이었기 때문에 아뢰는 대로 윤택한 것이

다. 옛날 남곤(南袞)과 권균(權鈞)이 김안로가 교사하여 반드시 조정을 그르칠 것을 알고는 외방으로 내쳤었다. 방송되어 돌아온 후에는 행여 징계됨이 있는가 하였더니 더욱 방사(放肆)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이행(李荇)과 정광필(鄭光弼)이 오늘의 화를 알고 배척하려 하다가 도리어 죄를 입었고, 홍문관의 두 사람 김섭(金銛)은 직제학이었고 김만균(金萬鈞)은 교리였다. 또 그 때문에 죄를 입어 체직되었다. 한 예조 판서의 일로 김안로가 적소에서 돌아와 예조 판서가 되자 조정이 체직하라고 논박하였다. 조계상(曹繼商)·김극성(金克成)·유여림(兪汝霖) 등이 일시에 찬축을 당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변을 미리 알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홍섭(洪漚) 부자부(父)는 홍언필(洪彦弼)이다. 또 허항이 사적인 분노로 죄를 주었는데, 홍섭은 평소 경박하여 말할 것도 없지만, 허항이 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속임수로 시론(時論)을 물었다가 그것을 인하여 죄를 주었으니 심하지 않은가. 윤원로 등은 조정에서 정죄(定罪)하였으니, 다시 의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도승지(道僧智) 임백령을 가리킨다. 가 대간으로 있을 때 김안로가 허항을 시켜 가서 그의 과실을 말해 공론을 일으키게 하려 했으니, 김안로가 파산(坡山) 윤지임(尹之任)의 집안을 해치려 한 지는 오래이다. 윤원로가 그의 난정(亂政)에 분심을 품고 사적인 원한으로 남을 해치려고 반드시 그 말을 꺼냈을 것이다. 그러나 윤원형은 달리 한 말이 없다 한다. 이제 김안로의 간사함을 다스리면서 윤원로 등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다.”

하므로, 윤은보가 아뢰기를,

“윤원로는 김안로가 전권(專權)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분김에 말을 하다가 국모(國母)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말은 김안로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방자하게 구는 것을 보고 분해서 바로 김안로를 가리킨 것인데, 윤원로의 잘못된 말을 가지고 아울러 윤원형까지 배척함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또 만일 종사가 위급하다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는가.”[중략]

윤안인이 아뢰기를,

“이장(李璋)의 노래는 장난에서 나왔는데 법조문을 심하게 따져 죄를 주었으니, 온편치는 못하였지만 누가 감히 입을 열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세찬 등의 일은 오로지 김안로가 한 것이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분간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원로 등은 그 말이 잘못되었지만 뜻은 김안로를 분하게 여겨 한 말이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안로가 전권(專權)을 부리는 것을 분해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김안로가 재상의 자리에 있어 하고자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이 다 되기 때문에 말이 국모(國母)에게 관계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허경(許垆)이 깊은 밤에 허항을 찾아간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니, 추고해야 한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연 이틀 밤이나 가 보았으니 매우 괴이하고 비밀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안로는 지금 양사에서 논계하여 죽이기를 청하는데, 일찍이 대신의 열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무거운 형을 주지 못하겠다. 육조와 함께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중략]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다만 김안로는 죄상이 소상하게 드러나 덮을 수 없고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합당한 죄로 죄를 주려 하는데 이는 대간의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더욱 분해 하기 때문에 일국의 공론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 복잡하였으니, 억지로라도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중략]
 상이 일렀다.
 “내가 즉위한 지 32여 년인데 조정에 여러 차례 변이 있었다. 반정(反正)할 때는 조광조(趙光祖) 때와 달랐고, 조광조 때는 또 지금과 달랐다. 심정과 이항을 겨우 제거하고는, 이후에야 무슨 일이 있으라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변이 있게 되었다. 작은 일은 유사(有司)의 책임이지만 대간의 길이 매우 좁게 된 것은, 김안로가 그 우익과 심복을 대간과 시종의 자리에 벌여 놓아 이 사람을 체직하면 저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이 들어 왔기 때문에 화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내가 전조(前朝)의 역사를 보니, 권간이 조정에 있으면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여 제거하지만, 제거한 지 얼마 안 되어 권간이 다시 나와 나라가 따라서 망하였으니, 어찌 그 화가 참혹하지 않은가. 『송사(宋史)』에 이르기를 ‘신진(新進)을

쓰지 말아야 하니, 신진은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 하였는데, 비록 그 길을 넓히더라도 그런 사람은 많이 써서는 안 되고, 쓸 만한 사람만 골라서 써야 한다.

김안로의 죄가 중한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전에 대신의 반열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형에 처하기는 미안하다. 찬축만 했다면 너무 가벼우나 중형을 가하면 너무 지나칠 듯하다. 비록 중형을 가하지 않더라도 위리안치하여 잡인(雜人)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나는 여긴다.

윤개(尹漑)의 일은 미처 의논하지 못했다. 윤개가 그의 딸을 들여 양제(良娣)로 삼으려 했으나 김안로가 물리쳤다. 그때 사족(士族)의 부인과 동궁(東宮)의 내녀(內女) 역시 쫓겨났다. 부인을 내쫓아 귀양 보내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비록 그의 딸을 양제로 삼기 위해 그랬다 하더라도 죄가 어찌 거기에 이르겠는가.”

김안로가 그의 외손녀를 양제로 들이고자 하여 몰래 대간을 사주하여 윤개를 모함해 그의 딸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김안로가 뒤따라 내쫓자고 아뢰어 그 때문에 윤개와 그의 처, 완천군(完川君)과 문성정(文城正)의 처가 된 윤개의 누이 윤씨(尹氏), 동궁의 내녀 사랑금(思郎今)과 사비(四非) 등이 모두 귀양갔다.

심언경이 아뢰기를,

“부인을 내쫓아 귀양 보내는 일은 옛날에도 없던 일입니다. 또, 금부에 갇힌 자를 보니, 그런 예가 적지 않습니다. 죄인을 소통시키는 것이 오늘날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유감을 품고 죄를 준 자는 상께서 아실 것이니, 방면해야 합니다.”[중략]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의 큰 아들 이름은 기(祺)인데, 아버지는 인자하지 못하고 아들은 불효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부자(父子)가 원수 사이다.’ 하였다. 김기는 사람이 경망하고 사특한 데다가 독살스럽고 세를 빌어 교만 방자하였는데 술을 잘 마셔 병이 나서 일찍 죽었다. 하늘이 만약 수년만 더 살게 했더라면 피해를 입은 자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른다. 진우(陳宇)의 일도 실은 김기가 주도한 것이다.

김안로에게는 눈이 멀고 못생긴 딸 하나가 있었다. 안로가 그 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굶기면 울부짖으며 밥을 달라고 하여 이웃이 들을까 두려워 못 굶기고, 칼로 찔러 죽이면 시체에 칼자국이 나서 친척들이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못하였다. 그 흔적을 감추려고 독사(毒蛇)를 향아리 속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독이 잔뜩 오르게 한 다음 뚜껑을 열고 그 딸로 하여금 향아리에 발을 넣게 하니 한 번 물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 김안로는 속으로는 매우 기뻐했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이웃 일가들에게 떠들기를 ‘내 딸이 변소에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 하였다. 아, 이런 일을 차마 했으니, 무

은 일인들 못하였겠는가.

○癸酉臺諫全數啓曰滔天之惡不可苟貸一日有無君之心者不可共戴曰天請從公論快斷答曰近日之變專在於一安老而如助惡之黨已治之枝葉微瑣之徒不可一一治之卿等不得已以可治者論啓之自今後人心鎮定朝廷和平也安老雖罪重若圍籬安置則苟存縲命而已在大臣之列者不忍遽置重典也卿等之慮必以爲近來人物入於虎穴僅得脫免其虎若存後有大害故遠計如此予非不知也然朝廷堂堂豈有他哉[中略]

○臺諫再啓曰安老無君之賊王法不可爲一安老撓屈請速快斷以定輿情傳曰今與大臣等面對後欲發落○左議政尹殷輔右議政柳溥啓曰六曹堂上皆入面對乎傳曰 世宗朝黃喜許稠乃賢相夜半或有召問國事之時雖非所自見博採羣言而啓之矣今六曹皆入則似擾但尹安仁則有所啓之事許令並參 上御宣政殿尹殷輔柳溥尹安仁都承旨林百齡記事官林亨秀李無彊南應雲入侍 上使內官持安仁所書啓使百齡示大臣 上曰昨見禁府啓意許沆蔡無擇先入京家許洽又來云喪人宜在廬而在家此必安老招來然別無形迹故不問以此觀之許垞之潛往沆家甚爲邪惡命囚於詔獄矣[中略]

安仁曰以目觀之事言之臣與許洽同爲承旨其時有國恤貞顯王后 上祭孝敬殿上下皆致齋臣下雖有大事不可托故而洽在公廳公然言之曰父確自三陟來宿于平丘我可往省洽爲左承旨丁玉亨爲都承旨禁之不可強歸平丘經宿之地親祭之日父或病而危急則猶可往見其父無恙祭後亦可往見也近日洽家奴子辱打其隣儒刑曹發羅將捉其奴洽大怒囚其羅將於義禁府洽爲禁府堂上禁府乃詔獄也洽安得而囚人許沆奪柳禮臣之子涵之婢聞者痛憤其時柳灌爲刑曹判書聽其訟知其情而欲卞是非沆嗾蔡無擇啓罷柳灌臣爲忠清道監司時見朴守良問其事守良曰京中以言此爲惡禮臣之子不可不放柳溥雖與禮臣切親殷輔則可以言也[中略]

上曰柳禮臣之子以其奴事全家徙邊咸昌訓導之徙邊有司爲公事予亦知其未便然安老時爲大臣也故依允矣昔在南袞權鈞知安老巧詐必誤朝政迸諸外方放還後庶可有懲而益肆無忌李苻鄭光弼知有今日之禍欲斥之而反得罪弘文館二人金銛爲直提學金萬鈞爲校理以此亦被罪以違一禮判之事安老自謫所還爲禮曹判書朝廷論違曹繼商金克成俞汝霖等一時被竄此人等先知今日之變而欲預防也洪暹父子父彥弼沆亦以私憤罪之暹素輕薄不足道也沆飲之酒而醉之給問時論因而罪之不亦甚乎元老等朝廷定罪不可復議但都承旨指林百齡爲臺諫時安老使許沆往言其過欲發於公論安老之欲害坡山尹之任家素矣元老憤其亂政以私怨害人必發其言然元衡則別無所言云今治安老之奸而不釋元老等似乎不可也殷輔曰元老見安老專權自恣故憤而言之因涉於國母矣溥曰傾陷士林之言乃指安老而言之矣 上曰憤其自恣直指安老以元老之誤言並元衡而斥之得非甚乎且若 宗社危急則何事不可爲也[中略]

安仁曰李璋歌出於戲而深文罪之雖有未便孰敢開口 上曰世纘等事專是安老所爲溥曰然則分揀爲當 上曰元老等其言則非而意則憤安老也殷輔曰憤安老專權有是言豈有他情安老在相位求無不得爲無不成故因而語涉國母矣 上曰許垞昏夜往見許沆必有其情可以推

之溥曰連二夜往見至爲詭秘 上曰安老兩司方啓請殺而以曾在大臣之列者不忍加重法欲與六曹廣議處之[中略]

柳溥曰 上意至當但安老惡迹昭著而不可掩罪極滔天而不可赦臺諫欲以其罪罪之此非徒臺諫之意也物情愈憤故持一國公論累日伏閣勉從其言似當[中略]

上曰予卽位三十餘年朝廷累變反正之時異於趙光祖之時光祖之時又異於今時沈貞李沆纔去意以爲今後有何事而又有如此之變矣小小之事有司之責也至於臺諫之路甚狹安老以其羽翼腹心布置於臺諫侍從之列彼適此代此去彼入故禍至於此也予觀前朝史記權奸在朝人皆憤而去之去之未久權奸復出國隨以亡其禍豈不慘乎宋史曰勿用新進喜生事之人也雖廣其路如此之人亦不可多用而擇其可用者而用之可也安老罪重予非不知也然昔在大臣之列一朝遽置重典所未安也竄逐而已則似歇加重法則似過雖非重典若圍籬安置使雜人毋得出入予意以爲當然也尹漑事未及議也漑欲納其女爲良娣安老斥之其時士族婦人及東宮內女亦被竄謫安老欲納外孫女爲良娣陰嗾臺諫誣訴尹漑使不得納其女安老隨而啓逐以是漑及其妻完川君其妹文城正妻尹氏東宮內女思郎今四非等皆被謫婦人竄謫寧有是事雖求其女爲良娣罪豈止此乎彦慶曰婦人竄謫古所未聞且見禁府被囚者其麗不寡疏通罪人今日之所當先溥曰挾憾而罪之者自 上知之則放之爲當[中略]

○史臣曰安老有長子名曰祺父不慈乎不孝時人號曰父子讎也祺爲人輕妄邪慝加以毒害役勢驕橫縱酒成病早死天假數年遇害者不知其幾人陳宇之事祺實主之安老又有女病盲而貌醜安老惡之欲殺飢之則呼而求食恐隣里之有聞加刀則尸有傷痕恐親族之知其殺而欲掩其迹將鰻蛇納之缸中而覆不得出侵其蛇使大發其毒然後去其覆令其女納足缸蛇一螫立死安老毒深佯若悲感揚言於隣里族人曰我女如廁爲蛇所咬而死嗚呼是可忍也孰不可忍也

《中宗實錄 卷85, 79面》

중종 32년 10월 28일(갑술)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유생들의 상소를 보니, ‘김안로가 있는 줄만 알고 나라가 있는 줄은 모른다.’ 하였다. 이제 바야흐로 옛것을 고쳐서 유신(維新)하는 때에 김안로가 세운 것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 조복(朝服)의 제도를 김안로가 중국을 모방하려고 했는데 관(冠) 위에 비록 이석(泥錫)을 사용했으나 여러 사람이 정반(庭班)에 서면 햇빛이 비추어 금빛이 찬란하다. 김미(金甕)가 전일 경연에서 아뢰기를 ‘금관(金冠)은 상께서도 쓰시지 않는데 하물며 신하들이 어찌 쓰겠습니까.’ 하였는데 나도 그렇게 여겼다. 이런 참람한 일은 시행할 수 없다. 사람들 마음이 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가 참람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은 그 제도가 같지 않는데 배신(陪臣)이 금관을 쓴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니

우리 나라 제도를 지키는 것이 낫다. 다만 화(靴)는, 옛날에는 화 위에다 말(韃)을 붙였는데, 지금은 화와 말이 붙어 있어 오르내리기가 편한 듯하니, 이는 고칠 것이 없을 것 같다. 제복(祭服)의 제도는 아직 중국에서 도입해 오지 않았으나 선왕(先王)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중략]

○좌의정 윤은보, 우의정(右議政) 류부(柳溥)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관(冠)의 장식은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비록 누렇게 칠을 해서 쓰지만 그 빛깔이 금과 같아 참람한 듯한 것이 상교와 같습니다. 다만 조복 제도는 이미 중국의 예에 따라 일체를 고쳐 갖추어 지난번 공천사(龔天使)가 나왔을 때 착용했습니다. 태자(太子)를 봉하는 조서(詔書)를 발표하는 사신이 반드시 겨울이나 봄에 올 터인데 공천사가 이끌고 왔던 일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본 것과 크게 틀리면 모두 괴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쳐 갖추라 명하여도 몇 개월 동안에는 갑자기 갖추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사은사(謝恩使)의 통사(通事)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우리 사신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문물(文物)과 예제(禮制)가 중국과 다름이 없다 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갑자기 다 고쳐 갖추어서 혹시 추술(麤率)하게 되면 중국 사신 보기에 매우 불쌍사나울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복(制服)은 옛날 제도를 따라도 무방합니다.

당초에 양문(兩門)에 종을 달 때 신들 역시 온편치 못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지금 있는 곳에 두어도 매달지만 앞으면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高陽)의 천읍(遷邑)은, 처음에는 의항(蟻項)의 역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승도들을 옮겨 역사시킨 것인데 지금까지도 뽑아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전(畿甸)의 군민(軍民)은 천사(天使)를 겪고 나자마자 또 천릉(遷陵)의 일을 당했으니 극도로 곤폐합니다. 천사가 수개월 간격으로 오니, 군사를 내어 영구(營構)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승군을 이미 뽑아 시키고 있다면 우선 일을 마칠 때까지만 그대로 시키고, 이후부터는 비록 역사할 곳이 있더라도 다시는 뽑아 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의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甲戌傳于政院曰昨見儒生之疏知有安老而不知有國云今方革舊惟新之時凡安老所建不可不革朝服之制安老欲倣中朝而冠上雖用泥錫羣立庭班日色照耀金光燦然金璽於前日經筵啓云金冠自上亦不用御人臣豈宜着之予以爲然如此僭濫之事不可施也人心不善未嘗不由於僭也大國小國其制不同陪臣着金冠充爲不當莫如遵我國之制也唯靴則古者靴上加韃

今則靴與韃付似便於登降此則似不可改也祭服時未貿來然遵先王之制爲當[中略]

○左議政尹殷輔右議政柳溥同議啓曰梁冠之飾倣倣華制雖假用黃染其狀如金似爲僭濫果如 上教但朝服之制已擬中朝一切改備頃於龔天使之來穿着封太子詔使之來必在冬春之間龔天使所率頭目想多出來與前所見殊異不無疑恠且雖迫令改備數月之間似難卒辦又因謝且使通事聞之禮部尚書說與我國使臣白汝國文物禮制與中華無異云余甚嘉之今若急率改備容或有麤率則天使所見似爲埋沒華使回還後更議何如制服則依舊例無妨當初兩門懸鍾臣等亦以爲未便雖在本處不懸則擊之無聲不須移置高陽遷邑初以蟻項未准役僧徒移役也未知今尚抄役也畿甸軍民纔經天使又值遷陵困弊已極華使之來只隔數月不可起軍營構僧軍若已抄役姑限事畢仍役自後雖有役處勿更抄付何如傳曰依大臣議《中宗實錄 卷85, 93面》

중종 32년 10월 29일(을해)

좌의정 윤은보, 우의정(右議政) 류부(柳溥)가 명을 받들고 빈청(賓廳)에 나왔다. 두 재상에게 전교하기를,

“대간·홍문관·유생 등이 허함과 채무택의 죄를 중형으로 다스리기를 논하였다. 세 사람을 한꺼번에 일죄(一罪)로 논하기는 내가 매우 미안하다. 다만 그들을 보건대, 묘소(墓所)에서 서울로 달려 왔으므로, 여론이 매우 황당하게 여겼다. 허함과 허경이 비밀 얘기를 나눈 형적도 이미 드러났다. 허함은 자신이 장인의 아들 있는 첩을 간통하여 더러운 자식까지 낳았는데, 죄상 역시 드러났으니 본래 아까울 것이 없다. 이는 큰 일이니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또 유생들이 말하기를 ‘서울에 몰래 모여 기복(起復)을 도모하고 도성 안에 있으면서 국모를 모해 하였으니,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하였으니, 이 일은 이미 공론이 일어난 것이다. 이로 본다면 윤원로(尹元老) 등이 지난번에 없는 말을 스스로 지어 서 논한 것이 아니요, 이는 형적이 있는 말인데, 그 때문에 파직까지 하였으니, 명분이 없는 것이다. 명분이 없는 것을 알고도 관직을 삭탈하여 서용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또 유생들이 상소에서 말한 그들의 우익인 방백은 반드시 성윤(成倫)과 소봉(蘇逢)을 말한 것인데, 여론이 울분해 하는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심언경이 망발한 ‘국맥이 상한다.’한 말은 어찌 다른 뜻이야 있었겠는가. 그러나 예사 일이라면 ‘국맥이 상할까 염려되니 다스리지 말자.’ 해도 되지만, 이 일은 종사의 안위가 달려 있는데 어느 겨를에 다른 일을 헤아리겠는가. 이 사람들은 저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사람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언관(言官)에게 있지 유생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나, 이번 일은 보통 논박하여 체직하는 예가 아니다. 근래에 여론이 오랫동안 울분해 하기 때문에 유생들이 공론을 낸 것이 이리하다. 그 사람들의 시비를

내가 한갓 그 상소만을 보고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들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내가 홍문록(弘文錄)을 보니 다른 사람은 모두 합당하다. 단, 이약해(李若海)는 그 인물을 내가 모르겠으나 이약수(李若水)·이약빙(李若氷)의 동생이다. 그들은 기묘년의 사류(士類)인데, 김안로는 비록 제거했지만 기묘년의 사류들을 옥당에 섞어 둘 수는 없다. 이런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기록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서인가? 홍문관에는 7품 이하는 네 명이 모두 비었으니 설령 두 사람을 기록하여도 망(望)을 갖추기가 어렵다. 6품 이상은 여유가 있으나, 7품 이하는 많이 기록하지 않으면 차임을 채우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려서 뽑아야 한다.” 하니,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국모를 모해하려 한 일은 관계된 바가 중대하니, 신들이 본 것만 가지고는 의논하여 아뢰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듣지 못한 일을 혹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일은 널리 의논해야 하니 조정과 함께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육조와 한성부의 당상은 비록 면대하여 의논하지 않더라도 빈청에 모여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심언경·권예·윤임은 함께 의논해도 되지만, 자기들을 폄박하는 말이 있으니 함께 의논할 수 없다. 그 밖의 판서·참판·좌윤·우윤을 불러 의논하라.”〔중략〕

○윤은보·류부(柳溥) 등 소세양·윤인경·정백봉·윤안인·김희열 등이 명을 받들고 함께 의논하였다.이 함께 의논하여 조목으로 아뢰기를,

“1. 허항·채무택의 일은 여론이 울분해 한 지 오래이고, 이제 그 정적이 매우 치밀하므로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계달하여 논한 것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성윤과 소봉의 일은, 유생들이 어찌 공론을 듣지 않고 것처럼 진달하였습니까. 공론이 있는 것입니다.

1. 심언경이 ‘국맥이 손상된다.’고 아뢴 것은 망발이지 뜻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1. 이약해(李若海)를 홍문록에 기록한 것은, 무릇 사람을 쓰는 데는 단지 그 사람의 현명 여부만 보아야지 부형(父兄)의 잘못 때문에 끝내 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기묘년 사람은 돌아와서 현직(顯職)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1. 7품 이하 사람을 홍문록에 더 뽑는 일에 대해서는, 홍문관에 남행(南行)으로 비망(備望)된 자가 적은 것이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1. 권간의 자손을 금고한다는 말은 옛날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만 치죄할 뿐이지 연좌하는 법은 온편치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 뜻은 알았다. 김안로를 이미 사사하였는데 허항과 채무택 역시 일찍이 2품을 지냈으니, 사사하는 것이 어떤가? 전일 조광조(趙光祖) 역시 사사하였는데 이는 안률(按律)하여 정죄한 것이 아니다. 김근사는 멀리 내치면 지나칠 듯하니, 문외로 출송하여 도성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면 된다.”

하므로, 윤은보 등이 회계하였다.

“상교가 매우 온당합니다.”

○乙亥左議政尹殷輔右議政柳溥承 命詣賓廳傳于兩相曰臺諫弘文館儒生等論許沆蔡無擇之罪欲置重典三人一時論一罪予甚未安但觀彼人者自墓所奔走于京輿情甚爲荒唐沆與垆密語之迹已著身犯婦翁有子妾之奸至產穢息罪狀亦著固無所惜此亦大事何如而可乎且儒生云潛聚於京陰圖起復伏於都中謀危國母未知厥終爲何如也此事已發公論由是觀之尹元老等前日之論非自作所無之言此有形之言以此至於罷職亦無名知其無名而削奪官爵不叙可乎且儒生上疏羽翼方伯事必指成倫蘇逢羣情憤爵必有其由沈彥慶妄發傷國脉之語亦豈有他情乎若常事則猶可謂恐傷國脉而不治也此事繫於 宗社之安危何暇他計乎此人等自有公論也大抵論人是非在於言官不在儒生也此事非如尋常駁逆之例近來羣情久鬱故儒生等發公論如此彼人等是非予非徒見其疏而知也故議于卿等爾予觀弘文錄他人則皆當李若海則其人物予未知也乃李若水若冰同生彼人等己卯之類也安老雖去己卯之人不可昆於玉堂未及計此而錄乎以爲錄之無妨乎弘文館七品以下四員俱闕設使二人得錄備望爲難六品以上則有餘矣七品以下不多錄似難填差加擇可也尹殷輔等啓曰謀危國母事所關重大以臣等獨見不得議啓臣等未聞之事人或聞之大事可以廣議請與朝廷議之六曹漢城府堂上雖不 面議會賓廳同議何如傳曰沈彥慶權輒尹任雖可並議而有逼己之言不可同議也其餘判書叅判左右尹招而議之[中略]

○尹殷輔柳溥等蘇世讓尹仁鏡鄭百朋尹安仁金希說等承命與議僉議逐條以啓一許沆蔡無擇事物情憤鬱已久而今此情迹甚爲綢繆臺諫侍從持公論啓達不可不從一成倫蘇逢事儒生等豈不聞公論而陳之若此乎自當有公論也一沈彥慶有傷國脉之啓固是妄發似無情也言之則亦未爲得也一李若海弘文錄事凡所用之人只觀其人之賢否不宜以父兄之故終廢況己卯之人還爲顯職者有之以此得錄耳一七品以下弘文錄加抄事弘文館南行備望者數少果如上教一權奸子孫禁錮古亦未聞只治其身而已延及之法似爲未便傳曰啓意知道安老旣已賜死沆無擇亦嘗爲二品亦賜死何如前日趙光祖亦賜死此非按律定罪也謹思遠黜則似過只黜門外使不得接迹都下殷輔等回啓曰 上教至當

《中宗實錄 卷85, 97面》

중종 32년 11월 2일(정축)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천사(天使)가 반드시 나올 것이니, 관반(館伴)과 원접사(遠接使)를 할 수 없이 복상(卜相)한 뒤에 차출해야 하겠다. 지금 들으니, 의정부(議政府)가 합좌하였다고 하는데 사관(史官)을 보내어 의정부에서 복상하게 하라. 전에는 류부(柳溥)가 사옹원 도제조였었는데, 지금은 류부가 우의정이 되었으니, 그대로 제조의 임무를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모름지기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대신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번에 관반과 원접사를 차출하면 그 밖에는 도제조가 될 만한 자가 없으니, 판윤 윤임(尹任)을 승정 대부(崇政大夫)로 올려 제수하여, 사옹원 도제조로 차정(差定)하라. 무릇 제조를 겸임하는 자는 삼사(三司)의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오늘 정사(政事)때에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정청(政廳)에 말하라.

○丁丑傳于政院曰今者天使當出來矣館伴及遠接使不得已卜相後差出矣今聞政府合坐云遣史官卜相于政府前者柳溥爲司饗院都提調矣今則柳溥爲右議政不可仍行提調之任而又須以崇品之人代之今者差館伴遠接使則餘無可爲都提調者其以判尹尹任陞授崇政差司饗院都提調常時凡兼帶提調者毋過三司之法載在令典今日政詳察爲之事言于政廳

《中宗實錄 卷86, 2面》

중종 32년 11월 3일(무인)

○영의정 윤은보와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가 우의정 홍언필은 밖에 있었다. 아뢰기를, “요즈음 건의하여 만든 법이 많은데, 폐단이 있어서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은 벌봉전(罰俸錢)입니다. 관인(官人)이 지은 죄가, 파직될 정도가 아니어서 송서(送西)하는 자는 그의 녹(祿)을 징수하는데, 그것을 벌봉전이라고 한다. 김안로가 건의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녹봉(祿俸) 외에 따로 봉전(俸錢)이 있으므로 그러한 법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봉전도 없는데, 그 법을 시행한다면 만일 군사들이 어찌다가 죄를 범하게 될 경우, 이미 사일(仕日 : 근무한 일수)을 깎고 속전(贖錢)을 받은 데다가 또 녹봉을 줄이면 거둬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개혁하소서.

그리고 조종조 때의 ‘좋은 말’과 ‘훌륭한 정치’에 대한 것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실록(實錄)」을 개방(開放)시켜 편집국을 설치하여 찬집(撰集)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고해 보니, 그 좋은 말과 훌륭한 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국조보감」에 다 실려 있어서 특별히 더 기록할 일이 없습니다. 편집국을 설치하여 인원까지 배치한 것은 폐단이 매우 많으니, 속히 혁파하소서.

천사가 오는 데 있어 늦을지 빠를지는 그 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의망(擬望)은 중국 조정에서 이미 의논이 있었다고 하니, 그 오

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대제학으로 하여금 문신(文臣)을 선발하여 제술(製述)을 익히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술을 부지런히 하지 않을 것이니, 『황화집(皇華集)』 중의 운(韻)을 가지고 날마다 차운(次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세창(成世昌)³³⁹과 송인수(宋麟壽)³⁴⁰는 이미 방환하라고 명하였으니 성세창 등은 전에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아 귀양갔었다. 머지 않아 들어올 것입니다. 정사룡(鄭士龍)은 파직(罷職)되어 밖에 있으니, 아울러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용경(龔用卿)이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조선(朝鮮)의 문물(文物)과 예의 법제(禮義法制)가 중국과 다름이 없다.’고 극구 칭찬하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문장(文章)이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부 상서도 공친사의 말을 듣고 감탄해 마지 아니하여, 우리 나라 사신을 보고 칭찬하기를 ‘그대 나라의 문물과 예의법제가 중국과 다름없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고, 또 옥하관(玉河館)의 주사(主事)와 서반(序班) 등에게 주의시켜 조선 사람은 삼가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는 다만, 학문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제술하는 것을 연습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戊寅○領議政尹殷輔左議政柳溥右議政洪彥弼在外啓曰近所建白立法者多而有弊當革者乃罰俸錢官人作罪而不至於罷職送西者徵其祿謂之罰俸錢安老所建也中原則祿外別有俸錢故有此法矣我國則無俸錢而亦行此法如軍士等幸至犯罪則既削仕收贖又減其祿受罰重疊其弊甚矣請革之且 祖宗朝嘉言善政意有遺漏於國朝寶鑑故開寶錄而設局撰集矣然更考之則其嘉言善政曾已盡載於寶鑑中別無加錄之事而至於設局置員至爲有弊請亟罷之且天使出來其遲速時未的知然天使望中朝既已擬議云則其來必矣令大提學抄文臣而課習製述至當然必不勤製請以皇華集中之韻逐日次之何如成世昌宋麟壽已命放還世昌等前忤安老被竄近將入

339) 성세창(成世昌) : 1481~1548.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번중(蕃仲). 호는 돈재(遯齋)·화왕도인(火旺道人). 시호는 문장(文莊). 본관은 장녕(昌寧). 현(峴)의 아들. 김굉필(金宏弼)의 문인. 중종(中宗) 2년(1507)에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를 거쳐 직제학·부제학을 역임한 후, 김안로(金安老)를 논척(論斥)하다가 유배되었으며, 이조 판서·예조 판서·호조 판서 등을 지냈고, 인종(仁宗) 원년(1545)에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좌의정을 지냈다.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그림·음률(音律)에도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불리었다. 저서에 돈재집(遯齋集)·식료찬요(食療纂要)가 있다.

340) 송인수(宋麟壽) : 1487~1547. 조선 중종(中宗) 때 문신. 자는 미수(眉叟). 호는 규암(圭庵).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은진(恩津). 중종 16년(1521) 별시 문과에 급제. 수찬(修撰)·대간(臺諫)을 거쳐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좌천되었고, 인종(仁宗) 즉위년(1544)에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유생(儒生)들에게 성리학을 강론하였다. 참판(參判)·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동왕 원년(1545) 을사사화(乙巳士禍) 때에 한성부 좌윤에서 파직, 청주(淸州)에 은거 중 윤원형(尹元衡)의 농간으로 사사(賜死)되었다. 청주(淸州) 신행서원(莘巷書院)에 봉향(奉享)되었다. 저서에 규암집(圭庵集)이 있다.

來矣鄭士龍罷職在外並令上來何如龔用卿還中朝言我國之事於稠中曰朝鮮文物禮制無異於中華極口贊美此無他以我國文章之無愧也禮部尚書亦聞龔天使之言而嘉嘆不已見我國使臣而褒美之曰聞你國文物禮制無異中朝心甚嘉之又戒玉河館主事及序班等以朝鮮之人慎勿忽待云此特以文雅之力也今不可不爲之課製鍊習也答曰皆如啓 《中宗實錄 卷86, 5面》

중종 32년 11월 4일(기묘)

밤. 손방(巽方)과 곤방(坤方)에 불 같은 운기가 있었다.

○허경의 초사로써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계복(啓覆)하는 일 때문에 삼공(三公)과 육조(六曹)가 예궐(詣闕)하였으니 계복하기 전에 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의논하여 아뢰라. 또 허경의 일은 대간이 끝까지 추문하기를 청하므로 형신(刑訊)하도록 명한 것인데, 허경의 말이 ‘허항의 위세가 두려워서 가서 만나 보았다.’라고 할 뿐 그 말밖에 다른 말은 없었다. 허항이 만약 대사(大事)를 의논하고자 하였다면, 그의 무리가 매우 많으니 아마도 허경과는 서로 의논하지 않았을 듯하다. 지금 허경은 형장을 견디며 승복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형장을 가하여 끝까지 추문해야 하는가. 그것을 물어 보라.”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와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허경의 일은 여러 재상들과 의논하였는데 허항이 허경과 서로 이야기한 것은 근래의 큰 일이었습니다. “대간과 시종이 먼저 말을 내면 대신이 따라서 아뢴 것이고 그 뜻을 채무택도 알고 있으니, 네가 관중(館中)에서 먼저 발의하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본다면 허경이 비록 허항의 족속(族屬)이기는 하지만 그의 출신(出身)이 오래지 않았고 그 나이도 적은데, 허항이 어찌 허경과 흉모(凶謀)와 비계(秘計)를 의논하였겠습니까. 다만, 공론(公論)임을 가탁(假托)하여 관중에서 먼저 발설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흉모와 비계는 반드시 심복들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의 의논을 들어 보니, 나의 의견도 그러하다. 허항이 어찌 허경과 흉모와 비계를 의논했겠는가. 다만 공론을 가탁해서 관중에서 발설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 일이 이와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추국하다가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사실 미안한 일이다. 조정은 화평해야만 아름다운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허경의 일은, 형장(刑杖)을 가하지 말고 승복한 공초의 내용으로 조율하도록 판부하라.”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계복(啓覆)을 들었다. 승지 정만중(鄭萬鍾)이 의

금부에 구속된 별감(別監) 조수진(趙守眞)의 추안을 입계하였다. 천사(天使)가 하마(下馬)하던 날 기생 취서시(醉西施)와 손을 잡고 희롱한 죄로서 참대시(斬待時)였다. 영사 윤은보가 아뢰기를,

“조수진의 일은, 취서시(醉西施)와 함께 앉았던 기생에게 물어 보았는데 그 말이 비록 조금 다르기는 하였으나 대개는 모두 같았으니, 진실로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수진이, 전에 함께 구속되었던 사람이 임금을 원망하며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즉시 진고(進告)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된 사람의 죄를 고하는 것은 논상(論賞)하지 않는 것이 곧 율문입니다.”

하고, 영사(領事)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조수진의 일은, 신이 그 당시 사용원 제조로서 들어가 참석하여 술을 돌렸는데 재상들도 모두 모여 앉아서 들었습니다. 양산 차비(陽繖差備)인 충의위(忠義衛)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어떤 별감이 기생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아주 체통 없이 구는데, 아무리 못하게 하여도 들은 척도 않고 나가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초사를 가지고 곁에 있었던 기생들에게 모두 물어 보았는데, 그 말이 모두 같았습니다. 죄상이 명백하니, 율대로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의 일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들어가 기생과 희롱하고 웃고 하였으니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양산 차비였던 충의위 민난(閔蘭)의 초사에, 밀감(柑子)을 가지고 기생에게 던져주면서 서로 희롱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때는 3월이었으니 밀감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조수진이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겠는가? 그 말은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손을 잡고 노래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은 죄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에 옥중에 있을 때 그 큰 일을 진고하였는데, 율문에는 비록 ‘논상(論賞)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그의 죄상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한 등급을 감(減)하여 전가 입거(全家入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이는 곧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입니다.”〔중략〕

○간원이 아뢰기를,

“허경의 초사는 매양 허항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사림을 모함하려고 했다는 말만 가지고 얼버무리면서 공초(供招)했는데 밤마다 껌속말로 모의한 것을 지금 만약 사실대로 공초하면 동모(同謀)했다는 죄를 받을까 하여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계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모두 가리워 놓고 양사(兩司)의 장관(長官)을 동

요시켜 언론을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 말할 수 없게 하였으니, 그 간계(奸計)는 아주 지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문하지 말고 조율하라고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하게 여깁니다. 끝까지 추문하여 사실을 밝혀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허경의 일을 보건대, 허항이 비록 모의(謀議)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안로가 그 때 있었고 채무택이 들어 왔으니, 반드시 그 사람들과 동모(同謀)했지 허경과 동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다만 허경으로 하여금 관중에서 그 의논을 먼저 발설(發說)하게 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이미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고 상하(上下)의 뜻이 모두 그러했기 때문에, 이미 복초한 내용으로써 조율하라고 전교하였던 것이다.”

○己卯夜巽方坤方有氣如火○以許垆招辭傳于政院曰今以啓覆事三公及六曹皆詣闕矣未啓覆前以此公事議之以啓且許垆事臺諫請窮推故命刑訊而許垆云畏許沆之威而往見相語者唯此言外更無他設許沆若欲議大事則其黨甚衆似不與許垆相論也今許垆忍杖不服其更加刑窮推乎以此問之領議政尹殷輔左議政柳溥議啓曰許垆事與諸宰相議之許沆與許垆相語之意則近者大事臺諫侍從先發而大臣從而啓之此意蔡無擇亦知之汝於館中先發云以此觀之許垆雖是許沆之族其出身未久其年又少許沆豈與垆議其凶謀秘計乎只因許垆假托公論先發於館而已也其兇謀秘計則必與腹心相論也答曰聞大臣之議予意亦然沆豈與垆謀其凶謀秘計乎只欲假托公論發之於館中而已其事如此而以此窮推至於殞命則實所未安朝廷和平斯爲美矣仍傳于政院曰許垆公事除加刑而以服招辭緣照律事判付可也○上御宣政殿聽啓覆承旨鄭萬鍾以義禁府囚別監趙守眞推案天使下馬日坐階上與女妓醉西施執手瀆褻罪斬待時啓領事尹殷輔曰趙守眞事其與醉西施同坐之妓憑閣則其言雖或少異大槩皆同固非虛事也但守眞於前日聞其同囚之人怨 上不道之言卽以進告而其辭的實矣然其告同囚人所犯者不論賞乃律文也領事柳溥曰趙守眞事臣於其時以司饗院提調入叅而行酒宰相等亦皆會坐而聞之陽繖差備忠義衛一人高聲曰有一別監與妓執手唱歌極爲褻慢雖禁之頑然不出今此招辭在傍女妓並皆憑問其言如一而罪狀明白依律似當 上曰此人之事入於不可入之地而與妓相戲笑至爲過甚陽繖差備忠義衛閔蘭招辭又有以柑子投妓相戲之言其時乃三月也柑子似不可易得矣守眞從何得之乎此言難信也然執手唱歌則不虛矣此可罪之也但前在獄中進告其大事律文雖曰不論賞其罪狀亦有不實之端減一等全家入居似當溥曰上教至當是乃好生之德也[中略]

○諫院啓曰許垆招辭每據許沆構虛謀陷士林之語泛然納招而其連夜屬耳之謀今若直招則恐被同謀之罪欲爲自脫之謀盡掩其實動搖兩司長官使言論之人不得盡言其爲奸計甚矣而不盡取招遽命照律物情愈爲憤鬱請窮推得情答曰許垆事見之許沆雖有所謀議安老方在而無擇入來矣必與此人等同謀必不與許垆同謀其意只欲令許垆先發其論於館中也已與大臣

議定而上下之意皆然故以已服招辭緣照律事傳教矣

《中宗實錄 卷86, 9面》

중종 32년 11월 9일(갑신)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 우의정 홍언필, 좌찬성 소세양 등이 아뢰기를,

“김안로 등이 서로 결탁하여 위복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쌓았으므로, 조정의 대소(大小) 신료(臣僚)들이 나라의 권세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통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서운 독기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는데, 다행이 대간들이 분발하여 자신들의 몸은 돌보지 않고서 기미를 살피고 논계하였고, 성상께서도 일찍부터 그 간적(奸賊)들의 정상을 환하게 아시고 미루지 않고 궤히 따르시어 모두 법으로 조치하였으므로, 종사(宗社)가 거의 위태롭게 되었다가 다시 편안해졌고, 조야(朝野)에서는 손벽치고 춤추며 서로 경하하였으니, 국가의 큰 경사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드리는 것과 사방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진실로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만 전지(傳旨)를 내린 뒤에 김안로의 죄를 결정한 뒤에 중외에 효유한 전지를 말한다. 날짜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신들이 감히 다시 계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정묘년(중종 2, 1507)에는 대간이 류자광(柳子光) 하나를 논박하여 귀양 보내고서도 오히려 은상(恩賞)을 받았었는데, 더구나 김안로 등은 조정을 점거하여 위복을 마음대로 농간하였으니, 류자광의 행위와 비교할 때 만 배 뿐만이 아닙니다. 양연(梁淵) 등이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킨 공로에 대해서는 상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구(耆舊) 훈신(勳臣)들이 깊이 나라를 생각하다가 도리어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아 그에게 모함을 당한 것은 상께서 그 정상을 환하게 살피시어 즉시 서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김안로 등에게 모함을 당하여 무고하게 파직되어 귀양간 자들이 더러는, 죄에서 풀려나 서용되는 대열(隊列)에 들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개운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어 말로 아뢰었다.

“무릇 서계(書啓)하는 것은 말로써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 다만 날씨가 매우 추워서 면대(面對)하기가 미안하여 마음에 품었던 것을 글로 써서 아뢰는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대신은 양연 등을 상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김안로가 국가의 간적이었으나, 대간이 비록 신명을 바쳐서 극력 논박하여 제거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그들의 직분이므로 상을 줄 것이 못되며, 더구나 간흉을 제거시킨 일은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제거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윤임(尹任)이 임금의 뜻을 가지고 언관(言官)들에게 전파했으며, 윤안인(尹安仁)은 밀지를 가지고 효유하여 안팎에서 함께 모의하여 제거시킨 것이니, 무슨 상줄 만한 공이 있단 말인가. 당시의 여론은, 대신이 그렇게 아뢰는 것은 그 의논이 홍언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으면서 홍언필이 남몰래 기회를 만났다고 좋아하며 꾸민 짓이라고들 하였다.

답하였다.

“경들이 아뢰는 뜻은 지당하다. 국가의 일이 그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겠는가.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받는 것과 양연 등에게 상주는 일도 지당하다.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죄에서 풀려나지 않았거나 서용되지 못한 자가 더러 있는 것은 이 또한 점차 서용하려는 생각이었다. 다만 삼흥(三興)에게 미움 받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죄로써 폐치된 자들까지 만약 이번 기회를 타고 모두가 요행히 면하고자 한다면 혼란한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종과 대간들이, 그들은 서용되는 틈에 끼워서 가볍게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땅히 서용할 사람은 우선 직첩이 환수되고 파직된 사람을 세초(歲抄)로 아뢰는 때를 기다려서 서용을 명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경연에서 들으니, 송순이 서용되는 대열에 끼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송순만은 서용을 명하겠다. 그 밖에 귀양을 갔거나 파직이 되었거나 한 자들은 한꺼번에 어지럽게 석방하여 서용할 수 없다.”

사신은 논한다.

처음 김안로가 조정으로 돌아왔을 적에 사림(士林)들 사이에서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었다. 김안로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애당초 드러난 죄가 없었으니, 조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동궁(東宮)이 고단한 형편이니, 그 사람이 없을 수 없다고들 하였으며, 아부하지 않는 자들은, 김안로는 정인 군자(正人君子)가 아니니 동궁이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들 하였다. 대체로 동궁의 보필은 온 나라의 신하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혼인 관계를 맺은 자라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행(李荇)의 의논은 매우 무리한 의논이다. 송순은 늘 말하기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김안로를 추대하여 괴수를 삼아 세상에 행세하게 하는가?’ 하며, 공공연히 앞장서서 말하였고, 또 윤임(尹任)을 통하여, 김안로가 사대부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임금에게 밀계(密啓)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즉시 심언광에게 알려 주자, 심언광이 그

날로 채무택에게 통지하여 드디어 김안로가 알게 되었다. 김안로가 윤임을 불러 그 까닭을 물으니, 윤임이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즉시 송순의 집으로 가서 그 사실을 물어보았는데, 송순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윤임이 매우 놀라 혀를 차며 물러갔다. 송순은 심언광과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해 준 것이었으나, 심언광이 사실은 김안로와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송순은 김안로에게 크게 꺼리는 대상이 되었는데, 김안로가 송순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틈을 얻지 못하였다가, 송순이 사간(司諫)이 되었을 적에 박홍린과 의논이 맞지 않아 논쟁이 벌어지게 되자 박홍린이 드디어 송순의 의논은 박씨(朴氏)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무함하니, 김안로의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몰래 정언(正言) 최보한(崔輔漢)을 사주하여 논계하여 파출시켰다. 그 후 사론(士論)이 모두 불평을 하였는데, 홍춘경(洪春卿)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송순이 파출된 데 대하여 그 실정을 밝히지 않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고 하였다가 홍춘경이 즉시 파직되었는데, 허항이 홍춘경을 원수처럼 미워한 것이 그 때문이었다. 홍섬(洪瀾) 등이 죄를 받을 적에 허항이 삼경설(三逕說)을 올려 송순을 그 중의 일경(一逕)이라고 하자, 조정에서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으나 감히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그르케 여겼을 뿐이었으며, 임금은 그 실정을 알지 못하고 송순이 실지로 박씨를 비호하였다고 여겨 서용하라는 명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전교하여 ‘김안로가 죄를 받았으니, 그에게 미움을 받은 자들을 비록 마땅히 서용은 할 것이나 박씨의 일과 연관되어 논핵을 받은 자는 서용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 송순을 가리킨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송순을 풀어줄 일을 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신의 이번 계청으로 인하여 드디어 서용하라고 명한 것이다.[중략]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이 일은 중대한 것이므로 신들이 다시 모여서 깊이 헤아린 다음에 육조(六曹)와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졸(卒)한 일에 대해서는 비록 주문(奏聞)한다고 하더라도 진하사(進賀使)가 갈 적에 겸하여 거론(擧論)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일은 과연 중대한 일이다. 아뢴 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이번 일은 노산(魯山 : 단종(端宗)의 강호(降號)) 때의 일과는 같지가 않다. 햇수도 오래 되지 않았고 주문(奏聞)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30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반드시 무사할 것이라고 하여 걱정하지 않아서

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날 중국 조정에서 만약 혹시라도 의논이 있게 되면, 후세에서 반드시, 전왕(前王)은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여 명확하게 조처하지 않고서 후회(後悔)할 일을 물려 주었는가라고 할 것이니, 자손(子孫)의 근심거리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침묵만 지키면서 두고두고 세월만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 한 번 시원하게 조처해 놓으면 뒷날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경들은 물러 가서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윤은보 등에게 전교하였다.

“황헌이 전번에 경연에서 아뢰기를 ‘김안로가 그의 외손녀로 양제(良娣)를 삼고자 하여, 윤원량(尹元亮)의 딸과 윤개(尹漑)³⁴¹의 딸을 양윤(兩尹)의 딸이 모두 양제로 간택(揀擇)되었었다. 논박하여 방해하였다.’라고 하였다. 윤개의 딸은 곧 가문(家門)에 허물이 있었으므로 거론할 것이 못되었지만, 윤원량의 딸은 별로 허물될 만한 일이 없어서 선발하여 들일 만하였다. 대체로 양제를 가려 뽑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서이다. 지금 다른 사람의 딸로 이미 의논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윤원량의 딸도 뒤따라서 입궁(入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가 외손녀를 대궐에 들여 보내어 양제를 삼으려고 꾀하여, 간선(揀選)할 때에, 윤원량은 지금의 중궁(中宮)의 동생이므로 그의 딸로 양제를 삼는 것과 동궁(東宮)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고, 윤개는, 그의 처모(妻母)인 영춘군(永春君)³⁴²의 아내가 박씨(朴氏)와 결합하였으니 작서(灼鼠)의 변(變)을 윤개 역시 참여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니 간사하고 무상한 사람의 딸을 양제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지난번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딸이, 한 사람은 공순 왕후(恭順王后), 한 사람은 장순 왕후(章順王后)가 되었었습니다. 윤원량의 딸을 선발하여 양제를 삼는다고 한들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341) 윤개(尹漑) : 1494~1566. 조선 명종(明宗) 때의 문신. 자는 여옥(汝沃). 호는 회재(晦齋)·서파(西坡). 본관은 파평(坡平). 김안국(金安國)의 문인. 중종(中宗) 11년(1516) 문과에 급제. 이조 좌랑(吏曹佐郎)·예조 정랑(禮曹正郎) 등을 지내고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외직으로 좌천되었다가 동왕 33년(1538)에 다시 서용되었다. 명종 즉위년(1545)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예조 판서로 대운을 제거하고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영평군(鈴平君)이 되었다. 우·좌의정을 지냈고, 선조(宣祖) 초기에 녹훈(錄勳)이 삭탈되었다.

342) 영춘군(永春君) : 세종의 왕자인 영해군 장(寧海君 璋)과 신윤동(申允童)의 딸인 평산신씨 사이에서 큰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인(仁)이고 그의 처가 영의정 류순정의 아버지 상의원정 류양(柳壤)의 딸이다. 좌의정 류부(柳溥 父 添汀)와는 고모부 관계가 된다. 4남 2녀를 두었는데 윤개는 막내 사위가 된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전지(傳旨)하였다.

“김안로·허항·채무택 등이 서로 결탁하여 위엄과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오래도록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므로, 조정의 모든 신료들이 나라의 권세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통분하게 여겼으나, 그들의 독기가 두려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대간이 분발하여 자신들의 몸도 돌보지 않고 기미를 살피 논계하여 모두 법으로 조치하였다. 이에 중사가 위태롭게 되었다가 다시 편안해졌으므로, 조야에서는 손뼉치고 춤추며 서로 경하하고 있으니, 국가의 경사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베푸는 일을 예조 등에게 전교하라.”

○甲申領議政尹殷輔左議政柳溥右議政洪彥弼左贊成蘇世讓等啓曰安老等相爲締結專擅威福久蓄無君之心朝廷大小臣僚憤其國柄盡在其手然畏其毒焰莫敢開口幸賴臺諫奮不顧身審幾論啓而天鑑曾悉其奸賊情狀快從無留並置於法宗社幾危而復安朝野抃舞而相賀國家大慶無踰於此矣告廟陳賀覃恩四方誠爲未過第念下旨之後謂金安老足罪後曉諭中外專旨爲日已久故臣等不敢更請矣往在丁卯年臺諫論竄一柳子光尚有恩賞況今安老等反據朝廷擅弄威福其視子光不啻相萬梁淵等忠君衛國之功不可不賞也且耆舊勳臣謀國遠慮反忤於安老爲其所陷聖鑑洞照其情在速收用其餘爲安老等所構無辜罷竄者或不在原放收叙之列物情未快因以言啓曰凡所書啓不如言語之得盡其情但以日候極寒面對未安故書所懷以啓史臣曰大臣以梁淵等不可不賞之意啓之甚非也金安老爲國家奸賊臺諫雖挺身抗言以去之乃其職分不足以行賞況去奸之事出自上意但未得去之之道故尹任將上意播于言官尹安仁將密旨又諭之內外共謀而除之有何功可賞者乎時論以大臣此啓議出於洪彥弼人皆指笑彥弼以爲私喜幸所作答曰卿等所啓之意至當國家之事豈有重於此者乎告廟陳賀及賞梁淵等事至當其見忤於安老之人或有不及原放收叙者此亦漸用之慮也但非見忤於三兇而各以其罪見廢者若乘此機而皆僥倖欲免則不無紛擾之弊故侍從臺諫已論其不可輕於原放收叙之間也當叙之人則姑待歲抄例啓收職牒罷職者之時命叙則亦未晚也然前於經筵聞宋純不與叙用之列云純則命叙其或竄謫或罷者則不可一時終擾疏放叙用也史臣曰初金安老之還朝也士林間議論不一其附安老者以爲此人初無現著之罪可以在朝且東宮孤單此人不可無也不附者以爲安老非正人君子不可爲東宮倚仗大抵東宮羽翼一國之臣皆所共之豈必待婚姻相連者爲之荐之論甚無理也純每言以爲士林安可推安老爲首而行於世乎公然倡之又因尹任聞安老將士大夫賢否密啓之狀即播于沈彥光彥光厥日通于蔡無擇遂爲安老所知安老邀任問其所由任無辭以對即來純家問之純以實答之任咄咄而去純嘗以彥光交故言之不知彥光實與安老合也由是純大爲安老所忌欲斥去之不得間及純爲司諫與朴洪麟議不合爭論洪麟遂誣純之論議右朴氏安老之黨譁然陰嗾正言崔輔漢論罷之厥後士論皆以

爲不平洪春卿言於 上曰宋純見罷不覈其實物情未便春卿坐罷許沆疾春卿如仇讎以此也洪暹等被罪時許沆進三經之訟以純爲一經朝廷莫不駭異而不敢言但腹非而已上不知其情以純實右朴氏也未有叙命且教曰安老被罪諸見忤者雖當收叙至於事涉朴氏而被論者不可收叙蓋指宋純也於是人有論釋純之事因大臣此啓遂命叙之又傳于[中略]

殷輔等回啓曰此事重大臣等更會熟計然後與六曹會議以啓且病卒之事雖可奏聞不宜兼舉於進賀使之行也答曰此事果爲重大所啓至當仍傳曰此事非如魯山時事也年歲不遠奏聞不難于今三十年間乃得無事然不可以爲終必無事而不憂也他日中朝若或有議則後世必謂前王何不熟計而審處之以遺後悔也子孫之憂不可不慮不可容默悠悠玩愒歲月若一快處則後有何難卿等退而詳議以啓○傳于尹殷輔等曰黃憲前於經筵啓曰金安老欲其外孫女爲良娣而尹元亮之女及尹漑之女兩尹之女皆以良娣揀擇皆論沮之云尹漑之女乃家門身咎不可舉論元亮之女別無咎事可以選入也大抵揀選良娣乃爲遠慮也今者揀選他人之女旣已定議然元亮之女亦因隨後入宮何如史臣曰安老謀以外孫女納爲良娣當揀選之時尹元亮則爲今中宮同生以其女爲良娣於東宮有嫌云尹漑則其妻母永春君妻與朴氏交結灼鼠之變漑亦與聞奸慝無狀不可以其女選入良娣殷輔等回啓曰前者上黨府院君韓明澮之女一爲恭順王后一爲章順王后元亮之女選爲良娣有何不可傳曰知道○傳旨金安老許沆蔡無擇等相爲締結專擅威權久蓄無君之心朝廷大小臣僚憤其國柄盡在其手而畏其毒焰莫敢開口幸賴臺諫奮不顧身審幾論啓並置於法 宗社幾危復安朝野抃舞相賀國家大慶無踰於此告 廟陳賀事禮曹等傳教

《中宗實錄 卷86, 17面》

중종 32년 11월 26일(신축)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대신과 좌우에게 말하고자 한 지가 오래이다. 이번에 김안로 등의 간사한 행위는 상하가 이미 알고도 미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공론이 마침 일어나서 그 죄를 결정하였으니, 종사의 복이다. 다만 김안로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어 가까운 척리(戚里 : 임금의 외척)부터 제거하고 많은 사람을 모함하고자 하여 큰 변이 날 뻔하였는데, 그 죄가 결정되고서는 시골 구석의 백성까지도 기뻐하며 경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죄를 정한 것은 곧 척리를 귀양보내자고 거론한 다음에 있었으므로 내 마음에 미안하다. 시골의 백성들이야 공론이 일어난 것임을 어떻게 알겠는가. 척리를 귀양보내자고 한 것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영사 홍언필이 아뢰기를,

“김안로 등의 간사한 행위는 근고(近古)에 없던 것으로, 조정의 위 아래 사람이 누가 미워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공론이 저절로 일어났고 대간이 한 번 거론하

자 성상께서도 즉시 따라 주셨습니다. 예로부터 소인의 정상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비록 알았더라도 지체 없이 제거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깨달은 즉시 제거하였으니, 이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 상하와 사방에서 다같이 환하게 아는 것인데, 누가 척리의 일로 해서 거기에다 의심을 갖겠습니까. 다만, 간사한 사람의 정상은 성상께서 환히 알고 계셨어도, 조정에 심복이 될 만한 가까운 신하가 분발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 간사함을 극력 밝혀 낸 자가 없으므로, 성상으로 하여금 여러 날을 애태우다가 다시 미안한 생각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신은 못난 제 자식의 구설(口舌)로 인하여 홍언필의 아들 홍섭(洪暹)이 허항과 시사(時事)에 저촉되는 말을 하였는데, 허항이 즉시 아뢰기를 마치 고변(告變)하는 것처럼 하여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당하고 나중에 남쪽으로 귀양갔으며, 허항은 후한 상을 받았다. 죄를 얻고 외방에 있다가 홍언필도 연좌되어 도성문(都城門) 밖으로 쫓겨나 남양(南陽)에 있었다. 오늘에야 경악(經幄)에 입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대간(臺諫)에게 상을 주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 ‘은명(恩命)은 마땅히 성상에게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으로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대신들의 이번 계청은 크게 사체를 잃은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간들이 충성심이 격동해서 큰 간혹을 적발하였으니, 포상하기를 논한 것은 곧 격려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간인(奸人)이 있게 되면 알고 있는 자는 이번 일을 분반야 숨김없이 다 말할 것이니, 어찌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지식이 있는 선비라면 어떻게 그러한 의논을 할 수 있겠는가. 류자광(柳子光)을 축출했을 때에 상주는 일을 논한 것은 전례가 있었다. 큰 일이 처음 결정되고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적에 전일의 대신이 사실 계청하였다. 논상(論賞)하고자 한 그 생각은, 소인이 나오는 것은 오늘 뿐만이 아니고 없는 세상이 없으니 오늘날 포상하는 것은 곧 만세(萬世)의 충성심이 있는 선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대신의 뜻은 지극히 당연하다.”[중략]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 우의정 홍언필 등이 명을 받고 빈청(賓廳)에 나왔다. 전교하기를,

“김안로 등이 허위로 모함한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의논해야 하는데 더구나 큰 죄로서 밝히기 어려운 것이겠는가. 그래서 대신과 의논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옥사(獄事)를 소급하여 밝혀 보아도 유익함은 없다. 그러나 위 아래가 모두 그 모함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 알지 못한다면 아래에서 아무리 밝히려고 한들 누가 감히 먼저 발의하겠는가. 홍여(洪礪)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건대, 그 당시 사헌부의 관리였던 김형경(金亨卿)이라는 자는 홍여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그의 처남과 공모하여 이웃에 사는 병조(兵曹)의 관리들을 해치고자 하여 무도(無道)한 말을 패(牌)에 써서 대궐 뜰에 매달아 놓았고, 또 바가지로 형상을 만들어 걸어 놓았는데,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 옥사를 추국할 적에 김안로가 추관(推官)이었는데, 홍여의 집안으로 죄를 돌리고자 하여 이는 작서(灼鼠)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믿었으며, 그 집의 노비(奴婢)들이 무수하게 형장을 받고 그가 묻는 대로 자복(自服)하였다. 추관이 자기의 의견대로 형신(刑訊)하였는데 노비들은 형장을 못 이겨서 죄를 자복한 것이다. 죄가 결정된 다음에 홍여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형장을 참아 내면서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사간(事干) 이은석(李銀石)이란 자는 가혹한 형장을 참지 못하여 한 번도 홍여를 만난 일이 없으면서 홍여의 지시를 받았다고 복초(服招)하였다. 그런데 지시를 받았다는 시기는 그날 아침이었고, 홍여가 시묘살이를 하다가 산소에서 서울로 들어올 적에 길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본 것은 저녁이었다. 이 사실이 이미 드러났지만 만약 추문(推問)하게 되면 무고(誣告)로 판결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 자취를 추문하지 않았고,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그 뒤에 또 패(牌)를 걸어 놓은 일을 추국하니, 김형경이 동생 정을미(鄭吾乙未)와 공모하여 정을미의 필적(筆跡)을 빌어 패에다 썼는데 그들의 말이 일치한 것으로 증거를 만들어 치죄하였던 것이니 이는 홍여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 당시의 의논이 ‘이 일이 사실대로 밝혀지면 이미 결정되어 죄를 받은 것은 허사가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김형경과 정을미 등은 정범(正犯)이 이미 드러났다고 하여 그 죄를 벗어났고 대역(大逆)의 사인(事因)은 홍여에게로 돌아갔으니, 어찌 이렇게 억울한 옥사(獄事)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경들은 그 당시 비록 그 일을 알고 있었으나 아래에서 정론(正論)을 내세운 자가 없었다. 이러한 대역의 일을 사책(史冊)에 기록해 놓고 끝까지 밝혀 내지 않으면 되겠는가.

또 문신(文臣) 이장(李璋)은 유생으로 있을 때 사대부(士大夫)의 이름을 들어 노래로 불렀는데, 올바른 일은 아니긴 하나 미친 서생이 희롱하며 부른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문책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비록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골에는 희롱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귀양보낸 것은 그 사람들삼홍(三嵬)을 가리킨다. 이 반드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의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이행이 처음에는 김안로가 약간의 문학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서용할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조정으로 돌아오도록 추천한 것인데, 육경(六卿)에 오르게 되자 오히려 죄를 누우치지 않고 나라 일을 거의 그릇치게 하였습니다. 이행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서 현직(顯職)에서 제거시키자고 계청(啓請)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당하여 멀리 귀양가서 죽었습니다. 지금 간적(奸賊)에게 모함을 받았던 자는 모두 신원이 되었는데 이행만 억울함을 안고 있으니, 가련한 듯합니다. 직첩을 돌려주어 위로해 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왕비(具王非)는 세력가에 의탁하여 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주먹질까지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주인(本主人)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중죄를 받고 멀리 외딴 성(城)으로 귀양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두 가지 큰 죄를 짓고서도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울분을 터뜨립니다. 법에 따라 조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혼인(婚姻)하는 날 저녁과 납채(納采)하는 날에 사람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도 합니다만 그 법을 설치한 것이 근년(近年)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 법을 힘입어 혼인하는 날 저녁에 쓰는 침구(寢具)를 갖추어 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마련하고 채단(綵段)을 쓰지 아니하며, 납채할 때에도 다만 현훈(玄纁 : 폐백)만 보내니, 사람들이 매우 편하게 여깁니다. 지금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홍여의 일은,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아마도 의심가는 곳이 있는 듯합니다만 일이 대역(大逆)에 관계되는 것이고 죄를 결정지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또 증거가 없으니, 소급하여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이장은, 그 때 희롱하여 부른 노래가 과연 유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것은 미친 아이의 일이므로 깊이 문책할 것이 못되는데, 여러 해를 멀리 귀양 보낸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편치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은 잘 알았다. 홍여의 일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한 옥사를 두 옥사로 만들고 마침내 정범인이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내가 의심이 되어서 물어 본 것이다. 홍여의 아내를 도성문 밖으로 쫓아낸 것은, 아무리 대역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죄율(罪律)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법을 시행하였다. 홍여의 아내가 성문 안에 있건 성문 밖에 있건 무슨 상관(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자로서 성문 밖으로 쫓겨 나가 있는 것이 혹시 어떨는지,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살게 해도 좋겠는가?”

하였는데, 윤은보·류부(柳溥)가 아뢰었다.

“홍여의 일은 죄를 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증거가 없으므로 소급하여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녀자를 도성 밖으로 쫓아 낸 것은 근고에 없던 일이니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辛丑 御朝講 上曰予欲言於大臣與左右久矣今者安老等奸狀上下已知而未及治之公論適發以定其罪 宗社之福也但安老構成虛事先去至戚欲多陷士林大變將出矣及其定罪也雖閭閻小民無不歡慶然其定罪乃在戚里論竄之後則於予心未安也閭巷小民何知公論之發也無乃以戚里之故而事發云爾耶領事洪彥弼曰安老等奸狀近古所無朝廷上下孰不憤疾公論自激臺諫一論上亦施從自古小人之情知之爲難雖知而快去尤難也今者覺悟旋即除去是可貴也上下四方所共洞照誰肯以戚里之故而置疑於其間也但奸人情狀自 上灼見而朝廷無腹心親臣奮不顧身力辨其邪者故致 上焦思日久更思未安臣以不肖子口舌彥弼遲與許沆語觸時事沆即啓之如告變之例受刑訊累次乃謫南方沆亦受厚賞得罪在外彥弼坐黜門外居南陽今日乃得入侍經幄慚赧無已且近者臺諫賞加事人或以爲恩命當自 上出下人不可如此開端大臣之啓大失事體然臺諫激於忠誠而摘發大奸論以賞加乃激勵之事也後有如此奸人知者又效而盡言不諱豈非勸勵之道乎 上曰有識之士何有如此之論哉柳子光時論賞事有前例矣大事初定未及覺悟前日大臣果啓之其欲論賞者其意以謂小人之出非獨今日無世無之今日之褒獎乃所以賞勸萬世忠志之士也大臣之意至當也[中略]

○領議政尹殷輔左議政柳溥右議政洪彥弼等承命詣賓廳傳曰安老等誣陷之事雖小事尚可議之况大罪難明之事乎是故議于大臣矣既往之獄追辨無益然上下知其虛事而予若不識則下雖欲辨孰敢先發乎觀洪彥之事自初至終其時憲吏金亨卿者彥之婢夫也與其妻甥同謀欲害隣居兵吏等而不道之言書諸牌掛於闕庭又以瓢造像掛之亦非一二焉推此獄時安老爲推官務欲歸罪於彥之家門此疑灼鼠之事而人皆聽信其家奴婢無數刑杖從其所問而取服謂推官以己意刑訊而奴婢等不忍刑杖服罪也決罪後彥雖年少忍杖不服而死事干李銀石者不忍苛杖初不見洪彥而以聽彥之指揮服招其曰指揮者是日之朝也彥之守喪自山所入京路傍人皆見者乃夕也此事已著矣然若推問則恐歸於誣故不推此跡數多杖死其後又現掛牌推之則亨卿與同生鄭吾乙未同謀借吾乙未筆跡而書牌以此同辭歸一治罪則此非彥所爲明矣其時議論曰務實於此則已定被罪歸虛故亨卿吾乙未等以正犯已著而明正其罪大逆之事因在於洪彥豈有如此冤獄乎卿等其時雖知此事下無正論如此大逆之事書諸史冊終不辨之可乎且文臣李璋儒時舉士大夫之名唱爲長歌事雖非矣然狂生戲歌豈足責哉雖非此人閭閻間亦有戲歌而以此竄逐彼人等指三兇必有他意而爲之故並議之殷輔等啓曰李荇當初見安老稍有文學謂可復用薦還於朝及陞六卿猶不悔罪幾誤國事荇審其端請去顯職反爲所陷謫死遐裔今當見陷奸賊者一切申雪之時荇獨抱餘冤似爲矜憫還給職牒以示收慰似當具王非投托勢家不母其母至於拳歐人紀滅絕又使本主枉被重罪遠徙絕城負此二大惡偷生至今人皆憤鬱依律置法以快物情爲當婚夕及納采日遣人摘奸似爲有弊但此法之設非始近年行之已久而貧窶之

家賴有此法婚夕寢具隨其所備不用綵段納采時亦只送玄纁人甚使之今不必改洪礪事臣等伏觀 上教似有疑端但事關大逆而定罪已久且無證據追辨甚難恐不可輕議李璋其戲歌果在儒冠之時則此狂童事不足深責多年遠竄物情未便傳曰大臣之議知道洪礪事已久輕議似難但以一爲二而終有正犯人此予所以爲疑而問之耳唯礪之妻黜送門外雖大逆之人無此罪律近來槩聞此法矣礪妻居門內門外有何關焉然以女子黜在門外何如使之任便居住可乎般輔柳溥啓曰洪礪事定罪已久事無證據追辨爲難其妻則以婦女黜送門外近古所無使之任便居住爲當

《中宗實錄 卷86, 34面》

중종 32년 12월 3일(무신)

상이 시학(視學)하려고 하여 법가(法駕)가 갖추어졌다. 헌부가 아뢰기를,
 “앞서 시학할 때에는 반드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한 뒤에 명륜당(明倫堂)에 전좌(殿座)하여 더러 경전(經傳)을 강독(講讀)하게 하거나 제술(製述)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번에 비록 작헌례는 없다고 하지만 임금이 시학하는데 까닭없이 곧바로 명륜당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과 예의에 어긋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생각은 나도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날에 재상(宰相)들이 조종조 때에도 가끔 성균관에 거둥하여 곧바로 명륜당에 전좌하여 시재(試才)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시 의논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간이 아뢴 바가 매우 마땅하다. 대체로 예(禮)는 인정을 따르는 것이니, 이번에는 임시 편의로 향(香)을 피우고 절[拜禮]만 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빨리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와 우의정 홍언필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옛날에는 다른 일 때문에 거둥하였다가 우연히 들어가 시학한 것이었으니 알성(謁聖)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오직 시학하기 위해 가는데 알성하지 않는 것은 인정과 예에 온당치 못합니다. 다만, 해가 짧아 예를 이룰 수 없으니 향을 피우고 절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만, 호종(扈從)하는 관원과 유생(儒生)들도 반열에 참여하여 예를 거행하게 하라.”

하고, 이에 급히 향실(香室)로 하여금 향을 올리게 하고 사시(巳時)에 상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알성하였다. 이어서 명륜당에 나아가 ‘어진 사람을 기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는 송(頌)’으로 출제하였다. 우등(優等)인 진사 조광옥(趙光玉)은 명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고, 그 다음인 진사 서우령(徐禹寧), 유학(幼學) 조징(趙澄), 진사 정흥수(鄭興秀), 생원(生員) 이광로(李光輅)는 회시(會試)에 직부하였다.
 ○戊申 上將視學法駕具憲府啓曰前者視學時必行酌獻禮然後 殿坐于明倫堂或講經或試製述今則雖無酌獻禮然人君視學而無端直入明倫堂於情禮似異傳曰此意予非不料但前日宰相等以爲 祖宗朝少時幸學直坐明倫堂試才時有之矣云故更不下議今臺諫所啓至當大抵禮循人情今以權宜只焚香拜禮仍傳于政院曰其速議于三公左議政柳溥右議政洪彥弼議啓曰古者仍他事行幸而偶入視學則不爲謁聖當矣今則專爲視學而不爲謁聖情禮未安但日短未得成禮焚香拜禮至當傳曰如啓但扈從官及儒生等亦令參班行禮可也於是急令香室進香已時 上幸成均館謁聖仍御明倫堂出題進賢退邪頌優等進士趙光玉命直赴殿試其次進士徐禹寧幼學趙澄進士鄭興秀生員李光輅直赴會試 《中宗實錄 卷86, 40面》

중종 32년 12월 6일(신해)

계복(啓覆)을 청리(聽理)하였다. 승지 정만중(鄭萬鍾)이 전옥서(典獄署)에 갇힌 전 유원 첨사(柔遠僉使) 최수천(崔守川) 재임시 군인 처소의 잡물(雜物)을 거둬들여 호마(胡馬)를 바꾸어 온 죄인데 교대시(絞待時)로 조을하였다.의 추안(推案)을 진계(進啓)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처벌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가 아뢰기를,

“이 사람이 범한 죄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만, 조관(朝官)으로서 장죄(贓罪)를 범하여 사형에 이른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피인(彼人 : 야인)에게 그 말을 팔았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으나 이것은 피인의 말을 바꾸어 온 것이니 그 죄도 차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범금률(犯禁律)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최수천이 범한 죄는 매우 중하니 율(律)에 따라 정죄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홍언필은 아뢰기를,

“최수천이 지은 죄는 진실로 사형이 마땅하므로 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출신한 조관을 장죄 때문에 사형까지 논의하는 것을 성조(盛朝)의 체모에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최수천이 범한 죄는 매우 중하니 법으로 바로잡아 후세(後世)를 징계해야 마땅하다. 다만, 요즈음 조관이 장죄로써 사형에 이른 자는 없고,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죄라도 특별히 그의 사형을 감하여 준 전례도 있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최수천으로 하여금 사형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시킨다면 반드시 저절로 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으며 신들이 감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이와 같은 죄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최수천으로 하여금 임금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죽을 목숨을 다시 살려 주신다면 이것도 성조(盛朝)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입니다.”

하고, 윤은보는 아뢰기를,

“무릇 사죄(死罪)를 논단(論斷)할 적에는, 사람의 목숨은 매우 중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어서 살리기 좋아하는 도를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같이 계복할 때에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에서도 당연히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유속(流俗)이 묵묵히 있는 것을 즐거하는 것이 유래가 있습니다.”

하니, 이에 상이 윤은보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앞서 류경(柳涇)도 장만(贓滿 : 범장(犯贓)의 한계가 찬 것을 말함)이었는데 사형을 면했었다.”

하였다.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과연 그렇습니다. 본조(本朝)의 류경도 장만으로 사형이 면제되었다면 사형의 면제는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죄를 사형하지 않은 전례가 이미 있으니, 최수천은 사형을 감하여 주라.”

하였다. 정만종이 또 전옥서의 죄수 전 관상감 부정(觀象監副正) 김귀수(金龜壽)앞서 관상감의 구임(久任)이 되었을 적에 간의대(簡儀臺)의 물긴는 보병(步兵) 3명을 번가(番價)하게 하고 사사로이 부린 것으로 죄가 교대시였다.의 추안을 진계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귀수의 아들이 세 번이나 상언(上言)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 보니, 사간(事干)은 바로 관상감의 노자(奴子)인 금동(金同)이다. 당초 추문할 때에는 그 관원(官員)의 일이 사죄에 저촉될 듯하여 발명(發明)을 하다가 곤장을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자복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두 대의 곤장을 맞고 갑자기 자복하였다. 이것은 인정과 의리로 보아 의심스러운 것이니 경속하게 논단(論斷)할 수 없겠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귀수가 벼슬에 있을 적에 아래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여 원망하였기 때문에 금동이 두 대의 곤장만 맞고 갑자기 자복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비록 애매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덮어주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김귀수는 당시 나이가 78세여서 형신(刑訊)을 못하고 다만 금동의 초사(招辭)로 대죄(大罪)를 받게 되었는데 사체에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지난날 이번신(李翻身)이 김귀수 때문에 녹안(錄案)에 등재되었으므로 김귀수에 대한 원망이 골수에 사무쳤기에 온갖 말을 꾸며대어 죄를 요청하는 단자를 김안로에게 올렸는데, 김안로가 김근사에게 보내어 신에게까지 미쳤고, 뒤에 또 형조에 보내어 그를 추문하게 하였습니다. 형조도 번신이 귀수를 미워하여 짐짓 다른 일을 거론한 것을 알았으나 안로 때문에 마지못해 추문했던 것인데, 그 고소장의 증거가 모두 관상감의 관원들이 평소 김귀수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번신의 고소한 것으로 이 사람의 죄를 결단할 수 없습니다. 신이 본감(本監)의 제조(提調)로 이 사건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니다.”

하고, 홍언필은 아뢰기를,

“김귀수의 일은 신이 모르는 바이나 지금 류부의 말을 들으니 매우 자세합니다. 대체로 증거에 따라 죄를 결정하는 것이 만약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애매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김귀수의 죄와 같은 것은 경솔하게 논단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신이 김귀수를 고소한 단자를 직접 형조에 올리지 않고, 먼저 김안로에게 보여 그를 추문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속 뜻이 있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러 다른 일을 열거한 것이니 특별히 사형을 감해야 될 뿐 아니라 사실로 취급할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귀수의 일이 매우 애매하기는 하나 형관(刑官)은 증거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형(重刑)을 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제 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형조가 처음에는 논죄(論罪)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안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이것은 사실로 취급하여 죄를 결정할 수 없으니 추문하지 말라.”

○辛亥聽啓覆承旨鄭萬鍾以典獄署囚前柔遠僉使崔守川在任時軍人處雜物收斂胡馬貿來罪絞待時推案進啓 上曰此人之罪何如領議政尹殷輔曰此人罪犯則當死但以朝官犯賊至死近所罕見且彼人處以其馬賣之則罪不可恕此則貿彼人之馬其罪亦有等差不可一以犯禁律斷之左議政柳溥曰崔守川所犯至重當依律定罪右議政洪彥弼曰崔守川所犯罪固當死臣無所言但出身朝官以賊罪至於論死未知於 盛朝何如 上曰崔守川所犯至重當繩以法以懲其後但近日朝官以賊至死者無之雖其罪難恕特減其死亦有其例殷輔曰當使守川不至於死極邊充軍則亦必自懲然在 上心所斷非臣等所敢言溥曰如此之罪在下之人所難言也然若使守川得蒙天恩復續已絕之命則是亦 盛朝好生之德殷輔曰凡死罪論斷之時以其人命至重不可絲毫有差以害求生之道故如此啓覆之時東西壁亦當有言而無一人出言其流俗喜默有自來矣於是 上顧謂殷輔等曰前者柳涇亦以賊滿免死矣殷輔等曰 上教果然當朝柳涇亦以賊滿免死則其免死亦有前例矣然惟在 上決 上曰犯賊不死既有前例則崔守川減死可也萬鍾又以典獄署囚前觀象監副正金龜壽前爲觀象監久任時簡儀臺汲水步兵三名番價私用罪絞待時推案進啓 上曰金龜壽之子今已三度上言矣予詳察之其曰事干者乃觀象監奴子金同也當初推問之時其官員之事似當抵死發明至於不勝忍杖然後乃服而今只受二箇杖遽服此情理所可疑不可輕易論斷殷輔曰龜壽在官時下人皆疾怨故金同只受二箇杖而遽服其間雖有曖昧之事誰欲掩之且龜壽以時享七十八歲不得刑訊只以金同招辭至被大罪未知於事體何如溥曰初李翻身以龜壽之故得錄案怨其龜壽痛入骨髓百端飾辭以請罪單字進呈于金安老安老傳送于金謹思以及于臣後又送于刑曹使推之刑曹亦知翻身疾怨龜壽故舉他事以安老之故不得已推之其告狀據證皆觀象監官員常疾怨龜壽者也決不可以翻身告訴斷此人之罪也臣以本監提調詳知此事故如此啓之彥弼曰龜壽之事臣所不知然今聽溥言甚詳大抵據證定罪若不公當則曖昧莫甚如龜壽之罪不可輕易論之 上曰李翻身以告訴龜壽單字不直呈刑曹先示安老而推之必有其意其爲不公莫甚且此是故舉他事非特減死而已也似不可取實也殷輔曰龜壽事雖至曖昧刑官則據證定罪故至被重刑今則惟在 上決溥曰刑曹初欲勿論而以安老之故以至於此矣 上曰此不可取實定罪可勿推

《中宗實錄 卷86, 40面》

중종 32년 12월 8일(계축)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삼관(三館)의 남행은 도목(都目)마다 각각 2원(員)을 전출하는데 사실 조종의 법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권지(權知)가 적체하여 더러는 10년이 되어도 전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육조(六曹) 낭관에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소통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한 때의 임시 방편이며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법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거관하는 법은 일체 국전(國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삼관에 적체가 많을 경우 가끔 특별히 천거해야 하니

조종조(祖宗朝)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는 의논드리기를,

“2원(員)은 더 차출하는 것은 사실 조종조의 법이 아니고 한 때의 임시적인 방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지(權知)가 만약 적체됐을 경우 특별히 천거하는 전례가 있으니, 『대전(大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우의정 홍언필은 의논드리기를,

“당초 두 사람을 거관(去官)할 때에, 반드시 신·구(新舊)의 인원이 쌓여서 소통되지 않아 조정되지 않은 듯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관하는 것을 넓히고자 하여 한 때의 임시 편의를 계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쌓여서 소통되지 않은 것도 없고 또 오래도록 조정되지 않는 것도 없으니 새로운 법을 없애고 구례(舊例)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영상의 의논에 따랐다.[중략]

○대간이 아뢰기를,

“좌의정(左議政) 류부(柳溥)는 성품이 고루하고 막혔으며, 또 재능과 국량(局量)이 없어 물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육경(六卿)이 되었을 때에도 물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승으로 임금을 보필하는 지위가 물의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체로 정승의 자리는 적합한 사람을 얻은 뒤라야 조정이 존중되고 인심이 의지하여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옳지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도 구차하게 그 자리를 채운다면 명기(名器)가 가벼워지고 국가의 일이 그릇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방에서 목마르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때인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시위소찬(尸位素餐)하게 하여 여러 사람을 실망하게 하십니까. 체직시키소서.

그리고 우참찬 심언광과 호조 판서 권예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여 실수한 것이 매우 크니, 모두 현열(顯列 : 현직(顯職)의 반열(班列))에 서용하지 마소서. 사온 봉사(司醞奉事) 강영세(姜永世)는 김안로의 가신(家臣)이 되어 요사(妖邪)한 술책으로, 몰래 김안로를 도와 그 악(惡)함을 부추겨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일을 저해한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요사스럽고 괴상한 인물은 나라안에 함께 살게 해서는 안 되니 먼 변방으로 쫓아 버리소서. 요사이 상의 분부가 정녕(丁寧)하여 늘 진정시켜 화평(和平)하게 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으시기에, 신들도 진정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상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 진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을 내버려 두고서 논죄(論罪)하지 않고 구차스럽게 용납하려고 하면 도리어 소요(騷擾)가 일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감히 아뢰옵니다.”

하고, 헌부가 최희맹과 이영현의 일을 아뢰었다.

사신은 논한다.

류부(柳溥)는 본디 물망이 없었다. 김안로의 천거로 인재가 부족한 틈을 타 구차스럽게 조정에 채워졌다. 심언광은 안로에게 빌붙어 갑자기 육경에 발탁되어 세력이 대단하였으므로 문전이 저자와 같았다. 무릇 인물을 천거하고 기용하는 데에 오직 뇌물로 하였기에 식견(識見)이 있는 사람은 그르게 여겼으니, 공론이 일어난 것이 마땅하다. 권예는 비록 실수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성격이 본디 청렴하여 남에게 붙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강경 정직한 일이 많았으니, 언광의 무리에 비교하면 옥석(玉石)을 구분하는 것과 같을 뿐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행한 때를 만나 끝내 당악(黨惡)의 책망을 면치 못하였는데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하다.

전교하였다.

“류부(柳溥)의 일은 논계(論啓)한 것이 마땅한 듯하다. 다만 정승의 지위는 경솔하게 체직할 수 없으며 당초 정승을 뽑을 때에 대신에게 하문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이제 대신의 의논을 모은 다음에 결정하겠다. 심언광과 권예는 대신인데 대간의 논계도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지금 본직(本職)을 체직하라. 강영세의 일은 아뢰 대로 하라. 다만 위협으로 따른 자는 다스리지 말고 진정하여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상하가 함께 힘써야 할 바이다. 최희맹과 이영현은 이미 그 직임을 맡겼으니 그 사람을 등용하여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미 서경을 넘겼고 또 논계하였으니 그 직임을 체직하라.”

○癸丑領議政尹殷輔議曰三館南行每都目各二員遷轉果非 祖宗之法頃緣權知積滯或有十年不遷而時適六曹郎官多缺故姑開疏通之路此特一時權宜非經久之法自今去官之法一依國典爲便但三館多滯則有時別薦在 祖宗朝亦有之左議政柳溥議曰二員加出果非 祖宗朝之法出於一時權宜權知若有積滯則例有別薦遵守大典宜當右議政洪彥弼議曰當初二員去官時必因新舊積滯有似不調之弊故欲廣去官而爲此一時權宜計也今無積滯且無久不調者請除新法依舊例爲當從領相議[中略]

○臺諫啓曰左議政柳溥性稟固塞又無才局物望所輕故曾爲六卿亦有物論况居台輔之地其能關於有無乎大抵相得其人然後朝廷尊重人心倚以爲安無其人闕其位則可如非其人而苟充其位則名器輕而國事非况今當四方想望惟新之治如飢如渴之時豈可以如此之人尸素其位以缺具瞻之望乎請迺右叅贊沈彦光戶曹判書權輓趨向不正所失甚大請並勿叙顯列司醞奉事姜永世爲金安老家臣以妖邪之術陰贊安老從曳其惡傷人害事者多矣如此妖怪之物不可混置中土請迸諸遐裔近日 上教丁寧每以鎮定和平爲務臣等亦非不欲仰體 聖上懇惻之意鎮而不撓也此等人物今置不論若欲苟容反致騷擾故不得已敢啓憲府啓崔希孟李英賢事史臣曰柳溥素無物望但因金安老之薦且乘乏人苟充廊廟彦光諂附安老驟擢六卿勢焰熏

灼門闕如市凡所薦用人物惟其賄賂之多少識者非之公論之發宜矣權輓雖不能無所失性本廉介不喜趨附多有抗直之事其視彥光之輩不啻若玉石之判矣然遭時不幸終未免黨惡之誚其情可恕也傳曰柳溥事論啓似當矣但相位不可輕率違之當初卜相時問于大臣而爲之今收議于大臣然後定之沈彥光權輓大臣也臺諫論啓亦豈偶然乎今遞本職可也姜永世事如啓但脅從罔治鎮定和平之語此正上下所共勉也崔希孟李英賢旣爲其職則當用其人以試能否可也然旣越署而又論啓則可違其職

《中宗實錄 卷86, 43面》

중종 32년 12월 9일(갑인)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류부(柳溥)가 전에 육경이 되었을 때 정말 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 찬성(贊成)의 자리에 있으면서 매우 삼가고 조심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날 복상(卜相)할 때에 추천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론이 이러하니 따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류부(柳溥)가 젊어서는 선비의 지조가 있었으며 청렴 결백한 행실로 근신(勤愼)하였고 과실(過失)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이와 같으니 따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두 정승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좌상을 지금 체직하고 새 정승을 가려 뽑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승을 논의(論議)하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내 천천히 결정해야겠다. 다만, 좌의정은 비워둘 수 없으니 우의정이 승진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류부는 일찍이 삼공을 거쳤으니 당연히 영중추(領中樞)로 삼아야 하는데 정광필을 이미 영중추로 삼았으니, 판중추(判中樞)로 단망(單望)하여 주의(注擬)하라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하라.”

○홍언필을 의정부 좌의정에, 조계상(曹繼商)을 호조 판서에, 홍섬(洪暹)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였다.

○甲寅尹殷輔議曰柳溥嘗爲六卿果有物論但久在履公之地小心謹慎別無非違故前日卜相時薦啓今物論至此在所勉從右議政洪彥弼議曰柳溥少有儒操清修謹慎未聞過失然物論如此在所勉從傳于政院曰兩相議如此左相今當違之而新相亦當卜之然論相不可不難慎予當徐徐定之但左議政不可闕右議政當陞柳溥曾經三公當爲領中樞而鄭光弼旣爲之判中樞單望注擬事傳于吏兵曹可也○以洪彥弼爲議政府左議政曹繼商爲戶曹判書洪暹爲司憲府持平

《中宗實錄 卷86, 45面》

중종 33년 4월 15일(무오)

시관(試官)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좌찬성 소세양(蘇世讓)이 아뢰기를,

“시관 중에 절친하여 상피(相避)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 미리 출제(出題) 하도록 아뢰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대체로 전시(殿試)에는 잡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시관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궐내에서 유숙하는데 시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유숙하면 허술한 폐단이 생기고 또 시관의 수가 많아서 모두 궐내에서 유숙하면 몹시 시끄러울 것이니, 이번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유숙하고 파루(罷漏) 때에 일제히 모이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유생의 수가 많으니 미리 출제하여 군색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시관은 모두 분별 있는 자들인데 누설할 리 있겠는가? 그러나 절친하여 상피해야 할 자가 있으면 전좌(殿坐) 뒤에 대기하였다가 출제하는 것이 좋겠다. 시관을 각자 집에서 유숙하게 했다가 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역시 물론이 있을까 싶다. 재상의 근수(跟隨)는 정하여진 수가 있으니 서리(書吏)도 근수의 예를 계산하여 더 늘리지 않으면 궐내가 시끄러운 폐단은 분명 없을 것이다.”

○戊午試官判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彦弼左贊成蘇世讓啓曰試官中多有切親相避預稟出題至爲未安大抵殿試則不通雜人試官其不得任意出入矣今則雖宿於闕內試官散宿諸處不無虛疎之弊且試官數多皆宿闕內至爲紛擾今姑退宿各家待罷漏時齊會恐或無妨傳曰儒生數多預欲出題者俾勿窘迫也試官皆是有識之人豈有漏通之理然有切親相避則待殿坐後出題可也試官退宿於家而還入者亦恐有物論也宰相根隨自有其數書吏亦計於根隨例而勿加率則必無闕內紛擾之弊矣

《中宗實錄 卷87, 26面》

중종 33년 4월 16일(기미)

상이 춘당대에 나아갔는데 세자가 입시했다. 논(論)에 ‘묵자비사(墨子悲絲)’를, 부(賦)에 ‘천현수상상(薦賢受上賞)’을 출제하여 유생에게 시험 보였다.

○류부(柳溥) 등이 생원 윤춘년(尹春年) 등 50인의 시권(試券)을 가지고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등수에 든 30인만 뽑으라.”

○己未上御春堂臺世子入侍出題論墨子悲絲賦薦賢受上賞試儒生○柳溥等以生員尹春年等五十人試券入啓傳曰只取入等三十人

《中宗實錄 卷87, 27面》

중종 33년 8월 1일(신축)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김극성(金克成), 예조 판서 유여림(兪汝霖)이 아뢰기를,

“이제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를 보니, 경오년(중종 5, 1510) 왜인(倭人)의 난(亂) 이후 원래 지급해 오던 쌀[米] 2백 석과 배 50척(隻) 중에서 반을 감하여 주었는데, 전자에 일악 동당(一鶚東堂)의 청에 의해 배 5척을 더 지급하게 되어서 합계 30척이 되었습니다. 왜인들은 원래에 지급해오던 수량을 얻지 못하자 이 때문에 분노하여 패만스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신약정(壬申約定)³⁴³은 가볍게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부터 큰 일을 만나면 정승을 지낸 이와 육경(六卿)·판윤(判尹)·지변사 당상(知邊事堂上) 등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었습니다. 지금 정광필(鄭光弼)·류부(柳溥)·윤희평(尹熙平)·황침(黃琛)이 있으니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을 알았다. 우리 나라가 북쪽 오랑캐를 중하게 여기고 남쪽 오랑캐는 가볍게 여기고 있으나 이들을 방비하는 일은 참으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일찍이 약정한 조문이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利)로써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엄하게 나라의 위엄을 보여, 수호(修好)와 양척(攘斥)을 게을리 하지 말아서 우리의 형세를 무겁게 만든다면, 변방의 근심이 절로 없어진 것이다.”

辛丑朔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彦弼右議政金克成禮曹判書兪汝霖啓曰今見對馬島主書契庚午年倭人叛亂以後元給米二百石船五十隻內減半給之前以一鶚東堂之請僧給船五隻然則都計三十隻也倭人等未獲元給之數以此憤怨多有悖慢之辭然壬申年約條則不可輕毀自前以來若遇大事則曾經政丞及六卿判尹知邊事堂上等同議以啓今有鄭光弼柳溥尹熙平黃琛請與同議答曰啓意知道我國以北狄爲重以南夷爲輕防備之事最不可忽曾有約條一以懷之以利一以嚴示國威修攘不怠以重在我之勢則邊患自無矣 《中宗實錄 卷88, 1面》

중종 33년 8월 23일(계해)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좌찬성 소세양(蘇世讓), 우찬성 윤임(尹任)이 명을 받들고 편전(便殿)의 앞문 밖에 나아갔다. 우의정 김극성(金克成)은 병으로 입궐(入闕)하지 않았다. 은보와 언필이 아뢰기를,

343) 임신약정(壬申約定) : 중종 7년(1512) 우리 나라와 대마도주(對馬島主) 사이에 맺은 약조. 삼포 왜란(三浦倭亂) 이후 이들의 통제를 엄히 하여 왜인의 삼포 거주를 금하고 제포(齊浦)만을 개항(開港), 중전의 세견선(歲遣船)의 숫자 50척을 반감하여 25척으로 하고 세사미두(歲賜米豆) 2백 석을 반감하여 매년 1백 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흰 운기 8줄이 하늘에 뻗은 것은 실로 비상한 변고입니다. 재변이 이같이 큰 적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신들이 외람되게 중임을 맡아 조섭(調變)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재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어진 신하를 골라서 보좌(輔佐)를 맡게 하소서. 그렇게 한 뒤에라야 반드시 재변이 없어질 것입니다. 속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답하기를,

“재변이 중첩하여 나타나는 것은 실로 내 탓이다. 어찌 경들의 소치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글로 써서 대신 등에게 보이기를,

“경들이 함께 의논한 뒤에 입대(入對)하라.”

하니, 정광필 등이 글을 보고 감탄하기를,

“우리 나라의 폐단이 여기에 다 있으니 다시 아될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28조항에 부표(付標)하였는데, 그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근일 흰 무지개의 변이는 지극히 경악스럽다. 어찌 이 변이를 불러들인 원인이 없겠는가. 상하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다시 닦고 살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래 백성을 편안하게 할 일을 논하는데,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말만하고 마는 것이 재변에 무슨 절실한 대응이 될 수 있겠는가. 옛말에,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실행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성심껏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이 관(官)의 일 다스리는 것을 집안 일 다스리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집안 일만 힘쓰고 관의 일은 힘쓰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끼칠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비용을 절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림에 있어 때를 살펴서 하는 등의 일은 임금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일이고, 탐오함을 부끄러워하며 염치를 숭상하는 일은 신하된 자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곤고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내가 어질지 못한 소치이다. 위로 재변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백성을 근심하여 때로 관원을 보내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고자 하나, 관원의 왕래에 폐단이 생길 뿐 아니라 백성들이 도리어 숨기니, 자세히 알기로는 감사만한 이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미 팔도에 하유하여 백성의 질고를 물었다.

그러나 조정은 인체의 복심(腹心)과 같고 변방은 사지(四肢)와 같은 것이다. 반드시 먼저 복심을 견고하게 한 이후라야 사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권간(權奸)을 제거한 뒤에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죄를 묻지 말라는 명이 있었으나 훈유(薰蕕)와 빙탄(氷炭)처럼 서로 용납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선한 자와

선하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외관에 보직시킨 자가 매우 많았었다. 대체로 인심이 화순하지 못하면 하늘의 마음도 화순하지 않아서 화기를 손상하게 되므로 재변이 오게 된다. 지금의 인심을 어찌 화락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임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인심이 이반되고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간신(奸臣)이 정권을 훔친다고 하였다. 근래 여러번 권간의 변고가 있었으니 강하고 부드러움을 알맞게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나랏일을 맡은 이가 지나치게 순후하면 기강이 바로 잡히지 못하고 지나치게 각박하면 마침내 난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 강한 것이 순후함만 못하다. 근래 인심이 전혀 순후한 풍습이 없어서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려 하는 폐단이 많다. 그리고 문신(文臣)은 조정에 있어야만이 중외에 경중의 구분이 있게 된다. 지금 경관직(京官職)에 있는 자와 외관직(外官職)에 있는 자를 비교하면 외관직에 있는 문신이 반수를 넘어서 안이 가볍고 밖이 무거운 실정이다. 그중 이미 부임한 자는 그만이지만 조정에서 쓸만한 자가 있다면 경관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옛말에, 마구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빛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중이 마땅한 바를 잃었음을 기롱한 것이다. 금년 같은 흉년에 많은 생곡초(生穀草)를 백성에게 징발한다면 어찌 폐가 없겠는가. 내외사복(內外司僕)에서 기르는 말의 숫자를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에 감한 것을 근래 약간 풍작이 들었다 하여 각사(各司)가 잇따라 복구(復舊)하기를 청한다. 호조로 하여금 다시 감하게 하라. 각사의 폐단을 살펴보니 간사한 술법이 매우 많아 간사한 행위가 날로 불어나고 있다. 비록 회계(會計)에 붙여 있는 숫자일지라도 고자(庫子)가 쓸 수 없는 물품과 쓸 수 있는 물품을 바꿔버리므로, 회계는 맞지만 쓰는 데는 항상 부족을 근심하게 된다.

중국 사신이 나올 때면 물품을 백성에게서 인납(引納)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수령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 외람되이 10배나 징수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긴다. 이런 수령은 감사에게 하유하여 적발하는 대로 계문(啓問)하게 하였으나 감사가 아직까지 적발하지 않고 있으니 봉공(奉公)한다는 의의가 어디 있는가. 각사의 폐단을 해조(該曹)가 또한 살피지 않는 탓이다. 대소 각사(各司)의 작지(作紙)는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이미 법령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를 법대로 봉행하는지 모르겠다. 지방의 아전이 서울에 오래 머물면서 공물(貢物)을 바치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감찰(監察)과 관리에게 있으니, 엄중하게 치죄해야 할 것이다.[중략]

○의정부에 전지(傳旨)를 내렸다.

“근래 재변이 겹쳐 일어나 없는 달이 거의 없다. 종묘에 이미 벼락이 친 일이 있었고 태백(太白)이 계속하여 주현(晝見)하니 나의 마음은 두렵기만 할 뿐 스스

로 마음 놓을 수 없다. 또 이달 18일에는 흰 운기가 해를 범하고 하늘에 가로
 퍼져 드디어 줄을 이루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고금에 드물
 게 있는 이변이다. 하늘이 경고를 보임이 깊고도 절실하다. 사람의 일에 어찌 재
 변을 부를 만한 잘못이 없겠는가. 잘못된 정사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백
 성이 원망할 일이 여러 가지 이겠으나 옥사(獄事)에 실로 억울한 일이 많은 것
 이다. 이에 재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겸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는
 은전(恩典)을 베풀고자 한다. 이달 23일 먼동 트기전, 국가의 강상(綱常)에 관
 계되는 죄와 장도죄(贓盜罪)를 제외한 시추 잡범으로 유형(流刑) 이하의 죄수는
 모두 다 소방하도록 중외에 효유하라.”

○밤. 흰 운기가 간방(良方)에서 남쪽을 향하여 하늘의 반을 넘게 뻗었다. 그 너
 비는 돛자리 폭만 했고 점차 동쪽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

○癸亥領中樞府事鄭光弼領議政尹殷輔判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彥弼左贊成蘇世讓右贊
 成尹任承 命詣閣門之外右議政金克成病未詣闕殷輔彥弼啓曰白氣入道希天實是非常之變也
 災變之大未有如此者至爲駭愕臣等叨受重任未能盡燮調之責故致有如此之變也須擇賢臣
 使任輔佐然後必無災變矣請速遣臣等之職答曰災異疊見實在於予豈卿等之致勿辭仍以書
 示大臣等曰卿等僉議後入對鄭光弼等見書歎曰我國弊端盡在於此更無所啓矣於是付標二
 十八事其書略曰近日白虹之變至爲駭愕豈無所召上下所當兢兢業業更加修省少不弛念者
 近者論安民之事此甚爲美然徒言豈切於應災乎古云非言之難惟行之難行之以誠實可也古
 人云治官事如治家事如或但務家事而不務官事則生民豈得無愁歎哉如節用而愛人使民以
 時此人君所當念而羞愧貪污崇尚廉恥則人臣所當務者君臣若不如此則民之困瘁何足恠哉
 此予不穀之所致上懼災下憂民生時欲遣官問民疾苦而非徒往來有弊民反諱之可以詳知者
 莫如監司故已諭八道問民疾苦矣然朝廷者腹心也邊圉者四肢也必先固腹心然後可保四肢
 去奸之後雖有脅從罔治之命如薰蕕冰炭之不可相容故區別淑慝補外者頗多大抵人心不和
 順則天心亦不和順感傷和氣而災變必臻今之人心豈可謂和樂哉古人云君太剛則人心離叛
 太柔則奸臣竊權近來屢有權奸之變剛柔之得中豈不難哉當國者過於淳厚則紀綱不整過於
 刻迫則終致擾亂然則莫優於淳厚也近來人心頓無淳厚之習構虛陷人之弊多矣且文臣在於
 朝廷然後有內外輕重之分今以在京者比於在外者則在外者過半內輕而外重其已赴任者則
 已矣如有可用於朝廷者適爲京職何如古云廐有肥馬民有飢色此譏其失輕重之宜也如此凶
 歲生穀草多徵於民豈無其弊乎內外司僕養馬之數減之何如前所減省近因小稔各司續續請
 復之令戶曹更爲減省可也觀各司之弊則用術多端奸詐日滋雖付會計之數庫子以不用之物
 換可用之物會計雖准而用之常患不足天使之來不得已引納而守令憑此濫徵十倍猶爲不足
 如此守令下諭監司使摘發啓聞而監司尚不摘發奉公之意安在各司之弊該曹亦不能察故也
 大小各司作紙一切不納已有法令而未知其奉法也外吏久留而不得納貢物其責在於監察與

官吏所當大治也[中略]

○下傳旨于議政府曰近來災變疊臻殆無虛月廟廡既震太白繼見予心祗慄罔自弛寧又於本月十八日白氣犯日橫布于天乃至八道經時不消此古今罕有之異天示以警且深且切人事之失豈無所召念惟疵政之夥雖民怨之多端狂獄之間實冤枉之尤滯茲講消弭之方兼舉原宥之典自今月二十三日昧爽以前除關係國家綱常賊盜外時推雜犯流以下並皆疏放曉諭中外○夜白氣自良方南向半天餘其廣如席漸東去良久乃滅

《中宗實錄 卷88, 14面》

중종 33년 8월 25일(을축)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좌찬성 소세양(蘇世讓), 우찬성 윤임(尹任)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상이 죄인들의 사간인(事干人)과 연좌인(緣坐人)의 단자(單子)를 정광필 등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누른 빛 표지를 붙인 것은 소방(疏放)할 수 없는 자들이고, 흰 빛 표지를 붙인 것은 소방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의논할 자료, 안처검의 건기(件記)에 이름이 적힌 노세걸(盧世傑)은 형신(刑訊)을 5차 받았고 송충(宋驄)과 송순량(宋順良) 등은 1차의 형신에 승복하였는데, 별로 자신이 범한 죄는 없고 단지 이름이 건기에 적혀 있어 죄를 받은 것이니, 정범(正犯)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김식(金湜)의 사간인인 권경(權經)·권위(權緯)·류기(柳淇) 등은 난언(亂言)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 무거운 죄는 아니다. 오희안(吳希顔)은 난언한 정리(情理)가 매우 유해(有害)하니 그 죄는 참형(斬刑)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몰(籍沒)만하고 사형을 감하여 사변(徙邊)하였으니 이제 와서 소급하여 고칠 수 없다. 김덕순(金德純)은 도주 중에 있어 체포되지 않았으니 소방할 수 없다.

대저 죄인에 연좌된 자 중 동생(同生)·숙질(叔姪)은 소방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모(父母)·처첩(妻妾)·자녀(子女)와 같은 자는 경솔히 소방할 수 없다. 또 연좌되어 물고(物故)된 사람은 부표하지 않았다. 또 어여분(於汝分)의 죄는 자녀로 관련되었다면 소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자부(子婦)로서 친자녀와는 차이가 있으니 소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마이(巨爾伊)·은이(銀伊)는 죄인의 서열(庶孽) 동생이다. 다른 사람의 예로 본다면 소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거마이는 시강원(侍講院)의 비녀(婢女)로 정속(定屬)되었고 은이는 의정부에 정속되어 자녀(子女)를 생산하였고, 또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같은 죄인 등은 부표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리고 대신들이 반드시 경중을 품의(稟議)할 것이므로 구분하여서 내려 보낸다. 죄가 무거운 자도 아울러 다 소방할 수는 없다. 만약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석방한다면 반드시 물론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중략]

하니, 전교하였다.

“알았다. 죄인에게 연좌된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니, 물고되었더라도 정속된 사람의 경우는 그 자손도 그대로 계속하여 그곳에 정속되는 것이다. 그 정상이 석방할 만하면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여분은 또한 친딸이 아니니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마이와 은이는 본디 천인(賤人)이니 석방하여도 그대로 천인이 될 것이니 그대로 정속시키는 것도 무방하겠다.”

○乙丑領中樞府事鄭光弼領議政尹殷輔判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彥弼左贊成蘇世讓右贊成尹任等詣賓廳 上以罪人等事干緣坐人單子下于鄭光弼等曰付黃標者不可放之類付白標者可放之類而議之者安處謙件記付盧世傑受刑五次宋驄順良等受刑一次而皆承服別無自犯之罪只名付於件記而被罪矣與正犯有間而金湜事干權經權緯柳洪等知亂言不告而元非深重者也吳希顏則亂言情理切害其罪當斬籍沒而已減死徙邊今不可追改之也金德純在逃未捕不可放也大抵罪人等緣坐同生叔姪則放之宜矣其如父母妻妾子女則不可輕放矣且緣坐物故之人則不付標矣且於汝分之罪若干子女則不可放矣此乃婦也與親子女有間放之何如巨伊銀伊乃罪人孽同生也以他人之例見之則可放矣但巨伊定屬於侍講院銀伊定屬於議政府產其子女歲月已久放釋何如此罪人等不宜付標而大臣必稟輕重故辨別下之矣不可弁其重者而盡放之也若不辨輕重放之則必有物論矣[中略]

傳曰知道罪人緣坐事更料之則雖物故定屬人則其子孫仍屬其處情若可放則放之宜矣於汝分且非親女例也放之可也巨伊銀伊本是賤口則雖放之猶爲賤口仍屬無妨

《中宗實錄 卷88, 19面》

중종 33년 10월 2일(임인)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대신들이 물러갈 때에 승전색에게, 다시 아뢰실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할 말이 있기에 전교한다. 어제 글을 써서 은밀히 대신에게 보인 것은 참으로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대신들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대신들이 끝끝내 고집하고 있으니 사소한 일이 아니다. 모름지기 사방에 전파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전후하여 써서 내린 글과 전교한 말은 주서(注書)가 서책에 기록했을 것이니 어제 수참(隨參)치 못한 재상들이 들어오면 아울러 이를 보여주라.”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김극성(金克成), 좌찬성 소세양(蘇世讓),

우찬성 윤임(尹任), 호조 판서 조계상(曹繼商), 이조 판서 윤인경(尹仁鏡), 형조 판서 성세창(成世昌), 공조 판서 이귀령(李龜齡), 병조 판서 양연(梁淵), 한성부 판윤 이기(李芑)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왔다. 윤은보가 대신 등에게 말하기를,

“대내(大內)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승전(承傳)을 출납할 때에 형세로 보아 매우 더딜 것이니 대내의 근처에 나아가 아뢰어야 합니다.”

하니, 이에 정광필(鄭光弼) 등이 인정전(仁政殿) 동장랑(東長廊)으로 나아갔다. 형조 참판 권벌(權撥), 병조 참판 정옥형(丁玉亨), 공조 참판 한윤창(韓允昌), 예조 참판 김희열(金希說), 한성부 좌윤 임백령(林百齡), 우윤 류인숙(柳仁淑), 대사성 어득강(魚得江), 이조 참의 허자(許磁), 호조 참의 김수성(金遂性), 병조 참의 윤사익(尹思翼), 형조 참의 홍신(洪愼), 예조 참의 임권(任權), 병조 참지 이언적(李彦迪)도 나아갔고 대소 종재(宗宰)들이 서로 이어 이르렀다. 주서 권철(權轍)이 어제 기록한 것과 전교한 말을 써서 보이니, 대소 종재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경황(驚惶)해 하였다.

○壬寅傳于政院曰昨日大臣退去時言于承傳色曰有更啓之事云大臣等必有所言而予亦有所言故今又傳教矣昨日以書記密示大臣者誠以予今適當機會故意大臣等亦必以爲當也大臣等竟至牢執不小之事必當傳播於四方矣昨日前後書記及傳教之言載於注書草冊昨未隨參宰相入來其並示之○領中樞府事鄭光弼領議政尹殷輔判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彦弼右議政金克成左贊成蘇世讓右贊成尹任戶曹判書曹繼商吏曹判書尹仁鏡刑曹判書成世昌工曹判書李龜齡兵曹判書梁淵漢城府判尹李芑詣于賓廳尹殷輔語于大臣等曰大內隔遠承傳出納之際勢甚遲緩也詣大內近處啓達於是鄭光弼等詣仁政殿東長廊刑曹參判權撥兵曹參判丁玉亨工曹參判韓允昌禮曹參判金希說漢城府左尹林百齡右尹柳仁淑大司成魚得江吏曹參議許磁戶曹參議金遂性兵曹參議尹思翼刑曹參議洪愼禮曹參議任權兵曹參知李彦迪亦詣焉大小宗宰相繼而至注書權轍以昨日書記及傳教之言書而示之大小宗宰皆掩泣驚惶

《中宗實錄 卷88, 44面》

중종 33년 10월 24일(갑자)

전교하였다.

“요즈음 날씨가 심히 추워 계복(啓覆)을 자주 할 수 없다. 경외(京外)에 수감된 죄수는 옥에 오래도록 지체하게 할 수 없다. 전옥(典獄)의 죄수 김순선(金順善)의 옥사(獄辭)는 이미 초복(初覆)을 거쳤고 그 추안(推案) 또한 그리 많지 않으니 오늘 함께 아뢰라.”[중략]

○상이 조계(朝啓)를 청리하였다. 좌부승지 신거관(愼居寬)이 전옥(典獄)의 죄수 김순선(金順善) 살인죄를 범하여 교대시(絞待時)임의 추안(推案)을 아뢰어 재복(再覆)

을 끝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대신의 의논에 최용(崔龍)이 가지고 있던 몽둥이로 순선(順善)을 치려 하니 순선이 깨진 기와 조각으로 이를 막다가 우연히 이마에 명중되어 본의 아니게 죽게 된 것이요 본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며, 순선의 나이 또한 70이 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사형을 감해주려 했으나 살인한 죄수를 초복(初覆)에서 사형을 감해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재복 때에 의논하려 했던 것이다. 최용이 이미 이 때문에 죽었으니 순선은 율문(律文)에 의하면 일죄(一罪)이지만 실정을 참작해야 할 것 같다.”

하였다. 영사(領事)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최용이 먼저 순선을 쳤고 순선이 기왓장으로 이를 막아치다가 잘못 이마에 명중되어 죽었더니, 본디 고의로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율에 의한다면 교형(絞刑)에 처해야 마땅하나 상께서 재량하여 감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사형은 감하라고 하였다.

○甲子傳曰今者日候寒甚啓覆不可數行也京外之囚皆不可滯獄而典獄囚金順善獄辭已讞初覆而其推案又不甚多今日並啓可也[中略]

○上聽朝啓左副承旨慎居寬以典獄囚金順善殺人罪絞待時推案進啓再覆訖 上曰前者大臣議以爲崔龍欲以所持杖擊順善而順善以瓦礫拒之偶中額角誤而至死非本欲殺之也而順善之年又過七十云初欲減死而殺人之囚不宜減死於初覆故欲於再覆議之也崔龍旣因此而死順善之死在律文則一罪也情則似可斟酌也領事柳溥曰崔龍先擊順善而順善以瓦礫擊之誤中其額而死其本意非是故殺之也於律雖當處絞在自 上裁減上曰減死可也

《中宗實錄 卷88, 64面》

중종 34년 1월 2일(신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의 나이 이제 70에 이르러 기력이 쇠하고 병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옛 치사(致仕)의 제도를 본떠서 몸을 돌보도록 허락하신다면, 천은(天恩)을 입어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이는 비록 70이라고 하지만 아직 노쇠하지 않았으니, 궤장(几杖)을 내려준다면 종사(從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류부에게 궤장을 주도록 하라.”

○辛未○判中樞府事柳溥啓曰臣犬馬之齒今至七十氣力衰耗疾病纏綿倣古致仕儻容頤養

庶蒙天恩獲保餘齡矣傳曰年雖七十未至衰老若賜几杖則可以從仕故不允仍傳于政院曰柳溥賜几杖可也
《中宗實錄 卷89, 21面》

중종 34년 5월 20일(정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동산색 내관(東山色內官)이 철마다 나는 과일을 올리는 예에 따라 오늘 아침 복분자(覆盆子 : 산딸기)를 따기 위하여 후원에 들어갔더니, 바깥 성과 안 담장 사이에 어떤 중이 숨어 있기에 붙잡아서 물어 본 바 ‘함께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새벽에 도망가 버려서 갈 곳을 몰라 이려고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선전관에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가서 잡아 오게 하고 잡혀 온 중은 정원으로 불러들여 서둘러 국문한 뒤에 아뢰어라.”[중략]

○영의정 윤은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 지의금부사 이귀령이 명을 받고 오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동산색 내관이 과실을 따기 위하여 후원에 들어갔다가 바깥 성과 안 담장 사이에 중이 숨어 있어 붙잡아 물었더니, 그의 말이 ‘내가 한 짓이 아니라 함께 다니던 중 지운이 나를 꼬이면서, 삭발하기 전에는 자주 이 성 안에 들어가 한 일이 많았다고 하였다.’ 하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친문을 하여 위엄을 보여서 실정을 캐내고야 말겠다.”

하고는, 상이 사정전 처마 밑에 나와 좌정하니, 영의정 윤은보 등이 입시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관·선전관 등이 승가사(僧伽寺)에 가서 중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 절의 중에게 물었더니 ‘이 중은 객승(客僧)으로 오늘 아침에 처음 왔는데 용모와 형체가 지운과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여 이름을 물었더니 학조(學祖)라고 하였다.’고 하기에 그 중이 지운인가 의심스러워 영추문(迎秋門) 밖에 붙잡아 놓았다고 한다. 은수를 데리고 나가 면질(面質)시켜라.”

하였다. 승지 한숙(韓淑)이 문사관(問事官)과 함께 은수를 데리고 나가 면질을 시킨 후 회계하기를,

“은수가 처음에는 그 중을 자세히 보면서 서로 아는 사이같이 하더니, 막상 면질을 하고서는 그 중은 지운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두 중의 얼굴에는 매우 당황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니, 윤은보에게 전교하기를,

“정수암(淨水菴)·승가사·소림굴 등에서 잡아온 자들을 은수와 면질시킨 다음 아뢰어라.”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승가사에서 잡아온 중 학조가 아마 지운인 듯 싶습니다. 은수의 말로는 그 중이 날쌔고 건장하다고 자세히 말하였는데 은수는 그 중이 날쌔어 높은 담을 뛰어넘고 큰 시냇물을 뛰어건너기를 평지 밟듯이 한다고 하였다. 그 중은 ‘나는 지운이 아니라 학조이며 또 날쌔지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소림굴(小林窟) 중은 두 명 다 은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은수 역시 두 중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가 만약 진짜 지운 같다면 은수를 끝까지 추고한 뒤에 지운을 추고하라.”

하였다. 한숙이 학조의 초사를 들고 와 아뢰니 초사에 이르기를 ‘동래(東萊)에서 나와 정처없이 떠돌다가 중흥사(重興寺)에 머물렀는데 승가사에서 재(齋)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와서 자다가 붙잡혔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가사의 원주승(元住僧)을 잡아다가 면질시키고 중흥사의 중도 잡아다가 학조의 행적을 물어 보라.”

하고, 윤은보 등에게 전교하기를,

“은수는 학조를 지운이라 하고 학조는 지운이 아니라고 한다. 또 은수는 지운이 예조의 나장이었다고 말했는데, 예조에 상고해 보니 장소명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또 면질 때 바로 불지 않았으니 속이는 듯하다.”

하였다. 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지운이 지시했다는 말은 거짓인 것 같으나, 은수가 번번이 학조에게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고, 또 ‘지운이 나에게 「이 성 안에 원수 김금이(金金伊)가 있으니 나와 함께 찢러 죽이자.」고 하였으며, 또 지운이 나에게 「이 성을 넘으면 담셋이 있는데 너와 나와는 죽거나 살거나 끝까지 한 마음이 되어 7~8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죽이고 말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비록 사실이 아닌 것 같으나, 말의 단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그가 매를 이겨 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실정을 얻어 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은수에게는 지금도 형을 가할 수 있으나 죽어 버리면 실정을 얻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학조를 아직은 놓아 보내지 말고 승가사의 중이 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학조가 오늘 아침 너희 절에 갔다는데 어느 때쯤 왔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더디던가, 빠르던가, 또 기색은 태연하던가, 놀라고 두려워 하던가를 자세하게 물으라.”

하였다. 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은수가 공초한 말로 학조를 힐문했더니, 학조의 말이 ‘저 중이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는가. 내 죄가 천하에 가득하지만 성을 넘자고 피었다는 건에 대해서는 불

복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이리저리 캐물으면서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왜 죄가 천하에 가득하다는 말을 하느냐?’ 하니, 학조의 대답이 ‘아무래도 죽을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다만 승가사의 중은 학조가 어제 밖에서 왔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추고하라.”

○丁亥傳于政院曰今有駭愕之事東山色內官例進節果今朝以摘覆盆子入于後苑則外城內牆之間有僧隱伏捉出問之則同入之人今曉逃去不知所之云令宣傳官多率軍士揆捕可也其見捕僧致于政院急速鞠問以啓[中略]

○領議政尹殷輔判義禁府事柳溥左議政洪彥弼知義禁府事李龜齡承命而至傳曰今朝東山色內官以果實摘取事入于後苑外城內牆之間有僧隱伏捉而問之非我所謀同行僧智雲誘我曰我未削髮前屢入此城之內多有所爲云至爲駭愕欲親問示以嚴威期於得其實情也 上御思政殿簷下領議政尹殷輔等入侍傳曰內官宣傳官等往僧伽寺捉一僧問於寺僧則曰此僧以客僧今朝始來容貌形體相似年歲亦近問其名則曰學祖云疑此僧亦智雲捉致于迎秋門外亦令閻修出而面質可也承旨韓淑與問事官將閻修出外面質後回啓曰閻修初則熟視此僧似有相知之意及其面質則曰此非智雲也兩僧形色甚爲荒唐矣傳于尹殷輔曰以淨水菴僧伽寺小林窟等處被捕者與閻修面質以啓殷輔等回啓曰僧伽寺捕來僧學祖疑是智雲也閻修言其僧便捷狀健之事甚詳閻修言其僧驍勇能越高牆超巨川如履平地云而此僧則曰我非智雲乃學祖也亦不能勇捷云小林窟僧二名皆不見閻修閻修亦不知二僧云傳曰學祖若真是智雲則閻修畢推後智雲推之可也韓淑以學祖招辭進啓招云出於東萊雲遊無定止接于重興寺聞僧伽寺設齋來宿被捉云傳曰僧伽元住僧捉來面質重興寺僧亦捉來問學祖行止可也傳于尹殷輔等曰閻修以學祖爲智雲學祖曰非智雲閻修又曰智雲爲禮曹皂隸而考於禮曹則無張小明之名又於面質時不能直招恐是詐也殷輔等回啓曰智雲指導之言雖似虛妄然閻修每指學祖曰以汝之故至於死地云又曰智雲謂我曰此城之內有仇人金金伊與汝刺殺又智雲謂我曰越此城又有三牆與汝死生間終始同心雖留連七八日期於必殺云此言雖似不實然言端已出但恐不能忍杖遽至殞命則不能得其實情也傳曰閻修今可加刑然殞命則實情難得學祖姑勿放送待僧伽寺僧之來問曰學祖今朝往汝寺云何時往乎其行遲乎速乎其氣色安舒乎驚恐乎細細問之殷輔等回啓曰以閻修所供之辭詰于學祖則學祖曰彼僧已言之吾罪滿天下而不服指導越城之事反覆詰問曰汝若無罪則何以曰罪滿天下乎學祖曰自分必死故如是云但僧伽僧曰學祖昨日自外而來不言今朝入來何以爲之傳曰今已夜深明日推鞠可也

《中宗實錄 卷90, 71面》

중종 34년 윤 7월 17일(임자)

정원이 주청 주본(奏請奏本)을 가지고 입계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정원의 주청 주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 휘(諱: 중종이 이름)는 삼가 변무(辨誣) 겸 결은(乞恩)을 진정하는 일을 상주합니다. 정덕(正德) 13년 4월 일, 배신(陪臣) 이계맹(李繼孟)이 북경에서 돌아와 일컬은 말에 의하면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국 시조가 있고 그 아래에 주(註)가 있는데 ‘이인임(李仁任) 및 아들 휘(諱: 이성계(李成桂))라.’ 하여 태조의 지금 휘(諱)로 되어 있고, 홍무(洪武) 6년~28년 까지의 사이에 왕씨의 4왕을 시해했다고 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오류를 개정한다는 비답만을 기다리고 있기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락(永樂) 원년 11월 15일 선신(先臣) 공정왕(恭定王) 휘(諱: 태종(太宗))의 종계(宗系)·시역(弒逆)·악명(惡名) 등을 변무하고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다음해 즉 영락 2년 정월 10일, 예부(禮部)가 주본(奏本)을 올려 성조문황제(成祖文皇帝)의 성지를 받았는데, 그 성지에는 ‘조선 국왕의 주본을 보니 이인임의 아들과는 관계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의 잘못 전해진 말이 주본에 의하여 밝혀졌으니 개정할 것을 인준해 준다는 뜻이라 여기고, 즉시 선신이 변무를 했던 연유와 신이 거듭 변무하였던 종계변설(宗系辨說)·선신악명무원(先臣惡名誣冤) 등 사항을 가지고 주본을 작성, 배신 남곤(南袞) 등을 차출하여 정성껏 받들고 북경에 들어가서 상주하였던 바 예부로부터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작성된 제본(題本)을 받았습니다. 그 제본에는 ‘태조 휘(諱)가 나라를 열고 국호를 고친 것이 모두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명에서 나온 것으로서 성은을 받은 것이니 결코 구구했던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이인임의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가 조지(詔旨)를 내려 개정할 것을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통지(一統志)』에 이모(李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등의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니 지금 주달한 것과 대략 부합됩니다.

신들이 바라는 바는 황상께서 학문을 좋아하고 예의를 지키는 조선국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니 그 선조의 누명을 밝히려는 성의를 통찰하시어 소청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정덕 14년 2월 15일, 무종황제(武宗皇帝)가 비답한 성지에는 ‘조선국왕의 『선조 이모는 이인임의 아들이 아니다.』는 점을 우리 태종문황제가 수정한다고 성지를 이미 내렸는데, 지금 또 주문을 갖추어 진정하니 그 효성은 유념할 만하다. 때문에 그대와 그대 임금에게 인준을 다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덕 14년 4월 4일 배신 남곤 등이 칙유(勅諭)를 받아 왔는데, 그 칙유에도 ‘태조 이모는 원래 이인임의 후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태조문황께서 이미 수정할 것을 인준한다는 명지를 내린 바 있는데, 지금 또 주문을 갖추어 진정하니 그 성효가 가상하여 특별히 소청을 윤택한다는 칙유를 내리어 내 뜻을 밝히니 그리 알라.’ 하였습니다.

그후 가정(嘉靖) 8년 배신 류부(柳溥)가 진하성절표문(進賀聖節表文)을 정성스러이 받들고 북경에 들어갔을 때, 수정 여부가 궁금하여 우선 조정에 들어가니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바야흐로 중수 중이기는 하나 본국의 종계사(宗系事) 등은 아직 개정하지 않았음을 알고 앞에서 진술한 사항 등을 즉시 예부에게 올렸더니, 본년 8월에 소청을 따른다는 제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제본의 성지에는 ‘조선국 배신이 올린 종계사는 이미 조종조에서도 누차 명지를 내렸으니 그대 나라에서도 널리 조사한 후 상세히 기록하여 우리 사관(史館)에 부송하면 사실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컨대, 열성의 성명(成命)이 저와 같고 성상의 명지(明旨) 또한 이와 같으니 진실로 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신민들은 천지와 같은 넓은 은택 속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보전(寶典)을 하루 빨리 중수(重修), 반포할 것을 공손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찬록된 전적을 참고하기가 너무 복잡하여 침삭할 때에 사실과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실은 추개(追改)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전신(傳信)에 구애될 수도 있으니, 바라건대 자애를 베푸시어 찬록국(纂錄

局)에 특명을 내리시되 전후 올려 변명(辨明)한 사실과 열성이 내리는 비답의 뜻을 성세히 살펴서 고증을 자상하게 하고 전말을 빠짐없이 기재케 하시면, 구천에 있는 선신의 영혼도 성명하신 치하에서 오점을 씻음은 물론, 미친한 신도 보답하는 정성이 더욱 무궁하겠습시다.

외람되어 사사로운 심정을 가지고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하니 황공하기 그지없어 몸들 바를 알지 못하겠습시다. 그러나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는 마음은 자식이 부모에 대하는 마음과 이치가 다르지 않으므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달하려는 마음이 그치지 않아 이와 같이 상주하니, 황상께서는 신의 작은 성의를 굽어 살피소서. 삼가 상주합니다.”

○壬子政院以奏請奏本朝鮮國王臣姓諱謹奏爲陳情辨誣乞恩事正德十三年四月日陪臣李繼孟回自京師說稱伏觀大明會典內朝鮮國下註云其李仁任及子姓諱今名諱者自洪武六年至洪武二十八年首尾凡弑王氏四王姑待之聽比不勝兢殞照得永樂元年十一月十五日先臣恭定王諱奏辨宗系弑逆惡名等事乞賜改正永樂二年正月初十日禮部奏本成祖文皇帝聖旨朝鮮國王奏旣不係李仁任之後想是比先傳說差了准他改正欽此即將先臣奏辨因由并將臣重辨宗系辨雪先臣惡名誣冤等項具本差陪臣南哀等齋擎奏聞當蒙禮部具題節該 太祖姓諱得國改號皆出自太祖高皇帝之命聖恩所受決非苟然且不係李仁任之後又已奉有太宗文皇帝詔旨許令改正而一統志又明著王瑤昏迷姓諱爲衆所推等事與今所奏大略相符臣等欲聖皇上軫其好文守禮之國鑑其爲祖辨誣之誠俯從所請正德十四年二月十五日奉武宗皇帝聖旨是朝鮮國王姓諱之祖姓諱不係李仁任之後我太宗文皇帝已有旨准他改正今又具奏陳情誠孝可念還寫爾與王知道欽此正德十四年四月陪臣南哀等齋捧到勅諭勅祖姓諱原不係李仁任之後我太祖文皇帝已有明旨准令改正今爾具奏陳情誠孝可念特允所請降勅諭以朕意爾其准承之欽此嘉靖八年陪臣柳溥等齋擎進賀聖節表文前進京師聽知朝廷方重修大明會典而本國宗系等事未嘗改正即將前項事情呈稟禮部得蒙題請本年八月十九日奉聖旨是朝鮮國陪臣所呈宗系事情旣有節奉祖宗朝明旨你部裏便通查備細開載送付史館采擇施行欽此臣仰惟列聖之成命如此聖上之明旨又如此臣與一國臣民歡欣感激仰荷天地洪造之恩恭煇寶典重修改頌但念纂錄典籍考稽繁穰其於參考刊添之際容或有違差非惟勢難於追改慮或有碍於傳信伏乞聖慈□命纂錄之局通查前後辨明奉呈及節奉聖旨事意詳加考放備載首末則先臣之幽王得以昭洗於聖明之朝而微臣感哉圖報之誠爲益無窮矣臣猥將一己之私累瀆天聽惶罔措第以子之於父臣之於君理同一體有懷必達情所不能自己伏願皇上諒臣□懇俯垂矜察爲此謹具奏聞入啓傳曰知道

《中宗實錄 卷91, 44面》

중종 34년 8월 27일(신묘)

조강에 나아갔다. 강관(講官) 김광준(金光準)이 아뢰기를,

“양계(兩界)의 수령으로 모두 무반(武班)을 임명해 보냈으니, 어찌 자상함을 다 하겠습니까. 관청 재물을 쓰던가 혹은 기첩(妓妾)을 써서 잔치하고 술마시는 등의 일은 간혹 부득이한 일일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쓰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수령을 다 가려서 쓸 수는 없더라도 관찰사와 절도사를 가려서 보낸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領事)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이제 중국 사신이 물건을 많이 보내온 것은 참으로 성덕(聖德)에 감복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어려서부터 보니 중국 사신이 국왕(國王)에게 보내는 물건은 이같이 번잡하지 않았습시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기에 답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답을 한다면 사사로이 교제한 것이 될 것 같으니 참작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종조 때 왕창(王敞)과 동월(董越)의 일을 신이 친히 보았는데, 그들은 성종에게 심복해서, 임금은 있어도 신하가 없다는 말까지 하고, 원접사(遠接使) 허중(許琮)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매양 허 이조(許吏曹)라고 일컬었는데, 그가 중국 조정에 돌아가고 나서는 성묘(成廟) 및 허중에 대하여서 한 번도 서로 묻는 일이 없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 인신(人臣)의 의리에 사사로이 사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 사신은 당초에 주는 물건을 태연히 받았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보내주는 물건이 연달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심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답하는 물건 또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큰 곳이어서 의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식견 있는 사람이, 우리 나라가 저들로 더불어 사사로이 서로 교결(交結)해서 보내고 묻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어찌 몹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크게 원려(遠慮)에 관계되는 말이다. 중국이 지금은 기강(紀綱)이 해이해졌지만 매번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들이 엄한 위엄으로 재물을 끊임 없이 요구한다면 어찌 계속할 수 있겠는가. 비록 조그만 물건을 가려서 답한다 해도 뒷날의 폐단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광준(光準)이 아뢰었다.

“사기 술잔은 조그만 물건이니 그래도 괜찮으나 뒷날에 소중한 물건을 구한다면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또 공론에 우리 나라가 매양 사신에게 서로 계속해서 물건을 주고 사사로이 사귄다고 한다면 좋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마땅히 적절한 말로 답해야 할 것인데, 상께서 어찌 이렇게 구차한 일을 하시는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辛卯 御朝講侍講官金光準曰兩界守令皆以武班差送豈盡慈詳者乎或用於官幣或用於妓妾宴飲等事雖或出於不得已而誇張於無用之地者皆然守令雖不可盡擇觀察使節度使若擇送則恐無此弊也領事柳溥曰今天使多送贈物實出於誠服 聖德耳然臣自少見之天使於國王送物未有若是其煩者在我國雖不可不答而答之則似涉於私交斟酌爲之何如 成宗朝王敞董越之事臣親見之矣心服 成宗而至曰有君無臣與遠接使許琮相得每稱許吏曹而及其還朝後 成廟及許琮處略不相問其心豈非以爲人臣義無私交而然歟今天使則當初賜物恬然受之至其旋歸後贈遺連綿在我不可無心而然其所答則亦當詳察也中原大處議論必多若有識者以爲我國與彼人私相交結贈問不絕云爾則豈非可恥之甚者乎 上曰此大關於遠慮之言也中原今則紀綱解弛不可每每如此若臨以嚴威誅求無厭則其能繼乎雖擇其微物答之而他日之弊有不可勝言矣光準曰磁杯微物猶可也後日若求重物何以繼之且公論若以我

國每於使臣處相繼贈物私交云則恐不可也當以權辭答之而自 上敢爲此苟且之事臣未之知也
 《中宗實錄 卷91, 59面》

중종 34년 9월 21일(을묘)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 김진중(金振宗)이 아뢰기를,

“재변이 계속 일어나서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곤궁하니, 아래에서 아되는 것과 상께서 유념하시는 것이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변이 소멸되지 않으면 백성이 실지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인데, 하늘에 응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모든 도리가 어찌 문구(文具)에만 그치고 그 실상을 다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대체로 재변의 발생을 무슨 일을 잘못된 탓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 더 살피시어 궁중의 일이든지 조정의 일 중이라도 살피시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아래에서 올리는 말이 있으면 절실한 말이거나 그렇지 않은 말이라도 또한 용납하여 받아들인 뒤에라야 비로소 하늘의 책망에 답하고 아래 인정에 통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보는 것이 우리 백성이 보는 데서 시작되고, 하늘이 듣는 것이 우리 백성이 듣는 데서 시작된다.’ 했으니, 따라서 백성들의 보고 듣는 것을 보면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재변이 비상하니 아뢴 내용이 매우 마땅하다. 다만 하늘에 응하는 도리는 실지가 귀한 것이요 문구(文具)로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하늘에 응하는 도리가 실상에 이르지 못할까 항상 두렵다. 요새 이중춘(李仲春)이 어가(御駕) 앞에서 상언(上言)한 말을 보니 그 말을 다 쓸 수는 없더라도 그 뜻은 취할 만하다. 법사(法司)에서 이에 대해 의논하게 하라. 이같은 사람의 말이라도 반드시 실행한 뒤에라야 아랫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려 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領事)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재변의 의논은 마땅합니다. 옛말에, 겨울 천둥과 여름 눈은 비상한 변이라고 했습니다. 근래 재변이 계속되는 데다 천둥의 변까지 있으니, 이는 하늘의 마음이 어질어 사랑하는 뜻이기는 하나 재변은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르는 바가 있는 것이니, 지금이 바로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반성하여 재앙을 상서로 바꿀 때입니다. 그러나 문구(文具)에만 그치고 실상이 없으면 옳지 못합니다. 옛날에 초 장왕(楚莊王)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어찌 나에게 재변을

내리지 않는가?’ 했습니다. 재변을 당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서 정치를 닦기 때문에 재변이 있더라도 끝내 재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 재변이 거듭 일어나는데,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문구로 하지 말고 실상을 가지고 응한 뒤에라야 하늘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반성하기 때문에 재앙이 재앙이 되지 않고 그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니, 초 장왕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느냐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을 쓰는 일은 국가의 큰 일이니 전조(銓曹)에서 어찌 마음을 써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인재의 부족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니 영흥부사(永興府使)는 가려서 보내야 하되 육조(六曹)의 참의(參議)는 보낼 수가 없고, 서반(西班)에도 역시 합당한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뜻을 대신들과 의논하려 한다.”

하였다. 이명이 아뢰기를,

“이제 생민이 곤폐한 때를 당하여 달리는 구원할 방법이 없고, 반드시 수령을 가려서 쓴 뒤에라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옥형(申玉衡) 조세간(趙世幹)·이세증(李世曾)·이형순(李亨順)은 모두 영흥부사가 되었다가 논박을 받고 체직되었음. 등은 백성을 다스릴 관원이 될 수 없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생민의 기쁨과 근심은 수령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인물이 많고 땅이 넓은 곳에는 더한층 가려서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재변을 만나면 무슨 일인들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북도(北道)의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방어가 가장 긴요한 곳에 군마(軍馬)가 적고 약하며 병기(兵器)가 허술하니 변방의 혼란이 만일 불의에 일어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한단 말입니까. 남쪽 지방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풍년들기를 기다렸다가 부실(富實)한 집을 골라서 들여보내 살게 하는 것이 옳고, 변방 근처의 백성으로서 죄지은 자도 또한 점차로 들어가 살게 한다면 변방 고을이 비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조 때에 부득이 들어가 살게 하던 법입니다.”

하고, 참찬관 안현(安玹)은 아뢰기를,

“요새 인심이 착하지 못해서 학자 아무개가 시관(試官)이 되어 이 제목을 내었다고 하고, 또 이 제목은 어느 시관이 항상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해서 묻는다면 반드시 시관 중에 현직(顯職)에 있지 않은 자를 지목할 것입니다. 유생들

은 길이 유생일 수가 없고 모두 다음날에 벼슬길에 나갈 자들이니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시관을 마땅히 존경하고 우러러 보아야 하는데 도리어 업신여기고 그 위에 뜬 말까지 만들어서 경동(驚動)시킵니다. 이 습관은 법을 세워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이 말을 믿지 않고 진정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만든 자가 절로 그치고 사풍(士風) 역시 절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이 습관은 과연 그러하나 이를 듣는 자가 믿지 않으면 이 폐단이 절로 없어질 것이다.”

○乙卯 御朝講

正言金振宗曰災變荐臻而民生困窮未有甚於此時者也下之所陳 上之所念皆以此也然災不得消滅民不蒙實惠者凡應天恤民之道豈非徒爲文具而未盡其實乎夫災異之作不可指爲某事之失矣然皆人爲所感也當加省察或宮禁之事朝廷之務無所不察而反躬惕慮自下所進之言雖有切不切而亦當容受然後可以答天譴而通下情矣古語云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若觀民之視聽則天之視聽可知也 上曰近來災變非常所言至當但應天之道貴乎實而不以文常恐予應天之道未至於實也近見李仲春駕前上言其言則雖不可盡用其意則可取法司必當議之矣雖如此之人必舉行其言然後下人皆以爲有懷必達也領事柳溥曰災變之論當矣古云冬雷夏雷非常之變近來災變連仍而又有雷震之變此雖天心仁愛之意然災不虛生必有所召此正恐懼修省轉災爲祥之時也然徒爲文具而無其實則不可也昔楚莊王曰天其亡我乎何不降災於我乎若遇災則當恐懼而修政故雖有災變終不爲災矣近來災變疊興凡弭災之道不以文具而以實應之然後天無不格而災無不消矣 上曰有災變則必恐懼而修省故災不爲災而其國興焉楚莊王所謂天其亡我者以此也如用人國家大事也銓曹豈不用心爲之乎但乏人莫甚於今時永興府使所當擇送而六曹叅議則不可爲也在西班亦無可當者何以則可乎此意欲與大臣議之耳李瑩曰今當生民困瘁之時他無可救之策必擇守令然後可救也如申玉衡等趙世幹李世曾李亨順皆爲永興府使被駁見違不可爲臨民之官故敢啓 上曰生民休戚係於守令物衆地大之處尤當擇送也柳溥曰遇災何事不察乎其中北道之事至爲駭愕防禦最緊之地軍馬單弱器械踈虞邊釁若起於不意則將何以應之如南方之民則必待豐年擇其實戶而入居可也其邊方近處人民作罪者亦令次次入居則邊郡不至於空虛矣此 祖宗朝不得已爲入居之法也叅贊官安珪曰近者人心不善學者某人爲試官而出此題也云又曰此題某試官之常時所出也若推問則必以試官中不爲顯職者指之儒生等不可長爲儒生也皆他日出於仕路者所當預教也試官所當尊仰而反加凌蔑構成浮言以驚動之此習不可以立法治之也聽之者當不信此言而謀欲鎮定則如是造言者當自止而士風亦自正 矣上曰此習果然矣聽之者不信則此弊果無矣

《中宗實錄 卷91, 77面》

중종 35년 1월 5일(무술)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헌부가 아뢰기를,

“권별은 판윤이 되었으나 지금 주청사(奏請使)로 부경(赴京)하여 돌아올 기일이 아직 멀었는데 무개일(務開日)³⁴⁴이 촉박하여 송사가 필시 많이 밀렸을 것입니다. 비록 좌우윤(左右尹)이 있기는 하나 장관이 없으면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 속히 체직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차임하소서. 그리고 조종조에서는 육경 및 송사를 담당하는 관원은 구임(久任)시키고 가볍게 체직하지 않아서 7~8년에 이른 자도 있었습니다. 또 벼슬이 육경에 이르면 노쇠하게 되니 여찌 질병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비록 사소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관(貳官 : 좌윤과 우윤)이 있으니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육경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병으로 한 달 사이에 정사(呈辭)를 두 번이나 올려 사면을 청하였는데, 신하가 되어 충성을 다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한 병이 아니면 오래도록 출사하지 않을 경우라도 가볍게 체직시키지 마소서.”

하니, 답하였다.

“권별의 서장을 보니 지난달 18일에 회정(回程)한다고 했으니 이달 20일 후에야 돌아올 것이다. 종계(宗系)의 대사를 주청하고 오는데 곧바로 동반(東班)에서 체직시키는 것은 사체에 어긋나는 일이다. 좌우윤도 있으니 체직할 것이 없다. 송사를 담당한 관원은 자주 체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지금부터 휴가를 받는 자는 조리 기간을 헤아려서 다시 휴가를 청하되 1순(旬) 내에 두 번 휴가를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청사 권별(權穰)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들이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이응성(李應星)을 시켜 주객사 낭중(主客司郎中)에게 ‘우리 나라 종계에 관한 일은 영락(永樂 :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원년, 정덕(正德 :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13년, 지금 황제 가정(嘉靖 :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8년 등 여러 차례 주문(奏聞)하여 개정하겠다는 성지(聖旨)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완전히 개정된 책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군민(君民)은 민망하고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대인이 자세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 온 나라가 민망해하는 한을 풀어달라.’ 했더니, 낭중이 ‘알았다. 조정에서 반드시 잘 조처해 줄 것이니 물러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이응성을 공 사신의 집에 보내어 ‘전일 대인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전하께서 종계 개정의 뜻을

344) 무개일(務開日) : 소송(訴訟)에 관한 사무를 보는 날로 추분일(秋分日)을 말함. 주로 농한기인 추분에서 춘분(春分)까지 소송을 청리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

이미 고하였다. 삼가 대인은 힘써 주선하여 전하의 바람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다만 조정에 일이 많아 『회전(會典)』 편찬하는 일이 정지된 지 오래다. 그러나 주본(奏本)이 이미 주달되었으니 나도 예부의 당상관을 만나 이야기하겠다.’ 했습니다.[중략]

제본(題本)과 칙서의 단자(單子)를 입계하였는데, 제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부(禮部)는 중계 변무에 대해 진정한 일을 아릅니다. 주객청리사(主客淸吏司)에서 본부로 올린 문안(文案)을 본부가 주청한 바 내부(內府)로 내린 성지(聖旨)를 초출(抄出)하니, 예부는 상세히 살펴보고 와서 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리사가 본부로 보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덕(正德) 13년 11월 본부가 아뢴 진정(陳情)에 대한 내용으로 조선국왕 성휘(姓諱 : 중종의 성명)의 주청(奏請)은 다음과 같다.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보니 조선국 조항 밑에 달린 주에 「그 아버지 이인임(李仁任)과 태조 이성계(李成桂), 지금 이름 단(旦)이 홍무(洪武 :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 6년에서 홍무 28년 사이에 왕씨(王氏)의 네 임금을 시해하였는데 우선 고증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민망스러워 어쩔줄 모르겠다. 영락(永樂) 원년(태조 3, 1403) 정월에 선신(先臣) 공정왕(恭定王) 모(某)가 전항(前項)의 중계(宗系)는 이인임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청하였는데, 성지(聖旨)에 「조선국왕의 주본을 보니 이인임과는 관계가 없다. 앞서의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 틀림없다. 이에 의해 개정하라.』 하였다. 또 선세(先世)는 원래 본국의 전주(全州)에 살았는데, 28대조 한(翰)은 신라(新羅)에 벼슬하여 사공(司空)에 이르렀고 6대손 긍휴(兢休)는 고려(高麗)에 벼슬했고 13대손 안사(安社)는 원(元) 나라에 벼슬했다. 안사의 증손 자춘(子春)이 태조 구휘(舊諱 : 성계)를 낳으니 이인임(李仁任)의 세계(世系)와는 관계가 없다. 또 공민왕(恭愍王)이 충신(寵臣) 신돈(辛旽)의 아들 우(禍)를 자기의 소출(所出)로 삼았는데, 뒤에 폐신(廢臣) 홍윤(洪倫)과 최만생(崔萬生) 등에게 시역(弑逆)당했다. 그러자 권신 이인임이 그대로 우를 후사로 삼았는데, 홍무(洪武) 22년 왕비 안씨(安氏 : 공민왕의 비)가 비로소 위신(僞辛)을 폐출하고 왕씨의 후예인 정창군 요(定昌君瑤)를 세워 국사를 맡아보게 했다. 그러나 요 또한 불의(不義)하자 홍무 25년 7월에 왕비 안씨가 폐출하고, 신민들이 태조를 추대하여 국사를 주관하게 했다. 선신이 이미 사실을 갖추어 아뢰자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는 국왕으로 삼고 조선이란 국호를 내렸다. 선신 태조는 비로소 모(某 : 단(旦))라고 이름을 고치고 왕요(王瑤)를 사저(私邸)에서 편안히 천수(天壽)를 마치도록 했다. 또 윤이(尹彝)·이초(李初)의 무리가 교묘하게 헛소문을 날조했는데, 지금 『회전』에 기록된, 네 임

금을 시해하였다는 말도 허위로 날조한 것이다. 삼가 성제(聖帝)는 선황제의 명을 따라 전해오는 잘못된 말을 바로잡아 주면 신의 일가는 조상의 기록이 제대로 됨은 물론 선신 태조 휘 또한 지하에서나마 원통함을 풀 수 있게 되어 다행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겠다.’

이에 대해 성지(聖旨)를 받드니 예부는 상세히 살펴보고 와서 아뢰라고 했습니다. 본부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태조가 나라를 얻고 국호(國號)를 고친 것은 모두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명에 따라 성은(聖恩)이 내린 것으로 결코 구차스런 것이 아니고, 또 이인임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개정하도록 허락한다는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의 조서를 받았고 『일통지(一統志)』에도 왕요(王瑤)가 혼미하여 태조가 대종의 추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는데 지금 받들어 올린 내용과 대략 부합됩니다. 그리고 무종황제(武宗皇帝)의 성지를 받드니 조선국왕의 선조는 이인임의 후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였고, 우리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도 이미 이에 의거 개정하라는 성지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주문을 갖추어 진정한 것으로 보아 정성과 효도가 가상하니 조칙을 써서 왕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정(嘉靖) 8년에 본부에서 아뢰던 변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해 보니, 조선국왕이 이조 참판(吏曹參判) 류부(柳溥) 등을 보내어 와서 올린 정문(呈文)에 의하면 ‘조정(朝廷: 중국 조정)에서 『대명회전』을 중간(重刊)할 때에 본국의 종계 등에 관한 일이 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정덕(正德) 13년에 올린 원 주본(奏本) 및 영락 2년과 정덕(正德) 14년에 받든 성지(聖旨)를 고찰하여 이번 중수할 때에는 사실에 따라 개정해 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따라 성지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왕의 배신(陪臣)이 아뢰던 본국 종계에 관한 사정은 이미 조종조의 분명한 성지를 받았으니 너희 부에서는 두루 조사하여 상세히 기록,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해서 시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에 본부에 도착한 문안을 조사하여 보니, 조선국왕의 주청에, 시조 이성계는 이인임의 후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과, 네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 전후 변명한 주청과 정문에 그 전말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각컨대,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성왕(聖王)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이며, 아름다운 것은 칭송하고 악은 칭송하지 않는 것은 또 효성스런 자손들의 심정에 그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본디부터 예교(禮教)를 지키며 충근(忠勤)함을 잘 실천해 왔습니다. 이인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변명한 주문은 열성(列聖)께서도 이미 그 실정을 다 아시었고, 황상(皇上) 또한 그 청을 허락하시어 변백(辨白)하여 주는

것이 또한 상응되는 조처인 듯합니다. 다만, 이인임의 아들 단(旦)이란 것과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등의 말은 모두 조훈(祖訓)인데 어찌 감히 가볍게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한 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전후에 변명한 주문(奏文)과 열성의 성지 등을 사관(史館)에 보내어 이번에 편찬할 「회전」의 조선국 항목 아래에 삽입하게 한다면 조훈과 「회전」 둘 다에 방해로움이 없을 것은 물론, 믿을 만한 것이건 의심스러운 것이건 각기 근거할 것이 있게 됩니다.

본부(本部)에서 자문(咨文)으로 본국에 알린다면 조정(朝廷)에서 선악을 엄격히 가리는 법이 올바르게 될 것이며, 먼 변방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성의에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외국의 변무(辨誣)를 진정하는 일과 성지를 받든 일은 예부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지만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삼가 성지를 내리기를 청합니다.

가정(嘉靖) 18년 11월 11일에 갖추어 아뢰고 이달 13일 성지를 받드니 「회전」을 고치는 것은 황조(皇祖)의 대훈(大訓)이므로 감히 다른 의논은 낼 수가 없다. 본국에서 상주한 말과 열성의 분명한 성지를 아울러 이후 「회전」을 편찬할 때에 부록하라. 그리고 칙서를 떼겨 왕에게 보이라.’ 하였습니다.”

칙서(勅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 성휘(姓諱 : 중종의 성명)에게 황제는 칙유(勅諭)함. 그대 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종계(宗系)가 분명히 이인임의 후예가 아니라고 와서 보고했고, 우리 성조(成祖) 및 무종조(武宗朝)에서도 분명한 성지가 갖추어 있었으며 짐(朕) 또한 갖추 다 알고 있음. 다만 고황제(高皇帝)의 조훈(祖訓)은 만세토록 산삭(刪削)할 수 없음. 「회전」에 기록된 것을 후일 속간(續刊)할 때에는 의당 그때의 말을 자세히 수록할 것임. 그대가 변방(藩邦)의 직임을 근실하게 수행하므로 짐은 그대의 충효가 극진함을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니, 삼가 받들기 바람.”

○戊戌 御夕講○憲府啓曰權檣爲判尹今以奏請使赴京還期尙遠而務開日迫詞訟必多積滯雖有左右尹無長官則不敢擅便請速遣之以在京者差之且 祖宗朝六卿及訟官皆得久任不輕遣有至七八年者且官至六卿則年亦衰老何能無疾病乎雖有小疾亦有貳官可以治事近在六卿之職者因微病一旬之間呈辭至再乞解機務亦非王臣蹇蹇之義今後非重病久未出仕請勿輕遣答曰見權檣書狀去月十八日回程云今月二十日後當入來矣 宗系大事得請而來卽遞東班職異於事體左右尹亦有之不須遣也訟官不可數遣之言至當今後受由者度其調理間而更呈一旬之內毋得累呈可也○奏請使權檣狀啓曰臣等到北京使李應星語主客司郎中曰我國 宗系事永樂元年正德十三年今皇帝嘉靖八年累奏聞奉聖旨改正而至今未見成書我國君民憫鬱罔極大人備細磨勘以解一國之憫郎中曰知道朝廷必好爲之其各退去翌日遣李應星于龔天使家曰前日大人之奉使小邦也 殿下已告宗系改正之意伏望大人勉力周

旋以副 殿下之望答曰此事已詳知之但朝廷多事會典纂修停之已久然奏本已達吾亦 當
爲見禮部堂上言之是[中略]

題本勅書單字入啓乃曰禮部題爲陳情辨誣乞恩事主客清吏司案呈奉本部送內府抄出云云
等因奉聖旨禮部看詳來說欽此欽遵抄出到部送司案查得正德十三年十一月內該本部題爲
陳情乞恩事該朝鮮國王姓諱奏稱伏覩大明會典內朝鮮國下註云其父李仁任及 太祖舊諱
今名某者自洪武六年至洪武二十八年首尾凡弑王氏四王姑待之聽此不勝兢隕照得永樂元
年正月內先臣恭定王某曾將前項 宗系無干奏本聖旨朝鮮國王奏旣不係李仁任之後想是
比先傳說差了準他改正欽此及稱先世原出本國全州二十八代祖翰仕新羅爲司空六代孫統
休入高麗十三代孫安社仕于前元職安社曾孫子春生男 太祖舊諱與李仁任世系無干又稱
恭愍王將寵臣辛旽之子禍爲己出後被嬖臣洪倫崔萬生等弑逆權臣李仁任仍以禍爲嗣洪武
二十二年王妃安氏始黜僞辛以王氏之裔定昌君瑤署國瑤又不義洪武二十五年七月內王妃
安氏廢之臣民推戴先臣 太祖諱主國先臣旣具奏聞欽蒙太祖高皇帝命爲國王賜國號爲朝
鮮先臣 太祖諱始改名某將王瑤便養私邸使終天年及又有稱尹彝李初之徒巧構虛妄今會
典所錄弑四王之說出於虛捏之口伏望聖慈仰遵先皇帝之命許正傳說之謬則臣之一家得祖
其祖先臣太祖諱亦雪幽冤不勝幸甚等因奉聖旨禮部看了來說欽此欽遵本部看得太祖諱得
國改號皆出自太祖高皇帝之命聖恩所授決非苟然且不係李仁任之後又已奉有太宗文皇帝
詔旨許令改正而一統志又明著王瑤昏迷太祖諱爲衆所推等事與今所奏大略相符題奉武宗
皇帝聖旨朝鮮國王諱之祖不係李仁任之後我太宗文皇帝已有旨准他改正今又具奏陳情誠
孝可念還寫勅與王知道欽此欽遵又查得嘉靖八年內該本部題爲陳情辨誣事據朝鮮國王諱
差來陪臣吏曹叅判柳溥等因呈內稱朝廷方重修大明會典本國宗係等事未曾改正乞要查照
本國正德十三年元來奏本及永樂二年正德十四年欽奉聖旨內事理趨此重修之時從實改正
等因題奉 聖旨是朝鮮國王陪臣所呈本國 宗系事情旣有節奉祖宗朝明旨你部裏便通查
備細開載送付史官採擇施行欽此欽遵今奏前因通查案呈到部看得朝鮮國王諱奏稱始祖諱
不係李仁任之後凡弑四王等情乞要通查前後辨明奏呈備載首末一節竊惟旌別淑慝聖王御
世之大典稱美不稱惡亦孝子慈孫之情有不能已者朝鮮國素秉禮教多效忠勤奏辨情與李仁
任無干列聖已悉其情皇上又許其請與之辨白似亦相應但查得所辨李仁任及子今名某者弁
凡弑四王等語皆會典內所載祖訓之語豈敢輕議改正合無俯從所請將伊前後辨明奏呈及節
奏列聖明旨送付史館今纂修會典令其叙入朝鮮國項下祖訓會典兩無相妨傳信傳疑各有所
據本部因咨行本國知會庶天朝旌別之典正而遠人所懇之誠亦慰矣緣係外國陳情辨誣及奉
欽依禮部看詳來說事理未敢擅便謹題請旨嘉靖十八年十一月十一日具題本月十三日奉聖
旨是皇祖大訓不敢別議該國奏詞弁奉列聖明旨此後纂修宜附錄之仍寫勅示王勅曰皇帝勅
諭朝鮮國王姓諱爾國數以宗系明非李仁任之後來奏我成祖及武宗朝具有明旨朕亦具悉矣
但我高皇帝祖訓萬世不刊會典所載他日續纂宜詳錄爾詞爾恪共藩職朕方嘉爾忠孝可無遺

慮也其欽承之故諭

《中宗實錄 卷92, 59面》

중종 35년 7월 16일(을사)

○상이, 동반(東班)은 정3품 이상, 서반(西班)은 2품 이상에게 각각 일사(逸士)를 천거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윤은보는 진사 김사근(金思謹)을 천거하고, 좌의정 홍언필은 생원 권습(權習)을 천거하고, 좌찬성 소세양은 생원 최계성(崔繼成)과 최언충(崔彦冲)을 천거하고, 우찬성 윤인경(尹仁鏡)은 진사 남세빈(南世贇)을 천거하고, 한성부 판윤 김안국(金安國)은 생원 서경덕(徐敬德: 성리학에 밝았고 또 부모의 상에 여막(廬幕)을 지어 3년을 지내면서 능히 성효(誠孝)를 다하여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과 유학(幼學) 류인선(柳仁善: 효도로 소문이 나서 정문(旌門)을 세웠다.)을 천거하고, 형조 판서 류인숙(柳仁淑)은 유학 성수침(成守琛: 과거에 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과 진사 조성(趙晟)을 천거하고, 형조 참판 김정국(金正國)은 전 별좌(別坐) 우성훈(禹成勳)과 유학 김취성(金就成)을 천거하고, 형조 참의 채세걸(蔡世傑)은 유학 신덕응(申德應)과 진사 윤내신(尹來莘)을 천거하고, 예조 참의 이찬(李滌)은 생원 권습과 유학 성수침을 천거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는 생원 정세구(鄭世球)와 유학 신덕응을 천거하고, 부제학 김만균(金萬鈞)은 생원 이세명(李世鳴)과 류정(柳貞: 기묘년에 천거과(薦舉科)로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가 사화가 일어난 후 다시 과거볼 뜻이 없었고 벼슬을 구하지도 아니했다.)을 천거하고, 병조 참판 신광한(申光漢)은 유학 성수침과 생원 윤우형(尹友衡)을 천거하고, 공조 참판 홍경림(洪景霖)은 진사 권습과 이충남(李冲南)을 천거하고, 병조 판서 류관(柳灌)은 생원 신백령(辛百齡)과 전 찰방 이이건(李以乾)을 천거하고, 병조 참의 박우(朴祐)는 유학 성수침과 정심(鄭深)을 천거하고, 병조 참지(參知) 이임(李霖)은 유학 성수침과 조식(曹植)을 천거하고, 대사성 이언적(李彦迪)은 유학 김취성과 조식을 천거하고, 판결사(判決事) 김수성(金遂性)은 진사 정취(鄭聚)와 경수문(慶秀文)을 천거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벌(權撥)은 생원 금축(琴軸)과 유학 이희안(李希顔)을 천거하고, 공조 판서 윤임(尹任)은 진사 신주(申鑄)와 권지(權軹)를 천거하고, 한성부 우윤 한윤창(韓胤昌)은 충순위(忠順衛) 이공구(李公矩)를 천거하고, 좌참찬 이귀령(李龜齡)은 생원 안백증(安伯增)과 유학 성수침을 천거하고, 대사헌 남효의(南孝義)는 생원 정홍익(鄭弘翼)을 천거하고, 상호군(上護軍) 원팽조(元彭祖)는 여절교위(勵節校尉) 이문간(李文幹)과 유학 양윤보(梁允補)를 천거하고, 예조 판서 정옥형(丁玉亨)은 유학 류인선(柳仁善)과 생원 김지손(金智孫)을 천거하고, 대사간 최보한(崔輔漢)은 생원 최여주(崔汝舟)와 진사 남세빈(南世贇)을 천거하고, 동지중추부사 남세웅(南世雄)은 진사 정기(鄭耆)를 천거하고, 상호군(上護軍) 이기(李

芑)는 진사 이고(李臯)를 천거하고, 호조 판서 조계상(曹繼商)은 생원 안순(安珣)과 정기를 천거하고, 호조 참판 김섭(金銛)은 유학 남순손(南舜孫)과 윤세신(尹世愼)을 천거하고, 호조 참의 장적(張籍)은 전 직장(直長) 김대유(金大有)와 진사 양담(梁澹)을 천거하고, 상호군 방호의(方好義)는 유학 류인선과 홍덕윤(洪德潤)을 천거하고, 상호군 이현보(李賢輔)는 생원 박형(朴珩)을 천거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일사를 빠뜨리지 않고 향리에서 천거해 등용하는 것은 왕정의 중대한 일이다. 기묘년(중조 14, 1519)에 현량과(賢良科)를 두어서 많은 인재가 흥기하여 불만했었는데 사림의 화가 이로 말미암아 격렬하게 일어났으니, 이는 소인들에게 분노를 많이 샀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에 일사를 천거하라고 명하여 40여명에 이르렀으니 이 역시 매우 많다. 다만 천거를 받은 자들 모두가 참으로 자수(自守)하는 선비로서 국가에서 어진 이를 구하는 아름다운 뜻에 부응할 수 있을지? 천거에 든 자가 혹은 책임자가 아니어서 물고기 눈알이 구슬에 섞였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이는 곧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말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乙巳○上命東班正三品以上西班二品以上各舉遺逸之士領議政尹殷輔薦進士金思謹左議政洪彦弼薦生員權習左贊成蘇世讓薦生員崔繼成生員崔彦冲右贊成尹仁鏡薦進士南世贊漢城府判尹金安國薦生員徐敬德明於性理之學又善居喪廬墓三年克盡誠孝人咸服之幼學柳仁善以孝聞旌其門刑曹判書柳仁淑薦幼學成守琛不應舉有操守進士趙晟刑曹叅判金正國薦前別坐禹成勳幼學金就成刑曹叅議蔡世傑薦幼學申德應進士尹來莘禮曹叅議李潔薦生員權習幼學成守琛領中樞府事柳溥薦生員鄭世球幼學申德應副提學金萬鈞薦生員李世鳴生員柳貞己卯年以薦舉科爲承文院正字見敗之後更無應舉之志亦不求仕兵曹叅判申光漢薦幼學成守琛生員尹友衡工曹叅判洪景霖薦進士權習進士李冲南兵曹判書柳灌薦生員辛百齡前察訪李以乾兵曹叅議朴祐薦幼學成守琛幼學鄭深兵曹叅知李霖薦幼學成守琛幼學曹植大司成李彦迪薦幼學金就成幼學曹植判決事金遂性薦進士鄭聚進士慶秀文知中樞府事權櫟薦生員琴軸幼學李希顏工曹判書尹任薦進士申鑄進士權軹漢城府右尹韓胤昌薦忠順衛李公矩左叅贊李龜齡薦生員安伯增幼學成守琛大司憲南孝義薦生員鄭弘翼上護軍元彭祖薦勵節校尉李文幹幼學梁允補禮曹判書丁玉亨薦幼學柳仁善生員金智孫大司諫崔輔漢薦生員崔汝舟進士南世贊同知中樞府事南世雄薦進士鄭耆上護軍李芑薦進士李臯戶曹判書曹繼商薦生員安珣生員鄭耆戶曹叅判金銛薦幼學南舜孫幼學尹世愼戶曹叅議張籍薦前直長金大有進士梁澹上護軍方好義薦幼學柳仁善幼學洪德潤上護軍李賢輔薦生員朴珩史臣曰不遐遺揚側陋王政之大務己卯之時有薦舉之科人才之盛蔚有可觀而士林之禍職此而烈愠于羣小爲崇大矣今者命舉遺逸薦至四十餘人亦至盛矣但所薦者皆眞自守之士而允副國家求賢之美意乎

參薦者或非其人有魚目混珠之議則稱非其人亦云不任寧無愧乎 《中宗實錄 卷93, 48面》

중종 35년 12월 26일(계미)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영부사(領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김안국(金安國), 우찬성 류관(柳灌),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세창(成世昌), 이조 판서 양연(梁淵), 우참찬 정옥형(丁玉亨), 이조 참판 신영(申瑛)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장효례는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더라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금부가 「대전(大典)」의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판 데 대한 법조에 의거, 일죄(一罪)로 의율(擬律)할 것을 아뢰었으나, 삼복(三覆)을 하고 의논이 좌우에까지 미치게 되자 모두가 ‘금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만 하고 팔지는 않았는데, 몰래 판 죄를 적용함은 죄의 실정을 미루어 볼 때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서 사형을 감하였습니다. 그뒤 대간의 아뢴 때문에 계복(啓覆)할 때 참여하지 아니한 정부, 전직 정승, 육조(六曹)와 한성부(漢城府)의 당상(堂上)들을 빠짐없이 명소(命召)하여 다시 의논하였는데, 4~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복 때 참석한 재상들의 말과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삼천리(流三千里)로 결정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 정축년(중종 12, 1517)과 신사년(중종 16, 1521), 이 두 해의 승전(承傳)과 조정 의논은 모두 금은(金銀)을 맡긴 자를 포고(捕告)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서로 맞지 않는 듯하니, 지금 다시 조율(照律)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의논한 내용은 알았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정의 의논을 보니 확고한 듯하다. 대신들과 대간이 아뢴 일들을 반복하여 생각컨대 두 사람의 장효례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의 법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례 한 사람 때문에 재상과 대간이 서로 이와 같이 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대간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간에게 이르라.”

○癸未領議政尹殷輔領府事柳溥左議政洪彦弼右議政尹仁鏡左贊成金安國右贊成柳灌禮曹判書成世昌吏曹判書梁淵右參贊丁玉亨吏曹參判申瑛等議啓曰張孝禮置之重典固無足惜但當初禁府據大典潛賣禁物條以一罪擬啓至於三覆議及左右皆以爲挾持禁物事未施行而當以潛賣原其情罪似不相當從羣議減死後因臺諫所啓啓覆時未參政府曾經政丞六曹漢城府堂上無遺命召更議四五員外餘皆與三覆時入侍宰相之言無異辭故斷以流三千里已久且丁尹辛巳兩年承傳廷議則皆以金銀寄置者捕告爲主似不相稱今難改照傳于大臣等曰議

意知道仍傳于政院曰觀廷意似爲牢固大臣等臺諫所啓之事反覆計之非爲二張孝禮也以其國典難改也以一孝禮宰相臺諫相爲如此豈爲美事哉臺諫當斟酌其以是言于臺諫

《中宗實錄 卷94, 40面》

중종 36년 2월 20일(정축)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이종각(李宗角)의 종이 주인을 살해한 사건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다. 죄상이 이미 분명한데도 오히려 형장(刑杖)을 견디면서 불복하고 있다. 이같이 죄상이 분명한 일을 반복해 추핵(推覈)하여도 그 실정을 자백받지 못했다면 그 자가 완악하고 사납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추관(推官)이 국문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겠다. 근래 강상의 변고가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가 지아버를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종각의 종의 경우는 그 죄가 심히 중대하여 실정을 쉽사리 찾을 수 있으니 모름지기 정상을 깨내 그 죄를 밝혀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비록 인심이 완악해서 일어났다고 하겠으나 역시 교화가 시행되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 이것은 지방관이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니, 영사(領事)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신이 추국할 때에 일찍이 이런 문제에 마음을 써서 그가 범한 일을 모두 알아내고 사실을 찾아보니 그 사건의 진상은 바로 노복(奴僕)들이 모의한 것인데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판결이 지체되었습니다.”[중략]

지평(持平) 김홍(金泓)이 아뢰기를,

“각 고을의 어전(漁箭)은 예부터 있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진상할 때 백성들은 이것으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민간에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근래 왕자군(王子君)들이 나누어 차지하고 어전을 많이 내어 자기들의 물건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각자 시장에서 포목을 팔아서 개인이 갖추어 바치게 되니,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이 일로 해서 더욱 곤궁해 집니다. 폐단을 매번 아뢰고자 했는데 지금 호조(戶曹)의 공사(公事)를 상고하니 왕자군들이 어전을 과다하게 차지하여 폐해(弊害)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자군 등이 전지(田地)를 절수(折受)하지 못할 경우 대신 어전(漁箭)을 받기 때문에 이미 이를 받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난번 헌부가 누차 이 일을 아뢰는 까

답에 지금은 그 수를 줄여 한 곳만 남아 있다.”

하였다.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백성들의 괴로움을 경연에서 시종신들이 자세히 아뢰었는데도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뢴 말이 비록 훌륭하였어도 말로만 끝났을 뿐 시행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뢴 말을 모두 힘써 실행한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인물이 어찌 모두 다 과거(科擧) 출신자 속에만 있겠습니까. 과거 출신자들과 같이 반드시 모두가 어진 것도 아니며 문음(門蔭) 출신이라 해서 반드시 죄다 어질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함당하지 않으면 비록 천거에 들었더라도 대간(臺諫)이 어찌 논계하지 않겠으며, 비록 천거되지 않았더라도 현능(賢能)하여 쓸만하다면 대간이 어찌 논박하겠습니까. 문무관들도 어질지 못한 자가 있으면 대간이 모두 논박하였습니다.

예부터 어진 사람은 적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많으니 전조(銓曹)에서 전형(銓衡)하여 임용해야 됩니다. 만약 한결같이 천거를 위주하고 전형을 위주하지 않는다면 인물을 쓰고 내치는 것이 또한 공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조가 천거하는 법을 시행하려고 해도 수령을 차출할 적에 주의(注擬)할 만한 인물이 부족하여 차출할 인원이 없게 된다면 어찌 하겠는가. 『대전(大典)』의 법이 처음에는 거행되다가 중도에서 폐지된 것은 또한 까닭이 있다. 천거법이 좋기는 하나 크게 쓰기에는 장애가 있을 것 같다.”

하니, 부(溥)가 아뢰기를,
 “『대전』의 천거하는 법이 중도에서 폐지된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거된 자 이외에 어찌 쓸만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천거된 인물 가운데도 간혹 용렬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은 역시 『대전』의 법을 바르게 준수하지 않아 단지 그 명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의 분부에 지방관이 힘써 교화를 폄하다면 인심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심이 완악하기가 근래에 더욱 심합니다. 무릇 수령들은 겨우 부서(簿書)나 때맞추어 낼 일만 알고 있을 뿐이니 어찌 교화를 봉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교화의 일이 어찌 별다른 업무이겠습니까. 오륜(五倫)을 잘 펴서 풍속이 박정하지 않아 고을에 완악한 사람이 없게 된다면 어진 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령이 있을 때 특별히 포상을 내린다면 다른 고을 수령들 역시 모두 이를 보고 느끼어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강원도 관찰사 김섬(金銛)의 최항(崔沆)을 파출시킨 것은 합당한 듯하다. 금후에 완악한 사람이 고을에서 나오면 그 사람만 죄줄 것이 아니요 그 고을 수령까지 함께 파직시켜서 좋은 일을 권장하고 나쁜 것을 징계하는 규례를 삼는 것이 좋겠다.”

사신은 논한다.

최항은 본래 권문(權門)을 잘 섬겨 이름을 얻고 벼슬을 구했던 사람이다. 그는 교화에 힘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다. 전일 고을 백성인 유석(劉石)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을 때 형적이 드러났는데도 읍호(邑號)가 강등되고 관직의 자급(資級)이 각임을 꺼려 하여 불효라고 판결, 하늘도 노할 죄악을 엄폐하려고 했으니 그 심술이 몹시 사납다. 그뒤 유석의 아버가 법에 따라 힘써 다투자 엄폐할 수 없음을 알고 도리어 그 사건을 충주(忠州)에다 전가하여 충주(忠州)에 성(莠城)으로 강등되게 하였으나 충주 사람들의 진소(陳訴)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뒤 충주 사람 허초(許礎) 등이 상언(上言)했을 때 이 사건을 반복하여 수의했었다. 그러나 대신 중에 평소 항(沆)과 교분이 두터운 자가 애매하게 의논하여 아뢰었기 때문에 항이 기만(欺滿)한 죄를 벗어났으므로 물론이 통분하게 여겼다.

이때에 와서 김섬이 파직시킬 것을 아릴 때 유석의 사건까지 아울러 들어 그의 간교한 정상을 밝히지는 못했으나 풍화에 힘쓰지 않은 죄로 파직당하게 되니 사람들이 다 통쾌하게 여겼다. 그뒤에 항은 얼마 안 있어 다시 서용되었고 항을 위하는 자들이 ‘항이 파직당한 것은 도사(都事) 안주(安宙)가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섬(銛)이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버려 간교한 자를 왜곡되게 비호한 것이 지나치다고 하겠다.

○丁丑 御朝講○上曰李宗角奴殺主事關係綱常罪狀已明而猶忍杖不服如此分明之事反覆推覈不得其情則其人之頑悍可知而推官之難鞫宜矣近來綱常之變未有甚於此時子殺父妻殺夫者相繼有之而宗角之奴則其罪深重而其情易推須得情狀而明正其罪可也此雖人心頑惡所致亦由教化之不行也承流宣化者不以教化爲務故也領事柳溥曰 上教至當臣於推鞫之時未嘗不致意於斯庶可知其所犯鉤得其情其事狀實爲奴僕所謀自相推調故不得歸一而遂成老獄矣[中略]

持平金泓曰各官漁箭自古有之各官進上時百姓賴之於此故民間無弊近來王子君別占多出漁箭以爲己物使百姓不得下手於其間以此民不獲利各於市上抱布貿之私自備納沿海之民以此困悴益甚此弊每欲啓之而今考戶曹公事王子君多占漁箭爲弊不貲故敢啓 上曰王子君不得折受田地則代受漁箭故已令受之而前者憲府屢啓此事故今則減之而只有一處耳柳溥曰民間疾苦經筵侍從之臣莫不盡啓而民不得蒙實惠所啓之言雖善而徒爲空言無施故也

以所啓之言一切務行則民蒙實惠矣人物豈盡在於科舉乎科舉不必皆賢門蔭不必皆不賢人物不相當則雖在薦舉之中臺諫豈無論啓乎雖無薦舉賢能可用者則臺諫豈駁之乎至於文武官亦有不賢者臺諫皆論之自古賢者少而不賢者多銓曹權衡用之可也若一主於薦舉之人而不主權衡則其進退人物亦不公矣 上曰銓曹雖欲行薦舉之法差出守令時注擬者不足而無填差之人則奈何大典之法初則舉行而中廢之意亦有以也此法好矣而恐有妨於大用也溥曰大典薦舉之法中廢之由未可知也然薦舉之外豈無可用人乎薦舉之中或有庸雜之人亦由不遵大典而徒有其名故耳 上教以爲承流宣化之人務崇教化則人心不必如此云人心頑惡近來尤甚凡守令之輩粗知簿書期會之事而已何能知崇教化之意乎教化之事豈別有他務乎五倫攸叙風俗不溥一境之中無頑惡之人則可謂賢守令矣如此守令特加褒獎則他邑守令亦皆觀感而取則也 上曰江原道觀察使金銛罷黜崔沆似當今後頑惡之人出於郡邑非但罪其頑惡之人並罷其邑守令以爲勸懲之規可也史臣曰崔沆本以善事權門釣名干進之人非但不務教化前日州人劉石弑父之事既發形迹而厭其降州號削官資欲以不孝斷之以掩滔天之惡其用心極矣及其劉石之父據法力爭知不能掩則反歸其事於忠州以至降爲芮城而因忠州人陳訴不久而後當其忠州人許礎等上言時反覆收議而大臣有素厚沆者朦朧議啓故沆得免欺瞞之罪物情憤之至是金銛罷黜雖不並將劉石事而明其奸巧之狀以不務風化而至於罷人皆快之厥後沆未久復叙而爲沆謀之者乃曰沆之見罷都事安宙挾私報施之事而銛未詳察云其亦徇私滅公曲庇奸巧之甚矣

《中宗實錄 卷94, 59面》

중종 36년 4월 4일(경신)

조강에 나아갔다.

○사정전에 나아가 정부(政府) 전원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를 인견하였다.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나라의 큰 일은 제사인데 제사에 쓸 삼생(三牲：소·양·돼지)이 거의 다 병들어 죽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신명의 노여움을 받아서 이런 재변이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도 범연히 염려하여 하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저 제사는 반드시 깨끗하여야 신명이 오는 것이니, 재실(齋室)이 누추하고 제복(祭服)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신명을 대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한추위나 한더위에 혹 섭행(攝行)을 명하실 때에는 정1품이 초헌(初獻)하게 해야 옳으며, 혹 사고가 있거나 병에 걸리면 종1품을 차출하는 것이니, 과연 위에서 분부하신 것과 같이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요즈음 병무(兵務)가 해이해져 군령이 엄하지 않고 군졸이 편안하지 못합니다.[중략]

하고, 류부(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김안국(金安國)·류관(柳灌)·

권벌(權機)이 아뢰는 것도 윤은보의 뜻과 같았다. 김안국이 또 아뢰었다.

“기묘년 이후 죄를 입은 자는 여러 부류인데 사류(士類)와 잡류(雜類)가 형벌을 많이 받아, 죽거나 파직되거나 폐기되거나 직첩을 빼앗긴 자가 많았습니다. 정유년 이후 이미 모두 죄를 씻어 주어 잘못이 있는 자라도 다 놓아 보내어 스스로 새로와질 길을 열어 주셨으니, 이는 또한 임금의 정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혹 간사한 자에게 참소를 당한 자도 다 은유(恩宥)를 받았으므로 중외의 인심이 기뻐하니 화기가 흠족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 가운데에 아마도 성충(聖聰)이 혹 미치지 못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 모퉁이를 향해 돌아 앉아 울면 온 집안이 즐겁지 않다.’ 하였습니다. 혹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고르지 않다면, 그들이 반드시 ‘아무는 이미 방면되고 아무는 이미 서용되었는데 나만 상은(上恩)을 입지 못했다.’ 하며, 어두운 지하에서 억울한 생각을 품은 자가 혹 있을 것입니다. 윤은보도 이 일을 거론하여 이미 아뢰었습니다. 신과 같은 자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나 매우 무상하므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도깨비의 고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보전하고 허물을 씻어 주시는 후한 은혜를 특별히 입어 외람되게 조정의 반열(班列)에 낄 수 있었으니, 이것은 행실을 고쳐 스스로 새로와지게 하신 뜻입니다. 그때에 같이 죄를 입은 자 중에서 산 자는 대부분 은혜를 입었으나, 죽은 자는 혹 직첩을 도로 받지 못하고 산 자 중에도 혹 천은(天恩)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관가에서 주는 값은 백성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줄이기를 힘쓰지 않고 구차하게 위의 분부를 따랐으니, 재변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하다.

또 논한다.

기묘년에 간사한 소인에게 중상당하여 죄를 입은 자가 아직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김안국은 같이 기묘년에 죄받은 사람인데, 혐의를 피하지 않고 같은 무리들의 억울함을 씻어 주려는 것이 이처럼 격절하였으니, 나라의 큰 일을 당하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자라 하겠다. 억울한 뜻을 품은 사람이란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기준(奇遵) 등을 가리킨 것이다.

○庚申 御朝講

○御思政殿引見政府專數及領中樞府事柳溥殷輔曰國之大事在祀而祭用三牲病斃殆盡此必見怒於神明而有此災也自上非偶然軫慮而下問夫祭祀必齋潔然後神明來格齋廬之陋麤祭服之不潔果非交神之道也且隆寒盛暑或命攝行之時則以正一品爲初獻可也而或有事故或有

病則以從一品差之果如 上教依五禮儀申明至當近日兵務解弛軍令不嚴軍卒不安[中略]
 柳溥洪彦弼尹仁鏡金安國柳灌權撥啓與殷輔意皆同金安國又曰己卯之後被罪者多歧士類
 及雜類多被刑憲或死或罷或廢棄或收職牒者多有之丁酉年後蕩滌已盡雖有所失者皆放還
 之而使開自新之路是亦王政之得宜也或被訴於纒慝者皆在恩宥之中中外人心喜悅和氣可
 以沐浴也然兩事之中恐 聖聰或有所未及也古人云一人向隅而泣滿堂爲之不樂或有生者
 死者而蒙恩不均則彼必以爲某已放某已叙而我獨未蒙 上恩舍寃抱憫於冥冥之中者或有
 之矣尹殷輔亦舉此事而已啓之矣如臣負國厚恩無狀已甚當受天刑亦可以迸逐魑魅之鄉而
 厚保軀命特蒙蕩滌瑕垢之恩使得濫齒朝列此亦使之改行自新之意也其時同被罪者生者舉
 皆蒙恩而死者或未還職牒生者亦或有未蒙 天恩者此似未便史臣曰官給之價非出於生民
 之膏血乎不以裁減爲務而苟循 上教恐非救災之良策也史臣曰己卯年爲儉小中傷而被罪
 者迄未盡原宥故及之安國同是己卯之人不避嫌疑雪寃同流若是其激切可謂當國大事不顧
 其身者也抱寃之人指趙光祖金淨金湜奇遵等也 《中宗實錄 卷95, 13面》

중종 36년 5월 28일(계축)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오겸(吳謙)이 아뢰기를,

“지난해에는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이 굶는 고통이 매우 심한데, 밀보리가 거의
 다 그르쳐졌다가 마침 비가 내려서 조금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실한 것
 은 3분의 1로 6월을 넘지 못하여 먹을 것이 모자랄 것입니다.[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진구하는 일이 긴급할 때에 미치지 못한다면, 백성이
 굶어서 괴로운 것이다. 제언의 일은 해야 하나, 농사철에 폐단이 있고 이미 심은
 곡식도 버릴 수 없으니, 가을걷이 뒤에 분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영사(領事)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신이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가문 기세를 보면 씨를 뿌렸더라도 모를 심을 수 없
 을 듯하고 모를 심더라도 반드시 타 죽으나, 올해에는 그렇지 않아서 타 죽는
 것이 심하지는 않으니, 아직 씨를 붙이지 못한 것은 그만이었으나, 씨를 붙인 것
 은 가을 수확을 바랄 수 있다 합니다. 전에는 크게 가문 뒤에 반드시 장마가 있
 었는데 이제는 비를 뿌릴 뿐이니, 밭 곡식은 말라 죽지 않더라도 논의 일은 염
 려스럽습니다. 가뭄의 재변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올해처럼 심한 적이 없었
 습니다. 전에는 비를 비는 제사를 친히 지내면 반드시 비를 얻었는데, 올해에는
 종묘·사직에서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에까지 몸소 제사를 지내시고 의례를 어
 기지 않았어도 아직 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두렵게 여기어 수행하고 반성하는
 것이 재변을 당하여 삼가는 뜻이기는 하나, 반드시 그 실속이 있어야 하늘이 응

하는 것이니, 오히려 다하지 못한 정성이 있는 듯합니다. 더욱 더 수행하고 반성하여 다하지 못한 정성을 힘쓰시면 반드시 억수로 비가 내릴 것이니, 다시 더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일렀다.

“가뭄의 재변이 있을 때에 비는 것이 말단의 일이기는 하나, 귀신이면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먼저 인사를 닦는 것이 근본이 되니, 몸을 편안히 두지 말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癸丑 御朝講掌令吳謙曰前年農事不實民之飢困已甚兩麥幾乎全失適下雨稍有結實結實者居三分之一不過六月當乏食矣[中略]

上曰此言至當賑救之事若不及於緊急之時則民必飢困堤堰事不可不爲農時有弊而已耕之穀亦不可棄秋收後依受教爲之似當領事柳溥曰臣聞之於人以旱氣見之則雖落種而似不得立苗雖立苗亦必焦傷而今年則不然焦傷不至於甚未付種者則已矣付種者可望西成矣前者大旱之後必有淫雨今只酒雨田穀雖不焦傷而水田之事可慮旱災自古多有之而未有如今年之甚前則親行祈雨之祭必得其雨今年 宗廟社稷以至風雲雷雨之壇躬展祀事式禮莫愆而尚不得雨恐懼修省雖謹災之意而必有其實然後天乃應之猶恐有未盡之誠也益加修省以勉未盡之誠則必需然下雨矣更加留念焉 上曰旱災之時祈禱雖未節而靡神不舉可也然先修人事爲本測身修行之言至當也

《中宗實錄 卷95, 32面》

중종 36년 6월 18일(계유)

계복(啓覆)을 들었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명규(李名珪)가 진주(晉州)의 죄수수군(水軍) 박한석(朴漢石)의 추안(推案)을 아뢰었다. 한석(漢石)은 그 아버지 보중(甫中)을 때려 죽인 죄인으로 죄가 능지처사(陵遲處死)로 부대시(不待時)였다. 영사(領事) 류부(柳溥)가 아뢰기를,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니, 천하의 큰 변고이며 성왕(聖王)의 정치에 큰 누를 끼친 자입니다. 천지 사이에 잠시도 용납해 둘 수 없는 자이니 속히 율법에 의하여 전형(典刑)의 엄중함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율법대로 하라고 일렀다.

○癸酉 聽啓覆左副承旨李名珪啓晉州囚水軍朴漢石推案漢石毆殺其父甫中罪陵遲處死不待時領事柳溥曰此人弑父明白無疑天下之大變 聖治之大累天地間不可斯須容者也當速依律明示典刑 上曰依律

《中宗實錄 卷95, 49面》

중종 36년 12월 24일(을해)

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젯밤 이경(二更)에 공중에서 세찬 포(砲)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은은하여 뇌성(雷聲)과 같았었다. 이에 오늘 아침에 이 재변을 알아 보려고 별감(別監)을 시켜 관상감(觀象監)에 가서 ‘어젯밤에 무슨 재변이 없었느냐?’고 물어 보도록 했더니,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그 소리가 뇌성이나 지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은은한 소리만 있었다. 그러나 또한 비상한 재변이었다. 이로 본다면 평소에 내외(內外)의 관상감이 비록 재변이 있어도 반드시 측후(測候)하지 못한 것이다. 내외 관상감의 측후하는 관원들을 속히 불러다가 다시 지난밤 이경 무렵에 재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그 소리는 누구나 들었을 듯한데 정원에서도 들었는가?”

하니, 승지 홍춘경(洪春卿)이 회계하였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입직(入直)한 승지와 사관(史官)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은 비록 국기일(國忌日)이기는 하지만 오후에는 공사(公事)를 출납(出納)하는 것이 준례이다. 재변이 아니더라도 정사(政事: 관원 임명과 출척)하는 사이 사람을 임용(任用)할 적에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신들과 의논하고 싶다. 어제는 비상한 재변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여기다가 물어 보았더니 모두들 들었다고 했다. 의정부 전원과 증경정승(曾經政丞: 전임 정승) 및 육경(六卿)·판윤(判尹)을 불러 의논하라.

삼공(三公)은 혹 복제(服制)가 있기는 하지만, 영의정 윤은보(尹殷輔)는 상처(喪妻)하고 우의정 윤인경(尹仁鏡)은 계후(繼後)한 아들을 잃었다. 그 자신이 아픈 것이라면 할 수 없거니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모여서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을 입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모름지기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만일 병이 중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사관(史官)을 보내어 의논하도록 하라.”[중략]

○윤은보(尹殷輔)·류부(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김안국(金安國)·류관(柳灌)·양연(梁淵)·권벌(權穰)·성세창(成世昌)·이기(李芑)·류인숙(柳仁淑)·이언적(李彦迪)·정순봉(鄭順朋)·남효의(南孝義) 등이 의논드리기를,

“어제의 재변은 깊은 밤에 생긴 것이어서 단지 뇌성(雷聲)과 같은 소리만 들었기에 뇌성인지 지진인지를 가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소리가 날 적에 창문과 방바닥이 흔들린 것으로 보건대 지진으로 인하여 소리가 난 듯합니다. 재변이 특이한 것이었는데 어찌 불러온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상하(上下)가 마땅히 더욱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하문(下問)하신 여러 가지 일은 역시 수성(修省)하는 중에도 마땅히 근신해야 할 것들로서, 사람을 임용할 적에 공정하게 하기를 힘쓰시는 성상의 생각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전조(銓曹)가 주의(注擬)한 것에 의하여 성상의 재량으로 가리어 천망 단자(薦望單字)에 낙점을 하는 것은 곧 조종조부터의 준례입니다. 그런데 어찌 따로 다른 규정을 세우겠습니까. 찌지를 뽑아 하는 것은 정사(政事)의 체모에 방해로울 듯합니다.

혼인 때의 사치와 신래의 침학을 금단하는 일 등은 모두가 당면한 지금의 큰 폐단들이니 마땅히 통렬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전(大典)」의 법이 있고 또한 여러 차례 수교(受敎)한 것이 있어 법령이 자세하고 극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로 규찰과 금단을 해이하지 않게 한다면 어찌 그만두거나 고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버릇이 오래되면 금단이 풀어지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라 외람한 폐단이 이토록 극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 만일 이번에 이전의 법을 거둬 밝히고 미진한 조목(條目)을 더 갖추어 법을 담당한 관사(官司)로 하여금 엄격하게 금단하고 고치게 하면 거의 고쳐질 것입니다. 다만 규찰하여 다스리는 일은 으레 법사(法司)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을 알아서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단지 해조(該曹)로만 하게 한다면,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법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고 옷사람들이 몸소 솔선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됨은 옛적부터 그러했으니, 바라건대 먼저 공경(公卿)들과 현달한 관원들을 금하고 신칙하여 법례(法禮)에 따라 검소하게 하는 것을 솔선하게 한다면 아래서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초상 장사에 관한 일은 송종(送終 : 죽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의 예절이니 진실로 후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귀천(貴賤)의 차등이 있는 법인데 어찌 넘치거나 참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귀천을 막론하고 후하게 장사하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가난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서 시기가 넘도록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몹시 많으니 또한 마땅히 금단하여 폐풍(弊風)을 고쳐야 합니다. 아울러 법사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급양민(及良民)’이란 세 글자의 법은 전부터 법전에 있는 것이니 만일 이번에 거행한다면 종량(從良)³⁴⁵의 길이 넓어질 듯합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오래지 않아 즉시 폐지하였는데 그 시기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한갓 시끄럽게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다시 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거행되기를 기약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법전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45) 종량(從良) : 천민(賤民)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것.

법조문의 수정(修正)은 정치하는 도리에 관한 일인데 마침 흥년을 만나게 되어 중지했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육조의 당상과 낭관 각각 한 사람씩이 아랫사람들을 요량하여 거느리고서 공해(公廡)에 모여 수정하여 초계(抄啓)한 다음에 함께 의논하여 시행한다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소견은 각기 다른 법이어서 법의 시행 여부를 존삭(存削 : 둘 것은 두고 깎을 것은 깎는 것)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득이 법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확정해와 시행하여 쓸 수 있게 될 것이니, 우선 오는 임인년 가을에 곡식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근정청(斤正廳)을 설치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옛적에는 학문이 넉넉해야만 벼슬을 했습니다. 만일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벼슬 자리에 나아가 직에 임하게 한다면 진실로 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조(銓曹)가 인재(人才)를 시험할 적에 학문을 알고 모르는 것으로써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조종조 이래로 전조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규찰하는 관원을 참가시키지 않은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땅히 다시 전조로 하여금 엄중하고 공명하게 고시(考試)하여 요행을 노리는 자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조를 믿지 않고 다른 관원을 참가시키는 새 준례를 만드는 것은 사체에 방해로울 듯합니다.

의주목사에 무신을 차정(差定)하여 보내는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지금 임명된 목사 이윤경(李潤慶)이 비록 문관이기는 하나 무재(武才)와 계략(計略) 또한 넉넉하니 변경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삼공이 또 아뢰기를,

“무창(武昌)의 이쪽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 살고 있는 피인(彼人)들을 몰아내는 일은, 군사(軍事) 기밀에 관한 중요한 일이므로 다음에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재상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 병사(平安道兵使) 우맹선(禹孟善)의 계본(啓本)으로 인하여 이 의논이 있었다. 그 계본에 “지령괴(池寧怪) 등지에 와서 사는 피인들이 날로 번성해져 우리 지경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방자하게 드나들고 있으니 비록 몰아낸다 하더라도 마음을 고쳐 도망갈 리가 만무합니다. 올해에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어 군사들의 양식이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니 내년 봄쯤에 창성(昌城) 이상의 다섯 고을에서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 2백여 명을 가려서 뽑아 불의에 습격하여 소굴을 분탕(焚蕩)하여 나라의 위엄을 보여야 합니다.” 하였다.

수령의 아권(衙眷)이 가마를 타는 일에 대해서는 ‘종친(宗親)의 딸에게는 유옥교(有屋轎) 타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대로 한다면, 그 뒤에 만든 ‘타지 못한다.’는 법은 모두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길가에 사는 백성들은 평소에도 늘 역사가 오히려 탄 데보다 배나 되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흥년인 해에 만일 교군(轎軍)을 징발(徵

發)한다면 모두 고꾸라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와 같이 민망하고 측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전」과 어그러지기는 하지만 바라건대 이 법은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원루(廣遠樓)를 불태운 일은 지극히 통탄스럽고 밉습니다. 천사(天使)에게 잔치를 대접하는 곳이어서 사건이 지극히 중대하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추고(推考)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황주(黃州)는 실농(失農)이 본도(本道) 가운데서도 더욱 심한데 경관을 내보낸다면 큰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도의 감사는 진실로 우연만한 사람이 아니니 감사로 하여금 추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된 뜻과 의득(議得)한 뜻은 모두 알았다. 다만 혼인 때 사치하는 것과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금단하는 일은 법사(法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한 다음에야 누구나 스스로 두려움을 알아서 범하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절목을 마련하는 일을 당초에는 과연 사헌부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앞서의 대관(臺官)들이, 절목은 해조(該曹)가 마련하도록 하고 금단(禁斷)은 법사가 마땅히 규찰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기에 예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 방(榜)을 걸어 알려 중외(中外)에 효유하게 한 다음에 범한 자의 죄를 다스린다면 그 죄를 달게 받을 것이기에 이미 예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니 이를 다시 굳이 법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할 것은 없다.

또 교군(驍軍)의 일은, 비록 평교(平驍)³⁴⁶라 하더라도 모두 금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초상 장사에 관한 일은 송종(送終)하는 예절이라 매번 의논하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마침 대신들이 들어왔기에 함께 의논하는 것이다. 귀천(貴賤)은 차등이 있는 것이어서 넘치거나 참람하게 할 수 없는 법인데, 요사이 후장(厚葬)하는 풍습이 이루어져서 시기가 지나도록 장사하지 못하니 지극히 그르다. 의논한 사연(辭緣)대로 예조가 승전을 받들어, 신래의 침학과 혼인 사치에 관한 것처럼 금단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또 광원루(廣遠樓)에 불지른 사람을 추고하는 일은, 대신들은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였으면 했지만, 감사는 필시 친히 가서 추고할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차사원을 정하여 추고해야 할 것인데, 그렇

346) 평교(平驍) : 종1품 이상 및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이 타는 남여(籃輿). 네 사람이 낮게 매는 가마.

게 하면 추고하는 일을 심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평소에 경관을 내보내지 못하면 으레 그 도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추고하도록 했다. 지금 황주(黃州)는 실농(失農)이 본도(本道)에서도 특히 심하기 때문에 경관을 보내야 하지만 보내지 않으니,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갖추 자세하게 추고하여 계문하게 하라는 것으로 서장(書狀)을 만들어야 한다.”

하니,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가마 타는 것에 관한 일은 마땅히 일체 금단해야 합니다. 만일 평교(平轎)와 유옥교(有屋轎)를 구분한다면 반드시 법이 해이되어 확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치지 마소서.”

하였는데, 답하였다.

“알았다. 추운 날씨에 오래 앉아 있었으니 술을 내리라.”

○乙亥傳于政院曰昨夜二更如聞空中迅砲聲隱隱如雷故今朝欲知其變而使別監往問于觀象監曰昨夜無他災變乎則答云無之其聲也似非天雷地震而但有隱隱聲而已然亦非常之災變也以是觀之常時雖有災變內外觀象監必不候察也內外觀象監候望之官斯速招來更問去夜二更間災變有無仍傳曰其聲人人似皆聞也政院亦得聞之耶承旨洪春卿回啓曰不知何聲而入直承旨史官皆得聞之也○傳于政院曰今日雖曰國忌午後則公事出納例也雖非災變政事間用人之際多有可議之事故今欲論議于大臣耳昨日有非常之變吾意以爲偶聞而問之則人人皆得聞之云其招議政府全數曾經政丞六卿判尹三公或有服制領議政尹殷輔喪妻右議政尹仁鏡喪其繼後子如其身病則已矣如此之事不可不會議也其服制日且已久須以入來事言之若有病重者亦可以遣史官議之也[中略]

○尹殷輔柳溥洪彥弼尹仁鏡金安國柳灌梁淵權撥成世昌李芑柳仁淑李彥迪鄭順朋南孝義等議昨日之變出於深夜只聞其聲如雷難辨天雷與地震聲出之時有見窓戶與坑堦有搖動之狀似因地震而有聲也災變殊異豈無其應上下所當益加警惕今承下問累事亦修省中所當謹者用人之際務欲公正 聖慮至矣然因銓曹注擬裁自 聖簡落點望單字是祖宗朝舊例豈應別立他規抽柱之事恐妨政體婚姻奢侈新來侵虐禁斷之事皆當今鉅弊所當痛草然既有大典之法又有累次受教法令非不詳盡苟能糾禁無弛則豈不戰革狃久而禁弛人情之常以致濫弊斯極今若申明前法加具未盡之條令憲法之司嚴加禁革則庶可變矣但糾治之事例自法司磨鍊故人人知懼而不犯若只令該曹爲之則恐玩而不戰也且徒恃倚於法而自 上不身率之則下不從令自古然也請先禁飭公卿達官 從法禮率之以儉則下誰有不從乎喪葬之事送終之禮固宜從厚然貴賤有等豈應踰僭近來不分貴賤厚葬成風以致貧不能具過期不葬者滔滔亦宜禁戰以革其弊並令法司糾察何如及良民三字舊在法典今若行之似廣從良之路然行之未久旋即廢之其來已久徒爲紛擾今雖復設其後必行難期姑依法典施行何如法條斤正關於政理適值凶年而止今若以六曹堂上郎官各一員量率其下人會于公廡斤正抄啓後共議而行之

似爲便益但人之所見各異法之行否存削爲難不得已諳練法典者會議而商確之庶可行用姑待來壬寅年秋成復設斤正廳何如古者學優則仕如不知學者遽使蒞官臨職實有害焉銓曹試才以知其學否者其意有在自 祖宗朝以來令銓曹試之不叅以糾察之官豈無所以今當更令銓曹嚴明考試庶勿使僥倖者獲叅不信銓曹而叅以他官以開新例恐妨事體義州牧使以武臣差遣事 上教允當但今任牧使李潤慶雖文官武才計略亦優勿動似當三公又啓曰武昌此邊冒居彼人驅逐事軍機重事後與知邊事宰相同議以啓因平安兵使禹孟善啓本有此議其啓本曰池寧恠等處來居彼人日至蕃盛漁獵我境縱恣出入雖曰驅逐悛心遁去之理萬無今年農事稍稔軍人贏糧不至艱窘明春間昌城以上五郡驍勇軍三百餘名抄選不意掩襲蕩巢穴以示國威何如守令銜眷乘轎事宗親之女則有屋轎勿禁之法載在大典然若依此法則後設勿乘之法具不得行路傍之民常在平時其役尚倍於他况今飢荒之歲若發轎軍則皆當顛仆以死安有如此憫惻之事乎雖違大典請勿改此法何如廣遠樓衝火事至爲痛憎天使宴享之處其事至重遣京官推考似當但聞黃州失農在本道尤甚京官發遣至爲有弊其道監司固非偶然之人令監司推考啓聞何如答曰啓意及議得之意皆知道但婚姻奢侈新來侵虐禁斷之事令法司磨鍊而後人人自知畏懼而不犯云節目磨鍊事當初果可令憲府爲之前臺官以爲節目則令該曹磨鍊禁斷則法司當糾檢云故令禮曹節目磨鍊掛榜知會曉諭中外然後犯者治罪則甘受其罪故已令禮曹爲之此則不必強令法司爲之也且轎軍事雖平轎皆可禁之乎此言未顯故更問之也仍傳于政院曰喪葬之事送終之禮每欲議之而不果今適大臣入來故共議之也貴賤有等不可踰僭近來厚葬成風以致過期不葬至爲非矣以所議辭緣奉承傳于禮曹依新來侵虐婚姻奢侈禁斷節目磨鍊以啓可也且廣遠樓衝火人推考事大臣欲以其道監司推考啓聞云監司必不可親往推之必定差使員推之則其所推之事視爲尋常常時若不遣京官則例令其道都事推之今者黃州失農在本道尤甚故京官可遣而不遣令其道都事備細推考啓聞事爲書狀可也尹殷輔等回啓曰乘轎事當一切禁之若分平轎與有屋轎則其法必當還解不固矣近來請勿更改答曰知道以日寒久坐其賜酒

《中宗實錄 卷97, 9面》

중종 37년 4월 25일(을해)

영의정 윤은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류관(柳灌), 예조 판서 김안국(金安國), 이조 판서 양연(梁淵), 좌참찬 권벌(權撥), 우참찬 성세창(成世昌), 병조 판서 이기(李芑), 호조 판서 류인숙(柳仁淑), 형조 판서 정순봉(鄭順朋), 한성부 판윤 상진(尙震), 호조 참판 이현보(李賢輔), 예조 참판 송인수(宋麟壽), 참의 채세걸(蔡世傑), 호조 참의 장적(張籍)이 의논드렸다.

“일본은 친근한 나라이므로 조종 때부터 모든 서계에 붙인 청구에 관한 것은 우리 뜻을 굽혀서 들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심 동당(安心東堂) 등이 가져온 서계 안의 상물인 은(銀)은 8만 냥이나 되는데, 전에는 은을

가져와서 사 달라고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은 백성이 입고 먹는 것과 같은 예가 아니므로 사더라도 쓸 데 없다고 사양하고 타일러서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일체 굳이 거절하면 이웃과 우호하는 의리를 손상하여 저들이 실망할 것이니, 시가에 따라 사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乙亥領議政尹殷輔領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彦弼右議政尹仁鏡左贊成柳灌禮曹判書金安國吏曹判書梁淵左叅贊權撥右叅贊成世昌兵曹判書李芑戶曹判書柳仁淑刑曹判書鄭順朋漢城府判尹尚震戶曹叅判李賢輔禮曹叅判宋麟壽叅議蔡世傑戶曹叅議張籍議啓曰日本與國也自 祖宗朝凡干書啓付求請靡不曲從今此安心東堂等賚來書啓內商物銀鐵多至八萬兩前此賚銀請貿未曾有也所宜辭以此物非民生衣食之例貿之無用諭令賚還但一切堅辭固拒有虧鄰好之義彼將失望當從時直許貿何如 《中宗實錄 卷98, 15面》

중종 37년 5월 3일(계미)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예조 판서 김안국(金安國), 좌찬성 류관(柳灌), 이조 판서 양연(梁淵), 좌참찬 권벌(權撥), 우참찬 성세창(成世昌), 병조 판서 이기(李芑), 호조 판서 류인숙(柳仁淑)³⁴⁷, 형조 판서 정순봉(鄭順朋), 한성부 판윤 상진(尙震), 좌윤 장언량(張彦良), 호조 참판 이현보(李賢輔), 이조 참판 황헌(黃憲), 예조 참판 송인수(宋麟壽), 공조 참판 윤개(尹漑), 형조 참판 신광한(申光漢), 병조 참판 정세호(鄭世虎)가 의논드리기를,

“선위사(宣慰使)가 가져간 사물을 이제 다시 살펴 보니 ‘일본국왕이 바치는 물건 외의 서계에 붙인 상물(商物) 중에서 가벼운 물건은 전수를 올려보내고 무거운 물건은 포소(浦所)에 그대로 둔다.’ 하였습니다. 은과 유황은 다 무거운 물건이니, 선위사가 가져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왜인들이 은을 보물이라 하여 굳이 청하여 스스로 가져오려 하더라도, 은이 많아서 8만 냥이나 되니 선위사에게 물어 본 뒤에 가져올 것이고, 마음대로 편의를 헤아려 가져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뜻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가져간 사물을 보지 않고 조치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癸未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彦弼領中樞府事柳溥右議政尹仁鏡禮曹判書金安國左贊成

347) 류인숙(柳仁淑) : 1485~1545.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원명(原明). 호는 정수(靜叟).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토진주(土晉州). 문과에 급제. 이조 좌랑(吏曹佐郎)·도승지(都承旨) 등을 지내고,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경주부윤(慶州府尹)·참판(參判)·판서(判書) 등을 지냈고, 명종(明宗) 때 윤원형(尹元衡)의 탄핵을 받아 무장(茂長)에 유배되어 사사되고 이어 부관 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다. 선조(宣祖) 때 복관(復官)되었다.

柳灌吏曹判書梁淵左叅贊權檣右叅贊成世昌兵曹判書李芑戶曹判書柳仁淑刑曹判書鄭順朋漢城府判尹尚震左尹張彥良戶曹叅判李賢輔吏曹叅判黃憲禮曹叅判宋麟壽工曹叅判尹漑刑曹叅判申光漢兵曹叅判鄭世虎議啓曰宣慰使賫去事目今更考見則國王獻物外書契付商物輕便物色專數上送負重物色留置浦所云銀兩硫黃皆是重物則宣慰使必不使之持來彼倭等若以銀爲寶物雖強請欲自持來銀兩多至八萬則宣慰使當啓稟然後持來必不任意而擅便輸來也今雖更不言不持來之意豈不見其賫去事目而爲之處置乎答曰知道

《中宗實錄 卷98, 18面》

중종 37년 5월 12일(임진)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선위사(宣慰使)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은(銀)은 쓸데없는 물건이므로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더라도 무역을 허가할 수 없고 날라 갈 수도 없다는 뜻을 결단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객사가 혹 답하기를 「은과 사사로운 상물(商物)은 인동현(仁同縣)에 놓아 둔다.」 하였는데, 이것은 불평하는 말인 듯하며, 혹 「귀국이 이미 여느 왜인으로 대우하였으니 도중의 연향(宴享)에 어찌 들어가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였으니, 가슴속에 분한 마음을 품은 것이 없지 않다.’ 하였다. 선위사는 무역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시험해 보고서 치계하여 조정의 결정이 귀일되기를 기다린 뒤에 말하여야 옳았을 것인데 문득 결단하는 말을 하였으니, 교린(交隣)뿐만 아니라 변방의 말썽에도 관계된다. 저들이 분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나라 백성이 표류했을 때에 어찌 돌려 보내려는 마음을 갖겠는가. 이적(夷狄)을 대우하는 일은 상세히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조정의 신하를 많이 모아서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예조 판서 김안국, 좌참찬 권벌, 우참찬 성세창, 한성부 판윤 상진, 예조 참판 송인수가 의논드리기를,

“예전부터 일본 사신이 나오면 그 상물(商物)을 조사하여 짐이 무거운 것은 품색(品色)을 살펴 무거운 것을 확인한 다음 포소(浦所)에 그대로 두고 견양(見樣)만 가지고 올라오는데, 임억령(林億齡)은 사목(事目)을 지키지 아니하여 연유를 갖추어 계품하지 않고서 8만 냥의 은을 인동(仁同)까지 날라 왔습니다. 강제로 포소에 돌려 보내자면 나라의 체모에 방해될 듯하고, 서울로 날라 오는 것을 허가하자면 무역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니, 일이 이미 어그러져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억령은 체직하고 다른 인원으로 갈음하여야 하겠습니까마는, 선위사가 전에 이미 호행(護行)하였는데, 이제 체직하면 혹 객사(客使)가 마음속으로 불안해 할지 모르니, 우선 고쳐 차출하지 말고 임억령을 시켜 완곡한 말

로 동당(東堂) 등에게 '내가 사신의 청을 어기기 어려워서 억지로 길을 떠나 따라왔으나, 이제 해조(該曹)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규례에 따라 은 같은 무거운 물건은 포소에 두라는 것을 이문(移文)하여 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포소로 돌려 보내야 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하여 정녕히 부드럽게 타이른 뒤에, 은은 관찰사를 시켜 일에 익숙한 차사원을 차정하여 압령(押領)하게 해서 곧 포소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류관, 이조 판서 양연, 호조 판서 류인숙, 공조 판서 홍경림이 의논 드리기를,

"가져온 은을 중도에 두어 객왜(客倭)를 내지(內地)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 차사원을 가려 정하여 포소로 압송하여, 조정이 끝내 무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객사로 하여금 알게 하여 뒤에 올 끝없는 폐단을 막으소서. 임억령은 사목(事目)대로 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날라 왔을 뿐만 아니라, 서장(書狀)의 사연을 보면, 객사를 접대하여 말로 응답하는 사이에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전대(專對)하는 임무를 아주 잃었으니, 그대로 접반(接伴)하게 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하고, 윤인경·김안국·류관 등이 아뢰기를,

"왜사가 내지에 오래 머물면 나라의 허실(虛實)과 산천의 형세를 모르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인동에 두는 것은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왜인이 내지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마음대로 드나들며 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알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적을 대우하는 일을 가벼이 할 수 없으므로 의논한 것이다. 사사로운 상물은 모두 날라 오도록 허가하고 은만 지킨다면 두 세 사람이면 될 것이다."

○壬辰○傳于大臣等曰今觀宣慰使狀啓銀兩無用之物雖持上京不可許貿亦不可輸轉之意決斷言之故客使或答曰銀及私商物留置仁同縣此似不平之言或曰貴國旣以常倭待之雖路次宴享何必入叅胸中不無懷憤云宣慰使當試以不可貿之意馳啓待朝廷發落歸一然後言之可也而遽卽示其決斷之言非但交隣亦關邊釁若懷忿怒則如我國漂岷彼豈有肯還之心哉待夷之事不可不詳度多會廷臣議焉領議政尹殷輔領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禮曹判書金安國左叅贊權椈右叅贊成世昌漢城府判尹尙震禮曹叅判宋麟壽議自古日本使臣出來則考其商物負重者則看品知重留置浦所只賣見樣上來林億齡不遵事目不具由啓稟八萬兩銀輸至仁同欲勅還浦所則似妨國體欲許輸京則勢不得不貿事已舛誤處置極難林億齡則當遞易代以他員但宣慰使曾已護行今若改之則慮或客使不安於心姑勿改差令億齡婉辭說與東堂等曰俺重違使臣之請勉從上路今者該曹據亘古之例銀兩等重物留置浦所事移文來到不得不還送浦所心甚未安之意丁寧溫諭後銀兩令觀察使擇定諳鍊差使員押領隨

卽還送浦所何如左贊成柳灌吏曹判書梁淵戶曹判書柳仁淑工曹判書洪景霖議賚來銀兩不可置諸中路使客倭久留內地擇定差使員押送浦所使客使明知朝廷終不許質之意以杜後來無窮之弊林億齡非但不依事目擅許輸來觀書狀之辭交接客使言語酬答之間多有失誤殊失專對之任勢不可仍令接伴尹仁鏡金安國柳灌等曰倭使久留內地國之虛實山川形勢無不知之仁同留置至爲未便答曰予非不計倭奴久留內地恣意出入覘知國之虛實也待夷之事不可輕易故議之矣私商之物並許輸來只護守銀兩則當不過二三人也 《中宗實錄 卷98, 23面》

중종 37년 윤 5월 11일(경신)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³⁴⁸,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안국(金安國), 병조 판서 이기(李芑)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협강(夾江)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중국인은 호 어사(胡御史)가 자세하게 조치하여 이미 탐참에 엄히 경계를 내리고, 또 우리 나라에도 통유(通諭)하여 양쪽에서 금한 이후로는 중국인이 함부로 경작하는 일은 이미 없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불법으로 협강의 땅을 경작하지는 않지만 강을 따라 수많은 가호가 살고 있는 것은 옛날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고을과 아주 가까와 아무리 서로 통하는 것을 금하더라도 관문(關門)이나 성참(城塹)이 없는 한 막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더군다나 이익을 좇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간민(奸民)들의 상정(常情)이어서 틈만 있으면 법을 어기고 몰래 통하기 때문에 금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일은 나라의 큰 걱정인데 선처할 계책이 없습니다. 이제 그곳 사람과 우리 백성이 서로 몰래 현범(現犯)이 있어 어사(御史)가 알게 되었고, 도사(都司)에게 알려 현범을 체포해 국문하여 치죄(治罪)하라는 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들이 우리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해이하게 하여 그런 것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매우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들이 먼저 발견하여 국치(鞫治)를 가(加)하여 엄금하려고 하니 우리 나라에게는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불가불 엄금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범인을 끝까지 찾아내어 법으로 다스려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 저들도 우리 나라가 금령(禁令)을 엄격히 받들어 범인을 실로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무색한 수치를 씻을 수 있고, 이후로는 두

348) 윤인경(尹仁鏡) : 1476~1548.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자는 경지(鏡之). 시호는 효성(孝成). 본관은 파평(坡平). 중종 1년(1506) 별시 문과에 급제. 학록(學錄)·도승지(都承旨)·판서(判書)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고, 인종(仁宗) 때 좌의정을 지내고 영의정이 되었다. 명종(明宗) 때 위사공신(衛社功臣) 1등으로 파성부원군(坡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나라 백성이 몰래 통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예로부터 우리 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비록 중죄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법을 들어 문단(問斷)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탕참의 수보관(守堡官)이 마음대로 관원을 차출하여 압송(押送)해 오도록 명한 것은 사체상 곤란합니다. 혹시 범인을 붙잡더라도 압송하는 일은 이치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후의 범인 6명 가운데 5명은 성명을 모르며, 한 사람은 비록 성명이 있지만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붙잡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저들에게 말해 주어도 되는 것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중략]

하고, 류부(柳溥)·윤인경(尹仁鏡)·양연(梁淵)·권벌(權機)·류인숙(柳仁淑)·이기(李芑)·송인수(宋麟壽)·조사수(趙士秀)가 의논드리기를,

“경오년 반란³⁴⁹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 너그럽게 포용하여 따지지 않았고, 또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 석방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말과 뜻이 간절하여 차마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서 구례를 재감(裁減)하여 조약을 정해 영원토록 지킬 법을 마련했었으니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족합니다. 그러니 대마도(對馬島)의 입장으로는 마땅히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달라져 참람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해마다 노략질을 그치지 않아 그 방자한 형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마도주의 서계를 보건대, 말이 매우 오만하고 불손하니 책망을 하여야 합니다. 임신년 조약은 금석(金石)처럼 확고한 것이어서 비록 겸손한 말로 애걸 하더라도 오히려 고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처럼 교만한 말이겠습니까.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고치는 것을 허락하면 이는 실로 우리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어서 나라의 체통이 손상되고, 저들은 더욱 교만한 뜻을 품어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에는 반드시 모두 고칠 것을 청하고야 말 것이니 장래의 화란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우리 나라의 대응 자세를 시험하기 위해 조만간 변경을 노략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방비책을 변방 장수들에게 신칙하여 더욱 조치해야 합니다. 또 신조약(新條約) 8

349) 경오년 반란 : 경오년인 중종 5년(1510)에 왜인들이 일으킨 삼포왜란(三浦倭亂)을 말한다. 삼포는 세종(世宗) 때 왜인(倭人)들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개방한 부산포(釜山浦)·제포(濟浦)·염포(鹽浦)를 말한다. 그런데 왜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자 폐단 또한 많아지고, 왜인들이 우리 관원들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산첨사(釜山僉使)로 부임한 이우증(李友曾)이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허세를 부리다가 왜인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이에 왜인들은 본국과 내통하여 중종 5년 4월 4일 새벽을 기해 제포와 부산포를 일제히 공격해 왔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이우증 등 많은 관원이 죽었다. 조정에서는 류담년(柳聃年)과 황형(黃衡)을 장수로 삼아 내려보내 평정하였다. 이 왜변이 있은 후 우리 조정에서는 잠시 왜인들의 통상을 불허하였다.

조는 시행한 지 오래지 않은데 갑자기 고친다면 변방 장수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왜노(倭奴)들이 더욱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16일에 관가(觀稼)하는 일은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달은 예년에 비하면 6월의 무더위입니다. 가을철에는 길가의 벼곡식 가운데 혹 이른 벼는 수확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한참 무성하니 밟아서 안 됩니다. 또 부득이 도로를 닦으려면 반드시 농민을 부려야 합니다. 관가할 시기가 아니니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해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동하지 않았었다. 금년 역시 가뭄이 심했는데 다행히 비가 흠족하게 내린 듯하다. 그래서 농사를 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다만 도로를 살피고 온 사람이 ‘요즘 장마가 견히지 않아 시내를 건너는 것이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대신이 아뢴 바가 지당하니 하지 말아야 한다.

탕참(湯站)의 일은, 다른 일이라면 의논에 따라 해도 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 나라 사람을 중국에서 범을 들어 처단하는 일이 없었다.’는 말은, 전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예가 없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말한다면 비난하는 뜻이 있을 듯하고, 금법(禁法)을 어긴 사람을 우리 나라에서 붙잡아 보내기를 꺼려서 그러는 것처럼 된다. 내 생각에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삼공 등이 회계하기를,

“그 말은 과연 꺼려서 하는 말로 들릴 것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왜인의 일에 대한 의논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나중의 의논 가운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실로 우리의 약함을 보여 준다.’ 하였는데 과연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근일 왜사(倭使)들이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으며 도노(島奴) 역시 그러하다. 만약 그들의 청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변방 일과 관련된다. 처음 의논이 내 뜻과 같으므로 그것을 따르겠다.”

○庚申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禮曹判書金安國兵曹判書李芑等議啓曰夾江冒住唐人自胡御史詳密指處旣嚴勅湯站又諭我國兩加申禁之後唐人之縱恣冒耕似已革絕矣然彼雖不冒耕夾江之地沿江不記數聯居之戶則猶舊也旣與我國邑居切逼縱嚴相通之禁無關隘城塹之限防攝勢難况赴利忘死奸民常情乘間抵隙冒法潛通尤難勝禁此事爲國巨憂未得善處之策今果有彼我之民兩庶潛通現犯之事至使御史及知而批干都司爲逮鞠現

犯之令彼寧不以我國爲弛懈禁戰而然乎於我國甚爲無光聞之不勝駭愕然我未及覺而彼先發之將加鞠治而嚴禁之實有利於我國我國應之亦不可不盡嚴禁之道固當窮尋犯人致之於法以令於衆使彼洞知我國嚴奉禁令痛治犯人之實則我國無光之羞得雪而自今兩民潛通之事庶可革絕矣但自古我國人有犯雖重罪中朝未嘗有提句問斷之例今湯站守堡官徑自差官令提押前來深礙體例縱獲犯人理難押送况前後犯人六名內五人則名字不現一人雖有姓名難知虛的捉獲與否亦所難必語之於彼辭固有據[中略]

柳溥尹仁鏡梁淵權撥柳仁淑李芑宋麟壽趙士秀議庚午叛亂之罪在所不赦但國家以包容爲德不之與較且日本遣使請釋辭旨勤懇不忍永絕裁減舊例定爲約條以爲永世遵守之法此已足矣馬島當感懼自新罔有逾越然猶不悛年年作耗不已其橫恣之狀不可勝言今觀島主書契辭甚慢傲不遜之愆在所當責壬申年約條堅如金石雖卑辭哀乞尚不可撓改况有此驕傲之語乎今若少有許改則是實示弱大損國體彼必益驕其志益縱其欲後日必至於盡請而後已將來之患據此可知今不得請而歸則欲試我國深淺早晚作耗邊境必矣備禦之策當勅邊將加措置而已且新約八條行之未幾旋則改之不唯邊將有缺恐倭奴益生輕侮之心三公仍啓曰十六日觀稼事已有 成命然以今月比於前時則六月盛暑也路傍禾穀秋節時或有早穀收穫處而今則方向茂盛踏損不可且不得已修治道路則必役農民觀稼似非其時請勿爲何如傳曰前年凶荒太甚故至今一不舉動而今年早災亦甚幸值雨水近似饒洽故欲觀農事何如但道路看審人云近若霖雨不霽川溪渡涉似難云大臣之啓至當行幸不可爲也湯站事他事則依議得爲之可也更料之則我國人於上國無提句之事云者前無如此之事故亦古無其例矣如此言之則有似非之之意冒禁之人吾國有若忌於捉送而然矣於予意不爲此言何如更議以啓三公等回啓曰此言果如有忌之言 上教至當傳曰倭人事議得有二意下議得內有聽從其言則是實示弱之言果當然近日倭使不平其心而馬島之夷亦若此如不聽其請則有關邊事上議得於予意甚當故從之

《中宗實錄 卷98, 44面》

중종 37년 윤 5월 20일(기사)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 예조 판서 김안국, 좌찬성 류관(柳灌), 이조 판서 양연(梁淵), 좌참찬 권벌(權撥), 형조 판서 성세창(成世昌), 호조 판서 류인숙(柳仁淑), 병조 판서 이기(李芑), 공조 판서 홍경림(洪景霖), 한성부 판윤 상진(尙震), 예조 참판 송인수(宋麟壽), 예조 참의 조사수(趙士秀) 등이 부름을 받고 왔다. 윤은보·류부(柳溥)·홍언필·윤인경·김안국·권벌·성세창·상진·송인수·조사수가 의논드리기를,

“일본 서계에 부쳐온 은철(銀鐵)은 이미 서울로 수송해 왔는데 상부관인(上副官人)이 관소(館所)에 있을 때 항상 말하기를 ‘국왕의 상물(商物) 중 중요한 것은 은량(銀兩)인데 무역을 허락하지 않으면 일행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상

물을 결코 매매할 수 없으며 모두 가지고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라면 인호(麟好)하는 의리를 크게 여기는 일입니다. 해조(該曹)의 「등록(騰錄)」을 참고해 보면 별폭(別幅)에 기록된 상물의 무역을 절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예로부터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시가에 따라 무역하기를 허락하여 그 값을 줄여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사사로 무역하기를 허락하여 그들의 바램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내일 예조(禮曹)의 연향(宴享) 때 객사(客使)가 은을 무역하는 일을 말하거든 답하기를 ‘은철은 우리 나라 경내에 나지 않는 곳이 없다. 다만 그것은 백성들의 의식(衣食)과 관계되지 않는데 한 번 그 이(利)의 근원을 열어 놓으면 흑시 다투어 이익만을 따르고 본업(本業)을 소홀히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캐지 않고 민간이 캐는 것도 금한 지 오래이다. 이번에 일본 국왕이 나라에서 나는 은을 멀리 우리에게 보내준 뜻이 고마우니 어찌 그 후한 뜻에 보답하지 않겠는가.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은을 무역한다는 말을 듣고는 말(末)을 따르는 마음이 열릴까 염려되어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신이 말을 했으니 마땅히 주상께 전달하겠다.’는 말로 적당하게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중략]

하니, 답하였다.

“객사(客使)에게 ‘무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조정에서 의논하였지만 사신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하자는 의논이 지당하므로 따른다. 내일 연향(宴享)때 그런 뜻으로 답한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들어 보고 다시 의논하여 정해야 한다.”

○己巳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彦弼右議政尹仁鏡領中樞府事柳溥禮曹判書金安國左贊成柳灌吏曹判書梁淵左叅贊權撥刑曹判書成世昌戶曹判書柳仁淑兵曹判書李芑工曹判書洪景霖漢城府判尹尚震禮曹叅判宋麟壽禮曹叅議趙思秀等承召而來殷輔柳溥彦弼仁鏡安國權撥世昌尚震麟壽士秀議日本書契付銀鐵曾已悉輸于京而上副官人在館所常言國王商物重在銀兩而既不許貿則一行各人私持商物斷不得買賣當盡賚還云果如所言則大違隣好之義叅考該曹騰錄則別幅所載商物絕不許貿古無其例臣等意從市直許貿以省其價又許民私貿不孤其望似當明日禮曹宴享客使若言及貿銀之事當答之曰銀鐵我國境內無處不產但此物不關生民衣食一開利源則慮或爭趨於利而忽其本故官既不採亦禁民採久矣今者國王得國產之銀遠送于我意則勤至豈不欲答其厚意但愚民聞國家貿他國之銀恐啓趨末之心難於貿易已有朝議然使臣有言當轉達云隨宜答之何如[中略]

答曰難於貿易已有朝議當轉達云此議至當故從之明日宴享以此意答之後聞其言更爲議定

중종 37년 6월 10일(기축)

전교하기를,

“정부와 육조의 당상들을 불러 ‘객사(客使)가 장사군들과 흥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사무역(私貿易)을 싫어하는 것이다. 국법이 비록 중하더라도 민간의 은이 모래나 진흙처럼 흔하면 법을 범해가면서 은을 가지고 부경(赴京)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것이니, 은량을 사무역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형세가 부득이 공무역을 해야 한다면 다만 3분의 1만 하되 그 값을 조금 더해 무역하도록 허락하고 3분의 1 이외에는 일체 무역하지 않는다면 그 값이 많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 역시 쾌할 것이다.’라고 말해 주고 그것을 의논하게 하라.”

하니, 윤은보(尹殷輔) · 류부(柳溥) · 홍언필(洪彦弼) · 윤인경(尹仁鏡) · 김안국(金安國) · 류관(柳灌) · 권벌(權撥) · 성세창(成世昌) · 이기(李芑) · 류인숙(柳仁淑) · 홍경림(洪景霖) · 이언직(李彦迪) · 상진(尙震) · 송인수(宋麟壽) · 신광한(申光漢) · 장적(張籍) · 조사수(趙士秀)가 의논드리기를,

“무릇 물가란 때에 따라 오르내리는 법입니다. 근래에는 은을 엄금하기 때문에 제도(諸島)의 왜인들이 가지고 나오더라도 민간에서 즐겨 무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값이 매우 싸서 배 1필에 은 2냥씩을 쳐주는 것은 일본 사신들도 함께 보고 들은 바입니다. 지금은 이미 시가에 준하여 배 2필에 은 3냥씩을 주겠다고 객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억지로 그들의 청을 들어 주어 필 수를 추가하면 저들은 반드시 계속 억지를 부릴 것이니 무오년의 시가에 그쳐야 합니다. 저들이 비록 값을 더해 달라고 하더라도 ‘시가가 그러하니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친절히 말해주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상물(商物)은 모두 예에 의하여 공무역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己丑傳曰 命召政府六曹堂上等曰客使不與商賈爭利云此厭私貿之意也國法雖重民間之賤銀若泥沙則犯法赴京者漸多銀兩尤不可私貿也勢不得已公貿則只貿一分而但少加其價許貿一分之外一切不貿則價物不多而彼心亦似快矣其議之尹殷輔柳溥洪彦弼尹仁鏡金安國柳灌權撥成世昌李芑柳仁淑洪景霖李彦迪尙震宋麟壽申光漢張籍趙士秀議凡物價隨時低昂近來銀禁甚嚴諸島倭人雖賫持出來民間不肯貿以此銀價甚賤每回奉一匹給銀二兩此日本使倭等所共見聞今者既以時直准折回奉二匹准銀三兩事已語客使今若勉從其請量加匹數則彼必強之不已請依戊戌年市准而後止彼雖請加直當語之曰時直如此不可增減將此意曉諭諄諄使之自悟似當他餘商物并皆依例公貿以慰其心何如傳曰知道

중종 37년 6월 21일(경자)

○영의정 윤은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예조 판서 김안국, 우참찬 이언적, 예조 참판 송인수, 참의 조사수가 의논드리기를,

“조정에서 은을 무역하는 하찮은 일을 가지고 의논이 오래도록 결정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반드시 우리 나라의 속뜻을 엿보아서 혹 경모(輕侮)하는 마음이 생길 것은 참으로 상교와 같습니다. 당초에 5만여 냥의 은을 무역하기로 허락한 것은 그 값이 적어 무역 수량을 많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반드시 무술년의 가격을 받으려고 재삼 타일러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심지어 성내는 말까지 하는데, 억지로 그들의 뜻을 따라 값을 더 주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대관이 아뢴 바는, 더 주는 값을 회사하여 보화를 천하게 여긴다는 뜻을 보이자는데 그 뜻 역시 좋습니다. 그러나 은을 무역하기로 허락하여 이미 수송해 왔는데 이제 모두 물리치고 무역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명분 없는 재물을 준다면 저들이 창피하게 생각하여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 조정에서 의논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결정할 때에 하기 어렵겠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받은 상교에 2만 냥을 공무역하기로 정하되 무술년 옛 값의 반(半)을 주자는 상교가 지당합니다. 다만 저들이 무술년의 값을 고집하면서 굳게 뜻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2만 냥의 옛 값의 반이 1만 냥의 옛 값 전액과 다름이 없어서 은만 1만 냥을 더 없애니 어찌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신들이 전에 의논한 바에 따라 해조에서 값의 수(數)를 마련해서 바꿀 수 없는 정식(定式)을 삼아 다시는 올리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하고, 단지 1만 냥만을 허락하여 시가 외에 별도로 더 주어 무술년의 액수에 준하게 한다면 소비하는 은은 적고 얻은 돈은 많아 객사들이 혹 마음을 돌려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의 의논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들이 비록 다시 더 무역을 청하더라도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만약 부득이해서 더 무역하기를 허락하더라도 시가로 계산해 주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중략〕

하니, 답하였다.

“객사가 만약 많은 양을 무역하자고 청하면 그들의 술책에 빠질까 싶어 다시 묻는 것이다. 이번 의논이 정해진 후에는 다시 의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 그들의 말을 들어 주는 것도 부당하다.”

○庚子○領議政尹殷輔領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禮曹判書金安國右參贊李彥迪禮曹參判宋麟壽參議趙士秀議朝廷因微細質銀事議久不定以至於今彼必窺我淺

深或生輕侮之心誠如 上教當初許貿五萬餘兩者以其價直少而優其貿數也彼乃必欲得戊戌之數再三開諭了不回意至發恚語固不宜曲循其意而增其價也臺官所啓欲損增價之貨以示賤寶之意其意亦美然許貿銀兩業已輸來今乃全却而不貿特給無名之貨彼必生愧而不肯受故前日廷議時亦出此意而商確之際以爲勢難而還止今承 上教欲酌定公貿易二萬兩而給戊戌舊價之半 聖旨至矣但彼執戊戌之價牢不回意二萬舊價之半無異於一萬舊價之全而加費其銀一萬之數豈肯喜而聽從乎請依臣等前議該曹磨鍊價直之數定爲不易之式更不低昂只許一萬兩常價外別加贈給以准戊戌之數則費銀少而得貨多客使容或回悟不敢違拒故前議如是彼雖復請加貿確然不撓若不得已而許加貿只當酬以常價之數使不至濫似爲便當[中略]

答曰客使若數多請貿則恐陷於術中故更問之定此議後不當更議又不當廳其言也

《中宗實錄 卷98, 58面》

중종 37년 7월 14일(임술)

간원이 아뢰기를,

“평안도 재상어사(平安道災傷御史)를 위접관(慰接官) 류진동(柳辰叡)에게 그대로 맡겨 왕래하게 하였는데, 역로의 폐단은 없앨 수 있습니다마는, 어사는 비록 암행어사가 아니더라도 모두 상께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기에 온 도가 경동하여 공손히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外地)에서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면 상께서 특별히 보내는 뜻에 어긋나고, 고을 이름을 추생(抽姓)하여 어필(御筆)로 비밀히 써서 우졸(郵卒)을 시켜 전하는 것도 매우 미안하니 류진동에게 어사의 임무를 맡기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예조 판서 김안국, 좌찬성 류관, 좌참찬 권벌, 형조 판서 성세창, 병조 판서 이기, 이조 판서 류인숙, 공조 판서 홍경림, 우참찬 이언적, 호조 판서 정순봉, 예조 참판 송인수, 참의 조사수가 의논드리기를,

“각년(各年) 일본의 별폭 상물(別幅商物)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대략 그 값을 헤아려 보면 관목(官木)과 같은 숫자입니다. 대음 화상(大蔭和尚) 및 일악 동당(一鶚東堂) 등이 두 번 나왔을 때 이외에는 모두 천수(千數)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객사가 팔려 온 은량은 그 중 1만 냥만 무술년의 값에 따라 관목(官木) 4필에 은 1냥씩을 쳐준다면 관목이 8백 동(同)에 이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은은 적게 주고, 받은 돈은 많으니 즐겨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무역하기를 강청하여 다른 상물 역시 개시(開市)하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습

니다. 그러나 객사의 교활한 계책에 말려들어 다시 다른 의논을 할 수는 없으니, 우선 예조의 낭관을 시켜 객사에게 말하기를 '본조(本曹)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등록(騰錄)」을 참고했더니, 귀국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상물을 일일이 다 알 수 있었는데, 상물의 값이 이번 것처럼 많은 적은 없었다. 우리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포화(布貨)의 생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관용(官用)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의복을 지어 입을 추위와 더위를 막는 것을 모두 이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객사의 청을 들어 준다면 포화의 소비가 무궁(無窮)해져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니, 어찌 이것이 왕정(王政)의 체통이겠는가. 또한 귀국에서 바라는 뜻도 아닐 것이다. 예로부터 귀국에서 상물을 가지고 온 것이 많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순순히 타일러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니, 이 뜻이 지당하다고 답하였다.

○壬戌諫院啓曰平安道災傷御史以慰接官柳辰全仍行往來驛路之弊則固可除矣但御史雖非暗行皆是自上別遣一道驚動敬奉今以在外他任之人仍行有違別遣之意抽柱邑名御筆秘書若傳以郵卒亦甚未安請勿以柳辰全仍行答曰依啓○領議政尹殷輔領中樞府事柳溥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禮曹判書金安國左贊成柳灌左叅贊權撥刑曹判書成世昌兵曹判書李芑吏曹判書柳仁淑工曹判書洪景霖右叅贊李彥迪戶曹判書鄭順朋禮曹叅判宋麟壽叅議趙士秀議曰各年日本別幅商物之數則不甚猥多大槩計其價直官木同數大蔭和尚及一鶚東堂等再度出來時外皆不滿千今此客使所賣銀兩內其中一萬兩許從戊戌之價官木四匹准銀一兩至給八百同如是則費銀少而得貨多在所樂從而強請加賀他餘商物亦不開市略不回悟不可以客使巧計更有他議姑令禮曹郎官就語客使曰叅稽本曹久遠傳來騰錄則貴國聘使所賣商物歷歷可考而商物之價其猥多未有如此行我國土瘠民貧布貨之產有限非但官用民資爲衣服以禦寒暑者皆仰於此若依客使之請費貨無窮使吾民受病則此豈王政之體亦非貴國雅意也往古貴國持商物不多者亦以此也諄諄開諭使之回悟答曰此意至當

《中宗實錄 卷98, 67面》

중종 37년 9월 29일(병자)

홍문관(弘文館)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신 대로 「대학연의보」를 끝마친 뒤에 경서를 진강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영사 윤은보·홍언필·윤인경·류부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상의 분부가 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丙子弘文館啓曰昨因傳教大學衍義補畢講後以經書進講之意議于領事尹殷輔洪彥弼尹仁

鏡柳溥則咸以謂 上教至當傳曰知道

《中宗實錄 卷99, 35面》

중종 37년 12월 15일(경진)

영의정 윤은보와 좌의정 홍언필이 아뢰기를,

“국사를 의논하는데 꼭 의견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어야 시비가 서로 나타나고 가부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같고 다른 가운데 어찌 쓸만한 의논이 없겠습니까. 파방이 중난하다는 의견은 신들이 일찍이 다 의논드렸습니다. 지금 만일 전에 한 말을 여러번 변경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의를 얻지 못할 것인데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보다 큰 국사를 또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 경중을 참작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류부(柳溥)는 아뢰기를,

“지금 대간이 아뢰는 바 파방하자는 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과거가 지극히 공정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파방이 비록 중난한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대간의 계청이 온당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잘못된 바가 과연 많아서 공도가 이미 멀하여졌으니 파방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윤인경과 이언적의 의논도 같았다. 류관·이기·권벌·성세창·임권은 의논드리기를,

“과거로 인재를 뽑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출방(出榜)한 뒤에 만일 소문에 따라 으레 파방할 것 같으면 그 폐단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진정시키면 그 폐단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전번 의논은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중략]

하니, 답하였다.

“알았다. 파방이 중난한 일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단 지난 경인·병신 양년에 있었던 잘못은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는데 조정 의논을 널리 수합한 끝에 파방하지 않았더니 그 뒤 여론이 더욱 격발하여 파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때에는 감시(監試)에만 잘못이 있고 문·무과(文武科)에는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때문에 또 감시만을 파방하려 하였는데, 모두들 의당문·무과까지 아울러 파방해야 한다고 하기에 모두 파방해 버렸었다. 지금은 잘못이 지난 것보다 심한데 우상은 또 시관만 파직시키고 파방을 하지 않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니, 이는 파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 파방할 때에 널리 의논을 수합하여야 했는데 의논하지 않은 채 파방했었다. 대신이 논하

자 곧 과방하지 말도록 명하고, 대간이 논하자 지금 또 과방하게 하였다. 앞 뒤가 전도되었으나, 옛사람이 '일이 끝내 올바른 데로 돌아갈 것 같으면 비록 열 번을 바꾼다 하더라도 어찌 해롭겠는가.' 하였으니, 마땅히 영부사(領府事)의 의논에 따라 과방할 것이다.”

○庚辰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彥弼議曰凡議國事不必尙同或有異同之說焉是非相形可否相濟同異之中豈無可用之議乎罷榜重難之意臣等曾議之悉矣今若累變前說言之二三不足取信將焉用之其於國事之有大於此者亦何以處之臣等未敢自以爲是也酌輕重決可否專在聖斷柳溥議曰今臺諫所啓請罷榜者非一事以科擧至正至公論之則罷榜雖似重事而臺諫啓請當矣中外所失果多公道已減恐不可不罷榜也尹仁鏡李彥迪議同柳灌李芑權權成世昌任權議曰科擧取人國家重事出榜之後若因所聞例若罷榜其弊難救在上之人靜以鎮之可革其弊臣等前議意在於是[中略]

答曰知道但罷榜重難事予亦非不知也但前者庚寅丙申兩年不至如是之錯又廣收廷議不爲罷榜其後物議愈激以爲不可不罷其時只於監試有失而文武科則不見有錯故又欲只罷監試而皆以爲義當並罷皆罷之今則所錯甚於往昔而右相又以爲只罷試官而不罷其榜古今所無此不得不罷者也初罷時所當廣收而未議輕罷大臣議之則旋命勿罷臺諫論之則今又罷之雖於顛倒古人云事若終歸於正雖十易之何妨宜從領府事之議而罷之 《中宗實錄 卷99, 75面》

중종 38년 7월 8일(신해)

정원이, 전일의 전교에 의하여 아버지의 신역(身役)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의논한 단자(單子)를 가지고

을미년(중종 30, 1535) 11월에 영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의정 김안로(金安老), 우의정 류부(柳溥)가 의논드린 단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천(公賤)·사천(私賤)이 어미의 신역을 따르는 법은 법전에 실려 있고 시행한 지 이미 오래니, 쉽사리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접매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원주(原州)는 아전과 노비(奴婢)가 적은데 두 관아(官衙)를 아울러 두었으므로 회복할 기약이 없으니, 판관(判官)을 폐지한 뒤에 향리(鄕吏)·관노(官奴)·공천·사천이 서로 혼가하여 낳은 자식은 아버지의 신역을 따르게 할 것을 여쭙다.’ 하였을 때, 그 전에 좌의정 한효원(韓效元)이 ‘판관을 폐지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온편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신역을 따르는 것은 더욱 온편하지 못하다. 조종(祖宗) 때부터 다 어미의 신역을 따랐는데, 오늘날에 갑자기 고칠 수 있겠는가.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아뢴 적이 있었으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방계(防啓)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原州)·의령(宜寧)은 토호(土豪)가 군세고 사나워서 이속(吏屬)을 침학하고 호된 매를 마구 치므로, 이속이 견디기 어려워져 토호의 종의 지아버가 되기로 약속하여 눈앞의 괴로움을 늦추고 제 자손이 이 환난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월이 쌓여 관속(官屬)의 후손은 죄다 토호의 노비가 되었으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고을들이 비어서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니, 그 공(公)을 깎아서 사(私)를 살찌우며 거칠고 방자하게 구는 토호들의 해독을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상한 폐단이 있으면 비상한 구제

가 있어야 마땅하니, 상례(常例)를 굳이 지키고 퇴폐하는 것을 앉아서 보며 조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향리·관노·서원(書員)으로서 공천·사천에게 장가든 자는 조상 4대를 거슬러 올라가 거기서 낳은 자식 일체를 찾아내어 관노·관비로 영속(永屬)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각 고을의 품관(品官)도 다 향리·서원 등 용사(用事)하는 자를 종의 지아버리로 삼아서 짜고 공모해서 자기에게 배정된 모든 잡역(雜役)을 촌백성에게 나누어 지우며 관가를 속이고 약한 자를 깔보아 온갖 해를 끼칩니다. 이 폐단도 고질이 되었으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뒤로는 향리·서원·관노가 토박이 품관의 종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자식은 그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법(舊法)을 고쳐서 통행하는 규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고을의 한때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辛亥政院以前日傳教從父役之議單字乙未年十一月領議政金謹思左議政金安老右議政柳溥議公私賤從母之法載在令甲行之既久不宜輕有改更故頃者江原道觀察使啓原州官人吏奴婢□少並置兩衙蘇復無期判官華罷後鄉吏官奴公私賤交嫁所生從父役取稟左議政韓效元啓革其判官事體未便而從父役事尤爲未便自祖宗朝以來皆從母役而可於今日卒改乎決不可行也以難施防啓矣原州宜寧土豪强悍侵暴吏屬橫加毒楚吏屬難支約爲土豪婢夫庶紓目前之苦使其子孫求免此患以之積紀官屬之齋盡爲土豪奴婢至于今日縣邑空虛不能自存其削公肥私豪橫自私之害難以殫言既有非常之弊則宜有非常之救不可膠守常例坐視淪廢而不爲之郎也鄉吏官奴書員之娶公私賤者泝祖先四代所生一切括刷永屬官奴婢甚當非特此也合邑品官率以鄉吏書員之用事者爲婢夫符比共謀凡己之徭賦雜役分定于村民欺官侮弱爲害百端此弊亦痛不可不懲今後鄉吏書員官奴娶土着品官婢所生永屬其邑奴婢亦當此非改更舊章爲通行之規欲矯各邑一時之弊不得不爾

《中宗實錄 卷101, 6面》

중종 39년 8월 9일(을해)

정원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의 병을 본 의원의 말로 아뢰기를,
“류부(柳溥)는 부종(浮腫)을 오래 앓고 있는 데다가 또 설사병을 얻어서 지난밤 부터 맥이 아주 약해져 병세가 아주 중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에 영상(領相 : 윤은보(尹殷輔))의 집에 문병한 일은 위급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승지를 보냈으므로 매우 옳지 않았다. 류부(柳溥)도 정승을 지냈으니 승지를 보내어 문병해야 할 것인지, 전례를 살펴서 아뢰라. 또,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을 지어 치료하고 안부를 서계(書啓)하도록 하라.”[중략]

○정원에 전교하기를,

“류부(柳溥)는 정승을 지냈는데, 문병할 때에 어찌 반드시 전례를 살펴야 하겠는가. 동부 승지(同副承旨)를 보내어 문병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지가 문병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류부(柳溥)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나 몸에 단령(團領)을 입고 띠를 띠고서 낮은 소리로 울며 말하기를 ‘처음에 부종으로 앓다가 이어서 이질을 더하여 설사가 끝이 없는데, 이질이 나오면 아마도 살 길을 얻겠으나 부종을 앓던 끝에

병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아마도 다시는 천안(天顔)을 뵈 수 없을 듯하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乙亥政院以領中樞府事柳溥看病醫言啓曰柳溥彌留浮腫證而又得泄瀉之證自去夜脉度極微病勢深重云傳曰前者領相尹殷輔家問病之事至於危急然後始遣承旨甚爲不可柳溥曾經政丞可以遣承旨問病耶考前例以啓且遣內醫命藥治療而安否書啓可也[中略]

○傳于政院曰柳溥曾經政丞問病之時何必考前例遣同副承旨問病可也承旨問疾而還啓曰柳溥臥席未起加圍領拖帶于身低聲泣語曰初得浮腫之證而仍添痢疾泄瀉無度痢證若差則庶得生道而浮腫之餘病勢至此恐不得復瞻 天顔云傳曰知道 《中宗實錄 卷104, 34面》

중종 39년 8월 12일(무인)

정원이 아뢰기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가 오늘 아침에 숨졌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두어 달 안에 노성(老成)한 재상이 잇달아 죽으니 지극히 슬프다. 궐내에서는 소선(素膳)하고 전례에 따라 특별히 치부(致賻)하도록 하라.”[중략]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류부(柳溥)가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류부(柳溥)는 치우치고 막히고 어둡고 미혹하며 또 고집스러워 융통성이 없었다. 젊어서 문학의 재주로 좋은 벼슬에서 드러났으나, 사무를 처리하는 재능이 없고 인망도 없으므로, 녹록하게 구차히 보전하고 자급(資級)에 따라 승진하였다.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상(喪)에 류부(柳溥)가 수릉관(守陵官)이 되었으므로 류부(柳溥)는 그때 60이 넘은 나이로 채취하는 혼사의 약속이 있어 날짜를 이미 정하였는데 수릉하라는 명이 있음을 듣고는 류부(柳溥)가 말하기를 ‘나에게 혼사가 있는데 이제 이 직을 제수하니 나에게 벗이 껍도 없구나.’ 하였다. 이는 그 직에 의망(擬望)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서이다. 수릉에 있어서도 성경(誠敬)이 진실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승반(崇班)에 이를 수 있었고, 정유년(중종 32, 1537) 겨울에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외람되게 정승 자리에 있었으나, 공론이 곧 일어났으니 김안로(金安老)가 정사(政事)를 마음대로 할 때에 류부(柳溥)가 승품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김안로에게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능하여 꺼릴 것이 못되기 때문이었다. 찬양(贊襄 : 왕의 측근에서 보좌하는 것)하는 직임이 어찌 어둡고 막힌 자가 하루라도 있을 수 있는 곳이겠는가. 조정(朝廷)에 선 40년 동안에 터럭만한 보탬이 없이 한갓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마침내 늙어 죽는 때에 이르러서야 그만두었으므로, 무능한 재상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류부(柳溥)를 첫째라 하였다.

또 논한다.

류부(柳溥)는 성품이 본디 근후(謹厚)하나 별로 재덕(才德)이 없었는데, 점점 올라가 1품이 되어 영중추부사로서 관록과 직위를 오래 누렸다. 다만 남에게서 재물을 많이 받고 벼슬을 주도록 전조(銓曹)에 청하였으므로 물의에 드러났으니, 비루하다.

○戊寅政院啓曰領中樞府事柳溥今朝氣絕云傳曰數朔之內老成宰相相繼而卒至爲慟悼闕內爲素膳依前例別致賻可也[中略]

○領中樞府事柳溥卒史臣曰溥偏塞昏惑又執拗不通少以文墨之技發顯華秩無幹能又無人望苟保碌碌循資而進貞顯喪溥爲守陵官溥時年逾六十有約再娶之婚已定日期而聞有守陵之命溥曰我有婚事而今授此任甚矣我之無友也是以擬望爲恨也其於守陵也亦未聞誠敬之實故得至崇班而丁酉冬承乏猥忝相位而公論即發金安老擅政之時溥之得陞崇品者非黨於安老而然也以其人具臣而無足忌憚故也贊襄之任豈昏塞者所可一日處哉立朝四十餘載無絲毫之補而徒尸厥位竟至老死而後已伴食宰相時人以溥爲第一又曰溥性本謹厚別無才德馴致一品以領中樞久享祿位但多受人財物請於銓曹授人之官發於物論鄙矣

《中宗實錄 卷104, 36面》

중종 39년 8월 27일(을미)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는 엄경(嚴敬)을 주로 하더라도, 임금이 대신을 대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원수(元首 : 임금)가 밝으면 고굉(股肱 : 대신)이 어질어 못 일이 편안하리라.’ 하고, 또 이르기를 ‘고굉이 갖추어져야 사람이며 양신(良臣)이 있어야 성군(聖君)이 된다.’ 하였는데, 이는 한 몸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요즈음 윤은보(尹殷輔)는 수상(首相)으로, 류부(柳溥)는 정승을 지낸 사람으로서 잇달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비록 특별히 건명(建明 : 정사를 이룩하여 밝힘)한 것은 없으나 조정에 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은례(恩禮)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에는 대신이 죽으면 으레 특별히 보내는 제물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없으니, 정원(政院)이 여쭙어야 마땅하겠으나 은수(恩數)에 관한 일이므로 아래에서 아뢰기 어려울 듯합니다. 본조(本曹) 임권은 이때에 예조 판서였다. 예서 못사람의 뜻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는데 두어 달 사이에 잇달아 죽었으므로 재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궁(學宮)에 거둥하여 작헌례(爵獻禮)를 거행하고 유생(儒生)들을 시켜 제술(製述 : 글짓기)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뜻이나, 이 사람들을 장사지내기 전에 학궁에 거둥하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

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대신이 잇달아 죽으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특별히 제물을 보내는 일은 정원이 다시 여쭙어야 할 것인데 아직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다. 작헌례로 말하면 서두를 일이 아니나, 사방의 유생들이 이제 마침 다 모였으므로 처음에는 궐정(闕廷)에서 제술을 시키려 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 정순봉(鄭順朋)이 학궁에 거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므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시강관 이영현(李英賢)이 아뢰기를,

“전에 수괄어사(搜括御史)를 내려보내는 것이 온편한지를 조정에서 처리해야 마땅하고, 체찰사(體察使) 이기(李芑)에게 묻지 않아야 할 것인데, 하서(下書)하여 물으셨으니, 일의 체모를 잃은 것이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대신이 체찰사에게 물어야 한다 하므로 물었으나, 내 생각에도 옳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乙未 御夕講特進官任權曰君臣之間雖以嚴敬爲主而人主之待大臣則與他人有異焉古人云元首明哉股肱良哉庶事康哉又曰股肱惟人良臣推聖乃以一體言之也近者尹殷輔以首相柳溥亦曾經政丞相繼而逝此人等於朝廷雖別無建明之事立朝已久宜有恩禮矣前者大臣之卒例有別致奠而近則無之政院當爲取稟而以爲恩數之事自下似難上達自曹權時爲禮曹判書知衆情未穩故敢達且此人等皆年尊位高而連逝於數月之間可謂有災變矣幸學爲爵獻禮使儒生製述至爲美意然此人等今皆未葬而幸學無乃過乎 上曰近來大臣相繼而逝予心未安別致奠事政院當改稟而時未及察也至於爵獻禮則非汲汲之事也四方儒生今適畢會初欲於闕庭製述而大司憲鄭順朋以爲幸學宜當故欲爲耳侍講官李英賢曰前者搜括御史下送便否當自朝廷處置而不當問於體察使李芑今乃下書問之其失事體甚矣 上曰大臣以爲當問於體察使故問之而予意亦以爲不可也

《中宗實錄 卷104, 42面》

중종 39년 9월 6일(임인)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전교를 보니 ‘호령이 한결같지 않아서 행학을 하려 하더라도 일이 매우 안정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대체로 임금의 거조(舉措)는 한 가지를 고집하여서는 안 되고, 경중을 살피고 가부를 참작하여 그 마땅한 것에서 굳게 정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관계 없는 기혐(忌嫌)으로 더 없이 성대한 일을 폐기하는 것은 선사(先師)를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는 의리에 어긋나므로 지극히 온편하지 못하니, 학궁에 거동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친히 작헌례를 거행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전일 석강 때에 예조 판서 임권(任權)가 ‘대신 윤은보(尹殷輔)·류부(柳溥)을 아직 장사지내지 않았는데 학궁에 거동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므로 작헌례는 할 수 없다.’ 하였으니 그 말은 과연 옳다. 다만 사방의 유생들이 모인 때이므로 따르지 않았다. 어제 예조가 아뢰는 것을 보니 ‘이번에 학궁에 거동하는 것은 못사람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멈추라.’ 하였고, 대신의 의논을 보니 혹 예(禮)에 의거하고 정의를 헤아리면 미안할 듯하다고도 하고 범염(犯染)한 지 오래지 않아서 학궁에 거동하는 것은 미안하다고도 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이러한데 다시 의논하면 번거로울 듯하고 호령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니, 작헌례는 뒤에 해야 하겠고, 이제는 정시(庭試)하도록 하라.”

○壬寅○憲府再啓臣等伏見傳教號令不一幸學雖欲爲之事甚不定云大抵帝王舉措不可執一爲之審其輕重酌其可否要於其當堅定不搖也今以不關之忌廢莫盛之舉有違尊師重道之義至爲未便請勿停幸學親行爵獻之禮答曰前日夕講時禮判任權以爲大臣尹殷輔柳溥未出葬而幸學未便爵獻禮不可爲也其言果然但四方儒生全集之時故不從矣昨觀禮曹所啓則以爲今茲幸學衆未洽然請議大臣而停之及觀大臣之議則或曰據禮揆情似爲未安或曰犯染未久幸學未安廷議如是而更議似煩號令不一矣爵獻禮則後當爲之今則庭試可也

《中宗實錄 卷104, 45面》

중종 39년 12월 27일(신묘)

상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하였다.

○좌의정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은 매우 용렬한데 외람되게 재상의 자리에 있는 지 지금 8년이 되는 동안 국사에 참여하여 결정함에 여긔남이 많았고, 근래에 또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대간이 신의 무상함을 논계함은 매우 합당한 것이니, 어찌 우연하게 헤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즉위 초년에는 재상의 책임자를 가려야 하는데 신과 같이 변변찮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조정이나 외방에서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모름지기 오늘 정사(政事)에서 체직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까. 지난날 류부(柳溥)가 재상으로 있을 때 대간이 잠깐 합당치 않다는 뜻을 논하자 대행대왕께서는 즉시 윤허하시고 갈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가 일이 많고 산릉이나 천사(天使) 등의 일 또한 매우 바쁘는데 신 때문에 일이 지체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인들 미련을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명하여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 사직하는 내용을 보니 지극히 미안하다. 선조의 성명하신 때에 가려서 재

상의 지위에 두었는데 그 계획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그동안 일을 의논하다가 저지른 실수를 나는 모르겠고, 근래 실수한 일은 더욱 깨닫지 못하겠다. 대간은 예와 법에 근거하여 논하는 바가 이와 같으나 좌상은 대체와 양단을 견지하면서 경중을 따라 중용을 지켰을 뿐인데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이것이 내가 유난(留難)하는 까닭이며 대간이 정계(停啓)해야 할 이유이다. 상하가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일이 많은 때에 사직하지 말고 취직하여 국사를 자세히 보살필 것을 나는 간절히 바란다.”

하였다. 언필이 네 차례 사직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辛卯上行朝夕奠上食○左議政洪彥弼啓曰臣本以庸劣適承乏忝在相位于今八年叅決國事旣多舛誤近來又多所失故臺諫論啓臣無狀之事其言甚合豈偶然計而爲乎 卽位初年當擇輔相之臣如臣無狀過惡甚大朝廷外方孰不知之須及今日政違差幸甚前者柳溥爲左相時臺諫暫論不合之意而大行大王卽允命違況今國家多事山陵天使之事亦爲甚亟不可以臣之故而多所淹滯何以一日冒處乎請速 命違答曰今見辭職之意至爲未安 先朝聖明之時擇置相位其計慮豈偶然乎其間議事之失予不知矣近來所失之事尤未之覺也臺諫據禮執法所論如此而左相持大體執兩端欲其從權得中而已豈有咎哉此予所以留難而臺諫所以停啓也上下豈偶然計而如此乎今當多事之時勿辭就職詳察國事予甚望焉彥弼四啓辭職不允

《中宗實錄 卷105, 63面》

명종 12년 10월 6일(을유)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주청사(奏請使) - 조사수(趙士秀) - 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9월 1일에 올린 제본(題本)을 3일에 예부로 내리면서 내린 성지(聖旨)를 받드니 「회전(會典)」을 반강(頒降)할 가망이 있을 듯하였는데 상서(尙書)가 ‘황제가 아직 다 보지 않아서 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포할 수가 없다.’ 하였다 하니,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조사수의 정문(正文), 예부의 회자(回咨), 「회전」을 등사한 소단(小單)을 보니,

예부의 회자는 다음과 같다.

“대명(大明)의 예부(禮部)는 진정변무사(陳情辨誣事) 건에 대해 답합니다. 본부는 주객청리사(主客淸吏司)의 안정(案呈)으로 제주하여 조선국왕이 주청한 ‘앞서 영락원년(태종 3, 1403)……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는 건에 대해서 ‘예부에서 알아서 공경히 받들어 시행하라.[禮部知道 欽此欽遵]’는 성지(聖旨)와 예과(禮科)의 초출(抄出)을 받들어 사(司)에 보내 조사한 결과가 정 8년(중종 24, 1529) 8월 중에 본부에서 조선국왕이 보낸 배신(陪臣) 이조 참판 류부(柳溥) 등이 ‘조정에서 지금 「회전」을 중수하신다니, 본국의 종계에 대해서 영락 2년(태종 4, 1404)과 정덕(正德) 14년(중종 14, 1519)에 받은 바 있는 「사실대로 개정하라.[從實改正]」는 성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정(奏呈)의 내용으로 제주하여 ‘조선국 배신이 주청한 본

국의 종계 사정은, 이미 조종조의 분명한 성지를 받은 바가 있으니, 너희 예부에서 시말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기록을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하도록 하라.’ 하는 성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가정 18년(중종 34, 1539) 11월 중에 조선국왕이 주청한 진정변무사에 대하여 본부에서 ‘회전에 실려 있는 조훈(祖訓)의 말씀을 어찌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여 개정하겠습니까. 소청대로 들어줄 수 없으니 저들이 전후해서 변명하여 주장한 내용과 열성(列聖)의 명지(明旨)를 받은 내용을 사관에 보내어 조선국 항목의 아래에 기록해 넣도록 하면 조훈과 『회전』 두 쪽다 서로 방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의복(議覆 : 의논하여 다시 주달함)하여 ‘좋다. [是]’는 성지와 함께 ‘황조(皇祖)의 대훈(大訓)을 어찌 감히 별도로 의논하겠는가. 해국(該國 : 조선)의 주사(奏詞)와 그동안 받은 바 있는 열성의 명지를 이 다음 찬수할 때에 부록하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을 조선국왕에게 칙서로 내리도록 하라.’는 성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이미 본부에서 성지대로 해국에서 그동안 주장한 시말(始末)과 열성의 명지를 조사 기록하여 사관으로 보내어 찬수할 때 기록해 넣도록 조치하였음을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본부에 안정(案呈)되기 전에 거론한 건에 대해서 조선국왕이 『회전』에 실린 종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여러 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알았고, 이번 찬수하는 시기를 만나 다시 성자(聖慈)에게 ‘해부(該部 : 중국 예부)에 특명을 내려 그동안의 기록을 상고하여 개정해 주도록 해 달라.’고 간청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는 의(義)를 사모하고 명분을 닦으며 조(祖)를 중히 여기고 종(宗)을 밝히려는 뜻을 참조하여, 본부에서는 ‘회전이 이미 찬수되었지만 아직 반포하지 않아서 개정된 내용을 본부에서는 조사·상고할 것이 없으나, 대대로 충근하고 정성껏 빈공(賓貢)해 온 것을 생각하여 분명히 알려주어 요구해 온 뜻을 위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사관에 『회전』에 실린 조선국의 항목 아래에 해국의 종계와 그동안 받은 열성의 성지를 앞서 찬수할 때에 일찍이 채택하여 부록했는지를 검토 조사하여 분명하게 기록해서 본부에 통보해 주게 하여 신들이 본국(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부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 주게 하시고, 『회전』이 반포되는 날을 기다려 다시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위로는 조정이 먼 나라를 감싸주는 신의를 온전히 할 수 있고 아래로는 변국(藩國)의 간절한 정성을 흠족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는 제본을 갖추어, 가정 36년(명종 12, 1557) 9월 1일에 주달하여 본월 3일에 ‘좋다.’는 성지를 받아 이를 준행하기 위하여, 한림원의 수본(手本)을 받아 사관에 보내, 전항(前項)의 사정이 이미 채택되어 『대명회전』의 본국에 대한 항목 아래 부록되었는지를 대조 확인하게 한 바 ‘앞으로 이를 시행할 것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날 본부에서 여러번 제주하여 받은 성지를 종합하여 공경히 준행할 것으로 자문을 보냅니다.”

부록(附錄)을 찬수하는 일은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리고 진위사를 들여보내는 일은 전에 이미 성절사에게 하서하여 그쪽의 왕부(王府)와 13도(道)의 진위 여부를 물었었는데, 지금 조사수의 서장을 보니 왕부와 13도는 벌써 진위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니 우리 나라도 사신을 보내 진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헌부에서 말하기를 궁궐의 화재는 규모 화재 때의 예와는 같지 않으니 사신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중국에 변고가 있는데 어찌 모른체하고 진위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은 다시 상의해서 아뢰라.” 하니, 삼공이 회계하기를,

“궁궐의 화재는 비록 규모의 화재와 차이가 있을지라도 봉천전은 곧 천자의 정아(正衙)인데 지금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합니다. 우리 나라는 선왕 때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하여 내복(內服)과 다름없이 조빙의 예를 행해 왔습니다. 지금 주청사의 서장을 보니 변왕 및 13포정사 모두가 벌써 진위했다 하니 우리 나라도 응당 진위해야 할 것입니다. 헌부가 아뢰는 것은 그 폐단만을 헤아린 것일 뿐입니다. 사신을 보내 진위하는 것이 예에는 합당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 우리 나라가 비록 해외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도 우리 나라를 내복(內服)과 다름없이 대우하였고 우리 나라도 외국으로 자처하지 않고 중국을 섬겼다. 그러므로 모든 길흉(吉凶)이나 경재(慶災)에 있어서 경하와 진위를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조종조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던 것을 어찌 이번의 궁전 화재에만 진위하지 않겠는가. 네 나라가 같은 날 재앙을 만났는데 허(許) 나라가 조문하지 않으니, 군자가 이것으로써 허 나라가 먼저 망할 줄을 알았다. 이웃 나라의 일을 가지고도 오히려 이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중국이겠는가. 삼공들의 의논이 옳다.

하니, 답하기를,

“의제한 내용은 알았다. 잠시 영부사-윤원형-의 의논을 기다려 결정하겠다.” 하였다.

○乙酉○傳于三公曰觀此奏請使趙士秀書狀 則九月初一日題本入奏初三日下于禮部奉聖旨是頒降會典似有可望而尚書言曰御覽未畢不曾刊行不可頒布也云亦似未穩但觀趙士秀呈文 其禮部回咨與謄書會典小單其禮部回咨曰 大明禮部爲陳情辨誣事該本部題主客清吏司案呈奉本部送禮科抄出朝鮮國王奏先該永樂元年止不勝幸甚等因奉 聖旨禮部知道欽此欽遵抄出送司查得嘉靖捌年捌月內該本部題處朝鮮國王差來陪臣史曹叅判柳溥等呈稱朝廷方重修會典乞將本國 宗系查照永樂二年正德十四年欽奉 聖旨從實改正等因奉 聖旨朝鮮國陪臣所呈本國宗系事情既有節奉 祖宗朝明旨你部裏便通查備細開載送付史官采擇施行欽此又查得嘉靖十八年十一月內該朝鮮國王奏爲陳情辨誣事本部議覆會典所載祖訓之言豈敢輕議改正合無將伊前後辨明奏呈及節奉 列聖明旨送付史館叙入朝鮮國項下庶祖訓會典兩無相妨等因奉 聖旨是 皇祖大訓豈敢別議該國奏詞並奉列 聖明旨此後纂修宜附錄之仍寫勅示王欽此已經本部遵奉欽依備查該國前後奏呈宗系始末及 列聖明旨通行開送史館令其叙入纂修外今該前因查呈到部看得朝鮮國王以會典所載宗系未明累乞改正茲遇纂修復懇 聖慈特命該部考錄改正之詞知會一節盒亦慕義修名重祖明宗之意切照會典雖已纂修未經頒布改正之詞本部無從查考但念其世濟忠勤恪守賓貢宜明播告以慰請求合行史館檢查會典朝鮮國項下該國宗系及節奉欽依先年纂修曾否采擇附錄明白開報容臣等移咨本國知會其附錄之詞仍□會典頒布之日續行昭示庶上全朝廷柔遠之信而下愜藩目所懇之誠等因嘉靖三十六年九月初一日該本部具題本月初三日奉 聖旨是欽此欽遵行准翰林院手本開□隨於史館查得前項事情已經采擇附錄於 大明會典本國項下等因准此擬合就行爲此合咨前去煩照本部題奉欽依內事理欽遵施行須至咨者 則纂修附錄之事似無疑矣且進慰使入送事昨已下書于 聖節使問其王府及十三道陳慰與否而今觀趙士秀書狀則王府及十三道皆已陳慰云我國亦當遣使進慰也但昨日憲府以爲宮闕之火非如 九廟災之例請勿遣使使予意則上國有變豈可安然不行進慰之禮乎卿等更加商議以啓三公回啓曰宮闕之火雖與 九廟災有間奉天殿乃天子正衙而今爲焚蕩我國自 先王朝事大至誠凡朝聘之禮一如內服今見奏請使書狀則藩王及十三布政司皆已陳

慰云我國亦當進慰也憲府之啓只計其弊也遣使進慰禮則當矣

史臣曰我國雖在海外而天朝之待我國旣與內服無異我國之事天朝亦不以外國自處凡吉凶慶災無不賀慰自祖宗朝已然矣何獨於今有宮殿焚蕩之變而不行進慰乎四同災許人不吊君子以是知許之先亡也隣國猶爾也而況於天朝乎三公之議是矣

答曰議啓之意知道姑待領府事尹元衡之議發落

《明宗實錄 卷23, 50面》

연려실기술 제7권 236면

왕비(王妃) 신씨(愼氏)의 폐위(廢位)와 복위(復位)의 본말(本末)

○9월 4일 응교(應敎) 이언호(李彦浩)가 야대(夜對)에 들어가 아뢰기를, “신이 근자에 시관으로 어떤 과거 본 이의 책문(策文)을 보니, 대간이 박상 등을 죄주려고 한 것은 대간의 직책을 어긴 것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생의 망론이라 마땅히 실격시켜야 할 것을 도리어 뽑은 것은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중략] 12월 2일 새 대사헌 이장곤(李長坤)·대사간 김안국(金安國)은 광조(光祖)의 언로를 구하는 데에 가담하고 장령(掌令) 류부(柳溥)·김희수(金希壽)는 이언호의 말에 혹하여 권민수와 이행에게 가담하여 언로는 오히려 국가에 있어서 뒷 문제라고 하여 장곤이 이에 타이르는 것을 반복하여도 오히려 서로 용납하지 않고 궤내에 들어가서 각기 생각하는 바를 아뢰었다. 임금은 명하여 장곤과 안국을 같이 치웠다. 직제학(直提學) 김안로(金安老)가 둘이 다 옳다는 설을 내놓아 류부(柳溥) 등을 논박하여 갈게 하고 말하기를, “광조가 언로를 위하는 것과 권(權)·이(李)가 종사(宗社)를 위하여 죄 주자 하는 것이 둘 다 그른 일이 아니다” 하였다. 당시 조정 의논이 서로 시비하여 박열(朴說)은 대사헌으로서 병이 있다고 칭탁하며 사직서를 내었고, 방유녕(方有寧)은 대사간으로서 광조(光祖)와 의견을 같이 하다가 홍문관(弘文館)의 탄핵을 받았다. 그때 의논이, “권(權)과 이(李)는 실상은 재주를 시기하고 착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데서 나왔고, 언호의 아첨과 안로의 양시론(兩是論)은 모두 만세 공론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였다. 한림(翰林) 이약빙(李若氷)이 좌상(左相) 정광필(鄭光弼)을 찾아갔을 때 광필이 말하기를, “대간의 직책은 언로(言路)를 맡는 것인데 류부(柳溥)와 김희수(金希壽)가 언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제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심히 그르다고 생각한다. 홍문관에서 둘 다 옳다는 설을 내놓아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九月初四日應敎李彦浩因夜對進啓曰臣近爲試官見一舉子對策以臺諫請罪朴祥等爲失職事是儒生之妄議所當棄而反取之甚不可也 上不答 [中略] 十二月初二日 新大司憲李長坤大司諫金安國右光祖之能救言路掌令柳溥金希壽惑於李彦浩之議右權李曰言路乃國之

餘事長坤乃反復曉諭猶不得相容詣闕各陳所懷 上命遞長坤安國直提學金安老發兩是之論駁遞柳溥等而曰光祖爲言路扶植權李爲 宗社請罪俱未爲非云云當時廷議互相是非朴說爲都憲而托疾呈辭方有寧爲諫長議同光祖而爲弘文館所彈時議以爲權李實出於妬才仇善彥浩之諂附安老之兩是皆得罪萬世公論翰林李若水謁左相鄭光弼光弼曰臺諫職主言路柳溥金希壽等不顧言路猶執己見余甚非之弘文館出兩是之說而無所辨析余亦不取也

《卷之7, 662面》

연려실기술 제9권 476면

삼흥(三興)이 일을 꾸미다가 정유(丁酉)년에 패사(敗死)하다

○김안로·허항·채무택을 아울러 사사(賜死)했는데 안로는 진위(振威) 갈원(葛院)에 이르러 죽었다. 이때 3정승인 윤은보·류부(柳溥)·홍언필(洪彦弼) 등이, “안로 등이 죽음을 받았으므로 종묘 사직이 위태로울뻔 하다가 다시 편안해졌다” 하여 종묘(宗廟)에 고하고 임금께 하례(賀禮) 드리기를 청하고, 양연(梁淵) 등은 관계(官階)를 올리자 했다. 당적보

○金安老許沆蔡無擇並賜死安老行至振威葛院而死時三公尹殷輔柳溥洪彦弼等以安老等伏誅 宗社幾危而安請告 廟陳賀梁淵等以下論加階黨籍補

《卷之9, 759面》

연려실기술 제9권 512면

중종조(中宗朝)의 상신(相臣) 류부(柳溥)

류부(柳溥)는, 자는 언박(彦博)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요, 영상 순정(順汀)의 조카이다. 성종 임자년에 진사하고 연산 신유년에 문과에 뽑히고, 병신년에 정승이 되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기사에 들고, 김안로가 패한 뒤에 다시 정승이 되었다가 탄핵을 받아 갈렸다.

柳溥字彦博晉州人領相順汀之姪 成宗壬子進士燕山辛酉文科丙申拜相至左議政入耆社 金安老敗後復入相被論遞老許

《卷之9, 774面》

연려실기술 제17권 364면

종계(宗系)를 변무(辨誣)하다

○24년 가정(嘉靖) 8년 기축에 류부(柳溥)가 명나라 서울에 가서 있다가,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한다는 것을 듣고 글을 예부에 드리고, 본국 종계와 악명(惡名)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개정하여 줄 것을 빌었는데, 상서 이시재(李時宰) 등이 제사에, 『황제의 성지를 만들었는데, 『조선국 배신이 드린 바 본국 종계 사정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명백한 조지(詔旨)를 받든 바 있으니, 예부에서 조사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서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 시행케 하라』 하셨다』고 하였다.패관잡기
○二十四年嘉靖八年己丑柳溥在京師聞重纂大明會典呈文于禮部乞將本國宗系惡名等事從實改正尚書李時濬等題奉聖旨朝鮮國陪臣所呈本國宗系事情既有節奉祖宗朝明旨你部裏便通查備細開載送付史館采擇施行稗官雜記
《卷之17, 769面》

연려실기술 별집 제5권 385면

사신(使臣)

○24년 기축에 류부(柳溥)가 예부(禮部)에 문서를 올리었다. 선조조(宣祖朝) 종계변무(宗系辨誣)조에 들어 있다.
○二十四年己丑柳溥呈文禮部入 宣祖朝宗系辨誣 《別集 卷之5, 693面》

대동야승 제4권 패관잡기 1(稗官雜記一)

가정(嘉靖) 기축(己丑)년에 하절사(賀節使) 류부(柳溥)가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중수(重修)한다는 말을 듣고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본국의 종계(宗系)와 악명(惡名)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사실대로 개정해 줄 것을 빌었더니, 상서(尙書) 이시재(李時宰) 등이 성지를 받들어 조선국 배신이 올린 바, “본국의 종계(宗系) 사정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명백한 조치(詔旨)를 받은 바 있으니, 예부에서 조사하여 자세히 기록해서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嘉靖己丑, 賀節使柳溥聞重脩會典, 呈文于禮部, 乞將宗係惡名兩事, 從實改正, 尚書李時等奉 聖旨, 朝鮮國陪臣所呈本國系事情, 既有節奉 祖宗朝明旨, 你部裏通查備細開載, 送付史館, 采擇施行
《國譯本 419面, 原本 729面》

대동야승 제4권 패관잡기 2(稗官雜記二)

가정 기축년(중종 24년(1529))에 동지(同知) 류부(柳溥)가 하절사(賀節使)로 연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동에 이르러 달자(達子)의 소식을 듣고 도사(都司)에게 고하여 군대를 내어 호송(護送)하여 주기를 청하였더니, 도사가 지휘(指揮)한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 2백 명을 거느리고 왔다. 탕참(湯站)에 이르러 역사(譯士)를 시켜 지휘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의주(義州)까지는 겨우 80리 밖에 안 되므로 군병이 호송할 필요가 없으니 돌아가라.” 하였더니, 지휘가 말하기를, “나는 도사의 명령을 받고 너의 재상을 호송하는 것이니 국경까지 호송해야겠다.” 하여,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무명 등의 물건을 아래로 군사에게 이르기까지 주고, 또 삼베도 주었다. 그 뒤로는 탕참에 사신이 돌아올 때에는 으레 군인 1백 명을 보내었는데, 그것을 호송(護送)이라고 불렀으며, 늘 잔치를

배풀고 무명을 주는 폐단을 남기게 되었다.

嘉靖己丑,柳同知溥以賀節赴燕,還到遼東,聞達子聲息,告於都司,乞撥軍護送,都司今指揮一員,領二百軍以來,至湯站,令譯士謂指揮曰,此去義州僅八十里,不須煩軍兵護去,指揮曰,我受都司之命,護汝宰相,當送到境上,遂渡鴨綠江,設宴以慰,贈黃布等物,下至軍士,亦給麻布,其後湯站於使臣之回例差軍人一百名,謂之護送,輒貽宴亨贈布之弊.

《國譯本 491面, 原本 758面》

대동야승 제13권 견한잡록(遣閑雜錄)

조정의 의정(議政)으로서 70이 지나서 기로소(耆老所)에 참여한 이는 권희(權僖) · 권중화(權仲和) · 이서(李舒) · 성석린(成石璘) · 조준(趙浚) · 하륜(河崙) · 황희(黃喜) · 허조(許稠) · 하연(河演) · 최윤덕(崔潤德) · 최항(崔恒) · 노사신(盧思慎) · 어세겸(魚世謙) · 류순(柳洵) · 정광필(鄭光弼) · 이유청(李惟淸) · 윤은보(尹殷輔) · 류부(柳溥) · 홍언필(洪彦弼) · 윤인경(尹仁鏡) · 이기(李芑) · 상진(尙震) · 윤개(尹漑) · 이명(李莫) · 이준경(李浚慶) · 권철(權轍) · 홍섬 · 노수신 · 정유길 · 김귀영(金貴榮) · 심수경이다. 심수경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존달(尊達)의 두 자리(덕(德) · 치(齒) · 작(爵)을 3달이라 함)에 참여하고 명상(名相)의 열에 참여하였으니 어찌 그 외람함을 말하랴. 최항 이상은 기로소 선생 안(先生案)에 있었으므로 기록하였으나, 다시 들으니, 최항의 나이 70이 못 되었다 하고, 그 나머지도 자세하지 아니하다. 정승이 되면, 비록 70이 못 되었어도 으레 모두 연회에 참례하게 되는데, 그 연회에 참례한 까닭으로 선생안에 기재한 것인가.

國朝議政.年過七十.參耆老所者.權僖權仲和李舒成石璘趙浚河崙黃喜許稠河演崔潤德崔恒盧思慎魚世謙柳洵鄭光弼李惟淸尹殷輔柳溥洪彦弼尹仁鏡李芑尙震尹漑李莫李浚慶權轍洪暹盧守慎鄭惟吉金貴榮及守慶.守慶不德.而得與達尊之二.齒諸名相之列.何其濫也.崔恒以上在耆老所先生案故錄之而更聞則恒年未七十云餘亦未詳而議政則雖未七十例皆參宴以其參宴之故載於先生案歟

《國譯本 541面, 原本 130面》

대동야승 제34권 역대요람(歷代要覽)

8년 배신(陪臣) 류부(柳溥)가 경사(京師)에 있었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다시 편찬한단 말을 듣고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본국 종계(宗系)와 악명(惡名) 등을 사실대로 고쳐 달라고 요구하니, 상서(尙書) 이시(李時) 등이 상주(上奏)하여 성지(聖旨)를 받드니, “조선국의 배신이 올린 바 자기 나라의 종계(宗系)의 일에 관해선,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밝으신 분부를 받들은 일이 있었으니, 너의 부(部)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하여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八年.陪臣柳溥在京師.聞重纂大明會典.乃呈文于禮部.乞將本國宗系惡名等.從事實改正.尙書李時等題奉聖旨.朝鮮國陪臣所呈.本國宗系事情.既有節奉祖宗朝明旨者.爾部裡

便通查.備細開載.送付史館.采擇施行.

《國譯本 590面, 原本 132面》

대동야승 제71권 유천차기(柳川筭記)

동(중종) 24년(1529) 기축(가정(嘉靖) 8년)에는 배신 류부(柳溥)가 북경에 있었는데, 「대명회전」을 중간[重撰]한다는 말을 듣고 예부에 글을 올려, 본국의 종계와 악명(惡名) 등을 사실대로 개정해 주기를 호소하였고, 동 34년(1539) 기해(가정 18년)에는 배신 권벌(權機)을 보냈으며, 명종(明宗) 12년(1557) 정사(가정 36년)에는 배신 조사수(趙士秀)를 보냈고, 동 18년(1563) 계해(가정 42년)에는, 배신 김주(金澍)를 보냈다. 그 주문(奏聞)에, 혹은 자문(咨文)도 보내왔고 혹은 칙서도 내렸는데, 모두 「대명회전」이 반포되는 날, 이어서 밝혀줄 뜻을 말했으나, 시역(弒逆)하였다는 거짓은 밝혀지지 못하였다.

二十四年己丑.嘉靖八年陪臣柳溥在京師.聞重撰大明會典.呈文禮部.乞將本國宗系惡名等事.從實改正.三十四年己亥.嘉靖十八年遣陪臣權機.至明宗十二年丁巳.嘉靖三十六年遣陪臣趙士秀.十八年癸亥.嘉靖四十二年遣陪臣金澍.節續奏聞.或咨或勅皆言會典頒布之日.續行昭示等情.而弒逆之誣未經昭雪. 《國譯本 237面, 原本 54面》

희락당고 권일(希樂堂稿 卷一)

류지추 언박이 재취장가 가는 자리에 급히 지어 농담삼아 드렸다. 언박이 상배한 후 나이 육십사세에 다시 종실 집안 딸에게 장가들었다.
走簡戲柳知樞彥博再娶之席 彥博喪偶 年六十四 更聘宗室女

《韓國文集叢刊 21卷, 希樂堂稿 266 A》 《晉州柳氏文集 149面》

모재집 권칠(慕齋集 卷七)

류참찬 언박과 류예관 관지가 영릉을 수리하라는 명을 받고 와서 일을 마치고 배를 함께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뒤를 따라 올 때 어린 종이 피리를 불며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희롱삼아 두 공에게 써 드렸다. 참찬의 이름은 부이고 관서의 이름은 관이다.

柳參贊彥博 柳禮判灌之 以奉修英陵 受命而來 旣事 共舟還京 予乘小艇從 奚童吹短笛 沂流而會 飲醉 戲呈兩公 參贊名溥 判書名灌

《韓國文集叢刊 20卷, 慕齋集 130 C》 《晉州柳氏文集 150面》

우정집 권육(憂亭集 卷六)
부록(附錄) 사제문(賜祭文)

김선생 우정에게 드리는 연명 제문
祭憂亭金先生文 《韓國文集叢刊 18卷, 憂亭集 附錄 444 A》《晉州柳氏文集 151面》

월헌집 권일(月軒集 卷一)

희룡삼아 류언박 부에게 올렸다.
戲呈柳彦博溥 《韓國文集叢刊 16卷, 月軒集 185 B》《晉州柳氏文集 154面》

월헌집 권일(月軒集 卷一)

동산역에서 하룻밤 자고 희룡삼아 언박에게 써 주었다.
宿凍山驛 戲呈彦博 《韓國文集叢刊 16卷, 月軒集 185 B》《晉州柳氏文集 154面》

월헌집 권사(月軒集 卷四)

희룡삼아 류언박 부에게 써 주었다.
戲呈柳彦博溥 《韓國文集叢刊 16卷, 月軒集 249 C》《晉州柳氏文集 154面》

부 록(附錄)

12세, 안간공(安簡公) 류혜손(柳惠孫)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완백(完伯) 류혜손(柳惠孫) 全羅道 觀察使(安廉使) 恭愍王 壬寅 11年(1362)

청선고(清選考) 中 卷8, 581面.

13세, 정평공(靖平公) 류 구(柳 珣)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청백리(清白吏) 류 구(柳 珣) 태조조(太祖朝)

청선고(清選考) 中 卷7, 363面.

13세, 문간공(文簡公) 류 염(柳 琰)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천관(天官) 류 염(柳 琰) 이조판서(吏曹判書) 太宗 癸未 3年(1403)

청선고(清選考) 上 卷3, 502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청백리(清白吏) 류 염(柳 琰) 세종조(世宗朝)

청선고(清選考) 中 卷7, 363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완백(完伯) 류 염(柳 琰) 태종(太宗) 壬午任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清選考) 中 卷8, 582面.

14세, 청백리공(清白吏公) 류 겸(柳 謙)

청백리(清白吏) 류 겸(柳 謙) 세종조(世宗朝)

청선고(清選考) 中 卷7, 363面.

16세, 사예공(司藝公) 류자문(柳子文)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한림(翰林) : 문종조(文宗朝) 류자문(柳子文) 丁卯 辛未拜. 司藝

청선고(淸選考) 上 卷4, 789面.

16世, 사인공(舍人公) 류 돈(柳 墩)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옥당(玉堂) : 중종(中宗) 류 돈(柳 墩) 중종경오식(中宗庚午式)

청선고(淸選考) 中 卷6, 141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연괴(蓮魁) : 중종정묘(中宗丁卯) 2年(1507) 증광방(增廣榜) 생장(生壯)

중종경오(中宗庚午) 5年(1510) 식년방(式年榜) 병과(丙科)

청선고(淸選考) 中 卷7, 377面.

18世, 정랑공(正郎公) 류예신(柳禮臣)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연괴(蓮魁) : 연산갑자(燕山甲子) 10年(1504) 식년방(式年榜) 생장(生壯)

중종경오(中宗庚午) 5年(1510) 식년방(式年榜) 병과(丙科)

청선고(淸選考) 中 卷7, 377面.

한국역대인물전집성(韓國歷代人物傳集成)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중종조(中宗朝) 2261面.

18世, 정민공(貞敏公) 류진동(柳辰全)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부제학(副提學) 류진동(柳辰全)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正3品 堂上官

청선고(淸選考) 上 卷4, 768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기백(畿伯) 류진동(柳辰全) 명종(明宗) 辛亥任 경기도 감사(京畿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淸選考) 中 卷8, 522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완백(完伯) 류진동(柳辰全) 명종(明宗) 己酉任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淸選考) 中 卷8, 587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북백(北伯) 류진동(柳辰全) 명종(明宗) 丙辰任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淸選考) 中 卷8, 606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증시(贈諡) 정민(貞敏) 공판(工判) 류진동(柳辰全)

정헌(靖憲) : 관헌령종행선가기(寬憲令終行善可紀)

정민(貞敏) : 청백자수응사유공(淸白自守應事有功)

익민(翼敏) : 사헌침원민사유공(思憲琛遠敏事有功) 홍양호(洪良浩) 장(狀)

청선고(淸選考) 中 卷9, 727面.

한국역대인물전집성(韓國歷代人物傳集成)

인물고(人物考) 홍섭 찬비(洪漚 撰碑) 2297面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비명(碑銘) 홍섭(洪漚) 2297面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중종조(中宗朝) 2299面

18世, 소재공(素齋公) 류순선(柳順善)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사인(舍人) : 류순선(柳順善) 의정부(議政府)의 사무관리(事務管理) 관원(官員) 正4品
청선고(淸選考) 上 卷2, 390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호당(湖堂) : 류순선(柳順善) 명종(明宗) 경술선(庚戌選)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
청선고(淸選考) 上 卷4, 878面. 견번진(見藩鎭)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옥당(玉堂) : 명종조(明宗朝) 류순선(柳順善) 견번진(見藩鎭)

청선고(淸選考) 中 卷6, 149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동백(東伯) 류순선(柳順善) 명종(明宗) 병인임(丙寅任)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淸選考) 中 卷8, 559面.

18世, 겸재공(謙齋公) 류종선(柳從善)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사인(舍人) : 류종선(柳從善) 의정부(議政府)의 사무관리(事務管理) 관원(官員) 正4품
청선고(淸選考) 上 卷2, 390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옥당(玉堂) : 명종조(明宗朝) 류종선(柳從善) 견사인(見舍人)
청선고(淸選考) 中 卷6, 149面.

한국역대인물전집성(韓國歷代人物傳集成)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중종조(中宗朝)
第3卷 2288面.

19世, 충정공(忠定公) 류 빈(柳 濱)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천관(天官) : 류 빈(柳 濱) 이조판서(吏曹判書) 中宗 丁卯 2年(1607)
청선고(淸選考) 上 卷3, 507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본병(本兵) : 류 빈(柳 濱) 견천관(見天官) 병조판서(兵曹判書) 中宗 丁卯 2年(1607)
청선고(淸選考) 上 卷3, 625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옥당(玉堂) : 성종조(成宗朝) 류 빈(柳 濱) 견천관(見天官)
청선고(淸選考) 中 卷6, 135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청백리(淸白吏) : 중종조(中宗朝) 류 빈(柳 濱) 견천관(見天官)
청선고(淸選考) 中 卷7, 365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해백(海伯) 류 빈(柳 濱) 연산(燕山) 임술임(壬戌任) 황해도 감사(黃海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淸選考) 中 卷8, 546面.

한국역대인물전집성(韓國歷代人物傳集成)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연산조(燕山朝)
 第3卷 2207面.

19世, 진양군(晉陽君) 류 영(柳 滌)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중종조원년정국공신(中宗朝元年靖國功臣) 107人 정덕원년병인(正德元年丙寅) 9月 2日 反正
 녹훈(錄勳) 4등(等) : 류 영(柳 滌) 절충(折衝) 진양(晉陽) 순정질(順汀侄)
 청선고(淸選考) 上 卷2, 438面.

19世, 효성공(孝成公) 류 부(柳 溥)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孝 清白
 태사(台司) 中宗朝 在位 39年 自丙寅 9月 2日 至甲辰 11月 15日
 좌의정(左議政) 류 부(柳 溥) 언박(彦博) 효성(孝成) 진주(晉州)
 연산신유식(燕山辛酉式) 정유우성배인(丁酉右成拜兒)
 부 첨정(父添汀) 순정질(順汀侄) 갑진졸(甲辰卒)
 청선고(淸選考) 上 卷2, 302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부 기적(附 紀蹟) 거정부불구(居政府不久)
 류 부(柳 溥)
 청선고(淸選考) 上 卷2, 363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부 기적(附 紀蹟) 상신사인장(相臣賜兒杖)
 중종조(中宗朝) 류 부(柳 溥)
 청선고(淸選考) 上 卷2, 368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사인(舍人) : 중종조(中宗朝) 류 부(柳 溥) 견태사(見台司)
 청선고(淸選考) 上 卷2, 387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옥당(玉堂) : 연산조(燕山朝) 류 부(柳 溥) 견태사(見台司)
청선고(清選考) 中 卷6, 139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기사(耆社) : 기로사의 약칭
중종조(中宗朝) 류 부(柳 溥) 燕山辛酉 72歲
청선고(清選考) 中 卷7, 321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사인장(賜几杖)
중종조(中宗朝) 영상(領相) 류 부(柳 溥)
청선고(清選考) 中 卷7, 371面

장서각귀중본총서(藏書閣貴重本叢書)
완백(完伯) 류 부(柳 溥) 중종(中宗) 무자임(戊子任)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 관찰사(觀察使)
청선고(清選考) 中 卷8, 586面.

한국역대인물전집성(韓國歷代人物傳集成)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중종조(中宗朝)
第3卷 2205面.

발간후기(發刊後記)

왕조실록 책더미 속에 파묻혀 흥분의 감동 속에 생활한 시간이 벌써 10여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인물 자료집 첫째 권의 발간에 그 뒷말을 기록하려 하니 가슴이 뭉클하고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감격을 과연 글로써 표현할 수 있을까 두려워 지기까지 한다.

하루종일 색인부를 찾아 번역본과 원본을 대조해 가며 선조들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듯한 기록이 축적된 실록을 복사하고 가위질하며 펜을 들어 기록하며 하나의 이름없는 석공이 낮은 곳에서 부터 시작하여 돌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며 커다란 성(城)을 쌓아 완성하여 가듯이 목표를 향해 갔다.

등재된 선조의 주변 인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된 인물의 주(註)를 달아 다시 교정하고 처가(妻家) 외가(外家) 등의 통혼 관계를 밝혀 가문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충하였으며 후일 보학자에 관심을 두고 간접 혼인 관계나 직접 혼인관계를 자료 보존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밝히는데 까지 밝혔다.

이는 우리 가문의 통혼관계 및 가족제도 발전사 문제 뿐 아니라 여말 선조와 조선왕조의 서류 부가(孀留婦家), 상속문제 그밖에 친족관계 사회풍속 등에 대한 고찰과 분석에 대한 자료제공과 함께 역사의 뒤안에서 가문끼리 합종 연횡으로 펼쳐가며 혈맹으로 이어지는 왕조 정치사 권력구조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인물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교정, 감수, 편집에 까지 깊숙이 참여한 사람들은 대학에서 역사나 사회사 또는 서지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도 아니며 글을 매끄럽게 쓰며 운문 각색에 붓끝을 희롱하는 탁월한 기교와 능력을 가진 문필가도 아니다. 선조에 연관된 기록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열정 하나로 발췌 수집에 매달렸다. 좌절감과 성취감의 반복 속에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발로 뛰어가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

중용(中庸)에 널리 배우며 자세히 따져 물으며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명확하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한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자기는 백번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천 번을 한다 했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人一能 己百之 人能之 己千之).

왕조실록의 기록은 200자 원고지로 따져 50층 이상의 빌딩 높이 만큼 쌓을 수 있다는 방대한 자료에 도전한 가문이나 문중은 별로 없다. 일부 자기 조상에 대한 필요한 행적이나 아니면 소과 종종에서 선조에 대한 자료 발굴에 국한되고 있다.

진주류씨 처럼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전체에서 등재된 인물의 전체를 발췌, 수집하여 총정리하여 발간까지 계획한 가문은 없다는 것이 이 방면에 전문적인 분들의 똑같은 감탄스런 대답이다. 3년의 정성과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2003년도 진주류씨문집 발간이며 준수직 이상의 벼슬 편력이 있는 선조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1년

동안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전체 자료를 정리하여 380분 이상의 선조의 기록을 2005년에 발간한 한국성씨총감(韓國姓氏總鑑)에 등재했으며 학계에서도 찾다가 포기한 귀중한 자료를 3년여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으로 발굴해 낸 대학자 서파 류희(柳僖)의 평생 역작인 필사본, 원본 포함하여 130여권의 자료는 앞으로 많은 석·박사를 배출시킨다는 연구원의 말처럼 진주류씨 서파 류희 전서(西坡柳僖全書) 1권과 2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되어 어문학, 박물학, 실학, 경학 등 전문 연구 학자들에 의해 연구결과가 학술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3권과 4권이 교정 정리되어 발간될 예정으로 있다. 청선고(淸選考),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와 무보(武譜)에서의 새로운 선조의 기록을 발견 했으며 또한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서 발췌 수집한 류용근(柳庸謹)이 귀양지에서 쓴 친필 서문과 간찰의 발견 등은 이 모든 보람된 일은 더할 수 없는 성취감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우리들로 부터 잊게 해 준다.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숙원 사업은 동국여지승람 그리고 전국의 각 군·현지(郡縣誌)에 등재된 선조의 기록 발굴과 무보의 자료정리, 1차 진주류씨 문집이 거의 숙종때까지의 인물로 끝났으니 구한말까지의 역대 선조의 시문을 발췌하여 명실상부한 진주류씨의 문집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이루지 못하면 후대의 몫으로 남겨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인물 자료집이 계속 끝까지 발간되어 혹 가문 연구하는 연구자의 자료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울러 진주류씨 종원 각자의 의식이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갖추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문과 가통의 존재 가치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선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후손이 되는데 인물자료집이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심장 수술까지 한 후 재수술까지 마다한 마당에 내환(內患)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 동분 서주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료 발굴에 전력 투구한 조호(朝浩)씨와 80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종사(宗事)의 복잡다난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여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신 중섭(重燮) 총무, 큰 용단과 지침이 없었다면 사장되어 빛을 못 보았을 인물자료집 발간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적극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근창(根昌) 대종회 회장님, 그리고 항상 희망을 심어주신 임원 여러분께 발간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2009년 11월

류 조 호(朝浩)

류 중 섭(重燮)

류 재 중(載中)

아명(載仲)

晉州柳氏人物資料集

2009年 11月 日 印刷

2009年 11月 日 發行

發行人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28번지
晉州柳氏大宗會
會長 柳 根 昌
전화 02) 2618-0291

編輯·校正·監修 柳 重 燮
柳 朝 浩
柳 載 中

印刷處 에프원프린팅(주)
서울시 중구 예관동 70-33
전화 02) 733-2955